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15년 2월

박사학위 논문

# 『完營日錄』 國譯 研究

조선대학교 대학원

고전번역학과

김 순 석



# 『完營日錄』 國譯 研究

A Study on the Korean translation of 『Wanyoung ilrok』

2015년 2월 25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고전번역학과

김 순 석



# 『完營日錄』 國譯 研究

지도교수 : 김 경 속

이 논문을 박사학위 신청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10월






조 선 대 학 교 대 학 원

고전번역학과

김 순 석



김순석의 박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이종범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최진규	
심사위원	전주대학교 교수	金建佑	
심사위원	서울대규장각 책임연구원	김선경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김경숙	

2014년 12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 목 차

## ABSTRACT

I . 머리말 .....	1
1. 연구목적과 연구방법 .....	4
2. 국역(國譯) 원칙 .....	5
II . 『완영일록』 과 전라도 관찰사 업무 .....	7
1. 서유구(徐有榘)와 『완영일록』 .....	7
1.1 서유구의 생애와 저술 .....	7
1.2 『완영일록』 의 자료적 가치 .....	10
2. 『완영일록』 의 공문서와 문서식 .....	13
2.1 전라도 관찰사의 문서행이(文書行移) 체계 .....	13
2.2 『완영일록』 의 공문서 종류와 기재 방식 .....	15
3. 『완영일록』 공문서로 본 전라도 관찰사의 업무 .....	20
3.1 국왕에게 주요 업무 보고 .....	23
3.2 경사(京司)·타도(他道)와의 소통 .....	25
3.3 예하 관원 통솔 .....	26
3.4 도내 사법 활동 지휘 .....	27
III . 국역 『완영일록』 권 1 .....	29
1. 1833년(순조33) 4월 : 전라도 관찰사 도계(到界) 장계를 올리다 .....	30
2. 1833년(순조33) 5월 : 백일장을 시행하다 .....	56
3. 1833년(순조33) 6월 : 춘하등(春夏等) 포편을 행하다 .....	71
4. 1833년(순조33) 7월 : 검안(檢案) 보고서를 올리다 .....	97

5. 1833년(순조33) 8월 : 조경묘(肇慶廟) 추향제(秋享祭)를 시행하다	119
6. 1833년(순조33) 9월 : 방곡(防穀) 및 권기(勸起)를 관문하다	153
7. 1833년(순조33) 10월 : 연분(年分)과 재결(災結)을 처리하다	189
<b>IV. 국역 『완영일록』 권 2</b>	<b>253</b>
1. 1833년(순조33) 11월 1~10 : 환곡을 독촉하는 일로 52주에 관문하다	255
2. 1833년(순조33) 11월 11~20일 : 각 읍에 표재관문(倭災關文)하다	265
3. 1833년(순조33) 11월 21~30일 : 향시·한성시 날짜를 감결하다	297
4. 1833년(순조33) 12월 1~10일 : 추동등(秋冬等) 포핍을 행하다	319
5. 1833년(순조33) 12월 11~20일 : 대동면포(大同綿布)를 상소하다	341
6. 1833년(순조33) 12월 21~30일 : 각 읍에 우금(牛禁)을 감결하다	371
<b>V. 국역 『완영일록』 권 3</b>	<b>405</b>
1. 1834년(순조34) 1월 1~10일 : 경기전(慶基殿) 정조제(正朝祭)를 행하다	407
2. 1834년(순조34) 1월 11~20일 : 수령칠사(守令七事) 장계를 올리다	435
3. 1834년(순조34) 1월 21~30일 : 세곡조운(稅穀漕運)을 감결하다	467
<b>VI. 맺음말</b>	<b>519</b>

## 도 · 표 목 차

<그림 1> 관찰사 공문서 행이체계도 .....	14
<그림 2> 『완영일록』에 등재된 장계 .....	19
<그림 3> 『완영일록』에 등재된 관문 .....	20
<표 1> 『완영일록』 8권의 권별 기간과 특기사항 .....	11
<표 2> 『완영일록』 문서행이별 문서종류 및 등재 문건 수 .....	16
<표 3> 『완영일록』 문건 중 장계 내용 분포표 .....	24

참고문헌 .....523

부록 .....527

<표 4> 『완영일록』 권1 월별 전라도 관찰사 주요 직무 .....527  
 <표 5> 『완영일록』 권2 월별 전라도 관찰사 주요 직무 .....529  
 <표 6> 『완영일록』 권3 월별 전라도 관찰사 주요 직무 .....533  
 <표 7> 『완영일록』 권1 문서 등재 현황 ..... 535  
 <표 8> 『완영일록』 권2 문서 등재 현황 ..... 540  
 <표 9> 『완영일록』 권3 문서 등재 현황 .....546  
  
 <그림 4> 『화영일록』 문서등재 현황 .....550

## ABSTRACT

A Study on the Korean translation of 『Wanyoungilrok』

Kim, Soonsuk

Advisor : Associate Professor Kim, Kyeongsook

Major in Translation of Sino-Korean Classics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A Study on the Korean translation of 『Wanyoungilrok』' is an analysis of documents listed in the 『Wanyoungilrok』, which was written by the Jeolla Gwanchalsa Seo Yu-gu during his 21-month tenure from 10 April 1833 to 30 December 1834. 『Wanyoungilrok』, written by the Jeolla Gwanchalsa Seo Yu-gu, was a work of eight volumes, but it has been photoprinted into three volumes by SKK. University in 2002.

This Korean translation of 『Wanyoungilrok』 is that of the first out of the three photoprinted volumes.

The purpose of the Korean translation of 『Wanyoungilrok』 is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official documents of the Jeolla Gwanchalsa, and to identify the flow of these documents.

Furthermore, it is to clarify the grounds on which ancient official documents were based on in the systems of the Chosun Dynasty.

Ancient documents can be classified roughly into three groups: 'up-documents', 'equal-documents', 'down-documents' accordingly by

the 『Gyeongguk daejeon』. It defined the flow of official documents and their forms based on article Yejeon(禮典). Documents presented to the king are called up-documents, those sent to fellow officers are called equal-documents, and those sent to lower officers are called down-documents.

First, we studied the flow of official documents and the three group of documents listed in the 『Wanyoungilrok』, based on article Yejeon within 『Gyeongguk daejeon』.

Secondly, on 『Wanyoungilrok』 is listed 1,070 documents that are composed of 13 types of documents. So we studied 6 most frequently encountered types of documents such as 'Janggye(狀啓)', 'Cheopjeong(牒呈)', 'Gwanmun(關文)', 'Jey(題)', 'Gamgyeol(甘結)', 'Hache(下帖)'.

Thirdly, when translating Chinese characters to Korean we can find the 'Yidu(吏讀)' as verb endings of a word, which we suggest that it can perhaps be translated into 3 different types such as 'honorific titles', 'mutual respect', 'imperative mood', in correspondence with the three groups of documents 'up-documents', 'equal-documents' and 'down-documents'.

However, the study of 'Yidu(吏讀)' we postpone to a more opportune moment.

Keywords : ancient documents, 『Wanyoung ilrok(完營日錄)』, Jeolla Gwanchalsa, Seo, yu-gu, Official documents, up-documents, equal-documents, down-documents, 『Gyeongguk daejeon(經國大典)』, Yejeon(禮典), Janggye(狀啓), Cheopjeong(牒呈), Ganmun(關文), Jey(題), Gamgyeol(甘結), Hache(下帖), Yidu(吏讀).

## 1. 머리말

국왕중심 사회에서 관찰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고 권한 또한 막강하였다. 고려의 안렴사(按廉使) 체제에서 조선의 관찰사 체제로 바뀐 것은 군현제(郡縣制)와 도제(道制) 정비 작업의 결과였고, 이는 국왕중심의 통치체제 구축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조선시대 관찰사의 법적 지위는 직계권(直啓權)을 갖는 기관이자 도의 최고 통치자로서 중앙기관들과는 독립적으로 국왕과 연결되고 있었다.<sup>1)</sup>

관찰사는 순행(巡行)과 포폄(褒貶)<sup>2)</sup>으로 지방 수령과 관원들을 지도·감독 하고 도내 사법 활동을 지휘 하는 등 도내의 모든 군사와 민사를 지휘, 통제할 수 있었으며, 각 도의 병마절도사·수군절도사를 겸임하였다. 또한 관찰사는 조선시대 각 도에 파견되어 지방 통치의 책임을 맡았던 최고의 지방 장관으로, 감사(監司)·도백(道伯)·방백(方伯)·외헌(外憲)·도선생(道先生)·영문선생(營門先生) 등으로도 불리었으며, 국왕중심 사회에서 왕명 전달자로서 지방 수령을 규찰하고 안정적 지방행정을 도모하여 백성의 정신적 물질적 삶을 윤택하게 하려는 목적을 지닌 제도였다.

『완영일록』은 국왕중심의 통치체제에서 왕명을 받들어 오직 백성을 위하여 복무한 관찰사의 역할과 일상의 업무를 오롯이 기록한 책이다. 저자 서유구는 1833년(순조 33, 기사) 4월 10일에 전라도관찰사경병마수군절도사도순찰사전주부윤(全羅道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都巡察使全州府尹)으로 부임하여 이듬해인 1834년(순조 34, 갑오) 12월 30일까지 21개월 동안 재임하였다. 그 기간 동안 관찰사로서 주고받은 총 13종 1,070건의 공문서들을 날짜별로 정리 기록하여 전 8권으로 엮은 책이 바로 『완영일록』이다.<sup>3)</sup>

『완영일록』에 등재된 공문서를 살펴보면 실제 통치 현장에서 생산된 관부 문서의 종류<sup>4)</sup>를 가늠할 수 있고 관찰사가 주로 사용했던 문서식과 기재방식을 알 수

1) 『經國大典』 「禮典」 用文字式.

2) 포폄(褒貶) : 매년 6월과 12월에 벼슬아치들의 근무 성적을 매기는 일이다. 경관(京官)은 해당 관아의 제조(提調)와 당상관(堂上官)이, 지방관은 관찰사와 절도사가 상·중·하의 세 단계로 고과(考課)하여 임금에게 보고하면 이를 도목 정사(都目政事) 때 반영하였다.(『經國大典』 「吏典」 褒貶)

3) 서유구가 전라도 관찰사로서 두 차례의 순행(巡行 1833.8.16.~26/1834.9.8.~21)시 민장(民狀)에 대한 1,356건의 데깁[題]은 구체적 내용이 없고 단지 민장 몇 건을 판결했다고 기록되어 있어 『완영일록』 등재 문건 수에는 합산하지 않았다. 또 유서(諭書)는 국왕이 내린 명령서이기 때문에 관찰사문서로 분류하지 않았다.

4) 관청의 업무 과정에서 발급한 공문서로 수취인에 따라 국왕에게 올리는 문서, 왕실에 올리는 문서,

있다. 또 주요 문서 수·발신자 간에 따라 어떤 문서명으로 주고받았는가를 알 수 있으며, 당대 사회·문화 및 국왕 통치체제를 연구하는 데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문서내용으로 조선후기 전라도 관찰사<sup>5)</sup>의 업무특성을 개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서유구의 구체적 농민구휼정책과 사법 활동 등을 살펴볼 수 있다. 나아가 공문서에 빈번하게 쓰인 이두(吏讀)의 사용례를 접할 수 있다.

간과할 수 없는 또 하나는 조선시대 전 기간을 걸쳐 오직 서유구의 전라도 관찰사 재임기간 공문서 모음인 『완영일록』과 수원 유수 재임 기간 공문서 모음인 『화영일록(華營日錄)』<sup>6)</sup>이라는 재임 전과정의 다양한 공문서 기록이 전해진다는 사실이다. 다른 관찰사들도 유사기록이 있었을 테지만 일실(逸失)되었는지도 규명과제이고, 또 서유구는 『완영일록』이나 『화영일록』의 기록 뿐 아니라 순창(淳昌) 군수(郡守)·의주(義州) 부윤(府尹)·양주(楊州) 목사(牧使)·강화부(江華府) 유수(留守) 등 다른 외직 재임 간에도 공문서를 기록했는데 없어진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 두 책만 기록하여 전해지는 것인지 등이 추후 밝혀야할 과제이다. 아울러 조선시대 가장 방대한 백과사전으로 불려지는 『임원경제지』 등 전해지는 저작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진척되지 않은 서유구 인물 연구를 위해서도 『완영일록』·『화영일록』 두 책은 매우 유용한 자료이다.

『완영일록』에 기록되어 있는 방대한 데김[題]<sup>7)</sup>과 관문(關文)<sup>8)</sup>, 장계(狀啓) 등

관부에게 보내는 문서, 사인(私人)에게 발급하는 문서, 사사(寺社)·서원(書院)으로 보내는 문서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최승희, 『增補版 韓國古文書研究』, 지식산업사, 2008, 140-298쪽)

- 5) 전라도 관찰사 : 일반적으로 전라 감사(全羅監司)라고도 일컫는데 전 조선총독부 도서관 소장의 『전라도관찰사영지(全羅道觀察使營志)』와 전주 기녕당(耆寧堂) 소장의 『전라도도선생안(全羅道道先生案)』에 준거하여 『전주 부사(全州府史)』에 부록된 것으로 보면 전라 감사는 1358년 고려 공민왕 7년부터 1910년 까지 5백52년 동안 520여회의 감사교체가 있었고, 두 번은 물론 원두표(元斗杓 1593~1664)같이 세 차례나 부임한 감사도 있음을 볼 수 있다.(崔勝範, 『全羅監司』, 全羅日報社, 1990)
- 6) 『화영일록(華營日錄)』 : 풍석(楓石) 서유구(徐有榘 1764-1845)가 수원 유수(水原留守) 재임 기간인 1836.1.1.~1837.12.12.까지의 업무 행적을 기록한 것으로 장계(狀啓)·계본(啓本)·첩보(牒報)·감결(甘結) 등 289건의 공문서와 24개월간의 업무 일기를 기록한 책이다.
- 7) 데김[題] : 제사(題辭), 제음(題音)과 같은 뜻으로 제음(題音)은 '데김' 또는 '제김'으로도 읽으며, 각 고을에서 올린 내용이나 민원인의 소장(訴狀)·청원서(請願書) 그리고 진정서(陳情書) 종류인 소지(所志)·발괄(白括)·등장(等狀)·상서(上書)·원정(原情) 등을 제출하면 관에서는 그 소장의 왼쪽 하단 여백에 써준 판결문(判決文)·처결문(處決文)이다.(최승희, 앞의 책, 278쪽)
- 8) 관문(關文) : 관부(官府) 상호간에 수수(授受)되는 관용문서(官用文書)로서 동등 이하에 쓴다. 동등한 관부 상호간 또는 상급 관부에서 하급 관부로 보내던 문서. 하급에서 상급으로 올리는 문서는 '관(關)'을 쓸 수 없고, 첩정(牒呈)을 쓴다. 관(關)의 내용은 대개 두 관청간의 관련있는 사무를 '상고(相考)'하여 시행하기 위한 것이다. 동등한 관부 사이의 관문을 '평관(平關)'이라 하고 관자(關子)라고도 한다.(최승희, 앞의 책, 180쪽)



의 문서 중에서 지금까지 연구된 분야는 그의 진휼(賑恤)정책과 살옥(殺獄)관련과 전라감사의 직임에 관한 것이 있다. 손병규(2003)는 서유구의 진휼정책<sup>9)</sup>, 이희권(2008)은 전라감영과 관찰사<sup>10)</sup>, 김현영(2008)은 전라감영의 구조<sup>11)</sup>, 이해령(2011)은 서유구의 검안처리 업무<sup>12)</sup>, 김선경(2012)은 전라도 지역 살옥 사건과 심리<sup>13)</sup> 등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완영일록』은 서유구의 개인 일기성격보다는 사실상 조선후기 전라도 감영(監營) 공문서 모음이라는데 주목하여 등재된 문서 총 13종 1,070건을 중심으로 공문서 유형과 주요 문서 기재방식을 살펴보고, 전라도 관찰사가 국왕과, 각 지방 수령 및 다른 도 관찰사 간에 주고받은 문서명과 행이(行移)체계를 도출함은 물론 10개월간의 공문서와 업무 내용을 국역하여 전라도 관찰사의 대략의 업무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조선후기 전라도 관찰사 재임 전과정의 다양한 공문서 모음인 『완영일록』의 국역 연구는 장계(狀啓)·첩정(牒呈)·관문(關文) 등을 통하여 종2품 외직 관찰사가 국왕통치체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였으며, 외직에 나온 관찰사는 감결·데김[題] 등의 문서를 통하여 각 군현 수령을 무슨 일로 어떻게 지휘하였으며, 당시 사회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많이 일어났는지를 엿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순행(巡行)·포폄·동당시(東堂試)·삭선(朔膳) 등을 기록한 문건을 통하여 관찰사의 주요업무가 집행되는 시기와 과정을 추적할 수 있고 나아가 당시 전라도의 농사 현황과 풍속 등도 가능해 볼 수 있다.

위와 같이 관찰사를 중심으로 국왕과, 예하 수령 간에 주고받은 다양한 공문서와 21개월간의 전라도 관찰사 업무 기록인 『완영일록』은 앞으로 조선후기 전라도 사회상과 관찰사의 역할과 업무를 연구하는데 학술적 가치가 높다고 본다.

이 같은 연구 목적을 바탕으로 II장에서는 『완영일록』과 전라도 관찰사 업무에 대하여 살펴보고, III·IV·V장은 『완영일록』 권1·권2·권3의 내용을 국역하고, VI장에서는 전라도 관찰사의 공문서 국역 의의와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9) 손병규, 「서유구의 진휼정책 -『完營日錄』·『華營日錄』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제42집, 2003, 93-114쪽.

10) 이희권, 「전라감영의 조직구조와 관찰사의 기능」, 『전라감영연구』, 전주역사박물관·전라문화연구소, 2008, 19-41쪽.

11) 김현영, 「『완영일록』을 통해 본 전라감영의 구조」, 『전라감영연구』, 전주역사박물관·전라문화연구소, 2008, 191-216쪽.

12) 이해령, 「서유구의 『완영일록』과 검안처리 업무」, 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13) 김선경, 「1833~34년 전라도 지역의 살옥 사건과 심리-『완영일록』의 분석-」, 『歷史教育』vol 122, 2012, 69-108쪽.

## 1. 연구목적과 연구방법

일기(日記)는 개인의 일상 기록이라는 사적 개념이 우선한다. 그럼에도 특수한 조건이긴 하지만 『조선왕조실록』 같은 기록을 『연산군일기(燕山君日記)』라 칭하여 공적인 개념이 강하기도 하였다. 한편 『영영일기(嶺營日記)』<sup>14)</sup> 같은 경우는 공적인 관찰사의 매일 기록이면서도 공문서는 실려 있지 않고 따로 『영영장계등록(嶺營狀啓謄錄)』에 공문서를 기록하였다.

『미암일기(眉巖日記)』<sup>15)</sup>는 공적인 것과 사적이 것이 혼재되어 있다. 반면 『완영일록』·『화영일록』 등은 말이 일기이지 소위 장계등록(狀啓謄錄)<sup>16)</sup>류와는 다르게 훨씬 다양한 문서가 있고 또 관찰사와 유수(留守)의 공적인 업무가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일기와 일록류를 단지 개인의 사적 기록물로 규정지을 수는 없는 것 같다. 곧, 기록자의 직함과 기록물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적인 기록물인지 공적인 기록물인지 판단의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일과 기록된 일이 얼마만큼 공인된 절차를 거쳤는지를 규명해내는 일이 일기류<sup>17)</sup> 연구의 과제라고 본다.

『완영일록』은 관부 문서를 연구하거나 당대 사회·문화 및 국왕 통치체제를 연구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

서유구는 1833년 4월부터 1834년 12월까지 전라도 관찰사로 21개월 재임기간 동안 『완영일록』 전 8권에 13종 1,070건의 공문서를 기록하여, 비슷한 시기 24개월간 수원

14) 『영영일기(嶺營日記)』: 손재(損齋) 조재호(趙載浩)가 1751년 6월 2일부터 1752년 8월 1일까지 경상감사로 제수되어 부임하는 날부터 감사의 소임을 마치는 날까지 일정(日程)과 순력(巡歷)의 노정을 기록한 책.

15) 『미암일기(眉巖日記)』: 조선 선조 원년(1568)부터 십 년 동안에 걸쳐서 미암 유희춘(柳希春)이 쓴 일기. 개인의 일기 가운데 가장 방대한 것으로, 자신의 일상생활과 당시 국정의 대요(大要), 인물의 진퇴(進退)에 이르기까지 공사(公私)의 사실이 날짜순으로 기록되어 있어 사료로서 가치가 크다.

16) 『기영장계등록(畿營狀啓謄錄)』과 『영영장계등록(嶺營狀啓謄錄)』 등이 있는데, 『기영장계등록(畿營狀啓謄錄)』은 경기도 관찰사 심이지(沈頤之 1735-?)가 1783년 6월 22일부터 1784년 6월 30일까지 윤달 포함하여 약 13개월 간 253건의 장계를 기록한 것이고, 『영영장계등록(嶺營狀啓謄錄)』은 영남감사 조재호(趙載浩 1702-1762)가 1751년 6월부터 1752년 3월까지 10개월간 137건의 장계를 기록한 책. 또, 『호남계록(湖南啓錄)』은 1887~1888년의 전라감영 계록(啓錄)이고, 『전라병영장계등록(全羅兵營狀啓謄錄)』과 『전라감사계록(全羅監司啓錄)』은 비변사편 7책 필사본으로 전한다. 『전라감영계록(全羅監營啓錄)』은 전라감사 조인영(趙寅永)외 5명이 1885년부터 1889년까지의 계록(啓錄)을 기록한 7책으로 되어있다.(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

17) 현전하는 일기류는 1,600여종으로 소개되었다.(황위주, 「日記類 資料의 國譯 現況과 課題」, 『한국고전번역학회 창립기념학술자료』, 2009)

유수로 재임할 때 남겼던 『화영일록』에 등재된 289건<sup>18)</sup>의 공문서에 비해 훨씬 많고 장계(狀啓) 외에 다양한 문서가 있어 여타 장계등록류와 비교 검토를 위해서도 『완영일록』에 등재된 공문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외직(外職) 직계아문(直啓衙門)<sup>19)</sup>인 전라도 관찰사가 쓴 『완영일록』에서 조선후기 전라도 관찰사의 공문서 유형과 관찰사의 주요 문서 기재 방식을 살펴보고, 관찰사를 중심으로 국왕과, 각 지방 수령간의 문서행이 체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또 『완영일록』 전 8권중 재임 10개월간의 기록인 1권[癸巳 四月]부터 3권[甲午 一月]까지의 기록<sup>20)</sup>을 국역(國譯)하여 전라도 관찰사 대략의 업무특성을 파악할 수 있게 하고, 조선후기 공문서 분석과 전라도 지역학 연구를 위하여 『완영일록』 완역(完譯)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완영일록』에 등재된 문서 13종류 총 1,070건을 전라도 관찰사가 상급관청으로 보내는 상행(上行)문서, 동등 또는 하급 관청으로 보내는 동등(同等)·하행(下行) 문서, 하급관청 및 사인(私人)에게 보내는 하행 문서로 분류하고, 『경국대전(經國大典)』 「예전(禮典)」 용문자식(用文字式)에 근거하여 공문서 행이체계와 공문서 기재방식을 살펴보고 재임 10개월간의 기록을 국역하여 월별 문서 등재 현황을 밝히고 전라도 관찰사 대략의 업무와 공문서 13종류의 내용을 소개하였다.

## 2. 국역(國譯) 원칙

본 연구를 위한 국역은 서유구가 1833년(순조33, 계사) 4월 10일부터 1834년(순조34, 갑오) 12월 30일까지 전라도 관찰사(全羅道觀察使)로 21개월 재임기간 동안 업무 수행 행적과 공문서를 날짜별로 필사한 전 8권의 문헌을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에서 2002년에 영인한 ‘『완영일록』 3권 1질’ 가운데 제1권[1833.4.10.~1834.1.29.]을 저본으로 하여 국역 하였으며, 아래와 같은 원칙을 갖고 국역하였다.

18) 본고 부록, ‘<그림 4> 『화영일록』 문서등재 현황’ 참조.

19) 직계아문(直啓衙門) : 정무를 국왕에게 직접 아뢰 수 있는 2품 아문(衙門). (『경국대전』 용문자식) 자세한 내용은 본고 “2.1 전라도 관찰사의 문서행이(文書行移) 체계” 참조.

20) 『완영일록』 전 8권의 한자 수는 총332,039자이고 이 중 권1에서 권3권까지의 한자 수는 113,029자이다.

- ※ 원문 입력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왕실도서관장서각 디지털아카이브 원문 텍스트’ 자료를 다운받아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영인본으로 교감하였다.
- ※ 날짜별로 원문을 상단에 기입·표점하고 하단에 번역문을 배치하였다.
- ※ 원문중 오기(誤記)로 판단되는 것은 그대로 기록하고 주석으로 의견을 밝혀 번역하였다.
- ※ 원문의 이두(吏讀)는 밑줄을 긋고 기울여 구별하였다.
- ※ 원문의 표점은 ‘한국고전번역원’ 지침을 가급적 준수하려고 하였다.  
다만, 마침표와 책 표시는 각각 ‘.’ 과 ‘』’ 로 하였고, 원문 문서명 밑에 있는 쌍행 소주나 세주(細註)는 원문과 번역문 모두 “<>” 안에 글자를 작게 하여 표기하였다.
- ※ 인명, 지명, 관직명 등은 원문에 밑줄을 긋지 아니하였다.
- ※ 인명, 지명, 관직명 등의 고유명사와 특수 용어 국역에 한자를 병기하는 경우는 권(卷) 단위로 중복을 피하였다.
- ※ 원문에 격자(隔字) 혹은 대두(擡頭)된 것은 모두 붙여서 기입하고 번역하였다.
- ※ 읍에 관문 혹은 감결하였다는 의미는 해당 읍의 수령에게 관문 혹은 감결하였다는 의미이다.
- ※ 번역문은 직역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의역을 하였다.
- ※ 이두(吏讀)는 원칙적으로 문장 종결어미로 보았고, 직역을 원칙으로 하되 현대 문장의 의미와 맞지 않을 때 의역하였다.  
예) 捧上是在果 받아 보았거니와 >>>>받아 보았다.  
爲旆 하며 >>>> 하라.
- ※ 문서명은 원문과 번역문 모두 “【】” 으로 표시하였다.
- ※ 원문 간지력은 매 월이 바뀌는 처음에만 서기력·왕력을 병기하고 이후는 날짜만 썼다.
- ※ 겹따옴표 안 작음따옴표 내에서 또 인용문이 있는 경우 ‘ [ ] ’ 로 원문과 번역문에서 구별 하였다.  
예) “ ‘ [ ] ’ ”

## II. 『완영일록』 과 전라도 관찰사 업무

### 1. 서유구와 『완영일록』

#### 1.1 서유구의 생애와 저술

저자 서유구(1764~1845)는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달성(達城), 자는 준평(準平), 호는 풍석(楓石), 시호는 문간(文簡)이다. 판서 종옥(宗玉)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대제학 명응(命膺)이고, 아버지는 이조판서 호수(浩修)이다. 어머니는 김덕균(金德均)의 딸이다.

조선후기 소론의 대표적인 학자로서 조부인 서명응의 선천역(先天易)과 명물지학(名物之學), 생부 서호수(徐浩修)의 수리(數理)와 역상(曆象), 중부(仲父) 서형수(徐滢修)의 훈고(訓詁)와 명물 등 가학을 이어 받았고, 연암 박지원을 비롯한 북학파의 영향을 크게 받아 경학(經學)이나 경세학(經世學)뿐 아니라 천문·수학·농학 등 당시 잡학으로 취급되던 학문에 조예가 깊었다. 22세(1785년)의 나이에 조부 서명응의 명을 받아 『보만재총서(保晩齋叢書)』 중 「본사(本史)」의 뒷부분을 대신 저술할 만큼 일찍부터 농학에 대한 소양이 있었다. 『보만재총서』는 총 60책으로 학자 군주 정조로부터 “조선 400년 동안에 이런 거편(鉅篇)은 없었다”는 최고의 평가를 받기도 했다<sup>21)</sup>.

1790년(정조14)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 1792년(정조16) 나이 29세로 홍문관 정자(正字)가 되었다. 외직으로 34세에 순창(淳昌) 군수, 39세에 의주(義州) 부윤에 제수되었다. 내직으로는 대교(待敎)·부제학·이조판서·우참찬을 거쳐 대제학에 이르렀다.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가학을 이어 특히 농학에 큰 업적을 남겼다.

1806년(순조6)에 중부 서형수가 김달순(金達淳)의 옥사에 연루되어 삭직(削職)을 청하는 상소를 올려 체직되었다. 이후 17년간 금화(金華)·대호(帶湖)·번계(樊溪)·두릉(斗陵)으로 옮겨 살며 실제 농업에 종사하면서 아들 서우보(徐宇輔)와 함께 농업

21) 풍석 서유구 지음, 정명현·민철기·정정기·전종욱 외 옮기고 씀, 『임원경제지-조선최대의 실용백과사전』, (주)씨앗을 뿌리는 사람, 2012, 139쪽.

에 관한 저술을 하였다. 서유구의 저술에 대해서는, 이유원(李裕元, 1814~1888)이 지은 저자의 묘지(墓誌)에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 114권, 『풍석고협집(楓石鼓篋集)』 6권, 『금화지비집(金華知非集)』 14권, 『번계모여고(樊溪耄餘稿)』 2권, 『금화경독기(金華耕讀記)』 8권, 『행포지(杏浦志)』 6권, 『종저보(種蓴譜)』 1권이 가장(家藏)되어 있다<sup>22)</sup>.” 라고 하였고, 이외에 『난호어목지(蘭湖漁牧志)』 · 『경솔지(鶯蟀志)』 · 『의상경계책(擬上經界策)』 · 『십삼경대(十三經對)』 · 『누판고(鑊板考)』 · 『모시강의(毛詩講義)』 · 『완영일록』 · 『화영일록』 등이 있다.

서유구는 ‘경화거족(京華巨族)’으로 사제 관계를 통해 학문 및 사상을 전수한 ‘재지사림(在地士林)’과 다르게 서명응(徐命膺)·서호수(徐浩修)를 통한 가학으로 학문 및 사상을 전수받아 농학(農學)을 발전시켰다.

만년에 쓴 『임원경제십육지(林園經濟十六志)』는 생부 서호수가 쓴 『해동농서(海東農書)』, 조부 서명응이 쓴 『고사신서(攷事新書)』, 박세당(朴世堂)이 쓴 『색경(穡經)』, 홍만선(洪萬選)이 쓴 『산림경제(山林經濟)』와 『증보산림경제(增補山林經濟)』, 박제가(朴齊家)가 쓴 『북학의(北學議)』, 박지원(朴趾源)이 쓴 『과농소초(課農小抄)』 등 여러 국내 농서와 중국 문헌 등 853종을 참조하여 16지 28,000여 항목의 체계아래 113권 54책으로 농업을 16부문으로 나누어 농업 정책과 자급자족 경제론을 편 실학적 농촌 경제 정책서로, 농기(農器)의 도보(圖譜) 및 양생법과 예술작품 감상법 그리고 전국의 장날과 전국 거리 표시까지 우리나라의 전통지식의 총화이다<sup>23)</sup>.

서유구는 자신의 생애를 「오비거사생광자표(五費居士生曠自表)」에서 다섯 시기로 구분하였다. 1764년부터 1790년 과거에 급제하기 전까지 가학을 이어 학문을 수련하던 시기, 1790년 관직에 들어간 이후 1806년 정계에서 물러날 때까지 정조의 지우(知遇)를 받으며 계고(稽古), 교서(校書)에 전념하던 시기, 1806년부터 1824년 정계에 복귀할 때까지 과(瓜)·소(蔬)·수예(樹藝)를 연구하던 시기, 1823년부터 1839년 치사(致仕)할 때까지 다시 입조(立朝)했던 시기, 1839년 이후 정계에서 물러나 30년간 작업했던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를 정리하고 간행을 위해 노력하던 시기로 나누었다<sup>24)</sup>.

1824년(순조24) 17년 만에 복직되어 돈녕부(敦寧府) 도정(都正), 회양(淮陽) 부사

22) 李裕元, 「吏曹判書致仕奉朝賀文簡徐公墓誌」, 『가오고략(嘉梧藁略)』 권18.(한국고전번역원DB, 해제 『풍석전집(楓石全集)』)

23) 풍석 서유구 지음, 정명현·민철기·정정기·전종욱 외 옮기고 씀, 앞의 책, 11~33쪽.

24) 徐有渠, 『금화지비집(金華知非集)』 권6, 「五費居士生曠自表」.(한국고전번역원DB)

(府使), 1827년(순조27) 강화부(江華府) 유수(留守)를 거쳐 이듬해 사헌부 대사헌, 1831년(순조31) 형조 판서, 1833년(순조33) 전라도 관찰사, 1836년(헌종2) 수원부 유수, 1848년(헌종4)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가 되었고 1845년(헌종11) 82세의 일기로 졸(卒)하였다.

서유구는 전라도 관찰사로 부임할 때 나이가 70세였다. 조정은 ‘해동중번(海東重藩)으로 여기는 호남 지역이 점차 피폐한 지경에 이르고 민력이 고갈되며 인심이 교활해지는 상황에 중망(衆望)을 지닌 서유구를 관찰사로 임명하여 다스리게 한다.’ 고 기사년(1833) 4월 10일 유서(諭書)<sup>25)</sup>하여 서유구가 노구(老軀)였지만 중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농형을 자세히 살피는 일로 기사년 8월 16일 순행(巡行)을 떠났음을 아뢰고 26일 순행을 마치고 10일 만에 감영으로 돌아와 장계로 보고한 내용<sup>26)</sup>과 갑오년(1834) 9월 8일 농형을 살피러 순행을 떠나 9월 17일에 농형을 중간보고하고, 9월 21일 감영으로 돌아와 14일간의 살핀 정황을 보고하는 장계 문서<sup>27)</sup>는 70이 넘는 노구로 국왕과 근심을 나누는 분우지신(分憂之臣)의 결연한 모습이 나타나 있다.

서유구는 전라도 관찰사를 마치고 만 1년 뒤 1836년에 수원부 유수(留守)가 되어 2년간 재임하였고, 82세로 생을 마치기 3년 전 1842년에 자찬 묘표(墓表) ‘오비거사생광자표(五費居士生壙自表)’를 남겨 자신이 인생에서 낭비한 다섯 가지를 정리했다. 그리고 손자 태순에게 이르기를, “내가 죽은 뒤에는 화려하고 큰 비석을 세우지 말고, 그저 머리가 둥근 작은 비에 ‘오비거사 달성 서 아무개 묘’라고 써준다면 족하다<sup>28)</sup>.”고 당부했다.

경화사족(京華士族)으로 문장가·정치가·역농가로 실천하며 나라를 위하고 백성을 위해 가난을 극복하고자 평생을 노력한 큰 업적에도 79년의 세월을 모두 낭비해 버렸다고 살아있을 때 자신의 묘지명에 토로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평생을 나라에 충성하고 가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험 없이 정진한 조선후기 실학자의 엄정함을 엿 볼 수 있다.

특히 농촌 생활에 필요한 전 분야를 기록한 『임원경제지』를 저술한 것이나 전라도 관찰사와 수원 유수 재임동안 전 기간의 업무기록과 다양한 공문서를 기록한 것은

25) 徐有渠, 『완영일록』 권1, 기사 4월 10일. “入侍後, 退出政院, 祇受密符、教諭書.”

26) 『완영일록』 권1, 기사 8월 26일.

27) 『완영일록』 권7, 갑오 9월 17일·갑오 9월 21일.

28) 徐有渠, 『金華知非集』 권6, 「五費居士生壙自表」. “顧謂孫太淳曰吾死之後, 勿樹豐碑. 但以短碣書之曰五費居士達城徐某之墓可矣.”

기록물의 양과 방식에서 노년까지 흐트러짐 없는 선비의 기상과 백성들의 실용적 삶을 위해 정진했다고 볼 수 있다.

## 1.2 『완영일록』의 자료적 가치

전라도 관찰사의 집무소인 감영(監營)을 완영(完營)이라 한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전주(全州)의 옛 지명은 백제시대에는 완산(完山)이라 하였고, 전주라는 지명 사용은 서기 757년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경덕왕(景德王) 16년부터라고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에 나와 있다.

『완영일록』은 서유구가 계사·갑오 연간에 전라도 관찰사로 재임기간 동안 업무 수행 행적과 공문서를 날짜별로 필사한 전 8권의 문헌으로, 현재 성균관대학교 존경각에 보관되어 있다. 서체는 해서체이며, 서유구가 만년에 번계(樊溪 지금 서울 도봉구 번동)에서 살았을 당시의 서재(書齋)명 자연경실장(自然經室藏)이 판심 하단에 새겨져 있다.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이 2002년 4월에 3책 1질로 영인(影印)하였다. 이하 『완영일록』의 내용과 체제는 이 책을 기준으로 하였다.

『완영일록』의 내용은 서유구가 계사년 4월 10일 국왕에게 하직인사를 하고 부임지로 가기 위하여 흥정당(興政堂)에 입시(入侍)하고 친구들과 전별한 다음, 오후에 부임지로 출발하여 6일 만인 동년 4월 15일에 여산(礪山) 황화정(皇華亭)에서 전임 관찰사 이규현(李奎鉉)<sup>29)</sup>과 임무교대식인 교귀식(交龜式)을 행하고 가장 먼저 도계(到界)<sup>30)</sup> 장계(狀啓)를 국왕에게 올리는 것으로 시작하여<sup>31)</sup> 재임기간 동안 총 13종 1,070건의 공문서와 매일의 공무행적이 기록되어 있다.

29) 이규현(李奎鉉, 1777~1844)은 1812년(순조12) 감제(柑製)에서 수석을 차지하였고, 이듬해 증광문과에 급제하였다. 임진왜란 때 조선을 도운 명나라에 보답하고자 만든 제단에 제사지내면서 청나라 연호를 쓴 실수로 삭직되기도 하였다. 1827년(순조27) 복직되어 승정원좌부승지로 일할 때 순조의 능행차를 잘 처리한 공으로 가선대부에 가자(加資)되었다. 이듬해 진하사(陳賀使)로 청나라에 다녀온 뒤 전라도 관찰사·이조 참판·경기도 관찰사·승정원 도승지·사헌부 대사헌·한성부 판윤·형조 판서 등을 지냈다.

30) 도계(道界) : 관찰사가 자기 부임 지역의 경계지에 도착했다는 뜻이다.

31) 『완영일록』 권1, 계사 4월 15일. “早發到礪山皇華亭, 捧道內各邑驛鎮公禮狀, 直詣客舍東大廳. 少憩待舊伯入府, 肩輿往東軒, 交龜仍卽, 封發到界狀啓.”



서유구 개인의 일상이나 일기류에 보편적으로 기록되는 날씨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고, 오직 공무수행과 위로는 국왕과 중앙 각사, 아래로는 각 지방 수령 및 백성들과 주고받은 문서들만 기록한 것이 『완영일록』이다. 이러한 사실은 공문서 기록을 처음부터 기획하였고 공문서가 발생하면 투식구(套式句)를 제외하고 내용만을 일기형식으로 매일 필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완영일록』은 관찬(官撰) 사료(史料)는 아니지만 여러 정황으로 전라도 관찰사의 공식 업무와 문서를 필사한 기록이기 때문에 등재된 문서는 전라도 관찰사의 공문서라 할 수 있다.

<표 1> 『완영일록』 8권의 권별 기간과 특기사항

권 차	해 당 기 간	특 기 사 항
권 1	癸巳(순조33, 1833) 년 4.10.~10.29.	諭書를 받고 내려와 皇華亭에서 交龜. 예하 관원들의 延命. 年分狀啓. 褒貶 榜目. 關下列邑巡行(8.16~25.)
권 2	11.1.~12.3.	흉년 대책으로 倭災關文 발송. 流乞幕에서 화재 발생. 부랑자들의 廉客假裝 규찰
권 3	甲午(순조34, 1834) 년 1.1.~1.29.	武科東堂試. 牛疫方文 각 처에 발송. 才行人抄啓
권 4	2.1.~3.15.	濟州漂還人間情. 勸農事目 발송. 東堂試 시행. 流乞無賴輩 作弊 禁斷事
권 5	3.16.~5.15.	饑民賑救. 勸農禁屠事. 均役廳句管米十萬石 移作儲置
권 6	5.16.~7.29.	長興府稅穀船 致敗. 鶴飲器(물대는 기구) 보급. 倭船漂到
권 7	8.1.~10.15.	草賊 禁斷事. 長興府 兵船 改造. 兵營 兵器庫 수리
권 8	10.16.~12.30.	災結分俵. 桂苑筆耕集 刊布. 예하 관원들에 대한 考課. 고구마 재배법 보급. 순조의 죽음으로 望哭禮

『완영일록』 전 8권의 권별 기간과 각기 특기사항을 위와 같이 <표 1><sup>32)</sup>로 나타냈다. 그 자료적 가치는 2001년 성균관대학교 임형택 교수가 쓴 『완영일록』 해제(解題)에 아래 세 가지 관점으로 언급되어 있다.

“첫째, 전라도관찰사경병마수군절도사도순찰사전주부윤(全羅道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都巡察使全州府尹)의 긴 직함이 갖는 광역의 모든 부서와 직능의 업무를 아울러 수행한 기록은 지방통치제도와 관련된 제반 사안들

32) 林煥澤의 『完營日錄』 解題에 있는 표를 재편집 함.(대동문화연구원, 『完營日錄』I,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2, 10쪽)

이 종합된 형태이기 때문에 조선시대 지방행정제도를 연구하는 사료적 의미가 크다. 둘째, 지역 단위에서 제도사가 현실화되는 사실들을 상세하게 기록한 내용이므로 거기에는 자연히 그 시대 사회동향이 반영된 사회사·풍속사 연구 자료가 많다. 셋째, 그 당시 전라도에서 일어난 살인사건, 월식이 일어나 국왕께 아뢴 일, 경기전이 큰 비로 훼손되어 고쳐야 된다고 지시한 날 등이 기록되어 있어 고실(故實)의 자료이자 고문서로서의 가치가 있다.”

뿐만 아니라 『완영일록』에 등재된 13종 1,070건의 공문서가 시사하는 의미는 21개월 동안 하루에 약 1.7건의 공문서를 작성하였고 여기에 순행(巡行)시 데깁한 1,356건을 포함하면 하루에 약 3.9건 이상의 공문서를 작성했음을 유추할 수 있고, 직계아문으로서 중앙과 소통하는 관찰사의 역할과, 외직 관찰사로서 백성을 위무하는 일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 졌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다만, 관청에 호구단자나 준호구식 입안(立案) 문서가 없을 수 없는데 기록되지 않은 점으로 보아 재임시 모든 문서를 기록했다기 보다는 중요문서를 선별하여 기록했다고 추측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선별했는지도 차후 규명해야할 과제이다.

특히 전라도 관찰사와 수원 유수 재임 전 기간의 업무기록과 다양한 공문서를 기록한 것은 왕권 중심의 중앙통치체제에서 외직의 직계아문의 역할과 통치체제를 살필 수 있는 귀중한 기록물로 조선왕조 500년 동안 그 어느 외직 관료도 아직까지 없는 독보적 문헌이자 실학자 서유구의 실사구시(實事求是) 정신의 바지런함에서 나온 의도적 기록물로 사료적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서유구는 1833년에 전라도 관찰사로 있으면서 목화 농사가 흉년이 들자 장계를 올려 군포(軍布)를 돈으로 대봉(代捧)하길 청하여<sup>33)</sup> 윤희를 받았고 또, 1834년에는 때마침 흉년을 당한 이 고장 농민의 구황(救荒)을 위해 구황 식물인 고구마 보급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강필리(姜必履)의 『감저보(甘藷譜)』, 김장순(金長淳)의 『감저신보(甘藷新譜)』 등과 중국·일본의 관계 농서를 참고하여 『종저보(種藷譜)』를 저술하고 흉년에 곡식을 대체할 식량으로 고구마를 심도록 관문(關文)으로 지시<sup>34)</sup>하였다. 우역(牛疫)의 약방문(藥方文)을 감결하여 오늘날의 구제역(口蹄疫) 예방과 치료에 해

33) 『완영일록』 권1, 기사 9월 13일.

34) 『완영일록』 권8, 갑오 10월 13일. “以種藷申飭事，發關五十三州、法聖.”

박한 지식으로 권농하는 대목<sup>35)</sup>도 있다. 또한 유학의 예치(禮治) 질서 교화(教化)에도 힘썼다. 조경묘(肇慶廟)<sup>36)</sup>·경기전(慶基殿)<sup>37)</sup>의 제향(祭享)과 봉심(奉審)을 때맞춰 시행하였고, 효자와 열녀를 도내에서 선정하여 정려(旌閭)하기를 아뢰는 대목에서 조선시대 성실한 목민관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완영일록』에 기록된 공문서는 관찰사를 중심으로 한 공문서 행이 과정과 당시 전라도 관찰사의 주요 업무내용 그리고 공문서에 자주 쓰인 이두 종결어미 의미 등을 살필 수 있다. 나아가 지방통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관찰사와 예하 수령과의 관계는 어떠했는지 당대 사회의 가장 시급한 사안(事案)은 무엇이었는지 등을 엿볼 수 있는 풍부한 사료적 가치가 있다.

## 2. 『완영일록』의 공문서와 문서식

### 2.1 전라도 관찰사의 문서행이(文書行移)<sup>38)</sup> 체계

『경국대전(經國大典)』에서는 총 25개의 문서식<sup>39)</sup>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들 문서들이 모두 관문서 혹은 관부 문서라고 할 수 있고, 대분류하자면 국왕이 내리는 교지·교령류가 14개, 국왕께 올리는 상소·장계류가 2개, 관청끼리 주고받는 이문(移

35) 『완영일록』 권3, 갑오 1월 17일. “以牛疫方文膾送事，發甘五十三州、法聖、古羣山鎮。”

36) 조경묘(肇慶廟) : 태조 이성계의 시조 이한(李翰)공의 부부 위패인, 시조고신라사공신위(始祖考新羅司空神位)와 시조비경주김씨신위(始祖妃慶州金氏神位)를 모셔둔 곳. 1771년(영조 47) 전주에 세움.

37) 경기전(慶基殿) : 태조(太祖)의 영정(影幀)을 봉안한 곳. 1442년(세종 24) 전주 이씨 시조(始祖)의 출생지인 전주에 건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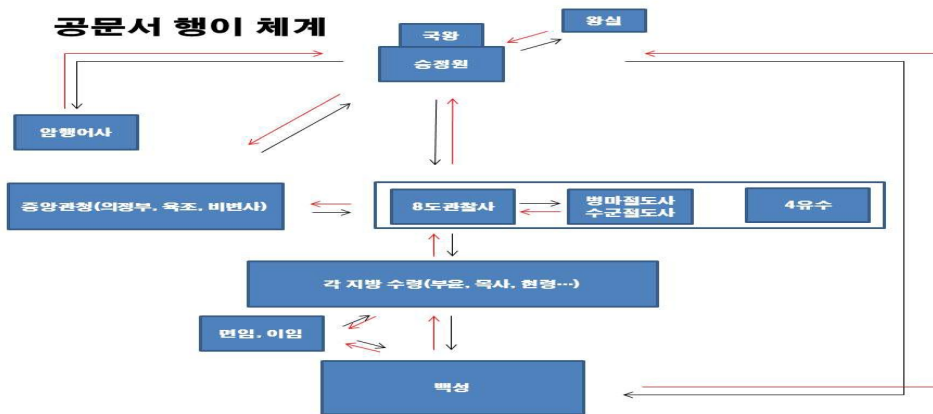
38) 문서행이(文書行移) : 문서를 바탕으로 하는 행정 전달 체계를 말함. 행정 전달 체계에 대한 규정은 『高麗史』의 ‘공첩상통식(公牒相通式)’, 『洪武禮制』의 ‘행이체식(行移體式)’, 『經國大典』의 ‘용문자식(用文字式)’ 등이다. 대개 상위 관아에 올리는 상행(上行) 문서로 장(狀)·첩(牒)이 있고, 동등 이하 관아에 보내는 문서로 관(關)이 있으며, 하행(下行) 문서로 감결(甘結)·체(帖) 등이 있다.

39) 25개의 문서식 : 교지·교령류, ①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 ②文武官五品以下告身式, ③堂上官妻告身式, ④三品以下妻告身式, ⑤紅牌式, ⑥白牌式, ⑦雜科白牌式. ⑧祿牌式, ⑨追贈式, ⑩鄉吏免役賜牌式, ⑪奴婢土田賜牌式, ⑫立法出依牒式, ⑬起復出依牒式, ⑭度帖式. 상소·장계류, ⑮啓本式, ⑯啓目式. 이문류, ⑰牒呈式, ⑱帖式, ⑲解由移關式, ⑳解由牒呈式, ㉑平關式. 청원·증빙류, ㉒立案式, ㉓勘合式, ㉔戶口式, ㉕準戶口式. \*밑줄 문서식은 후대에 폐지된 문서식. (김현영, 2006, 「官府文書 연구의 현황과 과제」, 『영남학』제10호)

文)류가 5개, 관청에서 사실을 증명해주는 청원·증빙류가 4개 등이다.

전라도 관찰사는 『경국대전』 「이전(吏典)」에 종2품으로 규정되어 직계아문에 속한다. 조선시대 주요 관아가 국왕에게 보고할 때 사용한 문서를 ‘계(啓)’라 하고, 계(啓)를 국왕에 진달(進達)하는 것을 ‘입계(入啓)’라고 하고, 입계(入啓)에 국왕이 처결한 것을 ‘판부(判付)’ 또는 판하(判下)라고 하고, 계하인(啓下印)을 찍은 판부를 관련 기관에 하달하는 것을 ‘계하(啓下)’라 하였다. 이 과정에서 정무를 국왕에게 직접 아될 수 있는 관아를 직계아문(直啓衙門)이라 하는데 이는 동시에 직계권(直啓權)이 있는 관리를 통칭하는 말로도 쓰인다. 『경국대전』 「예전(禮典)」 용문자식(用文字式)에서는 직계아문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2품 아문은 직계하고<중앙과 지방의 여러 장수, 승정원, 장예원, 사간원, 종부시도 직계할 수 있고, 각사(各司)에 간한 일이 있으면 제조(提調)가 직계하되 대사(大事)는 계본(啓本)으로 소사(小事)는 계목(啓目)으로 작성하는데, 외직은 계목(啓目)이 없음> 직접 공문을 내려 보내되[直行移]<상고사(相考事) 이외는 모두 계(啓)함> 나머지 아문은 모두 소속된 6조(六曹)에 보고한다.” 40)



<그림 1> 관찰사 공문서 행이체계도

『경국대전』 용문자식을 근거로 관부 문서 행이체계를 나타내면 위 <그림 1>같이

40) 『經國大典』 「禮典」 用文字式. “二品衙門直啓<中·外諸將·承政院·掌隸院·司諫院·宗簿寺亦得直啓 各司有緊事則提調直啓 大事啓本 小事啓目 外則無啓目> 直行移<相考事外 皆啓> 其餘衙門並報屬曹”.

나타낼 수 있다. 위와 같이 종2품인 관찰사의 문서행이체계는 바로 『경국대전』 용문자식(用文字式)에 의거한 관찰사의 직계권과 국왕 중심 통치체제의 핵심을 엿볼 수 있는 공문서 흐름도인 것이다. 나아가 『경국대전』의 용문자식은 계문(啓文)과 행이(行移) 및 보고의 형식을 규정한 것 외에 행이 문서식으로 관(關), 첩정(牒呈), 체(帖)<sup>41)</sup>를 쓰는 등급을 규정하였으며, 관부의 문서는 입안(立案)을 하여 뒤의 증빙으로 삼도록 규정하였다<sup>42)</sup>. 후에 『속대전』, 『대전통편』, 『대전회통』 단계에서 각각 약간의 문서행이의 원칙이 추가되었지만, 이러한 문서행이의 기본 원칙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승정원이나 국왕에게 보내는 것은 상행문서로 장계류이고, 6품까지 동급이하 품계로 주고받는 것은 동등·하행문서로 관(關)류이고, 7품 아래로 보내는 것은 하행문서로 체(帖)이며, 높은 품계로 보내는 것은 상행문서로 첩정류로 이해할 수 있다.

## 2.2 『완영일록』의 공문서 종류와 기재 방식

조선후기 서유구가 전라도 관찰사 21개월의 재임기간에 쓴 『완영일록』에는 아래 <표 2>와 같이 다양한 문서가 등재되어 있는데 이는 여타 일기류에서는 보기 드문 귀한 사례이며 관찰사 재임 전과정의 주요 공문서를 모두 기록한 경우는 아직까지 유일하다.

관찰사를 중심으로 『완영일록』의 문서 종류와 빈도수를 살펴보면 <표 2>에서 보는 것처럼 총 13종류 1,070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두 차례의 순행시(巡行 1833.8.16~26/1834.9.8~21) 민장(民狀)에 대한 1,356건의 데김[題]은 구체적 내용이

41) 체[帖] : 관문서로서의 체[帖]는 중국 당나라 때부터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경국대전』에 기재되어 있는 ‘7품 이하 관청에 보내는 공문 양식[帖式]’을 따라 작성된 하행문서이다. 체[帖]는 ‘帖文’, 帖字’, 帖子’ 등으로도 불렸고 일반적으로 ‘체/테’라고 독음하였다. 帖式으로 작성한 ‘下帖’이나 ‘草料帖’, ‘勿禁帖’ 등도 각각 ‘하체’, ‘초료체’, ‘물금체’와 같이 독음되었던 것으로 보인다.(송철호, 「조선시대 差帖에 관한 연구」, 『古文書研究』, 제35호, 2009, 71-72쪽)

42) “대체로 중앙과 지방의 문건은 같은 등급의 관청이나 그보다 낮은 등급의 관청에는 관자[關]의 형식을 취하고 보다 높은 등급의 관청에는 첩정(牒呈)의 형식을 취하며 7품 이하의 관청에는 체[帖]의 형식을 취한다. <지방관리는 임금의 지시를 받은 사신에게, 중앙과 지방의 장수들은 병조에 모두 첩정의 형식을 취하며 도총부에서는 관자의 형식을 취한다.> 관청 문건은 모두 확인서[立案]를 만들어두어 후일 참고할 수 있게 한다.[凡中·外文字 同等以下用關 以上用牒呈 七品以下用帖<外官於奉命使臣 中、外諸將於兵曹 竝用牒呈 都總管用關> 官府文字 竝置立案以憑後考]”.(『경국대전』 용문자식)

없고 단지 민장 몇 건을 판결했다고 기록되어 있어 『완영일록』 등재 문건 수에는 합산하지 않았고, 또 유서(諭書)도 관찰사의 문서가 아니라서 등재 문건에 포함하지 않았다.

<표 2> 『완영일록』 문서행이별 문서종류 및 등재 문건 수

분류	문서 종류	1833년(순조33) 4월 10일~1834년 12월 30일 까지 세부 문서 제목	건수	합계(%)
上行 문서	上疏 <sup>43)</sup>		1	169건 (16%)
	狀啓	狀啓·雨澤狀啓·褒貶都封啓·刀擦啓·別啓	128	
	箋文	箋文·內閣箋文	6	
	報牒	報牒·牒報·牒呈	27	
	跋辭		3	
	褒貶榜目 <sup>44)</sup>		4	
同等·下行 문서	關文		256	309건 (29%)
	私通 <sup>45)</sup>		24	
	(移文 <sup>46)</sup> )	移文·文移·回移	29	
下行 문서	題 <sup>47)</sup>	題(報狀·例題·檢案·查案) <sup>48)</sup>	494	592건 (55%)
	甘結		83	
	牛疫方		1	
	下帖	下帖·帖文	4	
	傳令		10	
합계	13종		1,070	1,070건 (100%)

43) 上疏 : 여기에서는 신하가 국왕에게 올리는 관부 문서로 건의·청원 등의 내용이며, 관료로서가 아니라 사인(私人)·유생(儒生)이 국왕에게 올리는 사인문서와 구별 필요함.

44) 褒貶榜目 : 포폄방목은 관찰사가 도내 각 수령의 성명(姓名)과 직무 고과(考課)를 적은 명부(名簿)로 그 자체로는 상행문서가 아닌데 포폄장계에 점련(粘連)하여 장계 했던 것을 나중에 공개했던 문서이기 때문에 상행문서로 분류함.

45) 私通 : 공사(公事)에 관하여 관원끼리 사사로이 연락한 편지. 사통(私通)을 하나의 문서형태로 볼 수 있는 예는 『각처방위사통초책(各處防僞私通草)』이 있는데 방위사통의 뜻은 아전들이 상급관청에 공문을 보낼 때에 ‘방위’라는 두 글자를 써서 사서(私書)가 아님을 표시한 데서 유래되었고, 내용은 주로 각 감영이나 친군통위영(親軍統衛營)·총어영(總禦營) 등 여러 군영 및 기계국(器械局)·광무국(鑛務局)·전보국(電報局) 등 여러 부서에서 보낸 사통에 대하여 아문의 독판(督辦)의 지시사항을 보낸 것이다. 규장각도서에 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46) 移文 : 『완영일록』에 문서명이 나타나지 않고 이문(移文)으로만 표기된 경우들을 포함하였다.

47) 題 : 제사(題辭), 제음(題音)과 같은 뜻으로 제음(題音)은 ‘데김’ 또는 ‘제김’으로도 읽으며, 각 고을에서 올린 내용이나 민원인의 소장(訴狀)·청원서(請願書) 그리고 진정서(陳情書) 종류인 소지(所志)·발괄

『완영일록』 등재 문건을 종류별로 분석한 결과 전라도 관찰사의 대부분의 문서는 하행 문서가 전체 1,070건중 592건(55%)으로 주류를 이루고 다음으로 동등·하행 문서가 309건(29%)이며, 상행문서는 169건(16%)으로 나타나 하행 문서가 상행 문서 보다 월등히 많음을 알 수 있다. 단일 문건으로는 사법에 관계된 데김[題]이 494건(46%), 관문 256건(24%), 장계 128건(12%), 감결 83건(8%) 순으로 나타났다.

53주를 관할하는 관찰사로서 하행문서가 많을 수밖에 없지만, 데김[題]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보아 전라도 관찰사의 업무특징은 백성들의 민원을 처리하는 사법관계와 각 군현 수령들의 보장(報狀) 등의 처결에 치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백성들을 충효열(忠孝烈)의 성리학적 이념으로 교화하고 각 군현 수령들을 총지휘하는 목민관의 성실한 자세를 엿보게 한다.

또한 관문의 내용으로 53주와 비변사 등에 살육죄인을 조사하게 하거나 이운미(移運米)를 실어 보내게 하고, 환곡을 거둬들이는 일 등에 대하여 관청끼리 매우 활발하게 업무협조와 지시를 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관찰사의 문서는 동등·하행 문서가 상행문서보다 월등히 많았는데, 지금껏 알려진 바로는 각도의 동등·하행 문서인 관문이나 감결 등록(謄錄)류 보다는 장계 등록류가 더 많이 전해지고 있는데 앞으로 관문이나 감결·데김 등의 문서 수집과 이에 대한 적극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완영일록』에 등재된 13종의 문서식을 『경국대전』 문서식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경국대전』에서는 총 25개의 문서식을 규정하고 있다. 문·무관리와 처(妻)를 임명할 때 주는 각종 임명장 양식[告身式] 같이 국왕이 내리는 교지·교령류 14개 문서양식과, 상소·장계류 2종, 이문(移文)류 5종, 청원·증빙(證憑)류 4개 문서양식이 그것이다. 『완영일록』에 등재된 공문서를 『경국대전』 문서식과 비교해보면 관직 인계를 끝낸 것을 보고하는 공문 양식[解由牒呈式] 등이 있어야 할 법하지만 해유첨정(解由牒呈) 공문서는 『완영일록』에 전혀 기록되지 않았다.

다만, 『경국대전』 「예전(禮典)」 용문자식에 맞게 가장 많이 등재된 문서는 이문(移文)류로 동급 관청간에 주고받는 공문 양식[平關式, 285건], 상급 관청에 보내는 공문 양식[狀啓·牒呈式, 155건], 7품 이하 관청에 보내는 공문 양식[帖式, 4건] 등 4개 문서식 총 444건(41%)로 나타났고, 「이전(吏典)」의 포평단자까지 합하면 『완영일

[白濁]·등장(等狀)·상서(上書)·원정(原情) 등을 제출하면 관에서는 그 소장의 왼쪽 하단 여백에 써준 판결문(判決文)·처결문(處決文)으로 하행문서.(최승희, 앞의 책, 278쪽)

48) 考試의 策題·表題·賦題·論題·巡行時 民狀題(1,356건) 등은 제외하였음.

록』 13종의 공문서중 『경국대전』 문서식과 일치한 것은 「예전(禮典)」의 장계·관문·첩정·체식과, 「이전(吏典)」의 포평단자로 불과 5종류에 불과했지만 449건(42%)이었다.

나머지 621건(58%) 가운데 상소·전문(箋文)·유서(諭書)의 문서식은 『전율통보(典律通補)』의 규정을 따랐고 데김[題]은 『유서필지(儒胥必知)』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으며, 기타 감결·사통(私通)·우역방(牛疫方)·전령(傳令)·발사(跋辭) 등은 상부관청의 문서식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이 전라도 관찰사는 『경국대전』 용문자식에 입각한 문서 수발을 행하였음을 볼 수 있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직접 발부하는 문서식도 많았으며 나아가 『완영일록』에 기록되지 않은 여타의 문서도 많았으리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이를테면 ‘관청 문건은 모두 확인서[立案]를 만들어두어 후일 참고할 수 있게 한다.’라는 용문자식 규정에 있는 입안문서가 한 건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완영일록』 주요 등재문서는 따로 보관할 목적으로 투식구를 제외하는 등 문서식정식(定式)과는 다르게 필사되었으나 대체로 『경국대전』의 용문자식을 준용(準用)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2>·<그림 3>과 같이 『완영일록』에 등재된 문서의 공통된 기재방식을 보면,

첫째, 서목(書目)란에 날짜<sup>49)</sup>를 대두(擡頭)하여 기재하고 바로 간략한 내용을 썼다.

둘째, 문서를 기록한 부분은 줄을 바꿔 한 칸 아래 중괄호( [ ] ) 안에 문서명을 쓰고 행을 유지하며 썼다. ‘중괄호( [ ] )’ 한 점은 용문자식에 언급되지 않았는데 투식구 대신 문서명을 부여하여 구분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다만, 문서명이 아닌 데도 한 칸을 내려 행을 유지 한 것은 죄인의 명단을 기록한 부분이다<sup>50)</sup>.

셋째, 문서 발급 주체인 전라도 관찰사 장항(長銜)과 문서 말미의 작성자 직함(職銜)과 서명(書名)과 서압(署押)은 생략되었다. 이를테면 장계내용 말미에 서식,

‘爲白卧乎事是良尔(或爲白只爲)[하옵는 일이므로, 혹 하기위하여]’ 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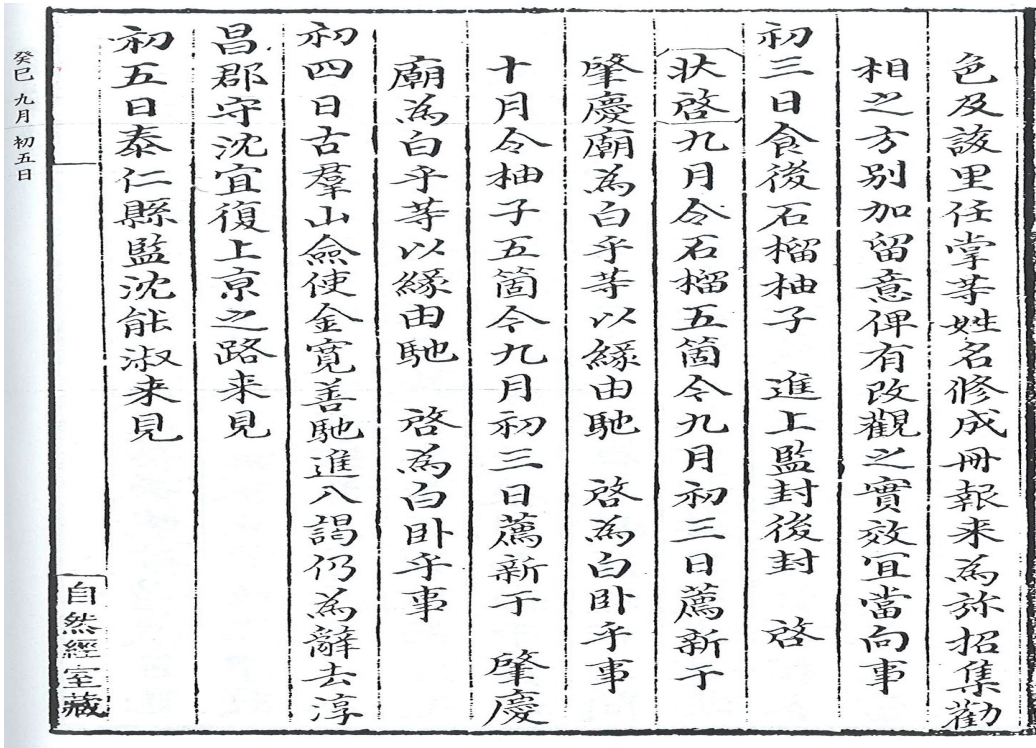
‘글자를 대두(擡頭)하거나 별행’ 하는 형식을 갖추지 않았다.

49) 날짜는 원래 문서 말미에 작성 주체의 서명 앞줄에 “某年 閏인 某月 日” 형태로 기록되어야 하는데 날짜가 맨 먼저 기록된 것으로 보아 전라도 관찰사가 공문서 내용만을 따로 매일 계획적으로 기록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만일 공문서를 모아두었다가 뒷날 한꺼번에 의도적으로 일기형태로 기록하였다면 간혹 날짜순서가 뒤섞이는 경우의 흔적도 보일 것이고 공문서가 없는 중간의 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완영일록』에 기록된 것처럼 정연하지 못하리라 보기 때문이다.

50) 『완영일록』 권1, 기사 8월 16~23일.



이와 같이 『완영일록』에 등재된 문서는 연월일을 맨 앞에 기록하고, 기두에 들어가는 직함과 성명, 문서 내용 말미의 투식구 등을 모두 제외하였다. 앞뒤 투식구가 제외되고 날짜가 말미에서 맨 위로 올라간 것은 문서가 원본이 아니라는 증거이고 자신이 보관을 목적으로 필사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필사도 아전이 임무를 지시받아 기록했다기보다는 서유구 자신이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중심으로 일시적 기록이 아닌, 형식을 갖추어 정기적으로 기록했다고 본다. 다만, 필기체가 다르게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지학적으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다.



<그림 2> 『완영일록』에 등재된 장계

癸巳九月初二日

同日以寶城郡蘆洞面道村面勸起陳田事發關  
 關文為相考事本郡蘆洞面竹防村道村面鶴洞  
 村兩處自來土腴民殷退計數三十年前多至為  
 千餘戶不下數百戶是加尼稅近以來荐經歉  
 荒人亡戶縮良田美畦一望陳荒云當此土責如  
 金之時宜有無端等棄之理只緣佃戶無幾賦役  
 自如全坪之稅督徵於一夫一村之役專責於單  
 戶雖欲(眞)其居耕其土而不可得矣目今勸起之  
 方專在募民而募民之道當先蠲役是如乎兩村  
 陳廢處田結段雖不得永頓於元帳付是乃自營

自然經室藏

<그림 3> 『완영일록』에 등재된 관문

### 3. 『완영일록』 공문서로 본 전라도 관찰사의 업무

관찰사를 포함한 외직인 각 군현의 수령은 국왕으로부터 행정·사법·군사·교화권을 동시에 부여받았다. 수령에 제수된 사람이 절차를 마치고 도임하는 기간은 길어야 한 달여의 짧은 일정이었다. 이 일정동안 제수(除授)·신영례(新迎禮, 고을 아전의 마중의례)·사은숙배(謝恩肅拜)<sup>51)</sup>·서경(署經)<sup>52)</sup>·역사(歷辭)<sup>53)</sup>·하직(下直)<sup>54)</sup>·상관

51) 사은숙배(謝恩肅拜) : 관직을 제수 받은 사람이 국왕께 감사 표시하는 의례.

52) 서경(署經) : 일종의 신원조회로, 고신서경(告身署經)과 의첩서경(依牒署經)으로 크게 나뉘는데, 의첩서경은 정부의 의안이나 법의 개정에 대해 대간이 서명하여 동의를 표하는 것이고, 고신서경은 관리를 임명하라는 명이 내리면 전조(銓曹)에서 당사자의 성명(姓名), 내외사조(內外四祖), 처사조(妻四祖)를 기록하여 대간(臺諫)에게 가부의 의견을 요구하고, 대간은 하자 유무를 조사하여 하자가 없을 경우 서명하여 동의를 표하는 것임. 여기에서는 고신서경을 말한다.(『경국대전』)

(上官, 부임하는 일)으로 이어지는 정형화된 절차를 거쳤다<sup>55)</sup>. 취임하는 날을 따로 받을 것이 없고 다만 비가 오면 개이는 날을 기다려 하고, 고을의 경계로 들어서면 말을 달리지 말도록 단속하고, 길가에 나와서 구경하는 사람을 금하지 말라<sup>56)</sup>는 내용 등이 있어 이런 정황 등이 기록되었을 법하지만 『완영일록』에는 이러한 자세한 내용이 실려 있지 않다.

이조판서까지 역임했던 나이 70세 정2품 당상관인 서유구의 경우 서경(署經)은 『속대전』에 “수령으로 처음 임명된 자는 모두 서경을 받아야 하지만, 일찍이 시종(侍從)<sup>57)</sup> 및 당상관(堂上官)을 역임한 자는 모두 서경을 받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어 서경 받는 대목의 기술은 당연히 없겠지만, 소소한 부임과정에 대한 기술이 없는 것은 오히려 일반적 인사에 의한 제수보다 국왕이 감사(監司)를 특명으로 제수<sup>58)</sup>하였을 개연성이 크고 이에 서유구는 오직 조선후기 전라도 관찰사로서 중임을 느끼고 관찰사로서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가에 중점을 두어 기록한 것이 바로 『완영일록』이라고 본다.

계사년 4월 10일<sup>59)</sup> 사조(辭朝)하고 흥정당(興政堂)에 입시하여 교유서(敎諭書)를

- 
- 53) 역사(歷辭) : 외직에 관직을 제수받은 자가 공경(公卿)과 대간(臺諫) 등에게 두루 감사 인사를 하는 사조(辭朝)인사로 원칙적으로 하직 인사와 구별되지만 현실적으로 하직 인사를 겸한다.(김 혁·박희진·손계영·오용원·윤진영·이선희·이성임·이장희·채취균·최은주, 『수령의사생활』, 경북대학교출판부, 2010, 55-61쪽)
- 54) 하직(下直) : 부임자가 임지로 내려가기 직전, 왕에게 하직 인사를 드리는 의례로, 왕이 직접 대면하지 못하면 승지가 대행하였고, 규례대로라면 부임자는 국왕이나 승정원 앞에서 수령칠사(守令七事)를 외워야 했다.(정약용 저, 다산연구회 역주, 『牧民心書』 I, 창작과비평사, 1978, 38쪽)
- 55) 김 혁·박희진·손계영·오용원·윤진영·이선희·이성임·이장희·채취균·최은주, 앞의 책, 33쪽.
- 56) 정약용 저, 다산연구회 역주, 앞의 책, 49-50쪽.
- 57) 시종(侍從) : 국왕을 가까이 모시고 있는, 홍문관(弘文館)·사헌부(司憲府)·사간원(司諫院)·예문관(藝文館)·승정원(承政院) 소속 제관원의 통칭.
- 58) 관찰사로 임용되어 부임하는 절차는 크게 3단계이다. 첫째, 제수·차하·차출·차제·차송·제직·장제 등으로 불리는 낙점을 받는 단계로, 매년 정월에 의정부와 육조의 당상관 및 사헌부·사간원 관원들이 책임자를 이조에 천거하고, 이조에서는 후보 3인을 망단자에 기록하여 왕에게 올리는데 이것을 삼망(三望)이라고 하고 그 가운데 한명을 국왕이 낙점하면 관찰사로 제수된다. 선조(宣祖)이후로는 이조 외에 비변사에서도 책임자를 심사하여 제수하기도 하였고, 1736년(영조 12)에는 8도 중 재황(災荒)이 심한 영·호남은 관찰사 임용을 더 신중히 하기위해 사전에 묘당(廟堂)의 문의를 거치도록 했다. 특별한 경우 왕은 인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감사를 특명으로 제수하기도 하였다. 둘째, 감사는 부임에 앞서 사온과 사조(辭朝)를 거치는 단계이다. 셋째, 도임과 인수단계로 신임 감사가 서울을 출발하여 도경계까지 도착하면 전임감사를 비롯한 소속 관원 등이 도경계로 출영하여 신임 감사를 환영하고 사무 인수인계는 감영이 아닌 도경계에서 이루어 졌다.(최봉수, 「조선시대의 관찰사를 통한 중앙통제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사학지』제22호, 2008, 94-95쪽)
- 59) 4월 10일 : 국왕에 대한 감사 인사지만 사실상 하직인사를 드린 사조(辭朝) 날짜와 임명된 날짜가 한 달간 차이가 난다. 서유구가 전라도 관찰사로 임명된 것은 『조선왕조실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받은 내용을 기록하고, 당일 출발하여 15일까지 매일 계행(啓行, 부임의 행차)의 여정을 목민관에 걸맞게 했음을 밝히고<sup>60)</sup>, 마침내 15일 여산(礪山) 동헌에서 전임 관찰사와 인수인계를 하고 바로 도계(到界) 장계를 올린 사실을 기록한 것으로 보아 한 개인적 관심사로 『완영일록』을 기록했다기보다는 국왕의 명을 충성스럽고 영예롭게 받드는 자의 자기 성찰적 공무기록으로 생각된다. 도계 장계를 올린 하나의 사실로 당시 서울과 전라도의 공식 행차는 6일이 걸렸음을 알 수 있고, 전라도 관찰사의 첫 업무는 여산 동헌에서 시작하였으며 전임 관찰사는 전주에서 여산으로 나가 맞이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이재(頤齋) 황윤석(黃胤錫, 1729~1791)이 1779년(정조3) 8월 29일 목천(木川)<sup>61)</sup> 현감(縣監)으로 제수되어 1779년 9월 1일에 사은숙배하러 전라도 흥덕현(興德縣) 수동(壽洞)을 출발하여 신영례, 사은숙배, 서경, 사조, 하직숙배하고 마침내 동년 10월 4일 부임하기까지 만 36일이 걸린 사실과, 10월 1일 하직숙배하고 서울을 떠나 10월 4일 목천현에 상관(上官)하기 까지 4일이 걸린 사실 등<sup>62)</sup>을 서유구의 기록과 비교하면 여러 가지 유의미한 시사점을 도출해낼 수 있는 것도 이런 기록들로 가능하다.

『완영일록』 내용으로 미루어 알 수 있는 것들은 매우 다양하다. 진상(進上)할 절선(節扇)을 진상 기한 전에 만들어 간품(看品)할 것을 각별히 단속하는 일로 감결을 보낸 문서<sup>63)</sup>에서는 단오절 부채 진상은 전주 뿐 아니라 나주·광주·남원·순천·담양·장성·영광·순창 등 여러 고을에서 진상했다는 사실도 엿볼 수 있고, 밀도살한 자에게 속전(贖錢)을 받아 암소를 사들여 농사에 힘쓰려고 해도 소가 없는 면리 사람에게 주어 권경(勸耕)하게 하는 내용이 여러 번 관문<sup>64)</sup>에 등장하는 것을 보면 요즘의

다음과 같다. “서유구를 전라도 관찰사로, 홍석주(洪奭周)를 호조 판서로 삼다.[以徐有渠爲全羅道觀察使, 洪奭周爲戶曹判書]”라는 『조선왕조실록, 순조(純祖) 33卷』, 1833년(癸巳) 3월 10일 3번째 기사에 기록되어있고, 사조(辭朝) 날짜는 『완영일록』에 1833년(癸巳) 4월 10일로 기록되어 있으니 이 한 달간의 차이는 아마 3월 10일 임명을 받고 으레 사직 장소와 국왕께 사은숙배 그리고 두루 감사 인사하는 기간의 차이로 보인다.

- 60) 계행(啓行)시 부임행차 출발 일시와 방법 등이 엄정하다.(정약용 저, 다산연구회 역주, 앞의 책 42-49쪽)  
 61) 목천(木川) : 현 충청도 목천군 지역으로, 동쪽은 청주(淸州) 경계까지 19리이고, 북쪽은 직산현(稷山縣) 경계까지 19리이며, 서쪽은 천안군(天安郡) 경계까지 17리이다. 남쪽은 전의현(全義縣) 경계까지 22리이고, 서울과의 거리는 2백 47리이다.(『신증동국여지승람 제16권』 충청도)  
 62) 김 혁·박희진·손계영·오용원·윤진영·이선희·이성임·이장희·채취균·최은주, 앞의 책, 34-73쪽.  
 63) 『완영일록』 권4, 갑오 2월 3일.  
 64) 『완영일록』 권4, 갑오 3월 14일·권7, 갑오 9월 26일·권8, 갑오 11월 7일.

범칙금을 어떻게 공적자금화 해야 하는지도 알 수 있다.

최치원의 『계원필경집(桂苑筆耕集)』을 간행하여 한 질을 영영(嶺營)에 보내어 합천 해인사에 보관<sup>65)</sup>하게하고 또 한 질을 태인현(泰仁縣) 무성서원(武城書院)에 보내며, 원록(院錄)에 재록(載錄)하고 착실히 보관하여 함부로 출납하여 손상되거나 잃어버리지 말라는 관문<sup>66)</sup>을 보낸 일로 『계원필경집』의 보관 경로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완영일록』으로 고어(古語)를 살펴볼 수도 있는데, 해의(海衣)는 오늘 날 ‘김’ 이고 단위는 툇[貼]으로 김 100장(張)을 하나치로 세는데 쓰는 말<sup>67)</sup>임을 알 수 있고 곡(斛)은 본음(本音)은 ‘혹’, 속음(俗音)은 ‘괵’ 으로 읽는데, 부피를 뜻하는 ‘휘(彙)’ 또는 ‘섬[石]’ 의 뜻으로 곡식의 양을 헤아리는 데 쓰이는 말로 관부용 1섬은 15말을 준용하였음<sup>68)</sup>도 알 수 있고, 또 요즘 전주 완산동의 용머리 고개는 용두치(龍頭峙)<sup>69)</sup>로, 인후동의 모래내는 사천평(沙川坪)<sup>70)</sup>으로 불렸음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조선후기 전라도 관찰사의 공문서 기록인 『완영일록』은 직계아문의 외직인 관찰사의 역할과 이에 따른 문서수발 행이체계를 이해할 수 있고 관찰사의 사법행위 범위와 절차는 물론 당대에 빈번했던 진상(進上)·삭선(朔膳)과 과거제도·제례 시기와 지명과 단위에 관한 언어의 변화까지도 엿 볼 수 있는데, 관찰사를 중심으로 주고받은 문서를 통하여 전라도 관찰사의 업무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3.1 국왕에게 주요 업무 보고

왕권사회에서 강력한 중앙통치조직의 핵심을 담당했던 관찰사의 역할은 왕명을 받들어 전달하고 농업생산력 증대와 백성의 위무(慰撫)에 관한 일 그리고 지방통치를 위한 수령들의 포폄과 과거시험 실시한 일 등 주요 업무를 수시로 국왕에게 보고하였다.

행정·사법·군사·교화관등 관할 지역의 모든 영역을 통치하는 관찰사는 1년에 두 번 6월과 12월에 행하는 각 군현 수령<sup>71)</sup>들의 포폄<sup>72)</sup>을 보고하였다. 갑오년 문·무

65) 『완영일록』 권7, 갑오 10월 29일.

66) 『완영일록』 권7 갑오 10월 30일.

67) 『완영일록』 권2, 계사 11월 20일.

68) 『완영일록』 권1, 계사 9월 23일.

69) 『완영일록』 권1 계사 8월 11일.

70) 『완영일록』 권3 갑오 1월 25일.

과 동당시(東堂試)를 전주에서 합설(合設)<sup>73)</sup>한다는 내용을 국왕에게 보고하며, 생원과 진사를 뽑는 사마시(司馬試), 곧 감시(監試)에서 몇 명을 뽑았는지 등도 아뢰었다<sup>74)</sup>. 뿐만 아니라 제주도에서 6명이 표류되어 2명이 죽고 4명이 청나라까지 흘러갔다가 성대한 대접을 받고 돌아오는 과정을 매우 생생하게 보고하기도 하였는데, 여기에서 청나라에서 어떠한 경로를 거쳐 제주도로 돌아오는지를 전라도 관찰사 장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나라에서 의주(義州)를 경유하여 한양을 거쳐 기영(畿營)에서 호송한다는 공충(公忠)감영의 이문(移文)을 남평(南平) 현감 임형진(林迥鎭)이 받아보고, 전라도 관찰사에게 보고한 것을 전라도 관찰사가 국왕에게 장계<sup>75)</sup>한 일이 그것이다. 이렇게 왕명을 받은 관찰사가 국왕에게 보고하는 장계내용은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장계를 분석하면 전라도 관찰사가 국왕에게 보고한 중요업무가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

아래 <표 3>처럼 『완영일록』에 기록된 장계는 128건으로 등재문건 총 1,070건의 12%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농사 52건(41%), 수령의 포폄과 과거제등 감사(監司) 업무 37건(29%), 사법 14건(11%), 경기전 제향 등 의례 9건(7%), 구휼 7건(5%), 기타 9건(7%)이다. 특히 농사에 중요한 우택(雨澤)장계가 28건으로 단일 사안으로 가장 많

<표 3> 『완영일록』 문건 중 장계 내용 분포표

분류	농 사		수령포폄·과거제 등 감사업무	사 법	慶基殿 제향 등 의례	구휼	기 타
	농형	우택					
총 128 건	24	28	37	14	9	7	9
100 %	41		29	11	7	5	7

은 장계를 올렸고 기타 농형(農形)보고 장계가 24건으로 보아 권농(勸農)과 이에 따른 세수(稅收)확보가 전라도 관찰사의 가장 중요한 일임을 엿 볼 수 있다.

『완영일록』 장계의 내용으로 눈여겨 보아야할 또 하나는 제향(祭享)에 관한 것이다. 경기전(慶基殿) 제향은 단오·추석·동지·납향·정조·한식날 같은 매 절기에 제향을 올렸고, 조경묘(肇慶廟) 제향은 춘·추향제(春秋享祭)만 지내고 제향 결과를 장

71) 전라도 관찰사 포폄 대상 수령은 제주도를 제외하고 중군(中軍)부터 조경묘 별검, 격포 별장, 심약, 검를 까지 모두 70명을 고과했다.(『완영일록』 권1, 기사 6월 15일·기사 12월 15일)  
 72) 『완영일록』 권1, 기사 6월 6일·12월 6일, 권6, 갑오 6월 6일·12월 6일.  
 73) 『완영일록』 권4, 갑오 3월 3일.  
 74) 『완영일록』 권4, 갑오 2월 25일.  
 75) 『완영일록』 권4, 갑오 2월 7일.

계로 아뢰었으며, 이외에 부임할 때나 특별히 수선할 경우가 생기면 봉심(奉審)하고 그 내용을 장계로 아뢰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매년 한 차례씩 관왕묘(關王廟)도 봉심<sup>76)</sup>한 뒤 이를 장계로 아뢴 점이다.

관찰사는 왕명 포유(布諭), 지방수령 관리, 충효열(忠孝烈)의 성리학적 이념 교화, 국세(國稅) 봉상(捧上), 사죄(死罪)여부를 가려야하는 살옥(殺獄)<sup>77)</sup>사건의 심리, 농업생산력을 확대하는 주요 업무 등을 수시로 보고하였음을 『완영일록』 공문서로 확인할 수 있다.

### 3.2 경사(京司) · 타도(他道)와의 소통

전라도 53주를 관할하는 전라도 관찰사는 예하 수령들을 지위하고 관할 백성들의 민원을 들어주고 처결하는 이른바 하행 소통 문건이 월등히 많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관할 지역의 상황을 경사와 인근 타 도에 알려야만할 필요성도 많았다. 특히 세곡(稅穀)을 운반할 때나 살옥사건을 처리할 때 등은 위로 첩정을 보내고 타도로 관문을 보내 공조하였다.

무곡(貿穀)을 금지하지 말라는 일로 비변사에 첩보<sup>78)</sup>하고, 속(粟)을 옮기는 일로 균역청에 첩보<sup>79)</sup>하고, 연읍(沿邑)에 있는 통영곡(統營穀)을 작전(作錢)<sup>80)</sup>하는 일로 비변사에 보고<sup>81)</sup>하기도 하였으며, 무모전(貿牟錢)을 보관하고 있으라는 일로 경청(京廳)에 첩보<sup>82)</sup>하고 경기(京畿)로 운반하는 모(牟) 5천섬을 다른 곳으로부터 변통하는 일로 비변사에 첩보<sup>83)</sup>하며 전라도의 사정을 중앙에 알려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

76) 관왕묘(關王廟)도 봉심 : 1833년 8월 19일, 1834년 9월 13일. 관왕묘는 탄보묘(誕報廟)라고도 하며 남원부(南原府) 강진현(康津縣) 고금도(古今島)에 있던 사당으로, 중국 삼국 시대 촉한(蜀漢)의 장수(將帥) 관우(關羽)의 영(靈)을 모신 곳.

77) 살옥(殺獄) : 살옥이란 용어 자체가 살인 사건을 지칭하는 동시에 ‘살인 사건의 옥사’, 즉 ‘살인의 심리·재판’을 지칭하는 이중적 의미를 지닌 것이기도 하다.(김선경, 「1833~34년 전라도 지역의 살옥 사건과 심리-『완영일록』의 분석-」, 『歷史教育』, vol 122, 2012, 70쪽)

78) 『완영일록』 권1, 계사 10월 23일.

79) 『완영일록』 권1, 계사 9월 29일.

80) 작전(作錢) : 전세(田稅)를 받을 때 쌀·콩·무명 대신에 환가(換價)하여 돈으로 내게 하는 일.(『특수용어용례사전』, 한국학자료센터)

81) 『완영일록』 권2, 계사 12월 13일.

82) 『완영일록』 권3, 갑오 1월 10일.

83) 『완영일록』 권2, 계사 12월 19일.

청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 한인득(韓仁得) 살육사건으로 시친(屍親)을 기송(起送)하는 일로 금영(錦營)에 회이(回移)<sup>84)</sup>한 사실과, 통영곡(統營穀)으로 연읍에 소재한 곡식 몫을 작전하여 추용(推用)하는 일로 영영(嶺營)과 통영(統營)에 문이(文移)<sup>85)</sup>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첩정과 관문 등을 통하여 관찰사가 경사(京司)와 소통하고 타도(他道)와 업무협조 했음을 알 수 있다.

### 3.3 예하 관원 통솔

부랑하는 부류가 거짓으로 영객(廉客)이라 칭한다는 폐단을 규찰하여 단호하게 금하라는 내용으로 53주와 법성진에 관문<sup>86)</sup>을 보내고, 비변사 관문으로 보리를 운반하라는 일로 고군산진에 관문<sup>87)</sup>을 보내거나 환곡을 거둬들이는 일, 그리고 1834년 2월 29일 식년 과거시험인 동당시(東堂試)를 실시(設施) 한다는 관문과 동당시를 위한 1834년 2월 21일 시관(試官) 차출한다는 관문을 통하여 과거시험이 언제부터 며칠 동안 시행하는지를 알 수 있고 나아가 시험문제 유형<sup>88)</sup>과 몇 명이 응시하여 몇 명을 뽑았는지<sup>89)</sup> 등을 알 수 있는 것도 『완영일록』에 등재된 관문·감결 문서를 통해서다. 또한 전주·나주·광주·남원 4장관이 실행하는 승보(陞補)<sup>90)</sup> 백일장을 갑오년 10월 1일에 한다고 알리기 위하여 53주와 법성·고군산 진에 감결<sup>91)</sup>을 보내니 수령들은 과거 보는 유생 도목(都目) 장부를 만들어 보고하라고 하였고, 승보 백일장 시관을 차정(差定)하는 일로 관문<sup>92)</sup>을 보내어 예하 수령들과 지방의 대소사를 관문과 감결문서로 소통했음을 알 수 있다.

우역(牛疫)이 근처에 들어왔을 때에는 우선 소변을 먹이고, 병들지 않은 소에게

84) 『완영일록』 권2, 계사 12월 14일.

85) 『완영일록』 권3, 갑오 1월 5일.

86) 『완영일록』 권2, 계사 12월 16일.

87) 『완영일록』 권2, 계사 11월 10일.

88) 『완영일록』 권4, 갑오 2월 29일.

89) 1등 2명, 2등 6명, 3등 16명을 탁방(拆榜)했다. (『완영일록』 권4, 甲午三月二日)

90) 승보(陞補) : 전라도 4장관이 연합하여 실시한 식년(式年) 생원시(生員試)나 진사시(進士試)의 복시(覆試)에 응시할 자격을 주는 승보시(陞補試)로, 생원시·진사시 초시(初試)의 기능을 하였다.(『續大典·禮典 諸科』, 『六典條例·禮典 成均館 科擧』)

91) 『완영일록』 권7, 갑오 8월 28일.

92) 『완영일록』 권7, 갑오 9월 23일.



소변을 하루에 3~4차례 먹이면 전염이 되지 않는다는 등, 우역(牛疫) 약방문(藥方文)을 베껴 감결<sup>93)</sup>하는 것에서 전라도 관찰사 서유구의 해박한 실학자다운 면모를 발견할 수 있다. 또, 소 도축, 술 빛는 것, 소나무 벌목에 대한 3가지 사항은 곧 국가가 평소 매우 엄하게 단속하였음<sup>94)</sup>도 알 수 있고, 아병(牙兵)<sup>95)</sup>을 취점(聚點)<sup>96)</sup>하는 일로 각읍에 감결<sup>97)</sup>을 발송하는 일 등에서 관찰 관원들을 통솔하여 국왕의 뜻을 펼치는 중앙통치체제의 근간에 관찰사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 3.4 도내 사법 활동 지휘

인명 살상 사건인 살육은 물론 일반 형사 사건을 심리하고 각 군현 수령의 보장(報狀)·검안(檢案)·사안(査案) 등에 대한 처결과 집행하는 거행 형리의 잘못에 대해 부과(附過)<sup>98)</sup>를 하며 예하 수령들의 사법 활동을 총지휘하는 책임자는 관찰사였다.

진안 김어인노미(金於仁老未)의 옥사는 10년 동안 끌어왔음을 밝히면서 발사(跋辭)를 올려 살육 사건을 애매모호하게 방치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가볍게 처벌하는 법으로 특별히 전교(傳敎)하시는 것이 합당하다고 의견을 내기도 하였고<sup>99)</sup>, 형조와 상의하지만 결국 명확하게 변별할 수 없자, 오직 가벼운 쪽으로 처리하여 동(同) 죄인 김어인노미를 차율(次律)로 시행하는 것이 어떨겠냐고 장계를 올려 윤험을 받아내는 과정<sup>100)</sup>에서 관찰사의 엄정한 사법 활동과 처벌보다는 국왕의 은전(恩典)으로 교화하려는 관찰사의 모습도 볼 수 있다.

진산군(珍山郡) 보장(報狀)에 대한 데김<sup>101)</sup>에서 밀도살(密屠殺)한 자에게 속전(贖錢) 56량을 받아 진자(賑資)로 보태 쓰라는 내용이나, 전주부 보장에 대한 데김<sup>102)</sup>에

93) 『완영일록』 권3, 갑오 1월 17일.

94) 『완영일록』 권1, 계사 4월 22일.

95) 아병(牙兵) : 아하친병(牙下親兵)의 약칭. 대장의 휘하에서 군무를 수행하는 군사를 칭하는 말.

96) 취점(聚點) : 군사들을 불러 모아 점명(點名)하는 일이다.

97) 『완영일록』 권3, 갑오 1월 21일.

98) 부과(附過) : 관원·군병이 공무상 과실이 있을 때 그 과오를 별지에 써서 정안(政案)에 붙여두던 일.

99) 『완영일록』 권1, 계사 7월 29일.

100) 『완영일록』 권3, 갑오 1월 29일.

101) 『완영일록』 권4, 갑오 3월 14일.

102) 『완영일록』 권4, 갑오 3월 14일.

서 진상할 절선(節扇)이 부채 살 때갈이 깨끗하지 않고 종이 질이 조잡하니 해당 색리를 우선 부과(附過)하고 특별히 정밀하게 만들 것을 엄히 단속하라고 처결한 내용 등을 볼 수 있다.

살옥 같은 중죄사건이라도 우선 1차로 수사하고 형을 가하는 사법기관은 지방 군현이었지만 관찰사는 수령의 보고를 받아 문서로 이들을 지휘 하였다. 따라서 『완영일록』의 기록을 보면 관찰사의 사법 활동의 범위와 사법 절차를 자세히 알 수 있다. 특히 김선경(2012)<sup>103)</sup>은 많은 살옥 사건이 군현에서 고발되지만 목숨으로 보상해야 하는 사죄(死罪)에 해당되는지 등으로 중앙의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사건만이 국왕에 보고되고 대부분은 관찰사 선에서 심리가 종결되는데 『완영일록』은 관찰사 일기라는 자료의 특성상 군현에서 살옥으로 관찰사에게 보고 하였으나 관찰사 차원에서 사죄에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심리를 종결한 사건들이 풍부하게 실려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 『완영일록』에는 96건의 살옥이 발생하였는데 자살로 실인이 규명된 것이 50건이고 타살이 36건이고 기타 병사나 사고사가 10건으로 나타나 자살이 월등하게 많은데 이는 자살이 고발되고 보고됨으로써 살옥이 성립되어 공적 사건이 되어 자신에게 위해를 입힌 사람들을 궁지에 몰아넣는 하나의 방법으로 삼았기 때문이라고 밝힌 것도 데김 문서를 통하여 알 수 있다.

김진우(金振宇) 등이 장흥 김부안(金夫安)등에게 협박당해 200냥의 돈을 탈취당한 흥양현(興陽縣) 사안(査案)에 대한 데김<sup>104)</sup> 등 『완영일록』에 등재된 1,070건의 문서 중 사법에 관계된 데김[題]이 494건(46%)으로 가장 많다. 전라도 53개주 수령들의 사법 활동을 총 지휘해야 하는 관찰사의 업무량을 데김[題] 문서에서 가능할 수 있다.

103) 김선경, 「1833~34년 전라도 지역의 살옥 사건과 심리-『완영일록』의 분석-」, 『歷史教育』vol 122, 2012, 76-96쪽.

104) 『완영일록』 권7, 갑오 8월 15일.

### III. 국역 『완영일록』 권 1

『완영일록』 1권 전라도 관찰사 주요 직무
<p>일찍이 정2품의 판서를 두루 거친 서유구는 70세에 전라도 관찰사를 제수 받고 교유서를 받아 6일 만에 도계(到界)에 이르러 인계식을 여산 동헌에서 갖고 그 사실을 국왕에게 보고하는 일부러 전라도 관찰사 공식 업무를 시작하였다.</p> <p>관찰사는 국왕에 대한 충성으로 매월 1일과 15일 객사에서 망궐례를 행해야 했고<sup>1)</sup>, 국왕의 탄신일 등에는 전문(箋文)을 올렸다. 8월 15일에는 조경묘 추향제<sup>2)</sup>와 경기전 추석제를 행하였다.</p> <p>국가의 권농정책으로, 농업을 부흥시키는데 힘을 쏟아야 했다<sup>3)</sup>. 정약용은 “권농의 요체(要諦)는 세를 덜어주고 가볍게 함으로써 그 근본을 배양하는 데 있다. 이렇게 하면 토지가 개간되고 넓혀진다<sup>4)</sup>.” 고 했다. 전라도 관찰사 서유구는 농사의 상황을 보고하는 일, 우택형지(雨澤形止)를 보고하는 일, 농사 상황을 자세히 살피기 위해 순행하는 일, 세곡 운송에 보리 1만석을 먼저 실어 보내고 쌀은 내년 봄에 보낸다고 균역청에 첩보하는 일, 재결을 더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일, 제연수축 등의 일을 하였고, 가뭄이 들면 『경국대전』 「예전」의 보충법규인 『오례의(五禮儀)』에 의한 기우제를 지내기도 하였다<sup>5)</sup>.</p> <p>지방통치행정으로, 관찰사는 각 군현 수령들의 보장(報狀)·검안(檢案) 등에 데김하고 수령들을 포평하였다<sup>6)</sup>. 수령의 업적을 고과(考課)하는 것도 수령칠사(守令七事) 곧, 농사와 누에치는 일이 성대해야 함[農桑盛], 호구가 늘어나야 함[戶口增], 군정이 정비되어야 함[軍政修], 부역이 균등해야 함[賦役均], 학교가 흥성해야 함[學校興], 사송이 간략해야 함[詞訟簡], 간사하고 교활한 일들이 없게 해야 함[奸猾息]에 기준하였는데, 농상흥(農桑興)이 가장 먼저 꼽히는 것은 결국은 농업 생산력 증대 역할이 수령 포평의 중요한 기준이었음을 알 수 있다<sup>7)</sup>.</p>

1) 『經國大典』 「禮典」, 朝儀.

2) 조경묘(肇慶廟)에 대한 제사는 봄의 중간달과 가을의 중간달 상순에 속례(俗禮)로 행한다.(『大典會通』 「禮典」, 祭禮)

3) 수령은 경내의 사면(四面)에 권유해서 제때에 갈고 김매게 하고 인력이 부족하면 도와주며 부역에 내물거나 인부로 징발시키지 말아야 한다. 관찰사는 수령들이 부지런한지 태만한지 살펴서 업적을 평정[殿最]한다.(『經國大典』 「戶典」, 務農)

## 1. 1833년(순조33) 4월 : 전라도 관찰사 도계(到界) 장계를 올린다

初十日. 辭朝入侍于興政堂. 藥房入診, 大臣、備局堂上引見, 入侍時, 傳曰: “全羅監司, 同爲入侍.”

10일. 하직인사하기 위해 흥정당(興政堂)<sup>8)</sup>에 입시(入侍)<sup>9)</sup>하였다. 약방(藥房)이 들어와 임금을 진찰하고, 대신과 비국당상(備局堂上)<sup>10)</sup>을 인견(引見)<sup>11)</sup>하여 입시한 자리에서 전교(傳敎)하기를, “전라 감사도 함께 입시하라.” 하였다.

同日. 入侍後, 退出政院, 祇受密符、敎諭書.

【諭書】王若曰: 文學政事之本, 漢循吏多出名儒; 臺閣賢良所儲, 宋學士兼鎮諸路,

- 
- 4) 정약용 저, 다산연구회 역주, 『牧民心書』Ⅲ, 「戶典」勸農, 창작과비평사, 1978, 182쪽.
- 5) 『경국대전』 「예전」의 '의주(儀註)'에서는 "의식절차는 『오례의』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오례의』의 규정이 『경국대전』의 조문과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례의』는 국가의 의식절차를 크게 다섯 가지로, 즉 길한 일에 관한 의식절차를 규정한 길례(吉禮), 좋은 일에 관한 의식절차를 규정한 가례(嘉禮), 외국손님의 접대에 관한 의식절차를 규정한 빈례(賓禮), 군사에 관한 의식절차를 규정한 군례(軍禮), 흉한 일에 관한 의식절차를 규정한 흉례(凶禮)로 구분하고 그 안에서 다시 개별적 행사의 의식절차를 규정하였다.
- 6) 중앙관리는 해당 관청의 당상관·제조 및 소속된 조(曹)의 당상관이, 지방관리는 관찰사가 해마다 6월 15일과 12월 15일에 등급을 평정(等第)하여 임금에게 보고한다.(『經國大典』 「吏典」, 土官職, 褒貶)
- 7) 『을사대전』은 『갑오대전』을 수정한 법전으로서 조선의 통치자들이 최종적으로 완성한 『경국대전』을 말한다. 『갑오대전』과 『을사대전』에서는 수령이 시행해야 할 일곱 가지 일에 대하여 다같이 수록하고 있으나 그 순서에서는 차이가 있다. 『갑오대전』에서 호구를 늘리는 것(戶口增)을 첫 자리에 놓았던 것을 『을사대전』에서는 그것을 두 번째 자리에 놓고, 그 대신 첫 자리에 농사일과 뽕나무 재배를 잘 하는 것(農桑盛)을 놓았다.(윤국일 역주, 홍기문, 김석형 감수, 『역주 경국대전』, 제4절 『을사대전』(乙巳大典)), 수령칠사(守令七事))
- 8) 흥정당(興政堂) : 1623년(광해군15)에 완공된 경희궁 내에 있는 건물로 신료를 만나고 경연(經筵)이 이뤄지던 곳이다. 『宮闕志』 조선 후기 이궁(離宮)으로 사용했던 흥정당은 정조즉위년 병신(1776. 건륭 41)에 편전(便殿)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1829년(순조29) 10월 화재로 인하여 건물의 대부분이 소실되었으나, 1831년(순조31)에 다시 중건되었고, 1859년(철종10)부터 11년 사이에 보수 공사가 시행되었다.
- 9) 입시(入侍) : 대궐에 들어가 임금을 접견하는 일을 이른다.
- 10) 비국당상(備局堂上) : 비변사(備邊司)의 당상으로, 각 도에서 올라오는 장계(狀啓)·문보(文報)를 각각 도별(道別)로 관장하였다. 이조·호조·예조·병조·형조의 판서, 훈련도감(訓練都監)·금위영(禁衛營) 등 군문(軍門)의 대장, 개성·강화 유수(留守), 대제학 등이 으레 겸임하는데, 4명은 유사당상(有司堂上)이 되고 8명은 8도(道) 구관(句管)당상이 된다. 유사당상은 관아의 사무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맡아보았고, 팔도 구관당상은 팔도의 사무를 나누어 맡아보았다.
- 11) 인견(引見) : 임금이 의식을 갖추고 신하를 불러 보는 것이다.

茲撤西清八座之列，庸畀南服一方之任。惟卿明敏清儉之姿，慈諒溫潤之性，用力於墳典邱索之上，斂若空跡；律已於名利芬華之中，欲如寒素。聖恩深龍頭之選，先朝陶甄；家聲傳鳳毛之譽，三世奎壁。翰苑簪筆，虞世南之行秘書；玉署橫經，范淳夫之眞侍講。師道尊泮宮之席，教已述蛾；民憂佩灣塞之符，步未展驥。邇來風波之憂畏，遽爾雲陞之遯違。南陔之蔬水淡然，軒冕不易乎其介；西澨之芸牕闐若，鉛槧自娛於斯文。璞玉初無點瑕，尤見攻石之益；杞梓非有寸朽，終爲構厦之需。雖以希文之憂，久致江湖退處；要得長孺之重，暫勞淮陽臥治。畿麾晉秩，沁節保釐，利器歷試盤錯；藝苑主盟，籌司規劃，宿德已躋耆英。肆重望自有所歸，而通才何適不可？睠茲湖南一路，卽我海東重藩。原廟之衣冠月遊，漢鄉豐、沛；沿邑之筐篚歲貢，禹服荊、楊。粟米魚鹽之饒，經用視以外府；城池樓櫓之勝，繁華列於兩西，夫何全盛之餘？漸致凋瘵之歎。吏奸舞弄，邑儲朽而歲比繹騷；俗尚侈靡，民力竭而日益狡詐。至若賦紙貢扇，弊難指陳；矧又簽籍漕船，瘼已毛起。苟非二千石雅望，曷膺五十州來旬？茲授卿以全羅道觀察使、兼兵馬水軍節度使、都巡察使、全州府尹，卿其勉懷令圖，祇服寵命。檐帷勵攬轡之志，古人風裁；棠芡襲露冕之休，先卿遺愛。廉白以持身，字惠以臨下，固知素存；彈壓而著信，黜陟而考功，宜體隆畀，自餘稟斷，厥有典常。於戲！往惟欽哉，行且召矣。牙蠹重方面之寄，鈴閣增光；琅函伸起居之誠，玉樓非遠，故茲教示，想宜知悉。<檢校待教李肯愚製進>

같은 날. 입시(入侍)한 후에 승정원으로 물러나와 밀부(密符)<sup>12)</sup>와 교유서(教諭書)<sup>13)</sup>

- 12) 밀부(密符) : 관찰사(觀察使)·통제사(統制使)·총융사(摠戎使)·유수(留守)·절도사(節度使)·방어사(防禦使) 등에게 주는 병부(兵符)이다. 『대전회통(大典會通)』에 의하면, 모양은 원형으로, 한 면에는 '제 몇 부[第幾符]'라 쓰고 뒷면에는 임금이 친서(親署)하여, 반으로 나누어서 한쪽은 해당 관원에게 주고 다른 한쪽은 궁중(宮中)에 두었다가 급변이 생겨 발병(發兵)하게 될 때에 사용하였다.
- 13) 교유서(教諭書) : 교서(敎書)와 유서(諭書)로 모두 국왕의 명령문서 가운데 하나이다. 교서(敎書)의 종류에는 즉위교서(卽位敎書)·문묘종사교서(文廟從祀敎書)·반사교서(頒赦敎書)·권농교서(勸農敎書) 등이 있고, 사명훈유(使命訓諭)·봉작(封爵)·책봉(冊封)·가례(嘉禮)·납징(納徵)·포장(褒獎)·유교(宥敎) 등의 경우에도 교서(敎書)가 내려졌다. 관찰사(觀察使)·절도사(節度使)·방어사(防禦使)·유수(留守) 등 일방(一方)의 군사권을 가진 관원이 왕명이 없이 자의로 군사(軍士)를 발동하거나, 간모(奸謀)에 의한 동병(動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밀부(密符)의 제도를 두었는데, 유서(諭書)는 왕이 각 지방으로 부임하는 관찰사·절도사·방어사·유수 등에게 왕과 해당 관원만이 아는 밀부를 해당 관원에게 내리면서 함께 발급하는 명령서이다. 유서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밀부(密符) 유서이며, 담당 승지가 왕명을 전달하는 유지(有旨)와 달리 직접 명을 내리는 문서이므로 보다 중대한 사안을 다루는 경우가 많았다.(최승희, 『韓國古文書研究』, 2008, 64-70쪽.) 교서(敎書)는 왕이 통치자(統治者)로서 발하는 일반적인 명령인 교(敎)를 성문화한 것으로, 황제의 명령서를 조(詔)와 칙(勅)이라고 칭했던 반면, 교(敎)는 제후(諸侯)의

를 공경히 받았다.

【유서】 왕은 이르노라.

문학은 정사의 근본이니 한나라 순리<sup>14)</sup>는 명유(名儒)에서 많이 나왔고, 대각(臺閣)<sup>15)</sup>은 현량(賢良)이 모인 곳이니 송나라 학사들은 여러 도(道)까지 다스렸다. 이에 서청 팔좌(西淸八座)<sup>16)</sup>의 반열에서 거두어 호남 한 고을을 다스리는 임무를 주노라. 오직 경은 명민하고 청렴한 자질과 자애롭고 온화한 성품으로, 분전구색(墳典邱索)<sup>17)</sup>에 힘을 썼으나 소략한 듯 수렴하였고, 명리(名利)와 화려함 속에 자신을 단속하여 가난한 것처럼 부족하였다. 성군의 은총은 장원급제에 깊으니 선조(先朝 정조(正祖))께서 세상을 잘 다스렸고<sup>18)</sup>, 가문의 명성은 봉모(鳳毛)<sup>19)</sup>의 칭찬을 전하니 삼대(三代)가 문한(文翰)<sup>20)</sup>의 직을 지냈다. 한원(翰苑)에서 잠필(簪筆)<sup>21)</sup>하니 우세남(虞世南) 같이 걸어 다니는 비서(秘書)<sup>22)</sup>요, 홍문관(弘文館)

명령서(命令書)이다. 진법(秦法)에 의하면 왕후(王侯)가 교(敎)라는 말을 쓸 수 있었고, 한대(漢代)에 이르러서는 대신(大臣)도 역시 교(敎)를 사용하였다고 하며, 송대(宋代)에는 황후의 명령을 교(敎)라고 하였다. 『文體明辯 敎』 『事物紀原 敎』 『譯註 經國大典』

- 14) 순리(循吏) : 법을 지키고 이치를 따르는 관리란 말로, 훌륭한 지방관을 가리킨다. 『후한서(後漢書)』에 “안사교가 이르기를 ‘순(循)은 도리를 따르는 것이니, 위로는 공법(公法)을 따르고, 아래로는 인정을 따른다.[師古曰：徇，順也，上順公法，下順人情也.]” 하였다.
- 15) 대각(臺閣) : 대간(臺諫)의 관아 또는 그 관원으로, 조선조 사간원과 사헌부를 합칭한 말이다.
- 16) 서청 팔좌(西淸八座) : 서청(西淸)은 대궐 안의 별실(別室)로, 한림학사(翰林學士)가 출근하던 곳을 말하며, 홍문관(弘文館)의 별칭으로 쓰인다. 팔좌(八座)는 조정의 벼슬아치 가운데 여덟 명의 고관으로, 육조 판서와 홍문관 대제학 그리고 한성부 판윤을 일컫는다. 서유구는 65세 때부터 70세에 전라도 관찰사가 되기 전까지 공조·형조·예조·호조 판서, 홍문관 제학 등을 지냈다.
- 17) 분전구색(墳典邱索) : 구색은 구구(九邱)와 팔색(八索)을 말하고, 분전은 삼분(三墳)과 오전(五典)을 말하는데, 흔히 옛날의 경전을 통칭하는 말로 쓰인다.
- 18) 성군의……다스렸고 : 서유구의 부친 서호수(徐浩修, 1736~1799)가 1765년(영조41) 식년문과에서 장원급제를 한 후, 대사성·대사헌 등 청관직(淸官職)을 거쳐 이조·형조·병조·예조 등의 판서를 두루 역임한 일을 말한다.
- 19) 봉모(鳳毛) : 자식이 훌륭한 아버지를 잘 닮은 것을 비유한 말이다. 진(晉)나라 때의 명신 왕도(王導)의 아들 왕소(王劭)가 일찍이 시중(侍中)이 되어 대궐문을 출입할 적에 환온(桓溫)이 그를 바라보고 말하기를, “대노에게는 본디 절로 봉황의 터럭이 있었다.[大奴固自有鳳毛]” 했던 데서 온 말이다. 대노(大奴)는 곧 왕소를 지칭한 것이었다. 『世說新語 容止』
- 20) 삼대가 문한(文翰) : 조부 서명응(徐命膺)은 대제학을 지냈고, 생부 서호수(徐浩修)는 이조 판서·대사성·대사헌 등 청관직(淸官職)을 거쳐 정조 시대 문화사업의 핵심기관이었던 규장각의 직제학을 역임하였고, 서유구(徐有榘)는 규장각 대교(待敎) 겸 홍문관 정자(正字)·부제학·이조 판서·우참찬을 거쳐 대제학에 이르니, 삼대가 문한(文翰)의 직을 역임하였다.
- 21) 한원(翰苑)에서 잠필(簪筆)하니 : 한원은 예문관(藝文館)을 달리 이르는 말로, 조선 시대에 사명(辭命)을 짓는 일을 맡아보던 관아이며, 잠필은 붓을 머리에 꽂는다는 뜻으로, 예문관 검열(藝文館檢閱)이나 승정원 주서(承政院注書)의 별칭이다. 서유구는 정조14년(1790)에 외교문서를 담당하는 승문원(承文院)으로 배속(配屬)되어 실무를 익혔고, 정조16년(1792)에 예문관(藝文館) 검열(檢閱)을 역임했다.
- 22) 우세남(虞世南)……비서 : 우세남(558~638)은 당(唐)나라 초기의 서예가로, 당 태종(太宗)의 애고(愛

에서 경연(經筵)을 맡으니 범순부(范淳夫)<sup>23)</sup> 같은 참된 시강(侍講)이다. 사도를 반궁(泮宮 성균관)의 자리에 높이니 개미 새끼의 가르침을 이미 기술했고,<sup>24)</sup> 백성의 근심을 만새(灣塞)의 병부<sup>25)</sup>에 차니 준마의 발을 펴지 못했다.

근래 풍파가 근심스럽고 두려운데 갑자기 조정을 멀리 떠났다. 남쪽 언덕의 나물과 물이 담박하니 그 절개를 현면(軒冕)<sup>26)</sup>과 바꾸지 않았고, 서쪽 물가의 향기로운 창이 고요하니 이 글을 연참(鉛槧)<sup>27)</sup>에서 스스로 즐겼다.<sup>28)</sup> 박옥(璞玉)이 애초에 흠집이 없으니 더욱 돌을 다듬는 유익함을 보겠고, 좋은 재목이 조금도 썩지 않았으니 끝내 큰 집을 짓는 수요가 된다. 비록 범희문(范希文)의 근심<sup>29)</sup>을 가졌으나 오랫동안 강호에 물러나 있었고, 장유(長孺)<sup>30)</sup>의 중망(重望)을 얻어 잠

顧)를 받고 관직은 비서감(秘書監)·홍문관 학사를 겸하고, 작(爵)은 영흥현공(永興縣公)에 올라 은청광록대부(銀靑光祿大夫)를 받았다. 걸어 다니는 비서란 박문강기(博聞強記)한 사람을 비유하는 표현이다. 당 태종이 출행할 적에 유사가 관계 서적을 신고 갈 것을 청하자, 태종이 “필요 없다. 우세남이 여기에 있지 않으나, 그는 행비서이다.(不須, 虞世南在此, 行秘書也.)” 하였다.(『隋唐嘉話 卷中』)

- 23) 범순부(范淳夫) : 송(宋)나라의 시강(侍講) 범조우(范祖禹, 1041~1098)의 자(字)이다. 정이천(程伊川)은 “그는 온화한 기색으로 시비를 개진해서 임금의 뜻을 인도한다.”라고 칭찬했으며, 소동파(蘇東坡)는 “그는 강사(講師)의 삼매(三昧)를 얻었다.”라고 칭찬하였다.(『宋史 卷337 范鎮列傳 范祖禹』)
- 24) 개미……기술했고 : 개미는 하찮은 벌레이지만 끊임없이 흙을 물어 나르는 일을 계속하여 마침내 큰 독을 만든다. 학문도 그와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닦아야 성취가 있다는 것을 비유한 말이다. 『예기』 「학기(學記)」에 “개미는 수시로 흙을 물어 나르는 일을 배워 익힌다.[蛾子時術之]” 하였다.
- 25) 만새(灣塞)의 병부 : 평안북도 용만(龍灣)의 변방을 지키는 관방(關防)을 뜻하는데, 서유구가 1802년 39세에 의주(義州) 부윤을 지낸 일을 말한다.
- 26) 현면(軒冕) : 현면은 수레와 면류관이라는 말로, 관작과 봉록 등 높은 벼슬을 뜻하는데, 『장자』 「선성(善性)」에 “현면이 몸에 있는 것은 본래 성명처럼 내 몸에 있는 것이 아니고, 외물(外物)이 뜻밖에 우연히 와서 잠시 붙어 있는 것이다.[軒冕在身, 非性命也, 物之儻來寄也.]”라는 말이 나온다.
- 27) 연참(鉛槧) : 문자를 기록할 때에 쓰이는 기구, 즉 연필과 분판을 말한다. 『서경잡기(西京雜記)』에 “양웅(揚雄)이 연필을 품에 끼고 분판을 들고서 계리(計吏)와 함께 수방 절속(殊方絕俗)의 말을 물어 『방언(方言)』을 지었다.” 하였다.
- 28) 근래……즐겼다 : 대제학 서명응(徐命膺)의 아들인 서형수(徐澄修)는 서유구(徐有渠)의 중부(仲父)로 1804년(순조4) 이조 참판을 거쳐 이듬해 경기 관찰사가 되었는데, 1806년 벽파계열(僻派系列)인 우의정 김달순(金達淳) 등이 시파(時派)인 안동 김씨(安東金氏)계열의 김조순(金祖淳) 등에 밀려 사사(賜死)된 것을 김달순의 옥사(獄事)라 한다. 이때 서유구는 홍문관 부제학(副提學)이었지만 이 옥사(獄事)에 연루된 것으로 1806년(순조6)에 삭직을 청하는 상소를 올려 체직되었다. 이후 전라도 흥양현(興陽縣) 등지에서 농사를 지으며 만17년 동안 유배생활을 하였다. 이후 18년 뒤인 1824년(순조24)에야 복직되어 돈녕부(敦寧府) 도정(都正)과 회양(淮陽) 부사(府使)가 된 경위를 말한다.
- 29) 범희문(范希文)의 근심 : 희문(希文)은 북송 때의 저명한 정치·군사·문학자인 범중엄(范仲淹, 989~1052)의 자(字)이다. 그가 쓴 「악양루기(岳陽樓記)」에 “옛날 인인(仁人)의 마음은……남의 일로 기뻐하지 않고 자신의 일로 슬퍼하지 않아, 묘당의 높은 곳에 있으면 백성들을 걱정하고 강호의 먼 곳에 있으면 군주를 걱정하니, 이는 조정에 나가서도 또한 걱정하고 물러나서도 또한 걱정하는 것이다.[古仁人之心……不以物喜, 不以己悲, 居廟堂之高, 則憂其民; 處江湖之遠, 則憂其君, 是進亦憂退亦憂.]” 하였다. 곧 비록 시골에 있어도 국가를 걱정하는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됨을 말한 것이다.
- 30) 장유(長孺)의……수고하였다 : 장유는 회양 태수(淮陽太守)를 지냈던 한(漢)나라 급암(汲黯)의 자(字)

시 회양의 와치(臥治)에 수고하였다. 양주 목사로 품계 오르고 강화 유수(江華留守)로 편히 다스리니 뛰어난 기량을 복잡한 일에 두루 시험하였고, 예원(藝苑)에 맹주가 되고 비변사에서 기획하니 숙덕(宿德)은 이미 기로(耆老)의 반열에 올랐다. 이에 중망(重望)이 저절로 돌아갈 데가 있는데 통달한 재주가 어디로 간들 불가하겠는가.

돌아보건대 이 호남 한 도(道)는 곧 우리 해동의 중요한 번진(藩鎭)이다. 원묘(原廟)의 의관을 월유(月遊)<sup>31)</sup>하니 한 고조의 고향 풍패(豐沛)<sup>32)</sup>와 같고, 인근 고을의 광비(筐篚)를 해마다 바치니<sup>33)</sup> 우임금 천하의 형주(荊州)·양주(楊洲)와 같다. 속미(粟米)와 어염(魚鹽)이 넉넉하니 상용[經用]을 외부(外府) 국가의 재물을 두는 창고)와 견주고, 성지(城池)와 누로(樓櫓 망루)가 빼어나니 변화함을 양서(兩西 황해도와 평안도)에 배열하였다. 그런데 한창 번성한 나머지가 어떤가? 점차 피폐하다는 한탄을 이루었다. 아전들이 무롱(舞弄)<sup>34)</sup>을 범하니 고을의 저축이 비어 해마다 소란하고, 시속이 사치를 숭상하니 백성의 힘은 고갈되었는데 날로 더욱 교활해졌다. 종이를 바치고 부채를 바치는 경우에 이르러서는 폐단을 손가락으로 세기 어렵고, 더구나 또 군역(軍役)과 조선(漕船)<sup>35)</sup>의 경우는 병폐가 이미 많았다. 진실로 이천석(二千石 지방장관)의 평소 명망이 아니면 어찌 50주의 다스림을 받겠는가.<sup>36)</sup> 이에 경(卿)을 전라도 관찰사 겸 병마·수군절도사<sup>37)</sup> 도순찰사(都巡

---

이고, 와치(臥治)는 지방관으로서 고을을 잘 다스리는 것을 뜻하는 말이다. 한(漢)나라 급암(汲黯)이 동해 태수(東海太守)로 있을 때 병이 많아 누워 지내면서도 고을을 잘 다스리자 무제(武帝)가 회양 태수에 임명하면서 “그대의 중망(重望)을 얻어 누워서 다스리게 되길 바란다.” 하였다.(『史記 卷120 汲黯列傳』, 『漢書 卷5』) 서유구는 1824년(순조24) 17년 만에 복직되어 강원도 회양 부사(淮陽府使)가 되었다.

- 31) 원묘(原廟)의 의관을 월유(月遊)하니 : 원묘는 패궁(沛宮)에 세운 한 고제(漢高帝)의 별묘(別廟)를 가리키고, 월유는 매달 초하룻날마다 고제의 의관을 꺼내서 법가(法駕)에 싣고 능궁(陵宮)에서 고묘(高廟)로 옮기던 일을 가리킨다. 여기서는 전주 조경묘(肇慶廟)에 모셔진 태조 이성계의 시조인 이한(李翰) 부부의 위패를 한 달에 한 번씩 봉심(奉審)하는 것을 말한다.
- 32) 풍패(豐沛) : 한(漢)나라 고조(高祖)의 고향인데, 전주를 가리키는 말로 흔히 쓰인다. 제왕(帝王)이 일어난 곳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며 이성계(李成桂)의 선조가 전주(全州)에 살았으므로 전주를 이렇게 칭한 것이다.
- 33) 인근 고을……바치니 : 광비(筐篚)는 대나무로 만든 그릇인데, 예물(禮物)을 바칠 적에 여기에 담아서 바친다. 여기서는 제수(祭需)를 뜻하는 말로 쓰였다. 『경기전의(慶基殿儀)』에 의하면, 제례의 제수를 1년에 두 번 인근 고을에서 거둬 행하였다고 하였다.
- 34) 무롱(舞弄) : 멋대로 문부(文簿)나 법을 따위를 고쳐 농락하는 것을 말한다.
- 35) 조선(漕船) : 조운(漕運)에 쓰던 선박(船舶)으로, 나라에서 거둔 조세미(租稅米)와 대동미(大同米)를 각 지방(地方)의 주창(州倉)에서 경창(京倉)으로 나르는 데 쓰였다.
- 36) 50주의 다스림을 받겠는가 : 서유구가 부임한 1833년 4월 15일 전임 수령과 교귀(交龜)식에서 “각



察使)<sup>38)</sup> 전주 부윤(全州府尹)<sup>39)</sup>으로 제수하니, 경은 힘써 좋은 계책을 품고 공경히 총명(寵命)을 받으라. 첨유(檐帷)에서 쇠신할 뜻을 가다듬는 것은 옛사람의 풍도이고,<sup>40)</sup> 당발(棠芟)에서 노면(露冕)의 아름다움을 잇는 것<sup>41)</sup>은 선경(先卿 서유구의 부친인 서호수)이 끼친 사랑이다. 청렴결백으로 몸을 간직하고 사랑과 은덕으로 아랫사람에 임하여 진실로 평소에 지닐 바를 알 것이며, 탄압(彈壓)하되 믿음을 주고 출척(黜陟)<sup>42)</sup>하되 공과(功過)를 평가하여 의당 넉넉하게 주기를 실천하라. 그 밖에 임금에게 여쭙어 결단할 일은 법전에 갖춰져 있다. 아, 가서 조심하라. 곧 부르리라. 아독(牙燾 관찰사의 기(旗))으로 호남 지역을 맡김을 중하게 여겨

진영 수령 병부 좌척 56개를 받았다.” 하였으니, 당시 전라도 53주(州)와 남고진(南固鎭)·법성진(法聖鎭)·고군산진(古羣山鎭) 세 개의 진(鎭)을 말한다. 원문의 ‘내순(來旬)’은 『시경』 「강한(江漢)」의, “왕께서 소호를 명하시, 와서 정사를 두루 펴라 하시다.[王命召虎, 來旬來宣.]”라고 한 데서 온 말로, 지방관이 된 것을 뜻한다. 순(旬)은 곧 두루 다스린다는 뜻으로, 순(巡)과 통용된다.

- 37) 병마·수군절도사 :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는 조선 시대에 각 도에 둔 병마를 통솔 지휘하던 종2품(從二品) 무관 벼슬이고, 수군절도사(水軍節度使)는 수군(水軍)을 통솔 지휘하기 위하여 둔 정3품(正三品)의 당상관(堂上官)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제33권 「전라도」편에 “관찰사는 1인, 병마절도사는 2인이며, 그 중 하나는 관찰사가 겸한다. 수군절도사는 3인이며, 하나는 좌도(左道), 하나는 우도(右道), 하나는 관찰사가 겸한다.” 하였으니, 관찰사가 겸한 병마·수군절도사 이외의 병마·수군절도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38) 도순찰사(都巡察使) : 순영(巡營)은 대개 감영(監營)과 일치하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관찰사가 순찰사(巡察使)를 겸직하며, 관찰사 또는 감사(監司)의 별칭으로 순찰사라고도 한다. 그러나 전시 기타 사변시(事變時)에는 군무(軍務)를 띠고 지방에 파견되는 중앙의 고급관료로서 정1품은 도체찰사(都體察使), 종1품 이하 정2품까지의 관료이면 도순찰사(都巡察使)라 하고, 종2품일 때 순찰사(巡察使)라 한다. 전라도 관찰사는 종2품직이나 서유구는 이미 정2품의 이조 판서와 대제학 등의 벼슬을 지냈으므로 도순찰사가 된 것이다.
- 39) 전주 부윤(全州府尹) : 조선시대 ‘전주부’를 다스리던 최고위 관직으로, 지금의 전주 시장 격이다. 종2품의 문관이 임명되며, 처음으로 기용된 인물은 유구(柳珣)이다. 태조1년(1392) 8월 당시에는 ‘완산부(完山府)’였기 때문에 ‘완산 부윤’으로 임명되었다. 이후 ‘전주부’로 이름이 바뀐 것은 태종3년(1403)이었으나, 11년 뒤인 태종14년(1414)에서야 실록에 ‘전주 부윤’이 처음으로 등장한다.
- 40) 첨유(檐帷)에서……풍도이고 : 첨유는 신분이 높은 자가 타는 수레로, 관찰사가 수레를 타고 부임하는 과정을 말한다. 남비(攬轡)는 남비정청(攬轡澄清)의 준말로, 처음 부임하면서 난정(亂政)을 쇠신하여 세상을 맑게 하려는 뜻을 품는 것을 말한다. 후한(後漢) 범방(范滂)이 기주(冀州)의 청조사(請詔使)로 안찰(按察)하러 떠날 때, 수레에 올라 고삐를 잡음에 개연히 천하를 맑힐 뜻이 솟구쳐 올랐다.[登車攬轡, 慨然有澄清天下之志.]는 고사가 전한다.(『後漢書 黨錮傳 范滂』)
- 41) 당발(棠芟)에서……것 : 당발은 감당나무 아래에 있는 초막이라는 뜻으로, 주나라 때 소공(召公)이 감당나무 아래에서 펼친 어진 정사를 말하는데, 흔히 감사의 은혜로운 정사를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시경』 「감당(甘棠)」에 “무성한 감당나무를 자르지 말고 베지도 말라. 소백이 초막으로 삼았던 곳이다.[蔽芾甘棠, 勿剪勿敗, 召伯所芟.]” 하였다. 노면(露冕)은 후한(後漢)의 곽하(郭賀)가 형주 자사(荊州刺史)가 되어 정치를 잘하였으므로 명제(明帝)가 특히 표상하여 삼공(三公)의 옷을 주고 부내(部內)에 다닐 적에 수레의 장막을 걷고 면류관을 드러내어 백성들이 보게 한 데서 유래한 말이다.
- 42) 출척(黜陟) : 관리로서 공이 있는 사람을 승진시키고 공이 없는 사람을 강등 또는 파면하는 것. 관찰사는 매년 6월 15일과 12월 15일에 수령들의 근무 성적을 고사(考査)하여 등급을 정해서 중앙에 보고하였는데, 그것을 포핍(褒貶)이라 하였다.

영각(鈴閣)<sup>43</sup>을 더욱 빛내며, 낭함(琅函 상소 또는 문서)으로 기거(起居 문안(問安))의 정성을 펴서 대궐이 멀지 않게 하라. 이런 것으로 교시하니, 의당 자세히 알지어다. <검교 대교(檢校待敎) 이금우(李肯愚)가 지어 올린다.>

同日. 到南門外, 依幕少憩, 祇受內賜臘藥、胡椒、弓矢. 知舊、親戚、門生來別, 午後離發, 渡鷺梁津, 夕抵始興三十里止宿, 縣監沈碩奎來見.

같은 날. 남문 밖에 이르러 임시막사에서 잠시 쉬고, 임금께서 내려주신 납약(臘藥)<sup>44</sup>과 호초(胡椒 후추)와 활과 화살을 공경히 받았다. 친구와 친척들과 문생들이 와서 전별(餞別)을 하였다. 오후에 길을 떠나 노량진을 건너 저녁에 시흥(始興) 30리에 이르러 머물러 묵을 때 현감 심석규(沈碩奎)<sup>45</sup>가 와서 보았다.

十一日. 早發, 午憩華城五十里, 留守徐俊輔上京, 判官朴鎬壽來見. 午後離發, 夕抵振威五十里止宿, 縣令李儒勝來見.

11일. 아침에 일찍 출발하여 낮에 화성 50리에서 쉬었는데, 화성 유수(華城留守) 대감 서준보(徐俊輔)<sup>46</sup>는 상경했기에 판관(判官) 박호수(朴鎬壽)<sup>47</sup>가 와서 보았다. 오후에 떠나 저녁에 진위 50리에 이르러 머물러 잘 때 현령 이유승(李儒勝)이 와서 보았다.

十二日. 早發, 午憩成歡五十里, 察訪李旭馨來見. 午後離發, 夕抵天安四十里止宿, 郡守

43) 영각(鈴閣) : 한림원 혹은 장수나 지방 장관이 집무하는 곳을 말한다. 여기서는 전라 감영을 가리킨다.

44) 납약(臘藥) : 내의원(內醫院)에서 납일(臘日)에 조제한 환약으로, 청심원(淸心元)·안신원(安神元)·소합원(蘇合元) 등인데, 연말(年末)에 임금이 가까운 신하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45) 심석규(沈碩奎) : 1785(정조9)~? 본관은 청송이며, 1825년(순조25) 을유(乙酉) 식년시(式年試)에서 진사시에 합격한 인물이다.

46) 서준보(徐俊輔) : 1770년(영조46)~1856년(철종). 본관은 대구(大丘), 자는 치수(稹秀), 호는 죽파(竹坡), 시호는 문정(文貞)이다. 대사간·강화부 유수(江華府留守)·수원부 유수(水原府留守)·이조·공조·형조의 판서 등을 지냈다. 1854년(철종5) 회방(回榜)을 맞아 철종으로부터 궤장(几杖)과 이등약(二等樂)을 하사받았고, 지사(知事)에서 판부사(判府事)로 특별 가자되어 기로소에 들어갔다. 글씨에 조예가 있었다.

47) 박호수(朴鎬壽) : 1798년(정조22)~1848년(헌종14). 본관은 반남(潘南), 자는 미경(美京)이다. 음사(蔭仕)로 영희전 참봉(永禧殿參奉)이 된 이래 내외직을 역임하고 벼슬이 나주 목사에 이르렀다. 그 뒤 유빈(綏嬪)이 대궐에 들어가자, 다시 동부승지가 되고, 이어 형조 참의에 임명되었다가 곧 경주 부윤에 제수되었으나 신병으로 부임하지 않았다.

鄭東萬來見.

12일. 아침에 일찍 출발하여 낮에 성환(成歡) 50리에서 쉬었는데, 찰방 이욱형(李旭馨)이 와서 보았다. 오후에 떠나 저녁에 천안 40리에 이르러 머물러 잘 때 군수 정동만(鄭東萬)이 와서 보았다.

十三日. 早發, 午憩廣亭五十里. 夕抵公州五十里止宿, 錦伯洪台義瑾、判官閔靖顯, 來見.

13일. 아침에 일찍 출발하여 낮에 광정(廣亭) 50리에서 쉬었다. 저녁에 공주 50리에 이르러 머물러 잘 때 충청도 관찰사 대감 홍희근(洪義瑾)<sup>48</sup>과 판관 민정현(閔靖顯)이 와서 보았다.

十四日. 朝以肩輿往見錦伯, 仍爲離發, 午憩魯城五十里, 縣監徐胤輔來見. 午後離發, 夕抵恩津三十里止宿, 縣監李衡秀以捧稅事, 出去海倉云.

14일. 아침에 견여(肩輿 가마)로 가서 충청도 관찰사를 보고 바로 떠나, 낮에 노성(魯城) 50리에서 쉬었는데, 현감 서윤보(徐胤輔)가 와서 보았다. 오후에 떠나 저녁에 은진 30리에 이르러 머물러 잤다. 현감 이형수(李衡秀)는 세금을 거둬들이는 일로 해창(海倉)에 나갔다고 한다.

十五日. 早發到礪山皇華亭, 捧道內各邑驛鎮公禮狀, 直詣客舍東大廳. 少憩待舊伯入府, 肩輿往東軒, 交龜仍卽, 封發到界狀啓.

【狀啓】謹啓爲傳受事. 前觀察使臣李奎鉉所受兼兵馬水軍節度使兵符右隻一, 五營將兵符左隻五, 各鎮管守令兵符左隻五十六, 各鎮浦兵符左隻二十五等, 本月十五日, 臣到界傳受爲白乎旆. 緣由謹具啓聞云云.

48) 홍희근(洪義瑾) : 1767년(영조43)~1845년(헌종11).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풍산(豊山), 자는 경회(景懷), 호는 만와(晩窩)이다. 1801년(순조1) 진사를 거쳐 1809년 별시문과에 갑과로 급제하여 대사간·호조 참판·관찰사를 역임하였다. 1817년 동지사(冬至使)의 서장관(書狀官)으로, 1829년에는 부사로 두 차례 청나라에 다녀왔다.

15일. 일찍 출발하여 여산 황화정(皇華亭)<sup>49</sup>에 도착하여 도내 각 읍 역진(驛鎭)<sup>50</sup>의 공예장(公禮狀)<sup>51</sup>을 받고 바로 객사 동쪽 대청으로 나갔다. 잠깐 쉬며 전임 관찰사가 부내에 들어오길 기다려 견여로 동헌에 가서 인수인계[交龜]<sup>52</sup>를 하고, 곧바로 도계(到界 경계에 도착함) 장계(狀啓)<sup>53</sup>를 봉하여 발송했다.

【장계】삼가 전하여 받은 일에 대하여 아립니다. 전임 관찰사 신 이규현(李奎鉉)<sup>54</sup>이 받은 검 병마수군절도사 병부 우척 1개, 오영장(五營將)병부 좌척 5개, 각 진영 수령 병부 좌척 56개, 각 진포 병부 좌척 25개 등은 4월 15일에 신이 임지에 도착하여 전하여 받았습니니다. 따라서 이러한 연유로 삼가 갖추어 아립니다.

同日. 午後還客舍坐起, 列邑守令、察訪延命, <礪山府使許嘯、全州判官李義平、長興府使鄭煥章、樂安郡守韓啓轍、益山郡守李能秀、臨陂縣令李宜翼、龍安縣監林貞鎮、雲峯縣監趙存奎、興陽縣監朴載寬、參禮察訪李敏實、槧樹察訪田裁五、靑巖察訪李東韻、景陽察訪安允中、碧沙察訪金取和、濟原察訪朴慶九、檢律金取鳴.> 使兵房裨將替受後, 諸守令察訪, 次第入見, 夕宿府軒.

같은 날. 오후에 객사로 돌아와 좌기(坐起)<sup>55</sup>하니 여러 읍의 수령과 찰방이 연명<sup>56</sup>하

49) 황화정(皇華亭) : 현재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에 있던 정자로, 전라도 신·구 감사가 교대하는 곳이다. 『호남읍지(湖南邑誌)』책11 「여산(礪山)」에, “황화정은 여산을 북쪽 10리에 있다.[皇華亭在邑北邊十里]” 했고, “황화정은 지금 황화대 북쪽 11리의 충청·전라 양 도의 경계로, 전라도 신·구 감사가 교대하는 곳이다.[皇華亭, 今皇華臺北十一里忠全兩道界, 本道新舊監司, 交龜之所.]” 하였다.

50) 역진(驛鎭) : 역참(驛站)에 있는 요해지로 호남에 37읍의 역진을 말한다.

51) 공예장(公禮狀) : 공장(公狀)과 예장(禮狀)을 말한다. 공장은 수령(守令)이나 찰방(察訪)이 감사(監司)·수사(水使)를 공식(公式)으로 만날 때 내던 관직명(官職名)을 적어서 내는 편지(便紙)이고, 예장은 사례(謝禮)하는 편지(便紙)이다.

52) 인수인계 : 원문의 ‘교귀(交龜)’는 감사(監司)·병사(兵使)·수사(水使)가 바뀔 때에 부신(符信)을 주고 받고 하던 일로, 부신에 거북이가 새겨져 있는데서 유래하였다.

53) 장계(狀啓) : 관찰사(觀察使)·병사(兵使)·수사(水使) 등 왕명을 받들고 외방(外方)에 있는 신하가 그 지역의 중요한 일을 국왕에게 보고하거나 청하는 문서이다. 이러한 문서는 관찰사료에는 장계로 되어 있으나, 문집에 전재(轉載)되어 있는 것은 대개 서장(書狀)으로 되어 있다. 장계는 뒤에서부터 접어 합금(合襟)된 우편에 ‘승정원 개탁(承政院開拓)’이라 쓰고 아래쪽에 ‘신(押)근봉(臣押謹封)’이라 쓴다. 장계는 승정원에서 열어보고 담당 승지가 이를 왕에게 올려서 왕의 재가(裁可)를 받은 후 계하인(啓下印)을 찍고, 그 장계의 내용과 관계있는 관서에 내리게 된다.(최승희, 앞의 책, 164쪽.)

54) 이규현(李奎鉉) : 1777(정조1)~1844(헌종10). 본관은 용인(龍仁). 자는 노경(魯卿), 호는 관백헌(觀白軒)이다. 1813년 증광문과에 급제하여 승문원을 거쳐 성균관 전적·홍문관 부수찬·응교·사간원 정언·사간원 사간 등을 지냈다. 1832년 12월 전라도 관찰사로 도임하여 3개월 재임하고 1833년 3월 이임하였다.

55) 좌기(坐起) : 관청에 출근하여 일을 보는 것을 말한다.

56) 연명(延命) : 감사(監司)나 수령(守令)이 부임(赴任)할 때, 궐패(闕牌) 앞에서 임금의 명령(命令)을 알리는 의식(儀式), 또는 고을의 수령이 감사(監司)를 처음 가서 보는 의식(儀式)을 말하는데 여기서

니, <여산 부사(礪山府使) 허속(許肅)·전주 판관(全州判官) 이희평(李羲平)·장흥 부사(長興府使) 정환장(鄭煥章)·낙안 군수(樂安郡守) 한계철(韓啓轍)·익산 군수(益山郡守) 이능수(李能秀)·임피 현령(臨陂縣令) 이의익(李宜翼)·용안 현감(龍安縣監) 임정진(林貞鎭)·운봉 현감(雲峯縣監) 조존규(趙存奎)·흥양 현감(興陽縣監) 박재관(朴載寬)·삼례 찰방(參禮察訪) 이민실(李敏實)·오수 찰방(鰲樹察訪) 전재오(田裁五)·청엄 찰방(靑嚴察訪) 이동운(李東韻)·경양 찰방(景陽察訪) 안운중(安允中)·벽사 찰방(碧沙察訪) 김취화(金取和)·제원 찰방(濟原察訪) 박경구(朴慶九)·검률(檢律) 김취명(金取鳴)> 병방(兵房) 비장(裨將)으로 하여금 대신 받게 한 뒤에 모든 수령과 찰방이 차례로 입견하였다. 저녁에 여산부의 헌(軒)에서 잤다.

十六日. 朝礪山府使、益山郡守、臨陂縣令、龍安縣監入見，仍爲辭去. 朝食後離發，午憩參禮驛，全州判官及本驛察訪入見. 午後離發到全州府五里，中軍黃在元、中營將李惟穆，具甲冑領率大旗幟迎候. 到南門外，以肩輿直詣肇慶廟改服所，具公服詣廟庭，肅拜奉審，仍詣慶基殿，肅拜奉審後，入宣化堂. 中軍中營將及列邑守宰延命，<光州牧使趙雲明、綾州牧使李廣度、順天府使洪重燮、茂朱府使李光承、古阜郡守金裕淳、錦山郡守李魯榮、珍山郡守李奎憲、寶城郡守俞章煥、靈巖郡守李應謙、求禮縣監申鍾命、海南縣監白龜鎭、務安縣監柳榮輔、泰仁縣監沈能淑、同福縣監李源吉、和順縣監徐承淳、南固別將金基中.> 使兵房裨將，替受後，諸守令次第入見.

16일. 아침에 여산 부사·익산 군수·임피 현령·용안 현감이 입견(接見)하고 그대로 하직하고 갔다. 아침 식사 후에 여산부에서 출발하여 낮에 삼례역에서 쉬 때 전주 판관과 삼례역 찰방이 입견하였다. 오후에 출발하여 전주부 오리정에 도착하니 중군(中軍)<sup>57)</sup> 황재원(黃在元)과 중영장(中營將)<sup>58)</sup> 이유목(李惟穆)이 갑옷과 투구를 갖추고 대기치(大旗幟)<sup>59)</sup>를 이끌고 영접하였다. 남문밖에 이르러 견여로 바로 조경묘 개복소(改服所)로 가서 공복을 갖추고 묘정으로 가서 숙배를 드리고 봉심(奉審)<sup>60)</sup>하였다.

는 후자의 뜻이다.

57) 중군(中軍) : 조선시대 감영(監營)의 중군(中軍)은 각 군영(軍營)에서 대장이나 절도사, 통제사 등의 밑에서 군대를 통할하던 장수로, 절제부사(節制副使)를 이르기도 한다.

58) 중영장(中營將) : 주장(主將)이 있는 군영(軍營)의 장수(將帥)로, 곧 중군의 영문(營門)이나 진영(鎭營)의 장수(將帥)이다.

59) 대기치(大旗幟) : 조선 시대에 진중에서 방위(方位)를 표시(表示)하던 깃발이다. 청도기(淸道旗)·문기(門旗)·각기(角旗)·금군 별장 인기(禁軍別將認旗)·금군청(禁軍廳) 번기(番旗)·대오방기(大五方旗)·고초기(高招旗)·신기(神旗)·표미기(豹尾旗) 따위인데, 각 영문(營門)마다 기치의 수와 면이 달랐다.

60) 봉심(奉審) : 왕명을 받들어 능소(陵所)나 묘우(廟宇)를 살피는 일을 말한다.

바로 경기전으로 가서 숙배를 드리고 봉심한 뒤에 선화당으로 들어왔다. 중군·중영장과 여러 읍의 수령들이 연명(延命)하니, <광주 목사(光州牧使) 조운명(趙雲明)·능주(綾州) 목사 이광도(李廣度)·순천 부사(順天府使) 홍중섭(洪重燮)·무주(茂朱) 부사 이광승(李光承)·고부(古阜) 군수(郡守) 김유순(金裕淳)·금산(錦山) 군수 이로영(李魯榮)·진산(珍山) 군수 이규헌(李奎憲)·보성(寶城) 군수 유장환(兪章煥)·영암(靈巖) 군수 이응겸(李應謙)·구례(求禮) 현감 신종명(申鍾命)·해남(海南) 현감 백귀진(白龜鎭)·무안(務安) 현감 유영보(柳榮輔)·태인(泰仁) 현감 심능숙(沈能淑)·동복(同福) 현감 이원길(李源吉)·화순(和順) 현감 서승순(徐承淳)·남고별장(南固別將) 김기중(金基中)> 병방(兵房) 비장(裨將)이 대신 받게 한 뒤에 여러 수령이 차례로 입견하였다.

同日. 封發到任狀啓.

【狀啓】 臣於今四月初十日辭朝，十六日到全州府任所云云.

같은 날. 임소에 도착한 장계를 써서 봉하여 발송했다.

【장계】 신은 이번 달 4월 10일에 하직인사하고 16일에 전주부 임소에 도착하였습니다…….

十七日. 諸守令、察訪，次第入見，仍爲辭去. 古羣山僉使金寬善、威鳳別將李昌櫜，延命後入謁.

17일. 여러 수령과 찰방이 차례로 입견하고 그대로 하직하고 갔다. 고군산 첨사(古羣山僉使) 김관선(金寬善)과 위봉 별장(威鳳別將) 이창억(李昌櫜)이 연명(延命)한 뒤에 입견하였다.

同日. 板輿行次上衙. 十一日自京離發，十六日宿參禮驛，是日抵府. 食後以肩輿，出往五里長林外，迎候陪還營衙. 內衙前月失火，姑爲推移觀風閣，燕申堂爲內衙、祠宇，奉安于燕申堂超然樓. 伊夜和順縣監入見.

같은 날. 어머니를 모신 수레<sup>61)</sup>가 감영으로 행차하였다. 11일에 서울에서 떠나 16일

61) 수레 : 원문의 판여(板輿)는 부들방석을 깔 노인용 수레로서 여기서는 어머니를 모신 수레이다.

삼례역에 머물렀다가 오늘 전주부에 이르렀다. 밥을 먹은 뒤에 견여로 5리에 있는 장림(長林)밖으로 나가 맞이하여 모시고 감영 관아에 돌아왔다. 내아(內衙)가 지난 달 화재로 소실되었기 때문에 우선 관풍각(觀風閣)<sup>62)</sup>으로 옮기게 하였고, 연신당(燕申堂)을 내아(內衙)와 사우(祠宇)로 삼아 연신당 초연루(超然樓)에 봉안(奉安)하였다. 이날 밤 화순 현감이 입견하였다.

同日. 題萬頃縣檢案.<被告金福孫, 奸淫李明云妻申召史, 因此起鬧, 與明云相關, 申召史將欲赴水溺死, 福孫勸送朴子先迫往援溺, 則子先拯救申女後, 因渠醉跌, 仍爲溺死事.>

【題】始初鬪鬩, 不關渠, 事末梢溺死. 又因醉跌, 詞證俱備, 更無疑眩. 屍親雪寃之訴, 不過痛愕之極, 推諉無處之致情則可悲, 跡無可疑是如乎. 既不具格檢驗, 何爲灰封屍身是隱喻? 舉行刑吏爲先別附過, 屍體卽爲出給屍親, 俾卽埋葬是遣. 被告人金福孫, 和奸有夫女之罪, 旣已因事現發, 嚴刑一次, 捧遲晚報來. 申召史<sup>63)</sup>嚴刑一次, 放送爲<sup>64)</sup>跡, 看證金一成<sup>64)</sup>段, 揆以獄情, 雖無更問之端, 雜技賭錢, 自有當律, 並嚴杖四十度, 放送爲<sup>64)</sup>跡, 其餘各人等<sup>64)</sup>段置, 亦卽放送<sup>64)</sup>向事.

같은 날. 만경현 검안(檢案)을 데김[題]<sup>63)</sup>하였다.<피고 김복손(金福孫)은 이명운(李明云)의 처 신조이[申召史]<sup>64)</sup>와 간음(奸淫)하였다. 이로 인하여 소란을 일으키고 이명운과 함께 서로 싸우니, 신조이가 물로 달려가 빠져 죽으려하였다. 김복손이 박자선(朴子先)을 권유해 보내 뒤쫓

62) 관풍각(觀風閣) : 1840년경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4폭병풍전주지도』에 선화당과 관풍각, 응청당, 내아, 연신당의 위치 등이 나오는데, 내삼문을 들어서면 선화당이 있고, 선화당 동쪽으로 관풍각이 선화당보다 조금 앞에 자리한 누각으로 나온다. 전라감영도 중에서 가장 후대의 자료인 『전라도 관찰부관아도』(1894.3)에 의하면, 관풍각은 관찰사 부친이 거처하는 곳으로 선화당 북쪽에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홍승재는 전주시의 ‘전라 감영 복원 기본계획 토론’의 ‘전라 감영의 시대적 변화와 건물의 구성’(2007)에서 “이전의 자료들과 비교하면 동쪽을 북쪽으로 오기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밝혔다.

63) 데김[題] : 제사(題辭)·제음(題音)과 같은 뜻으로, 제음(題音)은 ‘데김’ 또는 ‘제김’으로도 읽으며, 각 고을에서 올린 내용이나 민원인이 제출한 소장(訴狀)·청원서(請願書) 그리고 진정서(陳情書) 종류인 소지(所志)·발괄[白括]·등장(等狀)·상서(上書)·원정(原情) 등의 왼쪽 하단 여백에 관에서 써준 판결문(判決文)·처결문(處決文)을 말한다.(최승희, 앞의 책, 278쪽.) 『완영일록』의 경우, 치사사건의 검안(檢案) 또는 사안(查案)을 검토한 후의 관찰사 판결문인 데김의 첫머리 투식구(套式句)는, 사안(查案)의 처음은 “查案捧上是在果”라고 되어 있고, 검안(檢案)의 경우에는 “屍狀捧上是在果”라고 쓰고 있다. 데김[題]이 처음 보인 것은 4월 17일부터이나, 18일 데김[題]까지는 투식구가 보이지 않고, 데김[題]의 투식구가 보인 것은 4월 21일부터이다.

64) 신조이[申召史] : 申召史의 召史는 이두로 ‘조이’ 또는 ‘소사’로 읽는데, 이하 조이로 읽기로 한다. 성(姓) 아래에 붙여 신라·고려 시대에는 양민(良民)의 처의 총칭이었고 조선 시대에는 성(姓) 아래 붙여 홀어머니라는 뜻으로 쓰였다.

아 가서 빠지는 것을 구원하게 하니 박자선은 신씨를 건져 구원한 뒤에 자신이 취하여 넘어져 의사하게 된 일.>

【데깁】 애초 싸움은 박자선과 관계가 없고, 일 말미에 빠져 죽은 것은 또한 취하여 넘어진 때문으로 증언이 구비되어 다시 의혹될 것이 없다. 그러나 시친(屍親)이 원통함을 씻어달라는 판결을 구함은 지극히 고통스럽고 놀라 책임을 전가할 데가 없었던 소치에 불과하니, 정으로는 가히 슬픈 일이나 행적은 의심할 것이 없다. 격식을 갖추어 검험(檢驗)<sup>65)</sup>하지 않았는데 어찌 시신을 석회로 봉하였는가? 거행한 형리는 우선 별도로 부과(附過)<sup>66)</sup>하고, 시체는 바로 시체의 가족에게 내주어 곧바로 매장하게 하라. 피고인 김복손이 유부녀와 화간(和奸)한 죄는 이미 스스로 일이 드러나 밝혀진 것으로 한 차례 엄중하게 형벌을 내리고 자복을 받아 [捧遲晚] 보고하라. 신조이 일도 한 차례 엄중하게 형벌을 내리고 놓아 보내고 증인 김일성(金一成)은 옥사의 정리로써 헤아려 비록 다시 물을 단서가 없을지라도 투전 같은 돈 놀음은 자연 법률로 다스림이 마땅하니 아울러 엄중하게 장형 40대를 치고 놓아 보내며 그 나머지 각 사람들도 또한 바로 내 보내라.

十八日. 朝詣客舍, 行望闕禮. 中軍、中營將、判官、和順縣監、古羣山僉使、威鳳別將、檢律, 同爲進參禮畢後, 仍詣鄉校, 謁聖廟、啓聖祠, 奉審後, 出依幕, 判官入見. 以肩輿還營軒. 和順縣監、古羣山僉使、威鳳別將入見, 仍爲辭去. 判官、中營將入見. 長城府使徐有民、鎮安縣監金克善, 延命後入見.

18일. 아침에 객사에 도착하여 망궐례(望闕禮)<sup>67)</sup>를 행하였다. 중군·중영장·판관·화순 현감·고군산 첨사·위봉 별장·검률이 함께 진참(進參)하고 예를 마친 뒤에 그 대로 향교에 도착하여 성묘(聖廟) 공자를 모신 사당)와 계성사(啓聖祠)<sup>68)</sup>를 알현하고 봉

65) 검험(檢驗) : 살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 형조(刑曹)의 검시관(檢官)이 현장에서 피해자의 시체를 검사하고 사망 원인을 밝혀 검안서를 쓰던 일을 말한다. 『심리록(審理錄)』의 응행격식(應行格式)에 의하면, 형조는 시친(屍親) 피살자의 친족)의 진정이나 혹은 해부(該部 서울의 5부)의 문첩(文牒)에 의거하여, 한편으로는 감결하여 검시(檢屍)를 시행하고, 한편으로는 포교(捕校)를 보내 본래 범인을 체포하여 수갑과 차꼬를 채우고 칼을 씌워 죄수를 구금하여 검시소로 압송한다.

66) 부과(附過) : 관원(官員)·군병이 공무상 과실(過失)이 있을 때 그 과오를 별지(別紙)에 써서 정안(政案)에 붙여두던 일로, 6월과 12월의 도목(都目) 때 빙거의 자료로 삼았다.

67) 망궐례(望闕禮) : 음력(陰曆) 초하루와 보름에 각 지방(地方)의 수령이 궐패(闕牌)에 절하던 의식을 말한다.

68) 계성사(啓聖祠) : 문묘(文廟) 안에 있는 사당(祠堂)으로 공자(孔子)·안자(顔子)·자사(子思)·증자(曾子)·



심(奉審)한 뒤에 의막에서 나와 판관이 입견하였다. 견여(肩輿)로 감영으로 돌아왔다. 화순 현감·고군산 첨사·위봉 별장이 입견하고 그대로 하직하고 갔다. 판관과 중영장이 입견하였다. 장성부사 서유민(徐有民)과 진안 현감 김극선(金克善)이 연명(延命)한 뒤에 입견하였다.

同日. 監封潭陽府所封肇慶廟、宗廟，薦新竹筍.

같은 날. 담양부에서 올린 조경묘(肇慶廟)와 종묘(宗廟)에 천신(薦新)<sup>69</sup>할 죽순을 감봉(監封)<sup>70</sup>하였다.

同日. 題南原府檢案.<被告金以哲，觀市歸路，到于陽地村酒幕，與朴以孫，互相戲謔矣。以孫，忽爲發怒，扶執以哲之衣襟，以喪杖打，以哲之額上肉綻血流，一場滾鬪之際，在傍之吳小南，盡力挽解，故買酒飲之，各自歸家矣。歸家後，仍爲得病，第十一日致死事，查官南原府使李取在.>

【題】吳小南之致死，非打伊病，詞證俱備分叱不驗，雖以屍親之招觀之，亦可見，本事之初無疑眩，不爲掘檢，誠爲得當是在果，金以哲段打非要害是乃，不可全然無罪是遣，朴以孫、丁順孫段，緣渠饒舌致此紛拏，並嚴刑一次，放送爲旆。其餘保授，各人等段，別無更問之端，一併放送尙事。

같은 날. 남원부 검안을 데김하였다.<피고 김이철(金以哲)은 시장을 보고 돌아가는 길에 양지촌 주막에 도착하여 박이손(朴以孫)과 더불어 서로 농지거리를 하였다. 이손이 갑자기 화를 내게 되어 이철의 옷깃을 붙들어 잡고서 상장(喪杖)으로 때렸다. 이철의 이마 위 살이 터져서 피를 흘리며 한바탕 싸우고 있을 즈음, 곁에 있던 오소남(吳小南)이 힘을 다해 만류하여 떼어놓자 술을 사서 마시고 각자 집으로 돌아왔다. 귀가 한 뒤에 바로 병을 얻어 오소남이 11일 만에 죽음에 이르게 된 일. 조사관 남원 부사 이취재(李取在).>

【데김】오소남이 죽음에 이른 것은 그를 때려서 병든 것이 아니라는 증언이 구비되었을 뿐 아니라, 비록 시친의 공초(供招 진술서)로 보더라도 또한 알 수 있으니, 본 일은 애초 의혹될 것이 없어 묻었던 시체를 파내어 검사하지 아니함이 진실로 마땅하다. 김이철이 때린 것은 몸의 중요한 곳이 아니지만, 전연 죄가 없다

맹자(孟子)의 아버지를 모신 사당이다.

69) 천신(薦新) : 그 해에 새로 나는 과일이나 농산물을 먼저 신위(神位)에 올리는 일을 말한다.

70) 감봉(監封) : 내용(內容)을 감사(監査)하여 봉하고 도장(圖章)을 찍는 일이다.

고 할 수 없고, 박이손과 정순손(丁順孫)의 쓸데없이 많은 말로 인하여 이러한 분란에 이르렀으니, 잡아다 모두 한 차례 엄중히 형벌을 내리고 석방하라. 그 나머지는 보수(保授)<sup>71)</sup> 처리하고, 각 사람들은 별도로 다시 물을 단서가 없으니 모두 아울러 놓아 보낼 일.

十九日. 鎭安縣監入見, 仍爲辭去. 長城府使入見, 靈光郡守韓義運, 延命後入見.

19일. 진안 현감이 입견하고 그대로 하직하고 갔다. 장성 부사가 입견하고, 영광 군수 한의운(韓義運)이 연명한 뒤에 입견하였다.

二十日. 長城府使、靈光郡守入見, 仍爲辭去. 咸平縣監金箕祖, 延命後入見.

20일. 장성 부사와 영광 군수가 입견하고 그대로 하직하고 갔다. 함평 현감 김기조(金箕祖)가 연명한 뒤에 입견하였다.

二十一日. 咸平縣監入見, 仍爲辭去. 南固別將金基中入謁, 金溝縣令金錫喜、萬頃縣令尹守澈, 延命後入見.

21일. 함평 현감이 입견하고 그대로 하직하고 갔다. 남고 별장 김기중(金基中)이 입견하고, 금구 현령 김석희(金錫喜)와 만경 현령 윤수철(尹守澈)이 연명한 뒤에 입견하였다.

同日. 題興德縣檢案.<正犯李甲宗, 酒肆爭鬪之際, 足踢申錫峻左肋, 第十二日致死事. 初檢官興德縣監金命嫻, 覆檢官高敞縣監李鍾應.>

【題】屍帳捧上是在果. 爭鬪之鬪, 跳起無明業火, 乘醉之毆, 不擇緊慢分野. 始由睚眦之憤, 終致殺越之變. 此固必至之勢, 抑亦難道之孽是乃. 腮頰磨擦, 本非要害之處, 頸項青黑未必致死之因是隱則, 申錫峻致命根因, 惟在脇肋間被踢一欸是如乎, 口開手散, 既合拳手足踢之法文, 臂築足踢, 又不啻詞證之俱備, 此獄實因更無疑眩是矣. 合面之黑黯血瘡, 仰面之青黯毒氣, 皆在左肋是隱則, 致死根因, 明在此處是乃, 兇身廢臂, 既在左邊, 則對面撞築, 必在致死人右肋是去乙, 今乃匪右伊左分叱不喻,

71) 보수(保授) : 보석(保釋)된 사람이나 도망갈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근친(近親)이나 친구가 책임지고 맡는 것을 말한다.

左肋傷痕之圓徑，幾至一尺一寸之長，則其爲足踢，又不啻較然，明甚是如乎，三尺至嚴，何以免償命之律是乙喻？敢生死中求生之計，一招再招抵賴不服，末乃以服藥治瘡等說，欲爲眩惑獄情之計者，究厥情狀，尤極痛惡。覆檢官，仍定同推官爲去乎，約日會推正犯李甲宗身乙，嚴加刑訊，取招牒報爲迹。省證吳成七段，渠以里中長老，隨參年少酒席，已非操身本色，而解紛未幾，遽先歸家，罔念被纓之義，顯有謀避之跡，嚴杖三十度，懲礪放送爲迹。屍親申在元段，冤憤所激，昧法移屍，愚迷所致，不足深誅。其餘各人等段置，別無更問之端，一體放送爲迹，屍體出給屍親，使之埋瘞爲迹，初檢脉錄中，只云‘仰面胸膛黃色柔軟，合面項頸青黑柔軟’，覆檢則云‘胸膛右邊有皮脫，一處圍圓長九寸，項頸有青黑色，一處圍圓長六寸五分’，此等傷痕，雖非緊證是乃，揆以檢體，極涉踈忽是遣，後肋傷處，係是此獄之關捩，而分寸懸錄，初覆相左，夏月屍身，無怪其日久變動，而豈容如是違錯是乙喻？兩檢刑吏，並只別附過爲去乎，初檢官良中枚移，施行向事。

같은 날. 흥덕현 검안을 데김하였다.<정범(正犯)<sup>72)</sup> 이갑종(李甲宗)이 주점에서 문벌(門閥)을 다룰 때 신석준(申錫峻)의 좌측 늑골을 발로 차서 12일째에 죽은 일. 초검시관은 흥덕현감 김명혁(金命爌), 복검시관<sup>73)</sup>은 고창 현감 이종응(李鍾應).>

【데김】시장(屍帳)<sup>74)</sup>을 받아보았다. 문벌을 다루는 싸움은 악업에서 일어났고, 술에 취한 구타는 중요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가리지 못한다. 처음 눈을 흘기는 분기로 말미암아 끝내 살인의 번고에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기어이 일어난 상황은 또한 피하기 어려운 재앙이 되었다. 그러나 뺨을 때린 것은 본래 치명적인 것이 아니고 목이 검푸른 것도 반드시 죽음에 이르는 원인이 아니니, 신석준(申錫峻)의 목숨이 다한 근본 원인은 오직 갈빗대 사이를 발로 차인 한 조목에 있다. 입이 벌어져 있고 손이 퍼진 것은 이미 주먹과 발로 찔다는 법 조항과 딱 맞고, 팔꿈치로 치고 발로 찬 것은 또한 증언이 구비되었으니, 이와 같은 옥사의 실인은 다시 의혹될 것이 없다.

72) 정범(正犯) : 주범(主犯)과 같은 말로 형법에서 자기 의사에 따라 범죄를 실제로 저지른 사람을 이르는바, 단독 정범과 공동 정범으로 크게 나뉜다.

73) 복검시관(覆檢尸官) : 두 번째로 검시(檢屍)하는 관원이다. 살인 사건이 났을 때 『무원록(無冤錄)』에 의거하여 시체를 검안(檢案)하는데, 첫번의 검안인 초검(初檢)과 복검(覆檢)이 차이가 없으면 이것으로 판결하고, 차이가 있으면 삼검(三檢)하여 초검·복검·삼검의 결과를 종합하여 처리한다.

74) 시장(屍帳) : 시체의 여러 상황을 조사해 적은 장부로 시단(屍單)이라고도 한다.

사체(死體) 뒷면의 검은 피멍과 앞면의 검푸른 독기는 모두 좌측 늑골에 있으니, 치사(致死)의 근본원인이 분명히 이곳에 있다. 그러나 가해자의 부러진 팔목이 좌측이니, 얼굴을 마주하고 때릴 경우 반드시 죽은 사람의 오른쪽 늑골이어야 하거늘, 지금은 오히려 오른쪽이 아니고 그 사람 좌측에 있을 뿐만 아니라 좌측 늑골의 상흔의 둥근 직경이 거의 1자 1척의 길이에 이르니, 오른쪽으로 차인 것이 흰하게 드러날 뿐만이 아니고 매우 분명하다. 법이 지엄하니 어떻게 살인자를 죽인다는 법을 면할 수 있겠는가. 죽는 와중에 감히 살고자 꾀를 내어 처음 공초와 두 번째 진술을 거절하고 버티며 자복하지 않았고, 마지막에는 약을 먹고 황달을 치료한다는 등의 말로 옥사의 정상(情狀)을 현혹시키려 했으니, 그 정황을 생각해 보면 더욱 지극히 통탄할 만큼 나쁘다.

복검시관을 그대로 동추관(同推官)<sup>75)</sup>으로 정하니, 날을 정해 정범 이갑종(李甲宗)의 몸을 합동으로 추고(推考)할 때 엄하게 형신(刑訊 고문)을 가하여 진술을 받아 첩보(牒報)하라. 증인 오성칠(吳成七)의 경우, 마을 장로(長老)로 연소자들의 술자리에 참석하여 이미 본디의 면목대로 몸가짐을 못하였고, 분쟁이 해결되고 얼마 되지 않아 갑자기 먼저 집에 돌아갔다. ‘싸움은 말려야 한다<sup>76)</sup>’는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자리를 피하려는 정황이 있었음이 드러났으니, 엄하게 장형 30대를 치고 징계(懲戒)하고 권면(勸勉)하여 석방하라. 시친(屍親) 신재원(申在元)의 경우는 원통하고 분한 것에 격앙(激昂)되고, 법에 몽매하여 시신을 옮긴 것은 우매한 소치(所致)이니, 무겁게 형벌할 수 없다. 그 나머지 각 사람들도 별도로 다시 물을 단서가 없으니 모두 놓아 보내고, 시체는 시친에게 내주어 그들로 하여금 매장하게 하라.

처음 검안한 검시(檢屍)기록에는 단지 ‘몸의 앞가슴이 부풀어 오르고 황색으로 연하게 무르고 등의 목덜미는 흑청색으로 연하게 물렀다’ 했고, 복검에서는 ‘가슴이 부풀어 오르고 오른쪽은 살가죽이 벗겨져 한 곳의 둥글게 둘러싼 길이가 9치가 있으며, 목덜미는 흑청색으로 한곳의 둘레는 길이가 6치 5푼이다’ 하였다. 이 같

75) 동추관(同推官) : 관원이 합동으로 추문(推問)하는 것을 동추(同推)라 하는데, 지방에 있어서의 사형에 해당하는 범인은 관찰사가 인접 수령을 동추관에 임명하여 관할 지방의 수령과 연석(連席)하여 형추(刑推)를 행하는 것을 말한다.

76) 싸움은 말려야 한다 : 원문의 ‘피영지의(被纓之義)’는 일을 구제하는 데 급급하여 다른 것을 돌볼 겨를이 없음을 뜻한다. 『맹자(孟子)』 「이루 하(離婁下)」에 “지금 한집에 같이 사는 사람이 싸운다면, 비록 머리를 풀어 흘뜨린 채 갓끈만 매고서 급히 달려가 말려도 괜찮다.[今有同室之人鬪者, 救之, 雖被髮纓冠而救之, 可也.]” 하였다.

은 상흔은 비록 긴요한 증거가 아니라 할지라도 검안한 사체를 살펴보면 지극히 소홀한 것이고, 몸 뒷면 늑골의 상처는 이번 옥사의 중요한 점인데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 장부에 적은 기록이 초검과 복검시관이 서로 다르다. 여름 시신은 날이 오래되면 변하는 것이 괴이할 것이 없으나, 어찌 이와 같이 어긋남을 용납할 수 있겠는가. 초검 및 복검을 행한 형리는 모두 각별히 부과(附過)하니 초검시관에게 공문을 보내어 시행할 일.

二十二日. 金溝縣令、萬頃縣令入見, 仍爲辭去.

22일. 금구 현령과 만경 현령이 입견하고 그대로 하직하고 갔다.

同日. 以牛酒松三禁, 發甘列邑.

【甘結】 牛酒松三禁, 卽國之大政, 常時禁飭, 何等申嚴, 而挽近紀綱蕩然, 殆無防限, 此營門之常所痛歎者也. 第以牛禁言之, 務盡地力之道, 莫先於孳養牛畜, 而村里之間, 肆行屠殺, 場市之上, 狼藉賣買, 歲加月增, 孳產漸縮, 貧民下戶, 雖欲借賞, 其勢末由. 于耜之日, 翻耕違期, 移秧之節, 趁澤失時, 甚至有終年廢農之類, 而奸細輩, 則恬不顧惜, 恣意牟利, 言念及此, 良覺寒心. 大抵令之不行, 法之不立, 固由於積漸姑息之故, 而以列邑言之, 苟思所以重國法而務農政, 遵營飭而懲民頑, 豈可一向沁泄若是乎? 斷自今日, 嚴立科條, 期使無犯, 犯必勿貸. 使愚頑之民, 知有一分法網, 使耕農之本, 毋至日就耗縮爲<sub>痧</sub>. 且聞各邑場市, 以庖爲名, 而公行屠殺者, 多或爲五六處, 少不減二三處云. 官廚設庖, 已是法外, 場市販賣, 尤甚驚駭. 此亦別加檢飭, 一切痛禁爲<sub>乎</sub>矣, 如或因循拋置, 至及廉探, 則次知監色與私屠者, 斷當施以刑配之典, 另行譏察, 毋或有踈漏生頤之弊爲<sub>痧</sub>. 酒禁<sub>戾</sub>才因朝飭發甘<sub>是在</sub>果. 麴蘖之爲害, 非但止於糜穀而已. 近來殺越之式月斯生, 苟究根因, 乘醉鬪鬪者, 十居八九. 其所禁飭不容少忽, 毋論邑底與場市, 酗酒鬪鬪之漢, 到底摘發, 痛加禁斷爲<sub>乎</sub>矣, 小者自官懲治, 大者報營勸處, 以爲別般懲創之地爲<sub>痧</sub>. 以言乎松政, 則大而封山之守護, 小而私養之禁伐. 自來立法, 非不嚴密, 而斧斤日尋, 殆若無禁<sub>是如</sub>乎, 松非再蘖之木, 而一經斫伐, 根輒腐敗, 在在童濯, 處處汰落, 田畚之沙覆, 堤堰之潰決, 職由於此, 松禁之關係農政, 乃如是矣. 此莫非山直輩符同奸民, 捧賂亂斫之致, 苟能隨現嚴

禁，則寧或如是？此後殷，切勿如前玩愒，着意禁養爲有矣。今此三政之飭，亶出於申明舊制，期有實效之意，切勿視以例飭，惕念舉行爲旻。從當有別歧廉探之道，如是別飭之後，如或犯科，則不善檢飭之首吏鄉，斷當上使嚴處，責亦有所歸，除尋常，十分操束爲旻。將此甘辭，眞諺翻騰，詳細布諭於境內坊曲，俾無一民不聞犯科之弊爲旻。甘到日時，舉行形止，先卽馳報，宜當者。

같은 날. 소 잡는 일 · 술 빛는 일 · 소나무를 베는 일의 3가지를 금지하는 내용을 각 읍에 감결(甘結)<sup>77)</sup>을 발송하였다.

【감결】 소 잡는 일 · 술 빛는 일 · 소나무를 베는 일의 3가지를 금지하는 것은 곧 국가의 큰 정책으로 평소 매우 엄하게 단속하였다. 그런데도 근래에 기강이 방탕하여 거의 막을 방도가 없으니, 이는 감영(監營)이 항상 통탄하는 것이다. 가령 소 도축을 금하는 것으로 말한다면, 지력에 힘을 다하는 방도는 송아지를 번식시키고 소를 기르는 것보다 우선인 것이 없다. 그런데도 마을 간에 방자하게 도살을 행하고 시장에서는 매매가 어지럽게 이루어지니, 해가 가고 달이 갈수록 새끼 내는 것이 점점 줄어들어 가난한 백성인 하호(下戶)는 비록 소를 빌려 쓰려고 해도 빌릴 길이 없다. 그래서 밭가는 때엔 밭을 가는 기한을 놓치고, 모내는 계절엔 물을 대는 시기를 잃어, 심지어 한 해 농사를 망치는 부류도 있다. 간사한 무리들은 즐기며 애석한 정황을 돌아보지 않고 방자하게 부정한 이익만을 꾀하니, 생각이 여기에 미치면 진실로 한심하다.

대저 법령이 시행되지 못하고 법이 확립되지 못하는 것은 진실로 점점 임시방편적인 일을 쌓는 데서 말미암으니, 각 읍으로 말한다면 국법을 중히 여겨 농정에 힘쓰고 감영의 신칙을 좇아 어리석은 백성을 징계(懲戒)하기를 진실로 생각해야 하거늘, 어찌 한결같이 물이 스미듯 없어지는 것이 이와 같은가. 결단코 오늘부터 법률을 엄격하게 확립하여 어김이 없기를 기약하고, 여기는 자는 반드시 용서하지 말라. 어리석고 완악한 백성들은 사소한 것이라도 법령이 있음을 알게 하여, 농사를 경작하는 근본이 날마다 본래의 수량이 줄어드는 데로 나아가지 않게 하라.

또 들건대 각 읍의 시장에서는 푸줏간을 명분삼아서 공공연하게 도살을 행하는 것이 많게는 혹은 5~6곳이 되고 적게는 2~3곳 이상이라고 한다. 관청의 부역에 포

77) 감결(甘結) : 상급 관청에서 하급 관청으로 내리는 문서로, 명령, 지시의 내용이 주가 된다.(최승희, 앞의 책, 216쪽)

를 설치한 것은 이미 법을 벗어난 것이고, 시장에서 판매하는 것은 더욱 매우 놀랄 일이다. 이것 또한 따로 조사하고 타일러서 일절 금하되, 만일 흑시라도 하던 대로 내버려 두어서 결국 영탐(廉探)하는 데까지 이르게 한다면, 담당 감색(監色)<sup>78)</sup>과 사사로이 도살하는 자는 결단코 곤장을 치고서 귀양 보내는 법으로 다스려야 한다. 기찰(讞察)을 따로 행할 것이니, 흑시라도 찬찬하지 못하고 영성하여 달이 생기는 폐단이 있게 하지 말라.

술 빚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은 조정에서 단속한다는 것으로 막 감결하였다. 밀주의 피해는 단지 곡식을 소비하는 데에 그칠 뿐만이 아니다. 근래 살인이 다달이 더해가니<sup>79)</sup> 진실로 근본 원인을 규명하면 술기운으로 싸우는 경우가 10에 8~9이다. 술 빚는 것을 금지하고 단속하는 일을 조금도 소홀할 수 없으니, 읍내와 시장을 논하지 말고 술주정하고 싸우는 농을 살살이 적발하여 매우 엄하게 단속하라. 경미한 경우는 관(官)에서 징계하여 다스리고, 큰 경우는 감영에 보고하여 죄를 물어 처단하고 특별히 징계할 것.

소나무 정책을 말한다면 크게는 봉산(封山)<sup>80)</sup>을 수호하고 작게는 사사로이 육성하는 소나무의 벌채를 금한다. 예로부터 법을 세움은 엄밀하지 않음이 없었으나 도끼질이 날마다 계속되어 거의 금지함이 없는 것 같다고 한다. 소나무는 다시 싹트지 않는 나무로, 한 번 도끼질을 당하면 뿌리가 곧 썩어 소나무가 있던 곳마다 민둥산이 된다. 곳곳에서 산사태가 나서 전답은 모래로 덮이고 방축의 독은 무너지게 되는 것이 오직 이 때문이니, 소나무 벌채를 금하는 것이 농정에 관계됨이 바로 이와 같다. 이렇게 산지기들이 못된 농들과 결탁하여 뇌물을 받고 함부로 베어내는 것을 초래하지 않는 자가 없으니, 만약 나타나는 대로 엄히 금하였다면 어

78) 감색(監色) : 감관(監官)과 색리(色吏)를 아울러 이르는 말로, 감관은 금품(金品)의 출납을 맡아보는 관원, 색리는 담당 서리(胥吏)이다.

79) 다달이 더해가니 : 본문의 '식월사생(式月斯生)'은 『시경』 「절피남산(節彼南山)」편의 한 구절로, 하늘의 재앙이 달마다 생겨날 만큼 심해간다는 뜻이다.

80) 봉산(封山) : 나라에 필요한 목재를 조성하기 위하여 벌채를 금지하는 산이다. 조선 전기에는 금산(禁山)이라는 명목으로 소나무가 잘 자라는 곳에는 임금이나 왕비의 능침(陵寢) 등을 금지하였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 들어 국가의 부세수취가 달라지면서 국가의 목재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어 보호하는 수종(樹種)과 금지 범위, 관리 책임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봉산으로 이름 하였다. 금산과 달리 봉산에는 소나무를 보호하는 봉산과 관곽에 쓰이는 황장목을 보호하는 황장봉산(黃腸封山), 신주에 쓰이는 밤나무를 보호하기 위한 울목봉산(栗木封山), 그리고 배에 못으로 쓰이는 참나무를 보호하는 진목봉산(眞木封山) 등이 있었다.(한국고전용어사전 편찬위원회, 2001, 『한국고전용어사전』,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찌 흑시라도 지금과 같은 실정이겠는가. 이후에는 절대로 이전과 같이 신칙한 것을 경시하지 말며, 수목(樹木)의 벌채를 금하고 소나무를 육성하는 것을 착실히 하라.

지금 이 3가지 정책을 타이르는 것은 진실로 옛 제도를 거듭 분명히 하는 데서 나왔으니, 실제로 본받는 생각을 기약하고 절대로 으레 하는 훈시로 보지 말며, 두려운 마음으로 삼가하며 거행하라. 마땅함을 좇아 별도의 염탐하는 방도를 두었으니, 이와 같이 따로 신칙한 뒤에도 만일 법을 어기면, 검칙을 잘하지 못한 수리향(首吏鄉)<sup>81)</sup>은 결단코 마땅히 위로 잡아 올려 엄히 처단하고 책임 또한 귀속되는 바가 있을 것이다. 예사로 처리하지 말고 충분히 단속하라.

이 감결을 한문과 언문으로 번역하고 베껴 경내 마을에 유고(諭告)를 자세하게 알려, 한 백성이라도 듣지 못하여 법을 어겼다는 폐단이 없도록 하며, 감결이 도착하는 날짜와 거행한 사실 전말을 우선 바로 급히 알림이 마땅할 일.

二十三日. 中營將入見

23일. 중영장이 입견하였다.

二十四日. 判官入見, 金堤郡守李玄好、昌平縣令李和愚、光陽縣監沈兢祖, 延命後入見.

24일. 판관이 입견하고, 김제 군수 이현호(李玄好)와 창평 현령 이화우(李和愚)와 광양현감 심공조(沈兢祖)가 연명한 뒤에 입견하였다.

二十五日. 金堤郡守、昌平縣令、光陽縣監入見, 仍爲辭去. 中營將入見.

25일. 김제 군수 · 창평 현령 · 광양 현감이 입견하고 그대로 하직하고 갔다. 중영장이 입견하였다.

81) 수리향(首吏鄉) : 수리(首吏)나 수향(首鄉)을 말하는데, 수리는 지방 관아에 딸린 아전이고, 수향은 좌수(座首)의 별칭(別稱)이다. 좌수는 지방의 주(州)·부(府)·군(郡)·현(縣)에 둔 향청(鄉廳)의 우두머리로, 육방(六房) 중 이방(吏房)과 병방(兵房)을 맡아보았다.



同日. 行朔試射, 朝食後以肩輿, 抵揖讓亭, 中軍、中營將、判官入見. 入格武士饋酒肉後, 賞賜節筴各二柄, 壯元之次二人, 另給正木一疋. 午後還營軒, 南原府使李寂在、珍島郡守金善問、谷城縣監任禹常、沃溝縣監金秀萬、茂長縣監尹興圭, 延命後入見.

같은 날. 삭시사(朔試射)<sup>82)</sup>를 행하고 조식 후에 견여로 읍양정(揖讓亭)<sup>83)</sup>에 이르니 중군·중영장·판관이 입견하였다. 입격(入格 합격)한 무사들에게는 술과 고기를 내어 준 뒤에 상으로 부채 각 두 자루씩을 하사하고, 장원의 다음자 두 사람에게는 따로 베푼 필을 주었다. 오후에 영현으로 돌아오니 남원 부사 이치재·진도 군수 김선문·곡성 현감 임우상·옥구 현감 김수만·무장 현감 윤흥규가 연명한 뒤에 입견하였다.

二十六日. 南原府使、珍島郡守、谷城縣監、沃溝縣監、茂長縣監入見, 仍爲辭去. 中營將入見, 益山郡守李能秀入見, 長水縣監李啓陽、南平縣監洪明燮, 延命後入見.

26일. 남원 부사·진도 군수·곡성 현감·옥구 현감·무장 현감이 입견하고 그대로 하직하고 갔다. 중영장이 입견하고, 익산 군수 이능수가 입견하고, 장수 현감 이계양과 남평 현감 홍명섭이 연명한 뒤에 입견하였다.

二十七日. 長水縣監、南平縣監、益山郡守入見, 仍爲辭去. 判官入見, 井邑縣監洪冕周、興德縣監金命爍, 延命後入見.

27일. 장수 현감·남평 현감·익산 군수가 입견하고 그대로 하직하고 갔다. 판관이 입견하고, 정읍 현감 홍면주·흥덕 현감 김명혁이 연명한 뒤에 입견하였다.

二十八日. 興德縣監入見, 仍爲辭去. 中營將入見, 玉果縣監韓致定, 延命後入見.

82) 삭시사(朔試射) : 매달 초하루에 열었던 궁술(弓術) 시합으로, 주로 당하의 문관과 일반 무관이 궁술을 겨루었으며 이따금 당상의 문관을 위한 시합도 열었다.

83) 읍양정(揖讓亭) : 현재 전주시 다가동 근처에 있었던 활터로 추정된다. 현 전주시 다가동에 있는 활터 천양정(穿楊亭)의 연혁에, “천양정은 1712년(숙종38)에 지금의 전주신흥고등학교 운동장 서쪽 산에 강무(講武)을 위해 창건하였다. 1720년 홍수로 유실된 뒤에 1722년에 다가교 근처 서쪽에 과녁을 세워 다가정(多佳亭)이라 하였고, 1732년(영조8)에는 대사습청(大射習廳)을 설치하여 무과시험을 실시하였고, 1912년에는 군자정(君子亭)·다가정(多佳亭)·읍양정(揖讓亭) 세 개의 사정(射亭)을 합쳐 천양정으로 명명하였다.” 하였다.

28일. 흥덕 현감이 입견하고 그대로 하직하고 갔다. 중영장이 입견하고, 옥과 현감 한 치정이 연명한 뒤에 입견하였다.

二十九日. 玉果縣監入見, 仍爲辭去. 井邑縣監入見, 扶安縣監趙在慶, 延命後入見. 順天府使洪重燮、金堤郡守李玄好、和順縣監徐承淳、泰仁縣監沈能淑、參禮察訪李敏實, 以白日場試官來見.

29일. 옥과 현감이 입견하고 그대로 하직하고 갔다. 정읍 현감이 입견하고, 부안 현감 조재경이 연명한 뒤에 입견하였다. 순천 부사 홍중섭·김제 군수 이현호·화순 현감 서승순·태인 현감 심능숙·삼례 참방 이민실이 백일장 시관(試官)으로 와서 보았다.

同日. 以勸農事, 發甘列邑鎮.

【甘結】敦本重農, 有國之大政也. 每勤九重之憂歲, 頒十行之綸詔, 牘勸相諄復懇摯是如乎, 爲今日方伯守宰者, 孰敢不惕然警勵, 思所以對揚萬一是乙喻? 顧今芒種節屆, 雨暘時若, 山耕水耨, 幸不愆期, 董勸趨澤, 此政其時是如乎. 或躬審原野, 或曉諭里任, 無牛者, 隣里相借, 缺糧者, 倉穀許貸, 堤淤貯水之方、錢鏹資用之節, 誠心勸飭, 毋令失時爲旡. 己甲以後陳廢之地, 殆過萬餘結, 近或墾闢, 厥數無多, 正供之縮, 民食之艱, 貢稅之白徵, 糶簿之空文, 滔滔百弊同出一源, 興言及此, 寧不哀痛. 勸起之三年免稅, 大典法意, 自來嚴明是乎所. 苟能歆之以食力, 諭之以蠲租, 多般興勸, 的有實效, 則當此土貴如金之時, 豈有永拋陳荒之理? 毋論新舊陳頤, 商度形便, 逐庫墾起, 俾無寸土仍陳之弊爲乎矣, 春耕縱云後時, 秋麥足可播種, 此意一體布諭爲旡. 昨秋年成非不少康, 而只緣愚氓, 但取目前之高價, 不念日後之艱食, 恣意出穀, 瓶罌俱罄, 到今耕農之糧, 只待兩麥之熟是去乙, 畿湖商賈, 乘時牟利, 未及刈穫, 指田和買者, 比比有之云. 此若不嚴加禁斷, 則縱令甌窶滿溝良置, 盡爲他省他人之物, 而本省阻饑之弊, 必至廢農渙散而後已, 決不可一任尾閭. 不早痛禁乙仍于. 茲以先事發甘爲去乎, 別定勤幹將校, 各其浦口場市, 這這探察. 如有商賈輩多石貿取者是去等, 登時逐送, 雖一包麥, 勿令出境爲旡. 若其已捧價錢者, 計利還本之意, 申明知委爲旡, 校吏輩憑藉官令, 侵漁操縱之弊, 亦難保其必無, 此亦別般操束爲乎矣, 如是甘飭之後, 現發於別歧廉探之下, 則當者除良, 不飭之首吏鄉, 上使嚴治, 斷不饒貸, 除

尋常另飭爲旆. 甘到日時, 舉行形止, 先卽馳報宜當者.

같은 날. 농사를 권면하는 일로 각 읍과 진영(鎭營)<sup>84)</sup>에 감결을 발송하였다.

【감결】근본에 힘쓰고 농업을 중시하는 일은 나라에 있어 큰 정책이다. 매년 조정은 흉년을 근심하여 10항의 윤조(綸詔 조서)를 반포하여 서로에게 거듭 타이르고 정성스럽게 농사지을 것을 인도하고 권면하였다. 오늘 방백과 수령된 자들은 어찌 감히 두려운 듯이 경계하고 힘쓰며 임금의 뜻을 백성에게 알릴 바를 생각함이 만에 하나라도 없겠는가. 다만 지금 망종절(芒種節)<sup>85)</sup>이 이르러 비가 오고 따뜻해 사계절이 순리에 조화로우니, 산수에 밭 갈고 김매면 다행히 농사철을 어기지 않을 것이고, 논에 물대기를 재촉하고 힘쓰는 것이 바로 제때라고 한다. 한편으로는 몸소 들판을 살피고 한편으로는 이임(里任)<sup>86)</sup>을 깨우쳐, 소가 없는 사람은 이웃마을에서 서로 빌리고, 양식이 떨어진 자는 창고에 쌓아둔 곡식을 빌려주게 하며, 제와 보에 물을 모아둘 방도와 전박(錢鑄)<sup>87)</sup>을 밀천으로 쓰는 농사철을 진실한 마음으로 권면하고 타일러, 농사시기를 잃지 말게 하라.

기갑(己甲)<sup>88)</sup>이후의 목어 못쓰게 된 땅이 거의 만여 결이 넘고, 근래 개간한 땅은 그 수가 많지 않다. 정공(正供)<sup>89)</sup>이 줄어들고 백성들의 식량이 부족한데, 세금을 낼 이유가 없는 사람한테서 억지로 세금을 걷고 헛된 문서로 환곡을 거둬들였다고 장부를 만들어 거침없는 온갖 폐단이 모두 한 근원에서 나오니, 말하자면 어찌 원통하지 않겠는가. 경작할 수 있도록 개간한 논은 삼년간 면세한다는 것이 경국대전 법의 뜻으로, 옛날부터 지금까지 매우 분명한 바이다. 만일 능히 그들을 먹고사는 힘으로 따르게 하고 세금을 덜어주는 것으로 타일러, 여러 가지로 일으

84) 진영(鎭營) : 조선 시대에 각 수영(水營)·병영(兵營) 아래 두었던 지방대(地方隊)의 직소이다.

85) 망종절(芒種節) : 24절기의 하나이다. 양력 6월 5일 경(頃)으로, 보리가 익고 모를 심기 좋은 때이다.

86) 이임(里任) : 조선 시대에 지방의 동리에서 호적에 관한 일과 그 밖의 공공사무를 맡아보던 사람으로, 이장(里長)·이재(里宰) 등을 말한다.

87) 전박(錢鑄) : 전(錢)은 가래인데 지금의 삽과 같고, 박(鑄)은 호미 등의 농기구를 가리킨다. 『시경』 「신공(臣工)」에 “너희 농기구를 갖추어라, 곧 낫으로 추수하는 것을 보리니.[庠乃錢鑄, 奄觀銜艾.]” 하였다.

88) 기갑(己甲) : 흉년이 들었던 기사년(1809)과 갑술년(1814)을 말한다. 『조선왕조실록』 기사년(1809) 12월 4일 첫 번째 기사에는 광주 목사 송지렴(宋知濂) 등이 흉년의 실상을 연명하여 상소한 내용이 실렸고, 올해년(1815) 1월 28일 기사에는 호서와 호남의 목면이 흉년이므로 대동 및 면세목을 감하여 돈으로 대납케 하라는 내용이 실렸고, 이어 10월 12일 기사에는 전라 감사 김계온(金啓溫)이 상소하여 호남 연해 고을에 흉년든 상황을 아뢰고 세금 감면을 청한 내용이 실려 있다.

89) 정공(正供) : 부세(賦稅)·방물(方物)의 정당(正當)한 부담(負擔)을 말한다.

키고 권면하여 확실히 실효가 있게 한다면, 이렇게 땅의 귀함이 금과 같은 때를 당하여 어찌 묵혀진 땅을 오래도록 내버려둘 리가 있겠는가.

오래전부터 있었던 진탈(陳頌)<sup>90)</sup>이든 금년 재결로 새롭게 지정되었든 논하지 말고, 형편을 헤아려 지역에 따라 개간을 시작하여 한 치의 땅이라도 그대로 묵혀 못쓰게 하지 말되, 봄 밭갈이가 비록 때보다 뒤졌다고 말할지라도 가을보리는 족히 파종할 수 있으니, 이러한 뜻을 온 마을에 널리 알려라. 작년 가을에 수확이 조금 넉넉하였는데도, 단지 백성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오직 목전의 고가를 취하여 뒷날의 식량의 어려움을 생각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곡식을 내어 향아리가 모두 비었고, 지금에 이르러 밭 갈고 농사짓는 양식은 단지 보리와 밀이 익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기호(畿湖) 지방의 장사치들은 때를 타 이익을 노려 미처 수확 철이 이르지 않았는데도 밭을 가리키며 매매를 중개하는 자가 많이 있다고 한다. 이것을 만일 엄격하고 단호히 금하지 않으면, 비록 고지대의 천수답<sup>91)</sup>을 도랑같이 물로 채우더라도 모두 다른 도시 다른 사람의 물건이 되어, 본도의 허덕거리는 기근(饑饉)의 폐해는 반드시 농사를 그만두고 농민이 흩어지고서야 그칠 것이니, 결단코 바닷물이 새어 나가는 미려(尾閭)<sup>92)</sup> 같은 장사치들에게 일임해서는 안된다. 일찍이 엄하게 금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에 우선하는 일로 감결을 발송하니, 따로 근면하고 성실한 장교를 정하여 각 포구와 시장에서 낱알이 찾아 살피라.

만일 장사치들 가운데 많은 섬[石]으로 교역하여 취하는 자가 있거든 즉시 쫓아내고, 비록 한 포의 보리일지라도 경계를 나가지 말게 하라. 만약 이미 값을 받은 자의 경우는 이자를 계산하여 본래로 되돌려야 하는 뜻을 거듭 분명하게 알려주며, 교리배(校吏輩)가 관을 빙자하여 침범하여 빼앗고 조종(操縱)하는 폐단이 반드시 없다고 할 수 없으니 이것 또한 특별히 단속하라. 이와 같은 감결의 신칙함이 있는 뒤에도 다른 방법으로 영탕한 끝에 발각되면, 해당자 뿐만 아니라 신칙하지 않은 수리향(首吏鄉)은 감영으로 잡아 올려 엄하게 다스리고 결단코 너그럽게 용서하지 않을 것이니, 예사로 여기지 말고 특별히 삼가라. 감결이 도착한 일시와

90) 진탈(陳頌) : 오랫동안 재결지로 세금을 감면받는 전답(田畝)을 말한다.

91) 고지대의 천수답 : 원문의 '구루(甌窶)'는 '좁다'는 뜻일 때는 '루(窶)'와 같이 읽고, 보통은 오야구루(汚邪甌窶)로 쓴다. 오야는 하지(下地)의 전(田)이고, 구루는 고지대(高地帶)를 말한다.

92) 미려(尾閭) : 바닷물이 새어 빠지는 곳인데 바다의 동쪽에 있다고 한다. 『장자(莊子)』 「추수(秋水)」편에 “천하의 물은 바다보다 큰 것이 없으니, 모든 물이 끊임없이 모여도 찰 줄 모르고, 미려(尾閭)로 끊임없이 새어 나가도 마를 줄 모른다.” 하였다.

거행한 사실 전말을 먼저 급히 알림이 마땅할 일.

三十日. 設行大都會白日場.<詩題, 有美堂記如累九層之高, 賦題, 樂其樂, 古風題, 麥秋.> 試官, 順天府使、金堤郡守、扶安縣監、井邑縣監、和順縣監、泰仁縣監、參禮察訪, 同爲考試, 日晡拆榜, 詩、賦、古風, 各取五十人, 呼中須賞, 另賜節箠二柄. 扶安縣監, 仍爲辭去.

30일. 대도회(大都會) 백일장을 시행하였다.<시제(詩題)<sup>93)</sup>는 유미당기(有美堂記)<sup>94)</sup>는 9층을 포개 놓은 것처럼 높네[有美堂記如累九層之高]이고, 부제(賦題)<sup>95)</sup>는 그 즐거움을 즐기네[樂其樂]<sup>96)</sup>이고, 고시풍(古詩風)의 제(題)는 보리가 익는 철[麥秋]이다.>

시관은 순천 부사·김제 군수·부안 현감·정읍 현감·화순 현감·태인 현감·삼례 찰방이 함께 시험관이 되었고, 당일 신시(申時 오후 3시~5시)에 합격자를 발표하였다. 시(詩)와 부(賦)와 고풍(古風)에 각 50명을 취하고, 합격한 사람을 불러 상을 주고 따로 부채 2자루씩을 하사하였다. 부안 현감은 그대로 하직하고 갔다.

93) 시제(詩題) : 과거 시험 중 시를 짓게 하는 시험제목.

94) 유미당기(有美堂記) : 구양수(歐陽脩)가 지은 유미당의 기문(記文)이다. 1057년(가우(嘉右) 2)에 매지(梅摯)가 항주(杭州) 자사로 부임할 때 인종(仁宗) 황제가 준 「사매지지항주(賜梅摯知杭州)」에 “그 땅엔 오산의 아름다움 있어, 동남 제일의 지방이라.[地有吳山美, 東南第一州.]”라는 구절이 있었다. 매지는 항주에 도착한 뒤에 오산 정상에 황제의 은총을 기리기 위해 유미당을 지었다.

95) 부제(賦題) : 과거 시험에서 부(賦)를 작성하도록 한 시험제목. 도 단위에서 문과나 생원진사시, 무과의 초시 등이 치러졌고, 문과나 생원진사시에서는 시(詩)·부(賦)·송(頌)·책(策)의 네 과목이 있었다. 이는 문체상으로 구별된다. 책(策)은 대책문(對策文)으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는 논문시험이다. 시(詩)는 운문을 취하는 것이고 송(頌)과 부(賦)는 문체의 한 종류로 변려문으로 작성되었다.

96) 그 즐거움을 즐기네 : 『맹자』 「양혜왕 하」의 “백성의 즐거움을 즐기는 자는 백성도 그의 즐거움을 즐긴다.[樂民之樂者, 民亦樂其樂.]”에서 발췌한 구절이다.

## 2. 1833년(순조33) 5월 : 백일장을 시행하다

初一日. 早朝以肩輿詣客舍, 行望闕禮. 中軍、中營將、判官、順天府使、金堤郡守、井邑縣監、和順縣監、泰仁縣監、參禮察訪、檢律同爲進參, 仍還營軒.

1일. 이른 아침 견여로 객사에 이르러 망궐례를 행하였다. 중군·중영장·판관·순천부사·김제 군수·정읍 현감·화순 현감·태인 현감·삼례 찰방·검률이 함께 나와 참례하고 바로 영헌으로 돌아왔다.

同日. 設行希顯堂選士白日場.<詩題, 擊吳楚軍取旗顯功名, 賦題, 今日爲公子亦足.> 試官, 金堤郡守、井邑縣監、和順縣監、泰仁縣監、參禮察訪, 同爲考試. 順天府使先爲辭去. 午後拆榜, 呼中另賜節筴各二柄, 道選二十人, 邑選十人.

같은 날. 희현당(希顯堂)<sup>97)</sup>에서 선사(選士)<sup>98)</sup>하는 백일장을 시행하였다.<시제(詩題)는 오(吳)·초(楚)군을 물리쳐 깃발을 취하니 공명이 드러나네[擊吳楚軍取旗顯功名]이고, 부제(賦題)는 금일 공자를 위함이 또한 좋네[今日爲公子亦足]이다.>

시관 김제 군수·정읍 현감·화순 현감·태인 현감·삼례 찰방이 함께 고시관이 되었다. 순천 부사는 먼저 하직하고 갔다. 오후에 합격자를 발표하고 합격한 자를 불러 따로 부채 각 2자루를 하사 하였다. 도에서 20명을 뽑고, 읍에서 10명을 뽑았다.

初二日. 中營將入見. 金堤郡守、井邑縣監、和順縣監、泰仁縣監入見, 仍爲辭去. 高敞縣監李鍾應、格浦別將金相俊, 延命後入見.

2일. 중영장이 입견하였다. 김제 군수·정읍 현감·화순 현감·태인 현감이 입견하고

97) 희현당(希顯堂) : 1700년(숙종26)에 전라도 관찰사 김시걸(金時傑)이 옛 사마재가 있던 터에 건립한 것으로, 지금의 전주시 완산구 전주신흥고등학교 자리이다. 성인이 되고 현인이 되기를 바란다는 희(希)자와 입신양명해서 부모의 이름을 드러낸다는 현(顯)자를 취하여 당호로 삼았다.

98) 선사(選士) : 『예기』 「왕제(王制)」의 “각지의 향에 명하여 우수한 자를 논해서 사도(司徒)에게 천거하도록 하는데, 이렇게 천거된 자를 선사라고 한다.[命鄉論秀士, 升之司徒, 曰選士.]”라는 말에 근거하여, 해당 고을의 수령이 매년 사계절의 첫 달에 그 학교의 사(師)와 함께 향음주례(鄉飲酒禮)를 행하여 고을의 노인과 학생들을 모아 놓고 그 근면함을 살피고 능력을 시험하여, 경행(經行)과 재기(才器)가 선발할 만하면 매년 말에 사실대로 조정에 천거하는데, 이렇게 선발된 사람을 말한다.

그대로 하직하고 갔다. 고창 현감 이증응·격포 별장 김상준이 연명한 후에 입건하였다.

同日. 題南原府查案.<行乞申白壽, 自恨身世之困窮, 仍爲縊項致死事. 初查官, 南原府使李取在.>

【題】查案捧上是在果. 當初發告, 旣沒把捉, 旋復自悔, 情愿免檢, 固不待詞證, 而可卞其虛實是如乎. 屍身之眼胞色青, 廉肋皮脫, 設如苦主之所告良置, 皆不是要害之傷, 未必爲致命之因, 則掘檢一歎, 不必議到是旣. 死者之迫於飢困, 妻孥分散, 寧欲濫先決意自裁者. 究其情狀, 極爲矜惻. 屍身雖已掩埋是乃, 更令該里顧助成墳, 俾無狐狸穿穴之患爲旣. 屍親發告, 只爲其子行止推尋之計, 末梢變招, 亦由其子生存他官之報, 則獄情肯綮, 專在此一歎是去乙. 趙相辰處, 一番取招之後, 更無下落, 揆以查體, 殊涉踈畧. 生存的實與否, 雲峯官良中, 枚移探問後, 更卽牒報爲旣, 保授諸人旣, 別無更查之端, 並卽放送, 宜當向事.

같은 날. 남원부 사안(查案)을 데김하였다.<동냥하던 신백수(申白壽)가 스스로 자신의 신체가 곤궁함을 한탄하여 그대로 목을 매어 죽은 일. 최초 검시관은 남원 부사 이취재(李取在).>

【데김】사안(查案)<sup>99)</sup>을 받아 보았다. 시친이 처음 고발하였으나 범인을 잡을 수가 없자 곧 다시 스스로 후회하고 인정상 검시를 면하기를 바랐으니, 굳이 증언을 기다릴 필요도 없이 그 허실을 분별할 수 있다고 한다. 시신의 눈꺼풀 색이 푸른 것과 옆구리 인대 살가죽이 벗겨진 것은, 설사 고주(苦主)<sup>100)</sup>가 고발한 바와 같더라도 모두 치명적인 상처가 아니라 반드시 죽게 되는 원인이 되지 못하니, 송장을 파내어 조사해야 한다는 조항은 반드시 의론할 필요는 없다. 죽은 자는 굶주리고 곤궁함에 핍박되었고, 아내와 자식이 따로 흩어지게 되었으니, 차라리 갑작스럽게 자살하려고 결심한 경우이다.

그 정상을 헤아리면 지극히 가엾고 슬프다. 시신은 비록 이미 묻었으나 다시 그 마을로 하여금 돌봐주어 봉분을 만들어 여우나 새가 구멍을 뚫는 우환이 없게 하라. 시친이 받고한 것은 단지 그 자식의 행동거지를 찾기 위함이었고, 끝에 진술을 변경한 것도 또한 그 자식이 살아 있다는 타관의 보고 때문이었으니, 옥사 정리의 핵심이 오로지 이 한 조항에 있다. 그런데도 조상진(趙相辰)에게 한번 진술을 받은 뒤에 다시 보고<sup>101)</sup>가 없었으니, 조사한 일을 헤아리면 매우 소략하다. 생

99) 사안(查案) : 사건의 사실을 조사하여 적은 문서를 말한다.

100) 고주(苦主) : 가까운 일가(一家)가 살해를 당했을 때에 고소하는 사람을 말한다.

존이 확실한지 여부는 운봉 관아에 공문을 보내어 탐문한 뒤에 다시 곧바로 첩보하고, 보수(保授)하고 있는 여러 사람들은 따로 다시 조사할 단서가 없으니 모두 즉시 석방함이 마땅할 일.

同日. 題靈巖郡檢案.<正犯金介同, 誘引朴召史, 暗地出去, 脅迫致死, 並戕三歲女兒, 永滅其跡事. 初檢官, 靈巖郡守李應謙, 覆檢官, 康津縣監趙錫龜.>

【題】屍帳捧上是在果. 殺越之變, 從古何限, 而言之髮豎, 聽之心寒, 未有若此案之窮兇絕慳是置. 正犯介同之於致死人朴女, 以異姓四寸之親, 居同扉分室之內. 目見其孤孀持戶衆雛呱飢之狀, 揆以恒情, 孰不恒怛焉. 傷懷匍匐顧恤, 而惟彼兇身, 亙古狠毒, 始托假貸之推尋, 轉售強暴之奸計, 騙到山上無人之地, 猝求桑中不期之歡, 誘慳不從, 拳踢交加, 翻轉倒曳, 何所不有, 遂令百折不回之貞女, 終作九地齋寃之幽魂, 論其烈, 則斂衽擊節, 語其境, 則咬牙酸鼻. 大凡檢驗專爲實因之明執, 正犯之斯得, 而此獄段 毋論左右耳, 及胸脊等痕損之分寸濶大, 色紫黯, 必死速死之部位分叱除良. 當日光景, 他無參見, 而行兇情節, 渠既一一輸款, 殆若有神附體是隱則, 是正犯介同也, 看證亦介同也, 固無毫髮疑眩之端是旃. 既殺其母又戕其兒, 投水下石, 恣意慘毒. 初爲鴟鵂之啄, 竟飽狐狸之腹, 人之獰狠, 胡至此極. 是不登即償命, 何以慰貞魂而洩衆憤是乙喻? 兩檢官, 仍定同推官爲去乎, 約日會坐, 以別杖箇考察, 嚴刑準次取招爲乎矣. 舉行刑吏、執杖使令, 姓名成冊, 並以牒報爲旃. 屍體段即速出給埋瘞是矣, 以若海曲雖昧之俗, 未有傳姆之教、擊輓之訓, 而能辨此卓異之行, 誠是天生卓烈是如乎, 褒尚之典, 當待大同公議, 而爲先於其埋葬時, 自官優助葬需, 以示旌賞之意爲旃. 詞連朴春伊、崔元一兩人段, 水中兒屍不告官而徑埋, 雖云愚迷昧法之致是乃, 既已掩埋, 則固當深坎而厚瘞是去乙, 草草掩土, 致此狐狸之偷去者, 不可無懲嚴, 杖三十度放送爲旃. 初檢之詞連, 覆檢則錄以切隣, 揆以獄體, 極涉踈忽, 覆檢刑吏段, 爲先附過爲旃. 其餘各人等, 別無更問之端, 並即放送之意初檢官良中, 枚移施行向事.

같은 날. 영암군 검안(檢案)<sup>102)</sup>을 데김하였다.<정범(正犯) 김개동(金介同)이 박조이[朴召伊]

101) 보고 : 원문의 '하락(下落)'은 자기(自己)가 한 일에 관(關)하여 감독자나 웃어른에게 보고(報告)한다는 말로 개신(開申)과 같은 의미이다.

102) 검안(檢案) : 검안서(檢案書)의 준말로 시체를 조사한 서류를 말한다.



史]를 유인하여 으스스한 곳으로 가서 협박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고, 또 3살 여아를 죽여 그 흔적을 영원히 없애려 한 일. 초검시관은 영암 군수 이응겸(李應謙)이고 복검시관은 강진현감 조석귀(趙錫龜).>

【데김】 시장(屍帳)을 받아 보았다. 살인의 번고가 예부터 어찌 한정(限定)이 있으리오마는 말하자면 머리털이 서고 듣자면 마음이 오싹하니, 이렇게 몹시 흉악하고 매우 참혹한 검안은 없었다. 정범 김개동은 죽은 박조이와는 이종(姨從)4촌으로 한 집에서 방을 따로 쓰며 살았다. 지아비를 여윈 과부가 집안을 책임지며 살아가고 여러 병아리 같은 자식들은 굶주림에 우는 정황을 눈으로 본다면, 일반적인 인정으로 보더라도 누가 불쌍히 여기지 않겠는가. 마음속으로 불쌍히 여겨 힘을 다해 돌봐 주어야하는데도, 오직 저 흉악한 놈은 옛날부터 사납고 독하여 처음에는 물건을 빌려주었다가 빌려준 것을 받아내는 것을 핑계 대다가 점점 강폭한 간계를 행하고, 속여 산 위의 사람이 없는 곳에 이르자 갑자기 뺨밭에서 예기치 않게 몸을 탐하여 유혹하고 협박하였다. 그러나 따르지 않자 주먹질과 발길질을 번갈아 하며 넘어뜨리고 엎어치고 뒤집어 끌며 갖은 짓을 다하여, 끝내 백번 꺾으려 했어도 굽히지 않았던 정숙한 여인을 결국 황천길에 원통함을 탄식하는 유혼(幽魂 떠도는 영혼)이 되게 하였다. 그 정절을 논하면 옷깃을 여미고 무릎을 치면서 칭찬할 만하고, 그 정황을 말하자면 이가 갈리고 코가 시큰하다.

대저 검험은 오로지 실제 원인을 명확하게 찾아 정범을 이것으로 잡기 위함인데, 이 송사는 좌우의 귀는 말할 것 없고 또 가슴과 등마루 같이 상처가 난 부위가 넓고 크며 색깔이 자줏빛으로 검으니, 필시 죽어도 빨리 죽는 부위일 뿐만이 아니다. 당일 광경을 다른 사람이 참견한 자도 없고 흉악한 짓을 행한 정황을 그 놈이 이미 날날이 자복하였는데, 거의 정신이 몸에 붙어 있던 자도 바로 정범 김개동이고, 증거를 드러낸 것도 또한 김개동이다. 실로 털끝만큼도 의심할 만한 단서가 없다. 이미 그 어미를 죽이고 그 아이를 죽여 돌을 매달아 몰아래로 던졌으니 멋대로 한 생각이 매우 참혹하다. 처음엔 수리부엉이가 쪼다 끝내 여우와 삼의 먹이가 되게 하니, 사람의 모질고 사나움이 어찌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 이 자를 곧바로 죽이지 않으면 어떻게 곧은 열녀의 혼령을 위로하며 대중의 분노를 씻을 수 있겠는가. 두 검시관을 그대로 동추관으로 정하니 날을 정해 모여 함께 자리를 열고<sup>103)</sup> 별장(別杖)<sup>104)</sup>으로 개개고찰(箇箇考察)<sup>105)</sup>하여 준차(準次)<sup>106)</sup>로 엄하게

103) 함께 자리를 열고 : 원문의 ‘회좌(會坐)’는 법정이나 관청에서 공사(公事)를 처리하기 위해 관원들

형을 집행하여 진술을 받고, 거행한 형리와 집행사령은 성명을 성책(成冊 장부를 만듦)하여 모두 첩보하라.

시체는 바로 속히 내주어 묻게 하라. 바닷가 후미진 구석이라 비록 몽매한 풍습 때문에 부모[傳姆]의 가르침이나 규방(閨房)의 가르침이 없었지만, 능히 뛰어내고 특이한 행실을 구별할 수 있었으니 진실로 하늘이 낸 곧은 열녀이다. 기리고 숭상하는 은전은 마땅히 공의(公議)를 함께 하기를 기다려야 하지만 매장 때보다는 우선하여 행하고, 관아는 장례의 수요품을 넉넉히 도와주어 기리고 칭찬하는 뜻을 보여라. 증언과 관련된 박춘이(朴春伊)와 최원일(崔元一) 두 사람은 물속의 아이 시체를 관에 알리지 않고 바로 묻었으니, 비록 어리석고 법에 몽매한 소치이기는 하나, 이미 흙으로 묻었다면 진실로 마땅히 구덩이를 깊게 하여 후하게 묻어주었어야 했거늘, 대총 흙으로 가려 여우와 삶이 빼앗아가게 한 것은 엄히 징계하지 않을 수 없으니, 곤장 30대로 형을 가하고 석방하라. 초검시관이 사연(詞連)<sup>107)</sup>이라고 했던 것을 복검시관은 겨린[切隣 가까운 이웃]으로 기록하였으니, 옥체를 헤아리면 지극히 소홀하게 되었다. 복검을 행한 형리를 우선 부과(附過)하라. 그 나머지 각 사람들은 따로 다시 물을 단서가 없으니 모두 바로 놓아 보내는 뜻을 초검시관에게 공문을 보내어 시행할 일.

初三日. 參禮察訪入見. 務安縣監柳榮輔、礪山府使許嘯、靈巖郡守李應謙、益山郡守李能秀入見.

3일. 삼례 찰방이 입견하였다. 무안 현감 유영보·여산 부사 허속·영암 군수 이응겸·익산 군수 이능수가 입견하였다.

初四日. 中營將、判官入見. 務安縣監入見, 仍爲辭去.

이 자리를 정하고 벌여 앉는 것을 말한다.

104) 별장(別杖) : 정해진 법식대로 만들지 않은 신장(訊杖)이다. 별장은 규정대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죄수들에게는 법장(法杖)에 비해 훨씬 가혹한 형이었고, 남형(濫刑)의 소지가 많았다.(『국역 영조 실록 24년 8월 19일』, 『경국대전』 「형전」에서 규정한 신장은 길이 3자 3치로, 윗부분의 1자 3치까지는 원경이 7푼, 아랫부분의 2자까지는 너비가 8푼에 두께가 2푼이다.

105) 개개고찰(箇箇考察) : 죄인(罪人)에게 매질을 할 때 형리(刑吏)를 감시하면서 낱낱이 살피어 몹시 치게 하던 일을 말한다.

106) 준차(準次) : 차수(次數)를 채우다의 뜻이다. 여기서 차수(次數)는 형신(刑訊)할 때에 1차례에 곤장 30대를 넘지 못하고 도중에 자복(自服)을 하더라도 남은 대수를 채운다는 의미이다.

107) 사연(詞連) : 진술한 말이 범죄에 관련된 자를 말한다.

4일. 증영장·판관이 입건하였다. 무안 현감이 입건하고 그대로 하직하고 갔다.

同日. 題全州府檢案.<被告尹判芑, 潛奸金卜芑妻婢三月, 以致其夫服毒, 翌日致死事. 初檢官全州判官李義平, 覆檢官金溝縣令金錫喜.>

【題】屍帳捧上是在果, 死者之當場鬪鬪, 初無毆踢傷損之痕, 衆招同然分叱除良, 觀於脉錄, 無一疑似之跡. 而至若自其手劃胸, 則不足爲致命之傷是遣, 方其飲毒之時, 則傍觀者有之, 救藥者有之. 而翻轉煩惱, 亦是中毒之形証, 銀釵色黯, 脛合無寃之法文, 實因之爲飲毒, 不必多卜是如乎. 惟彼卜芑, 旣不得逞憾於奸夫, 又未免受侮於淫婦, 憤恚彌中, 竟至自裁, 死固浪矣情則憾矣是旣. 尹判芑段, 身爲官屬, 奸淫同僚有子之妻, 已極痛惡分叱不諭, 爭鬪之場, 舉措危悖, 苟無傍人之解紛, 安知不卽地結果是乙諭? 遂令卜芑跳起萬丈業火, 按住不得, 畢竟捨命, 雖無手犯之跡, 焉道由我之辜? 兩檢官, 仍定同推官爲去乎, 約日會推, 嚴刑取招爲旣, 婢三月段, 不但爲此獄之禍首, 方其夫惹鬪之時, 固當委曲挽解之不暇是去乙, 乃反惡言相加轉激, 彼怒躲避, 越視任他自戕, 及夫服毒垂盡之際, 不思救療, 先移家伙, 有若幸其夫之不幸者然, 究厥情狀, 萬萬狡惡, 事關倫紀, 不可尋常勘斷, 一體嚴刑, 取招爲旣. 屍體卽爲出給, 使之埋瘞, 看證諸人段, 別無更問之端, 並卽放送之意, 初檢官良中, 枚移施行向事.

같은 날. 전주부 검안을 데김하였다.<피고 윤판돌(尹判芑)이 김복돌(金卜芑)의 아내 여종 삼월(三月)을 몰래 간통하여, 그 남편 김복돌이 간수를 먹고 다음날 죽음에 이르게 한 일. 초검시관은 전주 판관 이희평, 복검시관은 금구 현령 김석희.>

【데김】시장(屍帳)을 받아 보았다. 죽은 자가 그 자리에서 싸웠으나 애초 때리고 발로 차 다친 흔적이 없음은, 여러 사람의 공초가 같았을 뿐더러 검시 기록을 보아도 의심할 만한 흔적이 전혀 없다. 그리고 자기 손으로 가슴을 자해한 것 같음에 이르러서도 죽을 만큼의 상처는 아니었고, 바야흐로 그가 간수를 먹은 때는 곁에서 본 자도 있고 약으로 구제한 자도 있었다. 뒤척거리며 괴로워하였으니 역시 중독되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고, 은비녀 색이 검으니 『무원록(無寃錄)』<sup>108)</sup> 법조문과

108) 무원록(無寃錄) : 『증수무원록(增修無寃錄)』을 말한다. 『무원록』은 중국 원(元)나라의 왕여(王與)가 1341년에 지은 일종의 법의학서(法醫學書)로, 그 뒤 1384년에 주(註)를 달았다. 조선 세종 22년(1440)에 최치운(崔致雲)이 왕명에 따라 여기에 음훈(音訓)을 붙이고 주석(註釋)을 더하여 『신주무원록(新註無寃錄)』이라 하였으며, 영조 24년(1748)에 구택규(具宅奎)가 왕명에 따라 이를 증보한 뒤, 계속하여 구윤명(具允明), 김취하(金就夏), 서유린(徐有隣) 등이 다시 수정 증보하여 정조 16년(1792)에 『증수무원록(增修無寃錄)』이란 이름으로 간행하였다.

꼭 맞아, 실질적인 원인이 간수를 먹었기 때문이니 많은 변론이 필요치 않다.

김복돌은 오직 이미 간통한 남자에게 원한을 풀지 못하고, 또 음탕한 자신의 여자에게 업신여김을 받은 것을 면하지 못하여 분노가 가슴에 쌓여 결국 자살에 이르렀으니, 죽음은 진실로 눈물이 나고 인정은 슬프다. 윤판돌은 신분이 관속이면서도 자식이 있는 동료의 부인을 간음했으니, 이미 매우 나쁜 뿐만 아니라 싸우는 현장에서의 행동거지도 위험하고 나빴다. 만일 곁에 있던 사람이 싸움을 말리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서 끝나지 않았으리라는 것을 어찌 알 수 있겠는가. 끝내 김복돌이로 하여금 만장이나 높이 뛰어오르게 하고 불같이 일어나는 노여움을 눌러 앉히지 못하게 하여 결국 목숨을 버리게 했으니, 비록 직접 죄를 지은 정황은 없더라도 어찌 저 때문에 일어난 사고임을 면하겠는가. 두 검시관을 그대로 동추관으로 정하니, 날을 정해 합동 신문하여 엄하게 형벌을 내리고 진술을 받아라.

여중 삼월의 경우는 비단 이 옥사의 화근의 핵심이 될 뿐만이 아니다. 바야흐로 김복돌이 소란을 일으킬 때에 진실로 곡진하게 만류하는데 겨를이 없어야 했거늘, 오히려 반대로 악언을 서로 가하여 더욱 격앙시키고, 김복돌이 화내면 피해 숨어서 예사로 남의 일처럼 보아 넘겨<sup>109)</sup> 스스로 죽게 하였다. 김복돌이 간수를 먹고 거의 죽어가는 즈음에 이르러서는 구원하여 치료할 생각을 않고 먼저 가정의 세간을 옮겨 마치 그 남자가 불행해지는 것을 바라는 것 같음이 있었으니, 그 정상을 살펴보면 매우 교활하고 악랄하다. 사안이 윤기(倫紀 윤리와 기강)에 관계되니 보통으로 처결 심판해서는 안 된다. 한결같이 엄하게 형벌을 내리고 진술을 받으라. 시체는 바로 내어 주어 그들로 하여금 묻게 하고, 본 것을 말한 여러 사람들은 따로 다시 물을 단서가 없으니 모두 바로 놓아 보내주라는 뜻을 초검시관에게 공문을 보내어 시행할 일.

初五日. 礪山府使、益山郡守、靈巖郡守、高敞縣監、參禮察訪入見, 仍爲辭去. 判官入見. 鎭安縣監金克善, 自礪山回路來見. 龍安縣監林貞鎭入見.

5일. 여산 부사·익산 군수·영암 군수·고창 현감·삼례 찰방이 입견하고 그대로 하직하고 갔다. 판관이 입견하였다. 진안 현감 김극선은 여산으로부터 돌아오는 길에 와

109) 남의……넘겨 : 원문의 ‘월시임타(越視任他)’는 월시진적(越視秦瘡)과 같은 의미로, 월(越)나라 사람이 수척한 진(秦)나라 사람을 보듯, 남의 환난(患難)을 예사(例事)로 보아 넘김을 이르는 말이다.

서 보았다. 용안 현감 임정진이 입견하였다.

同日. 慶基殿端午祭享, 以身病不得將事, 以預差礪山府使許嘯, 陞實舉行狀啓封發.

【狀啓】今五月初五日, 行慶基殿端午祭, 精備奠物差定祭官, 依禮文設行後, 獻官諸執事職姓名開錄于後爲白在果. 獻官<sup>110</sup>段臣以身病, 不得將事, 以預差礪山府使許嘯, 陞實舉行爲白如乎. 莫重祭享有此替行, 不勝惶恐, 緣由并以謹具啓聞.<獻官礪山府使許嘯陞, 典祀官兼大祝參禮察訪李敏實, 祝史益山郡守李能秀, 齋郎參奉吳慶興, 贊者靈巖郡守李應謙, 謁者高敞縣監李鍾應.>

같은 날. 경기전 단오 제향(祭享)에 몸이 아파서 주관할 수 없어 예차(預差) 여산 부사 허속을 실차(實差)로 올려<sup>110</sup> 거행한 장계(狀啓)를 봉하여 발송했다.

【장계】이번 5월 5일에 경기전 단오제를 행할 때 제수(祭需)를 정성스럽게 갖추고 제관(祭官)을 선발하는 것을 예문(禮文)에 의거하여 시행한 뒤에 헌관과 여러 집사들의 직분과 성명을 낱낱이 공문서 뒤에 기록하였습니다. 헌관의 경우 신이 몸이 병들어 제향을 맡을 수 없어 예차(預差) 여산 부사 허속(許嘯)을 실차(實差)로 올려 거행하였습니다. 막중한 제향에 이렇게 바꾸어 행하게 되어 황공함을 이길 수 없어 이러한 연유로 아울러 삼가 갖추어 아립니다.<헌관(獻官)<sup>111</sup>은 여산 부사 허속을 올리고, 전사관 겸 대축(典祀官兼大祝)<sup>112</sup>은 삼례 찰방 이민실, 축사(祝史)<sup>113</sup>는 익산 군수 이능수, 재랑(齋郎)<sup>114</sup>은 참봉 오경흥, 찬자(贊者)<sup>115</sup>는 영암 군수 이응겸, 알자(謁者)<sup>116</sup>는 고창 현감 이종응.>

初六日. 鎭安縣監、龍安縣監入見, 仍爲辭去. 任實縣監洪哲謨、高山縣監宋文熙, 延命後

110) 실차(實差)로 올려 : 원문의 승실(陞實)의 의미이다. 나라에 중대한 일이 있을 때에 임시로 두던 차비관으로 임명된 사람으로, 실차(實差)는 정임자(正任者)이며 예차(預差)는 정임자의 유고 시를 대비한 예비 대령자를 말한다.

111) 헌관(獻官) : 나라에서 제사지낼 때 임시로 임명하여 술잔을 올리는 관원을 말한다.

112) 전사관 겸 대축(典祀官兼大祝) : 전사관은 제사에 쓰는 물건을 맡아 처리하던 임시 벼슬이고, 대축은 제례(祭禮) 때에 초헌관(初獻官)이 헌작(獻酌)을 하면 신위(神位)의 오른쪽에 나아가 축문(祝文)을 읽던 관원을 말한다.

113) 축사(祝史) : 신명에 고(告)하는 일을 맡은 벼슬아치.

114) 재랑(齋郎) : 묘(廟)·사(社)·전(殿)·궁(宮)·능(陵)의 참봉(參奉)을 두루 이르는 말이다.

115) 찬자(贊者) : 제향(祭享) 때에 홀기(笏記)를 맡아보던 임시직(臨時職)이다.

116) 알자(謁者) : 빈객(賓客)을 주인(主人)에게 인도(引導)하는 사람. 또는 제향 때 창홀(唱笏)에 따라 헌관을 인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入見. 臨陂縣令李宜翼入見.

6일. 진안 현감 · 용안 현감이 입견하고 그대로 하직하고 갔다. 임실 현감 홍철모 · 고산 현감 송문희가 연명한 뒤에 입견하였다. 임피 현령 이의익이 입견하였다.

初七日. 任實縣監、臨陂縣令、高山縣監入見, 仍爲辭去. 中營將入見.

7일. 임실 현감 · 임피 현령 · 고산 현감이 입견하고 그대로 하직하고 갔다. 중영장이 입견하였다.

初八日. 判官入見, 淳昌郡守沈宜復, 延命後入見.

8일. 판관이 입견하였다. 순창 군수 심의복(沈宜復)이 연명한 뒤에 입견하였다.

同日. 題康津縣查案.<正犯尹興業, 其堂侄尹哲恭, 潛奸其妻, 故打殺其妻宋召史事. 初查官康津縣監趙錫龜.>

【題】查案捧上是在果. 當者既已自服, 門內皆爲詞證, 獄情到此, 更無疑眩. 初不掘檢, 何有覆檢? 興業殺妻, 雖非奸所捕捉是乃, 闖厥病臥, 逃走無蹤, 已跳萬丈業火, 而及夫推尋, 乃得之奸夫密室之中, 凡有血氣, 孰不欲當下洩憤? 償命之律, 雖難遽議, 擅殺之罪, 不可容貸. 況姊崔召史之惶怯雉頸, 亦可見其當場兇毒之勢, 則雖無手犯, 安得這由我之律是乙喻? 海南縣監會推官差定爲去乎, 文移往復, 約日開坐, 尹興業身乙嚴刑一次, 取招牒報爲姊. 尹哲恭段, 禍之首而言之醜也. 究厥敦倫、敗俗之罪, 不可使一息容貸是如乎, 以別杖箇箇考察, 嚴刑取招報來爲姊. 尹守坊段, 平日雖不檢家, 臨事別無所失. 其餘各人等段置, 今無更問之端, 一併放送向事.

같은 날. 강진현 사안(查案)을 데김하였다.<정범 윤흥업(尹興業)은 그 당질 윤철공(尹哲恭)이 자신의 아내를 몰래 간통하였기 때문에 자기의 처 송조이[宋召史]를 때려죽인 일. 초검시관은 강진 현감 조석귀.>

【데김】사안을 받아 보았다. 당사자가 이미 자백하였고, 집안사람이 모두 증언하여 옥사의 정상(情狀)이 이에 이르렀으니 다시 의혹할 바가 없다. 처음에 파내서

검시하지 않았는데 어찌 복검(覆檢)을 하겠는가? 윤흥업이 처를 죽인 곳이 비록 간통한 현장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윤흥업이 병들어 누워있는 틈을 타서 도망하여 자취를 감추었다. 이미 만길 높이로 뿔 정도로 불같이 노여움이 일어나 윤흥업이 급기야 아내를 찾아내 데려왔는데, 바로 간통한 사내의 비밀스런 방 속에서 찾아냈으니, 무릇 혈기가 있다면 어느 누가 그 자리에서 분노를 풀려고 하지 않았겠는가. 사람을 죽인 자를 죽이는 법률은 비록 갑자기 의론하기 어려운 바가 있으나, 사람을 마음대로 죽인 죄는 용서할 수 없다. 하물며 최조이가 두려워 겁먹고 목을 맨 것 또한 당시의 흉악하고 참혹한 형세를 알 수 있으니, 비록 직접 죽이지는 않았을지라도 어찌 자신으로 말미암은 죄를 피할 수 있겠는가.

해남 현감을 회추관(會推官)<sup>117</sup>으로 선발하니, 공문을 주고받아 날을 정해 함께 일을 처리하여, 윤흥업의 몸을 한 차례 엄히 형신하고 진술을 받아내 첩보하라. 윤철공은 재앙의 주모자이니 말하기도 더럽다. 그가 윤리를 깨고 풍속을 어지럽힌 죄를 자세히 살피면 잠시도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니, 별장(別杖)으로 개개고찰(箇箇考察)하여 엄하게 형벌하고 진술을 받아내 보고하라. 윤수방(尹守坊)의 경우는 평소 비록 집을 단속하지 않았지만 이 사건에 있어 별도로 실수한 바가 없다. 그 나머지 각 사람들도 지금 다시 물을 단서가 없으니 모두 아울러 놓아 보낼 일.

初九日. 淳昌郡守、中營將入見.

9일. 순창 군수와 중영장이 입견하였다.

初十日.

10일.

十一日. 朝監封朔膳、藥材進上. 寶城郡守俞章煥、金溝縣令金錫喜, 入見. 判官、中營將入見.

11일. 아침에 삭선(朔膳)<sup>118</sup>과 약재의 진상품을 감봉(監封)하였다. 보성 군수 유장

117) 회추관(會推官) : 범죄인에 대한 추문(推問)을 명령받은 관리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함께 심문하는 벼슬아치를 말한다.

환·금구 현령 김석희가 입견하였다. 판관·중영장이 입견하였다.

十二日. 寶城郡守、金溝縣令入見, 仍爲辭去. 中營將、判官入見.

12일. 보성 군수·금구 현령이 입견하고 그대로 하직하고 갔다. 중영장·판관이 입견하였다.

同日. 題潭陽府檢案.<被告李召史, 其孫金相允與吳卜仁相鬪時, 批卜仁之頰, 第十三日, 因病致死事. 初檢官兼任玉果縣監韓致定, 覆檢官昌平縣令李和愚.>

【題】屍帳捧上是在果. 觀於脉錄, 而傷損無痕, 參以詞證, 而病崇丁寧, 成獄償命, 非所可論是如乎. 初不成獄, 何須覆檢? 非不欲直就初檢案剖判, 而既請覆檢云爾, 則其在重獄體之義, 不得不遲待覆檢案是加尼. 今見兩案, 如印一板, 益驗獄情之無復疑眩是置. 告者宜施反坐之律, 而新喪厥子, 隨喪其性, 冤恨崩迫, 指虛撒荒, 情固可憐, 罪亦可原是於. 被告李召史, 不念人之愛子如己之愛孫, 右袒家幼, 下手他兒, 平論則不過愚婦本色, 事會則遂成此案. 禍首非渠兩次批頰, 何由十日速獄是乙驗? 決杖三十度, 懲礪放送爲於. 保放諸人戾置, 別無更問之端, 一體放送爲於. 屍體戾, 出給屍親, 俾即埋瘞之意, 初檢官良中, 枚移施行宜當向事.

같은 날. 담양부(潭陽府) 검안을 데김하였다.<피고 이조이[李召史]는 자기의 손자 김상윤(金相允)이 오복인(吳卜仁)과 서로 싸울 때에 이조이가 오복인의 뺨을 때려 13일째 되는 날 병으로 인해 죽은 일. 초검시관은 담양 부사를 겸임한 옥과 현감 한치정, 복검시관은 창평 현령 이화우.>

【데김】시장(屍帳)을 받아 보았다. 검시 기록을 보면 다쳐 손상된 흔적이 없고, 증언을 참고하면 병 때문에 죽은 것이 분명한데도 죽인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옥사를 성립시키는 것은 논의할 바가 아니라고 한다. 애초에 옥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어찌 복검이 필요하겠는가. 바로 초검안을 좇아 판결하려 했으나 이미 복검을 요청했다고 하니, 그것은 옥사의 실체를 중히 여기는 뜻이 있는지라 복검안을 기다리지 않을 수 없었다. 지금 두 검안서를 보면 마치 한 판에 찍은 것 같아 옥사의 정황이 다시 의혹할 바가 없음이 더욱 검증되었다. 따라서 고발자는 의당 반좌지율(反坐之律)<sup>119)</sup>로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처음 자기 자식을 잃자 자신의

118) 삭선(朔膳) : 매일 초하룻날에 각 지방에서 나는 음식으로 임금에게 차려 올리는 음식상을 이른다.

119) 반좌지율(反坐之律) : 없는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 고발한 사람에게 고발당한 사람이 받은 처벌과



이성도 따라서 잃어 원통한 슬픔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이 급박하여 허공에 대고 헛소리까지 했으니, 정상이 진실로 불쌍하고 죄 또한 용서할 만하다.

피고 이조이는 남들이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자기가 손자를 사랑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제 집 어린애만 편들어 남의 아이에게 손을 댔으니, 공평하게 논의한다면 어리석은 부녀자의 본색에 지나지 않는데, 사정(事情)이 결국 이러한 옥안까지 이루어졌다. 재앙의 핵심은 이조이가 두 번 빵을 때린 것이 아닌데 무슨 연유로 10일간 옥사에 가두었는가? 장형 30대를 집행하고 징계하여 석방하라. 보방(保放)<sup>120</sup>했던 여러 사람들도 따로 다시 물을 단서가 없으니 모두 석방하라. 시체는 시친에게 내주어 바로 묻게 하는 뜻을 초검시관에게 공문을 보내어 시행함이 의당 할 일.

十三日. 判官入見.

13일. 판관이 입견하였다.

十四日. 中營將入見.

14일. 중영장이 입견하였다.

十五日. 判官入見.

15일. 판관이 입견하였다.

十六日. 羅州監牧官趙秉祿、益山郡守李能秀, 入見. 中營將入見.

16일. 나주(羅州) 감목관(監牧官)<sup>121</sup> 조병록·익산 군수 이능수가 입견하였다. 중영장

---

같은 형벌을 가하던 제도로, 반좌법(反坐法)과 같다.

120) 보방(保放) : 보증금(保證金)을 받거나 보증인으로 세우게 하고 형사(刑事) 피고인을 구류(拘留)에서 풀어 주는 것을 말한다.

121) 감목관(監牧官) : 지방의 목장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종6품의 무관 벼슬이다.

이 입견하였다.

十七日. 益山郡守、羅州監牧官入見, 仍爲辭去. 判官入見. 康津縣監趙錫龜, 延命後入見, 仍爲辭去.

17일. 익산 군수·나주 감목관이 입견하고 그대로 하직하고 갔다. 판관이 입견하였다. 강진 현감 조석귀가 연명한 뒤에 입견하고 그대로 하직하고 갔다.

十八日. 中營將入見.

18일. 중영장이 입견하였다.

十九日. 判官入見.

19일. 판관이 입견하였다.

二十日. 中營將、判官入見.

20일. 중영장·판관이 입견하였다.

二十一日.

21일.

二十二日. 判官、肇慶廟別檢朴鳳欽入見.

22일. 판관·조경묘 별검 박봉흠이 입견하였다.

二十三日. 判官入見.

23일. 판관이 입견하였다.

二十四日. 慶基殿參奉吳慶興入見. 淳昌郡守沈宜復入見, 仍爲辭去.

24일. 경기전 참봉 오경흥이 입견하였다. 순창 군수 심의복이 입견하고 그대로 하직하고 갔다.

二十五日. 判官、中營將入見.

25일. 판관과 중영장이 입견하였다.

二十六日. 潭陽府使曹錫玄, 自公忠道韓山移拜, 赴任之路, 延命後入見.

26일. 담양 부사 조석현(曹錫玄)이 공충도(公忠道 총청도) 한산에서 이배(移拜)되어 부임하러 가는 길에 연명한 뒤에 입견하였다.

二十七日. 潭陽府使入見, 仍爲辭去. 判官入見.

27일. 담양 부사가 입견하고 그대로 하직하고 갔다. 판관이 입견하였다.

同日. 聞庶弟嫂<有模室>喪逝之報, 慘慟慘慟.

같은 날. 서(庶) 동생의 아내<아내다운 법도가 있었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참혹하고 슬펐다.

二十八日. 朝監封大殿誕日進上. 判官入見. 古羣山僉使金寬善, 馳進入謁, 仍爲下直. 長城府使徐有民入見.

28일. 아침에 대전(大殿) 탄신일의 진상품을 감봉(監封)하였다. 판관이 입견하였다. 고군산 첨사 김관선이 달려와 입견하고 그대로 하직인사를 하였다. 장성 부사 서유민이

입견하였다.

二十九日. 長城府使入見, 仍爲辭去. 判官入見. 申後以肩輿出人吏廳成服.

29일. 장성 부사가 입견하고 그대로 하직하고 갔다. 판관이 입견하였다. 신시(申時) 뒤에 견여로 인리청(人吏廳)<sup>122)</sup>에 나가 성복(成服)<sup>123)</sup>을 하였다.

---

122) 인리청(人吏廳) : 아전(衙前) 또는 서리(胥吏)가 집무하는 곳으로, 이청(吏廳)이라고도 한다.

123) 성복(成服) : 상례에서, 대렴(大斂)을 한 뒤에 죽은 자의 주위 사람들이 각기 죽은 자와의 친소(親疎) 관계에 맞추어 자신이 입어야 할 상복을 입는 것을 말한다.

### 3. 1833년(순조33) 6월 : 춘하등(春夏等) 포평을 행하다

初一日. 日有食之, 判官救食.

1일. 일식(日蝕)이 있어 판관이 구식(救食)<sup>124</sup>례를 행하였다.

初二日. 長興府使鄭煥章、同福縣監李源吉入見.

2일. 장흥 부사 정환장·동북 현감 이원길 이 입견하였다.

初三日. 朝箋文差使員長興府使入見. 箋文封裹奉安于宣化堂大廳. 判官、同福縣監、中營將、中軍並入來, 拜箋後, 騎馬出南門外, 祇送, 以肩輿還營軒.

【箋文】伏以恭已出治, 八域光臨. 慶辰重回, 千秋聖節. 月維建未, 天其用申. 恭惟治無能名, 德必得壽. 重熙累洽, 承列祖垂裕之謨; 久道化成, 啓宗祏靈長之籙. 茲當虹流之月, 益迓川至之休. 伏念臣才慚承流恩、荷重寄. 滯跡南服, 縱違嵩呼之班; 懸誠北辰, 粗伸華祝之悃. 臣無任望天仰聖激切屏營之至.

【內閣箋文】伏以調玉燭於春臺, 鼎臻百祿; 添寶籌於海屋, 節屆千秋. 燕賀如雲, 虹流是日. 恭惟德合乾健, 治躋升平. 小民允懷, 誕敷箕五福錫極; 大德必得, 咸頌魯三壽作朋. 茲當聖節之載迴, 益仰純嘏之滋至. 伏念臣受寄方面, 圖報寸心. 旬宣南維, 獨阻起居之列; 瞻望北闕, 粗伸頌禱之忱. 臣無任望天仰聖激切屏營之至.

3일. 아침에 전문(箋文)<sup>125</sup> 차사원(差使員)<sup>126</sup> 장흥 부사가 입견하였다. 전문을 써서 봉하여 선화당(宣化堂) 대청에 봉안하였다. 판관·동북 현감·중영장·중군장이 나란히 들어와 전문에 절한 뒤에 말을 타고 남문 밖으로 나가 공경히 전송하고 견여로 영

124) 구식(救食) : 조선 시대에 일식이나 월식이 있을 때 이를 이변(異變)이라 여겨서 임금이 대궐 뜰에서 삼가는 뜻으로 행하던 의식이다. 각 관아에서는 어명으로 당상관과 낭관 각 1명이 천담복(淺淡服)을 입고 기도하였고, 당상관이 없는 곳은 행수관(行首官)·좌이관(佐貳官) 2명이 행하였다. 구식(救蝕)이라고도 한다.

125) 전문(箋文) : 왕실에 길사(吉事)·흉사(凶事)·경사(慶事)·영절(令節) 등에 신료가 국왕 또는 대비(大妃)·왕대비(王大妃)·대왕대비(大王大妃)에게 올리는 사육체(四六體)의 글인데, 일에 따라서 용어가 다르다.(최승희, 『增補版 韓國古文書研究』, 지식산업사, 2008, 127쪽)

126) 차사원(差使員) : 중요한 임무를 지워 관찰사 등이 파견하던 임시 관원을 말한다.

현으로 돌아왔다.

【전문】 삼가 생각건대 공경히 나라를 다스려 8역에 빛나게 임하였습니다. 경사스런 날이 다시 돌아오니 천추성절(千秋聖節)<sup>127)</sup>입니다. 그 달은 음력 6월이요, 그때는 신시(申時)였습니다.<sup>128)</sup> 공경히 생각건대 다스림은 무어라 형언할 수 없을 정도이고, 덕은 반드시 장수할 것입니다. 태평세월이 계속되니 열조(列朝)가 수유(垂裕)<sup>129)</sup>한 가르침을 이었고, 오랫동안 도를 행하여 교화가 이루어졌으니 종묘영장(靈長)의 책 상자를 열었습니다. 이에 탄신한 달<sup>130)</sup>을 당하여 더욱 강물이 모여드는 아름다움을 맞이합니다.<sup>131)</sup> 앞드려 생각건대 신의 재주는 넘치는 은전을 받으며 중대한 임무를 짊어지기에 부끄럽습니다. 남쪽 지방에 머물러 만세를 부르는 반열에 끼일 수는 없지만, 대궐에 정성을 바쳐 조금이나마 화축(華祝)의 충심<sup>132)</sup>을 바칩니다. 신은 천성(天聖)을 우러르는 간절한 마음 가눌 길 없습니다.

【내각(內閣)<sup>133)</sup>전문】 앞드려 생각건대 춘대(春臺)<sup>134)</sup>에 옥촉(玉燭)을 조화시키니<sup>135)</sup> 백록(百祿)이 모이고, 해옥(海屋)<sup>136)</sup>에서 임금의 춘추를 더하니 절서가 천

127) 천추성절(千秋聖節) : 성인(聖人)이나 임금이 태어난 날을 경축하는 명절을 가리킨다.

128) 그……신시(申時)였습니다 : 원문의 ‘건미(建未)’는 음력 6월을 가리키는데, 순조(1790~1834)는 경술년(1790) 6월 18일 신시(申時)에 창경궁(昌慶宮)의 집복헌(集福軒)에서 탄생하였다.

129) 수유(垂裕) : 수유 후곤(垂裕後昆)을 줄인 말로, 훌륭한 도(道)를 후손에게 물려줌을 뜻한다. 『書經 仲虺之誥』

130) 탄신한 달 : 원문의 ‘홍류(虹流)’는 임금의 생일을 비유할 때 쓰는 표현이다. 『송서(宋書)』 권27상 「부서지(符瑞志)」에 “제지(帝摯) 소호씨(少昊氏)의 어머니는 여절(女節)인데 마치 무지개만큼 큰 별이 아래로 화저(華渚)에 흘러 내려오는 것을 보고 이윽고 꿈속에서 감응하여 소호(少昊)를 낳았다. 소호가 제위(帝位)에 오르니 봉황이 날아오는 상서(祥瑞)가 있었다.” 하였다.

131) 강물이……맞이합니다 : 원문의 ‘천지(川至)’는 『시경』 「천보(天保)」의 “하늘이 안정시키시매 모두가 흥성하네……강물이 흘러 모여들듯 불어나지 않는 것이 없네.[天保定爾, 以莫不興……如川之方至, 以莫不增.]”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강물이 불어나는 아름다움처럼 임금의 탄신일이 다가옴을 반겨 맞는다는 뜻이다.

132) 화축(華祝)의 충심 : 화봉인(華封人)의 삼축(三祝)을 줄인 말로, 임금의 덕을 송축하는 충심을 말한다. 요(堯)임금이 일찍이 화(華) 땅을 시찰할 적에 화 땅의 봉인(封人)이 아뢰기를, “아, 청컨대 성인(聖人)을 축복하노니, 성인께서는 수(壽)하고 부(富)하고 다남자(多男子)하소서.”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莊子 天地』

133) 내각(內閣) : 규장각(奎章閣)의 별칭이다. 정조(正祖) 원년에 창설하였으며, 역대 국왕의 글·글씨·고명(顧命)·유교(遺教)·선보(璿譜)·보감(寶鑑) 등과 어진(御眞)을 봉안(奉安)하는 관아이다.

134) 춘대(春臺) : 봄 경치가 한창 좋을 때 대(臺)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마음이 넓어지고 즐거워진다는 뜻으로, 성세(盛世)를 비유한 것이다. 『老子』

135) 옥촉(玉燭)을 조화시키니 : 사시(四時)의 기후가 잘 조화되도록 하는 것을 이른 말로, 전하여 태평성대를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

136) 해옥(海屋) : 해상(海上)에 있다는 선옥(仙屋)을 이르는데, 이 해상의 선옥에는 선학(仙鶴)이 해마다 산가지를 하나씩 물어 온다는 전설에서 온 말로, 사람의 장수(長壽)를 비는 말로 쓰인다.

추(千秋)에 이릅니다. 연회(宴會)의 하객이 구름 같으니 탄신일이 바로 이날입니다. 공경히 생각건대 덕은 하늘의 굳셈에 부합하고 다스림은 태평성세를 이룩하였습니다. 백성들이 참으로 믿고 따르니 기주(箕疇)<sup>137)</sup>의 오복석극(五福錫極)을 크게 폈고, 대덕(大德)을 반드시 얻으니 노송(魯頌)의 삼수작붕(三壽作朋)<sup>138)</sup>을 송축합니다. 이에 성절(聖節)이 비로소 돌아옴을 당하여 도타운 복이 번성하기를 더욱 우러릅니다. 앞드려 생각건대 신은 관찰사의 임무를 받고 마음속에 보답할 것을 도모하였습니다. 남쪽 지방을 순선(旬宣)하여 홀로 문안 올리는 반열에 못 나가거니와, 대궐을 우러러 바라보며 조금이나마 송도(頌禱)의 정성을 바칩니다. 신은 천성(天聖)을 우러르는 간절한 마음 가눌 길 없습니다.

同日. 同福縣監入見, 仍爲辭去. 中營將入見. 羅州牧使李晦淵, 自潭陽移拜, 赴任之路, 延命後入見. 伊夜又爲入見.

같은 날. 동복 현감이 입견하고 그대로 하직하고 갔다. 중영장이 입견하였다. 나주 목사 이회연(李晦淵)이 담양에서 이배(移拜)되어 부임하는 길에 연명한 뒤에 입견하였다. 그날 밤 또 입견하였다.

初四日. 羅州牧使入見, 仍爲辭去. 中營將入見.

4일. 나주 목사가 입견하고 그대로 하직하고 갔다. 중영장이 입견하였다.

初五日. 去月初十日以後, 一直亢旱, 圭璧之舉, 殆遍一道, 而終未得雨. 將以初七日, 設祈雨祭於營下矣, 是日平明始雨終日, 所得恰爲二犁, 祈雨祭, 仍爲停止.

5일. 지난달 10일 이후로 한결같이 극심하게 가물어 규벽(圭璧)을 올리는 일<sup>139)</sup>을 거

137) 기주(箕疇) : 기자(箕子)가 지었다고 하는 홍범구주(洪範九疇)를 말한다. 구주는 오행(五行)·오사(五事)·팔정(八政)·오기(五紀)·황극(皇極)·삼덕(三德)·계의(稽疑)·서징(庶徵)·오복육극(五福六極)을 말한다.

138) 노송(魯頌)의 삼수작붕(三壽作朋) : 군신(君臣)이 경사를 함께함을 축하하는 말이다. 삼수는 장수한 삼경(三卿)을 이른다. 『시경』 「비궁(闕宮)」에 “삼수로 벗을 삼아, 뉘처럼 능처럼 견고히 하소서.[三壽作朋 如岡如陵]” 하였다.

노궁(魯宮) : 편을 말하는데, 신하가 자기의 군주와 국가를 칭송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139) 규벽(圭璧)을 올리는 일 : 기우제를 말한다. 규벽은 흉년이 들었을 때 신(神)에게 예물로 바치는

의 전 도내에서 행했으나 끝내 비가 오지 않았다. 따라서 오는 7일에 영내에서 기우제를 설행하려하였는데, 오늘 아침 해가 뜰 때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종일 내려 2 번 발을 갈기에 흠족했으므로 기우제는 바로 정지하였다.

同日. 公忠道公州判官李取在, 仍自南原移拜, 上去之路入見, 仍爲辭去.

같은 날. 공충도 공주 판관 이취재가 바로 남원에서 이배(移拜)되어 올라가는 길에 입견하고 그대로 하직하고 갔다.

初六日. 今春夏等褒貶狀啓封發.

【褒貶都封啓】 道內都事, 守令, 察訪, 令, 別檢, 叅奉, 召募, 別將, 審藥, 檢律, 巡營屬牙兵, 將官等, 今癸巳年春夏等褒貶磨鍊, 封進爲白在果. 羅州牧使李晦淵, 潭陽府使曹錫玄, 南原府使鄭東萬, 龍潭縣令朴獻壽, 南平縣監林迥鎮, 慶基殿令趙鼎休, 未赴任乙仍于, 並只等第不得磨鍊爲白乎於. 濟州三邑守令, 萬戶, 山馬監牧官, 審藥, 檢律等褒貶, 一依同州牧師韓應浩牒呈, 開坐以聞. 而教授段本州判官兼帶, 訓導段年久未差是如爲白乎於. 都事之貶坐同叅, 自是事例 而都事尹錫祐, 受由歸家是白乎等以, 臣謹自書寫, 緣由并以馳啓爲白臥乎事. 今癸巳年春夏等, 道內守令褒貶本中, 有五字刀擦處, 不勝惶恐, 緣由馳啓爲白臥乎事.

6일. 금년 춘하등(春夏等)<sup>140)</sup>에 포폄한 도목(都目)<sup>141)</sup> 계본(啓本)<sup>142)</sup>을 봉하여 발송했다.

옥(玉)을 말한다. 『시경』 「운한(雲漢)」의 “왕께서 말씀하기를 ‘아, 지금 사람에게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늘이 환란을 내리시어 기근이 거듭 이르기에, 신에게 제사를 거행하지 않음이 없으며, 이 희생을 아끼지 아니하여 규벽을 이미 모두 올렸는데도, 어찌하여 내 말을 들어주지 아니하십니까.’ 하였다.[王曰於乎! 何辜今之人? 天降喪亂, 饑饉薦臻. 靡神不舉, 靡愛斯牲. 圭璧既卒, 寧莫我聽?]”에서 나온 말이다.

140) 춘하등(春夏等) : 관찰사가 1년에 두 번 각도에 있는 수령을 포폄하여 상·중·하 등급으로 나눈 것 가운데 상반기 곧 6월의 평가를 말한다. 하반기는 추동등(秋冬等)이라 한다.

141) 도목(都目) : 도목정사의 약칭으로, 관원의 치적(治績)을 종합 심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영전·좌천 또는 파면을 시키는 일을 말한다. 해마다 음력 6월과 12월에 실시했으며, 앞의 것을 권무정(權務政), 뒤의 것을 대정(大政)이라 한다.

142) 계본(啓本) : 각사(各司)에서 임금에게 아뢰는 글로, 승정원(承政院)에서 임금에게 계달(啓達)하였다. 조선 시대 국왕에게 직계하는 문서는 계문(啓文)으로 통칭할 수 있는데, 그 이칭에 계본(啓本)·계목(啓目)·장계(狀啓)·서계(書啓)·정사(呈辭)·회계(回啓)·계초(啓草)와 계사(啓辭) 등이 있다.(이해준, 「고문서 분류체계 시안」, 『古文書研究』, 제22집, 2003, 92-102쪽) 계목(啓目)과 계본(啓本)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계목(啓目)은 직계(直啓)할 수 있는 서울의 2품 이상 아문(衙門) 또는 긴요한



【포평도봉계】 도내 도사(都事)<sup>143</sup> · 수령(守令)<sup>144</sup> · 찰방(察訪)<sup>145</sup> · 영(令)<sup>146</sup> · 별검(別檢)<sup>147</sup> · 참봉(參奉)<sup>148</sup> · 소모(召募)<sup>149</sup> · 별장(別將)<sup>150</sup> · 심약(審藥)<sup>151</sup> · 검률(檢律)<sup>152</sup> · 순영(巡營)<sup>153</sup> 소속 아병(牙兵)<sup>154</sup> · 장관(將官)<sup>155</sup> 등을 올 계사년(1833) 춘하등(春夏等)에 포평하여 성적을 매겨 장계를 써서 봉하였다.

나주 목사 이회연 · 담양 부사(潭陽府使) 조석현(曹錫玄) · 남원 부사(南原府使) 정동만(鄭東萬) · 용담 현령(龍潭縣令) 박헌수(朴獻壽) · 남평 현감(南平縣監) 임형진(林迥鎭) · 경기전 영(慶基殿令) 조정휴(趙鼎休)는 부임하지 아니함에 따라 모두 등급을 매길 수 없었습니다.

제주 삼읍(濟州三邑)<sup>156</sup>의 수령 · 만호(萬戶)<sup>157</sup> · 산마감독관(山馬監牧官)<sup>158</sup> ·

사안이 있는 각사(各司)에서 왕에게 올리는 문서 형식으로, 주로 회계(回啓)하면서 재결(裁決)을 청하거나 보고하는 내용이다. 이두(吏讀)를 사용하며, 외방에서는 계목(啓目)의 형식으로 올리지 못한다. 반면 계본(啓本)은 직계(直啓)할 수 있는 서울의 2품 이상 아문(衙門) [3품 이하의 승정원·장례원·사간원·종부시 포함] 또는 긴요한 사안이 있는 각사(各司) 그리고 서울과 지방의 제장(諸將) 어영대장(御營大將)·수어사(守禦使)·병사(兵使)·수사(水使)·통제사(統制使)·영장(營將) 등이 왕에게 보고하거나 의견을 묻는 내용으로 보고하는 문서의 형식이다. 『經國大典 禮典 用文字式』.

- 143) 도사(都事) : 각도 감영(監營)의 종5품 벼슬이다. 감사 다음가는 벼슬로 지금의 부지사(副知事)와 같은 것인데, 지방 관리의 비행을 감찰하고 과시(科試)를 맡아본다.
- 144) 수령(守令) : 고려·조선 시대에 각 고을을 맡아 다스리던 지방관들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절도사·관찰사·부윤·목사·부사·군수·현감·현령 등을 말한다.
- 145) 찰방(察訪) : 각도(各道)의 노정(路程)과 역참(驛站) 일을 맡아 보던 외직(外職)이다. 서울을 중심으로 각 지방에 이르는 중요한 도로에 대략 30리 거리로 역(驛)을 두어 마필(馬匹)과 관원을 두고 공문서를 전달하며 공용(公用) 여행자의 편리를 도모하게 한 기관을 역참(驛站)이라 하였는데, 수개 내지 수십개의 역참을 역도(驛道)라 칭하고, 그 구간(區間)의 마정(馬政)을 맡아 보는 관직을 찰방(察訪)이라 한다.
- 146) 영(令) : 종친부(宗親府)에 소속된 영(令)은 정5품직으로, 조경묘(肇慶廟)·경기전(慶基殿)에 1인 또는 2인의 영이 배속되어 그 관아의 실질적인 업무를 주관하였다.
- 147) 별검(別檢) : 조선 시대에 전설사의 종8품, 빙고(氷庫)·사포서의 종8품 또는 정8품의 벼슬이다.
- 148) 참봉(參奉) : 동반(東班) 곧 문관의 종 9품의 관직명이다.
- 149) 소모(召募) : 조선 때 의병(義兵)을 모집하기 위해 임시로 파견하던 관리를 말한다.
- 150) 별장(別將) : 용호영(龍虎營)의 종2품의 주장(主將)과 그 각 영의 정3품의 벼슬 및 산성(山城)·도진(渡津)·포구(浦口)·보루(堡壘)·소도(小島) 등의 무직(武職)과 별군(別軍)의 장교를 지칭한다.
- 151) 심약(審藥) : 궁중에 바치는 약재를 검사하기 위하여 각 도에 파견하던 종9품 벼슬이다.
- 152) 검률(檢律) : 조선 시대에 형조와 지방 관아에서 형률(刑律)을 맡아보던 종9품 벼슬로, 특히 전라도에는 2명을 두어, 그 중(中) 1명을 제주(濟州)에 배치했다.
- 153) 순영(巡營) : 감사(監司)가 일을 보던 관아(官衙), 곧 감영(監營)을 말한다.
- 154) 아병(牙兵) : 아하친병(牙下親兵)의 약칭으로, 대장의 휘하에서 군무를 수행하는 군사를 말한다.
- 155) 장관(將官) : 일반적으로 장수(將帥)를 지칭하나, 일반적으로 중군(中軍)·기사별장(騎士別將)·별효위별장(別驍衛別將)·천총(千摠)·기사장(騎士將)·파총(把摠 4품 이상)·초관(哨官)·금송삼군(禁松參軍) 등을 말한다. 위로는 대장(大將)이 포함되지 않고 아래로는 장교(將校)가 포함되지 않으며, 군사를 거느리는 지휘관 장관과 군사를 거느리지 않는 참모 장관이 있다.
- 156) 제주 삼읍(三邑) : 제주(濟州)·대정(大靜)·정의(旌義) 등 세 고을을 말한다.

심약·검률 등의 표품은 모두 제주 목사 한응호(韓應浩)의 첩정에 의거하여 자세  
 히 적어 아립니다. 교수(敎授)<sup>159</sup>의 경우는 제주 판관이 겸대(兼帶)하고 있으며  
 훈도(訓導)<sup>160</sup>의 경우는 해가 오래되도록 아직 뽑지 않았다고 합니다.

도사(都事)를 폄좌(貶坐)<sup>161</sup>에 동참시키는 것은 이로부터 전례가 되었는데 도사  
 윤석우(尹錫祐)가 말미를 받아 귀가하였기에 바로 신이 삼가 직접 쓰고 베낀 것으  
 로 이러한 연유로 모두 치계(馳啓) 하옵는 일.

지금 기사년 봄과 여름 분기에 도내 수령의 포폄계본 가운데 5자를 굵어내 고친  
 곳이 있어 황공함을 이길 수 없어 연유로 치계(馳啓) 하옵는 일.

初七日. 中營將、判官入見.

7일. 중영장·판관이 입견하였다.

同日. 以在米退捧事, 發關全州府.

【關文】 旱餘霈澤, 豈勝萬幸? 但念秧節已晚, 趁澤時急. 借牛助糧之節, 自當依前關  
 飭, 隨加董飭是乃. 苟或因他催科, 追擾棒枷, 鷄犬不寧是隱則, 其爲奪時妨農, 果爲  
 如何是乙喻, 此等之時, 住催勝於補助是如乎. 見今京司上納, 幾皆竣事, 營邑應捧  
 中, 即可便宜住催, 少紓民力者, 惟有在米一條而已. 營納在米, 未捧數爻, 爲先抄  
 出, 限八月姑爲退捧事. 到關即時各面面任良中, 傳令知委, 俾無一民未知之弊爲於.  
 伊前或以在米未收, 推捉拘留者是去等, 一併放送, 使之齊赴秧役爲乎矣. 捧未捧查實  
 之際, 虛實相蒙, 徒爲該色, 面里任輩, 中間乾沒之資, 則營門別樣軫恤之舉, 將因么

157) 만호(萬戶) : 각 도(道)의 여러 진(鎭)에 소속된 종4품의 무관 벼슬로, 육군(陸軍)에 딸린 병마만  
 호(兵馬萬戶), 해군(海軍)에 딸린 수군만호(水軍萬戶)가 있었다.

158) 산마감목관(山馬監牧官) : 산과 말 등 목장(牧場) 사무를 맡던 벼슬아치인데, 여기서는 제주도 한  
 라산 중턱 이상에 설치된 산마장(山馬場)의 김만일(金萬鎰) 후손으로 추측된다. 곧, 효종9년(1658)  
 제주 목사 이희(李禧)의 계청(啓請)에 따라 김만일의 후손들이 국가로부터 산마감목관을 세습적으로  
 임명받았으며, 이들 산장은 숙종 대를 거치면서 침장(針場)·상장(上場)·녹산장(鹿山場)으로 개편되었  
 다. 김만일의 둔마(屯馬)에 관한 이야기는 이건(李健)의 『제주풍토기(濟州風土記)』에 전한다.

159) 교수(敎授) : 조선 시대에 지방 유생(儒生)의 교육을 맡아보던 종6품 벼슬이다.

160) 훈도(訓導) : 전의감(典醫監)·관상감(觀象監)·사역원(司譯院)·5백 호(戶) 이상의 큰 고을에 둔 9품  
 벼슬이다. 고을의 훈도는 종9품이고, 기타 경관직(京官職) 훈도는 정9품이다.

161) 폄좌(貶坐) : 포폄좌기(褒貶坐起)의 준말로, 포폄을 하기 위한 좌기(坐起)를 말한다. 포폄은 관리의  
 근무 성적을 고과하여 전(殿)·최(最)를 정하는 것이고, 좌기는 관청의 장(長)이 출근하여 일을 보는  
 것이다.

麼該掌輩，操縱闕而不行乎。苟有一分紀綱，焉敢乃已？各別照察，毋至大段生梗之地爲於。今月還分段置，趁此秧節，磨鍊分給，俾無過時之歎，舉行形止，亦即馳報事。

같은 날. 세미(稅米)<sup>162</sup>를 기한을 늦춰 거둬들이는 일로 전주부에 관문(關文)<sup>163</sup>을 발송하였다.

【관문】가뭄 끝에 큰 비가 뭇에 쏟아지니 어찌 만 번 다행함을 이기겠는가. 다만 이양 시기가 이미 늦었음을 염려하여 뭇으로 달려감이 시급하다. 소를 빌리고 식량 일을 도와야 할 일은 마땅히 이전에 관문으로 신칙한 것에 의거해서 즉시 감시하고 독촉하며 타일러야 한다. 그러나 만일 흑시라도 다른 세금 독촉으로 인하여 몽둥이와 형벌로 다그치면 닭과 개조차도 온전하게 남지 않을 것이니, 그 때문에 농사철을 빼앗아 농사를 방해하면 과연 어떠하겠는가. 이 같은 때에 조세의 독촉을 유예하는 것이 물질적으로 보태주는 것보다 낫다고 한다. 서울 아문의 상납은 거의 모두 마쳤고, 영음(營邑)에서 응당 거둬들여야 하는 것 가운데 편의적으로 조세의 독촉을 멈추게 하여, 조금이나마 백성들의 힘을 펴게 할 수 있는 오직 쌀 한 조항이 있을 뿐이다. 감영에서 거둬들여야 할 쌀에 있어서는 미수(未收)된 수효를 먼저 초기(抄記)하여 뽑아내어, 8월을 기한으로 우선 늦추어 납부하게 할 것.

관문이 도착하는 즉시 각 면의 면임에게 전령으로 알려 한 사람이라도 알지 못하는 폐단이 없게 하라. 그 전에 흑 쌀이 미수된 것이 있어 붙잡아다 구속시킨 자가 있거든 모두 놓아 보내고, 그들로 하여금 일제히 이양의 일에 달려가게 하라.

바친 것과 못 바친 것을 사실대로 조사하는 때에 허실이 서로 분명하지 않아 한 것 그 직무를 맡은 아전과 면임과 이임의 무리되는 자들이 중간에 가로채는 바탕으로 삼는다면, 감영이 특별하게 진휼(軫恤)하는 일이 장차 하찮은 그 직무를 맡은 무리들로 인하여 조종(操縱)되고 막혀 행해지지 못할 것이다. 진실로 조금이라도 기강이 있다면 어찌 감히 그만두겠는가. 각별하게 살펴 큰 탈이 생기지 않게 하라. 이번 달 환곡 분량들도 이양절에 맞추어 마련하여 나누어 주어 때가 지났다는 한 탄이 없게 하고, 거행한 사실의 전말을 또한 바로 급히 알릴 것.

162) 세미(稅米) : 원문의 ‘在米’를 ‘세미(稅米)’로 국역하였다. ‘모미(牟米)’의 오기일 수도 있다는 의문이 있으나 이하 3번이나 ‘在米’가 나오기 때문에 우선 ‘세미(稅米)’로 국역하였다.

163) 관문(關文) : 관부(官府) 상호간에 수수(授受)되는 관용문서(官用文書)로서 동등 이하에 쓴다. 동등한 관부, 상호간 또는 상급 관부에서 하급 관부로 보내던 문서이다. 하급에서 상급으로 올리는 문서는 ‘관(關)’을 쓸 수 없고, 첩정(牒呈)이라 쓴다. 관(關)의 내용은 대개 두 관청간의 관련있는 사무를 상고(相考)하여 시행하기 위한 것이다. 동등한 관부 사이의 관문을 ‘평관(平關)’이라 하며, 관문(關文) 또는 관자(關子)라고도 썼다.(최승희, 앞의 책, 180쪽)

初八日. 判官入見

8일. 판관이 입견하였다.

初九日.

9일.

初十日. 慈闈上衙以後, 有一觀妓樂之意, 而憫旱未遑矣, 初五日得雨後, 民憂少弛, 故是日設大風樂於觀風閣.

10일. 자위(慈闈 어머니)께서 관아에 올라온 뒤로 한 번 기생의 풍류를 보려는 마음은 있었는데도 가뭄을 근심하여 겨를이 없었다. 5일에 비가 온 뒤로 백성들의 근심이 조금 풀어졌기 때문에 이날 관풍각(觀風閣)에서 대풍악(大風樂)을 베풀었다.

十一日. 鎭安縣監朴曾壽, 赴任之路, 延命後入見. 當日又爲入見, 仍爲辭去.

11일. 진안 현감 박증수가 부임하는 길에 연명한 뒤에 입견하였다. 당일 또 입견하고 그대로 하직하고 갔다.

十二日.

12일.

十三日.

13일.

十四日. 題全州府檢案.<干犯朴召史, 臀築金召史腹部後, 其甥石崇又爲膝築胸膛, 第十日墮胎致死事. 初檢官全州判官李羲平、覆檢官益山郡守李源吉.>

【題】屍帳捧上是在果. 兩檢脉錄, 脗合法文, 一場毆築, 的有詞證, 實因之爲, 撞傷

墮胎，更無疑眩是乃，至於正犯執定，未見十分的確是如乎。大抵起鬧由於牟利，毆築由於起鬧，墮胎由於毆築，致死由於墮胎。而始初起鬧者，朴女也，終焉築腹者，朴女也。此獄始終，朴女爲主，而其甥石崇段，不過助勢加功而已是隱則，今此初覆兩案之並以石崇爲元者，特以孀婦、健男之氣力不同，膝撞、臀築之軟猛有異，而有此意之耳。其實則孕婦墮胎，未必皆因重傷，驚動恐怖，跌仆撞觸，無往非墮胎之因是去等，況於推擠跨據，以臀築腹，其不當下墮胎亦云異矣。石崇之膝築胸膛，在於朴女跨腹之後，則墮胎根因，專由石崇云者，果是移易不得之案是乙喻？脉錄觀之，胸膛色黃柔軟，初無被築痕損，則四次膝築，設如屍親之招是良置，未必爲致命之因是遣。始謂因病，末言被築，罔念比洒之義，顯有掩護之跡。屍親所謂胸膛牽痛，由於石崇膝築云者，果是死者生前之言是隱喻？亦未可準信是遣。劃地之謠，自昔云然，殺獄一起，四隣驚散，況身爲干犯？違怯逃颺，自是愚迷之例態，未爲元犯之的證，獄體至重，有不可遽然硬定是如乎。兩檢官，會查官差定爲去乎，約日會推，更爲反覆嚴覈，指的論報爲於。實因真的，無容更檢而暑月停屍時刻可矜，屍體段，卽速出給，使之埋瘞是遣，看證諸人段置，姑並保放趁，會推時，來待之意，初檢官良中，枚移施行向事。

14일. 전주부 검안을 데김하였다.<간범(干犯) 박조이[朴召史]가 둔부로 김조이[金召史]의 복부를 몽갓 뒤에 자기의 오라비 박석송(朴石崇)이 또한 무릎으로 가슴팍을 눌러 10일 만에 낙태(落胎)되어 죽음에 이르게 한 일. 초검시관은 전주 판관 이희평, 복검시관은 익산 군수 이원길.>

【데김】시장(屍帳)을 받아 보았다. 두 검시관의 조사기록이 법 조항에 꼭 맞고 한 바탕 때리고 몽갓 분명한 증언이 있어, 죽은 실제 원인이 때리고 다치게 하여 낙태된 것은 다시 의혹할 바가 없다. 그러나 정범을 꼭 집어 정함에 이르러서는 충분히 확실하지 않다.

대저 소란이 일어남은 이익을 꾀함에서 말미암고, 때리고 몽갓 것은 소란에서 연유하였으며, 낙태는 때리고 몽갓 것에서 연유하며, 죽음에 이른 것은 낙태에서 연유하였다. 애초 소란을 일으킨 자는 박조이이고, 마지막 복부를 몽갓 것도 박조이이다. 이옥사의 시종은 박조이가 주도하였고, 그 오라비 박석송은 형세를 도움에 지나지 않았는데 지금 이렇게 초검시관과 복검시관의 조사가 모두 박석송을 원범으로 삼은 것은, 단지 잔악한 부인과 강건한 남자의 기력이 같지 않고, 무릎으로 때리고 둔부로 몽갓이 연약함과 사나움의 차이가 있음으로 이러한 의견을 낸 것이다. 사실은 임신한 부인의 낙태는 반드시 모두 중상(重傷)이 원인이 아니고,

놀라고 겁먹고 넘어지고 부딪히는 것이 왕왕 낙태에 이르는 원인이 아닌 것이 없거늘, 하물며 밀치고 올라타 둔부로 배를 뭉겼는데도 당시에 낙태가 안 되었다고 말하는 것도 이상하다.

박석송이 무릎으로 흉당을 뭉갠 것은 박조이가 배에 올라탄 뒤에 있었으니, 낙태의 근본 원인이 오로지 석송으로 말미암는다고 말하는 것은 과연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생각이겠는가? 또 검시기록으로 보면 가슴팍의 색이 노랗게 유연(柔軟)하고, 처음에 뭉갠 흔적의 상처가 없었다. 4차례 무릎으로 뭉갠이 설사 시친의 공초와 같더라도 반드시 목숨을 다하게 하는 원인이 되지는 못한다고 할 것이다. 처음엔 병이 원인이라고 말했다가, 끝에는 뭉갠을 당했다고 말하니, 가려내 누명을 씻어낼 뜻은 없고 엄호하려는 흔적이 있음이 드러났다. 시친의 이른바 ‘가슴팍의 통증’이 박석송이 무릎으로 뭉갠 것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죽은 사람이 생전에 한 말인지 또한 확실히 믿을 수 없다. 가둔다는 소문을 내어 옛날부터 그렇게 말하였으니, 살옥(殺獄)이 한 번 일어나면 사방 이웃이 놀라 흩어지는데 하물며 자신이 범죄에 간여된 자임에랴. 허둥대며 겁먹고 도망하는 것은 본래 어리석고 미혹한 자의 일반적인 행태이니 원범의 확실한 증거가 되지 못하고, 옥사는 지극히 중요하니 갑자기 억지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

두 검시관을 회사관(會查官 합동심문하는 동추관)으로 정하니, 날을 약속하여 모여 추심하고 다시 반복하여 엄중히 캐물어 지적인 논의를 보고하라. 죽은 실제 원인이 확실하니 다시 조사할 필요는 없고, 더운 달에 시체를 머물게 하는 시간은 삼가야 하니 시체는 즉시 빨리 내주어 그들로 하여금 묻게 하고, 본 것을 말한 여러 사람들도 우선 모두 보방(保放)<sup>164</sup>하고 회추(會推)<sup>165</sup> 때에 맞춰 와서 대기하라는 뜻을 초검시관에게 공문을 보내어 시행할 일.

十五日. 早朝以肩輿詣客舍, 行望闕禮. 中軍、中營將、判官、檢律, 同爲進參, 仍還營軒. 道內春夏等殿最開拆.

【褒貶榜目】中軍黃在元<佐幕有要, 任勞絕囑, 上.>, 都事尹錫祐<曠不爲瘼, 評毋庸苛,

164) 보방(保放) : 보석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우고 형사 피고인을 구류에서 풀어 주는 일로, 보석(保釋)과 같은 의미이다.

165) 회추(會推) : 범죄인에 대한 신문을 명령받은 추관(推官)들이 한자리에 모여 합동으로 추문(推問)하는 일을 말한다.

上.>, 全州判官李羲平<七考且滿, 一副成規, 上.>, 羅州牧使李晦淵<日淺>, 光州牧使趙雲明<完局良手, 政清訟簡, 上.>, 綾州牧使李廣度<糶既祛弊, 稅又釐濫, 上.>, 南原都護府使鄭東萬<未赴任>, 長興都護府使鄭煥章<訟聽于吏, 糶委於鄉, 下.>, 順天都護府使洪重燮<民安其堵, 士絃于庠, 上.>, 潭陽都護府使曹錫玄<日淺>, 長城都護府使徐有民<廉明公平, 前考先獲, 上.>, 茂朱都護府使李光承<山水名區, 嘯詠而治, 上.>, 礪山都護府使許嘯<毋訾杖猛, 戢頑惟猛, 上.>, 寶城郡守俞章煥<頗差非故, 課農則勤, 上.>, 益山郡守李能秀<繕不役民, 糶不擾村, 上.>, 古阜郡守金裕淳<倉有備豫, 民受實惠, 上.>, 靈巖郡守李應謙<器非不利, 遇此盤錯, 中.>, 靈光郡守韓義運<誠切圖酬, 謗胡噂沓, 中.>, 珍島郡守金善問<賑喜捐廩, 稅欠察奸, 中.>, 樂安郡守韓啓轍<屏騶勞農, 捐廩賙飢, 上.>, 淳昌郡守沈宜復<吏憚綜明, 民頌慈諒, 上.>, 錦山郡守李魯榮<峽務多暇, 優悠翰墨, 上.>, 珍山郡守李奎憲<賑不那糶, 簽不泄邇, 上.>, 金堤郡守李玄好<一念勤孜, 濟以綜明, 上.>, 昌平縣令李和愚<誠力所到, 漸見振刷, 上.>, 龍潭縣令朴獻壽<未赴任>, 臨陂縣令李宜翼<逋吏反噬, 勿撓勿縱, 上.>, 萬頃縣令尹守澈<修堤課農, 捐廩補稅, 上.>, 金溝縣令金錫喜<柔亦制剛, 疎還勝密, 上.>, 光陽縣監沈兢祖<可矣寬平, 濟以剛明, 上.>, 咸悅縣監洪在果<先察幽隱, 庶釐宿瘼, 上.>, 扶安縣監趙在慶<弊局先務, 鉅強慰弱, 上.>, 康津縣監趙錫龜<輸粟招賄, 跡若泥鬪, 下.>, 玉果縣監韓致定<勞農課士, 藹如誠款, 上.>, 沃溝縣監金秀萬<簽括餘丁, 浦蠲濫徵, 上.>, 南平縣監林迥鎮<未赴任>, 興德縣監金命爍<燉煌糶犁, 毋俾專美, 上.>, 井邑縣監洪冕周<方喜求藹, 遽惜斤甿, 中.>, 高敞縣監李鍾應<徵逋拔根, 督稅先裝, 上.>, 茂長縣監尹興圭<圖酬念切, 買牛勸耕, 上.>, 務安縣監柳榮輔<吏奸莫察, 客謗亦聞, 下.>, 求禮縣監申鍾命<躬行阡陌, 勸相耕耨, 上.>, 谷城縣監任禹常<倉謬匪今, 束吏則嚴, 上.>, 雲峰縣監趙存奎<需不混稅, 賙不兌糶, 上.>, 任實縣監洪哲謨<曠餘還官, 吏惴民愉, 上.>, 長水縣監李啓陽<來固屬耳, 民方拭目, 上.>, 鎮安縣監朴曾壽<未赴任>, 同福縣監李源吉<謗豈盡信, 瓜亦不遠, 中.>, 和順縣監徐承淳<如斗之邑, 遊刃之手, 上.>, 興陽縣監朴載寬<非忽迎送, 奈多駭聽, 下.>, 海南縣監白龜鎮<船粟何去, 倉色亦幻, 下.>, 龍安縣監林貞鎮<邑僻事簡, 何須赫譽, 上.>, 咸平縣監金箕祖<訟無誤剖, 災不濫俵, 上.>, 泰仁縣監沈能淑<華須副實, 約則鮮失, 上.>, 高山縣監宋文熙<儒素本色, 循良治績, 上.>, 參禮察訪李敏實<謗由損下, 中.>, 槩樹察訪田裁五<初手銳意, 上.>, 青巖察訪李東韻<甿糶頗精, 上.>, 景陽察訪安允中<席未及煖, 上.>, 碧沙察訪金取和<戒在沽眩, 中.>, 濟原察訪朴慶九<勒貸招怨, 中.>, 肇慶廟令韓哲浩<未曾識面, 上.>, 別檢朴鳳欽<何適不宜, 上.>, 慶基殿令趙鼎休

<未赴任>, 叅奉吳慶興<惜屈閑任, 上.>, 格浦別將金相俊<濫差駭聽, 粧船何禁, 下.>, 威鳳別將李昌櫜<課射有效, 賑飢殫誠, 上.>, 南固別將金基中<頗著勤幹, 箇中翹楚, 上.>, 審藥皮宗植<曠無可評, 上.>, 檢律金取鳴.<考律依樣, 上.>

15일. 이른 아침에 견여로 객사에 이르러 망궐례를 행하였다. 중군·중영장·판관·검를 등이 함께 진참(進參)하고 그대로 영헌으로 돌아왔다. 도내의 춘하등(春夏等) 전최(殿最)<sup>166)</sup>를 개봉하였다.

【포평방목(褒貶榜目)<sup>167)</sup>】

- 중군 황재원<좌막(佐幕)<sup>168)</sup>이 요구해도 임무에 수고하며 청탁을 거절함. 상.>
- 도사 윤석우<자리를 비움에 병을 핑계대지 않았고 평가에 가혹하지 않음. 상.>
- 전주 판관 이희평<7고(七考)가 차도록<sup>169)</sup> 한결같이 성문화된 규칙에 부합함. 상.>
- 나주 목사 이회연<근무일수가 매우 적음.>
- 광주 목사 조운명<뛰어난 솜씨로 국면을 완수하고 정사가 맑고 송사가 간략함. 상.>
- 능주 목사 이광도<환곡(還穀) 수납시 폐단을 없앴고 조세 또한 멋대로 하는 것을 고침. 상.>
- 남원 도호부사 정동만<부임하지 않음.>
- 장흥 도호부사 정환장<송사를 아전에게 맡기고 환곡 수납을 향리에게 위임함. 하.>
- 순천 도호부사 홍중섭<백성은 울안에서 편안하고 선비는 학교에서 공부하게 함. 상.>
- 담양 도호부사 조석현<근무일수가 매우 적음.>
- 장성 도호부사 서유민<청렴 공평하며 미리 생각하여 일을 처리함. 상.>
- 무주 도호부사 이광승<산수가 이름난 지역을 휘파람 불고 시 읊으며 다스림. 상.>
- 여산 도호부사 허속<혈뜰으며 사납게 매질함이 없으나 완약함을 거두는 데는 오직 매섭게 함. 상.>
- 보성 군수 유장환<탈이 난 것은 고의가 아니고 농사일을 독려하는 일은 부지런함. 상.>

166) 전최(殿最) : 지방의 감사(監司)가 관하 각 고을 수령들의 치적(治績)을 조사하여 등급을 매겨 중앙에 보고하던 일을 말한다. 성적을 매길 때 상(上)을 최(最), 하(下)를 전(殿)이라 하여, 음력 6월과 12월에 시행하였다.

167) 포평방목(褒貶榜目) : 수령의 업무에 대하여 칭찬하고 낮춘 사람들의 성명을 적은 명부(名簿)이다. 포평도봉계(褒貶都封啓)에 점련(粘連)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168) 좌막(佐幕) : 비장(裨將)으로, 조선 시대에 감사(監司)·유수(留守)·병사(兵使)·수사(水使)·견외 사신(使臣)을 따라다니며 일을 돕던 무관 벼슬이다.

169) 칠고(七考)가 차도록 : 1년에 두 번씩 외임 수령의 행정 실적을 고사하여 9등으로 나누는데, 7고는 일곱 번의 고사를 거쳤다는 말로 3년 반 동안 외임 수령으로 재임했다는 뜻이다.



익산 군수 이능수<보수공사에 백성을 부리지 않고 환곡수납 때에 마을을 요란스럽게 하지 않음. 상.>

고부 군수 김유순<창고가 미리 비축되어 있어 백성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음. 상.>

영암 군수 이응겸<기량은 날카롭지 않음이 없는데 이러한 반착(盤錯)<sup>170)</sup>을 만남. 중.>

영광 군수 한의운<간절히 성은(聖恩)에 보답하려는데 비방이 어찌 거듭 수군거리는가? 중.>

진도 군수 김선문<진휼에 연릉(捐廩)<sup>171)</sup>을 잘하였으나 세금에 간사한 자를 잘 살피지 못함. 중.>

낙안 군수 한계철<마부를 물리치고 농사에 힘쓰고 연릉(捐廩)으로 주린 자를 구함. 상.>

순창 군수 심의복<관리는 지혜를 모았고 백성은 어질고 진실함을 칭송함. 상.>

금산 군수 이노영<골짜기에서 복무하며 여가에 글공부를 함. 상.>

진산 군수 이규현<진휼에 환곡을 유용<sup>172)</sup>하지 않고 군첩(軍簽)<sup>173)</sup>에 가까운 자라고 빼주지 않음. 상.>

김제 군수 이현호<일념으로 부지런하고 구휼 시기에 지혜를 모음. 상.>

창평 현령 이화우<진실로 힘이 미치는 곳에 점점 쇄신(刷新)을 보임. 상.>

용담 현령 박헌수<부임하지 않음.>

임피 현령 이의익<포리(逋吏)<sup>174)</sup>의 무고(誣告)에 흔들리지 않고 방종(放縱)하지 않음. 상.>

만경 현령 윤수철<제방을 고치고 농사를 독려하며 연릉(捐廩)하여 조세를 보충함. 상.>

금구 현령 김석희<부드러우면서도 강하게 제재하고 성글면서 도리어 매우 치밀함. 상.>

광양 현감 심금조<너그럽고 평안하며 강직하고 명석하게 구휼함. 상.>

함열 현감 홍재과<먼저 드러나지 않은 것을 살펴 오래된 병폐를 거의 바로잡음. 상.>

부안 현감 조재경<잘못된 형국을 먼저 다스리고 강포한 자를 없애 약자를 위로함. 상.>

강진 현감 조석귀<곡식을 운송할 때 뇌물을 밝히며 행적 또한 진흙탕 같음. 하.>

옥과 현감 한치정<농업에 힘쓰며 선비를 독려하는 일에 매우 정성스러움. 상.>

옥구 현감 김수만<군첩(軍簽)에 여정(餘丁)<sup>175)</sup>을 넣고 포구에서 남징(濫徵)을 없앴. 상.>

170) 반착(盤錯) : 반근착절(盤根錯節)의 준말로, 서린 뿌리와 뒤섞인 마디처럼 얼크러져 처리하기 어려운 일을 말한다.

171) 연릉(捐廩) : 사회 공중(公衆)의 이익을 위하여 벼슬아치들이 봉록의 한 부분을 덜어 내어서 보태는 일을 말한다.

172) 환곡을 유용 : 원문 '那糶'의 '那'는 '那移' 또는 '挪移'로, 임시로 돌려 대는 '유용'의 뜻이다.

173) 군첩(軍簽) : 군역(軍役)을 정해서 발부(發付)하는 통지서이다.

174) 포리(逋吏) : 관아의 물건을 사사로이 써버린 아전을 말한다.

175) 여정(餘丁) : 평민이나 천민(賤民)이 출역(出役)하였을 경우, 출역하지 않은 한두 사람을 정정(正

남평 현감 임형진<부임하지 않음.>

흥덕 현감 김명혁<밭 갈고 씨 뿌리는 것을 번성시키고 칭찬을 독차지하지 않음. 상.>

정읍 현감 홍만주<꿀을 찾는 데 바야흐로 기뻐하고 보리 수확 철에 갑자기 황급함. 중.>

고창 현감 이종응<관리가 관아의 물건을 사사로이 쓴 것을 징수하여 뿌리를 뽑고 세곡을 독촉하여 미리 실어 보냄. 상.>

무장 현감 윤홍규<성은(聖恩)에 보답할 계획이 절실하고 소를 사서 밭갈이를 권면함. 상.>

무안 현감 유명보<아전의 간교함을 살피지 못하고 사람들의 험담 또한 들림. 하.>

구례 현감 신종명<몹소 경작지를 찾아가고 밭 갈고 김매는 것을 권면하고 도움. 상.>

곡성 현감 임우상<창색(倉色)의 잘못은 지금이 아니고 아전을 단속함이 엄격함. 상.>

운봉 현감 조재규<수요품은 세금과 혼동하지 않고 진흙할 때 태적(兌糶)<sup>176)</sup>하지 않음. 상.>

임실 현감 홍철모<밝게 살펴 관리에게 책임을 돌리니 아전들은 두려워 떨고 백성들은 즐거워함. 상.>

장수 현감 이계양<부임해 와서 진실로 귀를 기울이니 백성들이 눈을 씻고 봄. 상.>

진안현감 박증수<부임하지 않음.>

동북 현감 이원길<비방이 어찌 모두 진실이겠는가마는 임기만료 또한 멀지 않음. 중.>

화순 현감 서승순<아주 작은 읍에서 일 처리가 능수능란함. 상.>

흥양 현감 박재관<보내고 맞이함에 소홀하지 않았다면 어찌 해괴한 소문이 많겠는가. 하.>

해남 현감 백귀진<조운선의 곡식은 어디가고 창색(倉色) 또한 농간함. 하.>

용안 현감 임정진<읍은 궁벽지고 일은 간소하니 어찌 빛나는 명예를 구하리오. 상.>

함평 현감 김기조<송사에 오판이 없고 재해를 당한 사람에게 멋대로 조세를 감면하지 않음. 상.>

태인 현감 심능숙<화려하되 실무에 부합하고 검소하되 부족함이 없음. 상.>

고산 현감 송문희<유자(儒者)의 본색으로 좋은 것을 따라 공적을 쌓음. 상.>

삼례 찰방 이민실<비방은 아랫사람에게 손해를 입혔기 때문임. 중.>

오수 찰방 전재오<처음 부임하여 의지가 단단함. 상.>

청엄 찰방 이동운<보리를 거둬들이미 자못 정밀함. 상.>

경양 찰발 안윤중<공무에 자리가 따듯해질 새가 없을 정도로 바쁨. 상.>

벽사 찰방 김최화<경계함을 등한히 하고 의혹된 바가 있음. 중.>

丁)에게 지급하여 집안일을 도와주게 하는 장정(壯丁)을 말한다.

176) 태적(兌糶) : 세용(歲用)에 남은 양곡을 백성에게 널리 사도록 했다가 가을에 곡식이 나오면 정부에서 사들이는 것이다.

제원 찰방 박경구<강압적으로 대출 받게 하여 원망을 삼. 중.>

조경묘 영 한철호<일찍이 면식이 없음. 상.>

조경묘 별검 박봉흠<어디 간들 마땅하지 않으리오. 상.>

경기전 영 조정휴<부임하지 않음.>

참봉 오경흥<한직에 머물러 있음이 안타까움. 상.>

격포 별장 김상준<함부로 임명하는 것을 몹시 놀랍게 들었고 단장한 배[粧船]는 어찌하여 금하는가. 하.>

위봉 별장 이창억<활쏘기를 시험하여 효과가 있었고 진흙정사에 정성을 다함. 상.>

남고 별장 김상준<자못 근면하고 성실함이 드러났고 몇 분야는 뛰어남. 상.>

심약 피종식<정사에 밝아서 평할 것이 없음. 상.>

검률 김최명<올법을 헤아림이 격식에 의거함. 상.>

十六日.

16일.

十七日. 威鳳別將李昌楹, 入謁. 羣山僉使李玄升, 延命後入見. 高敞縣監李鍾應入見當日並辭去.

17일. 위봉 별장 이창억이 들어와 알현하였다. 군산 첨사 이현승이 연명한 뒤에 입견하였다. 고창 현감 이종응이 입견하고 당일 모두 하직하고 갔다.

十八日. 平明以肩輿詣客舍, 行大殿誕日陳賀禮. 中軍中營將、判官、檢律, 同爲進參, 還營軒. 威鳳別將入謁下直.

18일. 아침 해가 뜰 때에 견여로 객사에 가서 임금 탄신일 진하례(陳賀禮)<sup>177</sup>를 행하였다. 중군·중영장·판관·검률이 함께 진참(進參)하고 영현으로 돌아왔다. 위봉 별장이 입견하고 하직(下直)하였다.

177) 진하례(陳賀禮) : 정월 초하룻날이나 왕실의 탄신일 같이 나라에 축하할 일이 있으면 백관(百官)이 임금에게 하례(賀禮)를 드리던 의식이다.

十九日. 判官入見.

19일. 판관이 입견하였다.

二十日.

20일.

二十一日. 判官入見.

21일. 판관이 입견하였다.

同日. 題咸悅縣檢案.<正犯黃尙白, 毒打其義子四歲兒姜成萬, 折項致死事. 初檢官咸悅兼任龍安縣監林貞鎮. 覆檢官臨陂縣令李宜翼.>

【題】屍帳捧上是在果. 兩檢之脉錄無疑, 諸證之供招可按是如乎. 殺越之變, 從古何限, 而其窮兇絕憯, 豈有此獄之比者乎? 俚語有之, 男愛過房之子, 女憎前妻之兒是如爲置, 噫彼黃尙白, 獨非人情乎哉? 數朔新合之耦, 縱無恩愛, 四歲幼穉之兒有何罪辜, 常時之縛樹塞口, 當日之築胸壓項, 都出必殺乃已之心, 殆若業冤報復之舉. 究厥行兇, 覓說不得, 苟非賦性憯毒, 如蛇蝎之遇人則螫, 天生兇厲, 如梟獍之生子輒噉, 豈有是也? 乃敢以染病等說, 欲爲掉脫之計者, 尤極兇狡是置. 兩檢官, 仍定同推官爲去乎, 約日會坐, 同正犯黃尙白身乙, 以別杖箇箇考察, 嚴刑一次, 捧直招牒報爲旆. 殺獄檢驗, 自有體段是去乙, 今此初檢, 一次取招後, 更無反覆究詰之舉, 有違審克之義, 未免疏忽之歸, 初檢刑吏段, 移送覆檢邑, 嚴刑懲礪放送爲旆. 檢報肯綮專在實因是去乙, 初檢則以折項致死懸錄, 覆檢則以壓項折骨死懸錄, 緣何致此牴牾是喻? 覆檢刑吏段置, 爲先別附過爲旆. 火木壓項, 雖出詞證之招是乃, 壓之而已, 豈有骨折之理? 心急結果, 手勢亂動之際, 搯之捩之拗之拉之, 卽其次第事耳. 致死之因, 雖在折項, 而折項之因, 搯捩拗拉, 皆不可知. 況旆壓項致死, 法文無考, 則不必於折骨之上, 更添壓項二字是如乎. 兩檢會推時, 歸一厘正爲旆. 暑月屍體, 自易變動是去等, 況此穉弱筋肉八九日停屍之餘, 腐爛無餘, 則果無身首異處之慮是乙喻? 屍體出給, 一

刻爲急，星火舉行爲旆。于連金召史段，任叔兇獍，不早挽解，前後形跡殆若符同者然，嚴刑一次，懲礪放送爲旆。餘外拘囚諸人段，農節滯囚可悶，一併放送之意，初檢官良中，枚移施行向事。

같은 날. 함열현 검안을 데김하였다.<정범 황상백(黃尙白)이 자신의 의붓아들[義子]인 네 살 된 강성만(姜成萬)을 심하게 때려 목이 부러져 죽은 일. 초검시관은 함열현을 경임한 용안 현감 임정진. 복검시관은 임치 현령 이의익.>

【데김】 시장(屍帳)을 받아 보았다. 두 검시관의 검시기록은 의심할 것이 없고, 여러 증인의 공초를 살펴보았다. 살인의 변고는 예부터 어찌 한정할 수 있겠는가 마는 그렇게 흉악함을 다하고 참혹함을 다함이 어찌 이번 옥사에 비견할 만한 것이 있겠는가. 속담에 ‘남자는 양자(養子)를 사랑하지만 여자는 전처의 아이를 미워함이 있다’고 하는데, 아, 저 황상백은 유독 사람의 정리가 없다는 것인가! 두 세 달 동안 새로 합한 배우자가 비록 애정이 없을지라도 4살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 평소에 나무에 묶고 입을 봉하였으며, 당일에도 가슴을 짓뭇개고 목을 눌렀는가. 반드시 죽이고야 말겠다는 마음을 드러낸 것이니, 거의 원한을 맺어 보복하는 것과 같다. 그가 행한 흉악함을 규명해보면 할 말이 없는데, 진실로 타고난 품성이 참독(慘毒)하여 마치 뱀이나 전갈이 사람을 만나면 쏘는 것 같고, 하늘이 흉려(兇厲)를 내어 마치 효경(梟獍)<sup>178</sup>이 자식을 낳으면 번번이 씹어 먹는 것과 같은 자가 아니라면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는가. 그런데도 오히려 감히 염병(染病) 등의 말로 죄에서 벗어나려고 꾀하는 것이 더욱 지극히 흉악하고 교활하다. 두 검시관을 그대로 동추관으로 정하니, 날을 정해 함께 자리를 열어 이 정범 황상백 몸을 별장(別杖)으로 날날이 고찰하여 엄하게 한 차례의 형벌을 가하고 사실대로 공초를 받아 첩보하라.

살옥(殺獄)의 검험(檢驗)은 본래 체단(體段)이 있거늘, 이번 초검시에서는 한 차례 진술을 취한 다음에는 다시 반복하고 끝까지 따지는 일이 없어 충분히 조사하는 뜻에 어긋남이 있고 소홀히 했다는 결과를 면하지 못한다. 초검을 행한 형리(刑吏)는 복검하는 읍으로 이송하여 엄하게 형벌을 가하고 징계하여 권면하여 석방하라. 검사보고의 가장 중요한 점은 오로지 실인(實因)에 있거늘, 초검시관은

178) 효경(梟獍) : 효(梟)는 어미를 잡아먹는다는 올빼미 종류의 새이고, 경(獍)은 파경(破獍)이라는 호랑이 종류의 맹수로서 아버지를 잡아먹는다고 한다.

목이 부러져 죽음에 이른 것으로 장부에 적었고, 복검시관은 목을 눌러 뼈가 부러진 것으로 장부에 적었으니 연유가 어찌 이렇게 서로 다른가? 복검을 행한 형리들도 먼저 따로 부과(附過)하라.

떨나무로 목을 누른 것은 비록 증언의 공초에 나왔으나, 눌렀을 뿐이라면 어찌 골절(骨折)될 리 있겠는가. 마음이 급해진 결과 손놀림이 어지럽게 움직일 때 조르고 비틀고 누르고 당긴 것은 바로 그 순서일 뿐이다. 죽음에 이른 원인은 비록 목이 부러진 데 있을지라도, 목이 부러진 원인이 조르고 비틀고 누르고 당겼는지의 모든 경우를 알 수 없다. 하물며 목을 눌러 죽었다는 것은 법문에서 고찰할 수 없으니, 골절(骨折)의 글자 앞에 반드시 다시 압항(壓項) 두 자를 더할 필요는 없다. 두 검시관은 회추할 때에 하나로 결론내고 정리하여 바로잡으라.

더운 달의 시체는 본래 쉽게 변질된다. 더구나 이렇게 어리고 약한 근육이 8,9일간 시체로 머물러있는 끝에 부패하고 문드러져 시체가 남아나지 않는다면, 과연 몸과 머리가 다른 곳에 처할 염려는 없겠는가. 시체를 내어 주기를 일각이라도 급하게 하여 급히 거행하라. 관련된 김조이는 아저씨의 흥포함에 맡겨두어 일찍 만류하고 해결하지 않았으니 전후의 형세의 자취가 거의 한 통속과 같다. 엄격하게 형벌을 한 차례 가하고 징계하여 내 보내라. 나머지 그 밖의 구속된 죄수들을 농사철에 오래 가두어 놓는 것은 답답할 만하니, 모두 아울러 내 보내는 뜻을 초검시관에게 공문을 보내어 시행할 일.

二十二日. 南平縣監林迥鎭, 自京赴任之路, 延命後入見. 光陽縣監沈兢祖入見. 龍潭縣令朴獻壽, 延命後入見.

6월 22일. 남평 현감 임형진이 서울로부터 부임하는 길에 연명한 뒤에 입견하였다. 광양 현감 심금조가 입견하였다. 용담 현령 박헌수가 연명한 뒤에 입견하였다.

二十三日. 光陽縣監、南平縣監入見, 仍爲辭去. 咸悅縣監洪在果, 延命後入見. 古阜郡守金裕淳入見. 龍潭縣令入見.

23일. 광양 현감과 남평 현감이 입견하고 그대로 하직하고 갔다. 함열 현감 홍재과가

연명한 뒤에 입견하였다. 고부 군수 김유순이 입견하였다. 용담 현령이 입견하였다.

二十四日. 古阜郡守、咸悅縣監入見，仍爲辭去. 判官入見. 龍潭縣令入見，仍爲辭去. 咸平縣監金箕祖入見. 公忠道西原縣監李能秀，自益山移拜，上去之路入見.

24일. 고부 군수와 함열 현감이 입견하고 그대로 하직하고 갔다. 판관이 입견하였다. 용담 현령이 입견하고 바로 이사하고 갔다. 함평 현감 김기조가 입견하였다. 공충도 서원 현감 이능수가 익산에서 이배(移拜)되어 올라가는 길에 입견하였다.

二十五日. 監封世孫宮誕日進上. 西原縣監、咸平縣監入見，仍爲辭去. 中營將入見.

25일. 세손궁(世孫宮)의 탄신일 진상품을 감봉(監封)하였다. 서원 현감과 함평 현감이 입견하고 그대로 하직하고 갔다. 중영장이 입견하였다.

同日. 題咸悅縣檢案.<正犯金之彭，撲磕金龍甫，第十一日致死事. 初檢官咸悅兼任龍安縣監林貞鎮. 覆檢官礪山府使許嘯.>

【題】屍帳捧上是在果. 脇骨之傷痕昭著，胯部之分寸圓濶，毋論被踢被磕，其爲致死之根因則同矣. 李元汝卽，之彭之雇傭，而以三次推轉，納供，朴九業卽，之彭之家丁，而以執髻猛倒立證是隱則，之彭之爲元犯，亦無復疑眩是乃. 惟是運枷打麥，非腰脇磕損者之，所可自力，越境趁市，非胯腿重傷者之，所可勉強是置. 爲之彭藉口之資，謂以因病致死是矣. 覆檢案所謂被撲在前，患病在後，在後之病，莫非由前之撲，在前之撲，越添由後之病云者，實爲襯着之剖判是如乎. 始也怙富憎人，縱子凌長，末乃下手禦人，猛擠毒推，遂令強壯無故之人，致命旬日之內，縱不手毆足踢，何異以挺與刀是乙喻. 兩檢官，仍定同推官爲去乎，約日會推，同元犯金之彭身乙，嚴訊取招牒報爲旆. 屍親朴召使段，觀於初檢供招，罔念比洒之義，反有掩護之跡，嚴刑一次懲礪放送爲旆. 暑月停屍時刻可悶，而歷日恰爲一念，尤當腐爛無餘，卽速出給，使之埋瘞爲旆. 看證諸人段，別無更問之端，一併放送爲旆. 檢案肯綮，專在實因是去乙，初檢則謂以被踢，覆檢則謂以被磕，有何的證，致此參商是隱喻? 前後詞連之招，俱無足踢之證，則被踢云云，終近硬定，後日會推時相議厘正爲旆. 檢驗文字何等審慎，而初

檢案中，毆踢與否不之下，脫待字，今始之下，聞知之聞字，誤作叶字，寒氣遍體之遍字，誤作編字，舉行刑吏，爲先附過之意，初檢官良中，枚移施行尙事。

같은 날. 함열현 검안을 데김하였다.<정범 김지팽(金之彭)이 김용보(金龍甫)를 심하게 때려 11일 만에 죽음에 이르게 한 일. 초검시관은 함열 겸임 용안 현감 임정진. 복검시관은 여산 부사 허속.>

【데김】 시장(屍帳)을 받아 보았다. 늑골의 상흔이 분명하게 드러났고, 사타구니 부분에 분촌(分寸)같은 원이 넓게 있으니 차이고 맞았다는 것은 논할 것 없고, 그것이 죽음에 이르는 근본원인에 합치한다. 이원녀(李元汝)는 김지팽(金之彭)의 고용인으로 3차례 추고(推考)하여 진술을 받았고, 박구업(朴九業)은 지팽의 집안 일꾼으로 상투를 잡고 사납게 엮어 쳤다고 입증했으니, 지팽이 원범이 됨은 또한 다시 의혹할 것이 없다.

생각건대 도리깨를 휘둘러 보리를 타작하는 것은, 허리와 옆구리가 부서지고 상한 사람이 자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경계를 넘어 시장에 간 것도 사타구니와 넓적다리를 심하게 다친 사람이 애써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김지팽이 빠져나갈 핑계거리가 되니 병으로 인해 죽었다고 말하는 것이 옳다. 복검안에 이른 바 맞은 것은 앞에 있는 일이고 병환(病患)은 뒤에 있었다고 하였으니, 뒤에 있던 병은 앞에 맞은 것으로 말미암았는데도, 앞에 때린 것에다가 뒤의 병환을 이유로 덧붙여서 말하는 것은 실제로 밀접히 달라붙어 있는 것을 둘로 나누는 것이 된다.

처음엔 부(富)를 믿고 남을 협박하고 자식을 방치하고 어른을 능멸하며 끝에는 남의 물건을 빼앗는 데까지 손을 대고, 사납게 잡아당기고 밀어 결국 강건하고 건장하여 탈이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10일 안에 목숨을 다하게 하니, 비록 손으로 때리고 발로 차 넘어뜨리지 않았을지라도 어찌 몽둥이와 칼로 죽인 것과 다르겠는가. 두 검시관을 그대로 동추관으로 정하니, 날을 정해 모여서 함께 추심하고 원범 김지팽의 몸을 엄히 신문하여 진술을 취하여 첩보하라.

시친 박조이[朴召使]는 초검시관의 진술을 보면 누명을 씻어낼 뜻은 없고 도리어 엄호한 흔적이 있으니, 엄하게 한 차례 형벌을 가하고 징계하여 석방하라. 더운 달에 시체를 머물러 있게 하는 것은 시시각각으로 민망한 일이 되는데, 날이 지나 20여 일이 되면 더욱 부패하고 문드러져 남아날 것이 없을 것이니, 바로 속히 내어주고 그들로 하여금 묻게 하라. 본 것을 말한 여러 사람들은 따로 다시 물을



단서가 없으니 모두 아울러 석방하라.

검안의 요체는 오로지 실인에 있거늘, 초검시관은 차였다는 것으로 말하고 복검시관은 맞았다고 말하니, 어떠한 확정적 증거를 가지고 이렇게 차이가 있는가. 전후 증언에 연관된 공초가 모두 발로 찼다는 증거가 없으니, 차였다고 말하는 것은 끝내 억지로 추정하는 것에 가깝다. 뒷날 모여 추심할 때 서로 의론하여 바로잡으라.

검험 문자는 무엇보다도 신중히 해야 하거늘, 첫 검안 문서중에 ‘구탕여부부지(毆湯與否不之)’ 아래 ‘대(待)’ 자가 빠지고, ‘금시지(今始之)’ 아래 ‘문지(聞知)’ 의 ‘문(聞)’ 자는 ‘협(叶)’ 자로 잘못 적었고, ‘한기편체(寒氣遍體)’ 의 ‘편(遍)’ 자는 ‘편(編)’ 자로 잘못 적었으니, 거행한 형리는 우선 부과(附過)하는 뜻을 초검시관에게 공문을 보내어 시행할 일.

二十六日. 潭陽府使曹錫玄, 就理上京之路入見, 仍爲辭去.

26일. 담양 부사 조석현이 취리(就理)<sup>179)</sup>로 상경하는 길에 입견하고 그대로 하직하고 갔다.

同日. 題益山郡檢案.<縊死人梁範石, 本以京居人, 初無致死根因事. 初檢官益山郡守李能秀. 覆檢官臨陂縣令李宜翼.>

【題】屍帳捧上是在果. 脉錄無傷損之痕, 逆旅皆素昧之人, 被傷新反, 言詰無因是隱則, 忽然客地雉頸, 儘是求說不得, 以爲身世窮迫生厭死樂, 則自勒之舉, 何必在自京反寓之路上是旆, 以爲罪犯逃躲追捕在後, 則惟恐藏蹤之不暇, 何故宣吐於路人? 事係常情之外, 宜置勿問之科是如乎. 暑月屍身, 尤易變動, 屍親雖非骨肉, 旣已情願速埋則一檢足矣, 何必更事覆檢是乙喻? 卽爲出給, 使之土壟, 以待其兄之推尋爲旆. 蘇輝豐、金寬悅段, 薄暮路周, 忽逢生面, 被問草幕, 隨即指示, 旣非在家逐客, 不必以此深責 分揀放送爲旆. 餘外諸人段置, 當此農節, 滯囚可悶, 一併放送爲旆. 死者所齎書札、丸藥等物, 亦令尹興殷, 信傳於當傳處之意, 該郡兼官良中, 枚移施行向事.

같은 날. 익산군 검안을 데김하였다.<목을 매어 죽은 양범석(梁範石)은 본래 서울 거주인으로 애초 죽음에 이를 근본 이유가 없는 일. 초검시관은 익산 군수 이능수. 복검시관은 임피 현령

179) 취리(就理) : 죄를 지은 벼슬아치가 의금부에 나아가 심리를 받는 것을 이른다.

이의익.>

【데김】 시장(屍帳)을 받아 보았다. 검시기록에 상처 나고 훼손된 흔적이 없고 여관의 모든 사람은 본래 모르는 사람이니 상해를 입기는커녕 힐난할 이유도 없었는데, 갑자기 객지에서 목을 맨 것은 진실로 설득력이 없다. 신세가 궁박하여 삶이 싫고 죽음이 즐겁다고 여겼다면 자신을 목매는 일을 하필 서울로부터 우거(寓居)지로 돌아오는 길 위에서 하였으며, 죄를 범하고 도망하고 추포(追捕)자가 뒤따른다고 생각하면 오직 종적을 감추는데 겨를이 없는 것을 근심하여야 하는데, 무슨 이유로 세상 사람들에게 모두 털어놓았겠는가? 일이 일상의 정리(情理) 밖에 있으니 마땅히 불문(不問)의 사항으로 두어야 한다. 더운 달의 시신은 더욱 쉽게 변동한다. 시친이 비록 골육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미 정리가 빨리 묻기를 원하니, 한 번 조사로 충분한데 하필 다시 복검을 일삼겠는가. 바로 내어 주고 임시로 묻게 하여 자기 형이 시체를 찾을 때까지 기다리게 하라.

소취풍(蘇輝豐)과 김관열(金寬悅)이 어둑해질 때 길 모퉁이에서 갑자기 낯선 사람을 만나 초막(草幕)을 물어보는 것을 듣고 바로 지시하였으니, 집에 있으면서 손님을 쫓아낸 것이 아니다. 이것으로 심하게 책망할 필요는 없으니 분간하여 석방하라. 그 밖의 나머지 여러 사람들도 이러한 농사철을 당하여 오래 가두어 놓는 것은 가히 답답할 만하니 모두 아울러 놓아 보내고, 죽은 자가 휴대한 편지와 환약 등의 물건은 또한 윤흥은(尹興殷)으로 하여금 마땅히 전해주어야 할 곳에 서신으로 전하게 하는 뜻을 해당 군과 해당 관아에 공문을 보내어 시행할 일.

同日. 題錦山郡檢案.<被告呂奉永, 急於爲妹報仇, 結縛吉履碩, 使履碩母李召史, 自勒致死事. 初檢官錦山郡守李魯榮. 覆檢官珍山郡守李奎憲.>

【題】屍帳捧上是在果. 兩檢脉錄, 胸膛無傷損之痕, 各人詞證, 當場無拳觸之舉分叱除良, 目見結項, 解套現納, 死者之稚女也. 初不往救丁寧, 立證死者之切姻也, 卽此而實因之, 非打伊, 勒無容更議是置. 盖此履碩, 被縛於呂奉永也, 李召史自念釁由於已禍及其子, 六十孀婦鴻毛, 何惜一條麻繩? 雉頸遂拌, 念厥情理亦云慘絕. 屍親吉履碩段, 厥母投纆宜無不知之理, 而驀地粧出撞胸等說, 欲爲互償殺案之計, 不念母屍暴露之久, 人理都喪, 尤覺痛惋, 嚴刑一次之意, 已題於呂女之案是如乎, 以此添問目取招, 屍體卽速出給埋瘞爲旡, 被告呂奉永段, 縱急報仇, 全昧公法, 私自毆縛 光景

兇怖 致使李女驚怯自勒，雖無手犯之跡，難免被告之目，兩檢官，會推時，嚴刑一次，取招牒報爲<sup>180</sup>。檢驗文案，自有體段是去乙，呂李兩案之不爲各具，混帳一通，未免違越格例。初檢、刑吏，爲先附過之意，枚移施行<sup>向事</sup>。

같은 날. 금산군 검안을 데김하였다.<피고 여봉영(呂奉永)은 누이를 위해 원수를 갚는 것에 급급하여 길이석(吉履碩)을 결박하여 길이석의 어머니 이조이[李召史]로 하여금 스스로 목을 매어 죽음에 이르게 한 일. 초검시관은 금산 군수 이노영. 복검시관은 진산 군수 이규현.>

【데김】시장(屍帳)을 받아 보았다. 두 검시관의 검시기록에는 가슴에 손상되고 훼손된 흔적이 없고, 각자의 증언에는 지금 주먹으로 때린 일이 없다. 목을 묶은 것을 눈으로 보고 묶인 것을 풀어 주고 스스로 나타나 알린 것은 죽은 자의 어린 딸이다. 애초에 가서 구원하지 않은 것은 분명하고 죽은 자를 입증한 사람이 아주 가까운 인척이다. 이것으로 실인은 그를 때린 것이 아니니 억지로 다시 의논을 할 것이 없다.

그러나 이렇게 길이석이 여봉영에게 묶인 것은, 이조이는 허물이 자기로 말미암아 불행이 자기 아들에게까지 미쳤다고 스스로 생각하여, 60년의 청상과부 삶이 기러기 털같이 가벼우니 어찌 한 가닥의 삼노끈을 아까워하였겠는가. 목을 매어 결국 생을 버렸으니 그 정리(情理)를 생각하면 또한 매우 참혹하다고 말할 만하다. 시친(屍親) 길이석은 그 어머니가 목을 맨 것을 마땅히 모를 리 없는데도 갑자기 가슴을 찢다는 등의 말을 지어내 살안(殺案)으로 서로 보복하려고 하였다. 어머니 시신이 비바람에 드러나는 것이 오래됨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정리가 모두 없어지니 더욱 한탄스럽다. 엄하게 1차 형벌을 가하는 뜻을 이미 여봉영의 누이 검안에서 제사(題辭)하였다<sup>180</sup>). 이것으로 문목(問目)을 더하여 진술을 받고 시체는 즉시 내주어 묻게 하라.

피고 여봉영은 비록 원수를 갚는데 급할지라도, 전연 공법(公法)에 어두워 사사로이 때리고 묶은 광경이 흉포하며, 이조이로 하여금 놀라고 겁먹게 하여 스스로

180) 이미……제사(題辭)하였다 : ‘이미 여봉영의~’이란 표현과 바로 ‘피고 길이석의 데김’ 문건이 이어지는 것으로 보아 데김이 일어난 기록 순서가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곧 여봉영의 누이는 길이석이 자신의 입에 오물을 부어 넣자 그 분으로 극약을 먹고 자살하였고, 그 뒤에 여봉영이 길이석을 묶어 놓고 때리자 길이석의 어머니가 이에 분개하여 목매달아 죽였는데, 조사 과정에서 여봉영과 길이석은 모두 시친으로 상대방이 때려서 죽었다고 주장한 사건이다. 이런 사실에서 아래 피고 길이석의 데김 문서에 여조이[呂召史]와 여녀[呂女]를 이조이[李召史]와 이녀[李女]로 오기(誤記)된 사실도 알 수 있다.

목을 매게 하였으니, 비록 직접 범행한 흔적이 없더라도 피고로 지목됨을 면하기 어렵다. 두 검시관은 모여 추심할 때에 엄하게 1차 형벌을 가하고 진술을 취하여 첩보하라.

검험 문안은 본래 체단이 있어야 하거늘, 여씨와 이씨 두 검안 문서는 각자 구비되지 않고 한 통에 혼재되어 격식과 규례에 어긋남을 면치 못했다. 초검을 행한 형리는 우선 부과하는 뜻을 공문을 보내어 시행할 일.

又題錦山郡檢案.<被告吉履碩, 以含憤於其母之被誣, 灌穢於李召史<sup>181</sup>)之口, 竟使李女<sup>182</sup>)服毒, 自裁事. 初檢官錦山郡守李魯榮. 覆檢官珍山郡守李奎憲.>

【題】屍帳捧上是在果. 呂妹、吉母生而相鬩, 死若酬債是置. 鬧端始由於饒舌, 醜聲忽起於無根, 彼履碩之爲母雪憤, 容或無怪是矣. 謂之被打, 則項脇傷痕, 不現於脉錄, 謂之服毒, 則銀釵變色, 脛符於法文, 兩檢實因的然無疑是乃, 如非履碩灌穢之悖舉, 豈有呂女服毒之浪死是乙驗. 不可以彼隻屍親, 置而勿論. 兩檢官, 仍定同推官爲去乎, 同被告吉履碩身乙, 嚴刑一次, 取招牒報爲旆. 干連韓召史段, 憎茲多口, 作此禍首, 亦爲刑訊一次, 懲礪放送爲旆. 屍親呂在永、吉履龍段, 縱急於其妹、其妻之報復, 一直以彼打致死樣, 納供於兩檢, 疑亂獄情, 極爲無據, 並嚴杖三十度放送. 屍體卽速出給埋瘞爲旆. 檢驗報牒, 自有程限, 況當暑月變動之時, 其所舉行尤當迅速是去乙, 十四日行檢之案, 二十日始爲修報, 首尾殆近七日, 緣何致此稽滯是隱驗? 舉行刑吏, 爲先別附過之意, 初檢官良中, 枚移施行尙事.

또 금산군 검안을 데김하였다.<피고 길이석(吉履碩)은 자기 어머니가 무고함을 당한 것에 분을 품고 여조이[呂召史]의 입에 오물을 흘려넣어 결국 여녀(呂女)로 하여금 독을 먹게 하여 스스로 죽게 한 일. 초검시관 금산 군수 이노영. 복검시관 진산 군수 이규현.>

【데김】시장(屍帳)을 받아 보았다. 여봉영(呂奉永)의 누이와 길이석의 어머니는 살아있을 때 서로 싸워 죽어서도 빗을 갚아주는 것 같다. 소란의 발단은 애초 뜬 소문에서 말미암았고 추잡한 소리가 근거 없이 갑자기 일어났으니, 저 길이석이 어머니를 위해 분을 씻는 것이 혹 이상할 것이 없는 것 같다. 그러나 여봉영의 주장대로 맞았다고 말한다면 목과 옆구리의 상흔이 검시기록에 드러나지 않았고, 길

181) 李召史 : '呂召史'의 오기로 보아 '여조이[呂召史]'로 국역하였다.

182) 李女 : '呂女'의 오기로 보아 '오녀(呂女)'로 국역하였다.

이석의 주장대로 독약을 먹었다고 말하면 은비녀가 색을 변한 것이 법문에 꼭 맞으니 두 조사의 실인의 분명함이 의심할 것이 없다. 만일 길이석이 오물을 주입한 패륜적인 일 아니고는 어찌 여씨가 독을 먹어 헛되이 죽었겠는가.

피척(彼隻)<sup>183)</sup> 시친의 의견을 무시하고 논해서는 안 된다. 두 검시관을 그대로 동추관으로 정하니 피고 길이석의 몸을 엄하게 1차 형벌하고 진술을 취하여 첩보하라. 관련된 한조이의 경우는 구설이 많은 것을 미워했는데도 이렇게 화근의 실마리를 만들었으니, 또한 1차 형신(刑訊)을 하고 징계하여 석방하라. 시친 여재영(呂在永)과 길이용(吉履龍)은 비록 자기 누이와 자기 처의 보복에 급해, 똑같이 맞아서 죽은 모양으로 두 검시관에게 진술하여, 옥사의 정상을 미혹시키고 어지럽게 하여 지극히 터무니없으니, 모두 엄하게 30대의 장형을 하고 석방하라. 시체는 즉시 빨리 내주어 묻게 하라.

검험의 첩보는 본래 일정상의 제한이 있거늘, 하물며 더운 달에 시신이 변하는 때를 당하였으니, 그 거행함이 더욱 마땅히 신속해야 한다. 그런데 14일에 행한 검안을 20일에 비로소 정리하여 알리니 처음과 끝이 거의 7일에 가깝다. 무슨 연유로 이렇게 늦어지게 되었는가? 거행한 형리는 우선 따로 부과하는 뜻을 초검시관에게 공문을 보내어 시행할 일.

二十七日. 判官入見. 光州牧使趙雲明、羅州牧使李晦淵、長城府使徐有民, 以審理叅覈官入見.

27일. 판관이 입견하였다. 광주 목사 조운명·나주 목사 이회연·장성 부사 서유민이 심리 참핵관(審理叅覈官)<sup>184)</sup>으로 입견하였다.

二十八日. 綾州牧使李廣度, 入見. 叅覈官、三邑守令, 兩次入見.

28일. 능주 목사 이광도가 입견하였다. 참핵관과 세 고을의 수령이 두 차례 입견하였다.

二十九日. 朝以肩輿, 往見子婦於成服所.<子婦遭本家外艱, 出處于金致箕家, 是日成服.>

183) 피척(彼隻) : 소송에서 당사자가 서로 상대편을 이르는 말이다.

184) 심리 참핵관(審理叅覈官) :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 관계 및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아에서 증거나 방법 따위를 심사하는 행위에 참여하여 조사하는 관리를 말한다.

29일. 아침에 견여로 가서 며느리를 성복소(成服所)에서 보았다.<자부는 본가 아버지 상을 당해 김치기(金致箕)의 집에 나가 있었고 이날 성복하였다.>

同日. 與參覈官、三邑守令, 夜話.

같은 날. 참핵관 · 세 고을 수령과 함께 밤에 이야기를 했다.

#### 4. 1833년(순조33) 7월 : 검안(檢案) 보고서를 올리다

初一日. 平明以肩輿詣客舍, 行望闕禮. 中營將、判官、光州牧使、綾州牧使、長城府使、檢律, 同爲進參, 仍還營軒. 中營將入見. 綾州牧使入見, 仍爲辭去. 萬頃縣令尹守澈入見.

1일. 아침 해가 뜰 때에 견여로 객사에 가서 망궤례를 행하였다. 중영장·판관·광주 목사·능주 목사·장성 부사·검률이 함께 진참(進參)하고 그대로 영헌으로 돌아왔다. 중영장이 입견하였다. 능주 목사가 들어와 그대로 하직하고 갔다. 만경 현령 윤수철이 입견하였다.

同日. 與參覈官夜話.

같은 날. 참핵관과 함께 밤에 이야기를 했다.

初二日. 羅州牧使、光州牧使、長城府使、萬頃縣令入見, 仍爲辭去.

2일. 나주 목사·광주 목사·만경 현령이 입견하고 그대로 하직하고 갔다.

同日. 題臨陂縣檢案.<西浦金召史, 醉狂自溺致死事.>

【題】屍帳捧上是在果. 自溺只緣醉狂, 詞證俱無疑眩是隱則, 不請覆檢, 誠爲得宜是如乎. 既不覆檢, 則屍體何爲灰封, 暑月變動, 時刻可悶, 卽爲出給, 使之埋瘞是遣. 幾諫底豫, 固難責於如渠卑微, 而避坐隣近, 竟莫救於驀地蹈水, 雖無情犯, 不可無罪. 金永三夫妻身乙, 並嚴杖三十度放送爲旆. 旣非無主之獄訟, 胡爲面任之替告, 無事生事? 致此繹騷昧例除良, 輕率極矣. 都尹蔡尙公, 亦爲嚴杖三十度, 懲礪放送爲旆, 拘囚各人段置, 一併放送宜當尙事.

같은 날. 임피현 검안을 데김하였다.<서포에 사는 김조이가 심하게 술에 취하여 스스로 물에 빠져 죽음에 이른 일.>

【데김】시장(屍帳)을 받아 보았다. 스스로 빠진 것은 단지 심하게 술에 취한 것

으로 증언이 모두 의혹될 것이 없으니, 복검을 청하지 않는 것이 진실로 마땅하다. 복검을 안했는데 시체는 어찌하여 회봉(灰封)하였는가? 더운 달에 시체의 변동은 시시각각으로 매우 염려되니 즉시 내주어 그들로 하여금 묻게 하라.

기간저예(幾諫底豫)<sup>185)</sup>는 진실로 그 사람 같은 미천한 자에게 요구하기는 진실로 어려우나, 인근에 피하여 앉았을 때 결국 갑자기 물에 뛰어 들어가는 것을 구원하지 못하였으니, 비록 정황상 범법과 관련이 없더라도 죄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김영삼(金永三)부부의 몸을 모두 엄하게 30대 장형을 가하고 석방하라.

이미 주인 없는 옥사의 송사가 아닌데 어찌 면임이 대신 하여 일없을 일을 만들었는가. 이렇게 번잡하게 하고 관례에 어두웠을 뿐 아니라 경솔함이 지극하니, 도윤(都尹)<sup>186)</sup> 채상공(蔡尙公) 또한 엄하게 장형 30대를 하고 징계하여 놓아 보내고, 잡아 가두어 놓은 사람들도 모두 아울러 석방함이 마땅할 일.

初三日. 益山郡守李源吉, 自同福移拜, 赴任之路, 延命後入見. 金堤郡守李玄好入見.

3일. 익산 군수 이원길(李源吉)이 동복에서 이배(移拜)되어 부임하러 가는 길에 연명(延命)한 뒤에 입견하였다. 김제 군수 이현호가 입견하였다.

初四日. 益山郡守入見, 仍爲辭去. 中營將、判官、金堤郡守入見. 金溝縣令金錫喜、扶安縣監趙在慶入見.

4일. 익산 군수가 입견하고 그대로 하직하고 갔다. 중영장·판관·김제 군수가 입견하였다. 금구 현령 김석희(金錫喜)·부안 현감 조재경(趙在慶)이 입견하였다.

185) 기간저예(幾諫底豫) : 기간(幾諫)은 부모가 잘못이 있을 때 즐거운 안색과 부드러운 말로 공손하게 간(諫)하는 일이고, 저예(底豫)는 기쁘게 한다는 뜻이니, 어떤 일을 하지 말도록 부드러운 안색으로 간청하여 기쁨에 이르게 하는 것을 말한다. 『맹자』 「이루 상(離婁上)」에 “순 임금이 아버지 섬기는 도리를 다하여 고수가 기뻐하게 되었다. 고수가 기뻐하게 되니 천하가 교화되었으며, 고수가 기뻐하게 되니 천하의 아버지와 아들 된 자들의 도리가 정하여졌다. 이것을 큰 효도라 한다.[舜盡事親之道而瞽瞍底豫, 瞽瞍底豫而天下化, 瞽瞍底豫而天下之爲父子者定, 此之謂大孝.]” 하였다.

186) 도윤(都尹) : 면(面)에 있는 관직명이다. 속종 때 오가작통(五家作統)의 사목(事目)에 의하면 5호(戶)가 1통(統)이 되고, 5통(統) 소리(小里)부터 20통(統) 대리(大里)까지 분류한다. 리(里)가 있으면 본면(本面)에 속하게 하는데, 면에는 도윤(都尹)·부윤(副尹)을 각기 한 사람씩 두었다.



同日. 題錦山郡守檢案.<富北面金召史, 自溺致死事.>

【題】偏性浪死, 世或有之 而其無緣叵測 未有若金女之甚是矣. 屍親之言如此, 隣里之證如此, 無故自溺, 更無可疑, 既求說而不得. 只當問之水濱, 其父其夫, 胡爲拘囚 是隱喻? 一併放送 尙事.

같은 날. 금산 군수 검안을 데김하였다.<부북면 김조이[金召史]가 스스로 물에 빠져 죽음에 이른 일.>

【데김】편벽한 성격으로 헛되이 죽은 자는 세상에 간혹 있으나, 이유도 없고 추측할 수도 없는 것은 김조이처럼 심한 경우가 없다. 그러나 시친의 말이 이와 같고 인근 마을 사람들의 증언이 이와 같아, 사고 없이 스스로 물에 빠졌음이 다시 가히 의심할 것 없으니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다만 마땅히 물가에서 물었어야 하거늘 아버지와 남편은 어찌하여 잡아 가두었는가? 모두 아울러 놓아 보낼 일.

初五日. 金堤郡守、金溝縣令、扶安縣監入見, 仍爲辭去. 中營將、判官入見. 長水縣監李啓陽入見.

5일. 김제 군수 · 금구 현령 · 부안 현감이 입견하고 그대로 하직하고 갔다. 중영장 · 판관이 입견하였다. 장수 현감 이계양이 입견하였다.

同日. 題咸悅縣檢案.<南二面林儀甲妻趙召史, 與其媿母, 言詰後, 自縊致死事.>

【題】屍帳 捧上是在果. 婦姑勃蹊, 自是傷風之惡俗, 溝瀆自經, 每出偏性之愚婦, 其暗懷無理, 豈有如趙女之甚者乎? 漚麻鋤稻, 俱爲農家之本分, 訓戒提督, 亦是家老之常事, 緣何恚恨, 致此自戕是隱喻, 死固浪矣, 情亦悍矣. 都尹文狀, 無事惹事, 不請覆檢, 誠爲得體. 屍體卽爲出給, 使之埋瘞爲 殮. 平昔失馭妻之方, 當日昧處變之道. 面任告官, 渠豈不知而初不據理挽止, 致使老母速獄? 妻屍暴露, 雖緣愚迷, 不可容恕, 同林儀甲決杖三十度放送爲 殮, 其餘諸人 段置, 一體放送宜當 尙事.

같은 날. 함열현의 검안을 데김하였다.<남이면 임의갑(林儀甲)의 처 조조이[趙召史]가 자기의 시어머니와 언쟁한 뒤에 스스로 목을 매어 죽음에 이른 일.>

【데김】 시장(屍帳)을 받아 보았다. 고부(姑婦)가 우발적으로 다툰 것은 자연 풍속을 깨는 악습이고, 헛되게 죽은 것은[溝瀆自經]<sup>187)</sup> 매번 편벽된 성품의 우매한 부녀자에게서 나온다. 도리가 없는 그 앙큼하고 강박함은 어찌 조조이같이 심한 자가 있겠는가? 삼을 심고 법씨를 뿌리는 일이 모두 농가의 본분이 되고, 타일러 경계하고 이끌어 독려하는 일 또한 집안 어른의 일상적인 일이거늘, 무슨 연유로 화내고 한스러워 이렇게 스스로를 죽임에 이르게 했는가? 죽음이 진실로 헛되고 인정 또한 사납다.

도윤(都尹)이 알린 것은 일상을 일이 아닌데도 일을 만든 꼴이고<sup>188)</sup>, 복경을 요청하지 않는 것은 진실로 체단을 얻었다. 시체는 즉시 내주고 그들로 하여금 묻게 하라. 이전부터 아내를 단속하는 방도를 잃었고 당일 상황변화에 대처하는 방법이 어두웠다. 면임이 관아에 고하였는데도 남편은 어찌 알지도 못하였고, 처음에 이치를 들어 만류하지 아니하여 노모가 옥에 갇히게 하였는가? 처의 시체를 비바람 맞게 한 것이 비록 우매함 때문일지라도 용서할 수 없으니, 임의감을 장형(杖刑) 30대를 집행하고 놓아 보내고, 그 나머지 모든 사람들도 석방함이 의당 할 일.

同日. 希顯堂居接儒生, 以四六請妓樂爲七夕之遊, 題送歌琴酒肴.

【題】系是兩月藏修之餘, 豈無一日遊息之暇? 然柳州乞巧, 但設蔬苽, 武城爲治, 只聞絃誦, 妓樂, 殊非鬻舍本色, 絲肉不妨騷人風流是如乎, 琴一笛一歌二分付出送爲去乎. 旣旨且多, 聊贈濡首之物, 式歌以謙, 可替曬腹之娛向事.

같은 날. 희현당에 모여 공부하던 유생들이 사육변려체로 기악(妓樂)을 차려 칠석(七夕)에 놀자고 요청하여 노래하는 사람·거문고 타는 사람·술·안주를 보내겠다고 제송(題送)<sup>189)</sup>하였다.

【제사】 이 7,8월에 학문을 닦는[藏修]<sup>190)</sup> 여가에 어찌 하루라도 쉬는 한가함이 없겠는가? 그러나 유주(柳州)의 칠석날 놀이<sup>191)</sup>는 다만 채소와 오이만을 베풀었

187) 헛되게 죽는 것은 : 본문의 '구독자경(溝瀆自經)'은 스스로 목매어 도랑에서 익사한다는 뜻으로, 개죽음을 비유하는 말이다.

188) 일삼을……꼴이고 : 본문의 '무사야사(無事惹事)'는 일이 없을 것을 괜히 일을 만들어낸다는 뜻으로 무사생사(無事生事)의 뜻과 같다.

189) 제송(題送) : 상부 기관이 하부 기관에 명령이나 취지를 공문서로 작성하여 보내는 일을 말한다.

190) 학문을 닦는[藏修] : 장수유식(藏修遊息)의 줄임말로, 공부(工夫)할 때는 물론 쉴 때에도 학문(學問)을 닦는 것을 항상(恒常) 마음에 둬를 이른다.

고, 무성(武城)<sup>192</sup>이 다스려진 것은 단지 현송(絃誦)<sup>193</sup>소리만 들었다. 기악(伎樂)은 거의 횡사(鬻畝 학당)의 본색이 아니고 사육(絲肉)<sup>194</sup>이 소인(騷人 시인)의 풍류를 방해하지 않는다고 하니, 거문고 타는 사람 1명, 피리 부는 사람 1명, 노래하는 사람 2명을 내보낼 것을 분부하였다. 맛있고도 풍성하게<sup>195</sup> 술에 취할 수 있는 음식을 하사하니, 그것으로 노래하고 잔치하면 쇠복(曬腹)<sup>196</sup>의 즐거움을 대체할 수 있을 일.

初六日. 長水縣監入見, 仍爲辭去. 裨將李河錫、趙景愈、李洛培, 以各邑牟還摘好事, 出去.

6일. 장수 현감이 입견하고 그대로 하직하고 갔다. 비장 이하석(李河錫)·조경유(趙景愈)·이낙배(李洛培)가 각 읍에서 보리 환곡에 잘못이 있는지 살피기 위한 일로 떠났다.

初七日. 中營將入見.

7일. 중영장이 입견하였다.

同日. 以都吏情債濫捧事, 傳令人吏廳.

【傳令】胥吏情債之濫觴，誠爲挽近難矯之弊，其無理濫猾，未有若本營都書員之甚是如乎。所謂營都吏，本來聊賴，未始不優厚是去乙，忽自數年以來，扞出都目成冊，楷

191) 유주(柳州)의 칠석날 놀이 : ‘유주(柳州)’는 대개 유주 자사(幽州刺史)로 좌천된 당나라 유종원(柳宗元)을 가리키나, 여기서는 유종원 같은 문호(文豪)가 있는 이 지역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 원문의 ‘걸교(乞巧)’는 칠월칠석날 밤에 부녀자들이 과일과 떡을 차려 놓고 직녀와 견우에게 길쌈과 바느질 솜씨가 좋아지게 해 달라고 빌던 풍속을 뜻하는 말이다.

192) 무성(武城) : 춘추 시대 노(魯)나라의 현읍(縣邑)으로 지금의 산둥성(山東省) 비현(費縣)에 해당한다. 자유(子遊)가 이 고을의 읍재(邑宰)로 있으면서 현가로 백성을 교화하는 것을 보고 공자가 흐뭇한 고사가 있다.(『論語 陽貨』)

193) 현송(絃誦) : 현가(絃歌)와 같은 말이다. 즉 금슬(琴瑟)을 연주하며 노래하는 것으로, 예악(禮樂)의 교화를 뜻한다

194) 사육(絲肉) : 사(絲)는 현악기, 육(肉)은 사람의 목청으로, 즉 인간 세상의 음악 소리를 뜻한다.

195) 맛있고도 풍성하게 : 『시경』 「어려(魚麗)」 1장에 “통발에 걸린 물고기는 자가사리와 사어로다. 군자에게 술이 있어 맛있고도 풍성하다네.[魚麗于罭，鱸鯈。君子有酒，旨且多.]” 하였다.

196) 쇠복(曬腹) : 햇볕에 배를 쬐는 것을 이룸. 진(晉) 나라 때 학릉(郝隆)이 7월 칠석에 남들은 모두 의물(衣物)을 꺼내서 햇볕에 쬐는데 그는 햇볕에 배를 내놓고 누워 있었다. 누가 그 까닭을 물으니 대답하기를 “나는 내 배속에 들어 있는 서책들을 볶고 있다.[我曬腹中書耳]” 하였다.(『世說新語 排操』)

書債名色，憑徵情債於列邑，一年所捧至爲一千二百餘兩之多，年前自營門摘發奸弊，嚴懲防塞是加尼。伊後該吏，終不知戢，變幻名色，如前徵索云，其矣弁髦營禁，敢肆罄慾之習，無嚴除良，誠一變怪。所謂情錢，營吏則索於邑吏，邑吏則責出於各面書員，各面書員，必無自辦之理，則害將何歸是乙喻？以么麼一吏之故，而環一道五十州郡之民，無不受病，法網所在萬萬寒心。此不別般懲創，則末流之弊，將至難言是如乎，數三年來，犯科該吏等，查實指名告課，以爲大加懲創之地爲旆。今年爲始，稱以情債，雖一文錢暗自徵索是如，可現發於廉探，則與者受者，並當施以田政幻弄之律，斷不饒貸。以此傳令粘付作廳，凜遵毋忽。亦以此意行關列邑，使該邑都吏輩，知此先甲之令，毋至冒禁抵罪之地，宜當者。〈一體發關於五十三州、法聖鎮。〉

같은 날. 도리(都吏)<sup>197)</sup>가 정채(情債)<sup>198)</sup>를 멋대로 거둬들이는 일로 인리청(人吏廳)에 전령(傳令)하였다.

【전령】서리(胥吏)들의 정채의 지나침은 진실로 근래에 이르러 고치지 어려운 폐단이 되었으니, 터무니없고 외람되며 교활한 것은 본 감영의 도서관(都書員)<sup>199)</sup>같이 심한 경우가 없다고 한다. 이른바 감영의 도리(都吏)는 본래 남에게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 애초 다른 사람들보다 썩 두터운 편인데, 갑자기 2,3년 전부터 도목(都目)으로 성책(成冊 장부를 만듦)해서 정채의 명목(名目)을 반듯하게 써넣고 [楷書] 여러 읍에서 정채를 징수하여, 일 년에 거둬들이는 것이 많게는 1,200여량(兩)이 되어 몇 년 전에 감영에서 간사한 피해를 적발한 때로부터 엄하게 징계하고 막았다.

그 뒤에도 해당 관리는 끝내 명목을 변경하는 것을 그칠 줄을 알지 못하고 전과 같이 내놓으라고 요구한다고 하니, 그의 쓸데없는 짓[弁髦]<sup>200)</sup>을 감영이 금하였는데도 감히 제멋대로 욕심에 빠지는 습속이 무엄할 뿐만 아니라 진실로 한결같이 해괴(駭怪)하다. 이른바 정전(情錢)<sup>201)</sup>의 경우, 영리(營吏)는 읍리(邑吏)에서 찾

197) 도리(都吏) : 각 관아(官衙)에 딸린 아전 중에서 가장 우두머리의 서열에 있는 아전을 말한다.

198) 정채(情債) : 지방 관원이 서울에 있는 중앙 관아의 서리에게 아쉬운 청을 하고 정례(情禮)로 주던 돈으로, 정전(情錢)이라고도 한다.

199) 도서관(都書員) : 결세(結稅), 계수(計數) 등을 맡은 서리(胥吏) 중에서 우두머리를 말한다.

200) 쓸데없는 짓[弁髦] : 변(弁)은 치포관(緇布冠)으로 관례(冠禮)를 행하기 전에 잠시 쓰던 것이고, 모(髦)는 총각의 더벅머리이다. 관례가 끝나면 모두 소용없게 되므로, 전하여 쓸데없는 물건이라는 뜻의 비유로 쓰인다.

201) 정전(情錢) : 정채(情債)에 관련된 금전을 말한다.

고, 읍리는 각면(各面) 서원(書員)을 다그쳐 내게 한다. 각 면의 서원들은 반드시 스스로 힘써 마련할 이유가 없으니 폐해가 장차 어디로 귀결되겠는가? 아주 하찮은 한 아전의 허물로 온 도 50주군(州郡)을 아우른 백성이 병폐를 받지 않음이 없으니 법과 기강이 존재하는 바가 아주 한심하다. 이것을 보통과 다르게 징계하지 않는다면 말단의 폐해가 장차 말하기 어려운 지경에 까지 이른다고 하니, 현재에 이르기까지 2,3년 간 죄를 범한 해당 아전 등은 사실을 조사하고 이름을 지적하여 죄를 알려 크게 징계할 것.

금년부터 시작하여 정채(情債)라고 하면서 비록 1문전(一文錢)<sup>202</sup>이라도 몰래 스스로 요구하다가 염탐에 드러나 발견되면, 주는 자나 받는 자 모두 전정(田政)<sup>203</sup>을 농락한 율법으로 다스림이 마땅하니 결단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전령을 질청[作廳]<sup>204</sup>에 붙여놓고 두려운 마음으로 좇아 소홀히 말라. 또한 이러한 뜻을 여러 읍에 관문을 보내니, 해당 읍의 도리배(都吏輩)들은 이러한 선갑(先甲)<sup>205</sup>의 명령을 알아 금법을 어기고 죄에 저촉되는 처지에 이르지 않게 함이 마땅할 일.<일체(一體)를 53주와 법성진에 관문을 발송함.>

初八日. 判官入見.

8일. 판관이 입견하였다.

初九日. 中營將李惟穆, 遞職上京, 樂安郡守韓啓轍入見.

9일. 중영장 이유목이 체직되어 서울로 올라가고, 낙안 군수 한계철이 입견하였다.

初十日. 樂安郡守入見, 仍爲辭去. 判官入見. 同福縣監李寅元, 延命後入見. 雲峰縣監趙存奎入見.

202) 일문전(一文錢) : 조선 후기에, 상평통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가치로 발행한 동전이다. 정권 연장을 꿈꾸던 민씨 세력이 화폐의 문란을 틈타 일본 상인과 짜고 발행한 돈으로 평양전과 같다.

203) 전정(田政) : 전정(田政)은 토지의 결수(結數)를 기준하여 받는 전세로 임진왜란 이후 점차 증가하여 각종 부과세와 수수료가 첨가되었다.

204) 질청[作廳] : '길청'으로도 읽고, 군아(郡衙)에서 아전이 집무하는 곳을 이르는 말이다.

205) 선갑(先甲) : 법령(法令)을 처음 제정(制定)·발포(發布)하는 전후에 있어서, 백성에게 공손히 고하는 일이다. 무슨 일이든지 주의를 깊이 해서 과오(過吳)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뜻으로 쓰이는 말이다.

10일. 낙안 군수가 입견하고 그대로 하직하고 갔다. 판관이 입견하였다. 동복 현감 이 인원이 연명한 뒤에 입견하였다. 운봉 현감 조존규가 입견하였다.

同日. 題南平縣檢案.<被告曹水正, 其妻姜召史, 與其媳母朴召史言詰則, 水正批頰後, 自溺致死, 而水正逃躲事.>

【題】屍帳捧上是在果. 婦姑勃蹊, 縱云下俚之悖習, 而此獄則訓責而已. 初無惡詈諍語是遣, 反目毆妻, 亦是賤流之常態, 而此獄則摔批而已. 初無狠毆毒打是隱則, 忽然出去無蹤, 竟致赴水自戕, 天生褊毒, 莫可理推, 禍由自作, 更誰怨尤? 觀乎脉錄, 而自溺丁寧, 叅以詞證, 而衆招歸一. 覆檢既不請來, 屍體何爲灰封? 暑月變動時刻可悶, 卽爲出給, 使之埋瘞爲旆. 曹水正之, 檢前逃躲, 只緣惶法所致, 豈有隱情? 可覈待其捉得, 嚴刑一次, 取招牒報爲旆. 曹末甲夫妻段, 如渠卑微之類, 何責齊家之道? 並與在囚諸人, 一體放送爲旆. 屍親姜順哲段, 縱急雪冤之情, 奈無勒溺之跡? 面任郭恩郁段, 晚時間知, 非渠掩置, 俱有叅恕之端, 並置勿問之科, 宜當尙事.

같은 날. 남평현 검안을 데김하였다.<피고 조수정(曹水正)은 자기의 처 강조이[姜召史]가 그 시어머니 박조이[朴召史]와 더불어 언쟁하니 조수정이 뺨을 때린 뒤에 처가 스스로 물에 빠져 죽고 조수정은 도망하여 몸을 감춘 일.>

【데김】시장(屍帳)을 받아 보았다. 고부간의 우발적 다툼은 비록 상스러운[下俚] 풍습이라 할지라도, 이 옥사(獄事)는 꾸짖어 타일렀을 뿐이고, 애초에 나쁜 옥과 꾸짖는 말이 없었다. 반목하여 아내를 때린 것 또한 천한 부류의 일상적 행태인데, 이 옥사는 잡아 때렸을 뿐이다. 애초 사납게 때리고 참혹하게 때린 것이 없었는데 갑자기 나가 자취를 감추어, 결국 물로 달려가 스스로 죽음에 이른 것은 천성이 편벽하고 독해서 전혀 이치적으로 헤아릴 수 없어서이다. 재앙이 스스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을 다시 누구를 원망하고 허물하겠는가. 검시기록을 보면 스스로 빠진 것이 추측컨대 틀림없고, 증언을 참고하면 여러 진술이 하나로 귀결된다. 복검 시관을 오라고 청하지 않았는데 시체는 어찌하여 회봉(灰封)하였는가? 더운 달에 시시각각 변동하는 것은 가히 고민스러우니 바로 내주어 그들로 하여금 묻게 하라.

조수정이 검사하기 전에 도망가 피한 것은, 단지 두렵고 겁이 난 것으로 인한 소치이니 어찌 정황을 숨김이 있겠는가? 그가 잡히기를 기다렸다가 조사하여 1차 례 엄히 형벌하고 진술을 받아 첩보하라. 조말갑(曹末甲) 부부의 경우, 그와 같이

비루하고 미천한 부류에게 어찌 제가(齊家)하는 도리를 책망하겠는가. 아울러 갇혀있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모두 석방하라. 시친 강순철(姜順哲)의 경우, 비록 원한을 갚는 인정이 급하다 할지라도 억지로 물에 빠트린 자취가 없으니 어찌하겠는가. 면임 곽은욱(郭恩郁)의 경우, 그가 숨겨두지 않았다는 것을 늦게 들어 알았으니 모두 참작하여 용서할 단서가 있다. 모두 죄를 묻지 말고 둠이 마땅할 일.

十一日. 監封新稻米進上、朔膳進上. 雲峰縣監、同福縣監入見, 仍爲辭去. 中營將申錫祐, 赴任延命後入見.

11일. 진상할 햅쌀과 삭선(朔膳)을 감봉(監封)하였다. 운봉 현감, 동복 현감이 입건하고 그대로 하직하고 갔다. 중영장 신석우(申錫祐)가 부임하여 연명한 뒤에 입건하였다.

十二日. 中營將入見. 任實縣監洪哲謨、和順縣監徐承淳入見. 判官受由上京, 阻雨未果, 旋爲還官入見.

12일. 중영장이 입건하였다. 임실 현감 질청과 화순 현감 서승순이 입건하였다. 판관이 말미를 받아 상경하였으나, 비로 막혀 실행하지 못하고 바로 관아로 돌아와 입건하였다.

十三日. 中營將入見. 任實縣監入見辭去. 和順縣監入見.

13일. 중영장이 입건하였다. 임실 현감이 입건하여 하직하고 갔다. 화순 현감이 입건하였다.

十四日. 和順縣監入見.

14일. 화순 현감이 입건하였다.

十五日. 因雨下, 望闕禮, 權停. 和順縣監入見, 夜話. 寶城郡守吳顯祐, 延命後入見. 中營將入見.

15일. 비가 내린 것으로 인해 망궐례를 임시로 정지하였다. 화순 현감이 입견하여 밤에 이야기 하였다. 보성 군수 오현우가 연명한 뒤에 입견하였다. 중영장이 입견하였다.

十六日. 寶城郡守入見, 仍爲辭去. 萬頃縣令尹守澈入見. 興陽縣監尹守鳳, 延命後入見. 判官上京.

16일. 보성 군수가 입견하고 그대로 하직하고 갔다. 만경 현령 윤수철이 입견하였다. 흥양 현감 윤수봉(尹守鳳)이 연명한 뒤에 입견하였다. 판관은 상경하였다.

十七日. 南原府使洪錫謨、井邑縣監申淳、海南縣監吳鼎周, 延命後入見. 順天府使洪重燮, 受由上京之路入見.

17일. 남원 부사 홍석모·정읍 현감 신순·해남 현감 오정주가 연명한 뒤에 입견하였다. 순천 부사 홍중섭이 말미를 받아 상경하는 길에 입견하였다.

十八日. 井邑縣監、海南縣監入見辭去. 中營將入見. 與順天府使、南原府使, 設大風樂於宣化堂. 求禮縣監申鍾命入見.

18일. 정읍 현감과 해남 현감이 입견하고 인사하고 떠났다. 중영장이 입견하였다. 순천 부사·남원 부사와 함께 선화당에서 대풍악을 베풀었다. 구례 현감 신종명이 입견하였다.

十九日. 參禮察訪徐承烈, 延命後入見. 求禮縣監、南原府使、順天府使入見, 仍爲辭去.

19일. 상례 찰방 서승렬이 연명한 뒤에 입견하였다. 구례 현감·남원 부사·순천 부사가 입견하고 그대로 하직하고 갔다.

二十日. 中營將、泰仁縣監沈能淑入見. 珍島郡守閔致鳳, 赴任之路, 延命後入見.

20일. 중영장과 태인 현감 심능숙이 입견하였다. 진도 군수 민치봉이 부임하는 길에 연명한 뒤에 입견하였다.



二十一日. 珍島郡守入見, 仍爲辭去. 食後詣濟南亭, 設朔試射後, 仍往寒碧堂施賞, 暫憩還營軒. 靈光郡守金胤根、務安縣監吳致淳, 赴任之路, 延命後入見.

21일. 진도 군수가 입견하고 그대로 하직하고 갔다. 식사 후에 제남정(濟南亭)에 이르러 삭시사(朔試射)를 베푼 뒤에 바로 한벽당(寒碧堂)에 가서 상을 주고 잠시 쉬고 영현으로 돌아왔다. 영광 군수 김윤근·무안 현감 오치순이 부임하는 길에 연명한 뒤에 입견하였다.

同日. 題潭陽府檢案.<被告私奴米同, 與奴加八里, 有所言詰矣. 加八里, 以素患腹痛, 第三日致死事. 初檢官, 潭陽兼任玉果縣監韓致定. 覆檢官淳昌郡守沈宜復.>

【題】屍帳捧上是在果. 傷痕不著於脉錄, 病崇可證於衆招則, 死者死因之, 非毆伊病, 無俟審覆是矣. 特以審克之義, 遲待覆檢之報是加尼, 今見兩案, 昭然相合, 獄情到此, 更無疑眩. 屍體卽爲出給, 使之埋瘞是遣. 被告米同段, 速獄雖無贓犯, 事會亦云乖巧分叱除良, 以少凌長, 有關風化, 嚴刑一次, 懲礪放送爲旌. 看證諸人段置, 一體放送之意, 初檢官良中, 枚移施行向事.

같은 날. 담양부 검안을 데김하였다.<피고 사노 미동(米同)이 노비 가팔리(加八里)와 더불어 말로 따지고 꾸짖는 바가 있었다. 가팔리는 평소 복통을 앓은 것으로 제 3일 만에 죽은 일. 초검시관은 담양 경임 옥과 현감 한치정. 복검시관은 순창 군수 심의복.>

【데김】시장(屍帳)을 받아 보았다. 상흔이 검시기록에 드러나지 않았고 병의 빌미는 많은 공초에서 가히 증거할 수 있다. 사자의 사인은 구타가 아니라 그자의 병이니, 심리를 다시 하는 것을 기다릴 필요는 없다. 다만 심리를 잘하는 뜻으로 복검시관의 보고를 기다렸다. 지금 두 조사문서를 보면 입술이 맞듯이 서로 꼭 맞으니, 옥사의 정리가 이에 이르러 다시 의혹될 것이 없다. 시체는 바로 내주어 그들로 하여금 묻게 하라.

피고 미동의 경우 옥사에 불러냈으나 비록 장물이 없는 죄인일지라도 일이 마침 또한 교묘하게 어긋났다고 하겠다. 젊은이가 연장자를 능멸한 것이 풍속의 교화에 관련됨이 있으니, 엄하게 1차 형벌을 가하고 징계하여 석방하라. 보고 증거한 여러 사람들도 모두 놓아 보내는 뜻을 초검시관에게 공문을 보내어 시행할 일.

二十二日. 靈光郡守、務安縣監入見, 仍爲辭去. 中營將入見. 碧沙察訪李熙黼、法聖僉使鄭泰東, 赴任之路, 延命後入見. 槥樹察訪田栽五入見.

22일. 영광 군수 · 무안 현감이 입견하고 그대로 하직하고 갔다. 중영장이 입견하였다. 벽사 찰방 이희보 · 법성 첨사 정태동(鄭泰東)이 부임하는 길에 연명한 뒤에 입견하였다. 오수 찰방 전재오가 입견하였다.

二十三日. 槥樹察訪、碧沙察訪、法聖僉使入見, 仍爲辭去. 康津縣監任百經, 赴任之路, 延命後入見.

23일. 오수 찰방 · 벽사 찰방 · 법성 첨사가 입견하고 그대로 하직하고 갔다. 강진 현감 임백경이 부임하는 길에 연명한 뒤에 입견하였다.

二十四日. 康津縣監入見, 仍爲辭去. 中營將入見. 金溝縣令金錫喜, 受由上京之路入見, 仍爲辭去.

24일. 강진 현감이 입견하고 그대로 하직하고 갔다. 중영장이 입견하였다. 금구 현령 김석희가 말미를 받아 상경하는 길에 입견하고 그대로 하직하고 갔다.

二十五日. 高敞縣監李鍾應入見. 公忠道公州營將崔應鉉, 以慶尙兵虞侯移拜, 赴任之路入見.

25일. 고창 현감 이종응이 입견하였다. 공충도 공주 영장(公州營將) 최응현(崔應鉉)이 경상병 우후(慶尙兵虞侯)로 이배(移拜)되어 부임하러 가는 길에 입견하였다.

同日. 題長水縣檢案.<被告崔致云, 夜入金永達妻高召史房中, 以致高召史羞憤, 服鹵致死事. 初檢官長水縣監李啓陽.>

【題】屍帳捧上是在果. 渾身之傷痕不著, 鹵器之餘瀝尙存, 高召史之服毒致死, 固無待乎覆審是如乎. 所當查究者, 卽金永達之威逼與否. 崔致云之和奸, 情節耳. 由崔非金, 死女臨絕之言, 丁寧初無驅迫, 同氣立證之招可按. 而至於不忘崔哥之云, 死生勿

問之語，皆不過麤鹵之口氣，未必爲憎勒之的證是遣。和奸有夫，法律何如？況旣乘夜潛入，渠亦自服，而含冤崔哥云云，旣出死者之口，則渠雖百喙，何以免由我之律是乙驗？同被告崔致云身乙，爲先嚴訊，得情爲乎矣。其矣供招中，厥女之約以乘夜來訪云者，說不近理。旣知本夫之當夜在家，而約會奸夫，是豈常情之所爲？豈或其矣本夫，將欲因事出他是如，可臨時停行是加隱喻，金永達處，一問可判。苟其不然，則强奸不成，尤爲較著。一番盤問亦足爲死者比灑之一助，兩造良中，以此添問目取招爲旣。覆檢旣不請來，屍體胡爲灰封是喻？暑月變動時刻可悶，卽爲出給埋瘞爲旣。殺越獄體，何等慎重，發告行檢，自有格例是去乙。屍親高敬汗之，但憑傳訃，經先告官，妄率除良，亦關後弊，嚴杖三十度，懲礪放送爲旣，保授各人等戾置，一體放送宜當尙事。

같은 날. 장수현 검안을 데김하였다.<피고 최치운(崔致云)이 밤에 김영달(金永達)의 처 고조이[高召史]의 방에 들어가자 고조이가 수치와 분함을 못이겨 간수를 먹고 죽은 일. 초검시관 장수현감 이계양.>

【데김】시장을 받아 보았다. 온 몸에 상흔이 드러나지 않았고, 소금그릇에 남은 찌꺼기가 아직도 있어, 고조이가 독을 먹고 죽은 것은 진실로 다시 조사할 필요가 없다. 당연히 추궁할 것은 바로 김영달이 자기 아내를 협박하였는가의 여부와 최치운의 화간 정황일 뿐이다. 최가(崔哥) 때문이지 김가 때문이 아님은 죽은 여인의 임종의 말이고, 정녕코 애초에 구박이 없었던 것은 형제가 입증한 진술로 살필 수 있다. 최가를 잊지 말라고 한 것과 죽고 사는 것을 묻지 말라는 말에 이르러서는 모두 경솔한 말버릇에 지나지 않으니, 반드시 협박하고 강제했다는 확정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 유부녀를 화간하였다면 법으로 다스림이 어떠해야 하겠는가? 하물며 밤에 몰래 들어왔다고 그 또한 자백하였고, 원통함을 품고 최가운운 하는 말이 이미 죽은 자의 입에서 나왔으니, 그자가 비록 백 개의 입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찌 우리의 법률을 면할 수 있겠는가. 피고 최치운의 몸을 먼저 엄히 형신(刑訊)하고 정황을 얻어라.

그의 진술가운데 그 여자가 밤에 찾아오라고 말한 것으로 약속했다는 것은 말이 이치에 가깝지 않다. 이미 본 남편이 당연히 밤에 집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간부(奸夫)와 만날 것을 약속함은 이것이 어찌 보통 사람의 도리로 행할 바이겠는가. 아마도 혹 그 여자의 본 남편이 장차 일 때문에 다른 곳으로 나가려다가 때마침 그만두었는지는 김영달에게 한번 물어보면 판단할 수 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강간하려 했으나 못한 것이 더욱 확연하게 드러나게 된 것이다. 한 번 자세하게 캐묻는 것은 또한 충분히 죽은 자의 치욕을 씻는 하나의 도움이 되니, 원고와 피고에게 이것을 심문하는 조목에 첨가하여 진술을 받으라.

복검시관을 오라고 청하지 않았는데도 시체는 어찌 회봉(灰封)하였는가? 더운 달에 시시각각으로 변동하는 것은 가히 근심스러우니 바로 내주어 묻게 하라. 살인의 옥체는 매우 신중해야 하고, 발고(發告)와 검시(檢屍)를 행함은 본래 정해진 관례가 있다. 그런데도 시친 고경한(高敬汗)은 단지 부고를 전하는 것에 의거하여 곧바로 먼저 관아에 알린 것은 경솔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뒷날 폐해에 관계되니, 엄하게 30대 장형을 가하고 징계하여 놓아 보내고, 보수(保授)한 사람들도 모두 석방함이 마땅할 일.

二十六日. 公州營將、高敞縣監入見, 仍爲辭去.

26일. 공주 영장(營將)<sup>206</sup>, 고창 현감이 입견하고 그대로 하직하고 갔다.

同日. 封審理狀啓.

【跋辭】 益山崔平軍獄事. 此獄~~段~~, 四人同惡, 厥罪惟均. 論其犯則, 雖有間於手戕, 語其跡則, 實無異於強盜. 特以獄無兩犯, 將欲區別首從, 必須叅互證招, 務歸的當是白乎矣. 始也三漢在逃, 平軍獨先被捉則, 苦主雪冤之心, 捨平軍而更誰指斥? 檢案正犯之目, 捨平軍而于何執定? 彼平軍者, 雖千百其喙, 莫可掉脫, 設令他漢先捉, 烏得免爲當日之平軍是白乎乙喻? 伊時道臣題語中, ‘死則自死, 何必稱以正犯’云者, 亦可見其難硬定是白乎~~旣~~. 及夫斷案, 已成之後, 兩漢追于就捕則, 互相推諉, 又是必至之勢. 而苦主眼中, 均是讎人, 旣指一人爲正犯, 則更不欲變幻立證. 此平軍所以數十年狂狴, 終不免首犯之目者也. 大抵死者之死, 非毆伊溺也. 其所溺水, 又非推而納諸, 而卽渠自溺也. 假使平軍, 的是此獄之首惡是白良置, 只當用威逼, 人致死之律是白遣. 若以其聚黨搶財逼人致死之情犯, 兇慝, 治以強盜之律則, 謹按大明律云, ‘因

206) 영장(營將) : 진영장(鎭營將)의 약칭으로, 조선 초부터 지방대(地方隊)의 주둔 영으로 각 병영·수영 밑에 두었던 직소이다. 임진왜란 이후 도성(都城) 및 근교(近郊)에는 5군영의 개편에 따라 이에 직속케 하였고, 그 외의 지방은 각 감영·병영·수영 밑에 달리게 하였다. 이를 지키는 진영장으로 우후(虞侯)·첨사(僉使)·동첨절제사(同僉節制使)·만호(萬戶) 등의 계급이 이에 소속되었다.

盜威逼人致死者，斬’，又云，‘共盜之人知殺傷人，雖不會助力，亦斬’，此即強盜殺入者，不分首從，皆斬之謂也。據此擬律，則追捕兩漢之數次刑訊，旋即酌放，得不歸於逸罰，而平軍之二紀囚繫，受刑五百餘次，一低一昂之間，終有垂於天下平之義是白如乎。一依本律，施以杖一百，邊遠充軍之典，恐不害為審克之義是白乎矣。膚淺之見，不敢自信，令該曹稟處是白齊。

鎮安金於仁老未獄事。此獄段，三人共毆一，夕遽殞，而其事則食債不報，其端則店主之始倡是白如乎。蓋當初愆憑而起鬧者，即張春甲也，中間抱擠而蹴踏者，亦張春甲也。金化同之，一番打頰先犯，倘不甚猛，於仁老未之，再次踢脅，末勢豈至偏毒乎？張春甲之招，有曰：“先執渠髻，一團滾鬪，力推氣湧，轉驅至下墘”云云，而末則，曰：“一踢肩胛而已。”首尾橫決，一何至此？方其滾鬪之時，奚特一踢肩胛，又於轉驅之際，安得不觸撞臍肚是白乎乙喻？春甲則極其力，而惟恐不猛，卜太則中其毒，而自至垂死。於仁老未之追後再踢，未必非推波助瀾，而適足為巧落熟蒂是白遣。雖以脉錄痕損，言之是白良置，臍肚右邊，紫黯微硬廢，彙互畔橫，至腎阜云者，安知非滾鬪轉驅時所被傷是白乎称？致命之因，的在於此則，當就臍肚腎阜兩部位中，較緊的處而論斷是白去乙，覆檢案脉錄，攙入近脇二字是白乎所，脇則，當曰脇，非脇則，不當曰脇，近之云者，得不幾於模索捏合之歸是白乎乙愈？凡殺死之案，隻字所關何如，而乃以不分明之近字，作為。莫移易之，當處審獄之體，豈容若是？於仁老未之為此獄正犯，終涉疑眩，所當更為查究，務歸的確，而事係年，以今難追理是白乎，則與其仍置然疑之間，無寧特傳惟輕之典，恐合欽恤之義？而膚淺之見，不敢臆斷，令該曹稟處是白齊。

靈巖金成用獄事。此獄段，奪人妻而恣行淫惠，猜本未而竟至戕殺，即此斷案，他何暇論？況死不踰日，屍已入地，掩跡之計，不見是圖是白遣。美邑孫之，自初網繆，至說後慮，五十同之合力斂束，的指傷處，情節並綻，詞證既具，則不可以未經檢驗，有所致疑乙仍于。今方連加訊推，期於得情是白齊。

靈巖朴再豐獄事。此獄段，以衰麻罪蟄之身，爭斗米微瑣之事，起憤於由醉之言，肆毒於垂老之身，既膝築焉，又足踢之，不有殺心，豈成死因？耳竅血迸，已係要害之傷，脊背黯硬，尤為必死之崇，則窓矢刺耳，不過為兇身圖脫之辭。旬餘殞命，無足為傷重死遲之疑。此不償命，法何由伸？今方連加訊推，期速得情是白齊。

扶安金壽泓獄事。此獄段，嫂髻見失，雇童受疑，干渠甚事，作此悖舉？觀於脉錄之痕

損，無非法文之陷合，而最是額角血廕，太陽紫硬爲要害，必死處是白如乎，實因明的，更無疑眩。詞證具備，不少差爽是白去乙，計急掉脫，誣人移禍，情跡俱懼，典憲莫道。今方連加嚴訊，期於取服是白齊。

全州鄭召史獄事。此獄段，污穢請澣渠，自先失半辭愆恭，又何苛責，始焉臨水而力擠，繼又懷刃而肆惡，褊性狠戾，胡至此極？況孕婦之不可輕犯，卽女人之尋常稔知是去乙。突出房門，督打要害，致使兒胎先墮，母命隨殞，其用意之慳毒，下手之猛悍，不待檢驗，已盡綻露，兩命之償，三尺焉道？今方連加訊推，期於取服是白齊。

南平金召史獄事。此獄段，娣姒無異天屬，病女尤宜矜恤，而慾火動於財產，慳計急於搆陷。當得秋呈官之日，犷性齷忿，乘哲得起鬧之際，毒手助勢，而畢竟機石之擲打，以致眉叢之深中穴穿。而血湧色黯而彙匝，以若要害之地，有此致命之傷，則以殺心，行殺事，正謂此也。依法文斷法理，烏可已乎？詞證旣的，而敢諉自縊，成案已久，而尙不輸疑，觀厥狠戾，決難容貸。今方連加嚴訊，期於取服是白齊。

같은 날. 심리(審理) 장계를 써서 봉하였다.

【발사(跋辭)<sup>207)</sup>】

**익산 최평군(崔平軍)의 옥사.** 이 옥사는 4인이 함께 악을 행하여 그 죄는 오직 똑 같습니다. 그 범한 것을 논하면 비록 손수 죽인 것과는 간극이 있으나, 그 자취를 말하면 실제로 강도와 다름이 없습니다. 다만 옥사에 두 범인이 없기 때문에 장차 수범과 증범을 구별하려면 반드시 증거와 진술을 서로 참고하여 꼭 들어맞는 것에 귀의하도록 힘써야만 합니다. 처음에 세 놈이 도망 중에 있다가 최평군 홀로 먼저 잡히자, 고주(苦主)가 원통함을 푸는 마음으로 최평군을 놓아주었는데 다시 누가 그 것을 지적하여 탓하겠습니까. 정범을 검안하는 문목(問目)에 최평군을 놓아주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겠습니까? 저 최평군이란 놈은 비록 그 입이 천백 개라도 벗어날 수가 없으니, 설령 다른 놈이 먼저 잡혔더라도 어찌 당일에 최평군 같이 될 것을 면하였겠습니까?

그 당시 도신(道臣)의 데김말 중에 스스로 죽었는데 하필 정범으로 칭해야 하는가 한 것은, 또한 가히 그것이 억지로 확정하기 어려웠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

207) 발사(跋辭) : 검시관(檢屍官)이 살인의 원인과 정황을 조사하여 검안(檢案)에 기록하는 의견서(意見書)로 발미(跋尾)라고도 한다. 발사는 서울이나 지방을 불문하고 모두 등사하는데, 단(段)을 따라 작은 황첨지를 써서 붙였다.

판결(判決) 문안(文案)이 이미 이루어진 뒤에 두 놈을 추적하여 잡았더니 서로 책임을 전가하였습니다. 또 이는 반드시 닥칠 형세였습니다. 고주(苦主)의 눈에는 똑같이 원수인데, 이미 한 사람만을 지적하여 정범으로 삼아 다시 입증(立證)을 바꾸지 않고자 하였습니다. 이것이 최평군이 수십 년간 감옥살이를 하고 끝내 수범으로 지목되는 것을 면치 못한 이유입니다.

대저 죽은 자의 죽은 원인은 그를 때린 것이 아니라 익사(溺死)한 것입니다. 그가 물에 빠진 것은 또 밀어서가 아니라 바로 그가 스스로 빠진 것입니다. 설사 최평군이 확정적으로 이번 옥사의 으뜸 악인이 될지라도 단지 위협하여 사람이 죽음에 이른 법률에 해당합니다. 만약 그가 무리를 모아 재물을 뺏고 사람을 핍박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정범(情犯 정실과 범죄)으로 흉악하고 사특한 자라면 강도의 율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삼가 살펴보면 『대명률(大明律)』에 “도적질로 인하여 사람을 위협하고 핍박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자는 참형(斬刑)에 처한다.” 하였고, 또 “함께 도적질한 사람이 사람을 살상(殺傷)한 것을 알았다면 비록 일찍이 힘으로 돕지 않았더라도 또한 참형한다.” 하였으니, 이는 바로 강도 살인한 자는 수종(首從)을 나누지 않고 모두 목을 베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에 의거하여 형률을 생각하면, 두 놈을 쫓아가 잡아 서너 차례 형신하고 곧바로 참작하여 놓아준 것은 일벌(逸罰)<sup>208)</sup>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데도, 최평군은 24년간 죄인으로 형을 500여 차례 받으며 한 번 내려가고 한 번 올라가는 사이에 마침내 천하가 공평하다는 뜻을 전함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한결같이 『대명률(大明律)』의 규정에 의거하여 100대의 장형을 가하고 먼 변방의 군인으로 총원되는 은전을 베푸는 것은 아마도 자세히 살피게 하는 뜻에 해가 되지 않을 듯합니다. 천박한 견해로 감히 자신을 믿을 수 없으니 해당 관아로 하여금 여쭙어 처리하게 해야 합니다.

**진안 김어인노미(金於仁老未)<sup>209)</sup>의 옥사.** 이 옥사는 3인이 함께 한 사람을 때려져 낙에 갑자기 죽었으니, 그 일은 음식 값을 갚지 않아서였고, 그 발단은 점주가 처음으로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대개 처음에는 조용했으나 소란을 일으킨 자는 바

208) 일벌(逸罰) : 죄가 가벼운 것으로 판단하여 벌을 편안하게 주는 것을 말한다.

209) 김어인노미(金於仁老未) : ‘어인노미(於仁老未)’를 ‘언놈[於仁老未]’으로 쓰기도 하나 ‘어인노미’로 번역하였다.

로 장춘갑(張春甲)이고, 중간에 안아서 밀고 발로 차고 밟은 자 또한 장춘갑입니다. 김화동(金化同)이 한 번 뺨을 때린 것이 먼저 있었는데, 만일 매우 사납게 하지 않았다면 김어인노미가 재차 밀어붙이고 위협하며 막판에 어찌 지나치게 독하게 했겠습니까? 장춘갑의 공초에 “그의 상투를 먼저 잡고 한 덩어리로 엉켜 싸우며 힘으로 밀고 기운이 솟구쳐 뒹굴어 굴뚝 아래로 이르렀다.” 하였고, 끝에는 “어깨뼈 있는 자리를 한 번 발로 찼을 뿐이다.” 하였습니다. 앞뒤의 판단이 다르니 한결같이 어찌 이 지경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그가 한창 뒤엎켜 싸울 때에 어찌 한번 어깨뼈 있는 자리를 발로 찼을 뿐이며 또 뒹굴 때 어찌 배꼽과 배를 부딪치지 않았겠습니까? 장춘갑은 자기의 힘을 다하고도 오직 사납지 못했음을 염려하였고, 복태(卜太)는 중독되어 저절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김어인노미가 뒤쫓아 가서 다시 발로 찼으니 반드시 파란(波瀾)을 일으키지 않은 것은 아니나, 다만 공교롭게도 익은 감꼭지가 떨어지는 격에 충분하였습니다. 비록 검시(檢屍)기록의 훼손된 상흔으로 말할지라도 제두(臍肚)의 오른쪽에 자줏색과 검은색으로 작고 단단하게 덮여있고 그 배꼽부위에 비스듬히 펼쳐져 있고 신부(腎阜)에까지 이르렀다고 말하는 것이 한창 싸우며 뒹굴던 때에 생긴 상처이 아니라는 것을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목숨이 다한 원인이 분명하게 여기에 있으니, 마땅히 제두와 신부 두 부위 가운데에서 비교적 치명적인 곳을 논증하고 판단했어야 했거늘, 복검안의 검시(檢屍)기록은 겨우 근협(近脇) 두 글자만을 써 넣었습니다. 협(脇)은 협(脇)이라 해야 마땅하고, 비협(非脇)을 협(脇)이라 말하는 것은 부당한데도, 협에 가깝다[近脇]고 말하는 것은 모호함을 찾아 꺾어 맞추려는 것에 가깝지 않겠습니까?

모든 살인사건의 문건은 한 글자가 관계됨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오히려 불분명한 근(近) 자로 작위 하였습니다. 옮겨 바꾸지 못하게 하는 것이 옥사를 심리하는 체단에 당연한 처지이거늘 어찌 이같이 용납하였겠습니까? 김어인노미가 이 옥사의 정범이라는 것이 끝내 의혹되는 점이니 마땅히 다시 조사하고 규명하여 분명하게 결론을 내야 하나, 사건이 시간[年]에 묶여 지금 뒤쫓아 다스리기 어렵다고 애매모호하게 방치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가볍게 처벌하는 법으로 특별히 전교(傳敎)하심이 아마도 흠恤지(欽恤之義)<sup>210)</sup>에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210) 흠恤지(欽恤之義) : 정조(正祖) 2년(1778)에 제정한, 죄인의 심리(審理)를 신중히 하라는 요지의 준칙(準則)이다. 죄인을 처분할 때 죄는 미워할지라도 그 사람은 불쌍히 여겨야 한다는 취지에서, 사



천박한 견해로 감히 판단할 수 없으니 해당 관아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해야 합니다.

**영암 김성용(金成用)의 옥사.** 이 옥사는 남의 아내를 빼앗아 제멋대로 못된 짓을 하고 본말을 두려워하여 결국 죽이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곧 이렇게 판단한 것을 달리 무엇을 빌려 논하겠습니까? 하물며 죽은 지 하루도 넘기지 않고 시신을 이미 땅속에 묻었다면 흔적을 감춘 의도를 보지 않아도 헤아릴 수 있습니다. 미읍손(美邑孫)이 애초 미리 꼼꼼히 준비한 것부터 사건 뒷일을 염려한 말에 이르기까지 50 명이 함께하여 힘을 합해 단속하고 정확하게 상처를 지적하여 정황이 모두 드러나고 증언이 이미 갖추어 졌다면 검험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심이 있게 해서 는 안 됩니다. 바로 이어서 사실을 캐물어 기어코 실정을 알아내야 합니다.

**영암 박재풍(朴再豊)의 옥사.** 이 옥사는 쇠마(衰麻)<sup>211)</sup>복을 입는 상중(喪中)의 몸으로 하찮은 일로 다투다가 술에 취해 나온 말에 분기(憤氣)를 내고 칠십 노인[垂老]에게 방자하게 독기를 부리며 무릎으로 짓뭇개고 또 발로 그를 찼으니 죽일 마음은 있지 않았다면 어찌 사망의 원인이 되었겠습니까? 컹구멍에서 피가 솟아 나온 것으로 인하여 이미 급소의 상처에 관련되고, 척배(脊背 등골뼈와 등)가 검은색으로 단단한 것은 더욱 반드시 그를 죽이겠다는 빌미가 되는 것이니 창살이 귀를 찢었다는 것은 흉악한 놈이 빠져나갈 의도의 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열흘 남짓이 되어 죽었으니 상처가 심한데도 죽음이 지체되었다는 의심을 하기에는 충분치 않습니다. 이것을 살인죄로 다스리지 않는다면 법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원통함을 풀어주겠습니까? 바로 이어서 사실을 캐물어 기어코 속히 실정을 알아내야 합니다.

**부안 김수홍(金壽泓)의 옥사.** 이 옥사는 형수가 계(髻)<sup>212)</sup>를 잃어버리고 고용된 아이가 의심을 받았는데 그와 관계되었다면 귀부인에게나 필요한 물건을 천한 아이가 무슨 필요가 있어 이렇게 도리에 벗어난 일을 하였겠는가.<sup>213)</sup> 검시(檢屍)기

---

건의 전말을 신중히 다루어 억울한 형벌을 받도록 해서는 안 되며, 죄인에게 가하는 모든 형구(刑具)의 규격은 『대명률(大明律)』의 규정을 따르도록 조치하였다.

211) 쇠마(衰麻) : 삼년상에 입는 상복으로, 참쇠마질(斬衰麻絰)로도 표현한다.

212) 계(髻) : 일반적으로 상투를 말하는데, 여기서는 가계(假髻)를 말한다. 가발(假髮)로 만든 머리 장식으로, 옛날에 부녀자들이 머리장식용으로 썼다.

록의 상흔(傷痕)을 보면 법문이 꼭 맞지 않음이 없고 특히 이마[額角]가 피로 덮였고 태양혈(太陽穴)<sup>214</sup>이 자주색으로 단단함은 급소가 되어 반드시 죽게 된다고 하므로 실인이 분명하여 다시 의혹될 것이 없습니다. 증언이 갖추어져 조금치도 어긋나고 잘못됨이 없거늘 급하게 벗어나려고 꾀하고 사람을 속여 재앙을 남한테 옮기려는 정황이 모두 참혹하여 형법[전(典)과 헌(憲)]으로 처벌되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지금 연이어 사실을 캐물어 기어코 자복을 받아내야 합니다.

**전주 정조이[鄭召史]의 옥사.** 이 옥사는 더러운 버선을 그에게 빨아달라고 청할 때 스스로 먼저 반말하고 공경하지 않게 하여 실수하였고 또 어찌나 가혹하게 책망하였는지, 처음엔 물가에 이르러 힘껏 밀치고 또 칼을 품고 악한 성정을 함부로 부렸으니 편벽된 성격과 사납고 빼돌어짐이 어찌 이렇게 심한 지경에 이르렀는가? 하물며 아이 뱀 부녀자는 함부로 범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여인들의 보통의 정서로 익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방문에서 갑자기 나와 급소를 골라 때려 태아(胎兒)를 먼저 떨어지게 하고 어미의 목숨이 따라서 떨어지게 하였으니 그같이 마음 쓰미 무자비하고 혹독하며 때린 것이 매섭고 사나운 것이 경험할 필요도 없이 이미 모두 탄로 났으니 두 목숨을 죽게 한데 대한 살인죄로의 처벌을 어찌 피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어서 사실을 캐물어 기어코 자복을 받아내야 합니다.

**남평 김조이[金召史]의 옥사.** 이 옥사는 제사(娣姒)<sup>215</sup>는 천속(天屬 천륜의 친속, 곧 형제)과 다름이 없고 병든 여인은 더욱 마땅히 가엾게 도와주어야 하는데도 불같은 욕망이 재물(財物)로 일어나 참혹한 계획은 수렁에 엮어매고 빠지는 것을 재촉하였습니다. 가을에 관청에 소장(訴狀)을 내는 날에 사나운 성정으로 분노를 지녔고, 승철(乘哲)이 소란을 일으킬 때에 악독한 수단으로 형세를 조작하여 결국 기석(機石)<sup>216</sup>을 던져버려 양 미간의 깊숙한 곳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피가 솟구

213) 그와……하였겠는가 : 원문의 ‘간거심사(干渠甚事)’는 쓸데없이 남의 일에 참견하는 사람을 비웃을 때 쓰는 말이다.

214) 태양혈(太陽穴) : 침을 놓는 자리의 하나로, 귀의 위 눈의 옆쪽에 있다. 곧 무엇을 씹으면 움직이는 곳이다.

215) 제사(娣姒) : 손윗동서와 손아랫동서를 말한다. 『이아(爾雅)』에 “나보다 먼저 난 여자는 누이[姒], 나보다 뒤에 난 여자는 누이동생[娣]이 된다.” 하고, 『정운(正韻)』에는 “세속에서 형처(兄妻)를 윗동서[姒], 제처(弟妻)를 아랫동서[娣]라 부른다.” 하였다

216) 기석(機石) : 직녀(織女)의 지기석(支機石)에서 연유하여 베틀을 괴던 돌을 말한다.

쳤고 색이 검으며 부위를 빙 둘러 급소와 같은 부위에 이렇게 치명적인 상흔이 있다면 죽이려는 마음으로 살인을 행했다는 것이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법문에 의거하여 법리를 판단하는 것을 어찌 그만 둘 수 있겠습니까? 증언이 이미 확정되었는데도 감히 스스로 목을 매었다고 핑계대고 성안(成案)이 이미 오래되었는데도 오히려 의심을 떨쳐내지 못하니 그 사납고 어그러짐을 보면 결단코 용서하기가 어렵습니다. 바로 이어서 사실을 캐물어 기어코 자복을 받아내야 합니다.

二十七日. 裨將趙景愈, 牟還摘奸後, 還來.

27일. 비장(裨將) 조경유(趙景愈)가 모환(牟還)에 대하여 잘못이 있었는지를 살핀 뒤에 돌아왔다.

二十八日. 中營將入見. 濟原察訪金熙適, 延命後入見. 裨將李洛培, 牟還摘奸後, 還來.

28일. 중영장이 입견하였다. 제원(濟原) 찰방 김희유가 연명한 뒤에 입견하였다. 비장이낙배(李洛培)가 모환(牟還)중 잘못이 있었는지를 살핀 뒤에 돌아왔다.

二十九日. 濟原察訪入見, 仍爲辭去. 沃溝縣監金秀萬入見.

29일. 제원 찰방이 입견하고 그대로 하직하고 갔다. 옥구 현감 김수만이 입견하였다.

三十日. 希顯堂儒生, 撤接將歸, 食後出往, 置酒張樂以餞之, 申後還營. 沃溝縣監入見, 仍爲辭去. 益山郡守李源吉、萬頃縣令尹守澈、龍潭縣令朴獻壽、雲峯縣監趙存奎、茂長縣監尹興圭、同福縣監李寅元、參禮察訪徐承烈, 以肇慶廟秋享祭差備官入見. 裨將李河錫, 牟還摘奸後還來.

30일. 희현당(希顯堂)에서 유생들이 모여 공부하던 것을 그치고 장차 돌아가려하니, 식사 후에 가서 주연(酒宴)을 베풀어 그들을 전별하고 신시(申時) 이후에 감영으로 돌아왔다.

옥구 현감이 입견하고 그대로 하직하고 갔다. 익산 군수 이원길·만경 현령 윤수철·용담 현령 박헌수·운봉 현감 조존규·무장 현감 윤흥규·동북 현감 이인원·삼례 찰방 서승렬이 조경묘(肇慶廟) 추향제(秋享祭) 차비관(差備官)<sup>217</sup>으로 입견하였다. 비장 이하석(李河錫)은 모환(牟還)<sup>218</sup>에 대하여 잘못이 있었는지 살핀 뒤에 돌아왔다.

---

217) 차비관(差備官) : 특별한 사무를 맡기려고 임시로 임명하던 벼슬이다.

218) 모환(牟還) : 모맥 환자[牟麥還上]로 보리를 환곡하는 일을 말한다.

## 5. 1833년(순조33) 8월 : 조경묘(肇慶廟) 추향제(秋享祭)를 시행하다

初一日. 早朝以肩輿, 詣客舍, 行望闕禮. 中軍、益山郡守、萬頃縣令、龍潭縣令、雲峯縣監、茂長縣監、同福縣監、參禮察訪、檢律, 同爲進參, 仍還營軒.

祭官預差, 同福縣監、參禮察訪入見, 仍爲辭去. 雲峯縣監入見. 申後詣肇慶廟入齋.

1일. 이른 아침 견여로 객사에 가서 망궤례를 행하였다. 중군·익산 군수·만경 현령·용담 현령·운봉 현감·무장 현감·동북 현감·삼례 찰방·검름이 함께 진참(進參)하고 그대로 영현으로 돌아왔다. 제관으로 미리 차비(差備)한 동북 현감과 삼례 찰방이 입견하고 그대로 하직하고 갔다. 운봉 현감이 입견하였다. 신시(申時) 뒤에 조경묘(肇慶廟)에 가서 입재(入齋)하였다.

初二日. 曉設行肇慶廟秋享祭後, 還營封行祭啓.

【狀啓】 今八月初二日行肇慶廟秋享祭, 精備奠物, 差定祭官, 依禮文設行後, 獻官、諸執事職姓名開錄于後爲白乎旒, 緣由謹具啓聞.<獻官, 行觀察使徐有槩, 典祀官兼大祝茂長縣監尹興圭, 祝史益山郡守李源吉, 齋郎令金養默, 贊者龍潭縣令朴岫壽, 謁者萬頃縣令尹守澈.>

2일. 새벽에 조경묘 추향제를 시행한 뒤에 감영으로 돌아와 추향제를 행한 것을 장계를 써서 봉하였다.

【장계】 지금 8월 2일에 조경묘 추향제를 행할 때에 정성껏 갖추어 제물을 올리고 제관을 차정(差定)하여 예법에 의거하여 제(祭)를 시행한 뒤에 헌관과 여러 집사의 직위와 성명을 뒤에 날날이 적고 이러한 연유로 삼가 갖추어 아뢰입니다.<헌관은 행 관찰사 서유구, 전사관 겸 대축은 무장 현감 윤홍규, 축사(祝史)는 익산 군수 이원길, 재량(齋郎)은 영(令) 김양묵, 찬자는 용담 현령 박헌수, 알자는 만경 현령 윤수철.>

同日. 臨陂縣令李宜翼入見, 仍爲辭去. 雲峯縣監、萬頃縣令、茂長縣監入見, 仍爲辭去. 益山郡守、龍潭縣令入見.

같은 날. 임치 현령 이의익이 입견하고 그대로 하직하고 갔다. 운봉 현감·만경 현

령·무장 현감이 입건하고 그대로 하직하고 갔다. 익산 군수와 용담 현령이 입건하였다.

同日. 以戶籍申飭事, 發甘列邑.

【甘結】近來籍法解弛, 漏戶隱丁, 看作例套, 比摠磨勘, 便成文具. 徭役之不均、軍伍之虛額, 皆由於此, 言念法綱, 萬萬寒心. 列邑苟能實心照察, 留意厘革是隱喻. 今番段切勿視以例飭, 另加操束, 該監色、別有司之任, 必擇勤幹小心人, 爲之到底查櫛, 一從實數執摠, 期無隱漏虛錄之弊是矣. 軍民中稍饒者, 符同任掌, 冒稱幼學, 謀避軍丁之類, 這這查出, 依律科治, 俾不至如前紊亂爲旻. 磨勘雜費條段, 既有辛巳節目, 斂民凡百, 果皆一遵節目, 無或濫觴是隱喻? 見今災荒之餘, 民困轉甚, 凡係徵斂, 尤當軫念. 而收單之際, 任掌輩之科外徵索, 難保其必無別加糾察, 俾無襲謬犯科之弊爲乎矣. 如是另飭之後, 若或不有定式, 恣意濫徵是如, 可現發於別歧廉探, 則當該監色任掌等, 斷當施以刑配之典, 都次知首吏鄉, 難免重勘, 而不飭之責, 亦有所歸, 並只惕念舉行爲旻, 甘到日時, 先卽馳報宜當者.

같은 날. 호적신고를 거듭 신척하는 일로 여러 읍에 감결을 발송하였다.

【감결】근래 호적법이 해이하여 호적을 빠트리고 군정(軍丁)<sup>219</sup>을 숨기는 것을 보통의 법식으로 간주하니, 비총(比摠)<sup>220</sup>을 마감한 것이 곧 부실하고 형식만 있다. 요역이 균등하지 아니한 것과 군대의 대오가 빈 인원은 모두가 여기에서 연유하였으니, 법의 기강을 생각하면 매우 한심하다. 열읍은 진실로 신실한 마음으로 잘잘못을 살피고 유의하여 바로잡아야 한다. 금번은 절대로 의례적으로 하는 신척으로 여기지 말고, 더욱 특별히 단속하고, 해당 감관(監官)과 색리(色吏)<sup>221</sup>와 별유사(別有司)<sup>222</sup>의 임무는 반드시 부지런하고 성실하며 삼가는 사람을 간택하여 그들에게 살살이 조사하게 하여 한결같이 실제 숫자를 따라 총계를 내어 기필코 숨기고 빠뜨려 허위로 기록하는 폐단이 없게 하라.

219) 군정(軍丁) : 군적(軍籍)에 있는 지방의 장정을 말한다. 16세 이상 60세 미만의 정남(丁男)으로, 국가나 관아의 명령으로 병역이나 노역(勞役)에 종사하였다.

220) 비총(比摠) : 매년 가을에 호조에서 그 해의 기후와 작황을 참고하고 상당년(相當年)과 비교 상량(商量)하여 세액(稅額)을 결정한 총액을 말한다. 연분(年分)을 정하는 방법의 하나로 급재(給災) 절차를 취한 다음에 세액을 결정한다.

221) 색리(色吏) : 감영(監營)이나 군아(郡衙)에서 전곡(錢穀)의 출납과 간수(看守)를 맡아 보던 아전이다.

222) 별유사(別有司) : 서울 각 방(坊)에서 호적(戶籍)과 그 밖의 공공(公共) 사무(事務)를 맡아보던 사역의 하나이다.

군인과 민간인 가운데 조금 풍요로운 자 중에서, 임장(任掌)<sup>223</sup>과 한통속이 되어 유학(幼學)<sup>224</sup>생으로 거짓 칭하여 군정(軍丁)을 회피하려고 꾀하는 부류들은, 날날이 조사하여 색출하고 조문에 의거하여 죄과를 다스려 이전 같이 문란함에 이르지 않게 하라. 마감잡비 조항은 이미 신사년 절목에 있는데, 백성에게 거두는 모든 잡비는 과연 모두 절목을 한결같이 따라서 혹여 잘못하는 실마리는 없는가? 지금 재해로 황폐해진 나머지 백성의 곤고함이 더욱 심하니, 모두 거둬들이는 것에 관계된 것은 더욱 임금이 보살피는 바에 해당한다. 그리고 단자를 거두어들이는 때에 임장(任掌)우리들의 세금 외에 거둬들이는 것에 반드시 별도로 규찰이 없다고는 보장하기 어려우니 잘못을 답습하여 세금 외에 거둬들이는 폐단을 없게 하라.

이와 같이 따로 훈계한 뒤에도 만약 정한 법식을 두지 않고 함부로 거둬들이는 것이 다른 방법의 염탐으로 드러나 발견되면 해당 감관과 색리와 임장 등은 결단코 마땅히 유배형의 법률로 처벌한다. 도차지(都次知)인 수리향(首吏鄉)<sup>225</sup>은 무거운 처벌을 면하기 어렵고 신칙하지 않은 책임 또한 귀속되는 바가 있으니 모두 오직 두려운 생각으로 거행하며, 감결이 도착하는 날짜를 먼저 급히 보고함이 마땅할 일.

初三日. 益山郡守、龍潭縣令入見, 仍爲辭去.

3일. 익산군수와 용담 현령이 입견하고 그대로 하직하고 갔다.

同日. 以堤堰修築事, 發甘刊邑.

【甘結】堤堰修築事, 春初因籌司啓下關, 前使時有所提飭, 列邑皆以濬築樣, 修報成冊爲有置. 毋論某邑, 雖不無一二庫畧畧修舉者, 而并與初不疏濬處, 混同開錄, 事之

223) 임장(任掌) : 서울의 각 방(坊)이나 지방의 동리에서 호적 및 기타의 공공사무를 맡아보던 사역(使役)을 통틀어 이르던 말이다. 서울의 각 방에는 별문서·별유사, 지방의 동리에는 면임(面任)·이임(里任)·감고(監考) 따위가 있었다.

224) 유학(幼學) : 지방의 관찰사가 이조(吏曹)에 추천한 선비를 말한다. 즉 각 도(道)의 유학(儒學) 중 재능과 행실이 뛰어나고 나이 40이 넘는 사람을 식년(式年) 정월에 그 고을 사람들이 수령에게 보증 추천하면 그 수령이 관찰사에게 보고하였다.

225) 도차지(都次知)인 수리향(首吏鄉) : 도차지는 일을 맡아 보는 사람 가운데 우두머리이고, 수리향은 수리(首吏)나 수향(首鄉)을 말한다. 수향은 지방의 자치 기구인 향청(鄉廳), 곧 수령을 보좌하던 자문 기관인 유향소(留鄉所)의 우두머리인 좌수(座首)의 별칭이다.

不誠實，莫此爲甚是如乎。盖勸農之政，莫先於興水利，故以今年穡事，言之，堤下之畚舉，皆早移是旆。又況啓下籌關事體何如？而今聞各處陂塘，俱成堙淤，鞠爲茂草，莫可貯水云。今春之以濬築，開錄成冊，果何所指是加喻？官不察飭歟？民不盡力歟？此不過一日二日看檢之勞、百夫十夫合力之役，則此而惰忽，其將曰有營有邑有官有民乎？固當一一摘發隨現重勸是矣。姑以令申之意，茲又更飭爲去乎。官門聚點期日漸近，今番聚點段，移設於役處，必使鏵入底，芟葑除根，其廣其深，克復舊觀爲乎矣。先期躬審境內堤堰合幾庫，計其軍丁，量其役處，分哨分隊，排日排功，以其濬出之泥土、斬刈之水草，補苴堅築於汰落罅漏處，植以雜木，俾爲耐久之地，無或如前有名無實。事過後，舉實數，開錄於成冊，中曰：“某邑堤堰合幾庫內幾庫，今已修築，幾庫待春點時，修築”是如，消詳報來，以爲別遣摘奸時憑據之地是矣。如有數爻相左，虛實渾淆之弊，則吏鄉刑配除良，一遵歲初籌司啓下關辭意，狀聞論勘，斷不濶狹，除尋常，惕念舉行爲旆。甘到日時，舉行形止，先卽牒報宜當者。

같은 날. 방죽을 손질하고 쌓는 일로 각 읍에 감결을 발송하였다.

【감결】 방죽을 수리하는 일은 초봄에 비변사의 계하 관문에 의거하여 전에 때때로 이끌어 계도한 바가 있게 하여 각 읍은 모두 방죽을 준설하고 쌓는 현황을 성책(成冊)하여 갖추어 보고하라고 하였다. 어떤 읍을 논할 것 없이 비록 한두 곳 매우 소략하게 고친 일이 없지 않으나 애당초 준설하지 않은 곳과 더불어 혼동하여 개록(開錄)하니 일의 불성실함이 어느 것도 이같이 심함이 없다고 한다.

농사를 권면하는 일은 수리(水利)를 일으키는 것보다 우선함이 없기 때문에 올해 농사로 말하면, 제방아래의 발일은 모두 일찍 이앙(移秧)해야 한다. 하물며 비변사에 계하한 관문의 사체(事體)는 어떠해야 하겠는가? 그리고 지금 듣건대, 각 곳의 방죽은 모두 진흙으로 막혀있고, 궁벽하게 무성한 풀로 덮여있어 물을 저장할 수가 없다고 말하였다. 올 봄의 준설하고 보를 쌓는 것을 개록하고 성책(成冊)하는 것이 과연 무엇을 지시한 것인가? 관청이 헤아려 신척하지 못해서인가? 백성이 힘을 다하지 않아서인가? 이 일이 하루 이틀 살피고 점검하는 노고와 백사람 열사람이 힘을 합치는 부역에 지나지 않는다고 여겨 이렇게 게으르고 소홀히 하였으니 어찌 장차 감영이 있고 읍이 있고 관청이 있고 백성이 있다고 하겠는가? 진실로 마땅히 낱낱이 들추어내어 현상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해야한다. 우선, 법령



을 신칙(申飭)하는 뜻으로 이에 다시 신칙한다.

관문의 취점(聚點)기일이 점점 가까워지니 이번 취점은 방죽 부역하는 곳으로 옮겨 설치하여 반드시 삼을 밑으로 들여 넣어 꼰과 순무풀은 뿌리를 제거하고 원래 넓고 깊었던 것을 옛날 보았던 대로 잘 복원한다. 다만 기일에 앞서 몸소 경내 방죽의 합이 몇 곳인지를 알아 그 군정을 가능하고 그 부역처를 헤아려 초(哨)<sup>226</sup>를 나누고 대오(隊伍)를 나누어 날 수와 일량을 배분하여 그 준설에서 나온 진흙과 베어낸 수초로 채우고 깔아 미끌어 떨어지고 새는 틈을 견고하게 쌓고, 잡목을 심어 오래 견디게 만들어 혹여 이전같이 유명무실함이 없게 한다. 일이 끝난 뒤에 일일이 실제로 세어 성책에 개록(開錄)하고, “모 읍의 방죽의 합 몇 곳 가운데 몇 곳은 이번에 이미 고쳐 쌓았고 몇 곳은 춘점(春點)때를 기다려 고쳐 쌓는다.” 라고 소상하게 보고하여 별도로 적간(摘奸 부정 적발) 단자를 보낼 때에 참고할 것.

만일 숫자가 서로 틀려 허실이 뒤섞이는 폐단이 있으면 이향(吏鄉)은 형배(刑配)<sup>227</sup>할 뿐만 아니라 한결같이 연초에 비변사의 계하 관문의 말뜻을 좇아 장계(狀啓)로 주상께 아뢰어 처벌할 것이니, 결단코 소홀하게 하지 말고 대수롭게 여기지 말며 두려운 마음으로 거행하라. 감결이 도착한 일시와 거행한 사실의 전말을 우선 바로 첩보함이 마땅할 일.

初四日. 金堤郡守李玄好入見.

4일. 김제 군수 이현호가 입견하였다.

同日. 題長城府檢案.<正犯張海元膝築高達用胸膛與腎岸, 第三月致死事. 初檢官長城府使徐有民, 覆檢官高敞縣監李鐘應.>

【題】屍帳捧上是在果. 殺獄疑眩, 多在於實因之不的、詞證之參商是矣. 此案段, 兩人鬪鬩於昏夜無人之中, 一死一生, 而死者之醉氣顛迷, 生者之醒力麤健, 譬如兩鼠鬪於穴中, 弱死勇勝是如乎. 死者之死, 非生者之殺, 而更誰推諉乎? 況於腎囊胸膛, 果何等部位? 手掣膝築傷痕狼藉, 有一於此, 皆可致死, 則實因之在腎在胸, 又毋論也. 至若看證, 亦無衆招紛紜曰東曰西之疑, 而惟一金啓文, 始焉救解, 終又負歸. 看之既

226) 초(哨) : 옛날 군대 편제의 단위로, 5백 인이 1영(營)·3백 인이 1기(旗)·1백 인이 1초(哨)이다.

227) 형배(刑配) : 죄인을 때린 후에 귀양을 보내던 일이다.

的, 證之又明乙仍于, 雖以兇身急於掉脫之供, 亦不敢全然掩諱, 曰: “不知之中, 或者膝當而手執”云云, 此何異於輸款是乙喻? 獄情到此, 更無可疑是置. 兩檢官, 仍定同推官爲去乎, 約日會坐, 同正犯張海元身乙, 考察嚴刑, 其矣行兇情節, 捧直招牒報爲迹. 在囚各人等段并以放送, 屍體卽爲出給埋瘞爲迹. 檢驗文報審慎, 何如而初檢脉錄, 有曰: “左肩胛傷處一瘡, 皮脫浮高, 色深紫黑, 按之微硬, 圍圓長一尺一寸, 青色四面微互”, 覆檢脉錄, 則曰: “左肩胛, 有黑黯色一處, 連互左腋肌, 皮脫浮高, 圍圓長六寸. 左腋肌, 有黑黯色一處, 連互左肩胛, 皮脫浮高, 圍圓長六寸”, 此必是一處傷痕之連互肩腋者是去乙, 覆檢案之判, 作二處, 析其分寸, 有若肩胛腋肌, 各有傷痕者. 然揆以檢體, 殊涉疎忽. 覆檢刑吏, 爲先別附過爲去乎, 初檢官良中, 枚移施行尙事.

같은 날. 장성부 검안을 데김하였다.<정범 장해원(張海元)이 고달용(高達用)의 가슴팍과 신안(腎岸)<sup>228)</sup>을 무릎으로 짓이겨 3개월 만에 죽은 일. 초검시관 장성 부사 서유민, 복검시관 고창 현감 이종응.>

【데김】시장을 받아 보았다. 살인 사건의 의심스럽고, 실인이 정확하지 않고 증언이 서로 다른 점이 많다. 이번 검안서에는 두 사람이 어두운 밤에 사람이 없는 가운데 싸워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살았는데, 죽은 자는 취기로 넘어져 기절하였고 산자는 겨우 깨어나 대체로 강건하였다고 했다. 비유하자면 두 마리의 쥐가 구멍 속에서 싸워 약자는 죽고 용자가 이긴 것이다. 죽은 자의 죽음은 살아있는 자가 죽인 것이 아니라면 다시 누구에게 책임을 돌리겠는가? 하물며 신낭(腎囊 고환)과 가슴팍이 과연 얼마나 중요한 부위인가? 손으로 끌어다 무릎으로 짓이긴 상흔이 낭자하니 여기에 하나만 있어도 모두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것이니, 실인이 신낭에 있고 가슴팍에 있으니 또 논할 것도 없다.

본 것을 말한 사람의 경우, 역시 여러 사람의 진술이 분분하게 동(東)이요 서(西)요 하며 의혹할 만한 것이 없는 지경인데, 유일하게 김계문(金啓文)이 처음에 돌 사이를 도와 화해시키려고 하였고, 끝내 또 고달용이를 업고 돌아왔다. 증인이 이미 정확하고 증언 또한 분명함에 따라 비록 흉악범을 벗어나려는 진술에 급급했을지라도 또한 감히 완전히 가리고 숨기지 못하였고, “모르는 가운데 혹 무릎이

228) 신안(腎岸) : 남녀의 생식기(生殖器) 언저리에 있는 불룩한 부분(部分)을 말한다.

달았고 손으로 잡았다.” 라고 말한다면, 이것이 자복한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옥사의 정형이 이에 이르렀으니 다시 의심스러울 것이 없다. 두 검시관을 그대로 동추관으로 정하니 날을 정해 함께 자리를 열어 이 정범 장해원(張海元)의 몸을 잘 헤아려 살펴 엄하게 형벌을 가하고 그가 살인을 행한 정황을 바로 진술을 받아 첩보하라. 갇혀있는 각 사람들도 모두 석방하라. 시체는 즉시 내주어 묻게 하라.

검험문의 보고는 자세하고 신중해야 하는데도 어찌하여 초검시관 기록에는 “좌측 어깨뼈자리 상처 한 곳이 살갓이 벗겨지고 높게 부어오르고, 색깔이 짙은 자흑색이고, 눌러보니 조금 굳었고, 둥근 둘레의 길이가 1척 1촌이고 청색이 4면으로 조금 뻗쳐있다” 하였고, 복검시관의 기록에는 “좌측 어깨뼈자리에 흑암색 한 곳이 있는데 좌측 겨드랑이와 팔까지 연결되어 있고, 살갓이 벗겨져 높게 부었으며 둥근 둘레의 길이가 6촌이고, 좌측 겨드랑이와 팔에 흑암색 한 곳이 좌측 어깨뼈자리로 연결되어 있으며, 살갓이 벗겨져 높게 부어올라 둘레의 길이가 6촌이다” 하였으니 이것은 반드시 한 곳의 상흔이 어깨와 겨드랑이에 연결되어 뻗은 것이거늘, 복검시관의 판단은 2곳으로 되었으니, 그 작은 데까지 쪼개어 마치 어깨자리와 겨드랑이 죽지에 각각 상흔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시체를 검안한 것을 헤아리면 매우 소홀하게 되었다. 복검을 행한 형리는 우선 별도로 부과(附過)를 하되 초검시관에게 공문을 보내어 시행할 일.

初五日. 茂朱府使李光承, 鎭安縣監朴曾壽, 龍安縣監林貞鎭入見, 仍爲辭去. 中營將, 興德縣監金命嫻, 靈巖郡守李應謙入見.

5일. 무주 부사 이광승 · 진안 현감 박승수 · 용안 현감 임정진이 입견하고 그대로 하직하고 갔다. 중영장 · 흥덕 현감 김명혁 · 영암 군수 이응경이 입견하였다.

初六日. 靈巖郡守、興德縣監入見, 仍爲辭去. 潭陽府使曹錫玄, 自京下來之路入見.

6일. 영암 군수 · 흥덕 현감이 입견하고 그대로 하직하고 갔다. 담양 부사 조석현이 서울로부터 내려오는 길에 입견하였다.

初七日. 潭陽府使入見, 仍爲辭去. 礪山府使許嘯入見.

7일. 담양 부사가 입견하고 그대로 하직하고 갔다. 여산 부사 허속이 입견하였다.

初八日. 礪山府使入見, 仍爲辭去. 格浦別將金萬鎰, 延命後入見. 中營將入見.

8일. 여산 부사가 입견하고 그대로 하직하고 갔다. 격포 별장 김만일이 연명한 후에 입견하였다. 중영장이 입견하였다.

初九日. 格浦別將入見, 仍爲辭去. 南平縣監林迥鎭入見.

9일. 격포 별장이 입견하고 그대로 하직하고 갔다. 남평 현감 임형진이 입견하였다.

初十日. 南平縣監入見, 仍爲辭去. 中營將入見.

10일. 남평 현감이 입견하고 그대로 하직하고 갔다. 중영장이 입견하였다.

十一日. 監封朔膳進上. 食後出往君子亭, 設朔試射施賞, 午後轉往龍頭峙越坪, 觀野色, 歸路登南門樓暫憩, 仍還營軒. 長興府使申在翼赴任之路, 延命後入見. 玉果縣監韓致定入見.

11일. 삭선(朔膳)할 진상품을 감봉(監封)하였다. 식사 뒤에 군자정(君子亭)<sup>229</sup>으로 나가 삭시사(朔試射)를 베풀어 상(賞)을 시상하고, 오후에는 용머리고개 건너 들<sup>230</sup>로 돌아나가 곡식이 익어가는 광경을 둘러보았다. 돌아오는 길에 풍남문(豐南門) 누각(樓閣)에 올라가 잠깐 쉬고 곧 영헌(營軒)으로 돌아왔다. 장흥 부사 신재익이 부임하는 길에 연명(延命)한 뒤에 입견하였다. 옥과 현감 한치정이 입견하였다.

229) 군자정(君子亭) : 지금의 완산동 아래에 있던 건물이다. 조선 현종 3년(1662)에 건립했으며, 당시는 군자정이란 사정(射亭)으로 건립되었으나 1912년 전주 기녕당(耆寧堂)이라 명명하여 양로당으로 이용하고 있다.(문화재관리국, 1977, 『문화유적총람』 전라북도편)

230) 용머리 고개 건너 들 : 원문은 '龍頭峙越坪'인데, 용두언덕 월평이란 곳은 없고 대신에 현 완산동 터미널 부근에 용머리 고개라는 지명이 있어 이렇게 번역하였다.

十二日. 長興府使、玉果縣監入見, 仍爲辭去.

12일. 장흥 부사와 옥과 현감이 입견하고 그대로 하직하고 갔다.

十三日. 靈光郡守金胤根, 康津縣監任百經, 臨陂縣令李宜翼, 珍山郡守李奎憲, 求禮縣監申鍾命, 咸悅縣監洪在果, 葵樹察訪田栽五, 以慶基殿秋夕祭差備官入見.

13일. 영광 군수 김윤근 · 강진 현감 임백경 · 임피 현령 이의익 · 진산 군수 이규현 · 구례 현감 신종명 · 함열 현감 홍재과 · 오수 찰방 전재오가 경기전 추석제 차비관으로 입견하였다.

同日. 題順天府檢案.<正犯河何水, 以白杵打其妻李召史, 墮胎等三日致死事. 初檢官順天兼任樂安郡守韓啓轍, 覆檢官光陽縣監沈競祖.>

【題】屍帳擡上是在果. 兩檢之傷痕分明, 衆招之看證丁寧, 李女致死之由於墮胎, 墮胎之由於被打, 更無疑眩是置. 古有礪刃擬妻, 責其不順之罪, 而變化悍性, 終身孝養者, 論者詡以麤鹵中一快事. 惜乎. 河何水之乘憤, 杵頭不少留難於五朔抱胎之身, 遂成殺越之變於隔宿之間也. 結髮多年, 子女繞膝分叱除良, 在腹之胎亦渠之子, 謂之以殺心行殺事, 則寔出常情之外是矣, 鶉奔之醜, 餘憤未泯, 鸞膠之續, 只出勉強, 而率畜他女, 離母各居, 反目弄嘴, 不見是圖. 況於死日棺殮, 露盡掩跡之計, 檢庭胡招, 都是粧撰之說, 雖不可謂故犯, 安得免誤殺之律是乙喻? 兩檢官, 仍定同推官爲去乎, 約日會坐, 同河何水身乙嚴訊, 捧直招以報, 屍體段, 卽爲出給埋瘞爲於. 發告遲速, 惟在苦主, 除非無主屍身, 里任何必替行? 況探探根因之際, 數日遲滯, 不足爲罪, 洞任鄭八白, 分揀放送, 在囚諸人等段置, 一體放送爲於. 初檢脉錄, 右脇被打痕, 橫斜長三寸八分, 上濶七分, 下濶六分縣錄, 而覆檢脉錄, 則云斜長三寸九分, 上濶九分, 中濶八分, 下濶七分, 雖因變動有此差爽, 而變動與傷痕形色, 自別是去乙, 緣何致此違錯是隱喻? 揆以獄體, 殊涉疎忽, 初·覆檢·刑吏, 并以附過爲去乎, 初檢官良中枚移施行向事.

같은 날. 순천부 검안을 데김하였다.<정범 하하수(河何水)는 절구공이로 자기의 처 이조이 [李召史]를 때려 낙태시키고 사흘 만에 죽게 한 일. 초검시관 순천검임 낙안 군수 한계철, 복검시관 광양 현감 심경조.>

【데김】 시장(屍帳)을 받아보았다. 두 차례 검시에서 상흔이 분명하고 여러 사람의 초사(招辭 구술서(口述書))에서 증거를 본 것이 틀림없으니, 이씨 여인이 죽음에 이른 것은 낙태에서 연유하였고 낙태는 구타당한데서 연유하여 다시 의혹될 것이 없다. 옛날에 칼 가는 것을 아내에 빗대어 그 불순(不順)한 죄를 책망하여 사나운 성정을 변화시켜 종신토록 효성으로 봉양한 자가 있었는데, 논자들이 추하고도 어리석은 중에 하나의 잘한 일이라고 칭찬하였다.

해석하다. 하하수(河何水)는 분노하여 임신 5개월 된 몸에 절구공이를 사정없이 쳐서 끝내 3일 사이에 살인의 변고를 냈다. 결혼한 지 여러 해로 자녀가 무릎을 맴돌 뿐만 아니라 배 속의 태아도 또한 그의 자식인데, 죽일 마음으로 죽인 일이라고 한다면 참으로 인지상정에서 벗어난다. 다만, 순분(鶉奔)만도 못한 추함<sup>231)</sup>은 분노를 삭이지 못하였고, 난교(鸞膠)같은 결속<sup>232)</sup>은 억지로 나왔을 뿐이다. 다른 여자를 데리고 살며 어미와 떨어져 각자 거주하며 반목하고 함부로 말하였으니 보이지 않을 때 미리 대책을 세워야 했다.<sup>233)</sup> 하물며 죽은 날 시체를 입관하여 자취를 감추려는 계획이 모두 들통났고 검시장에서 서둘러 진술한 것이 모두 꾸며내고 지어낸 말이다. 비록 고의적인 범죄라고 말할 수 없더라도 어찌 잘못하여 죽인 형률을 면할 수 있겠는가?

두 검시관을 그대로 동추관으로 정하니 날을 약속해 함께 자리를 열고 이 하하수의 몸을 엄히 심문하여 사실대로 진술을 받아 보고하고 시체는 즉시 내주어 묻게 하라. 밧고개 신속하고 늦는 것은 오직 고주(蒿主)에게 달려있다. 주인 없는 시신이라면 몰라도 이임(里任)이 대신 행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물며 근본적인 원인을 더듬어 찾는 동안 여러 날 지체한 것은 죄가 될 수 없으니, 동임(洞任) 정팔백(鄭八百)을 잘 분간하여 풀어주고 갈혀있는 여러 사람들도 일체 석방하라.

초검 기록에는 오른쪽 옆구리에 구타당한 흔적이 가로 사선으로 길이 3촌 8푼이고 윗넓이는 7푼, 밑넓이는 6푼으로 기록되어 있다. 복검 기록에는 사선으로 길이

231) 순분(鶉奔)만도 못한 추함 : 『시경』 「순지분분(鶉之奔奔)」에 나오는 말로, 위(衛) 나라 사람들이 선강(宣姜)의 음란함을 풍자하면서 메추리나 까치만도 못하다는 뜻이다.

232) 난교(鸞膠) 같은 결속 : 한 무제(漢武帝)의 활줄이 끊어지자 서해에서 바친 난새로 만든 아교로 줄을 이었다는 고사에서 유래한 것으로, 혼인이 난새의 힘줄에서 뽑아낸 아교로 붙인 것처럼 단단한 결속임을 비유한 말이다.

233) 보이지……했다 : 『서경』 「오자지가(五子之歌)」에 “한 사람이 세 가지 잘못을 하였으니 원망이 어찌 밝은 데에 있겠는가? 드러나지 않았을 때에 도모해야 한다.[一人三失, 怨豈在明? 不見是圖.]” 하였다.

3촌 9푼이고 윗넓이는 9푼, 중간 넓이는 8푼, 밑넓이는 7푼이다. 비록 시체가 변화하여 이러한 차이가 있을지라도 시체의 변화와 상흔의 형색은 절로 구별되거늘 무슨 연유로 이렇게 어긋나고 차이가 있는가? 옥사(獄事)의 체모로 헤아리면 매우 소홀함에 관련된다. 초검 및 복검을 행한 형리들을 모두 부과(附過)하니, 초검시 관에게 공문을 보내 시행할 일.

同日. 題沃溝縣查案.<本縣居張召史, 喪子後, 不勝悲慟, 自縊致死事. 查官沃溝縣監金秀萬.>

【題】查案捧上是在果. 只緣喪明之慟, 終致喪命之變, 死固浪矣, 情則憾矣. 屍親初無一言, 埋葬亦既歷月, 則面任之忽地替報, 無事生事者, 暗例除良, 妄率極矣. 決杖二十度懲礪放送爲跡. 在囚是在洪成云段, 既無更查之隱情, 胡爲多日之滯囚是隱喻, 一體放送宜當向事.

같은 날. 옥구현 사안(查案)을 데김하였다.<옥구현에 거주하는 장조이[張召史]가 자식을 잃은 후에 비통함을 이기지 못하여 스스로 목을 매어 죽은 일. 사관은 옥구 현감 김수만.>

【데김】사안을 받아 보았다. 단지 아들을 잃은 비통함 때문에 끝내 목숨을 잃는 번고에 이르렀으니 죽음이 진실로 허망하고 실정이 참혹하다. 시친은 애초에 말 한 마디 없었고 매장(埋葬)한지도 이미 한 달이 지났는데, 면임이 갑자기 대신 보고하여 일없는 일로 일을 만든 것은 관례(慣例)에 어두울 뿐만 아니라 매우 경솔하다. 장 20대를 치고 징계하여 석방하라. 갇혀있는 홍성운(洪成云)은 다시 조사할 만한 숨긴 사실이 이미 없으니 어찌 여러 날을 오래 가둘 수 있겠는가? 모두 석방함이 마땅할 일.

十四日. 祭官預差咸悅縣監·葵樹察訪入見, 仍爲辭去. 珍山郡守·臨陂縣令·中營將入見. 參禮察訪徐承烈·威鳳別將李昌櫛入見, 申後詣慶基殿入齋.

14일. 제관으로 미리 차비한 함열 현감과 오수 찰방이 입견하고 그대로 하직하고 갔다. 진산 군수·임피 현령·중영장이 입견하였다. 삼례 찰방 서승열·위봉 별장 이창억이 입견하였다. 신시(申時) 뒤에 경기전에 이르러 재계(齋戒)에 들어갔다.

十五日. 設行慶基殿秋夕祭, 仍詣客舍, 行望闕禮. 康津縣監、臨陂縣令、珍山郡守、求禮縣監、參禮察訪、威鳳別將, 同爲進參. 還營軒, 封行祭啓.

【狀啓】今八月十五日，行慶基殿秋夕祭，精備尊物，差定祭官，依禮文設行後，獻官，諸執事職姓名，開錄于後爲白乎旆，緣由謹具啓聞.<獻官，行 觀察使徐有槩、典祀官兼大祝，康津縣監任百經、祝史，臨陂縣令李宜翼、齋郎，令閔致訥、贊者，珍山郡守李奎憲、謁者，求禮縣監申鍾命.>

15일. 경기전의 추석제를 시행하고 바로 객사로 가서 망궐례를 행하였다. 강진 현감 · 임피 현령 · 진산 군수 · 구례 현감 · 삼례 찰방 · 위봉 별장이 함께 진참(進參)하고 영현으로 돌아와 추석제를 행한 장계를 써서 봉하였다.

【장계】이번 8월 15일 경기전 추석제를 행하였습니다. 재물을 세밀하게 갖추고 제관을 차정(差定)하여 예문에 의거해 제사를 설행한 후에 헌관과 여러 집사들의 직명과 성명을 뒤에 개록(開錄)하였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삼가 갖추어 아립니다.<헌관은 행관찰사 서유구, 전사관 겸 대축은 강진 현감 임백경, 축사는 임피 현령 이선익, 재랑(齋郎)은 영(令) 민치눌, 찬자는 진산 군수 이규현, 알자는 구례 현감 신증명.>

同日. 珍山郡守、臨陂縣令、康津縣監、求禮縣監，入見辭去. 參禮察訪徐承烈、中營將入見.

같은 날. 진산 군수 · 임피 현령 · 강진 현감 · 구례 현감이 입견하고 그대로 하직하고 갔다. 삼례 찰방 서승렬 · 중영장이 입견하였다.

同日. 題興陽縣查案.<金振宇等，被脅於長興金夫安等，見奪二百兩錢事. 初查官興陽縣監尹守鳳.>

【題】查案捧上是在果. 無賴攘奪，前後何限，而豈有如金夫安等之違法叵測是乙喻? 假使其矣漁採，有所闕失是良置，執捉贓物之前，何以的知其金振宇等之所爲，而私自結縛，百般抑勒，畢竟討出半百金之財乎? 雖京外治盜衙門校卒是良置，除非賊贓分明，平民誤捉，法禁至嚴是去等，況旆么麼村民等，假托失物，橫侵平民，私施惡刑，恣意作惡，無嚴蔑法，誠一世變. 昏夜逐船，白奪重貨，何異海浪之賊? 聚徒作黨，入島威脅，見入輒打，白徵一百五十金之財，又何異於強盜? 此不依律嚴繩，弱肉強食，無所不至，其可曰有營有邑乎? 作犯諸漢，所當出付鎮營，以治盜律施行. 或慮鎮屬之賁緣作弊，長興金夫安等三名，康津千世行等三名，並移囚於靈巖郡，使之嚴覈查報之意，今方關飭. 亦自本邑，文移往復，如有頭面查實事，隨所報島民等，一一起送，以爲對質詳查之地，宜當向事.



같은 날. 흥양현 사안에 데김하였다.<김진우(金振宇) 등이 장흥 김부안(金夫安) 등에게 협박 당해 200냥전을 강탈당한 일. 초사관은 흥양 현감 윤수봉.>

【데김】 사안을 받아 보았다. 무뢰배들의 약탈이 전후로 매우 많지만 김부안 등과 같은 불법을 어찌 생각이나 했겠는가? 설사 그가 생선 잡은 것을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장물을 잡아들이기 이전에 어찌 김진우 등의 소행임을 확신하여 사사로이 결박하고 온갖 방법으로 억압하여 끝내 50금의 재물을 받아냈는가? 비록 서울과 외방의 도적 잡는 아문(衙門)의 교졸(校卒)들이라도 장물임이 분명한 경우가 아니라면 평민을 잘못해서 잡아들이는 것은 법으로 엄히 금지하거늘, 하물며 어떤 촌민들이 분실물이라고 핑계대고 평민을 횡침하여 사사로이 악형을 가하고 마음대로 나쁜 짓을 저지르고 무엄하게 법을 멸시하니 참으로 한 시대의 변고이다.

어두운 밤에 선박을 몰아내고 백주 대낮에 귀중한 재화를 약탈하니 바다를 떠도는 도적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무리를 모아 작당을 해서 섬에 들어가 위협하여 눈에 보이는 대로 두들겨 패고 150금의 재물을 억지로 징수하니 강도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이를 형률에 따라 엄히 바로잡지 않으면 악육강식이 되어 못하는 짓이 없을 것이니, 어찌 감영이 있고 읍(邑)이 있다고 할 것인가.

죄를 범한 여러 농들은 진영(鎭營)으로 내보내 치도율(治盜律)로 시행함이 마땅하다. 혹 진(鎭)에 소속된 연유로 폐단을 일으킬까 염려되어 장흥 김부안 등 3명과 강진 천세행(千世行) 등 3명을 모두 영암군으로 옮겨 수감하고 엄격하게 조사하여 보고하라는 뜻을 지금 막 관문으로 신척하였다. 본읍(영암군)에서 공문서를 왕복하여 얼굴을 조사할 일이 있으면 보고한 바에 따라 섬 주민들을 하나하나 올려 보내 대질하고 상세히 조사하는 것이 마땅할 일.

十六日. 封發巡啓.

【狀啓】 臣以農形看審事，今八月十六日，從左峽發巡，緣由馳啓爲白臥乎事.

16일. 순행 출발에 대한 장계를 써서 봉하였다.

【장계】 신은 농사 상황을 자세히 살피는 일로 오늘 8월 16일 좌도의 산협(山峽)를 따라 순행을 출발한 연유로 치계(馳啓)하옵는 일.

同日. 早朝離發. 裨將趙景愈、徐祺輔、梁晉植, 伴尙 高世昌隨行. 到全州龜進村五十里中火<本府支供.> 參禮察訪 徐承烈, 以夫馬差使員入見. 題民狀十六張.

같은 날. 이른 아침에 출발하였다. 비장(裨將) 조경유(趙景愈)·서기보(徐祺輔)·양진식(梁晉植)과 반당(伴尙)<sup>234)</sup> 고세창(高世昌)이 수행했다. 전주 귀진촌(龜進村) 50리<sup>235)</sup>에 이르러 점심을 먹었다.<본부[전주부]에서 접대함.> 삼례 찰방 서승렬(徐承烈)이 부마차사원(夫馬差使員)<sup>236)</sup>으로 입견하였다. 민장(民狀)<sup>237)</sup> 16장에 데김하였다.

同日. 題任實縣檢案.<被告高古長, 威逼金德化, 以致縊死事. 初檢官 任實縣監 洪哲謨.>

【題】屍帳捧上是在果. 伴行之同生弟, 猶且空還, 薦送之異姓叔, 有何干涉? 自反而縮, 何恤人言? 胡恟惶於橫逆, 遂溝瀆之自經? 語其死, 則浪莫甚焉, 論其跡, 則錯難究矣. 脉錄無傷損之痕, 證招無威脅之跡, 其爲自縊, 更無可疑, 不請覆檢, 誠爲得宜, 屍體卽爲出給埋瘞爲旆. 事端旣由白哥, 根脚胡不盤問是噓? 屍親招辭, 謂之名不知, 則其非變畜可以推知是如乎? 屠漢所謂聽其言而信之無疑云者, 亦安知非臨時粧出之說是旆? 屍親褻召史, 始旣隨夫同去, 旋又伴夫同歸, 說憤說耻, 互相寬譬, 自是人情之所同然是去乙, 緣何委折, 於屠漢之家, 使其夫獨自踽涼歸坐空房, 癡憤轉激, 一層駭舉, 無人挽止是乙噓? 渠夫之蒿地捐生, 未必不由於渠矣. 於他家之致此一歎, 亦宜盤詰, 而今此檢報, 不少槩及. 揆以獄體, 殊涉疎忽, 舉行刑吏爲先附過爲旆. 非汝牛角, 何壞我墻? 被告高古長段, 嚴刑一次, 取招牒報, 褻召史段置, 一次刑訊, 推問其情節爲旆. 忽地雉頸之舉, 旣在常情之外, 其妻不知, 其隣何論? 在囚諸人, 一併放送爲旆. 禁屠一事, 飭墨未乾是去乙, 因事現發, 如是狼藉, 禁屠監色等, 着枷嚴囚,

234) 반당(伴尙) : 여기서는 왕자·공신·당상관의 신변을 보호를 위해 나라에서 내려준 병졸의 뜻이나, 관아에서 부리는 사환이나 중국 가는 사신이 자비(自費)로 데리고 가던 종자를 이르기기도 한다.

235) 50리 : 아침에 출발하여 전주 귀진촌에 도착할 때까지의 총 행정(行程)을 의미한다. 이하 순행길 도중의 행정 표기는 이와 동일하다.

236) 부마차사원(夫馬差使員) : 인부와 말의 준비를 맡은 차사원이다. 차사원은 중요한 사무를 위하여 임시로 중앙에서 파견하던 관원을 말한다.

237) 민장(民狀) : 민인들이 관에 정소(呈訴)할 때 제출하는 문서로 오늘날의 청원서·소장(訴狀)·진정서(陳情書)에 해당한다. 정소자 및 정소 기관에 따라 소지(所志)·단자(單子)·상서(上書)·발괄(白活)·원정(原情)·등장(等狀)·의송(議送) 등 다양한 종류와 문서 양식들을 사용하였다. 정소와 소지가 민인(民人)들의 입장에서 일컫는 표현이라면 국가에서는 민인들의 정소라는 뜻에서 민소(民訴)라고 일컬었고, 백성들이 제출한 소지를 관청에서 장부에 기록한 것을 민장치부책(民狀置簿冊)이라 한다.(김경숙, 『정소, 조선사회를 비추는 거울』, 『고문서에게 묻은 조선 시대 사람들의 삶』, 두산동아, 2009, 184~186쪽)

以待巡到時，決處向事。

같은 날. 임실현 검안에 데김하였다.<피고 고고장(高古長)이 김덕화(金德化)를 협박하여 목을 매 죽음에 이르게 된 일. 초검시관 임실 현감 질청.>

【데김】 시장(屍帳)을 받아 보았다. 함께 간 친아우가 오히려 빈손으로 돌아왔는데 거듭 보낸 이성(異姓) 숙부가 무슨 간섭인가? 스스로 돌아보아 곧으면<sup>238)</sup> 어찌 다른 사람 말을 걱정하겠는가. 어찌 도리에 어긋난 말에 허둥대다 끝내 도랑에서 스스로 목을 매었는가? 그 죽음을 말하자면 어리석음이 막심하고 그 행적을 논하면 어긋남을 따지기가 어렵다. 검시 기록에 상흔이 없고 증인 진술에 위협한 흔적이 없으니 그가 스스로 목을 맨 것은 다시 의심할 바가 없다. 복검(覆檢)을 요청하지 않은 것은 진실로 마땅하니 시체를 즉시 내주어 묻게 하라.

사단이 이미 백가(白哥)에서 연유하였는데, 근각(根脚)<sup>239)</sup>을 어찌 세밀하게 캐묻지 않았는가? 시친의 조사에서 그의 이름을 모른다고 하였으니 그가 첩으로 삼지 않았음을 미루어 알 수 있다. 백정 농이 이른바 ‘그 말을 듣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라고 한 것은, 임시로 꾸며낸 말이 아님을 어찌 알겠는가. 시친(屍親) 배조이[裴召史]가 애초에 남편을 따라 갔다가 곧바로 남편과 동행하여 돌아왔으니, 분노를 달래주고 수치를 달래주며 서로 너그럽게 위로함은 사람의 정리상 모두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무슨 곡절로 백정 농의 집에 머물러서 그 남편으로 하여금 홀로 쓸쓸히 돌아와 빈방에 앉아 분노가 점점 치밀어 올라 한층 해괴한 행동을 하는데 만류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는가? 저 남편이 갑자기 생을 버린 것이 반드시 그[배조이]에게서 연유하지 않았다고는 할 수 없다. 다른 사람 집에 머문 이유에 관한 이 하나의 항목도 자세히 심문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지금 이 검안 보고는 약간의 개략적인 언급마저도 없다. 옥사(獄事)의 체모로 헤아리면 매우 소홀함에 관계되니 거행한 형리를 우선 부과(附過)하라.

네 소의 뿔이 아니면 누가 우리 담장을 부수었겠는가? 피고 고고장은 한차례 엄

238) 자반이축(自反而縮) : 『맹자』 「공손추 상(公孫丑上)」에, “옛날 증자가 자양에게 말하기를 ‘그대는 용기를 좋아하는가? 나는 일찍이 선생님께서부터 큰 용기에 대하여 들은 적이 있다. 스스로 반성하여 곧지 않으면 비록 혈령한 갈옷 입은 사람도 내가 어찌 두려워하지 않겠는가? 내가 스스로 반성하여 곧으면 비록 천만의 사람이라도 나는 갈 것이다.’[昔者，曾子謂子襄曰：“子好勇乎？吾嘗聞大勇於夫子矣。自反而不縮，雖褐寬博，吾不慄焉。自反而縮，雖千萬人，吾往矣。”]” 하였다.

239) 근각(根脚) : 조선 시대에 죄를 범한 사람의 죄상·이름·생년월일·인상 및 그의 조상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서류를 말한다.

히 형신하여 진술을 받아 첩보하라. 배조이도 1차 형신하고 그 실상을 심문하라. 갑자기 목을 맨 행위는 이미 일반적인 인지상정 밖의 일이다. 그 처가 몰랐는데 그 이웃들을 어찌 논죄하겠는가. 수감 중인 사람들은 모두 석방하라. 도축을 금한 한 가지 일은 칙서의 먹이 마르지도 않았거늘 (이번) 일로 인하여 이처럼 낭자하게 드러났다. 도축을 금하는 감관 색리들은 칼[枷]을 씌워 엄히 가두고 (나의) 순행이 도착할 때를 기다려 처결할 일.

同日. 夕抵鎮安四十里, 作廳. 該縣監朴曾壽、錦山郡守李魯榮、龍潭縣令朴獻壽、長水縣監李啓陽、參禮察訪入見. 濟原察訪金熙道, 以夫馬差使員入見. 題民狀二十九張. 推闕各邑罪人.

240) 錦山李士江, <以鄉曲無賴, 乾沒校財, 衙庭詬辱罪, 刑一次, 還囚該郡, 加刑一次, 定配海南.> 金必素, <以昨年都倉色 憑藉營作錢, 加執取剩罪, 刑一次, 還囚該郡, 加刑一次放.> 茂朱前座首朴道壽, <以二安面執綱拔還, 及幻弄簽丁, 捧胎狼藉罪, 刑一次放.>

같은 날. 저녁에 진안 40리에 이르러 질청[作廳]에서 머물러 묵었다. 해당 현감 박증수·금산 군수 이노영·용담 현령 박현수·장수 현감 이계양·삼례 찰방이 입견했다. 제원(濟原) 찰방 김희유가 부마차사원으로 입견하였다. 민장 29장에 데김했다. 각 읍 죄인을 심문했다.

금산 이사강(李士江) <향곡 무리배로 향교 재물을 횡령(橫領)하고 관아를 모욕한 죄로, 1차 형신(刑訊)하여 다시 해당 군에 가두고 1차 형신을 추가하여 해남에 정배함.>

김필소(金必素) <작년 도창(都倉) 색리로 감영의 작전(作錢)<sup>241)</sup>을 빙자하여 가집(加執)<sup>242)</sup>하여 이득을 취한 죄로 1차 형신하여 다시 해당 군에 가두고 1차 형신을 추가하여 석방함.>

무주 전 좌수(座首)<sup>243)</sup> 박도수(朴道壽) <이안면 집강(執綱)을 빼내어 돌려보내고 침정

240) 8월 16일부터 8월 25일까지 순행(巡行)중에 민장을 처리한 경우는 보통과 다르게 “【題】”가 없다.

241) 작전(作錢) : 다른 물종을 돈으로 바꾸어 놓거나 바꾸어 내게 하는 것 또는 낸 것을 말하는데, 폭넓게 쓰인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① 각종신역(身役)·잡세(雜稅)·삼남(三南)과 관동(關東)의 산군(山郡)에서 내는 전세(田稅)·대동(大同) 등을 쌀·콩·무명 대신 돈으로 내게 하는 것을 말함. ② 환곡(還穀)으로 나누어준 쌀·수수·보리·기장·콩 등을 상환할 때 돈으로 내게 하는 것을 말함.

242) 가집(加執) : 지방관이 백성들에게 지방 관아의 양곡을 팔 때 지정된 액수보다 높은 가격으로 팔아 그 차액을 착복하던 일로, 가분(加分)이라고도 한다.

243) 좌수(座首) : 지방의 자치 기구인 향청(鄉廳)의 우두머리이다. 수령권을 견제하는 기능을 담당하였다가 향원(鄉員) 인사권과 행정 실무의 일부를 맡아보았는데, 고종 32년(1895)에 향장(鄉長)으로 고치면서 유명무실한 존재가 되었다.

(簽丁)<sup>244</sup>에 농간을 부려 낭자하게 뇌물을 받은 죄로 1차 형신하고 석방함.>

十七日. 平明離發. 午抵鎮安白巖倉三十里, 中火.<錦山支供.> 錦山郡守、濟原察訪、任實縣監洪哲謨入見. 題民狀二十二張.

17일. 아침 해가 뜰 때에 출발하여 낮에 진안 백암창(白巖倉) 30리에 이르러 점심을 먹었다.<금산군에서 접대함.> 금산 군수·제원 찰방·임실 현감 홍철모가 입견하였다. 민장 25장을 데김하였다.

同日. 夕抵任實縣三十里, 東軒. 該縣監洪哲謨、南原府使洪錫謨、寶城郡守吳顯佑、槥樹察訪田栽五、參禮察訪、濟原察訪入見. 題民狀三十六張, 移囚罪人, 以齋日相值, 不得推閱.

淳昌林魯孝,<以前吏房, 負逋徵族, 誅求閭里罪, 刑一次取招事, 發關任實縣, 因查報放.> 金斗海,<以兄嫂死後, 奪其嫂甥田畝罪, 刑一次取招事, 發關任實縣, 因查報放.> 長水鄭禧淳,<以屢經座首, 締楔放債罪, 刑一次取招事, 發關任實縣, 因查報放.>

같은 날. 저녁에 임실현 30리에 이르러 동헌에서 머물러 묵었다. 해당 현감 홍철모·남원 부사 홍석모·보성 군수 오현우·오수 찰방 전재오·삼례 찰방·제원 찰방이 입견하였다. 민장 36장을 데김하였다. 이송해 가둔 죄수는 재계(齋戒)하는 날과 겹쳐서 심문하지 못했다.

순창 임노효(林魯孝) <전 이방(吏房)으로 관물 횡령, 친척 추징, 마을에서 강제로 착취한 죄로 1차 형신하고 진술 받을 일로 임실현에 관문을 발송함. 조사 보고로 인하여 석방함.>

김두해(金斗海) <형수가 사망한 후에 형수의 오라비 전답을 탈취한 죄로 1차 형신하고 진술 받을 일로 임실현에 관문을 발송함. 조사 보고로 인하여 석방함.>

장수 정희순(鄭禧淳) <여러 번 좌수(座首)를 역임하고 벼단을 담보로 사채를 놓은 죄로 1차 형추하고 진술 받을 일로 임실현에 관문을 발송함. 조사 보고로 인하여 석방함.>

十八日. 該縣監及濟原察訪入見. 平明離發, 午抵槥樹三十里, 中火.<淳昌支供.> 槥樹察訪田栽五、淳昌郡守沈宜復、樂安郡守韓啓轍、光陽縣監沈兢祖入見. 題民狀二十二張.

244) 첨정(簽丁) : 군역에 종사할 장정을 군적(軍籍)에 올려 기록하는 일을 이른다.

18일. 해당 현감과 제원 찰방이 입견하였다. 아침 해가 뜰 무렵 출발하여 낮에 오수 30리에 이르러 점심을 먹었다.<순창군에서 대접함.> 오수 찰방 전재오·순창 군수 심의복·낙안 군수 한계철·광양 현감 심금조가 입견하였다. 민장 22장에 데김했다.

同日. 夕抵南原府四十里, 客舍.<順天夕支供, 光陽朝支供.> 該府使洪錫謨、求禮縣監申鍾命、雲峯縣監趙存奎、谷城縣監任禹常入見. 斃樹察訪, 以夫馬差使員入見. 題民狀一百三十一張, 推閱各邑罪人.

興陽宋啓錫,<以座首面任與千摠, 捧賂差出罪, 刑一次放.> 李必元,<以面任, 番錢收斂, 加捧二三錢罪, 刑一次放.> 朴大孫,<以選武掌務軍官, 差帖加數圖出罪, 刑一次仍囚. ○刑一次放.> 申景謨,<以大同色, 稅米執錢, 高價取剩罪, 刑一次仍囚 ○刑一次放.> 鹿島裴文佑,<以倉色, 私自戶斂罪, 刑一次仍囚 ○刑一次放.> 金正安,<以倉色, 私出還米, 作錢取剩罪, 刑一次仍囚 ○刑一次放.> 左水營金洛祐,<以前年濟倉色, 結還分給, 捧賂存拔, 擇出完石, 高價作錢罪, 刑一次仍囚 ○刑一次放.> 前營李亨俊.<以首校填代執事, 侵虐饒民罪, 刑一次仍囚 ○刑一次放.>

같은 날. 저녁에 남원부 40리에 이르러 객사에 머물러 묵었다.<순천부에서 저녁을 접대하고, 광양현에서 아침을 접대함.> 해당 부사 홍철모·구례 현감 신종명·운봉 현감 조준규·곡성 현감 임우상이 입견하였다. 오수 찰방이 부마차사원으로 입견하였다. 제원 찰방이 입견하였다. 민장 131장에 데김하고 각 읍의 죄인을 심문하였다.

흥양 송계석(宋啓錫)<좌수(座首)로 면임(面任)과 천총(千摠)<sup>245)</sup>을 뇌물을 받고 차출(差出)한 죄로 1차 형신하고 석방함.>

이필원(李必元)<면임으로 번전(番錢)<sup>246)</sup>을 거두면서 추가로 2~3전을 더 받은 죄로 1차 형신하고 석방함.>

박대손(朴大孫)<선무장무군관(選武掌務軍官)<sup>247)</sup>으로 차첩(差帖)<sup>248)</sup>을 여러 장 베껴 내준

245) 천총(千摠) : 훈련도감(訓練都監)·금위영(禁衛營)·어영청(御營廳)·총융청(摠戎廳)·진무영(鎭撫營) 따위에 딸렸던 정3품(正三品)의 무관직(武官職)을 이른다.

246) 번전(番錢) : 번(番)을 서야 할 군사가 번을 서지 않고 그 대신 바치던 돈을 말한다.

247) 선무장무군관(選武掌務軍官) : 선무군관(選武軍官)과 장무군관(掌務軍官)을 말하는데, 선무군관은 함경도와 평안도를 제외한 지방의 토호와 부민(富民)의 자제 중에서 무술시험으로 선발하여 평상시에는 집에서 무예를 연마하게 하고 유사시에는 군졸을 지휘하는데, 평상시에는 해마다 베 1필을 바치고 관찰사로 하여금 무예를 시험하도록 하였다.(황위주 책임번역 외, 탈초·역주 『營總』, 慶尙北道·慶北大嶺南文化研究院, 2007, 114-115쪽) 장무군관은 장수나 봉명(奉命) 사신이 거느리는 군관 가운데에서 가장 높은 무관인 장무군관(掌務軍官)을 지칭한다.(김동현 역, 『임하필기(林下筆記) 제23권 문헌지장편(文獻指掌編)』, 한국고전번역원, 1999.)

죄로 1차 형신하고 그대로 옥에 가둠. ○1차 형신하고 석방함.>

신경모(申景謨) <대동 색리로 세미(稅米)를 금전으로 받으면서 높은 값으로 매겨 차액을 취한 죄로 1차 형신하고 그대로 옥에 가둠. ○1차 형신하고 석방함.>

녹도 배문우(裵文佑) <창고 색리로 사사로이 가호에서 거두어들인 죄로 1차 형신하고 그대로 옥에 가둠. ○1차 형신하고 석방함.>

김정안(金正安) <창고 색리로 사사로이 환곡미를 방출하여 금전으로 바꾸면서 차액을 취한 죄로 1차 형신하고 그대로 옥에 가둠. ○1차 형신하고 석방함.>

좌수영 김낙우(金洛祐) <지난해의 제창 색리로 결환(結還)<sup>249</sup>을 분배해 주면서 뇌물을 받고 분배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남겨 두었고, 완석(完石)<sup>250</sup>을 가려내어 높은 값으로 작전(作錢)한 죄로 1차 형신하고 그대로 옥에 가둠. ○1차 형신하고 석방함.>

전영(前營)<sup>251</sup> 이형준(李亨俊) <수교(首校)로 집사를 대신 채우면서 부유한 백성을 침학한 죄로 1차 형신하고 그대로 옥에 가둠. ○1차 형신하고 석방함.>

十九日. 早朝詣關王廟, 與本官洪錫謨, 同爲奉審後, 封啓

【狀啓】南原府誕報廟, 道臣巡歷時, 奉審事. 前因備邊司啓下關, 定式施行爲白有如乎. 臣於今八月十八日, 巡到南原府, 與該府使洪錫謨, 廟宇內外, 眼同奉審是白乎, 則無煩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19일. 이른 아침에 관왕묘(關王廟)에 가서 본관[남원 부사] 홍석모(洪錫謨)와 함께 봉심(奉審)한 후 장계를 써서 봉했다.

【장계】남원부 탄보묘(誕報廟)<sup>252</sup>를 관찰사가 순력할 때에 봉심(奉審)한 일. 전에 비변사에서 아뢰어 윤희받은 관문에 의거하여 정식(定式)을 시행하였습니다.

248) 차첩(差帖) : 하급 관리의 임명 사령서(辭令書)를 말한다.(法制處, 『古法典用語集』, 圖書出版 育志社, 1981.)

249) 결환(結還) : 토지의 결수(結數)에 따라 환곡을 분배하여 배정하는 것을 말한다.

250) 완석(完石) : 곡식 20斗 분량의 완전한 섬을 말한다.

251) 전영(前營) : 효종(孝宗) 8년(1657)에 영장(營將)을 삼남(三南)에 설치하라고 명하였다. 이에 양호(兩湖 충청도·전라도)에 5영(營)과 영남 좌우도(嶺南左右道)의 모든 진(鎭)에 각각 영장(營將)을 두고 관할하는 여러 고을의 군사(軍事)를 통할하게 하였다.(『국역 증보문헌비고 제110권 병고2』) 또 전라도 지역은 전영장(前營將)[순천 부사가 겸임]·좌영장(左營將)[운봉 현감이 겸임]·중영장(中營將)[전주 부윤이 겸임]·우영장(右營將)[나주 목사가 겸임]·후영장(後營將)[여산 부사가 겸임]을 설치하였다.(『국역 증보문헌비고 제114권 병고6』)

252) 탄보묘(誕報廟) : 남원부(南原府) 강진현(康津縣) 고금도(古今島)에 있는 사당으로, 중국 촉한(蜀漢)의 장수 관우(關羽)를 모신 관왕묘(關王廟)이다. 1597년(선조 30)에 명(明) 수군도독 진린(陳璘)이 세웠다.

신은 이번 8월 18일에 순행 행차가 남원부에 이르러 해당 고을 부사 홍경모와 함께 묘우의 안팎을 봉심하였는데 아무 탈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치계하옵는 일.

同日. 朝詣廣寒樓, 仍爲離發, 渡鶉子江. 午抵谷城四十里, 中火.<本邑支供.> 該縣監任禹常、玉果縣監韓致定、景陽察訪安允中、葵樹察訪入見. 題民狀十五張, 推闕各邑罪人.

寶城金啓民、金應湖,<以倉色, 昨冬捧糶時, 那移穀物罪, 查問後, 捧俸音放.> 崔時八,<以兵房色, 爲官豎碑, 狼藉戶斂, 簽丁頗役, 許多捧賂罪, 刑一次放.> 光陽鄭煥福,<稱以鄉所, 欺人取物, 貿塩擢利罪, 刑一次放.> 求禮高斗興,<以昨年倉色, 拔還捧賂, 出穀作錢罪, 刑一次放.> 古突山張大益,<以倉色, 私作還租, 立本取剩, 還米與松板, 欲爲稅船添載罪, 刑一次放.> 南原金卜用.<以使令, 革罷稷防, 私自捧錢罪, 棍二十度放.>

같은 날. 아침에 광한루(廣寒樓)에 도착하고 그대로 출발하여 순자강(鶉子江)을 건넜다. 오후에 곡성(谷城) 40리에 이르러 점심을 먹었다.<곡성현에서 접대함.> 해당 현감 [곡성현감] 임우상(任禹常)·옥과 현감 한치정(韓致定)·경양 찰방 안윤중(安允中)·오수 찰방이 입견하였다. 민장 15장을 데김하고 각 읍의 죄인을 심문했다.

보성 김계민(金啓民)·김응호(金應湖)<창색(倉色)으로 작년 겨울 환곡을 거둬들일 때에 곡물을 유용한 죄로 조사하여 심문한 후에 다짐장을 받고 석방함.>

최시팔(崔時八)<병방(兵房) 색리로 수령을 위해 공적비를 세울 때 가호마다 낭자하게 징수하였고 첨정(簽丁)할 때 군역을 탈로 빼주면서 허다하게 뇌물을 받은 죄로 1차 형신하고 석방함.>

광양 정환복(鄭煥福)<유향소를 칭하면서 사람을 속여 재물을 취하고 소금을 팔아 이익을 독점한 죄로 1차 형신하고 석방함.>

구례 고두흥(高斗興)<작년 창색(倉色)으로 환곡 분배에서 제외시켜 주면서 뇌물을 받고 곡식을 방출하여 금전으로 바꾼 죄로 1차 형신하고 석방함.>

고돌산(古突山) 장대익(張大益) <창색으로 다른 명목의 벼를 사사로이 환곡으로 작정하여 이를 입본(立本)<sup>253</sup> 차액을 취하였고, 환곡미와 송판(松板)을 세곡선에 추가로 싣고자 한 죄로 1차 형신하고 석방함.>

253) 입본(立本) : 환곡의 변형된 형태인 입본(立本)·이무(移貿)·전환(錢還)의 하나로, 입본은 환곡을 이용하여 이익을 도모한 일반적인 방법이다. 봄에 환곡의 명목으로 돈을 나누어주었다가 가을이 되면 모곡과 함께 원곡을 곡물의 형태로 거두어들이던 방식으로, 형식적으로는 봄과 가을의 가격차를 이용하는 방법이었다.(梁晋碩, 「17, 18세기 還穀制度의 운영과 機能 변화」, 서울대박사학위논문, 224쪽.)



남원 김복용(金卜用) <사령(司令)으로 계방(契防)을 혁파하였는데도 사사로이 돈을 받은 죄로 곤장 20대를 때리고 석방함.>

同日. 夕抵玉果縣四十里, 東軒. <本邑夕支供, 昌平朝支供.> 該縣監韓致定、潭陽府使曹錫玄、昌平縣令李和愚、興陽縣監尹守鳳、和順縣監徐承淳、同福縣監李寅元、槲樹察訪入見. 金城別將崔得順, 延命後入見. 景陽察訪, 以夫馬差使員入見. 題民狀五十二張, 推閱各邑罪人.

谷城申晚沃, <以紙所色兼帶民庫色, 私出還穀, 作錢取剩, 那移大同錢, 重邊放債罪, 刑一次放.> 同福吳從祿, <以昨年都書員, 稅穀磨鍊, 米太加出罪, 刑一次放.> 河信九, <以米倉色, 私出還穀, 高價發賣罪, 刑一次放.> 姜啓新, <以昨年米倉色, 濫捧不受債, 高價執錢罪, 刑一次放.> 昌平韓永豐, <以倉色, 私執還穀, 立本取剩, 所捧本色, 擇完石外執罪, 查問後, 更查事, 發關該邑. ○更探次, 姑囚. ○詳查論報事, 發關. ○刑一次放.> 玉果韓益祿朴良瑞.<兩相符同, 防結犯連罪, 移囚同福縣, 嚴刑取招事, 發關. 因查報參酌放.>

같은 날. 저녁 옥과현 40리에 이르러 동헌에 머물러 묵었다.<본읍[옥과현]에서 저녁을 접대하고, 창평현에서 아침을 접대함.> 해당 현감[옥과 현감] 한치정(韓致定)·담양 부사 조석현(曹錫玄)·창평 현령 이화우(李和愚)·흥양 현감 윤수봉(尹守鳳)·화순 현감 서승순(徐承淳)·동북 현감 이인원(李寅元)·오수 찰방이 입건하였다. 금성 별장(金城別將) 최득순(崔得順)이 연명(延命)한 뒤에 입건하였다. 경양 찰방이 부마차사원으로 입건하였다. 민장 52장을 데김하고 각 읍의 죄인을 심문했다.

곡성 신만옥(申晚沃)<지소(紙所) 색리로 민고(民庫)<sup>254</sup> 색리를 겸하면서 사사로이 환곡을 방출하여 작전(作錢)하면서 차액을 취하고, 대동전(大同錢)<sup>255</sup>를 유용해서 비싼 이자로 빚을 놓은 죄로 1차 형신하고 석방함.>

동북 오종록(吳從祿) <작년 도서원(都書員)<sup>256</sup>으로 세곡을 마련하면서 쌀과 콩을 추가로 낸 죄로 1차 형신하고 석방함.>

하신구(河信九)<미창(米倉) 색리로 사사로이 환곡을 내어 고가로 방매한 죄로 1차 형신하

254) 민고(民庫) : 관청에서 전부(田賦) 이외의 잡역(雜役) 및 기타 관용 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백성으로부터 해마다 곡식과 돈을 거두어서 보관하던 창고이다.

255) 대동전(大同錢) : 대동법(大同法)을 시행하면서 현물 대신 공물(貢物)로 납부한 금전을 이른다.

256) 도서원(都書員) : 서리(胥吏) 중에서 결세(結稅), 계수(計數) 등을 맡은 서리의 우두머리를 말한다.

고 석방함.>

강계신(姜啓新)<작년 미창 색리로 환곡 채무(債務)가 없는 자에게 멋대로 더 거둬들이고 고가로 돈을 마련한 죄로 한 차례 형신하고 내보냄.>

창평(昌平) 한영풍(韓永豊)<창색으로 사사로이 환곡을 집행하여 입본하여 차액을 취하고, 받아들인 본전은 완석(完石)을 가려내서 따로 빼돌려 감추어 둔 죄로 조사하여 심문한 후에 다시 조사할 일로 해당 고을에 관문을 보냄. ○다시 탐문하기 위하여 우선 가두어둠. ○자세히 조사하여 보고할 일로 관문을 보냄. ○1차 형신하고 석방함.>

옥과(玉果) 한익록(韓益祿)·박양서(朴良瑞)<둘이 서로 한 통속이 되어 질척(防結)<sup>257</sup>하고 포흠을 범한 죄로 동복현으로 옮겨 가두고 엄히 형신하여 진술을 받을 일로 관문을 발송함. 조사 보고에 근거하여 참작하여 석방함.>

二十日. 該縣監及昌平縣令、興陽縣監、和順縣監、同福縣監、葵樹察訪入見. 平明離發, 午抵潭陽四十里, 中火.<本邑支供> 該府使曹錫玄、海南縣監吳鼎周、景陽察訪入見. 笠巖別將宋重協, 延命後入見辭去. 題民狀十九張, 推閱各邑罪人.

潭陽南章燁.<以座首防結還徵罪, 刑一次放.> 綾州朱光成<以前吏房, 多受還穀, 收斂各人罪, 刑一次放.>

20일. 옥과 현감 및 창평 현령·흥양 현감·화순 현감·동복 현감·오수 찰방이 입견하였다. 아침 해가 뜰 무렵 출발하여 낮에 담양 40리에 이르러 점심을 먹었다.<담양부에서 접대함.> 담양 부사 조석현(曹錫玄)·해남 현감 오정주(吳鼎周)·경양 찰방이 입견하였다. 입암 별장 송중협(宋重協)이 연명한 후에 입견하여 하직하고 갔다. 민장 19장을 데김하고, 각 읍의 죄인을 심문하였다.

담양 남장엽(南章燁)<좌수(座首)로 방결을 다시 징수한 죄로 1차 형신하고 석방함.>

능주 주광성(朱光成)<전 이방으로 환곡을 과다하게 받아 각 사람들에게 거둬들이는 죄로 1차 형신하고 석방함.>

同日. 夕抵光州五十里, 止宿東軒. 該牧使趙雲明、靈巖郡守李應謙、珍島郡守閔致鳳、南平縣監林迥鎭、碧沙察訪李熙輔、和順縣監、景陽察訪入見. 題民狀九十八張, 推閱移囚罪人.

257) 방결(防結) : 시골 아전이 백성에게 논밭의 조세를 감액하여 주고 기한 전에 받아서 아전끼리 돌려쓰거나 사사로이 융통하여 쓰는 일을 말한다.(『牧民心書 戶典 稅法』; 『經世遺表 地官戶曹 經田司』)

康津金永基,<以吏房, 民庫查逋, 私自捧錢, 牟還加分, 不爲報營罪, 刑一次仍囚. ○還囚康津刑一次.> 金明胄,<以都吏, 災結偷食罪, 刑一次放.> 梁達俊,<以民庫色, 查逋錢私捧罪, 刑一次放.> 尹商鳳.<以座首, 甫里役錢, 私自捧食, 鄉廳保率, 私自新朮罪, 刑一次仍囚. ○刑一次放.>

같은 날. 저녁에 광주 50리에 이르러 동헌에서 머물러 묵었다. 광주 목사 조운명(趙雲明)·영암 군수 이응겸(李應謙)·진도 군수 민치봉(閔致鳳)·남평 현감 임형진(林洵鎭)·벽사 찰방 이희보(李熙輔)·화순 현감·경양 찰방이 입견하였다. 민장 98장을 데 김하고, 이송하여 가둔 죄인을 심문하였다.

강진 김영기(金永基)<이방(吏房)으로 민고(民庫)에서 횡령하고, 사사로이 돈을 받고 모환(牟還)을 가분(加分)<sup>258</sup>하고는 감영에 보고하지 않은 죄로 1차 형신하고 그대로 옥에 가둠. ○ 강진에 돌려보내 가두고 1차 형신함.>

김명주(金明胄)<도리(都吏)로 재결(災結)<sup>259</sup>을 훔쳐 먹은 죄로 1차 형신하고 석방함.> 양달준(梁達俊)<민고 색리로 사포전(查逋錢)<sup>260</sup>을 사사로이 받은 죄로 1차 형신하고 석방함.>

윤상봉(尹商鳳)<좌수(座首)로 보리(甫里)의 역전(役錢)을 사사로이 받아먹고, 향청(鄉廳)의 보인(保人)과 술정(率丁)을 사사로이 새로 창건한 죄로 1차 형신하고 그대로 가둠. ○ 1차 형신하고 석방함.>

二十一日. 該牧使及靈巖郡守、珍島郡守、碧沙察訪, 入見辭去. 和順縣監、南平縣監、景陽察訪, 入見. 薪智島萬戶任衡直, 智島萬戶高擎文, 延命後入見辭去. 早朝離發, 午抵光州東倉二十里中火.<綾州支供> 該牧使及和順縣監、南平縣監、景陽察訪、咸平縣監金箕

258) 가분(加分) : 중앙의 승인 하에 유고곡(留庫穀)의 일부를 분급(分給)하는 것으로, 심하게 흉년든 경우와 같은 특별한 상황에서 각 지방에서 가지고 있는 환곡의 원래 정해져 있는 유고곡의 비율을 줄이고 분급곡(分給穀)의 비율을 늘리는 것을 말한다.(문용식, 『조선 후기 진정과 환곡 운영』, 경인문화사, 2001) 미리 허락을 얻어서 행하면 불법이 되지 않으나 허락 없이 행하면 불법이 되었다.

259) 재결(災結) : 재해(災害)를 입은 전지(田地)로, 공부상(公簿上)에 면세(免稅)해야 할 토지(土地)로 기록되어 있는 결수(結數)를 말한다. 재해(災害)는 영구한 재해[永災]와 당년의 재해[當年災]로 구분된다. 즉 홍수로 인해 논밭이 내로 바뀌는 것[川反]과 강물이나 냇물에 논밭이 개먹어서 무너져 떨어지는 것[浦落]은 영구한 재해이고, 처음부터 파종하지 못한 것[初不付種], 이양하지 못한 것[未移秧], 이양의 때를 잃은 것[脫移秧], 전혀 낫을 대지 못한 것[全不掛鎌], 이삭이 패지 못한 것[未發穗], 벌레의 해로 감손된 것[蟲損], 계의 해로 감손된 것[蟹損], 말라서 감손된 것[枯損], 서리의 재해를 입은 것[霜災], 우박의 재해를 입은 것[雹災], 바닷물이 넘쳐 육지로 밀려 온 것[海溢], 물에 잠긴 것[水沈]은 당해년의 재해이다.(『萬機要覽 財用篇二 年分』)

260) 사포전(查逋錢) : 세곡(稅穀)을 포탈(逋脫)하거나 횡령(橫領)한 것을 조사하여 작전(作錢)한 돈이다.

祖、靑巖察訪李東韻入見. 題民狀二十五張.

21일. 광주 목사 및 영암 군수 · 진도 군수 · 벽사 찰방이 입견하여 하직하고 갔다. 화순 현감 · 남평 현감 · 경양 찰방이 입견하였다. 신지도 만호 임형직(任衡直)과 지도 만호 고경문(高擎文)이 연명 후에 입견하여 하직하고 갔다. 이른 아침 출발하여 낮에 광주 동창(東倉) 20리에 이르러 점심을 먹었다.<능주목에서 접대함.> 광주 목사 및 화순 현감 · 남평 현감 · 경양 찰방 · 함평 현감 김기조(金箕祖) · 청암 찰방 이동운(李東韻)이 입견하였다. 민장 25장에 데김하였다.

同日. 夕抵長城四十里, 止宿東軒. 該府使徐有民、羅州牧使李晦淵、高敞縣監李鍾應、和順縣監、南平縣監、景陽察訪入見. 靑巖察訪, 以夫馬差使員入見. 題民狀八十張. 移囚罪人, 以齋日相值, 不得推閱.

靈巖朴正直, <以吏房, 稅米代捧租換麤取剩罪. 刑一次, 取招事, 發關羅州牧. ○刑一次 參酌放.> 金禮臣, <以前吏房, 四年仍任, 作弊邑村罪. 刑一次, 取招事發關羅州牧, 因查報分揀放.> 金柱福, <以前結役色, 混同私債, 捧稅捧還罪. 刑一次, 取招事發關羅州牧 ○刑一次放.> 南平鄭士咸, <以都正, 勒葬村後, 民多離散, 安錫玄母葬, 勒捧高價罪. 刑一次, 取招事發關羅州牧, 因查報放.> 李奇鉉, <以校任, 討索民間, 作弊多端, 稱以立碑, 收斂民間罪. 刑一次, 取招事發關羅州牧 ○移囚南平獄, 刑一次放.> 長興周寬範、孫正默、宋吉元, <以下吏, 圖差任窠, 謀害官長, 搆捏同僚罪. 並刑一次, 取招事發關羅州牧 ○移囚長興獄, 並刑一次.> 金學祿, <以下吏, 締結廉客, 作弊多端罪. 刑一次, 取招事發關羅州牧, 因查報分揀放, 周寬範等, 更查事題送.> 鄭仁瑞, <以尊位, 率畜妖妾, 雜技放債罪. 刑一次, 取招事發關羅州牧. 刑一次放.> 珍島許榮, <以吏房, 昨年托夫二百結, 收捧結米, 高價發賣於商船, 而幻弄還穀, 立本取剩罪. 刑一次, 取招事發關長城兼官高敞縣, 刑一次仍囚. ○刑一次放.> 金啓玉, <以都倉色吏, 高價執錢, 立本取剩罪. 刑一次, 取招事發關長城兼官, 因病分揀放.> 李廷敦、張海鵬, <以大同色、田稅色, 稅米五百餘石, 私自高價作錢後, 稱以民間未捧, 歇價出給饒民, 收捧稅米罪, 刑一次, 取招事發關長城兼官. ○並刑一次放.> 曹重稷, <以命山倉色, 高價執錢, 私自取剩罪. 刑一次, 取招事發關長城兼官. ○刑一次放.> 金得汝, <圖差命山倉監, 與該色符同掩護罪. 刑一次, 取招事發關長城兼官, 因查報分揀放.>

21일. 저녁에 장성 40리에 이르러 동헌에 머물러 묵었다. 장성 부사 서유민(徐有民) ·

나주 목사 이회연(李晦淵) · 고창 현감 이증응(李鍾應) · 화순 현감 · 경양 찰방이 입건하였다. 청엄 찰방은 부마차사원(夫馬差使員)으로 입건하였다. 민장 80장을 데김하였다. 이송하여 가둔 죄인을 재계하는 날과 서로 겹쳐 심문하지 못했다.

영암 박정직(朴正直)<이방으로 세미(稅米)를 베풀[租]로 대봉(代捧)<sup>261</sup>하여 거친 것으로 바꾸면서 차액을 취한 죄로 1차 형신하고 진술 받을 일로 나주목에 관문을 발송함. ○ 1차 형신하고 참작하여 석방함.>

김예신(金禮臣)<전 이방으로 4년 동안 그대로 직임을 유지하며 읍촌에 폐단을 일으킨 죄로 1차 형신하고 진술 받을 일로 나주목에 관문을 발송함. 조사 보고로 인하여 분간하여 석방함.>

김주복(金柱福)<전 결역 색리(結役色吏, 토지세 담당)로 사채를 혼동하여 세금을 거둬들이고 환곡을 거둬들이는 죄로 1차 형신하고 진술 받을 일로 나주목에 관문을 발송함. ○ 1차 형신하고 석방함.>

남평 정사함(鄭士咸)<도정(都正)<sup>262</sup>으로 마을 뒷산에 능장(勒葬)하여 많은 백성들이 떠나 흩어졌고, 안석현(安錫玄)의 어머니 장례에 (묘지 값을) 강압적으로 높은 값을 받은 죄로 1차 형신하고 진술 받을 일로 나주목에 관문을 발송함. 조사 보고로 인하여 석방함.>

이기현(李奇鉉)<향교 임원으로 민간에게 토색질하고 여러 가지로 폐단을 일으켜서 비석을 세운다고 칭하며 민간에서 거둬들이는 죄로 1차 형신하고 진술 받을 일로 나주목에 관문을 발송함. ○ 남평 옥사로 옮겨 가두고 1차 형신하고 석방함.>

장흥 주관범(周寬範) · 손정묵(孫正默) · 송길원(宋吉元)<하급 아전으로 보직에 차정되기를 도모하여 관장을 모해하고 동료들을 모함한 죄로 모두 1차 형신하고, 진술 받을 일로 나주목에 관문을 발송함. ○ 장흥 옥사로 옮겨 가두고 모두 1차 형신함.>

김학록(金學祿)<하급 아전으로 영문꾼들을 체결하여 각종 폐단을 일으킨 죄로 1차 형신하고, 진술 받을 일로 나주목에 관문을 발송함. 조사 보고로 인하여 분간하여 석방함. 주관범(周寬範) 등은 다시 조사할 일로 데김을 보냄.>

정인서(鄭仁瑞)<높은 지위에 있으면서 간사한 첩을 거느리고 잡기로 사채를 놓은 죄로 1차 형신하고, 진술을 받을 일로 나주목에 관문을 발송함. 1차 형신하고 석방함.>

261) 대봉(代捧) : 조선 후기 환곡을 상환할 때 애초에 빌린 곡식(보통은 쌀)이 흉작일 경우 다른 곡식으로 대신 상환할 수 있게 한 제도이다. 『만기요람』에는 쌀과 다른 곡식의 상환비율이 규정되어 있는데, 쌀 1석에 콩은 2석, 조(租)는 2석 7두 5승, 팥은 1석 7두 5승을, 팥 1석에 콩은 1석 5두, 속조(粟租)는 1석 10두, 콩 1석에 팥은 11두 2승 5홉, 속조는 1석 3두 7승 5홉, 조 1석에 콩은 12두를 갖게 하였다. 기장[稷]과 기장[黍], 녹두와 팥, 옥수수과 황조(荒租), 참밀과 벼는 각각 같은 양으로 갖게 하였다.

262) 도정(都正) : 종친부·돈령부·훈련원에서 종친·외척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정3품 당상관직이다.

진도 허영(許榮)<이방으로 작년에 장정들에게 200결(結)을 맡기고 결미(結米)를 거두어들여 높은 값으로 상선(商船)에 내다 팔고, 환곡을 농락하여 본전으로 삼아 식리하여 차액을 취한 죄로 1차 형신하고, 진술 받을 일로 장성 겸관<sup>263</sup>인 고창현에 관문을 발송함. 1차 형신하고 그대로 가둠. ○ 1차 형신하고 석방함.>

김계옥(金啓玉)<도창(都倉) 색리로 높은 가격으로 돈을 만들어 본전으로 삼아 식리하여 차액을 취한 죄로 1차 형신하고, 진술 받을 일로 장성 겸관[고창현]에 관문을 발송함. 질병으로 인하여 분간하여 석방함.>

이정돈(李廷敦)·장해봉(張海鵬)<대동(大同) 색리 및 전세(田稅) 색리로 세미 500여석을 사사로이 고가로 돈을 만든 뒤에 민간에서 아직 세미(稅米)를 거두지 못했다고 칭하면서 그 돈을 요민(饒民)에게 헐값으로 내주어 세미를 거둬들인 죄로 1차 형신하고, 진술 받을 일로 장성 겸관[고창현]에 관문을 발송함. ○ 모두 1차 형신하고 석방함.>

조중직(曹重稷)<명산(命山) 창색으로 고가로 돈을 만들어 사사로이 차액을 취한 죄로 1차 형신하고, 진술 받을 일로 장성 겸관[고창현]에 관문을 발송함 ○ 1차 형신하고 석방함.>

김득녀(金得汝)<명산 창고 감관(監官)으로 차출되기를 도모하여 해당 색리와 결탁하여 한 통속으로 비호한 죄로 1차 형신하고, 진술 받을 일로 장성 겸관[고창현]에 관문을 발송함. 조사 보고로 인하여 분간하여 석방함.>

二十二日. 該府使及羅州牧使、和順縣監、南平縣監、高敞縣監、景陽察訪入見. 靑巖察訪入見. 早朝離發, 午抵靈光社倉四十里, 中火.<咸平支供> 咸平縣監、靑巖察訪入見. 題民狀三十七張.

22일. 장성 부사 및 나주 목사·화순 현감·함평 현감·고창 현감·경양 찰방이 입견하였다. 청엄 찰방이 입견하였다. 이른 아침에 출발하여 낮에 영광 사창(社倉) 40리에 이르러 점심을 먹었다.<함평현에서 접대함.> 함평 현감·청엄 찰방이 입견하였다. 민장 37장을 데김하였다.

同日. 夕抵靈光三十里, 止宿雲錦亭. 該郡守金胤根、務安縣監吳致淳、法聖僉使鄭泰東、羅州監牧官趙秉祿、珍島監牧官趙鎮亮入見. 右營將李倫叙、右水軍虞侯崔弘良、荏子島僉

263) 겸관(兼官) : 수령의 자리가 비었을 때 바로 이웃 고을 수령이 임시로 그 사무를 겸임하는 것을 말한다.

使李在植、臨淄僉使異在益、蝟島僉使金仁臣、多慶浦萬戶李敬賢、木浦萬戶洪理寬，延命後入見。靑巖察訪入見。題民狀七十三張，推閱各邑罪人。

靈光金從百,<以退吏陞校,查出各倉執錢,立本取剩,捧賂於崔哥,山訟從中斡旋罪.刑一次仍囚.○移囚咸平縣,刑一次,取招事發關.○刑一次放.> 金彭齡,<以昨年都吏,捧賂拔還,結價作還罪.刑一次仍囚.○移囚咸平縣,刑一次,取招事發關,因查報參酌放.> 張達宗,<以兵校,率畜二妾,雜技放債罪.刑一次放.> 姜明煥,<以己丑年兵校,私債收捧,摔笞島民,做出僞卷,奪人船隻罪.刑一次放.> 鄭東希,<以出派魁首,脅吏捧錢,豎碑戶斂罪.刑一次仍囚.○刑一次放.> 務安張學,<圖差座首,姿意賣鄉罪.刑一次放.> 丁瑞殷.<以倉色,外捧精穀,換納空穀罪.刑一次仍囚.○還囚該縣,刑一次,取招事發關.○刑一次放.>

같은 날. 저녁에 영광 30리에 이르러 운금정(雲錦亭)에서 머물러 묵었다. 영광 군수 김윤근(金胤根)·무안 현감 오치순(吳致淳)·법성 첨사 정태동(鄭泰東)·나주 감목관(監牧官) 조병록(趙秉祿)·진도 감목관 조진량(趙鎭亮)이 입견하였다. 우영장 이윤서(李倫叙)·우수군 우후(虞侯)<sup>264</sup> 최홍량(崔弘良)·임자도 첨사 이재식(李在植)·임치첨사 이재익(異在益)·위도 첨사 김인신(金仁臣)·다경포 만호 이경현(李敬賢)·목포 만호 홍리관(洪理寬)이 연명 후에 입견하였다. 청엄 찰방이 입견하였다. 민장 73장을 데김하고, 각 읍의 죄인을 심문했다.

영광 김종백(金從百)<퇴직 아전으로 향교 명부에 올라<sup>265</sup>, 각 창고의 작전을 조사해 찾아내서 이를 본전으로 삼아 식리하여 차액을 취했고, 최가(崔哥)에게 뇌물을 받고 산송<sup>266</sup>을 중간에서 알선한 죄로 1차 형신하고 그대로 가둠. ○ 함평현으로 이송하여 가두고 1차 형신하여 진술 받을 일로 관문을 발송함. ○ 1차 형신하고 석방함.>

김평령(金彭齡)<작년의 도리(都吏)로 뇌물을 받고 환곡 분급을 빼주었고, 토지세로 환곡을 작정한 죄로 1차 형신하고 그대로 가둠. ○ 함평현으로 이송하여 가두고 1차 형신하고 진술 받을 일로 관문을 발송함. 조사 보고로 인하여 참작하여 석방함.>

264) 우후(虞侯) : 무관직으로 각 병영의 종3품 병마우후(兵馬虞侯) 8명과 각 수영의 정4품 수군 우후 5명의 총칭이다.

265) 승교(陞校) : 향교 교생 명단인 교안(校案)에 오르는 것으로, 군역 등의 면역(免役)에 관계됨이 많아 부정의 온상이 되기도 하였다.

266) 산송(山訟) : 묘를 쓴 일로 말미암아 생기는 송사(訟事)를 말한다. 조선 시대 성리학에 기반한 유교의례가 정착하고 부계 중심의 종법질서가 정착함에 따라 조상 분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하면서 등장한 사회 갈등 현상이다. 남의 분산(墳山)을 침해하는 투장(偷葬)과 이를 막으려는 금장(禁葬)이 주요 대립구도를 이루었으며, 조선 후기 산송에 얽히지 않은 사대부가가 드물 정도로 한 시대를 풍미하였다.(김경숙, 「조선후기 산송과 사회갈등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2)

장달중(張達宗)<병교(兵校)로 두 첩을 거느리고 잡기로 사채를 놓은 죄로 1차 형신하고 석방함.>

강명환(姜明煥)<기축년 병교로 사채를 거두어들일 때 섬주인을 잡아다 치고 가짜 증거서를 만들어서 남의 선박을 빼앗은 죄로 1차 형신하고 석방함.>

정동희(鄭東希)<출파(出派)<sup>267</sup>의 과수로 아전들을 위협하여 금전을 받고, 비석을 세우면서 집집마다 돈을 거둔 죄로 1차 형신하고 그대로 가둠. ○ 1차 형신하고 석방함.>

무안 장학(張學)<좌수로 차출되기를 도모하고 자의적으로 향직을 판 죄로 1차 형신하고 석방함.>

정서은(丁瑞殷)<창고 색리로 밖에서 품질이 좋은 곡식을 받아 빈껍데기로 바꾸어 납부한 죄로 1차 형신하고 그대로 가둠. ○ 무안현에 돌려보내 가두고 1차 형신하고 진술 받을 일로 관문을 발송함. ○ 1차 형신 하고 석방함.>

二十三日. 該郡守及務安縣監、法聖僉使、羅州監牧官、珍島監牧官, 入見辭去. 平明離發, 午抵茂長四十里中火.<扶安支供> 該縣監尹興奎、金堤郡守李玄好入見. 題民狀三十二張.

23일. 영광 군수 및 무안 현감 · 법성 첨사 · 나주 감목관 · 진도 감목관이 입견하여 하직하고 갔다. 아침 해가 뜰 무렵 출발하여 낮에 무장 40리에 이르러 점심을 먹었다.<부안현에서 접대함.> 무장 현감 윤흥규(尹興奎) · 김제 군수 이현호(李玄好)가 입견하였다. 민장 32장을 데김하였다.

同日. 夕抵興德五十里, 止宿東軒.<本邑夕支供, 金堤朝支供.> 該縣監金命嫻、金堤郡守、井邑縣監申淳、高敞縣監尹鍾應、參禮察訪徐承烈、靑巖察訪入見. 題民狀十五張, 推閱移囚罪人.

井邑朴宜相,<以倉色, 還米與大同米, 高價取剩罪. 刑一次, 還囚該縣, 刑一次, 取招事發關.

○刑一次放.>李志翊,<以倉色, 還米還太, 作錢取剩罪. 刑一次, 還囚該縣, 刑一次, 取招事發關.

○刑一次放.>扶安金之甲,<以倉色, 還穀高價執錢罪. 刑一次, 還囚該縣, 刑一次, 取招事發關,

刑一次. ○刑一次放.>崔得用,<凌蔑長老, 酗酒雜技罪. 刑一次放.>咸平張殷甲,<拔劍行惡,

放債殖利罪. 刑一次放.>興德朴世維.<以倉色, 私自執錢, 取剩罪. 刑一次放.>

267) 출파(出派) : 아전들이 정무(政務)업무를 볼 때 나쁜 행태의 하나로, 사안에 적극 개입하는 것을 출파(出派)라 하고 앉아서 사변적으로 하는 것을 좌파(坐派)라하여 출좌파정(出坐派政)이란 말이 있고 연관어로 파방(派房)은 지방 관아에서 아전 및 관속을 교체한 일로 해마다 한 차례씩 행하였다.



같은 날. 저녁에 흥덕 50리에 이르러 동헌에서 머물러 묵었다.<흥덕현에서 저녁을 접대하고, 김제군에서 아침을 접대함.> 흥덕 현감 김명혁(金命爌)·김제 군수·정읍 현감 신순(申淳)·고창 현감 윤종응(尹鍾應)·삼례 찰방 서승렬(徐承烈)·청엄 찰방이 입견하였다. 민장 15장을 데김하고, 이송하여 가둔 죄인을 심문했다.

정읍 박의상(朴宜相)<창고 색리로 환곡미와 대동미를 고가로 [돈을 만들어] 차액을 취한 죄로 1차 형신하고, 정읍현으로 돌려보내 가두고 1차 형신하고 진술 받을 일로 관문을 발송함. ○ 1차 형신하고 석방함.>

이지익(李志翊)<창고 색리로 환곡미와 환곡 콩으로 작전하여 차액을 취한 죄로 1차 형신하고, 정읍현으로 돌려보내 가두어 1차 형신하고 진술 받을 일로 관문을 발송함. ○ 1차 형신하고 석방함.>

부안 김지갑(金之甲)<창고 색리로 환곡을 고가로 돈을 만든 죄로 1차 형신하고, 부안현으로 돌려보내 가두어 1차 형신하고 진술 받을 일로 관문을 발송함. ○ 1차 형신하고 석방함.>

최득용(崔得用)<노인들을 능멸하고 술주정하며 잡기를 부린 죄로 1차 형신하고 석방함.>

함평 장은갑(張殷甲)<칼을 뽑아들고 패악을 부리고 사채를 놓아 이자를 불린 죄로 1차 형신하고 석방함.>

흥덕 박세유(朴世維)<창고 색리로 사사로이 집전(執錢)하여 이익을 취한 죄로 1차 형신하고 석방함.>

二十四日. 該縣監及金堤郡守、井邑縣監、高敞縣監、靑巖察訪入見. 黔毛浦萬戶千數宗, 延命後入見. 早朝離發, 午抵古阜四十里中火.<本邑支供> 該郡守金裕淳、泰仁縣監沈能淑入見. 題民狀十八張.

24일. 흥덕 현감 및 김제 군수·정읍 현감·고창 현감·청엄 찰방이 입견하였다. 검모포(黔毛浦) 만호 천수종(千數宗)이 연명한 후에 입견하였다. 이른 아침 출발하여 낮에 고부 40리에 이르러 점심을 먹었다.<정읍군에서 접대함.> 정읍 군수 김유순(金裕淳)·태인 현감 심능숙(沈能淑)이 입견하였다. 민장 18장을 데김하였다.

同日. 夕抵泰仁四十里, 止宿東軒. 該縣監沈能淑、萬頃縣令尹守澈、臨陂縣令李宜翼、金堤郡守李玄好、龍安縣監林貞鎮入見. 參禮察訪, 以夫馬差使員入見. 題民狀二十三張.

같은 날. 저녁에 태인 40리에 이르러 동헌에서 머물러 묵었다. 태인 현감 심능숙(沈能淑)·만경 현령 윤수철(尹守澈)·임치 현령 이의익(李宜翼)·김제 군수 이현호(李玄好)·용안 현감 임정진(林貞鎭)이 입견하였다. 삼례 찰방이 부마차사원으로 입견하였다. 민장 23장을 데김하였다.

二十五日. 該縣監及萬頃縣令、臨陂縣令、金堤郡守、龍安縣監, 入見辭去. 參禮察訪入見. 早朝詣披香亭, 仍爲離發, 午抵金溝四十里中火. 該縣令金錫喜、參禮察訪入見. 題民狀十六張, 推閱各邑罪人.

興陽宋彥采、李右辰,<以座首別監, 災結偷食罪. 各刑一次放.> 臨陂陳元達<以戶長, 防結取剩, 又使其弟權利都賈罪. 分付還送本邑.> 益山金應默,<以都吏, 私執饒結, 苟充殘結罪. 刑一次放.> 參禮梁永己,<以昨年驛位土都色吏, 位番半分租, 私自反弄, 報不以實罪. 刑一次, 還囚本驛, 決杖三十度放.> 李俊漢.<以通引, 勒買位, 卜大村, 免役錢捧納罪. 刑一次, 還囚本驛, 決杖三十度放.>

25일. 태인 현감 및 만경 현령·임피 현령·김제 군수·용안 현감이 입견하여 하직하고 갔다. 삼례 찰방이 입견하였다. 이른 아침에 피향정(披香亭)으로 나가 곧이어 출발하여 낮에 금구 40리에 이르러 점심을 먹었다. 금구 현령 김석희(金錫喜)·삼례 찰방이 입견하였다. 민장 16장을 데김하고, 각 읍의 죄인을 심문했다.

흥양 송언채(宋彥采)·이우진(李右辰)<좌수 및 별감으로 재결(災結)을 훔쳐먹은 죄로 각각 1차 형신하고 석방함.>

임피 진원달(陳元達)<호장(戶長)으로 방결(防結)하면서 차액을 취하고, 또 그의 아우를 시켜 매점매석<sup>268)</sup>하여 이득을 독점한 죄로 임피로 돌려보낼 것을 분부함.>

익산 김응묵(金應默)<도리(都吏)로 비옥하여 수확이 많이 나는 전답을 사사로이 차지하고는 재해입은 잔결(殘結)로 충당한 죄로 1차 형신하고 석방함.>

삼례 양영기(梁永己)<작년 역위토(驛位土)의 도색리(都色吏)로 역위답의 절반으로 나누는 도조를 사사로이 농간 부려 사실대로 보고하지 않은 죄로 1차 형신하고, 삼례역으로 돌려보내 가두어 장 30대를 치고 석방함.>

268) 매점매석 : 원문의 도고(都賈)로 조선 후기에 있어서의 상품을 매점(買占) 또는 독점(獨占)하는 상업 행위와 개인 또는 조직의 상업 기구를 말한다. 도고(都雇)·도고(都庫)·도가(都家) 등으로 불리우며, 독점 행위 그 자체는 도집(都執) 혹은 도취(都聚)라고도 한다.

이준한(李俊漢)<통인(通引)<sup>269</sup>>으로 자리를 억지로 사서 큰 손락을 택하여 정해 면역전을 거두어 바친 죄로 1차 형신하고, 삼례역에 돌려보내 가두어 장 30대를 치고 석방함.>

同日. 全州三十里, 還營, 中營將申錫祐, 領率大旗幟, 迎候五里程三川邊, 還營後入見.

같은 날. 전주 30리에 이르러<sup>270</sup> 감영으로 돌아왔다. 중영장 신석우(申錫祐)가 대기치(大旗幟)를 거느리고 삼천변(三川邊) 오리정에서 영접하였다. 감영으로 돌아온 뒤에 입견하였다.

二十六日. 中軍朴致福, 延命後入見. 參禮察訪徐承烈入見辭去.

26일. 중군(中軍) 박치복(朴致福)이 연명한 후에 입견하였다. 삼례 찰방 서승렬(徐承烈)이 입견하여 하직하고 갔다.

同日. 封還營啓.

【狀啓】臣以農形看審事, 今月十六日, 發巡緣由, 前已馳啓爲白有在果. 自全州、歷鎮安、任實、南原、谷城、玉果、潭陽、昌平、光州、長城、靈光、茂長、高敞、興德、古阜、泰仁、金溝等十六邑, 今二十五日還營, 而所經田野一一看審. 臣行未到處, 分遣褊裨, 詳細摘奸是白如乎. 全州段, 早稻幾盡刈穫中, 晚稻早移者, 次第向熟, 最晚移則蕭索不茁, 含縮不發, 間或發穗者, 亦皆直立不垂, 實穎無幾是白遺. 鎮安段, 母論早晚移, 舉皆婆娑不茂, 穗粒稀疎, 而其中最晚移者, 間多有全不掛鎌處是白遺. 任實、南原、谷城、玉果、潭陽、昌平、光州、長城等八邑段, 山野之間, 川湫相錯, 水饒土厚處, 早移登熟者, 假量爲什之三四, 而最晚移之, 已判全荒, 與全州、鎮安, 無異是白遺. 靈光段, 土性自來瘠薄, 得雨亦最後時, 原野之畚, 晚移過半, 而往往有全坪未移處. 至若西南面地形污下處, 酷被水災, 加之以海溢鹹損是白遺. 茂長段, 堤狀灌溉之畚, 間或成實, 沿野斥鹵之地, 尤多災損, 與靈光無甚異同是白遺. 高敞、興德段, 有水根洞畚, 間間登熟, 而依山高燥處, 亦多失稔是白遺. 古阜、泰仁、

269) 통인(通引) : 지방 관아에서 수령(守令)의 곁에서 호소(呼召)·사환(使喚)에 응하던 이속이다. 중앙에 배속되어 이와 같은 일을 한 자는 청지기(廳直)라 하였다.

270) 금구에서 30리길을 가서 전주에 도착하였다는 의미이다.

金溝等三邑段，地形平衍，水利頗優，早移者，什居六七，較勝於高敞等邑，而古阜則沿浦各面，未移最多是白遣。田穀段，黍粟豆太，幾盡向熟，而毋論沿峽，隨其土品之沃瘠，雖有優劣之不同，槩言之則，僅爲免歉。木麥方張，結穀而代播者，霖潦頻仍，間多消澌是白遣。木綿段，備經風雨，花房腐落之狀，連因邑報，有所領畧是白加尼。以今巡路所見言之，南原、光州、玉果等邑，畝是道內饒綿之地，無山無野，綿田彌望，而莖葉非不茁茂，顯房全不結着，鎮日經過，未見吐絮，竟畝摘取，尚不盈掬是白分叱除良。在前七八月之交，新綿爛漫而今年則，道內場市，絕無新綿賣買，如此綿歉，挽近所無是白乎於。遣裨摘奸處農形段，雲峯、長水等邑，山高水冷，農候最早，而早種則被旱萎枯，晚移則遇潦不茁，舉未免歉荒是白遣。沃溝、珍島、興陽、順天等，左右沿野諸邑，淤堰引溉處，早移者間或成熟，而中庚前後，畝晚移之，全不食實，初無此疆彼界之別。海溢、虫蝕、川沙、風雹等災傷，雖有淺深之差殊，而大抵無邑無之是如爲白如乎。處處民人，十百成羣，遮道呼訴。臣以安意奠接之意，面面慰諭是白乎乃，目下景色極其愁慘，言念民事，誠不勝萬萬悶然是白乎所。似此之歲，檢災之節，尤不可不到底審慎乙仍于，以十分精核，毋或漏濫之意，各別申飭於列邑守宰處爲白乎於。嗣後形止，鱗次登聞計料，緣由并以馳啓爲白臥乎事。

같은 날. 감영에 돌아왔음을 보고하는 장계를 봉하다.

【장계】 신은 농사의 형편을 살피는 일로 이번 달 16일 순행을 떠난다는 연유로 전에 이미 치계 하였습니다. 전주에서 진안·임실·남원·곡성·옥과·담양·창평·광주·장성·영광·무장·고창·흥덕·고부·태인·금구 등 16개 고을을 거쳐 이번 25일 감영에 돌아왔습니다. 경유한 전담과 들판을 일일이 살폈고, 신이 미처 가지 못한 곳은 편비(褊裨)를 나누어 보내 상세하게 조사하도록 하였습니다.

전주는 이른 벼를 거의 다 베어 수확 중이고, 늦은 벼는 일찍 이앙한 것은 차례로 익어가고 있으며, 가장 늦게 이앙한 것은 볼품없이 싹이 나지 않고 안으로 머금고만 있어 발아되지 않았으며 간혹 이삭이 핀 것들 또한 모두 곳곳이 서있고 고개를 숙이지 않았으니 실한 이삭이 거의 없습니다. 진안은 일찍 이앙했든 늦게 이앙했든지 논할 것 없이 대부분 시들고 처져서 무성하지 않고 이삭과 낱알이 드물고 성글며, 그 중 가장 늦게 이앙한 것들은 거뭇들일 만한 곡식이 전혀 없는 곳들이 많습니다.

임실·남원·곡성·옥과·담양·창평·광주·장성 등 8개 고을은 산과 들 사이에 천보(川湫)들이 서로 얽혀있어 물이 많고 토질이 두터운 곳은 일찍 이양하여 곡식이 잘 여운 것이 대략 열에 서넛이고, 가장 늦게 이양하여 이미 완전히 황폐한 것으로 판명된 곳은 전주·진안과 다름이 없습니다. 영광은 토질이 원래 척박하고 비가 온 것도 가장 늦은 때여서 언덕과 들판에 있는 논은 늦게 이양한 것이 반절을 넘었고 간혹 전혀 이양하지 못한 곳도 있습니다. 서남면처럼 지형이 낮은 곳은 수재(水災)를 심하게 입은 데다 해일까지 덮쳐 소금기로 손해를 보았습니다.

무장은 독과 보에서 물을 댄 논은 간혹 열매를 맺었으나 바닷가 연안의 소금기 있는 척박한 땅은 재해로 손실을 입은 곳이 더욱 많아 영광과 크게 다름이 없습니다. 고창·흥덕은 물의 근원이 논을 통하여 간간히 잘 익었으나 산에 기대어 높고 건조한 곳 또한 대부분 여물지 못하였습니다. 고부·태인·금구 등 3개 고을은 지형이 평평하여 물대기가 자못 넉넉하여 일찍 이양한 곳은 열에 여섯 일곱으로 고창 등의 고을보다 비교적 낫지만, 고부는 포구 가까이 있는 각 면들은 이양하지 못한 곳이 가장 많습니다.

밭곡식은 기장·조·콩은 거의 다 익어가고 있는데, 연안이나 산골을 막론하고 토질이 비옥하고 척박함에 따라 비록 우열이 같지 않을지라도 대략 말하면 겨우 흉년을 면하게 될 것 같습니다. 메밀은 바야흐로 한창인데 메마른 논[結穀]에 대신 파종한 것이 장마가 빈번히 계속되어 많이들 비에 녹아 없어졌습니다.

목화는 온갖 풍우를 겪어 꽃송이가 썩어 떨어지는 상황을 고을들에서 연달아 보고하여 대강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순행길에서 본 것으로 말씀드리면, 남원·광주·옥과 등의 고을은 도내에서 가장 풍요로운 면화 지역으로 산이나 들 할 것 없이 면화 밭이 가득 펼쳐져 보이고 줄기와 잎이 싹터 무성하지 않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큰 꽃송이가 전혀 맺히지 않아 평소 같은 시간이 지났어도 면화의 솜망울을 터트린 것을 보지 못하여 결국 이랑에서 면화를 딴 것이 한 줌도 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전 같으면 7,8월 사이에는 햇면화가 흐드러졌었는데 올해는 도내 장시에 햇솜 매매가 전혀 없습니다. 이 같은 면화 흉작은 근래 없던 일입니다.

비장(裨將)을 보내 살펴 조사한 곳은 농사 형편은 운봉·장수 등의 고을은 산이 높고 물이 차서 농사철이 가장 빠릅니다. 일찍 파종한 곳은 가뭄을 입어 시들어 말라버렸고 늦게 이양한 곳은 장마를 만나 싹이 트지 않아 모두 흉년을 면치 못했

습니다. 옥구·진도·흥양·순천 등 바닷가 주변 들판의 여러 고을들은 보와 독에서 물을 끌어 들인 곳 가운데 일찍 이양한 곳은 간혹 곡식이 여물었습니다. 그러나 중복 전후로 가장 늦게 이양한 곳은 전혀 곡식을 먹을 수 없어서 애초에 이 고을 저 고을 경계의 구별이 없습니다.

해일·충해·넋가의 토사·바람·우박 등의 재해는 비록 심하고 약한 차이는 있을지라도 대저 재해 없는 고을이 없습니다. 곳곳에서 백성들이 십, 백으로 무리를 이루어 길을 막고 호소합니다. 신은 마음을 안정하고 정착해 살라는 뜻으로 한 사람씩 위로하고 타일렀습니다. 그러나 눈앞의 광경은 비참함이 극심하여 백성의 일을 생각하면 진실로 걱정스런 마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 같은 해에 재결(災結)을 검속하는 절목은 더욱 철저하게 살피고 삼가지 앓을 수 없기 때문에 충분하고 자세하게 조사하여 흑시라도 새고 넘치지 말라는 뜻을 열읍 수령들에게 각별히 신칙하였습니다. 이후의 상황은 차례로 아뢰어 올릴 생각입니다. 이러한 연유로 아올러 급히 아립니다.

二十七日.

27일.

二十八日. 羣山僉使李玄升來見.

28일. 군산 첨사 이현승(李玄升)이 와서 보았다.

二十九日. 羣山僉使入見辭去.

29일. 군산 첨사가 입견하고 하직하고 갔다.

## 6. 1833년(순조33) 9월 : 방곡(防穀) 및 권기(勸起)를 관문하다

初一日. 昧爽詣客舍, 行望闕禮. 中軍、檢律, 同爲進參, 還營軒. 高山顯監宋文熙來見.

1일. 먼동이 틀 무렵 객사에 이르러 망궐례를 행했다. 중군과 검률이 함께 진참하고 영현으로 돌아왔다. 고산 현감 송문희(宋文熙)가 와서 보았다.

初二日. 高山縣監入見辭去.

2일. 고산 현감이 입견하여 하직하고 갔다.

同日. 以防穀事, 發關各邑鎮.

【關文】爲相考事. 今秋穡事, 無論沿峽, 未免歉荒, 來頭民食之艱, 可以坐推是在如中, 卽聞各處商賈, 來泊沿邑浦口, 逗留觀望, 潛謀貿遷分叱除良, 甚至有斗斗升升高價買取之弊云. 唉彼愚氓, 只見厚直之過望, 不念夕炊之有無, 掇出口吻之中, 散諸隣境之外, 此乃昨年所以歲非不登, 而至于今, 市直翔貴, 斯民嗷嗷者是置. 此若不預防而逆塞, 嚴戢而痛禁, 則復蹈前轍, 必致狼狽乙仍于, 茲以別關申飭爲去乎. 到卽各浦口及村店場市之間, 一一查括, 如或有船賈馬商輩留接出沒者是去等, 當刻內驅逐於境外爲旆. 其住接夥計之類, 各別徵治是矣, 關到日時, 舉行形止爲先報來, 宜當尙事.

같은 날. 방곡(防穀)<sup>271)</sup>의 일로 관문을 각 읍과 진에 발송하였다.

【관문】상고(相考)할 일. 금년 가을 농사는 연읍(沿邑)과 산협(山峽)을 논할 것 없이 흉년을 면치 못할 것이니 앞으로 백성들이 먹는 어려움을 앞서서 헤아릴 수 있다. 이번에 듣자하니, 각처의 장사치들이 연읍의 포구에 배를 대고 머물러 관망하며 몰래 곡물을 사서 옮기려고 할 뿐 아니라, 심지어 말이면 말로 되면 되대로 고가로 사 들이려는 폐단이 있다고 한다. 아, 저 우매한 백성들은 단지 기대 이상의 후한 값만 보고 저녁에 취사(炊事)할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먹고 있는 것들도 빼내어 인접한 경내 밖으로 퍼내니, 이는 곧 작년에 흉작이 아니

271) 방곡(防穀) : 곡식(穀食)을 다른 곳으로 실어 내지 못하게 막는 것을 이른다.

었는데도 지금은 시가(市價)가 등귀(騰貴)하여 이것으로 백성들이 원망하고 아우성치는 이유이다. 만약에 이것을 예방(豫防)하여 엄하게 단속하고 단호하게 금하지 않으면 다시 전철을 밟아 반드시 낭패에 이를 것이므로 이에 각별히 관문으로 신칙한다.

관문이 도착하는 즉시 각 포구와 주막과 시장 속을 낱날이 조사하여 찾아내고, 만일 흑시라도 선고(船賈)와 마상(馬商) 무리들이 머물며 출몰하는 자가 있거든, 마땅히 즉시 경내 밖으로 몰아내야 한다. 거기에 머물러 사는 심부름꾼들을 각별히 징계하여 다스리되, 관문이 도착하는 날짜와 거행한 일의 사실 전말을 우선 보고함이 마땅할 일.

同日. 以寶城郡蘆洞面、道村面勸起陳田事，發關。

【關文】爲相考事。本郡蘆洞面竹防村、道村面鶴洞村兩處，自來土腴民殷，退計數三十年前，多至爲千餘戶，少不下數百戶是加尼。挽近以來，荐經歉荒，人亡戶縮，良田美畦，一望陳荒云。當此土貴如金之時，豈有無端等棄之理。只緣佃戶無幾，賦役自如，全坪之稅，替徵於一夫一村之役，專責於單戶，雖欲奠其居耕其土，而不可得矣。目今勸起之方，專在募民，而募民之道，當先蠲役是如乎。兩村陳廢處田結段，雖不得永頃於元帳付是乃，自營門從當有方便牽補，姑爲全減之道，同災結數爻，區別修成冊，牒報爲旆。外他諸般徭役段，自本邑一切蠲除，雖粒米分錢，限十年，切勿侵責之意，成節目施行爲旆。以此關辭，曉諭民人，使之還集該村，一齊起墾爲乎矣。地形低下，可灌可漑處，預先修治，待明春作畚爲旆。高燥平衍之地，林木蕪蔚處，並令芟刈燒菑，趁今種麥，如有種子不足者是去等，就留庫還牟中，量宜別分爲旆。若無牛隻是去等，以令今番所捧五隻牛贖，買得雌牛五匹，分授各里，一以爲耕墾，一以爲孳殖是矣。同牛隻禾毛色，及該里任掌等姓名，修成冊，報來爲旆。招集勸相之方，別加留意，俾有改觀之實效，宜當向事。

같은 날. 보성군 노동면·도촌면에 진전(陳田)을 권장하여 개간하는 일로 관문을 발송했다.

【관문】상고할 일. 본군 노동면 죽방촌과 도촌면 학동촌 두 곳은 옛날부터 땅이 비옥하고 백성이 번성하여 수삼십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 헤아려보면 많게는 천여 가구에 이르렀고 적어도 수백가구 아래로는 되지 않았다. 근래 들어 흉년을 거듭



겪으면서 사람들은 없어지고 가호도 줄어들고 좋은 전답들이 모두 진황(陳荒)되었다고 한다. 이 같이 땅이 귀하기가 금 같은 때에 어찌 까닭 없이 등한히 하여 버려둘 이치가 있겠는가? 다만 전호(佃戶)가 얼마 안 되지만 부역은 그대로인 연유로 온 들의 세금을 1농부 1마을의 역(役)으로 대신 징수하여, 한 호에 전적으로 책임 지우니, 비록 그곳에 살 곳을 정하고 그 땅을 경작하려고 할지라도 할 수가 없다.

지금 진전(陳田)을 기경하는 것을 전장하는 방법은 오로지 백성을 모으는데 있고, 백성을 모으는 방법은 우선 역을 면제해 주어야 한다. 따라서 두 마을의 묵혀서 황폐한 곳의 전결(田結)은 비록 원 장부에서 영원히 제외할 수는 없으나, 감영으로부터 편리한대로 보수(補修)하여 우선 모두 감면하고, 이 재결(災結)의 수효는 구별해서 성책(成冊)으로 만들어 첩보하라. 이외 다른 여러 요역(徭役)은 본 읍에서 일체 면제하여 비록 낱알이나 푼돈이라도 10년을 기한하여 절대로 침해하지 말라는 뜻으로 절목을 만들어 시행하라.

이 관문의 내용을 백성들에게 효유하여 그들을 해당 마을로 다시 모이게 하여 일제히 개간하도록 하라. 지형이 낮아 물을 댈 수 있는 곳은 미리 먼저 보수하여 내년 봄을 기다려 논을 만들어라. 높고 메마른 넓은 평지의 수목이 울창한 곳은 모두 베어내고 묵힌 밭을 불사르고 때에 맞추어 보리를 심되 만일 종자가 충분하지 않으면, 창고에 남아있는 환곡 보리 중에서 적절히 나눈다. 만약 소가 없거든 금번에 받은 소 5마리 값의 속전으로 암소 5마리를 사들여 각 마을에 나누어 주고 한편으로는 개간하는데 쓰고 한편으로는 새끼 내어 번식시키는데 쓰라. 다만, 이 5마리 소의 화모색(禾毛色)<sup>272)</sup> 및 해당 마을의 임장(任掌) 등의 성명은 책으로 정리해서 보고하라.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권면하고 도와주는 방법은 특별히 더욱 마음에 새겨 달라진 실질적 효과가 있게 함이 마땅할 일.

初三日. 食後, 石榴、柚子進上監封後, 封啓.

【狀啓】 九月令石榴五箇, 今九月初三日, 薦新于肇慶廟爲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十月令柚子五箇, 今九月初三日, 薦新于肇慶廟爲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臥乎事.

272) 화모색(禾毛色) : 이빨 수와 털의 색이란 말로, 소는 이빨 수로 연령을 헤아리고 털색으로 건강을 알 수 있다. 곧 연령과 건강 상태를 뜻하는 말이다.

9월 3일. 식후에 석류·유자 진상품을 감봉(監封)한 뒤에 장계를 써서 봉하였다.

【장계】 9월분의 석류 5개는 이번 9월 3일 조경묘에 천신(薦新) 하였기에 이러한 연유로 치계(馳啓) 합니다. 10월분의 유자 5개는 이번 9월 3일 조경묘에 천신 하였기에 이러한 연유로 치계(馳啓) 합니다.

初四日. 古群山僉使金寬善, 馳進入謁, 仍爲辭去. 淳昌郡守沈宜復, 上京之路來見.

4일. 고군산 첨사 김관선(金寬善)이 급히 와서 입알(入謁)하고 그대로 하직하고 갔다. 순창 군수 심의복이 상경하는 길에 와서 보았다.

初五日. 泰仁縣監沈能淑來見.

5일. 태인 현감 심능숙이 와서 보았다.

初六日. 泰仁縣監入見辭去.

6일. 태인 현감이 하직하고 갔다.

同日. 題全州府檢案.<致死李福孫, 偷賣李英福器皿, 則捕校兩人, 來到威脇, 仍索十五兩錢, 故同福孫, 結項致死, 被告漢在逃未捉事. 初檢官, 全州兼任益山郡守李源吉.>

【題】屍帳捧上是在果. 觀於臚錄, 究無受毆之痕損, 參以供招, 未見被勒之證左, 獄無可疑, 何須覆檢屍體, 卽爲出給埋瘞爲旆. 見賊捉賊, 固渠職分而討索重賂, 將欲何爲死者行事? 蹺逕莫掩. 雖不可謂誤捉平民, 而威脅致死之律, 渠輩雖有百喙, 烏得掉脫? 憑藉賊情, 作弊民間, 前後營飭, 何等申嚴, 而不少知戢. 惟意跳踉, 至有此人命致死之舉. 言念法綱, 萬萬寒心. 在逃是在捕卒兩漢中其一, 卽曾經捕校之子云, 其非時任校卒, 可以推知. 府內曾經捕校之子若侄, 其麗不億. 若使此輩, 舉皆假托出使, 行惡閭里, 則此何異於驅送百虎狼於村里, 恣其噉人是乙噓? 先從現發者, 施以懲一礪百之典, 然後無賴庶有懲戢, 村民可以安堵是如乎. 分付中鎮營, 多發譏詞, 定限三日, 刻期捉納爲乎矣. 萬一過限是去等, 次知首校, 不待更關, 着枷上使, 以爲加律

嚴繩之地爲<sup>ㄷ</sup>。金豆業<sup>ㄷ</sup>，被人誣引，雖甚憤冤，私門結縛，本有當律，嚴杖三十度放送爲<sup>ㄷ</sup>。李英福<sup>ㄷ</sup>，家伙見失，探得贓跡，初不聲張，捨錢推去。觀厥處事，初無所失。屍親被打之招，不過荷杖之習。豆業愆愆之云，亦出移罪之計，分揀放送。餘外諸人<sup>ㄷ</sup>，別無更查之端，一體放送，宜當<sup>ㄷ</sup>。

같은 날. 전주부 검안에 데김하였다.<죽은 이복손(李福孫)은 이영복(李英福)의 그릇들을 훔쳐 팔았는데 포교(捕校) 두 사람이 와서 위협하며 15냥의 돈을 요구하였다. 그 때문에 복손이 목을 매어 죽음에 이르렀고 피고 농들은 도망하여 아직 잡지 못한 일. 초감시관 전주 검임 익산 군수 이원길.>

【데김】시장(屍帳)을 받아 보았다. 검시 기록을 보면 끝내 맞은 흔적이 없고 진술을 참조하면 강압을 당한 증거를 보지 못했다. 옥사는 의심할 것이 없으니 어찌 반드시 시체를 복검해야만 하겠는가? 바로 내주어 묻게 하라. 장물을 보고 도적을 잡는 것이 진실로 그의 직분이지만 많은 뇌물을 토색질 하였으니 어찌 죽은 자를 위하여 일을 하려고 하였겠는가? 드러난 자취는 가릴 수가 없다. 비록 백성을 잘 못 잡았다고 말할 수는 없을지라도 위협하여 죽게 한 죄는 그들이 비록 백 개의 입이 있더라도 어찌 벗어날 수 있겠는가? 도둑질한 정황을 빙자하여 민간인에게 폐단을 일으키는 것은 감영에서 전후로 얼마나 엄히 금하였는데 조금도 그칠 줄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인가? 제멋대로 할 것만 생각하여 이렇게 인명이 죽게 되기에 이르렀다. 법의 기강을 생각하면 매우 한심하다.

도망 간 포졸 두 농 중에서 그 한 농은 바로 일찍이 포교를 지냈던 자의 아들이라고 하니, 그는 현직 교졸이 아님을 미루어 알 수 있다. 부내(府內)에 전임 포교의 자식과 조카는 그 수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만약 이러한 무리들이 대부분 출사(出使)<sup>273</sup>를 핑계 대며 여염 간에서 악행을 저지른다면, 이는 촌리에 온갖 호랑이와 이리떼를 내보내 사람을 함부로 잡아먹게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먼저 발각된 자부터 한 사람을 징계하여 여러 사람을 경계하는 법으로 벌한 뒤에야 무뢰배들이 그런 짓을 그만둘 수 있고 촌민이 안도할 수 있다. 중영(中營)·진영(鎭營)에 분부하여 기찰이 빈번한 것은 3일을 한정하여 잡아들이되, 다만, 만약 기한을 지나거든 담당 수교(首校)는 다시 관문을 기다릴 것 없이 칼을 씌워 올려 보내 법으로 엄하게 다스릴 수 있도록 하라.

273) 출사(出使) : 포교(捕校)가 도둑을 잡으라는 명령을 받고 멀리 출장하는 것을 말한다.

김두업(金豆業)은 무고를 당해 비록 매우 분하고 원통할지라도 개인의 집에서 남을 묶은 것은 본래 합당한 법률이 있으므로 장형 30대를 엄히 집행하고 석방하라.

이영복(李英福)은 세간을 잃어버리고 장물의 행적을 찾았으나 처음엔 소리 지르지 않고 돈을 놓고 찾아 갔으니 그의 처리한 일을 보면 애초에 잃어버린 바가 없다. (이복손의) 시친이 구타당했다고 진술한 것은 적반하장(賊反荷杖)하는 습속에 지나지 않는다. 김두업이 종용했다는 것도 죄를 전가한 계략이 드러났으니 분간하여 석방하라. 그 밖의 나머지 사람들도 다시 조사할 단서가 없으니 모두 석방함이 마땅할 일.

初七日. 題珍山郡檢案.<正犯朴道永, 盜出朴班牛隻, 牽來之際, 申召史與其子若女, 逢着路上, 還奪其牛, 則同朴道永, 申召史三母女, 一時併命事. 查官珍山郡守李奎憲.>

【題】查案捧上是在果. 朴道永之爲正犯的證有四. 其去也, 申女牽牛, 渠則追蹤是如可, 其歸也, 牛韁牽在渠手, 申女無復踪影一也. 田夫詰牛, 無辭捨去, 苟非自作之業障, 胡無一言之支吾二也. 牛繫陳家, 更偷以去, 追者及之, 識認面貌, 場市見捉, 張本於此, 殆若鬼付而神使三也. 伊日逆旅, 巧逢苦主, 氣沮意蹙, 變易姓名, 顯有藏蹤之跡, 有若追捕在後然四也. 殺越人于貨之賊, 從古何限, 而俄頃之間, 戕併三命, 豈有若此囚之兇悍慳毒者乎? 大凡殺獄之必重檢驗, 特以情節之疑眩, 而實因執定, 非檢莫可耳. 苟其詞證俱備, 形跡綻露, 則雖在十年二十年之後良置, 不待掘檢, 成獄償命, 歷考前牒, 已例班班. 同朴道永身乙, 以別杖箇箇考察, 嚴刑準次爲乎矣. 行兇情節, 到底盤問, 以刃以挺之器仗, 或踢或毆之部位, 一一發問目捧直招, 以代脉錄之實因懸錄爲旆. 雖不檢驗, 獄體至嚴, 應問各人等, 何不具格取招是隱喻? 舉行刑吏段, 別附過爲旆. 旣非無主僵屍, 無怪不行例檢是乃, 不會告官, 任自許埋, 妄率極矣. 摘奸刑吏段, 決杖三十度, 懲礪放送尙事.

7일. 진산군 검안을 데김하였다.<정범 박도영(朴道永)이 박씨 양반의 소를 훔쳐내 끌고 올 때 신조이가 그의 아들·딸과 함께 길에서 만나 그 소를 다시 빼앗으니, 박도영 신조이 세 모녀를 동시에 모두 죽인 일. 조사관은 진산 군수 이규현.>

【데김】사안을 받아 보았다. 박도영이 정범인 확실한 증거가 4가지다. 그가 갈 때엔 신조이가 소를 끌었고 그는 뒤쫓아 갔는데, 그가 돌아올 때엔 소고삐를 자기 손으로 끌었고 신조이는 다시 증거가 없는 것이 하나다. 농부가 소에 대하여 따져

물었을 때 말없이 놓고 가버렸다. 진실로 스스로 지은 업장(業障)<sup>274</sup>이 아니면 어찌 한 마디도 대응하는 말이 없겠는가 하는 것이 둘이다. 소를 진(陳)씨 집에 매어 놓았다가 다시 훔쳐갔는데 쫓는 자가 이르러서 그를 알아보아 장사에서 잡혔다. 여기에 장본(張本, 일이 크게 일어나는 근원)이 있으니 거의 귀신이 알려주고 신이 시킨 것 같음이 셋이다. 그날 여관에서 공교롭게 고주(苦主)를 만나서 기가 죽고 마음이 위축되어 성명을 바꾸는 등 분명하게 종적을 감춘 흔적이 있는데도 마치 추포(追捕)가 있는 뒤에 그렇게 한 것 같음이 있는 것이 넷이다. 사람을 죽이고 재화를 빼앗는 도적은 예로부터 매우 많았지만 잠깐 사이에 3명을 모두 죽였으니 어찌 이 죄수같이 흉악하고 사나우며 무자비하고 독한 자가 있겠는가?

대저 살인의 옥사는 반드시 두 번 검험하는 것은 특히 정황이 의심스러워서 실인(實因)을 잡아내는 것이 아니면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진실로 그 증언이 모두 갖추어지고 형세의 자취가 드러나 비록 10년 20년이 지난 뒤라도 묻었던 시체를 파내어 검사하는 것을 기다릴 것도 없이 옥사를 결정하여 사형에 처했음을 이전의 첩보를 낱낱이 고찰하면 전례(前例)들이 분명하다. 동(同) 박도영의 몸을 별장(別杖)으로 개개고찰(箇箇考察)하고 준차(準次)<sup>275</sup>로 엄히 형신하라. 사람을 죽인 정황을 샅샅이 캐물어 조사하고, 칼과 몽둥이 같은 기구를 사용한 것과 혹은 발로 찬 곳과 손으로 때린 부위를 하나하나 문목(問目)을 만들어 사실대로 진술을 받아 검시(檢屍) 기록의 실인을 대신하여 장부에 기록하라.

비록 검험하지 않았을지라도 옥체는 지극히 엄격한 것이니 응당 각 사람들에게 물어야 하는데 어찌 격식을 갖추어 진술을 받지 않았는가? 거행한 형리는 별도로 부과(附過)하라. 주인이 없는 시체가 아니라서 검험을 행하지 않은 것은 괴이할 것이 없으나, 일찍이 관에게 알리지 않고 마음대로 묻게 허용한 것은 경솔함이 매우 크다. 조사한 형리는 30대를 치고 징계하여 석방할 일.

初八日. 判官自京下來入見. 礪山府使許曠, 填差南原關王廟祭官, 進去之路, 入見辭去.

274) 업장(業障) : 불교에서 말하는 정도(正道)를 해치는 중생(衆生)의 탐욕(貪欲)·진혜(瞋恚) 등을 말한다.

275) 준차(準次) : '차수(次數)를 채우다'의 뜻인데, 여기서 차수(次數)는 형신(刑訊)할 때에 1차례에 곤장 30대를 넘지 못하고 도중에 자복(自服)을 하더라도 남은 대수를 채운다는 의미.

8일. 판관이 서울에서 내려와 입견하였다. 여산 부사 허숙이 남원 관왕묘(關王廟) 제 관으로 임명되어 가는 길에 입견하여 하직하고 갔다.

初九日. 食後以肩輿, 往南固山城, <在府之南五里許> 登南將臺, 判官來會. 少焉登億景臺, 旋至萬景臺. 極目騁眺, 闐闐撲地, 如對几案, 而臺之西層壁間, 刻鄭圃隱詩矣. <千仞岡頭石逕橫, 登臨使我不勝情. 青山隱約扶餘國, 黃葉繽紛百濟城. 九月高風愁客子, 百年豪氣誤書生. 天涯日沒浮雲合, 矯首無由望玉京> 仍詣鎮軒, 暫憩後還營軒.

9일. 식후에 견여(肩輿)로 남고산성<전주부 남쪽 5리쯤에 있음.>에 가서 남장대(南將臺)에 올랐다. 판관이 와서 함께 했다. 억경대(億景臺)에 올라 바로 만경대(萬景臺)에 이르렀다. 멀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데까지 둘러보니 시가(市街)가 가득한 것이 마치 책상을 대하는 것 같고 만경대의 서쪽 절벽 사이에 포은(圃隱) 정몽주(鄭夢周)의 시<sup>276)</sup>가 새겨져 있었다.<천길 산등성이 돌길을 돌아서, 올라서 바라보니 감회가 그지없네. 청산 속에 부여국 자취 희미한데, 누른 잎만 어지러이 백제성에 떨어지네. 9월 소슬바람 나그네 시름 짓게 하고, 백 년 호기는 서생을 혼란케 하네. 하늘가에 해는 지고 뜬 구름만 모여드니, 머리 들어 송도(松都)를 바라볼 길 없으라.> 그대로 진헌(鎭軒)<sup>277)</sup>으로 가서 잠시 선 뒤에 영헌으로

276) 포은(圃隱) 정몽주(鄭夢周)의 시(詩) :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고, 전주 남고산 만경대(萬景臺)에는 이 시를 병인(丙寅 1746)년에 진장(鎭將) 김의수(金義壽)가 새긴 글이 있다. 포은집 권2에는 정몽주가 우왕(偶王) 3년(1380)에 이 시를 지은 배경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경신년에 왜적이 경상도와 전라도의 여러 고을을 함몰하고 지리산에 둔을 쳤는데, 이 원수(元帥)를 따라 운봉에서 싸워 이겨 노래하며 돌아올 때에 길이 완산을 지나게 되므로 이 대에 올랐다.[歲在庚申 倭賊陷慶尙 全羅諸州 屯于智異山 從李元帥戰于雲峯 凱歌而還 道經完山 登此臺]”. 그러나 시 제목이 ‘등 전주망경대(登全州望景臺)’로 되어 있어 문집에 기록할 때 남고산성의 ‘만경대(萬景臺)’를 ‘망경대(望景臺)’로 잘못 쓴 것으로 보이고, 맨 끝구가 “옥경을 바라볼 길 없으 슬프구나[惆悵無由望玉京]”로 조금 다르게 아래와 같이 실려 있다. “[千仞岡頭石徑橫 登臨使我不勝情 青山隱約扶餘國 黃葉繽紛百濟城 九月高風愁客子 百年豪氣誤書生 天涯日沒浮雲合 惆悵無由望玉.]”(『圃隱集 卷2』) 또 고전번역원 종합DB 자료에는 동문선(東文選) 제16권에 실려있는 ‘등 전주망경대(登全州望景臺)’ 포은의 시를 아래와 같이 원문과 번역문을 소개 하고 있는데 역시 맨 끝구가 ‘惆悵’로 다르게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천 길 산봉 위에 돌 길이 비겼는데 / 千仞岡頭石徑橫, 올라서 바라보니 감회가 그지없네 / 登臨使我不勝情. 청산은 보이는 듯 아닌 듯 부여국이요 / 青山隱約扶餘國, 누른 잎이 우수수 와수수 백제성이라 / 黃葉繽紛百濟城. 9월 높은 바람은 나그네 시름을 자아내고 / 九月高風愁客子, 백 년 호기는 서생의 신세를 잡쳤구나 / 百年豪氣誤書生. 하늘가에 해는 지고 뜬 구름 어울렸으니 / 天涯日沒浮雲合, 옥경이 아아 어딘고 바라볼 길 없구나 / 惆悵無由望玉京.”

277) 진헌(鎭軒) : 남고진(南固鎭)을 두었던 남고산성 안에 있었던 공무소(公務所)를 말한다. 전해오는 말로는 후백제왕(後百濟王) 견훤(甄萱)이 쌓았던 것이라 하는데, 전주시 남방의 고덕산(高德山) 서북계곡을 에워싼 포곡식(包谷式) 석축산성(石築山城) 안에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돌아왔다.

初十日. 判官入見.

10일. 판관이 입견하였다.

同日. 以還政申飭事, 發甘列邑及兵左右水營. 各驛鎮.

【甘結】糶糶法意, 何等嚴重, 而近來法綱解弛, 奸弊層出, 富村饒戶, 百計謀避, 窮殘貧乏, 濫受居多, 哀此偏苦之氓, 雖在豐登之歲, 實所憫念是去等, 況於今年年形, 雖有峽野之異, 而要之不可謂登熟, 來頭艱食, 足可推知, 則目下備豫之政, 將來掇恤之方, 惟有糶糶精實而已. 雖以還民自爲之計言之, 以無多之收稊, 貪刁, 騰之市價, 不慮朝夕, 有輒糶賣是如可, 嗣歲之糶餼, 來春之種糧, 將何以辦出乎? 與其貯之瓶罌而易於花費, 無寧納之官倉而嚴其典守是於? 登場之節, 坐而蹉失, 封倉之期, 因以腕晚, 追擾棒枷, 鷄犬不寧. 彌縫反秩, 瘡痍狼藉, 揆以糶政, 尤豈不萬萬乖刺乎? 見今霜信已過, 滌場在即, 趁早開倉, 夙夜董督, 期於至月內, 無遺畢捧, 以爲歲食等爲始, 排巡分給之地爲乎矣. 拔戶也, 臥還也, 分石取剩也, 庫子倉隸輩之散穀糜費也, 邑外倉色吏之虛尺去來也, 捧以精實, 換以麤糶也, 無非厲民之竄政是遣. 又若流作浮作, 邑各異例, 色器落器, 濫觴多端, 有倉皆是無邑不然. 斗升零數之不爲合石, 都捧必以斗升各納. 此等痼瘼, 箇箇查櫛, 一一矯革, 然後庶可爲災民一分救活之道是於. 穀品精捧, 宣出於來春爲種爲糧之意, 而近年則不然. 民以納麤爲利, 官以捧麤爲能, 上下相蒙苟且姑息. 米則租粒相雜, 過歲輒蠹, 租則空殼充包, 食實無多, 似此麤劣之穀, 將何以爲種爲糧是乙喻? 今年段, 必以精實穀, 到底精捧, 無或有始勤終怠之歎爲於, 最宜嚴防者, 代錢一事是已, 錢還捧留法禁何如? 營邑之所不敢擅便是去乙, 近來各邑, 看作方便, 收殺之妙策, 違越禁防, 不少留難. 於是乎, 吏從爲奸, 恣意幻弄, 高價執錢, 輕價立本, 重利所在, 腎不畏死. 或憑藉公納, 而加執無紀, 或諉以充逋, 而分以半價, 或難捧私債, 計殖出秩. 或外捧精穀, 廉直留庫, 種種奸弊, 指不勝擣. 雖以昨冬糶政言之, 許多倉奸, 什七從作錢中釀出, 幾乎無邑不然是乎所. 既往雖不追理, 方來亟宜痛革, 營門之斷斷苦心, 期欲滌謬習而塞弊源. 茲以令申之意, 有此先甲之飭是置. 外此營門, 未及聞未及燭之, 隱奸暗慝, 自各該邑, 亦爲逐條適發, 猛加糾

察爲<sub>旒</sub>. 畢捧之後, 斷當逐邑反閱, 預悉此意, 惕念舉行爲乎矣. 右項諸條中, 若有一兩條違越現發之端, 則當該監色及首吏鄉之, 施以怙終之律, 且置勿論, 不察之責, 亦有所歸, 除尋常另加申飭爲<sub>旒</sub>. 開倉時應行條件, 一體後錄, 竝只悉爲<sub>旒</sub>, 甘到日時, 舉行形止, 先卽馳報宜當者.

一各穀當捧實數合耗, 區別衙門出已上, 都成冊兩件, 及監色姓名成冊, 開倉形止, 并以到甘卽時, 爲先修報爲<sub>齊</sub>.

一各穀看色, 依例上使爲乎矣, 各邑封紙上, 標置邑名是如可, 摘奸時, 各各分授, 以送作爲憑驗之地, 計料爲去乎, 預先知悉, 嚴束倉監色, 期於始終精捧爲<sub>齊</sub>.

一間五日, 捧未捧成冊, 依例報來, 而三班還穀段, 別件成冊修報爲乎矣, 捧未捧, 各其名下懸錄, 而民還磨勘前, 刻期畢捧, 別置一庫, 俾無反閱時混雜之弊爲<sub>齊</sub>.

一有外倉處段置, 間五日牒報時, 某倉當捧幾許內, 捧未捧幾許是如, 區別出已上, 別件成冊, 消詳修報爲<sub>齊</sub>.

一還穀封倉後, 當分遣反閱, 雖應例上下, 反庫前切勿出庫, 俾無違越生事之弊爲<sub>齊</sub>.

一畢捧磨勘成冊, 至月晦日及良, 都倉色吏, 準授來勘爲乎矣. 都成冊末端, 邑外倉捧入, 各穀實數, 一一開錄, 而某倉則米捧入幾許石, 太捧入幾許石, 租捧入幾許石, 木麥捧入幾許石是如, 逐一消詳懸錄爲<sub>旒</sub>, 各其倉監色姓名, 亦爲列錄報來, 以爲摘奸時憑考之地爲<sub>齊</sub>.

一吏逋之排年分捧者, 雖不得不以詳定收殺, 而至於小詳定, 名色尤是法外, 苟如是則其所謂徵逋, 適足爲啓逋之端. 今番 廟堂筵稟, 辭意截嚴, 尤當恪勤奉行是如乎. 今年段, 收逋時, 所謂減價代捧, 切勿擬議, 毋或有違犯啓下飭禁之地爲<sub>齊</sub>.

一營邱吏輩, 符同吏鄉, 或冒受別還, 高價執錢, 歇價立本, 或役價之錢受者, 換弄還穀, 歉歲則受出本色, 豐年則代受詳定, 便成痼弊, 民受其害. 今年段, 痛加釐革, 無或有襲謬生梗之弊爲<sub>齊</sub>.

같은 날. 환정(還政)을 거둬 신칙하는 일로 여러 고을과 병영과 좌·우수영과 각 역(驛)과 진(鎭)에 감결을 발송하였다.

【감결】 조적법(糶糶法)<sup>278</sup>이 매우 중요한데도 근래 법망이 해이해지고 간사한 폐

278) 조적법(糶糶法) : 환곡(還穀)을 방출하고 수납하는 법. 즉, 봄에 백성들에게 나라 곡식을 꾸어 주는 것을 조(糶)라 하고, 가을에 백성에게서 봄에 꾸어 주었던 곡식에 10분의 1의 이자를 덧붙여 거두어 들이는 것을 적(糶)이라 함.(『국역 증보문헌비고』 제152권, 전부고(田賦考))



단이 거듭하여 일어난다. 부자마을과 넉넉한 가호는 온갖 방법으로 벗어날 길을 모색하고 궁벽하고 가난한 이들은 과도하게 분배 받는 경우가 많다. 불쌍한 이들과 고통 받는 백성들은 비록 풍년든 해에도 실제로는 근심해야 하는데, 하물며 올해 농사 형편이 비록 산골과 평야가 차이가 있다고는 하지만 요컨대 풍년이라고 말할 수 없으니, 앞으로 먹고 살기 어려움은 가히 미루어 알 수 있다. 현재의 예방하는 정책이며 미래의 구휼하는 방법은 오직 조적법을 정밀하고 참되게 하는데 있을 뿐이다.

비록 환곡을 받은 사람들은 스스로를 위한 계책이라고 말할지라도 많지 않은 쪽정도 작은 이득을 탐하여 물가를 올리고, 조석을 생각하지 않고 번번이 쌀을 내다 팔면 내년의 아침·저녁밥과 오는 봄의 식량 종자는 장차 어떻게 변통하여 마련하겠는가? 시루항아리에 모아서 화비(花費)<sup>279)</sup>로 바꾸어지기보다는 차라리 관의 창고에 들어 엄격하게 지키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추수철을 앞아서 시기를 놓치고 창고를 봉하는 기한이 이 때문에 늦어져서 뒤쫓아 요란하게 형벌을 가하니 닭과 개조차도 편안하지 못한 실정이다. 허위 문서로 미봉(彌縫)하고 부정의 흔적이 남자하니 환곡 정책을 생각하면 어찌 더욱 부적절하지 않겠는가? 이제 서리 소식이 이미 지났으니 농사를 끝내고 마당 청소가 곧이다. 때맞추어 일찍 창고를 열어 아침저녁으로 독려하여 동짓달 내에 남김없이 모두 거둬들일 것을 기약하여 연말 환곡부터 시작하여 순차적으로 분급할 수 있게 하라.

환곡분급 대상에서 제외시켜 주는 것과 와환(臥還)<sup>280)</sup>과 분석(分石)<sup>281)</sup>하여 잉여를 취하는 것, 창고지기와 창고 노비들이 흠어진 곡식을 함부로 써버리는 것, 읍 외의 창고 담당 색리가 허위 문서로 거래하는 것, 정밀하고 실한 낱알들을 받아들여 거친 쌀로 바꾸는 것 등은 백성들을 가혹하게 하는 어지러운 정사가 아님이 없다. 또 유작(流作 유실된 것)과 부작(浮作 소모된 것)은 고을마다 규정이 달라 색기(色器)와 낙기(落器)<sup>282)</sup>의 크기가 다 다르고, 창고가 있는 모든 고을들이 그럴

279) 화비(花費) : 낭비되는 돈이나 재물을 말한다.

280) 와환(臥還) : 백성들에게 꾸어 준 환자곡(還子穀)의 상환 기일을 연장해 주고 해마다 이자와 모곡(耗穀)만을 거두어들이는 일을 말한다.(『국역 조선왕조실록』 1794년(정조18) 1월 9일 4번째기사, “총융사 정민시가 북한 산성의 환곡 폐단을 아뢰다.”)

281) 분석(分石) : 아전(衙前)들이 쌓아 둔 환곡(還穀)에 쪽정이나 돌 따위를 섞어 분량(分量)을 늘이고 곡식(穀食)을 훔쳐 먹던 일을 말한다.

282) 색기(色器)와 낙기(落器) : 세곡(稅穀)이나 환곡(還穀)을 받을 때에 물건의 좋고 나쁨을 가리기 위하여 본보기로 그 일부를 보는 것을 간색(看色)이라 하는데 이때 쓰는 그릇을 색기(色器)라 하고, 환

지 않은 곳이 없다.

말과 되의 영수(零數 나머지)가 섬에 맞지 않는데도 도봉(都捧 고을에서 거뒀다는 일)은 반드시 말과 되로 각각 거뒀어야만 하니, 이러한 고질적인 폐단을 낫 낫이 철저하게 조사해내 하나하나 바로 잡은 연후에야 재해 입은 백성들을 조금이나마 구원하여 살리는 방도가 될 것이다. 곡식의 품질을 정밀하게 거뒀다는 것은 진실로 내년 봄에 종자와 양식으로 삼는 뜻에서 나왔는데 근년에는 그렇지 못하였다. 백성은 조잡한 것을 납부함으로써 이익을 보고 관리들은 조잡한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능사로 여기니 위아래가 서로 뒤섞여 구차함이 고질이 되었다. 쌀은 걸곡식[벼]과 낱알이 서로 섞여 해가 지나면 대번에 썩을 먹고, 벼는 빈 껍질로 포대를 채워 먹을 것이라고는 실로 많이 없다. 이렇게 거칠고 졸렬한 곡식을 장차 어떻게 종자로 삼고 식량으로 삼겠는가? 금년에는 반드시 정밀하고 실한 곡식으로 철저하고 끝까지 정밀하게 거뒀어져 혹시라도 처음엔 부지런하되 마지막엔 태만히 한다는 탄식이 없게 하라.

당연히 가장 엄격하게 막아야 할 것은 돈으로 대신 내는 이 한가지인데, 전환(錢還)<sup>283</sup>과 봉유(捧留)<sup>284</sup>를 법으로 금지한 것은 어떠한 실정인가? 영읍(營邑)이 감히 멋대로 처리하지 못하거늘 근래 각 읍은 편리하다 하여 대전(代錢)을 적게 거뒀다는 묘책으로 삼아, 법으로 금지하는 것을 위반하는데 조금도 어렵게 여기지 않는다. 이에 아전들은 간계를 꾸며 제멋대로 속이고 농간을 부려 고가로 돈을 만들면서 싼 가격으로 입본(立本)하여 많은 이익이 있는 곳에서는 완강하게 죽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혹 공납(公納)을 빙자하여 가집(加執)하는 데에 한도가 없고, 혹은 횡령을 메운다고 핑계 대며 가격을 반절로 나누고, 혹은 사채를 받아내기 어렵다 하여 이자를 계산하여 고지서를 내고, 혹은 밖에서는 정밀한 곡식을 받아들이고 싼 가격의 물건만을 창고에 보관 하는 등 각종 간사한 폐단은 손가락으로 이 루 다 셀 수 없다. 비록 작년 겨울에 환곡 정책으로 말할지라도 허다한 창고의 간

곡을 거뒀을 때 모자라는 쌀을 채우기 위하여 얼마쯤 더 거뒀다는 곡식을 색모(色耗)라고도 하는데 그 곡식을 계량하는 그릇을 낙기(落器)라고 한다.

283) 전환(錢還) : 환곡의 변형된 이용 형태로, 곡물 대신에 화폐를 분급하는 방식이다. 봄에 분급할 때는 곡물의 1섬 가격이 얼마이든지 1~2냥을 제외한 나머지 전화(錢貨)를 대여하고, 가을에는 1섬의 쌀을 받는 방식이었다.(梁晋碩, 「17, 18세기 還穀制度의 운영과 機能 변화」, 서울대박사학위논문, 231쪽)

284) 봉유(捧留) : 거두어들인 물건을 본창(本倉)으로 이송하지 않고 현지에 거두어 보관해 두는 것을 말한다.

사함이 10의 7은 작전(作戰) 가운데서 빚어진 것인데, 거의 읍마다 그렇지 않은 곳이 없다. 이미 지나간 것은 비록 소급하여 다스릴 수는 없을 지라도 앞으로의 폐단을 통렬하게 뜯어 고치는 것이 마땅하다. 감영에서는 단단히 고심하여 잘못된 습속을 씻어내고 폐단의 근원을 막고자 한다. 이에 조심하라는 뜻으로 이렇게 미리 신칙하고 미리 경계를 둔다.

이 외에 감영에서 미처 듣지 못하고 미처 간파하지 못하는 간사함을 숨기고 사특함을 은폐하는 것들은 각 해당 읍에서도 조목을 따라 적발하고 엄하게 규찰할 것이다. 환곡을 모두 거둬들이기 뒤에는 결단코 각 고을마다 다시 검열할 것이니 이 뜻을 미리 잘 알아 명심하여 거행하라.

위 항목의 여러 조목 가운데 만약 한 두 조목을 위반하여 드러난 단서가 있다면 당해 감관과 색리와 수리항은 거듭 호종(怙終)<sup>285</sup>의 율로 다스리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살피지 못한 책임 또한 물을 것이니 보통으로 여기지 말도록 각별히 신칙한다. 창고를 열 때에 마땅히 행해야 할 조건은 모두 뒤에 기록하니 아울러 잘 알도록 하라. 감결이 도착하는 날짜와 거행한 상황을 우선 즉시 치보하는 것이 마땅할 것.

1. 각 곡식은 마땅히 거둬들이기 실제 수효에 모곡(耗穀)<sup>286</sup>을 합하여, 아문별로 구별하여 합계를 낸 도성책 두 건과 감관과 색리의 성명을 성책한 것과 개창(開倉)의 형편 등을 모두 감결이 도착하는 즉시 우선 정리하여 보고할 것.
2. 각 곡식의 간색(看色)<sup>287</sup>은 관례대로 위로 올리되 각 읍에서 밀봉한 종이 위에 읍명을 표시하여 두었다가 조사할 때에 각각 나누어 주어 보내서 증거로 삼을 계획이다. 미리 자세히 알아서 창고의 감관과 색리를 엄격히 단속하여 시종 정밀하게 거둬들이기를 기약하라.
3. 5일 간격으로 거둬들이기 것과 못 받아들이기 것을 정리한 장부는 관례대로 보고하고 삼반(三班)<sup>288</sup>의 환곡은 별건으로 장부를 만들어 보고하되 거둬들이기 것과 못

285) 호종(怙終) : “믿는 것이 있어 재범(再犯)하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怙終賊刑]”는 말에서 유래하였다. 호(怙)는 믿는 구석이 있는 것이고, 종(終)은 재범 또는 잘못을 고치지 않고 끝까지 하는 것을 가리킨다. 『書經 舜典』

286) 모곡(耗穀) : 관아에서 환곡(還穀)을 수봉(收捧)할 때 곡물을 쌓아 둘 동안에 자연적으로 감소될 분량을 예상하여 매 섬에 몇 되씩 더 받던 곡식을 말한다.

287) 간색(看色) : 물건의 좋고 나쁨을 가리기 위하여 본보기로 그 일부를 보는 것이다.

288) 삼반(三班) : 지방 관아(官衙)에 딸린 아전(衙前)·장교(將校)·관노(官奴)·사령(使令) 등 하리(下吏)의 총칭이다. 삼반은 중국에서 유래한 말로, 지방 관아의 탐색(探索)을 맡은 쾌반(快班), 수포(搜捕)를 맡은 장반(壯班), 간옥(看獄)·고장(拷杖)을 맡은 조반(阜班) 등을 말한다.

거뒤들인 것을 각각 그 이름 아래 기록하고, 민환(民還, 백성이 갇아야 할 환곡)을 마감하기 전에 기한을 정하여 다 받아들이고 별도로 한 곳에 두어 검열할 때에 혼잡한 폐단이 없게 하라.

4. 외부에 창고가 있는 것도 5일 간격으로 첩보 시에 ‘모(某) 창고는 마땅히 거뒤들일 것이 얼마쯤 인데, 거뒤들인 것과 못 거뒤들인 것이 얼마쯤이다’ 라는 것을 구별하여 이미 관아에서 올려 보낸 것과 구별하여 별도로 장부를 만들어 자세하게 보고하라.

5. 환곡은 창고를 봉한 뒤에 마땅히 조사관을 나누어 보내 검열할 것이다. 비록 응당 예규에 따라 지급해야 할 것도 창고를 검열하기 전에는 절대로 창고에서 내지 말 것이니, 이를 위반하여 사단을 내는 폐단이 없게 하라.

6. 모두 거뒤들인 것을 마감한 성책은 동짓달 그믐날까지 도창색리(都倉色吏)가 와서 숫자대로 회계(會計)한다. 다만, 도성책의 말단에 음 외의 창고에서 받아들인 각 곡식의 실 수량을 낱알이 기록하여 ‘모(某) 창고는 쌀을 거뒤들인 것이 몇 석이고 콩을 거뒤들인 것이 몇 석이고 벼를 거뒤들인 것이 몇 석이고 메밀을 거뒤들인 것이 몇 석이다’ 라고 하나하나 소상(消詳)하게 기록하라. 각각 그 창고의 감관과 색리의 성명 또한 나열하여 보고해서 적간(摘奸)할 때에 이에 근거하여 상고할 수 있도록 하라.

7. 아전이 횡령한 빚을 해마다 일정액씩 나누어 징수하는 경우는 비록 상정(詳定)<sup>289)</sup>가로 감하여 거뒤들일지라도, 작은 상정 가격에 이르러서는 명색이 더욱 법밖의 일이 된다. 진실로 이와 같다면 이른바 횡령액을 징수하는 것이 횡령을 여는 단서가 되기에 충분하다. 금번 조정에서 국왕에게 아뢴 말의 뜻이 지엄하여 더욱 정성을 다하고 부지런하게 받들어 행해야 한다. 금년은 포흠액을 거둘 때에 이른바 ‘값을 감해주고 대봉(代捧)한 것’은 절대로 논의하지 말며 혹시라도 국왕께서 윤허하신 금칙을 어기고 범하는 일이 없게 하라.

8. 영저리(營邸吏)<sup>290)</sup>들이 관아의 아전 및 향임과 결탁하여 특별 환곡을 받아내어

289) 상정(詳定) : 황해도와 함경도에서 대동법의 성격으로 실시된 상정법(詳定法)을 말한다.(『大典會通 戶田 收稅』) 상정법은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공물가의 상납보다는 해당 영읍의 수용(需用)에 쓸 수 있도록 떼어주는 것을 위해서 만들어졌다. 이러한 상정법으로 통용된 것이 상정가(詳定價)인데, 각 호조나 선혜청 등에 대동이나 공물 등의 명목으로 바쳐야 할 물품을 돈으로 대신 상환하여 납부할 때 적용되는 기준 가격으로 통상 시가보다 낮은 가격이다.

290) 영저리(營邸吏) : 각 감영에 속하여 감영과 각 고을 사이의 연락을 취하던 향리를 말한다.

고가로 돈을 만들고 헐가로 입본(立本)하고, 혹은 역가(役價)로 받은 금전을 환곡으로 바꾸어 농단하는데, 흉년엔 미곡으로 받아내고 풍년엔 상정가로 대체하여 받아내어 고질적인 폐단을 이루어 백성들이 그 피해를 받는다. 금년은 통렬하게 혁파하고 바로잡아 혹시라도 잘못을 답습하여 사단을 만드는 폐단이 없게 하라.

十一日. 食後, 朔膳進上監封.

11일. 식후에 삭선(朔膳)할 진상품을 감봉하였다.

十二日. 判官入見.

12일. 판관이 입견하였다.

同日. 題靈巖郡查案.<金夫安、千世行等, 威脅島民, 私施惡刑, 攘奪二百兩錢事. 初查官興陽縣監尹守鳳, 覆查官靈巖郡守李德謙.>

【題】查案捧上是在果. 再經查事之後, 此輩叵測情節之無異海賊強盜, 和盤托出, 更無疑眩是如乎, 此不別樣嚴勸, 懲一礪百是隱則, 弱肉強食何所不至, 言念法綱, 凜然寒心. 金夫安段, 箇箇考察, 嚴刑一次, 取招後, 同劫奪錢五十兩, 刻期徵出, 金振宇處, 官庭出給, 其矣船格, 當夜作挈諸漢, 一一查名捉來, 并以嚴刑一次爲旒. 千世行、朴良七、金啓得等段, 一體以別杖箇箇考察, 嚴刑取招是遣. 同劫奪錢一百五十兩, 右項三漢處分排督徵, 巨門島任掌等, 招致官庭, 當面出給後, 形止牒報爲旒. 金宗哲段, 始初同黨, 雖甚可駭, 查庭直招, 足可贖罪, 決杖三十度放送. 金振宇等, 不必保授, 一併放送爲旒. 今此諸囚所爲, 真是白晝行劫之類, 所當付之鎮營, 施以治盜之律是矣, 特慮鎮屬之夤緣作弊, 有此移查之舉是如乎, 湏悉此意, 刑訊則務極嚴猛, 中間夤緣之弊則各別照察宜當尙事.

같은 날. 영암군 사안(查案)에 대해 데깁하였다.<김부안(金夫安)과 천세행(千世行) 등이 섬 주민을 위협하고 사사로이 악형을 행하여 200냥의 돈을 약탈한 일. 초사관(初查官)은 흥양 현감 윤수봉, 복사관(覆查官)은 영암 군수 이응경.>

【데깁】사안을 받아 보았다. 두 번 조사를 거친 뒤에 이 무리들의 헤아릴 수 없

는 정황은 해적이냐 강도와 다름이 없고 명백하게 드러나<sup>291)</sup> 다시 의심할 바가 없다. 이를 특별히 엄하게 처벌하여 한 사람을 징계하여 여러 사람을 경계하지 않는다면 약육강식이 어딘들 이르지 않겠는가? 법의 기강을 생각하면 오싹하여 한심하다.

김부안은 날날이 따져 묻고 엄하게 1차 형신(刑訊)하여 진술을 받은 뒤에 겁박하여 빼앗은 돈 50냥은 기한을 정하여 징수해 내서 관청에서 김진우(金振宇)에게 내어주고, 그의 선격(船格)<sup>292)</sup> 가운데 밤에 패악(悖惡)을 부린 모든 농들을 하나하나 이름을 조사하여 잡아와서 모두 엄하게 1차 형신하라. 천세행(千世行)·박양철(朴良七)·김계득(金啓得) 등은 모두 별장(別杖)으로 하나하나 따져 물으면서 엄히 형신하여 진술을 받아라. 겁박하여 빼앗은 돈 150냥은 위 세 농에게 분배하여 독촉해서 징수하여, 거문도 임장(任掌) 등을 관아로 불러 얼굴을 보고 내어준 뒤에 그 전말을 첩보하라.

김종철(金宗哲)은 애초에 같은 무리로 매우 해괴하지만 관아에서 조사에 사실대로 진술하여 충분히 속죄(贖罪)할만 하니 장(杖) 30대를 치고 석방하라. 김진우 등은 보수(保授)<sup>293)</sup>할 필요는 없으니 모두 석방하라. 지금 여기 모든 죄수들의 소행은 진실로 백주 대낮에 겁박을 행한 부류이니 마땅히 진영(鎭營)에 보내 ‘도적을 다스리는 형률’로 처벌해야 하되, 다만 진영의 관속들에게 연줄을 대는 폐단을 일으킬 것을 우려하여 이렇게 옮겨서 조사한다. 모름지기 이러한 뜻을 자세히 알아서 형신은 매우 엄격하게 하고, 중간에 연줄을 대는 폐단을 각별히 살피는 것이 마땅할 일.

十三日. 井邑縣監申淳來見, 仍爲辭去. 礪山府使許嘯, 南原關王廟行祭後, 還官之路入見.

13일. 정읍 현감 신순(申淳)이 와서 보고 그대로 하직하고 갔다. 여산 부사 허속(許嘯)이 남원 관왕묘에 제사를 행한 뒤 관아로 돌아가는 길에 입견하였다.

同日. 封綿歉狀啓.

291) 화반탁출(和盤托出) : 음식물을 소반에 차려서 들고 나온다는 뜻으로, 일체 남기지 않고 드러냄을 이르는 말이다.

292) 선격(船格) : 조선 시대에 배를 부리는 데 돕는 결꾼을 이른다.

293) 보수(保授) : 보석(保釋)된 사람이나 도망갈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근친(近親)이나 친구가 책임지고 맡는 것을 말한다.

【狀啓】道內綿農判歉之由，已陳於前後狀聞中是白在果。本道綿荒，挽近荐仍，而未有如今年之尤甚是白如乎。五六月之間，善爲立苗，結穎亦繁，庶有豐登之漸是白加尼，七月初八日，獐風花房撲落，莖葉摧折，有若踐藉之狀，無復蘇醒之望。而其後跨朔長霖，如干晚穎，亦皆腐損無餘，節候已晚，更不結着，毋論霜前霜後，終不見吐絮。此皆臣行部時，目覩之實狀，不待邑牒·民訴，而知之是白乎所。見今市肆之上，賣買幾絕，村閭之間，杼軸俱空，絲身之策，固不暇論，而納公之需，將何措辦是白乎乙喻？全道告歉，峽野同然，雖欲互相質遷，其勢末由是白置。臣非不知兵需之關係甚重，砲保之事體自別，而今若率之以恆式，責納以本色，則龜背刮毛，未足爲喻。而荷擔渙散，必至之勢，連年代捧之餘，今又冒昧仰請，誠不勝萬萬悚惶是白乎矣。今年綿農之全荒，不啻倍蓰於昨年再昨年是白乎則，尤不可無別般軫恤之道，臣豈敢徒懷嚴畏，終自阻於如傷若保之下哉？軍布收捧，期限已迫，若待年分狀請，則恐有緩不及時之慮是白乎等以，茲敢據實登聞爲白去乎。訓局砲保段，折半錢捧，兵曹及各軍門各衙門番布段，并以純錢代捧事，令廟堂稟旨分付爲白只爲。備局回啓，“關內尤甚、之次邑，砲保三分一，兵曹及各營納布折半，稍實邑，砲保四分一，兵曹及各營納布，三分之一代錢，各衙門納布，無論三等邑，純錢上納事。”

같은 날. 목화농사가 흉년이라는 장계를 써서 봉하였다.

【장계】도내 목화 농사가 흉년으로 판명된 이유는 이미 전후의 장계로 진달하였습니다. 본도 목화 흉작은 근래 거듭되었으나 금년과 같이 더욱 심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5,6월 사이에 모종을 잘하고 맺힌 열매도 번성하여 거의 풍년으로 나아감이 있더니, 7월 8일에 사나운 바람이 쳐서 꽃봉오리를 떨어뜨리고 줄기와 잎도 꺾여 마치 짓밟히는 모양이 되어 다시 소생할 가망이 없습니다. 그 뒤에 한 달에 걸친 긴 장마로 상당수의 늦은 꽃봉오리마저 모두 부패하여 남은 것이 없습니다. 철이 이미 늦어 다시 결실을 맺지 못하고, 서리가 오기 전후를 논할 것도 없이 끝내 솜망울이 피어있는 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신이 도내를 순행할 때에 목도한 실상이니, 읍의 첩보와 백성들의 호소를 기다리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장시에서는 매매가 거의 없고 촌락과 마을에서는 베를 짜는 베틀이 모두 텅 비어있어 몸에 걸칠 계책도 논할 겨를이 없으니 나라에 바칠 면포는 장차 어떻게 마련해야 하겠습니까? 도내 전체가 흉년을 알려 산골이나 평야나 마찬가지로이니

비록 서로 사서 옮기려 하여도 그 형세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신은 군수 품에 관계되는 일이 매우 중요하고 포보(砲保)<sup>294</sup>의 사체가 특별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만약 정해진 법식으로만 따르게 하고 본색[本色 군포]으로 납부를 독촉한다면 거북 등에서 털을 깎는 것으로도 비유가 부족합니다. 부담이 크면 백성들이 흩어지는 것은 반드시 닥칠 형세입니다. 해를 이어 대봉(代捧)한 끝에 이제 또 감히 요청하니 참으로 황송함을 견디지 못하겠습니다만, 금년 목화 농사가 완전히 흉작인 것은 작년이나 재작년보다 두 배, 많게는 다섯 배 뿐만이 아니오니, 더욱 특별히 진흥하는 대책이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신이 어찌 감히 한갓 지엄하고 두렵게만 여겨 끝내 여상(如傷)<sup>295</sup>과 약보(若保)<sup>296</sup>같은 은혜를 내려 주시는 것을 스스로 막겠습니까? 군포를 거둬들이는 것은 기한이 이미 임박하였으니 만약 각 지방의 연분(年分)<sup>297</sup> 장계 주청을 기다린다면 아마도 늦어져 때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감히 사실에 근거하여 아뢰입니다. 훈련도감의 포보(砲保)는 반절을 돈으로 거둬들이고 병조(兵曹)와 각 군문(軍門)과 각 아문(衙門)의 번포(番布)<sup>298</sup>는 모두 순전(純錢)<sup>299</sup>으로 대신 거둬들이는 일을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임금께 아뢰어 윤휴를 받아 분부하게 하소서.

비변사에서 다음과 같이 회계(回啓)<sup>300</sup>하였다.

“관내 재해 정도가 가장 심한 우심(尤甚)과 그 다음으로 심한 지차(之次)읍의

294) 포보(砲保) : 군보(軍保)의 하나인데, 보미(保米)나 보포(保布)를 상납(上納)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곧 포군(砲軍) 네 사람 중 한 사람이 복무하면 세 사람은 그의 보인이 되어 보미나 보포를 상납하는 것이다.

295) 여상(如傷) : 『맹자』 「이루 하(離婁下)」에 “문왕은 백성들 보기를 다친 사람 보듯이 여겼다.[文王視民如傷]” 하였는데, 백성들이 편안하게 생활하여도 혹시 정사를 잘못 시행하여 백성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여 지극히 보살핌을 이른 말이다.

296) 약보(若保) : 순보(順保)라는 뜻으로, 만백성을 순히 잘 보호함을 말한다. 약(若)은 순(順) 자의 뜻으로 해석된다. 『서경』 「강고(康誥)」에 “마치 몸에 병이 있는 것처럼 여기면 백성들이 모두 허물을 버릴 것이며, 마치 갓난아이를 보호하듯이 하면 백성들이 편안히 다스려질 것이다.[若有疾, 惟民其畢棄咎. 若保赤子, 惟民其康乂]” 하였다.

297) 연분(年分) : 그 해 농사의 흉년·풍년의 정도에 따라 토지를 9등급으로 나누던 법이다. 조선조 세종 때 만든 제도로, 상상전(上上田)에서 하하전(下下田)까지 9등급이 있었다.

298) 번포(番布) : 오위(五衛)의 군졸이 궁중에 번(番)을 드는 대신 바치던 무명을 말한다. 일 년에 두 달 번을 들 의무가 있었는데,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무명 두 필을 바치고 근무를 면제받을 수 있었다.

299) 순전(純錢) : 돈으로만 내게 하는 것이다. 이정청(釐整廳)의 절목(節目)에 의하면 전(錢)과 포(布)를 반반씩으로 하도록 명백하게 항식(恒式)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 뒤 전(錢)이 귀하면 순목(純木)으로 받아들이고 포(布)가 귀하면 순전(純錢)으로 받아들이기도 하였다.

300) 회계(回啓) : 임금의 하문(下門)에 대하여 심의하여 보고를 하던 일로, 회달(回達)이라고도 한다.



포보(砲保)는 3분의 1, 병조와 각 영에 납부하는 포(布)는 절반, 초실(稍實)음의 포보(砲保)는 4분의 1, 병조와 각 영에 납부하는 포는 3분의 1을 돈으로 대납하고, 각 아문에 납부하는 포는 3등급<sup>301)</sup>의 음을 논할 것 없이 상납할 것.”

同日. 以道內田畓各年川沙還實事, 發關五十三州, 法聖鎮 .<和順, 茂朱, 求禮, 南平, 不入.>

【關文】爲相考事. 田畓成川之降沙者, 及當年沙之翌年還起者, 爬櫛報來之意, 有所甘飭矣. 今以若而邑概狀所報觀之, 流來川沙, 開錄年條, 其所懸頃數, 甚夥多是如乎. 一入川沙, 災頃之後, 拖到許多年, 終無起墾之道是乙喻? 成川其間, 必多有全庫還起與彼邊泥生處是遣, 降覆沙段, 亦當有颺沙起耕處, 而近來列邑, 任他容奸, 慢不檢飭是如可, 每當報槩時, 只準舊摠, 循例磨勘. 初無把束查起之報, 若此不已, 則不出幾年, 有數實結, 其將盡歸於災摠乎? 田政之紊亂, 國結之歲縮, 萬萬可悶. 今年段, 斷不可不痛加釐革乙仍于, 茲以先事發關爲去乎. 本邑各年川沙處, 親執田案, 逐庫摘奸, 一一還實報來爲乎矣. 槩狀勘限, 雖或差遲, 川沙必須到底還實, 然後始可捧勘, 湏悉此意, 嚴飭舉行, 宜當向事.

같은 날. 도내 전답이 해마다 하천 모래로 덮인 것을 환실(還實)<sup>302)</sup>할 일로 53주와 법성진에 관문을 발송하였다.<화순, 무주, 구례, 남평은 제외함.>

【관문】상고할 일. 전답이 물에 잠긴 것 가운데 모래로 덮인 것과 당해 년에 모래로 덮였던 것이 다음해 다시 기경(起耕)한 것을 살살이 조사하여 보고하라는 뜻을 감결로 신칙한 바가 있었다. 지금 이렇게 읍의 개장(概狀)<sup>303)</sup>으로 보고한 것으로 보면 흘러온 하천모래로 덮인 전답을 개록(開錄)한 연조(年條)에 달이 난 것으로 기록된 수량이 매우 많다고 한다. 한 번 들어온 하천 모래는 재해를 입은 것으로 처리한 뒤에는 그대로 방치함이 해가 오래되었으니 끝내 개간(開墾)하는 방도가 없겠는가?

하천이 된 그 사이엔 반드시 대부분 전부를 다시 개간하여 저쪽 이생처(泥生處)<sup>304)</sup>와 함께 있고, 모래가 덮친 전답도 또한 마땅히 모래를 제거해 기경(起耕)

301) 3등급 : 재해 입은 정도를 세 등급으로 나눈 것으로, 우심(尤甚)·지차(之次)·초실(稍實)을 말한다.

302) 환실(還實) : 재해를 입지 않은 실수(實收)의 상태로 돌리는 것을 말한다.

303) 개장(概狀) : 중요 내용을 개략적으로 보고한 문서로, 대개장(大概狀)이라고도 한다.

304) 이생처(泥生處) : 강물이 밀어붙여 새로 땅이 생긴 곳으로 냇가에 있는 모래 섞인 개흙땅을 말한다.

한 곳이 있을 것이다. 근래 여러 읍은 저렇게 용간(容奸)하는 사람에게 맡겨두고 게을러서 단속도 않다가 매번 개장(概狀)으로 보고할 때를 당하여 단지 옛날 파악했던 총수에 준거하여 관례에 따라 마감한다. 애초에 조금이라도 파속(把束)<sup>305)</sup>으로 개간을 조사한 보고가 없으니 만약 이와 같은 행태가 그치지 않는다면 몇 년이 지나지 않아 얼마 있는 실결(實結)<sup>306)</sup> 조차도 장차 모두 재결(災結)의 총수로 귀속될 것이다. 전정(田政)이 문란하고 국결(國結)<sup>307)</sup>이 해마다 줄어들어 매우 답답하다. 금년은 결단코 엄하게 개혁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에 관문을 발송한다. 본 읍의 각 년 하천모래로 덮인 곳은 직접 토지대장을 들고 곳곳마다 적간(摘奸)하여 하나하나 실결로 돌리고 보고하라. 개장(槩狀)을 마감하는 기한은 비록 조금 더딜지라도 하천모래로 덮였던 논밭의 경우는 반드시 끝까지 환실한 연후에야 비로소 마감을 받을 것이니 감합(勘合)<sup>308)</sup>하여 거둬들일 수 있으니, 모름지기 이러한 뜻을 잘 알아서 엄히 타일러 거행함이 마땅할 일.

十四日. 礪山府使入見辭去. 判官及同福縣監李寅元入見.

14일. 여산 부사가 입견하여 하직하고 갔다. 판관과 동북 현감 이인원(李寅元)이 입견하였다.

十五日. 味爽詣客舍, 行望闕禮. 中軍、判官、檢律, 同爲進參, 還營軒. 同福縣監入見辭去. 順天府使林翰鎭, 赴任之路, 延命後入見. 寶城郡守吳顯佑、金堤郡守李玄好、萬頃縣令尹守澈、珉島郡守閔致鳳來見. 務安縣監吳致淳來見.

15일. 동이 틀 무렵 객사에 이르러 망궐례를 행하였다. 중군 판관 검률이 함께 참석하였다. 영현으로 돌아왔다. 동북 현감이 입견하여 하직하고 갔다. 순천 부사 임한진(林翰鎭)이 부임하는 길에 연명한 후 입견하였다. 보성 군수 오현우·김제 군수 이현호·만경 현령 윤수철·진도 군수 민치봉이 와서 보았다. 무안 현감 오치순이 와서 보았다.

305) 파속(把束) : 전답의 결세(結稅) 단위인 줍[把]과 묶[束]을 말한다.

306) 실결(實結) : 각종 면세지(免稅地)를 제외한 국가 세입(歲入)의 원천이 되는 농경지를 말한다.

307) 국결(國結) : 국가의 토지대장인 양안에 올라있는 결복(結卜)으로, 토지세 징수의 기준이 되었다.

308) 감합(勘合) : 서로 간에 증빙(證憑)하기 위한 계인(契印)을 말한다. 지방에 파견되는 관리, 군대의 출병, 왜국(倭國)과의 교통 등에 사용하였다.

十六日. 順天府使、金堤郡守、玆島郡守、寶城郡守、萬頃縣令, 入見辭去. 玉果縣監韓致定來見.  
16일. 순천 부사·김제 군수·진도 군수·보성 군수·만경 현령이 입견하여 하직하고 갔다. 옥과 현감 한치정이 와서 보았다.

同日. 詣乾止山, <在府之北五里許> 與判官同爲奉審後, 還營軒, 封奉審狀啓.

【狀啓】全州府乾止山, 守護禁養節目中, 每歲春秋, 道臣躬詣遍審, 有無頗狀聞事, 前已啓下爲白有如乎. 臣於今九月十六日, 與地方官全州判官李羲平, 眼同馳進, 看審是白乎則, 定界禁標, 前後左右, 更無冒墾犯葬之弊是白乎所. 培養松楸, 禁護柴草等節, 另加嚴飭, 使之恪勤舉行爲白乎旆. 緣由馳啓爲白臥乎事.

같은 날. 건지산<부의 북쪽 5리쯤에 있음.>에 가서 판관과 더불어 봉심을 한 뒤에 영현으로 돌아와 봉심한 장계를 써서 봉하였다.

【장계】전주부 건지산을 수호하고 송추(松楸) 베어내는 것을 막고 배양하는 조목 가운데 매해 봄과 가을에 관찰사가 몸소 나가 두루 살펴 탈이 있는지 없는지를 장계로 아뢰라는 일을 전에 이미 계하(啓下) 하셨습니다. 신이 지금 9월 16일에 지방관 전주 판관 이희평(李羲平)을 대동하여 함께 가서 자세히 살펴본즉 경계를 정한 금표의 전후좌우에 다시 함부로 개간하고 투장하는 폐단이 없습니다. 송추를 배양하고 시초(柴草 땔나무와 말꿀)를 보호하는 등의 항목은 따로 엄격하게 신칙하여 정성스럽고 부지런하게 거행하게 하겠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치계(馳啓) 하옵는 일.

十七日. 判官、中營將入見. 玉果縣監、務安縣監入見辭去. 綾州牧使李廣度, 自京還官之路來見, 仍爲辭去.

17일. 판관, 중영장이 들어와 접견했다. 옥과 현감·무안 현감이 입견하여 하직하고 갔다. 능주 목사 이광도가 서울로부터 관청으로 돌아오는 길에 와서 보고 그대로 하직하고 갔다.

十八日. 鎮安縣監朴曾壽來見.

18일. 진안 현감 박증수가 와서 보았다.

十九日. 鎭安縣監, 入見辭去. 判官、中營將入見. 審藥金槩, 持吏曹下批關文, 下來延命.

19일. 진안 현감이 입견하여 하직하고 갔다. 판관 중영장이 입견하였다. 심약(審藥) 김은(金槩)이 임금께서 비답하신 내용의 이조 관문을 가지고 서울에서 내려와 연명하였다.

二十日.

20일.

二十一日. 判官入見. 雲峯縣監趙存奎、海南縣監吳鼎周來見. 慶尙道彥陽縣監白致彥來見, 仍爲辭去.

21일. 판관이 입견하였다. 운봉 현감 조존규·해남 현감 오정주가 와서 보았다. 경상도 언양 현감 백치언이 와서 보고 그대로 하직하고 갔다.

同日. 以各邑官鎭門聚點時, 勿送鎭校事, 發關兵營.

【關文】爲星火舉行事. 卽聞官鎭門春秋聚點時, 自五鎭營送校, 摘奸於所屬各邑, 而所謂摘奸全無實效, 誅求貽弊, 不一其端云, 言念舉行, 誠極駭然是在如中. 今秋聚點段, 因籌關, 移赴堰役, 堤堰䟽築之時, 坐作進退, 軍裝服色, 有何摘奸之可論是乙噓? 無堤堰聚點邑段, 如例摘奸, 容或無怪, 而至於移赴各邑, 則鎭營送校, 徒貽邑弊, 有妨堰役乙仍于, 茲以發關爲去乎. 自本營嚴飭於各該鎭營, 移赴邑摘奸一款, 切勿舉論, 俾有一分省弊, 完役之效爲乎矣. 如是別飭之後, 若或因循不察, 有所現發於別岐廉探, 則必當大段生事, 並以此意措辭知委爲旆. 關到日時, 舉行形止, 先卽馳報宜當向事.

같은 날. 각 읍의 관문(官門)과 진문(鎭門) 앞에서 취점(門聚點)할 때, 진교(鎭校)를

보내지 말라는 일로 병영(兵營)에 관문을 발송하였다.

【관문】 급히 거행할 일. 이번에 듣건대 관문(官門)과 진문(鎭門)의 봄, 가을 취점을 할 때에 5진영(五鎭營)으로부터 교위(校尉)를 보내 소속 각 읍에서 적간하지만, 적간이 전혀 실효가 없고 가혹하게 빼앗고 폐해를 끼치는 단서가 많다고 하니, 거행한 바를 생각하면 참으로 해괴하다. 올 가을 취점은 비변사의 관문으로 인하여 제언의 부역으로 바꾸어 시행하니 제언은 좌작진퇴(坐作進退)<sup>309</sup>와 군장복색(軍裝服色)을 어떻게 적간하여 논할 수 있겠는가? 제언(堤堰)에서 취점이 없는 읍은 의례대로 적간하여도 혹시 괴이할 것이 없으나, 부역으로 바꾼 각 읍은 진영(鎭營)에서 교위를 보내면 단지 읍에 폐단만 주고 제언 역사에 방해함이 있기 때문에 이에 관문을 발송한다.

본영에서 각 해당 진영에 엄히 타일러 이 부읍의 적간 조항은 절대로 거론하지 말아서 조금이라도 폐단을 줄여 역사를 완성하는 효과가 있게 하라. 이 같이 특별히 신칙한 뒤에 만약 혹시라도 예전대로 하고 살피지 않아서 다른 갈래로 염탐(廉探)하여 적발되면 반드시 큰 탈이 생길 것이니 이러한 뜻과 관문의 내용을 자세히 알도록 하라. 관문이 도착하는 일시와 거행한 상황을 우선 즉시 치보하는 것이 마땅할 일.

二十二日. 海南縣監吳鼎周來見.

22일. 해남 현감 오정주가 와서 보았다.

二十三日. 海南縣監入見辭去. 判官入見. 古阜郡守金俗淳、碧沙察訪李熙黼來見. 洪判書羲俊, 就養南原, 歷抵于此, 故往見於下處, 還營軒. 南原府使洪錫謨、咸悅縣監洪在果、益山郡守李源吉來見. 伊夜洪判書來話營軒.

23일. 해남 현감이 입견하여 하직하고 갔다. 판관이 입견하였다. 고부 군수 김유순 · 벽사 찰방 이희보가 와서 보았다. 판서 홍희준(洪羲俊)이 남원으로 가면서 부모님을 봉양하기 위해 여기에 지나다가 이르렀기 때문에 묵고 있는 곳에 가서 만나고 영현으

309) 좌작진퇴(坐作進退) : 군사를 훈련하는 모든 행동 동작을 일컫는 말이다. 좌(坐)는 앉는 동작, 작(作)은 일어서는 동작, 진(進)은 앞으로 나아가는 동작, 퇴(退)는 뒤로 물러나는 동작이다.

로 돌아왔다. 남원 부사 홍석모·함열 현감 홍재과·익산 군수 이원길이 와서 보았다. 그날 밤 흥판서가 와서 영헌에서 이야기 하였다.

同日. 以運牟事因籌司關, 發關各邑.

【關文】爲相考事. 卽到備邊司關內, 向令惠廳, 有所貿牟於各道者矣. 見今經用匱乏, 同貿置還牟以沿邑所在者, 卽爲裝運亦爲有<sup>ㄹ</sup>. 一時到付均役廳啓下關內, 日前本廳勾管耗穀、本色輸納事, 已爲筵稟行會, 而計其應用之不足, 實無以此支調之道, 貿置還牟二萬石, 定差員, 裝運上納, 而此是貢價、料祿所需, 事體尤爲自別, 必以精實準斛者, 另擇上送爲<sup>ㄹ</sup>. 船隻則以舟橋船, 分排下送, 到卽星火舉行, 俾無遲誤, 不及致抵重勘亦爲有<sup>ㄹ</sup>. 今以京廳支計之不敷, 有此筵稟, 移粟之舉, 廟堂行會, 均廳關辭, 若是申復, 惟當恪勤奉行乙仍于. 穀物裝載, 都會所定於法聖鎮, 領運差使員段, 以古羣山僉使, 差定是遣. 穀物段, 參互穀摠, 多寡分排, 後錄發關爲去乎, 留庫牟還中, 另擇其精實準斛者, 別定地土船隻, 輸致于差員逢載所, 受回移考還爲乎矣. 石子段, 細網堅緻, 俾無疎薄滲洩之弊爲<sup>ㄹ</sup>. 監色必以有根着可合者, 各別擇定, 使之領騎上納, 而捧還斛子一坐, 亦爲載去爲<sup>ㄹ</sup>. 以昨冬牟租運納時言之, 穀品箇箇麤劣, 斛內石石不完, 畢竟至於欠縮生頃之舉是如乎. 今此移運貿牟, 卽是貢價、料祿所需, 事體尤爲自別, 另飭簸揚, 務從精實, 毋或有上納時, 點退生梗之弊爲<sup>ㄹ</sup>. 舟橋船隻, 必當非久到泊, 而都會所裝載, 事係時急, 定船輸運等節, 勿爲晷刻稽滯, 卽速嚴飭舉行爲<sup>ㄹ</sup>. 本邑分排皮牟, 分載於幾隻船, 某日自某浦口, 發船形止, 先卽馳報, 以爲憑處之地, 宜當向事. 羅州<皮牟一千石>、綾州<皮牟一千石>、光州<皮牟一千五百石>、南平<皮牟五百石>、靈光<皮牟五百石>、玆島<皮牟六百石>、咸平<皮牟一千石>、康津<皮牟一千石>、樂安<皮牟一千石>、務安<皮牟五百石>、順天<皮牟五百石>、長興<皮牟七百石>、扶安<皮牟一百石>、靈巖<皮牟九百石>、海南<皮牟六百石>、寶城<皮牟五百石>、已上皮牟一萬一千九百石內.<一萬石元納、一千九百石、船價假量.>

같은 날. 비변사 관문으로 환곡 보리를 운반하는 일로 각 읍에 관문을 발송하였다.

【관문】상고할 일. 이번에 도착한 비변사 관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난번 혜청(惠廳)<sup>310</sup>으로 하여금 각 도에서 보리를 사게 하는 바가 있었다.

310) 혜청(惠廳) : 대동미(大同米)·포(布)·전(錢)을 출납 받기 위하여 창설한 관아로 선조 41년에 경기에 처음 설치하고 다음에는 강원·호서·호남·영남·해서 등 다섯 곳에 설치하였다. 관원은 겸직

지금 비용이 다 떨어졌으니 그 사두었던 환모(還牟) 중 연읍에 있는 것을 바로 실어 운반한다.”

동시에 도착한 균역청(均役廳)<sup>311)</sup>의 계하 관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전에 본청에서 관장하는 모곡(耗穀)을 본색(本色)으로 실어다 납부할 일로 이미 경연에서 아뢰고 행회(行會)<sup>312)</sup>하였고, 응당 써야할 것 부족한 것을 계산 하였으나 실로 이것으로 지탱할 방책이 없다. 사두었던 환모(還牟) 2만석은 차원(差員)을 정하여 실어 운반하여 상납하라. 이것은 공가(貢價)로 녹봉에 필요한 바이니 사체가 더욱 특별하다. 반드시 정밀하고 실하여 곡자의 기준에 들어맞는 것<sup>313)</sup>으로 별도로 택하여 올려 보내라. 선박은 주교선(舟橋船)<sup>314)</sup>으로 나뉘 배당하여 내려 보내니 도착 즉시 매우 급하게 거행하여 지체하는 잘못이 없게 하고 무거운 죄로 처벌받지 않도록 하라.”

지금 경청에서 값을 치러 주는 것이 넉넉하지 못하여 이렇게 경연에서 아뢰어 있었다. 곡물을 옮기는 일은 의정부의 행회와 균역청의 관문 내용이 이와 같이 거듭 말하니 오직 마땅히 정성스럽고 부지런히 받들어 행해야 한다. 따라서 곡물을 꾸러 실는 도회소(都會所)<sup>315)</sup>는 법성진에 정하고 영운차사원(領運差使員)<sup>316)</sup>은 고

이외에 낭청(郎廳) 1명, 계사(計士) 1명, 서리(書吏) 4명, 고직(庫直) 2명이 있다.

- 311) 균역청(均役廳) : 조선 후기에, 균역법의 실시에 따른 모든 사무를 맡아보던 관아이다. 영조26년(1750)에 균역절목청을 설치하여 다음 해 9월 균역법을 실시하면서 정식 관아가 되었으며, 29년(1753)에 선혜청에 흡수·통합되었다.
- 312) 행회(行會) : 정부의 지시와 명령을 각 관사의 장이 그 부하에게 알리고 실행 방법을 논정(論定)하기 위한 모임을 말한다.
- 313) 곡자의……것 : 관부용 1섬은 15말을 준용(準用)해야 한다는 것이다. 곡(斛)의 본음(本音)은 혹, 속음(俗音)은 곱이다. 부피를 뜻하는 ‘휘(彙)’, ‘섬(石)’의 뜻으로 곡식의 양을 헤아리는 데 쓰이는 말이다. 일반에서는 20말[과]을 1곱으로 하고, 관부에서는 15말을 1곱으로 하였는데, 20말을 전석(全石), 15말을 평석(平石)이라 한다. 섬의 10분의 1을 대두(大斗) 1말이라 하고, 가마니의 10분의 1을 소두 1말이라 한다. 따라서 섬은 대두로 10말이고, 소두로는 20말이다.(박성훈, 『單位語辭典』, 民衆書林, 1998, 62쪽)
- 314) 주교선(舟橋船) : 주교사(舟橋司)에 소속된 배로 경강선(京江船)으로도 불린다. 주교사(舟橋司)는 정조 13년에 창설하였는데, 국왕이 행행(幸行)할 때에 한강에 부교(浮橋) 가설(架設)을 담당 관리하고 전라도와 충청도의 세곡(稅穀)을 서울로 수송하는 일을 맡아보는 관아이다.
- 315) 도회소(都會所) : 모두 모이는 곳이란 의미인데, 사안에 따라 임시로 설치하는 갖가지 도회소를 으레 도계(道界)의 머리가 되는 고을에 설치하였기 때문에 계수소(界首所)와 같은 의미로 쓰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보통 도회소는 공도회(公都會)를 여는 곳을 말한다. 공도회는 각도(各道)의 감사(監司) 및 개성(開城)·강화(江華)의 유수(留守) 등이 관내의 유생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소과(小科) 초시(初試)를 말한다. 보통 6개월마다 교생(校生)을 선발하여 한곳에 모아 놓고 문관(文官) 3원을 파견하여 강론(講論)이나 제술(製述) 등을 실시한 뒤에 성적이 우수한 자를 계문(啓聞)하여 복시(覆試)에 응시할 자격을 부여하였다. 따라서 서울에서 각도(各道)에 이르는 큰 길에 인접해 있는 고을이나 그 고을의 수령을 말할 때는, 도회관(都會官)이라고 하기도 한다.

군산 첨사로 차정하라. 곡물은 곡물 총량을 서로 비교하여 많고 적음을 나누어 분배한 뒤에 말미에 기록하여 관문을 발송하니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모환(牟還) 가운데 그 정밀하고 실하여 곡자의 기준에 들어맞는 것을 택하여 별도로 지방 관아 소속 배<sup>317)</sup>를 정하여 차사원을 만나 적재하는 곳으로 수송하고, 회이(回移)<sup>318)</sup>를 받아 대조하라<sup>319)</sup>.

가마니[石子]는 세밀하게 직조하여 견고하고 치밀하게 하여 성글고 얇아서 물이 스며들거나 낱알이 새는 폐단이 없게 하라. 감관과 색리는 반드시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합당한 자로 각별히 택하여 정하고 그로 하여금 기병을 통솔하여 상납하게 하고, 환곡을 받아들일 때 사용하는 곡자(斛子)<sup>320)</sup> 1개도 싣고 가도록 하라. 작년 겨울에 보리와 벼를 운반하여 납입할 때로 말하면 곡식의 품질이 개개가 조잡하고 곡내(斛內)가 규격에 맞지 않아<sup>321)</sup> 받아들인 섬마다 완전하지 아니하여, 필경은 수효가 부족하여 탈이 나기에 이르렀다고 한다. 지금 이렇게 옮겨 운반하는 보리는 바로 공가(貢價)와 녹봉에 필요한 바로, 일의 체모가 더욱 다르니, 특별히 신척하여 까불러 숙아내고 힘써 정밀하고 실한 것으로 하여 혹시라도 상납할 때에 퇴짜 맞아 서로 불화가 일어나는 폐단이 없게 하라.

주교선이 필시 머지않아 당도할 것이므로 도회소에서 포장하여 적재하는 것은 일이 시급하니, 배를 정하고 운송하는 등의 절차는 오래 지체하지 말도록 즉시 엄격하게 단속하여 거행하라. 본 읍에 나누어 배당된 겹보리는 몇 척 배에 나누어 싣고, 모(某)일 모(某)포구로부터 배가 출발했는지의 상황을 먼저 즉시 치보하여 그에 근거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할 일.

나주<겹보리 1,000섬>, 능주<겹보리 1,000섬>, 광주<겹보리 1,500섬>, 남평<겹보리 500섬>, 영광<겹보리 500섬>, 진도<겹보리 600섬>, 함평<겹보리 1,000섬>, 강진<겹보리 1,000섬>, 낙안<겹보리 1,000섬>, 무안<겹보리 500섬>, 순천<겹보리 500섬>, 장흥<겹보리

316) 영운차사원(領運差使員) : 운송을 책임지는 특임 관원으로 영납(營納) 차사원이라고도 한다.

317) 지토선(地土船) : 그 지방 토민(土民)이 가지고 있는 배를 말한다.

318) 회이(回移) : 이문(移文)했던 공문서에 대한 답신의 문건을 이른다.

319) 고환(考還) : 임무 수행의 증명서를 대조하고 돌려주는 것을 이른다.

320) 곡자(斛子) : 곡식 용량을 재는 기구로, 곡자 또는 곡자로 읽는다. 관부용 곡은 15말을 한 섬으로 하는데 이는 세미를 받을 때 중간 손실을 우려하여 받는 량으로 13두(斗) 외에 잡비조로 2두 해서 도합 15두(斗)의 용량을 말한다. 그런데 상납은 으레 13두를 1곡으로 해서 봉입(捧入)하고, 이른바 잡비조로 받는 것은 두(斗)로 받지 않고 승(升)으로 두를 계산해 받았다는 사실에서 관부의 섬은 총 15두(斗)이지만, 실제 한 섬은 13두이고, 20승(升)은 운송비, 모곡(耗穀) 등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321) 곡내(斛內)가 규격에 맞지 않아 : 곡자의 내면을 규격에 맞지 않게 가공하였다는 것이다.



700섬>, 부안<겉보리 100섬>, 영암<겉보리 900섬>, 해남<겉보리 600섬>, 보성<겉보리 500섬>  
 이상 겉보리 11,900섬<1만 섬은 원래 납부량이고 1,900섬은 뱃삯으로 어림짐작함.>

同日. 以領運差員差定事, 發關古羣山鎮.

【關文】 爲相考事. 卽到備邊司關內云云, 裝載都會所, 定於法聖鎮, 領運差使員, 以僉使差定是遣. 各邑分排皮牟, 邑名石數, 後錄發關爲去乎. 元穀所載舟橋司船隻, 必當非久下來, 僉使卽爲前期, 馳往于法聖鎮, 各邑分排皮牟, 待其船運來到, 必以精實準斛者, 一一斛量, 捧上爲有<sup>如可</sup>, 舟橋船齊到, 卽時量宜分載於各船後, 裝發形止, 一依稅穀例, 消詳開錄, 修成冊牒報, 以爲毋滯啓聞之地爲<sup>旆</sup>. 各該邑騎船監色, 必以有根着可合者, 領騎, 各邑捧還斛子各一坐, 亦爲載去爲<sup>乎矣</sup>, 今此移運皮牟, 卽是貢價、料祿所需, 事體與他有異, 十分照察, 別樣擇捧是<sup>矣</sup>. 上納時, 穀品如或麤劣是去乃, 斛內又或不完, 致有欠縮, 點退之舉, 則差員及當該邑守令, 斷當狀聞論勘之意, 京關申飭, 至爲嚴截, 湏悉此意, 惕念舉行爲<sup>旆</sup>. 各邑皮牟所載船, 如或愆期, 這這移文促還, 而某邑皮牟幾石 所載船, 某日到泊, 某日監捧是<sup>如</sup>, 捧未捧形止, 續續登時馳報, 以爲憑處之地爲<sup>旆</sup>. 船價段, 自法湖至京江, 每石爲三斗, 故元納外加數磨鍊爲有去乎, 並湏知悉爲<sup>旆</sup>. 關到日時, 舉行形止, 先卽馳報, 宜當<sup>向事</sup>.<後錄上同.>

같은 날. 영운차원을 차정(差定)하는 일로 고군산(古羣山) 진(鎭)에 관문을 발송하였다.

【관문】 상고할 일. 이번에 도착한 비변사 관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포장해 실는 도회소는 법성진에 정하고 영운차사원(領運差使員)을 첨사로 차정하라. 각 읍에 분배한 겉보리는 읍명과 섬의 숫자를 말미에 기록하여 관문을 발송한다.”

원곡을 실는 주교사(舟橋司) 선박이 반드시 머지않아 내려올 것이니, 첨사는 바로 기한 전에 법성진에 급히 가서 각 읍에 분배한 겉보리를 그 배가 도착하기를 기다려 반드시 정실(精實)하여 곡(斛)에 들어맞는 것으로 일일이 되질하여 받아두었다가 주교선이 일제히 도착하면 즉시 잘 헤아려 각 배에 나누어 실은 뒤에 포장해 실어서 출발한 상황을 한결같이 세곡(稅穀) 예규에 의거하여 자세하게 개록(開錄)하고 장부를 만들어 첩보하고 왕께 아뢰는 것을 지체하는 상황이 없게 하라.

각 해당 읍의 기선감색(騎船監色)<sup>322)</sup>은 반드시 근원이 있어 신원(身元)이 확실

한 사람으로 타게 하고 각 읍에 환곡을 받아들일 때에 사용하는 곡자(斛子)도 한 개씩 실어 보내라. 지금 이렇게 이동하여 운반하는 걸보리는 바로 공가(貢價)와 녹봉에 필요한 바이니 사체가 다른 것과는 다름이 있으니 충분히 잘 살피고 각별히 선별하여 바쳐라. 상납 시에 곡물의 품질이 만일 혹은 조잡하고 열등하거나 곡자(斛子)안이 또 혹은나 완전치 못하여 곡식이 부족하거나 퇴짜 맞는 일이 있으면 차원과 해당 읍의 수령은 결단코 마땅히 장계로 아뢰어 논하여 처벌하는 뜻을 서울에서 내려온 관문에서 거듭 신척하여 지극히 엄격하다. 모름지기 이러한 뜻을 잘 알아서 두려운 생각으로 거행하라.

각 읍의 걸보리를 실은 배가 만일 혹은 기한을 어기면 날날이 이문(移文)<sup>323</sup>하여 환곡을 재촉하고 모(某)읍의 걸보리 몇 섬이 실린 배가 모(某)일 도착하여 모(某)일 감봉하였고, 받은 것과 못 받은 상황을 계속하여 즉시 급히 아뢰어 이에 근거해 처리할 수 있게 하라. 뱃삯은 법호(法湖, 법성포)로부터 경강(京江)에 이르기까지 1가마당 3말이 되기 때문에 원래 납부할 것 외에 수효를 더하여 마련하였으므로 모두 모름지기 자세히 알아야 한다. 관문이 도착하는 날짜와 거행한 상황을 먼저 급히 아뢰어 마땅할 일.<후록(後錄)은 위에 기록한 것과 같다.>

二十四日. 南原府使、古阜郡守、咸悅縣監、益山郡守、碧沙察訪, 入見辭去. 泰仁縣監沈能淑來見, 仍爲辭去. 食後往見洪判書於下處, 設樂以餞之, 還營軒. 扶安縣監趙在慶、昌平縣令李和愚來見. 羅州監牧官趙秉祿, 上京之路來見.

24일. 남원 부사·고부 군수·함열 현감·익산 군수·벽사 찰방이 입견하여 하직하고 갔다. 태인 현감 심능숙이 와서 보고 하직하고 갔다. 식후에 흥판서가 묵고 있는 곳에 가서 음악을 베풀며 그를 전별하고 영현으로 돌아왔다. 부안 현감 조재경·창평 현령 이화우가 와서 보았다. 나주 감목관 조병록(趙秉祿)이 서울로 올라가는 길에 와서 보았다.

322) 기선감색(騎船監色) : 세곡 조운(漕運)하는 것을 감독하기 위해서 조운선(漕運船)에 함께 타고 가는 감색(監色)을 말한다.

323) 이문(移文) : 관아(官衙) 사이의 조회(照會)를 목적으로 동등한 관아 사이에 왕래하는 공문서로, 공이(公移)·문이(文移) 등의 이름으로 통용된다.

二十五日. 扶安縣監、昌平縣令、羅州監牧官, 入見辭去.

25일. 부안 현감 · 창평 현령 · 나주 감목관이 입견하여 하직하고 갔다.

二十六日. 長水縣監李啓陽、龍潭縣令朴獻壽來見.

26일. 장수 현감 이계양 · 용담 현령 박헌수가 와서 보았다.

二十七日. 龍潭縣令、長水縣監, 入見辭去.

27일. 용담 현령 · 장수 현감이 입견하여 하직하고 갔다.

同日. 封雜科試退行狀啓.

【狀啓】選武馬兵都試及公都會, 每年秋成後設行, 自是定例是白乎矣. 本道年形, 已判失稔, 今若如例設行, 則舉子齋糧之弊、試邑供億之費, 必將有倍於常年是白乎所, 在前如此之歲, 多有請退之例乙仍于, 茲以據實馳啓爲白去乎. 上項選武馬兵都試及公都會, 退行於明秋事, 令廟堂稟旨分付爲尺爲.

같은 날. 잡과 시험을 미루어 행할 것에 대한 장계를 봉하였다.

【장계】선무 마병(選武馬兵) 도시(都試)<sup>324</sup>와 공도회(公都會)<sup>325</sup>는 매년 가을철 추수 후에 시행하도록 예규로 정해져 있습니다. 본도의 올해 농형(農形)은 이미 흉년으로 판별되어 지금 만약 예규대로 실행한다면 과거를 보는 사람들의 식량의 곤고함과 시험을 치르는 읍의 접대비용이 반드시 평상의 해보다 배가 될 것입니다. 이전에 이와 같은 해에 있어서는 대부분 미루기를 요청하는 전례가 많았습니다. 예에 따라 이에 사실대로 치계(馳啓) 하오니 위 항목의 선무마병 도시와 공도회를

324) 도시(都試) : 조선 시대에 무사를 선발하기 위해 실시하던 시험으로, 태조 4년(1395)부터 무재(武才) 발굴과 무예 진흥을 위하여 실시하였다. 중앙에서는 훈련도감의 당상관과 의정부의 제조도총부가 시험관이 되어 1년에 한 번 실시하였고, 지방은 공동으로 관찰사와 병마절도사 등이 1년에 두 번 실시하여 중앙에 보고하였다.

325) 공도회(公都會) : 조선 시대에 관찰사, 유수(留守)가 해마다 관내(管內)의 유생들에게 보게 하던 소과 초시(小科初試)이다. 성종 때 처음으로 실시하였으며, 제술(製述)·고강(考講)의 두 가지 시험을 보게 하였는데 합격자는 다음 해 생원·진사의 복시(覆試)를 치를 수 있었다.

내년 가을로 미루어 시행할 일을 의정부로 하여금 임금께 아뢰어 분부하게 하소서.

二十八日. 泰仁縣監沈能淑, 自咸悅還官之路來見, 仍爲辭去.

28일. 태인 현감 심능숙이 함열로부터 관아로 돌아가는 길에 와서 보고 그대로 하직하고 갔다.

二十九日. 沃溝縣監金秀萬來見, 仍爲辭去.

29일. 옥구 현감 김수만이 와서 보고 그대로 하직하고 갔다.

同日. 以移粟事, 報均廳.

【報牒】即到廳關內筋該, 本道耗米移運次, 德積鎭船十隻下送, 無論舟橋船與德積船, 隨其先到, 到即裝發, 俾無遲滯之弊亦爲有置. 今此移粟事, 係時急, 固當恪遵奉行是乎矣. 本道俗, 尙晚稻, 秋成比他道稍遲, 雖在平年, 數多穀物, 有難趁早準捧, 況今年年形, 沿邑尤遜, 以若災民事力, 萬餘米包之一時責捧, 係是行不得之事, 歲前裝載, 非所可議是如乎. 船隻今雖下來, 勢將淹留過冬, 則許多船格, 屢月留糧之資, 在所當念, 而畢竟爲害, 亦有所歸是乎乙遣. 貿牟移轉事段, 今番貿置皮牟, 多在於山野諸邑, 出浦遙遠, 數萬穀包之一齊運輸, 其勢末由, 故先就野邑中, 距海稍近處, 略綽分排, 一萬石爲先裝運計料是乎所. 牟載船, 則商度容載隻數, 先即下送, 米載船段, 待開春下送, 以爲裝發之地爲只爲.

같은 날. 곡물을 옮기는 일로 균역청에 첩보하였다.

【보첩】이번에 도착한 균역청의 관문에 “이번에 본도의 모미(耗米)를 옮기기 위해 덕적진(德積鎭)의 배 10척을 내려 보내니, 주교선(舟橋船)과 덕적선(德積船)<sup>326)</sup>을 따지지 말고 먼저 도착하는 대로 즉시 포장해 실어서 출발하여 지체하는 폐단이 없게 하라,” 하였습니다.

금번 곡식을 옮기는 일은 시급함에 관계되니 진실로 마땅히 정성스럽게 따르고

326) 덕적선(德積船) : 강화 덕적진에 있는 배를 말한다.

지켜 받들어 행합니다. 다만 본도의 풍속은 항상 늦벼로 가을걷이가 다른 도에 비해 조금 늦어서 비록 평년이라는 많은 수의 곡물을 늦지 않게 일찍 받아들이기에 어려움이 있는데 하물며 금년 농사의 형편이 연도의 읍은 더욱 뒤떨어져 재민(災民)의 사세와 힘으로 만 여개의 쌀가마를 동시에 독촉하여 거둬들이는 것은 행하기 어려운 일에 관계되니 새해 전에 꾸려 실는 것은 논의할 바가 아닙니다. 선박은 지금 비록 아래로 내려올지라도 형세상 장차 오래 머물러 겨울을 지내면 허다한 선격(船格)들이 여러 달 체류하는 식량의 재원을 당연히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고 마침내 해가 될 것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보리를 사서 이전하는 일은 금번 사둔 걸보리가 대부분 산야 고을에 있어 포구로 나오는 것이 멀어서 수만 섬의 곡물 포대를 일제히 운반하여 보내는 것은 그 형세가 방도가 없습니다. 때문에 우선 야읍(野邑) 가운데에 바다와의 거리가 조금 가까운 곳에 나가 대략 넉넉하게 나누어 배분하여 1만석을 먼저 꾸려 운반 하게 할 요량입니다. 보리를 실는 배는 적재할 수 있는 배 숫자를 헤아려 먼저 바로 내려 보내고 쌀을 실는 배는 봄철이 시작되기를 기다려 내려 보내어 꾸려 운반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同日. 封移粟形止狀啓.

【狀啓】筋到付備邊司關內, “筋啓下教, 今九月初五日, 藥房入診入侍時, 左議政沈【象奎】所啓, ‘今年年形, 遠道姑未詳知, 畿甸似爲最劣. 大無之餘, 又此荐歉, 民勢之棘棘, 民情之嗷嗷, 國計益致艱匱, 施濟其猶病諸, 已不勝憂悶之至. 而甚至於地部惠廳之料祿頒放, 貢米上下, 亦將排繼不得云. 如欲就歲前, 見在應下貢米中, 和糴以需, 料祿之用, 以錢代給, 歲後三四朔, 應下不足之貢米, 則地部詳定與惠廳定價, 不啻懸下於目下市直. 古人有謂珠玉, 寒不可以爲衣, 饑不可以爲食, 以懸下時直之價錢, 使爲饑寒之資活, 此不可爲也. 且況貢米, 不但爲貢人之命脉, 卽是都民之口食. 若以錢買錢給, 則貢人與都民, 均無所得食, 市價由是而轉展增踊, 其何以糊哺爲生乎? 慮之及此, 其爲憂悶, 寧有涯極? 今惟有亟行移粟之政, 庶可爲一分拯濟之道, 而苟欲移粟, 目今外道穀摠, 通患不數, 糶餉之留庫既尠, 耗条之割本且多. 若又就此議移, 其必益致罄縮, 此亦非碩畫也. 惠廳耗条, 年例作錢, 各穀合折米, 三萬二千六百二十餘石, 勿爲作錢. 該廳又有湖南軍作米, 就此更劃五千石, 仍令各該道臣, 各依本

廳區劃石數，定差員，及時運送，則春三朔貢米應下不足者，可以畧綽排比，而其餘不足，待新捧上下，可免拖欠不給之弊。貢米不至闕給，則都下民食，亦可隨而有賴。以惠廳之米，充惠廳之用，既無移粟益致罄縮之患，亦勝他穀苟且挪貸之舉，支繼乏絕無出此外，而惠廳既運此近四萬石，則戶曹料祿所需，亦將推移相濟，以此分付何如？’

上曰：‘依爲之’事傳教教是置，‘傳教內辭意奉審施行爲有矣。才經畿運重責，此役非不知民邑事情之轉益困瘁，而第念京司支計，若是罔涯，則今此之舉，實係不獲已而然，想宜知悉，’且況筵稟行會者，則其所舉行，有不容屢屢煩飭是在果。待該廳知委，各依區劃石數，必於開倉初，着意董飭，精實捧上，陸續輸置於便近浦口、刻期裝發之地，而領運護送等節，一依漕運例施行。石子結構，務從堅緻，俾無滲漏欠縮之弊爲旒。領運之善不善，專在於差員之擇不擇，差員則必以道內守令中幹事人差定，監色段置，擇定其謹實有根着者，另飭騎船，嚴防奸弄之弊爲有矣。若或有稽滯不及之弊是去乃，穀品麤劣，石子不完之事，則各該邑守令與差員之從重勸罪除良，雖以道伯言之，亦難免不飭之責，並湏知悉爲旒，舉行形止，爲先馳聞宜當向事，”關是白齊。一時到付均役廳關內，節該“本道各穀合折米一萬二千九百八十六石六斗，以大米先捧中，準此數捧留是如可，待京江船定送，星火裝載上送”亦爲白遣。鱗次到付均役廳關內，“本廳啓曰：‘日前以經用之匱乏，本廳勾管各道耗穀、本色，輸納事，已有筵稟行會，而計其應用之不足，實無以此支調之道矣。向於三南，自本廳貿置還牟者，蓋爲備豫之資，就嶺湖兩南貿牟中各二萬石，卽爲定差員裝運上送之意，分付兩道道臣。船隻則以舟橋餘船，分排下送，毋或後時事，亦爲分付該司何如？’傳曰：‘允’亦教是置。草記內辭緣，批旨內辭意，奉審施行爲有矣，舉行形止，爲先馳聞宜當向事，”關是白置有亦。惠廳耗米移運事段，謹依籌司行會，分排於沿浦各邑，各別督捧，待解凍刻期裝運計料爲白乎旒。貿牟移轉事段，今番貿置皮牟，多在於山野，諸邑計其出浦程途，遠或爲三四百里，近不下一二百里，數萬穀包之，陸運致遠，其勢末由，故先就野邑中距海稍近處，略綽分排，另飭出浦，待船隻下來，裝載上送計料爲白乎旒，緣由馳啓爲白臥乎事。

같은 날. 곡물을 옮긴 전말에 대한 장계를 봉서하였다.

【장계】이번에 받아본 비변사 관문에 “이번에 계하(啓下)하신 금년 9월 5일 내 의원이 입진(入診)으로 입시(入侍)할 때 좌의정 심상규(沈象奎)<sup>327</sup>가 아뢰기를,

‘금년 농사형편은 원도(遠道)<sup>328</sup>는 아직 자세히 알 수 없으나 경기 지역이 가장 열악한 듯합니다. 큰 흉년 끝에 또 이렇게 거듭 흉년들어 백성의 형편을 위급하게 하고 민생은 원망하고 떠들며, 나라의 재정은 더욱 어렵고 곤궁하게 되어 베풀어 그들을 구제하는 것은 오히려 부족하니 이미 걱정스럽고 답답함이 지극함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호조와 선혜청에서 녹봉을 지급하는 것을 공미(貢米)에서 지출하는 것도 앞으로 계속 분배할 수 없다고 합니다. 만일 설을 쇠기 전에는 현재 관청이 지불해야 할 공미(貢米)는 환곡을 받아 지급하고 녹봉의 비용은 돈으로 대신 지급하면서, 설을 쇠 뒤 3,4개월 동안에 부족한 공미를 지불하게 하여야 합니다. 호조에서 상정(詳定)한 가격과 선혜청에서 정한 가격은 현재의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을 뿐만이 아닙니다. 옛 사람이 말하길 주옥(珠玉)은 추울 때 옷으로 입을 수 없고 배고플 때 먹을 수 없다고 하였는데, 시가의 가격보다 현격하게 낮은 것으로 배고픔과 추위에 살아가는 바탕으로 삼게 하는 것이니, 이러한 일은 해서는 안 됩니다. 하물며 공미는 오로지 공인(貢人)의 목숨 줄일 뿐만이 아니고 바로 도성 사람이 먹는 음식입니다. 만약 돈으로 돈을 사서 준다면 공인과 도성 사람은 똑같이 먹을 것이 없고 시가는 이로 말미암아 점점 더욱 뛰어오를 것이니 그들이 어떻게 풀칠이라도 하며 먹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생각이 이에 미치니 걱정되고 답답함이 어찌 끝이 있겠습니까?

지금 오직 곡물을 옮기는 것을 신속히 행하는 정책이 있다면 아마도 조금이라도 구제하는 방책이 됩니다만, 만일 곡물을 옮기시려고 한다면 지금 경기도와 지방의 곡식 총수는 많지 않음이 걱정입니다. 환곡미로 구제할 요량으로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양이 이미 적고 모조(耗条)로 본국에서 떼어내는 것이 또한 많습니다. 만약 또 이것을 가지고 곡식을 옮기는 것을 의논하면 그것은 반드시 더욱더 줄어들어 없어지게 될 것이니 이 또한 큰 계획이 아닙니다.

327) 심상규(沈象奎) : 1766년(영조42)~1838년(헌종4). 본관은 청송(靑松), 초명은 상여(象輿), 자는 가권(可權)·치교(稚敎), 호는 두실(斗室)·이하(鼻下)이다. 정조의 지우(知遇)를 받은 뒤 상규라는 이름과 치교라는 자를 하사받았다. 그는 이용후생(利用厚生)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백성의 생활근본을 제작(製作)에 두어야 한다고 늘 말하였다. 『건릉지장속편(健陵誌狀續編)』을 편찬하였고, 해박한 지식으로 『만기요람(萬機要覽)』을 편찬하여 국왕의 지침서가 되게 하였고, 저서로는 『두실존고(斗室存稿)』 16권이 전한다.

328) 원도(遠道) : 전라도·경상도·평안도를 가리킨다. 조선 팔도를 서울을 중심으로 경기는 근도, 충청·강원·황해는 중도, 전라·경상·평양·함경은 원도로 구분하였다.(『典律通補 吏典 考課』)

선혜청의 모조는 연례대로 돈으로 내게[作錢]하시고 각 곡물을 쌀로 바꾼[折米]<sup>329)</sup> 합 3만 2천 6백 2십여 석은 작전하지 마소서. 선혜청에는 또한 호남의 군작미(軍作米)<sup>330)</sup>가 있으니 여기서 다시 5천석을 구획하여 바로 각 해당 도신(道臣)들로 하여금 각각 본청에서 구획한 섬수에 의하여 차사원을 정하여 제때에 운송한다면 봄 3개월간의 공미(貢米)를 치러주어야 할 부족한 분량은 대략 여유 있게 배정(排定)할 수 있을 것 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부족한 것은 새롭게 거둬들이는 것을 기다려 지급하면 오랫동안 끌며 지급하지 못하는 폐단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미(貢米)의 지급을 빼먹지 않는다면 도성 백성들의 식량 또한 따라서 힘입을 수 있습니다. 선혜청의 쌀로 선혜청의 비용을 충당하면 이미 속을 옮겨 더욱더 줄어들고 없어지게 하는 우환이 없을 것이고 또한 다른 곡물을 구차하게 나대(挪貸)<sup>331)</sup>하는 일보다 나으니 지탱하는 것과 모두 다 없어지는 것이 이 밖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선혜청이 이미 운송한 것은 4만석에 가까우니, 호조의 녹봉으로 필요한 것은 또한 장차 형편에 따라 서로 구제하는 것으로 이것을 분부하심이 어떠하십니까?’ 라고 하니, 상께서는 ‘아뢴 대로 행하라.’ 라고 전교(傳敎)하셨다.

전교 안의 말씀을 받들어 시행하되 다만 기전(畿甸) 운송을 이제 막 지냈으니 이일은 민읍의 사정이 더욱더 곤궁하고 힘듦을 모르지는 않다. 다만 생각건대 경사(京司)의 지출 계획이 이와 같이 어려움이 끝이 없으니 지금 이러한 일은 실로 마지못하여 그렇게 되었다. 마땅히 다 알 것이라 생각한다. 또 하물며 왕께 아뢰고 해당 부서에 실행하도록 한 경우에는 누누이 신척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해당관청의 통고를 기다려 각각 구획된 섬수에 의거하여 반드시 개창(開倉) 초에 착실하게 독촉하고 타일러 정밀하고 실한 것을 거둬들여, 가깝고 편리한 포구로 계속해서 수송하여 기한을 정하여 꾸러 출발하게 하고, 영운(領運)과 호송(護送) 등의 절목은 한결같이 조운례(漕運例)에 의거하여 시행하라.

가마니를 엮어 묶는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견고하고 치밀하게 하여 새어나오고 줄어들는 폐단이 없게 하라. 영운의 잘잘못은 오로지 차사원(差使員)을 가리고 못 가리는데 있으니 차원은 반드시 도내 수령가운데 밑에서 일을 맡아보던 사람으로

329) 折米 : 환곡을 받아들일 때 곡물을 쌀로 환산하여 받던 일.

330) 군작미(軍作米) : 조선 시대에 군포(軍布) 대신 내던 쌀을 말한다.

331) 나대(挪貸) : 꾸거나 빌려 온 것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꾸어 주거나 빌려 주는 것을 이른다.



차출하여 정하고, 감관과 색리들도 조심성 있고 신실하며 뿌리내려 살고 있는 자를 택하여 정하고 기선(騎船)<sup>332</sup>한 사람에게 특별히 신칙하여 농간하는 폐단을 엄하게 막아라. 만약 혹 머뭇거리고 지체하여 미치지 못하는 폐단이 있거나, 곡의 품질이 조잡하고 열악하고 가마니가 완전하게 얽어지지 않은 경우는 각 해당 읍의 수령과 차원은 무거운 죄로 처벌할 뿐만 아니라 비록 관찰사라도 또한 신칙하지 못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우니 모두 모름지기 자세히 알아야하며 거행한 사실의 전말을 먼저 급히 아뢴이 마땅할 일.” 하였습시다.

동시에 도착한 균역청의 관문에 “이번에 본도 각 곡물의 절미(折米)<sup>333</sup> 총 1만 2천 9백 8십 6성 6말을 대미로 먼저 거둬들인 것은 숫자대로 거두어 보관하여 두었다가 경강선(京江船)<sup>334</sup>을 배정하여 보낼 때를 기다려 급히 꾸러 실어 올려 보내라.” 하였습시다.

잇달아 도착한 균역청의 관문에, “균역청이 상계 아뢰기를 ‘일전에 경용(經用)이 부족하여 본청에서 관장하는 각도의 모곡과 본색을 운송할 일로 이미 왕께 아뢰고 해당관아에 지시하였고, 응당 써야할 것 가운데 부족분을 헤아려보니 실로 이것으로는 해결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지난번 삼남지방에서 본청에서 사두었던 환모(還牟)는 미리 준비하는 바탕이 되고, 영·호의 두 남방에서 사두었던 보리 가운데 각 2만석은 즉시 차사원을 정하여 꾸러 운반하여 올려 보내라는 뜻을 양도의 관찰사에 분부하였습시다. 배는 주교선과 나머지 배를 분배하여 내려 보내고 혹시라도 시기에 늦지 말라고 또한 해당 관사에 분부하심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윤택한다.’ 라고 전교 하셨다. 초기(草記)<sup>335</sup>의 내용과 비지(批旨 교지(教旨))의 말씀을 자세히 받들어 시행하되 거행한 전말을 먼저 급히 아뢴이 마땅한 일.” 하였습시다.

선혜청의 모미(耗米)를 옮겨 운반하는 일은 삼가 비변사의 행회(行會)에 의거하여 포구에 따라있는 각 읍에 나누어 배당하여 각별히 독촉하여 거둬들이고 얼음이 녹기를 기다려 기한 안에 꾸러 운반할 계획입니다. 사둔 보리를 운반하는 일은 금

332) 기선(騎船) : 세곡 조운(漕運)하는 것을 감독하기 위해서 조운선(漕運船)에 함께 타는 것을 말한다.

333) 절미(折米) : 환곡을 받아들일 때 공물을 쌀로 환산하여 받던 일.

334) 경강선(京江船) : 조선 시대에 주교사에서 관리하여 한강의 수운에 사용하던 개인의 배로, 임금이 수원에 행차할 때 한강에 임시 다리를 놓거나, 전라도 및 충청도에서 올라오는 세곡을 운반하는 일에 사용하였다.

335) 초기(草記) : 중앙 각 관아(官衙)에서 정무상 그리 중요하지 아니한 사항을 간단하게 요지만을 기록하여 상주(上奏)하는 문서로, 보통은 상주하는 신하의 직급과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번 사두었던 걸보리는 산야에 많이 있고 읍(邑)에서 포구로 내가는 거리를 계산해 보면 멀게는 3,4백리가 되고 가깝게도 1,2백리 이상이니 수많은 곡식을 포장하여 육지로 운반하는 것은 멀어 형편상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 때문에 우선 들판에 있는 고을 중에서 바다와의 거리가 조금 가까운 곳에 대략 넉넉하게 나누어 배분하고, 각별히 단속하여 포구에 내보내고 선박이 내려오기를 기다려 꾸러 실어 올려 보낼 요량입니다. 이러한 연유로 치계(馳啓) 하옵는 일.

三十日. 陵州牧使李廣度來見, 仍爲辭去. 興陽監牧官, 李相琰赴任之路來見.

30일. 능주 목사 이광도가 와서 보고 그대로 하직하고 갔다. 흥양 감목관 이상준이 부임하는 길에 와서 보았다.

## 7. 1833년(순조33) 10월 : 연분(年分)과 재결(災結)을 처리하다

初一日. 昧爽詣客舍, 行望闕禮. 中軍、判官、中營將、檢律, 同爲進參, 還營軒. 興陽監牧官, 入見辭去. 中營將入見. 靈巖郡守李應謙來見, 仍爲辭去.

1일. 동틀 무렵 객사에 이르러 망궐례를 행하였다. 중군·판관·중영장·검율이 함께 참석하였다. 영헌으로 돌아왔다. 흥양 감목관이 입견하여 하직하고 갔다. 중영장이 와서 보았다. 영암 군수 이응겸이 와서 보고 그대로 하직하고 갔다.

同日. 題全州府檢案.<正犯趙同伊, 膝築文成孫, 翌日致死事. 初檢官全州判官李義平, 覆檢官益山郡守李源吉.>

【題】屍帳捧上是在果. 考之脉錄, 參以證招, 趙同伊之爲此獄正犯, 了無可疑之端是置. 大凡人之肚腹, 最是虛惻喫緊之部位, 而以其皮膜厚韌而柔軟也, 故異乎骨肉筋脉架屬回匝之處. 除非器仗屠剝之所及, 雖有毆築壓撈之傷是良置, 骨碎肉綻血黯暈青等諸般形症, 未易外著, 則今此臍腹之膨漲堅硬, 拍之有響, 不啻倍重於他部之狼藉痕損是置. 雖以正犯百計掉脫之供, 猶不敢自諱其脚纏肩壓之狀是隱則, 半夜暗室之中, 兩箇拚命之鬪, 豈止於纏壓雍容? 有若或恐其觸傷者然而不加以毒踢猛築是乙喻? 初檢跋辭中, 以其肺腑脹滿之腹, 受此肩脚鎮壓之患, 腸胃安得不被損, 氣力安得不漸盡云者, 誠是着題語也. 雖使同伊假舌於蘇張、借籌於良平是良置, 亦無以粧撰而圖免是如乎, 兩檢官, 約日會坐, 同正犯趙同伊身乙, 嚴刑一次, 捧直招牒報爲跡. 屍體段, 卽爲出給埋瘞, 看證鄭南伊、李尚哲等段, 執髻打腿之狀, 既已指告, 則與全然掩護有異, 不足深究是如乎, 與拘囚是在各人等, 一體放送爲跡. 檢驗文字, 所宜審慎, 而初檢文案, 驚聽是去乙下, 脫一況字, 覆檢文案, 米墨之墨字, 誤作纏字, 兩檢刑吏, 並附過事, 初檢官良中, 枚移施行向事.

같은 날. 전주부 검안을 데김하였다.<정범 조동이(趙同伊)가 문성손(文成孫)을 무릎으로 짓이겨 다음날 죽은 일. 초검시관은 전주 판관 이희평, 복검시관은 익산 군수 이원길.>

【데김】시장(屍帳)을 받아 보았다. 검시기록을 살펴보고 증인의 진술을 참조하니 조동이가 이번 옥사의 정범이 되는 것은 전혀 의심할 단초가 없다. 무릇 사람의

복부(腹部)는 가장 허약하고 겁내는 중요한 부위이고 그 피막(皮膜)은 두껍고 질기면서도 부드럽고 연하기 때문에 뼈와 살과 힘줄과 혈맥으로 가로질러 이어져 둘러진 부위와는 다르다. 무기와 도구로 죽음에 이른 것이 아니고는 비록 때리고 짓밟고 누른 상처가 있더라도 뼈가 부서지고 살이 터지고 피가 검게 뭉치고 푸르게 되는 등 제방 형세의 증거가 쉽게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이니 지금 이렇게 배의 배꼽이 팽창되고 단단하게 굳어 누르면 울림이 있는 것은 다른 부위의 낭자한 상흔보다 배나 중요할 뿐만이 아니다.

비록 정범이 백가지 꾀로 벗어나려는 진술은 오히려 감히 스스로 다리를 묶고 어깨를 누르는 상황을 피하지 못할 것인즉 한 밤중에 어두운 방 가운데서 두 사람이 목숨을 바쳐 싸웠는데 어찌 화락하고 종용함에 얽히고 짓눌리는 싸움을 그쳤겠는가? 혹시 그 부딪쳐 다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 같음이 있어 참혹하게 발로 차고 매섭게 짓이기는 것을 하지 않았을는지? 초검시관의 발사(跋辭) 가운데 ‘그의 폐부와 창자가 가득찬 배로 이와 같이 어깨와 다리로 짓밟았으니 창자와 위가 어찌 손상되지 않았으며, 기력은 어찌 다 사그러지지 않았겠는가?’ 라고 말하는 것은 진실로 내용에 딱 맞는 말이다. 비록 조동이(趙同伊)로 하여금 소진(蘇秦)과 장의(張儀)에게서 혀를 빌리게 하고 장량(張良)과 진평(陳平)에게서 계책을 빌려오게 한다고 할지라도 또한 꾸미고 숨겨서 벗어나기를 도모할 수 없다.<sup>336)</sup> 두 검시관은 날을 정해 합동 신문하고 정범 조동이의 몸을 엄히 1차 형신하고 사실대로 진술을 받아 첩보하라.

시체는 바로 내주어 묻게 하고 본 증인 정남이(鄭南伊)와 이상철(李尙哲)들도 머리를 잡고 허벅지를 때렸다는 정상을 이미 지목하여 아뢰었으니 전연 감추고 비호하는 자들과는 달라 족히 깊이 따지지 않는다고 하므로 잡아 가둔 각 사람들과 더불어 모두 석방하라. 검형문자는 의당 자세하고 삼가야 하는데 초검한 문안에 경청이거늘(驚聽是去乙) 아래에 황(況)자 하나가 빠졌고 복검시관의 문안에 미묵(米墨)의 묵(墨)자가 잘못하여 전(纏)자로 되었으니 두 검시를 한 형리는 모두 부과(附過)할 일로 초검시관에게 공문을 보내 시행할 일.

336) 비록……없다 : 조동이가 아무리 뛰어난 언변과 기묘한 계책을 쓰더라도 죄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소진(蘇秦)과 장의(張儀)는 전국 시대의 변사(辯士)로 언변이 뛰어났고, 장량(張良)과 진평(陳平)은 모두 한 고조(漢高祖)를 보좌하여 뛰어난 계책을 제시한 인물이다.

同日. 以還弊禁斷事, 發關康津縣.

【關文】爲相考事. 捧糶時, 諸般奸弊, 另加照察之意, 前已發甘, 其果到底留念是隱  
 驗, 見今十月已屆, 開糶伊始, 而卽聞本邑還弊近來最甚, 無論米租, 高價執錢, 輕價  
 立本, 狼藉奸弄, 罔有紀極, 捧上之節, 極其紊亂云. 揆以糶政, 萬萬寒心. 一番懲  
 創, 斷不可已. 本邑各倉, 舊色吏等, 一併捉囚, 搜納其公私文蹟, 親執嚴覈, 所謂立  
 本米租數爻一一查括, 更修還案, 痛革謬習, 一新捧上爲乎矣. 此已有的探者, 平問之  
 下, 渠輩如或不卽直告, 一毫抵賴是去等, 不待更關, 并爲着枷上使爲旆, 關到日時,  
 舉行形止, 先卽馳報, 宜當向事.

같은 날. 환곡의 폐단을 금단할 일로 강진현에 관문을 발송하였다.

【관문】상고할 일. 환곡을 거둬들일 때에 제반 간사한 폐단을 별도로 살피라는  
 뜻을 전에 이미 감결로 보냈는데 과연 철저하게 유념하였는가? 지금 10월이 되어  
 환곡을 거둬들이기 시작하였는데, 이번에 듣기에 본 읍의 환곡의 폐단이 근래 가  
 장 심하여 쌀과 벼를 논할 것 없이 고가로 돈을 마련하고 싼 가격으로 밀천을 확  
 보하며 농간을 부려 간사함이 낭자하여 끝이 없고 환곡을 받는 절차가 극히 문란  
 하다고 들었다. 환곡의 정책을 헤아려보면 진실로 한심하다.

한번 징계하여 새롭게 하는 일은 결단코 그만둘 수 없다. 본 읍의 각 창색과 옛  
 색리 등은 한결같이 모두 잡아 가두고 그들의 공사(公私) 문적을 찾아 거둬들이고  
 남을 시키지 말고 직접 엄하게 파헤쳐서 이른바 입본(立本)한 쌀과 벼의 수효를  
 일일이 조사하여 찾아내고, 다시 환곡 문서를 정리하여 엄하게 잘못된 구습을 뜯  
 어 고쳐 일신하여 환곡을 거둬들여라. 이렇게 이미 확실하게 찾아낸 자가 있으면  
 형구를 씌우지 말고 신문(訊問)하고 그들이 만일 혹 사실대로 아뢰지 않고 털끝만  
 큼이라도 변명하고 버티거든 다시 관문을 기다릴 필요 없이 모두 목에 칼을 씌워  
 감영으로 올려 보내라. 관문이 도착한 일시와 거행한 전말을 먼저 치보함이 마땅  
 할 일.

初二日. 興陽縣監尹守鳳來見.

2일. 흥양 현감 윤수봉이 와서 보았다.

同日. 以私設院宇禁斷事, 發關光州牧.

【關文】爲相考事. 卽接本州幼學高悌謙聯名呈狀, 則以爲“矣等先祖忠烈公、孝烈公、毅烈公、月峯公貞忠大節, 已爲崇褒, 閭旌院額, 可謂靡有餘憾矣. 不料近日道儒三四人, 創設無名屋宇, 宏大其制, 稱以五亂時忠義士, 二千餘人, 列書刻板, 設壇行祭, 而錢兩所收至爲三萬, 一倡十和, 無不影附是如乎, 矣等先祖, 恩額之院, 俱在本州, 則不必更書姓諱疊設於一鄉, 故緣由仰訴.” 亦爲有置. 院宇創設, 朝禁截嚴, 而浮浪無賴之類, 假托作弊, 大係不法乙仍于. 向因本邑所報, 有所嚴加禁斷矣, 今見狀辭, 則此輩終不知戢依舊跳踉, 有此歛錢建宇之舉, 其弁髦禁令之狀, 萬萬痛駭. 此等怙終之輩, 若不別樣嚴繩, 則何以懲他是乙諭? 到關卽時, 同主事諸人, 一併捉囚, 嚴查報來, 以爲勸處之地, 宜當向事.

같은 날. 사사로이 원우(院宇)를 설립하지 말라는 일로 광주목에 관문을 발송하였다.

【관문】상고할 일. 이번에 광주목의 유학(幼學) 고제겸(高悌謙)이 연명으로 소지를 올린 것을 받아보니, ‘저희들의 선조 총렬공, 효열공, 의열공, 월봉공의 곧고 충성스러운 큰 절개는 이미 존중받고 기림을 받아 마을에 정려하고 서원에 편액을 하였기에 가히 남은 회한이 있지 않습니다만, 뜻밖에 요즘 도내 유생 3,4인이 이름 없는 집을 창설하고 그 제도를 넓히고 크게 하여 오란(五亂)<sup>337</sup>때 충의로운 선비로 일컬으며 2천여 명이 책을 간행하고 판목을 조각하고 단을 세워 제를 행하고 돈푼이나 받은 것이 3만 냥에 이르고, 한 사람이 선창하면 열 사람이 화답하며 그림자처럼 따르지 않은 자가 없다고 합니다. 저희들의 선조가 은혜롭게 사액(賜額)을 받은 서원은 모두 광주목에 있으니 굳이 한 고을에 다시 성과 이름을 쓰고 거둬 설립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연유로 우러러 호소합니다.’ 라고 하였다. 원우 창설은 조정에서 금함이 매우 엄격한데도 떠돌이와 무리배들의 일당이 핑계 대며 폐약을 저지르는 것은 크게 불법에 관계된다.

이전에 본 읍이 보고했던 것으로 인하면 엄격하게 금하고 있는데도 지금 장계의 말을 보면 이러한 무리들은 끝내 옛날 날뛰던 것에 의존하여 그칠 줄을 알지 못하

337) 오란(五亂) : 임진왜란·이괄의 난·정묘호란·병자호란·이인좌란(李麟佐亂)을 말하는데, 이때 절개와 의리 있는 호남사람들의 사적을 기록한 책이 『호남절의록(湖南節義錄)』이다. 또 당시 충절을 몸으로 실천한 광주·전남 지역의 충의 열사들의 사적을 모은 『광주전남 오란충의사록(光州全南 五亂 忠義士錄)』을 광주전남충의사현창회(光州全南忠義士顯彰會)에서 1992년에 발간하기도 하였다.

고 이렇게 돈을 거두고 사우를 건립하는 일이 있으니, 금령을 쓸모없는 것으로 여기는 상황이 통탄할 일이다. 이와 같은 호종(恟終)의 무리들을 만약 보통과는 다르게 엄하게 바로잡지 않는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징계할 수 있겠는가? 관문이 도착하는 즉시 함께 일을 주동했던 사람들을 모두 잡아 가두고 엄하게 조사 보고하여 처단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마땅할 일.

初三日. 興陽縣監, 入見辭去. 靈光郡守金亂根、樂安郡守韓啓轍來見.

3일. 흥양 현감이 입견하여 하직하고 갔다. 영광 군수 김란근·무안 군수 한계철이 와서 보았다.

初四日. 樂安郡守入見辭去. 茂朱府使李光承來見, 仍爲辭去. 咸平縣監金箕祖、谷城縣監任禹常、和順縣監徐承淳、南平縣監林迥鎭、潭陽府使曹錫玄、泰仁縣監沈能淑來見. 靈光郡守入見辭去.

4일. 낙안 군수가 입견하여 하직하고 갔다. 무주 부사 이광승이 와서 보고 그대로 하직하고 갔다. 함평 현감 김기조·곡성 현감 임우상·화순 현감 서승순·남평 현감 임형진·담양 부사 조석현·태인 현감 심능숙이 와서 보았다. 영광 군수가 입견하여 하직하고 갔다.

同日. 以運米事, 發關各邑.

【關文】爲相考事. 卽到備邊司啓下關內, “畿甸年形, 又此荐歉, 國計益致艱匱, 施濟其猶病諸, 已不勝憂悶, 而惠廳之料祿頒放, 貢米上下, 亦將排計不得云, 亟行移粟之政, 然後庶可爲一分球濟之道, 而外道穀摠, 通患不敷, 糶餉之留庫旣尠, 耗條之割本且多, 勢不可不均廳年例作錢耗穀, 本色船運, 俾爲支用” 亦爲有條. 一時到付均役廳關內, “本廳勾管穀耗條, 折米一萬二千九百八十六石六斗, 勿爲作錢, 開倉卽時, 董飭捧上, 待京江船下去, 星火裝運上納爲乎矣, 此是料祿, 貢米所需, 事體與他有異. 穀品則另擇精實, 石子則務從堅緻, 俾無點退生事之弊爲條. 如是別飭之後, 穀品如或麤劣是去乃, 斛內又或不完, 則當該邑倅及差員, 斷當狀聞論勸. 以此意措辭, 別

飭於列邑爲<sub>旆</sub>, 騎船監色<sub>段</sub>置, 必以有根着勤實可合者擇定, 毋或有一毫疎忽之弊”亦爲有<sub>置</sub>. 今以京司支計之艱匱, 有此筵稟移粟之舉, 廟堂行會, 均廳關辭, 若是申復, 營邑只當殫竭, 奉行而已. 穀物裝載都會所, 定於羣山、法聖兩處, 領運差使員, 從當發關, 知委是在<sub>果</sub>. 同移轉米, 叅互穀摠多寡, 較量出浦程途, 分排後錄, 發關爲去<sub>乎</sub>, 今此移轉, 卽是料祿頒放, 貢米<sub>上下</sub>之需, 事體尤爲自別. 米色則務從十分精鑿, 斛內則必須, 準完無欠, 毋至上納時, 點退生梗之地爲<sub>旆</sub>. 石子<sub>段</sub>置, 預先知委, 必以細網貼石, 各別精緻, 俾無一粒穀滲漏之弊爲<sub>乎</sub>矣. 本道民力, 積瘁於昨年畿運, 而今又重責此役, 宣出於萬不獲已, 係是大同之役, 則只可分勞並力 不可使近浦還民, 偏被其害, 境內還戶<sub>良</sub>中, 抄出大中小戶, 各其所納元還, 幾許內, 幾許以移轉米, 畧綽分排, 箇箇以精白者, 一齊輸納于便近浦口倉, 準數都捧後, 別定地土船, 輸致于差員運載所, 受回移考還爲<sub>旆</sub>. 騎船監色<sub>段</sub>, 另擇有根着勤實可合者, 使之領騎而捧還, 斛子各一坐亦爲載去爲<sub>旆</sub>. 以昨冬牟租運納時言之, 穀品麤劣, 斛內不完, 畢竟至於欠縮生頗之舉, 今番則除尋常, 另加察飭, 毋或有一毫疎忽<sub>大段</sub>生梗之弊爲<sub>旆</sub>. 關到日時, 舉行刑止, 亦卽馳報宜當<sub>向</sub>事. 光州<米五百石>、綾州<米四百石>、長興<米五百石>、順川<米六百石>、寶城<米六百石>、樂安<米四百石>、光陽<米六百石>、唐津<米三百石>、南平<米四百石>、求禮<米五百石>、興陽<米六百石>、羅州<米六百石>、礪山<米五百石>、靈光<米六百石>、靈巖<米六百石>、玆島<米三百石>、古阜<米五百石>、金提<米五百石>、臨陂<米五百石>、萬頃<米二百石>、沃溝<米二百石>、咸悅<米五百石>、扶安<米二百石>、興德<米五百石>、井邑<米二百石>、茂長<米三百石>、務安<米五百石>、海南<米二百石>、咸平<米五百石>、龍安<米二百石>、益山<米三百石>、金溝<米二百石>、已上米一萬三千五百石內.<一萬二千九百八十六石六斗元納, 五百十三石九斗船價添補次.>

같은 날. 쌀을 운송하는 일로 각 읍에 관문을 발송하였다.

【관문】상고할 일. 이번에 도착한 비변사의 계하에, “경기지역의 농사형편이 또 이렇게 거듭 흉년들어 국가의 회계가 다 고갈되어 더욱 어렵게 되니 벼풀어 백성을 구제하는 것은 오히려 국가에 병통이 되어 이미 이루 다할 수 없는 걱정과 근심이다. 선혜청의 요록미(料祿米)<sup>338</sup>와 공미(貢米)의 출납 또한 장차 배정(排定)하여 회계할 수 없다고 한다. 빨리 곡식을 옮기는 정책을 시행한 연후에야 아마도

338) 요록미(料祿米) : 봉급으로 내주는 쌀을 말한다.



조금이나마 구제하는 방도가 될 것인데, 외방의 곡식 총수가 넉넉하지 못하여 환곡으로 내어줄 양식은 창고에 보관된 것이 이미 적고 모조(耗條)가 원곡을 갠아먹는 것도 또한 많으니 형편상 균역청은 연례적으로 돈으로 만드는 모곡을 본색(本色)으로 배에 실어 운송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라” 하셨다.

동시에 도착한 균역청 관문에, “본청이 맡아 관리하는 곡모조(穀耗條)의 절미(折米) 1만 2천9백 8십6석 6두는 돈으로 만들지 말고 창고를 여는 즉시 감독하고 신척하여 거둬들이고, 경강선이 내려가는 것을 기다려 급히 꾸러 운송하여 올려 납부하되, 이것은 요록미와 공미(貢米)에 필요한 바이니 사체가 다른 것과는 다르다. 곡의 품질은 따로 정실(精實)한 것으로 뽑아내고 가마니는 될 수 있는 대로 견고하고 치밀함을 좇아서 점고하여 퇴짜를 맞는 폐단이 없게 하라. 이와 같이 특별히 신척한 뒤에도 곡식의 품질이 만약 흑시라도 거칠고 졸렬하거나 곡자(斛子) 안이 흑시라도 완전하지 않다면 해당 읍의 수령과 차원은 결단코 장계로 아뢰어 논죄하여 처벌할 것이다. 이러한 뜻으로 글을 지어 특별히 열읍에 신척하라. 기선감색(騎船監色)들도 반드시 읍에 뿌리내려 부지런하고 신실하여 합당함이 있는 자를 가려 정하여 흑시라도 털끝만큼이라도 소홀히 하는 폐단이 있지 않게 하라” 하셨다.

지금 경사(京司)의 수입과 지출이 어려워 이렇게 곡식을 옮기는 일을 상주(上奏)하여 의정부가 행회(行會)하여, 균역청의 관문 내용으로 이와 같이 거듭 신척하니 영(營)과 읍(邑)은 오로지 마땅히 힘을 다하여 봉행해야 할 뿐이다. 곡물을 꾸러 싣는 도회소는 군산과 법성진 두 곳에 정하고 영운차사원은 뒤에 마땅히 관문을 발송하여 알릴 것이다.

이 이전미(移轉米)는 곡물 총량의 많고 적음을 참조하고 고을에서 포구까지의 거리를 비교하여 분배한 후 후록하여 관문을 발송한다. 지금 이렇게 옮기는 쌀은 녹봉(祿俸)을 주고 공미(貢米)를 지출하는 수요이니 사체가 더욱 자연 구별된다. 본색(本色, 미곡)은 될 수 있는 대로 충분히 엄밀하게 쏘여야 하고 곡자(斛子) 안은 모름지기 정밀하고 완벽하게 흠결이 없게 하여 상납할 때에 점검하여 퇴짜 맞는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라. 가마니들도 미리 먼저 통지하여 반드시 가는 망으로 섬을 엮고 각별히 세세하게 동여매어 한 알의 곡식이라도 빠져나와 새는 폐단이 없게 하라.

본도 백성의 힘이 작년 경기도에서 곡물 운송에 피로함이 쌓였고 지금 또 이 일

에 막중한 책임은 오로지 만부득이함에서 나와 대동법의 일에 관계되니 오직 수고로움을 나누고 힘을 함께하는 것이 좋고 포구 가까운 환민에게만 치우쳐 그 피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경내의 환호(還戶)들 가운데서 대중소 호(戶)로 가려내고 각 그들이 납부할 원 환곡의 몇 쯤 내어 쌀을 운반할 것이 얼마쯤인지 대략 넉넉하게 나누어 배당하고 개개 정밀하고 깨끗한 것으로 일제히 편리하고 가까운 포구의 창고에 운반하여 들이고 수효에 맞게 모두 거둬들인 뒤에 별도로 지토선(地土船)을 정하여 차원이 실어 운반할 곳에 운송하고, 회이(回移)를 받아 대조하라.

기선감색(騎船監色)은 별도로 뿌리를 내려 부지런하고 신실하여 합당함이 있는 자를 가려 그로 하여금 기마로 영도(領導)하여 환곡을 받아들이게 하고 곡자(斛子) 각 1개도 실어 보내라. 작년 겨울에 보리와 벼를 운반하여 받아들일 때로 말하면 곡물의 품격이 거칠거나 졸렬하고 곡자 용량이 완전하지 않으면 끝내 부족하여 탈이 일어나는 경우에 이르렀으니 금번은 대수롭게 여기지 말고 특별히 살피고 신칙하여 흑시라도 털끝만큼이라도 소홀함을 두어 큰 탈이 일어나는 폐단이 없게 하라. 관문이 도착하는 날짜와 거행한 전말을 또한 급히 보고함이 마땅할 일.

광주<쌀 5백석>, 능주<쌀 4백석>, 장흥<쌀 5백석>, 순천<쌀 6백석>, 보성<쌀 6백석>, 낙안<쌀 4백석>, 광양<쌀 6백석>, 당진<쌀 3백석>, 남평<쌀 4백석>, 구례<쌀 5백석>, 흥양<쌀 6백석>, 나주<쌀 6백석>, 여산<쌀 5백석>, 영광<쌀 6백석>, 영암<쌀 6백석>, 진도<쌀 3백석>, 고부<쌀 5백석>, 김제<쌀 5백석>, 임피<쌀 5백석>, 만경<쌀 2백석>, 옥구<쌀 2백석>, 함열<쌀 5백석>, 부안<쌀 2백석>, 흥덕<쌀 5백석>, 정읍<쌀 2백석>, 무장<쌀 3백석>, 무안<쌀 5백석>, 해남<쌀 2백석>, 함평<쌀 5백석>, 용안<쌀 2백석>, 익산<쌀 3백석>, 금구.<쌀 2백석> 이상 쌀 1만 3천5백 석.<1만 2천9백8십6석 6두는 원래 납부할 것이고, 5백13석 9두는 선가(船價)를 보충하기 위함.>

初五日. 潭陽府使、泰仁縣監、谷城縣監、咸平縣監, 入見辭去. 和順縣監、南平縣監, 入見. 高敞縣監李鐘應、興德縣監金命嫻來見. 伊夜和順縣監、南平縣監又爲入見.

5일. 담양 부사·태인 현감·곡성 현감·함평 현감이 입견하여 하직하고 갔다. 화순 현감·남평 현감이 입견하였다. 고창 현감 이종응·흥덕 현감 김명혁이 와서 보았다. 그날 밤 화순 현감·남평 현감이 또 입견하였다.

初六日. 高敞縣監、和順縣監、南平縣監、興德縣監, 入見辭去. 古羣山僉使金寬善, 來謁辭去. 茂長縣監尹興圭來見.

6일. 고창 현감·화순 현감·남평 현감·흥덕 현감이 입견하여 하직하고 갔다. 고군산 첨사 김관선이 와서 보고 하직하고 갔다. 무장 현감 윤흥규가 와서 보았다.

初七日. 中營將入見. 法聖僉使鄭泰東來見.

7일. 중영장이 입견하였다. 법성진 첨사 정태동이 와서 보았다.

初八日. 法聖僉使入見辭去. 茂長縣監入見. 濟原察訪金熙適來見.

8일. 법성 첨사가 입견하여 하직하고 갔다. 무장 현감이 입견하였다. 제원(濟原) 찰방 김희유(金熙適)가 와서 보았다.

初九日. 茂長縣監、濟原察訪, 入見辭去. 金承旨正喜, 迎候親駕, 歷抵于此, 故往見于下處, 還營軒. 益山郡守李源吉、臨陂縣令李宜翼、槥樹察訪田栽五來見. 判官入見.

9일. 무장 현감·제원 찰방이 입견하여 하직하고 갔다. 승지 김정희(金正喜)가 부친의 행차를 영접하여 여기에 이르렀기<sup>339)</sup> 때문에 머물고 있는 곳으로 가서 만나고 영현으로 돌아왔다. 익산 군수 이원길·임피 현령 이의익·오수 찰방 전재오가 와서 보았다. 판관이 입견하였다.

同日. 題全州府檢案.<被告柳召史, 督債朴千卜<sup>340)</sup>, 以致服毒自戢事. 初檢官全州判官李羲平, 覆檢官臨陂縣令李宜翼.>

【題】屍帳捧上是在果. 殺越重獄也. 審克之義爭以毫釐是如乎. 此獄之所當辨者, 卽

339) 승지……이르렀기 : 김정희(金正喜 1786~1856)의 생부인 김노경(金魯敬 1766~1837)이 1830년 삼사와 의정부의 탄핵을 받아 강진현 고금도(古今島)에 위리안치(圍籬安置) 되었다가 1833년 귀양에서 풀려났다. 이때 김정희가 아버지를 모시고 서울로 가던 중 전주에 머무른 것을 말한다.

340)朴千卜 : 아래 내용에 '복천(卜千)'이 두 번 나오는 것으로 보아 '박복천(朴卜千)'의 오기(誤記)인 듯하다.

被毆與服毒之間，而反覆兩案，轉隔九疑。以言乎脉錄，則腿肩脇臂，雖非要害之處，而皮磨皮脫痕損，則自在矣。以言乎詞證，則錢沓私和之說，屢次盤覈，終未究竟是遣。致死人朴卜千，卽至貧無依之類，避債他去，家產盡奪之後，四壁徒立，一文難辦是去乙，何處討錢，何處買砒是加隱喻？貸錢者必有其人，賣砒者亦有其人，此一款到底查實然後，始可爲服毒之證左是置。兩檢官，仍定會查官爲去乎，當日會坐，應問各人等處，發問目查究，如前除良，捧的招以報爲旆。雖以屍親招辭言之，渠夫往詰朴哥，少馬還來，謂以牽痛頰卧，嘔吐在傍之器，都是酒臭云者，有若歸家之前先爲服砒，歸家之後藥毒始發者。然而着證魯萬哲供招段，卜千嘔吐之時，在傍小器，餘滓尚存，明是砒礪云爾，則死者服毒，的在還家之後矣。厥妻既已在傍目覩，則其矣供辭，胡不指的？納招但以燒酒云云，隱暎爲說是旆，其兄亦無不知之理，而忙忙告官云，以死由被打是乙喻，此亦到底窮查，論理牒報爲旆，屍體段卽爲出給埋瘞，宜當向事。

같은 날. 전주부 검안을 데김하였다.<피고 유조이[柳召史]는 박복천(朴卜千)에게 빚 독축을 하여 독약을 먹고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한 일. 초검시관은 전주 판관 이희평, 복검시관은 임피 현령 이익익.>

【데김】시장(屍帳)을 받아 보았다. 살인은 중요한 옥사이다. 충분히 조사한 뜻이 아주 근소한 차이로 쟁점이 된다고 한다. 이 옥사가 마땅히 판단해야 할 것은 바로 맞은 것과 독약을 먹은 사이에서 두 사안을 반복하여 보면 더욱 의심스러워 분간하기 어렵다. 검안기록으로 말한다면 넓적다리 어깨 겨드랑이 볼기 등이 비록 급소는 아닐지라도 살가죽이 닳아지고 벗겨진 상흔은 절로 있는 것이고, 증언으로 말한다면 돈과 논에 대한 송사를 개인적으로 좋게 풀었다는 말은 누차 캐물었어도 끝내 다 파악하지 못하였다. 죽은 박복천(朴卜千)은 바로 지극히 가난하여 의지할 데 없는 부류로 빚을 피하여 다른 곳으로 갔고 가산을 모두 뺏긴 뒤에 집안이 네 벽뿐일 정도로 가난하여 한 푼도 갖고 있기가 어려웠을 텐데 어느 곳에서 돈을 마련했으며 어느 곳에서 비상(砒霜)을 샀겠는가? 돈을 빌렸다는 것은 반드시 돈을 빌려 준 사람이 있어야 하고 비상을 판 사람도 또한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일체의 조항(條項)을 살살이 사실대로 조사한 뒤에야 비로소 독약을 먹은 증좌(證左)가 된다.

양 검시관을 그대로 조사관으로 정하니 당일 함께 모여 응당 심문해야 할 각 사람 들에게 문목(問目)을 내어 자세하게 조사하여 이전 같이 하지 말고 정확한 진

술을 받아 보고하라. 비록 시친의 공초로 말할지라도 그의 남편이 가서 박사(朴哥)를 힐난하고 작은 말을 갖고 돌아와서 끌고 오는 고통으로 쓰러져 누우며 곁에 있는 그릇에 구토하였다고 말하는 것은 모두 지독히 술에 취하여 말한 경우이다. 만일 집에 돌아오기 전에 먼저 비상을 복용하였다면 귀가한 뒤에 약의 독이 비로소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증인 노만철(魯萬哲)의 공초(供招)에는 박복천이 구토할 때 곁에 있는 작은 그릇에 남은 찌꺼기가 있어 분명히 비상(砒霜)이라고 말하니 죽은 자가 독을 먹은 것은 분명히 집에 돌아온 뒤이다.

그의 처가 이미 곁에 있어 목도하였으니 노만철이 진술한 말이 어찌 사실을 가리키는 것 아니겠는가? 받은 진술은 다만 소주(燒酒)를 운운하며 애매하게 말하고 그의 형 또한 알지 못할 리가 없는데도 허둥지둥 관아에 고했다고 말하니 죽은 이유를 타살로 하겠는가? 이것 또한 살살이 끝까지 조사하고 이치를 따져 첩보하라. 시체는 바로 내주어 묻게 하는 것이 마땅할 일.

初十日. 往見金承旨下處還營軒. 斃樹察訪入見辭去. 高山縣監宋文熙來見.

10일. 승지 김정희(金正喜)가 목고 있는 데로 가서 만나고 영현으로 돌아왔다. 오수찰방이 입견하여 하직하고 갔다. 고산 현감 송문희가 와서 보았다.

同日. 題玉果縣檢案.<被告朴召史, 其夫朱大京, 因醉言詰, 自縊致死事. 初檢官玉果縣監韓致定.>

【題】屍帳捧上是在果. 平昔無反目之跡, 忽地作結頃之舉, 求說不得. 只由酒狂, 浪死何限而未有若此屍之甚是如乎. 驗諸脉錄, 自縊分明, 叅以證招, 亦無疑眩, 不請覆檢, 誠爲得體, 既不成獄, 何論被告, 屍體卽爲出給埋瘞爲旣. 朴召史之再次弄舌, 語其跡, 則雖生厲階, 原其情則豈有惡意? 叅酌放送爲旣. 其子不告, 其弟不告是去乙, 面任之替當發告, 無事生事, 昧例除良, 亦關後弊, 嚴杖二十度, 並與保授諸人, 一體放送, 宜當尙事.

같은 날. 옥과현 검안을 데김하였다.<피고 박조이[朴召史]는 자기 남편 주대경(朱大京)이 술 취한 이유로 다투어 남편이 목을 매 죽은 일. 초검시관은 옥과 현감 한치정.>

【데김】시장(屍帳)을 받아 보았다. 평소 반목의 흔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목을 맨

것은 설득력이 없다. 다만 술 취한 사람의 미친 것 같은 주정으로 헛된 죽음이 어찌 한 둘이겠는가 마는 이 죽음같이 심한 경우는 있지 않았다. 검시기록을 살펴보니 스스로 목을 맨 것이 분명하고 증거와 진술을 참조한 것도 또한 의혹될 것이 없으니 복검을 청하지 아니한 것은 진실로 당연하다. 이미 옥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어찌 피고를 논하겠는가? 시체는 바로 내주어 묻게 하라.

박조이가 거듭 쓸데없이 말을 지껄여서 남편의 행적을 말한 것이 비록 재앙을 받을 빌미를 만들었을지라도 그러한 정리(情理)의 근원이 어찌 악의가 있었겠는가? 참작하여 석방하라. 죽은 자의 아들이 관에 알리지 않았고 그의 동생도 관에 알리지 않았는데 면임(面任)이 대신 발고(發告)를 해야만 했다. 일없을 일이 탈이 난 것은 관례(慣例)에 어두웠을 뿐더러 또한 뒷날의 폐해에 관계되니 면임을 엄하게 장형 20대를 하고 아울러 보수(保授)한 모든 사람들도 일체 내보냄이 마땅할 일.

十一日. 食後, 朔膳進上監封. 高山縣監入見辭去.

11일. 식후에 삭선(朔膳)할 진상품을 감봉하였다. 고산 현감이 입견하여 하직하고 갔다.

同日. 以運米事, 發關高敞縣.

【關文】爲相考事. 卽到備邊司啓下關內, “畿甸年形又此荐歉, 國計益致難匱, 施濟其猶病諸, 已不勝憂悶, 而惠廳之料祿頒放, 貢米上下, 亦將排繼不得云, 亟行移粟之政然後, 庶可爲一分救濟之道, 而外道穀摠, 通患不敷, 糶餉之留庫既勘<sup>341)</sup>, 耗條之割本且多, 勢不可不均廳年例作錢耗穀, 本色船運, 俾爲支用” 亦爲有旆. 一時到付均役廳關內, “本廳旬管穀耗條, 折米一萬二千九百八十六石六斗, 勿爲作錢, 開創卽時, 董飭捧上, 待京江船下去, 星火裝運上納爲乎矣. 此是科祿貢米所需, 事體與他有異. 穀品則另擇精實, 石子則務從堅緻, 俾無點退生事之弊爲旆. 如是別飭之後, 穀品如或麤劣是去乃, 斛內又或不完, 則當該邑倅及差員, 斷當狀聞論勘. 以此意措辭, 別飭於列邑爲旆. 騎船藍色戾置, 必以有根着勤實可合者擇定, 毋或有一毫疎忽之弊” 亦爲有置. 今以京司支計之艱匱, 有此筵稟移粟之舉, 廟堂行會, 均廳關辭, 若是申復, 營邑只當殫竭奉行而已. 穀物裝載都會所戾, 定於羣山法聖兩處, 領運差使員戾, 以縣

341) 勘 : 10월 4일 같은 내용에 ‘渺’으로 되어 있고 의미상 통하므로 ‘渺’으로 고쳐 번역하였다.

監差定是遣, 各邑分排米邑名石數, 後錄發關爲去乎. 舟橋船隻, 從當下來, 待更知委, 縣監卽爲馳往于裝載都會所, 各邑分排米, 待其船運來, 到必以精實米準捧爲有如可, 舟橋船齊到, 卽時量宜, 分載於各船後, 裝發形止, 一依稅穀例, 消詳開錄, 修成冊牒報, 以爲毋滯啓聞之地爲旆. 各該邑騎船監色, 必以有根着可合者, 領騎, 各邑捧還, 斛子各一坐亦爲載去爲乎矣. 今此移轉米, 卽是料祿頒放, 貢米上下之需, 事體尤爲自別. 米色則務從十分精鑿, 斛內則必須, 準完無欠, 毋至上納時, 點退生梗之弊爲旆. 石子段置, 以細網貼石, 各別精緻, 俾無一粒慘漏之弊爲旆. 各邑分排米所載船隻, 如或愆期是去等, 這這文移催促, 某邑米幾石所載船, 某日到泊, 某日監封是如, 陸續馳報, 以爲憑處之地爲旆. 船價段, 自法浦至京江, 每石爲三斗, 自羣山至京江, 每石爲二斗五升, 故元納外, 加數磨鍊爲去乎, 並須知悉爲旆. 同米分排邑中, 礪山等十邑段, 爲其程途便近, 輸致于羣山鎮, 使該僉使, 另飭監捧事, 今方發關, 知委是如乎, 特其畢捧縣監, 馳往該鎮十邑, 所納米更爲斛量裝載爲旆. 其餘光州等二十二邑, 穀捧上之節, 依關辭, 各別惕念舉行, 毋至一毫疎忽, 大段生事之地爲旆. 關到日時, 舉行形止, 亦卽馳報, 宣當尙事.<後錄上同.>

같은 날. 쌀을 운반하는 일로 고창현에 관문을 발송하였다.

【관문】 상고할 일. 이번에 도착한 비변사의 계하 관문에, “경기지역의 농사형편이 또 이렇게 거듭 흉년들어 국가의 회계가 다 고갈되어 더욱 어렵게 되고 벼풀어 백성을 구제하는 것은 오히려 국가에 병통이 되어 이미 이루 다 할 수 없는 걱정과 근심이다. 선혜청의 녹봉을 나누어 주는 것과 공미(貢米)의 출납 또한 장차 계속 배정(排定)할 수 없다고 하니 빨리 곡식을 옮기는 정책을 시행한 연후에야 아마도 조금이나마 구제하는 방도가 될 것이다. 외방의 곡식 총수가 넉넉하지 못한 것이 걱정이고 창고에 보관된 환곡미가 이미 적고 모조(耗條)가 원곡을 갠아먹는 것도 또한 많다. 형편상 균역청은 연례적으로 작전하는 모곡(耗穀)을 본색(本色)으로 배로 운송하여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 하였다.

또 같이 도착한 균역청 관문에, “본청이 맡아 관리하는 곡모조(穀耗條)의 절미(折米) 1만 2천9백8십6석 6두는 돈으로 만들지 말고 창고를 여는 즉시 감독하고 신칙하여 받아들여, 경강선이 내려가는 것을 기다려 급히 꾸려 운송하여 상납하되, 이것은 요록미(料祿米)와 공미(貢米)에 필요한 바이니 사체가 다른 것과는 다

르다. 곡물의 품질은 특별히 정실(精實)한 것으로 뽑아내고 가마니는 될 수 있는 대로 견고하고 치밀함을 좇아서 점고하여 퇴짜 맞는 폐단이 없게 하라.

이와 같이 특별히 신칙한 뒤에도 만약 흑시라도 곡식의 품질이 거칠고 졸렬하거나 곡자(斛子) 안이 완전하지 않다면 해당 읍의 수령과 차원은 결단코 장계로 아뢰어 논죄하여 처벌할 것이다. 이러한 뜻으로 글을 지어 각 읍에 특별히 신칙하라. 기선감색(騎船監色)들도 반드시 뿌리내려 부지런하고 신실하여 합당함이 있는 자를 가려 정하여 흑시라도 털끝만큼이라도 소홀히 하는 폐단이 있지 않게 하라” 하였다.

지금 경사(京司)의 수입과 지출이 다 비어 어려워 이렇게 곡식을 옮기는 일을 경영에서 상주(上奏)하여 의정부의 행회(行會)와, 균역청의 관문 내용이 이와 같이 거듭 신칙하니 영(營)과 읍(邑)은 오로지 마땅히 힘을 다하여 봉행해야 할 뿐이다. 곡물을 꾸러 실는 도회소는 군산과 법성진 두 곳에 정하고 영운차사원은 현감으로 차정하고 각 읍에 나누어 배당한 쌀과 읍명과 곡식 섬수는 문서 뒷부분에 기록하여 관문을 발송한다. 주교선이 곧 내려오면 다시 통지하기를 기다려라. 현감은 바로 꾸러 실는 도회소로 달려가 각 읍에 나누어 배당한 쌀을 배가 내려오기를 기다려 도착하면 반드시 정밀하고 실한 쌀로 기준하여 받아들였다가 주교선이 모두 도착하면 즉시 잘 헤아려 각 배에 나누어 실은 뒤에 꾸러 발송한 전말을 한결 같이 세곡(稅穀)의 법식에 의거하여 자세하게 기록하여 첩보하여 임금께 아뢰어 지체되지 않도록 하라.

각 해당 읍의 배를 탄 감색은 반드시 읍에 뿌리를 내려 합당함이 있는 자로 배에 타서 영도하게하고, 각 읍의 환곡을 거둬들일 때 사용하는 곡자(斛子) 각 한 개씩을 또한 실어 보내게 한다. 지금 이렇게 쌀을 운반하는 것은 바로 녹봉을 나누어 주는 것과, 공미(貢米)로 지출되는 수요이니 사체가 더욱 다르다. 쌀 색은 될 수 있는 대로 충분히 정밀하게 쏘여야 하고 곡(斛)내는 반드시 정밀하고 완전하여 흠결이 없게 하여 위로 바칠 때에 점검하여 퇴짜 맞는 폐단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 가마니들도 반드시 가는 망으로 섬을 엮고 각별히 세세하게 동여매어 한 알의 곡식이라도 빠져나와 새는 폐단이 없게 하라.

각 읍에 나누어 배당한 쌀을 실은 선박이 만일 흑시라도 기한을 어기거든 날날이 공문을 보내어 재촉하고 모(某) 읍 쌀 몇 섬을 실은 배가 모일 도착하여 모일



감봉하였다고 계속 치보하여 상황을 이에 근거해 처리할 수 있게 하라. 세곡 운반의 뱃삿은 법성포로부터 경강까지는 매 1섬에 3두로 하고 군산에서 경강에 이르기까지는 매 1섬에 2두 5승이므로 원래 납부할 것외에 수효를 더하여 마련하니 아울러 모두 자세히 알아야 한다.

이 쌀을 배분한 읍 가운데 여산 등의 10읍은 그 길이 편리하고 가깝기 때문에 군산진에 운송하는 것은 해당 첨사로 하여금 별도로 신칙하여 감봉(監捧)하게 하는 일로 지금 막 관문을 발송하였으니 잘 알도록 하라. 다만 다 받아들이는 현감은 해당 진(鎭)의 10읍으로 달려가 받아들이는 쌀을 다시 곡자로 헤아려서 꾸려 실어라. 그 나머지 광주 등 22읍의 곡식을 받아 올리는 절차는 관문의 내용에 의거하여 각별히 명심해서 거행하여 털끝만큼이라도 소홀하게 하여 큰 탈 일어나지 않게 하라.

관문이 도착하는 날짜와 거행한 사실의 전말을 또한 급히 보고함이 마땅할 일.  
<후록은 앞과 같음.>

十二日. 萬頃縣令尹守澈來見. 判官、臨陂縣令入見.

12일. 만경 현령 윤수철이 와서 보았다. 판관·임피 현령이 입견하였다.

同日. 封年分狀啓.

【狀啓】道內農形, 備陳於前後狀聞中是白在果. 臣於巡部之行, 雖未及遍審全省, 而從左迤右, 由峽至沿, 歷路災實, 一一覩記是白遺. 若其污僻未到處, 分遣耳目, 屢回看審, 叅互邑牒, 多歧探察, 農形之此優彼劣, 槩有所領略是白如乎. 今年穡事, 俶載之初, 時雨頻, 播種無愆立苗, 既臧至于春夏之交, 畦畦水盈, 秧苗茁長, 移插之役, 庶有及時之喜是白加尼. 自四月念間, 雨澤稍闕, 夏至前後, 一直亢旱, 泉源斷流, 秧坂駁折, 提狀引漑之畚, 洞谷生水之地, 雖或有移插處, 而此不過什之二三是白遺. 其地形稍底, 不甚堅垆處, 或以抹插或用桔槔, 積費入功, 艱辛移秧而未及着根, 旋即焦枯, 至若原野高燥, 濱海斥鹵之地, 一望曠乾, 便成不毛, 而五月晦前, 數次微雨, 鋤浥而止, 無異沃焦是白乎所, 古阜、茂朱、臨陂、金溝、全州、光陽、高敞、雲峯、沃溝、求禮、長水、珣山、井邑、咸悅、鎭安、龍安、金堤、珣島、樂安、茂長、萬頃、務安、南原、扶安、興德、益山、綾州、泰仁、谷城、錦山、礪山、順天、興陽、高山、龍潭、靈巖、玉果、咸平、任實、長城、羅州、潭陽、寶城、靈光、淳昌、長興、

法聖等四十七邑鎮<sub>段</sub>，圭壁屢薦，靈應愈邈。臨陂、沃溝、扶安、古阜、金提、萬頃、咸悅等七邑<sub>段</sub>，旱氣所釀，蟲災滋蔓，田種畚稼，啞食殆盡，此時民情之遑急，不啻如焚如惓，靡所止屆是白如可，六月初五日，始得一霈，而初庚已過，秧節晚晚是白乎矣。特以南方氣候之不并以北，或意其尚可食實，罔夜董飭於得雨，各邑使之助糧借牛，悉心勸相，毋論高低，期於畢移，俾無片土陳棄之歎是白乎乃。不但人力不逮拖，至中庚之後，亦緣秧苗枯損，輒多不足之患，間間有全庫未移處，而癘疫流亡，仍致陳荒者，亦多有之是白如乎。通計一省，晚移洽爲什之六七，而如干旱移者，亦皆積月惱旱，蘇醒差遲。未秋之前，已料其減却幾分，若得嗣後之雨暘調適，災眚不侵，則豐固斷望，尙庶幾少康之年是白加尼，不料喜雨之餘，旋又惜乾，移插之秧，未及向青而隨即乾涸，仍不茁茂，加之以蟬虫，闖發禾苗，蹲縮。樂安、順天、長城、綾州、珣島、高敞、求禮、靈巖、康津、興陽、茂朱、咸平、和順、寶城、靈光、南原、長水、光州、長興、谷城等二十一邑，被災雖有淺沈，起滅恰過望念，及至七月風雨之後，始爲洗滌寢息是白遭。萬頃、沃溝、金提、茂長、法聖等五邑鎮<sub>段</sub>，海潮漲溢，在於各穀胚胎之時，而鹹水浸淹無不被傷是白遭。七月初八日瘴風挾雨，終日震盪舍胎，發穗之禾，稼黍粟結穎，開花之木綿豆太，披靡挨撲有若踐籍之狀，無復回蘇之望。而沿海各邑，迅風所擊，怒濤衝溢，防堰潰缺，鹹屑噴灑，往往有一坪全棄處是白乎矣。至若野邑之地勢平行，風力散漫處，雖未可謂全然無損，而幸不至如傍海依山之酷，被災傷桑榆之望，謂在於此是白加尼。伊後首尾一朔，仍成長霖，宿漲未退，新潦復添底下之畚間，多滄瀦消融之患，傍川之地，亦有沈墊汰覆之災是白分叱除良，雖或不日之雨，淒風陰冷，絕無一日暘曝，早移者得雨纔蘇，而水冷之故，蕭索不茂。晚移者，尙帶秧色，貼地不長，而於焉之頃，白露倏過，餘日無多是白乎。乃尙冀其秋候暄暖，霜信差退，則風損雨害之不甚偏被者，猶有晚就之望是白加尼。夫何七晦八初之間，東風連吹，冷雨間作？向之蕭索不茂者，雖已發穗，而顆粒全疎，白颯居半，向之貼地不長者，舉皆含縮不發，縱或有千百一發穗者，亦直立不垂，實穎無望是白在如中。八月初六日，驟雨風雹，交作向熟之早稻，穗粒撲落，含胎之晚稼，莖葉萎蕪，特以雹有條路之故，雖有災傷淺深之別，茂朱、龍潭、錦山、龍安、咸悅、沃溝、興德、高敞、昌平、長城、羅州、茂長、靈光、咸平、法聖等十五邑鎮，或有通一面被災，或有全一坪受損是白遭。八月旬望以後，霖雨少收，日候稍暖，霜信亦隨而差退，九月之初，嚴霜始降，律以常年，未可謂早霜是白乎矣，其奈中庚後，移秧已，不啻失却節候，而霽潦

以浸淹之，風雹以挫闕之？無一休徵，有百災沴，長養不得其時，成就自爾晼晚，未霜之前，發穗亦尠，既霜之後，成實何論？一自霜降之後，請災之報，檢放之訴，不勝其騷擾是白如乎。大抵本道年形，野邑稍勝，沿峽大遜，而所謂稍勝者，率以豐歲，則最爲尤甚，所謂大遜者，論以平年，則俱是恹歉是白遣。評論各穀優劣，則畚穀早稻差勝，中稻次之，晚稻爲劣，田穀豆太爲最，黍粟次之木綿則全道告歉，較甚於丁丑甲戌等年是白乎所，分等大政也，而災實之互錯，莫今年若也。以災則全荒居多，以實則無病不有。一境之內，山野不均，一坪之中，高低懸殊，臣於是，一心警惕，百回斟量，參以報牒，驗以睹聞，分劑一道，定爲三等。靈光等二十邑鎮，置之尤甚，順天等二十三邑，置之之次，光州等十一邑，置之稍實，以備御覽是白在果。竊伏念，檢災之政，上關國計羸紕，下係民生休戚，毫忽之差，漏濫皆罪，似此之歲，尤當十分難慎乙仍于，以關以面飭勵守宰，使之躬行覆審，精抄報概，如或稍違所料，則更加點退，屢次爬櫛，今未移段，已於秋初，逐邑摘奸，先爲執摠是白遣。各年川浦沙段，與他災有異，一入災頃，終不還起 國結歲縮，萬萬悶然，故鈎查隱漏，一一還實是白遣。今災則食實無幾，而猶有穀形者，被災雖甚，而當屬內分者，一併刊削，只從川沙虫雹，消澌枯損之全不掛鎌處，精畧抄執，今始停當是白乎則。昨年畚摠，十四萬六千五十八結三十四負一束，已甲以後，陳廢中，辛卯勸起，一百十三結七十九負九束，壬辰勸起，七十結九十負三束，癸巳權起九十五結五十六負五束，以三年免稅之意，前已狀請，蒙允是白遣。丙申以後，狀聞許頃，舊初不爲九百七十九結七十七負二束，流來報頃之自臣管以今災移施者，爲三千三百九十一結五十八負二束，仍未移爲三千四百二十三結八十負四束，仍川浦爲一千三百十結二十五負五束，仍覆沙爲五百八十四結五十五負四束，丙戌添錄舊災爲一千一百七十七結十三負，合舊災爲一萬八百六十七結九負七束。今年未移爲三千三百十九結九十四負六束，川浦爲四結十四負一束，覆沙爲七十三結七十八負九束，晚移枯損爲六千七百七結二負四束，水沈消澌爲三百十結四十四負五束，虫損爲三百二十一結四十三負六束，風損爲五十結七十七負一束，海溢爲三百六結七十八負九束，雹損爲二百七十二結二負四束，合新舊各樣災爲二萬二千二百三十三結四十六負二束。又有丁亥川之初未降沙者，一千三百九十六結六十一負二束，戊子川之雖爲降沙而，未及起壅者，九百七十八結八十三負，已丑川之降沙而未及起壅者，六百四十三結三十四負七束，庚寅降沙者，九十六結七負九束，辛卯降沙者，八十結八十八負九束，壬辰川浦之雖爲降沙，而未及起壅者，一千九十二結八十負三束，亦以今年災施

行，則并計爲二萬六千五百二十二結二負二束，而以此較看於地部劃下一千九百結，不足爲二萬四千六百二十二結二負二束是白如乎。今此災摠中，除却流來舊災，丁戊己庚辛壬等年川沙，則今災實數，不過爲一萬一千三百六十六結三十六負五束是白乎所。本道畚摠，右道較多，而諸般災損，偏萃於此，又況晚移枯損，無邑不有是白乎，則以若年形，較若災摠，非敢曰十分精約，庶不至一毫濫觴是白置。事目外，不足災二萬四千六百二十二結二負二束，特許劃下教是白乎，則臣謹當宣揚惠澤，塗抹分俵，使被災之民，感頌朝家如傷若保之德意是白乎旒。尤甚邑、被災偏酷之民、目下遑汲之狀，將有渙散之慮，此等處不可無調救尊接之方乙仍于，謹與各該長吏，爛加商確，從便顧恤，計料爲白乎旒。數三條件之關係恤民者，博採物議，旁據已例，亦爲開錄于左爲白去乎，令廟堂稟旨分付爲白只爲，尤甚二十邑鎮<靈光、珣島、寶城、樂安、羅州、錦山、珣山、鎮安、長水、雲峯、全州、興陽、康津、海南、茂長、高敞、咸悅、龍安、沃溝、法聖>，之次二十三邑<順川、南原、長興、茂朱、礪山、益山、古阜、淳昌、靈巖、龍潭、臨陂、萬頃、昌平、任實、玉果、光陽、務安、井邑、咸平、長城、高山、興德、扶安>，稍實十一邑<光州、倭州、潭陽、金溝、南平、和順、同福、谷城、求禮、泰仁、金堤。>

一，還餉法意，至嚴且重，固不敢遽議闊狹，而歉歲之輒請停退，實出於紓民力之意是白乎所。今年則論以年成，固當請停之不暇，而不但還餉之虛留，可悶。以民力言之是白良置，目下雖有寬一分之效，而反爲將來貽弊之瑞，停退一款，勿爲舉論爲白遣。只尤甚、之次邑、尤甚面里分叱，當年新還折半，準折代捧，恐未知何如是白齊？一，辛卯停退所在邑珣島以尤甚災邑，新還亦難準捧，則前停之一時並督事，甚悶然，同辛卯條段，全數仍停，以紓民力，恐未知何如是白齊。一，各年舊還中，己巳未捧條，及庚午壬申停退條，年條既遠，還戶舉皆，流絕指徵無處之由，已有前後道臣之狀聞疏陳是白在果。蓋此舊還，多在於沿海邑鎮，而今年穡事，沿邑尤遜，此時徵捧有非可論。毋論三等邑，依已例仍停是白遣，辛巳壬午丙申條所在邑珣島、咸悅、興陽、海南，以尤邑災邑，新舊還之，一時責捧，其勢末由。上項三年條，亦爲仍停是白遣，高敞，己巳反作條段置，亦無徵捧之路，依已例，仍停恐合事宜是白齊。一，丙子未捧，即己巳以後，還戶流亡指徵無處之穀而虛糜還簿。此所以前後道臣之至請蕩滅，而十數年來無一包所捧，今年段置依已例，仍停恐合事宜是白齊。一，山城軍餉之城邑分捧，自是法典是白乎矣，災民之遠地輸納，勞費不些，在前如此之歲，捧留邑倉，已多其例是白如乎，同軍餉城捧條，毋論三等邑，城下近面，則數納城倉，程途稍間處，捧留邑倉是

白如可, 待明秋, 還納城倉何如是白齊? 一, 己巳停退軍布之蕩減餘數, 尚在十一邑鎮, 而流絕已久, 無處可徵, 今年段置, 依已例, 仍停何如是白齊? 一, 三軍門及樂工保米, 每名所納, 雖爲六斗, 並計雜費, 洽過八斗, 被災軍民, 每患偏苦, 而以錢代納, 便成年例, 今年段置, 尤甚, 之次邑, 保米六斗, 代錢二兩式收捧, 待明春, 上納以爲一分蠲恤之地, 恐未知何如是白齊? 一, 各衙門所納竹物中, 如旗竹長篁竹, 係是兵需所用, 雖不敢舉論, 而至於京外所納箭竹, 皆是沿邑所產, 斫伐輸納之際, 民弊多端. 每年災邑, 有分數蠲減之例, 今年尤甚邑全數, 之次邑折半蠲減, 恐未知何如是白齊? 一, 災邑之罪人編配, 亦爲民弊, 尤甚邑段, 勿定配所是白齊. 一, 推奴徵債擾民可悶, 限明秋防塞是白齊.

같은 날. 연분(年分)에 관한 장계를 써서 봉하였다.

【장계】 도내 농사 형편은 전후의 장계로 모두 진달하였습니다. 신이 도내를 순행하며 비록 전 도내를 모두 살피지는 못했을지라도 좌도로부터 우도에 잇닿고 골짜기로부터 연안가에 이르기까지 지나는 길의 재실(災實)<sup>342</sup>을 하나하나 보고 기록합니다. 궁벽하여 미처 이르지 못한 곳은 이목을 나누어 보내 여러 차례 살피고 읍의 첩보와 상호 대조하며 여러 방면으로 깊이 살펴보고 농형(農形)이 이곳은 우수하고 저곳은 열악함을 대략 짐작하여 알았사옵습니다. 올해 농사는 농작물을 배양하는 처음에 시우(時雨)가 자주 내려 파종에 어려움이 없어 모종이 나오고 봄여름이 바뀔 때까지 잘 되었으며 발두둑마다 물이 차서 모판 모종의 싹이 자라고 이양하는 일은 거의 때에 이르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4월 20일 사이부터 비오는 은택이 점점 막히더니 하지(夏至) 전후까지 줄곧 극심한 가뭄으로 샘 원천의 흐름이 단절되고 모판은 트고 갈라졌습니다. 보(洑)에서 끌어 물을 댄 논과 골짜기에서 물이 나오는 곳은 비록 흑시라도 이양한 곳이 있지만, 이것은 열에 둘, 셋에 불과했습니다. 그 지형이 조금 낮아서 심하게 굳고 마르지 않은 곳은 흑 삼으로 파 문지르고 두레박질하며 비용을 쓰고 힘을 들여 간신히 이양했어도 뿌리를 내리기엔 미치지 못하고 곧바로 타 말라버렸습니다. 벌판의 높고 메마른 곳과 바닷가의 염분이 많은 땅 같음에 이르러서는 한 눈에 보이는 것

342) 재실(災實) : 재결(災結)과 실결(實結)을 말하는데, 재결은 재해를 입은 전지로서 공부상(公簿上)에 면세해야 할 것으로 기록된 것을 말하고, 실결은 피해를 입지 않아서 정상적인 세금을 내야 하는 전지이다.

이 오랜 가뭄으로 곧 불모지가 되었습니다. 5월 그믐 전에 수차 이슬비가 호미를 적시는 정도에 그쳐 옥초(沃焦)<sup>343</sup>와 다름없어 고부·무주·임피·금구·전주·광양·고창·운봉·옥구·구례·장수·진산·정읍·함열·진안·용안·김제·진도·낙안·무장·만경·무안·남원·부안·흥덕·익산·능주·태인·곡성·금산·여산·순천·흥양·고산·용담·영암·옥과·함평·임실·장성·나주·담양·보성·영광·순창·장흥·법성 등 47읍과 진(鎭)은 천지에 제사를 여러 번 하였으나 신의 영험한 반응은 더욱 멀어졌습니다.

임피·옥구·부안·고부·김제·만경·함열 등의 7개 읍은 가뭄으로 생긴 해충의 재앙이 더욱 만연하여 밭에 뿌리고 논에 심은 것은 음식으로 맛보기에는 거의 다 했으니 이러한 때 민정이 허둥거리고 급박함은 마치 불속에서 불타는 것 같을 뿐만 아니라 그칠 곳이 없다가 6월 5일에 비로소 한 번 큰 비가 왔으나 초복이 이미 지나 이양하는 절기에 늦었습니다. 다만, 남방의 기후는 북쪽과 같지 아니하여 흑자는 그것이 아직도 실제로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밤낮 없이 비를 얻는 일에 독촉하고 질책하며 각 읍은 그렇게 하여 식량에 도움을 주고 소를 빌려주며 마음을 다하여 서로 권면하여 높고 낮은 데를 따지지 않고 기어코 모두 이양하여 조각 땅이라도 묵혀 버리는 한탄이 없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인력으로 잡아끌지 못하여 중복(中伏)에 이른 뒤에는 또한 모판 묘가 시들어 상한 연유로 번번이 재용이 부족한 근심이 많고, 간간히 온전한 곳에도 미처 이양하지 못한 곳이 있고, 전염병으로 유랑하고 도망하여 그대로 묵혀 황폐하게 된 곳도 또한 많이 있다고 합니다. 도내 전체를 통틀어도 늦모내기를 한 곳은 10에 6,7이고 일찍 모내기를 한 곳 또한 모두 여러 달 가뭄으로 고통을 받아 회복되는 것이 지체되었습니다.

가을이 되기 전에 이미 얼마의 분량이 줄어들었는지를 헤아려보았는데, 만약 뒤 이어지는 비 오는 날과 맑은 날이 마땅함을 얻어 재앙으로 침범하지 않았다면 풍년은 진실로 바라지 않았으나 거의 조금 좋아지는 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뜻밖의 단비 끝에 바로 또 가뭄으로 애석하게 하니 이양한 모는 미처 푸르지 못하고 곧 가물어 말라 그대로 싹이 번성하지 못하고 거기에 선충(蟬蟲)이 더해져 벼모가 틈을 타서 나올 때 쭈그러들고 줄어들었습니다.

낙안·순천·장성·능주·진도·고창·구례·영암·강진·흥양·무주·함평·화

343) 옥초(沃焦) : 불가(佛家)에서 비유로 쓰는 바다 밑에 있다는 불타는 돌을 말한다. 그 돌 밑은 무간지옥(無間地獄)으로 거기서 나오는 불기운 때문에 물이 모두 말라 버린다고 한다.

순·보성·영광·남원·장수·광주·장흥·곡성 등 21읍<sup>344)</sup>은 재화를 입은 것이 비록 깊고 열음이 있었으나 재앙이 일어나고 없어짐이 보름이나 20일이 넘었고, 7월 풍우가 이른 뒤에 비로소 시들어 가라앉게 됩니다. 만경·옥구·김제·무장·법성 등 5읍진(邑鎭)은 바다의 조류가 넘쳐 각 곡식이 배태(胚胎)한 때에 잔물이 스며들어 해를 당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7월 8일 모진 바람이 비를 끼고 하루종일 흔들어 버의 태(胎)를 없애버렸고 이삭이 팬 벼와 심어놓은 서속(黍粟)의 맏힌 낱알과 꽃이 핀 목화와 콩이 바람에 쓰러지고 밀쳐지고 넘어져 짓밟혀진 모양이 되어 다시 회복할 가망이 없습니다. 연해의 각 읍은 빠른 바람이 치고 성난 물결이 용솨음쳐 넘쳐 제방이 터지고 소금기가 뿜어 뿌려져 왕왕 온 들이 온전히 버려진 곳이 있습니다.

야읍(野邑)의 지세가 평평하고 풍력이 산만한 곳에 이르러서는 비록 전혀 손해가 없다고 말할 순 없을지라도 다행히 바다 옆과 산자락에 있는 지역의 참혹한 피해 같지는 않았으니 재해의 손을 입었으나 뒤늦은 희망이 여기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 뒤 앞뒤로 한 달간 그대로 긴 장마가 되었고 머물러 넘치는 물이 미처 빠지기도 전에 새로운 장마가 다시 낮은 논 사이에 가해지니 물이 괴고 넓게 스며 근심이 많고, 냇가의 지역은 또한 깊게 빠지고 사태(沙汰)로 덮이는 재화가 있을 뿐만이 아닙니다. 비록 혹 하루도 못가는 비일지라도 찬바람과 습한 냉기로 거의 하루도 햇볕을 쬐임이 없어 일찍 이양한 모는 비를 맞고 겨우 소생하였으나 물이 모를 차게 하기 때문에 낱알이 한미하여 무성하지 못하고, 늦게 이양한 모는 아직도 모판의 모양을 띠고 있어 땅에 붙어있지만 자라지 않다가 어언 간에 백로(白露)절기가 어느새 지나 남은 날이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가을 기후가 따뜻해지기를 바라고 서리 소식이 조금 늦춰진다면 바람으로 훼손되고 비로 상한 모가 매우 심하게 해를 입지 않은 것이 늦게라도 이루기를 바라는 희망입니다. 대저 어찌하여 7월 그믐과 8월 초 사이에 동풍이 연이어 불고 찬비가 그 사이에 내렸는가? 저번에 심은 낱알이 한미하여 무성하지 않게 된 경우는 비록 이미 팬 이삭일지라도 낱알이 모두 성글고 쪽정리로 시든 것이 거의 반이고, 저번에 땅에 심었어도 자라지 않게 된 경우는 대개 머금고 오므라들어 이삭이 패지 않았고 비록 천백에 하나라도 이삭이 팬 것이 있을지라도 또한 직립하

344) 21읍 : 실제 20개 읍을 기록하고는 21읍이라 잘못 기록하였다.

여 이삭을 늘어뜨리지 못하니 실한 이삭의 가망이 없습니다.

8월 6일 소나기와 바람과 우박이 익어가는 이른 벼에 교대로 뿌려 이삭의 낱알이 넘어져 떨어지고, 배태(胚胎)한 늦은 벼는 줄기와 잎이 시들고 망가졌고 특히 우박 때문에 재난으로 조목하는 일이 있었습니다만, 비록 재난의 상흔이 깊고 알은 구별이 있을지라도 무주·용담·금산·용안·함열·옥구·흥덕·고창·창평·장성·나주·무장·영광·함평·법성 등 15읍진은 혹은 한 면이 통째로 재화를 입음이 있고 혹은 온전하게 모든 들이 훼손을 당한 것이 있습니다. 8월 10일과 15일 이후 장마가 조금 그쳐 날씨가 조금 따뜻하고 서리 소식 또한 따라서 조금 늦춰지고 9월 초에 찬 서리가 비로소 내리니 보통의 해로 비교하면 이른 서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중복(中伏) 뒤에 이앙이 그쳐 절기를 잃을 뿐만 아니라 장맛비로 잠겨 적시게 하고 바람과 우박으로 꺾이고 죽게 된 것을 어찌하겠습니까? 한 번도 징세(徵稅)를 씬이 없음에도 온갖 재앙과 요기(妖氣)가 있고 길러 배양시키는 것은 그 때를 얻지 못하였으니 성취가 그로부터 늦어지고, 서리가 오기 전에 팬 이삭 또한 적으니 이미 서리가 내린 뒤에 이루어지는 결과를 어찌 논하겠습니까? 한 번 서리가 내린 뒤에 재결지(災結地)로 칭하는 보고와 재결지로 단속하라는 것과 재결지를 풀어야 한다는 하소연에 그 소요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대저 본 도의 올 농사 형편은 시골에 있는 읍이 조금 낫고 냇가와 산골은 크게 손해되어 이른바 ‘조금 낫다고 하는 것[稍勝]’ 이 풍년의 해로 비교하면 최고의 우심(尤甚)이 되고 이른바 ‘크게 손해된 곳[大遜]’ 은 평년으로 논하면 모두 참혹하게 흉년든 곳에 해당합니다.

각 곡식의 우열을 논평하면 답곡(菴穀)의 이른 벼는 조금 낫고 중간에 이앙한 벼는 그 다음이고 늦은 벼는 열악하며 전곡(田穀)의 콩은 가장 좋고 서속(黍粟)이 그 다음이며 목화는 전도(全道)가 흉년으로 보고하여 정축(丁丑), 갑술(甲戌) 등의 해보다 비교하여 심하다고 하니 분등(分等)은 큰 정사인데도 재실(災實)이 서로 어긋난 경우가 금년 같음이 없었습니다.

재(災)로 말하면 모두가 황폐한 것이 대부분이고 실(實)로 말하면 병들지 않음이 없습니다. 한 경계 안에 산과 들이 같지 않고 한 들 가운데는 높고 낮은 곳이 현격히 다르니 신(臣)은 이에 일심으로 삼가며 백번 헤아리고, 첩보를 참고하고



보고 들은 것을 증험하여 한 도를 나누고 조절하여 3등급으로 정하였습니다.

영광 등의 20읍진(邑鎭)은 우심(尤甚)으로 두고 순천 등의 23읍은 지차(之次)로 두고 광주 등의 11읍은 초실(稍實)로 두어 어람(御覽)에 준비하였습니다.

삼가 옆드려 생각건대 재결(災結)을 조사하는 정사는 위로는 국정회계의 재정 증감에 관계되고 아래로는 백성의 편안함과 근심에 관계되니 털끝의 차이라도 빠지거나 넘침은 모두 죄이니 이와 같은 해에는 더욱 마땅히 충분히 조심하고 삼가야 합니다. 따라서 관문하고 대면하여 타일러 수령들을 신칙하고 독려하여 그로 하여금 몸소 거듭 조사하여 정밀하게 뽑아서 대강을 보고하게 하고, 만일 혹 헤아린 바를 조금이라도 어기면 다시 점고하여 물리치고 수차례 자세히 조사하였습니다. 지금 이양하지 못한 곳은 이미 가을 초에 읍마다 적간(摘奸)하여 우선 집중하였습니다.

내해의 강가와 개펄의 모래는 다른 재앙과는 차이가 있어 한 번 재탈로 들어가면 끝내 환기(還起)<sup>345)</sup>하기 어려워 국결(國結)은 해마다 줄어들어 매우 근심스럽습니다. 따라서 숨어있고 빠진 결(結)을 긁어내듯 조사하여 하나하나 환실(還實)<sup>346)</sup>하였습니다. 올 재해는 먹을 것이 실로 거의 없고 오히려 곡식의 형태가 남아있는 것은 재화를 당한 것이 비록 심할지라도 마땅히 내분(內分)에 속하는 것은 한결같이 모두 깎거나 없어버렸고 단지 하천모래와 해충 우박으로 없어지고 말라 손상되어 전적으로 낫을 딸 수 없는 곳은 정확하게 따지고 가려내 지금 비로소 사리에 합당합니다.

그런 즉 작년의 논 총합은 14만 6천58결 34부 1속<sup>347)</sup>이고 기갑(己甲)이후 묵혀 두고 버려두었던 것 가운데 신묘년에 권기(勸起)한 것은 113결 79부 9속이고 임진년에 권기한 것은 70결 90부 3속이며 계사년에 권기한 95결 56부 5속은 3년 면세한다는 뜻을 전에 이미 장계로 청하여 허락을 받았고, 병신(丙申)이후 장계로 허탈(許頌, 면세해 줌)을 아뢰었습니다.

구초불(舊初不)<sup>348)</sup>은 9백79결 77부 2속이 되고 예로부터 탈로 잡힌 것 중에 신

345) 환기(還起) : 재해로 물이나 모래에 묻혔던 논밭을 복원한 환기전(還起田)을 말한다.

346) 환실(還實) : 재해를 입지 않은 실수(實收)의 상태로 돌리는 것을 말한다.

347) 속(束) : 전세(田稅)를 뜻하는 결부(結負), 또는 결복(結卜)이라고 하는 전지(田地)의 단위 면적을 말할 때, 1척(尺) 평방을 파(把), 10파를 속(束), 10속을 1부(負) 또는 1복(卜)이라 하며 100부를 결(結)이라 한다.

348) 구초불(舊初不) : 처음부터 해가 오래되도록 파종하지 아니하고 묵혀둔 논밭을 말한다.(『萬機要覽 財用編 年分』)

이 다스린 때로부터 지금 재해에 모가 이양된 것은 3천3백91결 58부 2속이 되며 또 미처 이양되지 못한 것은 3천4백23결 80부 4속이 되며, 냇가나 바닷가로 인한 것은 1천3백10결 25부 5속이 되며 모래로 덮인 것은 5백84결 55부 4속이 되고 병술년에 구재(舊災)에 덧붙여 기록한 것은 1천1백77결 13부이고 구재와 합한 것이 1만 8백67결 9부 7속입니다.

금년에 이양하지 못한 것은 3319결 94부 6속이 되며 포락지가 4결 14부 1속이 되며 모래로 덮인 것은 73결 78부 9속이 되며 늦게 이양하여 말라 손상된 것은 6천7백7결 2부 4속이 되며 물에 잠겨 사라진 것은 3백10결 44부 5속이 되며 해충으로 손상된 것은 3백21결 43부 6속이 되며 바람으로 손상된 것은 50결 77부 1속이 되며 해일(海溢)은 3백6결 78부 9속이 되며 우박으로 손상된 것은 2백7십2결 2부 4속이 되며 신구의 각양의 재결을 합한 것은 2만 2천2백33결 46부 2속이 됩니다.

또한 정해년에 천(川) 가운데 애초 모래로 깎이지 않았던 것은 1천3백96결 61부 2속이고 무자년에 천(川)이 비록 모래가 내려 보냈더라도 개간(開墾)까지는 미치지 못한 것이 9백78결 83부이고 기축년에 모래가 내려왔으나 개간에 미치지 못한 것은 6백43결 34부 7속이며 경인년에 모래를 내린 것은 96결 7부 9속이며 신묘년에 모래가 내려온 것은 80결 88부 9속이며 임진년에 천과 바다가 비록 모래를 내려 보냈을지라도 개간까지 이르지 못한 것은 1천92결 80부 3속입니다.

또한 금년 재결로 시행된 것을 모두 계산하면 2만 6천5백22결 2부 2속이 되고 이것을 호부(戶部)에서 획하한 1천9백결을 포함시켜 비교해서 보면 부족한 것이 2만 4천6백22결 2부 2속이 된다고 합니다. 금년 이러한 재결을 총합한 가운데 흘러온 묵은 재결에 해당하는 정해, 무자, 기축, 경인, 신묘, 임진년의 하천모래로 인한 재결을 제외하면 이번 재결의 실수(實數)는 1만 1천3백66결 36부 5속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도의 논의 총합은 우도와 비교하여 많지만 제반 재해로 인한 손실은 이곳에 편중되어 모이고 또한 하물며 늦은 이양으로 말라버린 손실이 있지 않는 읍이 없으니 이 같은 올해 농사형편으로 총 재결과 비교하면 감히 충분히 정밀하게 최소화하였다고 말하기 어려우나 한 터럭이라도 넘치게 하는 데는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사목(事目) 외에 부족한 재결 2만 4천6백22결 2부 2속을 특별히 획하(劃下)를 허락하시었으니 신은 삼가 마땅히 은택을 널리 드러내고 분표(分俵)<sup>349)</sup>

를 드러나지 않게 하고 재해를 입은 백성으로 하여금 조정(朝廷)이 백성을 다친 백성 보듯하고 어린아이 보호하듯 하는 덕스러운 뜻을 마음에 느껴 기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심재읍(尤甚災邑)과 재앙을 입은 정도가 심하게 편중된 백성들의 눈앞의 황급한 형상은 장차 흠어지는 우려가 있으니 이와 같은 곳에 구제하고 규휼하여 편안하게 살아가게 하지 않을 수 없음에 따라 삼가 각 해당 수령과 더불어 분명하고 확실하게 살펴보게 하여 형편대로 구휼할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규휼민에 관계되는 수삼(數三) 여론을 널리 채집하고 이전의 법식을 두루 근거하여 몇 가지 조건을 뒤에 개록하니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임금께 아뢰어 분부하시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심(尤甚) 20읍진<영광·진도·보성·낙안·나주·금산·진산·진안·장수·운봉·전주·흥양·강진·해남·무장·고창·함열·용안·옥구·법성>, 지차(之次) 23읍<순천·남원·장흥·무주·여산·익산·고부·순창·영암·용담·임피·만경·창평·임실·옥과·광양·무안·정읍·함평·장성·고산·흥덕·부안>, 초실(稍實) 11읍.<광주·능주·담양·금구·남평·화순·동복·곡성·구례·태인·김제.>

1. 환향(還餉)<sup>350</sup>법의 뜻은 지극히 엄격하고 무거워 진실로 감히 갑자기 너그럽거나 인색함으로 의논할 수 없는데 흉년에는 문득 정퇴(停退)<sup>351</sup>를 청한 것은 실로 백성의 힘을 느슨하게 하는 뜻에서 나왔습니다. 금년은 농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말하면 진실로 마땅히 급히 정퇴를 청해야 합니다. 다만 환향의 허류(虛留)<sup>352</sup>가 가히 근심스러울 뿐 아니라 백성의 형편으로 말할지라도 지금 당장 비록 조금 늦추는 효과가 있을지라도 도리어 장래 피해를 끼치는 단서가 되니 정퇴의 한 조항은 거론하지 말게 하십시오. 다만 우심재읍(尤甚災邑), 지차재읍(之次災邑), 우심면리(面里)만은 금년 신환곡(新還穀)<sup>353</sup>의 절반은 준절(准折 기준에 의거하여 깎아

349) 분표(分俵) : 흉년에 재해를 입은 논밭의 구실을 덜어주는 일을 말한다.

350) 환향(還餉) : 조선 후기 군사용으로 비축한 양곡을 환곡의 예에 따라 농민들에게 대여했다가 회수하는 미곡이다. 각 도의 군영에서는 군향(軍餉)으로 이획받은 곡식을 군영 소재지나 각 읍에 분급하여 그 이자 수입으로 재정을 충당했다. 환향 역시 환곡과 마찬가지로 부세적 기능을 가졌기에 농민 수탈의 양상을 띠었다. 유사어, 향환(餉還).(『한국고전용어사전』)

351) 정퇴(停退) : 흉년에 환수하기 어려운 환곡을 명년 가을을 기다려 납적(納糶)하도록 허락하는 것으로, 정봉(停捧) 또는 퇴한(退限)이라고도 한다. 명년에 이르러 또 환수할 수 없는 것을 또 정봉(停捧)하도록 하는 것을 '잉정(仍停)'이라 이르고, 또 명년에 환수하기 어려워져서 또 정봉하는 것을 '구환(舊還)'이라 이른다.(『萬機要覽 財用3 糶糴』)

352) 허류(虛留) : 창고에 쌓였던 환곡은 없고 장부나 문서상으로 있는 것처럼 꾸며 횡령한 일.(『문화원형 용어사전』)

춤)로 받을 것을 대신하는 것이 잘 모르겠으나 어떨겠습니까?

2. 신묘년 환곡을 정퇴 중에 있는 읍인 진도는 우심(尤甚) 재해를 입은 읍입니다. 금년의 새로운 환곡 또한 일정한 기준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우니 이전의 정퇴한 환곡을 동시에 모두 독촉하는 일은 매우 불쌍합니다. 신묘년의 환곡 납세 조항은 전수(全數)를 잉정(仍停)하여 백성의 힘을 덜어주는 것이 아마도 알지 못하나 어떨겠습니까?

3. 각 해의 구환(舊還) 가운데 기사년에 받아들이지 못한 조목과 경오년 임신년의 정퇴(停退) 조목은 연조가 이미 멀어 환곡 받은 가구의 대부분이 유량하고 없어져 세금을 징수할 곳이 없다는 사정을 이미 전후에 도신이 장계로 아뢰고 상소로 진술하였습니다. 대개 이러한 구환은 대부분 바닷가를 따라 있는 읍진에 있는데 금년 농사는 연읍(沿邑)이 크게 피해를 입었으니 이러한 때에 거두어들일 것을 논할 것이 아닙니다. 3등급을 논할 것 없이 이전의 법식에 의거하여 잉정하시고 신사년, 임오년, 병신년 조에 있는 읍인 진도, 함열, 흥양, 해남은 우심재읍(尤甚災邑)과 재읍(災邑)으로 신환(新還)과 구환(舊還)을 동시에 독촉하여 거둬들이는 것은 그 형편상 할 수 없습니다. 위 항목의 3년조도 또한 잉정(仍停) 하십시오. 고창의 기사년에 번질[反作]<sup>354)</sup> 조항들도 또한 징수하여 받아들일 길이 없어 이전의 법식에 의거하여 그대로 정퇴(停退)함이 아마도 일에 합당하여 마땅할 것 같습니다.

4. 병자년에 받아들이지 못한 것은 바로 기사년 이후에 환호(還戶)들이 유량하고 없어져 징수할 길이 없는 환곡으로 환곡장부에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전후 도신들의 지극한 청으로 탕감한 바 이고 십 수 년 이래 한 포도 받아들인 바가 없으니 금년도 이전의 예에 의거하여 잉정함이 아마도 일에 합당하여 마땅할 것 같습니다.

5. 산성군(山城軍)의 식량을 성읍에서 나누어 거둬들이는 것은 원래 법전(法典)에 있으되 재민(災民)들이 먼 지역에 있는 사람은 운반하여 납부함은 노임과 비용이 적지 않습니다. 전에도 올해 같은 해에는 읍창(邑倉)에서 받아 보관하는 것이 이미 그런 예가 많다고 합니다. 산성군의 식량을 성(城)에 바치는 조항은 3등급 읍을 논할 것 없이 읍성 아래 가까운 면은 성의 창고로 운반하여 납부하고 길이 조

353) 신환곡(新還穀) : 각 고을의 사창에서 백성에게 꾸어 주었던 곡식을 가을에 거둬들이는 환자(還子). 또는 환곡(還穀)의 곡식을 말한다.

354) 번질[反作] : 이속(吏屬)이 관곡(官穀)을 사사로이 써 버리고 그것을 메우기 위하여 온갖 못된 짓을 자행(恣行)하는 일을 말한다.

금 떨어진 곳은 읍창고에 거둬 보관해 두었다가 내년 가을을 기다려 성의 창고에 다시 납부하는 것이 어떨겠습니까?

6. 기사년의 정퇴한 군포를 탕감한 나머지 수량이 아직도 11읍진에 남아있으나 유량하고 없어진 것이 이미 오래되어 징수할 곳이 없습니다. 금년도 이전의 예에 의거하여 그대로 정퇴함이 어떨겠습니까?

7. 3군문(三軍門)<sup>355</sup>과 악공(樂工)의 보미(保米)<sup>356</sup>는 매년 각각 거둬들인 바가 비록 6두에 불과하나 잡비를 포함해 계산하면 8두가 넘습니다. 재해를 입은 군민이 매년 심한 고통으로 근심하여 돈으로 대신 납부하는 것이 곧 해마다 관례가 되었습니다. 금년도 우심재읍과 지차재읍의 보미 6두는 돈 2냥씩으로 대납하여 거둬들이고 내년 봄을 기다려 위로 납부하여 조금이라도 고통을 덜어주고 규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마도 알지 못하나 어떨겠습니까?

8. 각 아문에 납부하는 죽물(竹物) 가운데 기죽(旗竹)과 장황죽(長篋竹) 같은 것은 병장기 수요에 관계되는 것이니 감히 거론할 수 없을 지라도 경외에서 납부하는 화살대에 이르러서는 모두 연해읍에서 생산된 것이니 베어내어 운반하여 납부할 때에 백성 피해가 많습니다. 매년 재해를 입은 읍은 수량을 나누어 조세를 덜어주는 예가 있으니 금년에 우심재읍은 모든 수량을 지차재읍은 반절을 덜어줌이 어떠하겠습니까?

9. 재해를 입은 읍에 도류죄인을 편배(編配)<sup>357</sup>하는 것은 또한 백성의 피해가 되기 때문에 우심재읍은 귀양지로 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10. 노비를 추쇄하거나 빚을 받아내는 것으로 백성을 동요시킬까 걱정되니 내년 가을을 기한으로 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同日. 題全州府查案.<被告柳召史, 督債朴卜千, 以致服毒, 自裁事. 會查官全州判官李義平, 臨陂縣縣令李宜翼.>

【題】查案捧上是在。覆檢題語，不過起疑於無疑之地，以盡審克之義是加尼。今見查案無復疑眩死者，服毒之在於歸家之後，屍親之納供，丁寧朴哥之初不犯手，詞證之

355) 삼군문(三軍門) : 조선(朝鮮) 때 훈련도감(訓練都監), 금위영(禁衛營), 어영청(御營廳)의 세 군문을 일컫던 말이다.

356) 보미(保米) : 여러 군보(軍保)로부터 거둬들이는 쌀을 말한다.

357) 편배(編配) : 유배 죄인을 배치하는 것으로, 곧 귀양 갈 사람의 이름을 도류안(徒流案)에 기록하는 것이다.

兩招，歸一是隱則。朴卜千致死之非毆伊毒，不待兩言而決是去乙，其兄破回，果是何許兇毒之漢是隱驗？既已首狀於官門，乃反手刃於檢庭，假使朴在煥，眞箇是不同國之讎是良置，告官之後，惟竢三尺之當是去乙，況此在煥初非殺其弟之讎，又況明知卜千之服砒而死者乎？當初舉措已極，萬萬兇獍，大關後斃是去乙，營題已出，屍體出給之後，又復悍然違拒，暴露弟屍，不思殮葬，蔑法無嚴。古今未聞，兩檢官，當日會坐，同朴破回身乙，以別杖箇箇考察，嚴刑準次，取招牒報爲旆。被告柳女旆，重債虐捧，卽其伎倆，搜奪人藏，恣意行惡是如可，禍及厥夫，律有由我，亦爲箇箇考察，嚴刑一次，牒報爲旆。破回妻柳女旆，雖欲爲其夫，粧撰做出，橫說疑眩，獄情亦甚狡惡，嚴刑一次，懲礪後，與餘外各人，一體放送爲旆。殺獄查案，何等審慎，而消詳之消字，誤作昭字，粧撰之撰字，誤作竄字？舉行刑吏，爲先附過向事。

같은 날. 전주부 사안을 데깁하였다.<피고 유조이[柳召史]가 박복천(朴卜千)에게 채무를 독촉하여 약을 먹게 하여 자살한 일. 합동 조사관은 전주 판관 이희평, 임피현 현령 이익익.>

【데깁】사안(査案)을 받아보았다. 복검시관이 제사한 말은 의심할 것 없는 곳에서 의심을 일으킨 것에 지나지 않아 충분히 조사하는 뜻을 다하였다. 지금 사안을 보니 죽음에 다시 의혹될 것이 없고 독약을 먹은 것은 집으로 돌아온 뒤에 있었고 시친의 진술은 틀림없이 박가가 애초에 손찌검을 하지 않았다고 하니 증언한 두 공초가 하나로 귀결된다. 그런즉 박복천이 죽음에 이른 것은 타살이 아니고 그 독약임은 두 검시관의 말을 기다릴 것도 없이 결정되거늘 박복천의 형 박파회(朴破回)가 얼마나 흉악하고 참혹한 농인지 이미 첫 번째로 관아에 장계를 하였는데 도리어 조사하는 자리에서 날이 있는 흥기로 직접 찔렀다. 설령 박재환(朴在煥)이 진실로 나라를 함께 할 수 없는 원수 일지라도 관아에 고발한 뒤에는 오직 법률을 기다리는 것이 마땅하거늘, 하물며 박재환은 애초에 자기 동생을 죽인 원수가 아니고 더욱이 박복천이 비상약을 먹고 죽은 것을 분명하게 알았음에랴!

당초의 행동거지가 너무 흉악하고 매우 사나워 뒷날의 폐해에 크게 관계되거늘 감영에서 판결이 이미 나와 시체를 내어준 뒤에 또 다시 사납게 법에 어긋나게 맞았다. 또한 자기 동생의 시체를 바람과 비에 노출시키며 염(殮)하여 장사지낼 것을 생각하지 않고 법을 무시하며 엄격함이 없으니 고금에 들어보지 못했다. 양 검시관은 날을 정해 모여 신문(訊問)하고 박파회 몸을 별장(別杖)으로 개개고찰(箇

箇考察)하여 절차에 근거하여 엄하게 형신하고 진술을 취하여 첩보하라.

피고 유조이는 무거운 채무를 모질게 받아냈는데, 바로 자기의 기량(技倆)으로 남이 숨긴 것을 수탈하여 방자하게 악행을 행하다가 화가 그 남편에게 미쳤으니 법률은 자기로부터 말미암음이 있으니 또한 날날이 고찰하여 엄히 1차 형신하고 첩보하라. 박파회의 처 유조이는 비록 자기 남편을 위해 횡설수설(橫說豎說)로 허물을 숨기려 꾸며냈을지라도 옥사의 정리가 또한 매우 교활하고 악랄하니 엄히 1차 형신하고 징계하여 권면한 뒤에 나머지 각 사람들과 더불어 모두 석방하라.

살육을 조사한 문서는 무엇보다도 신중히 해야 하거늘 소상(消詳)의 소(消)자를 소(昭)자로 잘못 쓰고 장찬(粧撰)의 찬(撰)자를 찬(竄)자로 잘못 썼다. 거행한 형리(刑吏)는 우선 부과(附過)할 일.

十三日. 臨陂縣令、萬頃縣令, 入見辭去. 求禮縣監申鐘命來見.

13일. 임피 현령 · 만경 현령이 입견하여 하직하고 갔다. 구례 현감 신종명이 와서 보았다.

同日. 題全州府被告罪人柳召吏, 初同推狀.

【題】初覆兩檢, 的見其渾身上下無他傷損, 肋肱臀腿初非要害之處, 皮磨皮脫亦非致命之因是隱則, 忽地倡出被毆之說, 欲道渠矣. 刺人之孽, 究厥情節, 萬萬兇獰. 屍體專紅, 爲變動之色, 渠雖無識, 寧有不知之理? 而心口不謀, 抑勒納招者, 頑狼之外無嚴極矣. 並與被告柳召史, 依前枷囚, 待拷限, 更加箇箇考察, 嚴刑準次, 取招牒報爲<sub>爲</sub>筋. 詞連柳召史<sub>史</sub>, 分婉前不可許久拘囚, 姑爲保放, 追後舉行爲<sub>爲</sub>筋. 屍體申飭面任, 卽速埋瘞, 形止牒報, 宜當<sub>向</sub>事.

같은 날. 전주부 피고 죄인 유조이를 첫 동추(同推)<sup>358</sup>한 보장(報狀)을 데김하였다.

【데김】초·복 두 검시관은 그의 온몸의 위아래에 별다른 상흔이 없는 것을 분명하게 보았고 갈빗대 옆구리 볼기 넓적다리는 애초 금소가 아니었으니 살갓이 갈리고 벗겨진 것은 또한 죽음에 이른 원인이 아닌데 갑자기 맞았다는 설을 주창(主

358) 동추(同推) : 살인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제1차, 제2차, 제3차까지 시체 검안과 죄인 신문을 담당 형관이 행하고, 각 형관이 합동하여 최종으로 하는 신문(訊問)을 말한다. 회추(會推) 또는 회좌(會座)라고도 한다.

唱)하여 그를 도망치게 하였다. 사람을 찌른 재앙은 그 실상을 규명해보면 흉악하고 모질기가 대단하다.

시체가 온전히 붉은 것은 변동된 색이니 그가 비록 무식하다고 해도 어찌 모를 이유가 있겠는가? 마음과 입이 도모하지 않았고 또 억지로 받아낸 공초가 거칠고 사나운 것 외에 무엄하기가 끝이 없다. 아울러 피고 유조이와 더불어 예전대로 칼을 씌어 가두고 고한(拷限)<sup>359</sup>을 기다려 다시 개개고찰을 가하여 절차에 따라 엄하게 형신하고 진술을 취하여 첩보하라.

증언에 관련된 유조이는 분만 전에 오래 잡아 가뉘서는 안 되니 우선 보증인을 세워 내보내고 추후 거행하라. 시체는 면임에게 거듭 타일러 신속히 묻게 하고 그 상황을 첩보함이 마땅할 일.

十四日. 求禮縣監入見辭去. 景陽察訪安允中, 自安州還官之路來見, 仍爲辭去. 判官、中營將入見. 金堤郡守李玄好來見. 金判書魯敬, 蒙 宥歸路歷抵于此, 故往見於下處, 還營軒.

14일. 구례 현감이 입견하여 하직하고 갔다. 경양(景陽) 찰방 안윤중이 안주로부터 관으로 돌아가는 길에 와서 보고 그대로 하직하고 갔다. 판관·중영장이 입견하였다. 김제 군수 이현호가 와서 보았다. 판서 김노경이 사면을 받고 돌아가는 길에 여기에 이르렀기 때문에 묵고 있는 곳으로 가서 접견하고 영현으로 돌아왔다.

同日. 以選武、馬兵公都會退行事, 發甘五十三州, 兵營, 法聖鎮.

【甘結】筋到付備邊司關內, “筋啓下教司啓辭, ‘卽見全羅監司狀啓, 則以爲本道年形, 己判失稔, 舉子齋糧之弊, 試邑供億之費, 必將有倍於常年. 今秋選武、馬兵都試及公都會退行於明秋事, 請令廟堂稟旨分付矣. 本道年形, 雖或有間於畿湖, 泛舟之役, 見不無貽病於民邑, 此時往來供億之弊, 亦所當念, 依狀請許施何如? 答曰允’事, 傳教教是置, 傳教內事意, 奉審施行向事,” 關是置有亦, 關內辭緣奉審, 境內士子、武士、馬兵等處, 知委施行宜當者.

359) 고한(拷限) : 죄인을 고신(拷訊)하는 기한을 말하는 것으로, 『경국대전(經國大典)』 「형전(刑典)」 추단(推斷)에 의하면, 고신은 한 차례에 장(杖) 30도(度) 이상을 때리지 못하고, 3일 내에는 재차 형문하지 못하며, 10일에 걸쳐 고신한 뒤에 형벌을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고신하는 기한은 30일이다. 원문은 ‘拷限’인데, 오자로 보아 ‘拷’를 ‘拷’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같은 날. 선무군관(選武軍官)<sup>360</sup>과 마병(馬兵)<sup>361</sup> 및 공도회(公都會)를 늦춰 시행하는 일로 53주(州)와 병영(兵營)과 법성진(法聖鎭)에 감결을 발송하였다.

【감결】 이번에 도착한 비변사(備邊司) 관문에, “이번에 비변사에서 임금께 아뢰어 윤희 받은 계사(啓辭)에 ‘이번에 전라감사의 장계(狀啓)를 보니 본도의 농사 형편은 이미 흉년으로 판단되니 과거(科擧)보는 자가 식량을 갖고 오는 폐단과 시읍(試邑)<sup>362</sup>에서 필요한 물건의 비용은 반드시 예년의 배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금년 가을 선무군관과 마병의 도시(都試) 및 공도회를 내년 가을로 늦춰 시행할 것을 묘당(廟堂, 의정부)으로 하여금 임금의 뜻을 여쭙어 분부해 주시길 청하였습니다. 본도의 농사의 형편이 비록 기호(畿湖)와는 차이가 있을지라도 배를 띄우는 역이 민읍에 병통을 끼치지 않음이 없으니, 이러한 때 왕래하는 행차를 접대하는 폐단은 또한 마땅히 생각해야 할 바입니다. 장계로 칭한 것에 의거하여 시행을 허락함이 어떨겠습니까?’ 하니, 답하기를 ‘윤희한다.’ 라고 전교하였다. 전교 내용의 뜻을 봉심하여 시행할 일.” 하였다. 관문 안의 말의 내용을 잘 살펴, 경내의 사자(士子), 무사(武士), 마병(馬兵) 등에게 자세히 알려 시행함이 마땅할 일.

十五日. 昧爽詣客舍, 行望闕禮. 中軍、判官、中營將、檢律, 同爲進參, 還營軒. 金堤郡守入見辭去. 伊夜往見金判書還營軒.

15일. 먼동이 틀 무렵 객사에 이르러 망궐례를 행하였다. 중군·판관·중영장·검률이 함께 진참(進參)하고 영현으로 돌아왔다. 김제 군수가 입견하여 하직하고 갔다. 그날 밤 판서 김노경(金魯敬)에게 가서 뵈고 영현으로 돌아왔다.

十六日. 龍安縣監林貞鎭來見.

16일. 용안 현감 임정진(林貞鎭)이 와서 보았다.

360) 선무군관(選武軍官) : 함경도와 평안도를 제외한 지방의 토호와 부민(富民)의 자제 중에서 무술시험으로 선발하여 평상시에는 집에서 무예를 연마하게 하고 유사시에는 군졸을 지휘하는데, 평상시에는 해마다 베 1필을 바치고 관찰사로 하여금 무예를 시험하도록 하였다.(황위주 책임번역 외, 탈초·역주 『營總』, 慶尙北道·慶北大嶺南文化研究院, 2007, 114-115쪽)

361) 마병(馬兵) : 훈련도감(訓練都監)에 딸린 기병(騎兵)이다.

362) 시읍(試邑) : 조선 시대에 도(道)에서 삼 년에 한 번씩 치르는 향시(鄉試)를 실시할 곳으로 정한 고을을 말한다.

十七日. 龍安縣監入見辭去. 判官入見. 康津縣監任百經來見.

17일. 용안 현감이 입견하여 하직하고 갔다. 판관이 입견하였다. 강진 현감 임백경(任百經)이 와서 보았다.

十八日. 康津縣監入見辭去. 中營將、判官入見.

18일. 강진 현감이 입견하여 하직하고 갔다. 중영장 · 판관이 입견하였다.

同日. 題錦山郡檢案.<被告程於仁老未, 結縛金召史, 以致含憤服瀆, 自裁事. 初檢官錦山郡守李魯榮, 覆檢官珎山郡守李奎憲.>

【題】屍帳捧上是在果. 謂之被毆, 則脉錄之傷損不著, 謂之服毒, 則瀆器之傾痕宛在, 參以詞證, 而衆招歸一, 稽之法文, 而銀釵變色分叱不驗, 毆未目擊, 瀆則有驗, 其夫其子併皆首實, 獄情到此, 更無疑眩. 噫彼金女未售嫁禍之計, 徒作狂死之鬼, 成獄償命, 初無可論是乃. 被告人程於仁老未段, 苟欲爲兄雪誣, 則告鄉呈官, 何患無卞白之路? 而兄縛其夫, 已極悍毒, 弟縛其婦, 遂成厲階, 何以免由我之律是乙驗? 嚴刑一次, 取招牒報爲驗. 干連程元孫, 李丕介, 程孫伊等段, 黨率族類, 鬧挈村里, 本來頑悖可以推知是驗. 屍親崔碧丕段, 投訴誣人, 自當反坐, 不可以屍親有所曲恕. 上項四人, 並只嚴刑一次懲礪爲乎矣, 元孫係是禍首, 不可一次刑訊, 而止依前嚴囚是如, 可待拷限, 更加訊推放送爲驗. 李丕介、程孫伊等與餘外各人等, 一體放送, 屍體出給埋壘爲驗. 初檢文案, 抑何之抑字, 書以仰字, 被告招辭中, 從兄孫伊, 誤書以元孫者, 殊涉不審, 舉行刑吏, 姑先附過事, 初檢官良中枚移施行向事.

같은 날. 금산군 검안을 데김하였다.<피고 정어인노미(程於仁老未)가 김조이[金召史]를 결박하여 김조이가 분을 품고 간수를 먹어 스스로 죽게 한 일. 초검시관은 금산 군수 이노영, 복검시관은 진산 군수 이규현.>

【데김】시장(屍帳)을 받아 보았다. 맞았다고 하는 것은 검시(檢屍)기록 가운데 상흔이 드러나지 않았고, 극약을 먹었다고 하는 것은 간수 그릇 가운데 약한 흔적이 뚜렷이 존재한다. 증언을 참고해도 여러 사람의 공초가 하나로 귀결되며 법조문으로 헤아려도 은비녀 색깔이 변할 뿐 아니라 구타한 것은 목격자가 없고, 간수

를 먹은 증거가 있으며, 자기 남편과 아들이 모두 사실대로 자백하여 옥사의 정황이 여기에 이르렀으니, 간수를 먹고 죽은 것은 다시 의심할 바가 없다.

아, 저 김조이는 화(禍)를 남에게 넘겨 씌우려는 계획을 이루지 못하고 공연히 미쳐 죽은 귀신이 되었으니, 옥사를 이루어 사형에 처하는 것은 애초 논할 것이 없다. 다만 피고인 정어인노미가 진실로 형님을 위하여 무함(誣陷)을 씻으려고 하였다면 마을에 알리고 관아에 소장(訴狀)을 내어야 했거늘, 옳고 그름을 바로잡는 길이 없음을 어찌 근심하였는가? 정어인노미의 형님은 김조이의 남편을 묶어 사납고 독살스럽게 했고, 정어인노미의 동생은 김조이를 묶어 결국 재앙을 받을 빌미를 만들었으니 어찌 자신들로부터 말미암는 법률을 면할 수 있겠는가? 정어인노미의 형님과 동생을 엄하게 1차 형신(刑訊)하고 진술을 받아 첩보하라.

죄에 관련된 정원손(程元孫)·이돌개(李斗介)·정손이(程孫伊)들도 족친의 부류들을 무리지어 이끌며 촌리(村里)를 함부로 어지럽혔으니 본래 완악하고 패악스러운 용을 가히 미루어 알 수 있다. 시친 최벽돌(崔碧斗)은 투서를 하여 사람을 무함하였으니 자연 반좌(反坐)에 해당하여 시친으로써 극진하게 용서할 바가 없다.

위 네 사람은 모두 엄히 1차 형신하고 징계하여 권면하되 정원손은 수괴에 관계되니 1차 형신해서는 안 되고, 다만 전례대로 엄하게 가두고 고한(拷限)을 기다려 다시 심문하고 석방하라. 이돌개, 정손이 등과 나머지 각 사람 들의 경우도 모두 놓아 보내며, 시체는 내주어 묻게 하라.

초 검시관의 문안에 억하(抑何)의 억(抑) 자를 앙(仰) 자로 쓰고 피고 공초의 말 가운데 종형 ‘손이(孫伊)’를 원손(元孫)으로 잘못 쓴 것은, 매우 살피지 못함에 관계되니, 우선 부과(附過)할 일로 초검시관에게 공문을 보내어 시행할 일.

十九日。判官入見。淳昌郡守沈宜復，自京下來之路入見。礪山府使許曠來見。

19일. 판관이 입견하였다. 순창 군수 심의복(沈宜復)이 서울로부터 내려오는 길에 입견하였다. 여산 부사 허속이 와서 보았다.

二十日。礪山府使、淳昌郡守入見辭去。食後冬至進上監封。

20일. 여산 부사·순창 군수가 들어와 접견하고 그대로 하직하고 갔다. 식후에 동지진상품을 감봉하였다.

二十一日. 判官入見. 參禮察訪徐承烈來見.

21일. 판관이 입견하였다. 삼례 찰방 서승렬이 와서 보았다.

同日. 題興德縣四查案.<正犯金元哲, 假作李基華貌樣, 夜入李基華妻吳氏獨宿之房, 強劫後, 吳氏知其爲元哲, 服毒自裁事. 初查官興德縣監金命熾, 覆查官井邑縣監洪冕周, 三查官長城府使徐有民, 四查官古阜郡守金裕淳.>

【題】查案捧上是在果. 姦由騙詐, 死因自裁, 點污豈玷白玉? 貞操允矣介石. 觀厥卓異之節, 宜亟比灑之典, 于以慰幽魂而樹風教是矣. 一查再查至於三查而不之止者, 誠以事在曉夜, 看證無人, 所可參究乎情跡之間, 辨別乎疑似之分者, 惟有屍親吳李之招而無奈? 血書之自寫代寫, 兇身之初認後認, 兩人供辭, 前後屢變, 轉入三昧, 終隔九疑是如乎, 揆以審克之義, 須待的確之證乙仍于, 至行四查矣. 今焉安啓一之招出, 而端緒可以尋覈, 罪人可以斯得矣. 二月夜乞火之說, 何男子跳出之云, 不翅爲捉贓之蹊蹊, 而查庭對質, 無辭抵攔, 以一概十他, 可反隅. 高敞縣監會查官差定爲去乎, 卽爲馳進興德縣, 與本官會坐, 同正犯金元哲身乙, 爲先以別杖, 箇箇考察, 嚴訊捧直招牒報爲旆. 此獄緊證, 獨有崔女一人, 而緣何隱情, 一向諱拒? 究厥所爲, 萬萬狡惡. 屍親招中, 被污翌朝往問喧拏之情節, 服毒當日, 要見血書之委折, 發問目捧供爲乎矣, 如前游辭漫漶是去等, 一體別樣考察, 嚴刑盤覈之意, 興德縣良中枚移施行向事.

같은 날. 흥덕현 4번째 조사한 안에 데김하였다.<정범 김원철(金元哲)은 이기화(李基華)의 용모로 가장하여 밤에 이기화의 처 오씨(吳氏)가 혼자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강제로 겁탈한 뒤 오씨가 그가 김원철임을 알고 독약을 먹고 자결한 일. 초사관은 흥덕 현감 김명혁, 복사관은 정읍 현감 홍면주, 삼사관은 장성 부사 서유민, 사사관은 고부 군수 김유순.>

【데김】사안을 받아 보았다. 강간은 속임으로 말미암았고 사인은 자살이니 오점이 어찌 백옥에 흠을 남기겠는가? 정절(貞節)이 진실로 돌같이 단단하도다. 그 뛰어난 절개를 보았으니 치욕을 씻는 법률로 마땅히 빨리 행하여 이에 유혼(幽魂)을 위로하고 풍교(風教)를 세워야 한다. 다만, 한번 두 번 세 번을 조사하고도 끝나

지 않은 것은 진실로 사건이 새벽녘에 있어 증인이 없고, 정황 사이에 참고하여 헤아리거나 의심나고 그럴듯한 부분을 변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시친인 오씨와 이씨의 공초뿐이니 어찌하겠는가?

혈서를 스스로 썼는지 대신 썼는지와 시체를 처음 인식했는지 나중에 인식했는지에 대해서 두 사람[오씨와 이씨]의 공초(供招)가 앞뒤로 여러 번 바뀌어 더욱 삼매(三昧)<sup>363</sup>에 들어도 끝내 더욱 분간하기 어렵게 되었으니 충분히 살피는 뜻으로 가능하면, 모름지기 정확한 증거를 기다려야함에 따라 4번의 조사를 행하였다. 지금 어찌 안계일(安啓一)의 공초가 나왔다고 해서 단서를 찾을 수 있으며, 죄인을 이것으로 찾을 수 있겠는가?

‘2월 밤에 불씨를 빌렸다’는 말과 ‘어떤 남자가 뛰어 나왔습니다’라고 한 말은 진상 파악[捉賊]이 의심스러운 점[蹊蹊]이 될 뿐만 아니라 조사하는 관아에서 대질할 때 대항하여 버티는 말이 없으니 한가지로 열을 알 수 있어 다른 것을 반우(反隅)<sup>364</sup>할 수 있다. 고창 현감을 회사관(會查官)으로 차정(差定) 차출하여 임무를 줌)하니 바로 말을 달려 흥덕현으로 가서 흥덕 현감과 함께 자리를 열고 이정범 김원철의 몸을 우선 별장(別杖)으로 다스려 날날이 고찰하고 엄히 심문하여 바른대로 진술을 받아 첩보하라.

이 옥사의 중요한 증인은 오직 최씨 여자 한 사람이 있는데도 무슨 연유로 실정을 숨기고 한결같이 거부한단 말이나? 그가 한 바를 규명하면 매우 교활하고 나쁘다. 시친의 공초 가운데 ‘더러움을 당한 다음날 아침에 가서 시끄럽게 소란이 일어났던 정황’과 ‘독을 먹은 당일 혈서를 보려고 했던 곡절(曲折)’로 문목(問目)을 내어 진술을 받되 전과 같이 허황되고 모호하거든 일체 특별히 고찰하여 엄히 형신(刑訊)하여 세밀하게 캐묻는 뜻으로 흥덕 현감에게 공문으로 알려 시행할 일.

同日. 題羅州牧覆檢案.<正犯洪希贊, 毆打金鳳梧, 翌曉致死事. 初檢官羅州牧使李晦淵, 覆檢官務安縣監吳致淳.>

【題】屍帳捧上是在果. 渾身之傷痕狼藉, 而耳根紫黯, 最爲致命之根因, 詞證之衆招

363) 삼매(三昧) : 불가(佛家)의 용어로, 잡념을 물리쳐 마음이 흐트러지거나 어지럽지 않아 어느 한곳에 집중한다는 뜻이다.

364) 반우(反隅) : 한 가지를 일러 주면 그와 유사한 것은 미루어 안다는 뜻으로, 『논어』 「술이(述而)」에 “한 모퉁이를 들어 일러 주었는데 세 모퉁이를 반증하여 알지 못하면 더 이상 말해 주지 않는다.[舉一隅, 不以三隅反, 則不復也.]” 하였다.

俱備，而金弘國所謂竹杖打脛，實是當場之目擊是如乎。殺越人命，古今何限，而兇獍叵測豈有如此囚之甚者乎？成獄償命，何待兩言？兩檢官，仍定同推官爲去乎，約日會推，同正犯洪希贊身乙，以別杖箇箇考察，嚴訊取招牒報爲旆。眞捕校之鬧挈村里，猶當隨現痛鋤是去乙，況旆假稱是乙喻？他人失牛，何關於渠，而名以班裔，打扮捕校，招朋結黨，作此悖舉，本罪除良，卽此一款，合置何辟？元惡雖已就捕，隨從不可漏網。干犯洪興周，爲先嚴刑，推問當日作伴諸漢，一一指名納招。並與在逃是在沈良言·金光玉，枚報鎮營，刻期譏捕爲旆。看證金洪國旆，縱怖鎮校之威，胡無纓冠之義？嚴杖二十度，懲礪放送爲旆。屍親金秀聲旆，人旣蒙駭，變出倉卒，蒼黃發告，語多疎漏。面任崔龍秀旆，報辭模糊，雖甚可駭，無識之致，不足深責是遣。李載民旆，但意其眞不料其假，峽村愚氓無怪其然。並與初不干涉之洪基周，偶坐混捉之崔行一·劉千汝等，參酌放送。切隣金汝宅·金千石·沈海官等旆置，今無更問之端，一體放送爲旆。屍體旆卽爲出給，埋瘞之意，初檢官良中枚移施行向事。

같은 날. 나주목 복검안에 데김하였다.<정범 홍희찬(洪希贊)이 김봉오(金鳳梧)를 구타하여 다음날 새벽에 죽은 일. 초검시관 나주목사 이민연, 복검시관 무안현감 오치순.>

【데김】시장(屍帳)을 받아 보았다. 온몸의 상흔이 낭자하고 귀뿌리가 자줏빛으로 검은[紫黯] 것이 가장 치명적인 원인이 되었다. 증언이 될 만한 여러 가지 공초가 모두 갖추어 졌고 김홍국(金弘國)이 말한 죽장으로 정강이를 때렸다는 것은 실제로 그 자리에서 목격된 것이다.

사람의 목숨을 죽인 것이 예나 지금이나 무슨 한계가 있겠는가만, 흉악하고 모질어 예측할 수 없음이 어찌 이 죄인같이 심한 경우가 있겠는가? 재판을 하여 살인자를 죽이는 것을 어찌 두 번 말할 필요가 있겠는가? 두 검시관을 그대로 동추관으로 정하니 날을 정해 합동 심문하고 이 정범 홍희찬의 몸을 별장(別杖)으로 개고찰(箇箇考察)하여 엄히 신문(訊問)하여 진술을 받아 첩보하라.

진짜 포교가 촌리를 함부로 어지럽혀도 오히려 마땅히 나타나는 대로 엄하게 없애주어야 하거늘 하물며 가짜로 사칭해서 되겠는가? 다른 사람이 소를 잃어버린 것이 그와 무슨 관계가 있어 양반의 후손이라는 이름으로 포교를 가장하여 우리들을 불러 작당하여 이러한 패려한 일을 지었으니 본죄는 제외하더라도 바로 이 한 조항으로도 마땅히 어떤 벌을 받아야 되겠는가? 원악(元惡)은 비록 이미 잡았다 하더라도 수종(隨從)하는 자를 수사망에서 빠져 달아나게 해서는 안 된다. 간범

(干犯) 홍흥주(洪興周)는 우선 엄히 형벌을 가하고 추문(推問)당일 동행한 모든 놈들은 하나하나 이름을 거명하여 진술을 받아라. 아울러 도망 중에 있는 심양언(沈良言)·김광옥(金光玉)을 진영(鎭營)에 낱낱이 알려 기한을 정하여 기찰(譏察)해 체포하라.

증인 김홍국(金洪國)은 비록 진교(鎭校 진영의 포교)의 위세로 위협했을지라도 어찌 영관(纓冠)<sup>365</sup>의 뜻이 없었겠는가? 엄하게 장형 20대를 가하여 징계하고 석방하라. 시친 김수성(金秀聲)은 사람이 사리에 어둡고 철이 없는데다 번고가 창졸간에 일어나 매우 급박하게 받고하여 어설프고 빠진 말이 많았다. 면임 최용수(崔龍秀)는 보고하는 말이 모호하니, 비록 매우 놀랄만한 일일지라도 무식한 자의 소치이니 족히 심하게 책망할 것은 없다.

이재민(李載民)은 단지 진짜만을 염두에 두고 거짓을 생각할 줄 모르니 두메산골의 어리석은 백성이 그러함은 괴이할 것이 없다. 아울러 애초 그 일에 간섭하지 아니한 홍기주(洪基周)와 우연히 마주앉아 함께 잡힌 최행일(崔行一)·류천여(劉千汝) 등은 참작하여 석방하라. 가까운 이웃 김여택(金汝宅)·김천석(金千石)·심해관(沈海官)들도 다시 물을 단서가 없으니 모두 석방하라. 시체는 바로 내주어 묻게 하는 뜻을 초감시관에게 공문을 보내어 시행할 일.

二十二日. 以羅州金鳳梧獄事, 干犯金光玉·沈良言, 捉囚事, 發關右鎭營.

【關文】爲星火舉行事. 羅州牧赤良面旺山里, 致死人金鳳梧初覆檢案, 才已題送是在果. 正犯洪希贊招內, ‘同往之金光玉·沈良言, 俱向他處, 不知所往, 中路偶逢之一箇行旅, 旋即分路’是如是遣, 干犯洪興周招內, ‘伊日同行之路, 逢邑內沈良言, 與之伴行, 而到東幕時, 又逢一箇行旅, 旋即分路’是如爲置, 五人作黨同來之狀, 看證金弘國之目覩丁寧. 而正犯雖已就捕, 隨從三漢之尙此漏網, 萬萬駭痛. 同正犯洪希贊, 于犯洪興周, 俱在本州獄, 自本鎭, 別定伶俐捕校, 在逃是在金光玉·沈良言及所謂行旅一漢, 根着及容疤, 詳細探問于在囚兩漢, 期於十日內, 捉囚報來爲乎矣. 殺越人命, 事係變怪, 雖在遙遠之地, 在逃諸漢, 苟或着意識詞, 則必無未捕之理, 況此諸

365) 영관(纓冠) : 머리를 손질한 틈이 없을 만큼 바쁘게 한다는 것을 이르는 말로, 머리를 흐트러뜨린 채 관을 쓴다는 뜻의 피발영관(被髮纓冠)에서 나왔다. 『맹자』 「이루 하(離婁下)」에 “한집안 사람이 싸울 경우에는 머리를 풀어 흘뜨린 채 갓끈만 매고서 달려와 구원하더라도 가하다.[今有同室之人鬪者, 救之, 雖被髮纓冠而救之可也]” 하였다.

犯在於本鎮不遠之地乎？其所譏捕之節，各別申飭，期於捉得爲乎矣，若過十日之限，則本鎮首校，不待更關，着枷上使，以爲嚴勸之地爲旣。關到日時，舉行形止先卽馳報，宜當向事。

22일. 나주 김봉오 옥사의 간범 김광옥·심양언을 잡아 가두는 일로 우진영(右鎭營)에 관문을 발송하였다.

【관문】 성화(星火) 같이 거행할 일. 나주목 적량면(赤良面) 왕산리(旺山里)에서 죽은 김봉오의 초·복검안을 방금 제송(題送)하였다. 정범 홍희찬의 공초 안에 ‘함께 갔던 김광옥·심양언이 모두 다른 곳으로 향하여 간 곳을 알지 못하고 길 가운데서 우연히 한 나그네를 만나고 바로 길에서 헤어졌다’ 고 하고, 간범 홍흥주의 공초 안에 ‘그날 함께 간 길에서 읍 안에 있는 심양언을 우연히 만나 그와 함께 동행하여 동막치(東幕峙)에 도달하였고, 또 한 나그네를 우연히 만나 바로 길에서 헤어 졌다’ 고 하고, 5인<sup>366)</sup>이 작당하여 함께 온 정황은 증인 김홍국이 보았음이 분명하다.

정범이 비록 이미 잡혔을지라도 수종(隨從)한 3놈이 아직도 이렇게 수사망에서 빠져 나갔으니 매우 놀랍고 마음 아프다. 정범 홍희찬과 간범 홍흥주는 모두 나주 옥에 있으니 본 우진영에서 특별히 영리한 포교를 정하여, 도망중인 김광옥·심양언 및 이른바 ‘나그네 한 놈’의 확실한 내력과 주소, 용모를 가두어 둔 두 놈 [홍희찬과 홍흥주]에게 상세하게 탐문하여 기어코 10일 안에 잡아 가두고 보고하라.

다만, 인명을 죽인 것은 일이 변괴스러움에 관계되니 비록 멀리 있는 지역일지라도 도망 중에 있는 모든 놈들은 진실로 뜻을 두어 모두 기찰하면 반드시 잡지 못할 이치가 없다. 하물며 모든 범인이 본 진영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음에랴. 그들을 기찰하여 체포하는 일을 특별히 신칙하여 잡아들이기를 기약하되, 만약 10일의 기한을 지나면 본 진영의 수교(首校)는 다시 관문을 기다릴 것 없이 칼을 씌워 감영으로 잡아 올려 엄중하게 처단하도록 하며, 관문이 도착하는 날짜와 거행한 사실의 전말을 우선 바로 급히 아뢴이 마땅할 일.

二十三日. 判官, 中營將入見

366) 5인 : 정범 홍희찬, 간범 김광옥, 심양언, 홍흥주, 한 나그네 등을 가리킨다.



23일. 판관과 중영장이 입견하였다.

同日. 以貿穀勿禁事, 報備局.

【報牒】爲牒報事. 節到付司啓下關內乙用良, 遏糴之禁, 申飭截嚴, 實不勝萬萬悚惶是乎乙在果. 荐歉之餘, 都下民食, 專靠於貿遷, 則豈敢爲防糴之舉, 不思所以互資接濟之道是乎乙喻? 防穀云云盖有由焉. 向於初秋未穫之前, 隣省牟利之輩, 以秋大同防納事, 載錢貿米於本道沿邑, 指田論價, 惟事增直是如爲臥乎所. 此若不禁, 一任濫觴, 則主客俱困, 金粟兩死, 目下運穀之役, 來頭捧稅之節, 俱極罔措乙仍于, 不得不一番關飭, 禁止其狼藉而已. 至於京商則, 初無防遏之事是乎乙加尼, 近聞京商輩, 因市直之違料, 齎錢逗遛, 乍來旋去者, 間或有之, 而散在各處浦口, 依前和買者, 亦無邑無之云矣. 今此關辭, 若是申嚴, 其在舉行, 何敢一毫疎忽? 謹依關內辭意, 罔夜知委於沿海各邑, 毋論齎錢來貿與裝穀行販, 任渠去來, 毋敢壅滯之意, 另加申飭爲乎旆, 緣由牒報爲臥乎事.

같은 날. 무곡(貿穀)<sup>367</sup>을 금지하지 말라는 일로 비변사에 첩보하였다.

【보첩】 첩보하는 일. 이번에 받아본 비변사의 계하 관문 내용에 따라 지난번(遏糴)<sup>368</sup>을 금하는 것을 지엄하게 신칙하셨는데 실상은 매우 송구하고 황송함을 이루 다할 수 없습니다. 거듭된 흉년의 결과로 도내의 백성의 식량은 오로지 교역(交易)에 의지하고 있으니 어찌 감히 방적(防糴)<sup>369</sup>을 하여 서로 도와 구제하는 방도를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방곡(防穀)<sup>370</sup> 운운한 것은 모두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번 초가을 수확하기 전에 주변의 모리배들이 대동미를 방납(防納)하는 일로 본도 연읍(沿邑)에서 돈을 싣고 와 쌀로 바꾸고 밭을 가리켜 가격을 흥정하며 오직 값을 더하는 것만을 일삼는다고 합니다. 이것을 만약 금하지 않고 남발(濫發)되게 전적으로 맡겨둔다면 주객(主客)이 모두 곤궁해지고 돈과 곡식은 둘 다 없어져서 당장 곡식을 운반하는 일과 앞으로 세(稅)를 거둬들일 때에 모두 심하게 조처할 바가 없음에 따라 한 번 관문으로 그 어지럽게 어긋난 것들을 금지하지 아니

367) 무곡(貿穀) : 곡식 또는 쌀을 사들이는 일을 말한다.

368) 알적(遏糴) : 쌀을 사들이는 것을 막는 일이다.

369) 방적(防糴) : 쌀 또는 곡식을 사들이는 일을 막는 일이다.

370) 방곡(防穀) : 곡식을 다른 곳으로 실어 내보내지 못하게 막는 것이다.

할 수 없었습니다.

경상(京商)에 이르러서는 애초에 쌀을 사들이는 것을 막은 일이 없었는데 근래 경상무리들이 시장가격이 어긋난 것으로 인하여 돈 주기를 피하며 지체하고 잠깐 왔다 바로 가버리는 자들도 간혹 있지만, 여러 곳에 산재해 있는 포구에는 예전과 같이 군말 없이 서로 사고파는 자들 역시 없는 읍이 없다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금 이 관문의 내용으로 이와 같이 엄하게 하신다면 그 거행함이 어찌 털끝만큼이라도 소홀하겠습니까? 삼가 관문 안에 있는 말뜻에 의거하여 밤낮 없이 연해의 각 읍에 통지하여 돈을 가져와 쌀로 바꾸거나 또는 곡물을 싣고 와 행상하는 것을 따지지 않고 그들의 거래에 맡겨 감히 교역이 막히고 지체되지 않게 하라는 뜻을 각별히 신칙하였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첩보합니다.

二十四日. 以官鎮門聚點移赴堤堰事, 封啓.

【狀啓】前矣到付備邊司關內, “筋啓下教司啓辭, ‘諸道秋操稟啓, 今已齊到矣, 戎政之疎虞, 莫近日若. 每操輒停, 便成恒式, 不可無一番修舉, 而第念三道設賑之餘, 兩南則困於轉輸, 客使壓境之際, 西路則疲於供億. 此時徵調, 其勢末由. 關東亦經饑荒, 北關未判豐儉. 今秋八道·三都水陸諸操, 巡歷巡點, 并姑停止, 至於官鎮門聚點, 則填伍繕械, 申明約束, 毋敢視以文具, 俾有整飭之效, 有堤堰處, 使之移點完役, 而京畿兩西, 則每於支勅時, 聚點·巡部並爲蠲免, 今亦依此爲之, 各樣都試·覆審·考講, 按例舉行, 停退都試, 一體合設之意分付何如?’ 答曰‘允’事 傳教教是置, 傳教內辭意奉審施行向事” 關是白置有亦. 謹依歲初備邊司啓下關, 今秋聚點時, 有堤堰處, 一併移點完役之意, 措辭申飭是白加尼. 連接各營邑鎮所報, 則同水陸軍聚點日字, 依定式各其營閫所屬, 同日舉行, 而兵營則九月二十七日, 左水營則八月二十日, 右水營則八月十六日, 定期設行是白乎所, 任實段本無堤堰, 茂朱、南原、寶城、光陽等四邑段, 今春移點之後, 別無埋塞之處. 官門聚點, 並只依例舉行乙仍于, 探察其勤慢是白乎則, 軍兵姑無闕伍, 器械服色不至渝傷, 坐作進退僅得成樣是白遣. 全州、羅州、光州、綾州、長城、潭陽、長興、順天、礪山、珍島、樂安、古阜、靈光、益山、錦山、珍山、金堤、淳昌、靈巖、昌平、龍潭、臨陂、金溝、萬頃、長水、沃溝、康津、井邑、海南、求禮、務安、咸平、和順、同福、南平、玉果、高敞、雲峯、谷城、鎮安、高山、龍安、扶安、興德、興陽、泰仁、茂長、咸悅、法聖等, 四十九邑

鎮戍，從其堤堰多少，分排軍丁額數，董飭移赴。逐庫疏築是如，一辭報來爲白有等以，同堤堰疏築庫數修成冊，上送于堤堰司爲白乎於。緣由并以馳啓爲白臥乎事。

24일. 관문(官門)이나 진문(鎭門)의 취점(聚點)을 제언(堤堰)으로 옮겨 부역 나가는 일에 대하여 장계를 작성하여 봉(封)하였다.

【장계】 전에 받아본 비변사 관문에 “이번에 계하한 비변사가 아뢴 내용에 ‘제(諸) 도의 가을철 군사 훈련을 품계(稟啓)한 것이 지금 모두 도착하였습니다. 군정(軍政)이 소홀함이 요즘 같은 때가 없다. 매년 훈련이 갑자기 정지되는 것이 일정한 격식을 곧 이루었으니, 한 번 재정비 하는 일이 없을 수 없다. 다만 생각하건대 3도에 진흥청을 설치한 끝에 영남 호남은 곡식을 운송하는 일로 곤고하고 객사(客使 중앙의 사신)가 접경(接境)에 다다를 쯤이면 서쪽은 공역(供億)<sup>371</sup>에 피폐하다. 이때에 훈련을 징발(徵發)하는 것은 형편상 할 수가 없다. 관동(關東)또한 굶주림을 겪었고 북관(北關 함경도)은 풍족함과 적음이 판별되지 않는다. 금년 가을에 8도와 3도(三都 경주·서울·개성)의 수륙(水陸)의 모든 가을철 군사 훈련을 차례로 돌아 점고하는 일을 모두 우선 정지하고 관문(官門)과 진문(鎭門)의 취점하는 일에 대해서는 병사의 대오를 채우고 병기를 수선하는 일을 거듭 분명하게 약속하여 감히 걸치레로 행하는 것을 보이지 말아 정연(整然)하게 신칙(申飭)한 효험이 있게 하고, 제방(堤防)이 있는 곳에서는 그들을 옮겨 점고하여 역(役)을 완수하게 하고, 경기와 양서(兩西 평안도와 황해도)는 매년 칙사를 접대하는 때에 취점과 관청을 순행하는 일은 모두 면제하였으니, 지금 또한 이것에 의거하여 행하고 각양의 도시(都試)·복심(覆審)<sup>372</sup>·고강(考講)<sup>373</sup>은 전례(典例)를 살펴 거행하고 정퇴(停退)했던 도시(都試)는 모두 병합하여 시행하는 뜻을 분부하심이 어떨겠습니까?’ 하니, 임금께서 답하시기를 ‘윤허한다’고 전교하셨다. 전교 내용을 봉심하여 시행할 일.” 라고 하였습니다.

삼가 연초에 비변사의 계하 관문에 의거하여 금년 가을 취점시에 제언이 있는 곳은 모두 함께 옮겨 점고하여 역(役)을 완수하는 뜻으로 글을 지어 신칙하였습니다. 연접(連接)한 각 영(營)·읍(邑)·진(鎭)이 보고한 바는 수륙군의 취점 날짜

371) 공역(供億) : 필요한 물건을 헤아려 대접하는 것. (『吏文輯覽 卷3』)

372) 복심(覆審) : 한 번 심사한 것을 상급 기관에서 다시 심사하거나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373) 고강(考講) : 강경과(講經科)의 성적을 살펴서 등수를 매기던 일을 말한다.

를 같이하고 정한 법식대로 각 영곤(營園 감영과 병영)에 속한 곳은 날짜를 같이 하여 거행하되 병영은 9월 27일, 좌수영은 8월 20일, 우수영은 8월 16일로 기한을 정하여 설행할 터인데, 임실은 본래 제언이 없고, 무주·남원·보성·광양 등 4읍은 금년 봄에 제방에서 점고한 뒤에 따로 흙으로 쌓아 막은 곳이 없습니다.

관문(官門)의 취점을 모두 전례대로 거행함에 따라 그 부지런함과 게으름을 자세히 살펴보니 군병(軍兵)은 우선 빠진 대오가 없고, 무기와 복색이 변하여 훼손되기까지는 아니하였고, 좌작진퇴(坐作進退)는 겨우 모양을 이루었습니다.

전주·나주·광주·능주·장성·담양·장흥·순천·여산·진도·낙안·고부·영광·익산·금산·진산·김제·순창·영암·창평·용담·임피·금구·만경·장수·옥구·강진·정읍·해남·구례·무안·함평·화순·동복·남평·옥과·고창·운봉·곡성·진안·고산·용안·부안·흥덕·흥양·태인·무장·함열·법성 등 49읍진은 그 지역 제언(堤堰)의 다소에 따라 군정(軍丁)의 인원을 분배하여 제언으로 달려가도록 감독하고 신칙하였습니다.

곳에 따라서는 소축(疏築 물길을 트고 독을 쌓는 일)했다는 한 마디 말을 보고하였기에 제언 가운데 소축했던 곳의 수를 갈무리 하고 성책(成冊)하여 제언사(堤堰司)에 올려 보냈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아울러 치계(馳啓) 하옵는 일.

同日. 以貿穀勿禁事, 發甘各邑.

【甘結】筋到付備邊司關內, “筋啓下教, 今十月十五日, 藥房入診, 大臣、備局堂上引見, 入侍時, 領議政李相璜所啓, ‘近聞米商之販貿於外道者, 因外道有防穀之處, 或有徒往而徒還者, 民情因此騷擾, 互貿遷而資有無, 自是民業之常. 若使之遏絕不通, 則民何以互資而爲生乎? 自本司才有關飭於諸道者, 而朝令之下, 每未見有畫即遵行之實, 近來事, 誠多可悶. 更爲出舉條知委, 而雖一二船, 如或有防遏之患, 則守令先施重勸, 該道臣亦難免慢視飭令之罪, 以此意三懸鈴, 申明分付何如?’ 上曰: ‘依爲之’事, 傳教教是置, 傳教內事意奉審施行向事.” 關是置有亦. 當初防穀之舉, 特以初秋未穫之前, 隣境牟利之輩, 以秋大同防納事, 出沒沿邑, 指田論價, 市直轉益刀蹬之故, 爲慮此弊之無窮, 不得不發關禁斷是加尼. 近聞各浦口, 商船湊集, 狼藉賣買, 徒有防穀之名, 而少無效益分叱除良, 今以京商防糶 筵稟行會, 若是申嚴, 營邑只當恪遵舉行是如乎, 各浦口良中 卽速知委, 都下米商之販貿裝載者, 任其往來, 毋

或壅滯，以爲未凍前陸續輸去之地，宜當者。

같은 날. 무곡(貿穀)을 금하지 말라는 일로 각 읍에 감결하였다.

【감결】 이번에 받아본 비변사 관문에, “이번에 계하하신 금년 10월 15일 약방(藥房)이 들어와 임금을 진찰하고, 대신(大臣)과 비국당상(備局堂上)을 인견(引見) 입시(入侍)할 때, 영의정 이상항(李相瓚)이 아뢴 내용에 ‘근래 쌀 상인들이 외도(外道)에 의지하며 사고파는 것은 외도(外道)에 방곡(防穀)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갔다가 돌아오는 자들이 있어 민정이 이로 인해 소요합니다. 서로 간에 자원이 있고 없는 것을 교역하는 것은 본래 백성들의 일상입니다. 만약 그들로 하여금 교역을 막아서 소통하지 못하게 한다면 백성들은 어떻게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까?’

비변사가 여러 도에 관문으로 신칙한 때로부터 조정의 영(令)이 내려져도 매번 계책을 두어 즉시 좃아 실행하는 것을 본 적이 없으니 근래의 일은 진실로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다시 거조(舉條)<sup>374</sup>를 내어 통지하시고 비록 배가 한 두 척일지라도 만일 혹은 곡물을 사들이는 것을 막는 우환이 있다면 수령을 먼저 무겁게 처벌하고 해당 도신(道臣)들 또한 칙령(飭令)을 태만하게 본 죄를 면치 못하게 해야 합니다. 이러한 뜻으로 3현령(懸鈴)<sup>375</sup>으로 거듭 분명하게 분부하심이 어떨겠습니까?’ 하니, 임꿈께서 답하시길 ‘아뢴 대로 할 것.’ 이라고 전교하셨다. 전교 안의 말씀을 봉심하여 시행할 일.” 하였다.

당초 방곡(防穀)의 일은 단지 초가를 수확하기 전에 접경 지역의 해마다 이익을 좃는 우리들이 가을 대동미(大同米)를 방납(防納)하는 일로 연읍(沿邑)에 출몰하여 밭을 가리켜 가격을 논하고 시장가격을 더욱 올리는 까닭으로 이러한 폐단이 끝이 없을까 우려하여 관문을 발송하여 엄단하지 않을 수 없다.

근래 듣건대 각 포구의 상선들이 모여들어 어지럽게 매매하는 것은 한갓 방곡의 이름만 있고 조금도 효과의 실익이 없을 뿐만이 아니고 경상(京商)의 방적(防糴)을 경연석(經筵席)에서 아뢰어 방곡과 방적을 풀어 주기로 행회(行會)하였으

374) 거조(舉條) : 신하가 아뢴 바에 대해 군신(君臣)간의 대화 내용을 주서(注書)가 정리하여 임금의 재가를 받아 조보(朝報)에 반포하는 것을 말하므로, 거조(舉條)란 군신간의 대화 내용을 공식 문서화하고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뜻한다.

375) 3현령(三縣鈴) : 급한 공문을 띄울 때에 봉투에 세 개의 동그라미를 찍던 일을 말한다.

니, 이와 같이 엄하게 신칙하니 영읍(營邑)은 오직 마땅히 삼가며 좃아 거행하, 각 포구에 곧바로 통지하여 도내 미상(米商) 가운데 판매하고 실어 나르는 자는 그 왕래를 보증하고 혹시라도 막히고 지체함이 없게 하여 얼음 얼기 전에 계속하여 끊임없이 운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할 일.

二十五日. 題金溝縣查案.<韓召史, 以山地事, 與張基老言詰後, 結項致死事. 查官金溝縣令金錫喜.>

【題】查案捧上是在果. 失山之憤, 重於邱山, 捨生之舉, 輕於鴻毛. 縱云八十老婆無所係戀, 有孫有侄胡爲替行? 死固浪矣, 跡涉可疑是如乎, 弓樑之套, 聞是舊件服帶云. 暮夜他家從何覓取是隱喻? 若果自其家帶去是隱則, 出門之時, 已辦一死. 其矣孫與侄, 必無不憚之理而任其獨往, 無一隨後, 此亦豈常情之所宜出是旒, 摘奸臨時, 始解結套, 則渾身上下, 傷痕有無, 初不暇審視, 可以推知, 屍親招中無所痕損云者, 果何以稱焉是旒, 金尙明段, 無意發告是去乙, 其子宗哲, 不告其父, 徑先發狀, 此亦可疑之一端是如乎, 屍親等處爲先以右項三條, 發問目取招牒報爲旒. 含憤而至必有惡言, 惡言之後, 必有爭競, 張基老所謂溫言異謝者, 得非一時粧撰之言是隱喻? 不可以事在暮夜, 看證無人, 仍置之然疑默昧之科. 同張基老爲先嚴刑一次, 取招牒報爲旒. 始旣逼葬於金塚, 終又轉賣於鄭哥假, 令眞有越價於金哥之事良置, 旋貪重價, 至於掘移父塚之境, 名以班族, 胡忍出此? 同山價準數, 推尋於張基老處, 還給於鄭成必後, 新葬刻期督掘, 形止牒報爲旒. 挽止告官非獨文在哲一人, 則無識之類, 何必深責? 分揀放送宜當向事.

25일. 금구현 사안을 데김하였다.<한조이는 산지(山地)의 일<sup>376)</sup>로 장기(張基老)와 말다툼 뒤에 목을 매어 죽은 일. 사관 금구 현령 김석희.>

【데김】사안은 받아 보았다. 산소(山所)를 잃은 분노는 구산보다 무겁고 생을 버림은 기러기 털보다 가볍다. 비록 80노파가 마음에 연연해 할 바가 없다고 말 하더라도 손자와 조카를 두고 어찌 대신 행하였는가? 죽음이 참으로 헛되다. 자취가 의심스럽다고 하니 활모양의 쓰개는 구건(舊件) 의복 대라고 들었다. 으스스한 저녁 남의 집을 어디로부터 찾아오겠는가? 만약 과연 자기 집으로부터 끼고 갔다면 문을 나설 때 이미 단 번에 죽이기로 하였다. 그의 손자와 조카는 반드시 두려워할

376) 산지(山地)의 일 : 뒷자리에 관한 산송(山訟)의 일.

이유가 없지 않는데도 그가 홀로 가도록 놔두어 한 사람도 뒤를 따라가지 않았으니 이것 또한 상정이 마땅하게 나온바가 아니다. 적간(摘奸)에 임할 때 처음 쓰개 묶은 것을 풀었으니 온몸의 상하에 상흔의 유무를 애초에 자세히 살필 겨를이 없었음을 미루어 알 수 있다. 그런데 시친 공초가운데 훼손된 흔적이 없다고 말한 것은 과연 어떻게 말한 것인가? 김상명은 고발할 뜻이 없었거늘 그의 아들 종철이 아버지에게 알리지 않고 경솔하게 먼저 고발장을 내어 고발하였으니 이것 또한 가히 의심할만한 한 단서라고 하니, 시친 등의 처리는 우선 앞 조항의 3조목으로 문목을 내어 진술을 받아 첩보하라.

분노를 품어 지극하면 반드시 악한 말이 있고, 악한 말이 있으면 반드시 싸움을 하니, 장기노가 이른바 ‘말을 따듯하게 하고 공손하게 사양하였다’는 것’은 일시적으로 꾸며낸 말이 아니겠는가? 사건이 으스스한 밤에 있어 증언할 사람이 없다는 것으로 애매모호한 죄과로 방치할 수 없다. 동 장기노를 우선 엄히 1차 형신하여 진술을 받아 첩보하며, 처음에 이미 김씨 무덤에 가까이 매장하고 끝내는 또 정씨에게 전매(轉賣)한 것은 진실로 김씨에게 가격을 넘기려는 일이어도 바로 높은 가격을 탐하여 아버지의 무덤을 도굴하여 옮기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으니 명색이 양반 족속으로 어찌 이런 일이 차마 일어났는가? 이 산의 가격을 준수하여 장기노가 있는 곳에서 추심(推尋)하여 정성필에게 환급한 뒤에 새 분묘는 기한을 정하여 독촉해 파내고 그 상황을 첩보하라. 늦게 관아에 고발한 것은 단지 문재철 한 사람 뿐만이 아니니 무식한 부류를 어찌 반드시 심하게 책망하겠는가? 분간하여 석방함이 마땅할 일.

同日. 以米牟捧斛停當事, 論報均廳.

【報牒】爲牒報事. 筋到付廳關後錄內, “移運之穀, 毋論耗米與貿牟, 必以精實準斛者, 另擇上送爲有矣. 各邑捧還斛子, 較諸京廳斛子, 大小不齊, 易致欠縮幻弄之弊. 今番度, 一準捧稅斛子, 較正上送, 俾無羸劣欠縮, 致抵重勘之意, 嚴明知委於各該邑與領運差員亦爲有置. 穀物度, 必以精實準斛之意措辭, 嚴飭於各邑與差使員爲乎於. 斛子度, 各邑斛子之大小不齊, 誠如關辭所論是乎矣. 毋論米與牟, 俱以還斛捧上者, 而捨此捧還斛子, 若以稅斛責納, 則每斛加入之數, 指徵無處, 殆同皮不存之毛分叱除良. 昨年今春, 運牟運租時, 亦皆以各邑還斛, 捧上之意, 論報京廳, 受題施行, 便成

恒式. 今年耳亦不宜異同乙仍于, 依昨年例, 各該邑捧還斛子, 一坐式使之載去, 以此斛量捧上爲乎於. 緣由牒報爲臥乎事.

같은 날. 쌀과 보리를 곡자(斛子)로 거둬들이는 것이 사리에 합당한 일로 균역청에 논보하였다.

【보첩】 첩보하는 일. 이번에 받아본 균역청 관문 후록(後錄)에, “옳겨 운반한 곡식은 모미(耗米)와 무모(貿牟)을 따지지 말고 반드시 정밀하고 실하여 곡자 기준에 맞는 것으로 따로 가려 올려 보내라 합니다. 각 읍의 봉환(捧還)<sup>377)</sup> 곡자는 경청(京廳) 곡자와 비교하여 대소가 같지 않으니 양을 축내고 농락하는 폐단이 자주 일어났다. 금번은 똑같이 세곡자(稅斛子)<sup>378)</sup>로 준거하여 거둬들여 바로잡아 올려 보내 대충하거나 부족함이 없게 하여 중감(重勘 중죄로 처벌받음)을 막는 뜻을 다할 것을 각 해당 읍과 영운차사원에게 엄격하고 분명하게 알려라.” 하였습니다.

곡물의 경우 반드시 정밀하고 참된 것으로 곡자에 준거해야 한다는 뜻으로 조사(措辭 공문서를 만들어)하여, 각 읍과 차사원에게 엄하게 신칙하였습니다. 곡자의 경우는 각 읍의 곡자의 대소가 같지 아니한 것은 진실로 관문의 내용에서 논한 바와 같습니다. 다만, 쌀과 보리를 논할 것 없이 모두 환곡(還斛 환곡을 거둬들일 때 사용하는 곡자)으로 거둬들여야 하는데도 이 봉환 곡자(捧還斛子)를 버려두고 만약 세곡자(稅斛子)로 책망해 납입하게 한다면 매 곡자에 더 거둬들였던 수효를 끝내 그 징수할 곳이 없어져<sup>379)</sup> 거의 가족에 털이 없는 것과 같을 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작년과 올봄에 보리를 운송하고 조(租)를 운송할 때 또한 모두 각 읍의 봉환 곡자로 거둬들이라는 뜻을 경청에 논보(論報)하여 데김을 받아 시행하여 곧 항식(恒式)을 완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역시 의당 차이가 없게 해야 함에 따라, 작년에 예에 의거하여 각 해당 읍은 봉환곡자 1개씩 실어 보내게 하여 이 곡자로 헤아려 받아들입니다. 이런 연유로 첩보합니다.

377) 봉환(捧還) : 환곡(還穀), 또는 환자(還子)를 거둬들이는 것을 말한다.

378) 세곡자(稅斛子) : 세금을 받을 때 쓰는 곡자로, 관부용 꺾은 세미를 받을 때 중간 손실을 우려하여 15말을 한 섬으로 하였다.

379) 징수할 곳이 없어져 : 원문의 지징무처자(指徵無處者)는 ‘유망절호 지징무처자(流亡絶戶指徵無處者)’로, 떠돌아 죽고 가호(家戶)가 없어져서 세금이나 환곡을 징수할 곳이 없다는 의미이다. 즉 세금을 낼 사람이 죽거나 도망하여 받을 곳이 없는 것을 말한 것이다.



同日. 以竊發之患, 因籌司關, 發廿五十三州、兵營、五鎮營、法聖、古羣山鎮.

【甘結】筋到付備邊司關內, “筋啓下教, 今十月十五日藥房入診, 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領議政李相瓚所啓, ‘戢盜之政, 何時不嚴, 而荒歲尤當加意, 昨秋以後, 畿湖傳說, 在在驚心, 昏夜之剽劫, 白晝之壤奪, 幾於無處不有, 而至于今, 尚未寢息. 雖以近日入聞者言之, 田野之草賊, 店幕之竊盜, 公肆遍行, 至使農民失業, 行旅難通, 方秋如此, 嗣歲可知. 若此不已, 來後之慮, 誠無所不到, 決不容以窮民之迫於飢寒, 而或用姑息之政. 須以周禮急刑除盜之文, 治之然後, 始可以警戢奸宄, 奠保平民. 穿窬鼠竊, 自有治盜常律, 而若其贓犯絕悖, 跡涉強悞者, 令道臣無敢因循, 畫即馳聞梟首, 以示朝家禁暴除害之意, 仍以此榜揭坊曲, 俾知先甲. 而大抵守土之臣, 自平時苟能飭法而循紀, 嚴保伍之制, 申鈴柝之警, 常自閭里各有素備, 亂民宜無所容, 革面從良, 不無是理, 此即古先王教而後刑之仁政也. 亦令按道及守土之臣, 知悉此意何如?’ 上曰: ‘依爲之.’ 又所啓, ‘才以戢盜之政, 奏飭於外道, 而都下竊發之患, 近聞尤甚. 富戶之囊篋, 貧民之鼎鏜, 探覬偷竊, 殆至於無夜不警閭里, 騷然若無以安生, 而未聞詞戢, 任他熾蔓, 是豈設置捕廳之本意哉? 左右捕將, 姑先重推, 嗣後譏捕之方, 另加着意, 俾無敢如前玩愒重干失職之科. 且以近日流丐事言之, 疲癯老弱之不能自食者, 沿門叫化, 安得無是? 而至於年力富強, 衣表如常之類, 突入閭家, 肆氣行惡, 嚇詐恐喝, 橫索無厭者, 決不可以平民待之, 分付捕廳, 隨即捉治, 痛懲惡習. 而非但都下爲然, 鄉外此弊尤甚於都下云. 一體關飭於諸道. 流民則自各該邑, 給糧還送於原籍官, 外此無賴作挈者, 則一切以法從事, 嚴加糾禁, 俾絕村閭隳突之患, 則災歲擾民之弊, 庶可以少熄, 並令知悉惕念舉行何如?’ 上曰: ‘依爲之’ 事, 傳教 教是置, 傳教內事意, 奉審施行 向事” 關是置有亦. 近聞閭里之間, 多有竊發之患, 不勝其騷擾云, 故方欲發關申飭 是加尼 際此筵稟行會, 若是截嚴, 營邑尤當着意舉行 是如乎. 雖在平時戢盜之政, 不可不嚴密, 況筋 似此災歲 是乙喻? 申明法禁, 嚴立科條, 各別料察, 隨現痛繩 是矣, 各其坊曲五家作統, 以統首定爲牌長, 結幕巡更, 務盡警備之方 爲筋. 流丐無賴, 作挈閭里之類, 亦依關辭另加禁戢, 俾無擾民之弊 爲乎矣, 爲先以此甘辭一通, 謄書揭付於街路場市等處, 俾姦宄知戢, 無賴屏跡之地 爲筋. 甘到日時, 舉行形止, 先即牒報宜當者.

같은 날. 도적질이 발생하는 근심으로 비변사의 관문에 의거하여 53주와 병영과 5진영

과 법성진과 고군산진에 감결하였다.

【감결】 이번에 받아본 비변사 관문에 “이번에 계하하신 올 10월 15일 약방(藥房)이 들어와 임금을 진찰하고, 대신과 비국당상을 인견(引見) 입시(入侍)할 때 영의정 이상환(李相瓚)이 아뢴 내용에, ‘도적질을 그치게 하는 정사가 어느 때인들 엄하지 않았겠습니까마는 흉년에는 더욱 뜻을 두어야 합니다. 작년 가을 이후로 기호(畿湖) 지방에서 전해지는 말이 곳곳마다 마음을 놀라게 하니, 어두운 저녁엔 위협하여 빼앗고 대낮에도 강탈하는 것이 거의 모든 곳에서 행해지고, 지금까지도 아직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비록 최근에 들리는 것으로 말할지라도 전야(田野)에서의 초적(草賊)과 상점에서의 절도가 공공연히 방자하게 두루 행해져 농민은 생계를 잃고 나그네는 통행이 어렵습니다. 올 가을도 이와 같으니 내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가 그치지 않는다면 앞으로의 근심이 진실로 이르지 않는 바가 없을 것이니, 곤궁한 백성이 배고픔과 추위에 내몰리는데 혹시라도 임시방편의 정책만을 쓰는 것을 결단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모름지기 『주례(周禮)』의 엄한 형벌로 도적을 없애는 조문으로 저들을 다스린 뒤에야 비로소 도적질을 경계하여 멈추게 하여 백성들을 편안히 정주(定住)하게 할 수 있습니다. 천유서절(穿窬鼠竊)<sup>380</sup>의 경우에는 자연 도적을 다스리는 일정한 법률[常律]을 두었지만, 만약 그 장물을 가진 범인이 패악질이 심하거나 억지로 협박한 것에 관련된 경우는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머뭇거리지 말고 즉시 급히 알리도록 하여 효수(梟首)하여 조정이 폭력을 금하고 재산의 피해를 없애는 의지를 보이며 이러한 방문(榜文)을 마을마다 게시하여 미리 경계하여 알리게 하소서. 대저 국토를 지키는 신하들은 자연 평소에 진실로 능히 법을 삼가고 기강을 따르며 오지제(伍之制)<sup>381</sup>를 엄격하게

380) 천유서절(穿窬鼠竊) : 벽을 뚫고 담을 넘어 쥐처럼 몰래 훔치는 줌도둑을 말한다.

381) 오지제(伍之制) : 백성들 조직방식으로, 『주례(周禮)』에 "소사도(小司徒)는 모든 백성들의 졸오(卒伍) 조직을 참작하여 일을 시킨다. 5명으로 오(伍)를 조직하고, 5오로 양(兩)을 조직하며, 4량으로 졸(卒)을 조직하고, 5졸로 여(旅)를 조직하며, 5려로 사(師)를 조직하고, 5사로 군(軍)을 조직하여 군대를 동원하며 사냥과 부역을 시킨다. 또 이 조직으로 침략자를 축출하기도 하고 나쁜 자들을 체포하기도 하며 공물과 부세를 받아들이기도 한다." 하였다. 정현(鄭玄)은 말하기를 "용(用)이라 함은 백성을 부려 일을 시키는 것이고, 오(伍)·양(兩)·졸(卒)·여(旅)·사(師)·군(軍)은 모두 무리의 이름이다. 이는 모두 선왕(先王)이 농사를 통하여 군령(軍令)을 정하는 것이니 그 은혜는 넉넉히 서로 돌보아 주고 의(義)는 넉넉히 서로 구원하고 옷차림을 서로 분별하고 말소리를 서로 알아차리게 하고자 함이다. 역(役)은 공력의 일이고, 추(追)는 도적을 쫓는 것이고, 서(胥)는 도적을 살피 잡는 것이다." 하였다. (柳馨遠, 『반계수록(磻溪隨錄)』 권23 「병제고설(兵制攷說) 병제(兵制)」)

하며 방울과 딱딱이의 경계를 거둬서 항상 여리(閭里)에서부터 각자 평소 준비됨이 있게 하고 사회를 어지럽히는 백성들을 마땅히 허용할 바가 없게 한다면 면목을 고쳐 진실함을 좇는 이러한 이치가 없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옛 선왕(先王)이 가르친 이후에 형벌을 시행하는 인(仁)한 정사이니 역시 관찰사와 국토를 지키는 신하들이 이러한 뜻을 다 알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겨우 도적질을 그치게 하는 정사(政事)를 외도(外道)에 신착할 것을 아뢰었습니다만, 도성에서 도적이 일어나는 근심이 근래 더욱 심하다고 들었습니다. 부호의 주머니와 빈민의 술을 찾아 몰래 훔쳐가니, 거의 밤에 여리(閭里)를 경계하지 않을 수 없고 소란하여 편안히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형집(誦戢) 엄탕하여 거둬한다는 것을 듣지 못하였고 도둑들에게 내맡겨 성행하니 이것이 어찌 포도청을 설치한 근본 뜻이겠습니까? 좌·우 포도대장은 우선 중추(重推)<sup>382</sup>하고 뒤에 기포(譏捕)<sup>383</sup>하는 방법은 따로 뜻을 두어 감히 전과같이 경시(輕視)하고 거둬 범하여 직분을 잃는 죄과가 없게 하소서. 또 근래 걸인들의 사례로 말하면 피륙(疲癯)<sup>384</sup>든 노약자들 가운데 스스로 잘 먹지 못하는 자들이 문가를 따라 교화를 울부짖는다고 하니 어찌 이러한 일이 없겠습니까? 젊고 힘이 센 자가 걸으로는 보통사람 같은 부류들이 여가(閭家)에 갑자기 들이닥쳐서는 방자한 기운으로 악행을 저지르고 위협하고 속이며 큰소리로 다그치며 멋대로 찾아 가지고도 만족할 줄을 모르는 놈들은 결단코 백성으로 대우해서는 안 되니 포도청에 분부하시어 즉시 잡아 다스리고 악행의 습속을 엄하게 징계하게 하십시오. 비단 도성뿐만이 그러하지 않고, 향외(鄉外)에 이러한 폐단이 도성보다 더욱 심하다고 하니 똑 같이 여러도에 관문으로 신착하십시오. 유랑하는 백성들은 각 해당 읍으로부터 원적관(原籍官 원적지)으로 식량을 주어 돌려보내고 이외에 부랑(浮浪)하며 소란을 일으키는 자들은 일체 법에 따라 처리하고 엄격하게 규명하여 금하게 하시어 촌려(村閭)가 갑자기 무너지는 것을 막는다면 흉년에 소요하는 백성들의 폐단은 거의 줄어들어 사그라질 것이니 모두 다 알게 하고 두렵고 삼가는 마음으로 거행하게 하시는 것

382) 중추(重推) : 종중추고(從重推考)의 뜻으로 벼슬아치의 죄과를 중벌에 따라 엄중하게 캐물어서 밝히는 것을 말한다.

383) 기포(譏捕) : 조선 시대에 강도·절도를 기찰(譏察)하여 체포하던 일로, 포도청(捕盜廳)·오군문(五軍門) 등에서 이를 맡아보았다.

384) 피륙(疲癯) : 다만 기운(氣運)이 쇠약(衰弱)하여 생긴 나이 많은 노인의 병(病)을 말한다.

이 어떨겠습니까?’ 하니, 상이 말씀하시기를 ‘아뢴 대로 하라’ 고 전교하셨다. 전교하신 일의 뜻을 봉심하여 거행할 일.” 하였습니다.

근래 들으니 여러(閭里) 사이에 도적이 일어나는 근심이 많이 있어 소요를 이루 다할 수 없다고 하기에 방금 관문을 발송하여 신척하려고 하였더니, 이즈음 이러한 연품행회(筵稟行會)<sup>385</sup>가 이와 같이 지엄하니 영(營)과 읍(邑)은 더욱 마땅히 뜻을 두어 거행하라.

비록 평소에도 도적질을 그치게 하는 정사는 엄밀하게 하지 않을 수 없거늘 하물며 이 같은 흉년이겠는가? 법으로 금하는 것을 거듭 밝히고 죄를 부과하는 조목을 엄격하게 세워 각별하게 헤아리고 살펴 나타나는 대로 엄하게 바로잡되 각 방곡(坊曲)의 5가작통은 통수(統首)로 패장(牌長)을 삼아 막(幕)을 치고 순경(巡更)<sup>386</sup>하여 경비하는 방책에 힘을 다하라. 걸인과 부랑들로 여러(閭里)에서 소란을 일으키는 부류도 역시 관문의 내용에 의거하여 각별히 금지시키고 백성들을 성가시게 하는 폐단이 없게 하되 우선 이 감결 한통을 베껴 써 도로와 시장 등에 게시하여 도적질이 그쳐져야하는 것을 알게 하고 무뢰배들의 자취가 없어지도록 하라.

감결이 도착한 일시와 거행된 사실 전말을 먼저 바로 첩보함이 마땅할 일.

二十六日. 判官入見. 羅州監牧官趙秉祿, 自京下來之路來見, 仍爲辭去. 冬至箋文實差員、靑巖察訪李東韻、預差員求禮縣監申鍾命來見.

26일. 판관이 입견하였다. 나주 감목관 조병록(趙秉祿)이 서울에서 내려오는 길에 와서 보고 그대로 하직하고 갔다. 동지(冬至) 전문(箋文) 실차원(實差員)<sup>387</sup> 청엄 찰방 이동운(李東韻)· 예차원(預差員) 구례 현감 신종명(申鍾命)이 와서 보았다.

同日. 封災加請啓.

【狀啓】 筋到付備邊司關內, “筋啓下敎司啓辭, ‘卽見全羅監司徐有槩, 災實分等狀啓, 則 [靈光等二十邑鎮, 置之尤甚, 順天等二十三邑, 置之次, 光州等十一邑, 置

385) 연품행회(筵稟行會) : 임금의 면전(面前)에서 사연을 아뢰고, 나라의 지시를 관아의 우두머리가 부하들에게 알리는 것과, 그 실행 방법을 의논하여 정하기 위한 모임이다

386) 순경(巡更) : 밤에 도둑이나 화재 따위를 경계하기 위하여 돌아다니는 것을 말한다.

387) 실차(實差) : 나라에 중대한 일이 있을 때에 임시로 두던 차비관으로 임명된 사람으로, 실차(實差)는 정임자(正任者)이며 예차(預差)는 정임자의 유고 시를 대비한 예비 대령자를 말한다.

之稍實，仍以爲事目災一千九百結，外不足災二萬四千六百二十二結二負二束特許劃下，後錄諸條，並請令廟堂稟旨分付，而被災偏酷處，從便賙救，計料]爲辭矣。三等分劑，必有斟酌依施，災政之爲難，何道不然，而此道最爲甚焉。蓋多年陳頤，每以今災磨勘，雖值常年請災之較多於他道者，職由於是。然今此分數，統論新舊兩摠，終未免稍過。事目外特許二萬結加劃，使之略綽分儀。其一，新還當捧中，尤甚、之次邑、尤甚面·里，限折半準折代捧事也。折代雖非經法，而災民在所軫念依施。其一，珍島所在辛卯停退還穀全數，仍停事也。其一，各年舊還己巳·庚午·壬申條，毋論三等邑仍停，珍島等四邑所在辛巳·壬午·丙戌條，亦爲仍停，高敞己巳反作條，依已例，仍停事也。其一，丙子未捧，依已例，仍停事也。其一，城餉毋論三等邑，城下近面輪納城倉，程途稍間處，捧留邑倉，待明秋還納城倉事也。其一，己巳停退軍布，依已例，仍停事也。其一，三軍門及樂工保米，尤甚·之次邑，每名六斗，代錢二兩收捧，待明春上納事也。其一，京外所納箭竹，尤甚邑全數，之次邑折半，蠲減事也。其一，尤甚邑，勿定配所事也。其一，推奴徵債，限明秋防塞事也。‘各年舊還舊布，固難并督於如今之歲，而城餉平留之參量遠近，尤甚邑勿配，推·徵防塞，皆有已例並依施。保米代錢，元非年例可請者，而加給之災，既以昨年參互，則此亦以昨年分等所許者施之，樂工保米與軍需有異，毋論三等邑，使之純錢上納，箭竹則尤甚邑折半，之次邑三分一權減何如?’ 答曰：‘允’事，傳教教是置，‘傳教內事意奉審施行向事’”關是白置有亦。“當此諸道荐歉，國計罔涯之時，事目災外，二萬結特許加劃，寔出於卹隱益下之格外惠澤，臣雖無狀，顧何敢不自滿足，更事煩瀆? 而目下民情，誠有所萬萬悶隘者是白乎所。以本道番結之多，以今年災損之形，新舊災之止於二萬六千餘結。臣雖不敢自謂精約，而其有漏無濫。抑亦一省公共之言：‘始自未移川浦之災，逐庫籌摘，十分精抄，及夫秋成之後，飭勵守宰，嚴加操束，除非最晚移插之初不發穗者，蟲雹災損之全不食實者外，雖落種一斗，而僅穫數斗者，一不執災，使之從實報槩，而百般爬擲，屢回剋減，畢竟新災實數，不過爲一萬一千餘結，過刻之謗不勝其喧聒’是白乎矣，臣之所籍口而慰撫者，卽惟曰此數，則必蒙準劃也。民之所攢手而顯祝者，亦惟曰此數，則幸不減削也。俵下之期屈指以俟是白加尼，準劃毋論減儀，此多民心之愕然，失望已無可言。而臣亦將以何辭曉解而撫綏之是白乎乙喻? 今此見減之數，至爲四千六百餘結之多，而流來舊災、各年川沙，皆屬應頤，固不可減儀是白遣，未移卽當年之陳荒也。把束減削亦不可議到，則勢不得不就晚移·川沙等各樣，今災中勒減耳。今災一萬一千

三百餘結內，除却未移三千三百餘結，則各樣災頃不過爲八千餘結，而又復減削四千六百餘結，餘存僅爲三千四百結，以此塗抹，已是推去，不得之政是白分叱除良，稍實諸邑，災摠不多，而沿峽尤甚邑災頃，幾占元數三分之二到，今減俵他無着手，勢將一切割削於尤甚諸邑是白乎所。凡茲被災之民，皆是貧殘下戶，連年失農，方秋阻饑，政急溝壑之憂，舉懷荷擔之計，若於此時，不施以撫摩之政，反責以白徵之稅，則龜刮蚊負，未足爲喻。而客散田荒，必至之勢，臣旣的知災形之若是孔酷，民情之若是違汲，而徒懷嚴畏，不以實聞。以致朝家如傷若保之盛德至意，緣臣而不得下究，遇災近命之幾萬生靈，緣臣而不得支保，則辜負溺職之罪，益無所逃，茲不得不冒昧申籲爲白去乎。劃下外不足災四千六百二十二結二負二束更爲加劃，以爲略綽分俵之地事，令廟堂稟旨分付爲白只爲，詮次善啓云云”。

備局回啓關內， “ ‘災結加請，誠一謬獎，況事目外加給者，不爲不多，亦有所較量新災參互舊摠者，則如是更陳極涉煩複，而第念本道元結最多於他道，且流來未頃，仍作今災者，無以釐正於卒乍，則除却每年例俵，以今災可給者，或不無不足之患，而民情合有曲軫，國體尤貴寧失，更以二千五百結劃下，俾爲實劃下究之地何如?’ 答曰： ‘允’ 事傳教教是置，傳教內事意奉審施行尙事。”

같은 날. 재결(災結)을 더 인정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장계를 써서 봉하였다.

【장계】 이번에 받아본 비변사 관문에 “이번에 계하하신 비변사의 계사에, ‘전라 감사 서유구의 재실분등(災實分等)<sup>388)</sup> 장계를 보면, [영광 등 20읍진(邑鎭)을 우심(尤甚)으로 두고, 순천 등 23읍을 지차(之次)로 두고, 광주 등 11읍을 초실(稍實)로 두고, 인하여 사목재(事目災)<sup>389)</sup> 1천9백결이 되었으니, 외에 부족한 재결 2만 4천6백22결 2부 2속을 특별히 획하(劃下)를 허락하시고 후록(後錄)한 여러 조목도 아울러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임금의 뜻을 여쭙게 하여 분부하시고, 재난을 입은 것이 유독 심한 곳은 편의에 따라 구휼할 계획입니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3등급[우심·지차·초실]으로 나누어 갈라준 것은 반드시 참작해 시행해야 하고 재해에 대한 정책이 어려운 것은 어느 도(道)가 그렇지 않겠습니까만 이 전라도가 가장 심합니다. 다년간 진탈(陳頃)<sup>390)</sup>된 것인데도 매년 금년 재해를

388) 재실분등(災實分等) : 재해를 입은 것과 결실(結實)한 농사 작황을 등급별로 나눈 것을 말한다.

389) 사목재(事目災) : 공사(公事)에 관하여 정한 규칙으로 재해로 면세시키는 것을 말한다.

390) 진탈(陳頃) : 오랫동안 재결지로 세금을 감면받는 전답(田畝)을 말한다.

입은 결수(結數)로 마감하니 비록 보통의 재해를 당해도 재결(災結)을 요청한 것이 타도보다 비교적 많은 것은 오직 이것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금번 이 획하량은 신구(新舊) 두 재결(災結)의 총량을 통합하여 논한 것이니 결국 조금 넘는데 벗어나지 않습니다. 사목재(事目災) 외에 특별히 2만결을 허락하여 더 획급(劃給)해주시어 그들에게 흉년에 재해를 입은 논밭의 세금을 감해주어 편안하게 하소서.

1. 마땅히 받아들여야 할 신환(新還) 가운데 우심재음·지차재음과 우심(尤甚)의 면·리(面里)는 절반까지로 한정하여 대봉(代捧)<sup>391</sup>할 것을 비준하여 정한다. 절반까지 대봉(代捧)을 정하는 것은 비록 대경대법(大經大法)이 아니지만 재민(災民)들에게 임금이 보살피는 바가 있으니 백성들의 청원에 의하여 시행할 일.
  2. 진도에 있었던 신묘년의 정퇴(停退) 환곡의 모든 수량을 잉정(仍停)할 일.
  3. 각 해의 구환(舊還) 가운데 기사(己巳), 경오(庚午), 임신(壬申)년의 환곡 조항은 3등급[우심·지차·초실]의 읍으로 논하지 말고 잉정(仍停)하고 진도 등의 4읍에 있었던 신사(辛巳), 임오(壬午), 병술(丙戌)년의 환곡 조항 또한 잉정(仍停)하고, 고창의 기사(己巳)년 반작(反作) 환곡 조항은 이전의 예에 의거하여 잉정(仍停)할 일.
  4. 병자(丙子)년에 미처 거둬들이지 못한 환곡은 이전의 예에 의거하여 잉정(仍停)할 일.
  5. 도읍(都邑)의 군량(軍糧)은 3등급의 읍을 논하지 말고 성 아래 가까운 면은 성의 창고로 운반하여 들이고, 길이 조금 떨어진 곳은 읍의 창고에 받아 보유하고 내년 가을환곡 때를 기다려 다시 성의 창고로 납부하게 할 일.
  6. 기사(己巳)년에 정퇴(停退)한 군포(軍布)는 이전 예에 의거하여 잉정(仍停)할 일.
  7. 3군문과 약공 보미(保米)는 우심(尤甚)·지차(之次) 읍은 매 사람 당 6말을 돈2냥으로 대체하여 거둬들이되 내년 봄까지 기다려 상납하게 할 일.
  8. 서울과 지방에서 납부하는 화살대는 우심(尤甚)읍은 전량, 지차(之次)읍은 반절을 감해줄 일.
  9. 우심재음은 죄인을 귀양 보내는 곳으로 정하지 말 일.
  10. 추노(推奴)와 채무를 징수하는 것은 내년 가을까지 하지 못하게 막을 일.
- 그리고 각 해의 구환(舊還)과 구포(舊布)는 진실로 지금 같은 해에 모두 독촉하기 어려우니 도읍의 군량(軍糧)을 고르게 유지하는 것은 원근을 헤아리고, 우심재음

391) 대봉(代捧) : 본래 정해진 물건이 아닌 것으로 같음하여 바치는 것을 말한다.

을 귀양지로 삼지 말고, 추노와 채무 징수를 틀어막는 일은 모두 이미 있었던 예에 의거하여 모두 백성의 청원에 의해 시행하십시오. 보미(保米)를 돈으로 대신 내는 것은 원래 연례로 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더 지급하는 재결을 이미 작년 기준으로 서로 참작해서 하니 이것 또한 작년 농사 풍흉의 등급에 따라 허용한 것으로 시행하고, 악공의 보미는 군수품과 차이가 있으니 3등급의 읍을 논하지 말고 오로지 돈으로 상납하게 하시고, 화살대는 우심(尤甚)읍은 절반, 지차재읍은 3분의 1을 임시로 감면하도록 하심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답하시기를 ‘윤택하다.’ 라고 전교하셨다. 전교 안의 내용을 봉심하여 시행할 것.” 하였습니다.

이렇게 모든 도(道)에 거듭된 흉년을 당하여 국가의 재정이 곤란이 끝이 없는 때에 사목재(事目災) 외에 2만결을 특별히 더 획급을 허락하시니, 이는 가엾게 여기시어 아랫사람을 구휼하는 특별한 은전(恩典)에서 나온 것입니다. 신이 비록 볼품없으나 도리어 어찌 감히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고 번거로운 일을 다시 일삼았겠습니까? 지금 민정이 진실로 매우 답답하고 곤궁한 바가 있습니다. 본도 답결(畚結)<sup>392</sup>이 많고 금년 재해로 손실된 형편으로 신규(新舊) 재결(災結)이 2만 6천여결(結)에 그쳤으니, 신이 비록 감히 스스로 정밀하게 취합했다고 할 수 없을지라도 빠트림은 있으나 과장됨은 없습니다.

또한 한 도에서 공공연하게 말하기를, “애초 이양하지 못한 천포지재(川浦之災)<sup>393</sup>를 곳에 따라 잘 살펴 충분히 정밀하게 가려내었고 가을 수확한 뒤에는 수재(守宰)를 신칙하고 권면하여 엄히 단속하게 하고 가장 늦게 이양한 것 가운데 애초 이삭이 패지 않은 것과 벌레와 우박의 재해로 손상당한 것 가운데 전혀 열매를 먹지 못하는 것을 제외하고, 비록 한 말을 씨앗을 뿌렸을지라도 겨우 두세 말을 수확한 것은 전혀 재결로 집계하지 않았으니 그들로 하여금 사실대로 대략 보고하게 하고 백방으로 찾아 덜어내어 여러 번 깎아 줄이면 필경은 새로운 재결(災結)의 실제 수치는 1만 1천여결에 지나지 않아 과도하게 깎아냈다는 비방으로 그 떠들썩하게 지껄임을 이길 수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신이 구실 삼아서 위무(慰撫)할 것은 바로 오직 이 수치이니 반드시 그대로 획급(劃給) 받아야 했습니다. 백성이 손을 모아 엄숙히 기원하는 것 또한 오직 이

392) 답결(畚結) : 논에 대하여 매기는 세금이다.

393) 천포지재(川浦之災) : 천반포락(川反浦落), 곧 천(川)이 다른 곳으로 터져 흘러서 논밭이 떨어져 나가는 재해를 입은 재결(災結)이다.



수치를 삭감하지 않길 바랍니다. 표하(俵下)<sup>394</sup>하는 기일을 손꼽아 기다렸더니 획급 하는데 있어서 재결(災結)에 조세를 감면하는 것을 논하지 말라는 것은 이렇게 민심이 놀람이 많고 희망이 없어 무어라 말할 수 없었습니다. 신 또한 장차 무슨 말로 이해시키고 어루만져 편안히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재결에 조세를 감면 받은 수량은 4천6백여 결(結)보다는 많으나 전부터 있었던 오래된 재결[流來舊災]과 각 년(年)에 하천 모래로 덮인 것은 모두 응탈(應頃)<sup>395</sup>에 속하니 진실로 표재로 조세를 감면해서는 안 되고, 이양하지 않은 것은 곧 당년에 목어 황폐해진 것입니다. 파속(把束)을 줄이는 것 또한 의논할 수 없다면 형편상 할 수 없이 늦게 이양한 것이나 하천모래로 덮인 것 등의 각 양태를 좇아 금년 재해 가운데서 억지로 줄일 뿐입니다. 금년 재결 1만 1천3백여 결안에 이양하지 않은 3천3백여 결을 제외하면 각종의 재탈(災頃)은 8천여 결에 불과 합니다. 게다가 4천6백여 결을 다시 줄이면 나머지는 겨우 3천4백결이 되니 이렇게 이리저리 없애며 이미 밀어 내버리면 이를 수 없는 정책일 뿐만 아니라, 초실(稍實)의 여러 읍은 재결의 총량이 많지 않으나 골짜기를 따라 우심(尤甚)읍의 재탈은 거의 원래 수량의 3분의 2를 점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재결에 세금을 줄여주는 것은 다른 곳은 손을 쓸 수 없어, 형편이 장차 모두가 우심(尤甚)의 여러 읍에서 깎고 깎아야 할 바입니다.

이렇게 재난을 입은 백성들 모두는 빈천한 하호(下戶)이고 해를 이어 농사를 망쳤으니 금년 가을은 굶주림에 허덕거리 바로 구학(溝壑)에 떨어져 죽는 근심에 급급하며 모두가 짐을 짊어지고 떠날 생각을 품고 있는데도, 만약 이런 때에 무마하는 정책을 펴지 않고 도리어 백징(白徵)<sup>396</sup>의 세금을 추궁한다면 지나던 개도 웃겠다는 비유조차 부끄럽습니다.<sup>397</sup>

전황(田荒)으로 사람들이 흩어지는 것은 반드시 닥칠 형세이니, 신은 이미 재화(災禍)의 형편이 이와 같이 참혹한 것과 민정이 이와 같이 황급(惶汲)한 것을 정확히 알았으되 다만 매우 두렵게 생각하여 사실대로 아뢰지 못하였습니다. 조정(朝廷)은 백성 대하기를 다친 사람처럼 가엾게 여기고 갓난아이 돌보듯 보살피며

394) 표하(俵下) : 흉년(凶年)이 든 때에 조세(租稅)를 감하여 주는 것으로, 표재(俵災)과 같은 뜻이다.

395) 응탈(應頃) : 응당 재결로 처리하는 것이다.

396) 백징(白徵) : 세금(稅金)을 물 만한 까닭이나 관계없는 사람에게 억지로 세금(稅金)을 물려 받던 일을 말한다.

397) 지나던……부끄럽습니다 : 원문의 '귀괘문부(龜刮蚊負)'는 '거북이로 태산을 끌어내고 모기로 산을 짊어지게 하는 것'처럼 터무니없음을 말하는데, 이런 터무니없는 비유로도 실정(失政)을 비꼬기에 부족하다는 것이다.

지극한 성덕(盛德)으로 다스리는 데도, 신 때문에 아래 끝까지 미칠 수 없고, 재난을 만나 근친의 목숨인 몇 만의 생민(生民)들이 신 때문에 지탱할 수 없으니 직분을 그르치고 저버린 죄는 더욱 도망갈 곳이 없어 이에 부득불 무릅쓰고 거듭 호소합니다.

획하 외에 부족한 재결 4천6백2십2결 2부 2속을 다시 더 획하하시어 재결에 세금을 감해주는 것을 편안하게 시행하는 바탕으로 삼는 일을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임금의 뜻을 여쭙게 하여 분부하시길 이러한 연유로 갖추어 자세히 아뢰니다……. 398)

비변사의 회계(回啓) 관문에<sup>399)</sup>, “ ‘재결을 더 청한 것은 진실로 한결같이 나쁜 폐단이니 하물며 사목재(事目災)외에 더 획급하는 것이 많고, 또한 신재(新災)를 헤아려 구재결의 총량에 비교할 바가 있다면 이와 같이 다시 목힌 것은 지극히 번잡함에 관계되나, 다만 본도의 원결이 다른 도보다 가장 많은 것을 생각하고, 또 유래미탈(流來未頤)<sup>400)</sup>된 것이 바로 금년의 재결로 된 것은 갑자기 바로잡아 고칠 수 없으니 매년 으레 조세를 감해주는 것을 제외하고, 금년의 재결(災結)로 세금을 감해 줄 수 있는 것은 혹 부족할 우려가 없지 않고, 민정(民情)에 응당 곡진(曲盡)함이 있고 국체(國體)에는 더욱 영실(寧失)<sup>401)</sup>을 귀하게 여겨야 하니 다시 2천5백결을 획하하여, 실제로 획급해준 것이 하층민까지 다 내려가는 바탕으로 삼는 것이 어떨겠습니까?’ 하니, 답하시기를 ‘윤허한다.’ 라고 전교하셨다. 전교안의 내용을 봉심하여 시행할 일.” 하였다.

二十七日. 冬至陳賀箋文封裹奉安于宣化堂大廳, 實差靑巖察訪、預差求禮縣監及判官、中

398) 이러한……아뢰니다 : 원문의 ‘전차선계(詮次善啓)’에서 ‘전차(詮次)’는 연유(緣由)이고, ‘선계(善啓)’는 임금께 서면으로 아뢰는 일을 높여 이르는 말로, 곧 ‘연유를 자세히 설명하여 서면으로 임금께 공손히 아뢰’의 뜻이다.

399) 비변사의 회계 관문 : 이 내용 전체는 위 단락의 장계 내용을 윤허받아 비변사가 회계(回啓)로 관문한 내용이다. 관찰사가 별도의 감결로 처리할 내용으로 보이나 장계(狀啓) 말미에 윤허 받은 결과를 묶어 놓았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것과 장계 등 공문서에 앞뒤의 투식구가 모두 빠져 있는 것으로 보아, 『완영일록』 기술 방식은 있었던 사실을 추후에 다시 정리하여 기록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400) 유래미탈(流來未頤) : 여러 해 동안 재해를 입었는데도 탈이 없는 전야(田野)를 말한다.

401) 영실(寧失) : 『서경(書經)』 「대우모(大禹謨)」의 “무고(無辜)한 사람을 살해하기보다는 차라리 실형(失刑)의 책임을 지겠다.[與其殺不辜, 寧失不經]”라는 내용을 가리킨다. 여기서는 법(法) 규정을 떠나서 조세를 감면해 주겠다는 뜻으로 사용하였다.

營將、中軍、檢律，同參拜箋後，祇送。求禮縣監，仍爲辭去。

【箋文】伏以化溢玉燭，仰至象於北宸；陽動琯灰，迓令節於南陸。黃鐘叶律，紫籥凝祥。恭惟淵德顯道景仁純禧主上殿下，如日方升，體天行健。齊七政而曆象，敬授人時；囿萬物而雍熙，斂錫民福。茲當泰來之日，益膺鼎至之休。伏念臣職忝周藩，心懸魏闕。阻鸛班於青瑣，徒切向日之忱；頒鳳曆於朱維，庶贊拊辰之政。臣無任望天仰聖激切屏營之至。

【內閣箋文】伏以丹極躋治，方頌調玉燭之化；黃鍾協律，載回添繡線之辰。化晷漸舒，休祥鼎至。恭惟淵德顯道景仁純禧主上殿下，龜疇建極，燕翼貽謨。玄宰參功，仰至化之風動；青邱開講，喜令聞之日彰。肆當頒玉曆之時，益迓綿寶籙之慶。伏念臣寸心圖報，方面匪才。倏逢新年，倍覺離陞之久；難分此夜，若爲倚斗之望。臣無任望天仰聖激切屏營之至。

27일. 동지(冬至) 진하전문(陳賀箋文)<sup>402</sup>을 밀봉하여 선화당 대청에 봉안(奉安)하고, 실차(實差) 청엄(靑嚴) 찰방·예차(預差) 구례 현감 및 판관(判官)·중영장(中營將)·중군(中軍)·검률(檢律)이 모두 전문(箋文)에 참여한 뒤에 공경히 올려 보냈다. 구례 현감은 그대로 하직하고 갔다.

【전문】엎드려 생각건대 교화가 태평성세에 넘치니 대궐에 지극한 모습을 우러르고, 양의 기운이 관회(琯灰)<sup>403</sup>에 움직이니 남방에서 명절을 맞이합니다. 황종(黃鐘)이 12월에 맞고 궁성은 상서로움을 돌렸습니다. 공경히 생각건대 연덕현도경인 순희(淵德顯道景仁純禧)<sup>404</sup> 주상전하께서는 해가 막 떠오르는 것과 같아 하늘의 운행이 건실함을 체득하였습니다. 칠정(七政)<sup>405</sup>을 가지런히 하고 역상(曆象)하여 공경히 백성에게 농사짓는 때를 주고,<sup>406</sup> 만물을 포용하고 태평하게 하여 백성에

402) 진하전문(陳賀箋文) : 나라에 하례(賀禮)가 있을 때 신하가 임금께 써 올리던 사육체(四六體)의 글을 말한다.

403) 관회(琯灰) : 율관(律管) 속에 갈대청의 재[葭灰]를 넣어서 천후(天候)를 점치는 것이다. 『진서(晉書)』 「율력지(律曆志)」에 “갈대 속의 막(膜)을 태운 재를 관(管) 속에 넣어 두면, 동지에 그 재가 동쪽을 향하여 난다.” 하였다.

404) 연덕현도경인순희(淵德顯道景仁純禧) : 순조의 존호이다. 『조선왕조실록』 순조27년 정해(1827,道光7년) 7월28일(신미)일에 빈청(賓廳)에서 존호(尊號)를 다시 의논하여 연덕(淵德) 현도(顯道) 경인(景仁) 순희(純禧)로 하였다는 기록이 보인다.

405) 칠정(七政) : 일(日)·월(月)과 수(水)·화(火)·금(金)·목(木)·토(土)의 오성(五星)을 말한 것이다. 『서경』 「순전(舜典)」에 “선기옥형(璿璣玉衡)으로 살펴서 칠정을 고르게 하셨다.” 하였다.

406) 역상(曆象)하여……주고 : 역상은 역을 추산하고 천체를 관측함을 말한다. 『서경』 「요전(堯典)」에

게 복을 내려주었습니다. 이에 태평이 오는 날을 당하여 더욱 성대하게 이르는 아름다움을 받습니다. 앞드려 생각건대 신은 직임이 변방을 다스리나 마음은 조정에 있습니다. 대궐문[靑瑣]에서 문무백관의 반열[鵷班]<sup>407)</sup>을 떠나니 한갓 임금을 향한 정성만이 간절하고, 전라도[朱維]<sup>408)</sup>에 책력[鳳曆]을 하사하시니 때를 어루만져주는 정사를 기립니다. 신은 천성(天聖)을 우러르는 간절한 마음 가눌 길 없습니다.

**【내각(內閣) 전문】** 앞드려 생각건대 주상전하께서 정치를 잘하여 바야흐로 태평성세의 교화를 칭송하며, 황종(黃鐘)이 율관에 합하니<sup>409)</sup> 비로소 오색실을 더할 날이 돌아왔습니다.<sup>410)</sup> 온화한 햇별이 점점 퍼지고 상서로운 조심이 성대하게 이릅니다. 공손히 생각건대 연덕현도경인순희(淵德顯道景仁純禧) 주상전하께서는 홍범구주(洪範九疇)<sup>411)</sup>의 법을 세우고 연익(燕翼)의 모훈<sup>412)</sup>을 주었습니다. 현재(玄宰)가 공업(功業)에 참여하니 지극한 교화에 감화됨을 우러르고, 동궁[靑邸]에서 개강(開講)하니<sup>413)</sup> 좋은 소식이 날마다 드러남을 기뻐합니다. 이에 달력을 반포하는 때를 당하니 더욱 보록(寶籙)<sup>414)</sup>을 잇는 경사를 맞이합니다. 앞드려 생각건대 신은 마음에 보답할 것을 도모하였으나 관찰사를 맡을 재주는 아닙니다. 어느덧 새

“이에 역관 희씨와 화씨에게 명하여 하늘을 공경히 따라서 해와 달과 별자리를 기록하고 관찰하여 백성의 농사철을 공경히 내려 주게 하셨다.[乃命羲和, 欽若昊天, 曆象日月星辰, 敬授人時]” 하였다.

407) 원반(鵷班) : 조정 백관(百官)들의 행렬을 가리키는 말로, 원행(鵷行)·원로(鵷鸞) 등으로도 쓴다.

408) 주유(朱維) : 태양이 하지선(夏至線)에 가까이 온 것으로, 남쪽 지방 전라도를 말한다.

409) 황종(黃鐘)이 율관에 합하니 : 동짓달이 되었음을 뜻한다. 『한서(漢書)』 「율력지(律曆志)」에 절후(節候)를 살피는 법이 수록되어 있는데, 갈대 속의 얇은 막을 태워 재료 만든 뒤 그것을 각각 율(律呂)에 해당되는 여섯 개의 옥관(玉管) 내단(內端)에다 넣어 두면 그 절후에 맞춰 재가 날아가는 바, 동지에는 황종(黃鍾) 율관(律管)의 재가 난다고 한다.

410) 오색실을……돌아왔습니다 : 동지 이후로는 낮 시간이 길어져서 자수하는 궁중 여인들의 하루 일거리도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한다는 말이다. 동지 이틀 뒤의 소지(小至)를 읊은 두보의 시에 “수놓는 오색 무늬 옷감에는 가는 실이 더 늘어나고, 갈대의 재 채운 여섯 관에는 날리는 재가 들썩거리네.[刺繡五紋添弱線, 吹葭六琯動飛灰]”라는 표현이 나온다. 『杜少陵詩集 卷18 小至』)

411) 홍범구주(洪範九疇) : 원문의 ‘귀주(龜疇)’는 홍범구주(洪範九疇)를 말한다. 우(禹) 임금이 홍수를 다스릴 적에 신령스러운 거북이를 얻었는데, 그 등에 천하를 다스리는 아홉 개의 큰 법이 새겨져 있었다고 한다. 『書經 洪範』)

412) 연익(燕翼)의 모훈 : 조상이 자손을 위해 세운 계책이나 교훈을 말한다. 『시경』 「문왕유성(文王有聲)」에서 주(周)나라 문왕에 대해 “후손에게 계책을 남겨 두어 공경하는 아들들 편안케 하셨다.[詒厥孫謀, 以燕翼子]” 하였다.

413) 동궁에서 개강하니 : 이때 헌종(憲宗 1827~1849, 재위 1834~1849년)의 공부가 다시 시작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414) 보록(寶籙) : 도가(道家)의 부록(符籙)으로 미래를 예언하거나 천자의 미래를 예언한 글을 말한다.

해를 맞으니 대궐을 떠나온 지가 오래됨을 더욱 느끼고, 이 밤을 구분하기 어려우니 북두성을 향해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신은 천성(天聖)을 우러르는 간절한 마음 가눌 길 없습니다.

同日. 題潭陽府覆檢案.<被告金日文, 以秋宗孫盜去牛價, 不爲蕩減, 則宗孫服砒自裁事. 初檢官潭陽府使曹錫玄, 覆檢官玉果縣監韓致定.>

【題】屍帳捧上是在果. 沙碗餘瀝, 飲砒之看證丁寧, 銀釵變色, 服毒之法文脗合, 致死實因更無疑眩, 所當卞者威脅與不威脅耳. 金日文所謂從容處置云者, 雖不足取信是矣, 究其威脅之跡, 亦無十分明證是遣. 東隣失牛, 西隣嘖言, 交發並至, 置身無地. 朝起趁市買砒挾去, 則未赴金家之前, 已辨一死之心, 想像光景可以推得是乃, 苟使日文少寬一線於終夜乞憐之際, 則安知不死者致死, 不若是其倏忽是乙喻? 謂之由我, 則律或過情, 謂之厲階, 則渠當無辭? 同被告金日文嚴刑一次, 取招牒報爲旒. 屍親秋一煥, 秋汗石, 秋洪水戔, 甘受殮具, 忍作私和, 倫理所關, 不可仍置, 並嚴刑懲礪爲矣. 老且愚昧之其妻千召史戔, 特爲參酌是遣, 看證諸人戔, 獄旣無實, 何必深究? 並與保授諸人, 一併放送爲旒. 屍體卽爲出給, 埋瘞爲旒. 獄案文字, 何等審慎, 而初檢案中, 醋糟之糟字, 以不成文之糟字書之, 執贓之贓字書以贓字, 無異之異字書以以字, 未料之料字書以了字, 由我之律律字書以由字, 種種錯誤不止一二是遣. 覆檢案中, 汝矣夫之夫字誤書以父字, 兩檢刑吏並別附過事, 初檢官良中枚移施行尙事.

같은 날. 담양부 복검안에 데김하였다.<피고 김일문(金日文)이 추종손(秋宗孫)이 소값을 도둑질해간 것을 탐감해주지 않는다고 하니 추종손이 비상을 먹고 자살한 일. 초검시관은 담양 부사 조석현, 복검시관은 옥과 현감 한치정.>

【데김】시장(屍帳)을 받아보았다. 사기(沙器)에 남은 찌꺼기로 비상(砒霜)을 먹은 증거가 틀림없고, 은비녀가 변색되니 독약을 먹은 것이 법문과 꼭 맞아, 죽음에 이른 실인(實因)이 다시 의심스러울 것이 없으니, 마땅히 분변해야 할 것은 위협했는지 여부(興否)뿐이다. 김일문이 이른바 ‘조용히 처리하자고 말했다는 것’은 비록 충분히 신뢰할 수 없지만, 그가 위협했다는 정황 또한 찾아도 심분 증명할 수가 없다. 동쪽 마을에서 소를 잃었는데 서쪽 마을에서 힐책하여 교대로 책임을 물음이 동시에 이르면 몸 둘 곳이 없다.

아침에 일어나 시장으로 달려가 비상을 사가지고 품고 갔다면 김씨 집에 미처

다다르기 전에 이미 한 번 죽을 마음을 결단했음을 광경(光景)을 생각하여 미루어 알 수 있지만, 만일 일문(日文)으로 하여금 추종선이 밤을 세워 동정(同情)을 구걸할 때 조금이라도 용서하는 하나의 실마리라도 있었다면 죽지 아니할 자가 죽음에 이른 것이 이와 같이 갑작스럽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겠는가? 그것이 자신 때문이라고 말한다면 법률이 혹 실정에 지나친 것이고 재앙을 받을 빌미였다고 말한다면 어찌 마땅히 변명함이 없었겠는가? 동피고 김일문을 1차 엄히 형신하고 진술을 받아 첩보하라.

시친 추일환(秋一煥), 추한석(秋汗石), 추공수(秋洪水)는 영습의 도구를 달게 받고 차마 사화(私和)<sup>415</sup>를 했을지라도 윤리(倫理)에 관계된 바는 그대로 둘 수 없으니 모두 엄히 형신하고 징계하여 권면하라. 다만, 늙고 우매한 그 처 천조이[千召史]는 특별히 참작하고 본 것을 말한 모든 사람들은 옥사가 이미 실상이 없으므로 하필 깊이 규명할 필요가 있겠는가? 보수(保授)한 모든 사람들과 함께 모두 내 보내라. 시체는 즉시 내주어 묻게 하라.

옥안(獄案)의 문자는 얼마나 자세히 살펴야 하는데도 초검안 가운데 초조(醋糟)의 조(糟) 자는 글을 이룰 수 없는 조(糟)로 쓰고, 집행(執贓)의 장(贓) 자는 장(贓)자로 쓰고 무이(無異)의 이(異) 자는 이(以)자로 쓰고 미료(未料)의 료(料)는 료(了)자로 유아지율(由我之律)의 율(律) 자는 유(由)자로 쓰여 있어 가지가지로 착오한 것이 한 둘에 그칠 뿐만이 아니다. 복검안 가운데 여의부지(汝矣夫之)의 부(夫) 자가 부(父)자로 잘못 쓰여 있다. 초검 및 복검을 행한 형리는 모두 따로 부과(附過)할 것을 초검시관에게 공문을 보내어 시행할 일.

同日. 以年分事, 發廿五十三州, 法聖、古羣山鎮.

【甘結】筋到付備邊司關內, “筋啓下教司啓辭, ‘卽見全羅監司, 災實分等狀啓, 則[靈光等二十邑鎮, 置之尤甚, 順天等二十三邑, 置之之次, 光州等十一邑, 置之稍實, 仍以爲事目災一千九百結, 外不足災二萬四千六百二十二結二負二束特許劃下, 後錄諸條, 並請令廟堂稟旨分付, 而被災偏酷處, 從便調救, 計料]爲辭矣. 三登分劑, 必有斟量依施. 災政之爲難何道不然? 而此道取爲甚焉. 盖多年陳頌, 每以今災磨勸, 雖值常年請災之較多於他道者, 職由於是. 然今此分數, 統論新舊兩摠, 終未免稍過,

415) 사화(私和) : 법으로 처리할 송사(訟事)를 개인끼리 서로 좋게 풀어 버린 일을 말한다.

事目外特爲二萬結加劃，使之略綽分俵。其一，新還當捧中，尤甚·之次邑面里，限折半準折代捧事也。折代雖非經法，而災民在所軫念依施。其一，珍島所在辛卯停退還穀，全數仍停事也。其一，各年舊還己巳庚午壬申條，毋論三等邑仍停，珍島等四邑所在辛巳壬午丙戌條，亦爲仍停，高敞己巳反作條，依己例，仍停事也。其一，丙子未捧，依己例，仍停事也。其一，城餉毋論三等邑，城下近面，輸納城倉，程途稍間處，捧留邑倉，待明秋還納城倉事也。其一，己巳停退軍布，依己例，仍停事也。其一，三軍門及樂工保米，尤甚，之次邑，每名六斗，代錢二兩收捧，待明春上納事也。其一，京外所納箭竹，尤甚邑全數，之次邑折半蠲減事也。其一，尤甚邑，勿定配所事也。其一，推奴徵債，限明秋防塞事也。各年舊還舊布，固難並督於如今之歲，而城餉平留之參量遠近，尤甚邑勿配，推徵防塞皆有己例并依施。保米代錢，元非年例可請者，而加給之災，既以昨年參互，則此亦以昨年分等所許者施之，樂工保米與軍需有異，無論三等邑，使之純錢上納，箭竹則尤甚邑折半，之次邑三分之一，權減何如?’ 答曰：‘允’事，傳教教是置，‘傳教內事意奉審施行向事’” 關是置有亦。關內辭綠奉審施行爲乎矣，分等邑名及各樣停捧條件，後錄發甘，逐段詳考着意，舉行爲於。災結分俵，從當別甘申飭，並只知悉舉行宜當者。

尤甚二十邑鎮，之次二十三邑，稍實十一邑.<邑名見上.>

- 一 新還當捧中，尤甚，之次邑，尤甚面分叱，限折半準折代捧事。
- 一 辛卯停退，全數仍停事。
- 一 各年舊還，毋論三等邑，並仍停事。
- 一 高敞己巳反作，仍停事。
- 一 丙子未捧，仍停事。
- 一 山城軍餉毋論三等邑，城下近面輸納城倉，程途稍間處捧留邑倉，待明秋還納城倉事。
- 一 己巳停退軍布，仍停事。
- 一 三軍門保米，尤甚邑三分之一，之次邑四分之一代錢，樂工保米，毋論三等邑，純錢上納事。
- 一 京外所納箭竹，尤甚邑折半，之次邑三分之一蠲減事。
- 一 尤甚邑勿定配所事。
- 一 推奴徵債，限明秋防塞事。

같은 날, 연분(年分)의 일로 53주(州)와 법성(法聖), 고군산(古羣山) 진(鎭)에 감결하였다.

【감결】 이번에 받아본 비변사 관문에, “이번에 계하하신 비변사의 기사에, ‘전라감사 서유구의 재실분등(災實分等) 장계를 보면 [영광 등 20읍(邑)·진(鎭)을 우심(尤甚)으로 두고, 순천 등 23읍을 지차(之次)로 두고, 광주 등 11읍을 초실(稍實)로 두고, 인하여 사목재(事目災) 1천9백결이 되었으니, 외에 부족한 재결 2만 4천6백22결 2부 2속을 특별히 획하(劃下)를 허락하시고 후록(後錄)한 여러 조목도 아울러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임금의 뜻을 여쭙게 하여 분부하시고, 재난을 입은 것이 유독 심한 곳은 편의에 따라 구휼할 계획입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3등급[우심·지차·초실]으로 나누어 조절한 것은 반드시 헤아려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재해에 대한 정책이 어려운 것은 어느 도(道)가 그렇지 않겠습니까만 이 전라도가 가장 심합니다. 다년간 진탈(陳頌)된 것인데도 매년 금년 재해 입은 결수(結數)로 마감하니 비록 보통의 해를 당해도 재결(災結)을 요청한 것이 타도보다 비교적 많은 것은 오직 이것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금번 이 획하량은 신구(新舊) 두 재결(災結)의 총량을 통합하여 논한 것이니 결국 조금 넘는데 벗어나지 않습니다. 사목재(事目災)외에 특별히 2만결을 허락하여 더 획급(劃給)해주시어 그들에게 흉년에 재해를 입은 논밭의 세금을 감해주어 편안하게 하소서.

1. 신환(新還)을 마땅히 거둬들여야 할 것 가운데 우심재읍·지차재읍과 우심(尤甚)의 면·리(面·里)는 절반까지로 한정하여 대봉(代捧)할 것을 비준하여 정할 것. 절반까지 대봉(代捧)을 정하는 것은 비록 대경대법(大經大法)이 아니지만 재민(災民)들에게 임금이 보살피는 바가 있어 백성들의 청원에 의하여 시행할 일.
2. 진도에 있었던 신묘년의 정퇴(停退) 환곡의 모든 수량을 잉정(仍停)할 일.
3. 각 해의 구환(舊還) 가운데 기사(己巳), 경오(庚午), 임신(壬申)년의 환곡 조항은 3등급의 읍으로 논하지 말고 잉정(仍停)하고 진도 등의 4읍에 있었던 신사(辛巳), 임오(壬午), 병술(丙戌)년의 환곡 조항 또한 잉정(仍停)하고, 고창의 기사(己巳)년 반작(反作) 환곡 조항은 이전의 예에 의거하여 잉정(仍停)할 일.
4. 병자(丙子)년에 미처 거둬들이지 못한 환곡은 이전의 예에 의거하여 잉정(仍停)할 일.
5. 도읍(都邑)의 군량(軍糧)은 3등급의 읍을 논하지 말고 성아래 가까운 면은 성의 창고로 운반하여 들이고, 길이 조금 떨어진 곳은 읍의 창고에 받아 보유하고 내년 가을환곡 때를 기다려 다시 성의 창고로 납부하게 할 일.



6. 기사(己巳)년에 정퇴(停退)한 군포(軍布)는 이전 예에 의거하여 잉정(仍停)할 일.
7. 3군문과 약공 보미(保米)는 우심(尤甚)·지차(之次) 읍은 매 사람 당 6말을 돈2냥으로 대체하여 거둬들이되 내년 봄까지 기다려 상납하게 할 일.
8. 서울과 지방에서 납부하는 화살대는 우심재읍은 전량, 지차재읍은 반절을 감해 줄 일.
9. 우심재읍은 죄인을 귀양 보내는 곳으로 정하지 말 일.
10. 추노(推奴)와 채무를 징수하는 것은 내년 가을까지 하지 못하게 막을 일.

그리고 각 해의 구환(舊還)과 구포(舊布)는 진실로 지금 같은 해에 모두 독촉하기 어려우니 도읍의 군량(軍糧)을 고르게 유지하는 것은 원근을 헤아리고, 우심재읍을 귀양지로 삼지 말고, 추노와 채무 징수를 틀어막는 일은 모두 이미 있었던 예에 의거하여 모두 백성의 청원에 의해 시행하십시오. 보미(保米)를 돈으로 대신 내는 것은 원래 연예(年例)로 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더 지급하는 재결을 이미 작년기준으로 서로 참작해서 하니 이것 또한 작년 농사 풍흉의 등급에 따라 허용한 것으로 시행하고, 약공의 보미는 군수품과 차이가 있으니 3등급의 읍을 논하지 말고 오로지 돈으로 상납하게 하시고, 화살대는 우심(尤甚)읍은 절반, 지차(之次)읍은 3분의 1을 임시로 감면하도록 하심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답하시기를 ‘윤택하다.’ 라고 전교하셨다. 전교안의 내용을 봉심하여 시행할 것.” 하였 습니다.

관문안의 내용을 봉심하여 시행하되 분등(分等) 읍(邑)이름과 각양(各樣)의 정퇴(停退, 다음해 가을까지 납세를 미룸)와 봉납(捧納)조건은 후록(後錄)하여 감결을 발송하니 하나하나 상고(詳考)하고 뜻을 두어 거행하라.

재결(災結)에 세금을 감해주는 것은 마땅함을 좇아 따로 감결로 신칙할 것이니 모두 자세히 알아 거행함이 마땅할 일.

우심(尤甚) 20읍(邑)·진(鎭), 지차(之次) 23읍, 초실(稍實) 11읍<읍의 이름은 위에 보임.>

1. 신환(新還)을 마땅히 거둬들여야 할 것 가운데 우심과 지차읍(邑), 우심 면(面)만, 절반에 한정하여 대봉(代捧)할 것을 비준하여 정할 일.
2. 신묘년의 정퇴(停退)는 전수량을 잉정(仍停)할 일.
3. 각년(各年)의 구환(舊還)은 3등급의 읍을 논하지 말로 모두 잉정(仍停)할 일.

4. 고창의 기사년 반작(反作)은 잉정(仍停)할 일.
5. 병자년에 미처 받아들이지 못한 것은 잉정(仍停)할 일.
6. 산성의 군량은 3등급의 읍을 논하지 말고 도아래 가까운 면은 성창(城倉)으로 운반하여 납부하고 길이 조금 떨어진 곳은 거뒀들여 읍창(邑倉)에 보유하였다가 내년 가을을 기다려 다시 성창에 납부할 일.
7. 기사년에 정된 군포는 잉정(仍停)할 일.
8. 3군문의 보미는 우심재읍은 3분의1, 지차재읍은 4분의1을 돈으로 대신 납부하고 악공의 보미는 3등급의 읍을 논하지 말고 모두 돈으로 상납(上納)할 일.
9. 서울과 지방에서 납부(納付)했던 화살대는 우심재읍은 절반, 지차재읍은 3분의1로 감면할 일.
10. 우심재읍은 귀향을 보내는 곳으로 정하지 말 일.
11. 추노(推奴)와 빚을 거뒀들이는 일은 내년 가을까지 못하게 막을 일.

二十八日.

28일.

二十九日.

29일.

## IV. 국역 『완영일록』 권 2

『완영일록』 2권 전라도 관찰사 주요 직무
<p>매월 정기적으로 해야 하는 관찰사의 일 가운데는 망궤례 외에 매달 11일 삭선(朔膳)할 진상품을 감봉(監封)하는 일이었다.</p> <p>동지제와 납향제를 지내고 장계하였고, 월식(月蝕)이 있으면 구식례(救蝕禮)를 행하고 장계로 아뢰었다.</p> <p>환곡 거둬들이는 일을 독촉한다는 내용으로 전주부에 관문하고 5일후 다시 같은 건으로 52주에 관문을 발송하는 등 환곡과 운모(運牟) 이송에 관한 관문을 많이 발송하였다.</p> <p>흉년이 들자 조세를 감면해주는 여러 일들을 하였는데, 표재(倭災) 관문을 보내 조세를 줄여주고, 부분적인 재해를 입은 경지[분수재(分數災)]에도 조세를 감면하도록 사통(私通)을 돌리기도 하였으며, 대용갈이[대파(代播)]의 결수(結數)를 이양하지 못한 결수 속에 함해 주기도 하여 재해 입은 경작지에 조세를 줄여주었다.</p> <p>호서로 보리 5천석을 보내주라는 비변사의 관문에 대하여, 가까운 포구에 유치해 둔 것이 없고 산읍에서 분배한다면 포구로 낼 거리가 너무 멀어 겔보리 5천석을 타도로 구획해 주는 일을 준행할 수 없으니 비변사에서 헤아려 처리 하라고 논보하였다. 그리고 진흙에 쓸 보리 5천석을 보내달라는 금영(錦營)의 공문에 대하여, 본도의 연해읍은 모환(牟還)이 본래 넉넉하지 못하였고 그나마 있는 것은 산촌에 있어 포구로 내기에 너무 멀어 함께 구획해야하는 의리상 소홀히할 수 없으나 본도의 형편상 매우 어찌할 수 없다고 회이하였다. 이렇게 타도와 협조할 사안이 있으면 경사(京司)를 통하였고 그 과정을 경사와 타도에 각각 공문을 주고받으며 소통하였다.</p> <p>금위영·어영청 두 영(營)의 향군(鄉軍)을 을미(乙未)년부터 3년간 다시 정번(停番)한다는 두 영의 관문을 받아 53주의 병영에 감결을 발송하였다.</p> <p>진상할 해의[김]가 구멍 나고 헐어서 좋지 않다고 영암군에 관문을 보내어 다시 감봉하라고 하였으나 이전의 물건을 그대로 보내오자, 좌수(座首)를 잡아 올려 엄하게 다스려야 하나 납세를 재촉하는 일이 매우 급하니 감봉 임무를 맡았던 예리(禮吏) 조득연(趙得璉)을 칼을 씌워 잡아 올리라고도 하였다.</p> <p>무덤 주변 소나무를 벌목한 자는 송금(松禁)의 국법을 여겼기 때문에 붙잡아 엄하</p>

게 처결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고 나주목에 관문하였고, 소 도축을 금지한다고 53고을과 법성, 고군산진에 감결을 보내기도 하였다.

예조의 관문을 받아 향시(鄉試)·한성시(漢城試)의 날짜를 택하여 열읍과 진에 감결하였다.

나주에서 연례로 훈련도감과 병영에 바치는 숫돌을 돈으로 대신 바쳐 민폐를 없애야 한다는 관문을 병영에 보냈다.

노인·효자·열녀 및 불쌍하고 곤궁한 사람들의 안부를 살피라고 각 읍에 관문을 보냈고, 유결인들의 실화 때에 불에 덴 사람을 치료해주라고 관문을 발송하였다.

추동등 수령 포평 계본을 봉하여 발송하였고, 산군(山郡)의 대동 면포를 순전으로 대신 바치게 해줄 것을 요청하는 상소를 올려, 순전히 돈으로 납부할 것을 허락하는 유지(有旨)를 받아 대동면포를 순전으로 대봉하라고 산간 군읍에 감결을 발송하였다.

환곡을 시급히 법대로 거둬들여 창고를 채우라고 50고을에 감결하였다.

비변사와 예조의 관문에 의거하여 우도 감시(監試)를 전주부에서 설행한다고 52주와 법성진, 고군산진에 감결하였다.

영암 군수가 모친상을 당하자 국왕에게 아뢰고 그 대임을 이조가 뽑아 시급히 보내줄 것을 장계한 뒤, 얼마 후 강진 현감을 봉고관(封庫官)으로 차정한다고 관문을 발송하였다.

정월 초하루에 하례를 드릴 전문(箋文)을 밀봉하여 선화당 대청에 봉안(奉安)하고, 실차(實差) 흥양 현감과 예차(預差) 벽사 찰방 및 판관·중군·중영장·만경 현령 등과 함께 전문에 나란히 절한 뒤에 공경히 보냈다.

## 1. 1833년(순조33) 11월 1~10 : 환국을 독촉하는 일로 52주에 관문하다

初一日. 味爽詣客舍, 行望闕禮. 中軍、中營將、檢律, 同爲進參, 還營軒.

1일. 먼동이 틀 무렵 객사에 도착하여 망궐례를 행하였다. 중군·중영장·검률이 함께 가서 참석하고 영헌으로 돌아왔다.

同日. 題興陽縣查案.<被告崔元得, 以崔尙明偷禾事, 有所倡言, 則尙明言詰而去矣, 醉後觸冷, 本病發作, 仍爲致死事. 查官興陽縣監尹守鳳.>

【題】查案捧上是在果. 殺獄肯繫 檢驗是已, 而此獄段, 既不行檢, 惟當以詞證爲主, 而崔元得之初不犯手, 非但證招歸一, 屍親之言亦無異辭. 死者致死之非毆伊病, 更無疑眩是旒. 說人偷禾, 雖甚不緊, 逢彼荷杖, 吾自謹避, 原情觀跡, 有何所失, 崔元得之云以被告, 得不幾於硬定是乙喻? 旒初無發告之人, 則被告云云, 殊涉爽實, 原案中卽爲厘正是遣. 非渠饒舌, 何由致此紛拏? 決杖二十度放送爲旒. 餘外諸人段, 當此催科方張之時, 何可多日滯囚? 一併卽速放送爲旒. 似此災荒之歲, 草竊尤當嚴禁. 咸良用偷禾云云, 旣已因事現發 不可仍置, 查實嚴繩, 以爲懲一儆百之地. 所偷穀物, 一一徵出, 還給本主, 舉行形止, 亦卽牒報宜當向事.

같은 날. 흥양현 사안을 데김하였다.<피고 최원득(崔元得)이 최상명(崔尙明)이가 벼를 훔친 일을 떠벌리자 최상명이 말로 따지고 갔다. 최상명이 술에 취한 뒤 찬 기운을 씌어 본래부터 있던 병이 발작해서 그대로 죽은 일. 사관은 흥양 현감 윤수봉(尹守鳳).>

【데김】사안(查案)을 받아 보았다. 살옥(殺獄)의 중요한 점은 바로 검험(檢驗)<sup>1)</sup>인데, 이 옥사의 경우는 검험을 하지 않고 오직 증언을 위주로 삼은 것에 해당하고, 최원득이 애초에 손찌검을 하지 않은 것은 증언과 공초가 하나로 일치할 뿐만 아니라 시친의 말 또한 다른 말이 없다. 사자(死者)가 죽음에 이른 것은 때려서가 아니라 그의 병 때문이었음을 다시 의혹할 바가 없다. 사람들에게 벼를 훔쳤

1) 검험(檢驗) : 살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 형조(刑曹)의 검서관(檢官)이 현장에서 피해자의 시체를 검사하고 사망 원인을 밝혀 검안서를 쓰던 일을 말한다. 『심리록(審理錄)』의 응행격식(應行格式)에 의하면, 형조는 시친(屍親) 피살자의 친족의 진정이나 혹은 해부(該部 서울의 5부)의 문첩(文牒)에 의거하여, 한편으로는 감결하여 검시(檢屍)를 시행하고, 한편으로는 포교(捕校)를 보내 본래 범인을 체포하여 수갑과 차꼬를 채우고 칼을 씌워 죄수를 구금하여 검시소로 압송한다.

다고 말한 것이 비록 매우 긴요한 말이 아님에도 최상명이 오히려 적반하장(賊反荷杖)하는 것을 보고 최원득은 스스로 삼가 피하였으니, 원정(原情)<sup>2)</sup>에서 그 경위(經緯)를 보면 무슨 잘못이 있으며, 최원득을 피고라고 운운하는 것이 억지 결정에 가까운 것 아닌가? 하물며 애초 고발한 사람이 없다면 피고라고 운운한 것이 매우 사실과 다른 것이 되니 원정(原情)의 안에서 즉시 바로 잡아라. 최원득의 잡다한 말이 아니었다면 무슨 연유로 이렇게 어지럽게 뒤섞이기에 이르렀겠는가? 장형(杖刑) 20대를 때리고서 석방하라. 나머지 모든 사람들의 경우는 이렇게 조세수납을 재촉함이 한창인 때를 당하여 어찌 여러 날을 가뉘 둘 수가 있겠는가? 일제히 모두 바로 석방하라.

지금처럼 재난을 당한 해에 농작물을 훔쳐가는 일은 더욱 마땅히 엄하게 금해야 한다. 모든 사람들이 버를 도적질한 것이 사실이라고 운운하여 일이 드러났기 때문이니 그대로 둘 수 없다. 사실을 조사하여 엄하게 바로잡아 한 사람을 징계하여 여러 사람을 경계하라. 도적질한 곡물은 낱알이 거뉘내 본 주인에게 돌려주고 거행한 사실의 전말은 또한 바로 첩보함이 마땅할 일.

同日. 題羅州牧正犯洪希贊初同推狀.

【題】傷痕狼藉，詞證俱備，渠雖百喙，焉敢抵賴？正犯洪希贊段，後日同推，更以別杖各別考察，嚴刑準次，牒報爲旻。洪興周段，當初作挈，緣渠失牛，則發謀作黨，非渠伊誰？一體嚴刑取招爲旻。在逃兩漢段，刻期譏捕之意，纔已發關右鎮營是如乎。連爲文移催督，期於不日內捉得後，牒報宜當向事。

같은 날. 나주목 정범 홍희찬(洪希贊)을 처음 동추(同推)한 보장을 데김하였다.

【데김】 상흔이 낭자하고 증언을 모두 갖추었으니 홍희찬이 비록 백 개의 주둥이가 있다한들 어찌 감히 신문(訊問)에 버티며 발뺌하겠는가? 정범 홍희찬은 뒷날 형관들이 합동으로 신문(訊問)할 때 다시 별장(別杖)<sup>3)</sup>으로 각별히 고찰하고 준차(準次)<sup>4)</sup>하여 엄하게 형벌하고 첩보하라. 홍흥주(洪興周)의 경우 당초 혼란을 야

2) 원정(原情) : 관아에 억울한 사정을 하소연하거나 또는 그러한 내용을 적은 글을 이른다.

3) 별장(別杖) : 정해진 법식대로 만들지 않은 신장(訊杖)이다. 별장은 규정대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죄수들에게는 법장(法杖)에 비해 훨씬 가혹한 형이었고, 남형(濫刑)의 소지가 많았다. (『국역 영조실록 24년 8월 19일』 『경국대전』 「형전」에서 규정한 신장은 길이 3자 3치로, 윗부분의 1자 3치까지는 원경이 7푼, 아랫부분의 2자까지는 너비가 8푼에 두께가 2푼이다.

기한 것은 그가 소를 잃어버린 것과 관련 있으니 꾀를 내어 흥희찬과 작당한 것은 흥희주가 아니면 그 누구이겠는가? 모두 엄하게 형벌하여 진술을 받아라. 도망한 두 놈은 기한을 정하여 찾아 체포해야 한다는 뜻으로 관문을 우진영(右鎭營)에 막 발송했다. 연이어 나주목은 우진영에 공문을 독촉하여 기필코 즉시 두 놈을 잡아 들인 뒤에 첩보하는 것이 마땅할 일.

初二日. 題金溝縣查報.<以韓召史禁葬, 致死事. 罪人張基老嚴加刑訊, 並與屍親取招事.>

【題】金永哲段, 目見臨年祖母之獨往隻家, 無意隨往, 竟使雉頸之舉, 在於他人之家. 雖緣蒙駭無狀極矣, 嚴刑一次, 懲礪放送. 金尙明, 金宗哲段, 既云各居聞訃後, 始爲來到, 則別無可罪之端, 叅酌放送爲旣. 張基老段, 惡言相加, 雖無叅證是乃, 苟非積憾, 胡至捨生, 待拷限更加嚴刑一次, 懲礪放送尙事.

2일. 금구현 조사 보고서를 데깁하였다.<한조이[韓召史]가 매장(埋葬)을 금지 하다가 죽은 일. 죄인 장기노(張基老)를 엄하게 형신(刑訊)하고 아울러 시친과 함께 진술을 받은 일.>

【데깁】김영철(金永哲)의 경우, 늙은 조모가 혼자 피고집에 가는 것을 뵈히 보고도 따라갈 뜻이 없었고, 결국 목을 매게 한 일이 남의 집에서 있었다. 김영철이 비록 매우 몽매하여 형편없는 농일지라도 한 차례 엄하게 형벌하고 징계하여 석방하라. 김상명(金尙明), 김종철(金宗哲)의 경우는 따로 살고 있다가 한조이의 부음을 들은 뒤에야 비로소 도착하였다고 하니 별도로 그들을 죄줄 단서가 없으니 참작하여 석방하라. 장기노의 경우 악독한 말을 서로 주고받았다는 것을 비록 증거삼을 수는 없으나 진실로 한조이가 서운함이 쌓이지 않았다면 어찌 생을 버리는데까지 이르렀겠는가? 장기노는 고한(拷限)<sup>5)</sup>을 기다려 다시 엄하게 한 차례 형벌하고 징계하여 내보낼 일.

初三日. 中營將入見. 鎭安縣監朴曾壽、羅州牧使李晦淵, 來見.

4) 준차(準次) : '차수(次數)를 채우다'의 뜻인데, 여기서 차수(次數)는 형신(刑訊)할 때에 1차례에 곤장 30대를 넘지 못하고 도중에 자복(自服)을 하더라도 남은 대수를 채운다는 의미.

5) 고한(拷限) : 죄인을 고신(拷訊)하는 기한을 말하는 것으로, 『경국대전(經國大典)』 「형전(刑典) 추단(推斷)」에 의하면, 고신은 한 차례에 장(杖) 30도(度) 이상을 때리지 못하고, 3일 내에는 재차 형문하지 못하며, 10일에 걸쳐 고신한 뒤에 형벌을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고신하는 기한은 30일이다. 원문은 '拷限'인데, 오자로 보아 '拷'를 '拷'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3일. 중영장이 입견하였다. 진안 현감 박증수(朴曾壽) · 나주 목사 이회연(李晦淵)이 와서 보았다.

同日. 以申世良之死, 由病非咎, 廉探報來事, 發關全州府.

【關文】爲相考事. 卽見守沃倉捧上監官金基祚馳告, 則以爲“東一面, 石灘里還米所納, 至爲三百石之多, 而開倉以後, 初無一包穀來納, 故十月十一日逢點時, 該里洞任申世良 咎治二度, 嚴飭出送矣. 同世良二十九日, 因病身死. 則其妻忽地來到, 稱云‘渠夫死, 由咎治’ 是如, 其所行惡, 罔有紀極” 是如爲置. 糴政何等嚴重, 則拒納洞任之咎治督捧, 自是應行之事, 而今此申漢所掌穀物, 一直拒納, 咎治不過二度, 則其死之由病非咎, 可以推知, 而厥妻之以此肆惡, 萬萬痛駭. 到關卽時, 厥女行惡之如何? 咎治之幾度, 廉探卽爲報來, 宜當 尙事.

같은 날. 신세량(申世良)의 죽음은 매질이 아니라 병으로 죽었다는 것을 염탐하여 보고할 일로 전주부에 관문을 발송하였다.

【관문】상고(相考)할 일. 방금 수옥창(守沃倉)에서 세금을 거둬 올리는 감관 김기조(金基祚)의 급한 보고를 보면 “동일면 석탄리에서 거둬들일 환미(還米)가 3백석보다 많게 되었는데도 개창(開倉)한 이후로 처음부터 한 포의 곡식도 와서 납부함이 없기 때문에 10월 11일 점검할 때에 해당 마을 동임(洞任)인 신세량을 2대 매질하여 다스리고 엄히 타일러 내보냈습니다. 신세량이 29일에 병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처가 갑자기 와서 ‘자기 남편의 죽음은 매질 때문이다’ 라며 악행이 끝이 없다고 합니다.” 라고 하였다. 적정(糴政)이 무엇보다 중요하니 세금을 거부한 동임을 매질로 다스리고 봉납(捧納)을 재촉하는 것은 자연 응당 했어야 하는 일이거늘 지금 신가놈이 말았던 곡물은 한사코 납부를 거부하여 매를 친 것이 2대에 불과하다면 그가 죽은 것은 병 때문이고 매질이 아님을 미루어 알 수 있는데도 그 처는 이것을 빌미로 방자한 악행이 매우 놀랍다. 관문이 도착하는 즉시 신세량의 처가 행한 악행이 어떤지? 매질로 다스린 것이 몇 대인지 염탐하여 바로 보고함이 마땅할 일.

初四日. 羅州牧使, 鎭安縣監, 入見辭去.



4일. 나주 목사·진안 현감이 입건하여 하직하고 갔다.

同日. 以光州牧致死程鳴卜三檢事, 發關南平縣.

【關文】爲星火舉行事. 光州牧奇禮坊, 致死人程鳴卜獄事, 初覆檢案俱爲來到是矣, 致死實因, 不無疑眩是如乎. 渾身上下並無傷痕, 惟左眼胞有橫刺一厘, 肉綻血流云. 而眼胞本非要害之處, 被戳豈爲致死之因? 死者之當下昏絕, 宿夕殞命, 謂之眼胞被刺之崇, 則終不襯當是遣. 謂之醉飽後, 猝被猛刺, 精神昏窒, 而然則醉者之墜車不傷, 自是物理之常, 豈有以此驚怯, 致死之理? 謂之醉飽過度, 心肺脹滿. 而然則四五盃濁酒, 豈至於翻胃溢肺是歟? 俄頃行步與人言詰是如可, 傷眼仆地, 驀地猝死, 其非醉飽之崇, 不啻較然是置. 人命至重, 決不可以然疑臆度之見, 執定實因. 縣監三檢官差定爲去乎, 卽爲馳進, 具格檢驗爲乎矣. 臍肚膨脹, 尤有被踢被築之疑, 以相當法物罨洗後, 仔細檢驗爲歟. 應問各人等, 發問目取招, 到底盤覈, 論理牒報, 宜當向事.

같은 날. 광주목에서 죽은 정명복(程鳴卜)을 삼검(三檢)<sup>6)</sup>하는 일로 남평현(南平縣)에 관문을 발송하였다.

【관문】급히 거행할 일. 광주목 기예방(奇禮坊)에서 죽은 정명복의 옥사는 초검·복검의 문서가 모두 도착하였는데, 죽은 실제 원인이 의혹되는 바가 없지 않다고 한다. 온몸의 위아래에 모두 상흔이 없지만 왼쪽 눈꺼풀에 옆으로 찢린 한 곳이 있고, 살이 터지고 피가 흘렀다고 한다. 눈꺼풀은 본래 급소가 아니니 찢린 것이 어찌 죽게 된 원인이 되겠는가? 죽은 자가 그 자리에서 혼절하고 하루 저녁 만에 운명(殞命)한 것이 눈꺼풀을 찢렸기 때문이라고 말한다면 끝내 마땅하지 않다. 술에 만취한 뒤에 갑자기 깊은 자상(刺傷)을 입어 정신을 잃었다고 하니, 그렇다면 술 취한 자는 수레에 떨어져도 상처를 입지 않는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거늘 어찌 이렇게 놀라 겁을 내며 죽을 리가 있겠는가? 도가 지나치게 술을 마셔 심폐(心肺)가 부어올랐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너덧 잔의 탁주로 어찌 위(胃)가 뒤집히고 폐(肺)가 가득 차게 되었는가? 조금 걸어가다가 사람들과 말다툼하다가 눈꺼풀에 상처를 입고 땅에 넘어져 갑자기 죽었으니 그가 술을 먹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은 확실하다. 그럼에도 인명은 지극히 귀중하여 결단코 그런지 아닌지를

6) 삼검(三檢) : 살인(殺人) 사건(事件)에 일어났을 때, 세 번 또는 세 번째 하던 시체(屍體) 검사(檢査)를 말한다.

억측하는 견해로 죽은 실제의 원인을 확정해서는 안 된다. 남평 현감을 삼검시관(三檢官)으로 차정(差定)하니 즉시 달려가 격식을 갖추어 검험하라. 배꼽과 배가 팽창된 것은 더욱 발로 채이고 짓이겨진 의심이 있으니 해당하는 법률(法物)<sup>7)</sup>로 시체를 덮어 씻은 뒤에 자세히 검험하라. 꼭 물어야 할 각 사람 등은 심문 항목을 내어 진술을 받고 살살이 캐물어 이치를 논하여 첩보함이 마땅할 일.

初五日. 以還穀督捧事, 發關全州府.

【關文】爲相考事. 捧糶法意, 自來嚴重, 關題申飭不啻縷縷, 見今至月, 已屆勘限不遠, 而無論營府, 還所捧極甚零星如是, 而何時磨勘是乙喻? 揆以糶政, 萬萬悶然. 近以各邑, 間報見之, 則雖是尤甚災邑, 所捧幾盡強半, 如今之年, 糶事之不甚爲難, 一省宜無異同, 而本府耳亦, 催科之如是愆緩, 果何委折是喻? 此豈盡由於還民之拒納? 必是監色輩不勤董督, 任其觀望而然也. 言念舉行, 寧不痛惋? 所當卽爲推治, 而特以令申之意, 有此先甲之飭爲去乎. 後日次爲始各面所納, 考其勤慢, 如或有如前緩督之任掌, 頑然拒納之還戶是去等, 這這嚴治, 刻期督飭, 趁限準捧爲乎矣. 如是別關之後, 間報所捧, 猶復零星, 則當該都倉色吏除良, 不善檢督之首鄉, 斷當上使, 加倍嚴繩, 除尋常, 另飭舉行, 無至大段生梗之地, 宜當尙事.

5일. 환곡을 거둬들이는 것을 독촉하는 일로 전주부에 관문을 발송하였다.

【관문】상고(相考)할 일. 환곡을 거두는 법의 뜻은 본디 엄중하여 관제(關題)로 자세하게 신칙(申飭)했을 뿐 아니라 지금 동짓달이 되어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감영이나 전주부를 논할 것 없이 환곡을 거둬들이는 것이 지극히 보잘 것 없음이 이와 같으니 어느 때에 마감하겠는가? 환곡 정무의 관점에서 보면, 매우 답답하다. 근래 각 읍의 중간보고를 보면 비록 우심재읍(尤甚災邑)<sup>8)</sup> 일지라도 거둬들이는 것이 거의 다 반절이 넘었고, 금년 같은 해에 거둬들이는 일이 심히 어렵지 않아서 같은 도내라면 의당 다름이 없어야 하는데도 전주부만은 세금을 독촉함이 이와 같이 더디고 느슨하니 과연 무슨 곡절이 있는가? 이것이 어찌 모두 환곡을 바

7) 법률(法物) : 본디 불교의 용어로 법사(法師)에게서 전해 받은 가사(袈裟), 발우(鉢盂), 경전(經傳), 전답(田畓) 등을 이르는 말인데, 여기서는 검험할 때 법적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는 검험 도구 및 검험 방법을 말하는 것 같다.

8) 우심재읍(尤甚災邑) : 재해를 입은 정도가 심한 것부터 우심(尤甚), 지차(之次), 초실(稍實)의 세 등급으로 나누는데, 재해를 가장 심하게 입은 읍을 말한다.

치는 백성이 납부를 거부하였기 때문이었겠는가? 틀림없이 감색(監色) 무리들이 부지런히 감독하여 독촉하지 않고, 멋대로 형세를 관망하여 그렇다.

거행된 바를 생각하면 어찌 매우 답답하지 않겠는가? 마땅히 즉시 추궁하여 다스려야하나 특별히 법령을 신칙(申飭)하는 뜻으로 이렇게 선갑(先甲)<sup>9)</sup>하여 거듭 타이른다. 다음번에 각 면에서 수납(收納)이 시작되면 그 근만(勤慢)을 살펴 만일 혹 전과 같이 느슨하게 독촉하는 임장(任掌)<sup>10)</sup>과 완강하게 납부를 거부하는 환호(還戶)가 있거든 날날이 엄하게 다스리고 기한을 정해 독촉하여 기한을 맞추고 법률에 준거하여 거둬들이라. 이와 같이 별도로 관문한 뒤 거둬들이는 것을 중간보고할 때에 다시 수효가 적다면 당해 도창(都倉) 색리(色吏) 뿐 아니라 감시하고 독려를 잘못된 수향(首鄉)<sup>11)</sup>은 결단코 마땅히 감영으로 잡아 올려 가배법(加倍法)<sup>12)</sup>으로 엄하게 바로잡을 것이니 대수롭게 여기지 말고 특별히 신칙하여 거행하여 큰 탈이 생기지 않게 함이 마땅할 일.

初六日.

6일

初七日. 高敞縣監李鍾應來見.

7일. 고창 현감 이종응(李鍾應)이 와서 보았다.

初八日. 高敞縣監入見辭去. 中營將入見. 扶安縣監趙在慶來見. 益山郡守李源吉來見, 仍爲辭去.

9) 선갑(先甲) : 법령(法令)을 처음 제정(制定)·발포(發布)하는 전후에 있어서, 백성에게 공손히 고하는 일이다. 무슨 일이든지 주의를 깊이 해서 과오(過誤)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뜻으로 쓰이는 말이다.

10) 임장(任掌) : 서울의 각 방(坊)이나 지방의 동리에서 호적 및 기타의 공공사무를 맡아보던 사역(使役)을 통틀어 이르던 말이다. 서울의 각 방에는 별문서·별유사, 지방의 동리에는 면임(面任)·이임(里任)·감고(監考) 따위가 있었다.

11) 수향(首鄉) : 지방의 자치 기구인 향청(鄉廳), 곧 수령을 보좌하던 자문 기관인 유향소(留鄉所)의 우두머리인 좌수(座首)의 별칭이다.

12) 가배법(加倍法) : 1에 1을 더해 2로 하고, 2에 2를 더해 4로 하는 셈법으로, 일명 가일배법(加一倍法)이라고 한다.

8일. 고창 현감이 입견하고 하직하고 갔다. 중영장이 입견하였다. 부안 현감 조재경(趙在慶)이 와서 보았다. 익산 군수 이원길(李源吉)이 와서 보고 그대로 하직하고 갔다.

初九日. 判官, 扶安縣監入見. 茂長縣監尹興圭來見. 長城府使徐有民自京下來之路入見.

9일. 판관·부안 현감이 입견하였다. 무장 현감 윤흥규(尹興圭)가 와서 보았다. 장성 부사 서유민(徐有民)이 서울로부터 내려오는 길에 입견하였다.

初十日. 判官, 中營將入見. 長城府使, 扶安縣監, 茂長縣監入見辭去. 順天府使林翰鎮, 務安縣監吳致淳, 古阜郡守金裕淳, 高山縣監宋文熙, 長水縣監李啓陽, 以慶基殿冬至祭差備官, 來見.

10일. 판관·중영장이 입견하였다. 장성 부사·부안 현감·무장 현감이 입견하고 하직하고 갔다. 순천 부사 임한진(林翰鎮)·무안 현감 오치순(吳致淳)·고부 군수 김유순(金裕淳)·고산 현감 송문희(宋文熙)·장수 현감 이계양(李啓陽)이 경기전 동지제사 차비관으로 와서 보았다.

同日. 以還穀督捧事, 發關五十二州.

【關文】爲相考事. 捧糶法意, 至爲嚴重, 前後申飭 不啻縷縷, 其果別樣留意, 到底察檢是隱喻? 如今失稔之年, 還穀尤當實捧然後, 明春接濟之方, 始可着手, 而尤甚災民, 亦可免此攤損瘡之患. 故開倉之前, 別甘提飭, 豈由於此, 則始終責, 效趁限完倉, 斷無移易, 而見今至月將半, 勘限不遠, 所捧極甚零星. 未收尙此倍蓰, 如是稽緩, 曾所不料, 此豈盡由於還民之拒納? 必是監色輩, 不勤董督, 任其觀望而然也. 言念舉行, 寧不痛惋? 所當一併推治, 而姑以令申之意, 有此別關董飭爲去乎, 各面任掌, 排日推治, 火速董督. 考其勤慢, 如或有頑然拒納之還戶, 如前延拖之官屬是去等, 這這摘發, 嚴督準捧, 限內報勘爲乎矣. 如是別飭之後, 間報所捧, 猶復零星是去乃, 又或苟且彌縫, 一有違越於別甘諸條, 則都倉監色除良, 都次知首鄉, 斷當上使, 加倍嚴繩, 除尋常另加督飭, 無至大段生梗之地爲於. 關到日時, 舉行形止, 先即馳報向事.

같은 날. 환곡을 독촉하여 거둬들이는 일로 52주에 관문을 발송하였다.

【관문】 상고(相考)할 일. 환곡을 거둬들이는 법의 뜻은 지극히 엄중하여 전후로 누누이 신칙(申飭)했는데, 그 결과를 특별히 유의하여 자세하게 살피고 조사하였는가? 지금 같은 흉년에 환곡은 더욱 마땅히 실제로 거둬들인 뒤에야 내년 봄에 구제하는 방도를 비로소 착수할 수 있고 우심(尤甚)의 재민(災民) 또한 뿔뿔이 흩어지거나 야위고 굶어죽는 우환을 면할 수 있다. 때문에 창고를 열어 공곡(公穀)을 내기 전에 별도 감결로 신칙한 것은 오로지 이 때문이었다. 그런즉 시종 기한에 맞춰 창고를 채우고 쉽게 옮기지 않아야 하거늘 지금 동짓달이 거의 반이고 마감 기한이 멀지 않았는데도 거둬들인 바가 지극히 매우 적다.

거둬들이지 못한 것이 아직도 이렇게 2배에서 5배까지 되니 이와 같이 늦어진 것은 일찍이 생각지 못하였는데 이것이 어찌 모두 환민(還民)이 납부를 거부한데서 말미암았겠는가? 감색(監色)무리들이 부지런히 독촉하지 아니하고 관망(觀望)하며 방임(放任)한 것이 분명하다. 거행한 바를 생각하면 어찌 원통하지 않겠는가? 마땅히 모두 법으로 따져 다스려야 할 바이나 우선 법령으로 신칙하는 뜻으로 이렇게 별도의 관문으로 독촉하니 각 면의 임장(任掌)들은 날마다 심문하고 다스려 급히 독촉하라.

책무의 근만(勤慢)을 고찰하여 만일 혹 완고하게 납부를 거부하는 환호(還戶)나 전과같이 일을 미루는 관속(官屬)이 있거든 날날이 적발하여 엄히 독촉하여 법대로 거둬들이고 기한 내에 거둬들인 것을 마감하여 보고하라. 이와 같이 별도로 신칙한 뒤에 거둬들인 것을 중간에 보고한 것이 다시 보잘 것 없거나 또는 혹 구차하게 임시변통하여 조금이라도 특별 감결의 제 조항에 위반되는 것이 있다면 도창 감색(都倉監色)뿐 아니라 도차지(都次知)인 수향(首鄉)<sup>13)</sup>은 감영으로 잡아 올려 가배법(加倍法)으로 엄히 바로잡을 것이니 보통으로 하지 말고 따로 독촉하고 타일러 큰 탈이 나지 않도록 하라. 관문이 도착한 일시와 거행한 사실 전말을 먼저 즉시 급히 알릴 것.

同日. 以運牟事, 發關古羣山鎮.

13) 도차지(都次知)인 수향(首鄉) : 도차지는 일을 맡아 보는 사람 가운데 우두머리이고, 수향은 지방의 자치 기구인 향청(鄉廳) 곧 수령을 보좌하던 자문 기관인 유향소(留鄉所)의 우두머리인 좌수(座首)의 별칭(別稱)이다.

【關文】爲星火舉行事。卽到籌司關內，“本道移運牟一萬石內，二千五百石到江華除置，五千石到通津卸下，傳授於京畿差員，餘數二千五百石到京江，傳授於廣州府”亦爲有置。京司需用，萬分時急，而裝發若是稽緩，凍沍又此漸迫，揆以舉行，萬萬罔措。到關卽時，毋或晷刻少緩，火速裝發，期於冰合前，輸納爲乎矣。同穀物傳授等節，一依京關舉行，俾無一毫踈忽大端生事之弊，宜當向事。

같은 날. 보리를 운송하는 일로 고군산진에 관문을 발송하였다.

【관문】 급히 거행할 일. 이번에 도착한 비변사 관문에, “전라도에서 옮겨 운반할 보리 1만석 가운데 2천 5백석은 강화에 도착하여 덜어두고, 5천석은 통진(通津)에 도착하여 짐을 풀어 경기 차원에게 전달하여 주고, 나머지 2천 5백석을 헤아려 경강에 도착하여 광주부에 전달하여 주라.” 하였다.

서울 각 관아의 수용품(需用品)은 매우 시급한데도 실어 보냄이 이와 같이 더디고 강이 어는 때가 또 다가오니 거행할 바를 헤아리면 매우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관문이 도착하는 즉시 잠깐 동안이라도 늦추지 말고 급히 실어 보내 기필코 얼음이 얼기 전에 운반하여 들이라. 보리를 전달하여 주는 것 등은 한결같이 경사(京司) 관문에 의거하여 털끝만큼이라도 소홀히 하여 큰 탈이 나는 폐단이 없도록 함이 마땅할 일.

## 2. 1833년(순조33) 11월 11~20일 : 각 읍에 표재관문(倭災關文)하다

十一日. 朔膳進上監封. 祭官預差. 順天府使入見辭去. 高山縣監入見. 申後詣慶基殿入齋.

11일. 진상할 삭선(朔膳)을 감봉하였다. 제관(祭官)을 미리 차정(差定)하였다. 순천 부사가 입견하고 하직하고 갔다. 고산 현감이 입견하였다. 신시(申時)에 경기전으로 가서 입재(入齋)하였다.

十二日. 行祭後, 仍詣客舍行望闕禮. 中軍, 中營將, 古阜郡守, 務安縣監, 高山縣監, 長水縣監, 檢律, 同爲進參, 還營軒.

12일. 동지제를 행한 뒤에 그대로 객사에 도착하여 망궐례를 행하였다. 중군·중영장·고부 군수·무안 현감·고산 현감·장수 현감·검률이 함께 가서 참여하고 영현으로 돌아왔다.

同日. 封行祭啓.

【狀啓】今十一月十二日, 行慶基殿冬至祭, 精備奠物, 差定祭官, 依禮文設行後, 獻官, 諸執事職姓名開錄于後爲白乎玆, 緣由謹具啓聞.<獻官行觀察使徐有渠, 典祀官兼大祝, 務安縣監吳致淳, 祝史古阜郡守金裕淳, 齋郎參奉吳慶興, 贊者高山縣監宋文熙, 謁者長水縣監李啓陽.>

같은 날. 동지제를 행한 장계를 써서 봉하였다.

【장계】오늘 11월 12일 경기전 동지제를 행함에 제수(祭需)를 정성껏 갖추고, 제관을 차정하여 예문(禮文)에 의거하여 진설 시행한 뒤에 헌관 및 제집사의 직위와 성명을 뒤에 낱낱이 적고 이러한 연유로 삼가 모두 아립니다.<헌관은 행(行) 관찰사<sup>14)</sup> 서유구, 전사관 겸 대축(典祀官兼大祝)은 무안 현감 오치순(吳致淳), 축사(祝史)<sup>15)</sup>는

14) 행(行) 관찰사 : 전라도 관찰사는 종2품직이나 서유구는 당시 이미 정2품의 이조 판서와 대제학 등의 벼슬을 지녔으므로 행(行)을 관직 앞에 붙였는데, 이를 행수법(行守法)이라 한다. 행수법은 고려 초부터 조선 시대에 걸쳐 품계가 높은 이를 낮은 관직에 임명할 때는 행(行)을, 품계가 낮은 이를 높은 관직에 임명할 때는 수(守)를 관직 앞에 붙여 호칭하였다.

15) 축사(祝史) : 신명(神明)에 고(告)하는 일을 맡은 벼슬아치, 즉 신관(神官)을 말한다.

고부 군수 김유순, 재랑(齋郎)은 참봉 오경흥(吳慶興), 찬자(贊者)는 고산 현감 송문희(宋文熙), 알자(謁者)는 장수 현감 이계양(李啓陽).>

同日. 古阜郡守, 務安縣監, 高山縣監入見辭去. 中營將入見.

같은 날. 고부 군수 · 무안 현감 · 고산 현감이 입견하여 하직하고 갔다. 중영장이 입견하였다.

十三日. 題光州牧三檢案.<被告金士文, 以烟竹, 戳程鳴卜眼胞, 而鳴卜酒醉觸冷, 翌日致死事. 初檢官光州牧使趙雲明, 覆檢官潭陽府使曹錫玄, 三檢官南平縣監林迥鎮.>

【題】屍帳捧上是在果. 檢獄肯繫, 實因是已. 而此獄實因, 終不無疑眩是如乎. 謂因醉飽, 則醉固有之, 飽無形跡分叱不驗, 酩酊而來, 言詰自若是如可, 一被戳刺, 卽地昏倒是隱則, 死者致死之, 不全由於醉飽, 較然明甚. 謂因被戳, 則眼胞初非要害之處, 橫穿不過皮膜之間, 法文之所不著, 物理之所未然, 而執此作致死之因, 則得不幾於硬定是乙驗? 揆以審克之義, 難置然疑之科, 所以初覆兩檢之後, 更有三檢之舉矣. 檢之至三, 仍是前案, 始雖起疑於無疑, 終難有疑而無疑, 獄不可老, 疑不必滯, 屍體卽爲出給, 使之埋瘞爲旆. 金士文段, 酒債與受, 干渠甚事而替人起鬧, 妄動手勢, 縱云無心撞觸, 豈免由我之律是旆? 目見其昏仆血流之狀, 且愕且愧, 扶起看慰, 自是人精之常是去乙, 不此之爲, 卽地逃走, 方其惶怯逃去之時, 得無手脚亂動之勢是加隱驗. 按無冤錄云, ‘喫酒食醉飽致築踏內傷亦可致死’, 其狀甚難明, 其屍外別無他, 故此亦謂雖因醉飽, 除非被人築踏, 則不至於致死也. 檢案中, 臍肚膨脹, 腎囊微浮, 亦不無築踏之疑是置. 初三檢官, 仍定同推官爲去乎, 約日會坐, 同金士文身乙, 以此發問目, 嚴刑取招牒報爲旆. 趙召史段, 酒債促償, 雖云常事, 央人逞憤, 得無已甚. 旣見其被戳仆地, 不思擡起救療, 任置於寒宵沙磧之上, 經時觸傷遂致死, 崇此獄厲階, 非渠伊誰? 一體嚴刑取招爲旆. 蔡學成, 鄭鳴哲等段, 但見其醉, 未料其死, 雖不必深究是乃, 當場看證, 只有此二人, 姑爲放送是如可, 待同推時, 更爲捉來查問爲旆. 保放諸人段, 一併放送之意初檢官良中, 枚移施行向事.

13일. 광주목 3검안에 데김하였다.<피고 김사문(金士文)은 담뱃대로 정명복(程鳴卜)의 눈꺼풀을 찔렀고, 정명복이 술에 취해 찬 기운을 씌어 다음날 죽은 일. 초검시관은 광주 목사 조운명(趙雲明), 복검시관은 담양 부사 조석현(曹錫玄), 삼검시관은 남평 현감 임형진(林迥鎭).>



【데김】 시장(屍帳)을 받아 보았다. 옥사를 경험할 때의 중요한 점은 실인(實因)이다. 이 옥사의 실인은 끝내 의혹할 바가 없지 않다고 한다. 실인을 술을 취하도록 마신 이유로 말한다면 취한 것은 사실인데 배부르도록 마셨다는 흔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취한 이래로 떠벌이고 태연자약하다가 한 번 찢렸다고 그 자리에서 혼절하여 넘어진 것은, 사자(死者)가 죽게 된 것이 술에 대취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 매우 분명하다.

찢린 원인으로 말한다면 눈꺼풀은 급소가 아니고, 가로로 관통한 상처가 피막(皮膜)사이에 불과하여 법문에 맞는 바가 아니며 물리(物理)에도 맞지 않으니, 이것을 가지고 죽음에 이른 원인으로 삼는다면 실인을 거의 억지로 정하는 것 아니겠는가? 충분히 조사한다는 뜻과 의심스러우면 죄를 결정할 수 없다는 조문으로 헤아릴 때 초, 복검시관이 조사한 뒤에 다시 3검을 거행하는 이유이다. 조사가 3번에 이르러도 전안(前案)과 같으니, 애초 비록 의심 없는 것에 의심을 일으켰을지라도 의심되는 것이 있는데도 의심이 없다고 하는 것은 끝내 어려움이 있지만, 옥사는 늦출 수 없고 의심으로 굳이 지체할 필요 없으니 시체는 즉시 내주어 묻게 하라.

김사문은 술 빛을 주고받는 일에 쓸데없이 참견하여<sup>16)</sup> 남을 대신하여 싸움을 일으키고, 경거망동한 손찌검으로 비록 무심히 쳤다고 말할지라도, 어찌 자신으로 말미암은 형률을 면할 수 있겠는가? 혼절하여 넘어져 피를 흘리는 상황을 눈으로 보면 한편으론 놀랍고 한편으로 자책하며, 붙잡아 일으켜 위로하는 것이 자연 인지상정이거늘 이런 것을 하지 않고 바로 도주하였다. 막 허겁지겁 도주하는 때에 손발을 마구 움직이는 형국이지 않았겠느냐?

『무원록(無冤錄)』을 살펴보면 이르길 ‘술을 먹고 음식을 배부르게 먹은 뒤에 남에게 발로 밟혀 내상을 당하면 또한 죽을 수 있음’이라 하였는데도 그 상태를 밝히기 심히 어렵고, 그 시체 외에 별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 또한 비록 대취했기 때문이라고 할지라도 남에게 짓밟힌 것이 아니라면 죽음에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 검안서 내용에 배꼽과 배가 팽창하였고, 신낭(腎囊 불알)이 약간 부은 것 또한 발로 짓밟힌 의심이 없지 않다.

초검시관과 삼검시관을 그대로 동추관으로 정하니 날을 약속하여 함께 자리를 열고[會坐], 이것으로 김사문에게 문목(問目)을 내어 엄히 형신하고 진술을 받아 첨

16) 쓸데없이 참견하여 : 원문의 ‘간거심사(干渠甚事)’는 다른 사람의 일에 참견하는 것을 비웃으며 하는 말이다.(『남당서 풍연사전(南唐書 馮延巳傳)』)

보하라. 조조이[趙召史]의 경우는 슬픔을 값으라고 독촉하는 것이 비록 일상의 일이라 할지라도 그지없이 심하였고, 찢려 땅에 엮어진 것을 보았는데도 들어 올려 치료할 생각을 하지 않았으며, 추운 밤에 모래 벌에 방치하여 시간이 지나 찬 기운을 씌어 결국 죽게 하였으니, 이 옥사로 재앙을 받을 빌미는 조조이가 아니면 그 누구이겠는가? 모두 엄히 형신하여 진술을 받아라. 채학성(蔡學成)·정명철(鄭鳴哲)의 경우는 단지 그가 취한 것만을 보고 그가 죽을 것을 생각하지 못하였으니, 비록 반드시 파고 들 필요는 없으나 그 자리의 증인이 단지 이 두 사람뿐이니, 우선 내보냈다가 동추(同推) 때를 기다려 다시 붙잡아 와서 조사하여 캐물으라. 보방(保放)<sup>17)</sup>한 모든 사람들은 아울러 다 내보내라는 뜻을 초검시관에게 공문을 보내어 시행할 일.

十四日. 中營將入見. 益山君守李源吉來見, 仍爲辭去.

14일. 중영장이 입견하였다. 익산 군수 이원길이 와서 보고 그대로 하직하고 갔다.

十五日. 昧爽詣客舍, 行望闕禮. 中軍, 中營將, 檢律同爲進參, 還營軒. 中營將入見.

15일. 먼동이 틀 무렵 객사에 도착하여 망궐례를 행하였다. 중군·중영장·검률이 함께 가서 참여하고 영현으로 돌아왔다. 중영장이 입견하였다.

同日. 發俵災關文於列邑.

【關文】爲相考事. 年分後錄, 纔已發甘是在果. 今此事目災及兩次加劃災合, 爲二萬四千四百結乙仍于, 本邑俵災實數及今年勸起, 乙未至三年, 免稅條, 并以後錄發關爲去乎. 勿委吏鄉, 親執災簿, 均排俵給於被災民人等處, 雖一把半束, 毋或有遺漏, 不均之患爲乎矣. 俵災卽恤民之大政也, 如或少失照檢, 則以致虛實之相蒙, 難免中間之乾沒, 在營邑對揚之道, 豈不萬萬悚然? 舊災段, 今方有別關知委是在果. 新災段, 置內分之濫執, 新起之混入, 難保其必無分叱除良, 東之田或換錄於西之里, 甲之災或易俵於乙之名, 變幻災簿, 欺罔愚民, 致使作人眩亂, 不得推覓其所俵之災, 而竟歸於吏

17) 보방(保放) : 보석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우고 형사 피고인을 구류에서 풀어 주는 일로, 보석(保釋)과 같은 의미이다.

橐者，種種有之，事之駭痛，莫此爲甚。今於倭災之時，勿以始初災簿，硬定膠守，別加查探，從實釐正，俾無把束間，冒受與寃徵之弊爲乎矣。如是別飭之後，萬一有吏恣售奸，民不蒙惠，致有所及聞於別歧廉探，則當該犯者與首吏鄉之施以田政幻弄之律，猶屬餘事，不飭之責亦有所歸，除尋常嚴加操束爲旡。災結字號卜數時，作人姓名，成出標紙，災頃幾許？勸起免稅條幾許？踏印派給，仍以標紙小名一通，修成冊，區別面里坪名，消詳報來，以爲憑考摘奸之地爲旡。元都目想已修正，而災實修啓，事係時急。詳錄四標，各別精書，近邑則今月二十日，中邑則二十三日，遠邑則二十七日，營下及良實，都吏準授上使爲旡。各宮房各衙門，有無土災實、及陳、川沙、今、舊、頃、加耕、勸起、泥生等成冊，結錢磨鍊成冊，實摠大概狀等成冊，各兩件依例修報爲乎矣。各樣陳頃，依概狀所報，詳細報來，以爲憑考磨勘之地爲旡。倭災後作夫，卽是次第間事，而書員輩，出村貽弊之事，另加痛禁，宜當尙事。

全州<舊災一千一百六十三結九十九負六束，今災一千二十七結二十一負四束，勸起五十一負六束>、羅州<舊災一千三百二十九結七十六負，今災九百二十七結三十二負一束，勸起二十四結九十七負九束>、光州<舊災二百三十結九十二負三束，今災六十七結六十一負五束，勸起三結五十八負七束>、綾州<舊災一百十二結七十八負，今災六結七束，勸起三結四十八負九束>、南原<舊災八百二十結三十八負八束，今災五百八十三結三十負，勸起三結九十三負五束>、順天<舊災一百七十八結二十二負一束，今災二百二十八結十三負二束，勸起三十四結十九負>、長城<舊災五百五十七結四十八負六束，今災一百三十一結四十六負八束，勸起一結九十負三束>、潭陽<舊災二百十二結五十一負二束，今災七結二十八負九束，勸起一結八十八負五束>、長興<舊災三百三結四十負四束，今災一百十九結四十一負，勸起十三負一束>、茂朱<舊災二結八十八負五束，今災十九結五十四負二束>、礪山<舊災二百三十五結七十八負二束，今災二百十結五十五負八束，勸起二結三負八束>、錦山<舊災五十二結八十九負五束，今災八十五結八十一負七束>、珍山<舊災五十四結三十四負二束，今災二十八結五十七負，勸起二結四十一負三束>、益山<舊災一百五十七結六十二負四束，今災一百二十結四十五負，勸起二結九十四負四束>、金堤<舊災三百四十二結七十三負七束，今災一百七十四結八十九負二束，勸起十一結七十三負五束>、古阜<舊災二百九十七結八十二負九束，今災四百八結九十四負七束，勸起三十三結二十七負六束>、淳昌<舊災三百三十二結六十二負四束，今災七十七結七十五負，勸起五十八負五束>、靈巖<舊災二百九十六結三十五負七束，今災二百三十六結十七負七束，勸起十五結十七負三束>、靈光<舊災七百六十三結七十負四束，今災六百六十結三十負，勸起七結二負五束>、珍島<舊災一百九十八結二十一負五束，今災四百七十結四

十二負三束>、寶城<舊災一百八十五結一束，今災三百八十一結九十九負六束>、樂安<舊災三十三結六十二負七束，今災一百八結二十三負五束，勸起九結五十五負六束>、龍潭<舊災二十一結四十四負九束，今災三十一結十四負三束，勸起二十八負五束>、臨陂<舊災二百二十八結五十三負，今災三百四十二結十負七束，勸起八結八十六負九束>、萬頃<舊災一百六十結五負五束，今災一百二十四結三十一負五束，勸起六結四十七負五束>、金溝<舊災二十三結九十五負九束，今災七十一結七十五負六束>、昌平<舊災二百三十八結十六負一束，今災三十結一負二束，勸起二結二十九負八束>、鎮安<舊災二結五十負六束，今災六十九結九十九負九束，勸起二結三十四負二束>、長水<舊災二十二結八十五負二束，今災一百四十三結九十九負，勸起二十四負二束>、雲峯<舊災五結十四負，今災二百四十五結九十一負五束>、任實<舊災二百三十六結七十八負六束，今災十結六十六負七束>、玉果<舊災二百五結五十二負六束，今災三結六十七負五束，勸起一結七十負五束>、南平<舊災一百六十九結五十六負三束，今災二十結八十八負三束>、和順<舊災八十四結九十一負七束>、同福<舊災七十七結五十六負九束，災八結八十五負九束，起七結二十二負二束>、谷城<舊災八十五結五十七負一束，災四結六負九束，起九結十負六束>、求禮<舊災九結二負八束，災三結九束，起一結五十六負七束>、光陽<舊災三十結六十負五束，災十八結七十二負四束，起一結八十負二束>、興陽<舊災二十一結五十八負七束，今災一百一結六十一負二束，勸起三結三十二負八束>、康津<舊災九十五結三十負九束，今災二百十結八十一負六束，勸起一結七負七束>、海南<舊災四百七十四結二十一負四束，今災四百五十五結五十二負二束，勸起八結五十六負>、務安<舊災三百九十七結五十二負一束，今災三百二十五結六十五負六束，勸起三結四十一負九束>、茂長<舊災四百四十八結三十五負四束，今災五百八十六結七十四負五束，勸起五結十二負三束>、高敞<舊災八十七結九十負五束，今災一百二十三結九十九負九束，勸起一結八十九負八束>、興德<舊災二百五結七十四負六束，今災七十三結五十七負八束，勸起四結十二負一束>、井邑<舊災一百二十一結五十八負二束，今災六十六結四十一負三束，勸起三結六十八負四束>、扶安<舊災一百四十四結九十八負七束，今災一百九十六結二十九負，勸起五結八十八負九束>、沃溝<舊災三百結一負六束，今災五百五十八結二十九負八束，勸起十四結九十三負五束>、咸悅<舊災一百十二結六十八負二束，今災四百九十三結十三負，勸起三結九十六負七束>、龍安<舊災一百八十二結九十五負一束，今災三百四十結八負，勸起一結三十一負>、咸平<舊災四百五十三結五負八束，今災三百四十九結六十負五束，勸起十八結八十三負>、泰仁<舊災五百五結四十一負，今災六十七結二十三負>、高山<舊災三十結二負七束，今災九十八結七十負六束，勸起三結一負五束>、法聖.<舊災六十六結五十四負九束，今災二十八結五十七負七束，勸起八十三負七束.> 已上倭災二萬四千六

百八十結二十六負七束內, 二百八十結二十六負七束<辛壬癸三年條, 勸起免稅>、一千九百結<事目災>、二萬結<加請劃下>、二千五百結.<再加請劃下>

같은 날. 흉년을 당하여 조세를 감면하여 주는 표재관문(倭災關文)을 여러 고을에 발송하였다.

【관문】 상고(相考)할 일. 연분(年分)<sup>18)</sup>을 후록(後錄)하여 이제 막 감결을 발송했다. 이번 사목재(事目災 규정상 재해로 면세시키는 것)와 두 번 더 획급(劃給)해준 재결(災結 재앙을 입은 논밭)의 합이 2만 4천4백결이 됨에 따라 본읍의 표재(倭災 흉년에 조세를 감면해주는 일)의 실 수효와 금년[癸巳, 1833]에 기경(起耕)을 권하여 을미년(1835)까지 3년간 면세하는 조항을 모두 후록 하여 관문을 발송한다. 이향(吏鄕)에게 말기지 말고 직접 재결의 장부를 잡고서 재해를 입은 백성에게 균등하게 표재(倭災)해주어, 비록 1파(把) 반 속(束)<sup>19)</sup>이라도 혹여 새고 없어져 균등하지 못하게 배분될 염려가 없게 하라.

다만, 표재는 백성을 구휼하는 큰 정사(政事)이니 만일 혹 장부와 대조하여 조금치라도 잘못된다면, 허실이 서로 애매하게 되어 중간에 몰수됨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니, 그렇다면 영읍(營邑)에서 대양(對揚)<sup>20)</sup>할 도리(道理)에 있어서 어찌 매우 두렵지 않겠는가?

구재(舊災)는 지금 막 별도의 관문으로 자세히 알렸다. 신재(新災)는 내분재(內分災)<sup>21)</sup>를 등급을 넘치게 처리한 것과 새롭게 기경(起耕)한 것이 섞여 들어온 것

18) 연분(年分) : 그 해 농사의 흉년·풍년의 정도에 따라 토지를 9등급으로 나누던 법이다. 조선조 세종 때 만든 제도로, 상상전(上上田)에서 하하전(下下田)까지 9등급이 있었다.

19) 속(束) : 전답의 결세(結稅) 단위인 줍[把]과 못[束]을 말한다. 1척(尺) 평방을 파(把), 10파를 속(束), 10속을 1부(負) 또는 1복(卜)이라 하며 100부를 결(結)이라 한다.

20) 대양(對揚) : 임금의 명령을 받들어 널리 알리는 것으로, 대양휴명(對揚休命)은 군명(君命)을 받들어 그 뜻을 널리 백성(百姓)에게 드높인다는 뜻이다.

21) 내분재(內分災) : 내분(內分)이라고도 하는데, 재결의 실수효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재해 명목인데, 재해를 입은 농지에 대해 분수재(分數災)를 인정하였다. 분수재는 전재(全災)에 상대되는 말로, 부분적인 재해를 입은 경지에 대해 재해의 정도에 따라 감세(減稅)를 해주는 재상(災傷)을 가리키며, 분수 재상(分數災傷)이라고도 한다. 재해의 정도에 따라 '전재'로부터 '일분재(一分災)'까지의 10등급으로 나뉜다. 완전히 재해를 입은 것을 '십분재(十分災)' 또는 '전재', 10분의 1만을 수확했으면 '구분재(九分災)'라고 하고, 10분의 2만 수확했으면 '팔분재(八分災)'라고 하는 것이다. 대개 그 재해의 정도에 대해 등급을 매길 때에 관리들이 농간을 부리는 탓에 재결(災結)과 실결(實結)이 뒤섞여 구별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문서를 마감할 때에 '전재 몇 결(結)', '칠분재(七分災) 몇 결', '팔분재 몇 결', '구분재 몇 결' 하는 식으로 각기 제목(題目)을 설정하였다. 그런데 제목마다 각각 농간을 부려 실결을 많이 잃어버리는 폐단이 생겨났다. 그렇기 때문에 분수재를 인정해 주지 말고 별도로 '내분재(內分災)'의 명목을 만들어, 수령이 허실을 상세하게 조사하여 재해를 당한 경중을 헤아려 분재(分災)를 인정해 주고, 문서에는 다만 '전재' 한 명목만을 설정하여 '전재 몇 결 가운데 내분재 몇 결'

이 있고, 그러한 경우가 반드시 없다고 보장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동쪽에 있는 밭을 혹은 서쪽 마을에 있다고 바꾸어 기록하고 갑(甲)의 재결(災結)을 혹은 을(乙)의 이름으로 바꾸어 표재하며, 재결장부를 변경하고 우매한 백성을 속여 농사짓는 사람들을 현란시켜 표재할 재결을 찾아내지 못하게 하여 결국 아전의 전대로 귀속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일이 매우 놀라운 정도가 어느 경우도 이렇게 심한 것이 없다. 이번 표재(倭災)할 때에는 애초의 재결 장부를 무리하게 꼭 고수(固守)하지 말고 따로 자세히 조사를 하여 실재대로 바로잡아 파속(把束)간이라도 거짓되게 받거나 원통하게 징수되는 폐단이 없게 하라.

이와 같이 특별히 신칙이 있는 뒤에도 만일 아전이 멋대로 농간을 부려 백성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별도의 영탐에 걸려들면, 해당 범법자와 수리향(首吏鄕)은 전정(田政)을 환롱(幻弄)한 죄로 다스리더라도 오히려 부족하고, 신칙하지 않은 책임 또한 귀속되는 바가 있으니 대수롭게 여기지 말고 엄하게 단속하라.

재결(災結)에 자호(字號)<sup>22)</sup>와 복수(卜數)<sup>23)</sup>를 쓸 때 소작인의 성명을 표지에 나오게 만들고, 재탈(災頰)이 얼마쯤인지, 기경을 권면한 면세 조항은 얼마쯤인지에 대해서는 관인을 찍어 나누어 주고, 또 표지에 소명(小名)을 쓴 한 통으로 갈 무리하여 성책(成冊)하고 면리(面里)와 들 이름으로 구별하여 소상(消詳)하게 보고하여 사실에 근거하여 꼼꼼하게 따져 적간(摘奸)할 것.

원도목(元都目)이 생각건대 이미 수정되어 재실(災實)<sup>24)</sup>을 정리하여 주상께 아뢰는 일이 시급하다. 사표(四標)<sup>25)</sup>를 상세히 기록하고 각별히 정서하여 근읍(近邑)은 이번 달 20일, 중읍(中邑)은 23일, 원읍(遠邑)은 27일, 감영 아래와 양실(良實)한 지역은 도리(都吏)<sup>26)</sup>가 기한에 맞추어 감영으로 올려라.

각 궁방(宮房)과 각 아문(衙門)의 유토(有土)<sup>27)</sup>, 무토(無土)<sup>28)</sup>의 재해를 입은

이라고 한다면, 명목이 복잡하지 않아 농간으로 인한 폐단을 없앨 수 있다. 이를 위해 신축년(1721, 경종1)에 사목(事目)으로 만들었다.

22) 자호(字號) : 토지의 번호나 족보의 장수 따위를 숫자 대신 천자문의 차례에 따라 매긴 번호이다.

23) 복수(卜數) : 전지(田地)의 조세율(租稅率) 수치를 말한다.

24) 재실(災實) : 재상(災傷)을 입은 것과 충실한 것으로, 농사의 작황을 말한다.

25) 사표(四標) : 사방의 경계를 표시하는 것으로, 이를테면 동은 어느 산등성이, 남은 어느 냇물, 서는 어느 길, 북은 어느 골짜기 등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26) 도리(都吏) : 각 관아 아전의 우두머리를 말한다.

27) 유토(有土) : 궁방(宮房), 관아(官衙)에 과전(科田)으로 발급(頒給)한 토지(土地)를 말한다.

28) 무토(無土) : 호조에서 관리하던 전답인데, 무토면세(無土免稅)란 호조에서 거둬들일 결세의 일부를 궁방(宮房)이나 관아가 받도록 하던 일을 말한다.

사실과 진결(陳結), 하천의 모래로 덮인 전답, 금재(今災), 구재(舊災), 탈재(傾災), 가경전(加耕田)<sup>29)</sup>, 기경전(起耕田)<sup>30)</sup>, 이생(泥生田)<sup>31)</sup> 등을 성책(成冊)하고, 결전(結錢)<sup>32)</sup>으로 마련(磨鍊)한 것을 성책하며, 실총(實摠)<sup>33)</sup> 대개장(大概狀)<sup>34)</sup> 등을 성책(成冊)하여 각 두 건을 규례에 의거하여 정리하여 보고하라.

각 양태의 진탈(陳頌)은 개장(概狀)에 보고한 바에 의거하여 상세히 보고하여 사실에 근거하여 꼼꼼히 따져 마감(磨勘)할 것.

표재(倭災)후 작부(作夫)<sup>35)</sup>하는 일은 곧 차차 틈틈이 하는 일이다. 서원배(書員輩)<sup>36)</sup>들이 마을에 나와 폐단을 주는 일을 각별히 엄금함이 마땅할 일.

전주<구재(舊災) 1163결 99부 6속, 금재(今災) 1027결 21부 4속, 권기(勸起) 51부 6속>, 나주<구재 1329결 76부, 금재 927결 32부 1속, 권기 24결 97부 9속>, 광주<구재 230결 92부 3속, 금재 67결 61부 5속, 권기 3결 58부 7속>, 능주<구재 112결 78부, 금재 6결 7속, 권기 3결 48부 9속>, 남원<구재 820결 38부 8속, 금재 583결 30부, 권기 3결 93부 5속>, 순천<구재 178결 22부 1속, 금재 228결 13부 2속, 권기 34결 19부>, 장성<구재 557결 48부 6속, 금재 131결 46부 8속, 권기 1결 90부 3속>, 담양<구재 212결 51부 2속, 금재 7결 28부 9속, 권기 1결 88부 5속>, 장흥<구재 303결 40부 4속, 금재 119결 41부, 권기 13부 1속>, 무주<구재 2결 88부 5속, 금재 19결 54부 2속>, 여산<구재 235결 78부 2속, 금재 210결 55부 8속, 권기 2결 3부 8속>, 금산<구재 52결 89부 5속, 금재 85결 81부 7속>, 진산<구재 54결 34부 2속, 금재 28결 57부, 권기 2결 41부 3속>, 익산<구재 157결 62부 4속, 금재 120결 45부, 권기 2결 94부 4속>, 김제<구재 342결 73부 7속, 금재 174결 89부 2속, 권기 11결 73부 5속>, 고부<구재 297결 82부 9속, 금재 408결 94부 7속, 권기 33결 27부 6속>, 순창<구재 332결 62부 4속, 금재 77결 75부, 권기 58부 5속>, 영암<구재 296결 35부 7속, 금재 236결

29) 가경전(加耕田) : 토지 지목(地目)의 하나이다. 한 번도 경작되지 않은 빈 땅[閑曠地]을 개간한 토지로, 개간 이전에는 토지대장에 등록되지 않으나 개간되면 토지대장에 등록되었으므로 양외가경전(量外加耕田)이라 부른다.

30) 기경전(起耕田) : 경작하도록 권면한 밭을 말한다.

31) 이생전(泥生田) : 이생지(泥生地)로 냇가에 흔히 있는 모래 섞인 개흙 밭을 말한다.

32) 결전(結錢) : 균역법의 실시에 따른 나라 재정의 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전결(田結)에 덧붙여 거두어들이던 돈으로, 결작전(結作錢)이라고도 한다.

33) 실총(實摠) : 세금을 매길 수 있는 실제 전지(田地)의 수를 말한다.

34) 대개장(大概狀) : 중요 내용을 개략적으로 보고한 문서로 개장(概狀)이라고도 한다.

35) 작부(作夫) : 농지 여덟 결(結)을 한 부(夫)로 조직하여 결세를 거둬들이던 것을 말한다.

36) 서원배(書員輩) : 서리(書吏)가 없는 관아에 두었던 벼슬아치를 말한다. 각 고을의 세금을 거두어들이던 구실아치를 가리키기도 한다.

17부 7속, 권기 15결 17부 3속>, 영광<구재 763결 70부 4속, 금재 660결 30부, 권기 7결 2부 5속>, 진도<구재 198결 21부 5속, 금재 470결 42부 3속>, 보성<구재 185결 1속, 금재 381결 99부 6속>, 낙안<구재 33결 62부 7속, 금재 108결 23부 5속, 권기 9결 55부 6속>, 용담<구재 21결 44부 9속, 금재 31결 14부 3속, 권기 28부 5속>, 임피<구재 228결 53부, 금재 342결 10부 7속, 권기 8결 86부 9속>, 만경<구재 160결 5부 5속, 금재 124결 31부 5속, 권기 6결 47부 5속>, 금구<구재 23결 95부 9속, 금재 71결 75부 6속>, 창평<구재 238결 16부 1속, 금재 30결 1부 2속, 권기 2결 29부 8속>, 진안<구재 2결 50부 6속, 금재 69결 99부 9속, 권기 2결 34부 2속>, 장수<구재 22결 85부 2속, 금재 143결 99부, 권기 24부 2속>, 운봉<구재 5결 14부, 금재 245결 91부 5속>, 임실<구재 236결 78부 6속, 금재 10결 66부 7속>, 옥과<구재 205결 52부 6속, 금재 3결 67부 5속, 권기 1결 70부 5속>, 남평<구재 169결 56부 3속, 금재 20결 88부 3속>, 화순<구재 84결 91부 7속>, 동복<구재 77결 56부 9속, 금재 8결 85부 9속, 권기 7결 22부 2속>, 곡성<구재 85결 57부 1속, 금재 4결 6부 9속, 권기 9결 10부 6속>, 구례<구재 9결 2부 8속, 금재 3결 9속, 권기 1결 56부 7속>, 광양<구재 30결 60부 5속, 금재 18결 72부 4속, 권기 1결 80부 2속>, 흥양<구재 21결 58부 7속, 금재 101결 61부 2속, 권기 3결 32부 8속>, 강진<구재 95결 30부 9속, 금재 210결 81부 6속, 권기 1결 7부 7속>, 해남<구재 474결 21부 4속, 금재 455결 52부 2속, 권기 8결 56부>, 무안<구재 397결 52부 1속, 금재 325결 65부 6속, 권기 3결 41부 9속>, 무장<구재 448결 35부 4속, 금재 586결 74부 5속, 권기 5결 12부 3속>, 고창<구재 87결 90부 5속, 금재 123결 99부 9속, 권기 1결 89부 8속>, 흥덕<구재 205결 74부 6속, 금재 73결 57부 8속, 권기 4결 12부 1속>, 정읍<구재 121결 58부 2속, 금재 66결 41부 3속, 권기 3결 68부 4속>, 부안<구재 144결 98부 7속, 금재 196결 29부, 권기 5결 88부 9속>, 옥구<구재 300결 1부 6속, 금재 558결 29부 8속, 권기 14결 93부 5속>, 함열<구재 112결 68부 2속, 금재 493결 13부, 권기 3결 96부 7속>, 용안<구재 182결 95부 1속, 금재 340결 8부, 권기 3결 96부 7속>, 함평<구재 453결 5부 8속, 금재 349결 60부 5속, 권기 18결 83부>, 태인<구재 505결 41부, 금재 67결 23부>, 고산<구재 30결 2부 7속, 금재 98결 70부 6속, 권기 3결 1부 5속>, 법성.<구재 66결 54부 9속, 금재 28결 57부 7속, 권기 83부 7속.> 이상 표재(倭災) 24,680결 26부 7속내 280결 26부 7속<신임계(辛壬癸) 3개년조의 권기로 세금을 면한 것.>, 1,900결<사목재 분.>, 20,000결<더 주기를 청하여 그 중 일부만 떼어 준 것.>, 2,500결.<재차 더 주기를 청하여 그 중 일부만 떼어 준 것.>



同日。以舊災中還實數爻，後錄發關於列邑鎮。

【關文】爲相考事。本道田政紊亂極矣。流來舊災之狀，請蒙頃者已極夥多，而所謂舊初不仍未移，各年川浦覆沙等名色，駸駸然年加歲增，一入災頃，永不還起，每於報概時，因循比摠，年分狀啓中，輒以今災移施，苟且彌縫，言念及此，萬萬寒心。田畝之成川浦落，亦當彼邊泥生，次次起耕是去等，况覆沙不過數年之災，豈有永陳之理是旆，又况初不未移？卽是當年之陳荒，雖今年未移良置，明年自當起耕，則所謂舊初不，舊未移等，名色是豈成說乎？實結有限，災頃漸加，則不出幾年，全災乃已，是豈可一任胥吏輩恣意舞弄，而不思所以一分矯革之道是乙喻？報概時，各樣災頃中，已起者，一一還實之意，有所關飭是加尼，及見概狀，還實之數，舉皆零星，抑或報勘期促，未及到底爬櫛而然是喻？各樣災中，還實數爻後錄發關爲去乎。概狀及收租案中，依此釐正，俾無把束相左之弊爲乎矣。今此還實，皆就都吏私橐中，摘發其什之一二耳。至若應頃民災。則初無把束減削，而該吏輩之，別尋奸竇祛弊，生弊亦難保其無虞是如乎。茲又措辭提飭爲去乎，切勿視以例飭，親執災簿，各別照察，無俾營門之苦心，終歸無實之科是矣。雖把束之微良置，如或有混淆售奸之弊，則該吏之施以田政幻弄之律，斷不饒貸分叱除良，不飭之責亦有所歸，除尋常惕念舉行爲旆，形止牒報宜當向事。

全州<二百十四結七負一束>、羅州<七十結>、光州<一百二十二結五十三負一束>、綾州<十八結三十八負三束>、南原<九十結六十八負五束>、順天<七十三結四十一負>、長成<三十三結六十負六束>、潭陽<三十九結八十七負二束>、長興<一百二十結>、茂朱<六十六負一束>、礪山<十八結六十九負一束>、錦山<二十七結三十二負五束>、珍山<二結五十一負六束>、益山<十一結三十九負六束>、金提<五十八結四十八負七束>、古阜<三十結七十三負七束>、淳昌<二十一結十七負五束>、靈巖<四十七結十四負五束>、靈光<一百五結八負二束>、珍島<二十三結四十負八束>、寶城<三十三結十負>、樂安<十二結五十一負二束>、龍潭<一結十九負八束>、臨陂<二十二結八十五負二束>、萬頃<十二結三十九負九束>、金溝<十結六十負三束>、昌平<十二結四十六負五束>、鎮安<三結二十六負七束>、長水<一結十二負>、雲峯<十結七十負>、任實<二十結二十二負五束>、南平<四十四結三十五負一束>、玉果<七十五結十五負一束>、和順<一結五十二負二束>、同福<五十二結六十一負七束>、谷城<五十一結九十九負二束>、求禮<七結十七負三束>、光陽<四結九十六負四束>、康津<七十三結七十四負五束>、海南<五十二結三十七負>、茂長<八十一結八十五負三束>、務安<五十二結八負九束>、高敞<二十一結六十一負>、興德<二十五結四十八負四束>、井邑<四十五結九十八負二束>、扶安<四結>、沃溝<八結十八負九束>、咸悅<三

十二結五十七負>、龍安<十四結二十二負二束>、咸平<六十結四十七負三束>、泰仁<四十九結五十八負三束>、高山<十一結二十八負八束>、法聖.<一結六十負> 已上還實二千一結四十五負內.<五百四十八結四十一負九束營還實, 一千四百五十三結三負一束邑還實.>

같은 날. 구재(舊災) 가운데 환실(還實)할 수효를 후록하여 여러 읍과 진에 관문을 발송하였다.

【관문】 상고할 일. 본도의 전정이 문란함이 극심하다. 여러 해 동안 계속 재해를 입었던 구재 상태를 탈을 당했다고 청한 것이 매우 많았고 이른바 ‘구초불(舊初不)<sup>37)</sup>’은 또 이양하지 못하였고, 여러 해 천포복사(川浦覆沙)<sup>38)</sup> 등의 명목(名目)은 차츰차츰 해가 갈수록 증가하여 한결같이 재탈(災頽)로 편입되어 오랫동안 다시 기경하지 않고 매년 대강을 보고할 때 비총(比摠)<sup>39)</sup>으로 답습하였으며, 연분(年分) 장계(狀啓) 가운데는 갑자기 금재(今災)로 옮겨 보고하며 구차하게 미봉하니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면 매우 한심하다.

전답이 냇가로 되고 물로 씻겨 나간 것이 또한 저 쪽의 니생(泥生)으로 되면 차차 기경해야 하거늘, 하물며 모래로 덮인 전답이 수년이 지나지 않아 기경되는 현실인데 니생전(泥生田)을 어찌 영원히 묵힐 리가 있으며 또 하물며 애초에 이양하지 못하는 전답이 아니지 않는가? 곧 당년에 묵히고 황폐한 전답은 비록 금년에 모내기하지 못했을지라도 내년에 자연 마땅히 기경해야만 하니, 이른바 ‘구초불(舊初不)과 구미이(舊未移)<sup>40)</sup>의 명색(名色)’이 어찌 말이 되겠는가? 실결(實結)은 한정이 있고, 재탈은 점점 더해지면 몇 년 지나지 않아 모두 재결이 되니, 이것을 어찌 서리(胥吏)들이 방자하게 무문농필(舞文弄筆)<sup>41)</sup>하도록 방임하고 조금 치도 바로잡아 고치려는 방도를 생각하지 않는가?

보개(報概)<sup>42)</sup>시에 각양의 재탈 가운데 이미 기경한 것은 하나하나 환실(還實) 실

37) 구초불(舊初不) : 여러 해 전부터 경작하지 아니하고 묵혀둔 논밭. 애초 경작하지 않은 채로 묵힘.  
 38) 천포복사(川浦覆沙) : 논이나 밭 따위가 냇물에 스쳐 떨어져 나가는 성천포락(成川浦落)과 물의 작용(作用)으로 모래가 밀려서 논밭 같은 데에 덮여 쌓이는 복사(覆沙)를 말한다.  
 39) 비총(比摠) : 매년 가을에 호조에서 그 해의 기후와 작황을 참고하고 상당년(相當年)과 비교 상량(商量)하여 세액(稅額)을 결정한 총액을 말한다. 연분(年分)을 정하는 방법의 하나로 급재(給災) 절차를 취한 다음에 세액을 결정한다.  
 40) 구미이(舊未移) : 이양하지 못한 채로 오래 묵혀둔 전결을 말한다.  
 41) 무문농필(舞文弄筆) : 문서와 장부를 함부로 고치거나 법규의 적용을 농락하는 것을 말한다.  
 42) 보개(報概) : 대략 보고하는 것이나, 또는 중요 내용을 개략적으로 보고한 문서인 개장을 말한다.

결로 환원)하라는 뜻을 관문으로 신칙한 바가 있었는데, 개장(概狀)<sup>43)</sup>을 보면 실결로 환원한 수효가 거의 보잘 것 없으니, 혹 보고마감 기한이 촉박하여 자세하게 정리하지 못하여 그런 것인가? 각 양의 재결 가운데 환실 수효를 후록하여 관문을 발송한다. 개장과 수조안(收租案) 가운데 관문에 의거하여 바로잡은 것은 파속(把束)이라도 서로 어긋나는 폐단이 없게 하라.

지금의 환실은 모두 도리(都吏)의 개인 전대 속으로 들어갔고 적발한 것은 10분의 1, 2뿐이다. 응당 재결로 인정해주어야 할 백성의 재결 같은 것에 이르러서는 애초에 파속이라도 삭감하는 것이 없게 하고, 해당 아전 우리들이 간교한 짓거리들을 특별히 찾아 폐단을 제거하면 또 다른 폐해가 생기는 우려가 없다고 보장하기 어렵다고 한다. 이에 관문을 지어 신칙하니 절대로 으레 신칙하는 것으로 보지 말고, 친히 재부(災簿)를 챙겨 각별히 대조하여 감영의 고심이 끝내 실효가 없다는 결과에 귀결되지 않게 하라.

비록 파속같은 작은 것이라도 만일 혹시라도 뒤섞고 농간하는 폐단이 있다면, 해당 아전은 전정(田政)을 환농(幻弄)한 죄로 다스려 결단코 너그럽게 용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칙하지 않은 책임 또한 귀속되는 바가 있을 것이니, 대수롭게 여기지 말고 삼가고 두려운 마음으로 거행하며, 사실의 전말을 첩보함이 마땅할 일.

전주<214결 7부 1속>, 나주<70결>, 광주<122결 53부 1속>, 능주<18결 38부 3속>, 남원<90결 68부 5속>, 순천<73결 41부>, 장성<33결 60부 6속>, 담양<39결 87부 2속>, 장흥<120결>, 무주<66부 1속>, 여산<18결 69부 1속>, 금산<27결 32부 5속>, 진산<2결 51부 6속>, 익산<11결 39부 6속>, 김제<58결 48부 7속>, 고부<30결 73부 7속>, 순창<21결 17부 5속>, 영암<47결 14부 5속>, 영광<105결 8부 2속>, 진도<23결 40부 8속>, 보성<33결 10부>, 낙안<12결 51부 2속>, 용담<1결 19부 8속>, 임피<22결 85부 2속>, 만경<12결 39부 9속>, 금구<10결 60부 3속>, 창평<12결 46부 5속>, 진안<3결 26부 7속>, 장수<1결 12부>, 운봉<10결 70부>, 임실<20결 22부 5속>, 남평<44결 35부 1속>, 옥과<75결 15부 1속>, 화순<1결 52부 2속>, 동복<52결 61부 7속>, 곡성<51결 99부 2속>, 구례<7결 17부 3속>, 광양<4결 96부 4속>, 무안<52결 8부 9속>, 고창<21결 61부>, 흥덕<25결 48부 4속>, 정읍<45결 98부 2속>, 부안<4결>, 옥구<8결 18부 9속>, 함열<32결 57부>, 용안<14결 22부 2속>, 함평<60결 47부 3속>, 태인<49결 58부 3속>, 고산<11결 28부 8속>, 법성.<1결 60부> 이

43) 개장(概狀) : 중요 내용을 개략적으로 보고한 문서로, 대개장(大概狀)이라고도 한다.

상 환실(還實) 2,001결 45부.<548결 41부 9속은 영(營)의 환실이고, 1,453결 3부 1속은 읍(邑)의 환실.>

同日. 以代播結數合錄於未移中, 俵給事, 發通於二十五邑.

【私通】代播結段, 自是狀聞 蒙允後蠲稅者是矣, 今年段爲其勸農, 自夏間題飭列邑, 前期報來是隱則. 不可不信令乙仍于, 合錄於未移中, 茲以俵給爲去乎, 以此意知委, 分俵於被災民人等處, 俾無吏緣售奸, 民不蒙惠之弊事.<光州、雲峯、龍潭、龍安、高山、樂安、靈巖、金提、萬頃、礪山、鎭安、金溝、興德、扶安、務安、咸悅、潭陽、光陽、順天、咸平、茂長、臨陂、全州、靈光、南原.>

같은 날. 대파(代播)<sup>44)</sup> 결수(結數)를 이양하지 못한 결수 속에 합해 기록하여 표재(俵災)하여 주는 일로 25읍에 사통(私通)<sup>45)</sup>을 발송하였다.

【사통】대파결(代播結)의 경우는 이 장계(狀啓)를 아뢴 때로부터 윤희를 받은 뒤에 세금을 감해주었는데, 올해는 권농(勸農)하기 위하여 여름부터 여러 읍에 데깁으로 신칙했으니 기한 전에 보고하라. 명령대로 이양하지 못한 결(結)속에 합해 기록하여 이것으로 표재하니, 이러한 뜻을 자세히 알려 재해를 입은 백성에게 표재해주고, 아전들은 농간을 부려 백성들이 은혜를 입지 못하는 폐단이 없게 할 일.<광주·운봉·용담·용안·고산·낙안·영암·김제·만경·여산·진안·금구·흥덕·부안·무안·함열·담양·광양·순천·함평·무장·임피·전주·영광·남원.>

同日. 以舊災還實條中, 分數還俵事, 發通於十一邑鎭.

【私通】報概時, 本邑舊災之直令都吏還實條, 就其中分數, 還爲俵下, 知悉舉行事. 沃溝<舊災還實十五結內, 十結還俵>、潭陽<舊災還實三十八結十二負二束內, 二十結還俵>、礪山<舊災還實二十結三十負內, 十結還俵>、光州<舊災還實八十二結內, 四十一結還俵>、龍安<勸起還實七結二十二負內, 六結八十六負還俵>、高山<舊災還實三結八十三負二束全數還俵>、茂長<舊災還實二十一結二十五負五束全數還俵>、龍潭<舊災還實三結全數還俵>、長水<舊災還實三結四十五負全數還俵>、淳昌<舊災還實三十結全數還俵>、法聖.<舊災還實五結全數還俵.>

44) 대파(代播) : 오랜 가뭄이나 홍수 따위로 인하여 씨 뿌릴 시기를 놓쳐 심으려고 한 곡식을 심지 못하고, 대신 다른 곡식의 씨앗을 뿌리는 일로, 대용갈이라고도 한다.

45) 사통(私通) : 공사(公事)에 관련하여 관원끼리 사사로이 주고받는 편지를 말한다.

같은 날. 구재환실(舊災還實)<sup>46)</sup> 조(條) 가운데 일부를 다시 표하(俵下)<sup>47)</sup> 하는 일로 사통을 11읍(邑)·진(鎭)에 발송하였다.

【사통】보개(報概) 시에 본 읍의 구재(舊災)에서 곧바로 도리(都吏)에게 명령하여 환실(還實)하는 조(條)는 그 가운데 일부를 다시 세금을 감면하여 주는 것을 잘 알아 거행할 일.

옥구<구재환실 15결내 10결을 환표(還俵)<sup>48)</sup>>, 담양<구재환실 30결 12부 2속내 20결 환표>, 여산<구재환실 20결 30부내 10결 환표>, 광주<구재환실 82결 내 41결 환표>, 용안<권기환실 7결 22부 내 6결 86부 환표>, 고산<구재환실 3결 83부 2속 전체를 환표>, 무장<구재환실 21결 25부 5속 전체를 환표>, 용담<구재환실 3결 전체를 환표>, 장수<구재환실 3결 45부 전체를 환표>, 순창<구재환실 30결 전체를 환표>, 법성.<구재환실 5결 전체를 환표.>

同日。以新災中減摠條，還爲俵下事，發通於九邑。

【私通】報概時，本邑新災中，直令都吏減摠矣，爲念民情，還爲俵下爲去乎。以此意知委，分俵於災民等處，俾無把束隱漏之弊事。

珍山<流來陳廢還實十一結四十三負全數還俵>、高敞<晚移虫捐中還實十五結全數還俵>、長城<枯損中還實七結全數還俵>、靈巖<晚移中還實十五結全數還俵>、寶城<晚移中還實十結全數還俵>、南平<今覆沙中還實六結五束全數還俵>、咸平<晚移中還實四十結全數還俵>、茂長<今成川中還實一結覆沙中還實二結晚移中還實二十七結七十四負五束全數還俵>、咸悅.<未移中還實十五結九十一負九束全數還俵.>

같은 날. 신재(新災) 가운데 감총(減摠)<sup>49)</sup> 조(條)를 다시 세금을 감면하여 주는 일로 9읍에 사통을 발송하였다.

【私通】보개(報概) 시에 본 읍의 신재 가운데 곧바로 도리(都吏)에게 명령하여 감총하게 한 것은 민정(民情)을 생각하기 위함이었으니 다시 세금을 감면한다.

이러한 뜻을 자세히 알려 재해를 입은 백성에게 분표(分俵)<sup>50)</sup>하여 파속이라도

46) 구재환실(舊災還實) : 구재(舊災) 가운데 환실(還實)하는 논밭을 말하는 것으로, 이미 묵혀버린 재결(災結)을 재해를 입지 않은 실수(實收)의 결(結) 상태로 돌리는 것을 말한다.

47) 표하(俵下) : 흉년이 든 때에 조세를 감하여 주는 것으로, 표재(俵災)와 같은 뜻이다.

48) 환표(還俵) : 다시 표하(俵下)하는 것이니, 곧 다시 조세를 감하여 준다는 말이다.

49) 감총(減摠) : 조세 총액을 줄여 주는 것을 말한다.

50) 분표(分俵) : 흉년에 재해를 입은 논밭의 세금을 덜어주는 것을 말한다.

숨기거나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할 일.

진산<유래진폐(流來陳廢)를 환실한 11결 43부 전체를 환표>, 고창<늦게 이양하고 병충해 손실을 입은 결(結) 가운데 환실한 15결 전체를 환표>, 장성<말라서 손실된 것 가운데 환실한 7결 전체를 환표>, 영암<늦게 이양한 중에서 환실한 15결 전체를 환표>, 보성<늦게 이양한 중에서 환실한 10결 전체를 환표>, 남평<이번에 모래로 덮인 것 가운데 환실한 6결 5속 전체를 환표>, 함평<늦게 이양한 중에서 환실한 40결 전체를 환표>, 무장<이번에 논이 천이 된 것 가운데 환실한 1결과 모래로 덮인 것 가운데 환실한 2결, 늦게 이양한 중에서 환실한 27결 74부 5속 전체를 환표>, 함열.<늦게 이양한 중에서 환실한 15결 91부 9속 전체를 환표.>

同日. 以湖西移運牟五千石不得遵行事, 論報籌司.

【報牒】爲牒報事. 節到付司啓下關內節該, ‘本道貿牟中五千石, 待湖西送船, 卽爲出給, 以爲賑濟之需事’ 關是置有亦. 隣省告歉, 賙賑時急, 有此移粟之舉, 其在共濟之誼, 固當恪遵奉行是乎矣, 本道事勢有萬分罔措者. 茲不得不據實牒報是如乎. 當初均廳貿牟, 實非元還摠, 外另貿三萬石, 只從各邑見在分留之數, 隨多少執留是在如中. 沿海諸邑則自來牟還不敷, 而昨年移轉之後, 耗縮殆盡, 分留無幾, 故不入於執數之中是乎乙遣. 其所執數者, 散在於峽野諸邑, 而計其出浦程途, 則遠或爲三四百里, 近不下一二百里, 陸運致遠, 其勢未由. 故以此意, 前已論報. 該廳只就野邑之距海稍近處, 牟還時, 留中并船價, 一萬一千九百餘石, 逐邑傾庫艱辛, 分排定差員, 申飭裝運是乎所. 今此湖西移轉皮牟五千石段, 近浦野邑更無着手處, 則勢將分排於峽邑, 而出浦程途若是遙遠, 數多穀包之強令陸運, 左思右量, 終是萬萬行不得之政乙仍于. 茲以枚報爲去乎, 同湖西移轉皮牟五千石區劃於他道事, 司教是參商處分爲只爲.

같은 날. 호서(湖西)로 이운(移運)할 보리 5천섬을 준행할 수 없는 일로 비변사에 논보(論報)<sup>51)</sup>함.

【보첩(報牒)<sup>52)</sup>】 첩보하는 일. 이번에 받아본 비변사의 계하 관문 안의 요점[節該]<sup>53)</sup>은 ‘본도에서 사들인 보리 가운데 5천섬은 호서에서 배를 보내 주기를 기다

51) 논보(論報) : 하급 관아에서 상급 관아에 대하여 자기의 의견을 붙여 보고하던 일을 말한다.

52) 보첩(報牒) : 하급관청이 상급관청에 보내는 행정상의 보고 혹은 판결이나 지시를 구하기 위하여 보내는 공문서를 말한다.

53) 요점[節該] : ‘節該’는 이두로 ‘절해’로 읽고, 공문서의 해당 구절을 간추려 기재한 내용을 뜻한다. 『이문집람(吏文輯覽)』에 “성지(聖旨)와 공문서에는 반드시 수절(首節)에다 절해(節該) 두 자(字)를 덧

려 바로 내주어 구휼하는 수요로 삼으라' 라고 관문하였습니다.

인근의 호서에서 흉년을 아뢰니 진휼이 시급하여 이렇게 곡식을 운송하는 일이 생겼으니, 함께 구제하는 의리에 있어서는 진실로 마땅히 정성껏 좇아 받들어 행해야하나, 본도의 일 형편상 매우 어찌할 수 없는 바가 있습니다. 이에 사실대로 첩보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당초 균역청에서 보리를 사들이는 것은 사실 원래 환곡(還穀)의 총수가 아니고, 따로 3만섬을 사들여 단지 각읍에 현재 나누어 유치(留置)하고 있는 수를 좇아 많고 적은 양대로 보관하여 유치하고 있었습니다.

연해의 여러 읍은 본래부터 모환(牟還)<sup>54</sup>이 넉넉하지 아니하였는데 작년에 이전(移轉)한 뒤로 줄어들어 거의 없고, 분급해 둔 것도 거의 없기 때문에 보관하여 유치하고 있는 수량에는 산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보관하여 유치하고 있는 수량은 협야(峽野 산촌)의 여러 읍에 산재해 있고, 포구에 낼 거리를 계산하면 먼 곳은 혹 3,4백리가 되며, 가까운 것은 1,2백리 이상이니 육지로 운반하는 것은 멀게 되어 그 형편상 어쩔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뜻을 전에 이미 논보하였는데도 해당 관청은 단지 거리가 바다가 조금 가까운 야읍(野邑)만을 계산하여 모환 시에 유치 중인 것에 뺏았을 더하면 1만 1천 9백여 섬이 되는데, 읍(邑)마다 창고가 다 비어 매우 어려운데도 차사원(差使員)을 나누어 배당하고 실어 운송할 것을 신칙하였던 바입니다.

금번 호서로 이전(移轉)하라는 걸보리 5천섬은 가까운 포구나 야읍에서 다시 손쓸 곳이 없고, 형편상 장차 협읍(峽邑)에 분배(分排)한다면 포구로 낼 거리가 위와 같이 멀기 때문에 다수의 곡물 포대를 힘들게 육지로 운송하게 하는 것은 이리저리 생각해도 끝내 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이에 날날이 보고하니 호서로 이전하라는 걸보리 5천석을 타도로 구획(區劃)해 주실 일을 비변사에서 헤아려 처분하십시오.

同日. 以移牟五千石事, 回移錦營.

【移文】爲相考事. 卽到貴移是置有亦. 今此移轉皮牟五千石, 係是貴道賑濟所需, 則其在共濟之誼, 有不容一毫泛忽, 而本道事勢, 有萬萬罔措者是如乎. 當初均廳貿牟, 只從牟還見在之數, 姑先執數者, 多在於峽野諸邑是遣, 沿海邑則牟還, 自來不敷, 而

붙이는데, 이는 바로 그 구절(句節)을 간략히 한 것이다.” 하였다.

54) 모환(牟還) : 모맥 환상(牟麥還上)으로, 보리를 환곡하는 일을 말한다.

昨年移運之後，耗縮殆盡，分留無幾分叱除良。今冬運納皮牟并船價，一萬一千九百餘石，逐邑傾庫，艱辛分排，則貴道移轉皮牟段，勢將分劃於峽邑，而計其出浦程途，遠或爲三四百里，近不下一二百里，陸運致遠，終是行不得之政乙仍于。以此意論報籌司，待回題舉行計料爲去乎，相考施行尙事。

같은 날. 보리 5천섬을 옮기는 일로 금영(錦營 총청 감영)에 회이(回移)<sup>55</sup>함.

【이문(移文)<sup>56</sup>】 상고할 일. 이번에 귀영(貴營)의 이문이 도착하였습니다. 금번 이전해 주라는 걸보리 5천섬은 귀도(貴道)의 진흙에 필요하니, 함께 구휼하는 의리에 있어 조금도 소홀할 수 없으나 본도의 형편이 매우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당초 균역청에서 보리를 사들이는 것은 단지 현재 있는 모환(牟還)의 수량에 따랐고, 먼저 가지고 있는 수량은 대부분 산촌의 제읍에 있으며, 연해읍은 모환이 본래부터 넉넉하지 않아 작년 이운(移運)한 뒤에 줄어들어 거의 없어지고 나누어 유치하고 있는 것도 거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년 겨울 운송하여 거둬들인 걸보리는 뱃삿을 더하여 1만 1천 9백여 섬이고 읍마다 창고가 다 비어 분배(分排)하기가 매우 어려우니, 귀도로 이전하라는 걸보리를 형편상 장차 산촌에 갈라 준다면 포구로 낼 거리를 계산하면 먼 곳은 혹 3,4백리가 되고, 가까운 것은 1,2백리 이상이니 육지로 운반함이 멀게 되어 끝내 행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러한 뜻을 비변사에 논보하였으니 회제(回題)<sup>57</sup>를 기다려 헤아려 거행하시고 상고하여 시행할 일.

十六日. 判官入見.

16일. 판관이 입견하였다.

同日. 題興德縣查報.<正犯金元哲, 夜入吳氏房, 騙奸吳氏, 以致自裁事. 查官興德縣監金命嫻, 高敞縣監李鍾應.>

【題】 金元哲之爲元犯，固是衆手所指，而特以罪關一律。事在暮夜乙仍于，查之又

55) 회이(回移) : 이문(移文)했던 공문서에 대한 답신의 문건을 이른다.

56) 이문(移文) : 관아(官衙) 사이의 조회(照會)를 목적으로 동등한 관아 사이에 왕래하는 공문서로, 공이(公移)·문이(文移) 등의 이름으로 통용된다.

57) 회제(回題) : 지방 및 감영에서 아뢴 내용에 대한 중앙관서의 회답을 말한다.



查，期欲得真的看證是加尼，今焉崔女之招出，而情節綻露，憲章可伸是如乎。有夫女強姦者，處絞自是法典是去等，况旣以隣里常賤，騙姦士族婦女是乙喻？此若一日容貸，何以慰貞魂而樹風教？同金元哲身乙，終旬同推時，以別杖各別考察，嚴刑牒報爲乎矣。舉行刑吏，執杖使令，姓名成冊，并以牒報爲旣。崔女符同元哲，抵賴不吐之罪，亦不可一次刑訊，而止待拷限，嚴刑懲礪放送向事。

같은 날. 흥덕현 조사보고서에 데깁하였다.<정범 김원철(金元哲)은 밤에 오씨 방에 들어가 오씨를 속여 간음하여 오씨가 자살한 일. 사관은 흥덕 현감 김명혁(金命爌), 고창 현감 이종응(李鍾應).>

【데깁】 김원철이 원범(元犯)<sup>58)</sup>이 됨은 진실로 여러 사람이 지적한 바이고 죄가 특히 사형죄에 관계된다. 사건이 으스스한 밤에 일어났기 때문에 이를 조사하고 또 조사하여 정말로 목격자 증인을 얻기를 기대했는데, 지금 최녀(崔女)의 공초가 나와 정황이 탄로나 헌장(憲章)을 펼 수 있다고 한다. 유부녀를 강간한 자는 교수형에 처하는 것이 본디 법전의 내용이거든 하물며 이웃 마을의 상천(常賤)으로 사족(士族)의 부녀자를 속여 간음했음에라. 이것을 하루라도 용서한다면 무엇으로써 정절(貞節)의 원혼을 위로하며 풍교(風教)를 세울 수 있겠는가?

정범 김원철의 몸을 종순(終旬) 동추(同推)시에 별장(別杖)으로 각별히 고찰하고 엄히 형신하여 첩보하라. 거행한 형리와 집행(執杖) 사령(使令)은 성명을 성책(成冊)하여 모두 첩보하라. 최녀는 김원철과 한통속이 되어 버티고 실토하지 않은 죄 또한 한 차례로만 형신해서는 안 되니 고한(拷限)을 기다려 엄히 형신하고, 징계하여 내보낼 일.

同日. 題羅州牧報狀.<正犯洪希贊，毆打金鳳梧，翌曉致死，而干犯李光玉捉得取招事.>

【題】如渠所供，九月以後，寄接於洪基周挾室，則洪希贊本末，自當洞悉是去乙，目見其忽着挾袖，稱號以進賜主，其先期綱繆之狀，綻露無餘是如乎，同李光玉身乙，以別杖箇箇考察，同謀情節嚴訊，取招牒報爲旣。李光玉捉得後，洪希贊爛漫行兇之狀，看證的確是如乎。殺越之獄，古今何限？而兇穽叵測，豈有如此囚之甚是乙喻？中甸同

58) 원범(元犯) : 형법상 범죄 행위를 실행한 사람으로, 곧 주범(主犯)·정범(正犯)과 같은 의미이다. 수범(首犯)은 정범이 여럿일 경우 맨 먼저 범행했거나 정범의 우두머리를 말하며, 종범(從犯)은 수범을 따라했거나 수범을 도와 준 범인을 말한다.

推時，別造訊杖箇箇考察，嚴訊一次爲乎矣。舉行刑吏，執杖使令，姓名成冊，并以牒報爲券。沈良言譏捕事段，今方別關，督飭於該鎮營向事。

같은 날. 나주목의 보장을 데김하였다.<정범 홍희찬(洪希贊)이 김봉오(金鳳梧)를 구타하여 다음날 새벽에 죽었기에 간범(干犯) 이광옥(李光玉)을 붙잡아 진술을 받은 일.>

【데김】 만일 이광옥이 진술한 대로 9월 이후로 홍기주(洪基周)의 결방에서 임시로 붙어살았다면 홍희찬의 본말을 자연 마땅히 다 알아야했거늘, 이광옥은 갑자기 협수(挾袖)<sup>59)</sup>입은 자를 보자 나으리님[進賜主]으로 불러, 기일에 앞서 치밀하게 준비했던 정황이 여지없이 탄로 났으니, 간범 이광옥의 몸을 별장으로 개개고찰(箇箇考察)<sup>60)</sup>하고 함께 모의한 정황을 엄히 형신하고 진술을 받아 첩보하라.

이광옥을 붙잡은 뒤에 홍희찬이 흉악한 짓을 저지른 정황이 매우 많고 본 것을 말한 것이 확실하다. 살인의 옥사가 고금에 어찌 한 둘이겠는가마는 흉악하고 모질며 헤아리기 어려운 것이 어찌 이 죄인같이 심하겠는가? 중순(中旬) 동추 시에 별도로 신장(訊杖)<sup>61)</sup>을 만들어 개개고찰(箇箇考察)하여 엄히 1차 형신하라. 거행한 형리(刑吏)와 집행 사령(執杖使令)은 성명을 책으로 정리하여 모두 첩보하라. 심양언(沈良言)을 기찰(譏察)하여 체포하는 일은 지금 바로 별도의 관문으로 해당 진영(鎭營)에 독촉하고 신칙할 일.

十七日。曉月有食之，中軍替行救食。泰仁縣監沈能淑來見。

17일. 새벽 월식에 중군(中軍)이 구식(救食)<sup>62)</sup>을 대신 행하였다. 태인 현감 심능숙(沈能淑)이 와서 보았다.

59) 협수(挾袖) : 동달이를 말하는데, 검은 두루마기에 붉은 안을 받치고 붉은 소매를 달며 뒤 솔기를 길게 터서 지은 군복으로, 협수(挾袖)와 같이 쓴다.

60) 개개고찰(箇箇考察) : 죄인(罪人)에게 매질을 할 때 형리(刑吏)를 감시하면서 낱낱이 살피어 몹시 치게 하던 일을 말한다.

61) 신장(訊杖) : 옛날에 죄인(罪人)을 신문(訊問)할 때에 매질하던 몽둥이를 말한다.

62) 구식(救食) : 조선 시대에 일식이나 월식이 있을 때 이를 이변(異變)이라 여겨서 임금이 대궐 뜰에서 삼가는 뜻으로 행하던 의식이다. 각 관아에서는 어명으로 당상관과 낭관 각 1명이 천담복(淺淡服)을 입고 기도하였고, 당상관이 없는 곳은 행수관(行首官)-좌이관(佐貳官) 2명이 행하였다. 구식(救蝕)이라고도 한다.

同日. 封救食啓.

【狀啓】前矣到付禮曹關內, “節啓下教觀象監牒呈內, ‘來十一月十七日癸未, 曉望月有食之, 時憲法月食分, 十七分五秒, 初虧寅正一刻二分, 初虧正東. 食既卯初一刻一分, 食甚卯正初刻六分, 生光卯正三刻十一分, 復圓辰初三刻十一分, 復圓正西, 計食限內, 凡十四刻十分, 食甚宿次, 月離黃道, 鶉首宮四度五十八分, 爲井宿一度五十八分事, 據曹啓目, 粘連牒呈’ 是白有亦. 向前, 來十一月十七日癸未曉, 望月有食之, 依例救食, 食體圖畫, 趁卽登聞爲白乎矣, ‘同日停朝市, 去刑戮, 禁屠殺, 斷音樂事, 京外一體, 知委何如’, ‘啓依允’ 事啓下爲有置, 啓下內辭意奉審施行爲旆, 各邑月食形止, 亦爲牒報, 都封移文上送, 以爲憑考之地, 宜當向事” 關是白乎等用良. 今十一月十七日癸未, 曉望月有食之時, 臣與地方官全州判官李羲平, 依例看望救食後, 食體圖畫, 開坐于後爲白乎旆, 各邑救食形止, 待其齊報, 迫于上送, 該曹計料緣由, 謹具啓聞.

같은 날. 구식한 것을 장계를 써서 봉하였다.

【장계】전에 받아본 예조 관문에, “이번에 계하하신 관상감의 첩정(牒呈) 내용은, ‘오는 11월 17일 계미(癸未) 새벽에 월식을 바라보는 것이 시헌법(時憲法)<sup>63</sup>으로 월식의 식분(食分)<sup>64</sup>은 17분(分) 5초(秒)이며, 초휴(初虧)<sup>65</sup> 시각은 인정(寅正)<sup>66</sup> 1각(刻) 2분(分)인데 처음에 달의 정동(正東)쪽부터 이지러지기 시작합니다. 식기(食既)<sup>67</sup> 시각은 묘초(卯初)<sup>68</sup> 1각 1분, 식심(食甚)<sup>69</sup> 시각은 묘정(卯正)<sup>70</sup> 초각(初刻) 6분입니다. 달빛이 다시 생기는 시각은 묘정(卯正) 3각 11분, 달이 다시 둥글어지는 시각은 진초(辰初)<sup>71</sup> 3각 11분인데 정서(正西)쪽부

63) 시헌법(時憲法) : 조선조 후기에 쓰였던 역법인 시헌력(時憲曆)을 말한다. 그 이전에 쓰이던 역법과 달리 서양의 수치와 계산 방법이 반영되어 있다. 여기서는 태양력에 대비되는 일반적인 음력의 개념으로 쓰였다.

64) 식분(食分) : 일·월식 때에 해나 달이 가리어 보이지 아니하는 정도를 말한다.

65) 초휴(初虧) : 일식이나 월식으로 태양이나 달이 이지러지기 시작하는 일을 말한다.

66) 인정(寅正) : 인시(寅時)의 한가운데로, 오전 네 시 정각이다.

67) 식기(食既) : 식기(蝕既)와 같은 말로, 일식(日蝕)·월식(月蝕) 때, 해나 달이 완전(完全)히 이지러지는 일을 말한다.

68) 묘초(卯初) : 하루를 열두 시로 나눈 때의 묘시의 처음으로, 오전(午前) 다섯 시가 지난 바로 뒤이다.

69) 식심(蝕甚) : 일식(日蝕) 또는 월식(月蝕) 때에 해 또는 달이 가장 많이 가려진 때를 말한다.

70) 묘정(卯正) : 묘시의 한가운데인 오전(午前) 여섯 시(時)를 말한다.

71) 진초(辰初) : 하루를 십이시(十二時)로 나눈 때의 진시의 처음으로, 오전(午前) 일곱 시가 지난 바로 뒤이다.

터 다시 등글어집니다. 월식하는 시간을 계산하면 모두 14각 10분이며, 식심 때의 수차(宿次)<sup>72)</sup>와 달이 황도(黃道<sup>73)</sup>)를 벗어나는 각도는 순수궁(鶉首宮)<sup>74)</sup>에 대해서는 4도(度) 58분, 정수(井宿)<sup>75)</sup>에 대해서는 1도 58분이 되는 내용을 예조의 계목(啓目)<sup>76)</sup>에 의거하여 점련(粘連)<sup>77)</sup>하여 첩정' 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난번에, 오는 11월 17일 계미(癸未) 새벽에 월식을 볼 때 전례에 의거하여 구식하고 월식의 모습을 그린 그림[食體圖]을 즉시 아뢰며, '월식이 있는 그날은 정조시(停朝市)<sup>78)</sup>하고 형륙(刑戮)을 없애며 도살을 금하고 음악을 끊으라는 것을 서울과 지방에 똑같이 통지하는 것이 어떨겠습니까?' 라고 아뢰니, '아뢰는 대로 윤택한다.' 라고 계하(啓下) 하셨으니, 계하하신 내용의 말씀을 봉심(奉審)하여 시행하고, 각 읍의 월식 형세 또한 첩보하며 이문을 모두 밀봉하여 위로 보내어 빙고(憑考)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마땅할 일." 이라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11월 17일 계미 새벽에 월식을 바라보는 때에 신 서유구와 지방관인 전주 판관 이희평(李羲平)은 전례에 의거하여 월식을 보고 구식한 뒤에 월식의 모습을 그린 그림[食體圖]을 뒤에 자세히 조목하여 아뢰고, 각 읍의 구식 형편은 모든 보고를 기다려 예조(禮曹)에 뒤쫓아 올려 보낼 계획입니다. 이러한 연유로 삼가 갖추어 아립니다.

- 
- 72) 수차(宿次) : 별자리의 순서를 말하는데, 고대 중국에서는 이십팔수로 나누었으나 오늘날에는 별의 위치를 정하기 위하여 밝은 별을 중심으로 천구(天球)를 몇 부분으로 나누어 88개의 별자리로 통일되어 있으며, 동물, 물건, 신화에 나오는 인물의 이름이 붙여져 있다.
- 73) 황도(黃道) : 태양이 도는 길, 또는 태양의 둘레를 도는 지구의 궤도가 천구에 투영된 궤도이다. 천구의 적도면(赤道面)에 대하여 황도는 약 23도 27분 기울어져 있으며, 적도와 만나는 두 점을 각각 춘분점, 추분점이라 한다.
- 74) 순수궁(鶉首宮) : 황도(黃道)의 둘레를 십이부분(十二部分)으로 나눈 12궁의 하나이다. 12궁은 성기궁(星紀宮)·원효궁(元枵宮)·추자궁(婁訾宮)·강루궁(降婁宮)·대량궁(大梁宮)·실침궁(實沈宮)·순수궁(鶉首宮)·순화궁(鶉火宮)·순미궁(鶉尾宮)·수성궁(壽星宮)·대화궁(大火宮)·석목궁(析木宮)이다.
- 75) 정수(井宿) : 이십팔수의 스물두째 별자리를 말한다.
- 76) 계목(啓目) : 조선 시대에 중앙의 관부에서 국왕에게 올리던 문서 양식의 하나인데, 주로 작은 일을 왕에게 아릴 때에 쓴다. 참고로 계목(啓目)과 계본(啓本)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계목은 직계(直啓)할 수 있는 서울의 2품 이상 아문(衙門), 또는 긴요한 사안이 있는 각사(各司)에서 왕에게 올리는 문서 형식으로, 주로 회계(回啓)하면서 재결(裁決)을 청하거나 보고하는 내용이다. 이두(吏讀)를 사용하였고, 외방에서는 계목의 형식으로 올리지 못했다. 반면 계본은 직계할 수 있는 서울의 2품 이상 아문[3품 이하의 승정원, 장례원, 사간원, 종부시 포함] 또는 긴요한 사안이 있는 각사 그리고 서울과 지방의 제장(諸將) 어영대장(御營大將), 수어사(守禦使), 병사(兵使), 수사(水使), 통제사(統制使), 영장(營將) 등이 왕에게 보고하거나 의견을 묻는 내용으로 보고하는 문서의 형식이다.
- 77) 점련(粘連) : 증거 및 관련 서류를 덧붙이는 것을 말한다.
- 78) 정조시(停朝市) : 국상(國喪)이 있거나 나라에 큰 재변이 일어났을 때에, 각 관아는 일을 보지 않고 상인은 장사를 하지 않던 일을 말한다.

同日。因禁、御兩營停番知委關，封舉行形止啓。

【狀啓】筋到付禁衛營關內，“今十月二十二日次對入侍時，領議政李【相璜】所啓‘東內營役若非有所重處，則災歲興作，固非其時，然此係莫重差備，經始之宜亟，不容少緩。自伏奉日前下教，臣等往復相議，未嘗不竭慮於措劃營役之方，而識慮不能周到，財力到底罄竭，不知所以爲計，日夕惶悶。又伏承昨日傳教下者，察民力之孔艱，念國計之罔涯，至於損御供而補役費。今此特劃之數，自兩道貢蔘之權減，以至四道甲冑價米，及內局燕賀折半，竝以三年爲準，如許大數，殆爲巨萬。臣等相顧欽聳，繼之以感激出涕。臣等之如是者，豈爲營役之費？得此而爲大本，外此而拮据湊合，當有頭緒之爲幸而然者。絲綸之下，自有藹然，可以對天心而洽民情者，此實出於不傷財不害民之盛德至仁也。臣等向有筭陳，以實心應天，有所仰告，而今茲處分，是惟修省之實心實政也。實者誠也，誠之所格，何福不臻？下情攢祝，有不容言語盡達矣。營建容入之數，略以西關已例，叅量多寡，則今此所下三年權減條外，當有別般加劃，而度支·惠局，舉皆匱乏，實無以着手。第念前下雉鮮減貢價，雖當還屬惠局，姑先移用，昨年關東減蔘贏餘，及年前減貢條權退年限，竝使作還者，亦可從便取用，嶺南漕餘錢，年各不同，而尤非經用所關，此三條可以自明年限三年推移。其外禁·御兩營番次，當自乙未復舊，更退三年之限，微寓調丁之意，恐合便宜。以特劃三條，竝計今所仰請之四條，則都數當爲三十萬兩，內外如是分排，庶可以濟用於役費，而但此係數三年流伊收合者，非目下所可徑取而趁用者，則又不可不以京外錢穀，量宜貸下，先爲入用，而待元劃排限，使之挨次備報爲好。此則區別分數，繼當有草記稟處矣。’上曰：‘依爲之’事”命下矣。筋啓下教營啓辭內，“因大臣舉措，‘禁·御兩營鄉軍，自乙未限三年，又爲停番事允下矣，本營自乙未十月當爲始，輪次上番之慶尙，黃海，公忠，京畿，江原，全羅等六道所在鄉軍，通計十八當停番，而隨其上番年限，竝資保收布上送之意，各該道監·兵使處，預爲知委，何如？’傳曰：‘允’教事是去教是置。批旨內辭意奉審施行爲乎矣，停番錢收捧之，筋待其上番年限，更當措辭發關矣，先以此意知委各邑後，舉行形止，卽爲狀聞，關到日時，封啓辭緣，竝卽騰報宜當向事”關是白乎於。同時到付御營廳關辭一般是白齊。兩度關是白乎等用良，禁·御兩營上番軍，自乙未十月當爲始，限三年停番，而隨其番限，竝資保收布，上納之意，枚舉知委於各該邑爲白乎於，緣由并以馳啓爲白臥乎事。

같은 날. 금위영·어영청 두 영(營)의 정번(停番)을 관문으로 알려왔기에 그에 따라 거행한 사실의 전말을 장계를 써서 봉하였다.

【장계】 이번에 받아본 금위영 관문에, “이번 10월 22일 차대(次對)<sup>79)</sup> 입시(入侍)한 자리에서 영의정 이상항(李相瓚)이 ‘동궐(東闕 창덕궁(昌德宮)) 안의 영역(營役)은 만일 중요한 곳이 아니면 재난의 해에 공사를 일으키는 것이 진실로 시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일은 준비가 막중하니 의당 빨리 일을 시작하여 조금도 늦출 수 없습니다. 옳드려 일전에 전교가 내려온 것을 받들어 보고 신들은 상의를 주고 받아, 일찍이 영역할 방법을 조처하는데 생각을 다하지 않음이 없었으나 지식과 사려가 두루 미치지 못하고, 재력이 완전히 바닥이 나 궤할 바를 알지 못하여 아침저녁으로 두렵고 답답하였습니다.

삼가 어제 전교(傳敎)하신 것을 받들어 보았더니 백성들의 재력이 몹시 어렵다는 것을 살피시고, 나라의 재정이 형편이 없음을 염려하시어 심지어 어공(御供)을 덜어서 영(營) 역사(役事)의 비용에 보태주셨습니다. 지금 이 특별히 획급(劃給) 해주신 수량은 2도(道)에서 공물로 바치는 삼(蔘)을 임시로 감한 것으로부터 4도(道)의 갑주(甲冑) 값으로 내는 쌀과 내의원에서 중국과 무역하는 것의 절반에 이르기까지 모두 3년을 한정으로 하여 주었습니다. 이처럼 많은 수량은 거의 만 곱절입니다. 신등은 서로 돌아보며 공경하고 감격의 눈물을 줄줄 흘렸습니다. 신들이 이와 같이 한 것은 어찌 영역의 비용 때문이었겠습니까? 이것을 얻어大本(大本)을 삼고 이외는 굶어모아[拮据] 합하면 마땅히 일의 두서가 있어 다행이라 그런 것입니다. 내린 교서는 진실로 온화하여 천심(天心)에 대양(對揚)을 대하고 민정(民情)을 흡족하게 할 만한 것이 있으니, 이것은 실로 재물을 손상하지 않고 백성들을 해롭게 하지 않으려는 성덕과 지극한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신등이 지난번 차자(筭子)로 아뢰어 진심으로 하늘에 감응하기를 우러러 아뢴 바가 있었는데, 지금 이러한 처분은 오직 다스리고 살피주시는 신실한 마음과 정성스런 정사입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정성이니 정성이 이룬다면 어찌 복(福)이 모이지 않겠습니까? 백성들의 뜻을 모아 바라는 것은 말로 다 진달할 수 없습니다.

영건(營建)하는 데 들어가는 수량은 대략 서궐(西闕 경희궁(慶熙宮))을 영건했던 전례를 가지고 많고 적음을 참작하여 헤아려 보면, 이번에 내리신 3년간 임시로

79) 차대(次對) : 매달 여섯 차례씩 의정(議政)·대간(臺諫)·옥당(玉堂) 등이 입시(入侍)하여 중요한 정무(政務)를 상주(上奏)하는 일이다.

경감한다는 조목 외에 마땅히 별도로 더 구획(區劃)함이 있어야 하지만, 탁지(度支)<sup>80)</sup>와 혜국(惠局)<sup>81)</sup>이 거의 물건이 바닥 나 실로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다만, 20일 전에 내려 주셨던 쟁과 생선을 공물로 바치는 값을 감하게 한 것은 비록 혜국에 도로 주어야 하겠지만 우선 이전하여 쓰기로 하고, 작년에 관동(關東)의 삼(蔘)을 감해 주고 남은 것과 연전에 공물을 감해 주기로 한 조목을 임시로 연한을 물려서 모두 도로 내게 한 것도 또한 형편대로 취하여 쓸 수 있을 것이며, 영남(嶺南)의 조여전(漕餘錢)<sup>82)</sup>은 해마다 같지 않지만 더욱 경비와 관계되는 것이 아니니, 이 세 가지 조목을 명년부터 3년을 한정으로 미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밖에 금위영과 어영청 양영(兩營)에 번차(番次)하는 것은 마땅히 을미년[乙未 1835, 현종 원년]부터 예전대로 복구하여야 하겠으나, 다시 3년을 한정하여 물린다면 장정을 적게 조발하는 뜻에 부합되고 편의할 것으로 봅니다. 특별히 획급(劃給)한 세 조목과 아울러 이제 요청하여 올린 네 조목을 모두 합하면 합계가 30만 냥이 되니, 중앙과 지방에 이와 같이 분배한다면 거의 역사 비용은 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것은 2,3 년간에 걸쳐 거뒀 모은 것에 관계되니, 목하에 곧 바로 취하여 성급히 사용할 것이 아니라면 또한 경외(京外)의 전곡(錢穀)으로 하지 않을 수 없으니, 마땅함을 헤아려 빌려준 것[貸下]을 우선 받아쓰되 원래 획급하여 나눠주는 기한을 기다려 차례로 갖추어 보고하게 함이 좋겠습니다. 이는 분수를 구별하고 마땅히 이어서 초기(草記)<sup>83)</sup>로 주상께 여쭙어 처리하겠습니다.’ 하니, 주상이 말씀하시기를, ‘아뢴 대로 할 일.’ ” 하였습니다.

이번에 금위영에 계하하신 말씀에, “대신들의 거조(舉措 조치)로 인하여 ‘금위영과 어영청 두 영의 향군(鄉軍)은 을미(乙未)년부터 3년간 다시 정번하는 것을 윤택하셨으니, 금위영은 을미년 10월부터 마땅히 시작하고 차례로 상번(上番)<sup>84)</sup>하는 경상·황해·공충·경기·강원·전라 등의 6개도에 있는 향군 모두 18곳이니, 마땅히 정번하고 그 상번의 연한을 따라 아울러 자보(資保)<sup>85)</sup>하는 포(布)를

80) 탁지(度支) : 호조(戶曹)로, 조선 시대에 육조 가운데 호구(戶口), 공부(貢賦), 전량(田糧), 식화(食貨)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아이다.

81) 혜국(惠局) : 선혜청(宣惠廳)으로, 조선 때 대동미(大同米), 포(布), 전(錢)의 출납(出納)을 맡아보던 관아이다.

82) 조여전(漕餘錢) : 배로 물건을 실어 나르고[漕轉] 남은 돈을 말한다.

83) 초기(草記) : 중앙 각 관아(官衙)에서 정무상 그리 중요하지 아니한 사항을 간단하게 요지만을 기록하여 상주(上奏)하는 문서로, 보통은 상주하는 신하의 직급과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84) 상번(上番) : 군인이 차례가 되어 번을 들러 군영으로 들어가던 일, 또는 외방의 군인이 서울로 번을 들러 올라가던 일을 말한다.

거둬 올려 보내라는 뜻을 각 해당도의 감사(監司)와 병마절도사에게 미리 통지하는 것이 어떨겠습니까?’ 하니, 전교하시기를 ‘윤택한다.’ 고 하시었습니다. 비지(批旨) 내의 말뜻을 봉심하여 시행하되, 정번전(停番錢)<sup>86</sup>을 거둬들이는 것은 이번 그 상번의 연한을 기다려 다시 마땅히 조사(措辭)로 관문을 발송하고, 우선 이러한 뜻을 각 읍에 통지한 뒤에 거행한 사실의 전말을 바로 장계로 아뢰고, 관문이 도착한 일시(日時)와 봉하여 아뢴 사연(辭緣)을 모두 등서하여 보고함이 마땅한 일.” 이라는 관문이었습니다. 동시에 받아본 어영청 관문의 말씀도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 관문하신 바에 따라 금위영·어영청 두 영의 상번군은 을미년 10월부터 마땅히 3년간 정번하고, 그 번(番)의 기한을 따라 모두 자보(資保)하는 포(布)를 거둬 상납하라는 뜻을 각 해당 읍에 하나하나 통지하며 이러한 연유로 모두 치계(馳啓) 하옵는 일.

同日. 枚擧禁御兩營關辭, 發廿五十三州兵營. 甘辭與上項謄啓同.

같은 날. 금위영·어영청 두 영의 관문의 내용을 낱낱이 들어 53주의 병영(兵營)에 감결을 발송하였다. 감결의 내용은 위의 등서한 기사(啓辭) 내용과 같다.

同日. 羅州致死人金鳳梧獄事, 干犯在逃罪人沈良言, 今月內捉納事, 發關右鎮營.

【關文】爲相考事. 羅州牧致死金鳳梧獄事良中, 干犯在逃罪人沈良言不多日內, 捉囚報來之意, 前後題飭, 不啻申嚴, 而尙無捉囚之報, 揆以舉行, 萬萬駭然. 今此沈漢, 既是羅州邑底居生之人, 則其住接何處? 捕校輩, 必無不知之理, 而循私掩置, 終不捉納, 營將苟能猛督嚴飭, 則豈有延拖至今之理是乙喻? 言念紀綱, 尤極寒心. 茲更發關爲去乎, 若於今月內不爲捉納, 則不待更關, 首校押直上使尙事.

같은 날. 나주에서 죽은 김봉오(金鳳梧) 옥사의 간범(干犯)으로 도망 중인 죄인 심양언(沈良言)을 금월 안에 잡아들이라는 일로 우진영(右鎮營)에 관문을 발송하였다.

【관문】상고할 일. 나주목에서 죽은 김봉오 옥사에 간범으로 도망 중인 죄인 심

85) 자보(資保) : 나라에 보포를 바쳐 실역(實役)에 복무하는 군정을 돕던 보인을 말한다.

86) 정번전(停番錢) : 입번(入番)을 정지시키는 대신 받는 돈을 말한다.



양언을 며칠 안에 잡아 가두고 보고하라는 뜻을 전후에 데김으로 신칙하기를 거듭 엄히 했는데도 아직도 잡아 가두었다는 보고가 없으니 거행으로 살펴보면 매우 놀랍다.

지금 심가 높은 나주읍에 살던 사람이니 그가 어디에 있겠는가? 포교(捕校)배들은 틀림없이 알지 못할 리가 없을 터인데 사사로이 감춰두고 끝내 잡아들이지 않는데, 진영장(鎭營將)이 진실로 사납게 독책하고 엄하게 단속했다면 어찌 지금까지 일을 끌어 미루어졌을 리가 있었겠는가? 기강을 생각하면 더욱 매우 한심하다. 이에 다시 관문을 발송하니 만약 금월 안에 잡아들이지 못한다면 다시 관문을 기다릴 것 없이 수교(首校)<sup>87)</sup>는 압직(押直)<sup>88)</sup>하여 감영으로 잡아 올릴 일.

同日. 進上海衣, 孔瘡不合事, 發關靈巖郡.

【關文】爲星火舉行事. 本郡所封進上海衣, 孔瘡不合, 故分付禮吏, 使之別擇, 今十六日監封之意, 嚴飭以送矣, 同禮吏逃避不現, 使莫重進上, 至於闕封之境, 揆以事體, 萬萬悚悶. 不飭之首吏, 到關即時, 着枷三倍道, 押直上使向事.

같은 날. 진상할 김[海衣]에 구멍이 나고 헐어서 합당하지 못한 일로 영암군에 관문을 발송하였다.

【관문】 급히 거행할 일. 영암군에서 봉하여 진상한 해의(海衣)가 구멍이 나고 헐어서 마땅하지 않기 때문에 예리(禮吏)<sup>89)</sup>에게 분부하여 특별히 가려 택하게 하고, 이번 16일 감봉(監封)하라는 뜻을 엄하게 신칙하여 보냈다. 그 예리(禮吏)는 도망가 나타나지 않고 막중한 진상물의 감봉을 빠트리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으니, 사체(事體)를 생각해보면 매우 두렵고 답답하다. 단속하지 못한 수리(首吏)<sup>90)</sup>를 관문이 도착하는 즉시 목에 칼을 씌워 삼배도(三倍道)<sup>91)</sup>로 잡아서 감영으로 잡아 올릴 일.

同日. 題靈巖郡報狀.<進上海衣不善, 封進之禮吏趙得璉着枷上使事.>

87) 수교(首校) : 각 고을 장교의 우두머리로, 수교장교(首校將校)라고도 한다.

88) 압직(押直) : 죄인으로 감금하고 지키는 일을 말한다.

89) 예리(禮吏) : 각 지방 관아에 속한 예방(禮房)의 구실아치로, 전례(典禮)를 맡은 아전이다.

90) 수리(首吏) : 각 지방 관아의 여섯 영리(營吏) 아전 중에서 이방(吏房) 아전이 으뜸이라는 뜻으로 일컫는 말이다.

91) 삼배도(三倍道) : 사흘 길을 하루에 가는 것을 말한다.

【題】莫重進上，不擇好否，如是苟充，已極萬萬駭悚。况飭令改備之後，還以前件上送，如許事體，今始初聞。都次知座首，所當上使嚴治，而特以催科方張，姑此安徐是在果。實首吏星火捉上爲飭。今此逃走之假禮吏，星火譏捕，不多日內捉囚後，形止馳報向事。

같은 날. 영암군 보장을 데김하였다.<진상(進上)한 해의(海衣)가 좋지 않아 봉진(封進)할 것을 명받은 예리(禮吏)<sup>92)</sup> 조득연(趙得璉)을 칼을 씌워 상급관청으로 잡아 올리는 일.>

【데김】막중한 진상이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을 가리지 않고 이와 같이 숫자만 구차하게 메꾸니 너무 놀랍고 두렵다. 하물며 다시 준비하라고 영(令)으로 신칙한 뒤에도 도로 이전 물건을 올려 보냈으니, 이와 같은 사체(事體 일의 체통)는 금시 초문이니 도차지(都次知)인 좌수(座首)를 마땅히 상급관청으로 잡아 올려 엄하게 다스려야 할 사안이지만 다만 납세를 재촉하는 것이 한창이기 때문에 우선 잠시 보류한다.

그러나 실수리(實首吏 아전 가운데 실질적 우두머리)를 급히 잡아 올리고 이번에 도주한 가예리(假禮吏 특별히 감봉 임무로 발탁된 예리 조득연)를 급히 체포하여 며칠 내에 잡아 가둔 뒤에 사실의 전말을 급히 보고할 일.

同日. 以捧還別飭事，發關全州府。

【關文】爲相考事。捧糶一事，以關以題，前後申飭，不啻縷縷。見今此月，將念所捧，一向零星，至於營還，全不納面里，殆過其半，如是而何時了勸是乙諭？營令之關而不行，已極寒心。而不料民習之頑悍，一至於此也。如今失稔之年，還穀尤當實捧然後，明春接濟之方，始可着手，而尤甚災民，亦可免仳離捐瘠之患。故營門之斷斷苦心，期欲始終責效準捧完倉，而監色則不勤董督，任其玩愒，還民則全事觀望，一直拒納，糶政之外亦關紀綱，尤豈不萬萬痛惋乎？國穀不可不捧，營飭不可不申，則其在嚴糶法之道，當用一切之政，毋論營府還，多石之還戶，緩督之任掌，摘發嚴治，刻期畢捧爲乎矣。今二十五日爲限，營還所納，如未滿強半，則都次知首鄉，不待更關，着枷上使宜當向事。

92) 명받은 예리(禮吏) : 바로 위 관문에서 진상한 김이 좋지 않아 예리를 특별히 뽑아 감봉하라고 보냈는데 그 예리가 도망갔음을 알 수 있어 그 사실을 근거로 번역하였다.

같은 날. 환곡을 거둬들이기를 특별히 신척하는 일로 전주부에 관문을 발송하였다.

【관문】 상고할 일. 환곡을 거둬들이는 일은 관문과 데김으로 전후에 신척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세하게 했다. 그런데 이번 달 장차 거둬들일 것을 생각하면 한결같이 보잘 것 없고, 감영에서 환곡해준 것에 이르러서는 전혀 거둬들이지 못한 면리(面里)가 거의 절반을 넘었으니 이와 같다면 어느 때에 마감하겠는가? 감영의 명령이 막히고 시행되지 못함이 지극히 한심하다.

백성의 습속이 완악하고 사나움이 이 지경에 이를 줄은 생각하지도 못했다. 지금 같은 흉년에 환곡은 더욱 마땅히 실제대로 거둬들인 뒤에야 내년 봄에 구휼하는 방도를 비로소 착수할 수 있고, 우심(尤甚)의 재해를 입은 백성도 또한 뿔뿔이 흩어지고 야위어 죽는 근심을 면할 수 있다. 때문에 감영(監營)이 단단히 고심하여 시종 독촉하여 기준대로 거둬들여 창고를 충분하게 채우기로 기약하였으나, 감색(監色)<sup>93)</sup>은 부지런히 채근하지 않으며 편한 대로 맡겨두고, 환민(還民)은 모두가 관망만을 일삼으며 한결같이 납부를 거부하니, 이것은 환곡을 수납하는 일 외에 기강과도 관련되니 어찌 더욱 통탄하고 한탄하지 않겠는가?

나라의 환곡은 거둬들이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감영의 단속은 거듭하지 않을 수 없으니, 환곡을 거둬들이는 법을 엄격하게 하는 도리에 있어서 마땅히 일체의 정책을 써야한다. 전라감영과 전주부의 환곡미를 논할 것 없이 환곡을 많이 납부해야 하는 환호(還戶)와 나태하게 감독했던 임장(任掌)을 적발하여 엄하게 다스리고 기한을 정하여 거둬들이기를 마쳐라. 이번 25일을 기한하여 감영에서 거둬들인 환곡이 만일 절반을 넘게 채우지 못하면 도차지인 수향은 다시 관문을 기다릴 것 없이 목에 칼을 씌워 상급관청으로 잡아 올리는 것이 마땅할 것.

十八日. 泰仁縣監沈能淑來見, 仍爲辭去.

18일. 태인 현감 심능숙이 와서 보고 그대로 하직하고 갔다.

同日. 以金夫安等四漢押送右鎮營事, 發關靈巖郡.

【關文】 爲相考事. 本郡在囚罪人金夫安, 千世行, 朴良七, 金啓得等四漢, 到關即時, 別定將差具枷杻, 押送于右鎮營爲乎矣. 不善防守, 萬一有中路逃失之弊, 則當該

93) 감색(監色) : 감관(監官)과 색리(色吏)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將差，斷當限死嚴繩，以此意各別申飭爲<sub>筋</sub>。罪人押到即時，嚴囚鎖獄後，形止牒報之意，枚移施行宜當向事。

같은 날. 김부안(金夫安) 등 네 놈을 우진영에 압송하는 일로 영암군에 관문을 발송하였다.

【관문】 상고할 일. 영암군에 갇혀있는 죄인 김부안·천세행(千世行)·박양칠(朴良七)·김계득(金啓得) 등 네 놈을 관문이 도착하는 즉시 따로 장차(將差)<sup>94</sup>를 정하여 가추(枷杻)<sup>95</sup>를 갖추어 우진영으로 압송하라. 잘 지키지 못하여 만일 도중에 벗어나 달아나는 폐단이 있으면 해당 장차(將差)는 결단코 죽도록 엄하게 바로잡을 것이니 이러한 뜻을 각별히 신칙한다. 죄인을 압송하여 도착하는 즉시 진영(鎭營) 옥에 엄하게 가둔 뒤에 사실의 전말을 첩보하는 뜻을 공문을 보내어 시행함이 마땅할 일.

十九日. 因民狀, 以籍費戶歛濫觴事, 發關海南縣.

【關文】 爲相考事. 卽見本縣民, 任尙德, 陳獐寔等呈狀, 則以爲“本邑連值歉荒, 哀此殘民無以奠保之中, 今當式年, 籍費戶歛之數, 又爲不少. 而所謂戶籍色金哥吏, 創出無前之例, 各里無等身, 每戶責徵五錢, 殘民不勝其督迫, 具由呈官矣. 村民金近心, 符同籍色, 反以<sub>矣</sub>等狀, 辭歸之無實, 而置諸亂民之科, 明查處決”亦爲有<sub>置</sub>. 籍費收歛, 既有辛巳節目, 則雖一分錢, 決不可加徵者, 故依定式, 恪遵舉行之意, 向有所別甘提飭是加<sub>尼</sub>. 今以狀辭觀之, 該吏之不遵營飭, 科外加歛, 若是狼藉. 苟有一分嚴畏之心, 焉敢乃已? 該吏所犯, 果是實狀, 則依律嚴勸, 斷不可已<sub>是矣</sub>. 一邊之言有難準信乙<sub>仍于</sub>, 茲以發關爲去<sub>乎</sub>, 各別詳查, 卽速報來爲<sub>乎矣</sub>, 狀辭如或爽實是去<sub>等</sub>, 該吏與狀民, 一併着枷上使<sub>向事</sub>.

19일. 민장(民狀)으로 인하여 적비(籍費)<sup>96</sup>를 호령(戶歛)<sup>97</sup>하는 것이 시작되었다는 일로 해남현에 관문을 발송하였다.

【관문】 상고할 일. 이번에 해남현민 임상덕(任尙德)·진인식(陳獐寔) 등이 올린

94) 장차(將差) : 고을 원이나 감사(監司)가 심부름으로 보내던 사람을 이른다.

95) 가추(枷杻) : 죄인의 목에 씌우는 나무 칼과 손에 채우는 수갑을 말한다.

96) 적비(籍費) : 호적을 만드는데 쓰이는 비용이다.

97) 호령(戶歛) : 집집마다 물리는 세금이다.

민장(民狀)을 보니, “해남현이 연이어 흉년이 들어 애통하게도 이 쇠잔한 백성이 살 수 없는데, 지금 식년시를 당하여 적비를 호령하는 액수가 또한 적지 않습니다. 이른바 ‘호적색(戶籍色)<sup>98)</sup>’ 아전 김가(金哥)가 처음으로 전에 없던 예를 만들어내어 각리에는 그 같은 사람이 없는데도 매호마다 5전을 독촉하여 거두니, 잔민이 그 다급히 독촉하는 것을 이길 수 없어 연유로 갖추어 관에 민장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촌민 김근심(金近心)은 호적색과 한통속이 되어 도리어 저희들의 등장(等狀)<sup>99)</sup>을 가지고 말이 사실에 관련 없다는 것으로 귀결시켜 백성을 어지럽히는 세금을 방지하니 명확히 조사하여 처결하소서.” 라고 하였다.

적비 수령은 이미 신사(辛巳)년 절목에 있으니, 비록 한 푼의 돈이라도 절대로 더 징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정식(定式)에 의거하여 성심껏 준행하여 거행하라는 뜻을 지난 번 특별히 감결로 신칙한 바 있었다. 지금 민장의 내용으로 보면 해당 아전이 감영의 신칙을 따르지 않고 세금 외에 더 거둬들인 것이 이와 같이 낭자(狼藉)하다. 만일 조금이라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찌 감히 그렇게 한단 말인가? 해당 아전이 범한 바가 과연 실제 민장대로라면 조문에 의거하여 엄하게 처단하는 것을 결단코 그만 둘 수 없다.

한 쪽의 말만을 믿기 어려우므로 이에 관문을 발송하니, 각별하게 자세히 조사하여 즉시 보고하되 민장의 말이 만일 혹 사실과 다르거든 해당 아전과 민장을 올린 백성은 모두 칼을 씌워 감영으로 올려 보낼 일.

二十日．靑巖察訪，冬至箋文進獻後，自京下來之路入見，仍爲辭去．判官，中營將入見．

20일. 청암 찰방이 동지 전문(箋文)을 진헌(進獻)한 뒤에 서울에서 내려오는 길에 들어와 접견하고 그대로 하직하고 갔다. 판관·중영장이 입견하였다.

同日．題靈巖郡報狀．<進上海衣六貼十三張更爲精備，實禮吏金仲石準授上使事．>

【題】當初禮吏上使時，何不以一邊改備之由措辭是遣，但云實禮吏上使是如？殆若征邁者然是加隱喻．其舉行不可但以踈忽言，今此封進亦多孔瘡乙仍于，方自營門從他措備，卽速進上是在果．似此事體果有前聞是喻？萬萬寒心．首吏卽速上使向事．

98) 호적색(戶籍色) : 각 고을의 군아(郡衙)에서 호적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부서를 말한다.

99) 등장(等狀) : 여러 사람이 이름을 잇대어 써서 관청에 올려 하소연하는 문서이다.

같은 날. 영암군 보장을 데김하였다.<진상한 김[海衣] 6툫[貼]<sup>100)</sup> 13장(張)을 다시 좋은 것으로 준비하고, 실예리(實禮吏) 김중석(金仲石)을 기한에 맞춰 감영으로 잡아 올릴 일.>

【데김】 당초 예리(禮吏)를 감영으로 잡아 올릴 때에 어찌 한 쪽에 다시 준비해야 하는 이유를 문구로 넣어 놓지 않고 단지 실예리만을 감영으로 잡아 올리라고 말하였겠는가? 자못 힘써 준비한 것 같이 여겼던 것이다. 그런데 그 거행함에 있어서는 단지 말을 소홀히 했단 것으로 지금 이렇게 밀봉하여 진상한 것 또한 대부분 심하게 헐어서는 안 되기에 감영에서 달리 조치하여 준비하여 즉시 진상(進上)하였다.

이와 비슷한 경우를 과연 전에 들은 적이 있었는가? 매우 한심하다. 수리(首吏)를 즉시 감영으로 잡아 올릴 일.

同日. 以羅州南一獐斫伐鄭班邱木事, 發關該牧.

【關文】 爲相考事. 卽聞本州居南一獐爲名漢, 謂有宿債當捧於鄭班是如, 鄭班先山松木, 七百餘株, 一時斫伐云. 松禁何等嚴重, 而士夫家邱木無難斫伐, 如是狼藉, 豈有如許蔑法之漢乎? 此不別般痛繩, 何以懲他是乙喻? 到關卽時, 同南一獐捉來, 嚴查報來, 以爲憑處之地, 宜當尙事.

같은 날. 나주 남일린(南一獐)이 양반(兩班) 정(鄭)씨의 구목(邱木)을 베어낸 일로 나주목에 관문을 발송하였다.

【관문】 상고할 일. 지금 나주에 사는 남일린이라는 놈이 양반 정씨에게 오래된 빚을 받아내야만 할 것이 있다고 말하며, 정반의 선산 소나무 7백여 그루를 일시에 베어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소나무 베내는 것을 금하는 것[松禁]이 매우 엄중한 일인데도 사대부가 묘소의 나무를 아무렇지 않게 베어내는 것이 이처럼 제멋대로이니 어찌 저와 같이 법을 무시하는 놈이 있는가? 이를 보통과는 다르게 엄하게 다스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다른 것을 징벌할 수 있겠는가? 관문이 도착하는 즉시 남일린을 잡아 와서 엄하게 조사하고 보고하여 처리의 근거로 삼음이 마땅할 일.

100) 첩(貼) : ‘툫’의 뜻으로 김[海衣·甘苔] 100장(張)을 하나치로 세는 데 쓰는 말이다.(박성훈, 『단위어사전(單位語辭典)』, 민중서림, 1998, 453쪽.)

### 3. 1833년(순조33) 11월 21~30일 : 향시·한성시 날짜를 감결하다

二十一日. 因禮曹關, 鄉漢城試推擇日子, 發甘知委於列邑鎭.

【甘結】節到付禮曹關內, “節啓下教, ‘觀象監牒呈據, 來甲午式年, 進士鄉漢城試初試, 來二月十八日, 生員鄉漢城試初試, 同月二十日, 文武科鄉漢城試初試, 同月二十九日, 雜科初試, 來三月初七日, 進士覆試, 同月二十日, 生員覆試, 同月二十二日, 生進放榜, 來四月初三日辰時, 文科講經武科覆試, 同月初八日, 文科會試, 講畢後, 間一日, 文武科殿試, 同月二十五日, 文武科放榜, 來五月初二日辰時, 雜科覆試, 同月十三日, 雜科放榜, 同月二十七日卯時, 推擇’ 啓下爲有置. 啓下內辭意奉審, 道內各邑良中, 知委施行向事” 關是置有亦. 關內辭緣奉審, 境內士子良中, 一一知委, 俾無未知之弊爲乎矣, 甘到日時, 亦卽報來, 以爲憑考之地宜當者.

21일. 예조의 관문으로 인하여 향시(鄉試)·한성시(漢城試)의 날짜를 가려 택하고 감결을 발송하여 열읍(列邑)과 진(鎭)에 자세히 알리다.

【감결】이번에 받아본 예조의 관문에, “이번에 계하하신 내용에 ‘관상감의 첩정에 의거하여 내년 갑오(1834)식년에 진사(進士)향시와 한성시의 초시는 오는 2월 18일, 생원 향시와 한성시 초시는 2월 20일, 문무과 향시와 한성시 초시는 2월 29일, 잡과 초시는 오는 3월 7일, 진사 복시(覆試)는 3월 20일, 생원 복시는 3월 22일, 생원과 진사 방방(放榜)<sup>101)</sup>은 오는 4월 3일 진시(辰時 상오 7시부터 9시까지), 문과 강경(講經)<sup>102)</sup>과 무과 복시는 4월 8일, 문과 회시(會試)<sup>103)</sup>는 강경을 마친 뒤 하루건너 시행하고, 문과와 무과 전시(殿試)는 4월 25일, 문과와 무과 방방은 오는 5월 2일 진시, 잡과 복시는 5월 13일, 잡과 방방은 5월 27일 묘시(卯時 오전 다섯 시부터 일곱 시까지)로 추택하였다.’ 고 계하 하셨습니다. 계하 하신 말씀을 봉심하여 도내 각 읍에 자세히 알려 시행할 일.” 하였다.

101) 방방(放榜) : 과거(科擧)에 합격한 사람에게 증서(證書)를 주던 일을 말한다. 문무과(文武科)는 붉은 종이에, 생원(生員)·진사(進士)는 흰종이에 이름을 써 주었는데, 붉은종이를 홍패(紅牌), 흰종이를 백패(白牌)라 하였다.

102) 강경(講經) : 조선 시대에 과거의 강경과에서 시험관이 지정하여 주는 경서의 대목을 외던 일을 말한다.

103) 회시(會試) : 지방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서울에 모아서 거행하던 등용 시험으로, 복시(覆試)·성시(省試)라 하기도 한다.

관문의 내용을 봉심하여 경내의 사인(士人)들에게 일일이 자세히 알려서 모르는 폐단이 없게 하라. 감결이 도착하는 날짜 또한 즉시 보고하여 근거해서 상고하도록 함이 마땅할 일.

二十二日. 題靈巖郡報狀.<進上海衣不善, 封進之都次知首吏朴廷直着枷上使事.>

【題】進上物種之的知其不可用, 而苟然充數 已極可駭分叱除良. 禮吏之到營逃避, 此何變怪? 首吏警覺放送是在果, 在逃時, 在進上禮吏不多日內, 如不捉上, 則都次知座首以下, 并當上使, 限死嚴治, 除尋常, 惕念舉行宜當向事.

22일. 영암군 보장을 데김하였다.<진상한 김[海衣]이 좋지 않아 봉진(封進)한 도차지인 수리 박정직(朴廷直)을 칼을 씌워 감영으로 잡아 올릴 일.>

【데김】진상한 물품이 쓸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면서도 대충 그런대로 숫자를 채운 것이 너무 심하여 가히 놀랍다. 뿐만 아니라 예리(禮吏)는 감영에 도착했다가 도망했으니 이것이 무슨 변괴인가? 수리를 정신이 들도록 타일러 내보냈으니, 도망 중인 진상(進上)을 말았던 예리를 며칠 내에 붙잡아 올리지 않으면 도차지인 좌수 이하는 마땅히 모두 감영으로 잡아 올려 죽도록 엄하게 다스릴 것이니, 대수롭게 여기지 말고 두렵고 삼가는 마음으로 거행함이 마땅할 일.

二十三日.

23일

二十四日. 新來檢律劉弘茲延命後入謁.

24일. 새로 온 검률 유흥계가 연명(延命)한 뒤에 들어와 뵈었다.

同日. 以金良三所失穀物推給事, 發關任實縣.

【關文】爲相考事. 卽接本縣民金良三呈狀, 則以爲 ‘矣身全州盤谷書院舍音舉行矣, 今月十九日黃昏時, 何許兩班稱以本孫, 作黨三十餘人突入矣家, 毆打矣身, 禾穀二十



一石沒數奪去，故追後探知，則李哥兩班與本面風憲朴謹厚，上歸老里金班及黃廷梅，同爲奪去。而同穀十石任置於連峯里朴二萬家，八石黃金兩人逢授，三石風憲朴謹厚持去是如。故來告院中，則齋任皆曰不知，世豈有如許事理乎？別加嚴治，卽令推給’亦爲有置。所謂李民名以班族，作黨無賴，劫奪他穀，此何變怪？言念風習，寧欲無言。到關卽時，同李班及隨從諸漢，一併捉致，嚴加查實。同穀物毋遺推給後，本事顛末詳查報來，以爲憑處之地爲於。狀辭如或爽實是去等，亦爲論理牒報，宜當向事。

같은 날. 김양삼의 잃어버린 곡물을 찾아 주라는 일로 임실현에 관문을 발송하였다.

【관문】 상고할 일. 임실현의 백성 김양삼(金良三)이 올린 민장(民狀)을 보니, ‘저는 전주 반곡서원(盤谷書院)<sup>104)</sup> 마름 일을 거행하고 있었는데, 금월 19일 해질 무렵에 어떤 양반이 본손(本孫)을 칭하며 30여 명이 무리를 지어 갑자기 저의 집에 쳐들어와 저를 구타하고 화곡(禾穀 나락) 21섬 전량을 빼앗아 갔습니다. 뒤를 쫓아 염탐하여 알아보니, 이가(李哥)라는 양반이 우리 면의 풍헌(風憲)<sup>105)</sup> 박근후(朴謹厚)와 상귀노리(上歸老里)에 사는 김씨 양반과 황정민(黃廷梅)과 함께 빼앗아 갔습니다.

빼앗은 곡물 10섬은 연봉리(連峯里) 박이만(朴二萬) 집에 맡겨두고, 8섬은 황정민과 김씨 양반에게 맡겼으며, 3섬은 풍헌 박근후가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반곡서원으로 돌아와 알렸더니, 서원의 재임(齋任)<sup>106)</sup>들은 모두 알지 못한다고 말하니 세상에 어찌 이와 같은 일의 이치가 있습니까? 특별히 엄하게 다스리고 즉시 명령하여 찾아 주십시오’ 라고 하였다.

이른바 ‘이가’는 명색이 양반의 족속으로 무뢰배들로 무리를 지어 남의 곡식을 겁탈하였으니 이것이 무슨 변괴인가? 풍습을 생각하자니, 차라리 말하고 싶지 않다. 관문이 도착하는 즉시 그 이가 양반과 따르는 여러 농들을 모두 붙잡아와 엄하게 사실대로 조사하라. 빼앗긴 곡물을 남김없이 찾아 준 뒤에 본 건의 전말을 상세하게 조사하여 보고하여 사건 처리의 근거로 삼아라. 민장의 말이 만일 혹은 사실과 다르거든 또한 이치를 따져 첩보함이 마땅할 일.

104) 반곡서원(盤谷書院) : 전북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에 있으며, 1771년에 지방 유림들이 건립하여 윤황(尹煌), 이영선(李榮先), 서필원(徐必遠)의 위패를 모셨다.

105) 풍헌(風憲) : 향소직(鄉所職)의 하나로, 면(面)이나 이(里)의 일을 맡아 보았다.

106) 재임(齋任) : 성균관이나 향교 따위에서 숙직하는 유생으로, 그 안의 일을 맡아보던 임원이다.

二十五日. 臨陂縣令李宜翼、井邑縣監申淳, 來見.

25일. 임피 현령 이의익(李宜翼)·정읍 현감 신순(申淳)이 와서 보았다.

同日. 題光州牧殺獄罪人金士文, 初同推狀.

【題】查案捧上是在果. 三檢已行, 九疑轉隔, 所以有會推之舉矣. 接見來牒, ‘仍是前案, 其在審克之義, 難容摸索之法’ 是如乎, 同金士文, 趙召吏等, 并具格嚴囚是如可, 待拷限, 更加嚴訊, 捧直招牒報向事.

같은 날. 광주목 살육 죄인 김사문(金士文)을 처음 동추(同推)한 보장을 데김하였다.

【데김】사안을 받아 보았다. 3차 검사를 이미 행했는데도 분간하기 어렵고 더욱 막혀 그 때문에 회추(會推)를 거행하였다. 온 첩보를 보면 ‘이 전의 검안서와 같다. 충분히 조사한다는 뜻에서 볼 때 판결 조항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하니, 김사문, 조조이[趙召吏] 등을 모두 격식을 갖추어 엄중하게 가두었다가 고한(拷限)을 기다려 다시 엄하게 묻고 정직한 진술을 받아 첩보할 일.

同日. 以移轉穀襍費申飭事, 發關古群山鎮.

【關文】爲星火舉行事. 卽接光州牧使所報, 則‘移轉皮牟, 輸納于都會所時, 下船入庭, 斛量入庫等諸般襍費, 每石爲七分錢是遣, 且劃秤庫子, 務其多入, 一石所縮, 幾爲三斗’ 是如爲置. 以該邑穀物言之, 旣以德積船載來者, 則自船頭抽性斛量, 概知其虛實然後, 仍令載船未爲不可是去乙, 何爲而逐石改斛? 下船入庫襍費也、縮穀也, 至於此, 多其襍費縮穀, 其將更爲責出於何處乎? 徒爲倉屬肥己之資, 不思多民貽弊之端. 凡百舉行, 何若是萬不成說是驗? 差使員擇差本意, 固安在哉? 且各邑船隻, 以前站護送之報觀之, 則其間想已齊到, 而尙今逗留不發者, 亦何委折? 稱以改斛改筭, 虛費日子, 夤緣生弊, 明若觀火, 若不於數日內, 畢捧裝發, 則鎮將斷當拿致嚴棍, 除尋常, 各別惕念舉行, 宜當向事.

같은 날. 이전(移轉)하는 곡물의 잡비를 신칙(申飭)하는 일로 고군산진에 관문을 발송하였다.

【관문】 급히 거행할 일. 광주목사가 보고한 것을 보니 ‘이전하는 걸보리를 도회소(都會所)<sup>107</sup>로 실어 나를 때 배에서 내려 관아에 들이고, 곡(斛)<sup>108</sup>으로 헤아려 창고에 들이는 제반 잡비는 매 섬에 7푼전이 되며, 또 바둑판처럼 공평하게 그어 주어야 할 고지기[庫子]는 많이 들이기를 힘써 한 섬에 축나는 양이 거의 3두가 된다.’ 고 합니다.

해당 읍의 곡물로 말하자면, 이미 덕적(德積)의 배로 실어 온 것은 뱃머리부터 제비뽑기하여 곡(斛)으로 헤아려 대략 그 허실을 알은 뒤에야 배에 실어 좋지 않음이 없게 했어야 하거늘, 어찌하여 곡물 섬에 따라 곡을 바꾸었는가? 배에서 내리고 창고에 들이는 잡비와 곡식이 줄어든 것이 이 정도까지 이르렀으니, 잡비와 줄어든 곡식의 많은 양을 장차 다시 어디에서 독책하여 내놓게 하겠는가? 단지 창속(倉屬)이 자신을 살찌우는 바탕으로 삼고 허다한 백성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단서를 생각하지 않은 것이다.

모든 행했던 일들이 어찌 이와 같이 말이 안 되는 것이 많은가? 차사원(差使員)을 차출한 본의가 진실로 어디에 있었겠는가? 또 각 읍의 배는 이전 역참에서 호송하는 보고로 보면, 생각건대 그 사이에 이미 모두 도착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머물러 있으며 떠나지 않는 것은 또 무슨 곡절(曲折)인가? 곡을 바꾸고 시(筭)를 바꾸었다고 일컫는 것은 허비한 날짜와 관련하여 생긴 폐단이 명약관화하니, 만약 수일 내에 모두 거두어 실어 보내지 않는다면 진장(鎭將)은 결단코 마땅히 잡아다 엄하게 곤장으로 다스릴 것이니, 보통으로 여기지 말고 각별히 삼가고 두려운 마음으로 거행함이 마땅할 일.

107) 도회소(都會所) : 모두 모이는 곳이란 의미인데, 사안에 따라 임시로 설치하는 갖가지 도회소를 오래 도계(道界)의 머리가 되는 고을에 설치하였기 때문에 계수소(界首所)와 같은 의미로 쓰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보통 도회소는 공도회(公都會)를 여는 곳을 말한다. 공도회는 각도(各道)의 감사(監司) 및 개성(開城)·강화(江華)의 유수(留守) 등이 관내의 유생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소과(小科) 초시(初試)를 말한다. 보통 6개월마다 교생(校生)을 선발하여 한곳에 모아 놓고 문관(文官) 3원을 파견하여 강론(講論)이나 제술(製述) 등을 실시한 뒤에 성적이 우수한 자를 계문(啓聞)하여 복시(覆試)에 응시할 자격을 부여하였다. 따라서 서울에서 각도(各道)에 이르는 큰 길에 인접해 있는 고을이나 그 고을의 수령을 말할 때는, 도회관(都會官)이라고 하기도 한다.

108) 곡(斛) : 곡(斛)의 본음(本音)은 흑, 속음(俗音)은 곱이다. 부피를 뜻하는 ‘휘(斛)’, ‘섬[石]’의 뜻으로 곡식의 양을 헤아리는 데 쓰이는 말이다. 일반에서는 20말[斗]을 1곱으로 하고, 관부에서는 15말을 1곱으로 하였는데, 20말을 전석(全石), 15말을 평석(平石)이라 한다. 섬의 10분의 1을 대두(大斗) 1말이라 하고, 가마니의 10분의 1을 소두 1말이라 한다. 따라서 섬은 대두로 10말이고, 소두로는 20말이다.(박성훈, 『單位語辭典』, 民衆書林, 1998, 62쪽)

二十六日. 臨陂縣令、井邑縣監, 入見辭去.

26일. 임피 현령 · 정읍 현감이 입견하여 하직하고 갔다.

同日. 題全州府檢案.<被告鄭連伊, 和奸李女, 則李女夫金大叔不勝羞憤, 自縊致死事. 初檢官全州判官李義平, 覆檢官益山郡守李源吉.>

【題】屍帳棒上是在果. 大凡檢獄之體, 主之以傷痕, 叅之以看證, 推究乎情跡之間, 較絜乎供招之中, 吻然符合, 的爲證左然後, 始可爲完案是去乙. 此獄段, 以言乎傷痕, 則囊皮磨脫, 雖云分野之緊重, 而更無凶門發紅, 齒牙脫落等, 必死形症是遣. 頰頰縊痕, 雖是自裁之形痕, 而屍身既云跪坐掛項是隱則, 何爲色黑微硬, 偏在左邊 而右邊則柔軟如常是隱喻? 致死實因終無的證一也. 以言乎看證, 則事在暮夜, 夫婦相詰 是如可, 俄頃之間, 變出房內是遣. 隣比張大益崔碩三等段置, 追聞李女號哭之聲, 晚時來救於屍身, 既殞之後, 則伊前光景看證無人二也. 以言乎情跡, 則醉夫姦婦相詰追逐是如可, 婦無傷痕, 夫乃自縊, 畢竟解套, 亦非別人, 則魂驚手慌, 倘復如何? 而套索則依舊垂樑, 屍體則安臥枕上? 又何其若是雍容是隱喻? 情跡之不能無疑三也. 以言乎供招, 則初檢時, 李女鄭哥之初再招, 始則爛熳同歸是如可, 及夫申貴得之招出而奸情節節綻露, 對質言言牴牾, 以一概十, 安知非前後納供之都是粧撰是乙喻? 供招之不可取信四也. 案既未完, 何以憑處是乙喻? 兩檢官, 仍定會查官爲去乎, 卽爲會坐, 同鄭哥李女等身乙, 以右項諸條發問目, 嚴訊取招爲旆. 錢貨之曰債曰報, 去來太不分明, 田土之其賣其稅段落, 亦甚鶻突. 苟於是而深究密覈, 庶或有端緒之可見是乙喻. 錢之百五十兩云者, 六十兩云者, 木花價云者, 田地買得云者, 賭地云者逐條覈實, 舉數究竟爲旆. 李女初欲結項於大叔所縊之索是如可, 爲崔碩三力挽而止與否, 及鄭哥李女面質時, 李女所謂大叔之死, 全由於汝云云, 鄭哥所謂汝殺汝夫, 而欲爲嫁禍於我云云到底窮查, 卽速牒報爲旆. 屍體段, 停留恰過一旬, 變動之餘, 更難行檢, 卽爲出給埋座是遣. 應問各人段, 申貴得, 崔碩三外, 一併放送爲旆. 檢驗文字何等審慎, 而覆檢案中, 令此致之下, 脫一死字, 快活之活字, 誤書以濶字, 舉行刑吏, 爲先附過事初檢官良中枚移, 施行向事.

같은 날. 전주부 검안을 데김하였다.<피고 정연이(鄭連伊)가 이녀(李女)와 화간(和奸)하니, 이녀의 남편 김대숙(金大叔)이 수치와 분통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을 매 죽은 일. 초검기관

전주 판관 이희평, 복검시관 익산 군수 이원길.>

【데김】시장(屍帳)을 받아 보았다. 대체로 옥사(獄事)를 조사하는 실체는, 상흔을 중심으로 본 것을 말한 사람을 참고로 하여 사건 정황 사이를 따져 규명하고, 진술한 것 가운데서 비교하고 헤아려 입술이 꼭 맞듯 부합되어 확실하게 증좌(證左)로 삼을 수 있는 연후에야 비로소 완전한 검안(檢案)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이 옥사는 상흔으로 말하자면, 낭피(囊皮)가 닳고 벗겨져 비록 부위가 매우 중요한 곳이나, 더욱이 신문(凶門)이 붉은 색<sup>109)</sup>을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할지라도 치아가 탈락한 것 등은 반드시 죽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다.

아래턱에 목을 맨 흔적은 비록 자살한 형태의 흔적이라고 해도 시신이 이미 끓어얇은 채 목을 매달았다고 말하였으니, 그렇다면 어떻게 흑색으로 약간 굳은 것이 좌측으로 치우쳐 있으며, 우측은 보통 때와 같이 부드럽고 연한 것인가? 죽은 실인은 끝내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 하나이다.

본 것을 말한 자에 의하면, 사건이 으스스한 밤에 있었고, 부부간에 서로 말싸움을 하다가 잠깐 사이에 번스러운 일이 방안에서 일어났으며, 가까이 이웃한 장대익(張大益)·최석삼(崔碩三) 등도 뒤이어 이녀(李女)의 호곡(號哭)소리를 들었으나 때늦게 와서 시신을 처리하는데 도와주었으니, 이미 죽은 뒤라면 그 전의 광경을 보고 말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 둘이다.

정황으로 말하면, 술에 취한 남편과 간음한 아내가 서로 힐문하며 쫓고 쫓기다가 아내는 상흔이 없고 남편은 스스로 목을 매었는데, 결국 남편의 씩운 것을 풀은 사람 또한 다른 사람이 아니니 정신은 놀라고 손은 어리둥절하여 혹시 다시 어찌하였겠는가? 묶은 끈은 그대로 대들보에 내걸려 있는데 시체는 어찌하여 침상(枕上) 위에 누워 있는가? 또 어찌하여 이와 같이 편안하고 조용한가? 정황이 의심이 없지 않음이 셋이다.

진술한 것으로 말한다면, 초검할 때에 이녀(李女)와 정가(鄭哥)의 처음과 두 번째 진술에서 처음엔 난만(爛漫)했던 것이 같은 데로 귀결되다가, 사내 신귀득(申貴得)의 공초가 나오자 간정(奸情)이 절절히 탄로 나서 대질한 말들이 어긋나니, 하나로 열을 개략하면 전후에 진술을 받아낸 모든 것이 꾸며낸 것이 아니라고 어찌 장담하겠는가? 진술을 믿고 취할 수 없다는 것이 넷이다.

109) 신문(凶門)이 붉은 색 : 신문은 정수리 또는 숫구멍인데, 『무원록』 「관척반조(官尺半條)」에 “신낭(腎囊)이 다쳐서 까지면 신문(凶門)에 피가 맺혀 붉다.[腎囊傷破, 凶門血紅]” 하였다.

검안이 미완성인데 어떻게 옥사를 처리할 근거로 삼을 수 있겠는가? 양검관은 그대로 함께 자리를 열어 정가와 이녀의 몸을 위의 제 조목으로 문목을 내어 엄히 형신하여 진술을 받아라. 금전에 대해서는 ‘빛진 것이다’ 고 하기도 하고, ‘값은 것이다’ 고 하기도 하여 거래가 매우 불분명하고, ‘전토를 팔은 것이다.’ ‘세금이다.’ 라는 단락 또한 매우 분명하지 않다. 진실로 이에 빈틈없이 조사하여 깊게 찾는다면 거의 흑 단서를 볼 수 있을는지 모르겠다. 돈 1백 5십 냥이라고 한 것과 6십 냥이라고 한 것과 전지(田地)를 사들였다고 말한 것과 도지(賭地)<sup>110)</sup>라고 말한 것을 조목에 따라 사실을 조사하고 낱낱이 헤아려 끝까지 파헤쳐라.

이녀가 애초에 남편 김대숙(金大叔)이 목을 맨 끈에 목을 매려다가 최석삼이 힘으로 잡아당겨 그치게 된 여부와 정가와 이녀 대질(對質) 시에 이녀가 이른바 ‘김대숙’ 이 죽은 것은 모두 정가 너 때문이라고 말한 것과, 정가가 이른바 ‘네가 네 남편을 죽이고 나에게 덮어씌우려 한다고 말한 것’ 을 끝까지 모두 조사하여 즉시 첩보하라. 시체는 정제하여 머뭇이 꼭 열흘이 지나 변한 나머지 다시 검안하기 어려우니 바로 내주어 묻게 하라. 물음에 응한 각 사람들의 경우 신귀득·최석삼 외 모두 석방하라.

검험한 문자는 무엇보다도 자세하고 신중해야 하는데도 복검안 가운데 ‘영차치지(令此致之)’ 아래 ‘사(死)’ 자(字) 하나를 탈락(脫落)시켰고, 쾌활(快活)의 ‘활(活)’ 자를 ‘활(濶)’ 자로 잘못 썼으니, 거행한 형리(刑吏)는 우선 부과(附過)하게 할 일을 초검시관에게 공문을 보내어 시행할 일.

同日。以羅州牧年例礪石以錢代捧事，發關兵營。

【關文】爲相考事。筋到付羅州牧使牒呈內，“本州年例，訓練都監納礪石二十二塊，兵營納礪石六十塊以錢代納，俾除民弊事，向於論報營門，粘報訓局矣，卽到回題內，‘軍器所用礪石，年例卜定於該牧者，已多年所。雖難遽議代錢是矣，旣云墮深脉斷，易致傷人，依所報施行是矣，並情費，每塊一兩五錢式定式知悉舉行.’ 亦爲有等以，考還次粘付上使” 亦爲有置。今此礪石之先自京營許以代捧，特出於爲民除弊是隱則，本營所納段置，亦不可異同是如乎。從今以後，一依京營上納例，同礪石以代錢捧上，給價貿用，則營邑俱得便宜之道，依此定式，永久遵行爲宜，相考施行向事。

110) 도지(賭地) : 일정한 대가를 주고 빌려 쓰는 논밭이나 집터를 말한다.

같은 날. 나주목이 연례로 바치는 숫돌을 돈으로 대봉(代捧)하는 일로 병영(兵營)에 관문을 발송하였다.

【관문】 상고할 일. 이번에 받아본 나주목사의 첩정(牒呈) 안에, “나주에서 연례로 훈련도감에 바치는 숫돌 22덩어리와 병영에 바치는 숫돌 60덩어리를 돈으로 대신 바치게 하여 민폐를 없애게 하는 일을 지난번에 감영에 논보(論報)한 것을 첨부하여 훈국(訓局)<sup>111)</sup>에 보고하였더니, 이번에 도착한 회제(回題)에, ‘군기소(軍器所)가 쓰는 숫돌은 연례로 해당 목(牧)에 복정(卜定)<sup>112)</sup>한 것이 이미 오래된 바이다. 비록 갑자기 돈으로 대신하자는 의견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미 광(曠)이 깊고 맥(脈)이 단절되어 사람들이 다치기 쉽다고 말하니 보고 한대로 시행하라. 아울러 정비(情費)<sup>113)</sup>는 매 덩어리마다 1냥 5전씩으로 정식(定式)하고 모두 다 알게 하여 거행하라.’ 하였습니다. 고환(考還)하기 위해 점련해서 관찰사께 올립니다.” 하였다.

지금 이 숫돌은 우선 경영(京營)<sup>114)</sup>에서부터 돈으로 대봉(代捧)하는 것을 인정하고, 특별히 백성을 위하여 폐단을 없애는 것에서 나온 것이니 전라감영에 바치는 것들도 또한 다르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지금부터 이후로 한결같이 경영에 상납(上納)한 예에 따라 숫돌을 돈으로 대신 받아서 값을 주고 사서 쓰면 영읍(營邑)이 모두 편리할 것이다. 이를 정식으로 삼아서 영구하게 준행함이 옳으니 상고(相考)하여 시행할 일.

同日. 以運牟五千石姑俟籌司回題之意, 回移錦營.

【回移】 爲相考事. 卽到貴移是置有亦. 弊道分劃, 移轉皮牟二萬石內, 一萬石艱辛收聚, 今方裝運, 而一萬石散在峽邑, 陸運無路之由, 前已枚移是在果. 今番移運一萬石中, 二千五百石, 到江華除置, 五千石, 到通津卸下, 二千五百石, 傳授於廣州府之意, 籌關前已下來, 則今此貴道區劃條, 五千石之不入於今番運納條者, 明甚無疑是如乎. 勢不得不就未輸納一萬石中劃送, 而同一萬石, 皆在於距浦口絕遠之邑, 輸運未

111) 훈국(訓局) : 조선 때 삼군문(三軍門)의 하나인 훈련도감(訓練都監)을 말하며, 서울의 경비(警備)와 군사(軍事) 훈련(訓練)을 맡았다.

112) 복정(卜定) : 조선 시대 공물(貢物) 이외에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상급 관청에서 결정하여 하급 관청으로 하여금 각 지방의 토산물을 강제로 납입케 하는 일을 말한다.

113) 정비(情費) : 조세를 바칠 때에, 비공식으로 아전들에게 주던 잡비를 말한다.

114) 경영(京營) : 서울에 있던 훈련도감(訓練都監). 금위영(禁衛營), 어영청(御營廳), 수어청(守禦廳), 총융청(總戎廳), 용호영(龍虎營)의 총칭이다.

由，故具由論報於籌司，姑未承回題，待回題追于文移計料爲去乎。相考施行尙事。

같은 날. 운모(運牟) 5천석은 우선 비변사의 회제를 기다려야 한다는 뜻을 금영(錦營 총청감영)에 회이(回移)함.

【회이】 상고할 일. 이번에 귀도(貴道)의 이문이 도착하였습니다. 저희 도가 분획(分劃)하여 이전(移轉)할 걸보리 2만 섬 내에 1만 섬을 간신히 거둬 모아 지금 막 실어 운반하고, 1만 섬은 협읍(峽邑)에 산재해 있어 육로로 운반할 길이 없다는 이유를 전에 이미 공문(公文)을 보냈습니다.

금번 이운(移運)하는 1만 섬 가운데, 2천 5백 섬은 강화에 도착하여 덜어 주고 5천섬은 통진에 도착하여 풀어 내리고, 2천 5백 섬은 광주부에 전달해준다는 뜻을 비변사 관문으로 전에 이미 내려 보냈으니, 지금 귀도에 구획된 조건 5천섬이 금번 운송되어 바치는 조건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매우 의심이 없음을 밝힙니다.

형편상 실어다 바치지 못한 1만석 가운데 획급(劃給)하여 보내지 않을 수 없는 데, 형편상 실어다 바치지 못한 1만석은 모두 포구와의 거리가 매우 먼 읍에 있으니, 실어 나를 방도가 없기 때문에 이유를 갖추어 비변사에 논보하였으나, 아직 회제를 받지 못하였으니 회제를 기다려 추후에 공문을 보낼 요량입니다. 상고(相考)하여 시행할 일.

二十七日. 錦山郡守李魯榮, 咸悅縣監洪在果, 益山郡守李源吉來見.

27일. 금산 군수 이노영(李魯榮) · 함열 현감 홍재과(洪在果) · 익산 군수 이원길(李元吉)이 와서 보았다.

同日. 以運牟裝發催促事, 發關古群山鎮.

【關文】 爲星火舉行事. 各邑移轉皮牟, 旣自該邑簸揚 準斛一石, 添入爲一斗有餘云, 則都會所捧上時, 苟能另加檢飭, 每石見縮, 豈至此多是旣? 見縮之穀, 往復該邑, 待其來到後, 始欲裝載, 則其將經歲後發船是乙喻? 前後舉行, 萬萬駭然是遣. 且各邑船隻, 今旣齊到, 則以靈巖一邑船之未到, 至于今逗留不發者, 抑何委折? 見今冰合在, 卽上納時急. 靈巖船隻火速追到之意, 今方發關該邑爲去乎. 亦自都會所, 一邊文移往



復，俾卽罔夜迫到於前洋是遣，已到船隻段，不日內領發爲乎矣，如或晷刻稽滯，則鎮將段，拿致嚴棍分叱除良，斷當狀罷，除尋常，惕念舉行，宜當向事。

같은 날. 운모를 실어 보내는 것을 재촉하는 일로 관문을 고군산진에 보냄.

【관문】 급히 거행할 일. 각 읍에서 이전하는 걸보리는 이미 해당 읍에서 파양하였는데 곡자(斛子)로 기준하여 한 섬에 더 들여 넣은 것이 한 말 남짓이 된다고 하는데, 도회소에서 받을 때 진실로 별도로 조사하고 단속하였다면 매 섬마다 부족하게 된 것이 어찌 이렇게 많게 되었는가? 축난 곡식을 해당 읍에 왕복하게 하여 그것이 돌아오길 기다린 뒤에야 비로소 꾸려 실으려고 한다면, 장차 해가 지난 뒤에야 배를 떠나보내려 하는가? 전후의 거행이 매우 놀랍다.

또 각 읍의 배는 지금 이미 모두 도착하였는데, 영암 한 읍의 배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머물면서 출발하지 않는 것은 또 무슨 곡절인가? 지금 얼음이 얼어있으니 즉시 상납이 시급하다. 영암 선박은 급히 뒤쫓아 도착해야 하는 뜻을 지금 막 영암읍에 관문을 발송했다. 또한 도회소로부터 한편으로 문이를 왕복하여 즉시 밤낮 없이 앞 바다에 뒤쫓아 도착하게 하고, 이미 도착한 배는 하루 안에 거느리고 출발하되, 만약 혹 잠깐 동안이라도 머뭇거리며 지체하면 진장(鎭將)은 잡아 엄하게 곤장으로 다스릴 뿐만이 아니고 결단코 마땅히 장계(狀啓)를 올려 파직(罷職)시킬 것이니, 보통으로 여기지 말고 두려운 마음으로 삼가 거행함이 마땅할 일.

同日. 以運牟護送申飭事，文移畿營錦營。

【移文】 爲相考事. 弊道區劃，均廳移轉皮牟一萬石，所載船上去時，依稅船例，護送之意，前已文移是在果. 卽接差使員古群山僉使所報，則各邑穀物，今纔齊到是如爲置，裝發日子，雖未及報來，必當不日內，發船乙仍于，茲以文移爲去乎. 貴道沿海邑良中，預先知委，俾無未及之弊爲宜，相考施行向事。

같은 날. 보리 운송을 호송하는 것을 거듭 신칙할 일로 기영(畿營)과 금영(錦營)에 공문을 보냈다.

【이문】 상고할 일. 본도에 구획(區劃)된 것을 균역청에 이전할 걸보리 1만석을

실은 배를 위로 보낼 때 세선(稅船) 예에 따라 호송하라는 뜻을 전에 이미 공문을 보냈습니다.

방금 차사원(差使員) 고군산 첨사(僉使)가 보고한 것을 보면 각 읍의 곡물이 지금 겨우 일제히 도착하였다고 하니, 신고 떠나는 날짜를 비록 아직 보고해오지 않았으나 필시 마땅히 즉시 배를 떠나보내야 할 것이므로 이에 공문을 보냅니다. 귀도(貴道)의 연해읍에 미리 우선 자세히 알려 기한에 미치지 못한 폐단이 없게 함이 마땅하니 상고(相考)하여 시행할 일.

同日. 以靈巖郡運牟星火到泊於都會所事, 發關該郡.

【關文】爲星火舉行事. 卽接古群山僉使所報, 則“各邑皮牟船隻, 今皆齊到, 惟獨本邑船, 尙未來到”是如爲置. 本邑船裝發之報, 已過一朔, 尙不到泊於都會所, 騎船監色輩, 苟能着意董督, 寧有是理? 見今氷合在, 卽上納時急, 故發關都會所, 使之先爲發船爲去乎. 自本邑別定勤幹監色, 星火前進, 追及於差使員所到處, 一齊上納爲乎矣. 如或未及, 則不待更關, 首吏鄉竝着枷上使爲旆. 不飭之失, 亦當狀聞論勸, 除尋常, 惕念舉行, 宜當尙事.

같은 날. 영암군 운모를 급히 도회소에 이르게 할 일로 해당 군에 관문을 발송하였다.

【관문】급히 거행할 일. 이번에 고군산 첨사(僉使)가 보고한 내용을 보니 “각 읍의 걸보리 운반배가 지금 모두 일제히 도착했는데, 유독 영암군의 배가 아직도 도착하지 않았다.” 라고 한다.

영암의 배가 꾸러 신고 떠났다는 보고가 이미 한 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도회소에 이르러 정박하지 않은 것은 기선감색(騎船監色)<sup>115)</sup>무리들이 진실로 뜻을 두어 감독하고 독촉하였다면 어찌 이와 같을 리가 있겠는가? 지금 얼음이 얼어있으니, 즉시 상납함이 시급하기 때문에 도회소에 관문을 발송하여 우선 배를 떠나보내게 한다. 영암군으로부터 특별히 지정한 부지런하고 성실한 감색(監色)을 급히 내달려 차사원이 도착한 곳에 뒤쫓아 이르게 하여 다 같이 상납하게 하라.

만일 혹 이르지 못하면 다시 관문을 기다릴 것 없이 수리향(首吏鄉)을 아울러 칼을 썩워 감영으로 잡아 올려라. 단속하지 못하는 잘못 또한 마땅히 장계(狀啓)

115) 기선감색(騎船監色) : 세곡 조운(漕運)하는 것을 감독하기 위해서 조운선(漕運船)에 함께 타고 가는 감관(監官)과 색리(色吏)를 말한다.

로 아뢰어 논감(論勘 따져 물음)할 것이니, 보통으로 여기지 말고 두려운 마음으로 삼가 거행함이 마땅할 일.

二十八日. 錦山郡守、咸悅縣監、益山郡守, 入見辭去. 金溝縣令金錫喜來見.

28일. 금산 군수·함열 현감·익산 군수가 입견하여 하직하고 갔다. 금구 현령 김석희(金錫喜)가 와서 보았다.

二十九日. 金溝縣令入見辭去. 判官入見.

29일. 금구 현령이 입견하여 하직하고 갔다. 판관이 입견하였다.

同日. 題高敞縣報狀.<出派李道成, 稱以還穀代錢, 呈營呈邑之費, 收斂於民, 而言辭悖妄, 舉措驚駭事.>

【題】所謂出坐派政, 欲隨現痛鋤是加尼. 近日還穀拒納之大違所料, 固慮其興訛愆憑之必有其人. 今見所報, 萬萬駭痛, 同李道成, 爲先以別杖箇箇考察, 嚴刑一次, 取招牒報, 以爲懲一儆百之地向事.

같은 날. 고창현 보장을 데김하였다.<파견되어 나온 이도성(李道成)이 환곡을 돈으로 대신한다고 칭하며 감영과 읍에 올리는 비용을 백성에게 거두면서, 언사가 어긋나고 망령되며 행동거지가 매우 놀라운 일.>

【데김】 이른바 ‘출좌파정(出坐派政)<sup>116)</sup>’은 드러나는 대로 엄격하게 없애고자 하였다. 최근 환곡미 납부를 거부하는 것이 생각했던 바와 크게 다른 것은 진실로 그 잘못을 부추기며 권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우려 되었다. 보고한 바를 보니 매우 놀랍고 통탄스럽다. 이도성은 우선 별장(別杖)으로 개개고찰(箇箇考察)하고 엄히 1차 형신하여 진술을 받아 첩보하여 한 사람을 징계하여 여러 사람을 경계하는 바탕으로 삼을 일.

116) 출좌파정(出坐派政) : 이른바 아전들이 정무(政務)를 볼 때 나쁜 행태의 하나로, 사안에 적극 개입하는 것을 출파(出派)라 하고, 앉아서 사변적으로 하는 것을 좌파(坐派)라 한다.

同日. 因刑曹關封發長城、咸悅、鎮安殺獄罪人等查啓.

【跋辭】長城金福右獄事. 此獄段, 以前後檢查諸案觀之, 則崔宗完之死, 由毆打既係的確, 金福右之罪, 在元犯別無疑端, 而今番查官之所申覈, 亦極詳備, 而無餘蘊是白如乎. 厥妻之屢度鳴冤, 雖云一獄兩償, 而渠父之隔日致死, 何嘗互毆并命乎? 徒歸瀆擾, 極涉駭惋是白乎矣. 當初福右之不遺力行打, 實由宗完之與渠父相鬪, 則事非故惹, 意在救父是白遣. 或慮惡名之歸於老父, 自甘殺犯之引, 以首實云者, 真有是心, 合原其跡, 而至於割臂, 療母一款, 查官亦以爲不干本事, 有難登諸查案云. 而以若常賤, 有此異行, 則爲親辦死可以推知, 苟欲紀善, 倘足掩罪是白乎乙喻? 獄體至嚴, 不敢臆斷, 令該曹稟處爲白只爲.

【跋辭】咸悅金之彭獄事. 此獄段左脇之骨損血暈, 左膀之肉貼紫硬, 傷痕既的, 兩檢同然. 而手自執髻, 渠亦納供, 詞證俱備, 斷案既成是白去乙. 妄生掉脫之計, 有此呼籲之舉, 究厥情跡, 轉益兇狡是白如乎. 惟是打麥趁市, 俱在受磕之後, 染疾用藥, 亦有屍親之供, 渠所以藉口呼冤, 卽此二條是白乎, 乃傷痕莫掩, 獄體至嚴, 傳輕之典有難遽議是白乎矣. 擊錚罪人金煥奎段, 渠以遐鄉村氓, 冒稱幼學顯官班名等說, 極其無嚴是白分叱不喻, 行檢本因面報而謂無發告, 出殯不過土壟而謂之掘檢, 初覆檢案一同無異而謂之覆檢反案. 誣罔天聽, 搆捏檢官, 不可以爲父訟冤有所容貸, 自臣營, 從重科治計料爲白乎矣, 緣由謹具啓聞.

【跋辭】鎮安金於仁老未獄事. 此獄段, 向前審理時, 詳考顛末, 叅究情跡, 多見可疑端. 竊附惟輕之義是白加尼, 曹讞之請, 令更查實, 出於慎重獄體之意, 則豈敢自信初見, 不思奉而舉行? 而第念原獄已過十年, 應問餘存無幾, 雖欲更覈, 難得其詳是白乎矣. 蓋始倡者化同, 而先犯者春甲也. 以其末後助踢, 仍以斷成死因者, 終欠的確, 殊違審克, 故屢回裁量, 置之存疑是白乎所. 被罪者不能無憾, 執法者不得無疑, 曹啓所論亦云如此, 則到今更究實, 無他見是白置, 令該曹稟處爲白只爲.

같은 날. 형조의 관문에 의거하여 장성·함열·진안의 살육 죄인 등의 조사를 봉서(封書)로 발송하였다.

【발사(跋辭)】장성 김복우(金福右)의 옥사. 이 옥사는 전후에 검사한 여러 문서로 보면 최종완(崔宗完)의 죽음은 구타와 관계된 것이 이미 분명하고, 김복우의 죄는 원범(元犯)이라는 것이 별로 의심할 단서가 없고 금번 사관(查官)이 거듭 파

해쳤으니, 또한 지극히 자세하게 구비되어 더할 것이 없습니다.

그의 처가 여러 번 원통함을 호소하니, 비록 하나의 송사로 두 사람을 사형에 처한다고 말할지라도 김복우의 아버지가 하루건너 죽은 것이 어찌 일찍이 서로 때려 같이 죽었다고 하겠는가? 그런데도 단지 소란스럽게 하는 것으로 돌리니 지극히 놀랍고 한탄스럽습니다.

당초 김복우는 힘껏 때렸다는 것이 남아있지 않고, 실제로 최종완이 김복우의 아버지와 서로 다투었으니, 일이 고의로 야기한 것이 아니고 뜻이 아버지를 구원하려는데 있었습니다. 혹 노부(老父)에게 악명이 돌아갈 것을 우려하여 살인을 저지른 다름을 스스로 감수하고 사실을 자백한다고 말한 것은 진실로 이러한 마음이 있었으니, 마땅히 그 행적을 정상참작 해야 합니다.

불기를 베어 어머니를 낫게 하려는 한결같은 정성을 보인 것은 조사하는 관리 또한 본 옥사와 관계됨이 없다고 여겨 사안(査案)에 올리기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상농과 천민 같은 사람도 이렇게 기특한 행실이 있다면 부모를 위하여 죽기로 힘쓰는 것을 미루어 알 수 있으니, 진실로 선행을 기념하고자 한다면 혹시라도 죄를 덮어줄 수 있겠습니까? 송사를 다스리는 일은 지극히 엄정하여 감히 억측으로 판단할 수 없으니, 해당 관청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십시오.

【발사】 함열 김지팽(金之彭)의 옥사. 이 옥사는 좌측 겨드랑이 뼈가 손상되고 출혈이 심하여 혼미한 상태[血暈]이고 왼쪽 사타구니 살이 자주색으로 경화되어 있어, 상흔이 분명함이 두 차례 검사가 마찬가지로입니다. 손수 직접 상투를 잡은 것을 그 또한 심문할 때 진술하여 증언이 모두 갖추어져 단안(斷案)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망령스럽게 벗어나려는 꾀를 내어 이렇게 부르짖음이 있으니, 그 정황을 규명하면 더욱 흉악하고 교활합니다.

오직 보리를 타작하고 시장으로 쫓아갔다고 하는 것은, 모두 으깨짐을 당한 뒤에 있었고 염질(染疾)에 약을 쓰는 것 또한 시친의 공초에 있으니, 그가 핑계대며 원통함을 호소하는 것은 바로 이 두 조항인데, 오히려 상흔을 가리기 어렵고 옥체는 지엄하니, 가볍게 전하는 법전으로 갑자기 의론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격쟁(擊錚)<sup>117)</sup> 죄인 김환규(金煥奎)는 먼 향촌의 백성으로 유학(幼學), 현관(顯

117) 격쟁(擊錚) : 조선 시대에 원통한 일이 있는 사람이 임금에게 하소연하기 위하여 거동(舉動)하는 길가에서 징이나 팽과리를 쳐서 하문(下問)을 기다리던 일을 말한다. 신문고(申聞鼓)를 폐지한 후에,

官), 반명(班名) 등의 말을 외람되게 칭하니 지극히 무엄할 뿐만 아니라, 검사를 행한 것은 본래 면(面)에서 보고한 것으로 인하였는데도 발고(發告) 자가 없다고 말하고, 출빈(出殯)<sup>118)</sup>은 임시로 만든 무덤에 불과한데도 묻었던 시체를 파내어 검사했다고 말하며, 초, 복 검안이 모두 같아 다름이 없는데도 복검시관이 번복했다고 말합니다. 성상(聖上)을 속이고 검시관을 잘못되게 엮어 아버지를 위하여 송원(訟冤)한 것으로 관대히 용서할 바가 있을 수 없으니, 신의 감영에서 무거운 죄과를 따라 다스릴 요량이며 이러한 연유로 삼가 갖추어 아뢰니다.

【발사】 진안 김어인노미(金於仁老未) 옥사. 이 옥사는 예전 심리할 때 전말을 자세하게 따지고 정황을 비교하여 파헤쳐 의심할 만한 단서가 많이 보였습니다. 삼가 오직 가벼운 쪽으로 처벌하는 뜻에 합의 했습니다. 그런데 형조 의견이 다시 사실대로 조사하게 한 것은 송사를 신중하게 여기는 뜻에서 나왔으니, 어찌 감히 처음 견해를 자신하여 받들어 거행할 것을 생각지 않겠습니까? 다만, 원옥(元獄)이 이미 10년이 지나 문목(問目)에 응할 남아있는 자가 거의 없어 비록 다시 조사하고자 할지라도 그 자세함을 얻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시작은 김화동(金化同)이고 먼저 범한 자는 장춘갑(張春甲)입니다. 그 등 뒤에서 발로 찬 것을 도운 것으로 바로 사인(死因)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한 것은 끝내 적확함에 하자가 있어 충분히 조사하는 뜻에 매우 어긋납니다. 때문에 누차 판단하여 처리하였으나 의심이 있는 채로 버려두었던 것입니다. 죄지은 자는 유감이 없을 수 없고 법을 집행하는 자는 의심이 없을 수 없으나 형조 조계에서 논한 바가 또한 이와 같다고 하고, 지금에 이르러 다시 사실을 규명해도 다른 견해가 없다고 하니 해당 관아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십시오.

三十日. 判官入見.

---

재판에 불복한 자로 하여금 팽과리를 쳐서 임금에게 호소하게 했는데, 자손이 조상을 위하여, 처가 남편을 위하여, 동생이 형을 위하여, 종이 주인을 위하여 하는 4가지 경우 외에 함부로 격쟁하는 것을 금했다. 사리에 맞지 않는 것을 송사하기 좋아하여 격쟁한 사람은 장 100대에 유(流) 3천 리에 처하게 하며, 수령을 유입시키기 위하여 격쟁한 자는 장(杖) 100대를, 중한 자는 도(徒) 3년형에 처하게 했다.

118) 출빈(出殯) : 장례 지내기 전에 집 밖에 차린 빈소(殯所)에 시신을 내어다 놓는 것을 말한다.

30일. 판관(判官)이 입견하였다.

同日. 封敎文祇受啓.

【狀啓】武兼宣傳官鄭在天，賚來頒敎文今十一月二十九日，臣在全州府祇受，卽爲頒布各邑爲白乎於。敎文段，還封上送爲白臥乎事。

같은 날. 교지(敎旨)를 공경히 받았음을 장계를 써서 봉하였다.

【장계】무겸선전관(武兼宣傳官)<sup>119</sup> 정재천(鄭在天)이 이번 11월 29일에 반교문(頒敎文)<sup>120</sup>을 가지고 와서 신 서유구는 전주부에서 공경히 받아 즉시 각 읍에 반포(頒布)하였습니다. 교문(敎文)은 다시 밀봉하여 올려 보냅니다.

同日. 題靈巖郡報狀.<逃走禮吏金仲石、朴昌俊，押直上使事.>

【題】金仲石段，懲礪放送，朴昌俊段，逃竊之罪，不可一次刑訊而止乙仍于，枷囚是在果。言念紀綱，萬萬寒心向事。

같은 날. 영암군 보장을 데김하였다.<도주한 예리 김종석(金仲石)·박창준(朴昌俊)을 감금하여 감영으로 잡아 올릴 일.>

【데김】김종석은 징계하여 내보내고, 박창준은 도망간 죄로 1차 형신하여 그쳐서는 안 됨에 따라 죄인의 목에 칼을 씌어 가두어라. 기강을 생각하면 매우 한심한 일.

同日. 題泰仁縣檢案.<正犯僧萬成，以門擗打鄭仁得，第十二日致死事。初檢官泰仁縣監沈能淑，覆檢官井邑縣監申淳.>

【題】屍帳捧上是在果。脉錄傷痕，兩檢沕合，當場看證衆招歸一分叱不諭，兇身再供無異輸款，正犯之目，更何所歸？勒加强盜之目，暗售索賂之計，彼隻所爲，雖極憤痛是乃，私而對衆明卞，公而呈官嚴繩，何所不可？而乃以麤拳大踢，攢拖倒曳是如可。

119) 무겸선전관(武兼宣傳官) : 무관(武官)으로 선전관(宣傳官)을 겸한 사람으로, 곧 무신겸선전관(武臣兼宣傳官)을 말한다. 선전관청(宣傳官廳)은 조선 시대에 병조에 속하여 형명(形名), 계라(啓螺-임금이 거동할 때 취타를 연주하던 일), 시위(侍衛), 전령(傳令), 부신(符信)의 출납 따위를 맡아보던 관아이고, 선전관청에서 근무하는 선전관의 품계는 정3품부터 종9품까지 있었다.

120) 반교문(頒敎文) :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백성들에게 널리 반포(頒布)하던 임금의 교서(敎書)로, 반교서(頒敎書) 또는 반교 교서(頒敎敎書)라고도 한다.

搜得於積柴之中，打之以門\*?之木。胸膛也腰眼也腎囊也，何莫非喫緊關重之部分，而  
 有此青黯黑黯堅硬之痕損是隱則，似此殺人之賊禿，寧有慈悲之佛心？按諸王章，難  
 道償命之律，論以冥報，合入阿鼻之獄是如乎。兩檢官，仍定同推官爲去乎，約日會  
 坐，以別杖箇箇考察，嚴訊捧直招牒報爲旆。干犯僧快成段，併力毆打，衆目所覩，而  
 檢庭頑賴，尤極兇獍，一體考察嚴訊爲旆。干連僧桂善段，墟市醉歸，互相摔曳之狀，  
 既出桂贊之供，金致黃段，搜覓積柴，指出仁得之証，又有桂善之招是隱則，事當各各  
 頭質，到底鉤覈是去乙。今此覆檢案中再招卽止，更無發落，揆以檢獄法例，何爲若是  
 踈漏是隱喻？舉行刑吏，從重附過爲旆。僧寅宗段，死者生前之言，在傍同打者，卽是  
 眇目僧云爾是去乙，托以病殘，終始抵賴，究厥情跡，尤爲狡惡，一體嚴刑取招爲旆。  
 看證李化朱段，受人慫恿，假托官令，惹鬧山房，反受毆傷，孽由自作，更誰怨？尤嚴  
 刑一次，懲礪放送。在逃是在白哥段，情跡叵測，且置勿論。此獄禍階，非渠伊誰？卽  
 爲查名讎捕，不多日內捉囚牒報，屍體出給埋瘞，餘外諸人，并以放送之意初檢官良中  
 枚移，施行向事。

같은 날. 태인현 검안을 데깁하였다.<정범 승려 만성(萬成)은 문설주로 정인득(鄭仁得)을 때  
 려 제 12일 만에 죽은 일. 초검시관 태인 현감 심능숙, 복검시관 정읍 현감 신순.>

【데깁】시장(屍帳)을 받아 보았다. 검시기록의 상흔은 두 차례 검시가 꼭 들어맞  
 고, 그 자리에서 목격한 여러 사람의 진술이 똑같은 뿐 아니라 흉악한 짓을 저지  
 른 자의 두 번째의 진술도 다름없이 자복하였으니, 정범으로 지목한 것을 다시 어  
 디로 돌리겠는가? 강도의 죄목을 억지로 씌워, 뇌물을 요구하는 계책을 암암리에  
 행하였으니, 피척(彼隻)이 행한 바가 비록 지극히 분통스러운 일이나, 사적으로는  
 대중에게 말해도 분명하고 공적으로는 관청에 올려 엄하게 바로 잡으면 어느 것인  
 들 안 되겠는가마는, 이에 거친 주먹으로 힘껏 내지르고 세차게 발길질하며 갑자기  
 당겨 넘어뜨려 끌다가 쌓아놓은 땀감 속에서 찾아낸 문설주로 때렸다. 가슴팍  
 과 왼쪽 옆구리와 허리가 들어간 곳[腰眼]과 신낭(腎囊 불알)은 어디 하나 급소에  
 관계되지 않은 부위가 없는데, 이렇게 청암(靑黯)색과 흑암(黑黯)색의 굳고 단단  
 한 상흔이 있으니, 이같이 못된 중이 어찌 자비의 불심이 있겠는가? 국법에서 살  
 펴보면 상명(償命 살인자를 죽임)의 법을 피하기 어렵고, 저승에서의 업보로 논하면  
 아버지옥(阿鼻之獄)<sup>121)</sup>으로 반드시 들어갈 것이다.



두 검관을 그대로 동추관으로 정하니, 날을 정해 함께 자리를 열고 별장으로 개고찰(箇箇考察)하여 엄히 형신하여 사실대로 진술을 받아내 첩보하라. 간범(干犯) 승(僧) 쾌성(快成)의 경우, 힘을 합하여 구타한 것을 여러 사람이 보았는데도 조사하는 관청마당에서 완강히 버티니, 더욱 매우 흉악하고 모질므로 모두 고찰(考察)하여 엄하게 형신(刑訊)하라.

범행에 관련된 승 계선(桂善)은 시장터에서 취하여 돌아와 서로 잡은 채 곤 상황은 이미 계찬(桂贊)의 진술에서 나왔고, 김치황(金致黃)은 쌓아놓은 땀감을 찾아내어 정인득을 때린 증거물을 지적해 드러냈고 또 승 계선의 진술도 있었으니, 사실을 마땅히 각각 대질하여 끝까지 조사함이 있어야 했다. 그러나 지금 이 복검안 가운데 두 번째 진술은 즉시 중지하여 다시 결정한 바가 없었으니, 검옥(檢獄)의 관례로 헤아리면 어찌 이와 같이 소홀히 하였는가? 거행한 형리는 무겁게 처벌하는 법으로 부과(附過)하라.

승 인종(寅宗)의 경우는 죽은 자가 살아있을 때 곁에서 함께 때린 자에게 한 말이 바로 애꾸눈 중 이라고 했거늘, 병들고 쇠잔한 것을 핑계대며 시종 변명하고 버티고 있다. 그런 정황을 살펴보면 더욱 교활하고 악랄하니, 모두 엄하게 형신(刑訊)하여 진술을 받아내라. 본 것을 말한 이화주(李化朱)의 경우는 남에게 증용을 당해서 관청의 명령이라고 거짓으로 핑계대며 산방(山房)에서 소란을 일으켰다가 도리어 구타를 당하여 재앙을 자초하였으니, 다시 누구를 원망하겠는가? 더욱 엄하게 1차 형신하여 징계하여 석방하라.

도망 중인 백가(白哥)의 경우는 정황을 예측하기 어려우니 우선 놓아두고 논하지 말라. 이 옥사의 재앙이 생기는 계제는 그가 아니면 그 누구이겠는가? 즉시 이름을 조사하여 체포하여 며칠 안에 붙잡아 가둔 것을 첩보하고, 시체는 내주어 묻게 하며, 나머지 그 밖의 사람은 모두 내 보내라는 뜻을 초감시관에게 공문을 보내어 시행할 일.

同日. 以還穀、軍錢督捧事，發關全州府。

【關文】爲相考事。以捧還一事，營門之苦心提飭不啻縷縷，而見今臘月將屆，尙此愆滯，揆以糴政，已極寒心是漙。雖以作錢言之，以若市直，較諸詳定之價，舒力不少，

121) 아버지옥(阿鼻之獄) : 불교에서 말하는 8대 지옥(地獄) 중의 여덟째로, 고통이 가장 심하다는 지옥을 말한다.

措辦無難，則還民輩，固當爭先備納是去乙，發令恰過數朔，所納若是零星，苟如是則將於何時了殺是乙喻？此莫非吏鄉監色，則慢不動念，面任檢督，則恬嬉成習，任他緩督之致。此輩若有一分嚴畏之心，焉敢如是捧糶？雖或了畢是良置，作錢如不準納，則勘簿決不當循例捧上，勿視等閑例飭，別加火速督捧，間五日所捧，這這成報狀輸納爲乎矣。考其勤慢，當有別樣勘處之道，使之惕念舉行，俾無大段生梗之弊爲旴。且以軍錢言之，此是七月發令者，則拖過五朔，宜無不捧之理。而上納當限已過，尚無分錢來納之事，該色舉行，萬萬痛駭。一體罔夜督捧，依前關飭，卽速輸納，宜當尙事。

같은 날. 환곡(還穀)과 군전(軍錢)을 독촉하여 거둬들이는 일로 전주부에 관문을 발송하였다.

【관문】 상고할 일. 환곡미를 거두어들이는 한 가지 일로 감영이 고심하여 신칙(申飭)한 것이 여러 차례 했을 뿐 아니거늘, 지금 음력 설달이 다가오는데 아직도 이렇게 연체(延滯)하니 적정(糶政)<sup>122</sup>으로 헤아려보면 매우 한심하다. 비록 작전(作錢)<sup>123</sup>으로 말할지라도 이 같은 시중가격으로 상정(詳定)<sup>124</sup>가에 비교하면 백성들이 한숨 돌릴 수 있음이 적지 않고 조달이 어렵지 않으니, 환곡을 받아먹은 백성들은 진실로 마땅히 앞 다투어 갖추어 납부했어야 할 것이거늘, 명령을 내린 지가 마침 수개월이 지났는데도 납부한 것이 이와 같이 아주 적으니, 진실로 이와 같다면 장차 어느 때에 완결하겠는가? 이것은 모두가 이향(吏鄉)과 감색(監色)이 게을러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고, 면임(面任)과 검독(檢督)은 안일한 것이 습속이 되어 그대로 내버려두고 감독을 느슨하게 하는 소치 아님이 없다.

이러한 우리들이 만약 조금이라도 엄하고 두렵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면 어찌 감히 이와 같이 환곡을 거둬들였겠는가? 비록 혹 완결하였다더라도 작전(作錢)을 만 일 기준대로 납부하지 않았다면 장부와 비교하여 관례에 따라 받아들이지 말아야

122) 적정(糶政) : 나라에서 백성들에게 곡식을 꾸어주고 가을에 이자를 붙여서 거둬들이는 일이다.

123) 작전(作錢) : 다른 물종을 돈으로 바꾸어 놓거나 바꾸어 내게 하는 것 또는 낸 것을 말하는데, 폭 넓게 쓰인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① 각종신역(身役)·잡세(雜稅)·삼남(三南)과 관동(關東)의 산군(山郡)에서 내는 전세(田稅)·대동(大同) 등을 쌀·콩·무명 대신 돈으로 내게 하는 것을 말함. ② 환곡(還穀)으로 나누어준 쌀·수수·보리·기장·콩 등을 상환할 때 돈으로 내게 하는 것을 말함.

124) 상정(詳定) : 황해도와 함경도에서 대동법의 성격으로 실시된 상정법(詳定法)을 말한다.(『大典會通 戶田 收稅』) 상정법은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공물가의 상납보다는 해당 영읍의 수용(需用)에 쓸 수 있도록 떼어주는 것을 위해서 만들어졌다. 이러한 상정법으로 통용된 것이 상정가(詳定價)인데, 각 호조나 선혜청 등에 대동이나 공물 등의 명목으로 바쳐야 할 물품을 돈으로 대신 상환하여 납부할 때 적용되는 기준 가격으로 통상 시가보다 낮은 가격이다.

한다. 등한히 여기고 으레적인 단속으로 보지 말고 특별히 빨리 독촉하여 거둬들이고, 5일 간격으로 거둬들이는 것을 날날이 보고서를 만들어 납부하라.

그 부지런함과 태만함을 살펴 마땅히 별도로 처벌하는 방도가 있을 것이니, 이를 두렵게 생각하고 거행하여 대단히 불미스런 폐단이 없게 하라. 또 군전으로 말하면 이것은 7월에 명령을 내린 것인데, 다섯 달을 끌어 왔으니 마땅히 거둬들이지 못할 이유가 없다. 상납해야 할 기한이 이미 지났는데도 아직도 푼돈이라도 와서 바치는 일이 없으니, 해당 색리의 거행(舉行)이 매우 놀랍다. 모두 밤낮 없이 독촉하여 거둬들이는 일을 전에 관문으로 단속한 대로 즉시 신속하게 납부함이 마땅할 일.

同日. 以運牟星火裝發事, 發關古群山鎮.

【關文】爲星火舉行事. 移運皮牟裝發遲滯事, 前後關飭不啻縷縷是如乎. 以光州縮穀言之, 本邑非但有昨年運牟之已例, 今番穀物段置, 精簸準斛一石, 添入爲一斗餘云爾, 則見縮之數, 胡至於百餘石之多是旣? 設或見縮是良置, 各邑元納與船價外, 加磨鍊爲三百餘石, 則何不以此排比? 又何不以船價條推移變通是遣, 更爲往復該邑, 遲待幾日後, 縮穀來到, 欲爲經歲後發船是旣? 且法湖納移運大米, 卽歲初上納者, 而近見差使員所報, 則各邑米隨其來納, 已爲分載於京江船, 則目下卽裝發之皮牟何爲? 而下船入庫, 有若持久不發者是旣. 入庫時, 每石雜費, 多至七分, 此莫非爲鎮屬肥己之致, 前後舉行, 事事慢忽是遣. 靈巖船隻段, 其間果已到泊是驗? 雖或未到良置, 不可以一邑未到, 致此遲滯, 憧憧一念不能暫弛, 下送營校, 茲更發關爲去乎. 毋或半刻稽滯, 火速領發後, 形止報來爲乎矣. 若或如前逗留, 則鎮將段, 拿致嚴棍除良, 斷當狀聞論勸, 除尋常, 惕念舉行宜當尙事.

같은 날. 운모(運牟)를 급히 실어 보내는 일로 고군산진에 관문을 발송하였다.

【관문】급히 거행할 일. 이운(移運)할 걸보리를 실어 보내는 것이 지체되었다는 일은 전후에 관문으로 신칙을 여러 차례 했을 뿐만이 아니었다. 광주(光州)의 축곡(縮穀 곡식이 축남)으로 말하면, 본읍은 단지 작년에 운모한 이전 예가 있을 뿐만 아니라 금번 곡물들도 정(精)하게 골라 곡자(斛子)로 기준하고도, 한 섬에 더 들인 것이 한 말 남짓하다고 말하였으니 곡식이 축남 수치가 어찌 백여 섬보다 많

은가? 설혹 축난다 하더라도 각 읍이 원래 바쳐야할 곡식과 뱃삿 외에 마련한 것이 3백여 섬이 된다면 어찌 이것으로 안배하지 못하였는가? 또 어찌하여 뱃삿조목으로 옮겨 변통하지 아니하고, 다시 해당 읍으로 왕복하게 하여 며칠을 지체하며 기다린 뒤에 축난 곡식이 오면 해를 넘긴 뒤에야 배를 떠나보내려 하는가?

법호(法湖 법성포)에서 납부하여 이운하는 쌀은 바로 세초(歲初)에 상납할 것인데, 근래 차사원이 보고한 것을 보면 각 읍의 쌀은 납부한 것에 따라 이미 경강선에 나누어 실었다고 하니, 당장 곧 꾸러 떠나보내는 걸보리는 어떻게 하겠는가? 배에서 내려 창고에 넣고 오래도록 출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입고(入庫) 시에 매 섬의 잡비가 대부분 7푼에 이르는데 이것은 진속(鎭屬)이 자신을 살찌우는 소치가 아님이 없으니, 전후 거행이 매사가 게으르고 소홀하다. 영암 선박의 경우는 그 사이에 과연 이미 도착하여 정박하였는가? 비록 혹 도착하지 못했을지라도 한 읍이 도착하지 못한 것으로 이렇게 지체할 수 없으니, 바빠 움직인다는 일념으로 잠시도 늦출 수 없어 영교(營校)를 내려 보내 이에 다시 관문을 발송한다.

혹 반각이라도 늦추지 말고 급히 배를 거느리고 떠난 뒤에 사실의 전말을 보고하라. 만약 혹 이전처럼 머물러 있다면 진장(鎭將)은 잡아서 엄하게 곤장으로 다스릴 뿐 아니라 결단코 마땅히 장계로 아뢰어 논하여 문초할 것이니, 보통으로 여기지 말고 두려운 마음으로 삼가 거행함이 마땅할 일.

#### 4. 1833년(순조33) 12월 1~10일 : 추동등(秋冬等) 포폄을 행하다

初一日. 開東詣客舍, 行望闕禮. 中軍、中營將、判官、檢律, 同爲進參.

1일. 먼동이 트자 객사에 도착하여 망궐례를 행하였다. 중군·중영장·판관·검률이 함께 진참(進參)하였다.

同日. 題昌平縣報狀.<因本縣民柳埴呈議送, 其三從叔煥轍處, 出繼委折查問於其門長柳榮和後, 報來事.>

【題】事係人倫大變, 詳查然後, 可以題判是如乎. 柳埴, 初無禮斜, 柳奎既有達下禮曹草記是隱則, 立后一款, 令無更論是乃, 柳埴供辭中, 數三句語, 極可駭愕, 呈禮曹文蹟之, 過一年始爲到付委折, 其矣三寸, 生時不敢萌意於此等事是如可, 死後作此舉措者, 究厥情跡亦甚匡測. 此二款, 更爲發問目, 嚴覈取招, 牒報宜當向事.

같은 날. 창평현(昌平縣) 보장을 데김하였다.<창평현인 유전(柳埴)이 의송(議送)<sup>125</sup>을 올린 것으로 인하여 자기 3종숙 유환철(柳煥轍)에게 출계(出繼)<sup>126</sup>한 곡절을 그의 문장(門長) 유명화(柳榮和)에게 조사해 물은 뒤 보고한 일.>

【데김】사건이 인륜의 대 변괴에 관계되니 자세하게 조사한 뒤에야 판결할 수 있다. 유전(柳埴)은 처음엔 예사(禮斜)<sup>127</sup>가 없었으나 유규(柳奎)가 이미 예조 초기(草記)에 달하(達下)<sup>128</sup>한 것을 소유하고 있는즉 후사를 세우는 한 항목은 다시

125) 의송(議送) : 고을 원에게 패소한 사람이 다시 관찰사에게 상소하는 일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의송'의 의미는 장자(狀者)가 관찰사에게 제출한 소지(所志)를 뜻한다. 그러나 15세기 의송의 의미는 장자가 관찰사에게 청원서 내지 소장을 올렸을 때 관찰사가 해당 군현에 내리는 처분. 즉 소지에 기재된 관찰사의 데김을 의미하여, '의송'을 행하는 주체는 관찰사, 받는 대상은 해당 군현의 수령, 중간 전달자는 장자였다. 16세기에 오면 '의송'의 의미는 점차 관찰사에게 올리는 소지의 의미로 변화하여 갔다.(김경숙, 「16세기 請願書 처리절차와 議送의 의미」, 『고문서연구(古文書研究)』, 제 24호, 2004)

126) 출계(出繼) : 후사로 들어가서 그 집의 대를 이음을 말한다.

127) 예사(禮斜) : 예조(禮曹)에서 양자(養子)의 청원을 허가하여 주던 일이나 그런 글을 말한다.

128) 달하(達下) : 왕세자가 대리(代理)할 때에 신하가 아뢰는 문서를 왕세자가 보고 재결(裁決)하여 내리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순조는 1827년부터 1830년까지 아들 효명세자(孝明世子)에게 대리청정을 시켰으며, 1830년에 효명세자가 죽자 1834년 붕어(崩御)할 때까지 친정(親政)하였고, 순조를 이은 현종은 갑오년(1834) 11월에 즉위하였기 때문에 여기서 달하는 효명세자 때 있었던 일이다.

논하게 할 것은 없으나 유전이 진술한 말 중에 두·세 구절이 지극히 놀랄만하고, 예조에 올린 문적(文蹟)이 1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도착하게 된 곡절과, 그의 삼촌이 살아있을 때에는 감히 이 같은 일에 뜻을 두지도 않다가 죽은 뒤에 이렇게 거조(擧措)한 것은 그 정적(情迹)을 규명해보면 또한 매우 불측하다. 이러한 두 항목은 다시 문목(問目)을 내게 하여 엄하게 조사하여 진술을 받고 첩보함이 마땅할 일.

初二日. 中營將入見.

2일. 중영장이 입견하였다.

同日. 以加劃作錢六千石, 平均分排於殘獨戶事, 發關全州府

【關文】爲相考事. 糶糶法意, 本自嚴重, 儉年還穀, 尤當實捧, 故已自開倉之初, 縷縷申飭, 斷斷苦心, 期欲責效, 而今則勘限已過, 毋論營府, 還所捧僅過七分之一, 糶政蕩然, 且置勿論. 明年接濟, 又何處着手, 而尤甚災民, 將何以免此離捐瘠之患是乙喻? 萬萬悶然, 猶屬例語. 向來營耗應作四千石, 既已分排於至貧無依之類, 則本色收捧, 宜無愆滯, 而捧上則一向延拖, 苟究其故, 莫非今春分糶之紊亂而然, 富村饒戶, 捧賂頃給, 貧殘窮民, 濫受疊還, 畢竟糶事之稽緩, 一至於此. 言念法綱, 寧不萬萬痛惋? 懲勑之政斷不可已. 各該倉色等, 拔戶數爻, 爲先一一查出, 成冊牒報, 以爲與受同罪, 依法勘處之地爲旆. 至若三班還段, 俱是不耕不織, 長待官門之類, 就其中本色難辦之類, 應作詳定價, 分排收捧是在果. 民還段, 應作四千石, 前劃之數不爲不多, 而或慮無依殘民, 猶有未盡均排. 營耗米應作餘條六千石, 更爲加劃爲去乎, 營府還戶中, 抄出殘獨最難捧者, 平均分排, 並與本色未收條, 而刻期督飭, 從速了勘爲乎矣. 前後應作錢區劃之數, 較諸元摠, 幾爲三分之一, 營門之懷保災民方便, 收殺之策, 可謂靡不庸極是如乎. 如是而猶且如前拒納, 則此卽力抗營飭, 圖賴國穀之亂民, 此等之漢, 這這摘發, 嚴刑枷囚後報來是遣. 營府還所捧, 勤慢不拘, 間報日限, 這卽諜報之地 宜當尙事.

같은 날. 추가로 획급한 작전(作錢)할 6천 석을 쇠잔하고 홀로 있는 백성들에게 고르

게 분배하는 일로 전주부에 관문을 발송하였다.

【관문】 상고할 일. 조적법(糶糴法)의 뜻은 본래 엄중하니 흉년의 환곡정책은 더욱 마땅히 사실대로 거둬들여야 하기 때문에 이미 개창(開倉)한 처음부터 여러 차례 신칙(申飭)하고 단단히 고심(苦心)하여 실효가 있기를 기대했는데도 지금 마감 기한이 이미 지났는데도 감영과 전주부를 논할 것 없이 환곡을 거둬들인 것이 겨우 7분의1을 넘었으니 환곡정책이 공허한 것은 차치하여 논하지 않고 내년 진恤(賑恤) 또한 어느 곳부터 손대야 할지 모르겠다. 우심(尤甚)지의 재민(災民)은 장차 뿔뿔이 흩어지고 야위어 죽는 우환을 어떻게 면할 수 있을 것인지? 매우 답답한데도 오히려 으레 쓰는 말이 되었다. 지난번 영모(營耗)에서 작전(作錢)할 4,000섬을 지극히 가난하고 의탁할 곳 없는 부류에 분배하였으니, 본색(本色)을 거둬들이는 것은 마땅히 연체가 없어야만 하는데도, 거둬들이는 것이 한결같이 늘어지니 진실로 그 이유를 규명해보면 금년 춘분의 환정(還政)이 문란한 때문이다. 부촌의 넉넉한 집은 뇌물을 바치면 탈급(頤給)<sup>129)</sup>해 주고, 가난하고 쇠잔한 백성은 과도하게 환곡을 중첩되게 받았으니, 결국 환곡을 거둬들이는 일이 지체되고 늦어짐은 하나같이 이 때문이다. 생각하면 법의 기강이 어찌 매우 답답하고 한탄스럽지 않겠는가? 징계(懲戒)하는 정책을 결단코 그만둘 수 없다. 각 해당 창색은 환곡 분배에서 제외한 호구를 우선 하나하나 조사하여 성책(成冊)하여 첩보하고, 주고받음은 죄가 같으니 법에 의거하여 조사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라.

삼반(三班)의 환곡에 있어서는 모두가 농사도 짓지 않고 베도 짜지 않으며 오래 동안 관문(官門)에서 기다리는 부류이니 그 가운데서 본색(本色)으로 납부하기 어려운 부류를 가려내어 상정(詳定)가로 분배하여 거둬들여라. 백성의 환곡은 작전할 4천섬은 전에 획급한 수치가 적지 않은데도 혹 염려하는 것은 의지할 데 없는 잔민(殘民)이 오히려 모두 균등하게 배분되지 못함이 있을까 하는 것이다. 영모미(營耗米)를 작전(作錢)해야 할 나머지 분량 6천섬을 다시 더 획급하니 감영(監營)과 전주부(全州府)의 환호(還戶)<sup>130)</sup>가운데 쇠잔하고 홀로있는 자들 가운데 가장 납부하기가 어려운 자를 골라 뽑아 고르게 분배해주고, 본색(本色)을 미수(未收)한 조목과 아울러 모두 기한을 정해 독려하고 단속하여 속히 마감을 끝내라. 다만, 전후로 작전(作錢)해야 할 분량을 구획한 수치는 원래 총 수치와 비교하면 거

129) 탈급(頤給) : 특별한 사정을 헤아려 책임을 면제하여 주는 것을 이른다.

130) 환호(還戶) : 환곡(還穀)을 갚아야 할 백성을 말한다.

의 3분의 1이 되니 감영(監營)이 재민(災民)을 생각하고 보호하는 방편은 모두 거 뒤들이는 정책을 지극히 쓰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데도 오히려 또 전과 같이 납부를 거부하면 이는 곧 힘으로 감영의 칙령(飭令)을 거부하고 국곡(國穀)에 빌붙으려는 난민(亂民)이니 이와 같은 놈은 날날이 적발하여 엄히 형신(刑訊)하고 칼을 씌워 가둔 뒤에 보고하라. 영부(營府)의 환곡을 거 뒤들이는 것은 근만(勤慢)에 구애됨 없이 기한 사이사이에 보고하고 날날이 즉시 첩보함이 마땅할 일.

初三日. 以無賴討索及營屬誅求之弊, 一切禁斷事, 發甘五十三州, 法聖、古羣山鎮.

【甘結】 向因籌司啓下關, 村閭竊發之患, 無賴作挈之弊, 另飭禁斷之意, 有所行會是在果. 近聞無賴游食之輩, 稱以流丐, 在在作黨, 討索酒飯, 攘奪錢貨, 其所作弊, 罔有紀極, 村民則莫可奠安, 行旅則不得早發云. 向來關飭之後, 如果嚴加糾禁, 則此輩之少不知戢恣行胸臆, 豈至於此是乙喻? 如今災歲, 此等之弊, 尤當痛禁然後, 窮鄙殘民, 庶可支保乙仍于, 茲更別甘爲去乎. 申飭面里, 嚴立科條, 隨現捉囚, 以爲報營嚴繩之地爲旆. 且聞營屬與各營下隸輩, 名以動鈴, 周行列邑, 藉賣威脅, 惟意誅求少無顧忌. 究厥所爲, 誠極痛惋, 先自營門嚴飭, 各該頭目, 另加操束是如乎, 本邑境內, 更或有接足者, 則卽令捉入, 着枷上使爲乎矣. 如或視以例飭, 慢不禁察是如可, 現發於別歧廉探, 則當該都將與首刑吏, 斷當上使嚴處, 除尋常, 惕念舉行爲旆. 甘到日時, 舉行形止, 先卽馳報宜當者.

3일. 무뢰배들의 토색(討索)과 감영 관속들의 주구(誅求)의 폐단을 일체 금단하라는 일로 53주와 법성진, 고군산진에 감결하였다.

【감결】 지난번 비변사의 계하(啓下) 관문으로 인하여 촌려(村閭)에 도적이 발생하는 우환과 무뢰배들이 야단을 일으키는 폐단을 별도로 신칙하여 막고 단절하라는 뜻을 행회(行會)하는 바가 있었다. 근래 무뢰(無賴)하게 유식(遊食)하는 무리들이 곳곳마다 작당하여 주반(酒飯)을 토색(討索)질하고 돈을 힘으로 빼앗으니 그 잘못된 바가 끝이 없어, 촌민들은 가히 편안하게 거주할 수가 없고 여행객은 일찍 떠날 수 없다고 들었다. 종전의 관문으로 신칙한 뒤에 만일 과연 엄하게 규명하여 금지하였다면 이 무리들이 방자한 행동과 생각을 그칠 줄을 조금도 알지 못하는 것이 어찌 여기에까지 이르렀겠는가? 지금 같은 흉년에 이같은 폐단을 더욱 마땅



히 엄금한 뒤에라야 궁한 집의 잔민들을 거의 지탱하고 보존할 수 있음에 따라 이에 다시 별도로 감결한다. 면리(面里)에 신칙하여 엄하게 명령을 세우고 드러나는 대로 잡아 가두어 감영에 보고하고 법도를 엄하게 할 것.

또 영속(營屬)과 각 영(營)의 하인배들이 동냥을 칭하며 여러 읍을 두루 다니며 위세를 팔아 위협하여 오직 뜻이 백성(百姓)의 재물(財物)을 강제(強制)로 요구(要求)하여 빼앗으며 조금치도 염려하고 꺼리는 바가 없다고 들었다. 그 하는 바를 살펴보면 진실로 지극히 통탄할만하니 우선 감영(監營)으로부터 엄격하게 단속하여, 각 해당 두목들은 특별히 잡아들이라고 하였다. 본 읍의 경내에서 흑시라도 다시 발붙이는 자가 있으면 바로 잡아 들어 목에 칼을 씌워 감영으로 잡아 올려라. 만일 흑 으레 단속하는 것으로 보고 게으르게 막고 규찰하지 않다가 다른 경로의 영탐(廉探)에 드러나 발각되면 해당 도장(都將)과 수형리(首刑吏)는 결단코 마땅히 감영으로 잡아 올려 엄하게 처단할 것이니 보통으로 여기지 말고 두려운 마음으로 삼가하며 거행하라. 감결이 도착하는 날짜와 거행한 상황을 우선 바로 알림이 마땅할 일.

初四日。以老人孝烈恤窮人存問事，發關各邑。

【關文】爲相考事。歲時，存問高年孝悌，漢吏之良法也。值此歉年，且當歲除，思欲倣而行之爲去乎。高年人處，各米三斗酒一壺牛肉二斤式，令禮吏賚致，仍爲存問以來爲旆。孝子烈女及恤窮人段置，亦不可無示意之舉是如乎，米三斗牛肉二斤式，一體存問，以營穀會減，牒報向事。

全州，一百二歲老人；林始興，田光龍。一百一歲老人；魯德弼，李增哲。一百歲老人；朴察伊。孝子；高潤佐。恤窮人；李完得。○南原，一百五歲老人；林夏昌。烈女；金召史。孝；女朴阿只。○長興一百歲老人；魏榮洪。烈女；全氏。○羅州一百三歲老人，姜禧。一百歲老人；金喆海。烈女；吳氏。○順天一百歲老人；方稷。烈女；宋召史。孝婦；成氏。○靈巖一百九歲老人；金永貴。一百五歲老人；郭明得。一百一歲老人；金致大，盧聖彬。烈女；朴致柱子婦朴姓。○興德孝子；韓信良。孝婦；朴氏。烈女；李得華妻吳氏。○樂安一百三歲老人；高擎宇。孝子；朴亮德。○珍島一百歲老人；韓再哲，李鳳烈，金得中。孝子；姜千福。烈女；千召史。○任實一百二歲老人；高自寬。孝子；李鍵。恤窮人；洪疇範。○雲峰一百一歲老人；朴東得。孝女；李

姓. ○興陽一百三歲老人; 金麗載. 一百二歲老人; 陰致萬. ○潭陽一百六歲老人; 李命瑞. ○昌平一百歲老人; 崔世震. ○光州孝子; 崔仁得, 盧啓觀. 烈女; 李氏. ○古阜孝子; 李基震, 金基聶, 李得儉. 烈女; 景氏. ○萬頃孝子; 趙光得, 趙光福. 孝婦; 朴氏, 申氏. ○扶安孝子; 朴性淳. 烈女; 白召史. ○玉果孝子; 金相勳. 烈女; 朴召史. ○同福孝子; 李世玉. 烈女; 田氏. ○泰仁孝子; 宋宗道. 孝烈婦; 朴氏. ○長城孝子; 全日貴. ○金堤孝子; 洪寬孝. ○光陽孝子; 鄭宅龍. ○海南孝子; 羅廷孝. ○益山烈女; 宋氏. ○靈光烈女; 金氏. ○康津烈女; 吳氏. ○淳昌孝子; 金宗燁. 恤窮人; 趙年國. ○龍安恤窮人; 金奎璜. ○錦山恤窮人; 金光國. ○臨陂恤窮人; 蔡正鎮.

4일 노인·효자·열녀 및 불쌍하고 곤궁한 사람들에게 안부를 묻는 일로 각 읍에 관문을 발송했다.

**【관문】** 상고할 일. 해마다 제때에 나이 많은 어른과 효도하고 우애 있는 자를 존문(存問)하는 것이 한리(漢吏)<sup>131)</sup>들의 좋은 법이었다. 이렇게 흥년을 만나고 또 선달그움을 당하여 모방하여 이를 행하려 한다. 나이 많은 사람에게는 각 쌀 3말, 술 1병, 쇠고기 2근씩을 예리(禮吏)로 하여금 보내어 존문(存問)하고 오게 하라. 효자, 열녀 및 불쌍하고 곤궁한 사람들에게도 또한 성의를 보이지 않아서는 안 되니 쌀 3말 쇠고기 2근씩을 모두에게 존문(存問)하고 감영의 곡식으로 회감(會減)<sup>132)</sup>하여 첩보할 일.

○ 전주, 102세 노인; 임시흥(林始興)·전광용(田光龍). 101세 노인; 노덕필(魯德弼)·이증철(李增哲). 100세 노인; 박찰이(朴察伊). 효자; 고윤좌(高潤佐). 흠공인; 이완득(李完得).

○ 남원, 105세 노인; 임하창(林夏昌). 열녀; 김조이[金召史. 효녀; 박아지(朴阿只).

○ 장흥, 100세 노인; 위영홍(魏榮洪). 열녀; 전씨(全氏).

○ 나주, 103세 노인; 강희(姜禧). 100세 노인; 김철해(金喆海). 열녀; 오씨(吳氏).

○ 순천, 100세 노인; 방집(方火+集). 열녀; 송조이[宋召史]. 효부; 성씨(成氏).

○ 영암, 109세 노인; 김영귀(金永貴). 105세 노인; 곽명득(郭明得). 101세 노인; 김치대(金致大)·노성빈(盧聖彬). 열녀; 박치주(朴致柱)의 며느리 박성(朴姓).

131) 한리(漢吏) : 한(漢)나라의 순리(循吏)로, 공법(公法)을 잘 수행하였다.

132) 회감(會減) : 주고받을 것을 맞비껴서 남는 것을 셈하는 것이다.

- 흥덕, 효자; 한신양(韓信良). 효부; 박씨(朴氏). 열녀; 이득화(李得華)의 처 오씨(吳氏).
- 낙안, 103세 노인; 고경우(高擎宇). 효자; 박양덕(朴亮德).
- 진도, 100세 노인; 한재철(韓再哲)·이봉렬(李鳳烈)·김득중(金得中). 효자; 강천복(姜千福). 열녀; 천조이[千召史].
- 임실, 102세 노인; 고자관(高自寬). 효자; 이건(李鍵). 흠공인; 홍주범(洪疇範).
- 운봉, 101세 노인; 박동득(朴東得). 효녀; 이성(李姓).
- 흥양, 103세 노인; 김려재(金麗載). 102세 노인; 음치만(陰致萬).
- 담양, 106세 노인; 이명서(李命瑞).
- 창평, 100세 노인; 최세진(崔世震).
- 광주, 효자; 최인득(崔仁得)·노계관(盧啓觀). 열녀; 이씨(李氏).
- 고부, 효자; 이기진(李基震)·김기섭(金基聶)·이득검(李得儉). 열녀; 景氏(景氏).
- 만경, 효자; 조광득(趙光得)·조광복(趙光福). 효부; 박씨(朴氏)·신씨(申氏).
- 부안, 효자; 박성순(朴性淳). 열녀; 백조이[白召史].
- 옥과, 효자; 김상훈(金相勳). 열녀; 박조이[朴召史].
- 동복, 효자; 이세옥(李世玉). 열녀; 전씨(田氏).
- 태인, 효자; 송종도(宋宗道). 효열부; 박씨(朴氏).
- 장성, 효자; 전일귀(全日貴).
- 김제, 효자; 홍관효(洪寬孝).
- 광양, 효자; 정택룡(鄭宅龍).
- 해남, 효자; 나정효(羅廷孝).
- 익산, 열녀; 송씨(宋氏).
- 영광, 열녀; 김씨(金氏).
- 강진, 열녀; 오씨(吳氏).
- 순창, 효자; 김종엽(金宗燁). 흠공인; 조년국(趙年國).
- 용안, 흠공인; 김규항(金奎瓊).
- 금산, 흠공인; 김광국(金光國).
- 임피, 흠공인; 채정진(蔡正鎭).

初五日. 以流乞幕失火後爛傷人救療事, 發關全州府.

【關文】爲相考事。近日禁火申飭，何等勤嚴，而卽聞本府南門外流乞幕，去夜失火，人物燒死，多至八名云，誠不勝萬萬慘惻。任掌輩，常時看護，苟能着念舉行，則豈至於此是乙喻？當該任掌，自營門畧加懲治是在果。此皆是無主屍體，則其所埋瘞之節，不可不別加顧恤是如乎。到關卽時，申飭洞任，別定色吏，優給空石，着實厚埋爲旻。爛傷人段置，保授於里任中勤幹人處，自官題給米三斗，使之饋粥試藥，另飭救療，俾得延活之地爲乎矣。舉行形止，卽速馳報爲旻，穀物段，以營穀會減向事。

5일. 유걸인(流乞人)들의 실화(失火)뒤 불에 덴 사람을 구하여 치료하는 일로 전주부에 관문을 발송하였다.

【관문】상고할 일. 최근 금화(禁火)를 신칙(申飭)함이 얼마만큼 삼가고 엄하게 했는데도 전주부 남문 밖 유걸인들 막사에서 지난밤에 실화로 사람이 타죽어 많게는 8명에 이른다고 들었다. 진실로 매우 참혹하고 슬픔을 이길 수 없다. 임장(任掌)배들이 항시 보고 보호하기를 진실로 능히 착실히 거행하였다면 어찌 여기에 이르렀겠는가? 해당 임장(任掌)은 감영에서 다스려 징치(懲治)를 가했다. 이들은 모두 주인 없는 시체(屍體)이니 그들을 묻는 절차는 특별히 불쌍히 여겨 돌보아 주지 않을 수 없다. 관문이 도착하는 즉시 동임(洞任)을 신칙(申飭)하여 별도로 색리(色吏)를 정하고 넉넉히 가마니를 주고 착실(着實)하고 후하게 묻어주어라. 불에 덴 사람들도 이임(里任)가운데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말아보게 하고 관(官)에서 쌀 3말을 지급하고, 그들에게 죽을 먹이고 약을 처방하고 별도로 구제하고 치료할 것을 타일러 삶을 연명할 수 있는 바탕으로 삼게 하라. 거행한 사실의 전말을 즉시 알리고 곡물은 감영 곡식으로 회감(會減)할 일.

同日. 題海南縣報狀.<戶籍雜費濫捧事, 依關辭, 嚴查事.>

【題】辛巳節目，自當永久遵行，毋敢出入是去乙，該色之自下加斂，至於此多，究厥所爲，萬萬痛駭。若此不已，營門定式，其將徒歸空言而後已是乙喻？渠輩既以乙酉以後，不得不加斂云爾，則辛巳以後，乙酉以前，壬午籍費，果何處加出是旻，他邑段，又何以一遵節目，無復加徵之弊是隱喻？其矣粧撰圖賴之習，尤爲罪上添罪是如乎。同該吏爲先除案，嚴刑一次，取招牒報爲旻。名以冠儒衣儒之類，右袒下吏，呈邑分疏，除非出派無狀，何以致此？同金近心一體嚴刑，取招牒報向事。

같은 날. 해남현 보장을 데김하였다.<호적잡비를 함부로 거둬들이는 일을 관문 내용에 의거하여 엄히 조사할 일.>

【데김】 신사년(1821) 절목은 마땅히 영구토록 좇아 행해야 하니 감히 넣거나 빼지 말아야 하거늘 해당 색리가 아래로부터 더 거둬들이어 이렇게 많음에까지 이르렀으니 그들이 한 바를 규명해보면 매우 놀랍다. 이와 같음을 그치지 않는다면 감영이 정한 법식은 장차 한갓 빈말로 돌아간 뒤에야 그칠 것인가? 저들이 이미 을유년(1825) 이후에 부득이 더 거둬들이었을 뿐이라고 말하니, 신사년 이후에서 을유년 이전 및 임오년(1822)의 호적잡비(戶籍雜費)는 과연 어디에서 더 나왔으며 타읍은 또한 어떻게 한결같이 절목을 준행하여 다시 더 징수하는 폐단이 없었는가? 그들이 말을 꾸미고 남에게 전가하려는 습속은 더욱 죄 위에 죄를 더하는 것이다.

해당 아전은 먼저 아전명단에서 삭제하고 엄히 1차 형신(刑訊)하여 진술을 받아 첩보하라. 유자의 관을 쓰고 유자의 옷을 입은 선비로 이름하며 하리들을 편들어, 읍에 정소(呈訴)하고 변명하는 소장을 올리니 출파(出派)하여 뻔뻔한 놈들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에 이르겠는가? 동 김근심(金近心)을 일체 형신하고 진술을 받아 첩보할 일.

初六日. 判官入見.

6일. 판관이 입견하였다.

同日. 今秋冬等褒貶啓<sup>133)</sup>封發.

【褒貶都封啓】道內都事、守令、察訪、令、別檢、叅奉、召募、別將、審藥、檢律、巡營屬牙兵、將官等, 今癸巳年秋冬等褒貶磨鍊, 封進爲白在果. 高山縣監金益根, 未赴任. 檢律劉弘茲, 到任日淺乙仍于, 並只等第不得磨鍊爲白乎旆. 濟州三邑守令、萬戶、山馬監牧官、審藥、檢律等褒貶段, 同州以海外絶島, 未及出來, 待其報來, 迫于登聞計料爲白乎旆. 都事之貶坐同叅, 自是事例, 而都事尹錫祐, 受由歸家是白乎等以, 臣謹自書寫, 緣由并以馳啓爲白臥乎事.

133) 啓 : 봄에 포폄하는 대목에서는 '今春夏等褒貶狀啓封發'라고 표기되어 있어 문서로 아뢴다는 '장(狀)' 글자가 '계(啓)'앞에 분명하게 있으나, 여기 가을 포폄에서는 빠져 있다. 그러나 봄에 포폄했을 때를 준용하여 번역하였다.

【刀擦啓】今癸巳年秋冬等，守令褒貶啓本中，三字，令別檢啓本中，一字有刀擦處，不勝惶恐，緣由馳啓爲白臥乎事。

같은 날, 금번 추동등(秋冬等)<sup>134)</sup>에 포평한 계본을 봉하여 발송하였다.

【포평도봉계(褒貶都封啓)<sup>135)</sup>】도내의 도사(都事)·수령(守令)·찰방(察訪)·영(令)·별검(別檢)·참봉(參奉)·소모(召募)·별장(別將)·심약(審藥)·검률(檢律)·순영(巡營) 소속 아병(牙兵)·장관(將官) 등을 이번 기사년 추동등(秋冬等)의 포평을 마련하여 봉진(封進)하였다.

고산 현감 김익근(金益根)은 부임하지 않았고, 검률 유흥계(劉弘滋)는 부임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음에 따라 모두 등급을 마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제주 삼읍(濟州三邑)의 수령·만호(萬戶)·산마감독관(山馬監牧官)·심약(審藥)·검률(檢律) 등의 포평은 이들 고을은 바다 밖 먼 섬으로 아직 포평을 내오지 못했으니 그 보고를 기다려 뒤에 올려 아뢴 요량입니다. 도사(都事)를 폄좌(貶坐)<sup>136)</sup>에 동참시키는 것이 원래 전례(前例)인데도, 도사 윤석우(尹錫祐)는 말미를 받아 귀가하였기 때문에 신이 삼가 자필로 써서 이러한 연유로 모두 치계(馳啓) 하옵는 일.

【도찰계(刀擦啓)<sup>137)</sup>】이번 기사년 추동등(秋冬等)에 수령을 포평한 계본(啓本)<sup>138)</sup> 가운데 3글자와 영·별검(令 別檢)을 포평한 계본(啓本) 가운데 1글자를 도찰(刀擦)한 곳이 있어 황공함을 이기지 못하고 이러한 연유로 치계(馳啓) 하옵는 일.

134) 추동등(秋冬等) : 관찰사가 1년에 두 번 각도에 있는 수령을 포평(褒貶)하여 상·중·하 등급으로 나눈 것 가운데 하반기 평가를 말한다. 보통 11월 15일 전후인데 12월 6일에 있어 약간 늦은 것으로 보이며, 상반기는 기사년(1833) 6월 6일에 춘하등(春夏等)이 있었다.

135) 포평도봉계(褒貶都封啓) : 포평한 도목을 밀봉하여 아뢴다는 뜻이다. 도(都)는 도목(都目) 또는 도정(都政), 도목정사(都目政事)와 같은 의미이며, 고려 조선 시대에 이조와 병조에서 매년 6월과 12월에 벼슬아치의 성적을 평가하여 면직 승진시키던 일을 말한다. 12월에 행하는 것을 대정(大政), 6월에 행하는 것을 소정(小政)이라 하고, 때 없이 수시로 행하는 것을 전동정(轉動政)이라고 한다.(단국대동양학연구소, 『漢韓大辭典』, 2002)

136) 폄좌(貶坐) : 포평좌기(褒貶坐起)의 준말로, 포평을 하기 위한 좌기(坐起)를 말한다. 포평은 관리의 근무 성적을 고과하여 전(殿)·최(最)를 정하는 것이고, 좌기는 관청의 장(長)이 출근하여 일을 보는 것이다.

137) 도찰계(刀擦啓) : 잘못된 그림이나 글자를 칼로 긁어 고친 것을 아뢰는 문서를 말한다.

138) 계본(啓本) : 조선 시대에 임금에게 큰일을 아뢴 때 제출하던 문서 양식으로, 태종 12년(1412)에 장신(狀申)을 고친 것이다.

同日. 以仇衡王祠宇斂錢禁斷事, 發關茂朱府.

【關文】爲相考事. 秋間因禮曹關, 本府大德山下, 果是仇衡王遺躅之地與否有所關問矣, 報辭中, 大德山在於本府豐南面, 而雖非仇衡王遺躅之地, 與嶺南山清縣王山, 相距不遠, 而王山卽仇衡王妥靈之所也. 該面居金快鍊, 金振台等, 以其子孫, 庚寅秋建祠於大德山下, 移奉王山, 影幀仍設, 春秋享祀是如爲置. 私建祠宇, 邦禁自來嚴截是矣, 今此建祠, 不過爲數間云, 故姑置之勿論是加尼, 今見本道與嶺南儒生李之煥姜繼仁等, 聯名狀辭, 則“以同祠物財收斂事, 張皇爲說, 來呈議送”是如乎, 本山雖是遺躅本地是良置, 邦禁截嚴之下, 有不敢私自建祠是去等, 況旣既非遺躅之地, 而只因子孫之寓居, 此邑輒議建祠妥靈, 於數千年未曾設施之後, 果有如許禮文乎? 旣建之祠, 已是犯禁, 而又以物財收斂, 欲藉營題取售, 嘗試之計事之駭然, 莫此爲甚. 此輩苟能知法禁之截嚴, 豈或如是是乙喻? 旣聞之後, 不可不痛禁乃已乙仍于, 茲以發關爲去乎. 所謂憑藉斂錢之弊, 一切防禁, 俾毋敢復蹈頑習爲乎矣. 如是關飭之後, 萬一有不善禁飭, 有所及聞, 則當該禮吏除良, 首吏鄉, 斷當別樣嚴處, 使之惕念舉行爲旣. 此輩如或不遵營飭, 一向跳跟是去等, 一併查名捉囚, 形止牒報宜當向事.

같은 날. 구형왕(仇衡王)<sup>139)</sup> 사우(祠宇)에서 돈을 거둬들이는 것을 금하는 일로 무주부(茂朱府)에 관문을 발송하였다.

【관문】 상고할 일. 가을동안에 예조(禮曹)의 관문으로 인하여 무주부 대덕산 아래 정말 구형왕(仇衡王)이 남긴 자취인가의 여부를 관문으로 물은 바가 있었는데, 보고하는 말 가운데 대덕산이 무주부 풍남면(豐南面)에 있고 비록 구형왕(仇衡王)이 남긴 자취의 땅이 아닐지라도 영남(嶺南) 산청현(山淸縣) 왕산(王山)과 서로 거리가 멀지않고, 왕산은 바로 구형왕(仇衡王)의 혼령(魂靈)을 안치한 곳이다. 풍남면에 사는 김쾌동(金快鍊)·김진태(金振台) 등은 그 자손으로 경인(庚寅)년 가을에 대덕산 아래 사우를 건설한 것을 왕산으로 옮겨 봉안하고 영정을 진열하여 봄과 가을에 제사를 드렸다고 한다. 사우(祠宇)를 사적으로 세우는 것을 나라가 금한 것이 예로부터 매우 엄격하되, 지금 이렇게 사우를 세운 것은 두 세간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하니 따라서 우선 그대로 두어 따지지 않으려 했다. 지금 본도와

139) 구형왕(仇衡王) : 금관가야(金官伽倻)의 제10대 왕으로, 재위 521~532년이고, 신라(新羅)의 귀족 김서현(金舒玄)의 조부이다. 김서현은 김유신(金庾信)의 아버지이다.

영남 유생 이지환(李之煥)·강계인(姜繼仁) 등이 연명한 등장의 내용을 보면 “동사우에 필요한 재물을 수령하는 일을 장황하게 설명하여 와서 의송(議送)을 올렸다”고 한다. 대덕산이 비록 유족(遺躅)의 본지(本地)라도 나라에서 금지함이 매우 엄격한데 감히 사사로이 사우를 세울 수 없을 것이거늘, 하물며 이미 유족(遺躅) 지역이 아닌데도 단지 자손이 우거(寓居)한 것으로 인하여 이 읍에서 갑자기 논의하여 사우를 세우고 혼령(魂靈)을 안치하였다. 아, 수천년 동안 일찍이 시설되지 못했던 뒤에 과연 이와 같은 예문(禮文)이 있는 것인가? 이미 세운 사당은 법을 어겼고 또 재물을 수령하는 것을 감영의 결재(決裁)를 업고 감히 행하려하였으니 감영을 시험해보려는 꾀가 매우 놀랍고 어느 것도 이처럼 심함이 없다. 이 우리들이 진실로 능히 법으로 금하는 것이 지엄함을 안다면 어찌 혹시라도 이와 같이 했겠는가? 이미 들은 뒤에는 엄하게 막아서 바로 그치게 아니할 수 없음에 따라 이에 관문을 발송한다.

이른바 ‘사우(祠宇)를 빙자하여 돈을 걷는 폐단’은 일체 막고 금하여 감히 다시는 탐욕한 습속을 행하지 말게 하라. 만일 이러한 관문의 단속 뒤에도 만에 하나 막아내고 신척하기를 잘못한다고 들리는 바가 있으면 당해 예리(禮吏)뿐 아니라 수리향(首吏鄉)은 결단코 마땅히 특별히 엄하게 처할 것이니 두려운 마음으로 거행하게 하라. 이 우리들이 만일 혹 감영의 신척을 준행하지 않고 한결같이 제멋대로이거든 모두 이름을 조사하여 잡아 가두고 거행한 사실의 전말을 첩보함이 마땅할 일.

同日. 以諸島被災淺深民情如何報來事, 發關九邑.

【關文】爲相考事. 本道今年穡事, 未免失稔之中, 沿邑尤遜, 沿邑之中, 諸島爲甚. 當此隆冬, 殘島窮民, 果無遑汲卍離之患是隱驗? 遠外事情, 無以詳知, 茲以發關爲去乎. 本邑所屬諸島, 被災淺深, 民情如何, 卽爲詳探, 報來宜當向事.<靈光、珍島、羅州、興陽、康津、順天、長興、靈巖、扶安.>

같은 날. 여러 섬에 재화를 입은 정도와 민정(民情)이 어떠한가를 보고하라는 일로 9읍에 관문을 발송하였다.

【관문】상고할 일. 본도의 금년 농사가 흉년을 면치 못하는 중에 연해읍(沿海邑)



이 더욱 손해를 보았고, 연해읍가운데 여러 성이 심하다. 이렇게 한 겨울을 맞이하여 재화(災禍)를 입은 성의 불쌍한 백성들이 과연 허둥거리며 집을 떠나는 우환이 없겠는가? 먼 밖의 사정을 자세히 알 수 없어 이에 관문을 발송한다. 본 읍에 속한 여러 성들은 재화를 입은 정도와 민정이 어떠한가를 즉시 자세하게 조사하여 보고하는 것이 마땅할 일.<영광·진도·나주·흥양·강진·순천·장흥·영암·부안>

初七日. 聞姪女尹室喪逝<sup>140)</sup>之報, 愴悼愴悼.

7일. 조카 딸 윤씨 부인이 죽었다는 보고를 듣고 매우 서럽고 슬펐다.

同日. 以還穀火速準捧完倉事, 發甘五十州.<光州、任實、求禮、不入.>

【甘結】催糶法意, 何歲不嚴? 而如今失稔之年, 備豫接濟之策, 全靠於還穀分叱除良. 今春秧雨非不周洽, 而畢竟未移, 勸災之數, 至爲三千餘結之多, 此莫非種糧不敷, 人力未逮之致. 則今秋糶事, 尤當實捧然後, 明春接濟, 始可着手. 廣播墾闢, 亦當及時, 而官有懷保之資, 民無失農之歎. 此乃湖南幾百萬民命之大關捩, 故已自開倉之前, 以甘以題, 申飭縷縷. 意謂各邑體悉營門之苦心, 庶有改觀之實效是加尼, 見今歲除, 只隔數旬, 封倉一向延拖, 糶政蕩然, 且置勿論, 種穀農糧, 從何助給? 仵離顛連將何奠保是乙喻? 言念及此, 萬萬憂悶. 長慮却顧之道, 固當靡不庸極乙仍于, 茲更別甘, 須悉此意, 嚴飭任掌, 火速董督, 期於不多日內, 準捧完倉爲乎矣. 如或因循彌縫, 苟且磨勘是去乃, 又或如前愆緩, 居末勸簿, 則其所生梗, 當至何境? 除尋常, 另加惕念爲於. 甘到日時, 舉行形止, 星火馳報宜當者.

같은 날. 환곡을 급히 법에 준하여 거둬들여 창고를 채우는 일로 50고을에 감결을 발송하였다.<광주·임실·구례는 낼지 않음.>

【감결】환곡을 재촉하는 뜻을 생각하면 어느 해인들 엄하지 않았겠는가마는 지금 같은 흉년의 해에 진휼(賑恤) 방도를 예비하는 것은 온전히 환곡에 의지할 뿐만이 아니다. 올봄에 이양하는 비가 흠족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었지만 끝내 이양하지 못하고 감재(勘災)의 수치가 3천여 걸이나 되어 많으니 이는 종자와 양식이 넉넉

140) 상서(喪逝) : 세상을 떠나 죽었음을 말할 때, 형제 이하의 경우에는 쓰는 말이다.

하지 못하고, 인력이 미치지 못하는 소치(所致)가 아님이 없다. 금년 가을 환곡을 거둬들이는 일은 더욱 마땅히 실제대로 거둬들인 뒤에라야, 내년 봄에 진흙하는 것을 비로소 착수할 수 있고, 널리 씨를 뿌려 경작하는 것을 때에 맞추어 할 수 있어, 관청에서는 위로하고 보호하는 자원이 있어야 하고, 백성은 농사철을 놓치는 한탄이 없을 것이다. 이것은 바로 호남의 몇백만 백성의 목숨이 크게 달려있기 때문에 이미 개창(開倉)하기 이전에 감결과 데김으로 누누이 신칙(申飭)하였다.

생각건대 각 읍에서 감영의 고심을 잘 알아서 면목을 일신하는 실효가 있기를 바란다. 지금 세밀이 단지 20, 30일밖에 안 남았는데 창고를 봉하는 것이 한결같이 지연되고 있다. 적정(糶政)이 공허하게 되는 것은 우선 놔두고 논하지 않더라도, 씨앗으로 쓸 곡식과 농사지으며 먹는 식량은 무엇으로 내주겠는가? 이산(離散)된 자와 매우 가난하여 어찌할 수 없는 자들은 장차 어디에 머물며 보호받을 수 있겠는가? 생각이 이에 미치면 매우 걱정된다. 돌아보는 방도를 깊게 생각하면 진실로 마땅히 지극함을 쓰지 않을 수 없음에 따라 이에 다시 따로 감결하니 모름지기 이러한 뜻을 알고 임장(任掌)들을 엄하게 신칙하여 급히 감시하고 독촉하여 기어코 며칠 안에 법대로 거둬들여 창고에 채우라. 만일 혹시라도 구습대로 임시로 변통하여 구차하게 마감하거나 또 혹 전같이 게으르고 느슨하여 마감하는 장부에서 성적이 최하위에 있다면 그 불미스러운 바가 당연히 어떤 지경에까지 이르겠는가? 보통으로 여기지 말고 특별히 두려운 생각으로 시행하라. 감결이 도착하는 날짜와 거행한 상황을 치보하는 것이 마땅할 일.

同日. 以牛禁申飭事, 廿五十三州, 法聖、古羣山鎮.

【甘結】禁屠一事, 前後申飭, 不啻縷縷, 意謂各邑, 庶有申禁之實效是加尼, 近聞村間之間, 場市之上, 屠殺賣買, 依舊狼藉, 無邑不然, 苟能嚴立科條, 着意察檢, 則法禁之蕩然, 營飭之不行, 豈至於此是乙喻? 某某邑監色輩, 舉行勤慢, 已有所的探者, 所當分輕重, 上使嚴處, 而當此催科方急之時, 往來之弊, 亦所當念爲先. 自本邑一併嚴治是遣, 見今歲除不遠, 土豪奸民之恣意潛屠, 貿販廚隸之牟利亂賣, 難保必無, 另飭面里, 到底糾察, 如有不悛舊習, 肆然冒禁者, 則隨即捉囚, 指名牒報, 以爲加倍嚴勸之地爲乎矣. 如是別飭之後, 若或視以例飭, 慢不察禁是如可, 現發於別歧廉探, 則犯者除良, 該監色, 斷當施以刑配之典, 除尋常, 另加惕念爲旆, 甘到日時, 舉行形

止，先卽馳報宜當者．

같은 날. 소 도축 금지를 신칙하는 일로 53고을과 법성, 고군산진에 감결하였다.

【감결】 소 도축을 금지하는 한 가지 일은 전후로 신칙함이 여러 번이었을 뿐 아니라 생각건대 각 읍에 거듭 도축을 금하는 실효가 거의 있을 것으로 여겼다. 그런데 근래에 마을사이 시장에서 도살(屠殺)하여 매매함이 예대로 낭자하여 읍마다 그렇지 않은 곳이 없다고 들었다. 진실로 능히 엄하게 과조(科條)를 세워 착실히 살피고 조사했다면 법으로 금하는 것이 공허하고 감영의 단속이 행해지지 않음이 어찌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겠는가? 모모 읍의 감색(監色) 무리들의 거행하는 근만(勤慢)을 이미 정확히 탐지하고 있으니 마땅히 경중(輕重)을 가려 감영에 잡아 올려 엄하게 처단해야 하나 이렇게 납세의 독촉이 한창 급한 때를 당하여 왕래의 폐단 또한 마땅히 우선 생각해야 하니 본 읍에서 한결같이 모두 엄하게 다스리도록 하라.

지금 선달그음이 멀지 않아 토호(土豪)와 간민(奸民)들이 자의적으로 몰래 도축하고, 판매는 푸줏간 하인들의 모리(牟利)<sup>141)</sup>를 위한 난매(亂賣)가 없다고 장담할 수 없으나, 면리(面里)에서 특별히 신칙하여 살살이 규찰(糾察)하여 만일 구습을 고치지 않고 방자하게 금하는 것을 무릅쓰고 행하는 자가 있다면 그 즉시 잡아들이고 이름을 지목하여 첩보하여 배로 엄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하라. 다만, 만일 이러한 특별한 경계함이 있는 뒤에도 혹시라도 으레 하는 단속으로 여기고 업신여기며 금지하는 것을 살피지 않다가 다른 방법의 염탐으로 드러나 발각되면 범한자 뿐 아니라 해당 감색(監色)은 마땅히 형배(刑配)의 법으로 다스릴 것이니 보통으로 여기지 말라. 특별히 두렵고 삼가는 마음으로 이행하며 감결이 도착하는 날짜 거행한 상황을 우선 즉시 치보하는 것이 마땅할 일.

初八日．以金夫安等四名，治以賊律事，發關右鎮營．

【關文】 爲相考事．本鎮移囚罪人金夫安，千世行，朴良七，金啓得等四漢，稱以裂網價推尋，作黨入島，或稱軍官，或稱裨將，結縛島民，私施周牢，徵出二百兩罪狀，已經兩邑查事是在果．無賴攘奪，前後何限？而未有如此漢輩之蔑法叵測．究厥情節，無異海賊強盜．此等兇悖之漢，若不別樣嚴勸，則弱肉強食，無所不至，是豈不凜然寒心

141) 모리(牟利) : 장사에서 공익을 돌보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을 노려 부정한 이익을 꾀하는 것을 말한다.

處乎? 已令押囚本鎮是如乎, 以治盜棍, 箇箇考察, 嚴棍各三十度, 報來爲乎矣, 舉行之節, 各別申飭, 宜當尙事.

8일. 김부안(金夫安) 등 4명을 적률(賊律)로 다스리는 일로 우진영(右鎭營)에 관문을 발송하였다.

【관문】 상고할 일. 우진영으로 옮겨 가둔 죄인 김부안(金夫安) · 천세행(千世行) · 박양칠(朴良七) · 김계득(金啓得) 등 네 놈이 그물을 찢은 값을 찾아내겠다고 칭하며 우리들 지어 성에 들어가, 혹은 군관으로 칭하고 혹은 비장(裨將)으로 칭하며 성 백성들을 묶고 사사로이 주리를 틀고 2백 냥을 징수해 낸 죄상은 이미 양 읍에서 조사를 진행한 일이다. 무리배들이 힘으로 빼앗는 것이 앞뒤로 어찌 한정할 정도로 적겠는가만, 이놈의 우리들같이 법을 어기고 불측한 적은 있지 않았다. 그 정황(情況)을 규명해보면 해적이냐 강도와 다름이 없다. 이 같은 흉패한 놈들을 만약 특별히 엄하게 따져 묻지 않는다면 약육강식의 논리가 이르지 않는 곳이 없을 것이니 이것이 어찌 두렵고 한심(寒心)하게 여길 바가 아니겠는가? 이미 우진영에 잡아 가두게 했으니 치도곤(治盜棍)<sup>142</sup>으로 개개고찰(箇箇考察)하고 곤장을 엄하게 각 30대 치고 보고하되 거행한 절차를 각별히 신칙하는 것이 마땅할 것.

同日. 以金鳳梧獄事干犯諸人, 嚴覈取招事, 發關羅州牧.

【關文】 爲相考事. 本州致死金鳳梧獄事良中, 干犯在逃是在沈良言、崔應喆等, 自右鎭營捕捉, 已令移囚本州是在果, 兩漢今既就捕, 訊推得情, 不必遲待同推時是如乎. 其所犯情節, 爲先箇箇考察, 嚴刑準次, 與在囚洪興周、李光玉等, 同庭對質, 各別嚴覈, 取招牒報, 宜當尙事.

같은 날. 김봉오(金鳳梧) 옥사에 간범(干犯)된 여러 사람들을 엄하게 조사하여 진술을 받아내는 일로 나주목에 관문을 발송하였다.

【관문】 상고할 일. 나주목에서 죽은 김봉오의 옥사에서 간범으로 도망 중인 심량언(沈良言) · 최응철(崔應喆) 등을 우진영(右鎭營)으로부터 붙잡아 이미 나주목으로 옮겨 가두었다. 두 놈을 지금 잡았으니 심문하여 정황을 밝히는 것은 반드시 합동

142) 치도곤(治盜棍) : 조선 시대에 죄인의 볼기를 치는 데 쓰던 곤장의 하나로, 가장 큰 것은 길이 5자 7치, 너비 5치 3푼, 두께 4푼이나 되며 주로 절도범 등에게 쓰였다.

조사까지 지체하여 기다릴 필요가 없다. 그들이 잘못된 정황을 우선 개개고찰(箇箇考察)하여 준차(準次)로 엄하게 형신(刑訊)하고 가두어 놓은 홍흥주(洪興周)·이광옥(李光玉) 등과 더불어 같은 자리에서 대질시키고 특별히 엄하게 조사하여 진술을 받아 첩보(牒報)함이 마땅할 일.

初九日. 判官入見. 沃溝縣監金秀萬、靑巖察訪李東韻、光陽縣監沈兢祖, 以慶基殿臘享祭差備官, 來見.

9일. 판관이 입견하였다. 옥구 현감 김수만(金秀萬)·청엄 찰방 이동운(李東韻)·광양 현감 심금조(沈兢祖)가 경기전 납향제(臘享祭) 차비관(差備官)으로 와서 보았다.

同日. 因備局禮曹關, 以右道監試, 設行於全州府事, 發廿五十二州, 法聖、古羣山鎮.

【甘結】筋到付備邊司關內, “筋啓下教, 今十一月二十五日, 藥房入診, 大臣, 備局堂上, 引見入侍時, 領議政李<相瓚>所啓, ‘以昨秋失稔, 今年式初, 仰請退行於明春, 而今秋又此荐歉, 京外事情之主客俱困, 明春與今秋等耳. 然而明春若不得設行, 又拖到明秋, 則果使歲稔, 民紓燕勅, 又不能無慮. 若又巧值尤有所難處者, 三年大比, 有國之大政, 決不容踰越常限, 勢將依該曹擇日設試, 而至於省弊之方, 不可無另加留意. 曾於昔日, 有各道式初試於監營之故事, 蓋營下事力有非殘弊, 各邑之比舉子之聚會住接, 宜有勝焉. 且各邑之設場受弊, 亦不無紓減之益, 明春各道大小初試, 依先朝丁巳年例, 左右道設試之處, 則都事勿爲差送, 令道臣及京試官分試, 而北道則道臣與評事, 分所設場, 江原、黃海兩道, 則令該營都聚設行, 不害爲一時權宜之政, 故敢此仰達矣.’ 上曰: ‘依爲之’ 事 傳教教是置, 傳教內事意奉審施行 向事” 關是齊. 一時 到付禮曹關內, “筋啓下教, 來甲午式年, 諸科初試事目, 去五月 良中, 已爲啓下, 行會是 在果. 今番因大臣筵奏, 就事目中, ‘鄉試, 公忠、全羅等左道京試官, 右道監司、慶尙左道監司. 右道京試官, 平安南道監司. 北道京試官, 咸鏡南道監司、北道評事, 試取. 其餘合道爲 白在, 江原、黃海等道, 監司試取事, 改付標啓下爲 有置, 啓下內辭意奉審施行, 宜當 向事,’ 兩度 關是置有亦, ‘右道監試邑, 定於全州府爲 去乎, 境內士子 良中, 一一知委爲 旆, 甘到日時, 卽爲牒報宜當者.’ ” 云云 關是置有亦. 右道監試邑, 定於本府爲 去乎, 境內士子 良中, 一一知委爲 旆, 科場諸具, 預爲經

紀, 俾無臨時窘速之弊, 宜當者.<全州>

같은 날, 비변사(備邊司)와 예조(禮曹)의 관문으로 인하여 우도(右道)<sup>143)</sup> 감시(監試)<sup>144)</sup>를 전주부에서 설행(設行)하는 일로 52주와 법성(法聖)진, 고군산(古羣山)진에 감결을 발송하였다.

【감결】 이번에 받아본 비변사의 관문에 “이번에 계하(啓下)하신 올 11월 25일 약방(藥房)이 입진(入診)할 때, 대신(大臣)들과 비국당상(備局堂上)을 주상께서 인견(引見)하여 입시(入侍) 한 자리에서 영의정 이상황(李相瓚)이 아뢴 바는 ‘작년 가을 흉년으로 금년의 식년시 초시를 내년 봄으로 미루어 행할 것을 우러러 청하였는데, 올 가을 또 이렇게 거듭 흉년들어 서울과 지방의 사정이 주객(主客)이 모두 빈곤하여 내년 봄이 올 가을과 더불어 같을 뿐입니다. 그러니 내년 봄에 만약 식년 초시를 설행(設行)하지 못하고 끌어 내년 가을까지 미루어지게 된다면 진실로 풍년들게 하여 백성들의 허리를 펴게 하고 편안하게 위무하게 하는 것 또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또 공교롭게 더욱 난처한 바가 있는 경우를 만나게 되면, 삼년마다 하는 대비(大比)<sup>145)</sup>는 나라의 큰 정사이니 결코 정해진 기한을 건너될 수는 없습니다. 형편상 장차 해당 관청이 날을 잡은 것으로 식년 초시를 시행하고 폐해를 줄이는 방책에 대해서는 따로 생각을 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찍이 지난날에 각도의 식년 초시는 감영의 오래된 규칙에 있으니, 감영의 사세(事勢)와 재력(財力)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면 각 읍 가운데 거자(擧子)들이 모여 거주하는 곳에서 뽑는 것이 마땅히 승산이 있습니다. 또 각 읍이 과장(科場)을 설치할 때에 발생하는 폐단도 줄이는 이익이 없지 아니하니, 내년 봄의 각도의 대과 소과의 초시(初試)는 선조(先朝) 정사년(1797)의 예에 의거하여 좌·우도의 과장(科場)을 설치하는 곳은 도사(都事)는 차출하여 보내지 말고 도신(道臣)과 경시관(京試官)<sup>146)</sup>으로 나누어 시험을 보아 인재를 뽑고, 북도(北道 함경도)는 도신(道臣)과 평사(評事)<sup>147)</sup>가 과장을 나누어 설치하고, 강원(江原)·황해(黃海) 양도는

143) 우도(右道) : 조선 시대에 각 도를 둘로 나누었을 때 그 한쪽을 이르던 말인데,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황해도인 경우에는 서쪽이고, 경기도의 경우에는 북쪽이다.

144) 감시(監試) : 국자감시(國子監試)의 준말로, 생원(生員)과 진사(進士)를 뽑던 과거(科擧)을 말한다.

145) 대비(大比) : 대비과(大比科)로, 선조(宣祖) 36년(1603) 이후 식년(式年)시에 실시된 과거를 일컫는다.

146) 경시관(京試官) : 조선 때 3년마다 각 도에서 과거(科擧)를 보일 때에 서울에서 보낸 시험관(試驗官)을 말한다.

147) 평사(評事) : 병마평사(兵馬評事)로, 조선 시대에 병영의 사무와 그에 속한 군사를 감독하던 정6품

해당 감영으로 하여금 모두 한곳에 모아 설행하면 일시의 임시적인 편의의 정사를 하는데 해롭지 아니하기 때문에 감히 이렇게 우러러 진달(進達)합니다’ 하니, 상께서 ‘아뢴 대로 할 일.’ 이라고 전교(傳敎)하시었다. 전교(傳敎)안의 뜻을 봉심하여 시행할 일.” 하였다.

동시에 도착한 예조의 관문에 “이번에 계하(啓下)하신 오는 갑오(甲午)년 식년시의 여러 과의 초시(初試) 사목(事目)은 지난 5월에 이미 계하(啓下)하신 것을 행회(行會)하였다. 금번 대신들이 경연에서 아뢴 것으로 인하여 사목(事目) 가운데 ‘향시(鄉試)에 공충(公忠 지금의 충청도(忠淸道))·전라(全羅) 등의 좌도(左道)는 경시관(京試官), 우도(右道)는 감사(監司), 경상(慶尙) 좌도(左道)는 감사(監司), 우도(右道)는 경시관(京試官), 평안남도(平安南道)는 감사(監司)로, 북도(北道)는 경시관(京試官), 함경남도(咸鏡南道)는 감사(監司)·북도(北道)는 평사(評事)가 시취(試取)하라. 그 나머지 도(道)를 합한 강원(江原)·황해(黃海) 등의 도(道)는 감사(監司)가 시취(試取)할 일로 부표(付標)를 고쳐 계하(啓下)하였다. 계하(啓下) 내의 사의(辭意)를 봉심하여 시행함이 의당 할 일’ 로 두 번 관문하였다. 우도(右道)의 감시(監試)를 실시하는 읍(邑)은 전주부(全州府)로 정하니 경내(境內)의 선비들에게 하나하나 알려주고 감결이 도착하는 일시를 즉시 첩보함이 마땅할 것.” 하였다.

우도(右道)의 감시(監試)를 실시하는 읍(邑)은 전주부(全州府)에서 정한다고 하였으므로 경내(境內)의 선비들에게 하나하나 알리고, 과장(科場) 제구(諸具)들을 미리 다스리고 처리하여 때에 임하여 군색한 폐해가 없게 함이 마땅할 일.<전주>

同日. 封運牟裝發啓.

【狀啓】本道區劃是白在, 均役廳貿牟, 多在於山野諸邑, 出浦遙遠, 勢難陸運, 故就各邑中, 距海稍近處, 畧綽分排, 裝運上送, 計料之由, 前已馳啓爲白有在果. 沿野各邑中, 傾庫分排, 連加董督, 卽速出浦爲白遣. 領運差使員以古羣山僉使金寬善, 差定, 使之收聚監捧, 星火裝發, 期於未凍前, 輸納京廳是白加尼. 卽接該僉使所報, 則各邑皮牟所載船隻, 連因風勢不利, 多日淹滯, 今纔齊到, 而都聚斛量, 僅爲一萬石乙仍于, 分數裝載於德積船十隻, 十二月初六日, 自本鎮前洋, 發船是如爲白有臥乎所.

무관 벼슬이다.

見今凍沍節深，北風連吹，行船之節，另加小心之意，申飭題送爲白遣。謹因籌司啓下關，同皮牟一萬石內，二千五百石，到江華除置，五千石，到通津卸下，傳授於京畿差員，二千五百石，仍卽領到京江，以爲傳授於廣州之意，亦爲消詳知委於差使員處爲白乎旅。各船所載穀數·監色·沙工姓名，後錄馳啓爲白臥乎事是良尔。

○皮牟一千二百三十七石八斗，裝載於一船，沙工裴希龍船一隻，靈光監官丁海壽，色吏洪章學，長興監官姜熙奎，色吏趙世球等領騎。○皮牟一千一百三十六石十三斗，裝載於二船，沙工金大三船一隻，咸平監官牟尙表，色吏李贊憲，光州監官金彥成等領騎。○皮牟一千七十四石，裝載於三船，沙工金宗文船一隻，海南監官任就學，色吏金應華，順天監官魯有哲，色吏朴慶郁等領騎。○皮牟一千五十二石裝載於四船，沙工金仁宗船一隻，寶城監官李基性，色吏文遇眞，珍島監官河孟祚，色吏朴敏晟等領騎。○皮牟一千石裝載於五船，沙工金宗允船一隻，康津監官金啓孫，色吏金鎰奎等領騎。○皮牟九百四十二石十一斗裝載於六船，沙工徐鍾甫船一隻，光州色吏崔贊宗領騎。○皮牟七百三十七石裝載於七船，沙工張益辰船一隻，務安監官李陽七，色吏丁就信等領騎。○皮牟八百三十三石五斗裝載於八船，沙工林遇春船一隻，綾州色吏宋民浩領騎。○皮牟七百三十六石八斗裝載於九船，沙工鄭貴仁船一隻，靈巖監官千孟祚，色吏金致淳等領騎。○皮牟一千二百五十石裝載於十船，沙工金錫禹船一隻，羅州監官崔壽彥，色吏金光秋，南平色吏丁揚旭等領騎。

같은 날. 운송할 보리의 장발(裝發 꾸러 실어 보냄)에 대한 장계를 봉하였다.

【장계】 전라도에 구획(區劃)된 균역청의 보리 구입은 대부분 산야(山野)의 고을에 있어 포구로 나가는 것이 아득히 멀고 형세가 육로로 운반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각 읍 가운데 바다와 거리가 조금 가까운 곳으로 가서 적당히 분배하여 실어 운반하여 올려 보낼 계획이라는 연유를 전에 이미 급히 아뢰었습니다. 들가에 있는 각 읍 가운데 창고의 곡물을 전부 털어서 분배하여 연이어 더욱 독책하여 즉시 빨리 포구로 나갔습니다.

영운 차사원(領運差使員)은 고군산(古羣山) 첨사(僉使) 김관선(金寬善)을 차정(差定)하여 그로 하여금 거둬 모으는 것을 감독 하게하고 급히 실어 보내 얼음이 얼기 전에 경청(京廳)에 운송하여 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번에 고군산 첨사(僉使)의 보고를 접해보면 각 읍의 걸보리를 실은 선박은 연이어 풍세(風勢)가 좋지



얇은 것으로 인하여 여러 날 막히고 지체되다가 지금 겨우 일제히 도착하여 모두 모아 곡(斛)으로 헤아린 것이 겨우 1만 섬이 됨에 따라 덕적선(德積船) 10척에 나누어 꾸려 싣고 12월 6일 고군산진 앞 바다에서 배를 출발하였다 합니다.

지금 추위가 몹시 심하고 북풍이 연이어 불어 배를 운행하는 사항에 특별히 더 조심해야하는 뜻을 신칙하는 제사(題辭)를 보냈습니다. 삼가 비변사의 계하(啓下) 관문으로 인하여 동 피모(皮牟) 1만 섬 가운데 2천5백 섬은 강화(江華)에 도착하여 덜어주고 5천섬은 통진(通津)에 도착하여 풀어서 경기차원(京畿差員)에게 전해 주고, 2천5백 섬은 그대로 경강(京江)에 도착 하게하여 광주(廣州)에 전해주라는 뜻을 차사원(差使員)에게 소상(消詳)히 알렸습니다. 각 배에 실은 곡식의 수효와 감색(監色)과 사공(沙工)의 성명을 후록하여 치계(馳啓) 하옵는 일.

○피모(皮牟) 1천2백3십7섬 8말을 제1선(船)인 사공(沙工) 배희룡(裵希龍)의 배 1척에 꾸려 싣고, 영광 감관(監官) 정해수(丁海壽) · 색리(色吏) 홍장학(洪章學) · 장흥 감관 강희규(姜熙奎) · 색리 조세구(趙世球) 등이 함께 타고 인솔함.

○피모(皮牟) 1천1백3십6섬 3십말을 제2선(船)인 사공 김대삼(金大三)의 배 1척에 꾸려 싣고, 함평 감관 모상표(牟尙表) · 색리 이찬헌(李贊憲) · 광주 감관 김언성(金彦成)이 함께 타고 인솔함.

○피모(皮牟) 1천7십4섬을 제3선(船)인 사공 김종문(金宗文)의 배 1척에 꾸려 싣고, 해남 감관 임취학(任就學) · 색리 김응화(金應華) · 순천 감관 노유철(魯有哲) · 색리 박경욱(朴慶郁) 등이 함께 타고 인솔함.

○피모(皮牟) 1천5십2섬을 제4선(船)인 사공 김인종(金仁宗)의 배 1척에 꾸려 싣고, 보성 감관 이기성(李基性) · 색리 문우진(文遇眞) · 진도 감관 하맹조(河孟祚) · 색리 박민성(朴敏晟) 등이 함께 타고 인솔함.

○피모(皮牟) 1천섬을 제5선(船)인 사공 김종윤(金宗允)의 배 1척에 꾸려 싣고, 강진 감관 김계손(金啓孫) · 색리 김일규(金鎰奎) 등이 함께 타고 인솔함.

○피모(皮牟) 9백4십2섬 11말을 제6선(船)인 사공 서종보(徐鍾甫)의 배 1척에 꾸려 싣고, 광주 색리 최찬종(崔贊宗)이 함께 타고 인솔함.

○피모(皮牟) 7백3십7섬을 제7선(船)인 사공 장익진(張益辰)의 배 1척에 꾸려 싣고, 무안 감관 이양칠(李陽七) · 색리 정취신(丁就信) 등이 함께 타고 인솔함.

○피모(皮牟) 8백3십3섬 5말을 제8선(船)인 사공 임우춘(林遇春)의 배 1척에 꾸려 싣고, 능주 색리 송민호(宋民浩)가 함께 타고 인솔함.

○피모(皮牟) 7백3십6성 8말을 제9선(船)인 사공 정귀인(鄭貴仁)의 배 1척에 꾸려  
실고, 영암 감관 천맹조(千孟祚)·색리 김치순(金致淳) 등이 함께 타고 인솔함.

○피모(皮牟) 1천2백5십 성을 제10선(船)인 사공 김석우(金錫禹)의 배 1척에 꾸려  
실고, 나주 감관 최수연(崔壽彦)·색리 김광추(金光秋)·남평 색리 정양욱(丁揚  
旭) 등이 함께 타고 인솔함.

初十日. 食後出知印廳成服<sup>148</sup>). <姪女喪聞訃之第四日.> 泰仁縣監沈能淑, 以慶基殿臘享祭差  
備官, 來見. 預差靑巖察訪入見辭去. 中營將入見.

10일. 식후에 지인청(知印廳)<sup>149</sup>에 나가 성복(成服) 하였다.<질녀의 상으로 부음을 들은  
지 제 4일째> 태인 현감 심능숙(沈能淑)이 경기전 납향제(臘享祭) 차비관(差備官)으로  
와서 보았다. 차비관(差備官)으로 미리 정한 청엄 찰방(靑巖察訪)이 입견하여 하직하  
고 갔다. 중영장이 입견하였다.

同日. 申後詣慶基殿齋所. 祭官諸執事入見.

10일. 신시(申時) 후에 경기전 재소(齋所)로 나갔다. 제관(祭官)과 제집사(諸執事)가 입견하였다.

148) 성복(成服) : 초상이 나서 처음으로 상복을 입는 것으로, 보통 초상난 지 나흘 되는 날부터 입는다.

149) 지인청(知印廳) : 관아의 관장(官長) 앞에 딸리어 관찰사나 수령의 직인(職印)과 각종 인장을 관리  
하며 잔심부름하던 이속(吏屬)이 있던 곳으로 통인청(通引廳)이라고도 한다.

## 5. 1833년(순조33) 12월 11~20일 : 대동면포(大同綿布)를 상소하다

十一日. 曉行祭後, 還營軒, 封行祭啓.

【狀啓】 今十二月十一日, 行慶基殿臘享祭, 精備奠物, 差定祭官, 依禮文設行後, 獻官·諸執事職姓名開錄于後爲白乎旆, 緣由謹具啓聞.<獻官, 行觀察使徐有槩. 典祀官兼大祝, 沃溝縣監金秀萬. 祝史, 全州判官李義平. 齋郎, 令鄭胄錫. 贊者, 泰仁縣監沈能淑. 謁者, 光陽縣監沈兢祖.>

11일. 새벽에 납향제를 지낸 뒤에 영헌(營軒)으로 돌아와 제사를 지낸 것을 장계로 써서 봉하였다.

【장계】 지금 12월 11일 경기전 납향제(臘享祭)를 행할 때에 정성껏 제물을 갖추고 제관을 차정(差定)하여 예문(禮文)에 의거하여 진설하여 제사를 행한 뒤에 헌관과 제집사의 직위와 성명을 뒤에 날날이 적었사오며 이러한 연유로 삼가 갖추어 아립니다.<헌관 행(行) 관찰사 서유구, 전사관 겸 대축(典祀官兼大祝) 옥구 현감 김수만(金秀萬), 축사(祝史) 전주 판관 이희평(李義平), 재랑(齋郎) 영(令) 정주석(鄭胄錫), 찬자(贊者) 태인 현감 심능숙(沈能淑), 알자(謁者) 광양 현감 심금조(沈兢祖).>

同日. 朔膳進上監封. 泰仁縣監、光陽縣監、沃溝縣監, 入見辭去.

11일. 삭선(朔膳)할 진상품을 감봉(監封)하였다. 태인 현감·광양 현감·옥구 현감이 입견하여 하직하고 갔다.

十二日. 判官入見.

12일. 판관이 입견하였다.

同日. 以山郡大同綿布純錢代捧事, 陳疏封發.

【上疏】 伏以臣强策桑榆之頽景, 冒膺方面之重寄, 倏已九閱月, 而歲行盡矣. 志雖切於圖酬, 精實短於剴理, 跋前疐後, 隨事杆格, 每一循省, 惶汗浹背. 況值備無俱極,

災傷溢目，秋穫纔畢，瓶罌已罄，春窮未屆，捐瘠載路，臣始焉昧勸相之方，田卒汚萊，終焉失撫綏之政，流亡日聞，莫體宵旰之憂勤，厚招寒暑之怨咨，臣罪至此，萬殞猶輕。至於綿農大無之實，前已槩陳于軍布請代之狀矣。初夏亢旱，立苗既踈，入秋淫澇，結房旋落，竟畝採捋，不盈一朶，室廢纒績，市絕貿遷，故老皆謂“似此慘歉，百年以來所未有也。”分數代捧之令，豈不誠爲寬一分之惠？而一縷之絲、半銖之絮，其爲無麪之不托，則同耳，其勢不得不以倍蓰之直，遠貿於他省，而常年三四疋而有餘者，今貿一半疋而不足。道路之費，又在其外，哀彼鶉衣鷓形之類，那堪蚊負鉅馳之責？軍需既重，屢瀆爲懼。雖不敢更作踰分之請，而山峽列邑之大同綿布，又將次第催科矣，厥數則百倍於軍布，民力則轉困於弩末，刮龜、出穀未足爲喻。苟不曲軫其近止之命，施惠於經法之外，而追擾以督之，椎剝以隨之，則其不爲浮梗棲苴之飄蕩靡泊也，果幾何哉？或以爲恩不可竭，惠不可徼，前此兩年，賦布之許代，迥出常格之外，特寓寧失之義，今不宜更陳此請，殆若歲課者然，臣以爲不然也。凡係蠲紓民力之政，只觀被災淺深而已。今年綿荒，既不啻前年之比則，又何拘於恩典之踈數？而不以已施於前年者，施之於今年，致使聖朝若保如傷之仁，優於前而斬於後乎？宋臣蘇軾之言曰，“譬如民庶之家，置庄田招佃客，本爲租課，非行仁義，然猶至水旱之歲，必須放免欠負，借貸種糧者，其心誠恐客散而田荒，後日之失，必倍於今故也。”今臣之不避猥越，塵瀆崇嚴，區區過慮，亦恐以財賦根本之地，有客散田荒之憂，則將於國計何？將於民生何？臣誠熏厲耿結，繞壁明發，敢將民隱，馳驛控聞，瞻望雲天，不勝隕越。仰惟階前萬里，無遠不燭。優恤之典，不待臣言之畢。特命先治臣辜負委畀之罪，以肅朝綱，仍令攸司本道山邑大同綿布，並許純錢代捧，俾環一道，萬億生靈，咸有以衣被，帡幪覆燾之深仁厚澤，千萬幸甚。臣無任屏營祈懇之至。

같은 날. 산군(山郡)의 대동 면포를 순전으로 대신 바치게 하는 일에 대한 상소를 밀봉하여 발송하였다.

【상소(上疏)<sup>150)</sup>】 앞드려 생각건대 신은 상유(桑榆)<sup>151)</sup>같은 인생의 말년에 임금께 부림을 받아 외람되게 막중한 관찰사의 임무를 받고 어느덧 9개월이 지나 해가 다

150) 상소(上疏) : 여기에서는 신하가 국왕에게 올리는 관부 문서로, 건의(建議)·청원(請願)·진정(陳情) 등의 내용이며, 사인(私人)·유생(儒生)이 국왕에게 올리는 사인문서와 구별이 필요하다.

151) 상유(桑榆) : 저녁 해가 뽕나무와 느릅나무 위에 걸려 있다는 뜻으로, 노년이나 만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가고 있습니다. 뜻은 비록 보답하려는 마음이 절실하였으나 정실(精實)이 전리(轉理)<sup>152)</sup>에 부족하여 앞으로 가도 넘어지고 뒤로 가도 미끄러지며 매사에 어긋나는 데도 매 한결같이 어루만져주고 살피주시니 두려운 마음으로 땀이 등을 적십니다. 하물며 준비를 모두 다하지 못했을 때를 당하여 재화(災禍)로 훼손된 것이 눈에 넘치고, 가을걷이가 막 끝났는데도 향아리마다 비어있고, 춘궁기는 이르지 않았는데도 수척하게 버려진 사람이 길에 쌓여 있는 형편이니 어떨겠습니까?

신은 처음엔 권장하고 도와주는 방법을 몰라 받은 끝내 거친 목정밭이 되었고, 나중에 백성을 어루만져 편안히 해주는 정사를 못하여 백성들의 유망이 날마다 들립니다. 소간지우(宵旰之憂)<sup>153)</sup>하는 부지런함을 체득하지 못하고 추울 때나 더울 때나 원망만을 두텁게 초래하였으니 신의 죄가 여기에 미치니 만 번 죽어도 오히려 가볍습니다. 면화농사가 큰 흉년에 이르러서는 전에 이미 군포를 돈으로 대신 바치게 해달라는 장계로 대략 아뢰었습니다. 초여름의 오랜 가뭄으로 싹이 트는 것이 성글게 되었고, 가을로 접어들면서 큰 장마로 맺힌 꽃송이가 빨리 떨어져 결국 밭이랑에서 채취할 것이 한 움큼도 차지 아니하니 집에서는 고치를 켜고 길쌈하는 것을 폐하였고, 시장에서는 교역하는 것이 끊겼습니다. 따라서 노인들은 모두 “이처럼 참혹한 흉년은 백년 이래 있지 않았다.” 라고 말합니다.

일부를 돈으로 대신 바치게 하는 칙령(勅令)은 어찌 진실로 한 푼이라도 넉넉해지는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마는 한 올의 실과 반 수(銖)<sup>154)</sup>의 적은 솜은 밀가루 없이 국수를 만드는 꼴<sup>155)</sup>과 같을 뿐입니다. 그 형세가 두 배나 다섯 배의 값으로 멀리 다른 마을에서 구입하지 않을 수 없는데, 보통 해에는 3,4필(疋)로도 남짓이던 것이 지금은 한 필 반을 구입하는데도 부족합니다. 도로의 비용은 또 그 외의 것이니 불쌍한 저 헤진 옷과 몹시 굶주린 모습의 우리들이 어찌 모기가 노래기를 업고 달리는 책임을 감당하겠습니까?

군수(軍需)는 막중하여 여러 번 번거롭게 아뢰기가 두려워서, 비록 감히 다시 분수를 넘는 청을 할 수 없을지라도 산협(山峽)의 여러 읍의 대동 면포는 또 장차

152) 전리(轉理) : 혼자 오로지 하는 전결(專決)과 처리(處理)를 말한다.

153) 소간지우(宵旰之憂) : 새벽 일찍 일어나 옷을 입고 밤늦게 식사를 하는 것으로, 정사에 힘쓰는 임금의 근심을 뜻한다.

154) 수(銖) : 무게 단위로 한 냥의 24분의 1이다.

155) 밀가루……꼴 : 원문의 ‘불탁(不托)’은 밀국수나 밀가루 떡을 말한다. 따라서 무면불탁(無麵不托)은 ‘밀가루가 들어 있지 않은 국수’라고 하여 근본적인 요소가 준비되지 않고는 어떤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말로, 군포를 조금 줄여주기 보다는 돈으로 내게 하는 것이 보탬이 됨을 말한 것이다.

차례로 독촉할 것이니 그 수치는 군포보다 백배나 더하고 백성의 힘들은 더욱 노말(弩末)<sup>156</sup>의 형세 보다 곤궁해져 팔귀(刮龜)<sup>157</sup>·출고(出戩)<sup>158</sup>같은 일에도 족히 비유할 바가 아닙니다. 진실로 근지(近止)<sup>159</sup>한 어명을 곡진(曲軫)하게 하시고 경법(經法) 외의 은택을 베풀지 않고 다그쳐 독촉하시고 매섭게 내쳐 수행(隨行)하게 하신다면 저 부경(浮梗)<sup>160</sup>같이 떠돌고 서저(棲莛)<sup>161</sup>같이 말라붙게 되지 않는 자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혹자는 은전은 갈구할 수 없고 자비로움은 요행을 바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두해전에 대동포를 돈으로 대신 납부하도록 한 것은 일상의 법과는 매우 달랐으나 특별히 영실(寧失)의 뜻에 기대어 나왔으니 지금 온당치 않게 다시 이러한 청을 진소(陳疏)하는 것이 거의 해마다 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만, 신은 그럴지 않다고 여깁니다.

무릇 백성의 힘들을 덜어주고 퍼주는 것에 관계된 정사는 단지 재난을 입음이 심한지 아닌지를 볼 뿐입니다. 금년의 면화는 황폐하여 이미 전년에 비할 수 없을 뿐만이 아니니 또 어떻게 은전의 드물고 잦음에만 구애되겠습니까? 이미 전년도에 시행한 것을 금년에 이를 시행하지 아니하여 성조(聖朝)의 약보여상(若保如傷)<sup>162</sup> 같은 인(仁)이 전에는 넉넉하게 하였으나 뒤에는 인색하다고 하시겠습니까? 송나

- 
- 156) 노말(弩末) : 커다란 활의 통기는 힘이라는 뜻으로, 견잡을 수 없는 기세로 뻗어 나오는 세력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 157) 팔귀(刮龜) : 털 없는 거북 등을 긁어 터력을 만드는 일은 수고만 할 뿐 보람이 없음을 비유한 말이다. 소식(蘇軾)의 동파팔수(東坡八首) 시에 “거북의 등에서 터력을 긁어내어라, 어느 때에 털방석을 만들 수 있을까? [刮毛龜背上, 何時得成氈]” 하였다.
- 158) 출고(出戩) : 뿔 없는 염소를 내놓으라는 것으로, 백성들이 도저히 낼 수 없는 조세를 내게 하는 것을 뜻한다. 『시경』 「빈지초연(賓之初筵)」에 “취하여 망언을 하는 자에겐, 뿔 없는 염소를 내놓으라 하리라. [由醉之言, 俾出童戩]” 하였다.
- 159) 근지(近止) : 나라의 운명이 급하게 되었다는 뜻으로, 『시경(詩經)』 「운한(雲漢)」에, 죽음의 운명이 가까이 다가왔다는 뜻의 ‘대명근지(大命近止)’라는 말에서 유래하였다.
- 160) 부경(浮梗) : 떠다니는 도경(桃梗)으로 정처 없이 표류하는 것을 비유한다. 도경은 복숭아나무로 만든 인형이다. 『전국책』 「제책(齊策)」에, “토우(土偶)가 도경에게 말하기를, ‘지금 그대는 동국(東國)의 도경으로 나무를 깎아서 사람꼴을 만든 것이다. 그런데 비가 내려 치수(淄水)가 불어 그대를 떠내려 보내니 그대는 표표히 떠서 장차 어디로 가려느냐?’ 하였다.” 한 데서 온 말이다.
- 161) 서저(棲莛) : 물이 빠져서 나무 위에 말라붙어 있는 물풀을 말한다. 『시경』 「소민(召旻)」에 “마치 저 해가 가물어 풀이 무성하지 못함과 같고, 마치 나무 위에 걸려 있는 물풀과 같다.[如彼歲旱, 草不潰茂, 如彼棲莛]” 하였다.
- 162) 약보여상(若保如傷) : 백성들을 갓난아이 보호하듯 대하고, 다친 사람처럼 가엾게 여긴다는 뜻이다. 『맹자(孟子)』 「이루 하(離婁下)」에 “문왕은 백성들을 보기를 다친 사람처럼 하였다.[文王視民如傷]” 하였고, 『서경(書經)』 「강고(康誥)」에 “몸에 병이 있는 것처럼 여기면 백성들이 모두 허물을 버릴 것이며, 갓난아이를 보호하듯이 하면 백성들이 편안히 다스려질 것이다.[若有疾, 有民其畢棄咎, 若保赤子, 惟民其康乂]” 하였다.

라 신하 소식(蘇軾)의 말에 의하면 ‘비유하면 마치 백성의 집에 장원(莊園)과 논밭을 마련해 놓고 전객(佃客)<sup>163)</sup>을 불러들이는 것은 본래 토지의 세를 받아먹기 위한 것이지 인의(仁義)를 행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수해(水害)와 한해(旱害)가 있을 경우 이들은 반드시 전객(佃客)의 흥부(欠負)<sup>164)</sup>를 면제해 풀어주고 씨앗과 양식을 빌려주는 것은 마음이 진실로 전객이 흠어져 농토가 황폐해지면 훗날 잃는 것이 반드시 지금보다 갑절이나 많아질 것을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신이 외람되고 주제넘음을 피하지 않고 숭엄(崇嚴)함을 더럽히고 업신여기며 용렬하게 염려가 지나친 것 또한 재정(財政)의 근본인 전라도를 걱정하는 것이니, 전호(佃戶)가 흠어지고 밭이 황폐해지는 근심이 있다면 장차 나라의 살림은 어떻게 하며, 장차 백성의 생계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신은 진실로 애태우며 힘써 마음에 걸려 편치 않아 벽을 땀똥다 새벽이 밝음에 감히 백성의 고통을 역마를 달려 아뢰고 대궐을 우러러 보니 간절하고 두려운 마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러러 생각하면, 섬돌 앞 만 리의 먼 데까지 등불이 비추지 않음이 없습니다. 넉넉하게 구휼하는 은전은 신의 말이 다함을 기다릴 필요 없이 특별히 먼저 신에게 관찰사의 직임을 맡겨주었던 것을 저버린 죄를 다스리게 하여 조정의 기강을 엄숙하게 하시고 또 말은 바 본도 산음(山邑)의 대동 면포를 모두 순전(純錢)으로 대신 거둬들이라고 허용하시어 전 도(道)의 만억 백성들을 모두 보호하고[병몽(幘幪)] 덮어주는<sup>165)</sup> 깊은 은덕과 두터운 은택을 입게 해주시기를 천만번 바랍니다. 신은 지극히 두렵고 간절한 마음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同日. 題金堤郡檢案.<被告金自興, 與李末孫爭詰後, 李末孫因病致死事. 初檢官金堤郡守李玄好.>

【題】屍帳捧上是在果. 以言乎脉錄, 則渾身了無傷損之痕. 以言乎詞證, 則各人俱有實際之語分叱除良. 今因冬候之垂戾, 間多時疾之流行是隱則, 李末孫, 本以久疴之弱骨, 又罹傷寒之重痛, 故初日之寒熱, 死時之狂奔, 明是再傳經之惡症是如乎. 末孫之死非打, 伊病萬無一疑是去乙, 屍親之徑先發告. 雖極不審是矣, 愚迷苦主, 何足責

163) 전객(佃客) : 남의 땅을 빌어 농사짓는 사람을 말한다.

164) 흥부(欠負) : 경작자가 지주에게 납부해야할 곡식량에서 부족한 양과 경작자가 지주에게 빌린 부채를 말한다.

165) 덮어주는 : 원문의 ‘부도(覆燾)’는 은혜를 베풀고 보호함을 비유한 말이다. 도(燾)는 도(幬)와 통용된다. 『예기』에, “비유하면 천지는 실어주고 덮어주지 않는 것이 없다.[辟如天地之無不持載]” 하였다.

也? 卽爲出給屍體, 使之埋瘞爲殮. 至若被告之金自興段, 三十文口錢, 此胡必爭之事? 而執領捋鬚, 攬指推頂, 豈可曰初不相鬪乎? 徒以無痕損之緊重, 雖置諸薄勘之科, 焉得免懲礪之典乎? 爲先嚴刑, 取招牒報, 餘外諸人並只放送宜當向事.

같은 날. 김제군 검안을 데김하였다.<피고 김자흥(金自興)은 이말손(李末孫)과 더불어 다투고 힐문한 뒤에 이말손이 병이 나서 죽은 일. 초검시관 김제 군수 이현호(李玄好).>

【데김】시장(屍帳)을 받아 보았다. 검시(檢屍) 기록으로 말하면 온몸에 상처로 훼손된 흔적이 없고, 증언으로 말하면 각 사람들이 모두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말한다. 뿐만 아니라 지금 겨울 기후가 정상에서 벗어나 간간이 계절로 인한 질병의 유행이 많은즉, 이말손은 본래 만성 학질을 앓은 약골로 또 추위에 상해 중병에 걸렸기 때문에 첫날의 오한과 발열과 죽을 때의 광분(狂奔)은 분명 전경(傳經)<sup>166)</sup>의 나쁜 증상이 재발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이말손의 죽음은 타살이 아니라 그의 병 때문이라는 것이 만에 하나라도 의심이 없거늘, 시친(屍親)이 경솔하게 먼저 함은 극히 상세히 살피지 않은 것이 우매한 고주(苦主)<sup>167)</sup>에게 무엇을 족히 책망하겠는가? 즉시 시체(屍體)를 내주어 묻게 하라. 피고 김자흥같은 자에 이르러서는 30문(文)<sup>168)</sup>의 구전(口錢)<sup>169)</sup>이 어찌 반드시 싸울 일이었겠는가? 그러나 옷깃을 잡고 수염을 비틀며 손가락을 꺾고 이마를 미는 것이 어찌 애초에는 서로 다투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다만 급소에 상처의 흔적이 없다는 것으로 비록 죄인을 가벼운 죄목으로 처벌한다고 해도 어찌 징계하는 법망을 벗어날 수 있겠는가? 우선 엄히 형신하여 진술을 받아 첩보하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모두 내보냄이 마땅할 일.

同日. 以三班還今二十日內, 畢捧事, 傳令中軍.

【傳令】三班還上, 詳定發令, 將近一望, 尙未了勘, 言念舉行, 已極稽緩分叱除良. 今此代錢, 特出於別樣惠澤, 則在渠矣, 奉行營飭之道, 宜其不日畢納, 而如是玩愒, 豈不痛惋? 限今二十日, 別加嚴督, 準數畢捧爲乎矣. 如有過限不納者, 則加倍嚴治,

166) 전경(傳經) : 상한(傷寒) 병에 걸려서 차차 중한 증세(症勢)가 되어 사기(邪氣)가 어느 한 경락(經絡)에서 다른 경락으로 옮겨지는 일을 말한다.

167) 고주(苦主) : 가까운 일가(一家)가 살해(殺害)를 당(當)한 때에 고소(告訴)하는 사람을 말한다.

168) 문(文) : 돈의 단위로, 돈[錢]의 10분의 1이고, 냥[兩]의 100분의 1이다.

169) 구전(口錢) : 흥정을 붙여 주고 그 보수로 받는 돈을 말한다.



已無可言，而一一抄出，別修成冊，毋論歲前歲後，期以本色準捧乃已，此意并以嚴飭督捧，宜當向事。

같은 날. 삼반(三班) 환자[還上]를 이번 20일 안에 모두 거둬들이는 일로 중군(中軍)에 전령(傳令)하였다.

【전령】삼반(三班) 환자[還上]을 상정(詳定)하여 전령(傳令)을 발송한지가 거의 보름에 가까워지는데 아직도 마무리 짓지 못하였다. 생각하면, 거행(舉行)이 매우 지극히 늦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돈으로 대신 납부하는 것은 특별히 보통과 다른 은택에서 나온 것이니 그들은 감영의 신칙을 봉행하는 도리 상 마땅히 며칠 안에 모두 납부해야 하는데도 이와 같이 더디니 어찌 매우 답답하지 않겠는가? 이번 20일을 기한하여 특별히 엄하게 독촉하여 숫자대로 모두 거둬들여라. 만일 기한을 넘겨도 납부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배로 엄하게 다스림은 이미 말할 것이 없으니 하나하나 뽑아내어 따로 정리하여 성책(成冊)하고, 새해가 되기 전이든 된 뒤든 논할 것 없이 본색(本色)으로 법대로 거둬들이길 기약하고서야 이에 그만 둘 수 있으니, 이러한 뜻을 아울러 엄하게 신칙하여 독촉하여 거둬들이는 것이 마땅할 일.

同日. 以韓仁得被刺致死事，發關全州府。

【關文】爲相考事. 卽到公忠監營移文內, “弊道黃澗梅下面德古里陵尙洞路邊, 何許男人僵死, 而洞人輩, 審見屍身, 則咽喉一窟, 被刺血痕狼藉, 地上亦有滾亂之跡, 行兇刀子, 亦在其傍, 而卽死者所佩之刀是遣. 考見號牌, 則乃是全州九進所陽閒良韓仁得丙申生. 而路傍田主徑先掩土後, 因該面面報, 自該縣取招報來, 而觀於報辭, 似是賊漢之劫財剽殺, 故屍身段, 使之依例開檢, 以爲成案之地是在果. 被刺之人, 如無錢貨間所持之物, 則兇彼賊漢, 必無窮路劫殺之變. 而情跡鉤探, 跟捉兇身, 寔在於是乙仍于, 茲以文移爲去乎. 自貴營卽爲發關全州府, 使之招致屍親, 死者之因何事, 持何物, 何時出去何地方, 詳細探問, 論列馳報, 卽速回移爲乎於. 屍親亦令起送屍在處之地, 爲宜, 相考施行向事.” 移文是乎等以, 茲以發關, 同韓仁得親屬, 卽爲招致, 其何月日, 因何事, 指何物, 出去何地方之由詳問報來, 以爲回移之地爲於. 屍親亦爲起送於屍在處, 宜當向事。

같은 날. 한인득(韓仁得)이 칼로 찔려 죽은 일로 전주부에 관문을 발송하였다.

【관문】 상고할 일. 바로 도착한 공충도 감영의 이문(移文)에, “공충도 황간현(黃澗縣) 매하면(梅下面) 덕고리(德古里) 능상동(陵尙洞) 길가에 어떤 남자가 쓰러져 죽어있어, 동네사람들이 시신(屍身)을 자세히 살펴보니 인후(咽喉) 한 곳이 칼에 찔려 혈흔이 남자하고, 땅위에도 또한 어지럽게 흘러내린 흔적이 있고 찔렀을 칼 또한 그 곁에 있었는데 바로 죽은 자가 차고 있던 칼이다. 호패(號牌)를 고찰하여 보니 전주(全州) 구진 소양(九進所陽)<sup>170)</sup>의 한량 한인득 병신(丙申) 생이었다. 길 옆 발주인이 경솔하게 우선 흙으로 덮은 뒤에 소양면(所陽面)의 면보(面報)로 인하여 해당 현에서 진술을 받아 보고하였는데, 보고 내용을 보면 이는 나쁜 짓한 놈이 재물을 빼앗고 겁박하여 죽인 것 같기 때문에 시신은 예(例)에 의거하여 무덤을 파서 검사하게 하여 성안(成案)의 바탕으로 삼았다. 칼에 찔린 사람이 만일 돈이나 재물을 지닌 물건이 없었다면 흉악한 저 나쁜 놈이 반드시 막다른 길에서 겁박하여 죽이는 변고가 없었을 것이다. 사정의 자취를 찾아내고 살인자를 추적하여 체포하는 것은 진실로 여기에 있으므로 이에 공문을 보낸다. 따라서 전라감영에서 즉시 전주부에 관문을 발송하여 전주부로 하여금 시친(屍親)을 불러오게 하여 죽은 자가 어떤 일로 인하여 무슨 물건을 지니고 언제 어느 방향으로 떠났는지를 상세하게 탐문하여 하나하나 논술하여 급히 보고하게하고 즉시 회이(回移)하기 바란다. 시친 또한 시체가 있는 곳으로 호송(護送)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상고(相考)하여 시행할 일.” 하였다.

이에 관문을 발송하니, 동 한인득의 친속을 즉시 불러오게 해서 그가 몇 월 며칠에 무슨 일로 어떤 물건을 지니고 어느 지방으로 갔는지의 사유를 자세히 물어 보고하여 회이(回移)할 수 있게 하라. 시친 또한 시신이 있는 곳으로 호송함이 마땅할 일.

同日. 以咸悅縣捧還申飭事, 發關於兼官龍安縣.

【關文】 爲相考事. 卽接咸悅縣監由狀, 則以親患救護事, 發行上京是如爲有置. 同縣以尤甚災邑, 催糶方急之時, 值此空官, 已萬萬悶然分叱除良. 見今歲除, 不遠捧還, 尙未滿折半, 該邑糶政, 可謂莽蒼, 如是而何時封倉是旆? 明春接濟, 又何處着手是乙噓? 當該監色, 從當有別般嚴處之道是在果. 同勸限更退以念間爲去乎, 原兼官, 時時

170) 구진 소양(九進所陽) : 소양면 화심리 구진별이다.

往來，各別嚴督，留鄉倉色等，考勤慢，這這推治，刻期董飭，期於限內勘簿爲乎矣。如或一向玩愒，再越勘限，則該倉色除良，都次知座首，上使嚴勘，斷不饒貸，以此意，嚴加申飭爲妙，捧上垂畢後，各倉所捧實數馳進，反閱亦卽牒報是矣，舉行形止，爲先馳報向事。

같은 날. 함열현(咸悅縣)의 봉환(捧還)을 신척하는 일로 함열현을 겸하고 있는 용안현령(龍安縣令)에게 관문을 발송하였다.

【관문】 상고할 일. 이번에 함열 현감의 유장(由狀)<sup>171)</sup>을 접하니 부모의 우환을 간호하는 일로 길을 떠나 상경(上京)한다고 한다. 함열현은 우심재(尤甚災)읍으로 환곡미를 거둬들이는 일을 재촉하는 일이 바야흐로 급한 때에 이렇게 관사를 비워 두게 되었으니 매우 답답하다. 뿐만 아니라 지금 연말에 봉환(捧還)이 멀지 않았는데도 아직도 절반도 채우지 못하였으니 해당 읍의 적정(稹政)<sup>172)</sup>이 아득하다 하겠다. 이와 같아서 어느 때나 창고를 채워 달을 것인가? 내년 봄 구휼하는 때를 당해서는 또 어디서부터 손을 댈 수 있겠는가? 당해 감색(監色)은 마땅함을 좇아 특별히 엄격하게 처리할 방도가 있어야 한다. 세월에 마감 기한을 다시 20일 사이로 늦추니 원관과 겸관(兼官)이 수시로 왕래하며 각별히 엄하게 독촉하고 유향소와 창고 색리 등은 근만(勤慢)을 상고하여 날날이 추궁하여 다스리고 기한을 독촉하여 기필코 기한 내에 마감하되, 만일 흑시라도 전과같이 경시하고 일을 하지 아니하여 다시 마감하는 기한을 넘긴다면 해당 창색 뿐 아니라 도차지(都次知)인 좌수(座首)도 감영에 잡아 올려 엄하게 처단하고 결단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니 이러한 뜻을 더욱 엄하게 신척하라. 환자 수납을 거의 마친 뒤에는 각 의창(義倉)에서 거둔 실 수효를 치보하고 반열(反閱)<sup>173)</sup>한 것 또한 즉시 첩보하되 거행한 상황을 우선 급히 알릴 것.

十三日. 來正朝進上監封, 順天監牧官洪吉謨來見, 仍爲辭去. 興陽監牧官李相坪, 來見, 當日又爲入見辭去.

171) 유장(由狀) : 수유장(受由狀)으로 말미, 즉 휴가를 청하는 문서이다.

172) 적정(稹政) : 환곡(還穀)미를 거둬들이는 일에 관한 사무.

173) 반열(反閱) : 돈이나 곡식의 출납문서를 뒤적이며 일일이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13일. 오는 정월 초하루의 진상품을 감봉하였다. 순천 감목관(監牧官) 홍길모(洪吉謨)가 와서 보고 그대로 하직하고 갔다. 흥양 감목관 이상평(李相坪)이 와서 보고 당일 또 입건하여 하직하고 갔다.

同日. 以沿邑所在統營穀作錢事, 報備局.

【報牒】爲牒報事. 本道所在統營穀, 每年耗條, 依京司勾管穀例, 作錢輸送, 卽每年應行之例, 而唯求禮、光陽、樂安、順天、興陽、左水營、蛇島、鉢浦、鹿島、呂島、古突山、蟾津等十二邑鎮段, 以距統營程途稍近, 且有蟾津船路乙仍于, 每以本穀輸去, 而方其輸納之際, 謂以穀色之麤而簸揚之, 謂以斛內之縮而增添之, 點退操縱, 轉益濫觴, 一斛之納, 幾爲二斛, 而出浦裝載等雜費, 又皆責出於結戶, 實爲病民之痼瘼是在良中, 至於今年, 尤有異焉. 本道沿海之邑, 舉不免歉荒之中, 運牟運米, 一時並舉, 蚊背負山, 未足爲喻. 此際又添以統穀移運之役, 終是行不得之政是乎所. 右項沿邑鎮所在統穀耗條, 並依山邑例, 作錢推去, 同將士支放條段, 分排於統營附近邑, 以本邑推用, 則在統營別無損益, 沿邑庶可少紓積瘁之民力是如乎. 司教是祭量事勢, 發關分付於嶺統兩營爲只爲.

같은 날. 연읍(沿邑)에 있는 통영곡(統營穀)을 작전(作錢)하는 일로 비변사에 첩보하였다.

【보첩】 첩보하는 일. 본도에 있는 통영곡(統營穀)의 매년 모조(耗條)는 경사(京司)가 관장하는 곡례(穀例)에 의하여 작전(作錢)하여 수송하는 것이 바로 해마다 응당 행하는 관례입니다. 오직 구례(求禮)·광양(光陽)·낙안(樂安)·순천(順天)·흥양(興陽)·좌수영(左水營)·사도(蛇島)·발포(鉢浦)·녹도(鹿島)·여도(呂島)·고돌산(古突山)·섬진(蟾津) 등 12개 읍진은 통영(統營)과 거리가 조금 가깝고 또 섬진강의 뱃길이 있음에 따라 매년 본곡(本穀 곡식 본색(本色))을 실어 보냈습니다. 바야흐로 그 실어다 바칠 때면 곡색(穀色)이 거칠다고 말하여 나락을 까부르게 하고 곡내(斛內)가 줄어들었다고 말하여 더 보태게 하였습니다. 납부(納付) 곡물의 점퇴(點退)를 마음대로 조종하여 점점 더 많이 거두어 1곡(斛)을 납입할 것을 거의 2곡이 되었습니다. 포구로 내고 포장하고 싣는 등의 잡비 또한 모두 결호(結戶)에서 차출하여 실로 백성을 병들게 하는 고질적 폐해가 있었는데, 올해에 이르러서는 더욱 다름이 있습니다.

본도 연해(沿海)의 읍은 모두 흉년을 면치 못한 가운데 운모(運牟)와 운미(運米)를 동시에 거행하는 것은 모기가 산을 짊어지는 것으로도 족히 비유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때 또 통영곡을 운송하는 일을 더하면 결국 할 수 없는 정책을 행하는 것입니다. 위 항목의 연읍(沿邑)·진(鎭)에 있는 통영곡의 모조(耗條)는 모두 산읍(山邑)의 운송 예에 의거하여 작전(作錢)하여 추심해가고, 동(同) 장수(將帥)와 병사(兵士)의 급료를 주어야 할 조목(條目)에서는 통제영(統制營) 가까이 있는 읍에 분배하여 본 읍이 추심해 사용하면 통제영(統制營)으로서는 특별히 손익이 없고, 연읍(沿邑)에서는 거의 근심이 쌓인 백성의 힘을 조금이나마 풀어줄 수 있다고 합니다. 비변사에서는 일의 형편을 헤아려 영영(嶺營)·통영(統營) 두 군영(軍營)에 관문을 발송하여 분부하시기 바랍니다.

同日. 以大同事目上送事, 報備局.

【報牒】爲上送事. 即到付司關內, “本營所在儲置事目, 罔夜上送”亦爲有矣, 本營只有大同事目是乎等以, 堅封上送爲臥乎事.

같은 날. 대동사목(大同事目)<sup>174)</sup>을 올려 보내는 일로 비변사에 첩보하였다.

【보첩】올려 보내는 일. 이번에 받아본 비변사 관문 내용은 “전라 감영에 있는 저치미사목(儲置米事目)<sup>175)</sup>을 밤낮 없이 급히 올려 보낼 것” 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전라감영은 단지 대동사목(大同事目)만 있기 때문에 견고하게 밀봉하여 올려 보냅니다.

十四日. 興陽縣監尹守鳳、碧沙察訪李熙黼來見.

14일. 흥양 현감 윤수봉(尹守鳳)·벽사(碧沙) 찰방 이희보(李熙黼)가 와서 보았다.

174) 대동사목(大同事目) : 조선 후기의 대동법 실시에 따른 시행 세칙을 말한다.

175) 저치사목(儲置米事目) : 조선후기 대동법(大同法) 시행 이후 생겨난 것으로, 저치미에 대한 시행 세칙이다. 대동미를 거둬 회감(會減)한 5분의 1을 선혜청에 올려 보내지 않고 각 고을에 저치(儲置)해 두고 불시의 공용에 쓰도록 책정된 쌀이 있고, 나머지 대동미는 경창(京倉)에 두어 경상비에 보충했는데, 이런 과정에서 얼마를 저치하며, 선저치미(船儲置米)는 환곡으로 운용하는 것이 허용되었으나, 대동 저치미는 환곡으로 운용하는 일 등을 금한다는 시행세칙이다.(문용식, 『朝鮮後期 賑政과 還穀 運營』, 2001, 310쪽), (『大典會通 戶典 徭賦』)

同日. 以韓仁得屍親起送事, 回移錦營.

【移文】爲回移事. 卽到貴移內乙用良, 貴道黃澗縣致死, 弊道全州民韓仁得, 因何事, 何月日出往何地方之由, 詳探牒報之意, 發關知委於全州矣. 卽接該判官所報, 則同韓仁得, 只有女婿金古邑金, 故使之來待, 問其委折, 則所告內, “其矣妻父韓仁得, 去十一月初, 持錢十三兩, 木花商賈次, 出往黃澗永同地矣, 尙未回還”是如乙仍于. 金古邑金卽爲起送於屍在處, 緣由牒報亦爲有等以, 茲以文移, 相考施行向事.

같은 날. 한인득(韓仁得)의 시친(屍親)을 호송하는 일로 충청도 감영에 회이(回移)하였다.

【이문】회이(回移)하는 일. 이번에 도착한 귀영(貴營)의 이문(移文) 내용으로 말미암아 귀도(貴道) 황간현(黃澗縣)에서 죽은 우리 도의 전주 백성 한인득이 무슨 일로 어느 달 며칠에 어떤 지방으로 떠나갔는지의 연유를 자세히 찾아 첩보하라는 뜻으로 전주에 관문을 발송하여 자세하게 알렸다.

이번에 해당 판관의 보고를 보니, 한인득은 단지 딸의 사위 김고읍금(金古邑金)만이 있기 때문에 그를 오게 하여 그 곡절(曲折)을 물으니 그가 아뢴 내용은 “저의 처부 한인득은 지난 11월초에 돈 13냥을 지니고 목화(木花)를 팔러 황간현 영동 지역으로 나갔으나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합니다. 김고읍금을 즉시 시신이 있는 곳으로 보내고, 이러한 연유로 첩보하라고 하였기 때문에 이에 공문을 보내니, 상고(相考)하여 시행할 일.

同日. 以運牟明春條五千石, 輸致未由事, 文移畿營.

【移文】爲相考事. 卽到貴移是置有亦. 弊道移運牟一萬石, 都會於古羣山, 期於未凍前, 裝發之意, 連加申飭矣. 各邑船隻, 連因風勢不利, 多日淹滯是如可, 今月初六日, 該僉使一齊領發是如, 報來乙仍于, 同運牟中, 五千石到通津, 傳授於貴道差員事, 已爲發關知委是在果. 見今凍沍節深, 北風連吹, 趁期利涉有未可必, 不勝懂懂是乎於, 至於明春運納條段, 姑未承備局行會, 而本道穡事亦未免歉荒之中, 沿海邑所在皮牟, 今番已爲傾庫分排, 僅充萬包是遣. 此外更無着手處, 則今此明春條五千石, 勢將分劃於峽邑, 而出浦程途, 或爲三四百里, 或爲一二百里, 陸運輸致, 其勢未由, 誠萬萬憂悶是如乎. 相考施行向事.

같은 날. 내년 봄에 운송해야 할 보리 5천 섬을 실어 보낼 방도가 없어 경기 감영에 문이(文移)<sup>176)</sup> 함.

【이문(移文)】 상고할 일. 이번에 귀영(貴營)의 이문(移文)이 도착하였습니다. 저희 도의 이운모(移運牟) 1만 섬을 고군산진에 모두 모으고 기필코 얼음이 얼기 전에 실어 보내라는 뜻을 연달아 거듭 신칙하였습니다. 그러나 각 읍의 선박이 연이어 풍세가 불리하여 여러 날 막히고 지체되다가 금월 6일 해당 첨사(僉使)가 일제히 거느리고 출발하였다고 보고해 와서 동 운모(運牟) 가운데 5천 섬은 통진(通津)에 도착하여 경기도의 차사원(差使員)에게 전수(傳授)하도록 이미 관문을 발송하여 자세하게 알렸습니다.

지금 얼어붙는 철이 심하고 북풍이 연달아 불어 항해 기한에 맞춰 도달하기에는 기필할 수 없어 안절부절함을 이루 다할 수 없습니다. 내년 봄에 운송하여 바치는 조목에 이르러서는 우선 비변사의 행회(行會)를 받들지 못하였고 본도의 수확도 흉년들어 황폐한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연해읍(沿海邑)에 있는 피모(皮牟)도 이번에 이미 창고를 다 털어 분배하여 겨우 1만 포를 충당하였습니다. 이외에 다시 손댈 곳이 없으니 지금 이렇게 내년 봄 운송하여 바칠 5천 섬은 형편상 장차 협읍(峽邑)에 나누어 배정하였으나, 포구로 나가는 길이 혹 3,4백 리가 되거나 혹 1,2백 리 이상이고, 육로로 운반하여 보내는 것은 그 형편상 방도가 없으니 진실로 매우 걱정스럽고 답답합니다. 상고하여 시행하실 일.

十五日. 平明詣客舍, 行望闕禮. 中軍、中營將、判官、興陽縣監、碧沙察訪, 同爲進參, 還營軒. 萬頃縣令尹守澈來見.

15일. 아침 해가 뜰 때에 객사(客舍)에 도착하여 망궐례를 행하였다. 중군(中軍)·중영장(中營將)·판관(判官)·흥양 현감(興陽縣監)·벽사 찰방(碧沙察訪)이 함께 진참(進參)하였다. 영헌(營軒)으로 돌아왔다. 만경 현령(萬頃縣令) 윤수철(尹守澈)이 와서 보았다.

同日. 道內秋冬等殿啟開拆

【褒貶榜目】 中軍朴致福<了了而謹, 足辦佐幕, 上.>, 都事尹錫祐<曠不妨務, 績無可評,

176) 문이(文移) : 관아와 관아 사이에 공사와 관계되는 일을 조회하기 위하여 공문을 보내는 것을 말하며, 공이(公移)·이문(移文) 등의 이름으로 통용된다.

上.>, 全州判官李羲平<催科心勞, 恤災念切, 上.>, 羅州牧使李晦淵<昔聞文華, 今見吏術,  
 上.>, 光州牧使趙雲明<完局弊兆, 匪良曷濟, 上.>, 綾州牧使李廣度<斲糶防柴, 是亦便民,  
 上.>, 南原府使洪錫謨<恩深惠養, 譽由寬糶, 上.>, 長興府使申在翼<幾乎無邑, 今焉有官,  
 上.>, 順天府使林翰鎮<物衆弊滋, 鎮以老鍊, 上.>, 潭陽府使曹錫玄<精或不到, 治自無害,  
 上.>, 長城府使徐有民<廉明前評, 豈伊阿私, 上.>, 茂朱牧使李光承<俗胡澆訛, 政自寬綽,  
 上.>, 礪山府使許曠<剛核不撓, 是庸集事, 上.>, 寶城郡守吳顯佑<墾荒募佃, 佇觀厥成,  
 上.>, 益山郡守李源吉<災無濫俵, 糶有實捧, 上.>, 古阜郡守金裕淳<旣明且鍊, 展也良手,  
 上.>, 靈巖郡守李應謙<勤以集事, 謹則寡尤, 上.>, 靈光郡守金胤根<弛張有道, 獷猶知戢,  
 上.>, 珍島郡守閔致鳳<莫曰初手, 綽有步趨, 上.>, 樂安郡守韓啓轍<繕不役民, 賙必捐廩,  
 上.>, 淳昌郡守沈宜復<綜明治理, 民恐或失, 上.>, 錦山郡守李魯榮<山水之鄉, 恬靜之治,  
 上.>, 珍山郡守李奎憲<剗犀之器, 屈於割鷄, 上.>, 金堤郡守李玄好<不煩不撓, 百務畢舉,  
 上.>, 昌平縣令李和愚<已滿八考, 毋虧一簣, 上.>, 龍潭縣令朴獻壽<譬如射鵠, 正已後中,  
 中.>, 臨陂縣令李宜翼<倉逋庶完, 浦訟宜平, 上.>, 萬頃縣令尹守澈<巡坪檢災, 其色焦然,  
 上.>, 金溝縣令金錫喜<病不廢務, 衰猶勵精, 上.>, 光陽縣監沈兢祖<好是斤斤, 何須赫赫,  
 上.>, 咸悅縣監洪在果<檢放催科, 寤寐憧憧, 上.>, 扶安縣監趙在慶<恬雅本色, 公平治理,  
 上.>, 康津縣監任百經<如理亂絲, 有條不紊, 上.>, 玉果縣監韓致定<查起殫勞, 催科亦勤,  
 上.>, 沃溝縣監金秀萬<歲儉民流, 若爲懷綏, 上.>, 南平縣監林迥鎮<事事綜明, 言言條理,  
 上.>, 興德縣監金命爍<方議闢菜, 遽惜報瓜, 上.>, 井邑縣監申淳<山有蠲稅, 布亦減直,  
 上.>, 高敞縣監李鍾應<移粟獨賢, 厥績可紀, 上.>, 茂長縣監尹興圭<撤自從班, 倘蘇敗局,  
 上.>, 務安縣監吳致淳<恩荷奉檄, 報在求芻, 上.>, 求禮縣監申鍾命<勘糶最先, 餘事且置,  
 中.>, 谷城縣監任禹常<糶謬轉痼, 須大振刷, 中.>, 雲峯縣監趙存奎<韎韋讀書, 治在其中,  
 上.>, 任實縣監洪哲謨<恤民苦心, 于糶可觀, 上.>, 長水縣監李啓陽<倉有實捧, 庭無滯訟,  
 上.>, 鎮安縣監朴曾壽<寬嚴互濟, 吏民稱便, 上.>, 同福縣監李寅元<平易近民, 是謂循良,  
 上.>, 和順縣監徐承淳<佳士良吏, 前評可復, 上.>, 興陽縣監尹守鳳<糶有精鑿, 災無漏濫,  
 上.>, 海南縣監吳鼎周<愿謹無他, 不中不遠, 上.>, 龍安縣監林貞鎮<俵災督糶, 一是誠勤,  
 上.>, 咸平縣監金箕祖<糶不違法, 需則減價, 上.>, 泰仁縣監沈能淑<文士名區, 政脫俗臼,  
 上.>, 高山縣監金益根<未赴任>, 參禮察訪徐承烈<可喜質慤, 上.>, 契樹察訪田栽五<賣牛  
 買馬, 上.>, 青巖察訪李東韻<攻駒無闕, 上.>, 景陽察訪安允中<由不越限, 上.>, 碧沙察  
 訪李熙黼<留心釐弊, 上.>, 濟原察訪金熙迺<郵卒稱便, 上.>, 肇慶廟令金養默<職思其居,



上.>, 別檢朴鳳欽<前評無改, 上.>, 慶基殿令閔致訥<謹飭自持, 上.>, 叅奉吳慶興<當遷奚評, 上.>, 格浦別將金萬鎰<恪勤舉職, 毋蹈前轍, 上.>, 威鳳別將李昌億<有民有餉, 毋曰職卑, 上.>, 南固別將金基中<乘障多暇, 繕廩殫勞, 上.>, 審藥金欒<粗解藥性, 上.>, 檢律劉弘菴<日淺.>

같은 날. 도내 추동등(秋冬等)의 전최(殿最)를 개봉하였다.

【포평방목(褒貶榜目)】 중군 박치복<분명하면서도 조심스럽고 비장(裨將)들을 힘써 일하게 함, 상.>

도사 윤석우<정사에 밝아 직무에 방해가 되지 않고 공적은 품평할 것이 없음. 상.>

전주 판관 이희평<세금 재촉에 마음을 다하여 수고롭게 하고 재해를 구휼함에 생각이 간절함, 상.>

나주 목사 이회연<옛날엔 문화(文華)로 알려졌고 지금은 행정의 기술을 드러냄, 상.>

광주 목사 조운명<완전한 형국이 끊어지는 조짐에 진실하지 않다면 어찌 구제하였겠는가? 상.>

능주 목사 이광도<보리를 내되 쉼을 금지하는 것은 또한 백성을 편리하게 함, 상.>

남원 부사 홍석모<인정이 깊고 자애롭게 보살피며 명에는 곡식을 넉넉하게 사들이는 데서 말미암음, 상.>

장흥 부사 신재익<고을이 거의 없을 지경이다가 이제야 관리가 있다하겠다, 상.>

순천 부사 임한진<물산이 많고 폐단도 늘어나는데 노숙함으로 누름, 상.>

담양 부사 조석현<정밀함에는 혹 이르지 않았으나 다스림엔 본래 해가 없음, 상.>

장성 부사 서유민<전날의 비평을 청렴하게 밝혔으니 어찌 그가 사사롭게 영합하겠는가? 상.>

무주 목사 이광승<풍속이 어찌 경박하고 잘못되겠는가? 정사는 본래 관대하고 너그러움, 상.>

여산 부사 허숙<균세고 견실하여 흔들림이 없고 이로서 일을 이룸, 상.>

보성 군수 오현우<황무지를 개간하여 풀 뽑고 밭갈아 그 이룸을 기다림, 상.>

익산 군수 이원길<재해에 함부로 나눠주지 않고 곡식을 사들일 때에는 실질적으로 거둬들임, 상.>

고부 군수 금유순<이미 밝고 노련하여 벼품은 뛰어난 솜씨임, 상.>

영암 군수 이응경<부지런함으로 일을 이루고 삼감으로 허물을 줄임, 상.>

영광 군수 금윤근<긴장하고 늦춤에 방도가 있어 사나운자들이 그칠 줄을 앎, 상.>

진도 군수 민치봉<초보라고 말하지 마라 여유롭게 보폭이 빠름, 상.>

낙안 군수 한계철<수선하는데 백성을 동원하지 않고 진흙할 때는 반드시 창고를 열었음, 상.>

- 순창 군수 심의부<세금을 모음에 밝게하고 이치대로 다스려 백성들이 혹 수령을 잃을까 걱정함, 상.>
- 금산 군수 이노영<산수의 마을로 편안하고 조용하게 다스림, 상.>
- 진산 군수 이규현<소 잡는 칼로 닭 잡는 곳에 눌러 있음, 상.>
- 김제 군수 이현호<번잡하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아 모든 공무가 다 채택됨, 상.>
- 창평 현령 이화우<이미 8번의 평가가 있었음에도 한 삼태기의 부족함도 없음, 상.>
- 용담 현령 박헌수<비유하자면 정곡(正鹄)을 쏘려면 자기를 바르게 한 뒤에 적중하는 것임, 중.>
- 임피 현령 이의익<체납을 거둬들이는 것은 거의 완벽하고 포송(浦訟)<sup>177)</sup>은 마땅하고 공평함, 상.>
- 만경 현령 윤수철<들을 순행하고 재해를 조사함으로 얼굴색이 그을릴 정도임, 상.>
- 금구 현령 김석희<병에도 임무를 비우지 않고 노쇠하여도 오히려 자세하게 권면함, 상.>
- 광양 현감 심공조<좋아하되 삼가고 삼가니 어찌 빛남을 기대하겠는가? 상.>
- 함열 현감 홍재과<검방(檢放)<sup>178)</sup>과 최과(催科)에 오매불망하고 안절부절 함, 상.>
- 부안 현감 조재경<욕심이 없이 늘 마음이 화평하고 단아한 본디의 색깔로 공평하게 이치대로 다스림, 상.>
- 강진 현감 임백경<엷힌 실타래를 다스림같이 조리(條理)가 있어 문란(紊亂)하지 아니함, 상.>
- 옥과 현감 한치정<기경(起耕) 곧 묵힌 땅이나 생땅을 일군 논밭을 조사하여 노력을 다하고 최과(催科) 또한 부지런함, 상.>
- 옥구 현감 김수만<해에 흉년이 들어 백성이 유랑할 때 따뜻하게 위로함 같음, 상.>
- 남평 현감 임형진<일마다 밝게 통할(統轄)하고 말끝마다 조리가 있음, 상.>
- 흥덕 현감 김명혁<막 농사 개시를 논의하던 중에 갑자기 임기가 만료된 것을 보고하게 되어 애석해함, 상.>
- 정읍 현감 신순<산협(山峽)에는 세금을 덜어주고 대동포 값 또한 줄여줌, 상.>
- 고창 현감 이종응<곡식을 옮길 때 홀로 현자의 수고로움을 다하여 그 공이 버리가 될만함, 상.>
- 무장 현감 윤희규<스스로 종반(從班)을 거두고 빼어나게 패국(敗局)을 살림, 상.>
- 무안 현감 오치순<봉격지희(奉檄之喜)<sup>179)</sup>의 은혜를 입고 보답은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있음, 상.>

177) 포송(浦訟) : 포(浦)는 부들 채찍의 벌(罰)이라는 포편지벌(浦鞭之罰)의 의미이다. 곧 형식(形式)만 있고 실지(實地)는 없어 옥만 보이자는 벌로, 송사를 너그럽게 처리함을 말한다.

178) 검방(檢放) : 재결을 조사하여 세금을 면제함[檢災放稅]을 말한다.

179) 봉격지희(奉檄之喜) :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벼슬길에 나아간다는 말이다. 후한(後漢)의 모의(毛義)가 가난하여 노모를 봉양하기 어려웠는데, 효행이 널리 알려져 수령에 제수하는 격문(檄文)이 오자

구례 현감 신증명<조적(糶糶)을 바로잡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나머지 일은 우선 내버려 둠, 중.>

곡성 현감 임우상<조적이 어그러져 더욱 고질병이 되었으니 모름지기 크게 떨쳐 일어나 깨끗하게 털어내야 함, 중.>

운봉 현감 조준규<무관으로 독서하니 다스림이 자연 그 속에 있음, 상.>

임실 현감 홍철모<백성의 구휼에 고심하고 환곡을 거둬들이는 일은 꽤 불만함, 상.>

장수 현감 이계양<의창(義倉)에는 실제대로 거둬들이고 관아에는 적체된 송사가 없음, 상.>

진안 현감 박증수<너그러움과 엄격함이 서로 이루어 아전이나 백성이 편하다고 함, 상.>

동북 현감 이인원<편안하고 쉽게 백성을 가까이 하니 이것을 순량(循良)<sup>180)</sup>이라 이름, 상.>

화순 현감 서승순<훌륭한 선비와 잘 다스리는 벼슬아치로 이전의 평을 회복할 만함, 상.>

흥양 현감 윤수봉<조적(糶糶)에는 정밀하게 파해침이 있고 재결(災結)은 빠트리거나 넘침이 없음, 상.>

해남 현감 오정주<성실하고 삼가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없어 맞지 않더라도 멀리 벗어나지 않음, 상.>

용안 현감 임정진<표재(倭災)와 조적(糶糶)을 감독하는 것을 한결같이 정성스럽고 부지런히 함, 상.>

함평 현감 김기조<조적(糶糶)은 법을 어기지 않고 수용품(需用品)은 가격을 감해 줌, 상.>

태인 현감 심능숙<문사(文士)가 이름난 곳에 있으니 정사가 세속의 허물을 벗음, 상.>

고산 현감 김익근<부임하지 않음.>

참례 찰방 서승렬<바탕이 성실하여 좋아할만 함, 상.>

오수 찰방 전재오<소를 팔아 말을 사들임, 상.>

청엄 찰방 이동운<역참(驛站)의 일에 빠트림이 없음, 상.>

경양(景陽) 찰방 안윤중<말미에 기한을 넘기지 않음, 상.>

벽사 찰방 이희보<잊지 않고 폐해를 다스림, 상.>

제원(濟原) 찰방 금희유<역참 병사가 편안하다고 칭찬함, 상.>

조경묘 령(令) 김양묵<오로지 자신이 평소 행해야 할 도리를 생각함, 상.>

별검 박봉흠<이전의 품평을 고칠 것이 없음, 상.>

기빠하여 받들었다. 그러나 노모가 돌아가시자 벼슬을 그만두었다는 고사에서 온 말이다.(『後漢書』 卷39, 趙淳于江劉周趙列傳序)

180) 순량(循良) : 고을 수령의 어진 정사(政事)를 이르는 말이다.

경기전 령(令) 민치눌<자신의 마음가짐을 삼가고 삼감, 상.>

참봉 오경흥<옳길 때를 당하였거늘 어찌 품평하리오? 상.>

격포 별장 김만일<모든 직분에 삼가고 삼가 전철을 밟지 않음, 상.>

위봉 별장 이창억<백성이 있고 군량(軍糧)이 있으니 직분이 낮다고 말하지 않음, 상.>

남고 별장 김기중<승장(乘障)<sup>181)</sup>에 거를이 많아 공관(公館)을 수선하는 데 힘을 다함, 상.>

심약(審藥) 김은(金爨)<대략 약의 성질을 이해함, 상.>

검를 유흥계(劉弘滋)<임명된 지 얼마 안 됨.>

同日. 正朝陳賀箋文封裹, 奉安于宣化堂大廳, 實差興陽縣監, 預差碧沙察訪, 及判官、中軍、中營將、萬頃縣令, 同叅拜箋後祇送. 萬頃縣令、碧沙察訪, 仍爲辭去.

【箋文】伏以位必得、祿必得、壽必得, 方仰久道之化成; 歲之元、月之元、日之元, 聿覩新休之滋至. 景運亭午, 盛德在寅. 恭惟淵德顯道景仁純禧主上殿下, 繼天立極, 撫辰出治. 禹陰湯盤之罔或遑寧, 克著一心之茂對; 堯曆舜衡之自有儀則, 爰致二氣之調和. 肆當改籥之辰, 益膺綿籙之慶. 伏念臣寸心向日, 方面來旬. 跡滯南藩, 縱阻呼嵩之列; 誠懸北闕, 敢獻祝罔之辭. 臣無任望天仰聖激切屏營之至.

【內閣箋文】伏以奎華膺千歲之期, 方仰寶曆之祈永; 斗杓轉三陽之候, 聿覩蕝祿之迓新. 迨出震初, 進如升頌. 恭惟淵德顯道景仁純禧主上殿下, 惟天爲大, 思日不遑. 聰明睿智之有臨, 克著建皇極之治; 陰陽寒暑之靡忒, 肆致成歲功之休. 茲當三元之載回, 益仰百祥之湊集. 伏念臣粉鄉承化, 楓陞懸忱. 願從侍臣之班, 西垣地隔; 請祝聖人之壽, 南極星分. 臣無任望天仰聖激切屏營之至.

같은 날. 정월 초하루에 하례를 드릴 전문(箋文)을 밀봉하여 선화당 대청에 봉안(奉安)하고, 실차(實差)<sup>182)</sup> 흥양 현감과 예차(預差) 벽사 찰방 및 판관·중군·중영장·만경 현령이 함께 전문(箋文)에 나란히 절한 뒤에 공경히 보냈다. 만경 현령·벽사 찰방이 그대로 하직하고 갔다.

【전문】엎드려 생각건대 지위·봉록·장수를 반드시 얻으니 바야흐로 오랫동안 도를 행하여 교화가 이루어짐을 우러르고, 해·달·날의 시작<sup>183)</sup>이니 마침내 새로

181) 승장(乘障) : 성 위에 올라 적을 막는 것이다. 즉 무장이 되어 외적을 물리침을 뜻한다.

182) 실차(實差) : 나라에 중대한 일이 있을 때에 임시로 두던 차비관으로 임명된 사람으로, 실차(實差)는 정임자(正任者)이며 예차(預差)는 정임자의 유고 시를 대비한 예비 대령자를 말한다.

운 복이 넘침을 봅니다. 큰 운수가 대낮같고 성덕(盛德)이 인(寅)에 있습니다. 공경히 생각건대, 연덕현도경인순희(淵德顯道景仁純禧) 주상전하께서는 하늘의 뜻을 이어받아 대법을 세우고 천시(天時)에 순응하여 정사를 하였습니다. 우음(禹陰)과 탕반(湯盤)<sup>184</sup>은 흑시라도 안일함에 빠지지 않아 한 마음이 시절에 잘 맞춤<sup>185</sup>을 드러냈고, 요력순형(堯曆舜衡)<sup>186</sup>은 본래 법식이 있으니 이에 음양의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이러므로 한 해가 변하는 때<sup>187</sup>를 당하여 끝없이 이어지는 경사를 더욱 받습니다. 엿드려 생각건대 신은 마음이 해[임금]를 향하고 관찰사의 소임으로 왔습니다. 남쪽 변방에 머물러 비록 호송(呼嵩)<sup>188</sup>의 반열에 설 수 없으나, 정성은 대궐에 있어 감히 축강(祝岡)<sup>189</sup>의 말씀을 올립니다. 신은 천성(天聖)을 우러르는 간절한 마음 가눌 길 없습니다.

【내각전문】 엿드려 생각건대 규화(奎華)가 천세를 받는 시기라 바야흐로 영원함을 비는 보력(寶曆)<sup>190</sup>을 우러릅니다. 북두 자루가 삼양(三陽)으로 도는 때라 새로움을 맞는 큰 복록을 봅니다. 봄의 기운이 나옴<sup>191</sup>에 이르러 해가 떠오르는 것 같은 송축(頌祝)을 올립니다. 공경히 생각건대 연덕현도경인순희(淵德顯道景仁純

183) 해·달·날의 시작 : 이른바 삼원(三元)으로, 음력 정월 초하루를 말한다.

184) 우음(禹陰)과 탕반(湯盤) : 우음은 우음척촌(禹陰惜寸)의 준말로, 우임금이 짧은 시간도 아꼈다는 말이다. 『소학』 「선행(善行)」에, 도간(陶侃)이 항상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대우는 성인인데도 한 치의 시간을 아꼈으니, 일반 사람들은 마땅히 한 푼의 시간을 아껴야 한다.[大禹聖人 乃惜寸陰 至於衆人 當惜分陰]” 하였다. 탕반은 탕 임금이 목욕하던 그릇을 말하는데, 그 그릇에 명(銘)하기를 “진실로 어느 날 새로워졌거든 나날이 새로워지고 또 날로 새로워져야 한다.[苟日新, 日日新, 又日新.]”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大學章句 傳2章』

185) 시절에 잘 맞춤 : 원문의 무대(茂對)는 빼어나게 맞춘다는 뜻이다. 『주역』 「무망괘(无妄卦) 상(象)」에 “선왕이 이 괘를 보고서 시절에 잘 맞추어 만물을 기른다.[先王以 茂對時 育萬物]” 하였다.

186) 요력순형(堯曆舜衡) : 요임금의 책력과 순임금의 옥형으로, 천제의 운행을 관찰하여 농사에 보탬이 되게 한 일을 말한다. 『서경』 「요전(堯典)」에 “이에 역관 희씨와 화씨에게 명하여 하늘을 공경히 따라서 해와 달과 별자리를 기록하고 관찰하여 백성의 농사철을 공경히 내려 주게 하셨다.[乃命羲和 欽若昊天 曆象日月星辰 敬授人時]” 하였고, 『서경』 「순전(舜典)」에 “선기옥형으로 관찰하여 칠정을 고르게 하셨다.[在璿璣玉衡 以齊七政]” 하였다.

187) 한 해가 변하는 때 : 원문 개약(改籥)의 ‘약(籥)’은 기절(氣節)의 변화를 측정하는 갈대 대롱을 가리킨다. 따라서 한 해의 변천을 뜻하며 세약(歲籥)으로도 쓴다.

188) 호송(呼嵩) : 축수(祝壽)하는 말이다. 한 무제(漢武帝)가 송산(嵩山)에 올랐더니, 신하들이 말하기를, “산이 만세(萬歲)를 세 번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 하였다.

189) 축강(祝岡) : 산등성이 같이 오래 사시기를 바란다는 말이다.

190) 보력(寶曆) : 천자가 반포하는 책력(冊曆)으로, 여기서는 주상(主上)의 지위를 가리킨다.

191) 봄의 기운이 나옴 : 원문의 ‘진초(震初)’는 진(震)의 괘위(卦位)가 동방에 응하는 것으로, 동쪽 또는 봄의 기운이 처음 나옴을 상징한 것이다.

禧) 주상전하께서는 오직 하늘이 위대하여 날마다 겨울이 없습니다. 총명예지(聰明睿智)로 임하여 황극(皇極)<sup>192)</sup>을 세우는 정치를 드러냈고, 음양한서(陰陽寒暑)가 어긋남이 없어 세공(歲功)을 이루는 아름다움을 이루었습니다. 이에 삼원(三元)<sup>193)</sup>이 비로소 돌아오는 때를 당하여 더욱 온갖 상서로움이 모여들을 우러릅니다. 엎드려 생각건대 신은 분향(粉鄉 시골)에서 교화를 받들며 풍승(楓陞)<sup>194)</sup>에 정성을 바칩니다. 시종신(侍從臣)의 반열을 좇기를 원하나 서원(西垣 종서성)이 멀고, 청컨대 성인(聖人)같은 장수(長壽)를 축원하나 남극성이 가로막았습니다. 신은 천성(天聖)을 우러르는 간절한 마음 가눌 길 없습니다.

十六日. 判官入見. 任實縣監洪哲謨, 受由上京之路, 來見辭去.

16일. 판관이 입견하였다. 임실 현감 홍철모가 말미를 받아 상경하는 길에 와서 보고 하직하고 갔다.

同日. 題泰仁縣正犯僧萬成, 初同推狀.

【題】傷處雖多，而實因執定，在於部位之輕重，行兇雖衆而正犯執捉，惟觀下手之猛獸是如乎. 死者之遺囑丁寧，看證之衆招，歸一正犯之目，渠安得掉脫是乙喻? 同僧萬成更加訊推，捧直招，牒報爲旆. 僧快成段置，同力毆打，渠既自服，一體嚴訊，取招爲旆. 僧寅宗段，始欲挽解鼻傷出血之狀，各人所供，一辭無異，分揀放送爲旆. 在逃是在白哥段，既已數月，挾主人舉行，則姓名不知云者，豈有是理? 嚴飭譏捕，勿令漏網宜當向事.

같은 날. 태인현 정범(正犯) 승(僧) 만성(萬成)을 처음 동추(同推)한 보장을 데김하였다.

【데김】상처가 비록 많을 지라도 실인(實因)을 밝혀 확정하는 것은 부위의 경중에 있고, 흉악한 짓을 한 것이 비록 많을 지라도 정범을 잡아들이는 것은 오직 수법이 사나운가 아닌가를 본다. 사자(死者)의 유촉(遺囑)<sup>195)</sup>이 확실하고 본 것을

192) 황극(皇極) : 황극은 제왕(帝王)이 천하를 통치할 때 지켜야 할 원칙을 말한다.

193) 삼원(三元) : 삼시(三始)로, 연(年)·월(月)·일(日)의 처음이라는 뜻으로, 정월 초하루의 아침을 이르는 말이다.

194) 풍승(楓陞) : 중국 한(漢) 나라의 궁전에 단풍나무가 많았던 데서 유래하여 임금이 사는 곳을 뜻한다.

195) 유촉(遺囑) : 자신이 죽은 뒤 어떻게 하라고 부탁하는 것을 말한다.

말한 많은 진술이 한결같이 정범으로 지목하니 그가 어찌 빠져나갈 수 있겠는가? 동 승려 만성을 다시 신추(訊推)<sup>196</sup>하여 정직한 진술을 받아 첩보하라. 승려 쾌성(快成)도 힘을 합하여 구타했음을 그가 이미 자복(自服)하였으니 모두 엄하게 신문(訊問)하여 진술을 받아라. 승려 인종(寅宗)은 처음에 코를 다쳐 피가 나는 상황으로 벗어나려고 하였으나 각인의 진술이 한결같이 다름이 없으니 분간(分揀)하여 석방하라. 도망 중에 있는 백가(白哥)는 이미 2,3개월 동안 주인옆에서 거동했으니 성명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 어찌 그럴 이치가 있겠는가? 엄하게 단속하고 기찰하여 체포하여 수사망에서 빠져나가지 못하여 함이 의당 할 일.

十六日. 以浮浪之類, 假稱廉客之弊, 糾察禁斷事, 發關五十三州, 法聖鎮.

【關文】爲相考事. 卽聞浮浪閒雜之類, 假稱營門廉探, 周行列邑, 其所作弊, 罔有紀極云. 此輩苟有一分嚴畏之心, 寧有如許橫猾之習乎? 揆以法網, 萬萬駭痛乙仍于. 茲以發關爲去乎, 各別糾察本邑境內, 若有如許輩接跡之事, 則無論班常, 卽令捉入, 着枷上使以爲別樣嚴勸之地爲乎矣. 若或因循掩置, 現發於別歧廉探, 則不飭之首吏鄉, 斷當上使嚴處, 各別惕念舉行爲旆. 關到日時, 亦卽牒報宜當尙事.

같은 날. 부랑하는 부류가 염탐하는 사람이라고 거짓으로 칭한다는 폐단을 규찰하여 금단할 일로 53주와 법성진에 관문을 발송하였다.

【관문】상고할 일. 이번에 부랑자와 한가한 잠인들의 무리가 감영의 염탐꾼이라고 거짓으로 칭하면서 여러 읍을 두루 다니며 폐단을 만든 일이 끝이 없다고 한다. 이러한 무리들이 진실로 조금이라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찌 이같이 제멋대로의 사나운 습속이 있겠는가? 법의 기강을 헤아려보면 매우 놀랍다. 그러므로 이에 관문을 발송하니 각별히 본 읍의 경내를 규찰하고, 만약 이 같은 무리들의 정황을 보는 일이 있으면 양반과 상놈을 논하지 말고 즉시 잡아들여 칼을 씌워 감영에 올려 보내 보통과는 다르게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하라. 만약 구습대로 숨겨주어 다른 방법의 염탐에 드러나 발각된다면 신칙(申飭)하지 않은 수리향(首吏鄉)은 결단코 마땅히 감영에 올려 보내 엄하게 처벌할 것이니 각별히 삼가고 두려운 마음으로 거행하라. 관문이 도착하는 날짜 또한 바로 첩보함이 마땅

196) 신추(訊推) : 캐물어 받아냄의 뜻으로, 신문(訊問)과 추심(推尋)의 줄임 말이다.

할 일.

同日. 金泰希獄事更查牒報事, 發關錦山郡.

【關文】爲相考事. 卽因茂朱金振洪議送, 取考本郡金泰希獄事文案, 則死者致死之在於辜限之外, 生前摘奸將校之謂以腦後微浮外無他傷痕是如云云, 俱不無疑眩之端是如乎. 人命至重, 獄體莫嚴, 其在審克之義, 不可仍置之然疑之科. 珍山郡守, 旣已舉行覆檢是隱則, 此獄顛末必當詳知, 後日同推眼同詳覈問, 各人等發問目, 更查後仍具意見, 牒報爲乎矣. 歲除不遠, 斯速舉行, 宜當向事.

같은 날. 김태희(金泰希) 옥사(獄事)를 다시 조사하여 첩보하라는 일로 금산군(錦山郡)에 관문을 발송하였다.

【관문】상고할 일. 이번에 무주(茂朱) 김진홍(金振洪)의 의송(議送)으로 인하여 금산군 김태희의 옥사(獄事) 문안(文案)을 가져다 살펴보니, 죽은 자가 죽음에 이른 것이 고한(辜限)<sup>197</sup>을 지났고, 생전에 적간한 장교는 머리 뒤에 조금 부은 것 외에 다른 상흔이 없다고 하였으니 모두 의혹할 만한 단서가 없진 않다. 인명은 지극히 중요하고 옥체(獄體)는 매우 엄중하여 충분히 조사하는 뜻을 두어야 하고 애매모호한 죄과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진산 군수가 이미 복검을 거행하였으니 이 옥사의 전말을 반드시 자세하게 알 것이다. 훗날 동추 때에 함께 참여하여 자세하게 추문하여야. 각 사람들은 문목(問目)을 내어 다시 조사한 뒤에 바로 의견을 갖추어 첩보하라. 선달그음이 멀지 않으니 속히 거행함이 마땅할 일.

同日. 以金扶安等四名罪狀分首從報來事, 發關右鎮營.

【關文】爲相考事. 靈巖囚推罪人金夫安等四名, 旣已移囚鎮營獄矣, 四名之中, 必有首從之別是如乎. 誰是造謀主事之人是旒, 誰是受人懲憑, 同惡共濟之人是隱喻? 爲先各別詳查, 消詳牒報宜當向事.

같은 날. 김부안(金扶安) 등 4명의 죄상을 주범과 증범을 가려 보고하는 일로 우진영

197) 고한(辜限) : 보고기한(保辜期限)의 줄임 말로, 일정한 기한 안에 얻어맞은 사람이 죽으면 범인을 중죄(重罪)에 처한다. 보고(保辜)란 얻어맞은 사람의 사생(死生)이 판명될 때까지 때린 범인(犯人)을 유치(留置)하는 일이다.



(右鎮營)에 관문을 발송하였다.

【관문】 상고할 일. 영암(靈巖)에서 가두어 심문한 죄인 김부안 등 4명은 이미 진영(鎭營) 옥(獄)으로 옮겨 가두었으되 4명 가운데 반드시 수종(首從)의 구별이 있어야 한다. 누가 모의하여 일을 주도한 사람이며, 누가 남의 권함을 받아 악행을 함께 한 사람인가? 우선 각별하고 상세하게 조사하여 자세하게 헤아려 첩보함이 마땅할 일.

十七日. 參禮察訪徐承烈來見辭去. 高敞縣監李鍾應、珍山郡守李奎憲來見.

17일. 삼례 찰방 서승렬이 와서 보고 하직하고 갔다. 고창 현감 이종응 · 진산 군수 이규현이 와서 보았다.

十八日. 高敞縣監、珍山郡守入見辭去.

18일. 고창 현감 · 진산 군수가 입견하고 하직하고 갔다.

同日. 以移運米星火輸送事, 發關各邑.

【關文】 爲星火舉行事. 本邑分排移轉米, 趁今輸送于都會所, 然後次第裝發, 正月望前, 差使員可以一齊領發是去乙, 見今歲除在即, 尙無發送之報分叱除良, 雖趁今發送是良置, 海路遲速有難遙度, 則何至今不爲裝發, 致此遲滯是噏? 揆以舉行, 萬萬稽忽乙仍于, 茲以發關爲去乎. 同移運米, 毋滯晷刻, 到關即時, 火速輸致于都會所, 受回移考還爲乎矣. 若或未及於差使員裝發之限, 則本邑生事不知至於何境, 須悉此意各別嚴飭舉行宜當向事.<羅州、光州、綾州、南平、寶城、樂安、康津、古阜、興德.>

같은 날. 이운미(移運米)를 속히 실어 보내는 일로 각 읍에 관문을 발송하였다.

【관문】 급히 거행할 일. 본 읍에 분배된 이운미(移運米)를 지금 도회소에 실어 보낸 뒤에 차례로 꾸러 발송하되 정월 보름 전에 차사원이 일제히 거느리고 출발해야 하거늘, 지금 설달 그음이 바로인데 아직도 떠나보냈다는 보고가 없을뿐더러 비록 지금 떠나보내더라도 해로의 신속함과 더뎠음을 멀리서 헤아리기도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실어 보내지 아니하며 이렇게 지체하기에 이르렀는가? 거행한 바를 헤아리면 매우 더디고 소홀함에 따라 이에 관문을 발송한다. 동 이운 미(移運米)를 잠시라도 지체하지 말고, 관문이 도착하는 즉시 빨리 도회소로 실어 보내고, 회이(回移)를 받아 대조하고 돌려주어라. 만약 차사원이 꾸려 떠나야하는 기한에 미치지 못한다면 본 읍에서 일어나는 일은 어느 지경에까지 이를지 알 수 없으니 모름지기 이러한 뜻을 잘 알아 각별히 엄하게 단속하여 거행함이 마땅할 일. <나주·광주·능주·남평·보성·낙안·강진·고부·흥덕>

十九日. 以畿運牟五千石從他變通事, 報備局.

【報牒】爲牒報事. 本道分劃移轉皮牟二萬石內, 一萬一千七百二十六石零段, 並元納船價, 纔已裝運上送是乎乙遣. 其餘一萬石中, 湖西移轉牟五千石段, 皆在峽野諸邑, 出浦遙遠, 陸運無路, 故據實論報是乎乙加尼, 司教是回題內, “無論某樣穀, 以沿邑所在中, 從便推移以送”亦爲有置. 賑賑時急, 題教鄭重, 其在隣省, 共濟之誼, 固當恪遵, 舉行之不暇是乎矣. 本道事勢, 有萬萬罔措者. 近年以來, 穀摠漸縮, 沿邑見在只是若干租還, 則勢不得不就租還中推移是如乎. 此在開倉之初, 則尚可以預先經紀, 而見今各邑糴事, 次第了勘矣. 本道穀麤, 自來痼疾, 始既不另飭精捧, 則依舊是過半空殼, 以此需用於賑濟, 初非可議是乎乙遣. 今若揚而準斛, 則欠縮之數, 殆占其半, 假令萬石改斛, 實不過爲四五千石, 此已屢驗於兩年移粟之時是乎所. 本道年形較畿湖, 別無優劣之可言, 而移牟運米之舉, 已不啻蚊負龜刮, 民力匱竭, 無復餘地? 今若重責此役, 則轉輸之勞, 且置勿論, 欠縮之數, 勢將敷斂於民, 以今顛頡難保之狀, 終是推去不得之政乙仍于, 方欲更爲論報是乎乙加尼, 際接畿營移文, 則“明春運牟中, 五千石, 解冰初卽爲裝運上送”亦爲有等以. 枚舉如右事狀, 才已回移爲有在果. 毋論以牟以租, 趁今裝送然後, 可以需用於賑資, 而以今番運牟言之, 左沿諸邑, 則距都會所幾近千里, 故已自九月, 火速知委是乎矣. 出浦裝舡, 候風津涉之際, 自然多費日月. 今纔都聚裝發, 首尾四朔, 始可到泊京江矣. 今此賑資, 設令卽今裝發是良置, 猶有緩不及之慮是去等, 況於運米方張, 此役並發, 則收聚裝載之際, 自然拖到三四月之間, 如是而將何以及期需用是乎乙喻? 左思右量, 舉行未由, 茲不得不更爲牒報爲去乎. 司教是參量事勢, 從他變通, 指一處分爲只爲.<不呈.>

19일. 경기(京畿)로 운반하는 보리 5천 섬을 다른 곳으로부터 변통하는 일로 비변사에 첩보하였다.

【보첩】 첩보하는 일. 전라도에 분획(分劃)되어 옮기는 피모(皮牟) 2만 섬 안에 1만 1천7백26섬은 원 납부액과 뱃삿을 모두 아울러 납부(納付)하여야 하는데 겨우 실어 운반하여 올려 보냈습니다. 그 나머지 1만 섬 가운데 호서(湖西)로 옮겨야 할 보리 5천섬이 모두 협야(峽野)에 있는 읍들이어서 포구로 나오는 것이 멀고, 육로로 운반하는 길이 없기 때문에 사실에 근거하여 논보(論報)하였더니, 비변사에서 회제(回題)한 내용에, “어떤 곡물인지를 논하지 말고서 연읍(沿邑)에 있는 곳 가운데에서 편리함을 좇아 추심하여 옮겨 보낼 것” 이라고 하였습니다. 진휼이 시급하고 제사(題辭)가 중정하여 그 가까이에 있는 도가 함께 구제하는 것이 마땅하니 진실로 삼가고 좇아 거행하기를 겨를이 없게 해야 되나, 전라도의 일의 형편이 매우 어찌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근년 이래로 곡식의 총량이 점점 줄어들고 연읍(沿邑)이 현재는 다만 약간의 조환(租還)만 있으니 형세가 조환을 추심해 옮기는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창고를 여는 초기라면 오히려 미리 먼저 다스려 처리할 수 있지만 지금 각 읍의 환곡(還穀)의 사무는 차례로 마감되고 있습니다. 본도의 곡식이 거친 것은 자고이래로 고칠 수 없는 폐단이고 애초에 이미 정미(精美)한 것을 거둬들이라고 따로 단속하지 아니하여 예대로 과반(過半)이 빈 껍질이니, 이것으로 진휼을 구제하는 데에 수용(需用)하는 것은 처음에 의논한 바가 아닙니다. 지금 만약 까불러 곡자(斛子)로 잰다면 부족하고 모자라는 수가 거의 반을 점유하니, 가령 만 섬을 곡자로 다시하면 실제로 4,5천 섬이 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는 두 해 동안에 곡식을 옮길 때에 이미 여러 번 검증된 바입니다. 본도의 작황(作況)은 기호(畿湖) 지방에 비하면 특별히 우열을 말할 수는 없으나 보리를 옮기고 쌀을 운반하는 일은 이미 모기로 산을 짚어지게 하고 거북이로 태산을 굽어내게 하는 것처럼 터무니없을 뿐만 아니라 백성의 힘이 다하여 없어져 다시 할 여지가 없습니다. 지금 만약 이 일을 거듭 책임지운다면 옮겨 보내는 수고는 차치하고 논하지 않더라도 부족한 곡식은 형편상 장차 백성에게서 널리 거둬들여야 하는데, 지금 몹시 굶주려 보전하기 어려운 상황으로는 끝내 거둬들일 수 없는 정국(政局)임에 따라 바야흐로 다시 논보(論報)합니다.

그리고 기영(畿營)의 이문(移文)을 접하니, “내년 봄 운반할 보리 가운데 5천섬은 얼음이 녹는 초기에 즉시 실어 운반하여 올려 보내라.”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실정을 낱알이 거론하여 겨우 회이(回移)하였습니다. 보리든 조(租)든 막론하고 바로 실어 보낸 뒤에 진흙의 자원으로 수용(需用)할 수 있는데, 금번 운모(運牟)로 말하면 좌도(左道) 가의 제읍(諸邑)은 도회소(都會所)와 거의 1천 리 가까이 떨어져 있습니다. 때문에 이미 9월부터 화급히 자세하게 알렸습니다.

포구로 나와 배에 싣고 순풍을 기다려 건널 때에 자연 시간을 많이 소비합니다. 지금 겨우 모두 모여 실어 보내니 수미(首尾)가 4개월이 걸려야 비로소 경강(京江)에 이르러 머물 수 있습니다. 이번의 진흙의 자원은 설령 즉시 실어 보내라고 하였는데도 오히려 늦어져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거늘 하물며 운미(運米)가 바야흐로 증가하고 때에 이 운모(運牟)의 일이 함께 발생한다면 거뭇 모아 배에 실을 때에 자연 3,4개월 간 지연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된다면 장차 어떻게 제때에 수용(需用)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거행할 방도가 없어서 이에 다시 첩보합니다. 비변사는 사세를 참고해 헤아려 다른 곳에서 변통하되 하나의 처분을 지시하소서.<올리지 않음.>

十九日. 以殺獄諸囚所犯情節論理報來事, 發關全州、康津.

【關文】爲相考事. 此歲行且盡矣, 清獄之節不可不及今留意是如乎. 今年四月以後, 殺獄干犯諸囚, 終旬同推時, 所犯情節, 到底鉤覈, 參考文案, 嚴刑準次後, 仍卽具意見, 論理牒報, 以爲分輕重酌處之地, 宜當尙事.

같은 날. 살옥의 여러 죄수들이 범한 정황(情況)과 사리를 논하여 보고할 일로 전주와 강진에 관문을 발송하였다.

【관문】상고할 일. 올해도 흘러 장차 저물려하는 때에 옥사를 분명히 하는 절도(節度)는 지금 유의(留意)하지 않을 수 없다. 금년 4월 이후로 살옥에 간련(干連)된 여러 죄인은 하순 동추(同推) 때에 범한 정황(情況)을 철저히 규명하고 문안(文案)을 참고하여 엄하게 형신(刑訊)하여 준차(準次)한 뒤에 이어서 바로 의견을 갖추고 사리를 논하여 첩보하여 경중을 나누어 작처(酌處)<sup>198)</sup>하는 바탕으로 삼게 함

198) 酌處(작처) : 죄의 경중을 참작하여 처결(處決)하는 것을 말한다..

이 마땅할 일.

二十日. 中營將入見. 綾州牧使李廣度、金堤郡守李玄好來見.

20일. 중영장이 입견하였다. 능주 목사 이광도·김제 군수 이현호가 와서 보았다.

同日. 封發元都目狀啓.

【狀啓】爲相考事. 癸巳年, 年分災實, 依例磨鍊, 修正成冊, 兩件上送于戶曹爲白在果, 本道各樣災摠, 爲二萬四千四百結是白遣. 己甲以後陳廢田畝中, 辛卯勸起, 爲一百十三結七十九負九束, 壬辰勸起, 爲七十結九十負三束, 癸巳勸起, 爲九十五結五十六負五束, 而此是三年免稅者是白乎所, 災實區別, 關係甚重乙仍于, 臣親執災簿, 酌量分排, 嚴飭守宰, 使之一一均俵是白如乎. 壬辰修啓實摠, 爲十九萬六千八百九十結七十六負六束, 加入壬辰災二萬二千七百六十七結十負二束、庚寅勸耕起二十五結六十六負四束、癸巳泥生二結五十八負二束、今加耕三十七負一束, 合元摠爲二十一萬九千六百八十六結四十八負五束, 而計除今年許劃災與辛卯、壬辰、癸巳勸起免稅等, 合二萬四千六百八十結二十六負七束是白乎則, 實摠爲十九萬五千六結二十一負八束是白乎旡. 辛卯勸耕起四十八結八十六負一束、壬辰勸耕起三十六結三負四束、癸巳勸耕起二十四結七十負八束, 依定式過三年, 當爲出稅是白遣. 今年災名段, 未移及丙戌添錄舊災外, 水沈消融、海溢晚移、枯損虫損、雹損風損、舊未蒙頭等災之列錄, 亦涉煩猥, 並以全不掛鎌全災懸錄是白乎旡. 今舊覆沙等, 六千一百五十六結五十五負段, 今年災頃, 明年還實, 自是事目, 故以當年災施行爲白遣. 茂朱府所在延齡君房免稅田五十結, 移送光州牧, 龍潭縣所在和柔翁主房免稅畝五十結, 移送和順縣, 金溝縣所在壽進宮免稅田一百結, 移送長城府, 鎮安縣所在龍洞宮免稅田四十結、畝三十結, 壽進宮免稅田四結、畝三十六結, 移送沃溝縣, 於義宮免稅田四十結、畝四十結, 移送羅州牧, 泰仁縣所在壽進宮免稅田二十結、畝三十結, 移送高敞縣爲白乎旡. 緣由并以謹具啓聞.

같은 날. 원도목(元都目 재결(災結) 원장(元帳)) 장계를 봉하여 발송합니다.

【장계】 상고할 일. 기사년(1833) 연분재실(年分災實)은 전례(前例)에 의거하여 마련하여 바로잡고 성책(成冊)하여 두 건을 호조로 올려보냈습니다. 전라도의 각

양의 재총은 모두 2만 4천 4백 결입니다. 기축년과 갑신년 이후 오래 묵어 못쓰게 된 전답 가운데 신묘년(1831)에 권장하여 기경(起耕)한 것이 1백13결 79부 7속, 임진년(1832)에 권기(勸起)한 것이 70결 90부 3속, 계사년(1833)에 권기한 것이 95결 56부 5속이나 이것은 3년간 세금을 면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재실(災實)을 구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에 관계됨에 따라 신이 직접 재결(災結) 장부를 잡고 헤아려 분배(分排)하고 수령들에게 엄격하게 단속하여 하나하나 균등하게 나누어 주게 하였습니다. 임진년 수계(修啓)<sup>199)</sup>한 실총(實摠)<sup>200)</sup>은 19만 6천8백90결 76부 6속이 되는데, 임진년의 재결 2만 2천7백6십7결 10부 2속 · 경인년 권경기(勸耕起)<sup>201)</sup> 25결 66부 4속 · 계사년 이생(泥生)<sup>202)</sup> 2결 58부 2속 · 금년 가경(加耕)<sup>203)</sup> 하는 37부를 더하면 합 원이 총 21만 9천6백86결 48부 5속이나 재결(災結)로 획급(劃給)해 준 것과 신묘년 · 임진년 · 계사년에 권기(勸起)하여 면세할 것 등을 계산하여 제외하면 합이 2만 4천 6백 80결 26부 7속이니 실총은 19만 5천6결 21부 8속입니다.

신묘년 권경기(勸耕起) 48결 86부 1속 · 임진년 권경기 36결 3부 4속 · 계사년 권경기 24결 70부 8속은 법식으로 정한 것에 의하여 3년이 지났으니 마땅히 세금을 내야 합니다. 금년 재결의 명색(名色)은 이양하지 못한 것과 병술년 구재(舊災)에 덧붙여 기록한 것 외에 물이 침수되어 녹아버린 곳, 바닷물이 넘쳐 늦게 이양한 곳, 말라서 줄어들고 병충해로 상한 곳, 우박과 비로 줄어든 곳, 예전에는 탈을 입지 않았던 곳의 재결로 나열되어 기록되어 역시 번잡하니 모두 전불괘겸(全不掛鎌)<sup>204)</sup>의 전재(全災)로 장부에 올렸습니다. 지금 오랫동안 복사(覆沙 모래로 덮임) 재결 6천1백56결 55부의 경우는 올해의 재탈(災頽)은 내년엔 환실(還實)<sup>205)</sup>하는 것이 본래 사목(事目)<sup>206)</sup>이기 때문에 당년의 재해로 시행하였습니다. 무주부에 있는 연령군방(延齡君房)<sup>207)</sup>의 면세전 50결을 광주목으로 이송하였습니다. 용담현에

199) 수계(修啓) : 어떤 사안에 대해 왕에게 문건(文件)을 작성하여 아뢰는 것으로, 계목(啓目)이나 장계(狀啓) 등은 물론이고 방목(榜目)이나 생기(省記) 등을 작성하여 아뢰는 경우에 두루 쓰이는 말이다.

200) 실총(實摠) : 세금을 매길 수 있는 실제 전지(田地)의 수를 말한다.

201) 권경기(勸耕起) : 경작(耕作)과 개간(開墾)을 권면(勸勉)함을 이른다.

202) 이생(泥生) : 이생지(泥生處)로, 냇가에 있는 모래 섞인 개흙땅을 말한다.

203) 가경(加耕) : 가경전(加耕田)으로, 새로 개간하여 아직 토지대장에 오르지 않은 논밭이다.

204) 전불괘겸(全不掛鎌) : 자연의 재해 등 갖가지 이유로 거둬들일 만한 곡식(穀食)이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한다.

205) 환실(還實) : 재해를 입지 않은 실수(實收)의 상태로 돌리는 것을 말한다.

206) 사목(事目) : 공사(公事)에 관(關)하여 정(定)한 관청(官廳)의 규정(規定) 또는 규칙(規則)을 말한다.

있는 화유옹주방(和柔翁主房)<sup>208</sup> 면세답 50결을 화순현으로 이송하고 금구현에 있는 수진궁(壽進宮)<sup>209</sup> 면세전 100결을 장성부로 이송하고, 진안현에 있는 용동궁(龍洞宮)<sup>210</sup> 면세전 40결, 면세답 30결, 수진궁(壽進宮) 면세전 4결, 면세답 36결을 옥구현으로 이송하고, 어의궁(於義宮)<sup>211</sup> 면세전 40결, 면세답 40결을 나주목으로 이송하고, 태인현에 있는 수진궁(壽進宮) 면세전 20결, 면세답 30결을 고창현으로 이송하소서. 이러한 연유로 아울러 삼가 갖추어 아뢰입니다.

同日. 以京江船飭送濟倉事, 發關高敞縣.

【關文】爲星火舉行事. 羅州、綾州、光州、南平等四邑移轉米, 已皆轉致于濟民倉, 方欲裝發而地土船隻, 尙未執捉, 致此愆期是如爲置. 光綾南三邑段, 俱以山邑, 初無地土船, 羅州雖是沿邑容載船隻, 亦難募得分叱除良, 設或有可得之道良置, 皆是小小漁艇, 容載不滿幾石而以此小艇, 逆風津涉, 終有踈虞之慮是如乎. 右項四邑移轉穀, 以京江船下送, 裝運既有昨今兩年已例, 則到今亦不必以此持難乙仍于, 茲以發關爲去乎. 京江船二隻, 到關卽時, 毋或晷刻稽滯, 嚴飭沙格等, 回泊於羅州濟倉前洋, 以爲輸運之地爲乎矣. 船漢輩, 萬一有稱頑頑拒者是去等, 一併定將差, 着枷上使爲旴. 四邑事勢, 不可不以京江船裝運然後, 始無狼貝之慮, 須悉此意, 勿爲煩報, 火速舉行, 宜當尙事.

같은 날. 경강선을 신칙(申飭)하여 제창(濟倉)에 보내는 일로 고창현에 관문을 발송하였다.

【관문】화급히 거행할 일. 나주·능주·광주·남평 등의 4읍이 운반해야 할 쌀은 이미 모두 제민창(濟民倉)<sup>212</sup>에 운반되어 막 실어 보내려고 하였으나 지토선척(地土船隻)<sup>213</sup>이 아직 잡히지 않아 이렇게 기한을 지체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광주·능주·남평 3읍은 모두 산읍으로 애초 지토선이 없고, 나주는 비록 연읍이 선박에

207) 연령군방(延齡君房) : 연령군(延齡君)의 궁방이다. 연령군은 숙종의 셋째 아들로, 이름은 흰(珽)인데, 1719년(숙종45) 10월 2일에 21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다.

208) 화유옹주방(和柔翁主房) : 영조의 딸 화유옹주의 궁방이다.

209) 수진궁(壽進宮) : 세상에서 전하기를 본래 제안대군(齊安大君)의 궁이라 하는데, 봉작(封爵)을 못하고 출함(出閭)도 못한, 어려서 죽은 대군(大君)·왕자(王子)·공주(公主)·옹주(翁主)에게 제사지내는 곳이다.

210) 용동궁(龍洞宮) : 순회 세자(順懷世子)의 옛 궁이다.

211) 어의궁(於義宮) : 사직동에 있던 인조(仁祖)의 잠저(潛邸)이다.

212) 제민창(濟民倉) : 춘궁기에 농민들에게 대여해 주기 위한 곡식을 보관하던 창고이다. 영조(英祖) 39년(1763)에 흥봉한(洪鳳漢)의 건백(建白)으로 삼남(三南) 지방(地方)에 설치(設置)했다.

213) 지토선박(地土船隻) : 지방 토착민이 소유한 배, 또는 지방 관아에 등록된 배를 말한다.

실을 수 있으나 모집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혹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도 모두 작은 어선이어서 실을 수 있는 것이 몇 섬을 채우지 못하고, 작은 배로 바람을 거슬러 포구를 건넌다면 끝내 소홀이 할 염려가 있다. 위 4읍에서 옳길 곡물은 경강선을 내려 보내 실어 운반하는 것이 이미 작년과 금년 두 해의 전례가 있으니 이번에도 굳이 이를 가지고 질질 끌 필요가 없으므로 이에 관문을 발송한다. 경강선 2척은 관문이 도착하는 즉시 잠시라도 지체하지 말고 사격(沙格) 등에게 엄하게 명하여 나주 제창(濟倉) 앞바다로 돌려 정박하게 하여 실어 나를 것. 다만, 뱃놈들이 칭탈하여 완강하게 거부하는 자가 있거든 하나같이 모두 장차(將差)<sup>214</sup>를 정하여 목에 칼을 씌워 감영으로 잡아 올려라. 4읍의 사세(事勢)가 불가불 경강선으로 실어 보낸 연후에야 비로소 낭패(狼狽)의 우려가 없으니 모름지기 모두 이 뜻을 새겨 성가신 통보로 여기지 말고 신속하게 거행함이 마땅할 일.

---

214) 장차(將差) : 고을 원이나 감사(監司)가 심부름으로 보내던 사람을 말한다.



## 6. 1833년(순조33) 12월 21~30일 : 각 읍에 우금(牛禁)을 감결(甘結)하다

二十一日. 綾州牧使入見辭去. 光州牧使趙雲明、益山郡守李源吉、和順縣監徐承淳來見. 當日光州牧使、金提郡守、益山郡守、和順縣監又爲入見.

21일. 능주 목사가 입견하고 하직하고 갔다. 광주 목사 조운명·익산 군수 이원길·화순 현감 서승순이 와서 보았다. 당일 광주 목사·김제 군수·익산 군수·화순 현감이 또 입견하였다.

同日. 封靈巖郡守在喪啓.

【狀啓】靈巖郡守李應謙, 今月初八日, 遭其生母喪, 訃書來到是如. 該郡公兄, 文狀馳告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去乎. 其代令該曹擇差, 催促下送爲白只爲.

같은 날. 영암 군수가 상중이라는 장계를 써서 봉하였다.

【장계】영암 군수 이응겸이 이달 8일 그 생모 상을 당하여 부고가 왔습니다. 영암군의 공형(公兄)<sup>215</sup>이 문장(文狀)으로 급히 아뢰어 왔기 때문에 이러한 연유로 치계(馳啓)합니다. 그 대임(代任)은 이조로 하여금 차관(差官)을 뽑아 재촉하여 내려 보내게 하소서.

同日. 以靈巖郡封庫官差定事, 發關康津縣.

【關文】爲相考事. 靈巖郡守遭其內艱, 今方奔喪乙仍于, 縣監封庫官差定爲去乎, 卽爲馳進該郡, 公私各庫, 依例封閉, 穀物都數成冊, 及官需、油清用遺在成冊, 各兩件亦卽修報, 而印符開金, 照數捧留爲有如何, 待新官傳授爲旆. 凡干公務, 着意兼察宜當向事.

같은 날. 영암군의 봉고관(封庫官)을 차정(差定)하는 일로 강진현에 관문을 발송하였다.

【관문】상고할 일. 영암 군수가 모친 상(喪)을 당하여 지금 막 분상(奔喪)함에 따라 강진 현감을 봉고관으로 차정하니 즉시 해당 군으로 달려 나가 공사(公私)의

215) 공형(公兄) : 조선 시대 각 고을의 호장(戶長), 이방(吏房), 수형리(首刑吏)의 관속을 이른 말이다.

각 창고는 예규대로 봉폐(封閉)하고 곡물의 총 수효를 성책(成冊)하고, 관수품과 유청지(油淸紙地)의 쓰고 남은 것을 성책(成冊)한 각 두 건 또한 즉시 정리하여 보고하고 인장(印章)과 병부(兵符)와 열쇠는 수효를 대조하여 받아 놓았다가 신임 관료를 기다려 전해주라. 모든 공무를 마음을 써서 두루 겸하여 살피는 것이 마땅할 일.

同日. 以舊災還實條, 作奸, 出稅與否, 詳查報來事, 發關同福縣.

【關文】爲相考事. 今番舊災查起條, 就都吏私橐中有所還實, 故向於倭災時, 別關申飭是加尼. 卽聞本邑都吏, 惟充其還實之結數, 混錄出稅於多年懸頃之陳結, 民怨狼藉, 及於入聞營門別飭之下, 渠以么麼下吏, 恣意作奸, 少無顧忌? 苟有一分嚴畏之心, 焉敢乃爾? 田政之外, 大關紀綱, 依律嚴勘, 斷不可已乙仍于, 茲以發關爲去乎. 親執結簿, 凡係陳結之出稅者, 毋或把束隱漏, 到底詳查, 一一依前頃給後, 同作奸數爻, 修成冊牒報爲旆. 當該都吏段, 着枷嚴囚, 形止牒報爲乎矣. 各別惕念舉行, 俾無踈漏大段生梗之弊, 宜當向事.

같은 날. 구재환실(舊災還實) 조목에 간사한 짓을 한 것과 세금을 낸 여부를 상세히 조사하여 보고하는 일로 동복현에 관문을 발송하였다.

【관문】상고할 일. 금번 구재(舊災)의 기경(起耕)을 조사하는 조목에 도리(都吏)의 개인 전대 속에 환실(還實)한 것이 있는 경우가 있었다. 때문에 과거 표재(倭災) 때 별도로 관문으로 신칙하였다. 그런데 지금 듣건대, 동복현의 도리(都吏)가 오직 그 환실의 결수를 채울 것을 생각하여 다년간 탈이 있다고 기록된 진결(陳結)에다 세금을 낼 것을 섞어 써서 백성들의 원망이 낭자(狼藉)한데도, 감영이 특별히 신칙을 내렸다고 들어와 아룁에 이르렀으니 어찌 하찮은 하리(下吏)가 자의적으로 간사함을 지으며 조금치도 염려하고 거리낌이 없는가? 진실로 조금이라도 엄중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다면 어찌 감히 이렇게 하겠는가? 전정(田政)외에 기강(紀綱)에 크게 관계되니 조문에 의거하여 엄중하게 처단하는 것을 결단코 그만 둘 수 없음에 따라 이에 관문을 발송한다. 직접 결부(結簿)<sup>216)</sup>를 잡고 모든 진결(陳結)가운데 세금을 낸 것에 관계된 것은 혹 파속(把束)이라도 숨기지 말고 살살이

216) 결부(結簿) : 조선 시대에 논밭의 결(結)에 따라 토지세를 거둬들일 때 쓰던 장부를 말한다.

조사하여 하나하나 이전대로 세금을 면제해 준 뒤에 동(同) 작간(作奸)한 수효(數  
 爻)를 장부를 만들어 첩보하라. 해당 도리(都吏)는 목에 칼을 씌워 엄하게 가두고  
 사실의 전말을 첩보하라. 각별히 삼가고 두렵게 거행하여 소홀히 하고 빠뜨려 큰 탈  
 이 나는 폐단이 없도록 함이 마땅할 일.

同日. 以老人冒年事, 發關各邑.

【關文】爲相考事. 老人應資事, 係恩典, 啓聞事體, 何等嚴重, 而本邑所報老人成  
 冊, 考準於營上帳籍, 則金大寬, 明年至爲八十八歲, 孫命宣, 明年至爲八十一歲, 該  
 吏之不善審慎, 有此混報者, 揆以舉行, 萬萬痛駭. 同老人段, 並只拔去是在果, 當該  
 禮吏, 移囚南平縣, 嚴刑一次, 懲礪放送之意, 枚移施行, 宜當向事.<綾州>

云云申光一, 許莢, 明年至各爲八十九歲, 該吏之不善審慎, 有此混報者, 揆以舉行,  
 萬萬痛駭. 同老人段置, 並只拔去是在果, 當該禮吏, 移囚昌平縣云云事.<玉果>

云云高丕金明年至爲六十三歲, 該吏之不善審慎, 有此混報者, 揆以舉行, 萬萬痛駭.  
 同老人段, 拔去是在果, 當該禮吏, 移囚高敞縣云云事.<靈光>

云云尹光玉初無載錄, 李壽萬明年至爲七十七歲, 該吏之不善審慎, 有此混報者, 揆以  
 舉行, 萬萬痛駭. 同老人段, 並只拔去是在果, 當該禮吏移囚萬頃縣云云事.<扶安>

云云金得光, 朴根昌初無載錄, 林玉彬明年至爲八十一歲, 該吏之不善審慎, 有此混報  
 者, 揆以舉行, 萬萬痛駭. 同老人段, 並只拔去是在果, 當該禮吏移囚礪山府云云事.<高山>

云云本邑所報老人成冊中, 淑夫人高氏, 年雖八十, 士族婦人, 未準九十之前, 法不得  
 干恩, 故依例拔去是遣, 金光麗段, 居住面里何不開錄, 以致考籍無路是驗? 老人應資  
 事係恩典, 啓聞事體, 何等嚴重, 則該吏之不善審慎, 有此模糊, 舉行者萬萬痛駭. 移  
 囚茂長縣云云事.<興德>

云云本邑所報老人成冊, 考準於營上帳籍, 則朴春基初無載錄, 無籍之凡係恩資不得舉  
 論, 自是法典是如乎, 茲以拔去爲去乎, 相考施行向事.<樂安>

云云本邑所報老人成冊中, 無籍開錄是在金敬秀段, 茲以拔去云云事.<古阜>

같은 날. 노인들이 나이를 속이는 일로 각 읍에 관문을 발송하였다.

【관문】상고할 일. 노인을 응자(應資)<sup>217</sup>하는 일은 은전(恩典)에 관계되는 일이

217) 응자(應資) : 나이 많은 노인에게 임금이 내리던 가자(加資)로, 벼슬아치와 일반인은 80세, 봉군  
 (封君)된 사람의 아버지는 70세가 되었을 때 매년 초에 가자하였다.

어서 아뢰는 일의 체모가 매우 엄중해야 하는데 본읍이 보고한 노인은 감영에 등재된 장부와 비교하면 김대관(金大寬)은 내년엔 88세에 이르고, 손명선(孫命宣)은 내년엔 81세에 이른다. 해당 관리가 조정하고 신중하지 못하여 이 혼돈된 보고가 있었으니 헤아려 거행해야 하거늘 매우 놀란다. 동 노인들은 모두 자급할 노인[應資老人] 명단에서 빼내고, 해당 예리(禮吏)는 남평현으로 옮겨 가두고 1차 엄하게 형신하여 징계하여 풀어주라는 뜻을 날날이 이문하여 시행함이 마땅할 일.<능주>

운운. 신광일(申光一), 허협(許莢)은 내년엔 각각 89세가 된다. 해당 관리가 조정하고 신중하지 못하여 이 혼돈된 보고가 있으니 헤아려 거행했어야 하거늘 매우 놀란다. 동 노인들도 모두 응자노인 명단에서 빼내고, 해당 예리(禮吏)는 창평현으로 옮겨 가두라고 운운한 일.<옥과>

운운. 고돌금(高鬐金)은 내년엔 63세가 된다. 해당 관리가 조심하고 신중하지 못하여 이 혼돈된 보고가 있었으니 헤아려 거행했어야 하거늘 매우 놀란다. 동 노인은 뽑아내고 해당 예리(禮吏)는 고창현으로 옮겨 가두라 운운한 일.<영광>

운운. 윤광옥(尹光玉)은 처음부터 실린 기록이 없고, 이수만(李壽萬)은 내년엔 77세가 된다. 해당 관리가 조심하고 신중하지 못하여 이 혼돈된 보고가 있었으니 헤아려 거행을 했어야 하거늘 매우 놀란다. 동 노인은 모두 빼내고, 해당 예리(禮吏)는 만경현으로 옮겨 가두라 운운한 일.<부안>

운운. 김득광(金得光) 박근창(朴根昌)은 처음부터 등재된 기록이 없고, 임옥빈(林玉彬)은 내년엔 81세가 된다. 해당 관리가 조심하면 신중하지 못하여 이 혼돈된 보고가 있었으니 헤아려 거행했어야 하거늘 매우 놀란다. 동 노인은 모두 빼내고, 해당 예리(禮吏)는 여산부로 옮겨 가두라 운운한 일.<고산>

운운. 본읍이 보고한 노인 성책(成冊) 가운데 숙부인(淑夫人) 고(高)씨는 나이가 비록 80세이나 사족(士族)의 부인은 90세 전에는 법에 간은(干恩)<sup>218)</sup>할 수 없기 때문에 예(例)에 따라 빼냈다. 김광려(金光麗)는 거주하는 면리를 어찌 날날이 기록하지 아니하여 호적을 살필 길이 없게 하였는가? 노인응자(老人應資)의 일은 은전에 관계되어 계문(啓聞)의 사체가 매우 엄중하니 해당 관리가 조심하고 신중하지 못하여 이 모호함이 있었으니 헤아려 거행했어야 하거늘 매우 놀란다. 무장현으로 옮겨 가두라 운운한 일.<흥덕>

218) 간은(干恩) : 임금의 은택을 바라고 구하는 것을 말한다.

운운. 본읍 〈樂安〉 이 보고한 노인성책(老人成冊)은 감영 장부에 기준하여 살펴 보면 박춘기(朴春基)는 처음부터 등재된 기록이 없다. 호적이 없다는 것 모두 은자(恩資)를 거론할 수 없는 것이 법전이라고 하니 이에 빼냈다. 상고하여 시행할 일.<낙안>

운운. 본읍 〈古阜〉 이 보고한 노인성책 가운데 무적(無籍)으로 개록(開錄)한 김경수(金敬秀)는 이에 빼냈다. 운운한 일.<고부>

同日. 題全州府殺獄干犯諸囚同推狀.

【題】婢三月段, 非渠通奸判芻, 豈致渠夫自裁? 罪之首、厲之階也, 固不可尋常勘斷是如乎, 捧遲晚牒報爲迹. 朴石崇段, 臀築膝築, 孰是墮胎之根因? 厥姊厥甥誰是行兇之元犯? 特以朴女首先起鬧, 石崇後來加功是隱則, 揆以審克之義, 宜置減等之科, 亦卽捧遲晚牒報爲迹. 李福同段, 捉賊固宜, 索賂何爲? 凡強盜作黨, 威逼人致死者, 不分首從, 並施一律, 自是法文所載是乃. 此獄段, 旣云見贓捉賊, 則與強盜威逼之律, 自當差殊是如乎. 同李福同移送鎮營, 以治盜棍, 箇箇考察, 嚴棍三十度, 懲礪放送爲迹. 朴破回段, 假使朴載煥爲渠不反兵之讎良置, 旣已發告之後, 不待檢驗, 悍然刃刺, 兇悖除良, 大關後弊, 依津勘處, 斷不饒貸, 一體捧遲晚牒報爲迹. 李召史段, 成案僅爲踰月, 受刑不過一次, 不可遽議酌放. 依前牢囚, 後旬同推, 更加嚴訊, 取招牒報, 宜當向事.

같은 날. 전주부 살육에 관련된 여러 죄수를 동추(同推)한 보장을 데김하였다.

【데김】여중 삼월(三月)은 그녀가 판돌(判芻)과 통간한 것이 아니라면 어찌 그의 남편이 자살(自殺)하기에 이르렀겠는가? 죄의 수괴(首魁)이며 재앙의 실마리이니 진실로 보통으로 처벌해서는 안 되니 봉지만(捧遲晚)<sup>219</sup>하여 첩보하라. 박석송(朴石崇)은 불기로 짓이기고 무릎으로 짓눌렀으니 무엇이 낙태의 근인(根因)인가? 그 누이와 오라비는 누가 사람을 죽인 원범(元犯)인가? 다만 박씨 여자가 먼저 소란을 일으켰고 박석송이 후에 와 공격을 가담하였다고 하니 충분히 조사한다는 뜻으로 헤아려 마땅히 죄를 감해주는데 해당하니 또한 즉시 봉지만(捧遲晚)하여 첩보하라.

219) 봉지만(捧遲晚) : 죄인(罪人)에게서 죄의 자복을 다짐 받던 일을 말한다.

이복동(李福同)은 도적을 잡는 것이 진실로 마땅한데 뇌물을 요구함은 어째서인가? 모든 강도가 작당하여 사람을 위협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자는 수범(首犯)과 종범(從犯)을 가리지 않고 모두 같은 죄를 적용하는 것이 본래 법문이 등재한 것이다. 이 옥사는 이미 장물(贓物)을 보고 도적을 잡았다고 말했으니, 강도가 위협한 법률과는 자연 마땅히 조금 차이가 있어야 한다. 동 이복동을 진영(鎭營)으로 이송하여 치도棍(治盜棍)<sup>220)</sup>으로 하나하나 고찰(考察)하여 엄하게 곤장 30대를 치고 징계하여 풀어주라. 박파회(朴破回)는 설사 박재환(朴載煥)이 그가 불반병(不反兵)의 원수<sup>221)</sup>일지라도 이미 고발한 뒤에 검험(檢驗)을 기다리지 않고 사납게 칼로 찌른 것은 흉악하고 거칠다. 뒷날의 피해에 크게 관계되니 율(律)에 의거하여 조사 처리하되 결단코 너그럽게 용서하지 말고 일체를 봉지만(捧遲晚)하여 첩보하라. 이조이[李召史]는 성안(成案)이 겨우 달을 넘겼고 형을 받은 것이 한 차례에 지나지 않으나 갑자기 참작하여 내보는 것을 논의해서는 안 된다. 단단히 가두고 후순(後旬)에 동추(同推)하여 다시 엄한 형신(刑訊)을 가하여 진술을 받아 첩보함이 마땅할 일.

二十二日. 光州牧使、益山郡守、金提郡守, 入見辭去. 和順縣監入見. 潭陽府使曹錫玄來見. 和順縣監又爲入見.

22일. 광주 목사·익산 군수·김제 군수가 입건하여 하직하고 갔다. 화순 현감이 입건하였다. 담양 부사 조석현이 와서 보았다. 화순 현감이 또 입건하였다.

同日. 封木大同純錢事許施有旨祇受啓.

【狀啓】 今月十七日, 右副承旨李穆淵, 成貼有旨內, “卿以上疏, 上送事馳啓矣, 省疏具悉 所請特爲許施事.” 有旨, 本月二十二日, 臣在全州府祇受爲白有在果. 今此大同木之, 特許代捧, 寔出我聖上軫恤災民之盛德至意教是白如乎. 謹將有旨內辭意, 發

220) 치도棍(治盜棍) : 조선 시대에 죄인의 불기를 치는 데 쓰던 곤장의 하나이다. 가장 큰 것은 길이 5자 7치, 너비 5치 3푼, 두께 4푼이나 되며 주로 절도범 등에게 쓰였다.

221) 불반병(不反兵)의 원수 : 불반병은 집으로 돌아가서 병기를 찾지 않는다는 말로서, 언제나 병기를 몸에 지니고 있다가 상대를 만나면 그 자리에서 죽이려 든다는 뜻이다. 『예기』 「곡례 상(曲禮上)」에 “아버지의 원수는 한 하늘을 함께 이지 않고 반드시 죽이며, 형제의 원수는 집으로 돌아가서 병기를 찾지 않으며, 벗의 원수와는 같은 나라 안에서 살지 않는다.[父之讐, 弗與共戴天, 兄弟之讐, 不反兵, 交遊之讐, 不同國]” 하였다.

關知委於列邑守宰等處，使愚夫愚婦，咸有以攢祝曠絕之惠澤爲白乎旆。緣由馳啓爲白臥乎事。

같은 날. 목대동(木大同)<sup>222</sup>을 순전히 돈으로 하는 것의 시행을 허락하는 유지(有旨)를 공경히 받았음을 장계를 써서 봉하였다.

【장계】 이달 17일 우부승지 이목연(李穆淵)이 담당하여 성첩한 유지(有旨)안에, “경이 상소를 하여 올려 보낼 일로 급히 보고하였다. 상소를 살펴보고 잘 알았으니 청한 바를 특별히 허락한다.” 고 하였습니다. 유지(有旨)는 이번 달 22일 신이 전주부에서 공경히 받았습니다. 이번에 대동목(大同木)을 특별히 돈으로 대신 납부하는 것을 허락받은 것은 진실로 우리의 성상께서 재민(災民)을 진휼(軫恤)하시는 성스러운 덕과 지극한 뜻에서 나왔습니다. 삼가 유지(有旨) 안의 말씀을 여러 읍의 수령들에게 관문을 발송하여 알려 백성들로 하여금 모두 넓고 깊은 혜택을 두 손 모아 하례하였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치계(馳啓) 하옵는 일.

同日. 以大同綿布純錢代捧事, 發甘山郡各邑.

【甘結】今年綿農, 全道告歉, 故山郡大同木, 純錢代捧事上疏矣, 筋祗受, 今月十七日, 成貼有旨內, “卿以上疏上送事馳啓矣, ‘省疏具悉’, 所請特爲許施事” 有旨 教是如乎. 今此大同木之純錢代捧, 特出聖朝軫恤災民之盛德至意, 非但窮鄙小民之歡欣蹈舞, 凡在守土之列者, 孰敢不感頌攢祝, 思所以對揚之萬一也哉? 謹將有旨內辭意, 茲以發甘爲去乎. 甘到即時, 眞諺飜謄一一布諭於民間後, 仍爲揭付街路, 使愚夫愚婦, 咸知曠絕之惠澤爲旆. 代錢收捧之際, 勿委吏手, 親執簿書, 雖分錢之微, 毋致任掌輩, 夤緣作奸之弊爲旆. 甘到日時, 舉行形止, 星火報來宜當者.<南原、光州、潭陽、淳昌、金溝、任實、南平、綾州、龍潭、鎭安、昌平、谷城、錦山、珍山、同福、求禮、玉果、和順、泰仁、高山、茂朱>

같은 날. 대동면포를 순전(純全)으로 대봉(代捧)하는 일로 산간 군읍에 감결하였다.

【감결】 금년의 면화 농사는 전 도(道)가 흉년이어서 군의 대동목(大同木)을 순전

222) 목대동(木大同) : 대동목(大同木)으로 조선시대 대동법(大同法)에 의하여, 쌀 대신 거두어들이던 목면을 말한다. 규격은 다섯 새[한 새는 낱실 여든 울]로 길이는 포백척[布帛尺 바느질 자]으로 서른다섯 자이다.

으로 대봉하는 일을 상소하였다. 공경히 받아보니 이번 달 17일 성첩한 유지(有旨) 안에, “경이 상소하여 올려 보낼 일로 급히 보고하였다. 상소를 살펴보고 잘 알았으니 칭찬 바를 특별히 허락한다.” 고 유지(有旨)하였다.

이번 대동목(大同木)의 순전과 대봉은 특별히 성조(聖朝)께서 재민(災民)을 진휼(軫恤)하시는 성덕(盛德)에서 나온 것이니 가난한 집의 소민이 기뻐하며 도무(蹈舞)<sup>223</sup>할 뿐만 아니라 모든 수토(守土)의 반열에 있는 자가 어찌 감히 감동하여 칭송하며 두 손 모아 하례하여 만분의 일이라도 대양(對揚)할 것을 생각하지 않겠는가? 삼가 유지(有旨) 안의 말씀을 이에 감결로 발송한다. 감결이 도착하면 즉시 진언(眞諺)<sup>224</sup>으로 번역하고 등서(謄書)하여 하나하나 민간에 포유(布諭)<sup>225</sup>한 후에 바로 가로(街路)에 부착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모두 주상(主上)의 넓고 깊은 은택을 알게 하라.

돈으로 대신하여 거둬들일 때 관리의 손에 맡기지 말고 친히 장부책을 잡아 비록 작은 푼돈 일지라도 임장(任掌)의 무리들에게 맡겨 연줄로 간사함을 짓는 폐단에 이르지 않게 하라. 감결이 도착하는 날짜와 거행한 사실의 전말을 급히 보고함이 마땅할 것.<남원·광주·담양·순창·금구·임실·남평·릉주·용담·진안·창평·곡성·금산·진산·동복·구례·옥과·화순·태인·고산·무주>

二十三日. 潭陽府使、和順縣監入見辭去. 中營將入見. 礪山府使許嘯來見.

23일. 담양 부사·화순 현감이 입견하여 하직하고 갔다. 중영장이 입견하였다. 여산부사 허속(許嘯)이 와서 보았다.

同日. 封發咸悅縣監在喪啓.

【狀啓】咸悅縣監洪在果, 受由上京矣, 今月十七日, 遭其母喪是如. 該縣公兄文狀馳告是白乎等以, 緣由馳啓爲白去乎. 其令該曹, 擇差催促下送爲白只爲.

223) 도무(蹈舞) : 수무족도(手舞足蹈)로, 몹시 기뻐 자신도 모르게 손으로 춤추고 날뼉을 말한다.

224) 진언(眞諺) : 진서(眞書)와 언문(諺文)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진서(眞書)는 우리글을 언문(諺文)이라고 낮춘 데에 상대하여 진짜 글이라는 뜻으로 한문(漢文)을 높여 이르던 말이다.

225) 포유(布諭) : 나라에서 결정하여 행할 일을 백성들에게 널리 알리는 것이다.



같은 날. 함열 현감이 상중이라는 장계를 봉하여 발송하였다.

【장계】 함열 현감 홍재과(洪在果)가 말미를 얻어 상경하였는데 이번 달 17일에 그의 모친상을 당하였습니다. 함열현 공형(公兄)이 문장(文狀)으로 급히 아뢰었기 때문에 이러한 연유로 치계(馳啓) 하옵는 일. 해당 관아로 하여금 택차(擇差)<sup>226</sup>하여 재촉하여 하송하옵소서.

同日. 以咸悅縣封庫官差定事, 發關龍安縣.

【關文】爲相考事. 咸悅縣監, 遭其內艱乙仍于, 縣監封庫官差定爲去乎, 卽爲馳進該縣, 公私各庫, 依例封閉, 穀物都數成冊, 及官需、油清紙地用遺在成冊, 各兩件修報爲旆. 印符開金段, 待新官傳授爲乎矣. 見今歲除迫近, 同縣糴政, 果至何境是隱喻? 依前關飭, 另加督捧, 斯速報勘, 毋至生梗之地爲旆. 凡他公務着意兼察, 宜當尙事.

같은 날. 함열현의 봉고관(封庫官)으로 차정(差定)하는 일로 용안현에 관문을 발송하였다.

【관문】상고할 일. 함열 현감이 모친의 상을 당함에 따라 용안 현감을 봉고관으로 차정하니 바로 함열현으로 달려가, 공사(公私)의 각 창고를 예규대로 봉폐(封閉)하고 곡물의 총 수효를 성책하고 관수품과 유청지(油淸紙地)의 쓰고 남은 것을 성책하여 각 두 건을 정리하여 보고하라. 인장과 병부와 열쇠는 신임 관리를 기다려 전해주어라. 지금 설달그음이 임박하였는데 용안현의 적정(糴政)은 과연 어떤 지경에까지 이르렀는가? 이전 관문에서 의거하여 신칙한 바 별도로 납부를 독촉하고, 속히 보고를 마쳐 생경(生梗)한 지경에 이르지 않도록 하라. 모든 다른 공무도 마음을 다해 겸해서 살핌이 마땅할 일.

同日. 封發婚葬顧助啓.

【狀啓】爲相考事. 前矣到付備邊司關內乙用良, 士民之最貧窮, 過時未婚, 過期未葬之由, 境內坊曲一一探問, 自官別加顧助, 趁卽過婚, 着實埋葬之意, 連加申飭於各邑守宰爲白有如其乎. 全州、羅州、光州、綾州、長興、順天、潭陽、長城、茂朱、礪山、寶城、益山、古阜、靈巖、靈光、珍島、樂安、淳昌、錦山、珍山、金提、龍潭、臨陂、萬頃、金溝、光陽、咸悅、扶安、康津、玉果、沃溝、南平、興德、井邑、茂長、

226) 택차(擇差) : 쓸 만한 인재를 골라서 벼슬을 시키는 것으로, 관리를 임명하던 일을 뜻하는 차임(差任)과 같다.

務安、求禮、谷城、雲峯、任實、鎭安、同福、興陽、海南、咸平、泰仁、高山、和順、法聖、古羣山等，五十邑鎭段，俱以無乎報來是白遣。南原等五邑段，今年內婚葬人姓名及助給物種數爰並只報來爲白有等以，後錄馳啓爲白乎於。成冊修正上送于備邊司，緣由并以謹具啓聞。

助婚秩：

南原，幼學金占甫，年四十二，癸巳十月初十日，過婚正租一石，白木一疋。○昌平，閒良文光祿，年三十，癸巳十月十三日，過婚白木一疋，白米五斗。○高敞，幼學柳奎彬，年三十一，癸巳十一月十九日，過婚白木一疋二十尺，白米三斗，錢三兩。○長水，幼學鄭必元，年三十七，癸巳十一月二十一日，過婚白木一疋，錢三兩。○扶安，良人張於叱孫，年三十五，癸巳十一月二十七日，過婚白木二疋，錢五兩。

助葬秩：

南原，幼學李連宅，癸巳十月二十五日，過葬正租一石。○昌平，幼學朴貴福，癸巳十月二十七日，過葬正租十斗，麻布二十尺，空石三十立。○高敞，良人裴雲已，癸巳十月二十九日，過葬白米二斗，麻布二十五尺，甘醬一斗，錢二兩，空石四十立。○長水，幼學鄭石佑，癸巳十一月初七日，過葬正租二石，麻布二疋。○龍安，良人李啓萬，癸巳十一月十三日，過葬白米五斗，錢二兩。

같은 날. 혼례 및 장례를 돌보아 준 장계를 봉하여 발송하였다.

【장계】 상고할 일. 전에 도착한 비변사 관문 내용을 말미암아, 사민(士民)의 가장 빈궁한 자들로 때를 지났으나 아직 혼인하지 못하고, 기한을 넘겨 아직 장례 지내지 못한 이유를 경내 마을 곳곳을 날날이 탐문하여 관으로부터 따로 돌보아주어 혼기가 지난 자를 서둘러 혼인하게 하고, 매장을 잘하게 도우라는 뜻을 연달아 각 읍 수령에게 신칙하였습니다. 전주·나주·광주·능주·장흥·순천·담양·장성·무주·여산·보성·익산·고부·영암·영광·진도·낙안·순창·금산·진산·김제·용담·임피·만경·금구·광양·함열·부안·강진·옥과·옥구·남평·흥덕·정읍·무장·무안·구례·곡성·운봉·임실·진안·동복·흥양·해남·함평·태인·고산·화순·법성·고군산 등 50읍진(邑鎭)은 모두 보고해 온 것이 없었습니다.

남원 등 5읍은 금년 안에 혼례 및 장례한 사람의 성명과 도와준 물종(物種)의

수효를 모두 보고 하였기에 바로 후록(後錄)하여 치계합니다. 성책은 수정하여 비변사로 올려 보내고 이러한 연유를 모두 삼가 갖추어 계문합니다.

혼례를 도운 내역 <助婚秩> :

남원 ; 유학(幼學) 김정보(金占甫), 나이 42, 계사년(1833) 10월 10일, 혼기가 지나 버 1섬, 무명 1필.

창평 ; 한량 문광록(文光祿) 나이 30, 계사년(1833) 10월 13일, 혼기가 지나 무명 1필, 백미(白米) 5말.

고창 ; 유학 류규빈(柳奎彬) 나이 31, 계사년 11월 19일, 혼기가 지나 무명 1필 20자, 백미(白米) 3말, 돈 3냥.

장수 ; 유학 정필원(鄭必元), 나이 37, 계사년 11월 21일, 혼기가 지나 무명 1필, 돈 3냥.

부안 ; 양인 장어질손(張於叱孫), 나이 35, 계사년 11월 27일, 혼기가 지나 백목 2필, 돈 5냥.

장례를 도운 내역 <助葬秩> :

남원 ; 유학 이연택(李連宅), 계사년 10월 25일, 장례기한이 지나 버 1섬.

창평 ; 유학 박귀복(朴貴福), 계사년 10월 27일, 장례기한이 지나 버 10말, 마포(麻布 삼베) 30자, 가마니 30넵.

고창 ; 양인 배운기(裵雲己), 계사년 10월 29일, 장례기한이 지나 백미(白米) 2말, 마포(麻布) 25자, 감장(甘醬) 1말, 돈 2냥, 가마니 40넵.

장수 ; 유학 정석우(鄭石佑), 계사년 11월 7일, 장례기한이 지나 버 2섬, 마포 2필.

용안 ; 양인 이계만(李啓萬), 계사년 11월 13일, 장례기한이 지나 백미(白米) 5말, 돈 2냥.

同日. 封發應資老人啓.

【狀啓】 因吏曹關, 明年至朝官準八十, 士庶準九十, 及百歲老人, 另加採訪, 泝考帳籍, 準式者, 以報之意, 發關申飭於各邑爲白有如乎. 潭陽, 長城, 礪山, 益山, 錦山, 珍山, 龍潭, 臨陂, 萬頃, 金溝, 咸悅, 沃溝, 興德, 井邑, 高敞, 茂長, 務安, 任實, 長水, 鎭安, 龍安, 法聖, 古羣山等二十三邑鎭段, 俱以無乎報來是白遣. 全州等三十二邑段, 士庶明年至準百歲者爲十四人, 準九十者爲七十八人乙仍于, 取考臣營

上帳籍後，同老人居住、姓名、年歲、資啣，并以開錄于後爲白乎旆。緣由馳啓爲白臥乎事。

全州士庶秩；通政朴察伊，年一百。閒良劉先得，年九十。閒良金啓善，年九十。○羅州士庶秩；通政姜禧，年一百。通政金喆海，年一百。幼學朴尙儉，年九十。業儒李孟寬，年九十。業儒朴春石，年九十。○光州士庶秩；幼學鄭仁宙，年九十。○綾州士庶秩；幼學趙命教，年九十。幼學金宗伯，年九十。幼學趙命信，年九十。幼學李大馨，年九十。閒良金汝中，年九十。○南原士庶秩；嘉善姜桓，年一百。閒良李啓弘，年一百。幼學趙雲慶，年九十。○長興士庶秩；幼學魏榮洪，年一百。幼學李元啓，年九十。○順天士庶秩；幼學李潤一，年九十。幼學金輔鎰，年九十。良人金命玉，年九十。○茂朱士庶秩；幼學趙相浩，年九十。○寶城士庶秩；閑良金德仁，年九十。良人金萬順，年九十。○古阜士庶秩；通政李守敬，年一百。幼學金道成，年九十。幼學權泰韓，年九十。○靈巖士庶秩；幼學盧聖彬，年一百。幼學崔聖喆，年九十。幼學金潤東，年九十。良人文順奉，年九十。○靈光士庶秩；幼學李再義，年九十。幼學白成昌，年九十。幼學金至宗，年九十。○珍島士庶秩；幼學韓再哲，年一百。幼學李鳳烈，年一百。良人金得中，年一百。嘉善崔欣才，年九十。幼學金弘英，年九十。幼學韓星敦，年九十。幼學張承弼，年九十。幼學金來秋，年九十。業武李夢迪，年九十。閑良金永元，年九十。閑良李允七，年九十。閑良金德仁，年九十。○樂安士庶秩；通政金日男，年一百。幼學金聖器，年九十。○淳昌士庶秩；折衝金錫鼎，年九十。幼學張云采，年九十。業武田萬穀，年九十。○金堤士庶秩；閑良崔三昌，年九十。良人金良乙卽老味，年九十。○昌平士庶秩；通政崔世震，年一百。幼學韓有賢，年九十。幼學郭天儉，年九十。幼學朴采源，年九十。○光陽士庶秩；閑良金德載，年九十。○扶安士庶秩；幼學朴東郁，年九十。閑良姜壽甲，年九十。○康津士庶秩；閑良金光哲，年九十。閑良韓介山，年九十。○玉果士庶秩；幼學金昌敏，年九十。忠義文思舜，年九十。○南平士庶秩；幼學鄭思碩，年九十。良人鄭日采，年九十。○求禮士庶秩；幼學柳日浩，年九十。○谷城士庶秩；幼學崔萬世，年九十。○雲峯士庶秩；幼學洪遇澤，年九十。幼學吳命源，年九十。幼學金繼重，年九十。幼學金淳秋，年九十。業武姜渭虎，年九十。閑良趙繼興，年九十。閑良崔仲安，年九十。○同福士庶秩；幼學朴斗元，年九十。幼學張啓福，年九十。業武朴致成，年九十。閑良鄭惡東，年九十。良人李云甲，年九十。○和順士庶秩；幼學林重

孝, 年九十. 驛吏李臥孫, 年九十. ○興陽士庶秩 ; 嘉善陰致萬, 年一百. 幼學金時五, 年九十. 閑良張士咸, 年九十. ○海南士庶秩 ; 幼學金宗潤, 年九十. 幼學閔若顯, 年九十. 良人林毛巖先, 年九十. ○咸平士庶秩 ; 幼學全時鏞, 年九十. ○泰仁士庶秩 ; 幼學韓聖弼, 年九十. ○高山士庶秩 ; 幼學魯誠運, 年九十. 已上九十二人內, 準一百歲老人十四人, 準九十老人七十八人.

같은 날. 자급(資級)할 노인[應資老人] 명단을 봉계(封啓)하였다.

【장계】 이조 관문에 의거하여 내년 조관(朝官) 기준 80세, 사서(士庶) 기준 90세 및 100세 노인을 별도로 채방(採訪)하여 장적을 고찰하여 기준에 맞는 자를 보고 하라는 뜻을 각 읍에 관문을 보내 신칙(申飭)하였습니다. 담양·장성·여산·익산·금산·진산·용담·임피·만경·금구·함열·옥구·흥덕·정읍·고창·무장·무안·임실·장수·진안·용안·법성·고군산 등 23읍진은 모두 보고가 없었고, 전주 등 32읍은 사서인 중 내년에 100세에 이르는 14인과 90세에 이르는 78인 이므로 소신의 감영 장적을 고찰한 뒤에 동 노인의 거주·성명·연세·자함(資啣)<sup>227</sup>을 모두 뒤에 낱낱이 적었습니다. 이런 연유로 치계(馳啓)하옵는 일.

전주 사서(士庶) 명단 ; 통정 박찰이(朴察伊), 나이 100세. 한량 유선득(劉先得), 나이 90세. 한량 김계선(金啓善), 나이 90세.

○나주 사서 명단 ; 통정 강희(姜禧), 나이 100세. 통정 김철해(金喆海), 나이 100세. 유학 박상검(朴尙儉), 나이 90세. 업유 이맹관(李孟寬), 나이 90세. 업유 박춘석(朴春石), 나이 90세.

○광주 사서 명단 ; 유학 정인주(鄭仁宙), 나이 90세.

○능주 사서 명단 ; 유학 조명교(趙命敎), 나이 90세. 유학 김종백(金宗伯), 나이 90세. 유학 조명신(趙命信), 나이 90세. 유학 이대형(李大馨), 나이 90세. 한량 김여중(金汝中), 나이 90세.

○남원 사서 명단 ; 가선 강환(姜桓), 나이 100세. 한량 이계홍(李啓弘), 나이 100세. 유학 조운경(趙雲慶), 나이 90세.

○장흥 사서 명단 ; 유학 위영홍(魏榮洪), 나이 100세. 유학 이원계(李元啓), 나이 90세.

227) 자함(資啣) : 벼슬아치의 품위의 등급을 나타내는 자급(資級)과 직함(職銜)을 말한다.

- 순천 사서 명단 ; 유학 이윤일(李潤一), 나이 90세. 유학 김보일(金輔鎰), 나이 90세. 양인 김명옥(金命玉), 나이 90세.
- 무주 사서 명단 ; 유학 조상호(趙相浩), 나이 90세.
- 보성 사서 명단 ; 한량 김덕인(金德仁), 나이 90세. 양인 김만순(金萬順), 나이 90세.
- 고부 사서 명단 ; 통정 이수경(李守敬), 나이 100세. 유학 김도성(金道成), 나이 90세. 유학 권태한(權泰韓), 나이 90세.
- 영암 사서 명단 ; 유학 노성빈(盧聖彬), 나이 100세. 유학 최성철(崔聖喆), 나이 90세. 유학 김윤동(金潤東), 나이 90세. 양인 문순봉(文順奉), 나이 90세.
- 영광 사서 명단 ; 유학 이재의(李再義), 나이 90세. 유학 백성창(白成昌), 나이 90세. 유학 김지종(金至宗), 나이 90세.
- 진도 사서 명단 ; 유학 한재철(韓再哲), 나이 100세. 유학 이봉렬(李鳳烈), 나이 100세. 양인 김득중(金得中), 나이 100세. 가선 최흔재(崔欣才), 나이 90세. 유학 김홍영(金弘英), 나이 90세. 유학 한성돈(韓星敦), 나이 90세. 유학 장승필(張承弼), 나이 90세. 유학 김래추(金來秋), 나이 90세. 업무 이몽직(李夢迪), 나이 90세. 한량 김영원(金永元), 나이 90세. 한량 이윤칠(李允七), 나이 90세. 한량 김덕인(金德仁), 나이 90세.
- 낙안 사서 명단 ; 통정 김일남(金日男), 나이 100세. 유학 김성기(金聖器), 나이 90세.
- 순창 사서 명단 ; 절충 김석정(金錫鼎), 나이 90세. 유학 장운채(張云采), 나이 90세. 업무 전만곡(田萬穀), 나이 90세.
- 김제 사서 명단 ; 한량 최삼창(崔三昌), 나이 90세. 양인 김간을즉노미(金艮乙 卽老味), 나이 90세.
- 창평 사서 명단 ; 통정 최세진(崔世震), 나이 100세. 유학 한유현(韓有賢), 나이 90세. 유학 곽천검(郭天儉), 나이 90세. 유학 박채원(朴采源), 나이 90세.
- 광양 사서 명단 ; 한량 김덕재(金德載), 나이 90세.
- 부안 사서 명단 ; 유학 박동욱(朴東郁), 나이 90세. 한량 강수갑(姜壽甲), 나이 90세.
- 강진 사서 명단 ; 한량 김광철(金光哲), 나이 90세. 한량 한개산(韓介山), 나이 90세.
- 옥과 사서 명단 ; 유학 김창민(金昌敏), 나이 90세. 총의 문사순(文思舜), 나이 90세.

- 남평 사서 명단 ; 유학 정사석(鄭思碩), 나이 90세 양인 정일채(鄭日采), 나이 90세.
  - 구례 사서 명단 ; 유학 유일호(柳日浩), 나이 90세.
  - 곡성 사서 명단 ; 유학 최만세(崔萬世), 나이 90세.
  - 운봉 사서 명단 ; 유학 홍우택(洪遇澤), 나이 90세. 유학 오명원(吳命源), 나이 90세. 유학 김계중(金繼重), 나이 90세. 유학 김순추(金淳秋), 나이 90세. 업무 강위호(姜渭虎), 나이 90세. 한량 조계흥(趙繼興), 나이 90세. 한량 최중안(崔仲安), 나이 90세.
  - 동북 사서 명단 ; 유학 박두원(朴斗元), 나이 90세. 유학 장계복(張啓福), 나이 90세. 업무 박치성(朴致成), 나이 90세. 한량 정오동(鄭惡東), 나이 90세. 양인 이운갑(李云甲), 나이 90세.
  - 화순 사서 명단 ; 유학 박중효(林重孝), 나이 90세. 역리 이와손(李臥孫), 나이 90세.
  - 흥양 사서 명단 ; 가선 음치만(陰致萬), 나이 100세. 유학 김시오(金時五), 나이 90세. 한량 장사함(張士咸), 나이 90세.
  - 해남 사서 명단 ; 유학 김종윤(金宗潤), 나이 90세. 유학 민약현(閔若顯), 나이 90세. 양인 임모암선(林毛巖先), 나이 90세.
  - 함평 사서 명단 ; 유학 전시집(全時鑠), 나이 90세.
  - 태인 사서 명단 ; 유학 한성필(韓聖弼), 나이 90세.
  - 고산 사서 명단 ; 유학 노성운(魯誠運), 나이 90세.
- 이상 92인 안에 100세 노인 14인, 90세 노인 78인.

二十四日. 礪山府使入見辭去. 判官入見. 高山縣監金益根, 延命後入見.

24일. 여산 부사가 입견하여 하직하고 갔다. 판관이 입견하였다. 고산 현감 김익근이 연명(延命)한 뒤에 입견하였다.

同日. 以米肉出送事下帖希顯堂

【帖文】 見今歲除在即, 不可無迓餞之資, 白米一石, 黃肉十斤, 茲以出送. 遠方多士, 雖未團聚, 須邀邑選諸儒, 以爲湯麵之會, 宜當者.

같은 날. 쌀과 고기를 내보내는 일로 희현당(希顯堂)에 체문(帖文)<sup>228</sup>을 내렸다.

【체문(帖文)】 지금 선달그름이 눈앞이니 아전(迓餞)<sup>229</sup>의 물자가 없을 수 없어 백미(白米) 1섬과 쇠고기 10근을 내보낸다. 먼 지방의 많은 선비가 비록 단취(團聚)는 못할지라도 모름지기 읍에서 선발한 제유(諸儒)들을 초치하여 탕면(湯麵)을 먹는 기회로 삼음이 마땅할 일.

二十五日. 高山縣監入見辭去. 南平縣監林迺鎮來見, 夜又入見辭去.

25일. 고산 현감이 입견하여 하직하고 갔다. 남평 현감 임형진이 입견하였고, 밤에 또 입견하여 하직하고 갔다.

同日. 以點下邑封庫事, 發關兩邑.

【關文】 爲差定事. 谷城縣監覆啓點下乙仍于, 縣監封庫官差定, 卽爲馳進同縣, 公私各庫, 依例封閉, 各樣穀物都數成冊, 及官需、油淸紙地用遺在成冊, 各兩件修報爲<sup>ㄷ</sup>. 印符開金, 取來官上爲有<sup>ㄷ</sup>, 待新官傳授爲乎矣, 凡干公務, 仍爲兼察宜當<sup>ㄷ</sup>. <玉果> 云云求禮縣監覆啓點下乙仍于, 縣監封庫官差定云云事. <光陽>

같은 날. 점하(點下)<sup>230</sup>한 고을을 봉고(封庫) 하는 일로 두 읍에 관문을 발송하였다.

【관문】 차정(差定)하는 일. 곡성 현감의 복계(覆啓)<sup>231</sup>를 점하함에 따라 옥과 현감을 봉고관(封庫官)으로 차정하니 바로 곡성현으로 달려가, 공사의 각 참고는 예(例)에 의거하여 봉폐(封閉)하고 각양의 곡물 총수를 성책하고 관수품과 유청지(油淸紙地)의 쓰고 남은 것을 성책(成冊)하여 각 두 건을 정리하여 아뢰라. 인장과 병부와 열쇠는 관청에 두었다가 신임 관리를 기다려 전해주어라. 모든 공무에

228) 체문(帖文) : 관에서 하속(下屬)이나 민인(民人)에게 내리는 문서이다. 관문서로서의 체[帖]는 중국 당나라 때부터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경국대전』에 기재되어 있는 ‘7품 이하 관청에 보내는 공문 양식[帖式]’에 따라 작성된 하행문서이다. 체[帖]는 ‘帖文’, ‘帖字’, ‘帖子’ 등으로도 불렸고, 일반적으로 ‘체/테’라고 독음하였다. 帖式으로 작성한 ‘下帖’나 ‘草料帖’, ‘勿禁帖’ 등도 각각 ‘하체’, ‘초료체’, ‘물금체’와 같이 독음하였다.(송철호 2009, 「조선 시대 差帖에 관한 연구」, 古文書研究, 제35호)

229) 아전(迓餞) : 새해를 맞이하고 한 해를 보내는 것으로, 전아(餞迓)라고도 한다.

230) 점하(點下) : 추천 문서(推薦文書)나 품목(品目)들의 해당하는 곳에 점을 찍어 결정됨을 나타낸다.

231) 복계(覆啓) : 왕이 각종계사(啓辭)·장계(狀啓)·상소(上疏)·상언(上言) 등을 담당 관사로 계하(啓下)하였을 때 담당 관사에서 해당 사안의 처리에 대한 의견을 아뢰는 행위를 말하며, 회계(回啓)라고도 한다.



관해서는 이전대로 겸하여 살핌이 마땅할 일.<옥과현>

운운. 구례현감의 복계(覆啓)를 점하(點下)함에 따라 광양 현감을 봉고관으로 차정(差定)하니…….<광양현>

二十六日. 中營將入見. 雲峰縣監趙存奎來見.

26일. 중영장이 입견하였다. 운봉 현감 조존규가 와서 보았다.

同日. 以稅穀申飭事, 發甘直上納二十六邑.

【甘結】捧稅申飭何時不然? 而明春則非但節候稍早, 當此諸路告歉, 收租大縮之時, 經用之支繼與否, 專靠於裝稅早晚是如乎. 前期督捧, 無滯裝發然後, 上納可以趁限, 營邑可免生事乙仍于, 茲以先事別飭爲去乎. 歲翻即時, 趁速畢捧, 隨即發船, 以爲三月望晦間, 上納京倉之地爲乎矣. 檢納之節, 倍加惕念, 始自開倉之初, 嚴飭任掌, 別加督捧是矣. 間報所捧, 如或一向愆期, 畢竟上納至於過限, 則吏鄉監色之上使推治, 且置勿論, 當該守令, 依晚裝律, 斷當狀聞論勘, 勿以歲課例飭看過爲於. 應行條件, 依後錄, 逐段檢察, 俾無一毫疎漏大段生梗之弊爲於. 捧稅舉行時, 勤慢當有這這探知之道, 除尋常, 着念舉行宜當者.<礪山、龍安、臨陂、萬頃、金堤、扶安、古阜、興德、井邑、茂長、務安、咸平、羅州、靈巖、海南、珍島、康津、長興、寶城、興陽、樂安、順天、光陽、求禮、綾州、南平>

一, 正供事體, 至爲嚴重, 穀品必須精白擇捧爲乎矣. 吏鄉輩, 如或售奸, 以麤換精是去乃, 又或執錢私貿是如可, 致有京司點退之弊, 則未稍生事不知至於何境, 預爲察飭, 以杜其奸弊爲於. 石子段置, 使之堅緻, 俾無滲漏之患爲齊.

一, 捧稅之精濫, 實關生民休戚, 而近來監色輩, 符同沙格, 斛上濫捧, 殆無限節. 此等奸弊, 一切痛禁, 俾無入聞生事之弊爲齊.

一, 兩稅開倉日子, 及當捧都數成冊, 先卽報來爲於. 捧未捧區別成冊, 間五日馳報, 看色米太, 亦爲入盛布帛, 依例上使, 以爲憑處之地爲齊.

一, 捧上監色之, 仍爲領騎上納, 自是法例是如乎. 若或代送, 又或由陸是如可, 有所現發, 則該監色, 當施以刑配之律, 其矣姓名成冊, 預先報來爲齊.

一, 京江船隻, 若趁不下來, 則具由報來, 以爲往復催促之地爲於. 稅大同裝載穀數, 依事目磨鍊, 分船隻數, 區別第次, 別件成冊, 先卽馳報爲於. 裝載成冊, 及發船日

子, 依例前期報來, 以爲啓聞之地爲齊.

一, 裝載發船之後, 沙格輩威脅監色, 莫重稅穀無難偷出, 恣意犯用是如可, 及其上納, 欠縮生頭之弊, 種種有之, 萬萬痛駭. 今番段, 此等奸弊, 嚴立科條, 別加痛禁是矣. 如是別飭之後, 萬一有前頭生頭, 則沙格輩之, 依律勘處, 特其餘事, 和應作奸之該監色段置, 卽施以刑配之典, 所欠穀物, 亦當懲<sup>232)</sup>出, 各別嚴飭, 俾不得犯科爲齊.

一, 船漢輩, 托以船價所受, 符同色吏, 自外執錢, 極其狼藉, 畢竟至於犯用元納之弊, 極爲痛駭. 今番段, 雖粒米分錢, 裝載前, 勿爲預下是遣, 船價段, 分載時, 以本色, 計數出給爲齊.

一, 當此歉歲, 災民一粒之穀, 其貴如金, 其所顧恤之方, 比他時, 自別是如乎. 斛上淨捧之弊, 倉庭散穀之習, 到底照察, 一切痛禁, 俾無入聞大段生梗之地爲齊.

一, 捧稅早晚, 專係於注非之擇差與否分叱除良, 況今災歲, 檢納之節, 不可以常年比論, 則注非等, 果皆以勤實可合者, 一一差出是驗? 先自開倉之初, 嚴飭注非, 使之一齊輸納是矣, 萬一以不堪者, 循私差出, 以致稅納之愆滯, 則不善檢飭之吏鄉, 及都吏, 斷當別樣嚴處, 須悉此意, 各別操束爲旆. 官屬輩作夫之際, 稱以去來饒戶實卜, 恣意占拔, 作渠牟利之資是遣, 以貧戶難捧之結, 苟充作夫, 畢竟稅納之愆期, 皆由於此. 此一款另加照察, 一切防禁, 貧富結卜, 均排作夫爲乎矣. 如有養戶現發者, 卽爲指名牒報, 以爲依律勘處之地爲齊.

같은 날. 세곡(稅穀)을 신칙(申飭)하는 일로 바로 상납하는 26읍에 감결(甘結)을 발송하였다.

【감결】 세곡을 납부하는 일을 신칙(申飭)함이 어느 땐 그렇지 않았으리요? 그러나 내년 봄엔 단지 절후가 조금 이를 뿐 아니라 이 여러 지방이 흉년이 들어 거둬 들인 세금이 크게 줄어드는 때에 경용(經用)을 지탱할지 여부에는 오직 세곡을 실어 보내는 조만(早晚)에 달려있다. 기한 전에 납부를 독촉하여 지체 없이 실어 보낸 뒤에야 상납(上納) 기한에 맞출 수 있고 영읍(營邑)은 탈이 생기는 것을 면할 수 있음에 따라 이에 우선할 일을 각별히 단속한다. 해가 바뀌면 즉시 서둘러 납부를 마치고 곧 배를 출발시켜 3월 보름과 그음 사이에 경창(京倉)으로 상납하도록 하라.

232) 懲 : 의미상 '徵'의 오기(誤記)로 보인다.

납곡(納穀)을 검속하는 절목(節目)은 신중하고 삼감을 배가하여 처음 개창(開倉)<sup>233)</sup>하는 초기부터 임장(任掌)에게 엄격히 신칙하여 각별히 납부를 독촉하라.

간간히 납부한 것을 보고하여 만일 흑시라도 전처럼 기일을 어겨 결국 상납(上納)이 기한을 넘기면 이향(吏鄕)과 감색(監色)을 감영에 올려 보내 추치(推治 따져 다스림)하는 것은 차치(且置)하여 논할 것 없고, 해당 수령은 늦게 실어 보낸 율(律)에 의거하여 결단코 마땅히 장계로 주상께 아뢰어 논감(論勘)할 것이니, 세과를 으레 신칙하는 것으로 간과하지 말라.

응당 시행해야 할 조건은 후록(後錄)에 의거하여 차례로 조사하고 살펴 터럭만큼이라도 소홀히 하고 누락시켜 큰 탈이 나는 폐단이 없도록 하라.

세곡 납부를 거행할 때 부지런한 자와 게으른 자는 마땅히 하나하나 찾아 알아내는 방도가 있어야하니, 보통으로 여기지 말고 마음을 써서 거행함이 마땅할 일.<여산·용안·임피·만경·김제·부안·고부·흥덕·정읍·무장·무안·함평·나주·영암·해남·진도·강진·장흥·보성·흥양·낙안·순천·광양·구례·흥주·남평>

1. 정규 세공(稅供)의 사체(事體)는 지극히 엄중하여 곡식의 품질은 반드시 모름지기 정백(精白)한 것을 가려 거둬들여야 한다. 이향(吏鄕) 무리들이 만일 흑 간사한 짓을 하여 거친 것으로 정미(精美)한 것을 바꾸거나 또 흑 돈을 받고 사사롭게 바꾸다가 경사(京司)가 점퇴(點退)하는 폐단에 이르면 끝에 일어날 일이 어느 지경에 이를지 모르니 미리 살펴 신칙하여 그 간사한 폐해를 막아라. 가마니도[石子] 견고(堅固)하고 치밀(緻密)하게 하여 흘러나오는 근심이 없게 하라.

2. 세곡 납부의 정람(精濫)은 실제로 백성의 편안함과 근심에 관계되는데도 근래 감색(監色) 무리들은 사격(沙格)과 한 통속이 되어 곡자(斛子) 위로 넘치게 거둬들여 거의 한정이 없다. 이러한 간사한 폐해는 일절 엄금하여 탈이 났다는 폐해가 들리지 않도록 하라.

3. 양세(兩稅)의 창고를 여는 날짜 및 마땅히 납부해야 할 전체 수효를 기록한 성책을 먼저 보고하라. 납부한 것과 미납한 것을 구분한 성책은 5일을 사이로 급히 보고하고, 간색(看色)한 쌀과 콩 또한 포대에 담아 예(例)에 의거하여 감영으로 올려 보내 증빙하는 바탕으로 삼게 할 것.

4. 밧자[捧上] 감색(監色)은 그대로 배에 타서 상납하는 것이 본래 예(例)이다.

233) 개창(開倉) : 관창(官倉)을 열어 공곡(公穀)을 내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만약 혹시라도 대송(代送)하거나 또 혹시라도 육로로 상납하다 발각되는 경우가 있으면 해당 감색은 마땅히 형배(刑配)의 율(律)로 다스리고 그의 성명을 성책하여 미리 보고할 것.

5. 경강(京江)의 선박이 만약 내려오지 않으면 사유를 갖추어 보고하여 왕복하며 재촉할 것. 세대동(稅大同)<sup>234</sup>을 꾸려 실은 곡물 수효는 사목(事目)에 의거하여 마련(磨鍊)하고 선박을 나눈 수효는 차례를 구별하여 별건으로 성책하여 우선 즉시 서둘러 보고하라. 꾸려 실은 것을 성책한 것과 배를 출발시킨 일자(例)에 의거하여 기한 전에 보고하여 계문(啓聞)하는 바탕으로 삼을 것.

6. 꾸려 실어 배를 띄운 뒤에 사격(沙格) 무리들이 감색을 위협하여 막중한 세곡을 어렵지 않게 훔쳐내어 자의로 범용(犯用)하다가 상납할 때에 이르러서는 부족하여 탈이 생기는 폐해가 종종 있으니 매우 애석하고 놀랍다. 이번은 이러한 간악한 폐단은 과조(科條)를 엄격하게 세워 따로 엄격히 금하라. 이와 같이 별도로 신칙(申飭)한 뒤에도 만일 이전과 같은 탈이 생기면 사격(沙格)꾼들은 조문에 의거하여 감처(勘處)하고, 특별히 그 외에도 결탁하여 간악한 짓을 하는 해당 감관(監官)과 색리(色吏)들도 즉시 형배(刑配)의 율(律)로 다스리고 부족한 곡물도 또한 마땅히 거둬낼 것이니 각별히 엄칙(嚴飭)하여 법을 어기지 않도록 할 것.

7. 뱃놈들은 배삯 받는 것에 의탁하여 색리(色吏)와 뇌동하여 가외로 돈을 받아 그 낭자(狼藉)함이 매우 심하고 마침내는 원래 납부한 세금을 범하는 폐해에 이르렀으니, 지극히 애석하고 놀랍다. 금번은 비록 낱알곡이나 푼돈일지라도 꾸려 실기 전에는 미리 지급하지 말고 뱃삯은 나눠 실을 때 본색(本色)으로 수량을 헤아려 내줄 것.

8. 이 흉년을 당하여 재민(災民)의 한 톨의 곡식은 귀하기가 금과 같고, 돌보아 구휼할 방도는 다른 때에 비하여 자연 달라야 한다. 곡자(斛子) 위로 넘치게 납부하는 폐단과 창정(倉庭)에 곡식을 뿌리는 폐단을 철저하게 대조하고 살펴 일체 엄금하여 대단히 불미스런 일이 들리지 않게 할 것.

9. 세곡 납부의 이르고 늦음은 오로지 주비(注非)<sup>235</sup>를 뽑아 정하는 여부에 달려

234) 세대동(稅大同) : 전세(田稅)와 대동미(大同米)을 말한다. 전세(田稅)는 조(租)라고도 하며, 논밭에 부과되는 조세이고, 대동미(大同米)는 조선 시대에 대동법에 따라 거두던 세금이다.

235) 주비(注非) : 주비(注非)는 '부(夫)'라고도 하는데 수세(收稅)의 단위로, 보통 5~8결을 하나의 주비(注非)로 편성하였다. 옛날 논밭 면적의 최고 단위는, 곧 8결을 이르고 부(夫)라고 하였다. 지금은 밭을 전(田)이라고 하고 수전을 답(畓)이라 하는데, 답(畓)자는 본래 없던 글자이다. 이어 써서 한 글

있을뿐더러, 하물며 지금 재해를 입은 해에 검속하여 상납하는 절도는 예년으로 비교하여 논할 수 없으니, 주비(注非) 등이 과연 모두 부지런하고 신실하여 부합할 만한 사람으로 하나하나 차출하였는가? 우선 개창(開倉)하는 처음부터 주비(注非)에게 엄격하게 신칙하여 그들로 하여금 일제히 수납(輸納)하게 하되 만일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사사롭게 차출(差出)하여 납세(納稅)가 연체(延滯)되기에 이르면 검칙(檢飭)을 잘하지 못한 이향(吏鄉) 및 도리(都吏)는 결단코 마땅히 특별히 엄하게 처단해야 할 것이니 모름지기 뜻을 알아서 각별히 단속하라.

관속(官屬) 우리들이 작부(作夫)<sup>236</sup>할 때 거래한다고 칭하며 부농의 실복(實卜)을 자의적으로 빼내서 그들의 모리(牟利)하는 재원으로 삼고, 세를 납부하기 어려운 빈농의 결복(結卜)으로 구차하게 작부(作夫)를 충당하니 결국 세납(稅納)이 기한을 넘기게 되는 것은 모두 여기서 말미암는다. 이 한 항목은 별도로 대조하고 살펴 일체 금지(禁止)하고 빈부의 결복(結卜)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작부(作夫)하라. 그럼에도 만일 양호(養戶)<sup>237</sup>가 발견되는 자가 있다면 즉시 이름을 들어 첩보하여 율(律)에 의거하여 조사하여 처리하는 바탕으로 삼을 것.

同日. 一體發甘於三漕倉屬二十六邑.

【甘結】捧稅申飭何時不然，而明春則非但節候稍早，當此諸路告歉，收租大縮之時，經用之支繼與否，專靠於裝稅早晚是如乎。前期督捧，無滯裝發然後，上納可以趁限，營邑可免生事乙仍于，茲以先事別飭爲去乎，歲翻即時，趁速畢捧，一齊輸納，期於二月旬前，受尺考還爲旆。檢納之節，倍加惕念，始自開倉之初，嚴飭任掌，另加督捧是矣，漕倉間報所捧，如或一向愆滯，畢竟裝發至於過限，則吏鄉監色之上使推治，且置勿論，當該守令，斷當狀聞論勸，勿以歲課例飭看過，十分着意舉行爲旆。應行條件，依後錄，逐段檢察，俾無一毫踈漏入聞生事之弊，宜當者<南原、雲峰、龍潭、錦山、高

자를 만들어 그것이 답(畓)자와 비슷하므로 그 음을 따르게 되었으니, 작(勺)자가 석(夕:속음은 샤)자로, 대두(大豆)가 태(太)자로 된 것과 같다. 결부(結夫)의 부(夫)는 부(夫)자 위에 동그라미를 더하여 표하던 것을, 마침내 부(夫)자를 동그라미에 이어서 대략 의(矣)자로 하여 속칭 주비 의(矣)라고 하였다.

236) 작부(作夫) : 결세(結稅)를 거두어들이는 방법의 한 가지로, 곧 100부(負)를 1결(結)로 삼고 8결을 1부(夫)로 하여 결세를 매겼다.(『牧民心書』卷4 戶典 稅法) 부(夫)는 '주비'라고도 하는데 수세의 단위이다. 보통 5결 내지 8결을 하나의 주비로 한다. 작부는 주비에서 세를 거두어들이는 것을 말한다. (김현영 역주, 『군위군의 조선시대 모습』, 2010, 6쪽)

237) 양호(養戶) : 부자가 천민의 조세를 대신 납부하여 공역(公役)을 면제시킨 다음에 자기 집에서 부리던 백성의 집을 말한다.

山、珍山、益山、咸悅、長水、鎭安、任實、泰仁、金溝、全州、光州、潭陽、淳昌、玉果、昌平、同福、和順、谷城、靈光、長城、高敞、沃溝.>

一，稅穀法，意本自嚴重，出浦之際，本官領往倉所與倉官眼同捧上，而倉隸濫捧之習、稅民冗費之弊，一一照察，無或如前襲謬之地爲齊。

一，京倉點退，專在於米色之不精，穀物滲漏亦由於石子之不完。明年段，勿視例飭，米色則另擇精白，石子則務從堅緻，俾無一粒踈漏之弊爲齊。

一，稅穀防納之弊，非但倉底民之牟利，各邑都矣輩，憑藉浮費，科外濫懲，不一其端，明年段，往來雜費，從畧磨鍊，俾無分錢加歛之弊爲齊。

一，各邑色吏，稱以漕倉雜費，科外加歛，民不支堪之狀，已有所稔知，到底察飭，嚴加禁斷，俾無入聞抵罪之弊爲齊。

一，必以捧上監色，仍爲領騎上納是矣，或代送，或由陸是如可，有所現發，則該監色，當施以刑配之典，另飭舉行爲齊。

一，稅穀拒納之該邑都吏，自倉所，直爲嚴治，督捧之意，今方甘飭於倉官爲去乎，亦爲知悉爲齊。

一，裝載發船之後，沙格輩，威脅監色，莫重稅穀無難偷出，恣意犯用是如可，及其上納，欠縮生頭之弊，種種有之，萬萬痛駭。今番段，此等奸弊，嚴立科條，別加痛禁是矣。如是別飭之後，萬一有前頭生頭，則沙格輩之依律勘處，特其餘事，和應作奸之該監色段置，卽施以刑配之典，所欠穀物，亦當懲出，各別嚴飭，俾不得犯科爲齊。

一，捧稅早晚，專係於注非之擇差與否分叱除良，況今災歲，檢納之節，不可以常年比論，則注非等，果皆以勤實可合者，一一差出是驗？先自開倉之初，嚴飭注非，使之齊輸納是矣，萬一以不堪者，循私差出，以致稅納之愆滯，則不善檢飭之吏鄉，及都吏，斷當別樣嚴處，須悉此意，各別操束爲旆。官屬輩，作夫之際，稱以去來饒戶實卜，恣意占拔，作渠牟利之資是遣，以貧戶難捧之結，苟充作夫，畢竟稅納之愆期，皆由於此。此一款，另加照察，一切防禁，貧富結卜，均排作夫爲乎矣。如有養戶現發者，卽爲指名牒報，以爲依律勘處之地爲齊。

같은 날. 3조창(三漕倉)<sup>238)</sup> 소속 26읍에 일제히 감결을 발송하였다.

238) 3조창(三漕倉) : 조창(漕倉)은 세곡(稅穀)의 수송(輸送)과 보관(保管)을 위하여 수로(水路) 연변에 설치(設置)한 창고(倉庫)로, 조세창(漕稅倉)·조운창(漕運倉)이라고 하며 조선 시대에 10곳이 있었다. 3조창(三漕倉)은 호남 삼조창(湖南三漕倉)을 말하는 것으로, 함열(咸悅)에 있는 성당창(聖堂倉), 군산창(群山倉), 영광(靈光)에 있는 법성창(法聖倉)을 지칭한다. 참고로 영남(嶺南) 삼조창(三漕倉)은, 창

【감결】 봉세의 신칙(申飭)이 어느 때 그럴지 않았으리요? 내년 봄엔 단지 절후가 조금 이를 뿐 아니라 여러 지방이 흉년이 들어 수조(收租)가 크게 줄어드는 때를 당하여 경용(經用)을 지탱하는 여부는 오직 장세(裝稅)의 조만(早晚)에 달려있다고 한다.

기한 전에 납부를 독촉하여 지체 없이 실어 보낸 뒤에야 상납(上納)을 기한에 맞출 수 있고 영읍(營邑)은 탈이 생기는 것을 면할 수 있음에 따라 이에 미리 별도로 신칙하니, 해가 바뀌는 즉시 서둘러 거두는 것을 마치고 일제히 수납(輸納)하되 2월 10일 이전을 기한으로 받은 영수증[受尺]<sup>239)</sup>을 대조하고 돌려주어라.

검납(檢納)하는 절목은 신중하고 삼감을 배가하여 처음 개창(開倉)하는 때부터 임장(任掌)을 엄하게 신칙하여 별도로 독봉(督捧)하되, 조창(漕倉)은 간간히 거둬들인 바를 보고하여 만일 혹 이전처럼 지체하여 결국 실어 보내는 것이 기한을 넘기는 지경에 이르면 이향(吏鄉)과 감색(監色)을 감영으로 잡아 올려 추치(推治)하는 것은 물론이고 해당 수령은 결단코 마땅히 장계(狀啓)로 주상께 아뢰어 논감(論勘)할 것이니, 해가 바뀌는 때 으레 신칙하는 것으로 보아 넘기지 말고, 마음을 다해 거행하라.

응당 시행해야 할 조건은 후록(後錄)에 의거하여 차례로 검찰(檢察)하여 한 터럭만큼이라도 소루하여 보고되어 일이 생기는 폐단이 없게 함이 마땅할 일.<남원·운봉·용담·금산·고산·진산·익산·함열·장수·진안·임실·태인·금구·전주·광주·담양·순창·옥과·창평·동복·화순·곡성·영광·장성·고창·옥구>

1. 세곡법은 생각건대 본래 엄중하니 포구로 내갈 즈음에는 본관이 창소(倉所)에 직접가서 창관(倉官)과 함께 받아들이고 창예(倉隸)가 함부로 거둬들이는 습속과 세민들이 용비(冗費)하는 폐단을 하나하나 대조하여 살펴 혹시라도 전과같이 잘못을 반복되는 여지가 없게 할 것.
2. 경창(京倉)의 점퇴(點退)는 오로지 미색(米色)이 정일(精一)하지 않은데 있고, 곡물이 새는 것 또한 가마니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내년은 의례적인 신칙으로 보지 말고 미색(米色)은 따로 정백(精白)한 것을 고르고 가마니는 견고하고 치밀하도록 힘써 낱알 하나라도 새는 폐단이 없도록 할 것.

원(昌原)에 있었던 마산창(馬山倉), 진주에 있었던 가산창(駕山倉), 밀양의 삼랑창(三浪倉)이다.

239) 수자[受尺] : 세곡을 낸 영수증을 받는 것을 말한다. 척(尺)은 자문[尺文]으로, 관아에서 조세 따위를 받아들이고 발급하는 영수증이다.

3. 세곡(稅穀)을 방납(防納)<sup>240</sup>하는 폐단은 비단 창고 부근의 모리배뿐만 아니라 각 읍·도의 무리들이 부비(浮費)를 빙자하여 항목 외에 함부로 거둬들이는 단서가 하나가 아니니, 내년에는 왕래하는 잡비는 간략하게 마련하고 푼돈이라도 더 거두는 폐단이 없게 할 것.
4. 각 읍의 색리(色吏)들이 조창(漕倉)의 잡비를 칭하여 항목 외로 더 거두어 백성들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이미 익히 아는 바이니 살살이 살피고 단속하여 엄하게 금하여 보고되어 형벌을 받는 피해가 없도록 할 것.
5. 반드시 밭자[捧上] 감색(監色)을 배에 타게 하여 상납하여야 하니, 혹시라도 대송(代送)하거나 육로를 이용하다 발각되면 해당 감색(監色)은 마땅히 형배(刑配)의 법으로 다스릴 것이니 각별히 삼가하여 거행할 것.
6. 세곡 납부를 거부하는 해당 읍 도리(都吏)는 조창이 있는 곳에서 바로 엄하게 다스리고, 독촉하여 받으라는 뜻으로 지금 막 조창 관원에게 감결로 단속하였으니 또한 자세히 알 것.
7. 꾸러 실어 배를 출발시킨 뒤에 사격(沙格) 무리들이 감색을 위협하여 막중한 세곡을 어렵지 않게 훔쳐내어 자의(恣意)로 쓰다가 그것을 상납할 때 부족하여 탈이 생기는 피해가 종종 있어 매우 애석하고 놀랍다. 이번은 이러한 간악한 폐단은 엄하게 과조(科條)를 세워 각별히 엄금하라. 이와 같이 별도로 신칙(申飭)한 뒤에 만에 하나라도 이전과 같은 탈이 생기면 사격(沙格) 무리들은 조문에 의거하여 조사 처리하고, 특별히 그 외에도 결탁하여 간악한 짓을 한 해당 감관(監官)과 색리(色吏)도 즉시 형배(刑配)의 법으로 다스리고 부족한 곡물도 또한 마땅히 거둬내야 할 것이니 각별히 엄칙(嚴飭)하여 법을 어기지 않도록 할 것.
8. 봉세의 이르고 늦는 것은 오로지 주비(注非)를 뽑아 정했는가의 여부(與否)에 달려 있을 뿐더러, 게다가 지금 재해를 입은 해에 검속하여 상납하는 절도는 예년으로 비교해서는 안 되니, 주비(注非) 등이 과연 모두 부지런하고 신실하여 적합할만한 사람을 하나하나 차출하였는가? 우선 개창(開倉)하는 처음부터 주비(注非)를 엄격하게 신칙하여 그들로 하여금 일제히 수납(輸納)하게 하되 만일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을 사사롭게 차출(差出)하여 납세(納稅)가 연체(延滯)된다면 검칙(檢飭)을 잘하지 못한 이향(吏鄉)과 도리(都吏)는 결단코 엄하게 처단할 것이니 모름

240) 방납(防納) : 납공자(納貢者)의 공물(貢物)을 대신 관가에 바치고 그 대가를 납공자로부터 배징(倍徵)하던 일이다.



지기 이러한 뜻을 알아서 각별히 단속하라.

관속(官屬) 우리들이 작부(作夫)할 때 거래라고 칭하면서 부농의 실복(實卜)을 자의적으로 빼내서 그들의 모리하는 재원을 만들고 세금을 거둬들이기 어려운 빈농의 결세(結稅)로 구차하게 작부(作夫)를 충당하니 결국은 세납(稅納)이 기한을 넘기게 되는 것은 모든 것이 여기에서 말미암았다. 이러한 항목을 별도로 대조하고 살펴 일체 금지(禁止)시키고 빈농이든 부농이든 결복(結卜) 전답의 면적)으로 작부(作夫)를 균등하게 배분하라. 그럼에도 만일 양호(養戶)가 드러나 발견되는 자가 있다면 즉시 이름을 들어 첩보하여 조문에 의거하여 조사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것.

同日. 一體發甘於三漕倉.

【甘結】捧稅申飭, 何時不然? 而明春則非但節候稍早, 當此諸路告歉, 收租大縮之時, 經用之支繼與否, 專靠於裝稅早晚是如乎. 前期督捧, 無滯裝發然後, 上納可以趁限, 營邑可免生事乙仍于, 所屬各邑良中, 趁早督捧, 二月旬前, 一齊輸納之意, 今方甘飭是在果. 亦自本倉, 這這文移催促, 期於限內無遺畢捧, 及期裝發之地爲乎矣, 後錄條件, 逐段照檢, 嚴飭舉行, 俾無違越生梗之地, 宜當者.<咸悅、羣山、法聖.>

一, 倉官既是領運差員, 則米色與石子, 不待提飭, 自當擇捧是在果. 沙工輩, 符同色吏, 從中換色之弊, 已有所稔知, 各別察飭, 毋或冒犯爲旡. 所謂石子都賈之隨時操縱, 勒捧高價, 亦大痼弊, 另加禁斷, 俾無分錢加捧之弊爲齊.

一, 稅穀濫捧, 大關民隱, 嚴飭倉隸, 使之從弦劃秤斛, 餘落庭之米, 雖不滿升合, 還給該民爲旡. 出浦民之畏糧遠來, 爲弊不些, 雖一人一石之納, 隨到即捧, 俾無經宿留連之弊爲齊.

一, 各邑稅大同, 若有滯納之邑, 該邑都吏, 捉來嚴治督捧爲旡. 捧未捧, 數爻成冊, 間五日報來, 看色米太, 各盛布俗, 依例上使爲齊.

一, 沙工輩, 多數負債, 歇價預賣, 莫重稅穀, 恣意致縮. 及其上納, 每有欠縮生事之患, 究厥所爲, 萬萬痛駭. 明年段, 先自開倉初, 而別立科條, 到底痛禁, 俾無如前售奸之弊爲旡. 畢捧分載日子, 前期報來, 以爲別遣摘奸之地爲乎矣. 營門反閱時, 如或有一包穀虧欠生頭之弊, 則該沙工之即地刑配, 猶屬餘事, 責亦有所歸, 惕念舉行為齊.

一, 念此諸條, 若或視以例飭, 不勤舉行, 則首校吏, 都案色, 都沙工, 斷當限死嚴

刑，而差使員，亦當依事目，狀聞論勘，預爲知悉爲齊.

같은 날. 3조창(三漕倉)에 감결을 모두 발송하였다.

【감결】 세곡을 거둬들이는 일을 신칙(申飭)함이 어느 땐 그렇지 않았으리요 마는 내년 봄엔 단지 절후가 조금 이를 뿐만 아니라 여러 경로에서 흉년을 알리고, 수조(收租)가 크게 줄어드는 이 때를 당해서 경용(經用)을 지탱할지 여부(與否)는 오직 세곡을 실어 보내는 조만(早晚)에 달려있다.

기한 전에 납부를 독촉하여 지체 없이 실어 보낸 뒤에야 상납(上納)을 기한에 맞출 수 있고 영읍(營邑)은 탈이 생기는 것을 면할 수 있음에 따라 소속 각 읍에 일찍 납부를 독촉하여 2월 10일 전에 일제히 실어 보내라는 내용을 지금 막 감결로 단속하였다. 또한 본 조창(漕倉)으로부터 날날이 문이(文移)하여 재촉하여 기한 내에 남김없이 모두 납부하고 기한에 이르러 실어 보낼 것을 기약하되 조건을 후속하여 조항에 따라 대조 검사하여 거행할 것을 엄히 단속하여 어긋나고 불화가 생기는 일이 없게 함이 마땅할 것.<함열·군산·법성>

1. 조창의 관원은 영운차원(領運差員)이 미색(米色)과 가마니는 제칙(提飭)을 기다릴 필요 없이 본래 마땅히 가려 받아야 한다. 사공(沙工)무리들이 색리(色吏)와 부동(符同)하여 중간에 환색(換色)하는 폐단은 이미 익히 알려진 바이니 각별히 살피고 단속하여 혹시라도 모범(冒犯)이 없도록 하라. 이른바 ‘석자도고(石子都賈)<sup>241)</sup>가 수시로 조종(操縱)하여 억지로 고가로 납부하게 하는 것 또한 큰 고질적 폐단이니 각별히 막아 단절시켜 푼돈이라도 더 납부하는 폐단이 없게 할 것.

2. 세곡의 남봉(濫捧)은 민은(民隱)<sup>242)</sup>에 크게 관계되니 창예(倉隸)를 엄하게 신칙하여 그들로 하여금 줄을 그어 곡(斛)을 평평하게 하여, 뜰에 떨어진 쌀은 비록 한 되 한 홉에 차지 않더라도 해당 백성에게 돌려주게 하라. 포구로 나온 백성이 곡식을 싸 멀리 오는 것은 폐해가 작지 않으니 비록 한 사람 한 섬의 납부라도 도착하는 대로 즉시 받아들여 숙박하며 연일 머무는 폐단이 없게 할 것.

3. 각 읍의 세대동(稅大同)은 만약 체납한 읍이 있으면 해당 읍의 도리(都吏)는

241) 석자도고(石子都賈) : 가마니 도매상을 의미한다. 도고(都賈)는 조선 후기에 상품을 매점(買占) 또는 독점(獨占)하는 상업 행위와 개인 또는 조직의 상업 기구를 말한다. 도고(都雇)·도고(都庫)·도가(都家) 등으로 불리며, 독점 행위 그 자체는 도집(都執) 혹은 도취(都聚)라고도 한다.

242) 민은(民隱) : 백성(百姓)이 시달려 생활하는 데 겪는 괴로움을 말한다.

잡아와 엄하게 다스리고 납부를 독촉하라. 납부한 것과 납부하지 않은 것의 수효를 성책(成冊)하여 5일마다 보고하고 간색(看色)한 쌀과 콩은 각각 포대에 담아 전례에 따라 올려 보낼 것.

4. 사공 무리들은 다수가 채무(債務)를 지어 할가로 미리 팔아 막중한 세곡(稅穀)을 자의로 축내고 상납할 때에 이르면 매번 부족한 일이 생길 근심이 있으니 그 소행을 추구하면 매우 놀랍다. 내년은 우선 개창(開倉)초부터 별도로 과조(科條)를 세워 철저하게 막아 전과같이 간사함을 행하는 폐단이 없도록 하라. 납부를 마치고 나누어 실는 일자(日子)는 기한 전에 보고하여 특별히 적간(摘奸)하는 바탕으로 삼게 하라. 감영이 돌이켜 조사할 때에 만일 한 포대의 곡식이라도 부족하여 탈이 생기는 폐단이 있다면 해당 사공은 그 자리에서 유배형에 처해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책임 또한 귀결될 것이니 두려운 마음으로 거행할 것.

5. 여러 조목을 생각하되 만약 흑시라도 으레 신칙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힘써 거행하지 않는다면 수교리(首校吏) 도안색(都案色)<sup>243</sup> 도사공(都沙工)<sup>244</sup>은 결단코 엄히 형에 처할 것이고 차사원 또한 마땅히 사목(事目)에 의거하여 장계로 아뢰어 논감(論勘)할 것이니 미리 잘 알 것.

同日. 題錦山郡查案.<正犯金振河辛卯十一月日, 因金太希致死在囚, 而秘關更查事. 主推官, 錦山郡守 李魯榮. 同推官, 珍山郡守 李奎憲>

【題】兩次打頰，豈是致命之根因是旆？數點齒血，亦非毒毆之痕損。以辜限則已過廿日之限外；以獄體則初無苦主之發告，而畢竟成獄，不過以腦後之紅色微堅、脇肋之青色微浮而已。然腦受重打，則何不紫黯堅硬是旆？肋果被踢，則又何不不日致死？其所云紅色微堅者，安知非停泊之例証？；其所謂青色微浮者，安知非變動之形症是乙喻？勿讎振河死者之遺囑丁寧。但見打頰，看證之衆招歸一，獄情到此，更無疑眩。擬以由我之律，則律過其情，謂之巧落熟蒂，則渠當無辭？揆以審克之義，宜施傳輕之典。同金振河，待拷限，嚴刑一次，捧遲晚，光陽縣定配所押送後，形止牒報，宜當尙事。

같은 날. 금산군 사안(查案)을 데김하였다.<정범 김진하(金振河), 신묘(辛卯) 11월 일 생, 김태희(金太希)를 치사케 하여 수감되어 있었는데, 비관(秘關)을 보내 다시 조사한 일. 주추관(推

243) 도안색(都案色) : 도안(都案)을 담당하는 아전을 말한다.

244) 도사공(都沙工) : 뱃사공의 우두머리를 말한다.

官) 금산 군수 이노영(李魯榮), 동추관(同推官) 진산 군수 이규헌(李奎憲).>

【데김】 두 차례 빵을 때린 것이 어찌 치명의 근인(根因)이며, 두세 점의 치혈(齒血) 또한 심한 구타의 상흔(傷痕)이 아니다. 고한(辜限)은 이미 20일의 기한을 지나 벗어났고, 옥체(獄體)는 애초 고주(苦主)의 발고가 없었는데도 결국 옥사(獄事)가 성립된 것은 뒤통수가 붉은색으로 조금 단단해진 것과 갈비가 푸른색으로 조금 부은 것에 지나지 않았다. 뇌가 심한 타격을 받았다면 어찌 검붉은 색의 굳은 멍이 아니며, 갈비가 차였다면 또 어찌 하루 안에 죽지 않았겠는가? ‘붉은색으로 조금 단단해졌다’ 고 한 것은 머물렀다는 예증(例證)이 아님을 어찌 알며, 이른바 ‘푸른색으로 조금 부었다’ 고 한 것은 변했다는 형증(形症)이 아님을 어찌 알겠는가? 김진하(金振河)를 원망하지 말라는 사자의 유촉(遺囑)은 간곡하다. 다만, 빵을 때린 것을 보고 단증 하는 많은 공초가 한결같아 옥정(獄情)이 여기 이른 것은 다시 의혹이 없다. 자신으로 말미암는다는 법률로 헤아리면 법률이 그 정상(情狀)을 지나쳤고, 공교롭게 익은 꼭지를 떨어뜨렸다고 한다면 어찌 당연히 변명이 없겠는가? 충분히 조사하는 의미로 헤아리면 마땅히 부경(傳輕)<sup>245</sup>의 법을 시행해야 한다. 동 김진하를 고한(拷限)을 기다려 1차 형(刑)하여 봉지만(捧遲晚)하고 광양현 유배지로 압송(押送)한 뒤에 전말을 첩보함이 마땅할 것.

二十八日. 判官入見.

28일. 판관이 입견하였다.

同日. 以牛禁別飭事, 發甘列邑鎮.

【甘結】 以牛禁一事, 向有所別甘知委, 意謂列邑着意舉行矣, 卽聞土豪、頑民輩, 冒法潛屠, 依舊狼藉云, 苟如是, 則營門禁飭, 徒歸空言而後已是乙喻? 某邑某民, 屠牛幾隻, 營門已爲的探, 而本邑監色輩, 初不摘發論報, 渠輩若有一分嚴畏之心, 寧有如許道理? 揆以紀綱, 萬萬寒心. 掩置不報之當該監色, 從當別樣嚴治是在果. 見今歲除在即, 潛自私屠之弊, 必倍常時, 如前除良, 各別探察, 一一指名牒報, 以爲依律勘處之地爲旆. 且聞力農之家, 終歲喂養牛隻, 種種見失, 甚至有奔訴鎮營之舉云, 若自該

245) 부경(傳輕) : 중죄인(重罪人)의 죄상에 의심스러운 점이 있을 때 형(刑)을 경감(輕減)하는 것이다. 부생(傳生)이라고도 한다.

邑, 嚴飭譏察, 監色卽地推給, 則豈有遠訴鎮營之理? 此後段, 各別申飭, 隨即推給, 俾無見失呼訴之弊爲<sub>於</sub>. 且聞賊漢輩, 潛盜牛隻, 和賣於屠漢, 而屠漢則貪其價廉, 賊漢則爲其滅跡, 一隻二隻, 至於數十隻之多. 若此不已, 則明年春耕, 無牛不墾之土, 必多有之, 言念及此, 良覺寒心. 到甘卽時, 境內屠漢, 一併捉囚, 形止報來爲乎矣. 如是別飭之後, 若或因循掩過, 則該監色除良, 不飭之首吏鄉, 斷當上使嚴處, 別加惕念舉行, 宜當者.

같은 날. 우금(牛禁)을 각별히 단속하는 일로 여러 읍(邑)·진(鎭)에 감결하였다.

【감결】우금(牛禁)의 일로 전에 특별히 감결을 보내 알려준 바가 있어 열읍(列邑)에서 착실히 거행할 것으로 여겼다. 바로 들으니 토호와 완민들이 법을 어기고 몰래 도축하는 것이 예전대로 제멋대로라고 한다. 진실로 이와 같다면 감영의 금칙(禁飭)을 한갓 공언으로 돌리고 말 것인가? 모(某)읍 모(某)민이 소를 몇 마리 도축했는지를 감영은 이미 분명하게 찾아냈는데 읍의 감색(監色) 무리들이 애당초 적발하지 못한 것으로 논보(論報)하였으니 그 무리들이 만약 조금이라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찌 이러한 도리가 있었겠는가? 기강(紀綱)을 헤아리면 매우 한심하다.

덮어두고 보고하지 않은 해당 감색은 마땅히 따로 엄하게 다스려야 할 것이다. 지금 선달그음이 바로인데 몰래 사사로이 도축하는 폐단은 반드시 보통 때보다 배가할 것이다. 전과같이 하지 말고 각별히 찾아내고 살피서 하나하나 이름을 들어 첩보하여 조문에 의거하여 조사 처리하도록 하라.

또 들건대, 농사에 힘쓰는 집에서 세밑에 기르고 있는 소를 종종 잃어버리고, 심지어 진영(鎭營)에 달려와 하소연하는 일이 있다고 하는데, 만약 해당 읍으로부터 엄히 신칙하고 기찰(譏察)하여 감색(監色)이 바로 찾아 준다면 어찌 진영(鎭營)까지 멀리 와서 하소연할 리가 있겠는가? 이후는 각별히 신칙하여 즉시 찾아주어 잃어버리고 호소(呼訴)하는 폐해가 없도록 하라.

또 들건대 도적놈들이 몰래 소를 도둑질하여 도축(屠畜)하는 농한테 화매(和賣)하고 도축하는 놈은 그 가격이 싼 것을 탐내고 도둑질한 놈은 그 종적을 없애니 한두 마리에서 많게는 수십 마리에 이른다고 한다. 그치게 하지 않으면 내년 봄 농사는 소가 없어 개간하지 못하는 토지가 반드시 많을 것이다. 생각이 이에 미치

니 진실로 한심하다. 감결이 도착하는 즉시 경내의 도축(屠畜)하는 농들을 모조리 모두 잡아 가두고 사실의 전말을 보고하라.

이와 같이 각별히 신칙한 뒤에도 만약 흑시라도 인순(因循)하여 잘못을 비호하면 해당 감색(監色)뿐만 아니라 신칙하지 못한 수리향(首吏鄉)은 결단코 감영으로 잡아 올려 엄하게 처단할 것이니 각별히 책념(惕念)하여 거행함이 마땅할 일.

同日. 題同福縣報狀.<因秘關查起結, 五結三負成冊修報, 該都吏吳載勳枷囚事.>

【題】若無還寢之舉, 其將仍爲白徵於陳地是乙喻? 渠之流來隱結, 不損豪毛, 忽地出秩於百年陳廢之地, 似此無嚴之漢, 若不施以田政幻弄之律, 何以懲他是乙喻? 更當有別關知委向事.

같은 날. 동복현 보장(報狀)을 데김하였다.<비밀 관문으로 기결(起結)<sup>246</sup>을 조사하여 5결(結)3부(負)를 성책(成冊) 정리하여 보고한 건으로 해당 도리(都吏) 오재훈(吳載勳)을 칼을 씌워 가둔 건.>

【데김】만약 구재(舊災)를 환실(還實)하는 일이 없었다면 그대로 묵은 땅에서 억지로 세금을 거두었겠는가? 그가 유래로 누락시켜온 은결(隱結)<sup>247</sup>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는데 갑자기 백년 묵어 버려진 땅에 세금을 출질(出秩 납입고지서) 하였으니 이와 같이 무엄(無嚴)한 농을 만약 전정환롱(田政幻弄)<sup>248</sup>의 율문으로 다스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징계하겠는가? 다시 마땅히 별도의 관문을 보내 자세히 알릴 것.

同日. 以都吏處舊災還實條, 作奸出稅與否, 詳查報來事, 發關各邑.

【關文】爲相考事. 向來報槩時, 舊災中已起者, 直令都吏還實, 槩有所斟酌是矣. 此係該吏私橐中摘發者, 故或慮有別穿一竇之弊, 俵災時, 別關申飭矣. 近聞同福都吏, 欲充其還實之數, 無難出稅於多年應頃之陳結云, 故發關行查, 則果有狼藉作奸之事是

246) 기결(起結) : 기결(起結)은 시기결(時起結)과 같은 말로, 새로 논밭을 이룬 땅의 결세(結稅) 또는 당시 묵히지 않고 계속 갈아서 농사짓는 땅을 말한다.

247) 은결(隱結) : 조선 시대에 탈세를 목적으로 전세(田稅)의 부과 대상에서 부정·불법으로 누락시킨 토지를 말한다.

248) 전정환롱(田政幻弄) : 토지의 결수(結數)를 기준하여 받는 전세(田稅)에 교묘하고 못된 꾀로 남을 속여 마음대로 놀리거나 이용함을 말한다.

如乎。莫重國結，一任此輩之年年偷弄，紀綱所在，已極寒心分叱除良。今此查起，卽是偷結之沂考推入者，而此非當年該吏之所作備乙仍于。十分叅量，只令還實而止者，在渠是何等寬典是去乙，渠敢違越營飭，潛售舞弄之習，冒禁作奸，至於此極？苟有一分嚴畏之心，寧容如是？先從已現發者，施以田結幻弄之律，嚴刑遠配，斷不饒貸是在果。此邑如此，他邑可以反隅。方自營門，逐邑廉探，茲以發關爲去乎。本邑都吏輩，竄緣售奸，混錄出稅等，許多奸竇，親執田案，到底詳查，雖把、束之微，毋或隱漏，一一查出，收租案中，卽爲釐正後，偷弄結數，修成冊牒報爲旆。該吏段置，亦卽着枷嚴囚報來爲乎矣。如是更飭之後，掩置不報是如可，至及於別歧按廉，則該吏卽當遠惡地刑配是遣，不飭之失亦有所歸，各別惕念舉行，宜當尙事。<全州、光州、南原、順天、潭陽、礪山、錦山、益山、古阜、靈巖、珍島、寶城、樂安、萬頃、臨陂、昌平、南平、光陽、康津、務安、高敞、興德、井邑、扶安、沃溝、咸悅、龍安、咸平、泰仁、長城>

같은 날. 도리(都吏)가 구재환실(舊災還實)<sup>249)</sup> 조목을 처리하면서 간사한 짓을 하여 세금을 내게 했는지 여부를 자세히 조사하여 보고하는 일로 각 읍에 관문을 발송하였다.

【관문】 상고할 일. 과거 보개(報槩) 시에 구재(舊災) 가운데 기경(起耕)한 것은 바로 도리(都吏)로 하여금 환실(還實)하게 하여 대략 작량하는 일이 있었다. 이것은 해당 관원의 사적인 주머니 속에서 적발된 것과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흑시라도 따로 한 구멍이 뚫리는 폐단이 있을까 염려되어 표재(倭災)시에 따로 관문을 보내 신칙(申飭)하였다. 근래 듣건대, 동복현(同福縣)의 도리(都吏)가 그 환실(還實) 수효를 채우려고, 다년간 응탈(應頃)된 진결(陳結)에서 무난히 세곡을 내게 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관문을 발송하여 조사를 행하니 과연 낭자하게 작간(作奸)한 일이 있었다. 막중한 국가의 결세(結稅)를 이러한 무리배들이 수년간 훔치고 농간하도록 일임(一任)하였으니 기강(紀綱)이 있어야 할 곳이 이미 지극히 한심할 뿐만이 아니다.

이번에 기경(起耕)을 조사함은 곧 훔친 결세를 거슬러 올라가 살펴 찾아 넣게 하는 것이지, 당년의 해당 관리가 작용(作俑)<sup>250)</sup>한 것이 아니다. 충분히 참작하여 환실(還實)하게 한 데서 그친 것은 저들에게 얼마나 큰 관전이거늘 저들은 어찌

249) 구재환실(舊災還實) : 구재(舊災) 가운데 환실(還實)하는 논밭을 말하는 것으로, 이미 묵허버린 재결(災結)을 재해를 입지 않은 실수(實收)의 상태로 돌림을 말한다.

250) 작용(作俑) : 목우인(木偶人)을 만든다는 뜻으로, 좋지 않은 전례를 만들음을 이르는 말이다.

감히 감영의 신칙(申飭)을 어기고 멋대로 남용하는 습속을 몰래 행하여, 금령을 무릅쓰고 간사한 짓을 하여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 진실로 조금이라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찌 이 같은 짓을 하였겠는가?

우선 이미 드러난 자부터 전결(田結)을 환롱(幻弄)한 법률로 다스리고 엄히 형신(刑訊)하고 멀리 유배를 보내 결단코 너그러이 용서하지 말아야 한다. 이 읍이 이와 같다면 다음도 반우(反隅)<sup>251)</sup>할 수 있으니, 바야흐로 감영으로부터 차례로 읍을 영탐(廉探)할 것이니 이에 관문을 발송한다.

본 읍의 도리(都吏)배들은 인연(夤緣)<sup>252)</sup>으로 간사한 짓을 행하여 세금을 낸 것을 섞어 기록하는 등 간사한 일들이 허다하였으니, 직접 전안(田案)을 잡고 철저하게 조사하여 비록 파속(把束) 같은 작은 것일지라도 숨기거나 누락시키지 말고 하나하나 조사하여 수조안(收租案)에서 즉시 바로 잡은 뒤에, 훑치고 농간한 결수(結數)는 성책(成冊)으로 정리하여 첩보하라.

해당 아전들도 또한 바로 목에 칼을 씌워 엄하게 가두고 보고하라. 이와 같이 다시 신칙(申飭)한 뒤에 비호하여 보고하지 않다가 별도의 방법으로 안렴사(按廉使)에게 알려지면 해당 관리는 곧 멀고 험한 곳으로 형배(刑配)할 것이고, 신칙(申飭)하지 못한 잘못 또한 귀결(歸結)될 바가 있을 것이 각별히 두려운 마음으로 삼가 거행함이 마땅할 일.<전주·광주·남원·순천·담양·여산·금산·익산·고부·영암·진도·보성·낙안·만경·임피·창평·남평·광양·강진·무안·고창·흥덕·정읍·부안·옥구·함열·용안·함평·태인·장성>

二十九日. 中營將, 判官入見. 龍安縣監林貞鎮、濟原察訪金熙迪、景陽察訪安允中、萬頃縣令尹守澈, 以慶基殿正朝祭差備官, 來見.

29일. 중영장·판관이 입견하였다. 용안 현감 임정진·제원 찰방 김희유·경양 찰방 안윤중·만경 현령 윤수철이 경기전 정조제(正朝祭) 차비관으로 와서 보았다.

同日. 封清國憲書、下送有旨, 祇受啓.

251) 반우(反隅) : 한 가지를 일러 주면 그와 유사한 것은 미루어 안다는 뜻으로, 『논어』 「술이(述而)」에 “한 모퉁이를 들어 일러 주었는데 세 모퉁이를 반증하여 알지 못하면 더 이상 말해 주지 않는다.[舉一隅, 不以三隅反, 則不復也]” 하였다.

252) 인연(夤緣) : 권세 있는 연줄을 타고 지위에 오르거나 오르게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狀啓】今十二月二十五日，右副承旨張教根，成貼有旨內，‘今此清國憲書一件下送，卿其營上事’有旨，本月二十九日，臣在全州府祇受爲白臥乎事。

같은 날. 청국(淸國) 헌서(憲書)<sup>253</sup>와 내려 보낸 유지(有旨)를 공경히 받았음을 장계를 써서 봉하였다.

【장계】이번 12월 25일에 우부승지 장교근(張教根)이 성첩한 유지(有旨) 안에 ‘금번 청국 시헌서 1건을 내려 보내니 경(卿)은 감영(監營)에 두어라’는 유지(有旨)를 이번 달 29일에 신은 전주부에서 공경히 받았습니다.

同日. 封鎮安縣監在喪啓.

【狀啓】鎮安縣監朴曾壽，受由上京矣，今月十五日，遭其母喪是如，該縣公兄，文狀馳告是白乎等以。緣由馳啓爲白乎旆。本邑以尤甚災邑，曠官一時可悶，新除授縣監趙然明，令該曹催促下送爲白只爲。

같은 날. 진안 현감이 상(喪)을 당하였음을 장계를 써서 봉하였다.

【장계】진안 현감 박승수는 말미를 얻어 상경(上京)하였는데, 이번 달 15일에 모친상을 당하였다고 진안현 공형(公兄)이 문장(文狀)으로 급히 알려왔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치계(馳啓) 하옵는 일. 진안현은 우심재읍(尤甚災邑)으로 수령이 자리를 비우면 한시가 걱정스러우니 새로 제수(除授)하신 현감 조연명(趙然明)을 해당 아문으로 하여금 재촉하여 내려 보내게 하소서.

同日. 以鎮安縣封庫官差定事，發關長水縣。

【關文】爲相考事。鎮安縣監，遭其內艱乙仍于，縣監封庫官差定爲去乎，卽爲馳進同縣，公私各庫，依例封閉後，各樣穀物都數成冊，及官需、油清紙地用遺在成冊，各兩件修報爲旆。印符開金段，待新官傳授爲乎矣，凡干公務，着實兼察宜當向事。

같은 날. 진안현 봉고관(封庫官)을 차정하는 일로 장수현에 관문을 발송하였다.

【관문】상고할 일. 진안 현감이 모친상을 당하였으므로 장수 현감(縣監)을 봉고

253) 헌서(憲書) : 시헌서(時憲書)로, 책력(冊曆)을 말한다.

관(封庫官)으로 차정하니 바로 진안현으로 달려가, 공사(公私)의 각 창고는 예규에 의거하여 봉폐(封閉)하고 각양 곡물의 총 수효를 성책하고 관수품과 유청지(油淸紙地)의 쓰고남은 것을 성책하여 각 두건을 정리하여 보고하라.

인장과 병부와 열쇠는 새로운 관리를 기다려 전해주되, 모든 공무에 관해서는 착실하게 겸찰(兼察)함이 마땅할 일.

三十日. 景陽察訪入見, 申後詣慶基殿齋室. 祭官諸執事入見.

30일. 경양(景陽) 찰방이 입견하고 신시 뒤에 경기전 재실(齋室)로 나갔다. 제관과 여러 집사가 입견하였다.

## V. 국역 『완영일록』 권 3

『완영일록』 3권 전라도 관찰사 주요 직무
<p>갑오년 원단 새벽에 경기전 제향을 거행한 후 객사로 가서 진하례를 행하였고, 3일에는 조경묘와 경기전을 봉심한 뒤 향교로 가서 알성(謁聖)하였다.</p> <p>각 읍에 굶주리는 사람들을 진휼하라고 관문을 보내고, 연읍에 소재한 통영곡(統營穀)의 모조(耗條)를 작전하여 쓰는 일로 영영(嶺營)과 통영(統營)에 공문을 보냈으며, 각 면의 면임들이 환곡을 농간한 수량을 조사하여 보고토록 전주부에 공문을 보냈다.</p> <p>세곡을 신척하는 일로 각 읍과 진에 관문을 발송하였고, 이운미를 실은 배가 도회소에 도착하지 않자 낙안·보성·강진에 관문을 발송하였다.</p> <p>외촌에서 도축하는 놈들을 잡아 가두라고 전령을 보내기도 하였으며, 선혜청의 관문에 의거하여 대동목을 온전히 돈으로 대신 거둬들이라고 글을 지어 산군(山群)의 각 읍에 감결하였다.</p> <p>비변사 관문에 의거하여 무과 동당시를 병영에서 실시한다는 감결을 53주와 법성, 고군산진에 발송하였고, 시권에 전지(全紙)와 부지(附紙)를 통용하는 일과, 조흥강을 신척하는 일로 감결하였다.</p> <p>조경묘에 유자를 천신하였음을 장계로 아뢰고, 삭선할 진상품을 감봉하였으며, 제주목 포평 계본을 밀봉하여 발송하였다.</p> <p>매년 년초에 있는 국왕의 권농유지의 말씀을 53주와 법성진, 고군산진, 제주에 감결로 발송하였다.</p> <p>보리를 환곡할 때 가집한 것을 조사하여 400냥을 진도군에 내주라는 관문을 강진현에 발송하였고, 계사년 말의 수령 전최(殿最) 평가기준이 되는 칠사(七事)를 성책하여 장계로 아뢰었다.</p> <p>환상(還上)을 나눠준 호리가 환자(還子) 가호를 빼버린 죄상을 형신하고 칼을 씌워 가두라고 전주 경관 중영장에게 관문을 발송하였다.</p> <p>우역 약방문을 지어 53주와 법성진, 고군산진에 발송하였다.</p> <p>여산 부사가 모친상을 당하여 고산 현감을 봉고관으로 차정한다는 관문을 보내고 아울러 법식에 의거하여 각 창고를 봉폐하고 곡물의 총 수효를 성책하고, 또 관수품과 유청지지(油淸紙地)의 쓰고 남은 것도 성책하여 각 두 건을 즉시 정리하여 보고하고, 인장과 병부와 열쇠는 수효를 대조하여 거둬 놓았다가 신임 관리가 오기를 기다려 전해주라고 하였다.</p>

비변사의 관문으로 좌우도 동당시를 전주부에 합하여 실시한다고 감결을 보냈으며, 또한 감시(監試)를 행할 때 방세와 기물자리 값을 너무 거뒀들이지 말라고 전주부에 관문을 발송하였다.

이운미를 1월 그믐 안에 수납해야한다는 내용으로 고창현에 관문을 발송하였다.

구재환실(舊災還實) 대상을 세금을 내야하는 것으로 섞어 기록한 도리(都吏)와 면서원(面書員)을 형벌로 징계한 뒤에 이액(吏額 아전을 정한 수효(數爻))도 정식(定式)에 의거하여 바로잡아 줄이라고 동복현에 관문을 발송하였다.

전주부 수형리들이 사사로이 푸줏간을 설치한 죄를 묻고 첩보하라고 관문을 발송하였고, 진산군 육직(肉直)이 관포를 빙자하여 몰래 도축한 일을 형신하여 자복을 받아내라고 진산군에 관문을 발송하였다.

모래내[사천평(沙川坪)]에 가서 방죽 쌓는 형편을 살펴보았으며, 성당창(聖堂倉)에서 만들고 있는 조운선을 기한 내에 만들어 정박하게 하라고 가리포·녹도에 관문을 발송하였다.

비변사의 관문(關文)으로 관문(官門)이나 진문(鎭門)에서 취점을 설행한다는 사실을 53주와 법성진·고군산진·병영·좌수영·우수영·제주도에 감결하였다.

진자전을 보태어 갈라주라는 내용으로 각 읍에 관문을 발송하였다.

방답진(防踏鎭)의 기민에게 피모와 조를 나누어 주고 진자를 갈라주라는 사통을 보냈다.

호조의 관문으로 인하여 세곡의 조운을 신척하는 일로 감결을 발송하였다.

효행과 정절을 기릴만한 사람을 가려 정려(旌閭)해 주시기를 장계로 아뢰었다.

형조가 회계한 관문으로 인하여 살육죄인을 차올로 시행한 일을 장계로 아뢰었다.

## 1. 1834년(순조34) 1월 1~10일 : 경기전(慶基殿) 정조제(正朝祭)를 행하다

初一日. 曉行慶基殿祭享後, 仍詣客舍, 行陳賀禮. 中軍、中營將、判官、萬頃縣令、龍安縣監、濟原察訪、景陽察訪, 同爲進參, 還營軒封行祭啓.

【狀啓】今正月初一日, 行慶基殿正朝祭, 精備奠物, 差定祭官, 依禮文設行後, 獻官, 諸執事, 職姓名開錄于後爲白乎迹. 緣由謹具啓聞.<獻官, 行觀察使徐有槩. 典祀官兼大祝, 濟原察訪金熙道. 祝史, 全州判官李義平. 齋郎, 令鄭胄錫. 贊者, 龍安縣監林貞鎮. 謁者, 萬頃縣令尹守澈>

1일. 새벽에 경기전(慶基殿) 제향(祭享)을 거행한 뒤 바로 객사(客舍)로 가서 진하례(陳賀禮)<sup>1)</sup>를 하였다. 중군·중영장·판관·만경 현령·용안 현감·제원(濟原) 찰방·경양(景陽) 찰방 등이 함께 가서 참여하고 영현으로 돌아와 제향 거행에 대한 장계를 써서 봉하였다.

【장계】이번 정월 초하루에 경기전 정조제(正朝祭)를 거행하여 전물(奠物)을 정성껏 갖추고 제관을 차정(差定)하여 예문(禮文)에 의거하여 설행(設行)한 뒤에 헌관과 제집사의 직함과 성명을 뒤에 낱낱이 적었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삼가 갖추어 계문합니다.<헌관 행 관찰사 서유구, 전사관 겸 대축 제원 찰방 김희유, 축사 전주 판관 이희평, 제랑 경기전 령 정주석, 찬자 용안 현감 임정진, 알자 만경 현령 윤수철.>

同日. 食後萬頃縣令、龍安縣監、濟原察訪、景陽察訪, 入見辭去. 判官、中營將, 入見. 康津縣監任百經, 受由上京之路, 來見, 當日又爲入見辭去.

같은 날. 식후에 만경 현령·용안 현감·제원 찰방·경양 찰방이 입견하여 하직하고 갔다. 판관 중영장이 입견하였다. 강진 현감 임백경이 말미를 받아 상경(上京)하는 길에 와서 보고, 당일 또 입견하여 하직하고 갔다.

初二日. 封發新除授守令, 催促下送啓.

【狀啓】道內守令中, 新除授鎮安縣監趙然明催促下送事, 纔已馳啓爲白有在果. 靈巖

1) 진하례(陳賀禮) : 정월 초하룻날에 백관(百官)이 임금에게 새해 인사를 드리던 일을 말한다.

郡守李重榮、昌平縣令權涑、興德縣監崔允瑾、求禮縣監李教益、咸悅縣監金炳斗、谷城縣監李鐘稷，去十二月二十二日，政同爲除授是白如乎。見今春務伊始，捧稅方張，此時曠官極爲可悶乙仍于，緣由馳啓爲白去乎。並令該曹催促下送爲白只爲。

2일. 새로 제수(除授)된 수령을 재촉해 내려 보내 주실 일로 봉해서 발송했다.

【장계】 도내 수령 가운데 새로 제수된 진안 현감 조연명(趙然明)을 재촉하여 내려 보내실 것을 막 급히 아뢰었습니다. 영암 군수 이증영·창평 현령 권속·흥덕 현감 최윤근·구례 현감 이교익·함열 현감 김병두·곡성 현감 이증직 등은 지난 12월 22일에 함께 도목정사에서 제수(除授)되었습니다. 지금 봄 일이 시작되고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이 바야흐로 한창인데 이때 관리의 자리가 비어 지극히 답답하기에 이러한 연유로 치계합니다. 아울러 이조(吏曹)로 하여금 재촉하여 내려 보내게 하소서.

初三日. 辰時，詣肇慶廟、慶基殿，奉審後，仍詣鄉校謁聖，還營軒。參禮察訪徐承烈，來見。威鳳別將，李昌億來謁，仍爲辭去。

3일. 진시(辰時)에 조경묘·경기전에 가서 봉심(奉審)한 뒤에 바로 향교로 가서 알성(謁聖)<sup>2)</sup>하고 영현으로 돌아왔다. 삼례 찰방 서승렬이 와서 보았다. 위봉 별장 이창억(李昌億)이 와서 보고 그대로 하직하고 갔다.

初四日. 判官入見. 長城府使徐有民來見.

4일. 판관이 입견하였다. 장성 부사 서유민이 와서 보았다.

同日. 以飢戶賙恤事發關各邑

【關文】爲相考事. 本邑以尤甚災邑，今已歲開飢戶接濟之方，何以經紀是諭? 亦自營門不可無賙恤之道，營納作錢中，四百六十兩，卽爲除出，折作皮穀後，作穀數爻，卽速修成冊，報來宜當向事.<雲峯.>

2) 알성(謁聖) : 문묘(文廟)의 공자(孔子) 신위(神位)에 참배(參拜)함을 이른다.

云云, 本邑捧留是在牟還, 執錢取剩條, 三百五兩一莛, 待沃溝縣枚移, 卽速出給後, 形止牒報向事.<礪山.>

云云, 本邑以尤甚災邑, 今已歲開飢戶接濟之方, 何以經紀是喻? 亦自營門不可無賙恤之道是如乎, 礪山府捧留是在牟還執錢取剩條, 三百五兩一莛, 卽爲枚移, 推來折作皮穀後, 作穀數爻, 卽速修成冊報來宜當向事.<沃溝.>

같은 날. 굶주리는 사람들을 주恤(賙恤)<sup>3)</sup>하는 일로 각 읍에 관문을 발송하였다.

【관문】 상고할 일. 운봉현은 우심재읍(尤甚災邑)<sup>4)</sup>으로 지금 이미 새해의 굶주리는 집을 진恤(賑恤)하는 방법을 시작했는데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가? 또한 감영으로부터도 주恤(賙恤)하는 도리가 없을 수가 없으니 감영에 작전(作錢)하여 납부할 것 가운데 4백 6십 냡을 바로 덜어내어 피곡(皮穀)으로 바꾼 뒤 바꾼 곡식의 수효를 즉시 정리하여 성책(成冊)으로 보고함이 마땅할 일.<운봉>

운운(云云). 여산부는 봉류(捧留 거둬 보관함)하고 있던 모환(牟還)<sup>5)</sup>을 돈으로 만들어 잉여를 취한 조(條) 3백 5냥 1전을 옥구현의 공문을 기다려 신속히 내어 준 뒤 사실의 전말을 첩보할 일.<여산>

운운(云云). 옥구현은 우심재읍(尤甚災邑)으로 지금 이미 새해의 굶주리는 집을 진恤하는 방법을 시작했는데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가? 또한 감영으로부터도 주恤(賙恤)하는 도리가 없을 수가 없어 여산부에서 거둬들여 보유하고 있는 모환(牟還)을 돈으로 만들어 잉여를 취한 조(條) 3백 5냥 1전을 즉시 여산부로 공문을 보내어 찾아와 피곡으로 바꾼 후, 작곡(作穀)한 수효를 신속히 정리하여 성책으로 보고함이 마땅할 일.<옥구>

初五日. 長城府使, 入見辭去. 法聖僉使鄭泰東, 羣山僉使李玄升來見.

5일. 장성 부사가 입견하여 하직하고 갔다. 법성 첨사 정태동·군산 첨사 이현승이 와서 보았다.

3) 주恤(賙恤) : 주궁홀빈(賙窮恤貧)의 줄임말로, 가난한 사람을 구하여 도와줌의 의미이다.

4) 우심재읍(尤甚災邑) : 재해를 입은 정도가 심한 것부터 우심(尤甚), 지차(之次), 초실(稍實)의 세 등급으로 나누는데, 재해를 가장 심하게 입은 읍을 말한다.

5) 모환(牟還) : 모맥 환자(牟麥還上)로 보리를 환곡하는 일을 말한다.

同日. 以統營穀沿邑所在條, 作錢推用事, 文移嶺營·統營.

【移文】爲相考事. 本道所在統營穀, 每年耗條, 依京司勾管穀例, 作錢輸送, 卽每年應行之例, 而唯求禮、光陽、順天、樂安、興陽、左水營、蛇渡、鉢浦、鹿島、呂島、古突山、蟾津等十二邑鎮段, 以距統營程途稍近, 且有船路, 故每以本穀, 船運以去是如乎. 本道今年沿海之邑, 舉不免歉荒之中, 京廳運牟運米, 一時並舉, 民力已皆積困, 而此際又添以統穀移運之役, 終是行不得之政分叱除良. 該營穀摠多在於山邑是遣, 今此沿邑鎮所儲數, 皆不敷. 以此以彼, 本色輸運, 其勢末由, 故沿邑鎮所在耗條段, 並依山邑例, 作錢推去, 同將士支放條段, 分排於統營附近是在貴道各邑, 以本色推用, 則在該營別無損益, 在弊道沿邑, 庶可少紓民力乙仍于. 以此意論報籌司矣, 卽到回題內, “所報似或無怪, 苟欲從便濶狹, 則往復善處事” 題下教是如乎. 沿邑民情, 既甚窘踰, 籌司題教, 又此申複, 故茲以枚舉文移爲去乎. 統營支放條, 自貴道往復該營, 從便分排於該營附近邑, 以本色推用, 儘合共濟之誼. 今年段依此施行爲有矣, 明年以後, 則不必以此爲例, 並只相考幸甚.<嶺營>

云云. 本道求禮、光陽、順天、樂安、興陽、左水營、蛇渡、鉢浦、鹿島、呂島、古突山、蟾津, 等十二邑鎮所在, 貴營穀耗條·本色, 船運雖有已例, 而至於今年, 則本道沿海之邑, 舉不免歉荒之中, 京廳運牟運米, 一時並舉, 民力已皆積困, 而此際又添以貴營穀輸運之役, 終是行不得之政分叱除良. 貴營穀摠, 多在於山邑是遣, 今此沿邑鎮所儲數, 皆不敷. 以此以彼, 本色輸運, 其勢末由, 故沿邑鎮所在耗條, 並依山邑例, 作錢推去, 同將士支放條段, 分排於貴營附近各邑, 以本色推用, 則在貴營別無損益, 在本道沿邑, 庶可少紓民力乙仍于. 以此意論報籌司矣, 卽到回題內, “所報似或無怪, 苟欲從便濶狹, 則往復善處事”, 題下教是如乎. 沿邑民情, 既甚積瘁, 籌司題教, 又此申複, 故一邊往復嶺營, 茲以文移爲去乎. 貴營將士支放條, 枚移嶺營, 從便分排於附近各邑, 以本色推用, 儘合共濟之誼. 今年段, 依此施行爲有矣, 明年以後, 則不必援以爲例是去乎, 相考施行事.<統營>

같은 날. 연읍에 소재한 통영곡의 모조를 돈으로 만들어 추용(推用)할 일로 영영(嶺營)과 통영(統營)에 공문을 보냄.

【이문(移文)】 상고할 일. 전라도에 소재한 통영곡(統營穀)의 매년 모조(耗條)<sup>6)</sup>

6) 모조(耗條) : 모조(耗條)과 같이 쓰이며, 모곡(耗穀)의 뭉이다. 모곡은 각 고을 창고에 저장한 곡식을 봄에 백성에게 대여했다가 추수 후 받아들일 때 말[斗]이 축나거나 창고에서의 손실을 보충하기 위



는 경사(京司)가 관장하는 곡물의 관례에 의거하여 돈으로 바꾸어 실어 나르는 것이 바로 매년 마땅히 행하는 법식인데도, 오직 구례·광양·순천·낙안·흥양·좌수영·사도(蛇渡)·발포(鉢浦)·녹도(鹿島)·여도(呂島)·고돌산(古突山)·섬진(蟾津) 등 12읍진(邑鎭)은 통영(統營)과의 거리가 조금 가깝고 또 뱃길이 있다는 것으로 매년 본곡(本穀)을 배로 운반하여 갔습니다. 전라도의 금년 연해(沿海) 읍이 모두 흉년을 면하지 못하는 가운데 경청(京廳)으로 보리 운송과 쌀 운송을 동시에 아울러 거행하면 민력이 이미 곤고함이 있었는데 이즈음 또 통제영(統制營) 곡물을 이운(移運)하는 일을 더하면 끝내 행할 수 없는 정사가 될 뿐만이 아닙니다. 통제영의 곡물의 총수량은 대부분 산읍에 있고, 지금 연안 읍진(邑鎭)에 쌓아 놓은 곡식의 수효는 모두 넉넉하지 않습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본색(本色)<sup>7)</sup>을 실어 운반하는 것은 그 형편상 방도가 없습니다.

때문에 연안 읍진에 있는 모조(耗條)는 모두 산읍(山邑)의 예에 의거하여 작전(作錢)하여 옮겨가고 읍진의 장사(將士)들의 지방(支放) 뒀은 통영 부근에 있는 경상도 각 읍에 분배하여 본색(本色)을 옮겨 쓰게 한다면 해영(該營)에서는 별다른 손해가 없을 것이고, 폐도(弊道)의 연읍에서는 마력이 조금이라도 덜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뜻을 비변사에 논보하였더니, 받은 회제(回題)에, “보고한 내용이 흑 괴이할 바가 없는 듯하니 만약에 편리함을 따라 활협(濶狹)하고자 한다면 해영(該營)과 공문을 왕복하여 잘 처리할 일” 이라고 데김하였다. 연읍의 민정은 이미 매우 군핍하고 비변사가 데김 하신 것도 또한 거듭 말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날날이 공문을 보냅니다. 통제영(統制營)에서 지급할 장수의 금료 뒀은 귀도(貴道)에서 통영에 공문을 왕복하여 편리함을 따라 경상 감영 부근 읍에 분배하여 본색(本色)을 찾아 쓰게 하면 모두 함께 구제하는 도리에 합치합니다. 금년은 이것에 의거하여 시행하였으나 내년이후는 반드시 이를 전례로 삼을 필요는 없으니 아울러 상고하여 주시면 매우 다행입니다.<경상감영>

운운. 전라도의 구례·광양·순천·낙안·흥양·좌수영·사도·발포·녹도·여도·고돌산·섬진 등 12읍진(邑鎭)이 있는 통영 곡물의 모조(耗條)와 본색(本色)을 배로 실어 나르는 것이 비록 전례가 있으나 금년에 이르러 전라도의 연해 읍이 모두 흉년을 면할 수 없는 가운데 경청(京廳)의 보리 운반 쌀 운반을 동시에 아울러 거행하여

하여 10분의 1을 첨가하여 받는 곡식을 말한다.

7) 본색(本色) : 전지(田地)에서 생산된 그대로의 벼·보리·밀·콩 등을 말한다.

민력이 이미 곤고함이 쌓였고 이즈음 다시 통제영(統制營) 곡물을 실어 나르는 일을 더하니 끝내 행할 수 없는 정사일 뿐만 아니라 귀영(貴營)의 곡물 총수량은 대부분 산읍에 있고, 지금 연해 읍진(邑鎭)에 쌓아 놓은 곡식의 수효가 넉넉하지 못하다. 이런 저런 이유로 본색(本色)을 실어 나르는 것은 그 형편상 방도가 없다. 때문에 여러 읍진에 있는 모조(耗條)는 모두 산읍(山邑)의 예에 의거하여 돈으로 바꿔 옮기게 하고 읍진의 장사(將士)들에게 지급할 급료 뒀은 통제영(統制營) 부근 각 읍에 분배하여 본색(本色)으로 옮겨 쓰게 한다면 영은 별 손해가 없을 것이고 전라도 연해는 민력을 조금 덜어질 것이다. 이러한 뜻으로 비변사에 논보하였더니, 받은 회제(回題)에, “보고한 내용이 혹 괴이할 바가 없는 듯하니 만약에 편리함을 따라 활협(濶狹)하고자 한다면 공문을 왕복하여 잘 처리할 일.” 이라고 데김하였다.

연읍의 민정이 매우 피로가 쌓였고 비변사에서 데김한 것 또한 거듭 말하였기 때문에 한편으론 영영(嶺營)에 문서를 왕복하였고, 이제 통영으로 공문을 보내니, 통제영(統制營) 장사(將士)에 지급할 급료 뒀은 영영(嶺營)에 공문서를 보내 편리함을 따라 영영 부근 각 읍에 분배하여 본색(本色)을 옮겨다 쓴다면 모두 함께 구제하는 도리에 합치한다. 금년은 이처럼 시행하였으나, 내년 이후는 반드시 이를 전례로 삼을 필요는 없다. 상고하여 시행할 일.<통영(統營)>

初六日. 法聖僉使、群山僉使, 入見辭去. 中營將, 入見. 金堤郡守李玄好來見, 夜又入見.

6일. 법성 첨사·군산 첨사가 입견하여 하직하고 갔다. 중영장이 입견하였다. 김제 군수 이현호가 내현하고 밤에 또 입견하였다.

同日. 以各面面任, 還穀奸弄之數, 查報事, 發關全州府.

【關文】爲相考事. 本府東一面, 都尹李啓化, 昨年還分初等爲始, 舞弄犯逋之於百餘石之多, 狼藉入聞, 而今於營庭, 查問之下, 敢以六十餘石, 當納樣漫漶, 納招者, 萬萬痛駭, 爲先畧施刑懲, 茲以押送是在果. 本府捧糶之, 尙此愆期, 莫不由於分還之紊亂是如乎. 糶糶法意何等嚴中, 么麼面任輩, 從中作奸至於此極, 糶政之外, 大關紀綱分叱除良. 百餘包作奸, 既甚丁寧, 而只以六十餘石, 圖賴爲說者, 尤可見其無嚴莫

甚. 其作奸實數之, 未盡吐露者, 各別嚴加究問, 從實查出爲<sub>ㄷ</sub>, 此面如此, 他面亦可反隅, 各面面任等, 一一捉致分還時, 還穀奸弄之數, 到底查櫛, 並爲修成冊報來爲<sub>ㄷ</sub>. 亦自營門, 當有探知之道, 毋或一毫踈忽, 另加惕念舉行爲乎矣, 如是別飭之後, 萬一有隱漏生頗之弊, 則還戶吏, 及都次知座首, 施以還穀幻弄之律, 照法嚴勸, 斷不饒貸, 以此意嚴飭舉行宜當<sub>向事</sub>.

같은 날. 각 면의 면임들이 환곡을 농간한 수량을 조사하여 보고할 일로 전주부에 관문을 발송하였다.

【관문】 상고할 일. 전주부의 동일면(東一面) 도윤(都尹) 이계화(李啓化)는 작년 환곡을 나눠주는 첫 단계를 시작으로 농간하여 포흠(逋欠)한 것이 100여 섬이나 된다는 소문이 낭자하게 들려 와서 지금 감영 뜰에서 사문(査問)한 결과 감히 60여 섬의 당연히 납부해야 할 것을 만환(漫漶)하였으니 매우 놀랍다. 우선 대략 형징(刑懲)을 시행하고 이에 압송(押送)하였다. 전주부의 환곡을 거둬들이는 일이 아직도 이렇게 기한을 어긴 것은 환곡을 나눠주는 것이 문란한데서 말미하지 않음이 없다고 한다. 조적법(糶糶法)의 뜻이 얼마나 엄중한데 하찮은 면임 무리들이 중간에서 작간(作奸)하여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환곡(還穀) 정사에 기강(紀綱)에 크게 관계될 뿐만이 아니다. 100여 포를 작간한 것이 이미 틀림없거늘 단지 60여 섬으로 도뢰(圖賴)하여 말하는 것은 더욱 그가 무엄함이 막심함을 볼 수 있다. 그가 작간한 실 수효를 다 토로하지 않은 것은 각별히 엄하게 규명하여 사실대로 캐어내라. 이 면(面)이 이와 같다면 다른 면(面)도 가히 미루어 알 수 있으니 각 면의 면임들을 일일이 잡아다 환곡을 나눠줄 때 농간(弄奸)한 수효를 샅샅이 조사하여 모두 정리하여 성책(成冊)으로 보고하라.

또한 감영으로부터 마땅히 탐문하여 아는 방도가 있을 것이니, 혹 털끝만큼이라도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히 두려운 마음으로 삼가 거행하라. 이와 같이 각별히 신칙한 뒤에도 만일 숨기고 누락하여 탈이 생기는 폐단이 있으면 환호리(還戶吏)<sup>8)</sup>와 도차지(都次知)인 좌수(座首)는 환곡을 농간한 법률로 다스려 법에 비추어 엄하게 처벌하여 결단코 너그럽게 용서하지 않을 것이니 이러한 뜻을 엄격하게 신칙하여 거행함이 마땅할 일.

8) 환호리(還戶吏) : 환곡 대상의 집을 담당하는 아전을 말한다.

初七日. 金堤郡守入見辭去. 判官入見. 高阜郡守金裕淳、高山縣監金益根、樂安郡守韓啓轍、泰仁縣監沈能淑, 來見.

7일. 김제 군수가 입견하여 하직하고 갔다. 판관이 입견하였다. 고부 군수 김유순 · 고산 현감 김익근 · 낙안 군수 한계철 · 태인 현감 심능숙이 와서 보았다.

同日. 以稅穀申飭事, 發關各邑鎮.

【關文】爲相考事. 向以捧稅事, 有所措辭甘飭是加尼, 其果逐條看察, 着意舉行是驗? 見今開春有日, 趁速開倉, 別加嚴督, 期於二月晦內, 沒數畢捧, 三月初裝發, 上納之地爲乎矣, 如或愆期, 當該邑督發, 色吏直自倉所, 枚移捉致, 嚴治督捧是遣, 其中寂拒納該邑段, 一邊論報營門, 以爲別樣勘處, 火速收殺之地爲旣. 捧稅時, 諸般省弊之節, 雖值常年, 在所檢察, 而況如今災歲, 尤當倍加留念, 斛上濫捧之弊、倉庭散穀之習, 嚴加操束, 一切痛禁爲旣. 穀品則另擇精白, 石子則務從堅緻, 毋至京倉點退, 大段生梗之弊爲旣. 本倉舉行勤慢, 亦當有這這探知之道, 並只依前甘飭, 毋或一毫違越是矣. 前頭裝發, 若或稽滯過限, 則該掌吏之上, 使嚴刑, 且置勿論, 不善檢飭之失, 自有所歸, 除尋常, 惕念舉行宜當尙事.<咸悅、羣山、法聖.>

云云. 向以捧稅事, 有所措辭甘飭是加尼, 其果着意舉行是驗? 稅米太趁速發, 令各別嚴督, 期於二月念內, 沒數輸納漕倉, 受都尺考還爲乎矣. 拒納邑, 督發色吏, 直自倉所枚移, 捉致嚴治, 督捧之意, 茲更關節於倉官爲去乎. 須悉此意, 火速嚴督, 趁限出浦是矣. 漕倉間報所捧, 或致愆滯, 未及於三月初裝發之限, 則督發該色除良, 都次知首吏鄉之上使嚴刑, 猶屬餘事, 斷當依晚裝律, 狀聞論勘, 除尋常, 惕念舉行宜當尙事.<全州、沃溝、金溝、泰仁、鎮安、長水、任實、咸悅、南原、雲峯、錦山、珍山、高山、益山、龍潭、靈光、長城、高敞、潭陽、淳昌、光州、同福、和順、昌平、玉果、谷城>

云云. 向以捧稅事, 有所措辭甘飭是加尼, 其果逐條, 看察着意舉行是驗? 見今開春有日, 趁速開倉, 別加嚴督, 期於二月晦內, 沒數畢捧爲有如何, 三月初, 船隻下來即時, 裝發上納之地爲乎矣. 捧稅時, 諸般省弊之節, 雖值常年是良置, 在所檢察, 而況如今災歲, 尤當倍加留念是如何. 船漢輩, 符同庫子, 斛上濫捧之弊、倉庭散穀之習, 別加操束, 一切痛禁爲旣. 穀品則另擇精白, 石子則務從堅緻, 毋至京倉點退大段生梗之弊爲旣. 捧上勤慢, 亦當有這這探知之道, 並只依前甘飭, 毋或一毫違越是矣. 京船

到泊後，若以稅穀之未捧，或致愆滯不發，則當該監色之上使嚴刑，且置勿論，斷當依晚裝律，狀聞論勘，各別惕念，舉行宜當尙事。<礪山、龍安、臨陂、萬頃、金堤、扶安、古阜、井邑、興德、茂長、務安、咸平、羅州、靈巖、綾州、南平、珍島、海南、康津、長興、興陽、樂安、寶城、順天、光陽、求禮>

같은 날. 세곡을 신칙하는 일로 각 읍과 진(鎭)에 관문을 발송하였다.

【관문】 상고할 일. 과거 세곡을 거둬들이는 일을 감결로 신칙한 바가 있었는데 과연 조목대로 살피고 뜻을 두어 거행하고 있는가? 지금 봄이 된 지 오래되었으니 신속히 개창(開倉)하기를 특별히 엄하게 독촉하여 2월 그믐 안에 모든 수량을 거둬들이기를 기약하고, 3월 초에 꾸려 보내 상납(上納)의 바탕으로 삼을 것. 만일 혹 기한이 지체되면 해당 읍은 보내기를 독촉하고 색리(色吏)는 바로 창소(倉所)에서 날날이 공문을 보내 잡아들여 엄하게 다스리고 납부를 독촉하고, 그 가운데 가장 납부를 거부하는 읍은 한 편으로는 감영에 논보(論報)하여 보통과는 다르게 심리하여 처단하고 화급하게 거둬들여라.

세곡을 거둬들일 때에 제반 폐단을 줄이는 조항은 비록 예년 일지라도 곳곳에서 점검해야 하거늘 하물며 지금 같은 재해의 해는 더욱 마땅히 곱절로 유념하여 곡자(斛子)보다 많게 함부로 거둬들이는 폐해와 창고 마당에 곡식을 흘뜨리는 습속을 더욱 엄하게 단속하여 일절 금지하여야 한다. 곡물의 품질은 특별히 정백(精白)한 것을 선택하고 석자(石子)는 될 수 있는 대로 견고하고 치밀하게 하여 경창(京倉)에서 퇴짜 놓아 대단히 불미스런 폐단이 없도록 하라.

본 창고에서 거행한 근만(勤慢) 또한 마땅히 일일이 찾아 알아내는 방도가 있으니 모두 예전에 감결로 신칙한 대로 행하여 혹 털끝만큼이라도 위반하고 어기지 마라. 앞으로 꾸려 보내는 일이 만약 혹 머뭇거리고 지체되어 기한을 넘긴다면 해당 장리(掌吏)들은 감영으로 잡아 올려 엄하게 형벌함은 차치하여 논할 것도 없고 검속 신칙을 잘 못한 실수도 자연 귀결되는 바가 있을 것이니 보통으로 여기지 말고 척념(惕念)하여 거행함이 마땅할 일.<함열·군산·법성진>

운운. 지난번 세곡을 거둬들이는 일로 문서를 꾸며 감결(甘結)로 신칙한 바가 있었는데, 과연 뜻을 두어 거행하고 있는가? 세미(稅米)를 매우 신속히 실어보내기를 각각 따로 엄하게 독촉하여 기어코 2월 20일안에 모두 조창(漕倉)<sup>9)</sup>으로 실어다 나르게 하고 받은 도자[都尺]<sup>10)</sup>로 자세히 살펴 미납자는 거둬들여라.

바치기를 거부하는 읍은 색리(色吏)를 독발(督發 압송을 독촉함)하고 바로 창소(倉所)로부터 날날이 공문을 보내 잡아다 엄하게 다스리게 하고 세곡을 거둬들이기를 독촉하는 뜻을 이에 다시 창관(倉官)에게 관문으로 신칙하라.

모름지기 이러한 뜻을 잘 알고 시급하고 엄하게 독촉하여 기한에 맞춰 포구로 내오게 하라. 조창(漕倉)은 간간히 거둬들이는 바를 보고하고 혹 지체되어 3월초까지 실어 보내는 기한에 미치지 못하면 해당 색리(色吏)를 압송하기를 독촉해야할 뿐만 아니라 도차지(都次知)인 수리향(首吏鄉)을 감영으로 잡아 올려 엄하게 형벌하는 것이 오히려 여사(餘事 하찮은 일)에 속하니 결단코 마땅히 늦게 실어 보내는 조문에 의거하여 장계하여 아뢴 뒤 논감(論勘)할 것이니 보통으로 여기지 말고 척념(惕念)하여 거행함이 마땅할 일.<전주·옥구·금구·태인·진안·장수·임실·함열·남원·운봉·금산·진산·고산·익산·용담·영광·장성·고창·담양·순창·광주·동북·화순·창평·옥과·곡성>

운운. 지난번 세곡을 거둬들이는 일로 문서를 꾸며 감결로 신칙한 바가 있었는데 과연 그 조목대로 살피고 뜻을 두어 거행하고 있는가? 지금 봄이 시작 된지 오래되었으니 신속히 개창(開倉)하기를 특별히 엄히 독촉하여 기어코 2월 그믐 안에 모두 거둬들였다가 3월초 선박이 내려오는 즉시 실어 보내 상납할 것. 세곡을 거둬들이는 때에 제반 폐단을 줄이는 조항이 비록 예년과 같더라도 점검하고 살필 것에 있어서는 더구나 지금 같은 재해의 시기에는 더욱 마땅히 배가하여 유념하여야 한다.

벉농들이 창고지기와 한통속이 되어 곡자(斛子)보다 많게 함부로 거둬들이는 폐해와 창고 마당에 곡식을 흠뜨리는 습속을 각별히 더욱 단속하여 일절 금지하라. 곡물의 품질은 특별히 정백(精白)한 것을 선택하고 석자(石子)는 될 수 있는 대로 견고하고 치밀하게 하여 경창(京倉)에서 퇴짜 놓는 대단히 불미스런 폐단이 없도록 하라.

거둬들이고 상납할 때 행실이 부지런했는지 게을렀는지 또한 마땅히 일일이 찾아 알아내는 방도가 있으니 모두 예전에 감결로 신칙한 대로 행하여 혹 털끝만큼이라도 위반하고 어기지 마라.

- 
- 9) 조창(漕倉) : 세곡(稅穀)의 수송과 보관을 위하여 수로(水路) 연변에 설치한 창고로, 조세창(漕稅倉), 조운창(漕運倉)이라고도 하며, 조선시대에 10곳이 있었다.  
 10) 도자[都尺] : 도자문[都尺文]으로, 조세를 몇 차례로 나누어 바친 데 대하여 그때마다 받은 표를 한 데 몰아서 발행하여 주던 영수증을 말한다.

경강선(京江船)이 도착한 뒤에도 만약 세곡을 미처 거둬들이지 못하고 혹은 지체된 이유로 배를 출항시키지 못하면 당해 감색(監色)은 감영으로 잡아 올려 엄하게 형벌함은 차치하여 논할 것도 없고 결단코 마땅히 늦게 실어 보낸 조문에 의거하여 장계로 아뢰고 논감(論勘)할 것이니 각별히 척념(惕念)하여 거행함이 마땅할 일.<여산·용안·임피·만경·김제·부안·고부·정읍·흥덕·무장·무안·함평·나주·영암·능주·남평·진도·해남·강진·장흥·흥양·낙안·보성·순천·광양·구례>

同日. 以試券全附紙通用事, 發廿五十三州.<法聖、古羣山鎮>

【甘結】見今試期漸近, 凡係科場間諸般爲弊者, 固當隨處照察, 先期講究, 務盡節省是如乎. 至於試紙段, 卽是寒士之艱辛自辦, 雖值常年, 在所當念, 而況如今災歲, 尤宜省弊是置. 試券之用附紙, 亦足爲省費之一端, 而若有以全紙預備者, 則改備附紙之際, 亦不無倍費之慮是乎所. 毋論全紙附紙, 通濶許用, 允合事. 宜以此意, 境內士子良中, 一一知委, 俾無一人未聞知之弊爲旡. 舉行形止, 先卽報來宜當者.

같은 날. 시권(試券)에 전지(全紙)와 부지(附紙)<sup>11)</sup>를 통용하는 일로 53주에 감결을 발송하였다.<법성·고군산진 포함.>

【감결】지금 시험 기간이 점점 가까워지는데 무릇 과장(科場)내 여러일 가운데 폐단이 되는 것과 관련된 것은 진실로 마땅히 처지에 따라 대조하여 살펴 기한 전에 강구(講究)하고 힘써 줄이기를 다해야 한다. 시험지는 바로 가난한 선비가 스스로 마련하기 힘들고 괴로운 것이니 비록 값이 평년과 같아도 마땅히 유념해야 한다. 더구나 재해가 있는 해에는 더욱 마땅히 폐단을 줄여야 한다. 시권(試券)에 부지(附紙)를 사용하는 것 또한 족히 비용을 줄이는 한 계기가 된다. 만약 전지(全紙)를 미리 준비하는 사람이 부지(附紙)를 다시 준비하려 할 때 또한 배가되는 비용의 우려가 없지 않다. 따라서 전지와 부지를 논하지 말고 널리 허용하는 것이 진실로 합당할 것이다. 그러니 의당 이러한 뜻을 경내(境內) 선비들에게 일일이 명령으로 알려 한 사람이라도 알지 못하는 폐단이 없도록 하라. 거행한 사실의 전말을 우선 즉시 보고함이 마땅할 일.

11) 부지(附紙) : 어떤 서류에 간단한 의견을 적어 덧붙이는 쪽지를 말한다.

同日. 以運米所載船, 星火到泊于都會所事, 發關樂安、寶城、康津.

【關文】爲星火舉行事. 本邑移運米發船之報, 將近一朔, 而尙不到泊于都會所云. 騎船監色輩, 苟能着意董督, 寧有是理? 見今開春有日, 望潮方生, 差使員當趁此時, 一齊領發, 而只緣本邑穀之未到, 致此裝發之稽滯者, 揆以舉行, 萬萬稽忽乙仍于, 茲以發關爲去乎. 到關即時, 別定勤幹將校, 追及於船隻所到處, 罔夜前進, 期於今十五日內, 輸納于都會所, 受尺考還爲乎矣. 如或未及, 則首鄉、首吏, 斷當上使嚴勸, 除尋常, 各別惕念舉行, 毋至大段生梗之地, 宜當向事.

같은 날. 운미(運米 운송할 쌀)를 실은 배를 급히 도회소(都會所)에 배를 대는 일로 관문을 낙안·보성·강진에 발송하였다.

【관문】급히 거행할 일. 본 읍[낙안·보성·강진]의 이운미(移運米)를 실은 배가 떠났다는 보고가 거의 1달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도회소에 이르러 달지 않았다고 한다. 기선감색(騎船監色)<sup>12)</sup> 무리들이 진실로 뜻을 두어 감시하며 독촉하였다면 어찌 이럴 리가 있겠는가? 지금 새봄이 된지 여러 날이고 한사리가 막 시작되었으니 차사원(差使員)은 마땅히 이때에 맞춰 일제히 통솔하여 떠났어야 했는데, 단지 본 읍의 곡물이 도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렇게 꾸려 출발시키는 것을 지체하기에 이르렀으니 거행을 헤아려보면 매우 더디고 소홀함에 따라 이에 관문을 발송한다. 관문이 도착하는 즉시 따로 부지런하고 성실한 장교(將校)를 정하여 선박이 도착하는 곳에 뒤쫓아 이르게 하여 밤낮 없이 앞으로 나아가 기어코 이번 15일 안에 도회소에 운반하여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受尺]을 대조하고 돌려주어라. 만일 혹 도착하지 못하면 수향(首鄉)과 수리(首吏)는 결단코 마땅히 감영으로 잡아 올려 엄히 처벌할 것이니 보통으로 여기지 말고 각별히惕念(惕念)하여 거행하여 큰 탈이 나지 않도록 함이 마땅할 일.

同日. 因備局關, 以武科東堂設試於兵營事, 發甘五十三州, 法聖、古羣山鎮.

【甘結】筋到付備邊司關內, “筋啓下教, 今十二月二十七日, 大臣, 備局堂上引見入侍時, 領議政李相璜所啓, ‘今式監初及文東堂初試之請令道臣設行於營下者, 盖出於省弊之意, 文試既如此, 武試亦依此例, 令本道兵營, 都聚設試, 則可除冗弊, 亦合便

12) 기선감색(騎船監色) : 세곡의 조운(漕運)을 감독하기 위해서 조운선(漕運船)에 함께 타고 가는 감관(監官)과 색리(色吏)를 이른다.



宜，故敢此仰達矣.’ 上曰‘依爲之’事 傳教教是置，傳教內辭意，奉審施行尙事”  
 關是置有亦. 同武科東堂，兵營都聚設試爲去乎，境內武士良中，一一知委爲旆，甘到  
 日時，卽爲牒報宜當者云云，關是置有亦. 同武科東堂，自本營都聚設試爲乎矣，以此  
 意知委各邑爲有去乎，相考施行尙事. <兵馬節度使>

같은 날. 비변사 관문으로 인하여 무과(武科) 동당(東堂)<sup>13)</sup>을 병영(兵營)에서 실시(設試)하는 일로 53주와 법성·고군산진에 감결하였다.

【감결】이번에 도착하여 받은 비변사 관문 내용은 “이번에 계하(啓下)하신 올 12월 27일 대신과 비국당상을 인견(引見)하는데 입시(入侍)한 자리에서 영의정 이상황(李相瓚)이 ‘이번 식년에 감초(監初)<sup>14)</sup>와 문과(文科) 동당초시(東堂初試)<sup>15)</sup>를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영하(營下)에서 설치하여 시행하도록 청한 것은 폐해를 줄이자는 뜻에서 나왔고, 문과(文科) 시험이 이미 이와 같으니 무과(武科) 시험도 또한 이러한 예에 의거하여 본도의 병영(兵營)으로 하여금 모두 모여 실시(設試)하게 한다면 쓸데없는 폐해를 줄일 수 있어 또한 편의(便宜)에 부합하기 때문에 감히 이렇게 우러러 진달합니다.’ 라고 아뢰니 상(上)께서 ‘아뢴대로 하라’ 고 전교(傳敎)하셨다. 전교 내용을 봉심하여 시행할 일” 이라는 관문이었다.

동 무과동당을 병영에 모두 모여 실시(設試)하니 경내의 무사(武士)들에게 일일이 자세하게 알리며, 감결이 도착하는 날짜를 즉시 첩보함이 마땅할 일 운운이라는 관문이었다.

동 무과동당을 본 병영(兵營)에서 모두 모여 실시(設試)한다. 이러한 뜻을 각읍에 자세하게 알리니 상고(相考)하여 시행할 일.<병마절도사>

同日. 以外村屠漢捉囚事, 傳令中營將

【傳令】歲時潛屠, 必倍常時, 故爲其防禁, 境內屠漢等, 一併捉囚之意, 發甘行會矣, 本府首刑吏, 掩匿甘結, 趁不奉行分叱除良, 外村屠漢輩, 有何隱情, 私自操縱, 不爲捉囚, 以邑內貿販所待令屠漢塞責, 牢囚者豈有如許紀綱? 同首刑吏漢, 着枷押付

13) 동당(東堂) : 식년과(式年科), 또는 증광시(增廣試) 때에 강경 시험(講經試驗)을 보는 곳이다. 나중에는 식년과(式年科)나 증광시 자체를 동당이라 불렀는데, 무과 동당은 갑오년(1834)에 실시한 식년시(式年試)의 무과(武科)를 말한다.

14) 감초(監初) : 감시초시(監試初試)로, 생원·진사과의 초시(初試)를 말한다.

15) 동당초시(東堂初試) : 갑오년 식년(式年) 문과(文科) 초시(初試)를 말한다.

爲去乎，以大棍，箇箇考察，嚴加查問，外村屠漢等姓名，一一列錄，這卽捉囚後，形止報來宜當者。

같은 날. 외촌(外村)에서 도축하는 농들을 잡아 가두는 일로 중영장(中營將)에게 전령(傳令)을 보냈다.

【전령】 세시(歲時)에 몰래 도축(屠畜)하는 것은 반드시 보통 때보다 갑절이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 경내 도축하는 농들을 모두 잡아 가두라는 뜻을 감결로 발송하고 행회(行會)<sup>16)</sup>하였다. 그런데 전주부 수형리(首刑吏)가 감결을 감추고 쫓아 봉행하지 아니하였다. 뿐만 아니라 외촌(外村)의 도축하는 무리들과 무슨 숨기고 있는 생각이 있는지, 제멋대로 조종(操縱)하며 잡아 가두지 아니하고 읍내 무판소(貿販所)<sup>17)</sup>에서 대령(待令)하고 있는 도축한 농들을 책임을 면하게 겹으로 둘러대기만 하니 감옥에 갇힐 농들을 어찌 이와 같은 기강(紀綱)이 있겠는가? 동수형리농을 칼[枷]을 씌워 압송(押送)하고서 대곤(大棍)<sup>18)</sup>으로 개개고찰(箇箇考察)하여 엄하게 물어 조사하고 외촌에서 도축한 농들의 성명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바로 잡아 가둔 뒤에 사실 전말을 첩보함이 마땅할 일.

初八日. 古阜郡守、樂安郡守、泰仁縣監、高山縣監，入見辭去。判官入見，金溝縣令金錫喜、光陽縣監沈競祖來見。

8일. 고부 군수 · 낙안 군수 · 태인 현감 · 고산 현감이 입견하여 하직하고 갔다. 판관이 입견하였다. 금구 현령 김석희 · 광양 현감 심경조가 와서 보았다.

同日. 因扶安縣李召史呈狀，姜德三，欲奪其叔之田畝委折，查報事，發關該縣。

【關文】爲相考事. 卽接本縣李召史所訴，則以爲矣侄鄭允卜，素以放浪之人，締結無賴，偷賣田畝，沈惑雜技，而矣媿父，年近八十，不能禁斷，長爲愁憂度了矣. 不意今者，井邑連珠院姜德三，南哥，白哥，趙五乙，孫哥，及古阜禮洞李光守等，作黨突

16) 행회(行會) : 나라의 지시(指示)를 관아(官衙)의 우두머리가 부하(部下)들에게 알리는 일이다.

17) 무판소(貿販所) : 쇠고기나 돼지고기를 파는 가게를 낸 곳을 말한다.

18) 대곤(大棍) : 조선 시대에 죄인의 볼기를 치는 데 쓰던 곤장의 하나이다. 길이는 5자 6치, 너비는 4치 4푼, 두께는 6푼 가량으로 비교적 컸다.

入，謂以京居士夫宅農幕錢，矣侄允卜犯用是如，欲奪畚庫，其所作梗，罔有紀極，嚴治禁斷亦爲有等以，已爲題給是在果。若如狀辭，則姜德三等之，愆患鄭允卜，假托京居士夫宅農幕錢，欲奪其叔之田券者，萬萬痛惡乙仍于，茲以發關爲去乎。一併文移捉來，其委折詳查牒報，以爲憑處之地，宜當向事。

같은 날. 부안현 이조이가 소장(訴狀)을 관청에 올린 것으로 인하여 강덕삼(姜德三)이 그의 숙부의 전답(田畓)을 뺏으려한다는 곡절을 조사하여 보고하는 일로 부안현에 관문을 발송하였다.

【관문】 상고할 일. 지금 부안현 이조이가 정소(呈訴)한 내용을 보니 “자기 조카 정윤복(鄭允卜)은 평소 정처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으로 무리배와 결탁하여 전답을 도적질하여 팔며 잡기(雜技)에 깊이 빠져 있다. 그런데도 그의 시아버지는 나이가 거의 80인데 단호하게 막을 수 없어 늘 근심으로 여기며 지내왔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근래 정읍 연주원(連珠院)에 사는 강덕삼·남가(南哥)·백가(白哥)·조오을(趙五乙)·손가(孫哥)와 고부 예동(禮洞)에 사는 이광수(李光守) 등이 작당하여 갑자기 쳐들어와 ‘서울에 사는 사대부 덕 농막전(農幕錢)<sup>19)</sup>이다’ 고 말하고 그의 조카 정윤복이 허락 없이 농막전을 써버렸다고 하면서 또 전답과 창고를 빼앗으려 하니 그가 지은 못된 행실은 기울에 어긋남이 몹시 심하여 엄하게 다스려 단호하게 막아 주십시오” 라고 하므로 이미 데깁을 해주었다.

만약 소장의 말과 같다면 강덕삼 등이 정윤복을 종용(慫恿, 달래 권함)하여 서울에 사는 사대부의 농막 대금이라고 핑계대고 정윤복의 숙부의 전권(田券, 토지 소유문서)을 빼앗으려 한 것은 매우 통악스러우니 이에 관문을 발송한다. 모두 문이(文移)하여 잡아와 그 곡절을 자세하게 캐물어 첩보하고 사실에 근거하여 처리함이 마땅할 일.

同日. 因惠廳關, 大同木純錢代捧事, 措辭發甘於山郡各邑.

【甘結】 筋到付宣惠廳關內, “今十二月二十七日, 大臣, 備局堂上引見入侍時, 宣惠堂上朴周壽所啓, ‘向因完伯疏, 繼有嶺湖大同木, 並許純錢代納之命. 恤民曠絕之澤, 臣實欽仰攢祝, 而第伏念, 大同惟正之供也, 所重自別, 雖值大無之歲, 自下不敢

19) 농막전(農幕錢) : 농사짓는 데 편리하도록 논밭 근처에 간단하게 짓는 농막 마련을 위한 돈을 말한다.

遽爾請代，古例卽然，近來則輒請代錢。一年二年殆同歲課，非但有傷事體，萬有一甚於今年之災荒，將何以加此乎？且三南之民，狃於見聞，幾不知正供之重，是豈細憂也哉？既非今年朞始之事，故雖不得請罪道臣，窵有所目下萬萬悶急者。本廳木儲，不惟苟艱，頒貢給代之後，自多都民資賴，而今若代錢上下，則亦無由絲身，實所當念處也。臣意則三南中，尤甚特許代錢，其餘諸邑，並以本色上納，使國計民隱，兩得其宜，恐好敢此仰達矣。’ 上曰：‘所陳自是守經之論，予既許之，豈可失信於民乎？不允’ 亦教是置。舉條內辭緣，及批旨內辭意，奉審舉行宜當向事，” 關是置有亦。迺茲惠廳之，仰請本色上納，寔出於守經之論，而及伏承批旨，不惟不允可，至有豈可失信之聖諭。大哉王言！爲南民優恤之德意，愈往愈摯，天地無極，河海罔量，爲今日營邑之臣，誠不勝莊誦攢祝是如乎。茲以發甘爲去乎，關內辭意，眞諺翻騰，一一布諭，揭之坊曲，使愚夫愚婦，咸知我朝家特惠優渥，曠絕今古之地宜當者。<錦山、珍山、龍潭、鎮安、任實、南原、淳昌、潭陽、玉果、昌平、同福、和順、金溝、泰仁、光州、綾州、谷城、高山、茂朱、南平、求禮>

같은 날. 선혜청(宣惠廳)의 관문으로 인하여 대동목(大同木)을 온전히 돈으로 대신 거둬들이게 할 일을 글을 지어 산군(山郡)의 각 읍에 감결을 발송하였다.

【감결】 이번에 받아본 선혜청 관문 내용은, “올 12월 27일에 대신과 비국당상을 인견(引見)하는데 입시(入侍)한 자리에서 선혜청 당상 박주수(朴周壽)가 아뢰기를, ‘저번에 완백(完伯 전라도 관찰사)의 상소로 인하여 영남과 호남의 대동목은 모두 온전히 돈으로 대신 바치는 것을 허여한다는 명이 잇달아 있었습니다. 백성을 구휼하는 전에 없는 은택에 대해 신은 진실로 공경하며 우러러 손을 모아 하례합니다. 다만 앞드려 생각건대 대동법은 유정지공(惟正之供)<sup>20)</sup>이니, 소중함이 각 별하여 비록 흉년의 해를 만났을지라도 아래에서부터 감히 경솔하게 대동목을 돈으로 대신 바치게 하는 것을 청할 수 없는 것은 옛 예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근래는 갑자기 대전(代錢 돈으로 대신 바침)을 청하기를 1,2년 하다 보니 거의 세과(歲課 해마다 부과되는 세금)와 같아 단지 일의 본질을 손상시킴이 있을 뿐만 아니고 만에 하나라도 올해의 흉년보다 심함이 있다면 장차 어떻게 이보다 더 요구하겠습니까? 게다가 삼남지방의 백성들은 보고 듣는 것에만 익숙하여 거의 정당하게 조

20) 유정지공(惟正之供) : 백성들이 국가에 당연히 바쳐야 할 정규(定規)의 조세(租稅)를 말한다.

세(租稅)를 바쳐야 하는 중요함을 알지 못하니 이것이 어찌 작은 근심이겠습니까?

이미 금년에 시작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비록 도신(道臣)에게 죄주라고 청할 수는 없을지라도 신은 삼가 눈앞이 매우 답답하고 급한 점이 있습니다. 선혜청에 무명을 비축하는 것은 비단 진실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물(貢物)을 나눠주고 다른 물건으로 대신 바치게 한 뒤로는 자연 모든 백성들이 밀천으로 삼는 바가 많으니, 지금 만약 돈으로 대신 지급하게 한다면 또한 몸에 옷을 걸칠 방도도 없으니 실로 마땅히 생각하여 처리해야 할 바입니다.

신의 생각에는 삼남지방 가운데 우심(尤甚) 지역은 특별히 대전(代錢)을 허락하고 그 나머지 여러 읍들은 모두 본색(本色)으로 상납하게 하여 국계(國計 나라의 예산)와 민은(民隱 백성의 고통)으로 하여금 둘 다 마땅함을 얻도록 하게 하는 것이 아마도 좋을 것 같아 감히 이렇게 우러러 진달(陳達)합니다.’ 라 하니, 상(上)이 말씀하시길, ‘진달한 바는 자연 원칙을 지키라는 논의이다. 그렇지만 나는 이미 대전(代錢)을 허락하였는데 어찌 백성들에게 신망을 잃을 수 있겠는가? 윤택하지 않는다.’ 라고 하였다. 거조(擧條) 내의 말씀과 비지(批旨)내의 말씀대로 봉심하여 거행함이 마땅할 일.” 이라고 관문하였다.

이번에 선혜청에서 우러러 본색(本色)으로 상납하길 청한 것은 원칙을 지키는 의논에서 나왔는데, 삼가 비지(批旨)를 받들고 보니 윤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어찌 신망을 잃을 수 있겠는가?’ 라는 성유(聖諭)를 내리기까지 하였다. 훌륭하시다, 왕의 말씀이여! 삼남의 백성을 두텁게 은혜를 베풀어 구조하는 은덕이 갈수록 더욱 지극하여 천지(天地)같이 끝이 없고 하해(河海)같이 헤아릴 수 없으니 오늘 영읍(營邑)의 신하된 자들은 진실로 정중하게 칭송하고 두 손 모아 사례하는 것을 이루 다할 수 없다. 이에 감결을 발송하니 관문 안의 말씀을 진문(眞文)과 언문(諺文)으로 번역하여 베껴 일일이 포유(布諭)<sup>21)</sup>하여 방곡(坊曲)에 게시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모두들 우리 조정의 특별한 은혜가 넉넉하고 도타움이 예나 지금에도 없었던 일임을 알게 함이 마땅할 일.<금산·진산·용담·진안·임실·남원·순창·담양·옥과·창평·동복·화순·금구·태인·광주·능주·곡성·고산·무주·남평·구례>

21) 포유(布諭) : 나라에서 결정하여 행할 일을 백성들에게 널리 알리는 것을 말한다.

初九日. 金溝縣令、光陽縣監, 入見辭去. 南原府使洪錫謨、益山郡守李源吉、長水縣監李啓陽, 來見. 參禮察訪徐承烈, 以南原智異祭大祝, 進叅還官之路, 入見辭去.

9일. 금구 현령 · 광양 현감이 입견하여 하직하고 갔다. 남원 부사 홍석모 · 익산 군수 이원길 · 장수 현감 이계양이 와서 보았다. 삼례 찰방 서승렬이 남원 지리지제(智異祭) 대축(大祝)으로 가서 참여하고 관아로 돌아가는 길에 입견하여 하직하고 갔다.

同日. 因備局關, 以照訖講申飭事, 發廿五十三州, 法聖、古羣山鎮.

【甘結】飭到付備邊司關內, “飭啓下教, 今十二月二十七日, 大臣, 備局堂上, 引見入侍時, 領議政李相璜所啓, 式年試期, 不遠矣, 近來百千萬事, 何事不弊, 而難矯之弊, 莫甚於科擧. 奔競成習, 而廉義無所顧, 奸僞日滋, 而法禁無所施. 如水益下, 莫可挽回, 此豈但士習之不古而然哉? 正坐主司之臣, 不能對揚明命爾, 邦典非不謹密, 朝飭非不申嚴? 而售欺養奸, 弊竇百出, 遂至於蕩無防限. 非曰人人皆然, 而轉相因襲, 恬不知愧, 修飭自好之士, 有材不售, 鑽刺無恥之類, 苟然倖占. 本所以樂育人才, 儲備需用者, 適見其牾喪良心, 斲損國綱, 每經一番科試, 輒失一番人心, 爲主司者, 苟或念及於此, 豈忍爲是哉? 今欲爲採本之政, 莫先於擇試官. 揀選之善否, 在於該書, 此可以臨時奏飭試官. 若又有不能精白者, 則國有典憲, 斷當隨聞科斷. 若其應行條式者, 有舊典, 患不能修明, 不患無法. 今不必別立新規, 最是隨從攔入之弊, 不可不先期痛禁. 臣當記先朝丁巳, 大臣以科弊仰奏, 下教若曰: ‘鄉擧不復, 餘皆無足言’, 且置許多條件, ‘先從借飾章甫縫掖之樣者, 而須加痛革’. 上之所以飭勵, 下之所以獻議, 皆以申嚴照訖之規, 爲先照訖, 卽不過入門錄名之講, 而此而不嚴, 則隨從冒赴之類, 不可禁, 隨從不禁, 則場內淆雜之弊, 不可齊整也. 近聞此弊, 未有甚於去式, 委巷遊手之輩, 率多募取, 各司自隸之賤, 亦或冒入紛還, 蹂躪荊園, 不能容事之駭歎, 莫此爲甚. 苟究其弊, 皆由於照訖不嚴之致. 戊寅, 節目新定, 未幾法綱之解紐, 猶復如此, 今若無別般舉措, 則此飭, 亦終歸於虛文而止. 京而另擇試官, 外而嚴飭守令, 使之申明講規, 毋或如前襍濫. 其先事糾檢之規、隨現考勘之式, 令禮堂就原節目中, 添成條件, 稟啓行會, 臨時亦爲書揭場屋, 俾無冒干憲令、重陷罪戾之弊何如? 上曰: ‘依爲之’事, 傳教教是置. 傳教內辭意奉審施行爲有矣, 近來京外科場之, 蕩然無防限, 莫可收拾, 苟究其所使然之病源, 則壹由於照訖法之壞了無餘, 而又

因主試者之，認以文具，專不致意，至使莫嚴之科規，毀繡乃已者，豈不誠傷歎之甚乎？古則應講者，得免居不然後，始爲錄名給帖，而乃到中間，雖曰應講不知優劣，而盡爲給帖，近則初不應講人皆受帖，而又從而空名踏印，隨求隨應，所謂錄名，便不免虛簿是遣。赴京成冊之自巡營收送於四館所者，亦無照管檢飭之舉，如是而何所顧忌，如是而能不淆雜乎？照訖捧講之規，具在事目，苟能着意考核，斷不濶狹，則一境之內，可堪應舉之人，及閑雜冒濫之類，必無不得辨別之理是旣。空名帖之亦不敢與收，則假托攔入之弊，不期禁而自禁分叱除良。試邑之預爲先接，爭奪作挈之許多悖習亦可息矣。其效若是較然，而爲主試者何憚而不爲乎？赴京成冊之收送於四館所時，自巡營親執考閱，俾無冒錄遺漏之患，而另以收送之意，報于本司，以爲取見憑驗之地是矣。鄉儒之願赴京試者，使之應講受帖於四館所，而毋敢以鄉帖入場者，卽是原節目中條件，而此法如不申明嚴束，則無以揀其弊矣。凡於應講之時，如無公文之憑考於成冊者，則并先爲移送法司，過科後照律是遣，且於入格之後，如無姓名於成冊中，則該儒生拔榜，乃該守令論罪，一依法典施行。而鄉舉子，如以隨從見捉於京試，則考其講帖與成冊，該邑守令亦爲罷，勘當者這這刑配。其到底團束，十分察飭之道，實惟在於道伯，除尋常惕意對揚爲旣，舉行形止，先爲馳啓宜當尙事”關是置有亦。關內諸條，詳審奉行爲乎矣，筵稟行會。若是申嚴，在營邑對揚之道，固當十分惕若是如乎。照訖捧講事目，本自至嚴，而近來科律蕩然，全不致察，或初不應講，而冒受帖文，或空帖踏印，而任其容奸，致使冒濫之隨從，恣意攔入，莫嚴之科場，轉成淆雜，苟究弊源，豈由於捧講之不嚴是如乎。見今試期不遠，設講在卽，必須先捧都目成冊及單子，一一考籍是遣，照訖帖紙，先爲印出，照數置案是如可，及夫入講，能解句讀者，卽地面給帖紙是遣，其臨講不通者，隨卽拔去於都目中爲旣。官屬輩，盜踏空帖，自下售奸之弊，到底照察，嚴加防禁是矣。如是別飭之後，隨從輩，若或盜得空帖，冒禁攔入，現發於入門時，及場內，則實禮吏之嚴刑遠配，且置勿論，不能檢飭之當該邑守令，斷當依啓下行會，以法從事，別加惕念爲旣。捧講都目成冊兩件，卽爲修報，以爲憑考之地宜當者。

같은 날. 비변사의 관문으로 인하여 조흘강(照訖講)<sup>22)</sup>을 신칙(申飭)하는 일로 53주와

22) 조흘강(照訖講) : 과거(科擧)를 보려고 하는 유생(儒生)에게 시험을 보기 전에 먼저 관(官)에서 호적(戶籍)의 대조를 끝내고 『소학(小學)』을 외게 하던 일이다. 이에 합격(合格)한 사람에게 조흘첩(照訖帖)을 주어 과거(科擧)를 보게 했다. 조흘은 대조필(對照畢) 또는 조회필(照會畢)의 뜻이다.

법성, 고군산진(鎭)에 감결을 발송하였다.

【감결】 이번에 받아본 비변사의 관문 내용은, “이번에 계하하신 금년 12월 27일에 대신과 비국당상을 인견(引見)하는데 입시(入侍)한 자리에서 영의정 이상황(李相瓚)이 아뢴, ‘식년시 기한이 멀지 않았는데 근래 백 천 만 가지 일중 어느 일이 폐해가 아니겠습니까마는 폐해를 바로 잡는 일이 어려운 것은 어느 것도 과거(科擧)보다 심한 것이 없습니다. 청탁(淸擧)<sup>23)</sup>이 습속이 되어 영치와 의리는 찾아볼 수 없고 간사함과 속임만 날마다 불어나 법으로 금한 것도 시행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물이 내려갈수록 만회할 수 없는 것 같으니 이것이 어찌 단지 선비들의 풍습이 옛날만 못해서 그럴겠습니까? 단정하게 앉아 일을 주관하는 신하는 임금의 밝은 명령을 크게 드러지 못할 뿐이고, 나라의 법은 삼가 주밀하지 않을 수 없고 조정의 칙령은 거둬 엄하게 하지 않을 수 없는데도 속임수를 행하고 간사함을 키워 폐두(弊竇 폐해의 싹)가 백가지로 나와 결국 방탕함이 한정이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사람마다 모두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돌아가며 돕고 돌아가며 이어받아 태연히 부끄러운 줄을 모르니, 자신을 닦고 삼가기를 본래 좋아하는 선비는 재주가 있어도 세상에 나오려 하지 않고 연줄이나 대는[鑽刺] 영치없는 우리들이 구차하게 요행으로 차지합니다.

본래 인재를 기르기를 즐거워하는 것은 수용(需用)에 대비하여 마련하는 것이거늘, 마침 양심이 없고[牝喪] 국가의 기강이 흐트러져[黜損] 매양 과거시험을 한번 치르고 나면 번번이 한 번의 인심을 잃어버리는 것을 보았으니, 일을 주관하는 자가 되어 만일 혹 생각이 여기에 이르면 어찌 차마 이렇게 하겠습니까? 지금 근본을 바로잡는 정치를 하려면 시관(試官)을 뽑는 것보다 우선함이 없습니다. 선발을 잘 했는지 못했는지를 분간함은 해당 관아에 있으니 이 때문에 얼마 동안 시관을 단속하기를 아뢰입니다. 만약 또 매우 정밀하고 순수한 사람이 있지 않다면 나라에 전범(典範)이 있으니 결단코 마땅히 듣는 대로 과단(科斷)<sup>24)</sup>하소서. 또 응당 거행할 규정(條式)이 구 법전에 있으니 능히 밝게 다스려지지 못함을 걱정하시고 법이 없다는 걱정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 반드시 새로운 규범을 따로 세울 필요는 없지만, 따라오는 자가 함부로 과장에 들어오는 폐단이 가장 크니 기한 전에 단단히 금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23) 분경(奔競) : 금품(金品)이나 연줄, 그 밖의 온갖 방법으로 벼슬자리를 구하는 것을 이른다.

24) 과단(科斷) : 법률(法律)에 비추어서, 죄(罪)를 판정(判定)하는 것을 말한다.



신은 선조(先朝) 정사일(丁巳日)을 당연히 기억합니다. 대신들이 과거의 폐단을 우려러 아뢰니 하교(下敎)하시길, ‘향거(鄉擧)<sup>25</sup>를 회복할 수 없으니, 나머지는 모두 족히 말할 것이 없다.’ 하시고, 또 허다한 규정을 놓아두고 ‘우선 장보(章甫 유생)와 선비[봉액(縫掖)<sup>26</sup>]의 모양만을 빌려 꾸미는 자부터 모름지기 통렬히 바꾸어야 한다.’ 고 하였습니다.

위로는 권면하기를 신척하고 아래로는 의논을 올리게 하여 모두 조훈(照訖)하는 규정을 거듭 엄하게 집행하여야 합니다. 먼저 조훈하는 것은 곧 입문하여 이름을 등록하는 강(講)에 지나지 않는데도 이것을 엄하게 하지 않으면 따르며 시종하는 사람[隨從]과 이름을 속이며 과거에 응시하는 부류들을 막을 수 없으니 수종을 막지 못하면 과장(科場)내가 뒤섞이는 폐해를 가지런히 정리할 수 없습니다.

근래 들건대, 이러한 폐해는 작년 시험보다 심한 때가 없었고, 거리의 놀며 지내는 무리들이 대부분 모이고 각사의 조예(皂隸)<sup>27</sup>의 천한 자들도 또한 함부로 들어와 어지럽게 돌며 과거시험장을 유린하니 인정할 수 없는 일이 놀랍고, 어느 것도 이보다 심할 수 없습니다. 진실로 그 폐해를 규명해보면 모두 조훈이 엄격하지 아니한 소치(所致)에서 말미암았습니다.

무인(戊寅)년에 절목을 새로 정하였는데도 얼마 되지 않아 법의 기강이 풀어져 오히려 다시 이와 같은데 지금 만약 보통과는 다른 거조(擧措)가 없으면 이번 신척은 또한 끝내 헛문구가 되어 버리고 맙니다. 서울은 따로 시관을 간택하시고 지방은 수령을 엄격하게 단속하여 그들로 하여금 조훈강(照訖講)의 규범을 거듭 밝히게 하여 혹여 라도 전과 같이 어수선하고 함부로 함이 없게 하소서.

일에 앞서 규검(糾檢)하는 규칙과 드러난 것에 따라 법으로 상고하고 처벌하는 법식을 예조 당상관으로 하여금 원래 절목 안에다 조목을 첨가하여 만들고 여쭙어 아뢰어 행회(行會)하고 얼마간 또 과장에 써서 게시하여 헌령(憲令)들이 함부로 범하여 거듭 죄를 짓는 폐단이 없게 하심이 어떠하십니까?’ 라고 하니, 주상이 말씀하시길, ‘아뢴 대로 할 일’로 전교(傳敎) 하셨습니다.

전교 내의 말씀을 봉심하여 시행하되 근래 서울과 지방의 과장(科場)이 방탕하

25) 향거(鄉擧) : 주(周)나라의 인재 등용 법으로, 향리에서 재덕(才德) 있는 사람을 조정에 추천하면 조정에서 그 기량에 따라 등용하였다.

26) 봉액(縫掖) : 봉액지의(縫掖之衣)의 준말로, 예전에 선비가 입던 옆이 터진 도포로, 선비를 의미한다.

27) 조예(皂隸) : 관아(官衙)에서 천역(賤役)에 종사(從事)하던 관노(官奴)·사령·마지기·가라치·별배(別陪) 따위를 말한다.

여 자격 있는 자로 과장 입실을 한정하여 출입을 제한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어쨌게도 수습하지 못하니 진실로 그렇게 하게 된 병통의 근원을 규명하면 진실로 조흥법(照訖法)이 여지없이 무너진 데서 말미암았다. 게다가 시험을 주관하는 자가 형식적인 일로 인식하고 오로지 뜻을 다하지 아니하니 막중하게 엄중한 과거(科擧)의 규범이 훼손되고 어그러지고야 마는데 이르게 하여서는 어찌 진실로 근심하고 한탄함이 심하지 않겠는가? 옛날에는 조흥강(照訖講)에 응시한 자는 ‘불(不)’ 등급을 면한 자라야, 비로소 녹명(錄名)<sup>28)</sup>하고 조흥첩(照訖帖)을 주게 하였는데, 오히려 중간에 이르러서는 비록 조흥강에 응시하는 것이 우열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모두 조흥첩을 주게 하여, 근래는 처음부터 조흥강에 응시하지 않은 사람도 모두 조흥첩을 받는다. 또 나아가 공명첩에 도장을 찍어 구하기만 하면 바로 받으니 이른바 ‘녹명’은 곧 쓸모없는 장부를 면치 못한다.

서울로 과거를 보러가는 사람을 성책한 것을 순영(巡營)에서 거두어 사관소(四館所)<sup>29)</sup>에 보내는 경우 또한 대조하여 관리하며 검칙(檢飭)하는 일이 없었다. 이와 같으니 무엇을 염려하고 꺼리며, 이와 같으니 능히 어지럽게 뒤섞이는 것이 아니겠는가? 조흥강을 받는 규칙이 모두 사목에 있으니 진실로 뜻을 두어 상고하고 조사하여 결단코 활협(闊狹 벗어남)하지 않는다면 한 경계의 안에서는 과거를 응시하는 사람을 감당할 수 있고, 한량들과 잡인 같은 함부로 행동하는 부류들에 이르러서는 반드시 가려내야 할 이유가 없지 않다. 공명첩 역시 감히 주고 받지 못하게 하면 구실삼아 난입하는 폐단은 막기를 기약하지 않아도 저절로 없어질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과거를 치르는 읍(邑)에서 미리 접(接 유생 동아리)을 만들면 다투어 형클어지는 많은 나쁜 습속이 그칠 것이다. 그 효과가 이처럼 확실하니 시험을 주관하는 자가 어찌 꺼리며 하지 않겠는가? 서울로 과거를 보러가는 사람을 성책한 것을 사관소(四館所)에 거두어 보낼 때에 순영(巡營)으로부터 직접 고열(考閱)하여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잃어버리고 빠트리는 우환이 없게 하고 특별히 거두어 보내는 뜻을 비변사에 보고하여 견해를 취해보고 이에 근거해 고증할 수 있도록

28) 녹명(錄名) : 점수가 일정 기준에 이른 사람의 성명을 기록하여 응시 자격을 주는 것이다. 과거에 응시하는 유생이 녹명(錄名)하기 전에 소과(小科)는 소학(小學)과 가례(家禮), 대과(大科)는 경국대전과 가례를 임문고강(臨文考講)하여 그 합격자에게 체문(帖文)을 주어서 녹명할 수 있게 한 제도가 바로 조흥(照訖)이다.

29) 사관소(四館所) : 사관(四官)의 관원이 모여서 과거(科擧)를 시행하던 임시 직소이다. 사관(四官)은 성균관(成均館)·예문관(藝文館)·승문원(承文院)·교서관(校書館)의 통칭이다.

록 하라. 다만, 지방 유생가운데 경시(京試)에 가기를 원하는 자는 사관소(四館所)에서 조흘강에 응하여 조흘첩을 받게 하여 감히 향첩(鄕帖)으로 과거장에 들어가 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원절목 가운데의 조건(條件)이며 이 법이 만일 거듭 분명하고 엄격하게 단속되지 않는다면 그 폐해들을 구원할 수 없다.

모두 조흘강을 해야 할 때에 만일 공문(公文) 없이 성책에 근거하여 고증하려면 모두 먼저 법사(法司)<sup>30)</sup>에 이송하여 과거 시험이 지난 뒤에 법률로 대조하고 또 입격(入格)한 뒤에 만일 성책(成冊)가운데 성명이 없으면 해당 유생이 방목(榜目)에서 빠진 것이니 바로 해당 수령을 논죄하고 하나같이 법전에 의거하여 법을 시행하라. 향리의 거자(擧子)가 만일 수종(隨從)으로 경시(京試) 현장에서 붙잡혔다면 조흘첩과 성책을 살펴보고 해당 읍의 수령 또한 파면하고 감당(勘當)한 자들을 하나하나 유배하라. 철저하게 단속하고 충분히 살피고 신칙하는 방법은 실로 도백(道伯)에게 있으니 보통으로 여기지 말고 두려운 생각으로 대양(對揚)하며 거행한 사실 전말을 우선 급히 아뢴이 마땅할 일.” 이라고 관문 하였다.

관문내의 여러 조목을 자세히 살펴 봉행하되 연석(筵席)한 자리에서 아뢴 것을 행회(行會)하는 것을 이와 같이 거듭 엄하게 하는 것은 영읍(營邑)에서 대양(對揚)하는 도리에 달려 있으니 진실로 마땅히 충분히 관심을 기울이라. 조흘강을 받는 규칙은 본래 지엄한데도 근래 과장(科場)의 율법이 방탕하여 전혀 살핌을 다하지 못하고 혹자는 애초 조흘강(照訖講)에 응하지 않고도 멋대로 조흘첩문을 받고, 혹자는 공명첩에 도장을 받아 그러한 간사한 짓을 허용하도록 방임(放任)하고, 버릇없는 수종(隨從)들이 멋대로 난입하게 하여 지엄한 과장이 더욱 혼잡하게 되었으니, 진실로 폐단의 원인을 규명해보면 오직 조흘강(照訖講)을 엄격하게 하지 않는데서 말미암았다.

지금 시험의 기한이 멀지 않아 조흘강을 베풀어 바로 있는데 반드시 모름지기 먼저 도목성책(都目成冊)<sup>31)</sup>과 단자(單子)를 받아 하나하나 장부와 비교하고, 조흘첩지는 먼저 책으로 찍어내 숫자를 조사해 두었다가 조흘강(照訖講)에 들어와 능히 구두를 풀어내는 경우에 이르러서는 그 자리에서 얼굴을 보고 첩지를 내주고 조흘강을 통과하지 못한 자는 바로 도목장(都目狀) 가운데서 빼내라. 관속 무리들이 공명첩지에 도장을 몰래 찍어 아래에서 농간을 부리는 폐단을 철저하게 대조하

30) 법사(法司) : 조선 시대에 형조와 한성부를 아울러 이르던 말이다.

31) 도목성책(都目成冊) : 조흘강을 받은 응시자 전체 명단을 적은 장부를 말한다.

여 살펴 엄하게 금하여 못하게 하라.

이와 같이 특별히 신칙한 뒤에도 수종(隨從)배들이 만약 혹시라도 공명척지를 훔쳐 금법을 무릅쓰고 난입하는 자가 과장문을 들어올 때나 과장 안에서 발견되면, 실무 예리(禮吏)는 형벌을 엄하게 하고 멀리 유배 보내는 것은 내버려 두어 놓을 것도 없고, 잘 검칙하지 못한 해당 읍의 수령은 결단코 마땅히 계하(啓下)를 행회(行會)한 것에 의하여 법에 따라 처단할 것이니 특별히 책념(惕念)하라.

봉강(捧講)<sup>32)</sup>한 도목성책(都目成冊) 두 건은 바로 만들어 보고하여 사실에 근거하여 꼼꼼히 따지는 바탕으로 삼게 함이 마땅할 일.

初十日. 南原府使、益山郡守、長水縣監, 入見辭去. 寶城郡守吳顯佑、海南縣監吳鼎周、雲峯縣監趙存奎、槲樹察訪田栽五, 來見. 前營將沈閔之, 延命後入見.

10일. 남원 부사·익산 군수·장수 현감이 입견하여 하직하고 갔다. 보성 군수 오현우·해남 현감 오정주·운봉 현감 조준규·오수 찰방 전재오가 와서 보았다. 전(前)영장(營將) 심은지(沈閔之)가 연명한 뒤에 입견하였다.

同日. 以貿牟錢執留事報京廳

【報牒】爲牒報事. 前矣到付廳關內 “本道分劃貿牟三萬石價, 三萬六千兩, 以某衙門上納錢, 執留取用” 亦爲有等以. 同各樣上納, 並馱價雜費, 依關辭, 今纔執數停當乙仍于, 邑名·錢數, 秩秩區別, 修成冊上送爲乎旆. 禁御兩營番錢段, 兩營良中, 成冊修報爲去乎, 同番錢到卽, 準數出給爲乎旆, 廳句管上納陳省段, 待各邑齊報, 都封上送計料爲臥乎事.<均役廳>

云云. 本道分劃, 均役廳貿牟三萬石價錢, 因該廳知委, 各樣上納錢執留取用, 而不足之數, 以營句管, 十月當軍錢, 已爲執留乙仍于, 同執留番錢, 一依各邑所報, 區別元納·雜費, 成冊修報爲去乎, 往復均役廳, 卽爲推尋爲只爲.<禁衛營·御營廳.>

같은 날. 보리를 살[貿牟] 돈을 보관하는 일로 경청(京廳)<sup>33)</sup>에 첩보하였다.

32) 봉강(捧講) : 조흘강(照訖講)에 응했음을 확인 받는 것이다.

33) 경청(京廳) : 보통은 선혜청(宣惠廳)을 말하나 여기서는 균역청(均役廳)을 이른다. 선혜청은 조선 시대에 대동미와 대동목, 대동포 따위의 출납을 맡아보던 관아로, 선조41년(1608)에 두었다가, 고종

【보첩】 첩보하는 일. 전에 받아본 균역청의 관문 내용은, “본도에 할당된 무모(貿牟) 3만 섬의 가격 3만 6천 냥은 어느 관청의 상납전을 보관해 두었다가 가져다 써라.” 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각종의 상납(上納)에 모든 짐삿과 잡비는 관문의 내용에 의거하여, 이제 겨우 보관하고 있는 수치가 합당하므로 음명과 돈의 수량을 가지런히 구별하여 장부를 만들어 위로 보냅니다.

금어(禁御)<sup>34</sup> 두 영(營)의 번전(番錢)<sup>35</sup>은 두 영에 장부를 만들어 보고하고, 동 번전이 도착하는 즉시 수대로[準數] 내주고 균역청이 맡아 관장하는[句管] 상납(上納) 보고서[陳省]<sup>36</sup>는 각 읍에서 일제히 보고하기를 기다려 모두 장계를 써서 올려 보낼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균역청>

운운. 전라도에 할당한 균역청의 무모(貿牟) 3만 섬의 가격을 균역청에 알린 것으로 인하여 각양의 상납한 돈을 보관해 두었다가 가져다 쓰고 부족한 셈은 감영이 관할하는 10월에 해당하는 군전(軍錢)을 이미 보관하고 있음에 따라 이 보관하고 있는 번전(番錢)을 한결같이 각 읍이 보고한 것에 의하여 원납(元納)과 잡비를 구별하여 책을 만들어 보고 하니 균역청에 문서를 주고받아 즉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금위영·어영청>

同日. 以飢戶接濟事, 發關長水、益山.

【關文】 爲相考事. 本邑以尤甚災邑, 今已歲開飢戶接濟之方, 何以經紀是諭? 亦自營門, 不可無調恤之道, 故米一百石詳定價三百兩區劃, 後錄發關爲去乎, 眞水荏、藥材保錢等段, 勿爲來納營門是遣, 一百四十八兩段, 枚移茂朱府, 卽爲受來, 添入作穀後, 成冊卽速報來宜當向事.<長水>

錢七十兩, 眞水荏墨、法油、黃蜜等, 營門上下本價米, 及民庫上下添價等條, 錢八十二兩, 營門納春等藥材保錢, 一百四十八兩, 枚移茂朱府, 受來次, 合錢三百兩.

云云. 本邑以之次災邑, 今已歲開, 飢戶接濟之方, 何以經紀是諭? 亦自營門不可無調恤之

31년(1894)에 없었으며, 혜청(惠廳)이라고도 한다. 균역청은 균역법의 실시에 따른 모든 사무를 맡아 보던 관아로, 영조26년(1750)에 균역절목청을 설치하여 다음 해 9월 균역법을 실시하면서 정식 관아가 되었으며, 29년(1753)에 선혜청에 흡수·통합되었고 균청(均廳)이라고도 한다.

34) 금어(禁御) : 금위영(禁衛營)·어영청(御營廳)을 이른다.

35) 번전(番錢) : 번(番)을 서야 할 군사가 번을 서지 않고 그 대신 바치던 돈을 말한다.

36) 진성(陳省) : 진성장(陳省狀)의 준말로, 지방(地方)에서 중앙(中央)에 올리는 각종(各種) 보고서(報告書), 또는 그 물목(物目)을 말한다. 같은 말 신성장(申省狀).

道, 故錢一百二十兩區劃, 後錄發關爲去乎. 折作皮穀後, 成冊卽爲修報宜當尙事.<益山>  
 錢四十九兩二錢五分, 謝恩使求請條. 錢六十八兩, 營門納春等藥材保錢. 二兩七錢五分,  
 自營門下送, 合錢一百二十兩.

같은 날. 굽주리는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로 장수와 익산에 관문을 발송하였다.

【관문】 상고할 일. 장수(長水)는 우심(尤甚)의 재해(災害)을 입은 읍으로 지금 이미 새해가 시작되었는데, 굽주리는 집을 진휼(賑恤)하는 방도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또한 감영으로부터도 주휼(賙恤)하는 방도가 없을 수 없기 때문에 쌀 1백 섬을 상정한 가격인 3백 냥을 구획(區劃)하여 후록하고 관문을 발송한다.

참기름[眞水荏], 약재(藥材)의 보인(保人)<sup>37)</sup>들이 바치는 돈[保錢] 등은 감영에 와서 납부하게 하지 말고 1백4십8냥은 무주부에 공문(公文)서를 주고받아 바로 받아가서 작곡(作穀)<sup>38)</sup>에 보태어 넣은 뒤 성책하여 빨리 보고함이 마땅할 일.<장수>

돈 70냥은 검은 참깨 기름[眞水荏墨] · 들기름[法油] · 황밀(黃蜜) 등 감영에서 지급하는 본가미(本價米) 몫 및 민고(民庫)<sup>39)</sup>에서 지급하는 추가 값[添價] 돈 80냥, 감영이 봄철에 거둬들일 약재(藥材) 보인의 돈 1백4십8냥을 무주부에 공문을 보내 받아오면 합이 3백 냥 돈이다.

운운 익산(益山)은 지차(之次)의 재해(災害)를 입은 읍으로 지금 이미 새해가 시작되었는데, 굽주리는 집을 구제하는 방도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또한 감영으로부터 주휼하는 방도가 없을 수 없기 때문에 돈 1백2십 냥을 구획(區劃)하여 후록하고 관문을 발송한다. 따라서 피곡(皮穀)으로 바꾼 뒤 장부를 만들어 즉시 보고함이 마땅할 일.<익산>

돈 4십9냥 2전 5푼은 사은사(謝恩使)가 청구한 몫. 돈 6십8냥은 감영이 봄철에 거둬들일 약재 보인(保人)의 돈. 2냥 7전 5푼은 감영으로부터 내려 보내는 돈. 도합 돈 1백2십 냥.

37) 보인(保人) : 군보(軍保)에 든 사람으로 보포(保布), 보미(保米)를 낼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군보는 조선 시대 정병(正兵)을 돕기 위해 둔 조정(助丁)으로, 원래는 병역 의무를 면제받는 대신 현역병의 농작(農作)에 노동력을 제공하도록 했으나, 후에는 쌀과 포목을 받았다.

38) 작곡(作穀) : 돈을 곡식(穀食)으로 환산(換算)하는 것을 말한다.

39) 민고(民庫) : 조선 시대에 관아의 임시비용으로 쓰기 위하여 해마다 군민(郡民)으로부터 거둔 곡식, 돈 따위를 보관하던 창고를 말한다.

同日. 以作錢中一百四十八兩出給長水縣事, 發關茂朱府.

【關文】爲相考事. 本邑作錢中一百四十八兩, 待長水縣枚移, 卽爲出給是遣, 餘數段, 火速上使宜當向事.

같은 날. 작전(作錢)<sup>40)</sup> 가운데 1백 4십 8냥을 장수현에 내주는 일로 관문을 무주부에 발송하였다.

【관문】상고할 일. 무주부 작전(作錢) 가운데 1백 4십 8냥은 장수현이 공문하기를 기다려 바로 내어 주고, 나머지 수효는 속히 감영으로 올림이 마땅할 일.

---

40) 작전(作錢) : 다른 물종을 돈으로 바꾸어 놓거나 바꾸어 내게 하는 것, 또는 낸 것을 말한다.





## 2. 1834년(순조34) 1월 11~20일 : 수령칠사(守令七事) 장계를 올리다

十一日. 朔膳進上監封. 寶城郡守、海南縣監、雲峯縣監、契樹察訪、前 營將, 并入見辭去. 長興府使申在翼、興陽縣監尹守鳳, 來見. 慶尙道金山郡守李和愚, 以昌平縣令移拜, 赴任之路, 來見辭去.

11일. 삭선(朔膳)할 진상품을 감봉(監封)하였다. 보성 군수·해남 현감·운봉 현감·오수 찰방·전(前) 영장(營將) 등이 모두 입견하여 하직하고 갔다. 장흥 부사 신재익·흥양 현감 윤수봉이 와서 보았다. 경상도 금산 군수 이화우(李和愚)가 장평 현령으로 이배(移排)되어 부임 가는 길에 와서 보고 하직하고 갔다.

同日. 以勸農有旨內辭意, 發甘五十三州、法聖、古羣山、濟州.

【甘結】 筋祗受有旨內, 王若曰: “是日卽月正元日也, 顧今艱虞溢目, 百度解紐, 豈無可警可飭之事? 而予則曰: 課勸農功最爲目下急務, 盖農者不可緩也. 無農則無食, 無食則無民, 無食無民, 且將無國. 予小子, 夙宵憂遑, 恤恤乎稼穡之孔艱, 惶惶乎雨暘之時若, 耿然一念, 罔敢自安. 而旱澇爲害, 仍歲告歉, 蕩析之苦, 顛連之患, 將不能聊生, 惟彼赤子, 何嘗獲罪於天哉? 職由涼德淺誠, 未能上格仁昊, 致此災荒. 靜言以思, 寧不慄然而悚, 赧然而愧哉? 再昨年, 三道被災, 可謂孔酷. 而至於昨秋失稔, 雖緣雨水之愆, 宜實由人功之不逮, 苟能耕耨及時, 播種如期, 則庶或有望於少康, 奈之何纔經歉歲, 民無固志, 爲字牧者, 亦不能殫心董勵, 遂至於荐饑? 而亦惟曰: ‘非我也, 歲也’, 是何異於不食而望其自飽乎? 雖在屢豐之餘, 興作之節, 固不可虛徐. 若於今年又復惰怠失時, 則非直無秋, 必將盡劉, 豈不大可懼哉? 咨爾八道四都方伯、守臣、暨列邑守宰之臣, 咸聽予言, 各盡乃心, 先自于耜, 不奪不撓, 或省或助. 溝洫之壅闕者, 疏而濬之, 菑畚之陳廢者, 闢而易之, 以豫以時克盡事功. 而凡民之貧而不能致力, 怠而不肯服勤者, 爲守宰者, 賙恤而導率之. 爲守宰而或忽於勸相勞叙之方者, 考課黜陟, 有方伯存焉, 其各勉諸. 嗚呼! 願豐之心, 何歲不切? 而有民有國, 豈係於今秋之大有. 予言至此, 豈惟守土之臣, 惕然警省, 一心對揚? 亦惟我八路之民, 想有以知予至意, 予不多誥.” 事有旨教是置有亦, 茲當履新之初, 誕降勸農之綸, 懂懂一念, 元元是恤, 十行辭旨, 若是諄復, 其在分憂字牧之任者, 敢不殫誠竭力, 思所

以一分對揚之道哉? 大抵服田力穡, 雖曰農夫之事, 勸功興怠乃是長吏之責, 見今陽春, 載敷東作, 伊始必須發倉助糧, 勸隣借器, 趁時耕播, 勿愆鋤耘. 至若陳地, 則到底起墾, 毋或荒廢. 堤堰則另加疏鑿, 預爲貯蓄, 諸般課農之節, 毋或弛忽, 着意奉行, 期報康功爲乎矣. 有旨內辭緣, 詳細布諭, 眞諺翻騰, 揭付防曲, 俾愚夫愚婦, 咸知朝家憂民重農之盛德至意爲旒, 舉行形止, 亦卽馳報宜當者.

같은 날. 권농유지(勸農有旨)<sup>41)</sup> 안의 말씀으로 53주와 법성진·고군산진·제주에 감결을 발송하였다.

【감결】 이번에 공경히 받은 유지(有旨) 안에, 임금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정월 초하루이다. 돌아보건대 지금 어렵고 근심스러운 일이 목전에 가득한데 온갖 법률과 제도가 쇠퇴하고 기율이 무너졌으니 어찌 경계하고 삼갈 일이 없겠는가? 그러므로 나는 말한다. 농공(農功)을 권장하는 것이 지금의 가장 시급한 일이니 농사짓는 일은 늦추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 농사를 짓지 않으면 먹을 것이 없고, 먹을 것이 없으면 백성이 없다. 또 나아가 나라도 없다. 나 소자(小子)는 아침부터 밤까지 근심하고 두려워하며 농사가 매우 어려움을 근심하고 날씨가 시기에 맞는지 어찌할 바를 모르며 걱정스러운 일념으로 감히 스스로 편안할 수 없었다. 가뭄과 흉수가 재해가 되어 1년 농사는 흉년을 고하고 파산(破産)하고 유리(流離)하는 괴로움과 어찌할 수 없는 근심으로 장차 살아갈 길이 없으니 저 백성들이 어찌 일찍이 하늘에 죄를 지었겠는가? 오직 내가 박덕하고 정성이 부족한 것으로 말미암아 위로 하늘을 감동시키지 못하여 이러한 흉년의 재앙에 이르게 되었다. 조용히 생각할 때 어찌 능연(慄然)히 두렵고 난연(赧然)히 부끄럽지 않겠는가? 재작년 삼도(三道)가 입은 재앙은 매우 심하다고 이를 만하다. 작년 가을에 흉년이 든 것은 비록 비가 오지 않은 것에 연유한다 할지라도 실은 인력이 미치지 못한데서 연유함이 당연하다. 진실로 때에 이르러 논을 갈고 기한에 맞게 파종했다면 거의 평작[小康]은 바라볼 수 있었는데 어찌하여 흉년을 막 겪고 나서 백성들은 굶은 의지가 없고 수령이 된 자들 또한 마음을 다하여 독촉하고 권면하지 아

41) 권농유지(勸農有旨) : 농사를 장려하는 유지(有旨)이다. 유지란 승정원의 담당 승지가 왕명을 받아, 전교(傳敎), 운음(綸音), 비답(批答) 등을 서사(書寫)하여 문건으로 만들어 전달하는 왕명서(王命書)이다. 내각(內閣)의 각신(閣臣)들도 일부 그 일을 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유지 안에 전교나 운음 등의 내용이 실린 경우도 있고, 전교나 운음 등을 내려 보낸다는 왕의 말만 실리고 그 전교나 운음 등은 별도로 보내는 경우도 있었다.

니하여 결국 흉년이 거듭 들음에 이르게 하였는가? 물으면, ‘나 때문이 아니라 농사 때문입니다’ 라고 하니, 이것은 먹지 않고도 저절로 배가 부르기를 바라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비록 여러 번 풍년이 든 끝일지라도 부역공사[興作]는 진실로 헛되이 하고 늦추어서는 안 된다. 만약 금년에 또 다시 게을리 하여 시기를 잃는다면 단지 가을이 없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다 죽일 것이니 어찌 매우 두려운 일이 아니겠는가? 너희 팔도 사도(八道四都)의 방백(方伯)·수신(守臣) 및 열읍(列邑) 수재(守宰)의 신하들은 모두 나의 말을 듣고 각자 너의 마음을 다하여 먼저 전답을 갈 때부터 농사철을 빼앗지 말고 흔들림 없게 하며 혹은 살펴보고 혹은 도와 주도록 하라.

도량이 막힌 것은 소통시켜 물을 저축하고 묵은 전답이나 새밭[菑畝]같은 오래된 것은 개간하여 흙을 바꿔주어 미리 준비하고 때에 맞춰 일을 극진히 하라. 무릇 백성이 가난하여 힘을 쓰지 못하거나 게을러 기꺼이 힘쓰는 일을 하지 않는 자는 수재(守宰) 되는 자가 구휼하여 인도해 이끌도록 하라. 수재가 되어서도 혹시라도 서로 권면하고 수고로움을 펴가는 방도에 소홀하는 자는 고과(考課)하여 출척(黜陟)함이 방백에게 있으니 각자 힘쓰도록 하라.

아! 풍년을 원하는 마음이 어느 세월엔 절실하지 않았겠는가마는 백성이 있고 나라가 있는 것은 진실로 올 가을의 풍년에 달려있다. 나의 말이 여기에 이르렀으니 어찌 수령만이 두려운 마음으로 경계하고 살피며 한결같은 마음으로 조정의 명을 드날릴 뿐이겠는가? 역시 우리 8도의 백성들도 나의 지극한 뜻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여 나는 많은 말을 하지 않는다.” 는 내용으로 유지(有旨)하시었다.

이에 새해의 첫날을 맞이하여 권농의 율음을 널리 내려 안타까워하는 오롯한 생각으로 백성들을 구휼하는 십행(十行)<sup>42)</sup>의 말씀이 이와 같이 간곡하게 반복하시니 오직 남의 근심을 나누는 목민관에 있는 자들이 감히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조금이라도 대양(對揚)하는 방도를 생각하지 않겠는가?

대저 밭에서 일하고 농사일에 전력하는 것이 비로 농부의 일이라고 할지라도 일을 권면하고 안락함을 일으키는 것은 바로 수령[長吏]의 책임이니 지금 봄철에 바야흐로 동작(東作)<sup>43)</sup>을 펴는 일은 이렇게 비로소 모름지기 창고를 열어 식량을

42) 십행(十行) : 수적(手迹)으로 나라에서 내리는 문서는 일찰십행(一札十行)으로 모두 10행으로 쓰기 때문에 나온 말이다. 곧 율음이나 교서(敎書) 따위의 나라에서 내리는 글을 말한다.

43) 동작(東作) : 봄철에 농사를 짓는다는 의미이다. 동작서수(東作西收) 또는 동작서성(東作西成)은 봄

도와주고 이웃을 권면하여 기구(器具)를 빌려 때에 맞춰 밭 갈고 파종하기를 기필(期必)하고 김매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묵힌 땅의 경우는 철저하게 개간을 하여 흑시라도 황폐함이 없게 하고 방죽 독은 특별히 뚫어 통하게[疏鑿]하고 미리 물을 담아 모아놓고 제반 농사에 필요한 과정의 절차를 흑시라도 해이하고 소홀히 하지 말고 착실히 봉행하여 강공(康功)<sup>44)</sup>의 보고를 기대한다.

유지(有旨)의 말씀을 자세하게 반포하여 깨우치고 한문과 언문(諺文)으로 번역하여 베풀어 방곡에 걸어 붙여 백성들로 하여금 조정이 백성을 걱정하고 농업을 중시하는 성덕(盛德)의 지극한 뜻을 모두 알게 하며 거행한 사실의 전말을 즉시 알림이 마땅할 일.

十二<sup>45)</sup>日. 長興府使, 入見辭去. 沃溝縣監金秀萬, 來見辭去. 中營將入見. 珍島郡守閔致鳳、扶安縣監趙在慶來見.

12일. 장흥 부사가 입견하여 하직하고 갔다. 옥구 현감 김수만이 와서 보고 하직하고 갔다. 중영장이 입견하였다. 진도 군수 민치봉·부안 현감 조재경이 와서 보았다.

同日. 封發濟州牧去秋冬等褒貶啓.

【狀啓】道內濟州三邑守令、萬戶山馬監牧官、審藥、檢律等, 去癸巳年秋冬等褒貶等第, 今纔出來乙仍于, 一依同州牧使韓應浩牒呈, 開坐以聞. 而教授段本州判官兼帶, 訓導段年久未差是如爲白乎等以. 緣由并以馳啓爲白臥乎事.

같은 날. 제주목의 지난 추동등(秋冬等) 포폄 장계를 봉하여 발송하였다.

【장계】도내 제주도 3개 읍의 수령·만호산마감목관·심약·검률 등의 지난 기사년(1833) 추동등 포폄등제(褒貶等第)<sup>46)</sup>가 지금 막 나옴에 따라 모두 제주 목사

철에 농사짓고 가을철에 거둬들임의 뜻이다.

44) 강공(康功) : 백성을 편안케 하는 정사를 말하는데, 『서경(書經)』 「무일(無逸)」에 “문왕이 허름한 옷을 입고서 백성을 편안케 하고 길러 주는 일을 행하였다.[文王卑服, 卽康功田功]” 하였다.

45) 十二 : 원문은 ‘十一’로 되어 있는데 ‘十二’의 오기(誤記)로 보아 바로 잡았다. 만일 원문대로 ‘十一’이라면 ‘同日’로 되어야 한다. 또 12일 내용으로 추정되는 ‘同日’로 된 기사가 3건 있고, 12일이 빠진 채 바로 ‘十三日’ 기사가 나오는 것이 된다.

46) 포폄등제(褒貶等第) : 조선 시대에 관리들의 근무 성적을 조사하여 잘잘못으로 등급을 매기던 일을 말한다.

한응호의 첩정에 의거 개좌(開坐 자세하게 조목조목)하여 아립니다. 교수(教授)<sup>47)</sup>는 제주의 판관이 겸임하고 훈도(訓導)<sup>48)</sup>는 해가 오래되도록 아직 차출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연유를 아울러 치계(馳啓) 하옵는 일.

同日. 封柚子薦新啓.

【狀啓】濟州所封去十一月令柚子五箇，今始出來乙仍于，今正月十二日，薦新于肇慶廟爲白乎旆。緣由馳啓爲白臥乎事。

같은 날. 유자를 천신(薦新)한 장계를 써서 봉하였다.

【장계】제주도에서 밀봉하여 올린 지난 11월령(月令)<sup>49)</sup> 유자 5개를 지금 비로소 내어다 금년 1월 12일 조경묘에 천신하였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치계(馳啓) 하옵는 일.

同日. 題龍安縣檢案.<被告林秀淵，杖打吳德長，第六日致死事。初檢官龍安縣監林貞鎮，覆檢官臨陂縣令李宜翼.>

【題】屍帳捧上是在果。觀乎脉錄，而兩腿之杖痕莫掩，參以詞證，而衆招之立証，歸一是隱則，杖數之二十三十，何異百步五十之間是乙喻? 部分雖係漫膚，血蔭雖云不深是乃，死者致死，謂之因杖，則杖有眞贓，謂之因病，則病無的證是如乎。犯者染疾、添症之招，不過粧撰掉脫之計。屍親素患胸腹之云，亦是追後摸索之言是置。今此實因懸錄之，必添病患二字，有何明的之證是隱喻? 假令眞定添病是良置，杖前無病，杖後添病是隱則，初檢案所謂非杖則不病，非病則不死云者，允爲實際語是乎所。屍體段卽爲出給，埋瘞爲旆。林秀淵之於吳德長，本是儕類之間，初無等威之分是去乙，欺他貧弱，視如奴隸，坐在廳上，捉致階下，指使呼譽，恣用桁揚，殆若官府之鞫囚然，此何吏習? 此何悖舉? 縱令吳德長不死，似此無嚴頑濫之類，決不可使之生出獄門。兩檢官，仍定同推官爲去乎，約日會坐。同林秀淵身乙，箇箇考察，嚴訊捧直招，牒報爲旆。金公金段，縱云爲人所使，在渠本無私憤，有何戕害之心? 竟致殺越之變，一體考察，嚴刑捧直招，報來爲旆。金才平段，典奪衣服一款，卽是此獄緊證，而有何隱情，

47) 교수(教授) : 조선 시대에 지방 유생(儒生)의 교육을 맡아보던 종육품 벼슬로, 향교(鄕校)의 학생을 지도하기 위하여 부(府)와 목(牧)에 두었다.

48) 훈도(訓導) : 조선 시대에 한양의 사학(四學)과 지방의 향교에서 교육을 맡아보던 직책이다. 사학의 훈도는 성균관의 관원들이 겸임하였다.

49) 월령(月令) : 농가나 국가의 정례적인 연간 행사를 월별로 구별하여 기록한 표를 말한다.

始終掩諱是隱喻? 更加嚴刑究問, 牒報爲<sub>跡</sub>. 金啓淳<sub>段</sub>, 愆愆緩獄, 有關後弊, 嚴刑一次, 懲勵放送, 餘外各人<sub>等段</sub>, 別無更問之端, 一併放送爲<sub>跡</sub>. 檢驗文字何等審慎, 而覆檢案洞長金啓淳問目中, 究其心術不可之下, 脫一但字, 詞連李應老問目中, 諸吏之下, 又脫二三字, 舉行刑吏, 爲先附過<sub>事</sub>, 初檢官<sub>良中</sub>, 枚移施行<sub>向事</sub>.

같은 날. 용안현 검안을 데김하였다.<피고 임수연(林秀淵)이 몽둥이로 오덕장(吳德長)을 때려 6일 만에 죽은 일. 초검시관은 용안 현감 임정진, 복검시관은 임피 현령 이의익.>

【데김】 시장(屍帳)을 받아 보았다. 검시(檢屍)기록을 보면 양 대퇴부를 몽둥이에 맞은 흔적을 가릴 수 없고 증언으로 참고하고 여러 공초가운데 증거로 삼은 것들이 똑같이 귀결된즉 몽둥이로 친 횡수가 20대이건 30대이건 오십보백보인데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맞은 부분이 비록 넓고 크게 이어져있고 피로 덮인 것이 비록 심하지 않다고 말할지라도 죽은 자가 죽음에 이른 것이 몽둥이 때문이라고 말한다면 몽둥이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숨겨진 흔적[眞贓]이 있고 병 때문이라고 말한다면 병은 정확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죄를 지은 자가 전염병[染疾]이나 병이 겹친 때문이라고 하는 진술은 꾸며 지어내 요리조리 벗어나려는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

시친(屍親)이 가슴과 배를 평소 앓았다고 말하는 것 또한 추후에 이리저리 둘러댄 말이다. 지금 이렇게 실인으로 기록한 것이 반드시 ‘병환(病患)’ 두 자를 첨가한 것은 어떤 명확한 증거가 있는가? 가령 진실로 ‘병’이 심해졌을지라도 몽둥이질을 하기 전에는 병이 없다가 몽둥이질을 한 뒤에 병이 심해 졌으니, 초검시관이 이른바 ‘몽둥이질’이 아니었다면 병나지 아니하였고 병나지 않았다면 죽지 않았다고 말한 것은 진실로 실제적인 말이 된다.

시체는 즉시 내주어 묻게 하며 임수연은 오덕장(吳德長)에 대하여 본래 동료간이어서 처음에 등위(等威 위계질서)의 구분이 없었거늘 그렇게 빈약한 사람을 속이고 노예와 같이 보며 대청 위에 앉아서 섬돌아래 잡아다 지시하며 부리고 호통치며 멧대로 차교[拑揚]를 사용하여 자못 관부의 중죄인[鞫囚] 대하듯하니 이것이 어찌 관리의 관습이며 이것이 얼마나 패륜(悖倫)적인 일인가? 비록 오덕장이 죽게 하진 않았을지라도 이와 같이 무엄하고 완악하며 함부로 하는 무리들과 비슷하니 결단코 그들이 옥문을 살아서 나가게 해서는 안 된다. 양 검시관을 그대로 동추관

으로 정하니 날을 정해 합동 심문[會坐]하라. 동(同) 임수연의 몸을 개개고찰(箇箇考察)하여 엄히 물어 사실대로 진술을 받아 첩보하라.

김공금(金公金)은 비록 남의 심부름을 한 것으로 죽은 사람에게는 본래 사적인 분노가 없으니 어찌 죽여 해치려는 마음이 있었겠는가? 라고 말할지라도, 결국은 살인의 변고에 이르렀으니 일체(一體)를 고찰하여 엄하게 형신하여 사실대로 진술을 받아 보고하라. 김재평(金才平)이 옷을 뺏었다[典奪]는 한 항목은 곧 이 옥사의 긴급(緊要)한 증거인데 무슨 숨기는 사정이 있어 시종 엄폐(掩蔽)하는가? 다시 엄하게 형신을 하여 끝까지 물어 첩보하라. 김계순(金啓淳)의 경우는 옥사를 느슨하게 하라고 권하여 뒷날의 폐단과 관계가 있으니 엄히 1차 형신하고 징계 권면하여 내보내고 나머지 각인들은 별도로 다시 물은 단서가 없으니 모두 석방하라.

검험(檢驗)<sup>50)</sup> 문자(文字)는 무엇보다도 신중히 해야 하거늘 복검안의 동장(洞長) 김계순(金啓淳)의 문목(問目) 가운데 ‘究其心術不可’ 아래 ‘但’ 1자를 빠트렸고 사연(詞連) 공초의 말에 연관됨) 이응노(李應老)의 문목 가운데 ‘諸吏’ 글자 아래 2,3자를 빠트렸으니 거행한 형리는 우선 부과(附過)하는 일을 초검시관에게 공문(公文)을 보내 시행할 일.

十三日. 珍島郡守入見. 判官移拜黃牧, 將欲十六日離發, 故爲其餞行, 設大風樂於宣化堂. 珍島郡守、扶安縣監, 同爲來會, 移時撤去, 扶安縣監, 仍爲辭去. 礪山府使許嘯、青巖察訪李東韻來見.

13일. 진도 군수가 입견하였다. 전주부 판관이 황주 목사(黃州牧使)로 이배(移排)되어 16일에 떠나고자 하였다. 그러므로 전별연(餞別宴)을 위해 선화당에서 대풍악(大風樂)을 베풀었다. 진도 군수·부안 현감이 함께 와서 모였다가 잠시 뒤 물러갈 때 부안 현감은 그대로 하직하고 갔다. 여산 부사 허속·청엄 찰방 이동운이 와서 보았다.

同日. 以賑飢穀物區劃事, 發關珍島郡.

【關文】爲相考事. 本邑卽已抄飢賑饋, 所入穀物何以經紀是隱喻? 亦自營門不可無賙恤之道, 故錢四百兩以康津縣儲留條區劃發關爲去乎, 卽速枚移受來, 並與本邑捧留牟

50) 검험(檢驗) : 살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 형조(刑曹)의 검시관(檢官)이 현장에서 피해자의 시체를 검사하고 사망 원인을 밝혀 검안서를 쓰던 일을 말한다.

還加執錢三十三兩零，湊合作穀後，成冊修報，宜當尙事。

같은 날. 기근자(饑饉者)를 구휼하는 곡물을 구획(區劃)하는 일로 진도군에 관문을 발송하였다.

【관문】 상고할 일. 진도군은 이미 기민(饑民) 진휼에 들어갈 곡물을 파악하였는데, 들어갈 곡물을 어떻게 마련하는가? 감영으로부터도 주휼(賙恤)하는 방도가 없을 수 없기 때문에 돈 4백 냥을 강진현이 저류(儲留 저축하여 모아둠)한 항목에서 갈라주라는 것으로 관문을 보냈으니 즉시 빨리 공문(公文)을 보내 받아오고, 아울러 진도군이 거두어 보관하고 있는 모환(牟還)<sup>51)</sup>할 때 가집(加執)한 돈 3십3냥을 강진현에서 받아온 4백 냥과 합쳐서[湊合] 곡물로 만든 뒤에 장부를 만들고 정리하여 아람이 마땅할 일.

同日. 以康津縣捧留牟還加執查徵錢中四百兩，出給珍島郡事，發關該縣。

【關文】 爲相考事. 同縣捧留是在牟還加執查徵錢中四百兩，待珍島郡枚移，卽速出給，形止牒報宜當尙事。

같은 날. 강진현에서 거둬 보유하고 있는 모환(牟還)할 때 가집(加執)한 것을 조사하여 징수[查徵]한 돈 가운데 4백 냥을 진도군에 내주는 일로 강진현에 관문을 발송하였다.

【관문】 상고할 일. 강진현에서 거둬 보유하고 있는 모환(牟還) 시에 가집(加執)한 것을 조사하여 징수한 돈 가운데 4백 냥을 진도군의 공문을 기다려 즉시 내주고 사실의 전말을 첩보함이 마땅할 일.

十四日. 礪山府使、珍島郡守、靑巖察訪，入見辭去. 興德縣監崔允瑾，赴任之路，延命後入見辭去. 鎭安縣監趙然明，赴任之路，延命後入見。

14일. 여산 부사·진도 군수·청엄 찰방이 입견하여 하직하고 갔다. 흥덕 현감 최윤근이 부임하는 길에 연명(延命)한 뒤에 입견하여 하직하고 갔다. 진안 현감 조연명이 부임하는 길에 연명(延命)한 뒤에 입견하였다.

51) 모환(牟還) : 모맥 환상(牟麥還上)으로 보리를 환곡하는 일을 말한다.



十五日. 開東詣客舍, 行望闕禮. 中軍、中營將、鎭安縣監、檢律, 同爲進參. 還營軒, 判官、中營將入見. 鎭安縣監入見辭去. 求禮縣監李教益, 赴任之路, 延命後入見, 仍爲辭去. 金堤郡守李玄好、泰仁縣監沈能淑來見.

15일. 먼동이 트자 객사에 도착하여 망궐례를 행하였다. 중군·중영장·진안 현감·검찰이 함께 진참(進參)하였다. 영현으로 돌아와 판관·중영장이 입견하였다. 진안 현감이 입견하여 하직하고 갔다. 구례 현감 이교익이 부임하는 길에 연명(延命)한 뒤에 입견하여 그대로 하직하고 갔다. 김제 군수 이현호·태인 현감 심능숙이 와서 보았다.

十六日. 金堤郡守、泰仁縣監入見. 判官赴去黃州, 是日發行, 入見辭去. 金堤郡守、泰仁縣監, 又爲入見.

16일. 김제 군수·태인 현감이 입견하였다. 판관이 황주에 부임하러 가는데 오늘 떠나며 입견하여 하직하고 갔다. 김제 군수·태인 현감이 또 입견하였다.

同日. 封年終七事啓.

【狀啓】道內各邑鎭驛, 去癸巳年終, 應行七事開錄成冊, 兩件上送于吏曹爲白在果. 靈巖郡守李重榮、昌平縣令權涑、咸悅縣監金炳斗、求禮縣監李教益、谷城縣監李鍾稷、興德縣監崔允瑾、鎭安縣監趙然明, 當年內, 未及赴任是白乎等以, 不爲舉論爲白乎旡. 楮竹桑柒種養之節, 依節目另飭列邑, 使之着意舉行. 庫數株數成冊, 亦爲上送該曹, 緣由并以謹具啓聞.

같은 날. 지난 계사(癸巳)년 말의 칠사(七事)<sup>52)</sup>를 장계를 써서 봉하였다.

【장계】도내 각 읍(邑)·진(鎭)·역(驛)은 지난 계사년(1833)이 끝남에 마땅히 실행해야하는 칠사를 낱낱이 적어 성책(成冊)하여 2건을 이조(吏曹)에 올려 보냅니다.

영암 군수 이중영·창평 현령 권속·함열 현감 김병두·구례 현감 이교익·곡성 현감 이종직·흥덕 현감 최윤근·진안 현감 조연명은 당해년에 미처 부임하지 않

52) 칠사(七事) : 수령(守令)의 전최(殿最)에 평가 기준이 되던 일곱 가지 일로, 농상(農桑)이 성(盛)한가, 호구(戶口)가 불었는가, 학교(學校)가 흥(興)한가, 군정(軍政)을 닦았는가, 부역(賦役)이 고른가, 사송(詞訟)이 간결한가, 간활(奸猾)이 끊어졌는가 등의 일곱 조항을 말한다.(『經國大典』「吏典」考課條)

왔던 연유로 거론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닥나무·대나무·뽕나무·옻나무를 심어 배양하는 절기는 절목에 의거하여 따로 열읍(列邑)에 신칙하여 착실히 이행하게 하였습니다.

창고 수량과 묘목의 수량은 성책(成冊)하여 또한 해당 관아에 올려 보냈었기에 이런 연유로 아울러 삼가 갖추어 아립니다.

同日. 封老人歲饌題給啓.

【狀啓】前矣到付禮曹啓下關內乙用良, 堂上官及妻年七十以上, 曾經實職人及妻年八十以上, 今年正朝歲饌分給, 成冊修報之意, 前期發關知委於各邑爲白有如乎. 羅州、綾州、長興、長城、茂朱、礪山、益山、靈光、珍島、淳昌、錦山、珍山、金堤、昌平、龍潭、臨陂、萬頃、金溝、光陽、咸悅、扶安、康津、玉果、沃溝、南平、高敞、茂長、務安、求禮、谷城、任實、長水、同福、和順、海南、龍安、咸平、泰仁、高山、法聖、古羣山等, 四十一邑鎮段, 俱以無乎報來是白遣. 全州等十四邑段, 老人歲饌, 依例題給, 百歲老人, 則加給米肉後, 並只成冊報來爲白有等以. 同老人職姓名及歲饌數交開錄, 修成冊上送于戶曹爲白乎旆, 緣由馳啓爲白臥乎事.

같은 날. 노인들에게 세찬(歲饌)<sup>53)</sup>을 제급(題給)<sup>54)</sup>한 내용을 장계를 써서 봉하였다.

【장계】전에 받아본 예조의 계하(啓下) 관문 내용에 따라, ‘당상관 및 처는 나이가 70이상, 일찍이 실직(實職)<sup>55)</sup>을 지낸 사람과 처는 나이 80이상인 자들은 금년 정월 초하루에 세찬(歲饌)을 나누어 주고 성책(成冊)으로 정리하여 보고하라’는 내용을 기한 전에 관문을 발송하여 각 읍에 자세하게 알렸습니다.

나주·능주·장흥·장성·무주·여산·익산·영광·진도·순창·금산·진산·김제·창평·용담·임피·만경·금구·광양·함열·부안·강진·옥과·옥구·남평·고창·무장·무안·구례·곡성·임실·장수·동복·화순·해남·용안·함평·태인·고산·법성진·고군산진 등 41읍진(邑鎮)은 모두 보고가 없었습니다. 전주 등 14읍은 노인 세찬(歲饌)을 전례에 의거하여 제급(題給)하고 100세 노인은 쌀과 고

53) 세찬(歲饌) : 연말에 선사하는 물건이나 설에 세배하러 온 사람들을 대접하는 음식인데, 여기에서는 장수한 노인들에게 연말에 선사하는 물건을 말한다.

54) 제급(題給) : 관부에서 그렇게 ‘처분하여 지급한다’는 의미이다.

55) 실직(實職) : 정직(正職)·정임(正任)·현직(現職)·현관(玄關) 등 실무(實務)에 해당하는 실제(實際)의 관직(官職)을 말한다.

기를 더 나눠 준 뒤에 모두 성책(成冊)하여 보고하였습니다. 동(同) 노인의 직업과 성명과 세찬의 수효를 낱낱이 적고 정리한 성책을 호조(戶曹)로 올려 보내며 이러한 연유로 치계(馳啓) 하옵는 일.

同日. 封守令、邊將、吏任薦舉啓.

【狀啓】京外東西班三品以上, 每三年春孟月, 各薦吏任可合三人, 每年春孟月東班三品以上、西班二品以上, 各薦堪爲守令、邊將人, 並毋過三人, 乃是法典所載是白如乎. 臣所薦守令、邊將、吏任單子各一件, 前兵使李顯英所薦守令、邊將、吏任單子各一件, 左水使李儒常所薦吏任單子一件, 右水使李寬奎所薦吏任單子一件, 羅州牧使李晦淵所薦守令、邊將單子各一件, 光州牧使趙雲明所薦守令、邊將單子各一件, 綾州牧使李廣度所薦守令、邊將、吏任單子各一件, 南原府使洪錫謨所薦守令、邊將、吏任單子各一件, 順天府使林翰鎭所薦守令、邊將、吏任單子各一件, 長興府使申在翼所薦守令、邊將、吏任單子各一件, 潭陽府使曹錫玄所薦守令、邊將單子各一件, 茂朱府使李光承所薦守令、邊將、吏任單子各一件, 長城府使徐有民所薦守令、邊將、吏任單子各一件, 礪山府使許疇所薦守令、邊將、吏任單子各一件, 古羣山僉使金寬善所薦守令、邊將單子各一件, 吏任無薦, 蝟島僉使金仁臣所薦守令、邊將單子各一件, 吏任無薦, 荏子島僉使李在植所薦守令、邊將單子各一件, 吏任無薦, 合單子四十一件, 都封上送爲白在果. 羅州牧使李晦淵、光州牧使趙雲明、潭陽府使曹錫玄吏任可合人無乎是如報來爲白有旆. 濟州牧使韓應浩所薦單子段, 同州以海外絶島, 姑未出來, 待其報來, 迫于上送計料. 緣由并以馳啓爲白臥乎事.

營薦單子守令可合三人<金堤郡守李玄好、古阜郡守金裕淳、南平縣監林迥鎭>, 邊將可合三人<南固山城別將嘉義金基中、嘉善張仁熙、嘉善李基榮.>, 吏任可合三人.<幼學梁相奎、幼學李奭源、進士河百源>

같은 날. 수령(守令)·변장(邊將)<sup>56)</sup>·이임(吏任)<sup>57)</sup>을 천거(薦舉)하는 장계를 써서 봉하였다.

【장계】경외(京外)의 동서반(東西班)<sup>58)</sup> 3품 이상은 3년 마다 봄 첫 달인 1월에 이임(吏任)으로 합당할 만한 3인을 각각 추천하고, 매년 1월에 동반(東班) 3품이

56) 변장(邊將) : 변방의 장수 역할로 첨사(僉使)·만호(萬戶)·권관(權管) 등을 말한다.

57) 이임(吏任) : 향리중 관청의 직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8) 동서반(東西班) : 동반(東班)인 문관의 반열과 서반(西班)인 무관의 반열에 있는 자를 말한다.

상과 서반(西班) 2품 이상은 수령·변장을 감당할 만한 사람을 각각 추천하되 모두 3인을 넘지 말라는 것이 바로 법전에 실려 있습니다. 따라서 신 전라도 관찰사 서유구가 천거한 수령·변장·이임 단자 각 1건, 전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 이현영(李顯英)이 천거한 수령·변장·이임 단자 각 1건, 좌수사군절도사 이유상(李儒常)이 천거한 이임 단자 1건, 우수군절도사 이관규(李寬奎)가 천거한 이임 단자 1건, 나주 목사 이회연(李晦淵)이 천거한 수령·변장 단자 각 1건. 광주 목사 조운명(趙雲明)이 천거한 수령·변장 단자 각 1건, 능주 목사 이광도(李廣度)가 천거한 수령·변장·이임 단자 각 1건, 남원 부사 홍석모(洪錫謨)가 천거한 수령·변장·이임 단자 각 1건. 순천 부사 임한진(林翰鎭)이 천거한 수령·변장·이임 단자 각 1건, 장흥 부사 신재익(申在翼)이 천거한 수령·변장·이임 단자 각 1건, 담양 부사 조석현(曹錫玄)이 천거한 수령·변장 단자 각 1건, 무주 부사 이광승(李光承)이 천거한 수령·변장·이임(吏任) 단자 각 1건, 장성 부사 서유민(徐有民)이 천거한 수령·변장·이임 단자 각 1건, 여산 부사 허속(許嘯)가 천거한 수령·변장·이임 단자 각 1건, 고군산 첨사 김관선(金寬善)이 천거한 수령·변장 단자 각 1건, 이임은 천거한 자가 없고, 위도(蝟島) 첨사 김인신(金仁臣)이 천거한 수령·변장 단자 각 1건, 이임은 천거한 자가 없고, 임자도(荏子島) 첨사 이재식(李在植)이 천거한 수령·변장 단자 각 1건, 이임은 천거한 자가 없어 단자의 합 41건을 모두 밀봉하여 올려 보냅니다.

나주 목사 이회연·광주 목사 조운명·담양 목사 조석현은 이임으로 합당할 만한 사람이 없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제주 목사 한응호(韓應浩)가 천거한 단자는 제주도가 바다 밖 먼 섬으로 아직 단자가 나오지 못하여 그 보고를 기다려 뒤쫓아 올려 보낼 계획입니다. 이러한 연유를 아울러 치계(馳啓) 하옵는 일.

감영에서 천거한 단자 중 수령(守令)으로 합당할 만한 3인<김제 군수 이현호(李玄好), 고부 군수 김유순(金裕淳), 남평 현감 임형진(林迥鎭).>, 변장으로 합당할 만한 3인<남고산성 별장 가의(嘉儀)<sup>59</sup> 김기중(金基中), 가선(嘉善)<sup>60</sup> 장인희(張仁熙), 가선(嘉善) 이기영(李基榮).>, 이임(吏任)으로 합당할 만한 3인<유학 양상규(梁相奎), 유학 이석원(李

59) 가의(嘉義) : 종2품 문무관(文武官)의 품계로, 가선(嘉善)의 윗 계(階)이며, 가선 전에는 가정(嘉靖)이라 한다.

60) 가선(嘉善) : 종2품 문무관(文武官)의 품계이다.

夷源), 진사 하백원(河百源).>

同日. 以珍山郡肉直憑藉官庖, 私自潛屠嚴刑捧遲晚事, 發關該郡.

【關文】爲相考事. 卽接中營將所報, 則“全州所陽面排巖里酒幕, 亂賣牛肉是如, 故捉致屠漢冬至金、今得兩漢, 查問其委折, 則所告內, ‘矣等以珍山屠漢, 本郡肉直末卜, 潛屠一隻牛, 使矣等放賣於他境’云, 故果爲發賣是如可, 至於被捉是如, 納招乙仍于, 緣由牒報亦爲有置. 禁屠申飭, 前後何如? 而本郡肉直末卜, 憑藉官庖, 私自潛屠, 賣肉他境是如可, 現發於屠漢等口招. 苟有一分嚴畏之心, 寧容如是? 究厥所爲, 極爲痛駭乙仍于, 茲以發關, 到關卽時, 同末卜漢, 各別嚴刑一次, 捧遲晚牒報, 以爲照法勸處之地, 宜當向事.

같은 날. 진산군 육직(肉直)<sup>61)</sup>이 관포(官庖 관의 주방)를 빙자하여 사사로이 몰래 도축한 일을 엄히 형신하여 봉지만(捧遲晚 자복을 받음)하는 일로 진도군에 관문을 발송하였다.

【관문】 상고할 일. 이번에 중영장(中營將)이 보고한 것을 받아보니,

“전주 소양면(所陽面) 배암리(排巖里) 주막에서 쇠고기를 멋대로 판다고 하기에 백정 동지금(冬至金)·금득(今得) 두 놈을 잡아 와 그 곡절을 조사하여 물으니 아뢴바 내용은 ‘저희들은 진산의 백정인데, 진산군의 육직(肉直) 말복(末卜)이 몰래 도축한 한 마리의 소를 저희들로 하여금 다른 지역에 내다 팔게 하였습시다’고 말하였다. 그래서 과연 팔다가 붙잡혀서 공초를 받기에 이르렀으니 이러한 연유로 첩보합니다.”고 하였다.

도축을 금한다고 앞뒤로 신칙했는데 무슨 일인가? 진산군의 육직(肉直)인 말복(末卜)이 관포(官庖)를 빙자하여 사사로이 몰래 도축하여 고기를 다른 지역에 팔다가 백정들의 진술로 드러나 발각되었다. 진실로 조금이라도 엄외(嚴畏)한 마음이 있다면 어찌 이와 같은 일이 허용될 수 있겠는가? 그들이 하는 행위를 규명해 보면 지극히 놀랍기에 이에 관문을 발송하니 관문이 도착하는 즉시 육직 말복이란 놈을 각별히 엄히 1차 형신하고 자복을 받아 첩보하고 법에 대조하여 조사하여 처리하는 바탕으로 삼음이 마땅할 일.

61) 육직(肉直) : 육고(肉庫)에 속하여 관아(官衙)에 육류(肉類)를 바치던 관노(官奴)로, 육고자(肉庫子)라고도 한다.

十七日. 金堤郡守、泰仁縣監, 入見辭去. 中營將入見.

17일. 김제 군수·태인 현감이 입견하고 하직하고 갔다. 중영장이 입견하였다.

同日. 封礪山府使在喪啓.

【狀啓】礪山府使許嘯, 今月十二日遭其母喪, 訃書來到是如, 該府公兄, 文狀馳告是白如乎. 見今春務伊始, 捧稅方張, 此際曠官, 一時爲悶, 其代令該曹擇差, 催促下送爲白只爲.

같은 날. 여산 부사가 상(喪)이 있음을 장계를 써서 봉하였다.

【장계】여산 부사 허속(許嘯)이 이번 달 12일 어머니의 상을 당하여 부고(訃告)가 도착하였다고 여산부의 공형(公兄)이 문장(文狀)으로 급히 보고하였습니다. 지금 농사일이 시작되고 세금을 거둬들이는 일이 바야흐로 한창인데 이러한 때에 관리가 없으면 한때라도 근심이 되니 그 대임을 해당 아문으로 하여금 골라 정하여 [擇差] 재촉해 내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同日. 以礪山府封庫官差定事, 發關高山縣.

【關文】爲相考事. 礪山府使遭其內艱, 今方奔喪乙仍于, 縣監、封庫官差定爲去乎, 卽爲馳進, 同府公私各庫, 依例封閉, 穀物都數成冊, 及官需油清用遺在成冊, 各兩件亦卽修報, 而印符開金, 照數捧留爲有如可, 待新官傳授爲乎矣. 同府捧稅之節, 不可專委於留鄉、縣監, 這這馳往, 嚴飭督捧爲旆, 分糶一事, 亦爲察飭, 舉行宜當尙事.

같은 날. 여산부의 봉고관(封庫官)을 차정하는 일로 관문을 고산현에 발송하였다.

【관문】상고할 일. 여산 부사가 모친 상(喪)을 당하여 지금 막 분상(奔喪)함에 따라 고산 현감을 봉고관으로 차정하니 즉시 달려가 여산부 공사(公私)의 각 창고는 법식에 의거하여 봉폐(封閉)하고 곡물의 총 수효를 성책 책으로 만들고 또 관아에서 필요한 기름과 꿀[油清]의 쓰고 남은 것을 성책(成冊)하여 각 두건을 즉시 정리하여 보고하고 인부(印符)와 열쇠는 수효를 대조하여 거둬 놓았다가 신임 관료가 오기를 기다려 전해주라.

여산부의 세금을 거둬들이는 때에 유향(留鄉)·현감(縣監)에게 전담시킬 수 없으니 날날이 달려가서 엄하게 신칙하고 단속하여 거둬들이며 분조(分糶 환곡을 내 줌)도 같은 일로 또한 살피고 단속하여 거행함이 마땅할 일.

同日. 以均廳移運米事, 發關各邑.

【關文】爲星火舉行事. 卽到均廳關內筋該, “見今廳儲告罄, 當下貢價, 旣無以如例頒給, 則發賣穀物之割出需用, 尤非可論. 勢將本道移運米, 及今上來然後, 始可以舉行是如乎. 須悉十分, 罔措之狀, 星火嚴飭於分定各邑, 卽時裝發, 期於今月內上納亦爲置. 今此京司支用, 萬分時急, 又有此別關行會, 其在營邑奉行之道, 有不容一毫疎忽是如乎. 本邑移運米輸來次, 京江船隻, 旣自都會所定送, 則其間想已到泊. 母或晷刻稽滯, 火速裝發, 罔夜輸納于都會所, 受回移考還爲乎矣. 如或未及於差使員裝發之時, 則必將大段生梗, 除尋常, 各別嚴飭, 舉行宜當向事.<羅州、光州、綾州、南平.>

云云有不容一毫疎忽是如乎, 本邑移轉米, 其間果已輸納于都會所是噲? 母或晷刻稽滯, 火速裝發, 罔夜輸送, 受回移考還爲乎矣. 如或未及於差使員裝發之時, 則必將大段生梗. 云云事.<古阜、臨陂、金堤、益山、扶安、龍安.>

云云, 有不容一毫疎忽”是如乎, 各邑移轉米所載船隻, 其間果皆來到是噲? 未裝發邑段, 以火速輸送事. 自營門今方關飭爲去乎, 亦自都會所, 星火文移催促, 期於今月內, 一齊領發, 上納京廳之地爲乎矣, 各別惕念舉行, 俾無未及大段生梗之弊, 宜當向事.<高敞>

같은 날. 균역청에 쌀을 운반하는 일로 각 읍에 관문을 발송하였다.

【관문】 급히 거행할 일. 방금 도착한 균역청의 관문 안의 요지는, “지금 균역청에 쌀아 놓은 것이 비었다고 알리고 지금 나라에서 지급하는 공물 가격[貢價]은 이미 예전같이 반급(頒給)할 수 없으니 내다 판 곡물로 수용(需用)을 나누어 주는 것은 더욱 가히 논할 수 없다. 형세가 장차 전라도에서 운반해올 쌀을 지금 올라온 연후에야 비로소 거행할 수 있다고 하고, 모름지기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충분히 알아 각 읍에 나누어 정해준 것을 급히 엄하게 신칙하여 즉시 실어 보내기 어코 이번 달 안에 상납(上納)하라고 하였다.

지금 경사(京司)의 지용(支用 소모비용)은 매우 시급하고 또 이렇게 별도의 관문을 보내 행회(行會) 하였으니, 영읍(營邑)은 봉행하는 방도를 두어 털끝만큼이라

도 소홀함을 허용하지 말아야 하니, 본 읍에서 운송할 쌀을 수송할 경강선(京江船)<sup>62)</sup>이 이미 도회소에서 정하여 보냈으니 그 사이에 이미 당도하여 정박했으리라고 생각된다. 혹시 잠시라도 지체하지 말고 급히 꾸러 실어 보내 밤낮 없이 도회소로 수송하여 들고 회이(回移)<sup>63)</sup>를 받아 대조하고 돌려주어라. 만일 혹시라도 차사원(差使員)이 꾸러 실어 보내는 것이 때에 맞추지 못하면 반드시 장차 대단히 불미스러운 것이니 보통으로 여기지 말고 각별히 엄하게 단속하여 거행함이 마땅할 일.<나주·광주·능주·남평>

운운(云云). 털끝만큼이라도 소홀함을 허용하지 말아야 하니 본 읍에서 이전하는 쌀은 그 사이에 과연 도회소에 실어다 납부하였는가? 혹시 잠깐이라도 지체하지 말고 급히 꾸러 실어 보내고 밤낮 없이 수송하고 받은 회이(回移)로 원안과 대조하라. 만일 혹시라도 차사원(差使員)이 꾸러 실어 보내는 것이 때에 이르지 못하면 반드시 장차 대단히 불미스러운 것이다. 운운한 일.<고부·임피·김제·익산·부안·용안>

운운(云云). 털끝만큼이라도 소홀함을 허용하지 말라.” 고 하였으니, 각 읍에서 이전하는 쌀을 실은 배는 그 사이 과연 모두 이르러 도착하였는가? 미처 실어 보내지 못한 읍은 급히 수송할 일. 감영으로부터 금방 관문으로 신척하고서 또한 도회소로부터 급히 공문으로 재촉하니 이번 달 안에 일제히 거느리고 출발하여 경청(京廳)에 상납하는 것을 기약하되 각별히 척념(惕念)하여 거행하여 기한에 못 맞추어 대단히 불미스런 폐단이 없게 함이 마땅할 일.<고창>

同日. 以昨年分給還上戶吏, 拔戶罪狀嚴刑枷囚事, 發關全州兼官中營將.

【關文】爲相考事. 本府糶政, 尙此愆滯, 拖至正月念間, 而未收多至於七千餘包, 糶政紊亂, 胡至此極? 各倉還簿一一查實, 則昨年分還時, 還戶吏捧賂拔戶, 狼藉作奸之狀, 綻露無餘是如乎. 其在懲毖之道, 若不別樣勘處, 則奸民頗還之習, 無以防遏, 倉吏捧賂之弊, 無以痛禁乙仍于. 茲以發關爲去乎, 還上檢督, 以頃還各人差出後, 各其里, 未收還穀數, 三日定限, 督捧爲乎矣. 如或愆期, 這這嚴治, 督捧俾無如前稽緩之弊爲於. 昨年分給還上戶吏, 爲先嚴刑一次, 着枷牢囚, 形止牒報向事.

62) 경강선(京江船) : 주교사(舟橋司)에 소속된 배로, 전라도와 충청도의 세곡(稅穀)을 서울로 수송하는 일을 하는 배이다.

63) 회이(回移) : 회답하는 공문서를 보낸다는 말이다.



같은 날. 작년 환자[還上]를 나눠준 호리(戶吏)가 환자(還子) 가호를 빼준 죄상을 엄히 형신하고 칼을 씌워 가두는 일로 전주 경관 중영장에게 관문을 발송하였다.

【관문】 상고할 일. 전주부의 적정(糶政)<sup>64</sup>은 아직도 이렇게 지체되게 내버려 두어 1월 20일 사이에 미수가 7천여 포보다 많게 되었으니 적정(糶政)의 문란함이 어찌 이렇게 심하게 되었는가? 각 창고의 환곡 장부를 일일이 실제대로 조사한다면 작년 환곡을 나눠줄 때 도리어 호리(戶吏)가 뇌물을 받고 환자 가호를 빼주고 함부로 간계를 부린 정황이 여지없이 탄로 났다.

그것을 징계하고 삼가게 하는 방도는 만약 특별히 조사하여 처리하지 않는다면 간민(奸民)들이 환자를 빼먹는 습속을 막아낼 수 없고, 창고지기가 뇌물을 거둬들이는 폐해를 엄하게 금할 수 없다. 이에 관문을 발송하니 환자를 검독(檢督)하여 환자에서 빠진 각 사람을 차출(差出)하고 뒤에, 각 마을에 미수된 환곡의 수는 3일을 한정하여 독촉하여 거둬들일 것.

만일 혹 기한을 어기면 날날이 엄하게 다스릴 것이니, 독촉하여 거둬들이고 전과같이 태만히 하는 폐단이 없게 하라. 작년에 환자를 분급(分給)한 호리는 우선 엄하게 1차 형신하여 목에 칼을 씌워 감옥에 가두고 사실의 전말을 첩보할 일.

同日. 以牛疫方文騰送事, 發甘五十三州、法聖、古羣山鎮.

【甘結】 見今東作伊始, 于艮在卽, 而近聞道內各處, 牛疫大熾云. 言念農政萬萬憂悶是如乎. 大抵牛疫療治, 貴在預防, 而若得其方, 則不患不治, 故藥治方文騰出下送爲去乎, 到卽眞諺翻騰, 詳細布諭於境內坊曲, 如有疫氣之漸是去等, 使之急速試藥, 俾得收效, 毋至蔓延爲旻. 務盡地力, 專在於孳畜, 故冒法潛屠之類, 一切痛禁之意, 前後申飭不翅縷縷, 而近以若而邑觀之, 慢不致察, 蕩無防限, 奸民私屠之弊, 依舊自如, 殆若無官無禁者然. 一邊疫死, 一邊宰死, 致使牛囤遂空, 田野荒蕪, 營飭之闕而不行, 固已駭歎, 而其在務本之道, 尤何可任他牟利不爲顧惜是乙喻? 營門之斷斷苦心, 至有方文騰頒之舉, 而列邑則不體此意, 視同弁髦, 全不着念奉行, 則烏在其營邑叶同, 敦本重農之本意哉? 茲又不憚煩複, 有此別飭爲去乎. 禁屠之節, 別加痛察, 治疫之方, 俾各廣試, 期有實效爲乎矣. 舉行勤慢, 自當有這這探知之道, 除尋常, 各別嚴飭舉行, 毋至有名無實之歸爲旻, 甘到日時, 亦卽馳報宜當者.

64) 적정(糶政) : 환곡(還穀)미를 거둬들이는 일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

【牛疫方】眞安息香<北木脂>于牛欄中，燒如燒香法，如初覺有一頭至兩頭，是疫也，卽牽出，以鼻吸之，立愈。○臘月兔頭燒作灰，和水五升，灌之亦良。○牛膽一箇，灌牛口中，立差。○眞茶末二兩和水五升，灌之。○牛卒疫而動頭打脇，急用巴豆七箇，去殼細研，出油和水，灌之卽愈。又燒蒼朮令牛鼻吸其香止。○牛得卒急之疫，以頭打脇者，大黃五錢作末，和生油一兩、淡醬水半升灌之，仍用皂角末一撮吹入鼻中，更用鞋底於尾停骨中拍之。○芭蕉根<葉與莖俱用>，汁一椀灌口，連三日，則雖毒疫必差。○用石菖蒲<菖蒲亦可>、淡竹葉、葛粉<葛根亦可>、鬱金、菘豆、蒼朮等分爲末，每一兩，芭蕉自然汁三升，入密一兩，黃蠟二錢調和灌之。未鮮則再灌，熱極和大黃，鼻頭無汗加麻黃，鼻口出血加蒲黃。○臘月糟一大升、赤茯苓末四兩、石菖蒲末、大黃末各二兩，地黃汁一升、醋半升、小便一大升調和灌之，隔日一灌五度，卽止，仍鍼鼻毛際一分，血出差。○大黃、柴胡各一兩剉，水煎灌之。或單用大黃二兩，水煎分兩次灌之，以下泄爲限。又用黃栢剉，水煎無量灌之。○狐頭尾燒灰和水灌之。狐腸灰亦好。○地龍多取，納牛口中，拗其吭，使下以差爲度。○取大蟾蜍，壓之放溺，去皮頭，取肉搗爛和水灌之。○獺肉及尿或肝肚水煎汁待冷灌之。○時疫用白朮、藜蘆、川芎、細辛、鬼臼、石菖蒲等分粗末，燒熏兩鼻，令烟入腹卽愈。○牛疫初發時，身體中有小腫，仔細審之，以燒鐵條烙其腫處，又冷水浸腎，令體寒爲度，又以艾炷如小指大，灸神闕<卽臍中也>三壯。如或便秘，以油塗手探穀道，去結屎以通爲度。○預防牛疫法，如有病氣，千金木<卽北木也>斫，取擁廐，又取其葉和草飼之，又煮葉待冷灌之，又牛欄中，燒安息香、蒼朮，令牛以鼻吸香。○疫至近處，先用小便飲，未病牛日三四次，則不傳染，常時牛喜人小便，男子直放注其口，則自能接飲，最爲神效。○赭<朱土>塗於牛角上辟惡。○未疫時，預以羊蹄菜<所奴長伊>汁二三升灌口，始痛亦灌。○未痛時，吐涎者是瘟疫也，取黃柏<黃蘗木皮>研汁，白石<卽次芫也>燒研二種，以酒調和灌口，以防之。○牛先吐涎不止者，取眞墨研汁、藍汁各三合、石灰一合、酒半升相合灌之。○治牛疫符，鄉隣有牛疫氣，以朱砂書“天雲山地雲寺法雲禪師戴鼎牛唵唵如律令娑婆阿”二十二字于黃紙上，粘付牛廐及大門楣，疫氣不傳染。○治牛疫秘方，牛不食一日或二日，文魚一條，先代穿鼻貫之。以黃土泥作陶罐，人糞少許及地龍，從多少入陶罐中，其大如升，火煨投沸，水澄取灌之。灌時以長木橫鼻，外縛文魚兩端，以兩手舉以開口，卽灌之。掘坑深限牛胸腹，長使容牛身蒸火，使熱極後，編生艾布坑內一周，又布空籊<空石>一周於艾上，灑水一匝，使發熱氣極熱小歇後，納牛其中。若不勝煩痛，

踊躍不止，則用力執其長木兩邊按之，使不能動，以爲發汗，或注大小便，作木麥粥一瓢飲之，數時後，作秋麩粥一瓢許飲之。取黃熟南瓜<好朴>一箇，去外皮，取內黃軟肉爛舂，和男子尿如稠粥，一小瓢飲之，卽用鹽三掬飼之，其翌日作常食、粥飲之。○將納坑時，鼻上正中毛際，小刺出血，兩角間後頂中凹處，小刺通氣後，自尾戶，逆上背脊第四椎節後中五椎下，小刺通氣。出坑後以鎖，鎖穿鼻之木。○凡牛之始痛，人皆不知，只以不食時爲始，而不知其病之已深，若趁牛之不食一日二日而試之，則神效。

같은 날. 우역(牛疫)의 약방문(藥方文)을 등서하여 발송하는 일로 53주와 법성진, 고군산진에 감결을 발송하였다.

【감결】 지금 농사가 시작되어 쟁기질[于耜]<sup>65)</sup>이 바로 있는데 근래 들으니 도내의 각 곳에 우역이 크게 성하다고 한다. 농정을 생각하면 매우 근심스럽고 답답하다. 대저 우역의 치료는 예방에 있음을 귀중하게 여겨야 하니, 만약 적절한 방법을 안다면 치료 못할 걱정은 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약으로 치료하는 방문(方文)을 베껴 내려 보내니 도착하는 즉시 한문과 한글로 번역하여 베껴 상세히 경내 방방곡곡에 상세히 널리 알려주고 만일 질병의 기미가 있거든 백성들에게 속히 약처방을 시행하게 하여 효험을 거둘 수 있게 하고 지연되지 않게 하라.

지력(地力)에 힘을 다 쓰는 것은 오로지 가축들에 달려 있기 때문에 법을 무릅쓰고 몰래 도살하는 부류들을 일체 엄금하는 뜻을 전후에 신칙하기를 여러 차례 했을 뿐만 아니었는데도 근래 너희 읍을 보면 태만히 하여 살피기를 다하지 아니하고 방탕함이 끝이 없고, 간민(奸民)들이 사사로이 도축하는 폐단이 옛날처럼 변함없어 거의 관청도 없고 금법도 없는 것 같다.

한쪽에선 병으로 죽고 한쪽에선 도살하여 죽여 소들이 모여 있던 곳집들이 결국 텅 비게 되어 전야(田野)가 황폐하고 감영이 신칙한 금법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진실로 매우 놀랍고 한탄스럽다. 근본에 힘쓰는 도리가 있어야 하니 더욱 어찌 내버려 두어 모리배들이 자중(自重)하지 않도록 하겠는가?

감영이 단단히 고심하여 심지어 약방문을 베껴 발급(頒給)하는 일이 있는데도

65) 우거(于耜) : 쟁기 등 농기구를 손본다는 의미이다. 『시경(詩經)』 「칠월(七月)」에 “삼월에는 나가서 쟁기를 수리하고, 사월에는 뒤축 들고 밭갈이한다.[三之日于耜，四之日舉趾]” 한 데서 온 말이다. 여기서 말한 3월·4월은 곧 자월(子月)로 세수(歲首)를 삼은 주(周)나라의 역(曆)을 따른 것이니, 인월(寅月)을 세수로 삼은 하(夏)나라의 역(易)으로 말하면 1월·2월에 해당한다.

열읍은 이러한 뜻을 받들지 않고 우습게 보고 전혀 착실히 거행하지 않는다면 어찌 그 영읍(營邑)이 협동하여 근본을 도탐게 하고 농업을 중시하는 본의(本意)가 있겠는가? 이에 또 번잡함을 무릅쓰고 이렇게 특별히 단속한다.

도축을 금하는 절목을 특별히 엄하게 살피고 역(疫)을 치료하는 약방문은 각자 널리 시험하게 하여 실효가 있기를 기대한다. 거행의 근면함과 태만함은 자연 마땅히 낱알이 탐지(探知)하는 방도가 있으니 보통으로 여기지 말고 각별히 엄하게 신칙하고 거행하여 유명무실로 귀결됨에 이르지 않게 하며 감결이 도착하는 날짜 또한 즉시 보고함이 마땅할 일.

**【우역방】** 진안식향(眞安息香)<참붉나무 진액>을 소 외양간에 향을 태우는 법같이 태워 만일 처음 한 마리가 깨어나면 두 마리에 이르니 이것이 돌림병이니 즉시 끌어내어 코로 마시게 하면 바로 낫는다.

○ 음력 설달 토끼머리를 태워 재로 만들어 물 5되로 섞어 이를 마시게 하는 것도 좋다.

○ 소 쓸개 1개를 소 입속에 흘려 넣으면 곧 좋아진다.

○ 진다[眞茶 좋은 작설차(雀舌茶)]가루 2냥을 물 5되에 타서 이를 먹인다.

○ 소가 역병(疫病)으로 죽어가며 갑자기 머리로 옆구리를 치면 급히 파두(巴豆)<sup>66)</sup> 7개를 껍질을 제거하고 잘게 갈아서 유액을 내어 물에 타 먹이면 바로 낫는다. 또 태운 창출(蒼朮)<sup>67)</sup>을 소가 코로 그 향을 맡게 하면 그친다.

○ 소가 급사(急死)하는 역병에 걸려 머리로 옆구리를 치받을 때는 대황(大黃 장군풀 뿌리) 5전을 가루로 만들어 생유(生油 날참기름) 1냥과 묽은 간장물[醬水] 반되에 타서 먹인다. 이어 조각 가루[阜角末 쥐엄나무의 열매를 말린 한약재]를 코 속에 넣어놓고 다시 짚신바닥[鞋底]으로 꼬리가 붙은 뼈[尾停骨] 가운데를 때린다.

○ 파초(芭蕉) 뿌리<입과 줄기 모두 사용> 즙 한 사발을 먹이기를 3일 동안 하면 아무리 심한 우역이라도 반드시 차도(差度)가 있다.

○ 석창포(石菖蒲)<창포(菖蒲)도 가능> · 담죽엽(淡竹葉) · 갈분(葛粉) 칩뿌리 가루<칩뿌리

66) 파두(巴豆) : 대극과(大戟科)에 속하는 상록 활엽 관목으로, 동인도(東印度)가 원산지이며, 열매는 약으로 쓰인다.

67) 창출(蒼朮) : 삽주의 멍치지 않은 뿌리인데, 백출(白朮)보다 땀을 내는 힘이 강(強)하여 소화기(消化器)를 범(犯)한 외감을 푸는 데에 많이 쓴다.

리도 가능> · 울금(鬱金) · 녹두(菉豆) · 창출(蒼朮) 등을 같은 분량으로 가루를 만들어, 이 가루 1냥에 파초의 저질로 나온 즙 3되, 꿀 1냥을 넣고, 황랍(黃蠟 밀(蜜)로, 벌집을 만들기 위하여 꿀벌이 분비하는 물질) 2전을 섞어 먹인다. 그래도 차도가 없을 적에는 한 번 더 먹이되, 열이 심하면 대황(大黃 장군풀 뿌리)을 섞고, 코잔등에 땀이 나지 않으면 마황(麻黃)을 첨가하고, 코나 입에서 피가 나면 포황(蒲黃 부들꽃가루)을 첨가한다.

○ 12월의 술지게미[糟] 큰되로 1되, 적복령(赤茯苓)<sup>68)</sup> 가루 4냥, 석창포와 대황 가루 각 2냥, 지황즙(地黃汁) 1되, 초(醋) 반 되, 사람의 오줌 큰되로 1되를 섞어 먹이되, 격일로 1번씩 먹이기를 5차례 먹이고 그만둔다. 그리고 이어서 코털[鼻毛] 난 부분을 침(針)으로 1푼쯤 찔러 피가 나오면 차도가 있다.

○ 대황(大黃)과 시호(柴胡) 각 1냥씩을 잘게 썰어서 물에 끓여 먹인다. 단지 대황 2냥을 물에 끓여 두 번에 나눠서 먹이되, 설사(泄瀉) 할 때까지 계속한다. 황백(黃柏 황벽나무 또는 황경피나무)을 잘게 썰어 물에 끓여 양을 제한하지 않고 먹인다.

○ 여우 머리나 꼬리를 태운 재를 물에 타서 먹인다. 여우 내장을 태운 재도 좋다.

○ 지렁이[地龍]를 많이 잡아 소의 입 속에 넣고 목을 눌러 넘어가게 하되, 차도가 있을 때까지 계속한다.

○ 큰 두꺼비[大蟾]를 잡아 등을 눌러 오줌을 누게 한 뒤에 껍질과 머리를 제거하고 고기만을 짓이겨 물에 타서 먹인다.

○ 너구리고기[獺肉]나 똥 혹은 간·باط통[肝肚]을 물에 끓인 즙을 식기를 기다려 그 물을 먹인다.

○ 시역(時疫 유행병)은 백출(白朮) · 여로(藜蘆 박새) · 천궁(川芎 궁궁(芎藭)이) · 세신(細辛 족두리풀 뿌리) · 귀구(鬼臼)<sup>69)</sup> · 석창포(石菖蒲)를 같은 분량으로 거친 가루를 만들어 두 코앞에서 태워 그 연기가 뱃속으로 들어가게 하면 즉시 낫는다.

○ 소나 말에 전염병이 처음 발병되었을 때는 신체상에 작은 종기가 생기는데, 자세히 찾아내어 불에 달군 쇠꼬챙이로 지진다. 또 냉수에 콩팥부위를 담가 체온이

68) 적복령(赤茯苓) : 복령(茯苓)은 불완전(不完全) 균류(菌類)의 한 가지이다. 땅 속의 솔뿌리에 기생(寄生)하며, 보통 공 모양 또는 길동근 모양의 큰 덩이인데, 한방(韓方)에서 수종(水腫)·임질(淋疾) 같은 데에 약재(藥材)로 쓴다.

69) 귀구(鬼臼) : 매자나무과에 딸린 여러해살이풀이다. 줄기는 곧고 그 끝에 잔털이 있는 잎이 더부룩하게 나며, 잎 아래에 청백색(靑白色) 또는 붉은 자주색 꽃이 아침과 해질 무렵에만 피어 눈에 잘 띄지 않고 누른빛의 열매가 열린다. 산속에 나는 독초로 열매는 소독약, 뿌리는 '귀구근(鬼臼根)'이라 하여 치풍(治風)·학질(瘡疾)·사독(蛇毒) 등(等)의 약재(藥材)로 쓴다.

내릴 때 까지 계속한다. 또 썩으로 새끼손가락 크기의 심지를 만들어 신궤(神闕) <배꼽 한가운데>을 삼장(三壯 세 번 뜯질함) 한다.

○ 흑 똥이 굳어 있으면, 기름 바른 손으로 곡도(穀道 큰창자와 항문)에 집어넣어 굳은 똥을 끄집어내되, 똥이 원활히 통할 때까지 계속한다.

○ 우역을 예방하는 법, 만일 역병의 기운이 있으면 천금목(千金木) <곧 붉나무>을 잘라 외양간을 가리고 또 그 잎을 가져다 풀과 섞어 먹이고, 또 잎을 끓여 식기를 기다렸다가 먹이며 소 외양간 가운데 안식향(安息香)<sup>70)</sup> · 창출(蒼朮)을 태워 소가 코로 향을 들이마시게 한다.

○ 우역(牛疫)이 근처에 들어왔을 때에는 우선 소변을 먹이되, 병들지 않은 소에게 소변을 하루에 3~4차례 먹이면 전염이 되지 않는다. 소는 본시 사람의 오줌을 좋아하므로 남자가 소의 입에 바로 대고 오줌을 누면 스스로 받아먹는데 최고로 신비한 효과를 본다.

○ 자토(赭土) <붉은 흙>를 뽕 위에 바르면 역기(疫氣)를 물리친다.

○ 발병하기 전에 미리 양제래(羊蹄萊) <소루쟁이> 즙 2~3되를 먹이고, 통증이 시작된 뒤에도 먹인다.

○ 아프기 전에 침[涎]을 흘리는 것은 바로 온역(瘟疫 급성전염병)의 조짐이니, 황백(黃柏) <황벽(黃蘗)나무 껍질. 운향과의 낙엽 활엽 교목>을 갈아서 낸 즙(汁)과 백석 <곧 차돌>을 태운 재를 술에 섞어 입에 들이부으면 예방이 된다.

○ 소가 토하기 앞서 침을 흘리는 것이 그치지 않는 경우에는 진묵(眞墨 참묵)을 갈아 만든 먹물과 쪽[藍]의 즙을 내어, 각각 3홉에 석회 1홉과 술 반 되를 혼합하여 먹인다.

○ 우역(牛疫)을 치료하는 부적으로, 마을과 이웃에 우역의 기운이 있으면 주사(朱砂)<sup>71)</sup>로 ‘천운산 지운사 법운선사 대정우암 급급여울령 사바아(天雲山地雲寺法雲禪師戴鼎牛唵唵如律令娑婆阿)’ 22글자를 황지(黃紙)에 써서 소 외양간과 대문 문설주에 붙이면 역병의 기운이 전염되지 않는다.

○ 우역을 치료하는 비방(秘方)으로, 소가 1일 혹은 2일간 먹지 않으면 문어(文魚)

70) 안식향(安息香) : 때죽나무과에 딸린 갈잎큰키나무로, 나무진은 향기(香氣)가 짙으므로 훈향료, 방부제(防腐劑), 소독제(消毒劑)로 쓰인다.

71) 주사(朱砂) : 천연적으로 나는 유화수은으로, 짙은 붉은빛의 광택이 있는 육방정계(六方晶系)에 딸린 덩어리로 된 광물(鑛物)이다.

한 다리로 우선 번갈아 코를 뚫어 관통시킨다. 황토 진흙으로 도관(陶罐)을 만들어 인분(人糞) 조금과 지령이를 형편에 따라 도관(陶罐)가운데 넣고 크기는 되만 하게 하여 불로 끓여 물이 맑은 것을 가져다 마신다. 먹일 때 긴 나무로 코를 옆으로 하고 코 바깥은 문어의 양 끝으로 얹어서 두 손으로 들어 입을 벌려 즉시 먹인다.

굴을 소의 가슴과 배 깊이까지 파고 길이는 소의 몸을 불로 사를 수 있게 하여 열기가 끝까지 오르게 한 뒤에 생썩을 엮어 구덩이 안에 퍼서 한 바퀴 돌리고 또 공천(空筩)<빈 가마니>을 퍼서 썩 위에 한 바퀴 돌리고 물을 두루 뿌려 발열(發熱)기의 극한 열이 조금 식게 한 뒤에 그 가운데 소를 넣는다.

만약 번통(煩痛)을 이기지 못하고 날뛰기를 그치지 아니하면 힘으로 그 장목(長木) 양 끝을 잡고 소를 놀려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땀을 내게 하고 흑 대소변(大小便)을 부어 주거나 목맥(木麥 메밀)죽을 만들어 한 바가지 먹이고 2,3시간 뒤 추모(秋麩 가을 보리)죽을 만들어 한 바가지쯤 먹인다.

누렇게 익은 남과(南瓜)<호박> 1개를 껍질을 벗기고 안의 노랗고 연한 육질을 가져다 문드러지게 찼어 남자 오줌을 타서 백백한 죽처럼 만들어 작은 바가지로 한 번 먹이고 즉시 소금을 3웁큼 먹이고 그 다음날은 상식(常食)이나 죽을 만들어 먹인다.

○ 장차 구덩이에 들어 넣을 때 코 위 한가운데 털끝을 조금 찢러 피를 내고 양뿔 사이 뒤 정수리 가운데 오목한 곳을 조금 찢러 기를 통하게 한 뒤 미호(尾戶 꼬리 구멍)으로부터 거꾸로 올라가 등뼈 4번째 공무니 뼈마디[脰節]뒤 가운데와 5번째 공무니 뼈마디 아래를 조금 찢러 기를 통하게 한다. 구덩이에서 나온 뒤에는 코뚜레를 한다. 코뚜레는 코를 뚫은 나무다.

○ 보통 소가 통증이 시작되어도 사람들은 모두 알지 못한다. 단지 먹지 않는 때를 발병으로 여기나 그 병이 이미 깊은 것을 알지 못한다. 만약 소가 먹지 않는 하루 이틀을 쫓아서 이러한 약방문을 시도하면 신비한 효험이 있다.

十八日. 臨陂縣令李宜翼來見. 靈巖郡守李重榮、谷城縣監李鍾稷赴任之路, 延命後入見辭去. 咸悅縣監金炳斗, 延命後入見. 臨陂縣令又爲入見辭去. 茂長縣監尹興圭受由上京之路入見. 同福縣監李寅元、玉果縣監韓致定來見.

18일. 임피 현령 이의익이 와서 보았다. 영암 군수 이중영·곡성 현감 이종직이 부임하는 길에 연명(延命)한 뒤에 입견하여 하직하고 갔다. 함열 현감 김병두가 연명한 뒤에 입견하였다. 임피 현령이 또 입견하여 하직하고 갔다. 무장 현감 윤흥규가 말미를 받아 상경하는 길에 입견하였다. 동복 현감 이인원·옥과 현감 한치정이 와서 입견하였다.

同日. 因備局關, 以左右道東堂合設於全州府事, 發甘五十三州、法聖、古羣山鎮.

【甘結】節到付備邊司關內, “節啓下教 去癸巳十二月二十七日, 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領議政李相璜所啓, ‘今式監初及文東堂初試之請, 令道臣設行於營下者, 盖出於省弊之意, 三南文東堂, 令道臣合設試取, 文試既如此, 武試亦依此例, 令本道兵營都聚設試, 則可除冗弊, 亦合便宜, 故敢此仰達矣.’ 上曰: ‘依爲之’ 事傳教教是置. 傳教內辭意奉審施行爲有矣, 元舉條中, ‘三南文東堂令道臣合設試取’ 十二字添入, 改付標是如乎, 必須知悉左右道, 文東堂自本營, 合設試取是遣, 前關段還爲上送, 宜當向” 事關是置有亦. 左右道文東堂試邑定於全州府爲去乎, 境內士子良中一知委, 俾無一人不聞不知之弊爲玆. 東堂赴舉、儒生都目, 成冊兩件, 前期修報宜當者.

같은 날. 비국(備局)의 관문으로 인하여 좌우도 동당(東堂)을 전주부에 합하여 실시(設試)하는 일로 53주와 법성진·고군산진에 감결을 발송하였다.

【감결】이번에 받아본 비변사의 관문 내용은, “이번에 계하(啓下)하신 지난 기사년(1833) 12월 27일에 대신(大臣)과 비국당상(備局堂上)을 인견(引見) 입시(入侍)한 자리에서 영의정 이상황(李相璜)이 아뢴, ‘이번 식년에 감초(監初)와 문과(文科) 동당초시(東堂初試)를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영하(營下) 감영(監營)이나 병마절도사가 있는 병영(兵營)에서 설치하여 시행하도록 청한 것은 모두 폐해를 줄이는 뜻에서 나왔고, 삼남(三南)의 문과 동당(東堂)은 도신(道臣)이 합설(合設)하여 시취(試取)하도록 하였습니다. 문과(文科) 시험이 이미 이와 같으니 무과(武科) 시험도 또한 이러한 예에 의거하여 본도의 병영(兵營)으로 하여금 모두 모여 실시(設試)하게 한다면 쓸데없는 폐해를 줄일 수 있어 또한 편의(便宜)에 부합하기 때문에 감히 이렇게 우러러 진달합니다.’ 하니, 상(上)께서 ‘아뢴 대로 하라’ 고 전교 하셨습니다. 전교 내용을 봉심하여 시행하라. 다만, 원 거조(舉條) 가운데에 ‘三南文



東堂令道臣合設試取[상남지방 문과동당은 도신이 과장을 합하여 시행하여 채용토  
 록 함.]’ 12자를 첨입(添入)하여 다시 표방(標榜)에 붙이라고 하니 필수적으로  
 좌우도에 다 알게 하고 문과 동당(東堂)은 본영(本營)으로부터 합설(合設)하여 시  
 취(試取)하고 이전 관문은 다시 위로 보내게 함이 마땅할 일” 로 관문하였다.

좌우도 문과 동당을 설시(設試)하는 읍(邑)을 전주부로 정하고 경내의 선비들에  
 게 일일이 자세히 알려 한 사람도 듣지 못하거나 알지 못하는 폐단이 없도록 하라.

동당(東堂)시에 부거(赴舉)오는 사람 장부와 유생의 도목장(都目狀) 장부 두 건  
 을 기한 전에 정리하여 첩보함이 마땅할 일.

同日. 以監試時房賞器席價濫捧禁斷事, 發關全州府.

【關文】爲相考事. 見今試期漸近是如乎. 本府之丁巳設試, 今爲三十餘年, 而第以伊  
 時所聞事言之, 最是舍館主人輩, 房賞與器席食價等濫捧之說, 至今藉藉, 安知不今年  
 又復如此是乙喻? 此等爲弊, 雖在常年, 在所痛禁, 況如今災歲, 尤當到底察飭乙仍  
 于. 茲以先事發關爲去乎, 將此關辭定, 將吏家諭戶說, 所謂房賞一款, 雖分錢之微,  
 切勿舉論是遣. 器席食價等段置, 勿以高價濫索, 期有實效之地爲乎矣. 如是別飭之  
 後, 萬有一不遵營飭, 恣意討索有所現發是去等. 這這捉囚報來, 以爲從重科治之地爲  
 所, 此非等閑例飭, 必須操切, 任掌另加糾察, 舉行形止亦卽馳報宜當尙事.

같은 날. 감시(監試)를 행할 때 방세(房賞)와 기물·자릿세를 과도하게 거둬들이는 것  
 을 엄금하는 일로 전주부에 관문을 발송하였다.

【관문】 상고할 일. 지금 동당(東堂)시험 기한이 점차 가까워진다. 전주부는 정사  
 (丁巳, 1797)년에 설시(設試)하여 지금 30여 년이 되었는데도 다만 이러한 때 들  
 리는 것으로 말하면 사관(舍館) 주인들이 방세(房賞)와 기물·자릿세·음식 값 등  
 을 멋대로 거둬들었다는 말이 지금까지도 자자하니 금년에 또다시 이와 같지 않다  
 고 어찌 알겠는가? 이렇게 폐해가 되는 것은 비록 보통 해에도 엄금함을 두어야  
 하는데, 하물며 지금같이 재해 입은 해에는 더욱 마땅히 철저하게 살피고 신칙해  
 야한다.

따라서 이에 우선하는 일로 관문을 발송하니 장차 이러한 관문의 말씀으로 정한  
 것은 장차 관리들이 집집마다 일러서 깨우치게 하여 이른바 ‘방세(房賞)’ 한 항

목은 비록 풍돈같이 작은 것일지라도 절대로 거론하지 말라.

기물·자릿세·음식 값들도 고가로 함부로 요구하지 말아 실효가 있는 바탕이 되길 기대한다. 이와 같이 별도로 단속한 뒤에도 만에 하나라도 감영의 신칙을 따르지 않고 멋대로 토색(討索)하여 적발(摘發)되는 자가 있거든 낱알이 잡아가두고 보고하여 중과(重科)을 쫓아 다스리는 바탕으로 삼으라.

이것은 등한히 해도되는 의례적인 신칙이 아니니 반드시 모름지기 단단히 단속하고 임장(任掌)은 특별히 규찰(糾察)을 강화하여 거행한 상황 또한 즉시 급히 보고함이 마땅할 일.

同日. 因備局關, 官鎖門聚點設行事, 發甘五十三州、法聖、古羣山、兵、左·右水營、濟州.

【甘結】筋到付備邊司關內, “筋啓下教 今正月初十日, 藥房入診, 大臣、備局堂上引見入侍時, 領議政李相璜所啓, ‘各道春操稟啓, 今已齊到矣. 昨年秋操之稟請停止, 爲念諸路, 事勢之難於徵發, 秋操既停, 則窮春擾民, 尤屬當念, 八道四都, 水陸諸操、巡歷、巡點并依昨秋例停免, 官鎖門聚點, 則各別嚴筋, 填伍繕械, 俾毋敢視以文具. 各樣都試, 使之如例設行, 而設賑處, 則聚點、都試, 並令停止, 聚點處堤堰之移點, 完役依前筋, 着意舉行之意分付何如?’ 上曰: ‘依爲之’ 事傳教教是置. 傳教內辭意奉審施行尙事關” 是置有亦. 關內辭緣奉審, 官鎖門聚點, 各別申筋舉行爲乎矣, 填充虛伍、修繕器械等筋, 另加團束, 俾無疎虞之弊爲旆. 有堤堰邑段, 昨秋之移點疏築, 果皆是隨處竣完是驗? 如有未盡處是去等, 今春段置, 移赴完役, 期有實效是矣. 關到日時, 舉行形止, 先卽馳報宜當者.

云云關是置有亦. 關內辭緣奉審, 水陸操停止之意, 本營所屬各邑鎮良中, 星火知委施行爲旆. 官鎖門聚點段, 依例擇日設行爲乎矣, 軍兵練習、器械修繕、堤堰修治等筋, 嚴加操束, 期有實效宜當尙事. <兵、左·右水營>

같은 날. 비변사의 관문으로 인하여 관문(官門)이나 진문(鎭門)에 취점(聚點)<sup>72)</sup>을 설행(設行)하는 일로 53주와 법성진·고군산진·병영·좌수영·우수영·제주에 감결을 발송하였다.

【감결】이번에 받아본 비변사 관문 내용은, “이번에 계하(啓下)하신 올 1월 10일

72) 취점(聚點) : 영문(營門) 앞에 군사들을 불러 모아 점고(點考)하는 것을 말한다.

에 약방(藥房)이 입진(入診)할 때 대신(大臣)과 비국(備局)의 당상(堂上)들을 인견(引見) 입시(入侍)한 자리에서 영의정 이상황(李相瓚)이 아뢴, ‘각도의 춘조(春操 봄에 하는 군사 훈련)를 품계(稟啓)한 것이 지금 이미 일제히 도착하였습니다. 다만, 작년에 추조(秋操 가을철에 하는 군사 훈련)를 정지(停止)하시기를 품청(稟請)하니 여러 방면으로 생각하시어 사세(事勢)가 징발(徵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여겨 추조를 정지시키셨으니 곤궁한 봄철에 소요하는 백성들은 더욱 당연한 생각으로 따르다. 팔도(八道)와 사도(四都)<sup>73)</sup>에서 수륙(水陸)의 모든 훈련·순력(巡歷)·순점(巡點)<sup>74)</sup>은 모두 작년 추조의 예에 의거하여 정지하거나 면제하고 관문이나 진문의 취점은 각별히 엄하게 신칙하여 빈 대오를 메우고 기계(器械)를 잘 수선하여 감히 걸만 그럴 듯하게 꾸민 것으로 보이지 않게 하라. 각종의 도시(都試)<sup>75)</sup>는 예전같이 설행하게 하고 진흥하는 곳을 설치하였다면 취점과 도시는 모두 정지시키고 취점은 제언(堤堰)하는 곳으로 옮겨가서 점고하여 일을 완수하는 것은 전에 신칙했던 것에 의거하여 착실히 거행하라는 뜻을 분부하심이 어떠하십니까?’ 하니, 상(上)이 이르길 ‘아뢴 대로 행하라’고 전교하셨다. 전교내의 말씀을 봉심하여 시행하라.”는 관문이었다.

관문내의 말씀으로 연유하여 봉심하고 관문과 진문의 취점은 각별히 신칙하여 거행하되 빈 대오는 메워 채우고 기계를 보수하고 수선하는 절차는 따로 단속(團束)하여 거칠고 근심스러운 폐해가 없도록 하라.

제언(堤堰)이 있는 읍은 작년 가을에 옮겨 점고하여 물길을 트고 독을 쌓는 것이 과연 곳곳마다 완전하게 끝났는가? 만일 미진한 곳이 있거든 올봄에도 옮겨 가서 일을 완수하여 실효가 있기를 기대하라. 관문이 도착한 일시와 거행한 사실의 전말을 우선 바로 급히 보고함이 마땅할 일.

운운(云云)이라고 관문하였다. 관문내의 말씀을 봉심하여 수륙(水陸)의 훈련은 정지한다는 뜻을 전라도 감영에 속한 각 읍진(邑鎭)에 급히 자세하게 알리고 시행하라. 관문과 진문의 취점은 예(例)에 의거하여 날을 정해 설행하되 군병의 연습·기

73) 사도(四都) : 유수(留守)를 두었던 개성(開城)·광주(廣州)·수원(水原)·강화(江華)를 말한다.

74) 순점(巡點) : 돌아다니며 명부(名簿)에 낱날이 점(點)을 찍어 가면서 사람 수를 조사(調查)하는 것이다.

75) 도시(都試) : 조선 시대에 무사를 선발하기 위해 실시하던 시험으로, 태조4년(1395)부터 무재(武才) 발굴과 무예 진흥을 위하여 실시하였다. 중앙에서는 훈련도감의 당상관과 의정부의 제조도총부가 시험관이 되어 1년에 한 번 실시하였고, 지방은 공동으로 관찰사와 병마절도사 등이 1년에 두 번 실시하여 중앙에 보고하였다.

계의 수선·제방의 수선 등의 절차는 엄히 단속하여 실효가 있기를 기대함이 마땅할 일.<병영·좌수영·우수영>

十九日. 咸悅縣監、同福縣監、玉果縣監、茂長縣監, 并入見辭去. 兵使具錫朋, 赴任之路, 延命後入見. 和順縣監徐承淳來見.

19일. 함열 현감·동북 현감·옥과 현감·무장 현감이 함께 입견하고 하직하고 갔다. 병마절도사 구석봉(具錫朋)이 부임하는 길에 연명(延命)한 뒤에 입견하였다. 화순 현감 서승순(徐承淳)이 와서 보았다.

二十日. 兵使入見辭去. 和順縣監入見. 昌平縣令權涑, 赴任之路, 延命後入見辭去.

20일. 병마절도사가 입견하여 하직하고 갔다. 화순 현감이 입견하였다. 창평 현령 권속(權涑)이 부임하는 길에 연명(延命)한 뒤에 입견하여 하직하고 갔다.

同日. 以牙兵習操停止事封啓.

【狀啓】臣營屬牙兵習操, 每於水陸操停止之時, 例爲一體權停爲白有如乎. 今春本道水陸操, 及巡點并爲停止乙仍于, 同牙兵習操, 亦爲權停爲白乎於. 緣由馳啓爲白臥乎事.

같은 날. 아병(牙兵)<sup>76)</sup> 습조(習操 훈련)를 정지하는 일로 장계를 써서 봉하였다.

【장계】신의 감영에 속한 아병 습조는 매번 수륙(水陸) 훈련을 정지하는 때에는 으레 일체 임시로 정지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봄 본도의 수륙 훈련과 순점(巡點) 모두 정지함에 따라 아병 습조도 임시로 정지합니다. 이러한 연유로 치계(馳啓) 하옵는 일.

同日. 以同福李召史, 一胎三男事封啓.

【狀啓】筋到付同福縣監李寅元牒呈內, “卽接本縣外南面, 面任文狀, 則以爲‘本面沙坪里, 居良人曹三龍妻李召史, 今月十二日, 一胎產生三男’是如爲有等以, 緣由”

76) 아병(牙兵) : 아하친병(牙下親兵)의 약칭으로, 대장의 휘하에서 군무를 수행하는 군사를 칭하는 말이다.

牒報爲臥乎所，諜呈是白置有亦。上項李召史，一胎產生三男事，係異常，會付米二石，依定式題給後，緣由馳啓爲白去乎。令該曹會減，施行爲白只爲。

같은 날. 동북현(同福縣) 이조이[李召史]가 한 태(胎)에서 세 아들 쌍둥이가 생겨 날았다는 일로 장계를 써서 봉하였다.

【장계】이번에 받아본 동북 현감 이인원(李寅元)의 첩정(牒呈) 내용을 보니,

이번에 “동북현 외남면 면임의 문장(文狀)에 ‘외남면 사평리(沙坪里)에 거주하는 양인 조상룡(曹三龍)의 처 이조이가 1월 12일 한 태(胎)에서 세 아들 쌍둥이가 생겨 날았다고 하므로 이러한 연유로 첩보(牒報)합니다’ 라는 내용”의 첩정(牒呈)이었습니다.

위 조항의 이조이가 한 태(胎)에서 세 아들 쌍둥이가 생겨 날는 일은 보통과 다른 일에 관계되니 회부미(會付米)<sup>77)</sup> 2섬을 정식(定式)에 의거하여 제급(題給)<sup>78)</sup>한 뒤에 이러한 연유로 급히 아립니다. 해당 관아가 회감(會減)<sup>79)</sup>하게 하여 시행하게 하소서.

同日。以移運米一齊裝發之意，關飭各邑事，報均廳。

【報牒】爲牒報事。卽到廳關內飭該，“見今廳儲告罄，當下貢價，無以如例頒給，本道運牟與運米，今月內來納，以爲需用”亦爲有置。以移運穀事，連加嚴飭於分排各邑，期於正月望內，輸致于都會所，使之隨即裝發是乎乙加尼，連因日寒，尙峭冰合，未解左沿若，而邑猶未齊到乙仍于，同穀物星火運致，解冰卽時，一齊裝載發船之意，連加措辭，關飭於差使員及未到各邑爲乎旆。緣由牒報爲臥乎事。

같은 날. 이운미(移運米)를 일제히 실어 보내라는 뜻을 각 읍에 관문으로 신칙한 일로 균역청에 첩보(牒報)하였다.

【첩보】첩보하는 일. 이번에 도착한 균역청의 관문 내용의 요점은, “지금 균청에 쌓여있는 곡물이 비었다고 알리고 당장 공물 가격은 이전같이 반급(頒給)할 수 없어 본도의 운모(運牟)와 운미(運米)를 이번 달 안에 거둬들여야 수용(需用)할 수

77) 회부미(會付米) : 특정 계정(計定)에 집계 기장한 미곡을 말한다.

78) 제급(題給) : 관부에서 그렇게 처리 하라는 내용의 글과 함께 주는 것을 이른다.

79) 회감(會減) : 주고받을 것을 맞비겨서 남는 것을 셈하는 것을 이른다.

있다.” 고 합니다. 곡물을 이운(移運)하는 일을 분배(分排)한 각 읍에 연달아 엄하게 신칙하여 기어코 1월 15일 안에 도회소로 실어 보내 그들로 하여금 즉시 꾸러 떠나보내게 하려하였습니다. 그런데 연이어 날이 차고 오히려 심하게 어는 날씨가 인하여 좌연(左沿)<sup>80</sup>같은 지역은 날씨가 풀리지 않고 읍(邑)에서도 아직 모두 도착하지 않음에 따라 동(同) 곡물을 급히 운반하는 것을 얼음이 녹는 즉시 일제히 적재하여 배를 떠나보내라는 뜻을 연이어 글을 지어 차사원과 아직 도착하지 않은 각 읍에 관문으로 신칙하였습니다. 이런 연유로 급히 보고합니다.

同日. 以移運米, 期於今晦內輸納事, 發關高敞縣.

【關文】爲星火舉行事. 以移運米, 今月內上納事, 因均廳關又有所發關是在果. 法聖倉所納邑中, 光、羅、綾、南四邑米段, 差使員監捧, 次既已發行, 則外他各邑穀物段置, 其間想必次第來到是如乎. 設或有一二邑未到處是良置, 此則使該倉僉使, 替捧裝載是遣, 差使員則自濟倉監捧所, 直爲馳進營下, 仍往羣山倉, 同倉所納各邑米, 亦卽一齊裝載火速領發爲乎矣. 見今京司支用, 萬分時急, 若不今月內上納, 則勢將拖到來月, 其所葛藤當復何如是乙喻? 迨此氷泮潮生之時, 期於今晦內發船輸納是矣, 毋或晷刻稽滯, 除尋常, 各別惕念舉行宜當向事.

같은 날. 이운미(移運米)를 기어코 1월 그믐 안에 수송하여 납부할 일로 고창현에 관문을 발송하였다.

【관문】 급히 거행할 일. 이운미를 1월 안에 상납하는 일을 균역청의 관문으로 인하여 또 관문을 발송한 바가 있었다. 법성창(法聖倉)에 납부한 읍 가운데 광주(光州)·나주(羅州)·능주(綾州)·남평(南平) 4개 읍의 쌀은 차사원(差使員)이 감독하여 거둬들여 차례로 이미 떠나보냈으니 이외 다른 각 읍의 곡물들도 그 사이에 반드시 순서대로 도착했으리라고 생각한다.

설혹 한두 읍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을지라도 이것은 해당 창고의 첨사(僉使)가 대신 받아 꾸러 싣게 하고 차사원은 제창(濟倉) 감봉소(監捧所)로부터 곧바로 감

80) 좌연(左沿) : 전라좌도를 따라 있는 지역으로, 조선 시대에 전라도 지방의 행정구역을 동·서로 나누었던 때 전라도 동부 지역의 행정구역을 말한다. 고려 때 전북 지방을 강남도(江南道)로, 전남 지방은 해양도(海洋道)라 하였다가, 1018년(현종9)에 이를 합하여 전라도라 하였다. 전라 좌·우도는 1892년(고종33)에 남·북도의 체제로 바뀌었다.

영으로 달려 나오게 하여 그대로 군산창으로 가서 동(同) 창고에서 거둬들인 각읍의 쌀 또한 바로 일제히 꾸려 싣고 급히 거느리고 출발하라. 다만, 지금 경사(京司)의 지용(支用 지출 비용)이 매우 시급하니 만일 이달 안으로 상납되지 않으면 형세가 장차 다음 달로 늘어져 도착하니 그 갈등(葛藤)을 다시 어떻게 감당하겠는가?

이렇게 얼음이 녹고 밀물이 생기는 때에 이르러 1월 그믐 안에 배를 띄워 실어 납부할 것을 기약하여 혹시라도 잠깐 동안이라도 머뭇거리며 지체하지 말고 보통으로 여기지 말아 각별히 척념(惕念)하여 거행함이 마땅할 일.





### 3. 1834년(순조34) 1월 21~30일 : 세곡조운(稅穀漕運)을 감결하다

二十一日. 和順縣監入見. 淳昌群守沈宜復來見. 和順縣監夜又入見.

21일. 화순 현감이 입견하였다. 순창 군수 심의복이 와서 보았다. 화순 현감이 밤에 또 입견하였다.

同日. 回戶曹關, 以稅穀漕運申飭事, 發廿五十三州、法聖、古羣山鎮.

【甘結】 節到付戶曹關內, “節啓下教曹事日內, ‘漕轉有國之大政也, 通編所載事目條列, 極其詳備 分叱除良. 朝家之前後飭令, 不啻截嚴. 而挽近以來, 紀綱漸弛, 諸道舉行, 去益稽緩, 揆以事體, 萬萬寒心. 今年漕運, 若復如前, 愆納不謹護送, 則當該守令, 隨現查出, 從重勸處, 斷不饒貸. 稅穀則趁期收捧, 俾即裝載, 船械則詳察完否, 預先整頓, 沙格故敗之習、監色作奸之弊及所謂除只等名色, 一一詳覈, 各別痛禁 爲白乎. 裝發之期、上納之限, 較考法典, 排定月日, 無或違越, 而捧稅領運差員, 亦各淬礪警惕, 後錄諸條, 着意猛省, 無抵重究之意, 嚴飭諸道道臣 爲白乎. 湖西再運, 今既還復, 前規初運船隻, 勿令逗遛洋中, 卽爲發送, 分付舟橋司, 相考陳省月日, 如有遲滯船隻摘發, 重繩事, 一體申飭何如?’ 啓 ‘依允’ 亦教是置. 事日內辭緣及判付內辭意奉審施行, 宜當” 向事關是齊. 後錄內, “一. 田稅正月未出浦守令, 罷黜 爲白齊. 一. 漕船領運, 嶺南之赤梁·龜山兩僉使、齊浦萬戶, 湖南之法聖·羣山兩僉使、咸悅縣監、湖西之牙山縣監, 永定差員, 依此舉行, 直上納各邑守令, 姓名及差員分排成冊, 依定式當年二月內, 亦卽修報本曹 爲白齊. 一. 各道稅船, 每隻載一千石, 漕船每隻, 湖西則八百石, 嶺南、湖南一千石, 而漕運之限, 則京畿、公忠、黃海三道 段, 二月二十日以前發船, 三月初旬內上納; 全羅道 段, 三月十五日以前發船, 四月初旬內上納; 慶尙道 段, 三月十五日以前發船, 五月十五日內上納 爲白乎. 節屆霖潦, 漸致水弱, 則海路往來, 實多憂慮, 故較計水路之遠近, 排定上納之期限, 苟能遵此無違, 則漕運可保無虞 是白如乎. 晚時裝發之守令、差員, 過限上納之監色、沙格, 濫數裝載之守令及船人, 隨現嚴勸, 昭載法典 分叱不諭. 前後飭教, 不啻諄復嚴截, 則外邑舉行, 固當十分惕念, 而全無畏慎之意, 每多循私之習, 濫載晚發, 不遵定式, 致使國穀有花消臭載之弊, 揆以事體, 萬萬寒心. 此後 段, 勿論漕稅船, 裝運之際, 守

令、差員，必趁法典期限，必視船隻完固，親審裝載，另加董督，毋至違式抵罪之地事，各別嚴飭爲白齊。一。舟橋船執籌後，邑名及船隻下去到泊于各該邑日子，預爲詳知，然後可考其勤慢，執籌邑段，自舟橋司修成冊，移送爲白乎矣。到泊日子段，自各該邑，趁卽馳報事，嚴飭爲白齊。一。漕倉屬邑守令，領稅親納，乃是通編定制，守令、差員，自當按例舉行，而近來直上納，該邑吏鄉、官隸，別立名色，多般侵漁分叱除良，稱以官用除只，徵歛於沙格，此實沙格輩，犯及元穀之弊源。年前作隊船停罷之日，朝家申飭，極爲嚴截，道臣必當痛禁，外邑亦當痛革是白在果。此後或以官用除只、下屬輩情債等名色，雖升斗之微，復踵誅求之弊，則依辛丑筵教，守令勤以賊律，下屬嚴刑流配，各道道臣，知此申飭，加意廉探，隨現狀聞爲白齊。一。漕邑稅穀，春初輸納漕倉後，各該邑報其月日於本曹，領運差員，亦以裝發日子馳報，而若有過限及違式者，則考覈論罪，曾有定式，毋或視以循例，另加嚴飭，一一修報，以爲憑考勤慢之地爲白齊。一。漕稅船湖西境點檢一款，年前因湖南道臣狀聞，水虞侯點船，仍復舊規，安興鎮點船，永爲革罷是白如乎。虞侯點船時，逢點日及發送日書于標紙，踏印出付於各其邑監色，仍以發船月日卽報本曹，及其上納時，船人標紙、虞侯報狀照檢處之，以防中路留滯之弊爲白齊。一。漕稅船水護一款，法意甚嚴，近來舉行全忽。意外風濤姑捨，是浪靜風恬之時，掛嶼觸傷，比比有之，顧安有水護之意哉？此後段，各其境內，隱嶼險灘，晝則立標，夜則舉火，俾爲先避預防之道爲白乎矣。如或不謹，護送以致狼貝，則堂上守令、侍從守令罷黜，堂下守令決杖，邊將重棍，監色刑配，任掌重刑等事，並一遵定式施行爲白齊。一。漕稅船上來時，若遇風浪，中間留滯則，地方官，具由報營，粘移本曹爲白乎矣。船人無端淹留，則自官促發，俾勿暫留法意甚嚴，而近來各邑，既不促發又不報營，任其行止，致有奸弊，今年段，勿論漕稅船，京江到泊後，考其稽留月日及地方，如無該地方粘移之報，則該守令論罪爲白齊。一。直上納邑，則依法典，視其道里遠近，每四五邑，定一差員，所管邑穀物，點閱分載，發船月日先報本曹，船人處亦爲書給一件爲白乎矣。各邑監色點便，代送十之八九，而守令初不檢察極爲駭。然此後段，依事目，必以捧上實吏鄉，騎船爲白乎矣，若船隻數多，則實吏鄉外，加定勤幹吏鄉，領護上送，而仍使捧上吏鄉，都領各船。或有稱病，落後換面替點者，摘發嚴處，監色初不定送，船人自當上納者，該守令從重論罪爲白齊。一。諸邑不屬於漕倉者，田稅以地土船，直納京倉，無地土船邑，則賃船上納，而船主及沙工、船卒等，必擇有根脚者許載，各其姓名、年歲、容貌疤、居住、父名并以成冊修

報，以爲憑處之地爲白乎矣，違者該守令拿問定罪爲白齊。一。直上納各邑地土船，以土民之故，監色輩惟意操縱，減給船價，勒令逢載，船人失利，致有偷竊元穀之弊者，既極可駭，又或拘於船人顏，私以錢防納者，尤爲痛惋，隨其現發當該守令，勸以重律爲白齊。一。田稅載後，私自換船者，監色、沙格，依敗船罪，減一等論爲白齊。一。三南漕船駕海糧、雜費，若或前期預下，則上納時，犯用負逋之弊，無以禁防，所逋之穀，亦無以充納，此所以嶺南漕倉節目，駕海糧、雜費，切勿預給事，有所載錄是白如乎。兩湖漕船隻段置，亦依此例，先給折半，餘則留倉，必待無事上納，無事回泊後，盡數上下事申飭施行爲白齊。一。船價米，各倉地方官與差員，田稅一時眼同捧上，船頭出給爲白乎矣，船價條上納前，先自犯手，則不飭守令，依反作律，施行五年禁錮，鄉色以國穀偷竊律，論爲白齊。一。京江無賴輩，空手下來，稱以造船，預受船價又或代錢收捧，質米防納，莫非守令循私蔑法之致，此後段，如或現發，船人嚴處，姑勿論，守令爲先斷以贓污之律爲白齊。一。稅穀捧上時，米色如或不精是白去等，監捧差使員及該邑守令，從重論罪爲白齊。

一。斗斛本有度支頒降者，而近來各邑率多不齊，至入於繡啓論列事，甚可駭，自今以後，一依籌司覆啓行會，以較正新斛行用，俾無如前不齊之弊爲白齊。一。漕稅船，每隻必有斛倍封者，上納時，穀品斗數視以爲準之意，年前事目，已有申飭，毋論漕稅船，每船各載斛倍封事，更爲嚴飭，若或違式，則領運差員及裝載官，各別論罪爲白齊。一。米穀滲漏之弊，專由於石子之不能堅密。今年段，必以麻繩編成，務從精緻細網之上，加絞大索爲白乎矣，若或如前疎漏，則當該差員論罪爲白齊。一。上納穀物之和水現發者，勸以一律，昭載法典，而倉官若或循私許捧，不爲摘發，則依法典，穀物所在邑，勿限年定配爲白齊。一。田稅、正供，事體自別，而船人奸僞轉甚，或多挪移，先納於各衙門，事體不尊，奸弊又滋。此後稅穀與各衙門穀同載者，若有他衙門先納之事，則監色、沙格重勘，守令論罪事，載在通編，列邑知此，嚴飭於監色、沙格，未到泊前，先呈陳省於本曹，以爲首先上納之地，而移納他衙門者，一依通編，勘斷爲白齊。一。空船回還，不謹致敗者，生徵船價，假稱致敗，任自斥責者，船隻生徵後，論以一律，法意甚嚴。此後段，漕船回還時，必令都沙工騎船，如有不謹致敗者，覈得情實，依律勘斷，船材勿許斫給，漕米毋得會減事，更爲嚴明，約束於沙格處，俾絕奸弊爲白齊。一。稅船到泊京江後，管領輩，符同船漢及倉主人，隱匿陳省，逗遛幻弄，幾乎無船不然，自戶惠廳，這這廉探，時時摘奸，如有現發之事，則移送捕廳，雖無奸

狀綻露，若或無端逗遛，則移送秋曹，如法處斷爲白齊。一。事目之啓下行會，何等嚴重？而營邑初不警惕，視同例飭，不信朝令，隳壞紀綱，孰甚於此？今年段，斷當一從節目，以法從事，自各該巡營到卽，知委於漕運各邑、各倉及差員，使之各自惕念，仍令曉諭於吏鄉、船格爲白乎矣，舉行形止，道臣及各差員亦，卽馳報本曹，以爲憑處之地爲白乎旆。今此事目，不但用之於稅大同漕轉，凡干以米上納處，一體施行爲白齊。一。未盡條件，追後磨鍊爲白齊。” 後錄及關是置有亦。捧稅條件，已有所別飭，其果着意舉行是諭？漕轉事目，若是申複，今年稅納，不可如前稽緩，依前關飭，期於限內裝稅，毋或愆滯，大段生梗之弊爲旆。水護沿邑鎮段，立性指路等節，依事目着意舉行宜當者。

같은 날. 호조(戶曹) 관문으로 인하여 세곡(稅穀)의 조운(漕運)을 신칙하는 일로 53주와 법성진 고군산진에 감결을 발송하였다.

【감결】 이번에 받아본 호조의 관문 내용은, “이번에 계하(啓下)하신 호조의 사목 안에 ‘조전(漕轉)<sup>81)</sup>은 나라에 있어서는 큰 정사이고 『대전통편(大典通編)』에 실려 있는 사목은 조목조목 열거된 것이 지극히 자세하게 구비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조정이 전후에 신칙한 것이 매우 엄할 뿐만이 아닌데도 최근 이래로 기강이 점점 해이해져 여러 도(道)에서 거행된 것이 갈수록 더욱 지체되니 일의 체모를 헤아려 보면 매우 한심하다.

금년 조운도 만약 다시 이전같이 납부 기한을 어기고 호송(護送)을 힘쓰지 않는다면 당해 수령은 드러나는 대로 조사하여 찾아내 무거운 죄로 처벌하고 결단코 너그럽게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세곡은 기한에 맞춰 거둬들여 즉시 꾸러 신고, 배의 도구[船械]는 완전 여부를 자세히 살펴 미리 먼저 정돈하고, 사공과 결꾼들이 고의적으로 횡방하는 습속과 감색(監色)<sup>82)</sup>들이 작간(作奸)하는 폐해와 이른바 뇌물[제지(除只)<sup>83)</sup>] 등의 명색을 일일이 자세하게 사실을 밝혀 각별히 엄금하라.

81) 조전(漕轉) : 각도에서 나라에 수납(收納)하던 조세미(租稅米)를 서울의 경창(京倉)으로 운반하던 제도이다. 수운(水運)과 육운(陸運)을 통하여 상납 기한까지 서울로 수송하였다.

82) 감색(監色) : 감관(監官)과 색리(色吏)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83) 제지(除只) : 뇌물을 뜻한다. 『승정원일기』 영조 51년 3월 24일 기사에, 경강선이 호남의 세곡을 운반할 때에, 세곡을 실을 곳이 많은 읍에서 사공(沙工)과 격군(格軍)에게 요구하는 뇌물의 명색으로 관가에 바치는 제지와 향리(鄉吏)에게 주는 인정(人情)이 있는데, 이 때문에 조운이 늦어지고 세곡이 흠축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 보면 ‘제지(除只)’는 감관(監官)과 색리(色吏)가 원래의 세곡에서 사공과 격군에게 요구한 뇌물인 듯하다.

꾸려 실어 보내는 기한과 상납하는 기한을 법전으로 비교하여 해아리고 월일(月日)을 배정(排定)하여 혹시라도 기한을 넘기지 말고 세곡을 바치는 영운차원(領運差員) 또한 각자 힘쓰고 노력하며 경계하고 삼가며 후록(後錄)한 제조(諸條)를 착실히 깊이 살펴보아 거듭 규명하는 뜻에 저촉되지 말 것을 제도(諸道)의 도신(道臣)들에게 엄하게 단속하라.

호서(湖西)에서 다시 운송하는 배는 지금 이미 다시 돌아왔으니, 이전 규정에 처음 운반하는 선박은 바다 가운데에서 머뭇거리며 지체하지 말게 하고 바로 떠나 보낼 것을 주교사(舟橋司)에 분부하고 진성장(陳省狀)<sup>84)</sup>의 월일과 상고(相考)하여 만일 지체하는 선박이 적발되면 무거운 법으로 다스릴 것을 일체 신칙하시는 것이 어떨습니까?’ 하니, ‘윤택한다’ 고 하셨다. 사목(事目)내의 말씀과 판부(判付)<sup>85)</sup>하신 말씀을 봉심하여 시행하는 것이 마땅할 일” 로 관문하셨다.

후록(後錄)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전세(田稅)를 1월에 아직도 포구에 내지 않은 수령은 파면한다.
2. 조선(漕船)<sup>86)</sup>을 통솔하여 운반하는 자는 영남(嶺南)의 적량(赤梁)·구산(龜山)의 두 첨사와 제포 만호(齊浦萬戶), 호남(湖南)의 법성(法聖)·군산(群山)의 두 첨사와 함열 현감(咸悅縣監)·호서(湖西)의 아산 현감(牙山縣監)을 영구히 차사원(差使員)으로 정하니 이대로 거행하고, 세곡을 직접 바치는 각 읍 수령의 성명 및 차원을 분배한 장부는 정식(定式)에 따라 당년(當年) 2월 안에 즉시 정리하여 호조에 보고한다.
3. 각 도(道)의 세선(稅船)은 1척(隻)마다 1천섬씩 신고, 조선(漕船)은 1척마다 호서의 경우는 8백 섬씩을, 영남과 호남의 경우는 1천섬씩을 신고 조운(漕運)의 기한은 경기(京畿)·공충(公忠)·황해(黃海) 3도는 2월 20일 이전에 배를 출발하여 3월 초순 안에 상납하고, 전라도는 3월 15일 이전에 배를 출발하여 4월 초순 안에 상납하며, 경상도는 3월 15일 이전에 배를 출발하여 5월 15일 안에 상납한다. 다만, 절기가 장마철에 이르러 점차 물의 힘이 약하게 되면 해로로 왕래하는

84) 진성장(陳省狀) : 진성(陳省)이라고도 한다. 진(陳)은 상황 진술을, 성(省)은 살펴보는 일을 뜻하여 신성장(申省狀)과 동의(同義)로, 일반적으로는 수령(守令)이 소장사(所掌事)에 관한 자세한 사정을 진술(陳述)한 문서를 뜻하여 그것을 소관 경야문(京衙門)에 보내어 청원·진정의 구실을 하게 하는 문서를 뜻한다.(한우근, 이성무, 민현구, 이태진, 권오영 역, 『경국대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

85) 판부(判付) : 주안(奏案)을 임금이 윤가(允可)하는 것으로, 판하(判下)와 같은 말이다.

86) 조선(漕船) : 조선 시대에 조운(漕運)에 쓰던 선박(船舶)이다. 나라에서 거둔 조세미(租稅米)와 대동미(大同米)를 각 지방의 주창(州倉)에서 경창(京倉)으로 나르는 데 쓰였다.

것이 실로 걱정이 많기 때문에 수로의 원근을 비교하고 헤아려서 상납하는 기한을 배정하였으니 진실로 이것을 쫓아 어김이 없다면 조운은 우려가 없다고 보증할만하다고 한다. 따라서 때늦게 짐을 꾸려 보내는 수령, 차원과 기한을 넘겨 상납하는 감관·색리·사공·격군과 정해진 수량을 초과하여 짐을 꾸려 실은 수령·뱃사람은 발견되는 대로 엄히 조사하여 처벌 할 것이 법전에 분명히 실려 있다. 뿐만 아니라 전후로 전교를 신척하기를 지극하고 거듭했을 뿐 아니라 엄절(嚴截)하였으니 외읍에서 거행함은 진실로 마땅히 십분 삼가야 하는데도 전혀 두렵고 삼가는 뜻이 없어 매번 사사로움을 따르는 습속이 많고 멋대로 늦게 실고 떠나보내 정식을 좇지 아니하여 국곡(國穀)이 없어지고 못쓰게 되는 폐해까지 이르게 하였으니 일의 체모를 헤아리면 매우 한심하다.

이후에는 조선(漕船)과 세선(稅船)을 논하지 말고 꾸려 운반하는 때에 수령·차원은 반드시 법전의 기한에 맞추고 반드시 선박이 완전하고 견고한지 보고 직접 꾸려 실는 것을 살피고 따로 감독하고 격려하여 법을 위반하여 죄를 받는 지경에 이르지 말 것을 각별히 엄하게 신척한다.

4. 주교선(舟橋船)으로 집주(執籌)<sup>87)</sup>한 뒤에 읍명과 선박이 내려가 각 해당읍에 정박한 일자를 미리 자세히 알은 뒤에야 근만(勤慢)을 헤아릴 수 있으니 집주(執籌)된 읍은 주교사(舟橋司)<sup>88)</sup>로부터 정리한 장부를 이송하라. 따라서 배가 정박한 일자는 각 해당 읍으로부터 즉시 급히 알릴 것을 엄히 신척한다.

5. 조창(漕倉)의 속읍(屬邑) 수령이 세곡을 영운(領運)하여 직접 바치는 것은 바로 『대전통편(大典通編)』에 정해진 제도이니, 수령과 차원이 스스로 규례를 살펴 준행해야 하는데도, 근래에 세곡을 직접 바치는 읍들의 이향(吏鄉)과 관예(官隸)가 별도로 명색을 세워서 갖가지 방법으로 침탈했을 뿐만 아니라 관용제지(官用除只)<sup>89)</sup>라 핑계대고는 사공과 격군에게 거두니, 이것이 실로 사공과 격군들이 원곡(元穀)에까지 손을 대어 죄를 짓는 폐단의 근원이다. 연전에 작대선(作隊船)<sup>90)</sup>을 금지할 때에 조정에서 신척한 것이 매우 엄격하였으니, 도신은 필시 못

87) 집주(執籌) : 징발(徵發)되었음을 말한다.

88) 주교사(舟橋司) : 조선 시대에 임금이 거동(舉動)할 때에 한강에 부교(浮橋)를 놓는 일과 양호(兩湖)의 조운(漕運) 등을 맡아보던 관청이다. 정조(正祖) 13년(1789)에 설치하여 고종(高宗) 19년(1882)에 폐지하였다.

89) 관용제지(官用除只) : 관(官)에서 요구하는 뇌물을 말한다. 관가에서 쓴다는 명목으로 감관(監官)과 색리(色吏)가 원래의 세곡에서 사공과 격군에게 요구한 뇌물인 듯하다.

90) 작대선(作隊船) : 호남의 전세(田稅)와 대동(大同)을 조선(漕船) 즉 관선(官船) 이외에 경강선(京江

하게 금지시켜야만 하고, 외읍 또한 마땅히 분명하게 바꾸어만 한다. 이후로 흑관의 뇌물[除只]이니 하인배들의 정채(情債)<sup>91)</sup>니 하는 등의 명색으로 비록 되·말[升斗]처럼 얼마 안 되는 양이라 하더라도 관에서 백성에게 강제로 빼앗는 버릇을 되풀이한다면 신축년(1781, 정조5) 연석(筵席)의 하교에 의거하여 수령은 장률(贓律)<sup>92)</sup>로 처벌하고, 하속(下屬)은 엄히 형벌하여 유배(流配)보낼 것이니, 각도의 도신(道臣)은 이를 알아서 신척하고 마음을 다해 염탐(廉探)하여 드러나는 대로 장계로 아뢴다.

6. 조운(漕運)해야 하는 고을의 세곡(稅穀)은 초봉에 조창(漕倉)에 실어다 바친 뒤에 각 해당 읍은 그 월일을 호조(戶曹)에 보고하고, 영운 차원 역시 짐을 꾸려 출발한 월일을 급히 보고하되, 만약 기한을 넘기거나 격식을 위반한 경우가 있으면 조사하여 밝혀서 논죄(論罪)하는 것은 일찍이 정해진 법식이 있으니, 또한 흑시라도 관례를 따른다는 것으로 보지 말고 특별히 더 엄히 신척해서 하나하나 정리하여 보고하게 함으로써 사실에 근거하여 근만(勤慢)을 꼼꼼하게 따지는 바탕으로 삼는다.

7. 세선(稅船)과 조선(漕船)을 호서의 경계에서 점검(點檢)하는 조항은, 연전에 호남 도신이 보고한 장계로 인하여 충청 수우후(忠淸水虞候)가 배를 점검하고 그 대로 옛 규례를 회복하였으며 안흥진(安興鎭)에서 점검하는 것은 영구히 없어졌다. 우후(虞候)가 배를 점검할 때에 점검을 받은 날 및 배가 출발한 날을 표지(標紙)에 쓰고 답인(踏印)해서 각 읍의 감관과 색리에게 내준 다음에 배를 출발시킨 월일을 즉시 호조에 보고하고, 상납할 때에 이르러 뱃사람의 표지와 우후의 보장(報狀)을 대조하여 검사해서 처리하고 중간에 머물러 지체되는 폐단을 막는다.

8. 조선(漕船)과 세선(稅船)을 수호(水護)<sup>93)</sup>하는 조항은, 법의(法意)가 매우 엄한데 근래에는 거행됨이 완전 소홀하다. 뜻밖의 파도가 높을 때는 우선 놔두고 논

---

船) 등 사선(私船)으로 운송하여 직납(直納)하는 경우에 치패(致敗) 등의 폐단이 심각해지자, 경강선들에게 선단(船團)을 만들어 연대 책임 하에 그 운송을 전담하도록 해 주었던 것을 작대(作隊)라 한다. 작대선이란 그렇게 작대한 경강선을 말한다.(고동환, 『朝鮮 後期 서울商業發達史 研究』, 지식산업사, 1998)

- 91) 정채(情債) : 지방 관원이 서울에 있는 중앙 관아의 서리에게 아쉬운 청을 하고 정례(情禮)로 주던 돈으로, 정전(情錢)이라고도 한다.
- 92) 장률(贓律) : 장죄(贓罪)를 다스리던 법률이다. 장물이 시가(時價)로 따져 40관(貫)이 넘으면 사형, 그 이하는 정도에 따라 자자(刺字)·도류(徒流)·장(杖)·(笞)의 형벌에 처하였다.
- 93) 수호(水護) : 조운할 때에 열읍의 감관과 색리가 작은 도서(島嶼)나 급한 여울에 낮에는 표지를 세우고 밤에는 횃불을 켜서, 조운선이 미리 피하게 하여 잘못되는 일 없이 호송하도록 한 것을 말한다.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파도가 잠잠하고 바람도 불지 않는 때에도 작은 섬에 걸려 손상되는 일이 드물지 않고 흔하니 돌아보건대 어찌 수호(水護)한다는 생각이 있겠는가? 이후로는 각 경내의 숨겨진 작은 섬이나 험난한 여울에 낮에는 표지를 세우고 밤에는 횃불을 켜서 먼저 피하고 미리 방지하는 방도가 되도록 하라. 만일 흑시라도 삼가지 아니하여 호송하는 것이 낭패를 보게 되면 당상 수령과 시종(侍從)<sup>94</sup>을 지낸 수령은 파면하고 당하관 수령은 장(杖)을 치고, 변장(邊將)은 중곤(重棍)을 치고, 감관과 색리는 형배(刑配)하고, 임장(任掌)은 무겁게 처벌하는 등을 모두 똑같이 정해진 법식에 따라 시행한다.

9. 조선과 세선이 올라올 때에 만일 풍랑을 만나 중간에 머물러서 지체하게 되면 지방관이 사유를 갖추어 감영에 보고하고 호조에 문건을 첨부하여 공문을 보내라. 뱃사람이 까닭 없이 오래 머무르면 관에서 출발을 재촉해서 잠시도 머물지 못하게 하는 법의가 매우 엄격한데도, 근래에 각 읍은 이미 출발을 재촉하지도 않는 데다 또 영에 보고하지도 않고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두어서 간악한 폐단이 있게 하였으니, 금년에는 조선과 세선을 막론하고 경강(京江)에 정박한 뒤에 지체된 월일 및 지방을 상고해서 만일 해당 지방관이 문건을 첨부하여 공문을 보내 보고하지 않으면 수령을 논죄한다.

10. 세곡을 직접 바치는 읍은 법전에 따라 거리의 원근을 보고 4, 5개 읍마다 차사원 1명씩을 정해서 소관 읍의 곡물을 점열(點閱)하여 나누어 싣게 하고 배가 출발한 월일을 먼저 호조에 보고하고 뱃사람에게도 1건(件)을 써주게 한다. 각 읍의 감관과 색리가 점열을 편의대로 하여 대신 보내는 것이 열에 여덟아홉인데도 수령이 애초에 검찰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도 놀랍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목에 따라 반드시 거두어들일 실이향(實吏鄉 실무 아전과 향임(鄉任))을 배에 태우되 선박의 수가 많으면 실이향 이외에 부지런하고 재간이 있는 이향을 더 정해서 이끌어 보호하게 하여 올려 보내고 이어서 거두어들이는 이향으로 하여금 각 배를 모두 영솔(領率)하게 하라. 흑 병을 핑계 대고 뒤떨어지거나 사람을 바꿔 대신 점열하게 하는 자가 있으면 적발해서 엄히 처벌하고, 감관과 색리를 애당초 정해서 보내지 않거나 뱃사람이 스스로 상납하게 되면 해당 수령을 엄하게 논죄한다.

11. 제읍(諸邑)이 조창(漕倉)에 속하지 않은 경우, 전세(田稅)는 지토선(地土

94) 시종(侍從) : 시종신(侍從臣)의 준말로, 홍문관(弘文館)의 옥당(玉堂), 사헌부 또는 사간원(司諫院)의 대간(臺諫), 예문관의 검열(檢閱), 승정원의 주서(注書) 등 왕을 항상 시종하는 신하의 총칭이다.



船)<sup>95</sup>으로 직접 경창(京倉)에 바치고 지토선이 없는 읍은 배를 임대(賃貸)하여 상납하고 배주인과 사공(沙工) 및 수군(水軍) 등은 반드시 근각자(根脚者)<sup>96</sup>를 택하여 태우고 그들 각각의 성명·나이·용모의 특징·주소·아버지 이름을 모두 성책으로 정리하여 보고하여 사실에 근거하여 처리하는 바탕으로 삼되 위반하는 해당 수령은 잡아다 문초하고 죄를 정한다.

12. 세곡을 직접 바치는 각 읍의 지토선은 토착민이라는 이유로 감관과 색리들이 제멋대로 농간을 부려 선가(船價)를 줄여서 주고 억지로 배에 싣게 해서 뱃사람이 손해를 보고 원곡을 훔치는 폐단이 있게 하는 것이 이미 너무도 놀랍다. 그런데다 뱃사람과 안면이 있어 생기는 인정에 구매되어 사사로이 돈으로 방납(防納)<sup>97</sup>하기도 하니 더욱더 통탄할 일이니, 적발되는 대로 해당 수령을 엄한 형률로 처벌한다.

13. 전세(田稅)를 실은 뒤에 사사로이 배를 바꾼 경우는 감관(監官)과 색리(色吏) 그리고 사공(沙工)과 격군(格軍)은 패선죄(敗船罪)<sup>98</sup>에 의거하여 죄를 1등급 감하여 논죄한다.

14. 삼남의 조선(漕船)이 항해할 때 먹을 식량과 잡비(雜費)를 혹 기한 전에 미리 주면 상납할 때에 마음대로 써버려 관물(官物)을 축내는[負逋] 폐단을 막을 수가 없고 포흠(逋欠)낸 수량 또한 채워 바칠 수가 없다. 이것이 영남의 조창절목(漕倉節目) 가운데에 항해할 때 들어가는 잡비를 절대 미리 주지 말라고 기록한 이유이다. 따라서 호남과 호서의 조선(漕船) 역시 이 예에 따라 절반은 먼저 주고 나머지는 조창에 남겨 두었다가 반드시 무사히 상납하고 무사히 돌아와 정박하기를 기다린 뒤에, 남은 수 모두를 지급할 것을 조창에 신칙하여 시행한다.

15. 선가미(船價米 배삯으로 받는 쌀)는 각 조창의 지방관과 차원이 전세(田稅)를 동시에 안동(眼同 대동(帶同))하여 바치고 뱃머리에서 내어주되 뱃삯 조목을 상납하기 전에 미리 스스로 범수(犯手 멋대로 써버림)하고 신칙하지 못한 수령은 반작률(反作律)<sup>99</sup>에 의거하여 5년의 금고(禁錮)를 시행하고 향색(鄉色)은 국곡(國穀)

95) 지토선(地土船) : 지방 토착민이 소유한 배, 또는 지방 관아에 등록된 배를 말한다.

96) 근각자(根脚者) : 신원(身元)이 확실(確實)한 사람을 이른다.

97) 방납(防納) : 조선 시대에 상인(商人)이나 관리(官吏)들이 중간에서 남의 공물(貢物)이나 세금을 대신(代身) 바치고 그 대가(代價)를 받던 일이다.

98) 패선죄(敗船罪) : 선박을 전복시킨 죄이다. 『경국대전(經國大典)』 「호전(戶典) 조운(漕運) 조(條)에 따르면, 고의로 선박을 파선시킨 경우인 고패선죄(故敗船罪)는 전액 추징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1등을 감하였으므로 일부를 추징하는 것으로 보인다.

99) 반작률(反作律) : 반작(反作)은 환곡출납시(還穀出納時)의 험잡 또는 부정(不正)으로 만든 허위문서를 의

을 훔친 법률로 논죄한다.

16. 경강의 무뢰배들이 빈손으로 내려가서 배를 만든다고 핑계 대고 미리 선가(船價)를 받거나 또 돈으로 거둬들이고 쌀을 많이 사들여서 방납(防納)하기도 하니, 이는 모두 수령이 사리를 좇아 법률을 저버리는 소치이다. 이후로 혹 적발되면 뱃사람을 엄히 감처하는 것은 우선 논할 것도 없고 수령을 먼저 장오(贓汚)<sup>100</sup>의 형률로 처단한다.

17. 세곡을 바칠 때 미색(米色)이 혹 정(精)하지 않거든 감봉(監捧) 차사원(差使員)과 해당 읍 수령은 무거운 형량을 좇아 논죄한다.

18. 두곡(斗斛)은 본래 탁지부(度支部)에서 내려준 것이 있었는데도 근래는 각읍이 대부분 일정하지 않아 심지어 암행어사의 장계(狀啓)의 논열(論列)에까지 들어 있어 심히 놀랄만 하니 지금 이후로는 한결같이 비변사에 복계(覆啓)<sup>101</sup>한 것을 행회(行會)<sup>102</sup>하고 새 곡자(斛子) 쌀을 되(되)를 사용하여 바로잡아 전과같이 일정하지 않은 폐단이 없도록 한다.

19. 조선과 세선의 경우 배마다 반드시 곡대봉(斛袋封)<sup>103</sup>을 둔 것은 상납할 때에 곡물의 품질과 말수를 곡대봉에 견주어 기준으로 삼으려는 뜻으로 연전의 사목에 이미 신칙한 것이 있으니, 조선(漕船)과 세선(稅船)을 막론하고 배마다 각각 곡대봉을 실을 것을 다시 엄히 신칙하니, 혹시라도 규식을 어길 경우 영운차원(領運差員)과 장재관(裝載官) 꾸러 실는 관원)을 각별히 논죄한다.

20. 미곡(米穀)이 새는 폐단은 모두 가마니가 견고하고 촘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금년에는 반드시 삼노끈으로 짜서 되도록 정교하고 치밀하며 가는 망 위에 밧줄을 더 묶되, 만일 예전처럼 소루(疏漏)할 경우에는 해당 차원을 각별히 논죄한다.

미한다. 환곡은 원래 빈민을 구제하기 위하여 실시한 대여곡식(貸與穀食)이었으나, 후기에 수조체계(收取體系)의 문란으로 도리어 고리대(高利貸)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즉 각 지방의 수령들은 아전과 결탁하여 허위로 곡식을 분배 또는 회수한 것으로 문서를 꾸며 한 섬당 1냥(兩)씩을 징수하여 착복하였다. 이것을 반작(反作) 또는 '번작'이라 하였으며,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續大典 戶典 會計』에서는 대동사목(大同事目)의 예(例)에 따라 논죄하도록 하였다.

100) 장오(贓汚) : 불법으로 뇌물을 받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재물을 탐하는 것을 말한다.

101) 복계(覆啓) : 왕이 각종 계사(啓辭), 장계(狀啓), 상소(上疏), 상언(上言) 등을 담당 관사로 계하(啓下)하였을 때 담당 관사에서 해당 사안의 처리에 대한 의견을 아뢰는 행위를 말한다. 회계(回啓)라고도 한다. 이에 대해 윤허를 받게 되면 실행할 부서나 지방으로 공문을 보내 알리거나 분부하였다.

102) 행회(行會) : 정부의 지시와 명령을 각 관사의 장이 그 부하에게 알리고 실행 방법을 논정(論定)하기 위한 모임을 말한다.

103) 곡대봉(斛袋封) : 배마다 1곡(斛)의 쌀을 포대에 담아서 봉인하여 궤(櫃)에 넣고 잠가, 간품(看品)에 대비한 것을 말한다. 『萬機要覽』 「財用2」 漕轉

21. 상납하는 곡물에 물을 타다 적발된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법전에 분명히 실려 있는데도, 창관(倉官)이 흑 사리를 추구하여 물 탄 곡물을 거둬들이는 것을 허락하고 적발하지 않으면 법전에 따라 곡물이 소재한 읍은 해당 수령을 무기한으로 정배(定配)한다.

22. 전세(田稅)와 정공(正供)은 일의 체모가 자별한데도, 뱃사람이 간사하게 속이는 것이 갈수록 심해져서 흑 많이 유용하여 각 아문에 먼저 바치기도 하니 일의 체모가 높아지지 않고 간악한 폐단이 또 많아진다. 이후로, 세곡을 다른 아문의 곡물과 함께 실은 자가 다른 아문에 먼저 바치는 일이 있으면 감관, 색리, 선격을 엄히 조사 하고 수령을 논죄하도록 『대전통편(大典通編)』에 실려 있다. 열읍은 이를 알아서 감관·색리·사공·격군에게 엄히 신칙하여 정박하기 전에 먼저 본조에 진성장(陳省狀)을 바치고 맨 먼저 상납하도록 하고, 옮겨서 다른 아문에 바치는 자가 있으면 한결같이 『대전통편』에 따라 죄상을 감안하여 다스린다.

23. 빈 배가 돌아올 때에 삼가지 않아 망가진 경우와 뱃삿을 생징(生徵)<sup>104)</sup>한 다음 거짓으로 망가졌다 핑계 대고 멋대로 판 경우는 선박을 생징한 뒤에 사형으로 논하니 법의가 매우 엄격하다. 이후로는 조선(漕船)이 돌아올 때에 반드시 도사공(都沙工)으로 하여금 배를 타게 하고, 삼가지 않아 치패(致敗)한 자가 있거든 실제의 사실을 조사하여 법에 따라 감단하며, 선재(船材)는 베어 주는 것을 허락하지 말고 조미(漕米)는 회감(會減)하지 못하게 한 것을 다시 엄히 밝히고 사공과 격군 등에게 약속해서 간악한 폐단이 없게 한다.

24. 세선이 경강에 정박한 뒤에 관령(管領)배들이 뱃놈 및 창주인(倉主人)에게 부화뇌동해서 진성장(陳省狀)을 은닉하고 주춤거리며 농단을 부리지 않은 배가 거의 없을 정도다. 호조와 선혜청에서 일일이 염탐하고 때때로 적간해서 가령 간악한 짓을 부리다 적발되는 일이 있으면 포도청에 이송하고, 비록 간악한 짓을 부리다 적발되지 않았더라도 흑 까닭 없이 머물면 형조에 이송하여 법대로 처단하게 한다.

25. 사목을 계하 받아 행회(行會)하는 것이 얼마나 엄중하였겠는가? 그런데 영읍(營邑)이 전혀 경계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으레 신칙하는 것으로 보아, 조령(朝令)을 믿지 않고 기강을 무너뜨린다면, 무엇이 이보다 심하겠는가? 금년에는 결단코 절목을 한결같이 법대로 처리하여 각각 해당 순영(巡營)에 도착하는 대로 즉시 조

104) 생징(生徵) : 세금(稅金)을 물 만한 까닭이나 관계(關係)가 없는 사람에게 억지로 세금(稅金)을 물려 받아내던 일로, 백징(白徵)과 같은 말이다.

운한 각 읍과 각 창 및 차사원에게 통지해서 각자 삼가며 노력하게 하고, 그대로 이향과 선격에게 알려주되, 거행한 사실의 전말을 도신 및 각 차사원이 또한 즉시 호조에 급히 보고해서 사실에 근거하여 처리하는 바탕으로 삼도록 하라. 이번의 사목은 대동미를 조운하는 데 쓸 뿐만 아니라 쌀 상납과 관련된 곳에서 똑같이 시행하게 한다.

26. 미진한 조건(條件)은 추후에 마련한다.” 로 후록하고 관문하였다.

세곡을 거둬들이는 조건(條件)을 이미 별도로 신칙한 바가 있었으니 그것을 과연 착실히 거행하였는가? 조운(漕運) 사목(事目)을 이와 같이 거듭 상신(上申)하였으니 금년 납세(納稅)는 이전같이 늦어서는 안 된다. 이전에 관문으로 신칙했던 바에 의하여 기어코 기한 내에 세곡을 꾸려 보내 혹시라도 연체되어 대단히 불미스런 폐해가 없게 하라. 수호(水護)해야 하는 연안(沿岸) 읍진은 표지(標識)를 세우고 길을 안내해 주는 등의 절목을 사목에 의거하여 착실히 거행함이 마땅할 일.

同日. 以牙兵聚點事, 發甘各邑.

【甘結】 因備局啓下關, 官鎮門聚點舉行之意, 已爲行會是在果. 營屬牙兵, 亦是東伍之一, 則以時操習, 宜無異同是如乎. 本邑東伍軍聚點之日, 並與牙兵而一體舉行爲乎矣, 填充闕伍, 修繕器械等節, 另加團束, 俾無踈虞之弊爲旒. 堤堰踈築邑段, 牙兵亦爲赴役, 期有實效是矣, 甘到日時, 舉行形止, 先卽馳報宜當者.<全州、高山、珍山、龍潭、鎮安、南原、求禮、谷城、淳昌、潭陽、玉果、昌平、金溝、金堤、萬頃、錦山、長水、任實、扶安、古阜、興德、茂長、靈光、益山、礪山、龍安、咸悅、臨陂、沃溝>

같은 날. 아병(牙兵)을 취점(聚點)하는 일로 각 읍에 감결을 발송하였다.

【감결】 비변사의 계하 관문으로 인하여 감영의 관문(官門)과 진문(鎭門)의 취점을 거행하라는 뜻을 이미 행회하였다. 감영에 속한 아병도 역시 속오군(東伍軍)<sup>105</sup>의 하나이니 때맞춰 훈련하는 것은 마땅히 차이가 없어야 한다.

본 읍 속오군의 취점일은 모두 아병과 더불어 똑같이 거행하되 빠진 대오를 메워 채우고 기계(器械)를 잘 수선하는 등의 절목은 별도로 단속하게 하여 소홀한

105) 속오군(東伍軍) : 선조(宣祖) 27년(1594)에 훈련도감(訓練都監)을 설치(設置)하고, 역(役)을 지지 않은 양인(良人)과 천민 중(中)에서 훈련(操鍊)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편성한 군대이다. 이들은 평시에는 군포(軍布)를 바치고, 나라에 큰일이나 사변이 있을 때에만 소집되었다.

폐단이 없게 하며 제언(堤堰)을 쌓는 읍은 아병 역시 역에 나아가게 하여 실효가 있기를 기대한다. 감결이 도착한 일시와 거행한 상황은 우선 바로 급히 알림이 마땅할 일.<전주·고산·진산·용담·진안·남원·구례·곡성·순창·담양·옥과·창평·금구·김제·만경·금산·장수·임실·부안·고부·흥덕·무장·영광·익산·여산·용안·함열·임피·옥구>

二十二日. 和順縣監、淳昌郡守, 入見辭去.

22일. 화순현감·순창 군수가 입견하여 하직하고 갔다.

二十三日. 以諸島災民中, 寢遑汲之類, 精抄報來事, 發關靈巖、興陽.

【關文】爲相考事. 本邑諸島, 被災淺深, 自兼邑已有所報來, 而其中苳島、楸子兩島段, 民情轉益遑汲, 不可無賙恤之道是如乙仍于, 茲以發關爲去乎, 別定勤慎將吏, 分送兩島, 災民中, 寢遑汲無依之類, 十分精抄, 區別壯、老、兒、弱, 作爲小名修成冊, 火速報來爲旆, 該島入送將吏姓名, 先卽馳報爲乎矣. 抄飢之際, 如或當入而不入, 不當入而混入, 致有虛實相蒙之弊是如可, 營門摘奸時, 萬有一生頤之舉, 則當該將吏, 斷當限死嚴勸, 以此意各別嚴飭, 俾無隱漏濫觴之患, 宜當向事.<靈巖>

云云. 本邑諸島、折尔島、羅老島等三島段, 俱以被災尤甚, 不可無賙恤之道乙仍于, 茲以發關爲去乎, 別定勤慎將吏, 分送三島云云事.<興陽>

23일. 제도(諸島)의 재민(災民) 가운데 가장 황급(遑汲)한 부류를 정밀하게 가려 보고 하라는 일로 영암·흥양에 관문을 발송하였다.

【관문】상고할 일. 본 읍 제도(諸島)의 재해를 입은 정도의 덜하고 심함을 겸읍(兼邑)으로부터 이미 보고한 바가 있었으나 그 가운데 잉도(苳島)·추자도(楸子島) 두 섬은 민정이 더욱 더 황급하여 구휼(救恤)하는 방도가 없어서는 안 된다고 한다. 이에 관문을 발송하니 따로 근신(勤慎)하는 장수와 아전을 정하여 두 섬에 나누어 보내고 재민(災民)가운데 가장 황급하고 의지할 곳 없는 부류들을 충분히 정밀하게 기록하여 장(壯)·노(老)·아(兒)·약(弱)을 구별하고 아명(兒名)을 기록하여 성책하여[小名修成冊]<sup>106)</sup> 급히 보고하라. 해당 섬으로 들여보낸 장수와 아전의 성명을 먼저 바로 급히 알려라. 다만, 기민(飢民)의 실태를 선별할 때 만일

혹 당연히 들어갈 재민(災民)이 들어가지 않거나 부당하게 기입하거나 섞어 기입하여 허실을 서로 속이는 폐단이 있는 데까지 이르다가 영문(營門)이 적간(摘奸)할 때 만에 하나라도 탈을 내는 일이 있으면 당해 장수와 아전은 결단코 마땅히 죽음에 이르도록 엄히 조사하여 처벌할 것이니 이러한 뜻을 각별히 엄히 신칙하여 숨기거나 빠트리는 작은 우환거리도 없게 함이 마땅할 일.<영암>

운운. 본 읍의 제도(諸島)·절여도(折尔島)·나로도(羅老島) 등 3도는 모두 재화를 입은 정도가 우심(尤甚)으로 구휼하는 방도가 없어서는 안 됨에 따라 이에 관문을 발송하니 별도로 근신(勤慎)하는 장수와 아전을 정하여 3도에 나누어 보낸다고 운운한 일.<홍양>

同日. 題龍安縣被告林秀淵初同推狀.

【題】假令因病致死良置, 杖前無病, 杖後得病, 渠雖百喙, 焉敢掉脫? 同林秀淵後日同推嚴訊, 捧直招牒報, 金公金、金才平等段, 待拷限, 加刑一次, 懲礪放送向事.

같은 날. 용안현 피고 임수연(林秀淵)을 처음 동추(同推)한 보장을 데김하였다.

【데김】가령 병으로 인하여 죽게 되었어도 곤장 전에 병이 없었고 곤장 뒤에 병이 생겼으니 그가 비록 입이 백 개라도 어찌 감히 벗어나겠는가? 동(同) 임수연을 후일에 동추(同推)하여 엄하게 신문(訊問)하여 사실대로 진술을 받아 첩보하고 김공금(金公金)·김재평(金才平)들도 고한(拷限)을 기다려 1차 형신하고 징계하여 내 보낼 일.

二十四日. 中營將入見

24일. 중영장이 입견하였다.

同日. 以舊災還實條, 混錄出稅之都吏及面書員刑懲後, 吏額亦依定式釐減事, 發關同福縣.

【關文】爲上考事. 本邑舊災還實條, 混錄出稅之當該都吏, 前已發關囚禁矣, 後接邑報, 參以料度, 今此所犯, 便同奸未成是乃. 今番災結分俵時, 營門關飭, 不啻十分申

106) 소명수성책(小名修成冊) : 어릴 때의 이름을 기록해서 책을 만든 것이다. 동명인이 많아서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이것을 아울러 기재한다.

嚴，則苟有一分嚴畏之心，固當痛改前習，不敢犯科是去乙，畢竟違越，冒禁作奸，有此及聞，揆以法綱，萬萬寒心。都吏段，雖云無犯，不能檢飭之罪，渠烏得免？并與書員等，而各嚴刑準次，懲礪放送後，形止牒報爲旆，因此思之，州、府、郡、縣，自有原定吏額是去乙，本邑以如斗小邑，吏輩額數，自來夥多，許多年不得一任是如可，倖占一窠，則不特田政一事，諸般奸弊，隨處層生，蠹民害公，不一而足，濫額之數，如不及今矯革，則末流之弊，無以防遏乙仍于。茲以發關爲去乎，本邑吏額，依定式釐減後，成冊修報，以爲憑處之地，宜當向事。

같은 날. 구재환실(舊災還實) 대상을 세금을 내는 것으로 섞어 기록한 도리(都吏)와 면서원(面書員)<sup>107)</sup>을 형벌로 징계한 뒤에 이액(吏額 아전을 정한 수효(數效))도 정식(定式)에 의거하여 바로잡아 줄이는 일로 동복현에 관문을 발송하였다.

【관문】 상고할 일. 동복현의 구재환실 조항을 세금을 내는 것으로 섞어 기록한 해당 도리는 전에 이미 관문을 발송하여 잡아 가두었으나 뒤에 읍의 보고를 접하고 참조하여 헤아려 보니 지금 이렇게 죄를 범한 것이 곧 간미성(奸未成)<sup>108)</sup> 법과 같다. 그러나 금번 재결(災結)을 분표(分俵)<sup>109)</sup>할 때 감영에서 관문으로 신칙한 것이 충분히 거듭 엄하게 했을 뿐 아니었으니 만일 조금이라도 엄외(嚴畏)한 마음이 있었다면 진실로 마땅히 이전의 습속을 통렬히 고쳐 감히 법을 어기지 않았어야 했거늘 결국 법을 어기고 금하는 것을 무릅쓰고 작간(作奸)하여 이렇게 알려지는데 까지 이르렀으니 법의 기강을 헤아리면 매우 한심하다. 도리는 비록 법에 저촉됨이 없었다고 말하나 잘 검속하고 신칙하지 못한 죄를 그가 어떻게 면할 수 있겠는가? 아울러 면서원 등과 더불어 각각 준차(準次)<sup>110)</sup>로 엄히 형신하고 징계하여 내보낸 뒤에 사실의 전말을 첩보(牒報)하라.

이것으로 생각해보면 주(州)·부(府)·군(郡)·현(縣)은 본래 정했었던 이액(吏

107) 면서원(面書員) : 서원(書員)은 중앙과 각 관서에 배속되어 행정실무를 담당한 이속(吏屬)이다. 지방 서원은 해당지역의 수령과 육방 아전의 지시를 받으며 행정실무를 담당하였는데, 면서원도 지방 행정의 말단에서 각 면의 세금 징수 손실담험(損失踏驗) 등의 일을 수행하였다.

108) 간미성(奸未成) : 부정한 행위를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를 말한다. 『대전회통(大典會通)』 「이전(吏典)」에 “타인의 손을 빌려서 사격시험을 보려고 하거나 대리로 사격시험을 쳐주려고 하다가 미수(未遂)에 그친 경우에는 간미성률(奸未成律)을 적용한다.” 하였다.

109) 분표(分俵) : 흉년에 재해를 입은 논밭의 구실을 덜어주는 일을 말한다.

110) 준차(準次) : ‘차수(次數)를 채우다’의 뜻인데, 여기서 차수(次數)는 형신(刑訊)할 때에 1차례에 곤장 30대를 넘지 못하고 도중에 자복(自服)을 하더라도 남은 대수를 채운다는 의미로 보인다.

額)이 있었거늘 동복현은 작은 읍인데도 아전들의 정원수가 자고이래로 펍 많아서 오랫동안 전적으로 말는 일을 얻을 수 없다가 요행히 한 자리를 차지하면 단지 전정(田政)의 일 뿐 아니라 온갖 가지의 간사한 폐해가 곳에 따라 층층히 생겨 백성들을 좀먹게 하고 공적인 일을 해롭게 하는 것이 하나가 아니라 많으니, 넘는 인원의 숫자를 만일 지금 개혁하지 못하면 끝에 가서 생기는 폐단을 막을 수 없다. 따라서 이에 관문을 발송하니 본 읍의 이액(吏額)들을 정식(定式)에 의거하여 바로잡아 줄인 뒤에 성책(成冊)으로 정리하여 보고하여 사실에 근거하여 처리하는 바탕으로 삼는 것이 마땅할 일.

同日. 以添補賑資錢, 區劃事, 發關樂安郡.

【關文】爲相考事. 本邑以尤甚災邑, 抄飢賑濟云, 所入穀物何以經紀是驗? 自營門不可無添補賑資之道乙仍于, 長興、昌平、光陽等三邑, 納謝恩使求請錢, 並區劃發關爲去乎, 三邑良中, 依後錄枚移受來, 卽速作穀後, 成冊報來, 宜當尙事.<長興錢一百五十六兩四錢, 光陽錢八十九兩, 昌平錢五十四兩六錢.>

같은 날. 진자전(賑資錢 진출할 비용)을 더 보태어 구획하는 일로 낙안군에 관문을 발송하였다.

【관문】낙안군은 우심재(尤甚災)로 기민(飢民)을 파악하여 구휼한다고 하였는데 거둬들일 곡물을 어떻게 꾸려가고 있는가? 영문으로부터 진자전(賑資錢)을 더 보태주는 방도가 없을 수 없음에 따라 장흥·창평·광양의 3개 읍은 사은사(謝恩使) 구청전(求請錢)<sup>111)</sup>으로 바칠 돈 모두를 구획하는 것으로 관문으로 발송하니 후록에 의해 3개 읍에 공문(公文)을 보내 받는 즉시 곡물로 마련한 뒤에 성책하여 보고함이 마땅할 일.<장흥, 돈 1백 5십 6냥 4전·광양, 돈 8십9냥·창평, 돈 5십 4냥 6전.>

111) 사은사 구청전(謝恩使求請錢) : 구청전(求請錢)은 사안에 따라 조정이 각 관청에 청구하는 돈인데, 사은사 구청전은 사은사의 경비로 사용하기 위해 조정이 각 관아에 청구하는 돈을 말한다. 조선시대의 대중국외교(對中國外交)는 사대의례(事大儀禮)로 하였기에 동짓날에 맞추어 동지사(冬至使)를 보냈고, 고마운 일이 있으면 사은사(謝恩使)를 보냈으며, 국사(國事)에 관하여 중국 천자(中國天子)에게 주청(奏請)할 일이 있으면 주청사(奏請使)를 보냈다. 또한 중국에서 조선을 오해하였거나 종계(宗系) 등을 잘못 알고 있는 경우에는 변무사(辨誣使)를 보내어 변명 또는 해명하였고, 중국황실에 경사가 있을 때에는 진하사(進賀使)를 보냈으며, 중국에서 국상(國喪)이 났을 때에는 향(香)과 제문(祭文)을 갖고 가는 진향사(進香使)를 보냈고, 기타 중국황실에 상고(喪故)가 있을 때는 진위사(陳慰使)를 보냈다. 이들 사행(使行)에는 정사(正使)·부사(副使)·서장관(書狀官) 이외 많은 수행원이 있어 대개 40명 이상의 경우가 많았다.



同日. 以謝恩使求請錢出給樂安郡事, 發關長興、昌平、光陽.

【關文】爲相考事. 本邑謝恩使求請錢一百五十六兩四錢, 勿爲輸納營門, 待樂安郡枚移, 盡數出給爲乎矣, 嚴飭該吏, 卽速舉行出給後, 形止亦卽牒報, 宜當向事.<長興>  
 云云本邑謝恩使求請錢八十九兩, 勿爲輸納營門, 待樂安郡枚移, 盡數出給云云事.<光陽>  
 云云本邑謝恩使求請錢五十七兩九錢五分內, 五十四兩六錢段, 待樂安郡枚移, 卽速出給後, 形止牒報爲旆. 餘數三兩三錢五分段, 直爲來納營門云云事.<昌平>

같은 날. 사은사 구청전(謝恩使求請錢)을 낙안군에 내주라는 일로 장흥·창평·광양에 관문을 발송하였다.

【관문】상고할 일. 장흥의 사은사 구청전 1백5십6냥4전을 감영으로 실어다 바치지 말고 낙안군의 공문(公文)을 기다려 모든 액수를 내주되 해당 아전에게 엄히 신칙하고 즉시 출급을 거행한 뒤에 사실의 전말 또한 바로 첩보함이 마땅할 일.<장흥>  
 운운. 광양의 사은사 구청전 8십 9냥을 감영으로 실어다 바치지 말고 낙안군의 공문(公文)을 기다려 모든 액수를 내줄 일, 이하 동문.<광양>  
 운운. 창평의 사은사 구청전 5십 7냥 9전 5푼 가운데 5십 4냥 6전은 낙안군의 공문(公文)을 기다려 즉시 내준 뒤 사실의 전말을 첩보하라. 나머지 액수 3냥 3전 5푼은 직접 감영으로 와서 바치고 …… 일.<창평>

同日. 以添補賑資錢區劃事, 發關羅州牧.

【關文】爲相考事. 本邑以尤甚災邑, 抄飢賑濟云, 所入穀物, 何以經紀是驗? 自營門不可無添補賑資之道乙仍于, 南原納禁衛營除番錢、長成納選武錢未收餘數, 并區劃發關爲去乎, 兩邑良中, 依後錄枚移, 受來卽速作穀後, 成冊報來宜當向事.<南原錢三百七十兩六錢四分, 長城錢二百五十八兩六錢>

같은 날. 진자전(賑資錢)을 더 보태 구획하는 일로 관문을 나주목에 발송하였다.

【관문】상고할 일. 나주목은 우심재음(尤甚災邑)으로 기민(飢民)을 파악하여 구휼한다고 하였는데 거둬들일 곡물을 어떻게 꾸러가고 있는가? 감영으로부터 진자(賑資)를 더 보태는 방도가 없을 수 없음에 따라 남원이 바칠 금위영(禁衛營)의 제번전(除番錢)<sup>112)</sup>과 장성이 바칠 선무전(選武錢)<sup>113)</sup> 가운데 미수한 나머지 액수

를 모두 구획한다는 것을 관문으로 발송하니 두 읍에 후록에 의거하여 공문(公文) 하나 하나를 보내 받아 오는 즉시 곡물로 마련한 뒤에 장부로 보고함이 마땅할 일.<남원, 돈 3백 7십냥 6전 4푼·장성, 돈 2백 5십 8냥 6전.>

同日. 以禁衛番錢及選武錢, 出給羅州牧事, 發關南原、長城.

【關文】爲相考事. 本邑禁衛番錢餘數三百七十兩六錢四分, 勿爲輸納營門, 待羅州牧枚移, 盡數出給爲乎矣, 嚴飭該吏, 卽速舉行出給後, 形止亦卽牒報宜當向事.<南原>云云. 本邑選武錢二百五十八兩六錢, 勿爲輸納營門, 待羅州牧枚移, 盡數出給云云事.<長城>

같은 날. 금위영(禁衛營) 번전(番錢)과 선무전(選武錢)을 나주목에 내주는 일로 남원·장성에 관문을 발송하였다.

【관문】상고할 일. 남원의 금위영 번전(番錢) 중 나머지 액수 3백7십 냥 6전 4푼을 감영(監營)에 실어다 바치지 말고 나주목의 공문(公文)을 기다려 전액을 내어 주되 해당 아전을 엄히 신칙하고 곧바로 출급을 거행한 뒤에 사실의 전말 또한 첩보함이 마땅할 일.<남원>

운운(云云). 장성의 선무전(選武錢) 2백5십8냥 6전을 감영에 실어다 바치지 말고 나주목의 공문을 기다려 전액을 내줄 일.<장성>

同日. 以全州府首刑吏吳二俊、李仁溶, 符同奸民, 私設庖廚之罪, 嚴加究問, 消詳牒報事, 發關該兼官中營將.

【關文】爲相考事. 同府吏吳二俊, 以首刑吏, 向當歲除, 符同奸民, 私設庖廚, 捧賂

112) 제번전(除番錢) : 번상(番上)을 면제하는 댓가로 받는 돈이다. 번상(番上)이란 군사가 당번이 되어 번(番)을 서기 위하여 상경하는 것을 말한다. 세종대에 중앙군의 양적 확장과 번차수(番次數)의 증가가 이루어지고, 문종대에 하번(下番, 번을 서고 내려감) 중앙군이 모두 거주지에 등록되어 도절제사(都節制使)가 관장하면서 번상의 체제가 갖추어졌다고 한다.(민현구, 『조선초기의 군사제도와 정치』, 한국연구원, 1983, 239~243쪽)

113) 선무전(選武錢) : 선무군관(選武軍官)이 내는 돈을 말한다. 선무군관(選武軍官)은 영조(英祖)27년(1751)에 지방의 토호(土豪)들과 부유한 집의 자제 중에서 선발하여 임명한 군관(軍官)을 말한다. 일반 군사들보다 우대하여 평시에는 군무(軍務)를 익히고, 사변시에는 동원되어 군사를 거느리게 하였다. 평상시 집에 있을 때에는 벼 1필을 바치게 하고, 해마다 관찰사(觀察使)로 하여금 무예를 시험하여 1등에 합격하면 전시(殿試)에 응시할 자격을 주고, 2등에 합격하면 복시(覆試)에 응시할 자격을 주었다.

亂賣之狀，前已入聞，而及其推問也，以邑底屠漢，塞責納供，萬萬痛駭乙仍于，已爲棍囚是在果。此漢捧賂，存拔之數，已有所的探是如乎，卽爲捉入，各別考察嚴刑，捧直招牒報爲乎矣。所犯情節，若或一向吞吐，終不直告，有所差爽，則難免杖下之魂，以此意嚴加究問，消詳牒報爲旆。下番首刑吏李仁溶段置，其爛熳作奸之狀，亦有及聞者是如乎，一體嚴刑，捧直招牒報向事。

같은 날. 전주부 수형리(首刑吏) 오이준(吳二俊)·이인용(李仁溶)이 간민(奸民)과 한 통속이 되어 사사로이 푸줏간을 설치한 죄를 엄하게 따져 묻고 소상(消詳)히 첩보하라는 일로 전주부 경관 중영장(中營將)에게 관문을 발송하였다.

【관문】 상고할 일. 전주부 아전 오이준은 수형리로 전에 세밀을 당하여 간민과 한 통속이 되어 사사로이 푸줏간을 설치하여 뇌물을 받고 난매(亂賣)한다는 장계가 전에 이미 들어와 알려져 따져 묻기에 이르렀다. 읍안의 도한(屠漢)들이라고 꾸며대며 책임을 면하게 진술을 하니 매우 놀랄 만함에 따라 곤장으로 때리고 가두었다.

이놈이 뇌물을 받고 도살한 숫자를 넣거나 빼준 숫자를 이미 분명하게 찾아냈다고 하니 즉시 잡아와 각별히 고찰(考察)하고 엄하게 형신하여 사실대로 진술을 받아 첩보하라. 법을 어긴 정황(情況)을 만약 흑시라도 한결같이 뻔했다 삼키기를 반복하여 끝내 사실대로 실토하지 않고 다르게 진술하는 바가 있으면 장형(杖刑)을 받아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니 이러한 뜻으로 엄하게 캐어물어 소상히 첩보하라. 하번(下番)<sup>114)</sup> 수형리 이인용(李仁溶)도 난만하게 작간한 상황이 알려진 바가 있다고 하니 일체 엄하게 형신하여 사실대로 진술을 받아 첩보할 일.

二十五日. 食後往府北沙川坪, 看審築堰形便. 中軍、中營將, 隨行參見, 還營軒. 康津縣監任百經, 自京下來之路, 入見. 慶尙道咸陽郡守洪章燮, 赴任歷路, 入見辭去. 碧沙察訪李熙黼, 來見辭去.

25일. 식후에 전주부 북쪽 사천평(沙川坪)<sup>115)</sup>에 가서 방죽을 쌓는 형편을 살펴보았다. 중군(中軍)·중영장(中營將)이 수행하여 참견(參見)하고 영현으로 돌아왔다. 강진 현

114) 하번(下番) : 번(番)이 갈리어 교대(交代) 근무(勤務)를 마치고 나오는 사람을 말한다.

115) 사천평(沙川坪) : 현재 전주시 인후동 모래내를 말한다.

감 임백경(任百經)이 한양에서 내려오는 길에 입견하였다. 경상도 함양 군수 홍장섭(洪章燮)이 부임하러 지나는 길에 입견하여 하직하고 갔다. 벽사 찰방 이희보(李熙黼)가 와서 보고 하직하고 갔다.

同日. 以稅穀星火出浦事, 發關各邑.

【關文】爲相考事. 卽接咸悅縣監所報, 則以爲稅大同, 今二十日, 開倉之意, 文移於所屬各邑矣, 其間五六日, 只以米太一二石, 塞責以納, 如是則限內裝稅, 末由是如爲置. 以捧稅一事, 發關申飭, 果何如? 而初頭所納, 若是零星, 其何以及期準捧, 趁限裝發是乙喻? 都次知吏鄉及該監色舉行, 萬萬稽忽, 爲觀來頭勤慢, 茲更發關爲去乎. 嚴飭任掌, 火速出浦, 俾無愆期, 生梗之弊, 宜當向事.<南原高山、錦山、珍山、雲峯、龍潭.>

같은 날. 세곡(稅穀)을 급히 포구로 내라는 일로 각 읍에 관문을 발송하였다.

【관문】상고할 일. 이번에 함열 현감이 보고한 것을 보니 세대동(稅大同)<sup>116</sup>은 1월 20일에 관창(官倉)을 열어 공곡(公穀)을 낸다는 뜻을 소속 각 읍에 공문을 보냈으나 그 5~6일 사이에 단지 쌀과 콩 1,2섬으로 납부할 책임을 그럭저럭 면한다고 말한다.

이와 같다면 기한 내에 세금을 꾸리는 것은 말미암을 방도가 없다고 한다. 세금을 거둬들이는 하나의 일로 관문을 발송하여 신칙하였는데 결과는 어떠한가? 처음에 이와 같이 보잘것없으니 그 어찌 기한 내에 법대로 거둬들이며, 기한에 맞춰 꾸려 보내겠는가? 도차지(都次知) 이향(吏鄉)과 해당 감색(監色)의 거행(舉行)이 매우 더디고 소홀하여 앞으로 근만(勤慢)을 보기 위하여 이에 다시 관문을 발송한다. 임장(任掌)을 엄하게 신칙하여 급히 포구에 세곡(稅穀) 내놓아 기한을 어겨 탈을 내는 폐단이 없게 함이 마땅할 일.<남원·고산·금산·진산·운봉·용담>

同日. 以聖堂倉新造漕船, 罔夜畢造, 限內回泊事, 發關加耳浦、鹿島.

【關文】爲相考事. 本鎮松田入造是在聖堂倉漕船, 新造之後, 幾至了畢是喻? 二月旬前, 回泊本倉然後, 可以及期裝稅是如乎. 以此意申飭該沙工, 罔夜畢造, 使之限內回泊爲旡. 發送形止, 隨卽馳報宜當向事.

116) 세대동(稅大同) : 전세(田稅)와 대동세(大同稅)를 말한다. 전세(田稅)는 조(租)라고도 하며, 논밭에 부과되는 조세이고, 대동세(大同稅)는 조선 시대에 대동법에 따라 거두던 세금이다.

같은 날. 성당창(聖堂倉)<sup>117</sup>에서 새로 만들고 있는 조선(漕船)을 밤낮 없이 만들기를 다하여 기한 내에 돌아와 정박할 일로 가이포(加耳浦)·녹도(鹿島)에 관문을 발송하였다.

【관문】 상고할 일. 본진 술밭에 들어와 만들고 있는 성당창의 조선(漕船)을 새롭게 만들고 있는 뒤로 거의 완성됨에 이르렀는가? 2월 10일 전에 성당창에 돌아와 정박한 뒤에야 세곡을 꾸려 싣기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뜻을 해당 사공(沙工)에게 신칙하고 밤낮 없이 만들기를 다하여 조선을 기한 안에 돌아와 정박시켜라. 그리고 배를 떠나보낸 사실의 전말을 즉시 알림이 마땅할 일.

二十六日. 康津縣監入見辭去. 中營將入見. 羅州牧使李晦淵、龍潭縣令朴嶽壽來見.

26일. 강진 현감이 입견하여 하직하고 갔다. 중영장이 입견하였다. 나주 목사 이회연(李晦淵)·용담 현령 박헌수(朴嶽壽)가 와서 보았다.

同日. 以咸悅下吏趙基鵬, 與其侄煥奎, 符同作奸, 偷弄錢穀之數爻, 一一準徵後報來事, 發關該縣.

【關文】 爲相考事. 本縣下吏趙基鵬, 與其侄米倉色趙煥奎, 許多作奸之狀, 狼藉入聞是置. 吏奸倉弊, 何邑無之, 而豈有如此輩之賢不畏法者乎? 假使此輩眼有官家, 心有國法, 則各以下吏, 焉敢無嚴, 不法至此之甚是乙喻? 此若不別樣勘處, 則奸猾無以知戢, 關石將無所施乙仍于, 捉致營庭, 爲先各嚴刑一次, 着枷下送爲旆. 其矣等所犯罪狀, 後錄發關爲去乎, 到卽具枷嚴囚, 同偷弄錢穀, 一一查出, 卽速準徵後, 形止牒報, 宜當向事. 下吏趙基鵬段, 昨春還米三百六十石, 代錢七百二十兩, 稱以分給民間, 符同倉色, 暗自受食. 秋捧時, 倉色卽渠之侄也, 私自隱匿, 不爲出秩. 昨秋還米一百五十六石, 加數分排於移轉米, 分捧中, 每石九兩式, 以錢外捧, 合錢一千四百餘兩內, 七百兩, 渠自吞食, 七百兩, 渠侄倉色煥奎吞食. 去月聖堂倉沙工四名, 新差時, 捧賂, 各一百兩式捧食. 又謂金正鎰、裴正烈兩沙工, 自官欲爲汰去, 渠自周旋, 仍存是如, 各捧錢一百兩. 昨春捧稅時, 稱以舊官解由債, 沙工十二名處, 各米五石式, 合米六十石, 勤捧乾沒米. 倉色趙煥奎與其叔, 符同作奸, 還米三百餘石作名, 隱匿於民間, 不爲督捧, 自在虛留中, 移轉米分排時, 加數分排爲一百五十六石, 每石以

117) 성당창(聖堂倉) : 호남 3조창(湖南三漕倉)의 하나로, 함열(咸悅)에 있던 것이다.

九兩式，外捧與其叔分食.

같은 날. 함열 하리(下吏) 조기봉(趙基鵬)은 자기 조카 조환규(趙煥奎)와 한 통속이 되어 작간(作奸)하고 돈과 곡식의 수효를 훔치고 농간한 것을 일일이 법대로 징수한 뒤에 보고할 일로 해당 현에 관문을 발송하였다.

【관문】 상고할 일. 함열현 하리 조기봉은 자기 조카 미창색(米倉色) 조환규와 더불어 허다하게 작간했다는 장계(狀啓)가 낭자(狼藉)하게 들어와 알려졌다. 아전의 간교함과 창색의 피해가 어느 읍엔들 없겠는가마는 어찌 이 우리들같이 법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심함이 있겠는가?

가령 이 우리배들 눈에 관가(官家)가 있고, 마음에 국법이 있다면 각 아전으로서 어찌 감히 무엄하고 불법됨이 이렇게 심하게까지 이르렀는가? 이들을 만약 특별히 조사하여 처리하지 않는다면 간교하고 교활함을 그칠 줄을 알지 못하고 관석(關石)<sup>118)</sup>을 장차 시행할 바가 없음에 따라 감영 마당으로 잡아와 우선 각별히 엄하게 1차 형신하고 목에 칼을 씌워 내려 보내라.

그들이 범한 죄상을 후록하여 관문을 발송하니 도착 즉시 모두 항쇄(項鎖)<sup>119)</sup>하여 엄히 가두고 동(同) 훔치고 농간한 돈과 곡식을 일일이 조사하여 찾아내 즉시 법대로 징수한 뒤에 사실의 전말을 첩보함이 마땅할 일.

하리 조기봉은 작년 봄 환곡(還穀) 쌀 3백6십 섬을 7백2십 냥의 돈으로 대신하고 백성에게 분급(分給)하였다고 칭하고, 창색과 한통속이 되어 몰래 개인적으로 받아먹었다. 가을에 환곡을 거둬들일 때는 창색이 그의 조카인데, 개인적으로 숨기고 환곡을 갚아야 될 명목을 내지 않게 하였다. 작년 가을 환미(還米) 1백5십6 섬은 이전미(移轉米)에 수량을 더하여 분배하였고, 나누어 거둬들이는 중에 매 섬마다 9냥씩을 돈 외로 거둬들여 총액 1천4백여 냥 안에 7백 냥은 자기 혼자 삼키고, 7백 냥은 자기 조카 창색 조환규가 삼켜 먹었다.

지난 달 성당창(聖堂倉) 사공(沙工) 4명을 새로 차출할 때 뇌물을 받은 것이 각

118) 관석(關石) : 관석 화균(關石和鈞)의 줄임말로, 법도(法度)를 뜻하는 말이다. 『서경』 「오자지가(五子之歌)」채침주(蔡沈註)에 ‘관은 통(通)함이고, 화는 평(平)함이며, 2백 근(斤)이 석(石)이 되고, 30근이 균(鈞)이 되는데, 관통(關通)하여 피차가 서로 손해봄이 없게 하고, 화평(和平)하여 인정(人情)이 서로가 어긋나거나 다툼이 없도록 하는 뜻이다.’ 하였다.

119) 항쇄(項鎖) : 죄인(罪人)에게 씌우던 옛 형틀의 한 가지로, 두꺼운 널빤지의 한 쪽 머리를 파내어 죄인(罪人)의 목을 끼우고 비녀장을 지르게 되어 있다.

각 1백 냥씩 받아먹었다. 또 김정일(金正鎰)·배정렬(裴正烈) 사공(沙工)을 관아(官衙)에서 태거(汰去)<sup>120</sup>하려고 하니 그가 스스로 그대로 있게 주선(周旋)한다고 말하여 각 1백 냥씩의 돈을 받았다. 작년 봄 세곡(稅穀)을 거둬들일 때 구관(舊官)의 해유채(解由債)<sup>121</sup>를 칭하여 사공(沙工) 12명에게 각 쌀 5섬씩 합 쌀 60섬을 건몰미(乾沒米)<sup>122</sup>로 부지런히 거둬들었다. 창색 조환규는 자기 숙부 조기봉과 한통속으로 작간하고 환미(還米) 3백여 섬이라고 명명(命名)하여 민간에 은닉하고 독촉하여 거둬들이지 않고 자연히 허류(虛留)<sup>123</sup>중으로 있게 하다가 이전미(移轉米)를 분배할 때 수량을 더하여 분배하여 1백5십6섬을 만들어 매 섬마다 9냥씩을 과외(課外)로 거둬들여 자기 숙부와 나눠 먹었다.

同日. 以各邑移轉米, 星火裝發事, 發關高敞縣.

【關文】爲星火舉行事. 光陽、寶城、樂安、長興、康津、興陽、靈巖等, 七邑移轉米發送之報, 已過數朔, 而都會所則到泊形止, 尙不報來, 此何委折是旣? 光羅綾南等, 四邑米監捧後, 卽爲馳進營下之意, 有所發關矣, 今二十日旣已, 眼同監捧, 則何至今不爲馳進是噲? 誠莫曉其故. 見今晦日已迫, 若失此潮生之時, 則勢將拖到來望, 揆以舉行, 萬萬躁悶乙仍于, 茲更別關爲去乎. 光陽等七邑米, 其間果已來到是去等, 使該倉倉使, 卽爲替捧, 裝載是遣, 差使員, 則星火馳進, 自營下直往羣倉, 同倉所納各邑米, 毋或晷刻稽滯, 一齊裝發, 毋至一毫踈忽, 大段生梗之地, 宜當尙事.

같은 날. 각 읍의 이전미(移轉米)를 속히 실어 보내는 일로 고창현에 관문을 발송하였다.

【관문】급히 거행할 일. 광양·보성·낙안·장흥·강진·흥양·영암 등 7읍 이전미를 발송했다는 첩보가 이미 2,3달이 지났는데도 도회소에 이르러 정박했다는 사실의 전말이 아직도 보고되지 않으니 이것은 무슨 곡절인가? 광주·나주·능주·남평 등 4개 읍의 쌀을 거둬들이는 것을 살펴본 뒤에 즉시 영내(營內)로 달려 아리라는 뜻의 관문이 발송된 바가 있었으나 지금 20일이 이미 지났는데도 감봉(監捧)에 참

120) 태거(汰去) : 죄과(罪過)가 있는 하급 벼슬아치나 구실아치를 파면하는 것을 말한다.

121) 해유채(解由債) : 해유(解由) 절차를 진행할 소용되는 비용이다. 해유(解由)는 벼슬아치가 물러날 때 후임자에게 사무를 넘기고 호조(戶曹)에 보고하여 책임을 벗어나던 일을 말한다.

122) 건몰미(乾沒米) : 합당한 이유 없이 빼앗아 가진 쌀을 말한다.

123) 허류(虛留) : 관원이나 아전들이 곳집에 쌓였던 환곡(還穀)을 없애고, 있는 것처럼 거짓 기록만 남기는 일을 말한다.

석한 사람은 어찌 지금까지 달려와 알리지 않는가? 진실로 그 이유를 알 수 없다. 지금 그음이 이미 닳았으니, 만약 이렇게 조수가 생기는 때를 놓치면 형세가 장차 늘어져 보름에야 도착할 것이니 거행을 해아려보면 매우 조급하고 답답함에 따라 이에 다시 별도의 관문을 한다. 광양 등 7개 읍의 쌀은 그 사이 과연 이미 도착하였거든 해당 창고(倉庫) 첨사(僉使)로 하여금 즉시 대신 거둬들여 꾸러 실게 하고 차사원은 급히 달려 나가 영내로부터 바로 여러 창고로 가서 동(同) 창고에 납입한 각 읍의 쌀을 혹 잠시라도 머뭇거리거나 지체하지 말고 일제히 꾸러 실어 보내한 터럭만큼이라도 소홀히 하여 큰 탈이 생기지 않게 함이 마땅할 일.

同日. 以添補賑資錢區劃事, 發通南原.

【私通】本邑今方抄飢救急, 所入賑資何以經紀是驗? 本邑所報六名牛贖錢一百六十八兩內, 十三條五十兩四錢段, 卽爲上送是遣, 一百十七兩六錢段, 以賑資區劃爲去乎, 作穀補用後, 成冊修報事.

같은 날. 진자전(賑資錢)을 더 보태어 구획하는 일로 남원에 사통(私通)을 발송하였다.

【사통】남원이 지금 바야흐로 기민(飢民)을 파약하여 급하게 구휼할 때 들어갈 진자(賑資)는 어떻게 꾸리고 있는가? 남원이 보고한 6명의 우속전(牛贖錢)<sup>124)</sup> 1백 6십8냥 안에 13조의 5십 냥 4전은 즉시 위로 올려 보내고, 1백1십7냥 6전은 진자(賑資)로 갈라주니 곡물로 만들어 보태 쓴 뒤에 장부를 만들어 보고할 일.

二十七日. 羅州牧使、龍潭縣令, 入見辭去. 萬頃縣令尹守澈, 來見辭去. 井邑縣監申淳來見.

27일. 나주 목사·용담 현령이 입견하고 하직하고 갔다. 만경 현령 윤수철(尹守澈)이 와서 보고 하직하고 갔다. 정읍 현감 신순(申淳)이 와서 보았다.

同日. 以湖西移轉正租作錢, 輸送事, 發關金堤、泰仁.

【關文】爲相考事. 節到付籌司啓下關內, “湖西賑資正租五千石區劃於本道, 開春卽時, 船運以送亦爲有矣. 本道沿邑, 兩次移運之餘, 民力積困, 本穀船運, 其勢末由,

124) 우속전(牛贖錢) : 도우속전(屠牛贖錢)으로, 몰래 소를 잡은 데 대한 죄를 벗기 위한 속전(贖錢)을 말한다.



故不得不以代錢，輸送是如乎，係是賑濟所需，而既不以本色移轉，則勢將從時價，作錢以送乙仍于。同移轉正租後錄，發關爲去乎，到關即時，準數出庫，從時直作錢輸納，俾無遲滯之弊爲乎矣，折價成冊，先卽報來，宜當向事。<金堤正租五百石，泰仁正租一千石>

같은 날. 호서(湖西)로 이전할 정조(正租 벼)를 작전(作錢)하여 수송하라는 일로 김제·태인으로 관문을 발송하였다.

【관문】 상고할 일. 이번에 받아본 비변사의 계하 관문 내용에,

“호서의 진자(賑資) 벼 5천섬을 전라도에 갈라주고 봄이 시작되는 즉시 배로 운반하여 보내라고 하였다. 그러나 전라도 연읍(沿邑)은 두 번을 이운(移運)한 나머지 백성의 힘이 곤고함이 쌓여 본 곡식을 배로 운송하는 것은 그 형편상 할 수 없음에 따라 대전(代錢)으로 수송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기에, 이것은 구휼에 필요한 바에 관계되니 이미 본색(本色)으로 운반하지 않았으면 형편상 장차 시가를 따라 작전하여 보내라고 하였다.” 따라서 동(同) 이전할 벼를 후록하여 관문을 발송하니 관문이 도착하는 즉시 수량을 상준(相準)하여 창고에서 내 시가를 따라 작전하여 수납(輸納)하여 지체하는 폐해가 없도록 하라. 다만, 절가(折價 결정한 값) 장부를 우선 바로 보고함이 마땅할 일.<김제 벼 5백 섬, 태인 벼 1천 섬>

同日. 因戶曹關，以稅木上納申飭事，發甘各邑。

【甘結】 飭到付戶曹關內，“田稅木綿之升品尺數，自有通編定制，以木上納於京司者，田稅爲第一，無出其右，故於其疋，端織以青絲，以別正供之，特異是去乙，挽近以來，升麤尺短，愈往愈甚，至於昨年，尤不成樣。苟究厥由，都在於各該守令之全不察飭，一任該吏，不爲看檢而然也。近聞‘作木各邑，歲首以高價發令，民間以錢代捧，輕價貿市，不計麤短，惟以苟充爲務，甚或換錢上京，符同塵人，鳩聚最劣，不堪用者而備納者居多，是豈出於民？而納於公之本意乎？此不痛革田稅之木，徒歸官吏射利之資’，言念及此，誠極寒心分叱除良，今年則稱以荐被綿歉，幻弄作奸，必倍於前乙仍于，茲以別關爲去乎。上項諸弊之嚴防與否，專係於巡營之如何操束，而本曹之關飭，徒歸例語，未見其效，不但未見其效，漸不如前者，無乃巡營之反關知委，不能致察而然乎？今年段，三南大同，既已純錢，各軍門砲保，亦多作錢，則以木上納，只是

戶曹田稅而已. 巡營別加嚴飭, 痛革舊習, 俾有實效爲有矣, 如是別關之後, 木品又或麤劣, 則非但全退不送, 該守令, 草記重勘, 斷不饒貸, 此意并以一體另飭爲旒. 凡稅納尺文之考還於巡營者, 考勤慢察飭之意而伊來, 則過限許久拋, 不問并與吏鄉, 未聞有推論刑配之舉, 都作循便, 無事之歸, 常所慨歎, 申明舊式, 無論木錢, 一依年前頒降冊子, 必趁限內上納事, 各別措辭, 行會於作木作錢各邑, 使之惕念舉行, 無或有愆滯之弊, 宜當向事” 關是置有亦. 同稅木上納之節, 別加檢飭, 必以升細尺長者, 趁限上納後, 受尺考還爲乎矣. 以錢代捧, 輕價質木, 從中作奸之習, 各別禁斷, 俾無京廳上納時, 點退生事之弊爲旒, 舉行形止, 爲先馳報, 宜當者.<珍山、錦山、龍潭、高山、南平、光州、求禮、淳昌、谷城、綾州、茂朱>

같은 날. 호조의 관문으로 인하여 세목(稅木)<sup>125)</sup> 상납을 거듭 신칙하는 일로 각 읍에 감결을 발송하였다.

【감결】 이번에 받아본 호조 관문 내용은, “전세(田稅) 목면(木綿)의 승품척수(升品尺數)<sup>126)</sup>는 원래 『대전통편』에 정해진 법도가 있고, 세목을 경사(京司)에 상납하는 것은 전세가 첫째가 되어 그것보다 앞서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 필(疋)에 대해서는 끝은 청실로 짜고 특별히 순일한 것으로 바치는 것이 특이하거늘 근래 이래로 새[升 피륙의 날을 세는 단위]는 거칠고 척(尺)은 짧아지는 것이 갈수록 심하여 작년에 이르러서는 더욱 모양이 나오지 못하였다. 진실로 그 이유를 규명하면 모두 각 해당 수령이 전혀 살펴 신칙하지 아니한데 있고, 전적으로 말은 아전은 살펴 검속하지 아니하여 그렇게 되었다. 근래 듣건대, ‘각 읍에서 작목(作木)<sup>127)</sup>은 년 초에 고가로 명령을 내려 민간은 돈으로 대신 바치면, 싼값으로 시장에서 사와 거칠고 짧은 것을 계산하지 아니하니, 오직 겨우 채우기에 힘을 쓰고, 심한 경우 흑자는 돈으로 바꾸어 서울로 가서 전인(塵人) 정포를 갖고 물건을 파는 사람과 한통속이 되어 가장 열악한 것을 모으고 쓸만한 것이 아닌데도 구비(具備)하여 내는 자가 거의 많다. 이런 것을 어찌 백성에게 내게 하며, 공물(公物)을 바

125) 세목(稅木) : 전세목(田稅木)으로, 논밭의 조세로 바치던 무명을 말한다. 세목(稅木)은 대동본례(大同木例)에 따라 5승목(升木) 35척(尺)을 표준으로 삼는데, 5승목 35척은 폭이 400올[가닥]이고 길이가 포백척(布帛尺, 피륙을 재는 데 쓰는 자)으로 35척인 것을 말한다.

126) 승품척수(升品尺數) : 새[직물의 날실 80올]의 품격과 포백척(布帛尺)으로 잴 수치를 말한다.

127) 작목(作木) : 전세(田稅)를 받을 때 쌀과 콩 대신에 무명으로 환산하여 바치게 한 것을 말한다. 쌀 한 섬에 세 필 반, 콩 한 섬에 두 필 반, 삼수미 한 섬에 세 필로 하는 따위인데, 무명이 나지 않고 벼가 나는 곳은 벼로 대신하였다.

치는 본의이겠는가? 이러한 전세(田稅)의 무명을 통렬하게 바꾸지 않고 단지 관리(官吏)의 사리(射利)<sup>128)</sup>의 자금으로 귀속된다.’

생각이 여기에 이르니 진실로 한심할 뿐만 아니라 금년은 거둬 무명농사가 흉년을 당했다고 칭하니 환농(幻弄) 작간(作奸)은 반드시 전보다 배가 될 것임에 따라 이에 별도로 관문을 발송한다.

위 항목의 모든 폐해를 엄격하게 막는 여부는 전적으로 순영이 어떻게 단속하는가에 달려 있고 호조의 관문으로 신척함이 단지 으레 하는 말로 돌려버리면 그 실효를 보지 못한다. 단지 실효를 못 보는 것만이 아니고 점차 이전만 같지 못하는 것은 순영(巡營)이 호조에 관문으로 회답하고[反關] 열읍에 자세히 알려 잘 살피기를 다하지 아니하여 그런 것 아니겠는가? 금년은 3남의 대동세(大同稅)는 이미 순전(純錢)으로 하였고, 각 군문(軍門)의 포보(砲保)<sup>129)</sup>도 역시 작전(作錢)이 많으니 무명으로 상납하는 것은 단지 이 호조(戶曹)의 전세(田稅)뿐이다. 순영(巡營)은 별도로 엄하게 신척하여 구습을 통렬히 바꾸어 실효가 있게 하였으니, 이와 같이 별도로 관문한 뒤에도 무명의 품질이 또 혹 거칠고 열악하면 단지 모두 물리쳐 보내지 않을 뿐 아니라 해당 수령은 초기(草記)하여 무거운 죄로 처벌하고 결코 너그럽게 용서하지 않을 것이니 이러한 뜻을 아울러 일체를 특별히 단속하라.

세(稅)를 바친 영수증[尺文]을 대조하여 순영(巡營)에 돌려주는 것은 근만(勤慢)을 헤아려 살펴 신척하는 뜻으로 그렇게 해왔는데도 기한이 지나도록 꽤 오랫동안 버려두었다가 아울러 이향(吏鄕)에게 따져 묻지도 않고, 추론(推論)하여 형배(刑配)한 일이 있다는 것도 듣지 못하였으니 모두 편리함을 따르다가 무사한 것으로 귀결됨이 항상 개탄하는 바이니 거둬 옛 법식을 밝혀 무명이든 돈이든 논하지 말고 한결같이 전년에 나누어 내려준 책자에 의거하여 반드시 기한 내에 맞추어 상납하는 일을 각별히 조사(措辭)하여 무명을 마련하고 돈을 마련하는 각 읍에 행회(行會)하여 그들로 하여금 척념(惕念)하여 거행하게 하여 혹 지체되는 폐단이 없게 함이 마땅할 일”로 관문하였다.

따라서 동(同) 세(稅)로 내는 무명을 상납하는 절목을 별도로 검속하고 단속하

128) 사리(射利) :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익을 볼 기회를 얻으려고 노리는 것을 이른다.

129) 포보(砲保) : 군보(軍保)의 하나인데, 보미(保米)나 보포(保布)를 상납(上納)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곧 포군(砲軍) 네 사람 중 한 사람이 복무하면 세 사람은 그의 보인이 되어 보미나 보포를 상납하는 것이다.

니 반드시 직물 올을 가늘게 하고 자를 원래대로 길게 하는 것으로 기한에 맞춰 상납한 뒤에 납부한 영수증을 원안과 대조하라. 돈으로 대신 거둬들여 싼값으로 무명을 사들여 중간에서 작간하는 습속을 각별히 엄히 금하여 경청(京廳)에 상납할 때 점퇴(點退)<sup>130</sup>가 일어나는 폐단이 없게 하며 거행한 사실의 상황을 우선 급히 알림이 마땅할 일.<진산·금산·용담·고산·남평·광주·구례·순창·곡성·능주·무주>

同日. 題潭陽被告罪人金曰文會查狀

【題】威脅初無形跡，自裁備有看證，揆以審克之義，宜有參酌之道。同金曰文，更加嚴刑一次，懲礪放送，宜當尙事。

같은 날. 담양 피고 죄인 김일문(金曰文)을 회사(會查)한 보장(報狀)을 데김하였다.

【데김】위험한 것은 애초 흔적이 없고 자살이 준비된 것은 본 것을 말한 사람이 있으니 충분히 조사하는 뜻으로 헤아리면 의당 참작하는 방도가 있어야 한다. 동(同) 김일문을 다시 엄히 1차 형신하고 징계하여 내보냄이 마땅할 일.

二十八日. 井邑縣監入見辭去. 格浦別將金千鎰, 南原關王廟春例祭, 祭官進參後, 還官之路, 入謁辭去. 高敞縣監李鍾應、珍山郡守李奎憲來見, 而高敞縣監, 又爲入見辭去.

28일. 정읍 현감이 입견하고 하직하고 갔다. 격포 별장 김천일(金千鎰)이 남원 관왕묘 춘례제에 제관으로 가서 참석한 뒤에 관청으로 돌아가는 길에 들어와 알현하고 하직하고 갔다. 고창 현감 이종응(李鍾應)·진산 군수 이규헌(李奎憲)이 와서 보고, 고창 현감이 또 입견하고 하직하고 갔다.

同日. 以添補賑資錢區劃事, 發關珍山郡.

【關文】爲相考事. 本邑以尤甚災邑, 今方抄飢救急云, 自營門不可無添補賑資之道乙仍于. 茂朱府作錢中, 一百二十兩以賑資區劃爲去乎, 卽速枚移, 受來作穀後, 成冊修報, 宜當尙事。

130) 점퇴(點退) : 받은 물건을 조사(調査)하여 규격에 맞지 않는 것은 다시 물리는 것을 말한다.

같은 날. 진자전(賑資錢)을 더 보태어 구획하는 일로 진산군에 관문을 발송하였다.

【관문】 상고할 일. 진산군이 우심재음(尤甚災邑)으로 지금 막 기민(饑民)을 파악하여 급하게 구휼한다고 하니 감영으로부터 진자(賑資)를 더 보태는 방도가 없을 수가 없다. 따라서 무주부 작전(作錢) 가운데 1백2십 냡을 진자로 구획하니 즉시 빨리 공문을 보내어 진자를 받아와 작곡(作穀)한 뒤에 장부를 만들어 보고함이 마땅할 일.

同日. 以珍山賑資錢出給事, 發關茂朱府.

【關文】 爲相考事. 本邑捧留作錢中, 一百二十兩, 待珍山郡枚移, 準數出給爲乎矣, 嚴飭該吏, 卽速舉行, 宜當尙事.

같은 날. 진산군의 진자전(賑資錢)을 내주라는 일로 무주부에 관문을 발송하였다.

【관문】 상고할 일. 무주부에서 거둬들여 보관중인 작전(作戰)가운데 1백2십 냡을 진산군의 공문을 기다려 액수대로 내주되 해당 아전을 엄히 단속하여 즉시 거행함이 마땅할 일.

二十九日. 珍山郡守入見辭去.

29일. 진산 군수가 입견하여 하직하고 갔다.

同日. 封孝烈可合旌褒者抄啓.

【狀啓】 爲相考事. 孝烈之可合旌褒者, 每式年歲首抄啓, 自是法典所載是白如乎. 道內烈邑<sup>131)</sup>所報孝烈, 爲九十一人, 而請褒事體, 本自不輕, 行蹟虛實, 易致相蒙, 其在抄擇之道, 不可不十分詳審乙仍于. 臣多歧探探, 廣加考摭, 稽之邑報, 叅以輿論, 孝子五人, 烈女五人, 抄出開錄于後爲白乎旌, 緣由謹具啓聞.

全州孝子, 故士人趙文德, 生有異質, 九歲侍母病, 不少離側, 嘗藥憂遑, 或謂之曰: “微恙也何憂之甚?” 文德答曰: “子職也父母之病, 豈以輕重言乎?” 人固已奇之. 長從塾師, 風雨寒暑, 不廢定省, 父病欲嘗糞驗症, 焚香處禱而疾瘳, 人以爲孝感. 後

131) 烈邑 : ‘列邑’의 오기(誤記)로 보인다.

其父久客西關，文德往省飲食起居，盡其誠禮。居停主人之子，素放浪悖倫者，觀感半載，喟然嘆，“我見趙生，始知爲人子之道”，自是改行，以孝順稱。父歿於客中，文德哀毀踰制。里老及主人，以其土俗欲出殯，文德泣曰：“我遠客敢不循俗乎？願爲芟蘆而侍殯”，衆咸曰：“設有殃咎，不忍使此孝子獨處空山”，遂令殯于家。

鞠歸之日，里中婦孺，皆哭送之曰：“不忍與趙孝子別歸”。養其母，母病裂指進血，及喪哀毀踰禮，鄉里感動。隣有酗酒者，醒而輒問曰：“得不爲趙孝子知之乎？”及文德死，其人加麻來哭，亦可見誠孝之感人者深。”是如爲白齊。

○淳昌孝子；故進士楊宗楷，壬辰功臣靈光郡守士衡七世孫，丙子倡義使，贈工曹叅議汝樟五世孫也。資質敦厚，文識優長，性至孝，養志無方，年六十奉八耄老親，粥飲藥物，躬治以供，晝宵誦讀于親側，指告文義，及古人事蹟，以悅其心。每日暖風和，則負而出門前溪上，以暢鬱懷，及居喪，誠禮兩摯，孺慕采篤。正廟丁巳以經義生被選，條對御製條問，未及上徹，而遽抱泣弓之痛，每當忌辰，宗楷齋素涕泣，至死不衰。三登道啓，一入銓刻，未蒙旌褒，輿論嗟惜是如爲白齊。

○古阜孝子；故士人成允信，花泉君大庸之後，以心之孫也。性至孝，年甫九歲，遭父喪哭泣之哀，閭里感歎。早受乃祖之易學，潛心玩蹟，晝耕夜讀，以養其母，母死哀毀，幾滅性，葬祭以禮。益復肆力於易學，著人易五卷，人易卦爻三卷，有咄有說。推原河洛、洪範、皇極、經世之旨，而每爻之下，係以人事善惡，而勸懲之。正廟己酉，入於道啓，己未又自吏曹，關問其年歲、居住、生存與否，而身故已久，尙未蒙恩典，公議嗟惜是如爲白齊。

○金溝孝子；故士人金仁垆，贊成瓘之九世孫，倡義使千鎰五世旁孫也。九歲丁父憂，哭擗哀毀，令人感動。有盜夜入搶室中物，將刃其母，仁垆號泣，請以身代辭，甚懇惻，盜麾其徒而出曰：“此兒眞孝子也”。長而治功令，旣已歎曰：“是固爲榮親也，而父死母老欲求榮，則適失養而已”，遂棄其業，專心養志，滄瀛必躬調者四十餘年如一日也。及母病藥餌扶護，誠孝懇至。及喪哀毀踰禮，服旣闋，結茅墓側，晨夕省掃，暑雨寒雪，而無闕也。謝絕交遊，杜門端坐，研究性理之書，時有繡衣聞其名而往叩之，三宿講論，而出語人曰：“南來得一賢士”，章甫舉狀積久成軸，尙未蒙褒嘉之典是如爲白齊。

○礪山孝子；故士人金三魯，自孩提能知愛親，未有違拂，及長負米耕田，採山釣水，竭力殫誠，使其親極滋味，而適寒暖。顧其身，則襤縷茹菽。及親喪，水漿不入口，衰

麻不去體，苫席腐於涕淚。父母之墓，各在十里之原，而朝夕往來省掃，服闋而無一日間焉。拜跪之地，凹而作坎，樵牧持點，相戒曰：“此金孝子墓所也”。其子致澤、致健，能繼家聲，生養死葬，克遵父訓。其孫鍾宣，又克肖其父祖，一門四孝，公議翕然是如爲白齊。

○綾州烈女；故良人李文赫妻黃女，文赫性甚孝順，善事親，黃女事舅姑，孝敬出倫。文赫暴疾猝死，黃女亂刺其乳，灌血於口，終不回甦，翌日潛入房中縊死，時年二十一歲。文赫匹夫也，黃女匹婦也，無資乎學問之力、衿悅之訓，而夫孝婦烈卓乎難及。儒章邑報，積久成軸是如爲白齊。

○珍島烈女；姑士人林光雲妻朴氏，自于歸之後，孝順絕倫，隣里歎異之。其夫病癘疫，朴氏晝宵禱祝，誠足感天月餘，竟不能救，朴氏從容視息。初終棺殮之具，盡其誠禮，出殯之日，雉經于園樹，而被人救解，乃於其翌夜，乘人睡熟，懷石自投於深井而死。邑報儒章，哀然盈軸，合施恩褒，永樹風聲是如爲白齊。

○靈巖烈女；故良人朴正國妻朴女，歸正國十餘年，正國從漁商，入海船覆，而滄死，朴女獨持門戶，鞠養子女。有三易姓稱嫂叔者，金介同夫妻，居接于挾舍。介同借朴女錢二百文，而久不還，朴女促之，介同給曰：“我有可推長田之錢七百，足償此錢而有餘，盍與往推？”晨起趣飯而往日午，至松溪後山頂岩石間，朴女卸背負三歲女兒，少坐歇息，介同突前抱求歡，朴女批其頰咬其肩，大呼曰：“死耳不汝聽從”，介同撲之地，而勒欲奸，朴女拒逾力而罵逾嚴，於是乎，介同毆踢擠築，無所不至渾身，上下無一完膚，而其一片貞心，終不可奪。介同遂殺朴女，納之巖間，纍以亂石，又沈三歲女兒於溪之匯，而壓以石。朴女甥達宗，窮詰介同，而告官索其母女屍身，獄案已成，未及錄啓。介同斃于刑訊。朴女以海陬匹婦能辦，此百折不回，萬死采堅之卓節，論厥貞操，古今罕比是如爲白齊。

○寶城烈女；故學生安世杰妻金氏，卽忠臣，贈吏曹判書忠毅公，文起之孫也。自幼性貞孝，未笄時，其母病垂絕，斷指注血回甦，十日後疾復發，又斫一指灌之，病得差。及歸世杰也，閨壺有範，族黨稱以女士。世杰患久瘧，金氏聞人肉爲對症之藥，自割左股進之，疾果瘳。數年疾復作，金氏又割右股進之，疾不更發。金氏在家，而斷指療其母，適人而割股救其夫，孝烈之行，出於忠節之家，而尚未蒙恩褒是如爲白齊。

○和順烈女；故士人曹百休之妻，南平文氏都承旨和之後，三世孝行叅奉士元之七世孫也。年十九歸于百休，百休卽忠臣贈監役煇之六世孫也。文氏事舅姑，誠孝克篤，夫黨稱之。百休病三年，文氏扶持調護，不少怠惰如一日，聞者莫不感歎。及百休歿，文氏

一號殞絶，夫族救之董甦，咸喻之曰：“舅老女稚，君死則誰主喪乎？”文氏垂泣曰：“誠未料及此也”，乃强起視喪，時值風雨，夜輒泣曰：“如此風雨，使吾夫獨臥空山，而吾則晏然坐室中可乎？”一日手製寒衣，進舅姑，居數夜服毒而死，距夫喪二十日也。時年二十七，百休家，世以節行聞于世，其旁祖進士偉仲妻孔氏，以殉節旌閭，從曾祖伯玉妻李氏，亦以殉節旌閭，今文氏之從容就死，可謂不墜家聲者也。儒章屢舉，尚未蒙褒典是如爲白齊。

같은 날. 효행과 정절을 기리고 포상하는 것이 합당한 사람을 가려 장계를 써서 봉하였다.

【장계】 상고할 일. 효행과 정절을 기리고 포상하는 것이 합당한 자를 매 식년(式年) 연초에 뽑아 상주(上奏)하는 것은 본래 법전에 기재된 바입니다. 도내 여러 고을에 효행과 정절로 보고한 사람이 91인이 되니 포상을 청하는 사체(事體)가 본래 자연 가볍지 아니하지만, 행적의 허실은 쉽게 서로 속이게 되어 그 가려 택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충분히 살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은 다 방면으로 채탐(採探)하고 넓게 살피고 취하여 읍의 보고를 조사하고 여론을 참고하여 효자 5인·열녀 5인을 가려낸 뒤에 낱낱이 적고 이러한 연유로 삼가 갖추어 아뢰입니다.

전주효자; 고(故) 사인(士人) 조문덕(趙文德)은 타고난 뛰어난 자질이 있어 9세에 어머니 병을 시중들며 잠깐도 곁을 떠나지 않았으며 상약(嘗藥 드리기 전에 먼저 약 맛을 봄)하며 근심하고 두려워하니 흑자가 그에게 말하길 “미양(微恙 가벼운 질병)에 무슨 근심이 그리 심한가?” 하니 조문덕이 대답하길 “자식된 도리로 부모가 편찮은데 어찌 병의 경중(輕重)으로 말하겠습니까?” 하니 사람들이 진실로 그를 매우 기이하게 여겼다. 장성하여 글방 선생을 좇아 풍우한서(風雨寒暑)에도 혼정신성(昏定晨省)을 폐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 병환이 깊어지자 상분(嘗糞 부모의 대변을 맛봄)하여 증세를 살피고 분향처에서 기도하여 병이 나으니 사람들이 효심으로 감복하였다고 말하였다. 자기 아버지가 서관(西關)<sup>132)</sup>에 오랫동안 의탁하고 있는 뒤에 문덕이 가서 음식과 기거를 살피고 그 정성과 예도를 다하였다. 거정주인(居停主人)<sup>133)</sup>의 자식이 평소 방랑(放浪)하고 패륜(悖倫)한 자였는데 반년을 보고 감동하여 한숨 쉬며 탄식하고 내가 조문덕을 보고 비로소 사람 자식 되는 도리를 알았다고 하며 이로부터 행실을 바꾸어 효행 있고 유순(柔順)한 사람으로

132) 서관(西關) : 서도(西道)로, 황해도와 평안도 지방의 통칭(通稱)이다.

133) 거정주인(居停主人) : 타국이나 타향에서 기거(寄居)할 적에 그곳의 주인을 일컫는 말이다.



칭찬받았다. 부모가 타향에서 돌아가시자 문덕이 슬퍼함이 법도를 넘게 하였다. 마을 어른과 주인이 그 지방 토속(土俗)으로 출빈(出殯)하려 하자 문덕이 울면서 말하길 “나는 멀리 객지인데 감히 토속을 따르지 않겠습니까? 원컨대 갈대밭에서 노숙하며[芟蘆] 빈소(殯所)를 지키겠습니다.” 하니 우리가 모두 말하길 “설사 재앙이 있다 할지라도 차마 이 효자를 홀로 빈산에 있게 할 수 없습니다.” 하고 결국 빈소(殯所)를 집에 두게 하였다. 억지로 돌아오는 날 마을 속 부유(婦孺)들이 모두 울며 떠나보내며 말하길 “차마 조효자와 더불어 이별하고 돌려보낼 수 없다.” 고 하였다.

자기 어머니를 봉양할 적에 어머니가 병들자 손가락을 찌어 피를 올리고 돌아가셨을 때 몹시 슬퍼하여 예도를 넘으니, 향리가 감동하였다. 인근의 술주정하는 자가 있었는데, 술이 깨어선 번번이 묻길 “조효자가 이를 알지 못하게 하였는가?” 라고 하더니, 문덕이 죽임에 이르자 그가 가마(加麻)<sup>134</sup>하고 와서 곡하였으니 또한 진실로 효성스런 자가 남을 감동시킴이 깊었음을 가히 볼 수 있습니다.

순창효자; 고(故) 진사 양종해(楊宗楷)는 임진공신(壬辰功臣) 영광 군수 양사형(楊士衡)<sup>135</sup>의 7세손이고, 병자년(丙子 1636) 창의사(倡義使)<sup>136</sup>로 공조 참의(工曹參議)로 추증(追贈)된 양여장(楊汝樟)의 5세손입니다. 자질이 돈후하고 문식(文識)이 뛰어나고 깊으며, 성품이 지극히 효성스럽고 양지(養志 부모(父母)의 뜻을 받들어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효행(孝行))에 모가 없었으며 나이 60세에 80세의 노부모를 봉양하며 미음(米飮)과 약물을 몸소 만들어 공양(供養)하며 밤낮으로 부모 곁에서 송독(誦讀)하고, 문의(文義)를 가리켜 알려주고, 옛 사람의 사적(事蹟)에 이르러서는 그런 마음에 기뻐하였습니다. 매년 날이 따듯하고 바람이 화순하면 업고 문 앞 시냇가로 나와 답답한 가슴을 통창(通暢)시켰고, 거상(居喪)엔 정성(精誠)과 예도(禮度) 두 개를 지키며 유모(孺慕)<sup>137</sup>의 정을 더욱 도탑게 하였습니다.

134) 가마(加麻) : 스승이나 벗의 상(喪)에 관(冠)을 벗고 머리에 삼베를 두르고 허리에 흰 띠를 차는 것을 말한다.

135) 양사형(楊士衡) : 1547(명종2)~1599(선조32). 본관은 남원(南原), 자는 계평(季平), 호는 영하정(映霞亭) 또는 어은(漁隱)이다. 1588년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한 뒤 군자감(軍資監)의 봉사(奉事)·직장(直長) 등을 역임하였다. 임진왜란에 군량을 모아 금산의 전지로 보내고 의병으로 활동하였다. 병조정랑·춘추관·기사관·경기 도사·남평 현감(南平縣監)·예조 정랑을 거쳐 1599년 영광 군수(靈光郡守)로 임지에서 죽었다. 저서로는 『어은유집』이 있다.

136) 창의사(倡義使) : 나라에 큰 난리(亂離)가 일어났을 때에 의병(義兵)을 일으킨 사람에게 주던 임시(臨時) 벼슬이다.

137) 유모(孺慕) : 돌아간 부모(父母)를 사모(思慕)함을 말한다.

정묘(正廟) 정사(丁巳, 1797)년에 경의생(經義生 경전의 뜻을 해설하는 서생)으로 뽑혀 어제조문(御製條問)에 조목조목 들어 대답하였으나 임금께 통하는데 까지 미치지 못하고 갑자기 읍궁지통(泣弓之痛)<sup>138</sup>을 품게 되어 매 기신(忌辰)을 당하면 양종해(楊宗楷)는 재소(齋素)<sup>139</sup>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을 죽을 때까지 행하였습니다. 세 번 도계(道啓)<sup>140</sup>에 올라 한 번 전성(銓劑 천거)되었으나 기리고 포상하는 은전을 입지 못하니 여론이 탄식하고 아까워합니다.

고부효자; 고(故) 사인(士人) 성윤신(成允信)은 화천군(花泉君) 성대용(成大庸)<sup>141</sup>의 후손인 성이심(成以心)<sup>142</sup>의 손자입니다. 본성이 지극히 효성스러워 나이 겨우 9세 때에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소리 내어 서럽게 울어 마을 사람들이 감탄하였습니다. 어릴 때 할아버지의 역학(易學)을 배워 마음을 두어 깊이 연구했고 주경야독 하며 어머니를 봉양 하였고,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애훼(哀毀 부모님을 여윈 슬픔)로 거의 목숨을 잃을 뻔하고 장례와 제사는 예도(禮度)로서 하였습니다. 게다가 역학에 다시 힘을 다하여 인역(人易) 5권과 인역괘효(人易卦爻) 3권을 지어 말하지 않은 것들에 대하여 설(說)을 두었습니다. 하도(河圖)·낙서(洛書)·홍범(洪範)·황극(皇極)<sup>143</sup>·경세(經世)의 뜻의 근원을 확충하여 매 효(爻)아래 인사(人事) 선악의 말을 매달아 권면하고 징계하였습니다. 정묘(正廟) 을유년(1789)에 도계(道啓)에 들었었고, 을미년(1799)에 또 이조(吏曹)로부터 그의 나이·거주·생존 여부를 관문으로 물었는데도 죽은 지가 이미 오래되었으나 아직도 은전(恩典)을 입지 못하니 공론이 탄식하고 아까워합니다.

금구효자; 고(故) 사인(士人) 김인후(金仁厚)는 찬성(贊成) 김관(金權)<sup>144</sup>의 세

138) 읍궁지통(泣弓之痛) : 임금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을 말한다. 옛날에 황제(黃帝)가 형산의 정호에서 정(鼎)을 주조하고는 득도(得道)하여 신선이 된 뒤에 용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자, 군신과 후궁 중에 함께 올라간 자가 70여 인이었고, 따라가지 못한 소신(小臣)들은 용의 수염을 잡고 있다가 그것이 빠지는 바람에 모두 떨어져 버렸다. 이에 신하와 후궁들이 활을 잡고 통곡하였다고 한다.『史記』卷 12 孝武本紀)

139) 재소(齋素) : 몸과 마음을 정결히 가져 육식을 피하고 소찬을 드는 것을 말한다.

140) 도계(道啓) : 각도(各道)의 감사(監司)가 임금에게 아뢰어 바치는 글을 말한다.

141) 성대용(成大庸) : 생몰년 미상. 공민왕(恭愍王) 때에 우대언(右代言)·밀직부사(密直副使)·양광도 도순문사(楊廣道都巡問使)를 지냈고, 우왕(禑王) 때는 동지밀직(同知密直)을 역임하였다.

142) 성이심(成以心) : 1692(숙종18)~1750(영조26). 본관은 창녕(昌寧), 자는 덕성(德盛), 호는 (盤谷)이다. 세상을 등지고 학문에만 매진했던 은둔거사였으며, 명시적으로 드러난 학맥(學脈)은 없다. 저서에 『인역(人易)』이 있다.

143) 황극(皇極) : 제왕(帝王)이 나라를 다스리는 표준이 될 만한 지극히 올바른 법을 말한다.

144) 김관(金權) : 1425(세종7)~1485(성종16). 본관은 언양(彦陽), 초명은 종동(終同), 자는 영중(瑩中), 호는 묵재(默齋)이다. 1467년 이시애(李施愛)의 난이 일어나자 구성군 준(龜城君浚)의 종사관으로 활

손인 창의사(倡義使) 김천일(金千鎰)<sup>145)</sup>의 방손(傍孫)입니다. 9세에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매우 슬퍼하여 사람들이 감동하였다. 도둑이 밤에 들어와 방의 물건을 빼앗고 곧 어머니를 칼로 헤치려할 때 인후(仁廔)가 소리 내어 울면서 자신을 죽이라고 칭하는 말이 매우 간절하고 지성스러우니 도둑이 자기 무리들을 이끌고 나가면서 말하길 “이 아이가 진정 효자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장성하여 과거공부를 하면서 얼마 있다 탄식하여 말하길 “이것은 진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늙었는데 영화를 구하려고 하는 것은 단지 잘못 봉양[失養]할 뿐이다.” 하고 결국 과거공부를 포기하고 전심으로 부모님의 뜻을 받들며 수수(滸瀨)<sup>146)</sup>는 반드시 몸소 조리(調理)한 지가 40여년을 하루 같이 하였습니다. 어머니가 병들자 약이 되는 음식[藥餌]으로 도와서 보호하고 진실한 효도가 간절하고 지극하였습니다. 어머니 상을 당하여 애훼(哀毀)가 예도(禮度)를 넘었고 복제(服制)를 마치고 묘지 곁에서 땃집을 짓고 아침저녁으로 성묘(省墓)하는 것을 서우(暑雨)와 한설(寒雪)에도 빠트리지 않았습니다. 교유(交遊)를 사절(謝絕)하고 문을 닫고 단정히 앉아 성리(性理)의 책을 연구할 때 암행어사가 그 명성을 들음이 있어 가서 문을 두드려 3일을 묵으며 강론하고 나오며 사람들에게 말하길 “남쪽에 와서 한 현사(賢士)를 얻었다.” 라고 하였습니다. 유생들의 추천장이 쌓인 지가 오래되고 축을 이루었는데도 아직도 기리고 칭찬하는 은전을 입지 못하였습니다.

어산 효자; 고(故) 사인(士人) 김삼노(金三魯)는 어린아이 때부터 애친(愛親)을 잘 알아 부모의 뜻에 어긋남이 없었고, 장성하여서는 부미(負米)<sup>147)</sup>하며 밭을 갈고, 산에서는 나물을 캐고 물에서는 고기를 잡아드리며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

약한 공으로 정충출기적개공신(精忠出氣敵愾功臣) 2등에 녹훈되고 종부시 정(宗簿寺正)에 임명되었다. 1481년 전주 부윤을 지내고, 1483년 사은사(謝恩使)가 되어 명나라에 다녀왔으며, 1484년 전라도 관찰사를 역임하였다. 시호는 공양(恭襄)이다.

145) 김천일(金千鎰) : 1537(중종32)~1593(선조26). 본관은 언양(彦陽), 자는 사중(士重), 호는 건재(健齋)이다. 1573년(선조6) 학행(學行)으로 발탁되어 처음 군기시 주부(軍器寺主簿)가 된 뒤 용안 현감(龍安縣監)과 강원도·경상도의 도사·지평(持平)·임실 현감·담양 부사·한성부 서윤·수원 부사를 역임하였다. 1592년 임진왜란에 의병장으로 활동하다 진주성싸움에서 순사(殉死)하였다. 나주의 정렬사(旌烈祠), 진주의 창렬사(彰烈祠), 순창의 화산서원(花山書院), 태인의 남고서원(南臯書院), 임실의 학정서원(鶴亭書院)에 제향되었다. 저서로는 『건재집(健齋集)』이 있다. 시호는 문열(文烈)이다.

146) 수수(滸瀨) : 쌀뜨물을 미끄럽게 한다는 뜻으로 맛있는 음식을 봉양하는 것을 말한다.

147) 부미(負米) : 자로부미(子路負米)의 준말로, 공자(孔子)의 제자 자로(子路)는 가난하여 매일 쌀을 등짐으로 저서 백 리 밖까지 운반(運搬)하여 그 운임(運賃)을 받아 양친(兩親)을 봉양(奉養)했다고 한다.

여 부모님이 자미(滋味)를 맛보시게 정성을 다하였고 한난(寒暖)에 알맞게 하였으나 자신을 돌봄은 누더기를 걸치고 콩잎을 먹었습니다. 부모님 상을 당하여서는 물과 미음도 먹지 않고 쇠마(衰麻)<sup>148</sup>를 몸에서 벗지 않으면서 거적자리[苫席]가 눈물로 썩었습니다. 부모의 묘가 각각 10리 되는 언덕에 있었으나 조석으로 왕래하며 쓸어주고 살폈으며 삼년상을 마칠 때까지 하루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절하고 끓어앉았던 자리는 움푹 파여 구덩이가 생기자 초목(樵牧)들이 그 자리를 가리키며 서로 경계하며 말하길 “이 곳은 김효자의 묘소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 아들 치택(致澤)·치건(致健)도 집안의 명성을 잘 이어 생전엔 봉양하고 사후엔 장례하는 것에 아버지의 가르침을 극진히 따랐습니다. 그의 손자 종선(鍾宣) 또한 자기 아버지·할아버지를 닮았으니 한 가문에 4효자로 여론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능주 열녀; 고(故) 양인(良人) 이문혁(李文赫)의 처 황녀(黃女)는, 이문혁의 성품이 매우 효순(孝順)하여 부모님을 잘 섬기니, 황녀는 구고(舅姑)를 섬김에 효경(孝敬)이 무리에서 뛰어났습니다. 이문혁이 갑작스런 질병으로 졸지에 죽을 때 황녀는 자기의 유방을 난자하여 입에다 피를 넣었으나 끝내 다시 소생하지 않자 다음날 몰래 방으로 들어가 목매달아 죽으니 당시 나이 21세였습니다. 문혁과 황녀는 필부필부(匹夫匹婦)로 학문했던 힘이나 금세지훈(衿袞之訓)<sup>149</sup>에 바탕함이 없는데도 남편의 효도와 부인의 정절이 뛰어나 거기에 미치기가 어렵습니다. 유생들의 글과 읊에 보고된 것이 오랫동안 쌓여 굴대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진도 열녀; 고(故) 사인(士人) 임광운(林光雲)의 처 박씨는 시집온 뒤로 효순(孝順)이 무리에서 뛰어나 인근 마을에서 칭찬하며 특별하게 여겼습니다. 남편이 여역(癘疫)<sup>150</sup>으로 병들자 박씨는 밤낮으로 빌어 진실로 충분히 하늘을 한 달여 동안 감동시켜도 결국 구원할 수 없자 박씨는 조용히 눈만 깜박거리며 코로 숨을 쉴 뿐이었습니다. 초종(初終)<sup>151</sup>과 관령(棺殮 시체를 관에 넣음)의 도구는 그 정성과 예도를 다하였고 출빈(出殯)하는 날에 집 뜰 나무에 목을 매달아 남에게 구조

148) 쇠마(衰麻) : 삼년상에 입는 상복이다. 쇠는 가슴 앞에, 짚은 머리와 허리에 착용하는 삼베로 만든 것이다. 참쇠는 아랫도리를 마름질한 대로 두고 꿰매지 않은 것이고, 자쇠(齊衰)는 그것을 꿰매어 맞춘 것이다.

149) 금세지훈(衿袞之訓) : 출가(出嫁)할 때의 가르침을 말한다. 『의례(儀禮)』 「사혼례(士昏禮)」에 “모친이 딸의 옷고름을 매 주고 허리에 수건을 채워 주면서 부지런하고 공경히 하여 아침저녁으로 집안 일에 어긋남이 없게 하라.[母施衿結袞曰: 勉之敬之, 夙夜無違宮事]” 하였다.

150) 여역(癘疫) : 돌림으로 앓는 열병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151) 초종(初終) : 초종장사(初終葬事)로, 초상(初喪)이 난 뒤부터 졸곡(卒哭)까지를 일컫는다.

되어 풀었으나 그 다음날 밤에 사람들이 잠에 빠져있는 틈을 타 돌을 안고 깊은 우물에 몸을 던져 죽었습니다. 읍에 보고된 것과 유생들의 글이 넉넉하여 굴대에 가득하니 은혜로운 표창을 베푸시어 풍격(風格)과 명성(名聲)을 길이 세우시는 것이 합당하다고 합니다.

영암 열녀; 고(故) 사인(士人) 박정국(朴正國)의 처 박녀(朴女)는, 박정국에게 시집온 지 10여년인데, 박정국은 고기를 잡아 파는 일에 종사할 때 바다로 들어가 배가 전복되어 물에 빠져 죽어 박녀가 홀로 문호(門戶)를 지키며 자녀를 길렀습니다. 삼역성(三易姓 증조모(曾祖母)의 집안)으로 수숙(嫂叔)<sup>152)</sup>을 호칭하는 자 김개동(金介同) 부부가 좁은 집에 붙어살고 있었습니다. 김개동이는 박녀에게 돈 2백문(文)을 빌렸는데 오래되어도 돌려주지 않자 박녀가 돈을 독촉하니 김개동이 속이며 말하길 “나는 장전(長田)<sup>153)</sup>의 돈 7백을 받을 것이 있으니 족히 이 돈으로 갚고도 남음이 있으니 어찌 함께 가서 받아내지 않겠소?” 라고 하여

새벽에 일어나 밥을 재촉하여 먹고 간 날 정오에 송계(松溪) 뒷산 꼭대기 암석 사이에 이르렀을 때 박녀는 뒤에 업었던 3세 여아를 풀고 잠깐 앉아 쉬었는데, 김개동이 갑자기 앞에서 안고 사랑을 구하자 박녀는 그의 뺨을 때리고 어깨를 깨물며 큰 소리로 말하길 “죽음뿐 너의 청을 따를 수 없다.” 라고 하였다.

김개동이 땅에다 박녀를 때려눕히고 강제로 범하려 하니 박녀는 거부하는데 힘을 더하고 꾸짖는데 엄함을 더하니 이에 김개동이 몰아 넘어뜨리고 밀어 짓이겨 온몸에 이르지 않은 곳이 없어 위아래 성한 살갓이 한 곳도 없었는데도 한 조각 정절의 마음만은 끝내 빼앗기지 않았습니 다. 김개동은 결국 박녀를 죽이고 바위 사이에 들여 넣고 어지럽게 돌로 쌓아놓고 또 3세 여아를 송계 물가에 가라앉히고 돌로 눌러 놓았습니다. 박녀의 오라비 박달종(朴達宗)이 김개동을 끝까지 캐몰어 관아에 고발하고 그 모녀의 시신을 찾아 옥안(獄案)이 이미 이루어졌는데도 녹계(錄啓 기록하여 啓聞함)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김개동이는 형신(刑訊) 중 죽었습니다. 박녀는 해추(海陬 바닷가)의 필부(匹婦)로 잘 지켜내어 이렇게 백번 꺾어도 굽히지 않았으니, 만 번 죽어도 더욱 견고해지는 뛰어난 정절은 정조(貞操)로 논하더라도 고금에 비교할 자가 드물다고 합니다.

보성 열녀; 고(故) 학생(學生) 안세걸(安世杰)의 처 김씨는 바로 이조판서 충의

152) 수숙(嫂叔) : 형제(兄弟)의 아내와 남편(男便)의 형제(兄弟)를 말한다.

153) 장전(長田) : 역(驛)에 속(屬)한 마위전의 한 가지이다.

공(忠毅公)으로 추증(追贈)된 김문기(金文起)<sup>154</sup>의 자손입니다. 어려서부터 성품이 곧고 효성스러워 계례(筓禮) 시기가 못 되었을 때 그 어머니가 병으로 거의 죽게 되니 손가락을 찢어 피를 입에 넣어 다시 깨어나게 하였고, 10일 지난 뒤 병이 다시 심해지자 또 한 손가락을 찢어 입에 대니 병이 차도를 보였다. 안세걸에게 시집와서는 안살림에 법도가 있으니 족속들이 여사로 칭하였습니다. 안세걸이 오랜 학질로 근심하니 김씨는 인육이 증세에 대처하는 약이 된다는 것을 듣고 스스로 왼쪽 넓적다리를 베어 올리니 병이 과연 나았습니다. 2,3년 뒤에 병이 다시 도지자 김씨는 또 오른쪽 넓적다리를 베어 올리니 병이 재발하지 않았습니다. 김씨가 친정에 있었을 때는 손가락을 찢어 어머니를 낫게 하였고 시집와서는 넓적다리를 베어 남편을 구원하였으니 효열(孝烈)의 행실이 충절(忠節)한 집안에서 나왔는데도 아직도 은혜로운 기림을 받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화순 열녀; 고(故) 사인(士人) 조백휴(曹百休)의 처는 남평 문씨 도승지 문화(文和)의 후손으로 3대에 효행(孝行)한 참봉 문사원(文士元)의 7세손입니다. 나이 19세에 조백휴에게 시집오니 조백휴는 곧 충신으로 감역(監役)에 추증(追贈)된 조엽(曹燧)<sup>155</sup>의 6세손입니다. 문씨는 구고(舅姑)를 섬김은 진실로 효성스럽고 지극히 도타워서 남편 일가들이 그녀를 칭찬하였습니다. 조백휴가 병든 지 3년에 문씨는 도와 지키며 조리(調理)하고 보호함이 조금치도 게으르지 않아 하루 같으니 듣는 자들이 감탄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조백휴가 죽음에 이르러서는 문씨가 한 번 부르짖고 기절하니 부족(夫族)이 그를 구원하여 조금 깨어나자 모두가 그녀에게 깨우쳐 말하길 “구고(舅姑)와 여자 어린아이 뿐인데 네가 죽으면 누가 상(喪)을 주관하겠는가?” 하니 문씨는 눈물을 흘리며 하는 말이 “진실로 이런 상황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고 바로 억지로 기운을 내 상(喪)을 맡아 보았으며, 당시 풍우를 만나니 밤에 문득 울면서 말하길 “이 같은 풍우에 내 남편을 홀로 빈산에 누게 하였는데 내가 편안히 방 가운데 앉아 있는 것이 좋겠는가?” 라고

154) 김문기(金文起) : 1399(정종1)~1456(세조2). 본관은 김녕(金寧), 초명은 효기(孝起), 자는 여공(汝恭), 호는 백촌(白村)이다. 1426년(세종8) 식년 문과에 병과로 급제했고, 병조 참의·함길도 도관찰사·형조참판 등을 역임하였다. 1456년 성삼문(成三問)·박팽년(朴彭年) 등이 주동한 단종 복위 사건에 관련되어 군기감 앞에서 처형되었다. 시호는 충의(忠毅)이다.

155) 조엽(曹燧) : 1600년(선조33)~1665년(현종6). 본관은 창녕(昌寧), 자는 회이(晦而), 호는 구봉(九峰)이다. 1624년(인조2) 진사시에 합격하였으며, 효종 때 민정중(閔鼎重)의 추천으로 선공감감역(繕工監監役)에 임명되었으나 벼슬에 나아가지 않았다. 사후인 1804년(순조4) 정려(旌閭)가 세워지고, 사복시 정(司僕寺正)에 추증되었다.

하였고, 하루아침에 한의(寒衣)를 손수 만들어 구고(舅姑)에 올리고, 2,3일 밤 있다가 독을 먹고 죽으니 남편 상(喪)이 난지 20일 뒤였습니다. 당시 나이 27세로 조백휴의 집안은 대대로 절행(節行)으로 세상에 알려졌고, 그 방조(傍祖) 진사(進士) 조위중(曹偉仲)의 처 공씨(孔氏)는 순절(殉節)로 정려(旌閭)하였고 종증조(從曾祖) 조백옥(曹伯玉)의 처 이씨(李氏) 또한 순절로 정려하였으니 지금 문씨가 조용히 죽은 것은 집안의 명성을 떨어뜨리지 않는 경우라 이를 만합니다. 유생들의 글로 여러 번 천거하였으나 아직도 칭찬하는 은전을 입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同日. 因禮曹啓下關, 封孝行別啓.

【狀啓】爲相考事. 壬辰十二月日, 到付禮曹關內, “節啓下教曹啓目, ‘因泰仁私奴成晚, 擊錚原情, 刑曹啓目內, [令禮曹稟處] 亦爲白有等以, 取考其原情, 則 [以爲奴矣身, 故上典學生韓國文, 及其侄義達, 以孝友之卓異, 公議齊發, 儒生權默等, 遷於戊子秋, 上言事, 下該曹以令本道待式年, 別具狀聞之意, 回達行會是白加尼. 今春四式年, 孝烈積滯者, 舉蒙褒典, 而至於奴矣身上典叔侄事, 獨未免見漏, 特令該曹取考伊時文書, 並施褒旌之典] 亦爲白有臥乎. 所取考謄錄, 則戊子九月, 因各道儒生等, 孝烈請褒事上言, 令各該道守臣, 詳探實蹟, 薄採輿論, 待式年別具狀聞之意, 覆達分付, 而泰仁故學生韓國文, 及其侄義達孝行事, 亦在其中是白乎矣. 已經式年, 而迄無舉論者, 蓋以本道狀聞之未到, 而遂值淹滯, 有此更籲是白如乎, 雖已過時, 不可仍置, 令該道此後式年, 一體狀聞事分付何如?’ 啓 ‘依允’ 事, 啓下爲有置. 啓下內辭意, 奉審施行, 宜當向事” 關是白齊.

癸巳十月日, 到付同曹關內, “節啓下教道內全州幼學金道郁等, 駕前上言據, 曹啓目 ‘粘連啓下是白有亦, 向前全州幼學金道郁等, 限內現身, 戶口現納, 親呈的實是白在果. 觀此上言, 則本州故士人沈季賢, 孝行表著, 儒狀、邑牒, 積成券軸, 而登聞無階, 迺於戊子秋, 呼籲輦路, 伏承令該道待式年, 別具狀聞之成令是白如乎. 今又因循, 則亦將永歸泯沒, 亟令有司撫實覆奏, 俾舉旌褒之典事, 有此呼籲爲白有臥乎所. 取考謄錄, 則戊子九月, 因各道儒等, 孝烈請褒事上言, 令各該道守臣詳探實蹟, 博採輿論, 待式年別具狀聞之意, 覆達分付, 而全州故士人沈季賢孝行, 亦在其中是白乎矣. 以本道狀聞之未到, 有此更籲是白如乎, 式年在即, 依前行會, 舉行事分付何如?’ 啓 ‘依允’ 事啓下爲有置. 啓下內辭意, 奉審施行宜當向事” 關是白齊.

一時到付同曹關內，“飭啓下教道內進士盧錫璋等，駕前上言，遽曹啓目‘粘連啓下是白有亦。向前全羅道進士盧錫璋等，限內現身，戶口現納，親呈的實是白在果。觀此上言，則爲南原故士人李思永孝行，請施旋褒之典事，有此呼籲爲白有臥乎所。李思永孝行之卓異，誠極嘉尚是白乎矣。褒獎之典，事體至重是白如乎，令本道博採輿論啓聞後，稟處何如?’啓‘依允’事啓下爲有置。啓下內辭意，奉審施行宜當向事”三度關是白置有亦。上項泰仁故學生韓國文及其侄義達、全州故士人沈季賢、南原故士人李思永孝行實蹟，叅以邑報，博採輿論，開錄于後爲白去乎。令該曹稟處爲白只爲。

泰仁孝子故學生韓國文，故相臣西原府院君確之十六世孫也。自在髫齡，誠孝根天。及長躬執炊爨，以供甘旨，父病祝天願代，嘗糞驗症，斫指灌血，獲延三日。居喪哀毀踰制，居廬省掃，不以風雨寒暑而或廢，當膝草卉不生，揮淚栢葉盡枯。母病時，感致冰鯉，裂指注血，又得回甦，以終天年，而守墓三年，蔬食水飲，一如前喪。奉其兄如嚴父，寢食不相離，兄死之後，視二侄先已子，人無間言。其孝友之篤、睦婣之行，士林公議，明的可徵是白遣。其侄義達，年纔十歲，早失怙恃，父事其叔，有疾病則不離側，躬煮藥餌，先嘗後進，齊沐禱天，願以身代。及其喪，哀毀哭踊，服衰三年。八耋叔母事之如慈母，定省溫清，務盡適意，與過房之弟，同居一室，田產無彼此，鄉隣誦美，公議不泯是如爲白齊。

○全州孝子故士人沈季賢，青陽君義謙之六世孫也。早失所怙，自在幼少，事祖奉母，盡誠無違。祖父有疾，憂形于色，衣不解帶，夜不交睫，屬續之日，哀毀踰制。奉母以養志爲先，身無全裾，而親衣輕暖；躬厭茹藿，而親極滋味。其母有疾，試藥嘗糞，祝天願代。及其丁憂，啜粥三年，逐日省墳，不避風雨，如當雪積，則擁箒往掃，拜跪之地，成一臼碓。松楸有斧斤之入，則抱樹痛哭，閭里觀感，相戒勿剪。五十年省掃，殆若一日，而往來之路，每連一拳石於道，傍積成一邱，過者指點曰：“沈孝子所憩也”。年至六十四癸酉，卽父喪之回甲，追慕居喪，如禮成服，三年廬墓，曲盡其哀，有語及父母事者，輒飲泣嗚咽。伯仲兩兄，事之如嚴父，衣服飲食，必先而後已。兩兄死後，孀嫂孤侄，誠心撫養。門徒至爲數百人，而不受束脩之物，固窮無所營，求蝸屋糲飯，處之晏如，儒章邑牒，積成券軸，而尙未褒揚，輿論齟齬是如爲白齊。

○南原孝子故士人李思永，卽安陽君恂九世孫，玉潭應禧之玄孫也。世篤忠孝出於天性。八歲時悶其母寢處之寒冷，先以身溫之。若宿外舍，而值雷電，則趨入撫摩，告以勿驚。至於勝冠，其父勸學業，則辭以離閨之難，而不事功令，專心於經傳禮學。自少



至老，未嘗出閉門之外，惟事甘蠶之供、溫清之節，身不掩布褐，而親被紬帛，口不充糟糠，而親具甘蠶。當父病甚，嘗糞割股，得延旬日，及其居憂葬祭，一依家禮，而以母病不得廬墓，晨夕往來，拜掃號泣，以終三霜。每夜焚香祝親齡，雖祁寒盛暑，未嘗或廢，三十年如一日，跪處成坎。母久病不癒，每若多虱，則自油其髮，而并枕以移其虱。及其病，裂指灌血，以延時日，及喪廬墓毀瘠，幾至滅性。早拋學業，專於爲己之工，研究經禮性理之書。每遇國忌，必齋戒行素，當英廟賓天之日，設壇舍後，朝夕望哭，以終三年，一道傳誦，無不感歎是如爲白齊。

같은 날. 예조의 계하 관문으로 인하여 효행(孝行)에 대한 별계(別啓)를 써서 봉하였다.

【장계】 상고할 일. 임진(壬辰, 1832)년 12월 일에 받아 본 예조의 관문 내용은, “이번에 계하 하신 예조의 계목(啓目)에 ‘태인(泰仁)의 사노 성만(成晩)이 격쟁(擊錚) 원정(原情)으로 인하여 형조에서 올린 계목 안에, [예조로 하여금 품처(稟處)<sup>156</sup>하게 하라] 고 하셨기 때문에 그 원정(原情)을 취하여 상고해보니, [노비의 몸이 되어 고(故) 상전(上典) 학생(學生) 한국문(韓國文)과 그 조카 한의달(韓義達)이 효우(孝友)가 특별히 뛰어난 것으로 공론이 일제히 일어나 유생 권묵(權默) 등이 무자년(1828) 가을에 천거하며 상언(上言)한 일을 예조에 내려 본도로 하여금 식년을 기다려 별도로 갖추어 장문(狀聞 장계(狀啓)로 아뢴)하라는 뜻을 회달(回達)<sup>157</sup>하여 행회(行會)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올 봄 사식년(四式年)<sup>158</sup>에 효열(孝烈)이 쌓이고 쌓인 자들은 모두 포전(褒典)을 입었지만 저의 상전과 숙질(叔侄)의 경우에 이르러서는 유독 빠트리는 것을 면치 못하였으니 특별히 해조(該曹)로 하여금 당시 문서를 취하여 상고하여 모두 포정(褒旌)의 은전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등록(謄錄)<sup>159</sup>을 가져다 상고해 보니 무자년 9월에 각 도의 유생 등이 효열(孝烈)로 청포(請褒)한 일을 상언(上言)한 것은 각 도의 수신(守臣)들로 하여금 실적을 자세히 찾게 하고 널리 여론을 수렴하여 식년을 기다려 별도로 갖추어 장계로 아뢰는 뜻으로 복달(覆達 다시 아뢴)을 분부하셨습니다. 태인 고(故) 학생 한국문과 그

156) 품처(稟處) : 아뢰어 윗사람의 명령을 받아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157) 회달(回達) : 임금의 하문(下問)에 대하여 심의하여 보고를 하던 일을 말한다.

158) 사식년(四式年) : 갑오년은 자(子)·오(午)·묘(卯)·유(酉)의 네 식년의 하나임을 말한 것이다.

159) 등록(謄錄) : 이전(以前) 전례(前例)를 적은 기록(記錄)을 말한다.

조카 한의달의 효행의 일 또한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식년이 지나서 거론할 자가 없는데 이르렀으나, 본도에 장계로 아뢰는 글이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것으로 결국 엄체(淹滯 오래되어 막힘)를 만났으니 이것을 다시 요청한다고 합니다. 비록 이미 때가 지났을지라도 그대로 둘 수 없으니 해도로 하여금 금번 뒤 식년에 일체 장계로 아뢰는 일을 분부하심이 어떨겠습니까?’ 하니 ‘윤허하는 일’로 계하하셨다. 계하하신 내용의 말씀을 봉심하여 시행함이 마땅할 일”로 관문하였습니다.

계사년(1833) 10월 일에 받아본 예조 관문 내용은. “이번에 계하하신 도내 전주 유학(幼學) 김도욱(金道郁) 등의 가전(駕前 임금의 행차(行次) 앞) 상언(上言)에 근거한 예조의 계목(啓目)에, ‘계하하신 내용을 점련(粘連)하였습니다. 일전에 전주 유학 김도욱 등이 정해진 기한 내에 나타나 호구(戶口)를 헌납했고, 친정(親目 직접 상언을 올림)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 상언을 보건대, 본주 고(故) 사인(士人) 심계현(沈季賢)은 효행(孝行)이 드러나고 유장(儒狀)과 읍의 첩보가 쌓여 권축(卷軸)을 이루었으나 등문(登聞)<sup>160</sup>할 계제(階梯)가 없어 이에 무자년 가을에 연로(輦路 임금의 거동(舉動)하는 길)에서 호소하여 해도(該道)로 하여금 식년을 기다려 따로 갖추어 장계로 아뢰라는 명령을 이루게 한 것을 엮드려 받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 또 인순(因循)한다면 또한 장차 영원히 민몰(泯沒)되는 것으로 귀결될 것이니 빨리 유사(有司)로 하여금 사실을 모아 다시 상주(上奏)하게 하여 정포(旌褒)의 은전을 거행하실 일로 이렇게 호소하였습니다.

등록(騰錄)을 취하여 상고하면 무자년 9월에 각도의 유학 등이 효열로 청포(請褒)한 것으로 인하여 상언하여 각 해도(該道) 수신(守臣)들로 하여금 실적을 자세히 찾게 하고 여론을 널리 수렴하여 식년을 기다려 따로 갖추어 아뢰라는 뜻으로 복달(覆達)을 분부하셨습니다.

전주 고(故) 사인(士人) 심계현(沈季賢) 효행 또한 그 가운데 있습니다. 본도에 장문(狀聞)이 아직 도착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이렇게 다시 호소함이 있었사옵니다. 식년이 바로이니, 전에 행회(行會)한 것에 의거하여 거행할 것을 분부하심이 어떨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라고 계하하셨다. 계하 내용의 말씀을 봉심하여 시행함이 마땅할 일”로 관문하였습니다.

160) 등문(登聞) : 등문고원(登聞鼓院)으로, 억울함을 하소연할 사람은 이 북을 쳐서 왕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동시에 받아본 예조의 관문 내용은, “이번에 계하하신 도내 진사(進士) 노석장(盧錫璋) 등의 가전(駕前) 상언(上言)에 의거한 예조의 계목(啓目)에 ‘계하하신 내용을 점련(粘連)하였습니다. 일전에 전라도 진사(進士) 노석장(盧錫璋) 등이 기한 내에 나와서 호구(戶口)를 현납하였고, 친정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 상언을 보건대, 남원 고(故) 사인(士人) 이사영(李思永) 효행에 정포(旌褒)의 은전을 베풀어 주시길 청하는 일을 이렇게 간절히 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사영은 효행이 탁이(卓異)하여 진실로 지극히 가상(嘉尙)합니다. 그러나 포장(褒獎)의 은전은 사체(事體)가 지극히 중요하다고 하므로 본도로 하여금 널리 여론을 모아 아뢰게 한 뒤에 품처(稟處)하는 것이 어떨겠습니까?’ 하니 ‘윤희한다’ 라고 계하하였습니다. 계하 안의 말씀을 봉심하여 시행함이 마땅할 일” 로 3차 관문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윗 항의 태인 고(故) 학생 한국문과 그 조카 한의달과 전주 고(故) 사인 심계현과 남원 고(故) 사인 이사영의 효행의 실적을 음의 첩보로 참고하여 여론을 널리 수렴하여 뒤에 낱낱이 적었습니다. 해조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십시오.

태인 효자 고(故) 한국문(韓國文)은 고(故) 상신(相臣) 서원부원군(西原府院君) 161) 한확(韓確)의 16세손입니다. 어린 나이 때부터 진실한 효성은 하늘에서 근본 하였습니다. 장성하여선 몸소 부엌에서 밥을 지어 맛있는 것을 부모님께 공양(供養)하였고, 아버지가 병들자 하늘에 기도하여 자기로 대신하길 원하였고 상분(嘗糞)하여 증세를 점쳤고 손가락을 찌어 피를 대주어 3일을 연장하였습니다. 거상(居喪)에 애훼(哀毀)가 법도를 넘었고 여묘(廬墓)살이와 성묘는 풍우(風雨)·한서(寒暑)에도 흑시라도 거르지 않아 무릎이 닿는 자리에 풀이 나지 않았고 눈물 떨어진 잣나무 잎은 다 말라 죽었습니다.

어머니가 병이 들었을 때 얼음 속에서 나온 잉어[氷鯉]<sup>162)</sup>로 감동을 이루었고,

161) 서원부원군(西原府院君) : 한확(韓確, 1403~1456). 본관은 청주(淸州), 자는 자유(子柔), 호는 간이재(簡易齋)이다. 덕종의 비(妃) 인수왕후(仁粹王后)의 아버지로, 성종의 외할아버지이다. 1452년(단종 즉위년) 좌찬성이 된 뒤, 1453년 계유정난 때 수양대군(首陽大君)을 도와 정난공신 1등에 책록되고, 서성부원군(西城府院君)에 봉해졌다. 1455년(세조1) 좌의정이 되고, 좌익공신 1등에 올라 서원부원군(西原府院君)에 다시 봉해졌다. 1456년 사은 검 주청사로 명나라에 가서 세조 즉위의 정당성을 설득한 후 돌아오는 도중 사하포(沙河浦)에서 죽었다. 1470년(성종1) 세조묘에 배향되었다. 시호는 양절(襄節)이다.

162) 얼음……잉어[氷鯉] : 진(晉)나라 왕상(王祥)의 고사로, 겨울철에 그 계모가 병이 들어 잉어(鯉魚) 먹기를 원하자, 왕상이 강에 나가 옷을 벗고 얼음 위에 엎드리니 얼음이 스스로 녹으며 잉어가 나왔다고 한다.〔『晉書』 卷33 王祥列傳〕

손가락을 깨어 피를 입에 넣어 또 다시 깨어나게 하고, 천수(天壽)를 마쳐 뒷자리를 지키는 3년 동안 소식(蔬食)하고 물만 마시는 것은 이전 아버지 상(喪)과 똑 같았습니다. 자기 형을 봉양하기를 엄부(嚴父) 같이 하였고 침식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형이 죽은 뒤에 2명의 조카를 돌보기를 자기 자식보다 우선하니 사람들이 이간하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효우의 돈독함과 목인(睦嫻)의 행실은 사람들의 여론이 명확하고 적확하여 가히 증험할 만합니다.

그의 조카 한의달은 나이 겨우 10세에 일찍 부모님을 잃고 자기 삼촌을 아버지로 섬겼는데 질병이 있으면 곁을 떠나지 않고 몸소 약이(藥餌 약이 되는 음식)을 삼았고 음식을 먼저 맛을 본 뒤에 올렸고 목욕재계하여 하늘에 빌고 자신의 목숨으로 대신하길 원하였습니다. 상(喪)을 당하자 애훼(哀毀)하고 곡용(哭踊 초상에 곡하며 슬퍼하는 일)하였으며 최복(衰服 아들이 부모의 상중에 입는 상복)을 입은 것이 3년이었습니다. 팔순(八旬)의 숙모를 섬기기를 자모(慈母)같이 하였고 정성온청(定省溫淸)<sup>163</sup>하며 뜻에 맞는 바에 힘을 다하였으며, 과방(過房 입양(入養))의 동생들과 한 방에서 동거하며 밭의 생산물에 피차가 없으니 이웃 사람들이 아름답다고 칭찬하며 여론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전주 효자 고(故) 사인(士人) 심계현(沈季賢)은 청양군 의겸(靑陽君義謙)<sup>164</sup>의 6세손입니다. 일찍 아버지를 여의어 어릴 적부터 할아버지를 섬기고 어머니를 봉양하기를 정성을 다하고 거스름이 없었습니다. 조부(祖父)가 병들자 얼굴에 근심을 띠고 옷에 띠를 풀지 않고 밤엔 눈을 붙이지 않았으며 애훼(哀毀)가 예도(禮度)를 넘었습니다. 어머니를 봉양하는 것은 양지(養志)를 우선으로 삼았고, 자신은 전혀 의거할 뜻이 없어도 어머니 뜻은 가볍고 따듯하게 하였고, 자신은 콩잎을 물리도록 먹어도 어머니는 맛난 것으로 정성을 다했습니다. 어머니가 병들자 약을 먼저 증험해보고 상분(嘗糞)하고 하늘에 기도하기를 자신의 목숨으로 대신하라고 하였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죽을 먹으며 3년간 매일 성묘(省墓)하며 풍우를 피하지 않았으며 눈 쌓인 날을 만나면 빗자루를 끼고 가서 묘지 눈을 쓸었으며 꿇

163) 정성온청(定省溫淸) : 밤에는 잠자리를 정(定)하고, 아침에는 안부(安否)를 살피며, 겨울은 따뜻하게, 여름은 시원하게 한다는 뜻으로, 부모(父母)를 섬기는 도리(道理)를 이르는 말이다.

164) 청양군 의겸(靑陽君義謙) : 심의겸(沈義謙, 1535~1587). 본관은 청송(靑松), 자는 방숙(方叔), 호는 손암(巽菴)·간암(艮菴)·황재(黃齋)이다. 1584년 이이가 죽자 이발(李潑)·백유양(白惟讓) 등이 일을 꾸며 동인과 합세하여 공박함으로써 파직당하였다. 그러나 벼슬이 대사헌에 이르렀고, 세습으로 청양군(靑陽君)에 피봉되었다.

어 앉아 절하는 자리는 한 개의 구덩이가 생겼습니다. 송추(松楸)에 도끼가 들어간 흔적이 있으면 나무를 잡고 통곡하니 마을 사람들이 보고 감동하며 서로 자르지 말라고 경계하였습니다.

50년간 성묘를 거의 하룻날 같이 하고 왕래하는 길에 매번 주먹만한 돌을 한 개씩 모아두었던지 성대하게 쌓인 돌이 하나의 언덕을 이루게 되어 지나는 사람들이 점찍어 가리키며 말하길 “심효자가 쉬는 곳이다.” 라고 합니다. 나이 64세 계유년(1813)에 이르렀으니 바로 아버지 상(喪)을 당한지 회갑(回甲)이 되어 거상(居喪)을 추모(追慕)하기를 예도(禮度)대로 성복(成服)하고 여묘(廬墓)에서 3년을 지내며 슬픔을 극진하게 하였으며 말 가운데 부모를 언급하는 일이 있으면 번번이 눈물을 삼키며 오열하였습니다. 백중(伯仲) 두 형님을 엄부처럼 섬겨 의복과 음식을 반드시 먼저 드린 뒤에 자기를 돌보았습니다. 두 형님이 죽은 뒤 과부가 된 형수와 아버지를 여윈 조카를 성심으로 돌보아 길렀습니다. 문도(門徒)들이 수백 인이 될 때까지 속수(束脩)<sup>165)</sup>의 예물을 받지 아니하였고 곤궁한 것을 잘 견뎌내며 두려워하는 바가 없었으며, 와옥려반(蝸屋糲飯)<sup>166)</sup>을 구하니 사는 것이 편안하고 태연하였고 유장(儒狀)과 읍의 첩보가 쌓여 축으로 헤아릴 정도인데도 아직도 포양(褒揚)을 받지 못하니 여론이 원한을 품는다고 합니다.

남원 효자 고(故) 사인(士人) 이사영(李思永)은 바로 안양군(安陽君) 이항(李衍)의 9세손으로 옥담(玉潭) 이응희(李應禧)<sup>167)</sup>의 현손(玄孫)입니다. 대대로 독실한 충효는 천성(天性)에서 나왔습니다. 8세 때 자기 어머니 잠자리가 한랭한 것을 근심하여 먼저 몸으로 따뜻하게 하였습니다. 집 밖에서 머무를 때 번개와 우레를 만나면 종종걸음으로 달려와 위로하며 어루만지며 놀라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관례를 한 뒤로는 아버지가 과거공부를 권하면 이위(離閨) 어버이가 계신 곳을 떠남의 어려움으로 사양하고 공령(功令) 과거시험을 위한 글인 과문(科文)의 별칭)을 일삼지 않고 경전(經傳)과 예학(禮學)에 마음을 오로지 하였습니다. 어려서부터 늙을 때까지 일찍이 동네 어귀의 문밖을 나가지 아니하고 오로지 감취(甘藹) 맛있고 연한

165) 속수(束脩) : 옛날에 처음으로 스승을 뵈는 때에 가지고 가는 간단한 예물을 말한다.

166) 와옥려반(蝸屋糲飯) : 달팽이 집 같은 움막과 현미 쌀로 지은 거친 밥을 말한다.

167) 이응희(李應禧) : 1579~1651.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자수(子綏), 호는 옥담(玉潭)이다. 광해군 때 대과(大科) 초시(初試)에 합격하였지만 광해군의 실정을 보고 벼슬에 뜻을 접고, 선대부터 내려오던 집에 살며 농사를 짓는 틈틈이 책을 읽고 시를 짓는 것을 낙으로 삼았다. 현재 남아있는 저서로는 『옥담유고(玉潭遺稿)』, 『옥담사집(玉潭私集)』 등이 있다.

음식) 올리기와 온청(溫淸)의 절도(節度)를 일삼으며 자신은 포갈(布褐)도 두르지 못하지만 아버이는 주백(紬帛 명주와 비단)을 입혀드리고, 입에 조강(糟糠)도 충족 못하지만 아버이는 감취(甘毳)를 구비(具備)하였습니다. 아버지가 병들어 몹시 고달파하시자 상분(嘗糞)하며 넓적다리를 베어 10일을 연명(延命)하게 하였고, 상중(喪中)에 있을 때와 장제(葬祭)를 당해서는 한결같이 가례(家禮)에 의거하였으나 어머니 병환으로 여묘(廬墓)살이를 할 수 없자 아침저녁으로 왕래하며 성묘하고 소리내어 울며 3년을 마쳤습니다.

매일 밤 향을 사르며 어머니 장수하시길 빌었으며 비록 혹독한 추위와 맹렬한 더위에도 흑시라도 빠뜨리는 일이 없었고 30년간을 하룻날 같이 하여 꿇어앉은 자리에 구덩이가 생겼습니다. 어머니가 오랜 병으로 빗질을 아니하여 매번 이가 많은 것 같으면 몸소 자기 머리카락에 기름을 바르고 나란히 베개를 베어서 그 이를 옮겼습니다. 어머니 병이 심해지자 손가락을 찌어 피를 대주어 시일을 연명(延命)하였고, 상(喪)을 당하여 여묘(廬墓)살이로 훼손(毀瘠)하여 거의 죽을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일찍이 과거 공부를 포기하고 위기지학(爲己之學)의 공부에 전념하고 경(經)·예(禮)·성(性)·리(理)의 책을 연구하였습니다. 매번 국기(國忌)일이면 반드시 재계(齋戒)하고 행소(行素)<sup>168)</sup>하였으며 영조대왕의 빈천(賓天)<sup>169)</sup>한 날에는 집 뒤에 단을 설치하고 조석으로 망곡(望哭)<sup>170)</sup>하기를 3년 동안하고 마치니 온 도가 칭송을 전하고 감탄하지 않음이 없었다고 합니다.

同日. 封鄉薦才行人抄啓.

【狀啓】爲相考事. 鄉薦才行人, 每式年抄啓, 自是法典所載是白如乎. 稽之邑報, 叅以輿論, 抄出表著, 可稱者, 三人姓名、年歲及行蹟、居住來歷, 并以開坐于後爲白乎<sup>168)</sup> 緣由謹具啓聞.

長城前叅奉奇正鎮, 年三十七, 固窮研經, 確有志操, 文憲公大升旁孫. ○光州前叅奉高濟應, 年四十四, 存心孝友, 持身謹勅, 忠烈公敬命十代孫. ○淳昌生員柳東煥, 年七十六, 文行夙著, 鄉黨矜式, 承旨匡天子.

168) 행소(行素) : 고기나 생선(生鮮)이 없는 찬으로 밥을 먹는 일을 말한다.

169) 영조대왕의 빈천(賓天) : 빈천(賓天)은 임금이 세상을 떠났다는 뜻으로, 붕어(崩御)·선어(仙馭)·안가(晏駕) 등과 같은 말이다. 영조대왕의 빈천은 병신년(1776)이었다.

170) 망곡(望哭) : 먼 곳에서 아버이의 상사(喪事)를 당한 때 그쪽을 향하여 슬피 우는 일이다. 또는 국상을 당하여 대궐을 향해 곡하는 일을 말한다.

같은 날. 향촌에서 천거한 재주와 행실을 갖춘 사람을 뽑은 장계를 봉하였다.

【장계】 상고할 일. 향촌에서 추천하는 재주와 행실을 갖춘 사람은 매 식년(式年)에 초계(抄啓) 가려 뽑아 상주(上奏)함은 본래 법전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읍의 첩보로 상고하고 여론을 참조하여 두드러지게 드러난 자를 골라 뽑아내 칭찬할 만한 자 3인의 성명과 나이 및 행적·거주 내력을 아울러 뒤에 개좌(開坐)<sup>171)</sup>하고 이러한 연유로 삼가 갖추어 아립니다.

장성(長城) 전 참봉 기정진(奇正鎭)은 나이 37세로 곤궁함을 잘 극복하고 경서(經書)를 연구하여 확고한 지조(志操)가 있으며 문헌공(文憲公) 기대승(奇大升)<sup>172)</sup>의 방손(傍孫)입니다.

○ 광주(光州) 전 참봉 고제응(高濟應)은 나이 44세로 존심(存心) 효우(孝友)하며 지신(持身)으로 삼가고 삼가며 충렬공(忠烈公) 고경명(高敬命)<sup>173)</sup>의 10대 손입니다.

○ 순창(淳昌) 생원 류동환(柳東煥)은 나이 76세로 문장과 행실이 일찍 드러나서 향당이 표본으로 삼고 있으며 승지(承旨) 류광천(柳匡天)<sup>174)</sup>의 아들입니다.

同日. 因刑曹回啓關, 鎭安縣殺獄罪人金於仁老味<sup>175)</sup>, 施以次律事, 封啓.

【狀啓】 爲相考事. 筋到付刑曹關內, “筋啓下敎因本道鎭安縣, 殺獄罪人金於仁老味 獄事查啓, 曹啓目 ‘粘連啓下是白有亦. 此獄段, 下手縱有先後之別, 致斃必因緊重之傷, 打頰踢肩, 非要害, 必死之處, 足踢脅肋, 卽當場昏絶之時, 而衆招同然, 檢案孔昭是白乎乃. 觀於道啓, 叅以情跡, 則倡鬪者之毒拳打頰, 未必不猛, 突入者之忽地踢肩, 亦足致傷是白乎旆. 三人滾成一塊, 莫辨誰踢之偏毒, 兩檢雖沕一辭難執兇身之眞贓是白置. 前之曹讞, 今此道啓俱陳, 惟輕之議是白如乎. 同罪人金於仁老味, 施以次律何如?’ 啓 ‘依允’ 事, 判下敎是置, 判付內辭意, 奉審施行爲乎矣, 舉行形止, 依例啓聞, 宜當向事” 關是白乎等用良. 上項鎭安縣, 殺獄罪人金於仁老味, 謹依判下,

171) 개좌(開坐) : 자세하게 조목조목 일을 처리함을 말한다.

172) 기대승(奇大升) : 1527년(중종22)~1572년(선조5). 본관은 행주(幸州), 자는 명언(明彦), 호는 고봉(高峰) 또는 존재(存齋)이다. 이황(李滉)과 서신을 통하여 조선유학사에 많은 영향을 미친 사칠논변(四七論辨)을 전개하였다.

173) 고경명(高敬命) : 1537년(중종28)~1592년(선조25). 본관은 장흥(長興), 자는 이순(而順), 호는 제봉(霽峰)·태헌(苔軒)이다. 1592년 임진왜란에 의병을 일으켜 활동하다가 금산에서 전사하였다.

174) 류광천(柳匡天) : 1732년(영조8)~1799년(정조23). 본관은 서산(瑞山), 자는 군필(君弼), 호는 귀락와(歸樂窩)이다. 시문집 『귀락와문집(歸樂窩文集)』16권 8책의 석판본이 있다.

175) 味 : ‘未’의 오기(誤記)로 보인다.

施以次律，定配計料爲白乎旆，緣由謹具啓聞.

같은 날. 형조가 회계(回啓)한 관문으로 인하여 진안현(鎭安縣) 살옥(殺獄) 죄인 김어인노미(金於仁老味)<sup>176)</sup>를 차율(次律)<sup>177)</sup>로 시행할 일로 장계를 봉하였다.

【장계】 상고할 일. 이번에 받아본 형조의 관문 내용은, “이번에 계하하신 본도 진안현 살옥 죄인 김어인노미(金於仁老味) 옥사를 조사하여 아뢴 것으로 인하여 형조의 계목(啓目)에 ‘계하를 점련(粘連)하였습니다. 이 옥사는 수법(手法)이 비록 선후의 구별이 있을지라도 죽음에 이른 것은 반드시 긴급하고 중대한 상처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뺨을 때리고 어깨를 밀친 것은 급소가 아니고, 반드시 죽게 된 점은 발로 옆구리 갈빗대를 차서 바로 그 자리에서 혼절(昏絶)된 때로 여러 진술이 한가지로 그러하니 검안이 매우 분명합니다. 그러나 도계(道啓 관찰사의 보고)를 보고 정적(情迹)을 참조하면 싸움을 일으킨 자의 매서운 주먹으로 뺨을 친 것은 반드시 위협적이지 않은 건 아니었으나 갑자기 들어온 자가 어깨를 밀친 것도 또한 충분히 상흔이 되었습니다. 3인이 합심하여 한 덩어리를 이루어 누가 편벽되게 심하게 밀쳤는지 변별할 수 없고, 양 검시관이 비록 한 목소리로 깊이 고민할 지라도 흥신(兇身 나쁜 짓을 저지른 흉악한 자)의 진장(眞贓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숨겨진 흔적)을 집어내기 어렵습니다. 전에 조언(曹讞 형조에서 보고)과 지금 이러한 도계(道啓)는 모두 아뢴 것이 오직 가벼운 쪽으로 처리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동(同) 죄인 김어인노미를 차율(次律)로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아뢰니, ‘윤허한다’고 판하(判下 재가(裁可))하셨다. 판부(判付)내용의 말씀을 봉심하여 시행하되 거행한 상황은 규례에 의거하여 아람이 마땅할 일”로 관문하였습니다.

윗 항의 진안현 살옥죄인 김어인노미를 삼가 판하에 의거하여 차율(次律 감사(減死)하는 법)로 시행하고 정배(定配)할 생각입니다. 이러한 연유로 삼가 갖추어 아릅니다.

176) 김어인노미(金於仁老味) : 진안 살옥사건에 관련한 김어인노미(金於仁老味)는 1833년 7월 26일자와 11월 29일에 언급될 때까지는 ‘김어인노미(金於仁老味)’로 지칭되었으나, 1834년 1월 29일 이후에서는 같은 사람을 ‘김어인노미(金於仁老味)’로 표기하였다.

177) 차율(次律) : 사형으로 다스려야 할 죄를 감사(減死)하는 것 같이 감등(減等)시키는 법률이다.



同日. 因刑曹回啓關, 咸悅縣殺獄罪人金之彭, 施以次律事封啓.

【狀啓】爲相考事. 筋到付刑曹關內, “筋啓下教因本道咸悅縣殺獄罪人金之彭獄事查啓, 曹啓目粘連啓下是白有亦. 此獄段, 實因己的, 斷案既成是白乎矣. 深掘當暑之殮, 追檢經旬之屍, 則縱曰: ‘痕損之有著’, 宜加情法之參究. 手毆足踢, 初無目覩之招, 血暈肉貼, 終涉骨檢之疑是白乎所. 考諸法文, 叅以檢案, 則膀非必死之處, 脇惟要害之地, 而其曰: ‘紅活既無分寸之可據’, 其曰; ‘折損亦謂束殮之所致’, 則傷處之緊歇、病祟之眞贗, 卽此一條, 不無疑眩是白遣. 治瘟治疽, 雜藥妄試, 曰踢曰磕, 兩檢異辭是白乎則, 獄情到此, 尤當審克, 而觀於道查打麥, 觀市染疾用藥, 爲渠藉寃之資是如爲白有臥乎所. 其在欽恤之義, 恐合傳輕之典, 而獄體至嚴, 臣‘曹不敢擅便, 上裁何如?’ 啓‘依回啓施行’爲良如教, 判下教是置, 判付內辭意, 奉審施行爲乎矣, 舉行形止, 依例啓聞, 宜當尙事”, 關是白乎等用良. 上項咸悅縣殺獄罪人金之彭, 謹依判下, 施以次律, 定配計料爲白乎旆, 緣由謹具啓聞.

같은 날. 형조가 회계(回啓)한 관문으로 인하여 함열현(咸悅縣) 살옥 죄인 김지팽(金之彭)을 차율(次律)로 시행할 일을 장계를 써서 봉하였다.

【장계】 상고할 일. 이번에 받아본 형조의 관문 내용은, “이번에 계하 하신 본도 함열현 살옥 죄인 김지팽 옥사를 조사하여 아뢴 것으로 인한 형조의 계목(啓目)에 계하를 ‘점련(粘連)하였습니다. 이 옥사는 실인(實因)이 이미 적확하고 단안(斷案 판결안)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여름철의 영습(殮襲)을 깊이 파보고 10일이 지난 시체를 추가로 검사해보니 비록 ‘상한 흔적이 나타나 있다’ 고 말할지라도 마땅히 정리(情理)와 법규(法規)에 의한 참고와 헤아림이 있어야 합니다. 손으로 밀고 발로 넘어뜨렸는데도 처음에 목도한 진술이 없다가, 살갓에 출혈[血暈]이 심하여 끝내 골검(骨檢 시체(屍體)의 백골(白骨)을 검시(檢屍)함)을 해야 하는 의심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법문을 상고하고 검안을 참조하면 사타구니[膀]는 반드시 죽는 곳이 아니고 겨드랑이[脇]가 오직 급소인데도 이를 테면 ‘붉은 색의 생기[紅活]가 이미 아주 작더라도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고 하고 ‘부러지고 상처 난 것 또한 속령(束殮 송장을 씻기고 영포(殮布)로 묶음)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니 상처의 긴혈(緊歇 치명적인지 여부)과 병 때문이라는 진안(眞贗 참과 거짓)은 곧 이러한 한결같은 조목은 의혹될 것이 없습니다.

온역(瘟疫)을 다스리고 황달(黃疸)을 치료함에 약을 섞고 망령되게 시험하며, 넘어졌다고 말하고 돌에 부딪혔다고 말하여 두 검시관이 다른 말을 하니, 옥정(獄情)이 이에 이른다면 더욱 마땅히 충분히 조사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도의 조사[道査]에서 보면 보리타작을 보았고, 시장에서 영질(染疾 전염병)에 약을 쓰는 것을 보았으니 그가 원통함을 이기는 바탕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흠恤(欽恤)하는 뜻에 있으니 아마도 가볍게 형벌하는 법으로 전해지는 것이 합당한데도 옥체(獄體)는 지엄하니 신 형조에서는 감히 마음대로 결정하지 못하니 곧 성상(聖上)께서 재결하심이 어떨겠습니까?’ 하니, ‘회계(回啓)한 대로 시행하라’고 하시며 판하(判下)하셨다. 판부(判付)내용의 말씀을 봉심하여 시행하되 거행한 상황은 규례에 의거하여 아림이 마땅할 일”로 관문하였습니다.

윗 항의 함열현 살육 죄인 김지평은 삼가 판하에 의거하여 차율(次律)로 시행하고 정배(定配)할 계획이오며 이러한 연유로 삼가 갖추어 아립니다.

同日. 以均役廳移運米所載船, 指路護送等節, 預先知委於沿海邑事, 文移錦營、畿營.

【移文】爲相考事. 弊道區劃均役廳移運米, 一萬二千九百八十六石六斗所載船上去時, 依稅船例, 護送之意, 前已文移是在果. 卽接差使員高敞縣監所報, 則各邑穀物, 今纔齊到, 分載於舟橋船十二隻, 今月二十八日, 自法聖浦發船是如乙仍于, 茲以文移爲去乎, 貴道沿海邑良中, 指路護送等節, 預先知委, 俾無未及之弊爲宜, 相考施行向事.

같은 날. 균역청(均役廳)으로 이운(移運)하는 쌀을 실은 배를 인도(引導)하여 호송(護送)하는 등의 절목을 미리 연해읍에 자세히 알리는 일로 충청도(忠淸道) 감영(監營)과 경기도(京畿道) 감영(監營)에 공문을 보냈다.

【이운】상고할 일. 전라도에 갈라준 균역청 이운미(移運米) 1만 2천9백8십6석 6두를 실은 배가 상경할 때 세선(稅船) 규례에 의거하여 호송하는 뜻을 전에 이미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번에 차사원(差使員) 고창 현감이 보고한 것을 보면 각 읍 곡물이 지금 겨우 일제히 도착하여, 주교선(舟橋船) 12척에 나누어 싣고 1월 28일 법성포에서 배가 출항한다고 하기에 이에 공문을 보내니 귀도 연해읍에서 인도하여 호송(護送)하는 등의 절목은 미리 자세히 알려 언급하지 못한 폐단이 없게 함이 의당하니 상고하여 시행할 일.

同日. 題防踏鎮報狀.<本鎮飢民一百四十口, 皮牟九石五斗五升, 租九石三斗五升, 分兩等救急事.>

【題】以若殘鎮, 有此自備賑飢之舉, 極爲嘉尙. 賑資添補次, 寶城郡牛贖錢七十兩區劃以送爲去乎, 卽爲枚移受去, 從便作穀, 以爲幾巡分排之地爲<sup>所</sup>, 分給形止, 這卽馳報, 宜當<sup>向</sup>事.

같은 날. 방답진(防踏鎮)의 보장(報狀)을 데김하였다.<방답진의 기민(飢民) 1백4십 명은 피모(皮牟) 9섬 5말 5되와 조(租) 9섬 3말 5되를 따로따로 똑같이 나누어 급히 구원할 일.>

【데김】이같이 잔약한 진(鎭)에서 이렇게 스스로 준비하여 진기(賑飢)하는 일이 있으니 지극히 가상(嘉尙)하다. 진자(賑資)을 더 보태기 위하여 보성군 우속전(牛贖錢) 70냥을 갈라 보내는 즉시 공문을 하여 받아가 편리한 대로 작곡(作穀)하여 몇 순배 분배(分排)하는 바탕으로 삼으며 나누어 준 사실의 전말을 날날이 바로 급히 알림이 마땅할 일.

同日. 以防踏鎮賑資區劃事, 發通寶城.

【私通】本邑捧留牛贖錢中, 七十兩待防踏僉使枚移, 卽速出給, 形止牒報<sup>事</sup>.

같은 날. 방답진(防踏鎭) 진자(賑資)를 구획하는 일로 보성(寶城)에 사통(私通)을 발송하였다.

【사통】보성에서 거둬 보유하고 있는 우속전(牛贖錢) 가운데 70냥을 방답(防踏) 첨사(僉使)의 공문을 기다려 즉시 내주고 사실의 전말을 첩보할 일.

同日. 題雲峰縣報狀.<本邑飢民四百口, 每口米五升式, 合十三石五斗分賑事.>

【題】成冊捧上<sup>向</sup>事.

같은 날. 운봉현의 보장(報狀)을 데김하였다.<운봉현 기민(飢民) 4백명을 매 1명당 쌀 5되씩 합 13섬 5말<sup>178)</sup>을 나누어 구휼하는 일.>

【데김】장부를 위로 바칠 일.

同日. 題沃溝縣報狀.<礪山府受來, 營門劃下賑資錢三百五兩一錢, 作租二百五十四石三斗七升事.>

178) 13섬 5말 : 4백 명을 매 1명당 쌀 5되씩 하면 합이 2천 되가 되고, 이를 관 곡자(斛子)로 하면 13섬 5말이 된다.

【題】成冊捧上向事.

같은 날. 옥구현 보장을 데김하였다.<여산부에서 받아온 것을 감영에 획급(劃給)한 진자전(賑資錢) 3백5냥 1전을 2백5십4섬 3말 7되로 작조(作租 조(租)로 바꿈)하는 일.>

【데김】장부를 위로 바칠 일.

## VI. 맺음말

전라도 관찰사 서유구는 경화사족의 가학을 전수받고 실사구시(實事求是)에 뜻을 두어 삼정(三政)문란의 시기에 농업생산력을 높이기 위해 30여년에 걸쳐 완성한 『임원경제십육지』를 저술한 점과 대동포(大同布)를 순전(純錢)으로 할 것을 상소하여 허락을 받은 것<sup>179)</sup> 등으로 볼 때 그는 위로는 왕명을 충실히 받들어 부국정책을 상소하고 아래로는 백성의 구휼정책에 전념했던 성실한 실학자였다. 그러기에 정2품 판서를 두루 역임한 70세의 나이로 1833년(순조33)에 종2품 전라도 관찰사를 제수 받아 21개월의 재임 기간 동안 일상의 업무와 전라도 관찰사로서 주고받은 공문서 모음인 『완영일록』과 73세에 다시 정2품의 수원부 유수로 제수 받아 24개월 동안 유수로 복무하면서 유수 일상의 업무 기록과 공문서 모음인 『화영일록』이라는 독보적인 저작물을 남겼다고 본다. 이 두 책은 서유구 인물연구는 물론 관부 문서를 연구하거나 당대 사회·문화 및 국왕 통치체제를 연구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본다.

관찰사제도는 당초부터 지방의 수령에 대한 통제를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조선시대에 와서 그 기능이 더욱 확충 강화되었다. 고려시대에는 미관(微官)으로 파견하였던 관찰사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조선에서는 그 직급을 종2품으로 격상시키고, 의정부나 6조를 통하지 않고 국왕에게 직접 계(啓)를 올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sup>180)</sup>

직계권이 있는 전라도 관찰사 서유구는 1년에 두 번씩 순행을 통하여 도내의 농형을 살펴 국왕에게 보고하고 백성들의 민장과 각 군현 수령들의 여러 보장(報狀)들을 처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국대전』에 근거하여 6월과 12월에 수령의 포폄등제(褒貶等第)를 하여 봉상(封上)하였다.<sup>181)</sup> 이러한 순행과 포폄의 목적과 기준은 도내의 권농, 진흥, 교학, 시취, 취점, 세곡 운송, 공물 봉상, 효열자 정려, 민원 및 수령들의

179) 『완영일록』 권2, 기사 12월 22일. “封木大同純錢事許施有旨祇受啓.”

180) 『經國大典』 「禮典」 用文字式.

181) 지방관리는 관찰사가 해마다 6월 15일과 12월 15일에 등급을 평정[等第]하여 임금에게 보고하는데, 중앙관리는 부임한 지 만 30일, 지방관리는 만 50일이 된 후에야 등급을 평정하는 것을 허락한다. 열 차례 평정에서 열 차례 상(上)으로 평정되면 표창하여 한 품계를 올려주고 두 번 중(中)의 평정을 받으면 녹봉 없는 관리[無祿官]로 채용하며 세 번 '중'의 평정을 받으면 파직시킨다. 다섯 차례 평정이거나 세 차례 평정이거나 두 차례 평정이거나 할 것 없이 누구나 '중'만 한 번 있으면 현재보다 높은 자리에 임명하지 않으며 '중'이 두 번 있으면 파직시킨다.(『경국대전』 권1, 「이전」 포폄조)

보장(報狀) 처결 등이었다.

서유구의 『완영일록』을 통하여 국왕으로부터 행정·사법·군사·교화권을 부여 받아 위로는 세곡과 공물을 봉상(捧上)하고 아래로는 권농과 주민의 안집(安集)을 위해 봉공(奉公)하는 사명지신(使命之臣)의 모습을 볼 수 있고, 관찰사를 중심으로 주고 받은 문서들을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외직(外職) 직계아문(直啓衙門)인 전라도 관찰사가 쓴 『완영일록』 문서 1,070건을 문서행이별로 분류하고 관찰사와 국왕, 각 지방 수령 간에 주고받은 공문서 종류와 행이 과정과 관찰사 업무를 밝히고자 하였다. 또 전 8권 중 1권(癸巳 四月)부터 3권(甲午 一月)까지 10개월간의 기록을 국역하여 전라도 관찰사 대략의 업무특성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방법은 『완영일록』에 등재된 문서 13종류 총 1,070건을 전라도 관찰사가 수발(受發)한 문서를 중심으로 분류하여 공문서 행이체계와 문서기재 방식을 살펴보고, 공문서로 관찰사의 업무를 살펴보았다.

계사(1833)·갑오(1834) 연간에 서유구는 전라도 관찰사로서 4월 15일 도계(到界)장계(狀啓)를 올리는 것부터 시작하여 장계를 올린 것이 128건(12%), 환곡을 운반하고 목정발을 개간하라는 일<sup>182)</sup> 등의 관문을 주고 받은 일들이 285건(27%), 살육사건이나 보장(報狀) 등에 대한 데김<sup>183)</sup>이 494건(46%), 흉년으로 공도회(公都會) 감사가 개최하는 지방초시를 늦춰 시행하라<sup>184)</sup>는 등의 감결을 보낸 것이 83건(8%) 등 총 13종 1,070건의 공문서와 관찰사 일상의 업무기록인 『완영일록』은 직계권을 가진 외직 2품 아문의 업무특성과 문서행이체계 그리고 문서식을 살피는데 매우 유용하였다.

『완영일록』에서는 특히 데김[題]이 494건(46%)로 압도적으로 많음을 볼 수 있었고 관문 같은 동등·하행 문서가 309건(29%)으로 그 뒤를 잇고 있어, 이 둘을 합하면 75%로 관찰사의 주요 업무 문서가 곧 데김과 관문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데김[題]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볼 때 백성들의 민원을 처리하는 사법 활동과 각 군현 수령들의 보장(報狀)에 대한 처결에 관찰사의 업무가 치중되었음을 나타내지만 53주 수령을 지휘하고 사법 활동의 총책임자로서 당연한 귀결이고 어쩌면 애당초 관찰사 1인이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인 구조적

182) 『완영일록』 권1, 기사 9월 2일. “以寶城郡蘆洞面、道村面勸起陳田事，發關”

183) 『완영일록』 권1, 기사 9월 6일. “題全州府檢案<致死李福孫，偷賣李英福器皿，則捕校兩人，來到威脇，仍索十五兩錢，故同福孫，結項致死，被告漢在逃未捉事。初檢官，全州兼任益山郡守李源吉.>”

184) 『완영일록』 권1, 기사 10월 14일. “以選武、馬兵公都會退行事，發廿五十三州、兵營、法聖鎮.”

문제를 안고 있었다고 파악되고, 오히려 등재된 것 보다 사법 문서가 더 많았다고 생각된다. 그럼에도 현재 남아 있는 문건은 상대적으로 장계류 같은 상행문서인데 현존하는 자료의 실정도 있겠지만 더 많았던 데김·관문·감결 등의 문서를 적극적으로 발굴 연구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완영일록』에 등재된 장계 128건 중에서는 농사 관련이 52건(41%)으로 가장 많은데 이 가운데 우택(雨澤)장계가 28건으로 단일 사안으로 가장 많은 장계를 올린 것으로 보아 농형을 살펴 권농(勸農)하는 일과 이에 따른 세수(稅收)확보가 전라도 관찰사의 가장 중요한 일이었음을 알 수 있다. 『완영일록』장계의 내용으로 눈여겨 보아야 할 또 하나는 제향(祭享)에 관한 것이다. 경기전(慶基殿) 제향은 단오·추석·동지·납향·정조·한식날 같은 매 절기에 제향을 올렸고, 조경묘(肇慶廟) 제향은 춘·추향제(春秋享祭)만 지내고 제향 결과를 장계로 아뢰었으며, 이외에 부임할 때나 특별히 수선할 경우가 생기면 봉심(奉審)하고 그 내용을 장계로 아뢰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매년 한 차례씩 관왕묘(關王廟)도 봉심한 뒤 이를 장계로 아뢴 점이다.

『완영일록』공문서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는 조선후기 전라도 관찰사를 중심으로 중앙과 각 군현 수령 간에 주고받은 문서는 무엇이었으며 주로 어떤 내용이었는지 나아가 당시 관찰사가 가장 역점을 두었던 사안과 일상의 업무중 가장 많은 업무는 무엇이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 당시 통치체제를 엿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작게는 약 2년간 전라도 53주를 관할하면서 당시 지방 생산력과 풍속, 고지명 등도 알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완영일록』국역 연구 의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완영일록』에 등재된 문서 분석을 통하여 직계(直啓)권을 갖고 국왕과 근심을 나누는 전라도 관찰사가 국왕·예하 수령·다른 도 관찰사와 문서를 주고받을 때 어떤 문서식을 어떻게 주고받았으며, 기재 방식은 어떠한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둘째, 『완영일록』의 문서내용과 문서가 지닌 의미를 문서종류와 빈도수로 분석하고, 전라도 관찰사 업무를 살펴보았다.

셋째, 문서 작성 주체와 수신자의 관계에 따른 문서행이 체계와 상행·동등·하행 문서식이 『경국대전』용문자식에서 근거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넷째, 앞으로 규명되어야 할 것은 조선 건국후 1908년까지 전라도 관찰사에 제수된 사람은 총 465명<sup>185)</sup>인데 이중 관찰사로서 재임기간 전 과정의 다양한 공문서를 오롯이

185) 465명 : 고려 1359년부터 1908년까지 총 518명이고 1392년이후로 465명이었다. (李東熙, 『朝鮮時代 全羅道の 監司. 守令名單 : 全北篇』, 전북대학교 전라문화연구소, 1995)

남긴 사람은 풍석 서유구이고, 그는 또 수원 유수 재임 기간 중에 『화영일록』도 기록하여 전해지는데, 왜 서유구의 공문서 기록만이 전해지는지와 서유구가 의주(義州) 부윤과 강화부(江華府) 유수(留守)등의 다른 외직 재임 기간 중 기록이 있었는지 여부이다.

다섯째, 『완영일록』에 등재된 공문서를 살펴본 바로 관찰사는 장계보다도 관문이나 데김이 많았으므로 관문등록(關文謄錄)류나 제사등록(題辭謄錄)·감결등록(甘結謄錄)류의 기록을 적극적으로 찾아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완영일록』과 『화영일록』, 그리고 『영영일기(嶺營日記)·영영장계등록(嶺營狀啓謄錄)』, 『기영장계등록』류 등을 비교하여 각도(各道)의 사회상과 그에 따른 관찰사·유수들의 특징적 역할을 면밀히 규명해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 참 고 문 헌

### 1. 원문자료

대동문화연구원(2002). 『完營日錄』 Ⅰ~Ⅲ,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2. 저서

- 고동환, 『朝鮮後期 서울商業發達史 研究』, 지식산업사, 1998.
- 국사편찬위원회, 『고문서에게 물은 조선시대 사람들의 삶』, 두산동아(주), 2009.
- 김건우, 『근대공문서의 탄생』, (주)소와당, 2008.
- 김 혁·박희진·손계영·오용원·윤진영·이선희·이성임·이장희·채취균·최은주, 『수령의사생활』, 경북대학교출판부, 2010.
- 김현영 역주, 『군위군의 조선시대 모습』, 군위문화원, 2010.
- 다산연구회 역주, 『牧民心書』 Ⅰ~Ⅵ, 창작과비평사, 1978.
-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韓國漢字語辭典』 Ⅰ~Ⅳ, 2002.
-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漢韓大辭典』 1~15, 2008.
- 문용식, 『朝鮮後期 賑政과 還穀運營』, 경인문화사, 2001.
- 민현구, 『조선초기의 군사제도와 정치』, 한국연구원, 1983.
- 박성훈, 『單位語辭典』, 民衆書林, 1998.
- 박준호, 『예禮의 패턴: 조선시대 문서 행정의 역사』, (주)소와당, 2009.
- 法制處, 『古法典用語集』, 圖書出版 育志社, 1981.
- 심재우, 『조선후기 국가권력과 범죄통계 - 심리록 연구』, 태학사, 2009.
- 梁晋碩, 『17, 18세기 還穀制度의 運營과 機能변화』,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 李東熙, 『朝鮮時代 全羅道の 監司. 守令名單: 全北篇』, 전북대학교 전라문화연구소, 1995.
- 이수건외, 『16세기 한국 고문서 연구』, 아카넷, 2004.
- 이해형 역주, 『화영일록(華營日錄)』, 경기도박물관, 2004.
- 장세경, 『이두자료 읽기 사전』, 한양대학교출판부, 2002.
- 전경목 외, 『儒胥必知』, (주)사계절출판사, 2006.

- 정명현 · 민철기 · 정정기 · 전종욱 외 옮기고 씀, 『임원경제지-조선최대의 실용백과사전』, (주)씨앗을 뿌리는 사람, 2012.
- 진병춘, 『풍석 서유구』, (주)씨앗을 뿌리는 사람, 2014.
- 최승희, 『增補版 韓國古文書研究』, 지식산업사, 2008.
- 정량완 외, 『朝鮮後期漢字語彙檢索辭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 황위주 책임번역 외, 역주 『嶺營日記·嶺營狀啓謄錄』, 嶺南文化研究院, 2004.
- 황위주 책임번역 외, 탈초 · 역주 『營總』, 慶尙北道·慶北大嶺南文化研究院, 2007.

### 3. 논문

- 김건우, 「조선후기 慶尙右兵營의 문서행정에 관한 일고찰」, 『奎章閣』, 2008, 215-235쪽.
- 김경숙, 「한국사연구에서 고문서활용과 과제」, 『고문서집성』 100집 발간 藏書閣 학술대회, 2011, 55-73쪽.
- 김경숙, 「16세기 전라도 관찰사의 순행길」, 『지방사와 지방문화』 13권 2호, 2009, 43-86쪽.
- 김경숙, 「16세기 請願書 처리절차와 議送의 의미」, 『古文書研究』 제24호, 2004, 73-106쪽.
- 김경숙, 「조선후기 산송과 사회갈등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2.
- 김선경, 「1833~34년 전라도 지역의 살육 사건과 심리-『완영일록』의 분석-」, 『歷史教育』 vol 122, 2012, 69-108쪽.
- 김선경, 「조선후기 목민학의 계보와 『목민심서』」, 『朝鮮時代史學報』 52, 2008, 157-195쪽.
- 김태웅, 「朝鮮後期監營財政體系의 成立과 變化」, 『歷史教育』 vol 89, 2001, 163-193쪽.
- 김현영, 「官府文書 연구의 현황과 과제」, 『영남학』 제10호, 2006, 61-78쪽.
- 김현영, 『완영일록』을 통해 본 전라감영의 구조」, 『전라감영연구』, 전주역사박물관·전라문화연구소, 2008, 191-216쪽.
- 南豊鉉, 「古文書의 吏讀 讀解, -柳璈功臣錄券을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원 15권』 1호(통권 46호), 1992, 93-108쪽.
- 명경일, 「조선초기 啓目 연구」, 『古文書研究』 제39호, 2011, 35-57쪽.
- 명경일, 「조선후기 判付의 작성절차와 서식 연구」, 『奎章閣』 43, 2012, 191-243쪽.
- 문보미, 「조선시대 관문서 關의 기원과 수용」, 『古文書研究』 제37호, 2010, 35-62쪽.

- 박병호, 「우리나라 최초의 고문서 수집,정리」, 『古文書研究』 제31호, 2007, 1-14쪽.
- 박성중, 「이두사 및 이두로 본 조선고문서」, 『『고문서집성』 100집 발간 藏書閣 학술대회자료집』, 2011, 109-125쪽.
- 박성중, 「朝謝의 사용 의미와 문서식」, 『古文書研究』 제42호, 2013, 1-30쪽.
- 박재우, 「고려시대의 관문서와 전달체계」, 『古文書研究』 제33호, 2008, 1-28쪽.
- 박준호, 「『經國大典』 체제의 문서 행정 연구」, 『古文書研究』 제28호, 2006, 111-128쪽.
- 박준호, 「공문서의 관인 연구」, 『古文書研究』 제36호, 2010, 1-25쪽.
- 손병규, 「서유구의 진흥정책 - 『완영일록』 · 『화영일록』 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제42집, 2003, 93-114쪽.
- 심재권, 「국왕문서 비답의 연구」, 『古文書研究』 제32호, 2008, 67-92쪽.
- 이강욱, 「啓辭에 대한 考察」, 『古文書研究』 제37호, 2010, 123-164쪽.
- 이종범, 「15세기말~16세기 중반 전라도 유배인의 활동과 교유양상」, 『역사학연구』 제41집, 2010, 61-91쪽.
- 李仙禧, 「조선후기 영남지방 지방관의 행정소통 체계와 조정방식」, 『嶺南學』 제16호,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09.
- 李仙禧, 「18세기 경기도관찰사의 업무 실태와 특징」, 『藏書閣』 제23집, 2010, 89-115쪽.
- 이혜령, 「서유구의 『완영일록(完營日錄)』 과 검안처리 업무」, 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 이희권, 「전라감영의 조직구조와 관찰사의 기능」, 『전라감영연구』, 전주역사박물관 · 전라문화연구소, 2008, 19-41쪽.
- 전경목, 「19세기 『儒胥必知』 編刊의 특징과 의의」, 『藏書閣』 제15집, 2006, 131-170쪽.
- 최봉수, 「조선시대의 관찰사를 통한 중앙통제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사학지』 제22호, 2008, 87-117쪽.
- 崔先惠, 「고려말 · 조선초 지방세력의 동향과 관찰사의 파견」, 『진단학보』 78, 1987, 59-84쪽.
- 하운청, 「李商隱 <狀> · <啓> 差別考」, 『中國語文學』 제36집, 2000, 195-232쪽.
- 황위주, 「경상감영 관련 자료의 현황과 활용방안」, 『嶺南學』 8, 2008, 29-61쪽.
- 황위주, 「日記類 資料의 國譯 現況과 課題」, 『고전번역연구』 제1집, 2009, 30-58쪽.

## 4. 인터넷

[http://libproxy.chosun.ac.kr/43c93d2/\\_Lib\\_Proxy\\_Url/www.krpia.co.kr/pcontent/?svcid=KR&proid=50](http://libproxy.chosun.ac.kr/43c93d2/_Lib_Proxy_Url/www.krpia.co.kr/pcontent/?svcid=KR&proid=50)

<http://sillok.history.go.kr/main/main.jsp>

<http://db.itkc.or.kr/itkcdb/mainIndexIframe.jsp>

<http://www.aks.ac.kr/home/index.do>

[http://yoksa.aks.ac.kr/jsp/aa/BookList.jsp?aa10no=kh2\\_je\\_a\\_vsu\\_55004\\_000&keywords=%E5%AE%8C%E7%87%9F%E6%97%A5%E9%8C%84%20%EC%99%84%EC%98%81%EC%9D%BC%EB%A1%9D](http://yoksa.aks.ac.kr/jsp/aa/BookList.jsp?aa10no=kh2_je_a_vsu_55004_000&keywords=%E5%AE%8C%E7%87%9F%E6%97%A5%E9%8C%84%20%EC%99%84%EC%98%81%EC%9D%BC%EB%A1%9D)

## 부 록

<표 4> 『완영일록』 권1 월별 전라도 관찰사 주요 직무

『완영일록』 1권 癸巳四月 ~ 癸巳十月 관찰사 주요 직무		
4월	10일	관찰사 교유서(敎諭書)를 받음.
	15일	도계(到界) 장계를 올림.
	18일	망궐례를 행함.
	30일	대도회 백일장을 설행함. 당일 신시에 시(詩)·부(賦)·고풍(古風)에 각 50명을 뽑아 합격자와 음식을 나누고 칭찬해주고 따로 부채 2자루씩 줌.
5월	1일	객사에 이르러 망궐례를 행함. 희현당에서 백일장을 설행함.
6월	1일	일식(日蝕)이 있어 판관이 구식례(救食禮)를 행함.
	3일	국왕의 탄신을 맞아 전문(箋文)을 올림.
	5일	지난달 10일 이후 극심한 가뭄으로 규벽(圭璧)으로 전 도내를 돌며 제사를 지내도 비가 오지 않아 7일 기우제를 지내려 했는데 오늘 해 뜰 때부터 흠족히 비가 와서 기우제를 멈춤.
	6일	춘하등 포편을 함.
	7일	가뭄 끝에 비가 오니 늦은 이양시기를 독려하기 위하여 세미를 기한을 늦추어 거둬들임.
	15일	망궐례를 행하고 춘하등 포편방목을 개봉함.
7월	1일	망궐례를 행함.
	5일	희현당(希顯堂) 유생들이 4·6 변려문으로 기악(伎樂)을 벌여놓고 칠석날의 유희를 청하여, 거문고 타는 사람 1명, 피리 부는 사람 1명, 노래하는 사람 2명을 글과 함께 보냄.
	7일	도리(都吏)가 정채(情債)를 멋대로 거둬들이는 일로 인리청(人吏廳)에 적발하여 징계할 것을 전령함.
	15일	비가 와서 임시로 망궐례를 정지함.
	26일	심리(審理) 장계인 7명을 심리한 발사(跋辭)를 올림.
	30일	희현당 유생들이 공부를 마치고 돌아갈 때 주연을 베풀어 줌.
8월	1일	망궐례를 행함.
	2일	새벽에 조경묘 추향제를 시행하고 장계함.
	2일	호적신고를 거둬 단속하는 감결을 보냄.
	3일	방축을 손질하고 무너진 곳을 쌓는 일로 감결을 발송함.
	11일	삭선할 진상품을 감봉함.
	15일	경기전 추석제를 행하고 그대로 객사로 가서 망궐례를 행함.
	15일	경기전 추석제를 행한 것을 장계함.
	16일	농형을 살피러 순행(巡行)을 떠난다고 보고함.(순행 중 민장 처결)
19일	남원 관왕묘(關王廟)에 가서 남원부사와 봉심하고 보고함.	

	26일	순행에서 감영으로 돌아왔음을 보고함.
9월	1일	객사에 이르러 망꺠례를 행함.
	2일	방곡(防穀)의 일로 각 읍과 진에 감결을 발송함.
	2일	보성군 노동면·도촌면에 묵은 밭을 개간하라고 관문을 보냄.
	3일	석류·유자 진상품을 감봉하여 보고함.
	10일	환정(還政)을 분명하게 하라고 감결을 보냄.
	11일	삭선할 진상품을 감봉함.
	13일	목화농사가 흉년임을 보고함.
	13일	도내 전답이 하천모래로 덮인 것을 실결(實結)로 환원하라고 관문을 보냄.
	15일	객사에 이르러 망꺠례를 행함.
	21일	각 읍의 관문(官門)과 진문(鎭門) 앞에서 취점(聚點)할 때 진교(鎭校)를 보내지 말라고 관문을 보냄.
	22일	비변사 관문으로 환곡 보리를 운송하는 일로 각 읍에 관문을 보냄.
	27일	흉년으로 선무마병 도시(道試)와 공도회(公道會) 시험을 미룰 것을 장계함.
	29일	보리 1만석을 먼저 실어 보내고 쌀은 내년 봄에 보낸다고 균역청에 첩보함.
29일	곡물을 옮긴 전말의 상황을 보고함.	
10월	1일	망꺠례를 행함.
	1일	환곡의 폐단을 금하라는 강진현에 관문을 발송함.
	2일	사사로이 원우(院宇)를 설립하지 말라고 광주목에 관문을 발송함.
	4일	쌀을 운송하는 일로 각 읍에 관문을 발송함.
	11일	쌀을 운송하는 일로 고창현에 관문을 발송함.
	11일	삭선할 진상품을 감봉함.
	12일	연분(年分)이 가뭄으로 흉년이 심함을 장계함.
	14일	선무군관 과 마병 및 공도회를 늦춰 시행하는 일로 53주와 병영, 법성진에 감결을 보냄.
	15일	망꺠례를 행함.
	22일	나주 김봉오(金鳳梧) 옥사의 간범 김광옥·심양언(金光玉·沈良言)을 잡아 가두라고 우진영에 관문함.
	23일	곡물을 사들이는 것을 막지 말라고 비변사에 첩보함.
	24일	관문·진문의 취점을 제언으로 옮겨 부역함을 보고함.
	24일	곡물을 사들이는 것을 막지 말라고 각 읍에 감결을 보냄.
	25일	쌀과 보리를 곡자로 거둬들이는 것이 사리에 합당하다고 균역청에 아뢰.
	25일	도적질이 발생하는 근심으로 비변사의 관문으로 53주와 병영 5진영과 법성진과 고군산진에 감결을 보냄.
	26일	재결을 더 인정해 주실 것을 청하는 장계를 발송함.
	27일	동지 진하전문(陳賀箋文)을 공경히 올려 보냄.
27일	내각전문을 올림.	
27일	연분(年分)의 일로 53주와 법성·고군산진에 관문을 발송함.	

&lt;표 5&gt; 『완영일록』 권2 월별 전라도 관찰사 주요 직무

『완영일록』 2권 癸巳十一月 ~ 癸巳十二月 관찰사 주요 직무		
11월	1일	망궤례를 행함.
	5일	환곡을 거둬들이는 것을 독촉하는 일로 전주부에 관문을 발송함.
	10일	환곡 거둬들이는 것을 독촉하는 일로 52주에 관문을 발송함.
	10일	보리를 운송하는 일로 고군산진에 관문을 발송함.
	11일	삭선할 진상품을 감봉함.
	12일	동지제를 행하고 장계함.
	15일	흉년을 당하여 여러 고을에 표재관문(俵災關文)을 발송함.
	15일	구재(舊災) 가운데 환실(還實)할 수효를 후록하여 여러 읍에 관문함.
	15일	대파(代播, 대용갈이) 결수(結數)를 이양하지 못한 결수 속에 합해 기록하여 표재하여 주는 이로 25읍에 사통을 발송함.
	15일	구재환실(舊災還實) 조(條) 가운데 분수재(分數災)를 다시 표하(俵下) 하는 일로 11읍(邑)·진(鎭)에 사통을 발송함.
	15일	신재(新災) 가운데 감총(減摠) 조(條)를 다시 세금을 감면하여 주는 일로 9읍에 사통을 발송함.
	15일	호서(湖西)로 이운(移運)할 보리 5천섬을 준행할 수 없는 일로 비변사에 논보(論報)함.
	15일	보리 5천섬을 옮기는 건에 대하여 충청도 감영에 회이(回移)함.
	17일	새벽 월식에 중군(中軍)이 구식례를 행한 것을 장계함.
	17일	금위영·어영청 두 영(營)의 정번(停番)을 관문으로 통지하고 그에 따라 거행한 사실의 전말을 장계함.
	17일	금위영·어영청 두 영의 관문의 내용을 낱낱이 들어 53주의 병영(兵營)에 감결을 발송하고, 감결의 내용은 위 항목을 베낀 계사(啓辭) 내용과 같음.
	17일	진상할 김(海衣)이 구멍 나고 헐어서 합당하지 못한 일로 영암군에 관문을 발송함.
	17일	영암군 보장에 대한 데김.<진상(進上)한 김이 좋지 않아 봉진(封進)할 것을 명받은 예리(禮吏) 조득연(趙得璉)을 칼을 씌워 상급관청으로 잡아 올리는 일.>
	17일	환곡을 거둬들이기를 특별히 신칙하는 일로 전주부에 관문을 발송함.
	19일	민장(民狀)으로 인하여 적비(籍費)를 호렴(戶斂)하는 것이 시작되었다는 일로 해남현에 관문을 발송함.
	20일	나주 남일린(南一麟)이 양반(兩班) 정(鄭)씨의 무덤주변의 소나무를 베어낸 일로 나주목에 관문을 발송함.
	21일	예조의 관문으로 인하여 향시(鄉試)·한성시(漢城試)의 날짜를 가려 택하고 감결을 발송하여 열읍(列邑)과 진(鎭)에 자세히 알림.
25일	이전(移轉)하는 곡물의 잡비를 신칙(申飭)하는 일로 고군산진에 관문을 발송함.	

	26일	나주에서 연례로 훈련도감에 바치는 숫돌 22덩어리와 병영에 바치는 숫돌 60덩어리를 돈으로 대신 바치게 하여 민폐를 없애게 하는 일로 병영에 관문을 발송함.
	26일	운모(運牟) 5천석은 우선 비변사의 회제를 기다려야 한다는 뜻을 금영(錦營)에 회이(回移)함.
	27일	운모를 실어 보내는 것을 재촉하는 일로 고군산진에 관문을 보냄.
	27일	운모(運牟)를 호송하는 것을 거듭 신칙하는 일로 기영(畿營)과 금영(錦營)에 공문을 보냄.
	27일	영암군 운모를 급히 도회소에 이르게 할 일로 해당 군에 관문을 발송함.
	28일	형조의 관문에 의거하여 장성·함열·진안의 살육 죄인 등의 조사서인 발사(跋辭)를 봉하여 발송함.
	30일	반교문(頒敎文)을 공경히 받았음을 장계를 써서 봉함.
	30일	환곡(還穀)과 군전(軍錢)을 독촉하여 거둬들이는 일로 전주부에 관문을 발송함.
	30일	운모(運牟)를 급히 실어 보내는 일로 고군산진에 관문을 발송함.
12월	1일	망궐례를 행함.
	2일	추가 획급으로 작전(作錢)한 6천섬을 쇠잔하고 홀로 있는 백성들에게 고르게 분배하는 일로 전주부에 관문을 발송함.
	3일	무뢰배들의 토색(討索)과 감영 관속들의 주구(誅求)의 폐단을 일체 금지시키라는 일로 53주와 법성(法聖)진, 고군산(古羣山)진에 감결을 발송함.
	4일	노인, 효자, 열녀 및 불쌍하고 곤궁한 사람들에게 안부를 묻는 일로 각 읍에 관문을 발송함.
	5일	거지막사의 실화(失火)뒤 불에 덴사람을 구하여 치료하는 일로 전주부에 관문을 발송함.
	6일	금번 추동등(秋冬等)에 포폄한 계본을 봉하여 발송함.
	6일	지난 추동등(秋冬等)에 수령을 포폄한 계본(啓本)가운데 3글자와 영·별검(令·別檢)을 포폄한 계본(啓本) 가운데 1글자를 도찰(刀擦)할 곳이 있어 치계(馳啓) 하옵는 일.
	6일	구형왕(仇衡王) 사우(祠宇)에서 돈을 거둬들이는 것을 금하는 일로 무주부(茂朱府)에 관문을 발송함.
	6일	여러 섬에 재화를 입음이 정도와 민정(民情)이 어떠한가를 보고하라는 일로 9읍에 관문을 발송함.
	7일	조카 딸 윤씨 부인이 죽었다는 보고를 듣고 매우 서럽고 슬픔.
	7일	환곡을 급히 법에 준하여 거둬들여 창고를 채우는 일로 50고을에 감결을 발송함.<광주·임실·구례는 넣지 않음.>
	7일	소 도축 금지를 신칙하는 일로 53고을과 법성, 고군산진에 감결하였다.
	8일	김부안(金夫安) 등 4명을 적률(賊律)로 다스리는 일로 우진영(右鎭營)에 관문을 발송함.
9일	비변사(備邊司)와 예조(禮曹)의 관문으로 인하여 우도(右道) 감시(監試)를 전	



	주부에서 설행(設行)하는 일로 52주와 법성(法聖)진, 고군산(古羣山)진에 감결을 발송함.
9일	운송할 보리를 실어 보내는 일에 대한 장계를 봉함.
10일	식후에 지인청(知印廳)에 나가 성복(成服)함.<질녀의 상으로 부음을 들은 지 제 4일째> 태인현감 심능숙(沈能淑)이 경기전 납향제(臘享祭) 차비관(差備官)으로 와서 봄.
11일	새벽에 납향제를 지낸 뒤에 영현(營軒)으로 돌아와 제(祭)를 지낸 것에 대한 장계를 써서 봉함.
11일	삭선(朔膳)할 진상품을 감봉(監封)함.
12일	산군(山郡)의 대동 면포를 순전으로 대신 바치게 하는 일에 대한 상소를 밀봉하여 발송함.
12일	삼반(三班) 환자를 이번 20일 안에 모두 거둬들이는 일로 중군(中軍)에 전령함.
12일	한인득(韓仁得)이 칼로 찢려 죽은 일로 전주부에 관문을 발송함.<공충(公忠)도 감영의 이문(移文)>
13일	정월 초하루의 진상품을 감봉함.
13일	연읍(沿邑)에 있는 통영곡(統營穀)을 작전(作錢)하는 일로 비변사에 첩보함.
13일	대동사목(大同事目)을 올려 보내는 일로 비변사에 첩보함.
14일	한인득(韓仁得)의 시친(屍親)을 호송(護送)하는 일로 충청도 감영에 회이함.
14일	내년 봄에 운송해야할 보리 5천섬을 실어 보낼 방도가 없어 경기 감영에 문이(文移) 함.
15일	아침 해가 뜰 때에 객사(客舍)에 도착하여 망꺠례를 행함.
15일	도내 추동등(秋冬等)의 전최(殿最)를 개봉함.
15일	정월 초하루에 하례를 드릴 전문(箋文)을 밀봉하여 선화당 대청에 봉안(奉安)하고, 실차(實差) 흥양현감과 예차(預差) 벽사찰방 및 판관·중군·중영장·만경현령이 함께 전문(箋文)에 나란히 절한 뒤에 공경히 보냄.
16일	부랑하는 부류가 염객(廉客)이라고 거짓으로 칭한다는 폐단을 규찰하여 금지시킬 일로 53주와 법성진에 관문을 발송함.
18일	이운미(移運米)를 속히 실어 보내는 일로 각 읍에 관문을 발송함.
19일	경기(京畿)로 운반하는 보리 5천섬을 다른 곳으로부터 변통하는 일로 비변사에 첩보함.
20일	원도목(元都目 재결(災結) 원장(元帳)) 장계를 봉함.
21일	영암군수 모친상으로 봉고관(封庫官)을 차정(差定)하는 일로 강진현에 관문을 발송함.
21일	구재환실(舊災還實) 조목에 간사한 짓을 한 것과 세금을 낸 여부를 상세히 조사하여 보고하는 일로 동북현에 관문을 발송함.
21일	노인들이 나이를 속이는 일로 각 읍에 관문을 발송함.

22일	목대동(木大同 대동포목)을 순전히 돈으로 하는 것의 시행을 허락하는 유지(有旨)를 공경히 받았음을 장계를 써서 봉함.
22일	대동면포를 순전(純全)으로 대봉(代捧)하는 일로 산간 군읍에 감결을 발송함.
23일	함열 현감이 상중에 있다는 장계를 봉하여 발송함.
23일	함열현 봉고관(封庫官)을 차정(差定)하는 일로 용안현에 관문을 발송함.
23일	혼례 장례를 돌보아 준 것을 봉하여 발송함.
23일	자급(資級)할 노인 [應資老人] 명단을 봉계(封啓)함.
24일	쌀과 고기를 내보내는 일로 희현당(希顯堂)에 체문(帖文)을 내려 보냄.
25일	읍(邑)의 봉고(封庫)를 점하(點下)하는 일로 두 읍에 관문을 발송함.
26일	세곡(稅穀)을 신칙(申飭)하는 일로 26읍에 감결을 발송하여 바로 상납(上納)하게 함.
26일	일제히 3조창(三漕倉)소속 26읍에 감결을 발송함.
28일	우금(牛禁)을 각별히 단속하는 일로 여러 읍(邑)·진(鎭)에 감결을 발송함.
28일	도리(都吏)가 구재환실(舊災還實) 조목을 처리하면서 간사한 짓을 하여 세금을 내게 했는지 여부를 자세히 조사하여 보고하는 일로 각 읍에 관문을 발송함.
29일	청국(淸國) 헌서(憲書 책력)와 내려 보낸 유지(有旨)를 공경히 받았음을 장계를 써서 봉함.
29일	진안현감이 상(喪)을 당하였음을 장계를 써서 봉함.

<표 6> 『완영일록』 3권 월별 전라도 관찰사 주요 직무

3권 甲午正月 관찰사 주요 직무		
1월	1일	새벽에 경기전 제향 거행 후 객사로 가서 진하례를 행함.
	2일	새로 제수된 진안 현감을 속히 내려 보내도록 재촉하는 장계를 올림.
	3일	조경묘·경기전에 봉심 후 향교로 가서 알성함.
	4일	각 읍의 굶주리는 사람들을 진휼하라는 관문을 발송함.
	5일	연읍에 소재한 통영곡(統營穀)의 모조(耗條)를 작전하여 쓰는 일로 영영과 통영에 공문을 보냄.
	6일	각 면의 면임들이 환곡을 농간한 수량을 조사하여 보고토록 공문을 발송함.
	7일	세곡을 신척하는 일로 각 읍과 진에 관문을 발송함.
	7일	시권(試券)에 전지(全紙)와 부지(附紙)를 통용하는 일로 감결을 발송함.
	7일	이운미를 실은 배가 도회소에 도착하지 않은 일로 낙안·보성·강진에 관문을 발송함.
	7일	외촌에서 도축하는 놈들을 잡아가두는 일로 중영장에게 전령을 보냄.
	8일	대동목을 돈으로 대신 거둬들이게 하는 감결을 각 읍에 발송함.
	9일	조흥강을 신척하는 일로 감결을 53주와 법성·고군산진에 발송함.
	10일	보리 살 돈을 보관하는 일로 균역청에 첩보함.
	10일	굶주리는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로 장수와 익산에 관문을 발송함.
	11일	삭선할 진상품을 감봉함.
	11일	권농유지의 말씀을 53주와 법성·고군산진·제주에 감결문 발송함.
	12일	제주목의 지난 추동등 포럼을 밀봉하여 발송함.
	12일	조경묘에 유자를 천신하였음을 장계를 써서 봉함.
	13일	전주부 판관 전별연으로 선화당에서 대풍악을 베풀.
	13일	기근자를 구휼하는 곡물을 구획하는 일로 진도군에 관문을 발송함.
	13일	보리를 환곡할 때 가집한 것을 조사하여 400냥을 진도군에 내주라는 강진 현에 관문을 발송함.
	15일	객사에서 망궤례를 거행함.
	16일	계사년 말의 칠사를 장계를 써서 봉함.
	16일	노인들에게 세찬을 제공한 내용을 장계를 써서 봉함.
	16일	수령·변장·이임 천거를 장계를 써서 봉함.
	16일	진산군 육직(肉直, 육지기)이 관포를 빙자하여 몰래 도축한 일을 형신하여 봉지만하는 일로 진산군에 관문을 발송함.
	17일	균역청에 쌀을 운반하는 일로 각 읍에 관문을 발송함.
	17일	작년 환상을 나눠준 호리가 환자 가호를 빼버린 죄상을 형신하고 칼을 씌워 가두는 일로 전주 검관 중영장에게 관문을 발송함.
17일	우역 약방문을 발송하는 일로 53주 법성진·고군산진에 감결을 발송함.	
18일	비국의 관문으로 인하여 좌우도 동당을 전주부에 합하여 실시하는 일로 감결을 발송함.	

18일	감시를 행할 때 방세와 기물자리 값을 너무 거둬들이는 것을 엄금하는 전주부에 관문을 발송함.
18일	관문이나 진문에 취점을 설행하는 일로 감결을 보냄.
20일	아병 습조를 정지하는 일로 장계를 써서 봉함.
20일	이운미를 일제히 실어 보내라는 뜻을 각 읍에 관문으로 신칙한 일을 균역청에 첩보함.
20일	이운미를 1월 그믐 안에 수납할 것을 고창현에 관문을 발송함.
21일	세곡 조운을 신칙하는 일로 감결을 발송함.
21일	아병을 취점하는 일로 각 읍에 감결을 발송함.
23일	제도의 재민 중 가장 황급한 부류를 가려 보고하라는 관문을 발송함.
24일	24일 구재환실 대상을 세금을 내야하는 것으로 기록한 도리와 면서원을 징계한 뒤 이액(吏額 아전의 수)도 바로 잡아 줄이는 일로 동복현에 관문을 발송함.
24일	진자전 선무전을 더 보태 구획하는 일로 관문을 발송함.
24일	전주부 수령리들이 사사ροι 푸죽간을 설치한 죄를 묻고 첩보하라는 관문 발송함.
24일	모래내에 가서 방죽 쌓는 형편을 살펴봄.
24일	세곡을 급히 포구에 내놓으라는 일로 각 읍에 관문을 발송함.
24일	성당창에서 만들고 있는 조운선을 기한 내에 만들어 정박하게 하는 일로 가이포·녹도에 관문을 발송함.
26일	함열 하리 조기봉(趙基鵬)이 조카와 작간해 돈과 곡식 수효를 농간한 것을 법대로 징수한 뒤 보고하라고 관문을 발송함.
26일	각 읍의 이전미를 실어 보내는 일로 고창현에 관문을 발송함.
26일	진자전을 보태어 구획하는 일로 남원에 사통을 발송함.
27일	호서로 이전할 정조를 작전하여 수송하는 일로 김제·태인에 관문을 발송함.
27일	호조의 관문으로 인하여 세목상납을 거둬 신칙하는 일로 각 읍에 감결을 발송함.
28일	진자전을 더 보태어 구획하는 일로 진산군·무주부에 관문을 발송함.
29일	효행과 정절을 기리고 포상하는 것이 합당한 사람을 가려 장계를 써서 봉함.
29일	마을에서 천거한 재주와 행실을 갖춘 사람을 뽑아 장계를 써서 봉함.
29일	형조가 회계한 관문으로 살육죄인을 차올로 시행한 일을 장계를 써서 봉함.
29일	균역청으로 이운하는 쌀을 실은 배를 인도 호송하는 절목을 연해읍에 미리 알리는 일로 금영과 기영에 공문을 보냄.
29일	방답진의 기민에게 피모와 조를 나누어 주고 진자를 구획하는 사통을 보냄.
29일	운봉현의 기민에게 쌀을 나누어 주도록 함.
29일	여산부에서 받아 감영에 획급한 진자전을 옥구현에 작조(作租)함 .

&lt;표 7&gt; 『완영일록』 권1 문서 등재 현황

연 번	월	일	문서 명	분 186) 류	문서내용	본문
1	4	10	諭書	기	국왕이 서유구를 전라도관찰사겸병마수군절도사도순찰사전주부윤으로 제수하고 유서(諭書)를 내림.	30
2		15	狀啓	행	도계(到界, 여산부(礪山府) 동헌)하여 인계 장계를 발송함.	37
3		16	狀啓	행	전주부 임소(任所)에 도착한 장계를 발송함.	40
4		16	題	사	만경현 검안. 피고 김복손(金福孫)이 이명운(李明云)의 처 신조이와 간음하여 소란을 일으켜, 신조이가 물로 달려가 죽으려는 것을 김복손이 박자선(朴子先)을 권면하여 구하게 하다 박자선이 취하여 넘어져 익사하게 된 일.	41
5		16	題	사	남원부 검안. 피고 김이철(金以哲)과 박이손(朴以孫)이 싸우는데 오소남(吳小南)이 만류하고 술을 마신 후 집으로 돌아가 오소남이 11일 만에 죽음에 이르게 된 일.	43
6		21	題	사	흥덕현 검안. 정범 이갑종(李甲宗)이 주점에서 문벌을 다룰 때 신석준(申錫峻)의 좌측 늑골을 발로 차서 12일 째 죽은 일.	44
7		22	甘結	행	소 잡는 일, 술 빚는 일, 소나무 베는 일을 금함.	47
8		29	甘結	농	각 읍과 진영(鎭營)에 농사를 권면함.	52
9	5	2	題	사	남원부 사안. 동양하던 신백수(申白壽)가 스스로 자신의 신세가 곤궁함을 한탄하여 목매어 죽은 일.	57
10		2	題	사	영암군 검안. 정범 김개동(金介同)은 박조이를 깊숙한 곳으로 유인해내어 죽이고 3살 여아까지 죽인 일.	58
11		3	題	사	전주부 검안. 피고 윤판돌(尹判堧)이 김복돌(金卜堧)의 아내를 간통하여 김복돌이 간수를 먹고 다음날 죽은 일.	61
12		5	狀啓	사	경기전 단오 제향에 몸이 아파 여산부사를 헌관으로 올려 제향한 장계를 발송함.	63
13		8	題	사	강진현 사안. 정범 윤흥업(尹興業)이 간통한 자기의 처 송조이를 때려서 죽인 일.	64
14		12	題	사	담양부 검안. 피고 이조이가 오복인(吳卜仁)의 뺨을 때려 13일 째 되는 날 병으로 인해 죽은 일.	66
15		6	3	箋文	의	천추성절(千秋聖節)을 경축하는 전문을 써서 봉하여 선화당 대청에 봉안함.
16	3		內閣 箋文	의	천추성절을 경축하는 내각(內閣)전문을 써서 선화당 대청에 봉안함.	71

연 번	월	일	문서 명	분 186) 류	문서내용	본문
17		6	褒貶 都封	행	춘하등(春夏等)에 포폄한 도목 계본을 봉하여 발송함.	74
18		7	關文	부	세미를 기한을 늦춰 거둬들이는 일로 전주부에 관문을 발송함.	76
19		14	題	사	전주부 검안. 박조이와 오라비 박석송(朴石崇)이 김조이를 폭행하여 낙태시켜 죽음에 이르게 한 일.	78
20		15	褒貶 榜目	행	춘하등(春夏等)의 전죄를 개봉함.	80
21		21	題	사	함열현 검안. 정범 황상백(黃尙白)이 의붓아들 4살 강성만(姜成萬)을 심하게 때려 목이 부러져 죽은 일.	86
22		25	題	사	함열현 검안. 정범 김지팽(金之彭)이 김용보(金龍甫)를 심하게 때려 11일 만에 죽음에 이르게 한 일.	89
23		26	題	사	익산군 검안. 목을 매어 죽은 양범석(梁範石)은 애초 죽음에 이를 근본 이유가 없는 일.	91
24		26	題	사	금산군 검안. 피고 여봉영(呂奉永)이 누이의 원수 길이석(吉履碩)을 결박하여 길이석의 어머니 이조이로 하여금 스스로 목을 매어 죽음에 이르게 한 일.	92
25		26	題	사	금산군 검안. 피고 길이석은 자기 어머니의 무고함에 분을 품고 여조이의 입에 오물을 흘려 넣어 여조이로 하여금 독을 먹고 스스로 죽게 한 일.	94
26	7	2	題	사	임피현 검안. 서포 사는 김조이가 심하게 술에 취하여 물에 빠져 죽은 일.	97
27		4	題	사	금산군 검안. 부북면 김조이가 스스로 물에 빠져죽은 일.	99
28		5	題	사	함열현 검안. 남이면 임의갑(林儀甲)의 처 조조이가 시어머니와 언쟁 후 목을 매어 죽음에 이른 일.	99
29		5	題	사	희현당(希顯堂) 유생들의 칠석 놀이에 술과 음식을 보냄.	100
30		7	傳令	행	도리(都吏)가 정채(情債)를 멋대로 거둬들이는 일로 인리청에 전령을 발송함.	101
31		10	題	사	남평현 검안. 조수정(曹水正)이 시어머니와 언쟁하는 처 강조이의 뺨을 때려 물에 빠져 죽게 하고 도망한 일	104
32		21	題	사	담양부 검안. 피고 사노 미동(米同)이 평소 노비 가팔리(加八里)를 꾸짖는 바가 있었는데 가팔리가가 복통으로 3일 만에 죽은 일.	107
33		25	題	사	장수현 검안. 피고 최치운(崔致云)이 김영달(金永達)의	108

연 번	월	일	문서 명	분 류 (186)	문서내용	본문
					처 고조이의 방에 들어가 고조이가 분해 간수를 먹고 죽은 일.	
34		26	跋辭	사	익산 최평군(崔平軍)의 옥사, 진안 김어인노미(金於仁老未)의 옥사, 영암 김성용(金成用)의 옥사, 영암 박재풍(朴再豐)의 옥사, 부안 김수홍(金壽泓)의 옥사, 남평 김조이의 옥사.	110
35	8	2	狀啓	의	조경묘 추향제를 시행한 일.	119
36		2	甘結	행	호적법을 거듭 신칙하는 일로 여러 읍에 감결 발송함.	120
37		3	甘結	부	방죽을 손질하고 쌓는 일을 각 읍에 감결 발송.	121
38		4	題	사	장성부 검안. 정범 장해원(張海元)이 고달용(高達用)의 가슴과 신안(腎岸)을 짓이겨 죽게 한 일.	123
39		13	題	사	순천부 검안. 정범 하하수(河何水)가 처 이조이를 때려 낙태시키고 사흘 만에 죽게 한 일.	127
40		13	題	사	옥구현 사안. 장조이가 자식을 잃은 후 비통함에 스스로 목을 매어 죽은 일.	129
41		15	狀啓	의	경기전 추석제를 행한 장계를 올림.	130
42		15	題	사	홍양현 사안. 김진우(金振宇) 등이 장흥 김부안(金夫安) 등에게 협박당해 200냥전을 강탈당한 일.	130
43		16	狀啓	농	농사 상황을 살피러 좌도의 산협을 따라 순행을 출발한 일을 치계함.	131
44		16	題	사	임실현 검안. 피고 고고장(高古長)이 김덕화(金德化)를 협박하여 목을 매어 죽음에 이르게 된 일.	132
45		19	狀啓	행	남원부 탄보묘를 순력할 때 봉심한 일을 치계함.	137
46		26	狀啓	농	감영에 돌아와 각 고을의 농사 형편을 살핀 내용을 보고하는 장계를 봉함.	149
47		2	關文	농	방곡의 일로 각 읍과 진에 관문을 발송함.	153
48		2	關文	농	보성군 노동면, 도촌면에 진전(陳田)을 권장하여 개간하는 일로 관문을 발송함.	154
49		3	狀啓	의	석류, 유자를 조경묘에 진상한 후 치계함.	155
50		6	題	사	전주부 검안. 이복손(李福孫)이 이영복(李英福)의 그릇을 훔쳐 팔았는데 포교 두 사람이 위협하여 복손이 목을 매어 죽고 도망간 피고들은 잡지 못한 일.	156
51		7	題	사	진산군 검안. 정범 박도영(朴道永)이 박씨 양반의 소를 훔쳐 끌고 가다 신조이와 그 아들.딸에게 다시 빼앗기자 세 모녀를 동시에 죽인 일.	158
52		10	甘結	부	환정을 거듭 신칙하는 일로 여러 고을과 병영, 좌·우수	161

연 번	월	일	문서 명	분 186) 류	문서내용	본문
					영과 각 역진에 감결을 발송함.	
53		12	題	사	영암군 사안. 김부안(金夫安)과 천세행(千世行) 등이 섬 주민을 약탈하고 200냥의 돈을 약탈한 일.	167
54		13	狀啓	농	목화농사가 흉년이어서 군포의 일부를 순전으로 대신 거둬들일 것을 치계함.	169
55		13	關文	농	도내 전답이 해마다 하천 모래로 덮인 것을 환실할 일로 53주와 법성진에 관문을 발송함.	171
56		16	狀啓	행	건지산에 가서 송추(松楸) 금양(禁養) 살펴보고 치계함.	173
57		21	關文	군	각 읍의 관문과 진문 앞에서 취점 시 진교를 보내지 말라는 일로 병영에 관문을 발송함.	174
58		22	關文	부	환곡 보리를 운반하는 일에 대한 비변사 관문으로 인해 각 읍에 관문을 발송함.	176
59		22	關文	부	영운차원을 차정하는 일로 고군산 진에 관문을 발송함.	179
60		27	狀啓	행	잡과 시험을 미루어 시행할 것을 장계를 요청함.	181
61		29	報牒	부	곡물을 옮기는 일로 균역청에 첩보함.	182
62		29	狀啓	부	곡물을 옮기는 일의 전말에 대한 장계를 봉함.	183
63	1 0	1	題	사	전주부 검안. 정범 조동이(趙同伊)가 문성손(文成孫)을 무릎으로 짓이겨 다음날 죽은 일.	189
64		1	關文	부	환곡의 폐단을 금지하라고 강진현에 관문을 발송함.	191
65		2	關文	행	사사로이 원우를 설립하는 것을 금지하는 일로 광주목에 관문을 발송함.	192
66		4	關文	부	쌀을 운송하는 일로 각 읍에 관문을 발송함.	193
67		9	題	사	전주부 검안. 피고 유조이가 박복천(朴卜千)에게 빚 독촉을 하여 독약을 먹고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한 일.	197
68		10	題	사	옥과현 검안. 피고 박조이가 자기 남편 주대경(朱大京)이 술에 취한 이유로 다투어 남편이 목을 매 죽은 일.	199
69		11	關文	부	쌀을 운반하는 일로 고창현에 관문을 발송함.	200
70		12	狀啓	농	연분(年分)에 관한 장계를 써서 봉함.	203
71		12	題	사	전주부 사안. 피고 유조이가 박복천에게 채무를 독촉하여 약을 먹게 하여 자살한 일.	215
72		13	題	사	전주부 피고 유조이를 첫 동추한 문서에 데김.	217
73		14	甘結	군	선무군관과 마병 및 공도회를 늦춰 시행하는 일로 53주와 병영과 법성진에 감결을 발송함.	218
74		18	題	사	금산군 검안. 피고 정어인노미가 김조이를 결박하여 김조이가 간수를 먹고 스스로 죽게 한 일.	220
75		21	題	사	흥덕현 사안. 정범 김원철(金元哲)이 이기화(李基華)의	222



연 번	월	일	문서 명	분 류 186)	문서내용	본문
					용모로 가장하여 그의 처 오씨를 겁탈한 뒤 오씨가 자살한 일.	
76		21	題	사	나주목 복검안. 정범 홍희찬(洪希贊)이 김봉오(金鳳梧)를 구타하여 다음날 새벽에 죽은 일.	223
77		22	關文	사	나주 김봉오 옥사의 간범 김광옥(金光玉), 심양언(沈良言)을 잡아가두는 일로 우진영에 관문을 발송함.	225
78		23	報牒	부	무곡(賀穀)을 금지하지 말라는 일로 비변사에 첩보함.	227
79		24	狀啓	군	관문이나 진문의 취점을 제언으로 옮겨 부역 나가는 일을 봉서로 아뢰.	228
80		24	甘結	부	무곡을 금하지 말라는 일로 각 읍에 감결을 발송함.	230
81		25	題	사	금구현 사안. 한조이는 산지의 일로 장기로(張基老)와 말다툼 뒤에 목을 매어 죽은 일.	232
82		25	報牒	부	쌀·보리를 곡자로 거둬들이는 것이 사리에 합당한 일로 균역청에 논하여 아뢰.	233
83		25	甘結	행	도적질이 발생하는 근심으로 비변사의 관문에 의거하여 53주와 병영과 5진영과 법성진과 고군산진에 감결을 발송함.	235
84		26	狀啓	농	재결을 더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장계를 써서 봉함.	238
85		27	箋文	의	동지 진하전문을 밀봉하여 선화당에 봉안하고 참배한 뒤 올려 보냄.	245
86		28	內閣 箋文	의	내각전문을 보냄.	245
87		28	題	사	담양부 복검안. 피고 김일문(金日文)이 추종손(秋宗孫)이 소값을 도둑질해간 것을 탕감해주지 않는다고 하여 비상을 먹고 자살한 일.	247
88		28	甘結	농	연분의 일로 감결을 53주와 법성, 고군산진에 발송함.	248

186) 분류 : 행:행정, 사:사법, 농:농형, 의:의례, 부:부세, 군:군사, 기:기타로 분류하였다.

&lt;표 8&gt; 『완영일록』 권2 문서 등재 현황

연 번	월	일	문서 명	분 류	문서내용	본문
1	1	1	題	사	흥양현 사안. 피고 최원득(崔元得)이 최상명(崔尙明)이 벼를 훔친 일을 떠벌리자 말로 따지고 간 후 병이 발작 해서 죽은 일.	255
2		1	題	사	나주목 정범 홍희찬(洪希贊)을 처음 동추한 보장(報狀)을 데김함.	256
3		2	題	사	금구현 조사 보고서에 한조이가 매장을 금지 하다가 죽은 일.	257
4		3	關文	사	신세량(申世良)의 죽음은 매질이 아니라 병이라는 것을 염담하여 보고할 일로 전주부에 관문을 발송함.	258
5		4	關文	사	광주목에서 죽은 정명복(程鳴卜)을 삼검하는 일로 남평현에 관문을 발송함.	259
6		5	關文	부	환곡을 거둬들이는 것을 독촉하는 일로 전주부에 관문을 발송함.	260
7		10	關文	부	환곡을 독촉하여 거둬들이는 일로 52주에 관문을 발송함.	262
8		10	關文	부	보리를 운송하는 일로 고군산진에 관문을 발송함.	264
9		12	狀啓	의	동지제를 행한 내용을 장계를 써서 봉함.	265
10		13	題	사	광주목 3검안. 피고 김사문(金士文)이 담뱃대로 정명복의 눈꺼풀을 찢렸고 찬기운을 씌어 다음날 죽은 일.	266
11		12	關文	부	흉년을 당하여 조세를 감면하여 주는 여러 고을에 표재관문을 발송함.	268
12		12	關文	부	구재 가운데 환실할 수효를 후록하여 여러 읍과 진에 관문을 발송함.	274
13		12	私通	부	대파(代播) 결수(結數)를 이양하지 못한 결수 속에 합해 기록하여 표재하여 주는 일로 25읍에 사통을 발송함.	278
14		12	私通	부	구재환실의 조 가운데 분수재를 다시 표하하는 일로 11읍·진에 사통을 발송함.	278
15		12	私通	부	신재 가운데 감총의 조를 다시 세금 감면하여 주는 일로 9읍에 사통을 발송함.	279
16		12	報牒	부	호서로 이운할 보리 5천섬을 준행할 수 없는 일로 비변사에 논보함.	280
17		12	移文	부	보리 5천섬을 옮기는 일로 금영(錦營)에 회이함.	281
18		16	題	사	흥덕현 사보. 정범 김원철(金元哲)은 밤에 오씨 방에 들어가 오씨를 속여 간음하여 오씨가 자살한 일.	282
19		16	題	사	나주목 보장(報狀). 정범 홍희찬이 김봉오를 구타하여 다음날 새벽에 죽었기에 간범(干犯) 이광옥(李光玉)을 붙잡아 진술을 받은 일.	283

연 번	월	일	문서 명	분 류	문서내용	본문
20		17	狀啓	의	새벽 월식을 보고 구식한 뒤에 자세히 아뢰.	285
21		17	狀啓	군	금위영·어영청 두 영의 정번(停番)을 관문으로 통지하 고 그에 따라 거행한 사실의 전말을 치계함.	287
22		17	(甘 結)	군	금위영·어영청 두 영의 관문을 53주의 병영에 감결을 발송함. *내용은 있으나 문서명은 없음.	290
23		17	關文	사	나주에서 죽은 김봉오의 옥사의 간범으로 도망중인 죄 인 심양언을 금월 안에 잡아들이라는 관문을 우진영 (右鎭營)에 발송함.	290
24		17	關文	행	진상할 김이 구명 나고 혈어서 합당하지 못한 일로 영 암군에 관문을 발송함.	291
25		17	題	사	영암군 보장(報狀). 진상한 김이 좋지 않아 다시 봉진 (封進)할 것을 명받은 예리 조득연(趙得璉)을 칼을 씌 워 상급관청으로 잡아 올리는 일.	291
26		17	關文	부	환곡 거두기를 특별히 신칙하는 일로 전주부에 관문을 발송함.	292
27		18	關文	사	김부안(金夫安) 등 네 놈을 우진영에 압송하는 일로 영암군에 관문을 발송함.	293
28		19	關文	행	민장으로 인하여 적비(籍費)를 호령하는 것이 시작된 일로 해남현에 관문을 발송함.	294
29		20	題	사	영암군 보장(報狀). 진상할 김을 다시 좋은 것으로 준 비하고 실예리 김종석(金仲石)을 기한에 맞추어 감영 으로 잡아 올린 일.	295
30		20	關文	사	나주 남일린(南一麟)이 양반 정씨의 구목(邱木)을 베어 낸 일로 나주목에 관문을 발송함.	296
31		21	甘結	행	예조의 관문으로 인하여 향시·한성시의 날짜를 가려 택 하고 감결을 발송하여 열읍과 진에 자세히 알림.	297
32		22	題	사	영암군 보장(報狀). 진상한 김이 좋지 않아 봉진한 도 차지 수리 박정직(朴廷直)을 칼을 씌워 감영으로 잡아 올린 일.	298
33		24	關文	사	김양삼(金良三)의 잃어버린 곡물을 찾아 주라는 일로 임실현에 관문을 발송함.	298
34		25	題	사	광주목 살인죄인 김사문(金士文)을 처음 동추한 보장 에 대한 데김.	300
35		25	關文	부	이전하는 곡물의 잡비를 신칙하는 일로 고군산진에 관 문을 발송함.	300
36		26	題	사	전주부 검안. 피고 정연이(鄭連伊)가 이녀(李女)와 화	302

연 번	월	일	문서 명	분 류	문서내용	본문
					간하여 이녀의 남편 김대숙(金大淑)이 수치와 분통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을 매어 죽은 일.	
37		26	關文	부	나주목이 연례로 바치는 숫돌을 돈으로 대봉하는 일로 관문을 병영에 발송함.	304
38		26	回移	부	운모 5천석은 우선 비변사의 회제를 기다려야 한다는 뜻을 금영(錦營)에 회이함.	305
39		27	關文	부	운모를 실어 보내는 것을 재촉하는 일로 관문을 고군산진에 보냄.	306
40		27	移文	부	운모를 호송하는 것을 거듭 신칙하는 일로 기영(畿營)과 금영(錦營)에 공문을 보냄.	307
41		27	關文	부	영암군 운모를 급히 도회소에 이르게 할 일로 해당 군에 관문을 발송함.	308
42		29	題	사	고창현 보장(報狀). 파견되어 나온 이도성(李道成)이 환곡 대전을 칭하며 감영과 읍에 올리는 비용을 백성에게 거두면서 언사가 어긋나고 망령됨.	309
43		29	跋辭	사	형조의 관문에 의거하여 장성 김복우(金福右)의 옥사 조사를 봉서로 발송함.	310
44		29	跋辭	사	함열 김지팽(金之彭)의 옥사 조서.	310
45		29	跋辭	사	진안 김어인노미의 옥사 조서.	310
46		30	狀啓	행	교지를 공경히 받았음을 장계를 써서 봉함.	313
47		30	題	사	영암군 보장(報狀). 도주한 예리 김종석(金仲石)·박창준(朴昌俊)을 감금하여 상급관청으로 잡아 올릴 일.	313
48		30	題	사	태인군 검안. 정범 승려 만성(萬成)은 문설주로 김인득(鄭仁得)을 때려 12일 만에 죽은 일.	313
49		30	關文	부	환곡과 군전을 독촉하여 거둬들이는 일로 전주부에 관문을 발송함.	315
50		30	關文	부	운모를 급히 실어 보내는 일로 고군산진에 관문을 발송함.	317
51	1	1	題	사	창평현 보장(報狀). 창평현민 유전이 의송을 올린 것으로 인하여 3종숙 유환철(柳煥轍)에게 출계한 곡절을 그의 문장(門長) 유영화(柳榮和)에게 조사하여 물은 뒤 보고한 일.	319
52		2	關文	행	추가로 획급한 작전(作錢) 6천석을 쇠잔하고 홀로 있는 백성들에게 고르게 분배하는 일로 전주부에 관문을 발송함.	320

연 번	월	일	문서 명	분 류	문서내용	본문
53		3	甘結	사	무뢰배의 토색과 감영 관속들의 주구의 폐단을 일체 금지하라는 일로 53주와 법성진, 고군산진에 감결을 발송함.	322
54		4	關文	행	노인·효자·열녀 및 불쌍하고 곤궁한 사람들을 존문하는 일로 각 읍에 관문을 발송함.	323
55		5	關文	행	유결인들의 실화로 불에 덴 사람을 구하여 치료하는 일로 전주부에 관문을 발송함.	326
56		5	題	행	해남현 보장. 호적잡비를 함부로 거둬들이는 일을 관문 내용에 의거하여 엄히 조사할 일.	326
57		6	褒貶 都封 啓	행	추동등에 포폄한 계본을 봉하여 발송함.	327
58		6	刀擦 啓	행	추동등 계본 가운데 도찰(刀擦)할 곳이 있어 치계함.	328
59		6	關文	사	구형왕(仇衡王) 사우에서 돈을 거둬들이는 것을 금하는 일로 무주부에 관문을 발송함.	329
60		6	關文	행	여러 섬에 재화를 당한 정도와 민정이 어떠한지를 보고하는 일로 9읍에 관문을 발송함.	330
61		7	甘結	부	환곡을 급히 법에 준하여 거둬들이어 창고를 채우는 일로 50고을에 감결을 발송함.	331
62		7	甘結	행	소 도축 금지를 신칙하는 일로 53고을과 법성, 고군산진에 감결을 보냄.	332
63		8	關文	사	김부안(金夫安) 등 4명을 적률로 다스리는 일로 우진영에 관문을 발송함.	333
64		8	關文	사	김봉오 옥사에 간범된 여러 사람들을 엄하게 조사하여 진술을 받아내는 일로 나주목에 관문 발송함.	334
65		9	甘結	행	비변사와 예조의 관문으로 인하여 우도 감시(監試)를 전주부에서 실행하는 일로 52주와 법성, 고군산진에 감결을 발송함.	335
66		9	狀啓	부	운송할 보리의 장발(裝發)에 대한 장계를 봉함.	337
67		11	狀啓	의	새벽에 납향제를 지낸 뒤에 영현으로 돌아와 제를 지낸 것에 대한 장계를 봉함.	341
68		12	上疏	부	산군의 대동면포를 순전으로 대신 바치게 하는 일에 대한 상소를 밀봉하여 발송함.	341
69		12	題	사	김제군 검안. 피고 김자흥(金自興)은 이말손(李末孫)과 더불어 다투고 힐문한 뒤 이말손이 병이 나서 죽은 일.	345

연 번	월	일	문서 명	분 류	문서내용	본문
70		12	傳令	부	삼반 환자를 이번 20일 안에 모두 거둬들이는 일로 중군에 전령함.	346
71		12	關文	사	한인득(韓仁得)이 칼로 찔려 죽은 일로 전주부에 관문을 발송함.	347
72		12	關文	부	함열현의 봉환을 신칙하는 일로 함열현을 겸하고 있는 용안 현령에게 관문을 발송함.	348
73		13	報牒	부	연읍에 있는 통영곡을 작전하는 일로 비변사에 첩보함.	350
74		13	報牒	부	대동사목을 올려 보내는 일로 비변사에 첩보함.	351
75		14	移文	사	한인득의 시친을 호송하는 일로 충청도 감영에 회이함.	352
76		14	移文	부	내년 봄에 운송할 보리 5천섬을 실어 보낼 방도가 없어 경기 감영에 문이함.	352
77		15	褒貶 榜目	행	도내 추동등의 전죄를 개봉함.	353
78		15	箋文	의	정월 초하루에 하례 드릴 전문을 밀봉하여 선화당에 봉안 뒤 공경히 보냄.	358
79		15	內閣 箋文	의	정월 초하루 내각 전문.	358
80		16	題	사	태인현 정범 승 만성(萬成)을 처음 동추한 문서 데김함.	360
81		16	關文	사	부랑하는 부류가 염객이라고 거짓으로 칭한다는 폐단을 규찰하여 금단할 일로 53주와 법성진에 관문을 발송함.	361
82		16	關文	사	김태희(金泰希) 옥사를 다시 조사하여 첩보하라는 일로 금산군에 관문을 발송함.	362
83		16	關文	사	김부안(金夫安) 등 4명의 죄상을 주범과 종범을 가려 보고하는 일로 우진영에 관문을 발송함.	362
84		18	關文	부	이운미를 속히 실어 보내는 일로 각 읍에 관문을 발송함.	363
85		19	報牒	부	경기로 운반하는 보리 5천섬을 다른 곳으로부터 변통하는 일로 비변사에 첩보함.	364
86		19	關文	사	살육의 여러 죄수들이 범한 정황과 사리를 논하여 보고할 일로 전주와 강진에 관문을 발송함.	366
87		20	狀啓	행	원도목 장계를 봉하여 발송함.	367
88		20	關文	부	경강선을 신칙하여 제창에 보내는 일로 고창현에 관문을 발송함.	369
89		21	狀啓	행	영암군수가 상중에 있음을 장계를 써서 봉함.	371
90		21	關文	행	영암군의 봉고관을 차정하는 일로 강진현에 관문을 발송함.	371
91		21	關文	사	구재환실 조목에 간사한 짓을 한 것과 세금을 낸 여부를 상세히 조사하여 보고하는 일로 동북현에 관문을 발송함.	372

연 번	월	일	문서 명	분 류	문서내용	본문
92		21	關文	행	노인들이 나이를 속이는 일로 각 읍에 관문을 발송함.	373
93		21	題	사	전주부 살옥 간범 여러 죄수를 동추하는 데김.	375
94		22	狀啓	부	목대동을 순전히 돈으로 하는 것의 시행을 허락하는 유지를 공경히 받았음을 장계를 써서 봉함.	376
95		22	甘結	부	대동면포를 순전으로 대봉하는 일로 산간 군읍에 감결을 발송함.	377
96		23	狀啓	행	함열 현감이 상중이라는 장계를 봉하여 발송하였다.	378
97		23	關文	행	함열현의 봉고관의 차정 일로 용안현에 관문을 발송함.	379
98		23	狀啓	행	흔례 장례를 돌보아 준 것을 밀봉하여 발송함.	379
99		23	狀啓	행	자급(資級)할 노인[應資老]을 봉하여 발송함.	381
100		24	帖文	행	쌀과 고기를 내보내는 일로 희현당에 체문을 내려 보냄.	385
101		25	關文	행	읍의 봉고를 점하하는 일로 두 읍에 관문을 발송함.	386
102		26	甘結	부	세곡을 신칙하는 일로 26읍에 감결을 발송하여 바로 상납함.	387
103		26	甘結	부	일제히 3조창 소속 26읍에 감결을 발송함.	391
104		26	甘結	부	3조창에 감결을 모두 발송함.	395
105		26	題	사	금산군 사안. 김태희를 치사케 한 정범 김진하(金振河)를 비밀 관문을 보내 다시 조사한 일.	397
106		28	甘結	행	우금을 각별히 단속하는 일로 여러 읍-진에 감결을 발송함.	398
107		28	題	사	동북현 보장. 비관으로 기결을 조사하여 5결3부 정책을 정리하여 아뢰고 해당 도리 오재훈(吳載勳)을 칼을 씌워 가둔 건.	400
108		28	關文	부	도리가 구재환실을 조목 처리하면서 간사한 짓을 하여 세금을 내게 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보고하는 일로 각 읍에 관문을 발송함.	400
109		29	狀啓	행	청국 헌서와 내려 보낸 유지를 공경히 받았음을 장계를 써서 봉함.	403
110		29	狀啓	행	진안현감이 상을 당하여 장계를 써서 봉함.	403
111		29	關文	행	진안현 봉고관을 차정하는 일로 장수현에 관문을 발송함.	403

&lt;표 9&gt; 『완영일록』 권3 문서 등재 현황

연번	월	일	문서명	문서내용	본문
1	1	1	狀啓 의	경기전 제향을 거행한 후 객사로 가서 진하례를 거행한 뒤 장계를 써서 봉함.	407
2		2	狀啓 행	새로 제수된 수령을 내려 보내는 일을 재촉하는 장계를 봉함.	407
3		4	關文 행	굶주리는 사람들을 주휼하는 일로 각 읍에 관문을 발송함.	408
4		5	移文 부	통영곡 연습에 소재한 것을 돈으로 만들어 쓰는 일로 영영과 통영에 공문을 보냄.	410
5		6	關文 행	각 면의 면임들이 환곡을 농간한 수량을 조사하여 보고하는 일로 전주부에 관문을 발송함.	412
6		7	關文 부	세곡을 신칙하는 일로 각 읍과 진에 관문을 발송함.	414
7		7	甘結 행	시권(試券)에 전지(全紙)와 부지(附紙)를 통용하는 일로 감결을 53주에 발송함.	417
8		7	關文 부	운미를 실은 배를 급히 도회소에 배를 대는 일로 낙안·보성·강진에 관문을 발송함.	418
9		7	甘結 행	비변사 관문으로 인하여 무과 동당을 병영에서 실시하는 일로 감결을 53주와 법성·고군산진에 발송함.	418
10		7	傳令 사	외촌에서 도촉하는 놈들을 잡아 가두는 일로 중영장에게 전령을 보냄.	419
11		8	關文 사	부안현 이조이가 소장을 관청에 올린 것으로 강덕삼(姜德三)이 그의 숙부의 전답을 빼앗으려한다는 곡절을 조사하여 보고하는 일로 관문을 발송함.	420
12		8	甘結 부	선혜청의 관문으로 인하여 대동목을 온전히 돈으로 대신 거둬들이게 할 일로 각 읍에 감결을 발송함.	421
13		9	甘結 행	비변사의 관문으로 인하여 조흥강을 신칙하는 일로 53주와 법성·고군산 진에 감결을 발송함.	424
14		10	報牒 부	보리를 살 돈을 보관하는 일로 경청에 첩보함.	430
15		10	關文 행	굶주리는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로 장수와 익산에 관문을 발송함.	431
16		10	關文 부	작전 가운데 1백4십8냥을 내주는 일로 무주부에 관문을 발송함.	433
17		11	甘結 행	권농유지안의 말씀으로 53주와 법성진, 고군산진, 제주	435



연번	월	일	문서명	문서내용	본문
				에 감결을 발송함.	
18		12	狀啓 행	제주목의 지난 추동등 포편을 봉하여 발송함.	438
19		12	狀啓 행	유자를 천신하였음을 장계를 써서 봉함.	439
20		12	題 사	용안현 검안. 피고 임수연(林秀淵)이 몽둥이로 오덕장(吳德長)을 때려 6일 만에 죽은 일.	439
21		13	關文 행	기근자를 구휼하는 곡물을 구획하는 일로 진도군에 관문을 발송함.	441
22		13	關文 행	강진현에서 거둬 보유하고 있는 모환할 때 가집한 것을 조사하여 징수한 돈 가운데 4백량을 진도군에 보내주는 일로 강진현에 관문을 발송함.	442
23		16	狀啓 행	계사년 말의 칠사 장계를 써서 봉함.	443
24		16	狀啓 행	노인들에게 세찬을 제공한 내용을 장계를 써서 봉함.	444
25		16	狀啓 행	수령·변장·이임 천거를 장계를 써서 봉함.	445
26		16	關文 사	진산군 육직(肉直)이 관포를 빙자하여 사사로이 몰래 도축한 일을 엄히 형신하여 봉지만 하는 일로 진도군에 관문을 발송함.	447
27		17	狀啓 행	여산부사가 상이 있음을 장계를 써서 봉함.	448
28		17	關文 행	여산부의 봉고관을 차정하는 일로 고산현에 관문을 발송함.	448
29		17	關文 부	균역청에 쌀을 운반하는 일로 각 읍에 관문을 발송함.	449
30		17	關文 사	작년 환상을 나눠준 호리(戶吏)가 환자 가호를 빼준 죄를 형신하고 칼을 씌워 가두는 일로 전주 검관 중영장에게 발송함.	450
31		17	甘結 행	우역의 약방문을 베껴 발송하는 일로 감결을 53주와 법성진.고군산진에 발송함.	451
32		17	牛疫方 행	우역방을 작성함.	452
33		18	甘結 행	비국의 관문으로 인하여 좌우도 동당을 전주부에 합하여 실시하는 일로 53주와 법성진.고군산진에 감결을 발송함.	458
34		18	關文 사	감시를 행할 때 방세와 기물 자리값을 너무 거둬들이는 것을 엄금하는 일로 전주부에 관문을 발송함.	459
35		19	甘結 군	비변사의 관문으로 인하여 관문이나 진문에 취점을 설정하는 일로 53주와 법성진.고군산진, 병영, 좌수영, 우수영, 제주에 감결을 발송함.	460
36		20	狀啓 군	아병 습조를 정지하는 일로 장계를 써서 봉함.	462

연 번	월	일	문서 명	문서내용	본문
37		20	狀啓	행 동복현 이조이가 한 태에서 세 아들 쌍둥이가 태어났다는 일로 장계를 써서 봉함.	463
38		20	報牒	부 이운미를 일제히 실어 보내라는 뜻을 각 읍에 관문으로 신칙한 일을 균역청에 첩보함.	463
39		20	關文	부 이운미를 기어코 1월 그믐 안에 수송하여 납부할 일로 고창현에 관문을 발송함.	464
40		21	甘結	부 호조 관문으로 인하여 세곡의 조운을 신칙하는 일로 53주와 법성진·고군산진에 감결을 발송함.	467
41		21	甘結	군 아병을 취점하는 일로 각 읍에 감결을 발송함.	478
42		23	關文	행 제도의 재민 가운데 가장 황급한 부류를 정밀하게 가려 보고하라는 일로 영암·홍양에 관문을 발송함.	479
43		23	題	사 용안현 피고 임수연을 처음 동추한 보장(報狀)에 대한 데김.	480
44		24	關文	사 구재환실 대상을 세금을 내야하는 것으로 섞어 기록한 도리와 면서원을 형벌로 징계한 뒤 바로잡는 일로 동복현에 관문을 발송함.	480
45		24	關文	행 진자전을 더 보태어 갈라 주는 일로 낙안군에 관문을 발송함.	482
46		24	關文	행 사은사(謝恩使) 구청전(求請錢)을 낙안군에 내주라는 일로 장흥·창평·광양에 관문을 발송함.	483
47		24	關文	행 진자전을 더 보태 갈라 주는 일로 관문을 나주목에 발송함.	483
48		24	關文	군 금위영 번전과 선무전을 나주목에 내주는 일로 관문을 발송함.	484
49		24	關文	사 전주부 수형리 오이준(吳二俊)·이인용(李仁溶)이 간민과 한 통속이 되어 사사로이 푸줏간을 설치한 죄를 소상히 첩보하라는 일로 전주부 검관 중영장에게 발송함.	484
50		25	關文	부 세곡을 급히 포구에 내놓으라는 일로 각 읍에 관문을 발송함.	486
51		25	關文	부 성당창에서 새로 만들고 있는 조선을 밤낮 없이 만들어야 기한 내에 돌아와 정박할 수 있다는 가이포·녹도에 관문을 발송함.	486
52		26	關文	사 함열 하리 조기봉(趙基鵬)은 자기 조카 조환규(趙煥奎)와 작당하여 돈과 곡식 수효를 훔치고 농간한 것을 법대로 징수한 뒤 보고할 일로 관문을 발송함.	487

연 번	월	일	문서 명		문서내용	본문
53		26	關文	부	각 읍이 이전미를 속히 실어 보내는 일로 고창현에 관문을 발송함.	489
54		26	私通	부	진자전을 더 보태어 구획하는 일로 사통을 남원에 발송함.	490
55		27	關文	부	호서로 이전할 정조(正租)를 작전하여 수송하는 일로 김제·태인에 관문을 발송함.	490
56		27	甘結	부	호조의 관문으로 인하여 세목상납을 거듭 신칙하는 일로 각 읍에 감결을 발송함.	491
57		27	題	사	담양 피고 죄인 김일문을 회사한 문서에 대한 데깁.	494
58		28	關文	부	진자전을 더 보태어 구획하는 일로 진산군에 관문을 발송함.	494
59		28	關文	부	진산군의 진자전으로 내주라는 일로 무주부에 관문을 발송함.	495
60		29	狀啓	행	효행과 정절을 기리고 포상하는 것이 합당한 사람을 가려 장계를 써서 봉함.	495
61		29	狀啓	행	예조에 계하하신 관문으로 인하여 효행을 별계(別啓)를 써서 봉함.	505
62		29	狀啓	행	향촌에서 천거한 재주와 행실을 갖춘 사람을 뽑아 봉하여 아림.	512
63		29	狀啓	사	형조가 회계한 관문으로 인하여 진안현 살육 죄인 김어인노미를 차올로 시행할 일로 봉하여 아림.	513
64		29	狀啓	사	형조가 회계한 관문으로 인하여 함열현 살육 죄인 김지팽을 차올로 시행할 일을 장계를 써서 봉함.	515
65		29	移文	부	균역청으로 이운하는 쌀을 실은 배를 인도하여 호송하는 등 절목을 미리 연해읍에 알리는 일로 금영과 기영에 공문을 보냄.	516
66		29	題	부	방답진 보장. 방답진의 기민 140명은 피모 9섬 5말 5되와 조 9섬 3말 5되를 따로따로 똑같이 나누어 급히 구원할 일.	517
67		30	私通	부	방답진 진자를 구획하는 일로 사통을 보성에 발송함.	517
68		30	題	행	운봉현 보장. 운봉현 기민 400명을 매 1명당 쌀 5되씩 합 1십3섬 5말을 나누어 구획하는 일.	517
69		30	題	행	옥구현 보장. 여산부에서 받아온 것을 감영에 획급한 진자전 3백5냥 1전을 2백5십4섬 3말 7되로 작조(作租)하는 일.	518

화영일록 문서 종류 및 외근업무 빈도

	감결	거조	검제	계본	이문	광주회이	교서	방목	별계	보장	보첩	비답	사문	상소	단오첩	우택장계	장계	전교	전령	전문	절목	제	관문	초기	축문	포편등제	문서총합	실나	내나	외근
																												기록	각감	업무
																											총합	정예	감에	총합
1836년	1월						1				1		1			3										6	1	6	7	
	2월	1		2						1						9		4								17		1	1	
	3월				1	1					1					3	10	1								17	6	9	15	
	4월				1	1					1					5	5									13	1	2	3	
	5월	2		2	3											7	7	1					1			23				
	6월								1							6	2							1	1	11	5		5	
	7월			1												5	5									11	6		6	
	8월			2												3	5	1	1	1						13	3		3	
	9월										2						8				1					11	6		6	
	10월				1												5						1			7				
	11월	1		1							1						7									10				
	12월			3				3	1								6		2						1	16				
1837년	1월			1									2			10		4								17				
	2월															4					1					5				
	3월			2								1				2	8		1							14				
	4월	1								3				1	3	2										10	7		7	
	5월	3		2											4	13		1					2			25				
	6월	1														3	5							1		10	14		14	
	7월															6	3		2							11	10		10	
	8월			2						1						2	6									11	14		14	
	9월			1	1						2	1					9									14	7		7	
	10월										1						7									8	3		3	
	11월			1													4		1							6	4		4	
	12월																2					1				3	1		1	
총합	8	1	0	20	7	2	1	3	2	1	12	1	4	1	1	49	145	1	8	9	1	4	2	1	2	3	289	88	18	106

<그림 4> 『화영일록』 문서등재 현황